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

(개정판)

1989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차 례

I. 조사개요	3
1. 조사목적	3
2. 조사의 법적근거	3
3. 조사대상기간	3
4. 조사시기	3
5. 조사대상	3
6. 조사단위	3
7. 조사사항	4
8. 조사방법	5
9. 집계 및 공표	5
II. 조사표 기입요령	6
1. 일반적인 주의사항	6
2. 일반사항란 기재요령	7
3. 제품생산, 출하·재고란 기재요령	13
4. 품목수주·진척사항란 기재요령	25
5. 제품의 증감내용란 기재요령	26
6. 원재료 및 연료사용·재고란 기재요령	27
7. 고용·급여 및 조업상황란 기재요령	30

Ⅲ. 조사표 검토 및 제출	36
1. 조사착오 유형	36
2. 중점검토사항	37
3. 수시확인 점검사항	38
4. 조사표 제출	38
Ⅳ. 광공업동태 조사표 내검요령	40
Ⅴ. 사례연구 및 중점 강조사항	44
Ⅵ. 조사대상 사업체 관리요령 (광공업동태, 생산능력, 기계수주).....	63
Ⅶ. 광공업동태조사 지정품목 분류표	79
Ⅷ. 지정원재료 분류표	354
 부 록	
1. 주요단위 해설	366
2. 도량형 환산표	368
3. 주요수정보완사항	376

I.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 산업 생산, 출하, 재고, 재고율 지수등 편제, 전국 및 지역별 경기동향 분석
- 국내총생산(GDP) 및 지역소득(GRP) 추계자료
- 품목별 물량통계 작성 이용
- 고용, 급여동향 파악으로 경기동향분석 및 노동생산성추계자료로 이용
- 원재료 사용 및 재고수준 파악으로 단기간의 경기전망 자료로 이용

2. 조사의 법적근거

- 통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111-11-12)

3. 조사대상기간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1개월간을 대상

4. 조사시기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에 전월실적분을 조사

5.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경제기획원 고시 제71호)에 의한 광업,제조업 및 전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광공업동태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체

6. 조사단위

- 기업체 단위가 아닌 개개의 사업체(공장, 작업장, 광산, 사업소 등) 단위로 조사

- 사업체의 사정으로 기업 본사에서 조사하는 경우에도 개개 사업체별로 조사표를 별도로 작성

7. 조사사항

가. 제품생산·출하·재고에 관한 사항

-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기 제조업(산업분류 382, 383 업종)
지정품목별 생산량·생산액, 구입량, 동일공장내 재투입량, 국내시판량·시판액, 수출량·수출액, 동일기업내 타공장출하량, 월말재고량, 재고액
- 선박 및 철도차량 제조업(산업분류 384 중 일부)
지정품목별 당월수주량(국내용, 수출용), 당월진척량(국내용, 수출용), 수주잔량(국내용, 수출용), 당월 완성품 인도량(톤수, 척 또는 대)
- 일반업종(산업분류 2. 31 ~ 37, 381, 384 중 일부, 385, 39, 4)
지정품목별 생산량, 구입량(외부구입, 동일기업내 타공장), 동일공장내 재투입량, 국내시판량, 수출량, 동일기업내 타공장 출하량, 과부족보정량, 월말재고량

나. 원재료 및 연료 사용, 재고에 관한 사항(공통)

- 원재료 및 연료별 생산지 구분(국산, 수입), 월중 사용량, 월말재고량

다. 고용·급여 및 조업사항(공통)

- 종업원 구분별 월말 종업원수, 월중 종업원 연근무 인원수, 월중 종업원 연근무시간수, 월중 입직자 및 이직자, 조업일수, 조업시간, 급여총액, 정액급여액, 특별급여액

8. 조사방법

- 면접·타계식(他計式) 방법과 자계식(自計式) 방법의 병행

9. 집계 및 공표

- 제출된 조사표는 심사, 집계, 분석등을 거쳐 「생산·출하·재고동향」(월간), 「한국통계월보」(월간), 「산업생산연보」(연간), 「한국통계연감」(연간)에 게재·공표

II. 조사표 기입요령

1. 일반적인 주의사항

-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문자는 한글(필요한 경우, 한자나 영문병기)로 기재
- 잘못 기입한 사항을 정정시는 횡선을 긋고, 그 바로위에 다시 기재
- 조사표상에 정해진 자리수 문자와 조사단위와의 차이에 유의

※ 잘못기입

품 목 부 호	품 목 명	유 고 사항	단 위	생 산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2140500	자 수 직 물		천 m ²			3	1	0	0	0
9040100	인 형 및 장 난 감		백 만 원	4	0	0	0	0	0	0
5220100	의 약 품		백 만 원	5						

※ 바른기입

품 목 번 호	품 목 명	유 고 사항	단 위	생 산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2140500	자 수 직 물		천 m ²						3	1
9040100	인 형 및 장 난 감		백 만 원							4
5220100	의 약 품		백 만 원							5

- 조사단위는 「지정품목 분류표」에 지정된 단위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체의 사용단위와 다를 경우는 지정단위로 환산기입
- 지정단위 미만의 수치는 각 항목별로 별도 주석이 없는 한 반올림함. 다만 생산·출하량(또는 액)에 있어 월별로는 반올림 규정에

따라 「 0 」이 될지라도 누계를 감안하여야 함.

※ 잘못기입 (천㎡로 지정된 어떤 품목의 생산이 극소한 경우)

	1	2	3	4	5	6	7	8 월
실 생산 (㎡)	380	290	430	420	480	350	400	350
조사표기재	0	0	0	0	0	0	0	0

※ 바른기입

	1	2	3	4	5	6	7	8 월
실 생산 (㎡)	380	290	430	420	480	350	400	350
생산누계 (천㎡)	0.380	0.670	1.100	1.520	2.000	2.350	2.750	3.100
조사표기재	0	1	0	1	0	0	1	0

2. 일반사항란 기재요령

가. 년월분 및 잠정, 확정자료 구분

- 년은 1 자리, 월은 2 자리 숫자로 기입하고, 잠정자료인지, 확정자료인지 ○표시

※ 기입예 :

(198 년 월분) 잠정자료 확정자료

- 전월 신고된 잠정자료를 확정자료로 다시 보고하는 경우는 위 요령에 따라 붉은 싸인펜으로 기재
- 과거 2개월 이상의 자료를 소급하여 수정보고하는 경우는 조사표 왼쪽 상단에 붉은 싸인펜으로 “소급조사표”라 기입하고, 품목별, 연별로 조사표를 달리하여 조사보고, 이때 조사표의 일련번호는 “월”을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일련번호 바로앞에 “년”(뒤 2자리숫자만)을 적색으로 표기하여야 함.

※ 기입예 : ('88년 3월부터 12월분까지를 소급조사 보고한다고 가정)

	일련번호	품 목 번 호						품 목 명
		01						
	02							
88	03	1	1	2	0	3	00	아이스크림
	⋮							⋮
88	12	1	1	2	0	3	00	아이스크림

- 해당없는 달은 사선
- 해당되는 달부터는 연도를 명기하고 품목번호, 품목명등 필요사항을 기재
- 다만, 조사표Ⅲ의 품목에 대하여는 품목부호, 품목명, 단위를 흰종이로 붙인후 위의 요령과 같이함

나. 사업체 고유번호

- 지정된 사업체 고유번호(7단위)를 기재하되, 변경지시가 없는 한 바꿀 수 없음

다. 산업분류

- 지정품목의 연간 출하액을 기준하여 가장 큰 품목이 해당하는 산업세분류(5단위)기입
- 지정품목이 여러가지가 있어 조사표를 달리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일 조사표를 사용하는 지정품목들의 연간 출하액 크기를 비교하여 조사표마다 가장 큰 품목의 산업세분류를 기입
- 조사중인 사업체에서 새로이 어떤 지정품목을 생산하는 경우에, 새로운 품목이 주종품목이 되는 경우에는 신품목의 산업분류를 기입
- 위 기준은 전국 지수 지정품목과 지역특성품목을 함께 생산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기입예

① 동일조사표를 사용하는 지정품목만 생산하는 경우

품목번호	품 목 명	연간출하액 (백만원)
2110600	합 성 섬 유 사	4,520
2120500	합 성 섬 유 직 물	9,850
2220100	남자용기성정장복	2,031
5140400	아 크 릴 릭 섬 유	1,060

- 지정품목이 모두 조사표 I 사용품목임
- 합성섬유직물이 주종품목임
→ 산업분류 32123

② 조사표를 달리하는 지정품목들을 생산하는 경우

품목부호	품 목 명	연간출하액 (백만원)
8310100	전 동 기	420
8342400	소 형 모 터	1,130

- 조사표 II를 사용하는 품목
- 소형모터가 주종품목임
→ 산업분류 38349

품목부호	품 목 명	연간출하액 (백만원)
8190800	나 사 제 품	250

- 나사제품은 조립금속제품으로 조사표 I 사용
- 별도로 조사표 I 을 사용
→ 산업분류 38195

③ 기초사중인 품목외에 신규로 지정품목을 생산하는 경우

- 동일 조사표 사용품목인 경우는 위 ①에 따라, 조사표를 달리하는 품목인 경우는 ②의 방법에 따라 산업분류를 기입 (이때는 월간출하액을 기준)
- 다만, 신규품목 생산이 6월이내의 일시적 생산에 그칠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업분류부호를 바꾸지 않음.

※ 전수조사업체만 해당함. 표본업체(송수가 있는 업체)는 신규로 지정품목이 생산되더라도 별도지시가 없는 한 조사않음.

라. 행정구역번호

- 지정된 행정구역번호(시도, 구시군, 동읍면)를 기입
- 특별시, 직할시가 아니면서 “구”가 있는 “시”는 “시”부호(00)는 생략하고 “도, 구, 동”부호만 기입

마. 조사구 번호

- 본부 또는 통계사무소에서 지정한 조사구 번호를 기입
- 시, 도자체에서 조사하는 사업체는 행정구역 분류부호중 시, 도 부호 다음에 A를 추가하고 그 이하는 공란으로 둬.

기입 예 : 서울시에서 조사하는 경우

1	1	A	-		
---	---	---	---	--	--

바. 사업체(본사)명 및 소재지

- 사업체가 실제 사용하는 명칭과 현 소재지를 구체적으로 기입

※ 기입 예 :

사 업 체 명	소 재 지
광동산업(주) 마산공장	경남 마산시 회성동 13-6
서울공업(주) 제 2 공장	서울 구로구 구로제 3 동 66

- 본사나 별도의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입

사.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실제대표자명 및 조사표 작성부서의 전화번호를 기입

아. 사업체 규모

- 종업원수(임시 및 일고 포함)를 기준으로 대규모업체, 중소규모업체로 구분하여 ○표시 함.

- 사업체규모는 사업체별로 지정되었으므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신규업체인 경우는 다음 기준에 따라 분류할 것

중소규모업체 기준

산 업 분 류	중 소 규 모 업 체
2. 광 업	
○ 21 석 탄 광 업	• 500 인 미 만
○ 23 금 속 광 업	} • 300 인 미 만
○ 29 기 타 광 업	
3. 제 조 업	
○ 31 음식료품 및 담배	
• 전 업 종	• 300 인 미 만
○ 32 섬유, 의복, 가죽, 신발	
• 322 의 복	• 500 인 미 만
• 기 타 업 종	• 300 인 미 만
○ 33 나무 및 나무제품	
• 전 업 종	• 300 인 미 만
○ 34 종이 · 인쇄 · 출판	
• 전 업 종	• 300 인 미 만
○ 35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플라스틱	
• 356 기타 플라스틱	• 500 인 미 만
• 기 타 업 종	• 300 인 미 만
○ 36 비금속광물제품	

산 업 분 류	중 소 규 모 업 체
• 361 도기, 자기, 토기	• 500 인 미 만
• 362 유리, 유리 제품	
• 369 기타비금속광물제품	
○ 37 제 1 차 금 속 산 업	• 300 인 미 만
• 3713 주 조 업	• 500 인 미 만
• 기 타 업 종	• 300 인 미 만
○ 38 조립금속제품, 기계및장비	
• 3811 날붙이, 수공구, 철물	• 500 인 미 만
• 3822 농 업 용 기 계	
• 3825 사무, 계산, 회계용기계	
• 383 전 기 · 전 자 기 기	
• 38432 자 동 차 부 품	
• 3852 사 진 및 광 학 용 품	
• 3853 시 계	
• 기 타 업 종	
○ 39 기 타 제 조 업	
• 전 업 종	
4. 전 기 업	
• 전 업 종	• 300 인 미 만

자. 종업원 규모

- 고용급여 및 조업상황란의 월말종업원수(임시 및 일고포함)를

기준으로 해당번호에 ○표시함.

차. 유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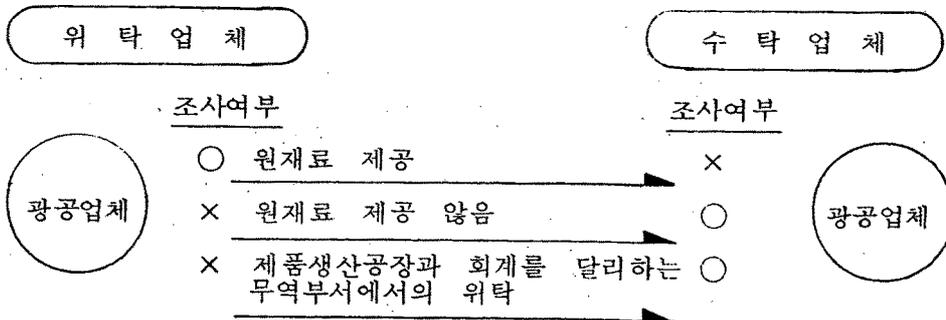
- 사업체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해당번호에 ○표시함.
- 유고내용
 - 1. 전 입 : 타사무소(또는 시·도) 관할이던 사업체가 이전되어 온 경우
 - 2. 휴 업 : 사업체가 휴업중인 경우(조사표는 계속 제출)
 - 3. 사업체흡수 : 동일기업내 타공장 또는 다른기업체의 공장을 흡수 합병하여 공장규모가 늘어난 경우
 - 4. 사업체분리 : 1개사업체가 경영 및 회계를 달리하는 2개이상의 사업체로 분할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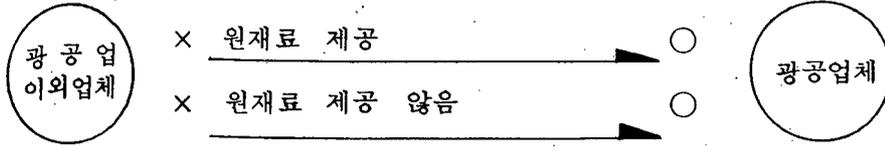
3. **제품생산·출하·재고** 란 기재요령(조사표 I, II)

가. 조사대상 제품

- 사업체에서 실제 생산하고 있는 제품중 조사대상으로 지정된 제품 (제품명칭이 다르더라도 품목 포괄범위에 해당되면 조사)
- 원재료의 대부분을 제공하여 타업체에 위탁 생산한 제품은 위탁업체의 생산제품으로 간주 (원재료의 대부분을 제공하지 않고 위탁생산하는 경우에는 수탁사업체의 생산제품으로 간주하고, 위탁업체에서는 이를 구입으로 처리)

※ 위·수탁 관련품목의 조사여부





- 중간제품과 최종제품을 함께 생산하는 경우, 당해 중간제품이 출하 (외부출하, 동일기업내 공장간 출하)되고 있거나, 다른제품의 연료, 촉매, 포장용 등으로 사용되는 때, 당해 중간제품이 지정품목이면 조사

나. 품목부호 및 품목명

- 「지정품목분류표」에 기재된 품목부호 및 품목명을 기입
- 품목부호 체계 (7단위부호)

품 목 명	품 목 부 호						
	2	1	1	0	1	0	0
○ 생 사	2	1	1	0	1	0	0
○ 면 사	2	1	1	0	2	0	0
• 순 면 사	2	1	1	0	2	1	0
• 혼 방 면 사	2	1	1	0	2	2	0
○ 남자용마춤양복	2	2	1	0	1	0	9

↓ 산업세분류 (4단위부호)를 의미하나 대분류부호는 생략하였음 (211은 3211분류를 나타냄. 단, 석탄광업은 010, 금속광업은 030, 기타광업은 090, 전기업은 999로 함)

↓ 산업세분류내에서 채택된 품목의 일련번호 (전기업은 99)

↓ 지수는 통합하여 편제하나 물량통계를 위하여 세분되는 품목의 일련번호, (지수는 면사211020으로 하여 편제하나 물량통계는 순면사 211021과 혼방면사 211022로 구분하여 작성)

↓ 전국지수 품목으로 채택된 품목은 "0", 어느 특정1개 시·도 또는 수개 시·도지수를 위하여 채택된 품목은 "9"로 함 (단, 전국품목은 반드시 1개 시·도이상에 포함됨)

○ 물량통계를 위한 세분품목의 기입방법

- 지수품목의 품목부호, 품목명은 기입하지 않고, 세분품목으로만 기입

※ 기입 예 : 면사의 경우

① 순면사만 생산하는 사업체

2	1	1	0	2	1	0	순	면	사
---	---	---	---	---	---	---	---	---	---

② 혼방면사만 생산하는 사업체

2	1	1	0	2	2	0	혼	방	면	사
---	---	---	---	---	---	---	---	---	---	---

③ 순면사, 혼방면사를 모두 생산하는 사업체

2	1	1	0	2	1	0	순	면	사	
2	1	1	0	2	2	0	혼	방	면	사

다. 유고사항

- 품목에 관련된 변동사항을 다음 부호에 따라 기입

○ 유고사항 부호

- 품목 신규 생산 1
(전수조사업체에 한함)
- 품목 생산중단(휴업포함) 2
- 기보고해은 품목으로서 분류착오로 제외 3
- 품목 조사 누락 4

라. 단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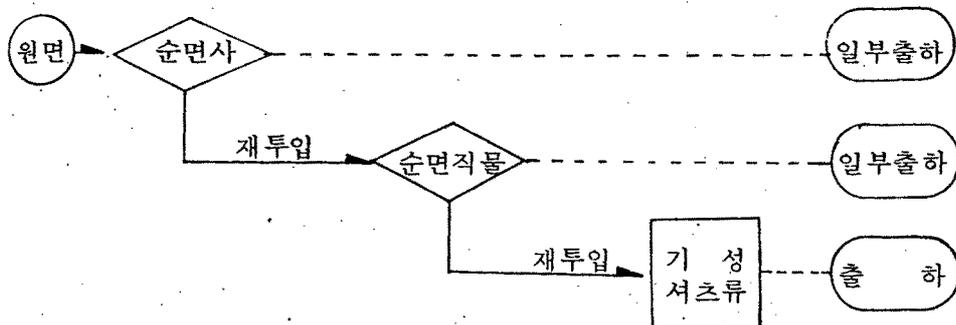
- 「지정품목분류표」에 게재된 지정단위를 사용
-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가 지정단위와 다를 경우, 지정단위로 정확히 환산
- 조사표 I 대상품목중 금액조사 품목은 각 란을 금액으로 조사함

- 조사표Ⅱ 대상품목은 지정수량 단위에 의한 물량조사와 함께 금액 조사도 병행함
- 지수편제 단위는 금액기준이지만, 물량통계를 위하여 수량단위가 지정되어 있는 품목은 물량조사를 병행함

마. 생 산

- 조사대상월중 사업체에서 직접생산한 량 및 금액 (공정중에 있는 재공품은 제외)
- 원재료의 대부분을 공급하여 위탁생산한 량은 위탁업체의 생산량으로 간주
- 원재료의 대부분을 공급받지 않고 수탁생산한 량은 수탁업체의 생산량으로 간주 (OEM 방식 생산도 같음)
- 중간제품 (재공품이 아닌 제품원재료로서 다른 제품생산을 위해 재투입되거나, 기타 연료, 가공용 등으로 소비되는 품목)이 있는 경우, 지정품목일 경우 조사

※ 예 : 원면을 투입하여 중간제품 단계를 거쳐 기성셔츠류를 생산할 경우



- 중간제품인 순면사(2110210), 순면직물(2120110) 및 최종제품인 기성셔츠류(2220200)가 모두 지정품목임으로 세가지를 제품으로 조사

- 생산액의 평가는 생산자 판매가격(간접세 포함가격)으로 함

바. 구입

- 일반업종은 「외부구입」과 「동일기업내 타공장구입」으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기계, 전기·전자기기 업종은 이들을 합하여 기입

- 자기 사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위탁생산분 포함) 지정품목과 포괄범위가 같은 품목의 구입에 한함

- 다른 제품의 원재료나 연료, 가공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제품은 당해 사업체에서 그러한 제품이 중간제품 또는 최종제품으로 생산되고 있으면 포함되나, 생산이 없으면 포함되지 않고, 「원재료 및 연료 사용·재고」 사항에서 파악함

○ 「외부구입」

- 타기업 또는 타상사로부터 구입한 것
- 원재료의 대부분을 공급하지 않고 위탁생산한 제품으로서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것
- 외국에서 수입한 것
- 이미 출고한 제품중 반품된 것으로서 재판매되거나 재고로 계상될 것(폐기될 것은 제외)

- 타기업체로부터 빌려온 것

○ 「동일기업내 타공장 구입」

- 동일기업내 타공장에서 구입하거나, 내부거래로 받은 것

※ 〈주의사항〉

- 자기 사업체에서 생산하지 않는 품목을 구입 또는 내부거래로 받는 경우에는 그 품목이 지정품목이라 하더라도 「구입」란에 계상할 수 없음

※ 금액조사 품목은 생산액 평가방법에 준함

사. 동일공장내 재투입 (자가소비)

- 당해 사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지정품목중, 다른 제품 (지정품목이 아닌 것도 포함) 생산을 위해 당해 사업체내에서 생산공정에 재투입된 량 (구입량 및 재고량의 재투입도 포함)
- 재투입유형
 - 제품 원재료로서 투입 (예 : 순면사를 순면직물 생산을 위해 사용)
 - 연료로 투입 (예 : 당해공장에서 생산된 코오크스를 연료로 사용)
 - 촉매제 또는 환원제로 투입
 - 다른제품의 가공을 위해 투입

※ 금액조사 품목은 생산액 평가방법에 준함

※ 〈주의사항〉

- 견본, 선물, 전시, 시험연구, 설비보수 및 확장, 사무실 및 공장사무용, 제품포장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기사용)는 출하중 「동일기업내 타공장 출하 및 기타」의 기타출하로 간주 (다만, 외국으로 출하되는 것은 수출로 간주)

아. 제품출하

- 당해 사업체에서 직접생산한 지정품목, 지정품목과 같은 제품의 구입분 및 위탁생산분중 그 사업체 (자가창고, 타장소 보관 불문)에

서 출고된 량

- 현금, 외상을 불문하고 사업체에서 출고된 시점에서 출하로 간주하며, 판매대금을 받았더라도 아직 인도되지 않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출하로 보지 않음.

(다만, 사업체의 회계처리상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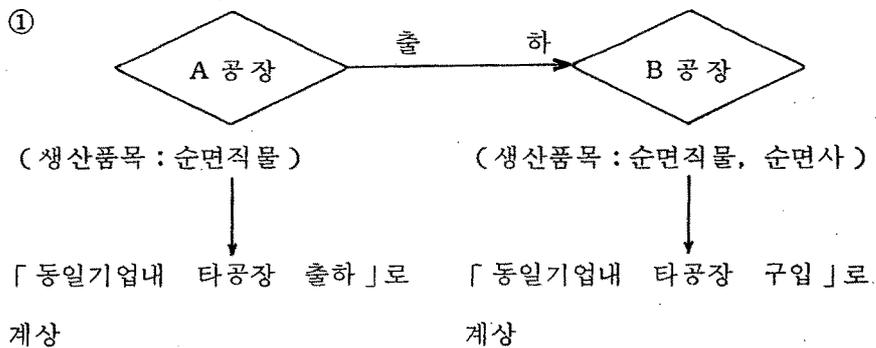
○ 「국내시판」

- 국내판매업자, 타사업체, 기관, 단체, 개인소비자 등에게 판매
- 국군부대에 납품
- 판매를 목적으로, 회계처리를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본사나 영업소등에 출하
- 내국신용장수출 (Local 수출) 중 완제품의 일부 부품으로 투입되는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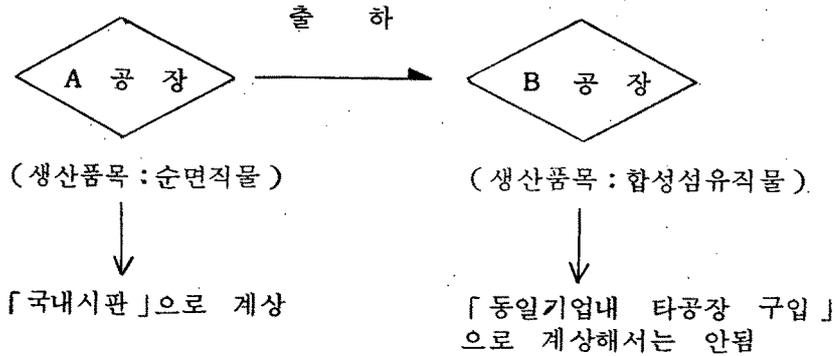
※ 예 : TV브라운관, 인쇄회로기판등

- 위탁업체가 조사대상인 경우에 위탁업체로의 납품
- 동일 조사품목을 생산하고 있지 않는 동일기업내 타공장에서의 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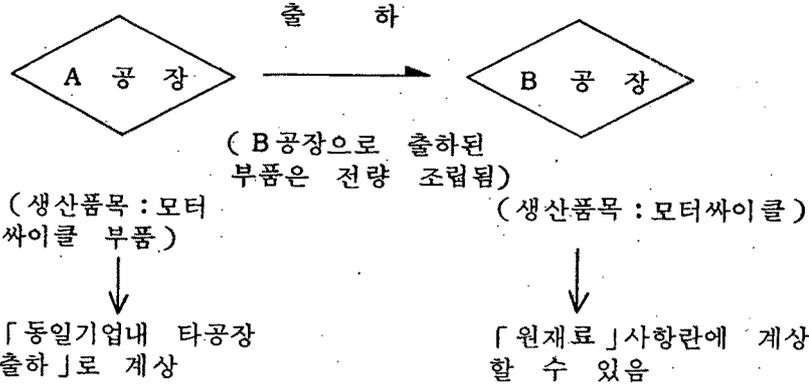
※ 예 : 동일기업내 A, B 공장간에 거래하는 경우



②



③



-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 출하되어 인수받은 공장에서 전량이 원재료, 연료등으로 소비될 경우는 보내는 공장에서는 「동일기업내 타공장 출하」로 계상하고, 받는 공장에서는 받는 품목과 같은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면 「동일기업내 타공장 구입」으로 계상하지만, 동일 품목을 생산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원재료」관련 사항에 계상할 수 있을 뿐임

○ 「수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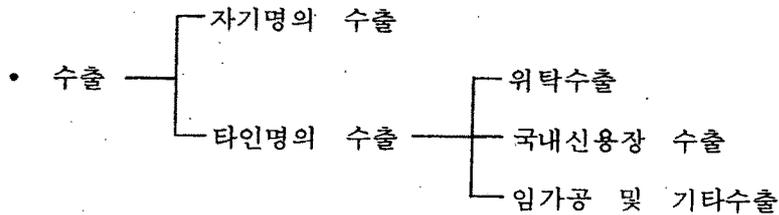
- 외국에 판매하기 위하여 출하
- 외국선박 및 외국항공기에 출하
- 주한 외국군에 납품

- 외국 또는 주한 외국군에 견본, 선물 등으로 증정
-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등에 전시용으로 송부한 것
- SKD, CKD 방식에 의해 수출되는 품목도 완성품 수량 및 금액으로 환산하여 포함

※ <주의사항>

- 수출용 제품의 원재료, 부품이 되는 제품을 동일기업이 아닌 타사업체에 출하할 경우 「국내시판」으로 봄

※ 수출의 구분



※ 수출은 무역거래법 제3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또는 사업체)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자기명의 수출과 타인명의 수출로 구분됨

i) 자기명의 수출

자기명의 수출이란 수출업체가 외국관계자와 직접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수출하는 경우로 광공업 동태조사에서는 광공업 사업체에서 직접 수출할 경우에 해당됨

ii) 타인명의 수출

타인명의 수출은 다시 위탁수출과 내국신용장수출, 임가공 및 기타로 나눌 수 있음.

- 위탁수출은 자기 또는 사업체가 직접 외국구매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출입 허가가 없거나, 수출입 허가가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입 허가를 받은 타인(또는
타업체)에게 위탁하여 수출하는 것을 말함. 광공업 사업
체로 수출입 허가가 없는 사업체는 위탁수출을 하는 경우
가 많음

○ 내국 신용장수출(Local 수출)은 국내의 비광공업체로부터
받은 내국신용장에 의한 것으로 자기 사업체가 직접 외국
구매자와 수출계약을 맺지는 않았으나, 이미 수출계약을 체결
한 국내의 타수출업체(비광공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맺
고 내국신용장(제2, 제3차 내국신용장 포함)에 의거 수
출용 제품을 공급했을 경우로 원재료 제공 여부와는 관계
없이 수출로 조사

○ 입가공 및 기타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구매승인서와 입가공 및 기타
약정에 의해서 비광공업체에 출하되는 수출용 제품의 출하
와 계약서상 수출품으로 명기되지 않았으나, 사업체에서 수
출용제품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경우로 이 때도 위탁업체로
부터 원재료 공급여부와는 관계없이 수출로 조사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 : 주문자 상표부착 생
산 및 출하방식

※ SKD(Semi - Knock Down) : 제품을 반해체 상태로 수출

※ CKD(Complete Knock Down) : 제품을 완전해체상태로 수출

○ 「국내시판금액」

• 국내시판금액의 평가는 생산자 판매가격(운임, 포장비, 보험료, 간
접세 등을 포함하여 정한 경우는 이들 금액을 포함한 가격)으
로 함

- 수탁업체에서 위탁업체로 납품(원재료를 제공받지 않은 위·수탁 거래)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비와 가공임등을 포함하여 계약한 금액

○ 「수출액」

- 수출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 수출일자별 환율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월평균 환율을 적용

○ 「동일기업내 타공장 출하 및 기타」

- 동일조사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동일기업내 타공장에서의 출하
- 동일조사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 않는 동일기업내 타공장에서의 출하는 「국내시판」으로 계상하지만, 다만 그 제품이 인수받은 타공장에서 원재료, 부품, 연료, 촉매제 등으로 소비되는 경우는 「동일기업내 타공장 출하」로 계상
- 국내에 견본, 선물, 전시용 등으로 출하하거나, 자기공장이나 사무실용(시험연구, 설비보수 및 확장, 제품 포장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는 이 항목에 계상(「기타」에 해당)
- 타사업체에서 빌려온 제품(조사지정 생산품목과 동일품목)의 변제(「기타」에 해당)

※ 금액조사 품목은 국내시판 금액의 평가방법에 준함

자. 과부족 조정

○ 과부족 조정사유

- 화재, 수해, 도난 및 기타 사유로 인한 멸실, 분실(-)
- 재고로 보관중 불량품으로 변질되어 폐기처리(-)
- 계산단위 미만의 사사오입에 따른 증감(+, -)

- 기타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재고의 증감(+, -)
- 생산, 출하, 재고와의 관계
 - 전월말재고(월초재고) + 생산 + 구입 - 동일공장내 재투입 - 출하 ± 과
부족 조정 = 월말재고(조사표 I)
 - 전월말재고 + 생산 + 구입 - 재투입 - 출하 $\begin{matrix} > \\ < \end{matrix}$ 월말재고(조사표 II의 경우)
(이때 월말재고의 증감차이가 많은 경우 재확인)
- 과부족 조정량을 기입시 위 관계식을 참조 ⊕, ⊖ 기호를 적색으
로 표시

※ 금액조사 품목은 실제 재고액을 기준하여 가감

차. 월말재고

- 재고로 되는 경우
 - 당해사업체에서 생산한 제품 및 위탁생산 제품의 보관(자기창고,
타인창고 불문)
 - 현금 또는 외상판매되었으나 아직 인도되지 않고 있는 제품(다
만, 사업체의 회계처리상 달리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를 수
있음)
 - 원재료의 대부분을 공급하여 위탁생산한 제품이 완성되었으나, 아
직 수탁업체에서 보관중인 것
 - 조사품목과 동일한 품목을 구입하여 보관중인 것

※ 1 회사 1 공장의 경우, 본사와 공장의 회계처리가 독립되어 있
지 않는 경우의 본사창고는 공장창고로 봄

※ 금액조사 품목은 실제 재고액을 기입(재고액 평가방법은 출하
액 평가방법과 동일)

4. 품목수주·진척사항 기재요령〔조사표Ⅲ〕

가. 품목부호, 품목명

- 조사표상에 인쇄된 부호, 명에 맞추어 해당란에 기입
- 지정된 품목이외에는 진척율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조사표 I, II를 사용하여야 함

나. 유고사항

- 3. 「제품생산, 출하, 재고」란의 유고사항과 동일

다. 단 위

- 조사표상에 지정된 단위를 사용함
- 선박해체업은 LDT(Light Displacement Ton: 輕化排水 톤수)를 사용

라. 당월수주량

- 확실한 계약에 의거 외국(수출용) 또는 국내(국내용)로부터 주문받은 량
- 선박해체업의 경우는 폐선박 도입량을 기입하되, 폐선박내의 물을 뺀 중량으로 함

마. 당월진척량

- 수주량에 조사월의 공정진척율을 승하여 환산하거나, 총수주량에 공정진척율 누계를 승한 후 전월까지의 환산량을 차감하여 환산
- 선박해체업의 경우는 공정진척율에 따른 해체량을 환산

바. 수주잔량

- 총수주량 중에서 당월까지의 진척량누계를 차감한 잔량
- 선박해체업의 경우는 미해체량
- 수주량, 진척량, 수주잔량과의 관계
 - 전월말 수주잔량 + 당월수주량 - 당월진척량 = 당월말 수주잔량

사. 당월 완성품 인도량

- 진척율 조사품목은 당월 진척량을 생산으로 간주하고 동시에 출하된 것으로 간주하게 됨(지수편제시)
- 그러나 실제 완성품의 출하는 상당한 시차가 있게 됨으로, 공정진척도(기성고)에 관계없이 실제로 선박 또는 철도차량을 통관 또는 납품한 량을 기입함
- 선박해체업은 조사하지 않으며 그이의 품목은 중량과 척(대)수를 함께 조사

5. 제품의 증감내용 란 기재요령

가. 품목부호

- 사업체의 지정품목중 생산, 출하, 재고에 대한 전월비가 큰 순으로 기입
- 진척율 조사품목은 「당월진척량」전월비를 기준으로 함.

나. 전월비(%)

- $\frac{\text{금월실적(생산, 출하, 재고)}}{\text{전월실적(생산, 출하, 재고)}} \times 100$ (소숫점이하 반올림)
- $\frac{\text{당월진척량}}{\text{전월진척량}} \times 100$ (소숫점이하 반올림)
- 수량, 금액 병행조사품목은 지수편제「지정단위」에 의거 계산.

다. 증감부호

- 예시된 부호중 주된 부호 하나만을 선택 기입(꼭 알맞은 부호가 없더라도 가장 유사한 부호를 선택)

라. 증감사유

- 증감부호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간략히 기입.

○ 기입예 :

품 목 부 호	전월비(%)	증 감 부 호	증 감 사 유
2220300	△ 32	11	미국
2220900	20	02	미도파백화점
2330200	△ 10	14	3일간
2221100	8	04	전월 2 일휴업

- 사업체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보고할 필요성이 있거나, 선박진척상황보고 등 특수자료는 별도 부전지를 사용.
- 진척을 조사품목은 증감부호없이 증감사유를 기재.

6. 원재료 및 연료사용·재고 란 기재요령

가. 원재료

- 지정제품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주원료(재료)와 부분품, 부속품, 용기 등과 같은 보조원료(재료)를 말함.
- 원재료의 구분
 - 원재료 { 국산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
 - 수입 외국에서 생산된 원재료(외국에서 직접 구입하였거나, 국내 다른 업체나 상사로부터 구입하였거나 불문)
- 포함 또는 제외여부
 - 원재료를 제공하여 위탁생산하는 경우 위탁업체에서 조사
 - 원재료를 공급받아 수탁생산하는 경우 수탁업체에서는 제외

나. 원재료번호

- 「지정원재료분류표」에 정한 번호를 정확히 기입

다. 원재료 및 연료명

- 「지정원재료분류표」에 의해 기입
- 분류표상의 원재료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할 경우 중앙에 보고
- 분류표상에 기재된 원재료들보다 비중이 크거나 주요 원재료라고 판단되는 것은 원재료 번호없이 원재료명과 다른 해당란을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조사 보고함.
- 연료에 대하여 조사표상에 인쇄된 연료만 조사

라. 유고사항

- 「제품, 출하, 재고」란의 유고사항과 동일

마. 단 위

- 「지정원재료분류표」에 지정된 단위 사용
- 사업체 사용단위가 지정단위와 다를 경우라도 지정단위로 환산기입

바. 구 분

○ 부 호

- 국산원재료 1
- 수입원재료 2

- 동일 원재료를 국산품과 수입품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 기입예 :

원재료 및 연료명	단 위	구 분	월중사용량	월말재고량
소 맥	ㄲ	1	50	200
소 맥	ㄲ	2	20	150

사. 월중사용량

○ 원재료 사용량

- 조사대상기간중 대상사업체의 지정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 사용한 원재료 수량을 기입 (직접생산, 구입 원재료 불문)
- 원재료 사용량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 지정제품생산을 위해 창고로부터 공장의 제조공정에 출고된 원재료수량 기입.
지정제품과 비지정제품을 동일 원재료를 사용하여 일관된 공정에서 생산하는 경우 지정제품에 대한 원재료 사용량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생산량(또는 금액), 설비비율 등 적절한 기준에 의해 배분계산하여 지정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사용량만을 파악.

○ 연료 및 전력사용량

지정·비지정제품에 관계없이 사업체에서 사용한 총연료 및 전력량을 조사

아. 월말재고량

- 사업체내에서 자체 생산한 원재료 및 연료와 외부에서 구입한 원재료 및 재료의 월말현재 재고수량.
- 기타 정의는 「제품」에서의 「월말재고량」에 따름.

※

잠정조치

-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신조사표에는 「지정원재료분류표」에 게재된 원재료를 무시하고 해당사업체에서 지정제품생산을 위해 가장 많이 투입되는 원재료를 순차적으로 기입보고할 것.

(단, 원재료부호가 있는 것은

7	9	5	-	0	1
---	---	---	---	---	---

 과 같이 기입할 것)

7. 고용, 급여 및 조업상황란 기재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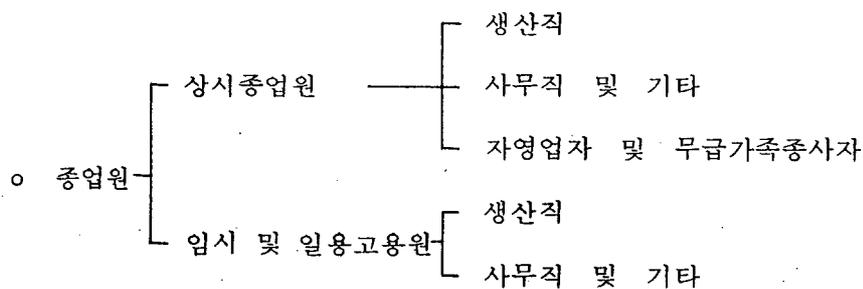
가. 조사대상

- 광공업 동태조사 대상업체로 지정된 사업체의 종업원(상시, 임시 및 일고포함)의 변동사항과 종업원에 대한 급여 및 조업현황.
- 회계나 경영을 독립적으로 하는 본사의 종업원은 대상업체의 종업원에 포함되지 않고, 본사가 대상사업체(공장)와 결합되어 운영될 때는 대상업체의 종업원에 포함.
- 지정품목생산을 중단하고 비지수품목만을 생산하는 사업체의 경우
 -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고용·급여 및 조업사항을 계속 조사.
 - 다만, 「연근무인원수」 「연근무시간수」란은 현지정품목생산 중단 이후분은 조사하지 않음.

※ 기입예 : '88년 1월 16일부터 현지정품목생산을 중단한 경우

- ① '88년 1월분 연근무인원수 및 연근무시간수는 1일부터 15일분까지만 조사.
- ② '88년 2월에도 계속하여 지수품목생산이 없었다면 "0"

나. 종업원의 구분



○ 상시종업원

-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

체에 고용된 자.

- 매일매일 고용되는 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라도 지난 3개월을 통산하여 45일 이상을 대상사업체에 고용되었을 경우 상시종업원에 포함.

○ 생산직 종업원

생산직 종업원이란 제품 또는 광산물의 생산에 직접 관련있는 현장종업원과 보조적인 작업에 종사하는 보조원을 말함.

단,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실제로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 사무원, 지배인, 중역 등은 생산종업원으로 보지 않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제조업의 경우

제조(製造), 가공(加工), 검사(檢査), 검량(檢量), 입하(入荷), 저장(貯藏), 조작(操作), 포장(包裝), 입고(入庫), 출하(出荷), 보수(補修) 등의 업무와 보조적인 생산품의 생산업무, 생산공장의 기록사무 기타 상기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광업의 경우

채광(採鑛), 굴진(掘進), 갱내지주(坑內支柱), 권양(捲揚), 환기(換氣), 배수(排水), 천공(穿孔), 발파(發破), 분쇄(紛碎), 선광(選鑛), 검사(檢査), 저장(貯藏), 출하(出荷), 보전(保全) 등의 업무와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사무직 및 기타 종업원

- 생산종업원을 제외한 모든 피고용자를 말하는 것으로 생산작업에 직접 관련하지 않고 뒤에서 기술적, 전문적 그리고 서기적(書記

的)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이들의 보조원, 즉 급사, 수위, 승용차의 운전사, 판매 및 선전을 위한 자동차의 운전사들을 말하며 인사, 기획, 경리, 선전, 판매, 배달 등 실제적으로 생산활동을 하지 않은 종업원

- 보수를 받는 지배인, 중역 등.
-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
 - “자영업주”란 사업체의 주인으로서 급여를 받지 않으며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무급가족종사자”란 자영업주와 가족관계가 있는 자로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종사하는 자(단, 주당 18시간 이상 종사한 자에 한함)

다. 월말 종업원수

- 해당 조사월 말일현재의 종업원수
- 월말 종업원수 파악이 곤란한 경우, 말일에 가까운 급여계산일을 기준(수시로 종업원수 파악시점을 변경시켜서는 안됨)

※ 〈주의사항〉

- 급여계산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급여는 지급되었더라도 이미 퇴직한 종업원(상시, 임시·일고)은 월말 종업원수에 포함시켜서는 안됨.
- 휴업 및 기타 사유(폐업제외)로 일시 조업이 중단된 경우
 - 계속조사 기입
 - 휴업은 되었지만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 일시적 휴업(2개월까지)

- 휴업으로 처리, 종업원수 기입않음.

— 위 이외의 경우

라. 월중 종업원 연근무 인원수

- 조사월중에 실제 근무한 종업원의 연인원수(延人員數), 즉 매일별 인원수를 월간합계한 수.
- 급료가 지급되더라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수는 제외
- 1일 1시간이상 근무한 자는 연근무인원수에 포함.

마. 월중 종업원 연근무 시간수

- 조사월중에 실제 근무한 생산직 종업원(임시 및 일고 생산직 포함)의 매일별 근무시간수를 월간 합계한 시간수.

※ 기입예 :

종업원 10인(생산직)을 가진 업체가 시간외 근무없이 1일 8시간씩 30일간을 계속 근무하였다면,

- 연근무인원수 : 10명 × 30일 = 300명
- 연근무시간수 : 10명 × 8시간 × 30일 = 2,400시간
- 휴식시간은 제외함(다만, 광공업체의 갱내 휴식시간 및 대기시간은 포함)
- 본래 업무외로 근무한 일·숙직시간은 제외.
- 지각, 조퇴, 노동쟁의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

※ <주의사항>

- 휴업, 조업중단으로 생산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은 연근무인원수 및 연근무시간수 계산에서 제외.
- 신규채용 종업원이 생산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훈련 또는 수습기간중에 있는 경우 해당 종업원에 대하여는 연근무인원수 및 연근무시간수에서 제외(단, 월말 종업원수 및 급여란은 포함)

바. 전월말 상시 종업원

- 전월말 상시 종업원수를 기입.

사. 월중 상시 종업원 입직자

- 해당월중에 신규채용, 전입 등으로 새로 사업체에 들어온 상시 종업원수.

아. 월중 상시종업원 이직자

- 해당월중에 자진퇴직, 해고, 사망, 전출 등으로 사업체를 떠난 상시 종업원수.

자. 금월말 상시종업원

- 조사해당월말 상시종업원수를 기입.
- 「전월말 상시종업원+월중 상시종업원 입직자-월중 상시종업원 이직자 = 금월말 상시종업원」

차. 월중 조업일수

- 사업체가 월중에 실제로 생산활동을 한 일수.
- 1일 24시간을 3교대로 하였더라도 조업일수는 1일로 계산.
- 사업체 사정 등으로 생산직종업원 일부가 조업을 하였더라도 조업일수에 포함(단, 사무직 및 기타 종업원만 근무한 경우는 제외)

카. 월중 1일평균 조업시간, 교대

- 월중 1일 평균조업시간 = $\frac{\text{해당월중 매일별 조업시간 합계}}{\text{월 중 조업 일 수}}$

○ 교대작업일 경우

교대작업이 몇교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입.

타. 급여총액

- 해당월중 종업원에게 지급된 임금, 봉급, 수당, 상여금, 각종수당 및 임금인상 소급분 등의 총액(퇴직금, 복리후생비 제외)

- 현물급여의 경우는 그 평가액도 포함.

파. 정액급여

- 매월 정례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 매월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정액급여에 포함.
- 현물급여의 경우 그 평가액도 포함.

하. 특별급여

- 월중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기말상여금, 임금인상소급분, 기타수당, 연차수당.

거. 증감내용

- 항목별로 증감부호 및 증감사유를 기입.

※ 기입예 :

	증감부호	증 감 사 유
① 입 직 자	—	—
② 이 직 자	1	20명 감축
③ 조업일수	3	4일 단축
④ 정액·급여	4	20명분
⑤ 특별급여	—	—

※ <주의사항>

1개 사업체에서 조사표를 2종이상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용·급여 사항은 사업체의 주산업이 속하는 조사표에만 기입하여야 하고, 조사표에 모두 기입하거나, 분할기입하여서는 아니됨.

Ⅲ. 조사표 검토 및 제출

1. 조사착오 유형

< 유형 1 > 대상업체 착오포함 및 조사지연

- 비제조업체(예:도·소매업)가 제조업체 등에 하청을 주어 생산케 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를 대상업체로 선정
- 대규모업체신설의 경우등은 경제신문등에도 보도되고, 직·간접으로 파악이 가능한데도, 이의 보고를 지연함으로써 조사착수가 매우 늦어지는 경우

< 유형 2 > 품목개념 및 포괄범위 착오

- 면편직물을 혼방합성 섬유직물로 조사
- 당면을 인스턴트면류(라면류)로 조사
- 소형모터를 전동기로 조사

< 유형 3 > 품목확인 소홀

- 농업용 트랙터 및 이앙기를 제조하고 있음에도 이를 누락
-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이를 누락

< 유형 4 > 동일기업내 공장간 중복조사

- 본사와 함께있는 공장에서도 조사하고 지방에 있는 공장에서도 조사
- 동일기업내 타공장에서 인수한 량을 생산량에 포함

< 유형 5 > 위·수탁관계에서의 중복·누락

- 원재료를 제공하여 위탁하였음에도 이를 누락
- 하청공장의 자체생산 납품량(원재료 제공않음)을 납품받은 업체에서 포함 조사

〈 유형 6 〉 출하포착시점의 혼동

- 염색·가공을 위해 단순 출고된 량을 출하로 조사

〈 유형 7 〉 내수·수출의 착오

- 타사에 납품하여 수출되는 경우에, 타사수출제품의 원재료나 부품으로 투입되는 경우를 수출로 조사
- 내수·수출물량을 바꾸어 기재

〈 유형 8 〉 재투입물량의 혼동

- 연속된 일관공정이 아니고 제조 완료된 반제품을 일관공정으로 취급하여 재투입물량에서 제외
- 시판으로 하여야할 물량을 재투입으로 조사

〈 유형 9 〉 단위환산 착오

- 상자로 포장된 제품수량을 지정단위로 환산시 환산수치를 잘못 적용하여 과대조사
- 수성페인트 kl 를 l 로 조사
- 벽지 m^2 를 필로 조사
- 착오로 끝숫자를 더붙여 기재

〈 유형 10 〉 품목번호 오기

- 신규품목 조사시 품목번호를 잘못 기재
- 품목번호의 끝자리와 바로 앞자리를 바꿔쓰는 경우

〈 유형 11 〉 잠정·확정치의 현격한 차이

- 조사자 임의로 전월실적과 비교하여 기입하는 경우

2. 중점 검토사항

- 사업체 고유번호는 정확히 기입하였는가?

- 품목부호는 정확히 기입하였는가?
- 단위는 정확히 기입하였으며, 조사단위와 물량(금액)을 비교할 때 이상한 점은 없는가?
- 매월 조사되던 품목이 누락된 것은 없는가?
- 「전월말재고(조사수첩활용)+생산+구입-재투입-출하」로 계산한 것과 금월말 재고가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과부족조정」사유가 생겼는가?
- 원재료 사용량과 생산량을 비교할때 이상한 점은 없는가?
- 조업일수나 종업원수, 연근무시간수등이 전월에 비해 증가하였는데도 생산이 감소한 경우(또는 그반대) 등 관련사항간에 의문은 없는가?
- 전월에 비하여 생산·출하·재고가 크게 증감이 있는 경우,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 잠정치 자료인 경우 그 근거는 무엇이며 신뢰성이 있는가?

3. 수시 확인 점검사항

- 대상업체에서 새로운 조사지정품목이나 유사품목이 생산되지 않는가?
- 현재 조사중인 품목이 지침서의 포괄범위나 개념에 부합되는가?
- 조사자료는 정확하게 작성되고 있는가? 사업체 담당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었는가?

4. 조사표 제출

- 조사표는 지정된 기일내에 제출하되, 제출기한에 임박하여 제출시는

늦게 도착되는 사례가 없도록하여야 함.

- 해당사업체의 지정품목은 계절에 따라 생산이 없거나 주문이 없어서 생산이 없을지라도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를 매월 조사표에 기입보고 (휴업의 경우도 동일)
- 유고사업체라도 조사중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

IV. 광공업동태 조사표 내검요령

1. 일반사항란

가. 조사표 상단의 □□월분의 기입과, 잠정자료, 확정자료중 어느 하나에 ○표시 되어 있는가?

→ 확인하여 기입 또는 정정.

나. 사업체 고유번호 기입누락은 없으며, 전월에 없었던 사업체 고유번호는 없는가?

→ 확인하여 기입 또는 정정.

다. 행정구역 부호기입 누락은 없으며, 정확히 기입되었는가?

→ 확인하여 기입 또는 정정.

라. 유고사항이 1. 전입인데 행정구역번호가 전월과 달라 졌는가?

(서울시는 4단위(시, 도, 구시군), 기타 시·도는 2단위(시·도) 부호가 바뀌어야 전입에 해당됨)

→ 확인하여 정정.

2. 제품생산·출하·재고

가. 사업체별 품목부호는 전월과 같은가? 만약 추가된 품목이 있다면 품목 유고사항란에 부호 1(신규생산), 4(조사누락)중 어느 한 부호가 기입되었는가?

→ 확인하여 누락, 착오시는 정정.

나. 물량 통계를 위해 세분, 조사되는 품목(품목부호 7단위중 6번째 단위가 ○이 아닌 품목)은 세분 품목으로 조사되었는가?

→ 착오시 질의

다. 전월대비 생산·내수, 수출, 동일기업내 타공장 출하실적이 대규모 업체 30%이상, 중소기업 업체 50%이상인 경우 확인

→ 증감부호, 증감사유등을 참고하되, 의심나면 질의.

라. 생산이 전월, 금월 모두 ○이면서 「구입」란에 실적이 있는 품목이 있는가?

→ 확인하여 자체 생산은 없고 구입만 있는 품목인 경우 삭제.

마. 전월대비 「구입」란 실적이 ±50% 이상인 경우 확인

→ 금월 또는 전월분 착오여부등을 확인.

바. 전월에 재투입이 있었던 품목이 금월에 없어지는 경우 확인

→ 조사착오 여부, 특수사정등 확인.

사. 전월대비 재투입 실적이 ±30%이상인데 생산실적이 ±5% 이내면 확인

→ 조사착오여부 검토

아. 전월대비 월말재고 실적이 대규모업체 30%, 중소기업업체 50% 이상 증가한 경우 확인.

→ 조사착오여부 검토

자. 조사표 I에서는 다음 등식이 성립하는가?

「전월말재고+생산+구입계-재투입-출하계±과부족조정=금월말재고」

→ 착오기입 여부검점(특히 생산, 출하, 재고)

차. 조사표 II에서는 다음 산식에 의한 수치와 금월말 재고를 비교하여 ±30% 이상인 경우 확인

「전월말재고+생산+구입-재투입-출하」와 금월말재고 비교

→ 착오기입여부 검토(특히 생산, 출하, 재고)

카. 조사표 Ⅲ에서는 다음 등식이 성립하는가?

「전월말 수주잔량+당월수주량-당월진척량 = 당월수주잔량」

→ 착오기입 여부검토

3. 원재료 및 연료사용·재고

가. 전월대비 전력사용량이 $\pm 20\%$ 이상인 경우 품목별 생산실적이 모두 반대인 경우 확인

→ 생산실적 착오조사 검토

나. 국산, 수입 원재료별로 전월말 재고가 금월말 재고간에 $\pm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확인

→ 기입착오 확인

4. 고용·급여 및 조업상황

가. 월말 종업원수란의 「상시종업원 계」와 그 아래에 있는 「금월말 상시종업원」(보조자료)이 서로 일치하는가?

→ 틀린경우 확인

나. 상시종업원 생산직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

○ 「월말 종업원수×월중 조업일수」와 「월중 종업원 연근무 인원수」와의 차이가 $\pm 10\%$ 이상인 경우

○ 「월중종업원 연근무인원수×월중 1일평균조업시간」과 「월중종업원 연근무시간수」와의 차이가 $\pm 20\%$ 이상인 경우

→ 의심이 있을 경우 확인

다. 월중 종업원 연근무 인원수나 연근무 시간수가 증가하였는데도 제품 사항란의 생산 품목이 모두 감소한 경우는 없는가?

→ 생산실적, 종업원 사항중 착오 확인.

라. 다음 등식은 성립하는가?

「전월말 상시종업원+월중 상시종업원 입직자-월중 상시종업원 이직
자=금월말 상시종업원」

→ 틀릴 경우 전월말 상시종업원 대조 및 관련사항을 확인.

마. 전월대비 월말 종업원수가 증가(또는 감소)하였는데도 급여총액이
감소(또는 증가)한 경우 확인

→ 특별급여 영향때문인지, 다른 특수사정이 있는지를 확인.

V. 사례연구 및 중점 강조사항

사례 1

〈문〉 • A업체는 각종 장난감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지정품목인 플라스틱스폰지, 소형모터, 동력식장난감을 생산한다. A업체는 어떤 조사표를 사용해야 하는가?

〈답〉 • 2가지 종류의 조사표 사용

즉, 플라스틱스폰지 (5600600), 인형 및 장난감 (9040100)

..... 조사표 I

소형모터 (8342400) 조사표 II

사례 2

〈문〉 • B업체는 스위치 (8391200)를 생산한다. 다른 지정품목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스위치 생산은 지정단위 (천개)미만인 경우가 많다. 매월별 생산이 다음과 같다고 할때 매월 조사표의 생산수량은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

월	1	2	3	4	5	6	7	8
생산량 (개)	680	400	420	380	600	480	400	450
누계 (개)	680	1,080	1,500	1,880	2,480	2,960	3,360	3,810

〈답〉 • 통상 지정단위 이상으로 생산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반올림규정에 따라 보고하면 됨.

• 지정단위 미만으로 생산하는 달이 연간 6월이상일 경우는 누계생산량 (또는 액)에 따라 반올림규정을 적용함.

- 위 설문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보고

월	1	2	3	4	5	6	7	8
생산량 (천개)	1	0	1	0	1	0	0	1
※	월중생산 량반올림	—	누계량 반올림	—	월중생산 량반올림	—	—	누계량 반올림

사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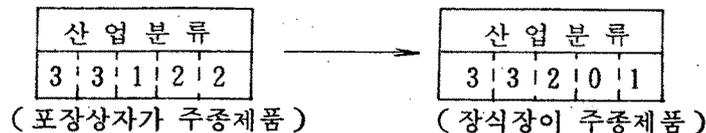
〈문〉 • C업체는 지정품목인 목재포장상자(3120100)를 주로하고 부수적으로 장식장(3200300)을 생산하였으나 금월부터는 장식장 생산에 주력하게 되어 목재포장상자는 부대품목으로 바뀌게 되었다. 금월 조사표의 산업분류부호는 어떻게 기입할 것인가?

〈답〉 • 산업분류부호는 같은 조사표를 사용하는 품목만을 조사할 경우에는 연간출하액이 많은 품목의 산업분류부호, 조사표를 달리하는 품목들을 조사할 경우에는 해당 조사표 기재대상품목을 기준으로 출하액이 큰 품목의 산업분류부호를 기입함.

- 새로운 지정품목을 생산하거나, 기존 지정품목의 비중이 달라짐으로써 주종제품이 바뀔 경우 새로이 산업분류부호를 정하여야 함 (다만 이 경우는 이러한 변동사항이 6월이상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어야 함).

이때 주종제품의 평가는 월간 출하액을 기준으로 함.

- 위 설문의 경우, 산업분류부호는 다음과 같이 바뀜



사례 4

〈문〉 D업체는 프레스기 생산업체이나 자금사정으로 휴업하였으며, 조사 당월생산, 출하실적은 없고 재고도 전무하다. 다만 종업원에 대한 급여는 당월분을 지급하였다.

조사표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답〉 • 휴업중인 사업체라도 조사중지시기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

• 위 설문의 경우 조사표 기입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음

— 일반사항란의 「유고사항」 :

유 고 사 항	
1. 전	입
② 휴	업
3. 사업체	휴수
4. 사업체	분리

— 「제품생산·출하·재고」

일련 번호	품목번호	품 목 명	유고 사항	단위	생 산	...	월말재고
01	8231100	프레스기	2	MT	0	...	0

— 「원재료 및 연료사용 재고」

사용원재료가 없더라도 원재료부호, 명, 유고사항, 단위를 기입하고, 국산, 수입원재료 구분은 월말재고량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월중사용량은 “0”, 월말재고량은 실제보유재고량을 기입함(다만 연료에 대하여는 사업체의 총사용량을 기입하

므로 공장유지, 사무실근무용등에 사용한 실적이 있으면
기입)

－ 「고용, 급여 및 조업사항」

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월말종업원수, 전월말상시종업원, 월중
상시종업원 입직자, 이직자, 금월말 상시종업원, 급여총액, 정
액급여, 특별급여 항목은 기입, 다만 생산직종업원이 전혀
근무하지 않은 경우, 연근무 인원수, 시간수, 조업일수, 월중
1일평균 조업시간란은 “0”으로 기입

사례 5

〈문〉 • E업체는 이번에 신규사업체 확인대상업체로 통보되어 왔다.
그런데 확인한 바에 의하면 E업체는 자체 제조시설은 없고,
소아용 의복류를 몇군데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생산케 하여
판매하는데, 다만 납품을 받을때, E업체의 상표를 부착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또한 수탁사업체에서는 단가계약으
로 자기계산하에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한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대상업체가 되는지?

〈답〉 • 대상사업체를 결정하기에 앞서 우선 그 사업체의 산업분류가
무엇인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함. 위 사례의 경우, 업체는
도·소매업에 해당되어 애초부터 조사대상이 아님. 따라서 E
업체의 위탁물량은 수탁업체 개개에서 조사되어야 함.

(수탁업체가 조사대상이 아니라면 물론 조사할 필요가 없지
만)

• 일반적으로 제조업체가 아닌 업체로부터(도·소매, 농림, 수산,

전기, 개스, 수도, 금융, 건설, 운수, 창고, 통신, 서서비스산업등) 위탁을 받았을 경우는 위탁한 업체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받은 제조업체에서 조사해야 함. (원재료의 대부분을 제공받았든, 단가 또는 총액계약에 의하든간에 무조건)

- 그러나 산업분류가 제조업인 사업체들간에 이루어진 거래는 원재료의 대부분이 제공되는가, 아닌가에 따라 조사할 대상이 달라지게 됨.
- 따라서 위 사례는 만약 조사하게 된다면 원초적으로 조사대상이 아닌 산업을 조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사례 6

<문> • F사업체는 「유성페인트(5210310)」생산업체로서, 다른 지역에 있는 동일기업내 G공장에서부터 「수성페인트(5210320)」를 이송받아 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구입」란에 해당되는가?

<답> • 「구입」에 해당되는 경우는 당해사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지정품목이고, 이와 포괄범위가 같은 제품을 외부로부터 구입(또는 수입)하거나 동일기업내 타공장에서부터 이송받는 경우임.

- 이때 포괄범위가 같은 제품이라함은 지수품목부호(품목부호중 앞의 5자리까지)가 일치하면 동일품목으로 간주함.
- 따라서 위 설문의 경우, 「유성페인트」와 「수성페인트」는 제품의 성질상은 다르나 「페인트(5210300)」에 함께 포괄되므로 동일품목으로 간주됨.

- F사업체에서 「수성페인트」생산이 전혀 없다고 할 때에 조

사표 기입예 :

품목부호	품 목 명	생 산	구 입	
			외부구입 (수입포함)	동일기업내 타공장
5'2'1'0'3'1'0	유성페인트	325	0	0
5'2'1'0'3'2'0	수성페인트	0	0	250

- 한편 G공장은 (전량 F공장으로 보낸다고 가정)

품목부호	품 목 명	생 산	출 하		
			국내시판	수 출	동일기업내타공장
5'2'1'0'3'2'0	수성페인트	250	0	0	250

사례 7

<문> • H제약회사에서는 각 의약품 도매업체에 출하하였던 의약품들이 유효기간경과로 상당수 반품되어 왔으므로, 이를 폐기처리코자 한다. 「구입」란과 「재고」에 기입하는 방법은?

<답> • 반품된 제품은 「구입」란에 계상하여야 하나, 다음 3가지 경우에는 「구입」으로 보거나 「재고」란에 계상할 수 없음.

- 반품된 제품중 폐기되는 제품
- 반품된 제품중 대부분 해체되어 새로이 생산공정에 투입될 제품 (이때는 새로이 생산, 출하, 재고를 파악하여야 함)
- 단순처리, 가공으로 반품처에 재출고될 제품

사례 8

〈문〉 • I사업체 제조1부에서는 회사기획실로부터 연승 5,000 kg의 제조명령서를 받았다. 따라서 PE사(株)를 투입하여 연승 5,000 kg을 생산하였는 바, 이중 3,000 kg에 대하여는 추가제조지령서에 의하여 어망생산으로 투입하여 2,900 kg의 어망을 생산하였다. 생산·재투입간의 관계는?

〈답〉 •

제 품 명	생 산 량	재 투 입 량	출 하 량	재 고 량
연 승	5,000	3,000	0	2,000
어 망	2,900	0	0	2,900

- 일반적으로 생산량 관계조사는 경리장부상에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음. 왜냐하면 경리장부는 판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회계처리 체계이기 때문임. 따라서 정확한 생산량조사는 생산담당부서에서 파악해야 함.
- 재투입관련문제는 쉽게 파악되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 일관공정에 걸쳐있는 재공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많음. 일반적으로 「재투입(자가소비)」이란 동일공장 내에서 1차적으로 생산완료된 중간제품을 다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다시 원재료로서 투입하는 것을 말함. 여기서 생산완료된 중간제품이라 하면, 일단 현상태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태에 있거나(창고에 있건, 현장에 있건간에) 다른 공장 또는 다음 공정으로 이송되기 위해 대기상태에 있는 반제품을 말함.
- 따라서 현재 어떤 특정제품을 만들기 위해 공정중에 걸쳐있는 원재료는 설혹 중간제품 생산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중간상태를 일단 생산으로 잡고 다시 전량 재투입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는 없음.(생산완료된 제품이 아니고 재공품임) 이러한 경우는 재투입관계는 무시되어야 함.

- 그러나, 일단 중간제품으로 생산이 완료된 후에 추가제조명령에 따라 다른 제품생산을 위해 다시 소비되거나, 다음 제조를 위해 시간적·장소적으로 일단 분리되거나 출하를 위해 대기중인 반제품 상태의 것은 일단 재공품이 아닌 것으로 보아 차후 다시 소비될 경우는 재투입관계가 조사되어야 함. 여하튼 재투입문제는 생산담당부서에서(회계담당부문의 처리와는 별도로) 여하히 파악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질 문제임.

사례 9

<문> • J 공장 생산부에서는 본사로부터 아연도강판 10,000 M/T의 생산명령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스투브 보통강을 기초소재로 투입하여 생산을 완료하였다. 이 공장에서는 일관공정으로 작업을 진행하나, 아연도강판이 되기까지는 대강, 냉연박판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한다. 공장에서는 대강이나, 냉연박판의 생산을 굳이 파악할 필요가 없으며, 제조명령서상의 제품 제조수량만을 확인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답> • 이 경우에는 대강, 냉연박판이 지수품목이라 하더라도, 굳이 대강, 냉연박판 생산량을 추정한 후, 다시 아연도강판을 만들기 위해 재투입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없음. 왜냐하면 비록 대강이나 냉연박판 상태에 있긴하나 그것은 일관공정상의 경유부분에 불과하여 하나의 재공품이기 때문임.

따라서 「아연도강판」만 조사하면 됨.

사례10

〈문〉 • J공장 생산부에서는 본사로부터 각각 별개의 제조지령서에 의하여 냉연박판 3,000 M/T, 아연도강판 4,000 M/T의 생산 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3,000 M/T은 냉연박판 공정까지만 작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아연도강판 4,000 M/T은 일관공정으로 진행하였다. 생산, 재투입의 관계는?

〈답〉 •

제 품 명	생 산 량	재 투 입 량	출 하 량	재 고 량
냉 연 박 판	3,000	0	1,000	2,000
아 연 도 강 판	4,000	0	2,000	2,000

※ 다만, 생산부에서 일관공정이라도 일단 중간제품으로 생산량을 잡았다가 다시 자가소비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사례11

〈문〉 • K업체는 알미늄샷시를 생산하면서 건설업도 겸업하고 있다. 자체에서 생산한 샷시바를 건축물샷시에 전량 투입하는데 재투입으로 볼 것인지?

〈답〉 • 제품을 자기사용〈自己使用: 사무용, 업무용, 시험용, 전시용등〉에 공하는 경우는 재투입이 아니라 출하로 포함해야 함. 더우기 산업분류 자체가 서로 다른 경우(제조업과 건설업, 제조업과 무역업등)에는 더욱 출하로 간주해야 함.

사례12

〈문〉 • L업체는 코오크스(5400400)를 자체 생산하여 이를 철강제품생산을 위해 연료로 사용한다고 한다. 자기사용으로 보아 「국내시판」에 포함할 것인지?

〈답〉 • 코오크스를 생산하여 다른 제품생산을 위해 연료등으로 사용한 양은 출하가 아니고 재투입으로 처리함. (과거지침서의 처리방법을 변경)

•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제품생산을 위해 소비하는 경우는 출하가 아니고 재투입으로 하며 다음 경우가 이에 해당

— 제품원재료(원료, 부품)로서 투입

— 연료로 투입

— 촉매제, 환원제등 화학처리를 위해 투입

— 다른 제품의 성질을 변형, 보완, 가공을 위하여 투입

※ 다만, 단순포장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는 자기사용으로 보아 동일기업내타공장출하 및 기타로 처리

사례13

〈문〉 • M업체는 반제품 및 부품(지수품목으로 채택된) 생산업체로서 대기업인 “갑”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갑”업체는 주로 수출오더에 의해 M업체에 하청을 주고 있으므로, M업체는 이를 전량수출로 계상하고 있다. 옳바른 것인지?

〈답〉 • 원칙은 다음 두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야 함.

첫째, “갑”업체가 수출하는 제품의 부품으로 투입되는 경우

는 「시판」으로 조사해야 하고
 둘째, “갑”업체에서 부품 자체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
 로 계상하여야 함.

사례14

〈문〉 • 삼척 N공장에서는 회주물을 생산하여 포항의 하치장으로 출하하였다. 포항의 하치장에서는 이 제품을 서울의 본사 지시에 의해 제품을 수요처에 인도하고 있다. 이때 N공장에서의 조서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 • N공장에서는 「국내시판」으로 처리해야 함. 왜냐하면 제품 관리가 N공장의 관할을 벗어났기 때문임. 물론 포항하치장이 N공장의 관할하에 있다면 출하가 되지 않음.
 • 「동일기업내 타공장 출하 및 기타」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는 포항하치장이 회주물을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

사례15

〈문〉 • O공장에서는 집적회로(8340700)를 생산하여 칼라 및 흑백 T.V.를 생산하는 동일기업내 P공장으로 전량 이송하고 있으며, P공장에서는 집적회로를 자체생산하지는 않고, O공장에서 보내온 전량을 T.V.생산에 투입한다고 한다. O공장 및 P공장의 처리는?

〈답〉 • O공장에서는 동일기업내 타공장에 원재료(원료, 부품)로 제공하였으므로 「동일기업내 타공장 출하 및 기타」에 계상함.

또한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 이송되어 연료, 촉매제등으로 전량 투입되는 경우도 같음.

- P공장에서는 집적회로의 생산이 없음으로 「생산」 「구입」란등에는 기재할 수 없고, 다만 주요원재료인 경우, 「원재료 사용, 재고」란에 기입하여야 함.

사례16

<문> • Q공장에서는 R사업체 (동일기업내 사업체가 아님)로부터의 요청에 의하여 중유 2,000 kℓ를 빌려주었다. R업체에서는 다음 달에 이를 전량 변제하기로 하였다. 양 사업체의 조사표 처리는?

<답> • 외상판매가 아닌 융통관계는 현물로 받을 것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빌려준 업체에서는 조사표상에 나타낼 필요가 없고 「재고」로 남아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 따라서 당월에 6,000 kℓ를 시판하고, 2,000 kℓ를 빌려주었다고 가정할 경우

외 부 판 매		동일기업내 타공장 및 기타	월 말 재 고
국 내 시 판	수 출		
6,000	0	0	5,000

로 되어 월말재고량에는 빌려준량이 포함되어 있는 결과로 됨.

- 만약 다음달에 가서 현물변제대신 판매 (현금, 외상) 형태로 약정이 바뀌었다면 그때에 출하로 계상하고, 재고에서 제외시

키면 됨.

- 한편 R사업체에서는 빌려온 제품 2,000 kl를 포함하여 8,000 kl를 시판하고 재고가 500 kl 남았다고 할 경우

구 입		출 하			월말재고
외부(수입포함)	동일기업내타공장	외 부 판 매		동일기업내 타 공장 및 기타	
		국내시판	수 출		
2,000	0	8,000	0	0	500

- R업체에서 다음달에 2,000 kl를 Q공장에 전량 변제하였다고 하면 R업체에서의 처리방법은 (구입없고 시판 6,000 kl, 재고 3,000 kl라 가정)

구 입		출 하			월말재고
외부(수입포함)	동일기업내타공장	외 부 판 매		동일기업내 타 공장 및 기타	
		국내시판	수 출		
0	0	6,000	0	2,000	3,000

- 만약 현물변제하지 않고 약정을 바꾸어 현금으로 갚았다면 R업체에서는 조사표에 나타낼 필요가 없음.

사례17

- <문> • S업체에서는 「인형 및 장난감」을 생산하고 있는바, 생산액, 출하액은 공장인도가격으로 평가하여 조사표에 기재하여 주나, 재고액은 후입선출법으로 처리하는 관계로 생산, 출하, 재고액 간에 합수상 불일치가 생긴다고 한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답> •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전월말재고액+당월생산액+구입액-재투입액-출하액=월말재고액」의 함수관계가 성립할 것이지만, 회계처리방법이나, 금액평가방법이 다를 경우 불일치가 생기게 됨. 이때는 실제재고액(현실태기준이 원칙이나 이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 장부상 가액)을 먼저 기입한후, 증감액만큼을 ⊕, ⊖기호를 붙여 「과부족조정」(이 란이 없으면 기입불필요)란에 기입하면 됨.

예컨데 실제재고액은 15백만원이나 위 산식에 의해 계산된 재고액은 12백만원이라면

과 부 족 조 정							월 말 재 고						
백 만	십 만	만	천	백	십	일	백 만	십 만	만	천	백	십	일
⊕						3						1	5

와 같이 기입(과부족조정란이 없는 경우는 실제재고만 기입)

사례18

- <문> • T업체는 면직물을 생산하여 부분 자수과정을 거친후 동일기업내 U업체에 출하하고 U업체는 이를 완전 자수직물로 만들고 있다. 양 회사가 모두 대상사업체일때의 처리관계는?

- <답> • 자수직물(2140500)은 자수과정이 모두 완료된 것만 조사한다. 따라서 T업체는 부분자수과정만을 거쳤으므로 「면직물생산→재투입→자수직물생산→동일기업내 타공장출하」로 조사해서는 안되고 「면직물생산→동일기업내 타공장 출하」로 조사하여야 함.

- 한편 U업체의 경우, 면직물을 자체생산하면서 완전자수직물을 만들 경우에는 T업체에서 받은 일부자수면직물은 「동일기업내 타공장 구입」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이를 재투입하여 자수직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조사되어야 함. 다만, 자체내에서 면직물 생산이 없는 경우는 T업체에서 받은 면직물은 「구입」이 되지 않고 「원재료사항」에 기입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조사표로 작성하면 다음예와 같음.

① T업체의 경우

품 목 번 호	품 목 명	생 산	출 하		
			국내시판	수 출	동일기업내 타공장
2120110	순면직물	150	0	0	150

② U업체의 경우

i) 면직물 자체생산이 있는 경우

품목부호	품목명	생 산	구 입		동일공장내 재투입	출 하	
			외부구입	동일기업내 타 공장		국내시판	월말재고
2120110	순면직물	400	0	150	450	100	0
2140500	자수직물	450	0	0	0	400	50

ii) 면직물 자체생산이 없는 경우

품목부호	품목명	생 산	구 입		동일공장내 재투입	출 하	
			외부구입	동일기업내 타 공장		국내시판	월말재고
2140500	자수직물	450	0	0	0	400	50

사례19

〈문〉 • 면직물, 방모직물등 일반 직물과 염색가공직물과의 관계는?

〈답〉 • 염색가공직물이 지수품목으로 선정된 이유는 염색가공업체(주로 외주가공)들의 동향을 지수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일반직물을 생산하는 사업체에서 자체 염색시설을 갖추고 염색 과정까지를 거치는 경우에는 해당직물로 조사하여야 하고, 다만 외주가공만을 해주는 염색업체나 동일기업내에 속하면서 염색만을 산업활동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에 한하여 염색가공직물로 조사하여야 함.

- 결국 광공업 동태조사 결과로 나타나는 염색가공직물의 총량은 우리나라 전체 염색가공직물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외주가공이나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부터 염색을 위탁받아 처리해준 량을 의미하게 되는 것임.
- 예를들어 V사업체에서 면직물을 생산하여 자체염색을 하는 경우와 동일기업내 타공장인 W사업체(또는 타사업체)에 염색가공을 위탁한다고 할 경우의 조사표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V사업체의 경우

i) 면직물 생산과 함께 자체염색하는 경우

품목부호	품 목 명	생 산	구 입		재투입	출 하		
			외 부	동일기업내		국내시판	수출	동일기업내타공장
2120120	혼방면직물	120	0	0	0	50	30	0

ii) W사업체에 염색가공을 의뢰하는 경우 : (i)조사표와 같음.

② W사업체(염색가공만을 하는 업체)의 경우

품목부호	품목명	생 산	구 입			출 하		
			외 부	동일기업내	재 투입	국내시판 수 출	동일기업내타공장	
2130100	염색가공직물	120	0	0	0	120	0	0

※ 이 경우 「동일기업내 타공장 및 기타 출하」가 되지 않는 이유는 V사업체에서는 염색가공 직물로 조사되지 않기 때문임.

사례20

〈문〉 모기업체인 X사업체는 각각 독립된 사업체 고유번호를 가진 Y, Z사업체를 계열사업체로 거느리고 있다. 그러나 Y, Z사업체는 모기업체인 X사업체로부터 원재료 일체를 공급받아 X사업체와 같은 지정품목을 생산한다. Y, Z사업체에서의 조사표 처리는?

〈답〉

- 「동일기업내 타공장출하」 또는 「동일기업내 타공장구입」은 각 공장들이 자체적으로 원재료를 조달하여 지정품목을 생산하고 이를 각 공장간에 출하 또는 구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재료를 직접 조달하지 않고 타공장에서로부터 제공받아 어떤 품목을 생산하고, 이를 전량 원재료를 제공한 공장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일종의 위·수탁 관계로 파악되어야 함. 따라서 Y, Z사업체는 조사대상이 되지 않음.
- 그러나 원재료를 전량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출하」를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즉 원재료 제공공장과 별개로 출하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수탁관계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각각 대상사업체로 처리되어야 함. 따라서 이 경우 Y, Z사업체는 X사업체로부터 원재료를 제공받았더라도 이를 구입가격으로 환산하여 원재료 사항란에 기재하고, 제품생산, 출하, 재고도 조사되어야 함.

사례 21

<문> • 판지를 생산하여 상자까지 만드는 사업체에서 판지 120 M/T를 생산하여, 판지자체로 30%를 출하하고, 나머지 생산된 판지중 50%를 상자로 만들어 출하하였다.

<답> 조사표를 어떻게 작성하나?

부품부호	품 목 명	생 산	재 투 입	출 하	재 고
4110910	판 지	120	0	80	40

※ 본 품목에서 상자를 만든 판지는 재투입으로 보지 않는다.

사례 22

<문> • A사업체에서는 가로 0.7 m, 세로 1.2 m의 직물포대를 10,000 개 생산하였다.

직물포대의 생산량은 얼마인가?

<답> • 포대를 펼친상태에서 조사하므로 $0.7\text{ m} \times 1.2\text{ m} \times 2 = 1.68\text{ m}^2$ 가 된다. 그러나 단위가 17천 m^2 이므로 $16,800 \div 1,000 = 16,8\text{ 천}\text{m}^2$ 따라서 생산량은 17천 m^2 이다.

VI. 조사대상사업체 관리요령

(광공업동태, 생산능력, 기계수주)

1. 개요

가. 관리목적

- 신규 및 휴·폐업등의 변동상황을 신속 정확히 파악하여 대상업체의 누락·중복을 방지하고, 표본사업체를 적기에 보완
- 사업체 변동에 따른 조사표 누락·중복 방지

나. 대상사업체

- 광공업동태, 생산능력 및 기계수주 사업체

다. 대상기간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변동사항을 대상

라. 관리체계

- 조사담당자→지방사무소
- 각 시·도→지방사무소
- 지방사무소→중앙(산업통계과)
- 중앙(산업통계과) —┬─ 지방사무소
└─ 각 시·도

마. 관리단위

- 기업체 단위가 아닌 개개의 사업체(공장, 작업장, 광산, 사업소등)
- 사업체의 사정으로 기업본사에서 조사표가 작성되는 경우에도 개개 사업체별로 관리

바. 관리사항

- 조사지정 사업체의 변동사항
 - 휴업, 폐업, 진출, 합병
 -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

- 신규 및 전입·전출 사업체에 관한 사항
 - 신규사업체
 - 전입·전출 사업체
- 조사표 변동사항
 - 조사관할변경에 따른 변동
 - 조사중지 지시에 따른 변동

사. 관리방법

- 지방사무소 : CRT입력 및 관리현황보고서 및 총괄표 작성
- 시도 : 관리현황보고서 및 총괄표 작성 → 지방통계사무소에 제출
- 중앙 (산업통계과) : 관리현황보고서 및 총괄표에 의한 후속조치
- 지방사무소간 전산망의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관리현황보고서 및 총괄표는 제출하지 않음.

아. 보고서식

- 사업체 및 조사표 관리현황 (총괄)
- 사업체 관리현황 보고서

자. 보고서 제출

- 매월 10일까지 중앙 (산업통계과)에 도착

2. 사업체 관리현황 보고서 기입요령

가. 일반적인 주의사항

- (1) 사업체 관리현황 보고서에는 변동된 내용만 기재
(단, 사업체 변동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체 고유번호 및 사업체 명을 반드시 기입)
- (2)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문자는 한글 (필요한 경우 영문 병기)로

기재

(3) 기입한 사항의 정정시는 횡선을 긋고 바로 그 위에 다시 기재
나. 관리현황 보고서 기재요령

(1) 사업체 고유번호

- 지정된 사업체 고유번호(7단위)를 기재하되 변경지시가 없는
한 바꿀 수 없음.
- 신규로 조사된 사업체 고유번호는 해당 지방사무소에서 부여한 번
호를 기재

(2) 공장(사업체)명

- 공장(사업체)명은 사업체가 영업상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
을 기입한다.

※ 기입예 :

××공업(주)울산공장, (주)××산업 창원공장

- 사업체 명부와 실제공장(사업체)명이 다른 때에는 관리현황 보
고서에 기재, 제출한다.

(3) 소재지 및 행정구역 분류부호

- 소재지는 현재 공장(사업체)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를 기재

※ 기입예 :

① 여러개의 법정동이 모여서 하나의 행정동을 구성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2가동 경운동 90 번지는 종로
구 경운동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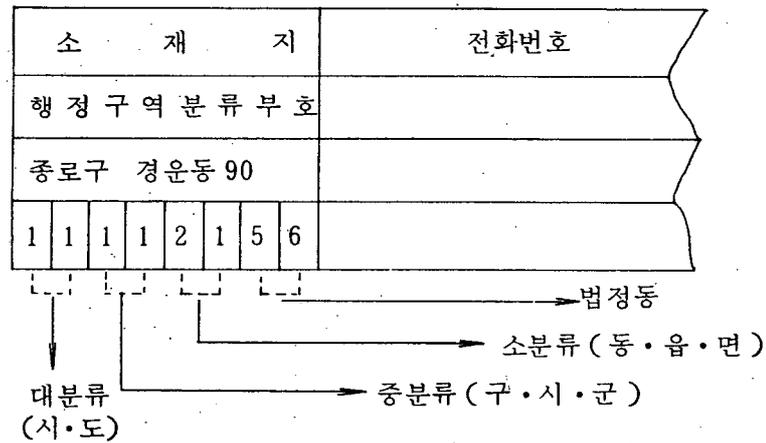
② 하나의 법정동이 여러개의 행정동으로 분리되는 경우

—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935 의 11 번지는 안양시 호계 2동
935-11 로

③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하는 경우는 법정동 명칭을 기재한다.

- 행정구역 분류부호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송부한 분류부호 책자를 활용하여 지정된 구역분류부호를 기입

※ 기입예



(4) 전화번호

- 조사표가 실지로 작성되고 있는 과·계의 전화번호를 기입

(5) 산업분류

- 지정품목의 연간 출하액을 기준하여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이 해당하는 산업 세세분류(5단위)를 기입
- 동일 사업체에서 조사표를 달리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일 조사표를 사용하는 지정품목들의 연간 출하액을 기준하여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의 산업 세세분류를 기입

(6) 사업체규모

- 사업체규모는 사업체별로 기 지정되었으므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1. 대규모사업체 2. 중소기업사업체)

- 신규사업체인 경우는 사업체규모 기준에 따라 분류 기입

(7) 작성구분

- 당해 공장(사업체)에서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고 본사(사무실등), 타공장등에서 조사표가 작성되어 제출되는 경우는 해당 부호를 기입

※ 기입예 :

- 당해공장(사업체) 1
- 타공장(공장이 2개이상인 경우)에서 조사표가 작성되는 경우 2
- 분리된 본사에서 조사표가 작성되는 경우 3

(8) 조사종류

- 사업체에서 제출되는 조사종류에 따라 해당된 조사표란에 ○표를 기입
- 단일공장(사업체)에서 동태 지정품목이 달라 I, II, III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해당란에 ○표를 기입

(9) 조사지정품목

- 각시·도와 지방통계 사무소에서 조사대상품목의 포괄범위와 일치하고 사업체 선정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규조사 대상으로 색출한 공장(사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동태조사, 생산능력의 지정품목명과 품목번호를 기입
- 동일공장(사업체)에서 여러개의 조사지정품목이 생산되는 경우란을 달리 기입

※ 기입예 :

조 사 지 정 품 목											
광공업 동태품목 및 부호						생산능력품목 및 부호					
모						래					
0	9	0	0	3	0	0					
자						갈					
0	9	0	0	4	0	0					

(10) 유고내용

가) 전입·전출

- 행정구역(각시·도)의 경계를 달리하여 공장(사업체) 설비가 이동되는 경우, 이전한 장소의 관할 시·도에선 전입, 이전하기 전 장소의 관할 시·도는 전출
- 공장(사업체)의 이동이 각시·도의 경계를 이탈하지 않는 경우는 전입·전출이 아니고 소재지 변경(관할이 같은 경우) 또는 조사 관할변경에 해당
- 행정구역 관할변경으로 소속시·도가 변경되는 경우는 전출입으로 봄.

나) 신규

- 중앙(산업통계과)에서 표본추출결과 새로 조사 지시된 공장(사업체).
- 조사지정품목의 포괄범위에 해당하는 공장(사업체)이 새로 설립된 경우

(대) 휴업

- 생산시설과 건물을 유지한채로 1개월이상 전혀 조업을 하지 않는 경우
- 비지수 품목생산은 계속하더라도 지정품목을 3개월이상 전혀 생산하지 않고 앞으로도 생산계획이 불투명한 업체도 휴업으로 간주

(태) 폐업

- 사업체의 설비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체가 지금까지의 생산활동을 영구적으로 중지한 상태를 말한다.
- 생산설비를 완전 매각 처분하였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생산설비의 해체인 경우
- 광업 및 제조업체가 타산업(건설, 서어비스등)으로 업종 변경하는 경우

※ 6개월이상 휴업하고 있는 업체로서 계속하여 지정품목 생산계획이 없는 업체 및 완전 폐업 사업체는 비고란에 「조사중지요망」이라 기재

(마) 합병·합산

- 조사대상 공장(사업체)이 타 조사대상 공장(사업체)을 흡수하여 경영조직 및 장부조직이 완전하게 하나의 공장(사업체)으로 결합되는 경우

※ 공장(사업체) 감소

- 조사대상 공장(사업체)이 타 조사대상 공장(사업체)을 흡수하였으나 경영 및 장부조직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 (명칭변경만 발생)

(가) 비 고

- 조사대상 공장(사업체)의 유고내용이 발생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

※ 기입예:

- o 경기도에서 전입, 서울로 전출
- o 현지 색출로 신규, 중앙지시로 신규
- o 설비 완전폐기로 폐업등
- 사업체 변경, 동일 시·도내 주소이동, 전화번호 변경, 작성구분 변경, 조사종류 변경은 유고부호가 없으므로 변경내용만 기입
- 폐업·6개월이상 휴업등의 유고내용이 발생한 조사대상 공장(사업체)은 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고 적색으로 “조사중지요망”이라 기입한다.
- 기타 참고되는 사항을 기입한다.

3. 사업체 및 조사표 관리현황 총괄표 기입요령

가. 일반적인 주의사항

- (1) 기입한 사항을 정정할시는 횡선을 긋고 그 바로 위에 다시 기재
 - (2) 사업체 관리현황 보고서의 유고사항이 발생한 조사대상 사업체의 내용만을 집계하여 기재
- 단, 폐업과 조사중지는 중앙지시에 따라 기입여부를 결정한다.

나. 관리현황 총괄표 기입요령

(1) 전월말 사업체 및 조사표

- o 전월말 현재 제출된 조사표수와 조사대상 사업체수를 기입

(2) 증가한 사업체 및 조사표

○ 금월에 증가된 대상 사업체수와 조사표 매수를 각 항별로 기입

(가) 신규

- 중앙에서 새로이 지시된 신규조사 사업체와 그 사업체에서 작성되는 조사표 매수를 기입
- 지정품목을 생산하는 종업원 100명 이상의 신규사업체를 현지에서 색출하여 조사하는 경우 사업체수 및 조사표 매수를 기입

(나) 전입

- 타시·도에서 이전되어온 사업체수 및 조사표수를 기입

(다) 조사관할 변경

- 동일시·도내에서 지방통계사무소간 전입되는 사업체 및 조사표 매수를 기입

(3) 감소한 사업체 및 조사표

○ 금월에 감소된 대상 사업체수 및 조사표 매수를 각 항목별로 기입

(가) 조사중지

- 중앙에서 폐업 또는 휴업업체(전체휴업 또는 지정품목휴업)중 조사중지 지시한 사업체수 및 조사표수를 기입

(나) 합병·합산

- 조사대상 공장(사업체)이 합병·합산으로 인하여 사업체의 감소와 조사표 작성 매수에 변동이 있을시에 기입
단, 합병·합산이라도 경영조직 및 장부조직이 별도로 수행되는

경우는 명칭변경 또는 상호변경만 발생한다.

- 흡수합병의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이 관리현황 보고서에 기입되어야 한다.

(대) 조사관할 변경

- 동일 시·도내에서 지방통계사무소간에 전출되어가는 공장(사업체)과 조사표의 감소된 숫자를 기입

(라) 전 출

- 공장(사업체)의 생산설비를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공장(사업체)수 및 조사표 매수를 기입

(마) 비 고

- 사업체수와 조사표 매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 기타 참고되는 사항을 기입한다.

(바) 기 타

- 유고사업체로서 조사증지 요청한 사업체의 조사표는 중앙(산업통계과)의 지시가 있을때까지 휴업으로 표기 제출한다.

() 월분 사업체 및 조사표 관리현황

(광공업동태, 생산능력, 기계수주)

조사종류	구분	전월말사업체 및 조사표		증		가		감			소		금월말사업체 및 조사표	비고
		신	규	전	입	변	경	조사증지	합병·합산	조사관할	변	경		
사업체 수	광공업동태조사대상사업체													
	생산능력조사대상사업체													
	기계수주조사대상사업체													
	합계													
조사표 수	광공업동태조사표 I													
	광공업동태조사표 II													
	광공업동태조사표 III													
	소계													
합계	생산능력조사표													
	기계수주조사표													
	합계													

()월분 사업체 관리현황 보고서
 (광공업동태, 생산능력, 기계수주)

- 조사표 작성구분
- 1. 당해공장
 - 2. 주공장
 - 3. 본사 사무실

- 유고내용
- 1. 전입
 - 2. 휴업
 - 3. 진출
 - 4. 신설
 - 5. 폐업
 - 6. 합병·합산

사업체 고유번호	사업체명	소재지 행정구역분류부호	전화번호	산업분류	사업체규모	작성구분	조사종류 (해당란에 표기)			조사지정품목 광공업동태품목및부호	생산능력품목및부호	유고내용 코드번호	비고
							동	태	생 능 수 주				
							I	II	III				

VII. 광공업동태조사지정품목 분류표

대분류 2. 광 업
대분류 3. 제 조 업
대분류 4. 전 기 업

대분류 2. 광 업

중분류 21. 석탄광업, 23. 금속광업, 29. 기타광업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휴광, 폐광사업체

가. 광업의 경우 자금 및 기타 사정으로 휴광이 많고, 기간도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광산주를 매월 방문하여 재가동 여부를 파악해야 하며, 관할 동사무소, 읍면사무소에 실적보고 유무를 매월 확인.

나. 폐광의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 보고

다. 광산물은 그 품위가 광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품위에 따라 실수율 또는 실채취율이 다르므로 매월 품위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함.

2. 품위환산

가. 품위환산 방법

(1) 품 위

채굴된 광석에서 해당광물의 실채취량을 환산할 수 있도록 정한 광물의 함유 비율.

(2) 환산방법

광산물은 그 품위에 따라 실수율 또는 실채취율이 다르기 때문에, 광산물 품위환산 조건표에 의한 실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여야 함.

예) 1. 품위 40%인 철광석 100% 경우

(품위 40%, 환산수치는 0.643임) :

$$100\% \times 0.643 \approx 64\%$$

2. 품위 42.5%와 42.55% 철광석 각각 100% 경우

(품위 42%의 환산수치 0.663, 품위 43%의 환산수치 0.706임)

가) 품위 42.5%인 경우

$$100\% \times \{ 0.663 + (0.706 - 0.663) \times 5/10 \} \approx 68\%$$

나) 품위 42.55%인 경우

$$100\% \times \{ 0.663 + (0.706 - 0.663) \times 55/100 \} \approx 69\%$$

* 품위 43%인 경우는 71%이므로 42.5%, 42.55%등을
사사오입하여 43%로 계산해서는 안됨.

3. 매월 품위가 달라지는 경우

가. 품위별로 각각 생산, 출하, 재고를 환산

나. 월중 품위가 변동될 때도 품위별로 환산된 물량을 합계함.

4. 기준품위

- 무연탄 : 4,800 ~ 5,000 cal
- 철광석 : Fe 56% (조건표에 의거 환산할 것)
- 중석광석 : W_o_3 70% (")
- 연광석 : Pb 50% (")
- 아연광석 : Zn 50% (")

5. 은광석, 금광석의 경우는 원석을 분쇄, 마광, 부선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상태에서 추출한 은, 금 정량을 조사하고, 원석 또는 정광
상태로 출하할때는 은, 금 함유비율을 적용하여 조사한다.

다만 자가 제련시설을 갖추고 제련하는 업체는 제조업으로
보아 은 (9210600), 금 (7210700)으로 조사한다.

6. 혼합광석의 경우에는 함유량이 많은 것으로 분류하여 조사
단, 구분이 명확한 혼합광은 구분조사
7. 당해 사업체서 채굴한 광석을 기초자료로 하여 다른 제품을 생산
할 경우 그 광물은 원재료로 투입되는 전량을 재투입으로 기입
예) 석회석 조사시 자체 생산한 석회석으로 시멘트를 생산할 경우
원료로 투입되는 물량은 재투입량으로 기입
8. 무연탄의 재고는 산지재고, 역두재고, 소비지재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업체의 재고라 함은 산지, 역두, 소비지 재고를 불문하고
그 사업체의 관리하에 있는 재고 전부를 말함.
9. 조사범위
품목개념, 원재료, 용도등을 기준으로 포괄범위내에서 조사하여야 하
며 유사한 것으로, 포괄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문의
후 처리.
10. 기 타
광석의 주판매처, 품위, 수출이 있는 경우 수출국 등을 구체적으로
매월 기입.

광산물 품위환산 조건표

(%당×합량=광산물환산량)

광산물 합유량 (%)	광산물%당환산수치			광산물 합유량 (%)	광산물%당환산수치			
	철	연	아연		철	연	아연	중석
20	0.275	0.374	0.372	55	0.977	1.112	1.112	
25	0.357	0.473	0.472	56		1.135	1.135	
30	0.447	0.574	0.572	57	1.028	1.157	1.158	
32	0.485	0.615	0.613	58	1.056	1.180	1.181	
33	0.504	0.636	0.634	59	1.080	1.202	1.203	
34	0.524	0.657	0.655	60	1.104	1.225	1.227	0.819
35	0.544	0.678	0.676	61	1.130	1.248	1.250	0.836
36	0.563	0.698	0.696	62	1.157	1.271	1.273	0.854
37	0.583	0.719	0.717	63	1.182	1.295	1.296	0.871
38	0.604	0.740	0.738	64	1.206	1.318	1.320	0.890
39	0.624	0.762	0.760	65	1.233	1.344	1.347	0.907
40	0.643	0.783	0.781	66	1.261	1.370	1.373	0.925
41	0.653	0.804	0.802	67	1.285	1.395		0.944
42	0.663	0.826	0.827	68	1.310	1.420		0.962
43	0.706	0.847	0.846	69				0.981
44	0.727	0.869	0.868	70				
45	0.747	0.891	0.890	71				1.018
46	0.772	0.913	0.912	72				1.038
47	0.793	0.934	0.934	73				1.057
48	0.819	0.956	0.956	74				1.077
49	0.840	0.978	0.978	75				1.097
50	0.862			76				1.116
51	0.883	1.023	1.023	77				
52	0.910	1.045	1.045	78				1.156
53	0.932	1.067	1.067					
54	0.955	1.090	1.090					

소분류 210 . 석 탄 광 업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0100100	무 연 탄 (無 煙 炭)	M/T	고정 탄소의 함량이 높고 휘발분이 적으며 회분이 많은 석탄

소분류 230 . 금 속 광 업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0300100	철 광 석 (鐵 鑛 石)	M/T	주로 철을 함유하고 있는 정광(선광 작업을 통해 불필요한 성분이 제거되고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의 함유율이 높아진 광석) Fe 56%로 환산한다.
0300200	중 석 광 석 (重 石 鑛 石)	M/T	주로 중석을 함유하는 정광 Wo ₃ 70%로 환산한다.
0300300	은 광 석 (銀 鑛 石)	Kg	은을 함유하는 원석 Ag 99.9%로 환산한다.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갈탄, 역청탄, 아탄은 제외		연료, 연탄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적철광, 자철광을 조사		
○ 원석을 분쇄, 마광, 부선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상태에서 추출한 은 정량을 조사		은괴
○ 원석 또는 정광상태로 출하할 때는 원석 또는 정광의 은 함유비율을 적용하여 조사 ※ 제련소에서 제련된 은괴는 7210600으로 조사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0300409	금 광 석 (金 鑛 石)	Kg	금을 함유하는 원석 Au 99.9%로 환산한다.
0300500	연 광 석 (鉛 鑛 石)	M / T	주로 납을 함유하고 있는 정광 Pb 50%로 환산한다.
0300600	아 연 광 석 (亞 鉛 鑛 石)	M / T	아연을 함유하고 있는 정광 Zn 50%로 환산한다.
0300709	몰리브덴광석	Kg	MoS ₂ 를 주성분으로 하는 몰리브데나 이트광석 몰리브덴정광 90%로 환산한다.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석을 분쇄, 마광, 부선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상태에서 추출한 금 정광을 조사 ○ 원석 또는 정광상태로 출하할 때는 원석 또는 정광의 금함유 비율을 적용하여 조사. <p>.....</p> <p>※ 제련소에서 제련된 금괴는 7210700으로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연광, 백연광, 황산연광, 기타연광을 포함. <p>.....</p> <p>× 제련된 연괴는 제외.</p>		연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아연광, 이극광, 홍아연광, 탄산아연광을 포함 <p>.....</p> <p>× 제련된 아연괴는 제외</p>		아연괴
		진공관재, 굴신재, 내열합금재, 페인트안료, 반도체, 전기로

소분류 290 . 기타 광업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0900100	화 강 암 (花 崗 岩)	M/T	심성암의 일종으로 석영, 정장석, 사장석, 운모등을 주성분으로 한 석재(썩들)
0900200	쇄 석 (碎 石)	M/T	각종 암석을 일정한 크기로 분쇄한 돌조각
0900300	모 래	m ³	강변, 해변에서 자연상태로 채취한것.
0900400	자 갈	m ³	강변, 해변에서 자연상태로 채취한것.
0900500	석 회 석 (石 灰 石)	M/T	탄산석회를 주성분으로 하는 수성암(회들) CaO 50%로 환산한다.
0900600	고 령 토 (高 嶺 土)	M/T	바위속에 있는 장석이 풍화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흰빛 또는 잿빛을 띠는 흙
0900709	장 석 (長 石)	M/T	정장석, 조장석, 회장석등의 광석이 있으며 유리나 도자기의 주원료로 쓰여지는것.
0900800	규 석 (硅 石)	M/T	규소성분을 주로 함유하고 있는 암석.
0900900	납 석 (蠟 石)	M/T	수분함량이 적은 연질광물로서 용이하게 분쇄되어 쓰이는 광물.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흑운모화강암, 백운모화강암 포함. × 화강암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은 제외 (예 ; 비석, 상석등) 		건축, 토목용
		건축용, 도로포장, 철도 로반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순물을 제거한 상태의 것을 조사. × 산업용 모래 (규사) 는 제외 		건축용, 도로포장, 철도 로반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순물을 제거한 상태의 것을 조사 		건축용, 도로포장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운석을 포함. 		시멘트, 석회, 내화재, 벽재, 판유리, 도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토포함. 		도자기, 시멘트
		도자기, 유리, 유리섬유, 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사 (산업용 모래) 제외. 		내화용벽돌, 주장사, 주 물사, 유리공업, 전자산 업
		내화재료, 실충제, 아스 팔트충진재, 고무공업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0901009	천 일 염 (天 日 鹽)	M/T	해수를 자연적으로 태양열을 이용하여 물을 증발시켜 얻은 자연염.
0901100	흑 연 (黑 鉛)	M/T	전기의 양도체이며 내고온성의 특성을 갖고 있는 광물
0901200	활 석 (滑 石)	M/T	매우 부드럽고 촉감이 매끄러우며 전기에 대해 절연성을 가지며 분말상태일때 흡수성, 고착성이 강하며 내화성이 있어 내화재, 충전재등으로 쓰여진다.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압염, 재제염은 제외.		
× 공업적으로 무연탄, 피치등을 고온 가열하여 제조된 것은 제외.		주형재료, 탄소강원료, 내화재료, 탄소봉, 원자로용, 윤활재
○ 스테아타이트, 소우프스톤을 포함 × 활석분은 제외.		요업제품재료, 페인트원료, 살충제, 제지, 내화재, 화장품, 고무

대분류 3. 제조업

중분류 31.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햄 및 소시지는 축육제품과 어육제품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며 어육 햄, 어육소시지는 어육함량이 60%이상인 것이며, 혼합어육햄, 혼합어육소시지는 각각 어육햄, 어육소시지에서 조사한다.(식품제조허가시 구분허가하고 있음)
2. 분유는 생우유를 완전 탈수시킨 것으로 우유를 주원료로 하는 우유기저 이유식을 포함한다.
곡분을 중심으로 하는 곡물기저 이유식은 제외됨을 주의
3. 냉동물고기에 냉장 또는 빙장된 것은 제외
냉동 : -20°C 이하의 저온으로 급냉각시켜 보관한 것
냉장 : 냉장창고에 보관한 것
빙장 : 얼음을 이용하여 부패방지 하는 것
원양어선상에서 냉동하여 국내에 반입된 것은 제외되며 국내에서 가공처리를 위해 해동시킨 것을 다시 냉동시킨 경우는 냉동시점에서 조사
4. 어묵은 어육을 갈아서 만든 것으로 찐어묵, 구운어묵, 튀김어묵 등 명칭, 형태에 관계없이 원재료 및 제조과정이 유사한 것은 모두 포함한다.(덴뿌라, 오뎅 등)
원양어선상에서 생선을 일차 가공하여 만든 냉동어육은 어묵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에서 제외한다.

5. 인삼차 및 분말인삼은 별도 조사하며 인삼차는 물엿 또는 과당을 혼합하여 과립 또는 분말화 시킨것으로 직접 음용할 수 있는 것이며 기타 인삼제품(인삼정, 인삼엑기스등)은 제외
6. 아이스크림, 빙과는 유지방함유량 및 성형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아이스크림은 유지방 함유량이 일정량 이상의 것으로, 반고형의 상태로 되어진 것을 말함.
7. 과즙음료는 과일을 입착하여 즙을 낸 것으로 과육부분의 섬유질등을 완전히 걸러내어 순수액상으로 된것을 말하며, 넥타는 과육부분을 갈아서 여과하지 않은 상태의 것을 말한다.
과즙음료에 넥타는 제외되나, 물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도록 한 것(넥타쥬스)은 포함조사
8. 재건조잎담배는 제막엽만 조사대상으로 하며 주맥(잎담배줄기), 판상엽은 제외

소분류 311-312 . 식료품 제조업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1110100	햄	Kg	돼지고기, 어육을 염장, 훈제한 것
1110110	축육햄 (畜肉 햄)	Kg	돼지고기를 염장, 훈제한 것
1110120	어 육 햄 (魚肉 햄)	Kg	참치등 어육을 분쇄하여 염장한 것을 익혀 햄과 유사하게 만든 어육연제품
1110200	소 시 지	M/T	돼지고기, 어육 등을 분쇄하여 혼합한 것에 향신료등을 첨가하여 훈제, 케이싱한 것
1110210	축육소시지 (畜肉소시지)	M/T	돼지고기, 가축고기를 분쇄하여 향신료 등을 첨가하여 혼합, 훈제 케이싱한것
1110220	어육소시지 (魚肉소시지)	M/T	어육을 분쇄하여 향신료등을 첨가하여 소시지와 유사하게 만든 것으로 케이싱한 것.
1110300	가축가공고기 (家畜加工고기)	M/T	가축 및 가금고기를 절단 포장하거나 염장, 건조, 훈제등 가공처리한 것
1120109	치 즈	Kg	전지유, 탈지유, 크림, 버터밀크등을 원료하여 유산균과 렌넷을 첨가하여 우유단백질을 응고시키고 유정을 제거, 가열, 가압, 발효 숙성한 유제품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컨은 제외 ※ 햄소시지는 소시지에서 조사 ○ 어육햄, 혼합어육햄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돼지고기 참치, 명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컨, 햄은 제외 ○ 어육소시지, 혼합소시지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축고기 돼지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조림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치즈를 포함 ※ 가공치즈는 자연치즈를 주원료로 하여 이에 식품 또는 첨가물을 가하여 유화시킨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유, 유제품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1120200	분 유 (粉 乳)	M/T	생우유를 탈수시켜 분말화한 것
1120300	아 이 스 크 립	Kℓ	우유 또는 유제품을 주원료로 하여 당류 기타 식품 또는 첨가물을 가하여 동결한 것으로 유지방 함유량이 일정량 이상의 냉동식품
1120400	시 유 (市 乳)	Kℓ	음용으로 하기 위해 생우유를 살균처리한 것
1120500	유 산 균 음 료 (乳酸菌飲料)	Kℓ	유 또는 유제품을 유산균 또는 효모로 발효시켜 균상 또는 액상으로 한것
1130100	농 산 물 통 조 립 (農 産 物)	M/T	각종 과일, 채소를 가공 살균 및 저온가열하여 캔, 병등에 밀봉한 것
1130209	냉동과실및간밤	Kg	과일을 장기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급냉시킨 것
1130309	냉동과즙원액 (冷凍果汁原液)	Kℓ	과일즙을 장기 보관하기 위하여 냉동시킨 것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지, 탈지, 조제분유, 우유기저이유식을 포함 × 곡물기저 이유택은 제외 	우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류를 포함 × 빙과(하드, 아이스케키)류는 제외 	우유, 설탕 향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유(딸기우유, 커피우유등) 및 탈지유등을 포함 × 양유, 연유등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균 발효유 및 유산균음료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일 및 야채통조림을 포함 × 잼, 케찹등은 제외 	야채, 과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 밤을 포함 × 냉동채소는 제외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1140100	수산물통조림	M/T	어패류를 가공 가열 살균하여 밀봉한 것
1140200	냉동물고기 (冷凍)	M/T	생선을 변질되지 않게 급냉하여 장기 보존할 수 있도록 한 물고기
1140300	한 천 (寒天)	Kg	우무가사리, 강리등에 함유되어 있는 점질물, 갈락토우스 및 무수갈락토우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것
1140400	어묵	Kg	어육을 갈아서 단백질을 용출시킨 고기풀에 부원료를 첨가하여 증기·열수로 자숙하거나 이를 유탕처리한 것
1140500	가공어패류 (加工魚貝類)	M/T	어패류를 건조, 염장건조, 훈제한 것
1140609	가공해조류 (加工海藻類)	Kg	미역, 다시마, 김등 해조류를 건조 염장, 훈제한 것
1150100	대두유 (大豆油)	Kℓ	식용 콩기름
1150209	유채유	Kℓ	유채실에서 채취하여 정제한 식용유
1150309	옥수수유	Kℓ	옥수수 배아에서 채취한 식용유

조 사 범 위	원재 료	용 도
○ 고등어, 꽁치, 참치, 굴, 조개, 골뱅이 등 어개류를 가공한 통조림 조사		
○ 물고기이 외의 조개살, 게살등을 냉동저장한 것도 포함 ○ 원양어선에서 냉동시킨것이라도 국내에 반입하여 재냉동처리한 것은 포함 × 빙장, 냉장, 물고기류와 원양어선에서 냉동한 것이라도 국내에서 재냉동하지 않는것은 제외 × 냉동해조류는 제외		
	우무가사리 강리	양갱, 우무, 젤리, 수성도료, 세균배양기
○ 찐어묵, 구운어묵, 튀김어묵, 혼합어묵을 포함 ○ 맛살류를 포함 × 오징어 혼제품은 제외		
○ 오징어포, 어포, 건조조갯살, 오징어 및 굴혼제품 등 포함 × 젓갈류는 제외		
○ 원초 (미역, 다시마등)를 구입하여 튀긴 튀김해조류도 포함 × 생김을 구워 소금등을 친 가공품 (조미김, 맛김)은 제외		
× 비식용 식물유지로서의 콩기름은 제외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1150400	대 두 박 (大 豆 粕)	M/T	대두를 숙성하여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가공처리한 것
1150500	마 가 린	M/T	정제한 동식물의 유지·식용경화유 또는 이들의 혼합물에 물등을 첨가하여 유화시켜 만든 가소성을 가진 것 또는 유동상의 유지, 가공식품
1150600	쇼 팅	M/T	식용동식물유지 및 식용경화유를 혼합 가공처리한 것으로 식염등 조미료가 첨가되지 않고 수분함량이 적은 것 (수분함량 : 마가린 18%이하, 쇼탕 0.5% 이하)
1160100	밀 가 루	M/T	밀의 배젓부를 제분한 것
1170100	빵 및 케익	M/T	곡분을 주원료로 하여 설탕등 첨가물을 가하여 굽거나 찌거나하여 가공한 식품
1170200	건과자및스넬류 (乾 果 子 및 스넬類)	M/T	밀가루, 설탕등을 주원료로 굽거나 튀기거나 볶은 것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콩깻묵 포함		사료, 된장, 간장용
× 버터는 제외	식물성기름 동물성기름	
× 마가린은 제외	동식물성 유지	튀김용
○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등 조사	연질, 경질 소맥	
○ 식빵, 과자빵, 카스테라, 케익류 등을 포함하여 주원료는 밀가루뿐 아니라 보리가루, 옥수수가루 등 곡분을 가공한 것은 모두 포함 ○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만두는 포함. ○ 초코파이, 빅파이등 제과업체에서 생산되는 파이류는 과자빵에 포함 × 건빵은 제외 × 만두피만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	곡분, 이스 트, 설탕	
○ 비스킷, 미과, 건빵, 스낵류등을 포함하며 기타 옥수수, 감자등을 소재로	밀가루, 감 자, 옥수수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1170300	설 탕 과 자 (雪糖果子)	M/T	설탕, 물엿, 초코렛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과자
1170400	껌	M/T	천연 또는 합성수지에 가소제 충전제 감미료, 착향료를 배합하여 성형한 것
1170500	빙 과 (冰菓)	M/T	설탕물, 과일즙, 향료, 유제품등 첨가물을 혼합하여 고형 또는 반고형상태로 냉동시킨 것
1170600	인 스텐 트 면	M/T	밀가루 또는 기타 곡분을 주원료로하여 이에 각종 첨가물을 혼합하여 성형 또는 알파화한 것으로서 스프를 첨부한 것
1180100	정 당 (精糖)	M/T	사탕수수, 사탕무우에서 얻은 원당을 정제한 것
1210100	간 장	Kℓ	
1210200	글루타민산소다	M/T	음식의 맛을 높이기 위한 백색의 결정 또는 분말상태의 조미료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p>한 유사한 제품을 포함</p> <p>× 곡물의 씨 자체를 볶거나 튀기거나 하여 가공한 것은 제외</p>	<p>고구마, 양 과, 우유, 팜유, 설탕 조미료등</p>	
<p>○ 캔디, 드롭프스, 카라멜, 초코렛, 제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p> <p>※ 밀가루과자(비스켈류)에 초코렛을 입힌 것은 1170200건과자에서 조사</p>	<p>초코렛, 설 탕, 물엿, 향료</p>	
	<p>껌베이스, 분당, 과당 향료</p>	
<p>※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콘류 등은 1120300 아이스크림에서 조사</p>	<p>설탕, 물, 과즙, 우유 식물성지방</p>	
<p>○ 인스턴트식품으로 면이 포함된 것은 모두 조사</p>	<p>밀가루, 우 지, 팜유, 조미료</p>	
<p>○ 정백당, 갈색당을 포함</p>	<p>원당</p>	
<p>○ 양조간장, 화학간장을 포함</p>		
<p>※ 순수 글루타민산소다에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은 1210400 혼합조미료로 조사 (다시다 등)</p>	<p>당밀, 염산 가성소다, 사탕수수</p>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1210300	정 제 소 금 (精製소금)	M/T	천일염을 정제하거나 해수를 직접 진공증발하여 농축정제한 것으로 짠맛을 내는 결정체
1210400	혼 합 조 미 료 (混合調味料)	M/T	식품의 맛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식품을 건조 가공한 것에 아미노산등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분말로 만든 조미료
1210500	마 요 네 즈	M/T	계란노른자위, 설탕, 유, 설탕등을 혼합하여 만든 제품
1220100	홍 사 (紅 蔘)	Kg	6년생 인삼을 찌서 말린것
1220200	인 삼 차 (人 蔘 茶)	Kg	인삼을 농축하여 물엿, 과당등을 혼합한 것을 과립 또는 분말로 만든것
1220309	분 말 인 삼 (粉 末 人 蔘)	Kg	인삼을 건조하여 분쇄한 것
1220400	맥 아 (麥 芽)	M/T	보리, 밀 등을 발아시켜 건조한 것
1220500	두 부	M/T	물에 불린 콩을 갈아서 가열 여과한 여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킨것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천일염, 맛소금제외		
○ 맛나, 다시다, 진국등의 조미료를 조사		
× 맛소금, 라면스프는 제외		
	계란, 설탕 샐러드유	
× 건삼 및 홍삼을 가공한 제품은제외 (홍삼정, 삼차, 삼분은 제외)	인삼	
× 분말인삼은 제외	인삼	
○ 약재용, 식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사		
× 인삼차는 제외		
		맥주, 음료, 당류
○ 연두부, 순두부를 포함 ※ 순두부는 두부제조를 위해 재투입 되는 것은 제외하며 그 자체로 판 매되는 것만을 조사	콩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1220600	전 분 (澱粉)	M/T	감자, 고구마, 옥수수등을 마쇄하여 사별, 분리, 정제, 건조하여 분말화한 것
1220700	물 옛	M/T	곡분이나 고구마 등을 원료로 하여 산으로 당화시킨 산당화엿과 맥아로 당화시킨 맥아엿
1220800	과 당 (果糖)	M/T	전분, 설탕 또는 기타 다당류를 가수분해하여 농축한 것
1220900	식 용 사 카 린	Kg	탄수화물이외의 단맛을 가진 화학합성품으로 백색결정을 한 감미료
1221000	커피	Kg	커피원두를 볶거나 원두를 원료로 그 침출액을 가공하여 분말로한 것
1221100	커피크리머	Kg	커피, 홍차등의 맛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첨가하는 보완 식품
1230100	배 합 사 료 (配合飼料)	M/T	가축, 가금류를 키우기 위한 충분한 영양소를 과학적·경제적으로 배합한 사료
1230200	보 조 사 료 (補助飼料)	M/T	가축, 가금류를 위한 사료로서 일부영양소를 첨가 또는 특화하여 성장촉진, 질병방지 및 생리기능을 조정시키도록 만든 사료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반제품인 수전분은 제외	감자, 옥수 수, 고구마 밀	제지, 제약, 접착제, 물 엿, 포도당, 당면, 양조.
× 엿은 제외(응고된 것)		
× 포도당은 제외	전분	제과, 제빵, 빙과, 통조 림, 음료, 양조
○ 소디움사카린, 불용성사카린을 포함 (식용만 조사)		설탕대체품, 당의정, 음 료
× 아스파 탐류는 제외.		
○ 카페인제거한 커피, 커피믹서에 포함되는 커피, 군커피, 분말커피를 포함	원두	
○ 커피믹서에 포함된 크리머 포함	야자유, 물엿	
× 연유, 기타 액상의 유제품은 제외		
	대두박, 옥 수수, 보리, 밀, 어분등	
	곡류, 아미 노산, 항생 물질, 비타 민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1230300	어 분 (魚粉)	M/T	어개류의 지방을 제거한 후 말려서 분말화한 것

소분류 313. 음료품 제조업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1310100	주 정 (酒精)	Kℓ	전분, 당질을 효모를 사용하여 발효시킨 것으로 주류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무색유동성 액체
1310200	소 주 (燒酒)	Kℓ	주정을 물로 희석하여 만든 희석소주
1310300	위 스 키	Kℓ	위스키원액, 주정, 물 및 기타 첨가물을 혼합 제성한 것
1320100	탁 주 (濁酒)	Kℓ	
1320209	약 주 (藥酒)	Kℓ	곡류를 발효한 주요를 여과한 것
1320300	청 주 (淸酒)	Kℓ	백미를 발효시킨 주요를 여과하여 제성한 것과, 발효중의 주요에 주정 또는 희석식소주와 기타의 원료를 첨가하여 숙성시켜 여과 제성한 것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X 우모분, 육분, 꿀분을 제외		배합사료의 원료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X 화학공업, 위생공업용으로 사용되는 합성주정은 제외	전분, 당밀	
○ 증류소주를 포함 X 고량주제외		
	원액	
X 약주를 제외	쌀, 밀가루 누룩	
○ 합성청주도 포함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1320400	포 도 주 (葡 萄 酒)	Kℓ	포도를 발효시킨것 또는 주정 기타첨 가물을 혼합하여 포도주와 유사하게 제조한 것
1330100	맥 주 (麥 酒)	Kℓ	맥아·호프·옥수수·감자 등을 발효시 켜 제성한 것
1340100	사 이 다	Kℓ	순수 무색 탄산음료
1340200	클 라	Kℓ	
1340300	과 즈 음 료 (果 汁 飲 料)	Kℓ	탄산가스가 주입되지 않은 음료로 과즙이 함유되어 있는 음료
1340409	천 연 수 (天 然 水)	Kℓ	자연상태의 천연수를 용기에 담아 놓은것
1340500	합성 탄산음료 (合 成 炭 酸 飲 料)	Kℓ	탄산가스가 주입된 탄산음료로 과즙 또는 향을 가한것
1340609	오 렌 지 원 액	Kℓ	오렌지의 과즙 또는 오렌지 향을 내 는 화학원액
1340700	두 유 (豆 乳)	Kℓ	대두를 주원료로 식물성유지, 당류, 식염을 첨가한 음료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포도원액 제외 (포도원액은 312 식 료품 제조업)	포도, 주정	
○ 생맥주를 포함		
× 생수는 제외		
× 보리음료는 제외		
× 분말쥬스 제외		
※ 향 및 당분을 첨가하여 만든 천연 사이다는 1340100 사이다에서 조사		
○ 탄산가스가 주입된 청량음료는 모두 포함 (보리음료 포함)		
※ 순수 오렌지 과즙을 장기보관하기 위해 냉동한 것은 1130309 냉동 과즙원액에서 조사		
○ 순수두유 및 가공두유 (딸기, 잣, 초코, 두유등) 포함		

소분류 314. 담배 제조업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1400100	재 건조 잎 담 배 (再乾燥잎담배)	M/T	연초를 제맥분리하여 건조시킨것 (제맥엽)
1400200	담 배	백 만 개 비	건조가공된 잎담배에 향료등을 첨가하여 권련지로 말아놓은 담배제품
1400309	판 상 엽 (板狀葉)	Kg	연초의 줄기 또는 가공과정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모아 얇게 편것

중분류 32.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소분류 321. 섬유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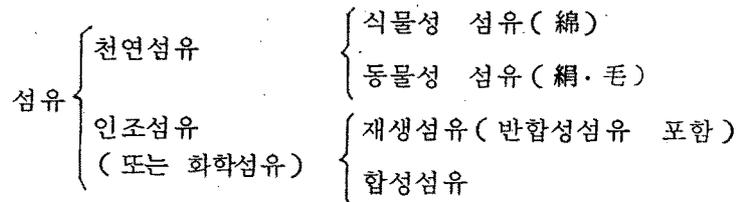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섬유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그 폭(직경)이 1/100미리 이하로서 육안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정도로 가늘며 그 길이는 폭의 100배 이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321. 섬유제조업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은 섬유를 원재료로 한 사(실의 형태)나 직물, 편물 등의 지정된 품목이다.

2. 섬유의 분류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주맥, 판상엽은 제외	연초	담배제품
○ 필터담배, 필터없는 담배를 포함 ----- × 각연, 여송연은 제외	재건조잎담배, 권련지 필타	
		담배제품



가. 식물성 섬유

면(綿), 마(麻) 등이 주종을 이루나 여기에서는 면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제조공정은 다음과 같다.

※ 원면(原綿)→개표(開表)→해면(解綿)→혼타면(混打綿)¹⁾ → 소면(梳綿)²⁾ →슬라이버(Sliver)³⁾ →연조(練條)⁴⁾ →조방(組紡)⁵⁾ →정방(精紡)→단사(單絲)→직조(織組)→직물(織物) 이 공정을 설

명하면,

먼저 단단하게 압축포장된 포장을 풀고 자연방치시켜 원면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포 및 해면에 해당하며 1) 혼타면 : 씨앗 및 불순물을 제거하며 얇게 펴서 두루말이 형태의 랩(Lap)을 만든다. 2) 소면 : 랩을 카드(Card)에 걸고 빗어 남아있는 불순물이나 섬유가 단단하게 엮힌것(Nep)을 제거한 다음 3) 슬라이버 : 섬유를 묶어서 굵은 끈모양의 고치(Sliver)를 만든다. 이 슬라이버를 몇 가닥 모아서 4) 연조 : 연조기에 걸어 늘이면서 섬유의 방향을 다시 맞춘다. 5) 조방 : 실을 만들기 위해 굵은 것을 가늘게 만들어 약간 꼬임이 간 조사(粗絲)를 만든다. 6) 정방 : 조사를 정방기에 걸어 일정한 가늘기로 늘여 꼬임을 준 것이 단사이다.

나. 동물성 섬유

(1) 견(繭)

누에고치를 가공하여 실이나 직물을 제조한다. 춘잠은 5~6월, 하잠은 7월, 추잠은 8~9월에 사육한다.

제조공정은,

고치말리기→고치간수하기→고치고르기→고치삶기→김풀기→다시감기→
끝맺음→직조→직물

고치고르기 단계에서는 김풀기(조사)할 수 없는 고치와 있는 고치를 분류한다. 고치삶기단계에서는 세리신을 적당히 순화요착력을 약화시켜 견사를 쉽게 뽑기 위한 것이다. 김풀기란 조사기에 고치를 옮겨 실마리를 잡아 한가닥 실로하여 잡아올린다.

(2) 모(毛)

양모는 화학적으로 젤라틴이라 부르는 단백질에 속하며 일종의 피부 변태물이다. 주로 양모를 가공하는 활동으로 지부양모를 수입하여서 세척하여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세척양모를 수입 사용하거나 혹은 톱(top), 화이버(fiber)를 구입 사용한다. 제조공정은 소모공정과 방모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요 공정은 각각 다음과 같다.

(가) 소모공정

세척양모 → Card top¹⁾ → roving top²⁾ → 순소모단사³⁾ → 소모사⁴⁾ → 직조⁵⁾
→ 소모직물⁶⁾

- 1) 의 공정은 양모섬유를 소면기(Card機)에 걸어 타면(打綿), 빗질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복합(doubling), 연신(drafting)하여 균등하면서도 비교적 굵은 top 상태를 만든다.
- 2) 의 공정은 전방공정으로서 실의 종류, 변수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기계에 걸어 복합, 연신을 되풀이 하며 정방기에 공급할 roving top을 만들기 위해 점차 가늘게 한다.
- 3) 의 공정은 필요한 굵기로 가늘어진 roving top을 꼬아서 단사(單絲)를 만든다.
- 4) 는 이러한 단사를 실의 굵기에 따라 여러 가닥 합해서 꼬는 공정이다.

(나) 방모공정

모설(毛屑), 세척양모 → Card top → top → 방모 → 단사 → 방모사 → 직물

방모공정을 소모공정과 달리 전방공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굵기도

일정치 않고 매끈하지도 않으며, 재료로는 모설, 재제모(再製毛), 소모공정에서 생긴 부산물을 사용한다. 즉, 방모와 소모의 구분은 원재료 사용과 공정상의 전방(前紡)유무에 의해 구별한다.

다. 재생섬유(반합성 섬유 포함)

(1) 재생섬유

셀룰로오스 등 자연에 존재하는 고분자를 용해하여 이것을 노즐에서 밀어내어 섬유모양으로 응고, 재생한 것인데 섬유를 형성하는 물질은 천연 고분자와 거의 같다.

제조과정에서 화학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며 원래 있었던 천연의 셀룰로오스를 재생하였다는 의미에서 재생섬유(레이온)라 부른다.

(통칭 인견이라 한다)

(2) 반합성 섬유

셀룰로오스 분자에 초산기를 결합시켜 아세틸셀룰로오스로 한 다음 용제로 하고 방사용고시켜 섬유로 만든 것이다.

이 섬유는 아세틸화한 부분이 합성품이므로 반합성섬유라 부른다.

내수성이 좋고 건조되기 쉬우며 촉감이 좋다.

라. 합성섬유

합성섬유란 저분자물질을 원료로 하여 섬유가 되는 쇠사슬 모양의 고분자 물질을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합성고분자를 용해, 분산, 용해시킨 후 작은 구멍으로 밀어내어 섬유모양으로 응고시켜 만든 것인데 3대 합성섬유로 나이론, 폴리에스텔, 아크릴을 들 수 있다.

제조에는 중합성을 가진 단량체(monomer)를 만들고, 이것을 중합시켜서 중합체(Polymer)로 하여 방사한다.

(1) 폴리아미드계 합성섬유

일반명은 나이론이라 하며, 제법에는 웨놀법과 PNC법 등이 있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카프로락담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다. 인장력과 염기에 강하여 어망이나 레이스 등 찢어지기 쉬운 것의 보완용으로 많이 쓰인다.

(2) 폴리 아크릴릭 합성섬유

양모와 가장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직물방면에 용도가 개발되어 편물, 메리야스, 인테어리어(장식물) 부문에 많이 사용된다. 제법으로는 프로필렌에 암모니아와 공기를 촉매로 하여 에이엔모노머(A. N. monomer)를 만들어 원재료로 사용한다.

(3) 폴리에스터계 합성섬유

원재료는 테레프탈산(T.P.A.), 에틸렌글리콜(E.G.)이며 중합된 폴리에스터를 질소가스 압력으로 칩을 만들어 용해 방사한다. 내마모성은 나이론보다 약간 뒤떨어지나 아크릴릭보다 높으며 일반 의류를 만드는 섬유로 이용된다.

3. 각 섬유별 혼방도표

모든 섬유는 상호간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유용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혼방한다.

혼방 주된 섬유	섬유	견	모	면
견	1)			
모	2) 61.0 % 이상 • 소모 : 혼방소모사 모 혼방직물 • 방모 : 혼방방모사 혼방방모직물	1)		
면			1)	
화 섬	6) 71 % 이상 • 혼방합성섬유사 혼방합성직물	7) 61 % • 혼방합성섬유사 • 혼방합성섬유직물	8) 50 % 이상 • 혼방합성섬유사 • 혼방합성섬유직물	
재 생 반 합 성				

- 주 1) : 혼방이 안된 100 %의 사, 직물
 2) : 모가 61 % 이상 견이 39 % 미만 혼방된 사, 직물
 3) : 모가 40 % 이상 화섬이 60 % 미만 혼방된 사, 직물
 4) : 모가 40 % 이상 재생, 반합성이 60 % 미만 혼방된 사, 직물
 5) : 면이 51 % 이상 화섬이 49 % 미만 혼방된 사, 직물
 6) : 화섬이 71 % 이상 견이 29 % 미만 혼방된 사, 직물
 7) : 화섬이 61 % 이상 모가 39 % 미만 혼방된 사, 직물
 8) : 화섬이 50 % 이상 면이 50 % 미만 혼방된 사, 직물
 9) : 화섬이 50 % 이상 재생, 반합성이 50 % 미만 혼방된 사, 직물
 (단, 3) 4)의 경우 하복지의 경우 모가 35 % 이상 화섬이 65 %

혼방도표

화 섬	재 생 (레 이 온) 반합성 (아세테이트)	조 사 품 목
		생사(옥사포함) 순본견직물
3) 40%이상 • 소모 : 혼방소모사 혼방소모직물 • 방모 : 혼방방모사 혼방방모직물	4) 40%이상 • 소모 : 혼방소모사 • 방모 : 혼방소모직물 혼방방모사 혼방방모직물	순소모사, 직물 순방모사, 직물 혼방소모사, 직물 혼방방모사, 직물
5) 51%이상 • 혼방면사 혼방면직물		순면사, 직물 혼방면사, 직물
1)	9) 50% 이상 • 혼방합성섬유사 혼방합성섬유직물	순합성섬유사, 직물 혼방합성섬유사, 직물
	1)	재생섬유사 재생섬유직물조사

※ 공란은 조사하지 않는 품목임

※ 혼방도표에 따라 분류하되 사업체의 생산품을 어느 품목으로 채택하여야 좋을지 모를 경우 원재료명과 혼방비율 등의 자료를 입수하여 본부와 협의할 것.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2110100	생 사 (生 絲)	Kg	누에고치에서 뽑은 실 즉, 한가닥의 긴 필라멘트(filament)의 실을 몇 가닥으로 합하여 만든 것
2110200	면 사 (綿 絲)	M/T	
2110210	순 면 사 (純 綿 絲)	M/T	원면을 가공, 순면사를 방적한 것
2110220	혼 방 면 사 (混 紡 綿 絲)	M/T	타섬유와 혼방된 것
2110300	양모 및 수모 (羊毛 및 獸毛)	Kg	실의 원재료, 의복의 보온재
2110400	방 모 사 (紡 毛 絲)	M/T	
2110410	순 방 모 사 (純 紡 毛 絲)	M/T	양모를 가공하여 제조한 실. 원재료가 다양하며 섬유의 길이도 짧고 긴 것이 혼합되어 잔털이 많다.
2110420	혼 방 방 모 사 (混 紡 紡 毛 絲)	M/T	타섬유와 혼방된 실
2110500	소 모 사 (梳 毛 絲)	Kg	
2110510	순 소 모 사 (純 梳 毛 絲)	Kg	카드 및 콤공정을 거쳐 잘 간추려진 실이다. 모양이 매끄럽고 잔털이 적으며 일정한 굵기를 갖고 있다.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사포함 ※ 견방사는 제외하고, 견연사는 연사로 조사 	<p>누에고치 (繭)</p>	견직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사가 100%인 것만 조사 	원 면	면직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이 51%이상인 것만 조사 	원면, 화학 섬유	면혼방직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모, 수모, 모설, 기타동물털 등 카드스리버, 톱상태의 것도 포함 	동 물	실, 보온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모가 100%인 것만 조사 	모설, 양모 수모	방모직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모가 40%이상인 것만 조사 	모설, 양모, 수모, 화학 섬유	혼방방모직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ol 이 100%로 방적된 사로서 만드시 전방공정을 거친 사만을 조사 	양 모	소모직물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2110520	혼 방 소 모 사 (混紡梳毛絲)	Kg	Wool Top 과 Top 상태의 타섬유와 혼합하여 순소모사의 전방공정에서부터 제조한 실
2110600	합 성 섬 유 사 (合成纖維絲)	M/T	
2110610	순합성섬유사 (純合成纖維絲)	M/T	석유화학공정을 거친 나프사를 원재료로 한 실체의 실을 칭하며 나이론, 폴리에스텔, 아크릴이 대종을 이룬다. Fiber 와 Filament 등 일체의 합성섬유가 방직할 수 있도록 재공정한 사의 상태
2110620	혼방합성섬유사 (混紡合成纖維絲)	M/T	화섬과 타섬유와 혼방되어 만들어진 사로서 각 섬유의 단점을 보완, 용도를 다양하도록 제조되었다.
2110700	재 생 섬 유 사 (再生纖維絲)	M/T	Viscose 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실로서 비스코스인견사, 스프사 등을 말함.
2110800	연 사 (撚 絲)	M/T	
2110810	재 봉 사 (裁縫絲)	M/T	재봉에 쓰이는 실
2110820	편 물 사 (編物絲)	M/T	편물에 쓰이는 실
2120100	면 직 물 (綿織物)	천 m ²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모가 40% 이상인 혼방소모사만 조사	양모, 화학 섬유	혼방소모직물
○ 합성섬유사가 100%인 것만 조사. 합성장섬유사도 직접 방직할 수 있으면 포함조사 ※ 모노 필라멘트는 관련섬유(화학제 조업)에서 조사	합성섬유	순합성섬유직물
○ 혼방도표 참조	합성섬유, 견, 모, 면	혼방합성섬유직물
○ 아세테이트 섬유(반합성섬유)로 만든 실도 포함.	펠 프	재생섬유직물
○ 면연사, 견연사, 모연사, 인조섬유연사 바느질실 등 조사	각 종 사	
○ 면연사, 모연사, 인조섬유연사, 기타 연사 등 조사	각 종 사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2120110	순 면 직 물 (純綿織物)	천 m^2	순면사로만 짠 직물(일명 면포)
2120120	혼 방 면 직 물 (混紡綿織物)	천 m^2	
2120200	소 모 직 물 (梳毛織物)	천 m^2	
2120210	순 소 모 직 물 (純梳毛織物)	천 m^2	순소모사로만 짠 직물
2120220	혼 방 소 모 직 물 (純紡梳毛織物)	천 m^2	혼방소모사로서 짜거나 순소모사와 타 섬유사와 방직한 것
2120300	방 모 직 물 (紡毛織物)	m^2	
2120310	순 방 모 직 물 (純紡毛織物)	m^2	순방모사로만 짠 직물
2120320	혼 방 방 모 직 물 (混紡紡毛織物)	m^2	혼방방모사로 짜거나 순방모사와 타섬 유사로 방직한 직물
2120400	순 본 견 직 물 (純本絹織物)	m^2	생사 또는 고치중 김풀기를 할 수 없는 것을 타면(打綿)하여 만든 견 방사로 제직한 것(일명 비단)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목, 내광목, 옥광목, 당목, 면범포, 포프린, 융, 면복지 등 ----- × 면세포, 면거즈 제외 ----- ○ 면의 비율이 51%이상인 것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 면 사 ----- 면사, 합성 섬유사 	의류, 산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ol 이 100%인 것만 조사 	소 모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복지의 경우에 한하여 소모가 35%이상 혼방인 경우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방소모사, 순소모사와 타섬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모가 100%인 것만 조사 	순 모 방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모의 비율이 40%이상인 것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방방모사, 순방모사와 타섬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흘치기원단, 시보리원단, 하오리원단, 쓰므기원단 등 ----- × 원단에 수를 놓는 등의 가공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방사, 생사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2120500	합성섬유직물 (合成纖維織物)	천 ^{m²}	
2120510	순합성섬유직물 (純合成纖維織物)	천 ^{m²}	순합성섬유사로 방직한 직물
2120520	합성섬유파일직물	천 ^{m²}	
2120530	혼방합성섬유직물 (混紡合成纖維織物)	천 ^{m²}	다른 성질의 섬유가 2종이상 혼방되어 제조된 직물로서 합성섬유가 기준 비율보다 많이 차지한 직물
2120600	재생섬유직물 (再生纖維織物)	천 ^{m²}	재생섬유사로 제작한 직물(일명 인견 직물).
2120700	세 폭 직 물 (細幅織物)	천 ^{m²}	폭13센티미터 미만의 직물
2120800	타 율 (TOWEL)	Kg	세면 및 위생, 목욕용 등에 사용되는 수건
2130100	염 색 가 공 직 물 (染色加工織物)	천 ^{m²}	원단에 염색을 한 것. 직물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직접 염색하는 것은 해당 직물로 조사
2140100	직 물 포 대 (織物包裝)	천 ^{m²}	합성섬유사, 마사, 플라스틱 등으로 제작된 것을 재봉한 것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나이론, 다후다, 폴리텍스, 캐미컬트, 리코트 등을 포함.	합성섬유사	
○ 혼방도표 참조	각 종 사	
○ 아세테이트직물도 포함.	재생섬유사	
	각 종 사	밴드, 테이프, 리본, 라벨, 전선의 절연 등의 재료용
○ 규격에 관계없이 조사 × 손수건, 이태리타올, 침대커버 제외	면 사	
○ 반드시 공장에서 기계로 염색, 표백 가공처리한 것만 조사 × 홀치기, 나염 및 개인을 상대로 하는 염색가공활동 제외	염료, 면직물, 인조섬유직물	
○ 양곡포대, 우편낭, 모래포대 등 포함 ※ 포대를 봉제하기전 원단이 퍼진 상태의 넓이로 조사 × 종이포대, 압축성형(비료포대)제품 제외	합성섬유사, 마사, 프라스틱물질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2140200	담 요	m ²	털 혹은 섬유질로 만든 모포
2140300	텐트 및 천막	매	야외행사 또는 야영(캠핑)에 사용하기 위하여 섬유직물 또는 바닐직물로 만든 천막 및 텐트
2140400	배 낭 (背囊)	개	물건을 담아 등에 질수 있도록 만든 낭
2140500	자 수 직 물 (刺繡織物)	천m ²	직물에 수를 놓은 것. 일명 니들위크 태피스트리(공장에서 10야드 이상 긴 천에 자수를 놓는 직물)
2140600	직 물 벽 지 (織物壁紙)	천m ²	고급벽지로 안면은 종이 겉면은 직물이나 갈포로 제조된 벽지
2150100	스 타 킹 (STOCKING)	천켄레	화섬이 60%이상 포함된 사로 편직하여 만든 무릎이상까지 덮을 수 있는 양말
2150200	양 말 (洋襪)	천켄레	발목까지를 덮어주는 양말
2150300	메 리 야 스 내 의	천 매	편직기로 편직한 내의로 통칭 메리야스라 한다.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화학섬유사, 방모사	
○ 25㎡를 1매로 환산조사	섬유, 비닐 직물	야영 및 비, 이슬, 바람, 별을 가리는 장막
○ 캠핑용품만 조사 ----- × 아동용, 군용배낭, 책가방 및 썸 (sack)은 제외		
○ 기계자수만 조사 ----- × 가내자수 제외	직 물	자수제품
	직물, 갈포	
○ 타이즈, 팬티스타킹, 밴드, 판타롱 등 조사	화섬, 면	
○ 원재료와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조사	각 종 사	
○ 남·녀용 여름내의 (팬티, 런닝셔츠) 및 겨울내의만 조사 ※ 기타 내의는 322 의복에서 조사	면, 화섬	동·하절기 내의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2150400	메 리 아 스 외 의	천 매	편직 (편물) 외의 ※ 편물 : 한가닥 또는 여러가닥의 실이 고리모양을 형성하는것
2150500	인 조 섬 유 편 직 물 (人 造 纖 維 編 織 物)	천 m ²	인조섬유사를 편직기로 짠 직물
2160100	카 페 트 (CARPET)	m ²	인조섬유의 아크릴, 나이론, 비스코스트로 짜 직물이며 일명 용단, 양탄자
2170100	연 승 및 섬 유 로 프 (連 繩 및 纖 維 ROPE)	M/T	
2170110	식 물 성 섬 유 로 프 (植 物 性 纖 維 ROPE)	M/T	식물성 섬유를 가공하여 여러가닥으로 꼬아 만든 줄
2170120	연 승 , 인 조 섬 유 로 프 (連 繩 , 人 造 纖 維 ROPE)	M/T	화섬을 가공하여 여러가닥으로 꼬아 만든 줄
2170200	어 망 (魚 網)	M/T	수계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을 채포, 채 취하는 어업용 자재
2190100	솜	Kg	화이버상태에서 랩 (Lap) 공정을 거 친 솜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웨타류(knit)류 크기에 관계없이 조사 ※ 편직물을 구입하여 봉제한 셔츠와 Y-shirt, 브라우스, 운동복 (슈리닝 포함)은 322 의복에서 조사 	면, 화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지용 편직물도 조사 ※ 파일직물은 2120520으로 조사 × 천연섬유(면, 모 등)편직물은 제외 	인조섬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적 수직 포함 × 명석, 매트(Mat) 등 제외 	화 섬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니라, 면, 파암 등 포함 	아바카, 면사, 파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망사, 인조섬유로프, 각종 합성로프 포함 	PP, PE 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어망 모두 조사 × 곤충망, 농업용망, 건설업용망 제외 	어 망 사	어로용수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 인조섬유, 기타섬유섬 모두 조사 ※ 페딩은 2190200 부직포로 조사 	원면, 화섬	이불, 쿠션충진재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2190200	부 직 포 (不織布)	천㎡	일반직물과는 달리 방직하지 않고 접착제를 이용하여 제조된 포
2190300	인조섬유타이어지 (人造纖維타이어紙)	M/T	화섬을 연사화하여 만든 직물 타이어의 골격으로 사용되며 하중, 충격, 공기압 등에 저항하는 역할

소분류 322. 의복 제조업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재료와 형태를 가리지 않고 천(직물, 가죽, 모피, 합성피혁등)을 가지고 재단, 재봉한 모든 의류를 말한다.
2. 금액조사품목의 경우 생산자판매가격 수출의 경우는 계약 당시의 환율(전신환매도율)에 의해 원화로 환산평가한다.
3. 단위에서 한벌이라함은 상하의를 말하고 코트의 경우; 1점이 한벌이다.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2210109	男子用마춤洋服	벌	
2210209	女子用마춤洋裝服	벌	
2220100	남자용기성양복 (男子用既成洋服)	벌	정 장 복
2220200	既成 셔츠류	천매	의의를 받쳐주는 중의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패딩, 니들펀치, 펠트 등	합성섬유	여과포, 소독타올의 커버조화, 심지, 붕대, 가제 등
	합성섬유	타이어

4. 조사요령

가. 편직내의중 남녀 여름용 팬티, 셔츠 및 겨울용 내의는 2150300으로 조사한다.

나. 편물외의는 원단을 자체생산하여 의류를 제조하는 것은 2150400으로 조사하고 원단을 구입 봉제하는 경우만 의복류로 조사한다.

다. 편물외의라도 운동경기복(츄리닝포함)은 모두 2220600으로 조사한다.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남자용 마춤 정장복, 코트 각 1착	직 물	
○ 여자용 마춤 양장복(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 코트 각 1착)	직 물	
○ 기성 정장복, 코트 각 1착	직 물	
○ Y-셔츠, T-셔츠, 정복셔츠, 기타 셔츠	직 물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2220300	기 성 하 의 (既 成 下 衣)	개	직물로 만든 바지
2220400	기 성 작 업 복 (既 成 作 業 服)	백만원	훈련, 업무, 작업시 입는 옷
2220500	기 성 보 통 외 의 (既 成 普 通 外 衣)	백만원	
2220600	기 성 경 기 복 (既 成 競 技 服)	백만원	
2220700	여 자 용 기 성 외 의 (女 子 用 既 成 外 衣)	백만원	
2220800	소 아 용 기 성 외 의 (小 兒 用 既 成 外 衣)	백만원	
2220900	女 性 用 化 운 데이션 및 난 제 리 류	백만원	
2221000	가 족 및 毛 皮 衣 服	백만원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남녀용 크기에 관계 없이 모두조사	직 물	
○ 작업복, 훈련복 X 위생복, 방수복, 방열복 등 특수복 은 제외	직 물	
○ 자켓, 반코트, 캐주얼웨어, 콤비, 잠바 헌팅코트 등 조사	직 물	
○ 선수용자켓, 운동복(츄리닝포함) 등 조사	직 물	
○ 여자용정장복, 코트, 브라우스, 원피스 투피스, 여성캐주얼정장복, 드레스, 스 키트 등 여성용 외의 조사	직 물	
○ 소아용드레스, 브라우스 및 셔츠, 코 트, 양복, 기타소아용외의	직 물	
○ 브래저, 콜셋, 콜셋벨트, 콜셋릿, 거들 콜셋, 히프벨트, 임신후복, 띠, 케미솔 쉬미즈, 파티코트, 스텝 등 조사 X 완전히 고무로 된 제품은 제외 펜티 및 런닝셔츠 → 메리야스내의	직 물	
○ 가죽, 모피, 합성피혁으로 만든 의복 은 모두 조사	가죽, 모피 합성 피혁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2221100	모 자 (帽 子)	천 개	
2221200	가죽및毛皮掌匣	천컬레	
2221309	손 수 건	천 매	

소분류 323. 가죽, 대용가죽 및 모피제품제조업
(신발과 의복제외)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우혁(牛革)을 제조과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가. 복수혁(갑피혁 : CHROMED UPPER)

(용도) 고급구두 표면피혁 핸드백 등에 쓰인다.

(성질) 부드럽고 원피의 털이 붙어 있는 부분을 말한다.

송아지의 것이 질이 좋다.

나. 다리혁(TANNED UPPER)

(용도) 군화용, 증창(구두), 가방

(성질) 두껍고 단단하며 원피의 털이 붙은 부분이다.

다. 이혁(SOLE)

(용도) 작업복 장갑

(성질) 원피에서 복수혁이나 다리혁을 떼어내고 남은 안부분을 말하며 이혁을 만든 다음은 수구래(아교의 원료)가 남는다.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모든 모자 조사 ----- × 철모, 플라스틱모자, 운동경기용 보 호모자, 밀짚모자 제외		
○ 가죽, 모피, 합성피혁으로 만든 장갑 은 모두 조사 ----- × 고무장갑, 직물제장갑, 야구장갑, 권 투장갑 제외	가죽, 모피 합성피혁	

라. 저 혁

(용도) 창용·패킹·공업용 혁벨트

(성질) 특수제조과정을 거친 생산원피의 털이 있는 부분, 복수혁보다
저혁이 비싸다.

※ 우혁의 단위환산법

12인치 = 1ft



사방 12인치 = 0.093 m² (1 평)

1 매 30 ~ 40 평

1 매 2.8 m² (30 평)

1 매 3.7 m² (40 평)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2310100	쇠 가 죽	천㎡	원피(소)를 가공하여 만든 가죽으로 복수혁, 다리혁, 이혁, 저혁이 있다.
2310200	재생 및 인조가죽 (再生 및 人造가죽)	천㎡	가죽조각을 재생시킨 것이나 인조가죽
2310309	돼 지 가 죽	㎡	기름과 털을 제거 약품을 첨가하여 제혁공정을 거친 돈피(豚皮)
2310409	파 총 류 가 죽	㎡	
2320100	모 피 제 품 (毛皮製品)	백만원	의복을 제외한 모피 가공 제품
2330100	가 방	백만원	
2330200	핸 드 백	천 개	
2330309	마 구 (馬 具)	백만원	말의 사육 및 조련에 사용되는 물품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원 피	신발, 가방, 혁대등의 가죽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각가죽, 인조가죽 (직물이나 부직포에 폴리우레탄을 입힌 것)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라스틱레저는 제외 	가죽 조각 직물, 폴리우레탄 등	
	돈 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뱀피, 뱀장어피 연어피 등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피카페트, 모피방석, Car Seat, 침대커버 등 조사 	모 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물, 가죽, 모피, 합성피혁 등으로 만든 모든 가방 조사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핑백, 종이백, 비닐백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피혁, 합성피혁으로 만든 것 조사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물제 핸드백 및 소형지갑 제외 	피혁, 합성 피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안장, 말고삐등 말에 부착되는 가죽제품만 조사 		

소분류 324. 신발 제조업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2400100	단 화 (短 靴)	결 레	
2400200	가죽장화·등산화 및 작업화	결 레	
2400300	실 내 화 (室 內 靴)	천결레	가죽, 인조가죽 또는 그 위에 직물을 씌어 실내에서 신는 슬리퍼
2400409	신 발 부 속 품	백만원	가죽(인조가죽포함)신발 제조에 필요한 구성품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남녀용 단화, 군용단화, 캐주얼화(가죽으로 만든 것)	가죽, 합성 피혁모피	
○ 군화, 장글화, 작업화, 부츠, 앵글, 등산화 등		
○ 플라스틱 레저를 절단, 봉제하여 만든 것도 포함 ※ 완전고무제품, 플라스틱제는 355 또는 356에서 조사		
○ 반드시 피혁이 원재료가 된 것만 조사		
× 프라스틱, 고무제품 제외		

중분류 33. 나무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포함)

소분류 331. 나무 및 나무와 플라스틱제품제조업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소할재, 각재, 판재, 합판, 재생목재, 포장상자는 지정단위가 「 m^3 」이다.

그러나 일부 사업체에서는 才, 매, B/F, S/F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지정단위로 m^3 로 반드시 환산조사 하여야 한다.

※ 단위 환산방법

$$1 \text{ 才} = 0.00334 \text{ } m^3 \qquad 1 \text{ } m^3 = 303 \text{ 才}$$

$$1 \text{ B/F} = 0.002359 \text{ } m^3 \qquad 1 \text{ } m^3 = 423.77 \text{ B/F}$$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3110100	각 재 (角 材)	m^3	각재 (두께 폭이 8센티미터 이상) 소할재 (두께 8센티미터 미만, 폭이 두께의 3배 미만)
3110200	판 재 (板 材)	m^3	두께 8센티미터미만. 폭이 두께의 3배 이상인 것
3110300	문 및 문 틀	m^3	
3110400	일 반 합 판 (一 般 合 板)	m^3	단판을 여러장 겹쳐 접착제로 붙여 만든 판(板)

○ S/F 환산방법 (합판의 경우)

규격			환산	수치
가로 (F)	세로 (F)	두께 (mm)	1 매 당 m^2	1 S / F 당 m^2
4	8	3.2	0.0095133	0.0002973
3	6		0.0053512	
4	8	3.6	0.0107024	0.0003345
3	6		0.0060201	
4	8	4	0.0111892	0.000372
3	6		0.006689	
4	8	6	0.017837	0.000557
3	6		0.010034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 소할재 (정할재, 평할재), 각재 (심지각, 심거각, 정각, 평각)	원목	
○ 소폭판 (小幅板), 사면판 (斜面板), 후판 (厚板)	''	
○ 문, 문틀, 창문, 창문틀의 원재료인 목재 사용량을 조사	제재목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3110500	가 공 합 판 (加工合板)	m ³	합판에 무늬목을 부착하거나 프린팅한 것
3110600	재 생 목 재 (再生木材)	m ³	폐재, 펄프, 찌꺼기, 벗집 등의 소편(小片)을 접착제로 압착한 것
3110709	침 목 (枕 木)	본	원목을 일정한 크기로 제재하여 크레오소오트(방부제)를 주입한 것
3120100	포 장 상 자 및 통 (包裝箱子및筒)	m ³	목재로 만든 포장용 상자 및 통
3190100	위생및식탁용목제품 (衛生및食卓用木製品)	백만원	
3190209	콜크 및 콜크 제품	kg	굴참나무 껍질을 분쇄, 접착하여 건조시킨 것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인슐레이션보드, 세미하드보드, 하드보드, 파티클보드	목 재 칩	
○ 병침목, 분기침목, 교침목, 철도침목을 포함 ----- × 철근콘크리트침목 및 갱목(坑木)은 제외	원 목	
○ 액체용 통, 고체용 통, 각종 목재용 포장상자, 드럼 및 바렐, 펠리트 및 스킵트 조사(단위는 원재료 기준) ----- × 절목상자 제외	제 재 목	
○ 스푼, 포크, 위생저, 이쑤시개, 아이스크림대 등 조사	원 목	
○ 약세사리, 병마개, 건축흡음재, 메모판 팩킹, 방진재 등 조사	굴참나무피	

소분류 332 . 가구 및 장치물제조업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금속제 가구류는 조사에서 제외한다. (381 조립금속제품으로 분류조사)
2. 장농을 만드는 사업체에서는 화장대를, 책장을 만드는 사업체에서는 의자를 병행해서 제조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사에 누락없도록 유의한다.
3. 특히 가구류의 경우는 대부분 판매만 하는 가구점만 외부에 나타나고 있어 공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상외로 처리하기 쉬우나, 같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3200100	나 무 의 자	개	목재로 만든 각종 의자
3200200	나 무 책 상 (册 床)	개	목재로 만든 책상
3200300	장 식 장 (粧 飾 機)	개	

은 건물 또는 별도의 장소에 공장이 있으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가구업종은 생산제품의 변동이 빈번하고, 주문생산이 많으므로 품목누락에 항상 판별 보완하여야 한다.

5. 반제품 상태의 제품은 조사에서 제외한다.

6. 책상과 의자를 단순히 편의상 연결시킨 제품은 각각 조사한다.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상과 의자가 붙은 것(1인용)도 포함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파, 등받침이 없는 의자(Stool) 및 벤치와 같은 공공용 및 플라스틱의자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에 관계없이 조사 ○ 학교책상도 포함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자겸용책상은 의자로 장식장겸용은 장식장으로 조사 	제 재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및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서가 포함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엌용 찬장, 도서관등에서 사용되 	"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3200400	장 롱 (櫛 籠)	개	의류나 이불을 넣는 장
3200500	화 장 대 (化 粧 臺)	개	
3200600	식 탁 (食 卓)	개	
3200700	침 대 (寢 臺)	개	
3200800	문 감 (文 匣)	개	
3200900	상 크 대	개	목재로 만든 부엌용 설비
3201000	서랍장및음향기기대	개	
3201109	찬 장 (饌 機)	개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는 진열만을 목적으로 하는 책꽂이 문갑 등은 제외		
○ 자개농, 티크농, 나전칠농 모두 조사 ----- × 찬장, 서랍장, 서가는 제외	제 재 목	
○ 경대, 화장장, 나전칠기, 자개, 포함	''	
○ 티테이블 및 상을 포함 ----- × 회의용 대형테이블, 사이드테이블 유리판만 올려놓은 탁자등은 제외	''	
○ Single, double, Twin 침대 모두 조사 ----- × 철재 침대 제외	''	
○ 자개, 나전칠기제 포함	''	
○ 설겅이대, 조리대, 가스레인지대등으로 분리시켜 수량 파악 ----- × 벽장·후드관 및 철재 제외		
○ 서랍장(단스), TV대, 전축대, 비디 오대 등 조사		
○ 부엌용 찬장만 조사 (싱크대 위에 설치되는 찬장 포함)	''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3201209	공공건물용목재가구 (公共建物用木材家具)	백만원	교회·강의실·도서실등 공공건물에서 사용되는 가구
3201309	가정용내장가구 (家庭用内櫥家具)	백만원	탁자와 의자가 1 set 로 된 응접가구
3201409	차량용내장가구 (車輛用内櫥家具)	백만원	

중분류 34.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소분류 341 .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사업체에서 사용되는 단위는 「연」이다. 그러나 조사단위는 「M/T」임에 유의.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교회용 벤취·탁자·교탁, 회의용 테이블등 조사		
○ 가정 및 사무실등에서 사용되는 소파·소파용탁자 모두 조사		
○ 타 용도의 가구와 구분하여 차량에 쓰이는 것만 조사		자동차 Seat

※ 단위환산

1 연 = 500 매 × 종이 1 매의 중량

1 매 : 가로 (1.091 m) × 세로 (0.788 m)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4110100	펄 프	M/T	목재를 기계로 갈아서 만든 쇠목펄프와 목재를 짧게 절단한 칩에 약품을 섞어서 만든 화학펄프
4110200	신문용지 (新聞用紙)	M/T	인장강도가 높고 잉크가 잘 흡수되도록 제작한 종이
4110300	백상지	M/T	일명 모조지, 화학펄프만으로 제조한 고급인쇄용지
4110400	중질지 (中質紙)	M/T	쇠목펄프에 화학펄프 30~40%를 배합 제조한 중급 인쇄용지
4110500	아트지	M/T	일명 안료도공지. 광물성의 백색 또는 담색안료를 지면에 입혀 만든 종이
4110600	크라프트지	M/T	가성소다와 황하나트륨의 혼합액에 넣은 후 고온저압을 가해 얻은 황산염 펄프를 원료로 한, 질기고 두터운 황토색의 종이
4110700	박엽지 (薄葉紙)	M/T	얇은 종이의 총칭으로 평균 40g/m ² 이하의 것
4110809	화선지 (畫宣紙)	매	일명 서예지. 붓으로 그림이나 글을 쓰는 선지류의 하나로 수제지임.
4110900	판지 및 판지상자 (板紙 및 板紙箱子)	M/T	판지원지로 판지상자를 제작할 수 있도록 만든 마닐라, 고휘표백, 기타등의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쇄목, 감색쇄목, 황산표백, 소다, 용해, 식물성 등의 쇄목 및 화학 펄프를 조사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펄프(고지, 형겹등) 제외 	소 나 무, 참 나 무, 활 엽 수, 침 엽 수, 황 산, 가 성 소 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갱지포함 	화 학 및 쇄 목 펄 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지포함 	화 학 펄 프	
	쇄 목 펄 프, 화 학 펄 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트지, 광택지, 바라이트지 등 조사 		달력, 엽서등 원색판 인쇄
	화 학 펄 프	중포장 및 일반포장 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본, 등사, 절연, 차봉지등의 각 원지와 담배용지등 조사 	화 학 펄 프	사전, 성서 및 타자 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판선지등 각종 선지류 포함 	화 학 펄 프, 닥 나 무	
	판지원지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4110910	판 지	M / T	판지 또는 상자
4110920	판 지 상 자	M / T	

조 사 범 위	원재료	용 도
<p>○ 판지만을 생산하는 사업체의 경우 판지제품을 조사하고 판지를 생산하여 상자까지를 만드는 사업체의 경우 생산은 판지를, 출하에서는 판지자체를 출하하는 것과 상자로 출하하는 것을 합하여 조사</p> <p>※ 판지 100M/T를 생산하여 80M/T는 상자를 만들어 출하하고 20 M/T는 판지 자체로 출하할 경우 생산 100 M/T 출하 100 M/T (80+20)</p> <p>· 단 본품목에서 판지를 재투입으로 보지않음</p>		
<p>○ 판지를 구입하여 상자를 만드는 사업체의 판지상자를 조사</p> <p>※ 판지 100 M/T를 구입하여 상자 80 M/T를 생산하고 50M/T를 출하할 경우 생산 80 M/T 출하 50 M/T 재고 30 M/T</p>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4111000	골 판 지 원 지 (골板紙原紙)	M / T	골판지를 만들 수 있게 제작한 종이 제품
4120100	골 판지 및 상자	천㎡	골판지 상자를 제작할 수 있도록 만 든 종이제품 또는 상자
4120200	크라프트지포대 (布 袋)	천매	크라프트지를 3~6겹으로 하여 만든 포대
4120300	위생용식품용기 (衛生用食品用器)	M / T	종이로 만든 각종음료 및 식품의 일 회용 용기
4120409	지 관 (紙 管)	Kg	방적사, 어망사, 농업용필름, 화장지, 신 문용지 등을 감을 수 있게 만든 것

조 사 범 위	원재 료	용 도
○ 라이나원지 (A.B.K원지), 중심지 조사	고 지 펄 프	골판지 및 상자
○ 골판지원지를 구입하여 골판지만을 생산한 업체는 골판지를, 골판지를 생산하여 상자를 만드는 업체는 상자를 조사 ※ 골판지원지를 생산, 골판지 및 상자를 만드는 업체는 골판지원지가 재투입이 됨	골판지원지	
× 골판지를 구입 상자만을 만드는 업체는 제외		
× 크라프트지가 아닌 백화점쇼핑백 등은 제외		시멘트, 곡물, 약품등의 포장재
○ 종이로 만든 컵, 접시, 우유 및 유산균 발효유등의 각종 용기 (카톤 팩)		
× 콘, 얼음과자등의 포장용기와 프리마통, 단순인쇄 및 코팅만 하는 것은 제외		
× 종이류 이외의 재료로 제작된 것은 제외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4190100	종 이 벽 지 (壁 紙)	천㎡	
4190200	위생용종이제품	M / T	
4190300	금 속 박 지 (金 屬 箔 紙)	M / T	일반 지류에 금속광물(알루미늄, 주석, 아연등)을 吹付 또는 금속박을 합해서 만든것
4190400	사무기기용지 (事務器機用紙)	M / T	사무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만든 사무용지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링크러스타 포함 ※ 갈포벽지는 2140600 (직물벽지)로, 순비닐벽지는 5600300 (플라스틱장 판 및 벽지)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지를 구입하거나 자체생산하여 만 든 종이기저귀, 종이타월등의 제품 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은박지등을 조사 × 금은박 또는 박지를 구입 접착제 로 단순히 접촉하는 것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시트지, 복사지, 천공용카드, 자동기록지, 전신 및 텔레타이프지 를 조사 		

소분류 342. 인쇄, 출판 및 관련사업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4210100	일 간 신 문 (日刊新聞)	천부	신문사에서 매일 발행하는 신문
4210200	정 기 간 행 물 (定期刊行物)	천권	주간, 월간, 계간등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각종 잡지류
4210300	서 적 (書籍)	백만원	판에 관계없이 일반출판사 및 국정교과서에서 발행되는 책자
4210400	일 반 인 쇄 물 (一般印刷物)	연	정기간행물, 서적등 원고를 받아 임가공료를 받고 인쇄한 것과 기타 일반적인 인쇄물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p>× 비일간신문(주간신문, 학습지, 학보, 사보, 협회지등)은 일반인쇄물로 조사</p>		
<p>○ 교과서, 참고서, 학술지, 문학기, 전문지, 대중소설, 어린이그림책등</p> <p>※ 자체 인쇄시설을 갖추고 있는 출판사는 일반인쇄물과 서적을 조사한다.</p>		
<p>×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서적등은 인쇄소에서 일반 인쇄물로 조사</p>		
<p>○ 팜프렛, 악보, 지도, 연하장, 어린이그림, 포스터 및 그림복사물, 주식·채권등의 유사권리증서를 포함</p> <p>※ 인쇄소에서 원고를 받아 인쇄하여 만든 서적류는 서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일반인쇄물로 조사한다.</p>		
<p>× 지폐, 우표 제외</p>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4210500	노 트	천권	
4210600	앨 범	천권	사진, 우표, 화폐 등을 보관할 수 있게 엮은 것

중분류 35. 화합물과 화학, 섬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소분류 351. 산업용 화합물 제조업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황산, 가성소다는 지정품위로 환산 조사

가. 황 산

35%, 40% 등으로 생산되며 지정품위 98%로 환산 조사

나. 가성소다

40%, 46%, 97% 등으로 생산되며 지정품위 100%로 환산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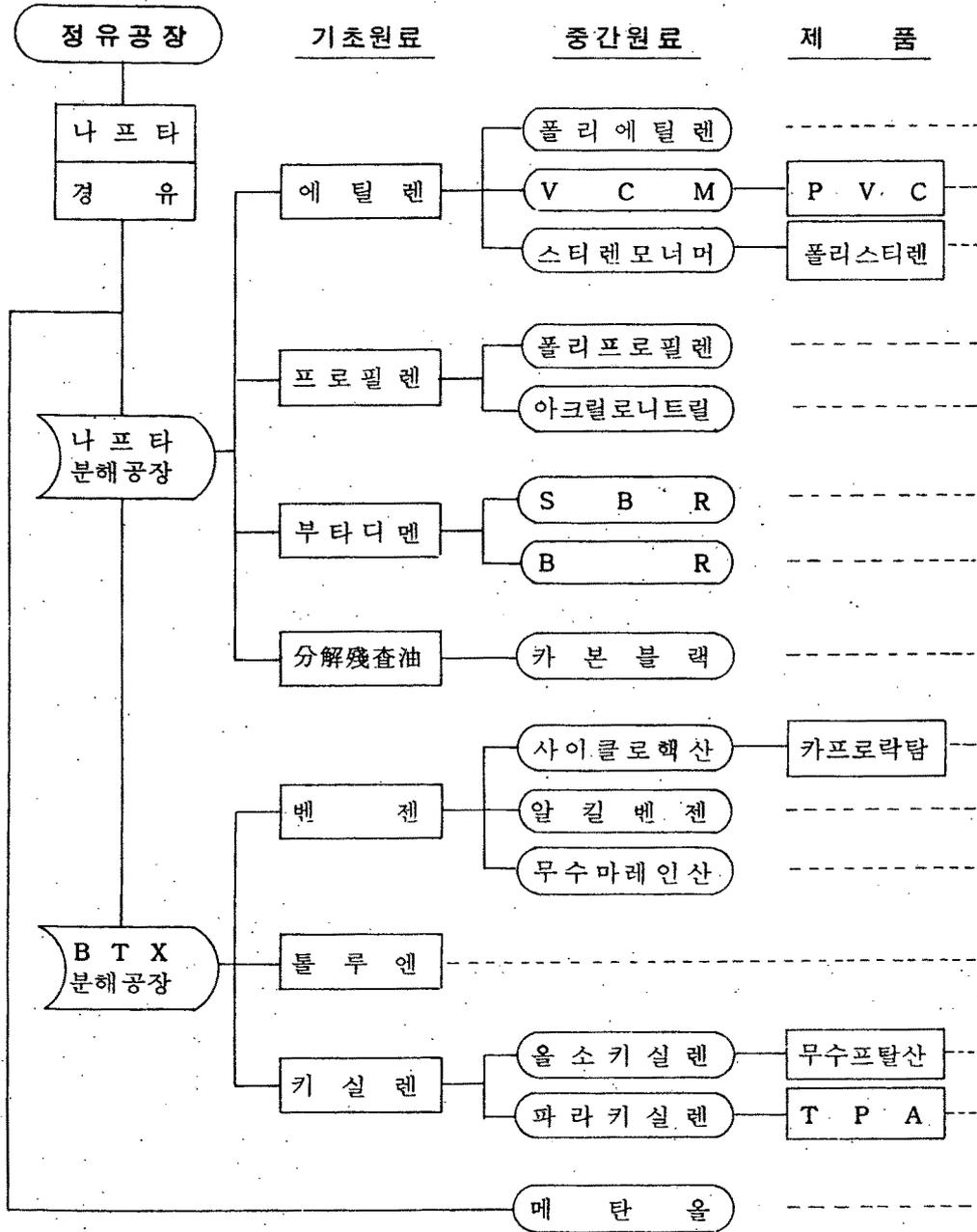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X 수첩, 다이어리, 장부책, 스케치북 제외		
X 학생졸업앨범등 내용물을 인쇄한 것 은 제외		

※ 환산요령

예 : 40 % 황산 250M/T를 생산하였다면,

$$\frac{40}{98} \times 250 = 102 \text{ M/T} \dots\dots\dots \text{실생산량}$$

2. 농약을 생산하는 사업체는 비수기때 황산, 가성소다등을 생산하는 경우가 있으니 생산여부 확인조사
3. 나프타생산업체에서는 석유화학의 기초원료인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키실렌등을 생산하니 재투입 및 제품조사누락에 유의
4. 특히 화학제품은 타제품제조나 촉매제, 원료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재투입조사에 누락없도록 유의



계 열 도 (지 정 품 목)

주 용 도 품 목

- 합 성 수 지 : 농업용필름, 전선피막, 각종상품의 포장재
- 합 성 수 지 : 파이프, 관, 모노름, 실내내장재
- 합 성 수 지 : 전기용품, 케이스, 건축재, 완구, 식기
- 합 성 수 지 : 필름, 성형제품, 합성섬유, 대형용기 및 식기
- 합성수지원료 : 아크릴수지, 아크릴릭섬유
- 합 성 고 무 : 타이어, 신발, 산업용 고무제품
- 합 성 고 무 : " " "
- 고무제품원료 : 타이어, 공업용 고무제품
- 합성섬유원료 : 나일론섬유, 수지
- 합성세제원료 : 각종 합성세제, 살충 및 살균제
- 화 공 약 품 : 합성수지도료, 가소제
- 합성수지원료 : 우레탄수지, 가소제, 염료, TNT
- 화 공 약 품 : 가소제, 도료
- 합성섬유원료 : 폴리에스테르섬유, 늑음테이프
- 화 공 약 품 : 포르말린, 접착제, 용제, 의약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110100	에틸렌 (Ethylene)	M/T	二重結合을 갖는 탄화수소의 하나인 不飽和化合物(올레핀탄화수소). 석유화학공업의 가장 중요한 1차원료로 무색의 可燃性기체이며 꽃향기같은 냄새가 나는 물질
5110200	프로필렌 (Propylene)	M/T	불포화화합물에 속하는 물질로 석유화학공업의 1차원료
5110300	부타디엔 (Butadiene)	M/T	일명 폴리에틸렌탄화수소. 불포화화합물의 하나
5110400	벤젠 (Benzene)	M/T	芳香族化合物의 기본물질로 가연성 무색 유독액체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p>○ 化工用, 重合用 조사</p> <p style="text-align: center;">重合</p> <p>※ 에틸렌 $\xrightarrow{\hspace{2cm}}$ 폴리에틸렌</p> <p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width: 100%;"> 단위체 (Monomer) 중합체 (polymer) </p>	나 프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합성수지원료</u> 폴리에틸렌, 스티렌 모너머, VCM • <u>합성섬유원료</u> 산화에틸렌 • <u>화공약품원료</u> 에탄올, 아세트알데 히드
<p>○ 化工용, 중합용 조사</p> <p style="text-align: center;">중합</p> <p>※ 프로필렌 $\xrightarrow{\hspace{2cm}}$ 폴리프로필렌</p>	나 프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합성수지원료</u> 폴리프로필렌, 산화 프로필렌 • <u>합성섬유 및 수지원료</u> 아크릴로니트릴 • <u>화공약품원료</u> 옥탄올, 부탄올
	나 프 타	합성고무(SBR, BR) 의 원료
<p>○ 공업약품 및 溶濟用 조사</p> <hr/> <p>× BT (벤젠 + 톨루엔), BX (벤젠 + 키 실렌) 같은 화합물은 제외</p>	나 프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합성섬유원료</u> 싸이클로hex산 • <u>합성세제원료</u> 알킬벤젠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110500	톨 루 엔 (Toluene)	M/T	톨루올이라고도 하며 메틸벤젠에 해당됨. 무색의 액체
5110600	키 실 렌 (Xylene)	M/T	키실올이라고도 하며 디메틸벤젠에 해당
5110700	염화비닐모너머 (V C M)	M/T	지방족계 석유화학유도물질. 염화비닐의 單量體 (고분자화합물을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할 때 그 단위가 되는 화합물)
5110800	에틸렌글리콜 (E G)	M/T	지방족계 석유화학유도물질. 단맛과 吸濕性이 있고 粘度가 높은 무색의 액체
5110900	폴리프로필렌글리콜 (P P G)	M/T	지방족계 석유화학유도물질
5111000	아크릴로니트릴 (A N)	M/T	지방족계 석유화학 유도물질. 향긋한 냄새를 가진 폭발성, 가연성의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합성수지원료</u> 무수마레인산, 페놀 • <u>화공약품원료</u> 아세톤
	나 프 타	TDI 원료 (우레탄수지의 원료), 폭약, 염료, 수지, 농약, 가소제
○ 혼합, 올소, 파라키실렌을 포함	나 프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올소키실렌</u> : 무수프탈산의 원료 • <u>파라키실렌</u> : TRA의 원료
	에 틸 렌	PVC 수지의 원료
○ 모너, 디, 트리에틸렌글리콜을 포함	에 틸 렌	폴리에스테르섬유 및 수지, 부동액의 원료
× 폴리에틸렌글리콜은 제외		
	산 화 프 로 필 렌	우레탄수지의 원료 (플라스틱스폰지와 단열재 등 원료)
	프 로 필 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합성수지원료</u> ABS, AS, 아크릴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무색유독액체
5111109	초 산 에 틸	M/T	
5111209	옥 탄 을	M/T	일명 2에틸헥실알콜
5111300	스티렌모너머 (S M)	M/T	방향족계 석유화학유도물질
5111400	T D I	M/T	방향족계 석유화학유도물질. 녹는점 (MP)이 12 °C이며, 동결기 고체, 하철기는 액체상태로 무색투명하며 유 독함.
5111500	페 놀 (Phenol)	M/T	일명 石炭酸 (C ₆ H ₅ OH). 방향족탄화수소핵의 수소원자를 水酸基 로 置換한 방향족히드록시화합물을 일 반적으로 페놀(類)이라 함.
5111600	무 수 프 탈 산	M/T	기둥모양의 프탈산을 열을 가하면 탈 수되어, 바늘을 묶어놓은 것 같은 형태 (純白鈦狀)로 된 결정체
5111700	테 레 프 탈 산 (T P A)	M/T	성질이 다른(異性體) 프탈산과 이소 프탈산의 화합물인 백색의 결정체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수지 <u>합성섬유원료</u> 아크릴계섬유
	질산, 황산	
	폴리프로필렌	DOP 가소제의 원료
	에틸렌	합성수지인 폴리스티렌의 원료
	DNT, 염소, 톨루엔	폴리우레탄 스폰지등 발포성제품의 원료
○ 수산기의 수에 따른 1가페놀, 다가페놀(2가, 3가페놀. 일명 폴리페놀)등을 조사	벤젠	페놀수지등의 원료
	키실렌	가소제의 합성재료, 도료의 원료
	키실렌	폴리에스테르섬유, 녹음테이프의 원료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111800	카 프로 락 탐 (Caprolactam)	M/T	
5111900	알 킬 벤 젠 (Alkyl Benzene)	M/T	벤젠의 수소원자를 1~6개의 알킬기 를 가진 탄화수소류의 하나. 무색투 명한 액체
5112009	싸 이 크 로 핵 산	M/T	탄소가 주성분으로 함유된 즉 有機溶 劑로 석유냄새가 나는 무색流動性的 액 체
5112109	사 카 린 원 료	M/T	O.T.S.A(Ortho Toluene Sulfon Amide)
5112200	페 놀 수 지	M/T	페놀류과 포름알데히드를 酸이나 알카 리로 축합시켜 얻는 熱硬化性플라스틱
5112300	폴 리 우 레 탄	M/T	熱可逆性폴리부가형플라스틱
5112400	폴 리 에 틸 렌 (P E)	M/T	열가소성플라스틱. 에틸렌을 중합시켜 만든 투명 또는 반투명 고체
5112410	저밀도폴리에틸렌 (L D P E)	M/T	고압법에 의해 만들어짐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싸이클로 헥산	나이론섬유 및 수지의 원료
	벤젠	합성세제, 계면활성제 농약의 원료
	벤젠	
× 가소제원료인 P.T.S.A는 제외	톨루엔, 암모니아, 염화술포산	
○ 산성의 노볼락(분말), 알칼리성의 데졸(액상) 포함.	페놀, 포름 알데히드	전기절연재료, 기계, 농 기구의 부품, 톱니바퀴, 사무용품
	벤젠, 톨루엔, 싸이클로 헥산	폴리우레탄 폼(Foam), 레 저, 우레탄고무, 우레탄 도 료 및 발포성형, 압출 및 사출 형등 제품 및 접착제의 원재료
	에틸렌	
		필름, 포장재, 시트, 전선피복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112420	고밀도폴리에틸렌 (H D P E)	M/T	저밀도보다 結晶性이 크고 硬度, 強度, 耐熱性이 우수한 반면 加工性이 떨어짐.
5112500	폴리프로필렌 (P P)	M/T	가장 가벼운 열가소성 플라스틱.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투명하며 내열성, 引張強度가 크며 전기적성질이 크다.
5112600	폴리스티렌 (P S)	M/T	열가소성플라스틱. 스티렌의 중합체로 투명성, 電氣的性質, 熱流動性, 熱安定性, 着色性이 우수함. 충격에 약한 결점이 있음.
5112700	A B S 수 지	M/T	열가소성플라스틱.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의 공중합체로 유백색이며 견고함.
5112800	P V C 수 지	M/T	일명 폴리염화비닐. 열가소성플라스틱.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不燃性이며 백색 무취함.
5112900	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 (不飽和 PET 樹脂)	M/T	열경화성플라스틱 (FRP 수지). 불포화기를 갖는 선형폴리에스터와 비닐단량체와의 중합으로 얻은 수지
5113009	요소 수 지 (尿 素 樹 脂)	M/T	열경화성플라스틱. 요소와 포름알데히드를 축합시켜 얻은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각종용기, 파이프
	프로필렌	가정용품(용기, 식기, 세면기등), 필름, 배관용파이프, 의자
○ 발포성 스티렌포함	스티렌모너머	착색의 식기 및 완구, 장신구, 일용잡화, 라디오, 냉장고등의 케이스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	전기용품, 주택자재, 문구류, 용기, 구두굽 및 충격보강제제품
※ 중합도 기준에 따라 경질(가소제 함유량 29%이하), 연질(가소제 함유량 30~50%)이 있음.	VCM	전선피복, 모노륨, 호스, 시트, 전선관, 수도파이프, 밸브등 건설자재 파이프
	텔레프탈산, 에틸렌글리콜	FRP 제품(의자, 욕조, 단추, 선박등)
	요소, 포르말린	약품류의 용기의 캡, 전기부품, 단추, 식기,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것. 무색투명하여 임의로 착색이 쉬우나 내수성이 약하고 건조하면 균열하는 결점이 있음.
5113109	에폭시드수지	M/T	열경화성 플라스틱. 1분자속에 에폭시기를 두개이상 갖는樹脂狀물질 및 그 에폭시기의 開環重合에 의해서 얻어진것. 황갈색의 粘調한 액체 또는 고체.
5113209	실리콘수지	M/T	일명 규소수지.
5113309	포화폴리에스터수지	M/T	일명 선형포화폴리에스터 수지.
5113400	S B R	M/T	스티렌과 부타디엔을 공중합시켜 만든 합성고무의 하나. 유백색 및 갈색의 원료고무로 천연고무보다 약하고 부드럽다.
5113509	포름알린	M/T	포름알데히드의 40% 수용액
5113609	스테아린산	M/T	유지류의 주요성분을 이루는 지방산에 액체산을 제거하여 만든 무취의 백색 고체.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접착제
※ 저분자량, 고분자량이 있음.		접착제(저분자량), 폐놀수지등 타수지와 병용해서 도료에 사용 (고분자량)
	규소 (실리콘)	
	텔레프탈산, 에틸렌글리콜, DMT	폴리에스터섬유, 필름 (Pet 필름)
○ BR을 포함. × NBR, NCR, IIR, 스테레오 SBR제외.	스티렌, 부타디엔, 가소제	타이어, 신발창, 고무 벨트
	메탄올	접착제, 요소수지
	우지	고무공업, 금속문구, 안정제, 화장품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113709	구 연 산 (枸 櫞 酸)	M/T	밀감등 과실류에서 짜내거나 당류를 어떤 종류의 미생물로 발효시켜 만든 것.
5120100	카 바 이 드	M/T	일명 탄화칼슘. 생석회와 탄소를 반응시켜 만든 회색의 굳은 결정체. 물을 가하면 아세틸렌가스가 발생.
5120209	황 산 (黄 酸)	M/T	일명 유산. H_2SO_4 및 그 수용액을 말하며, 보통 수용액인 경우가 많음. 무기화학공업제품중에서 가장 넓은 용도를 가진 것으로 빛도 맛도 없는 끈끈한 기름모양의 액체
5120309	5 산화인 및 인산	M/T	황인을 태우면 5산화인이 발생되며, 여기에 물을 혼합하여 얻어지는 일련의 산.
5120409	과 산 화 수 소 (過 酸 化 水 素)	M/T	황산수소암모늄의 전해에 의해 양극에 생기는 페르옥소 2 황산암모늄용액을 감압증류하여 얻는 것으로 기름모양의 무색액체, 산화작용이 강함.
5120509	탄 산 칼 슴	M/T	석회암, 대리석등으로 산출하며 칼슘염의 수용액에 탄산알칼리를 가하면 무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청량음료수 제조
	생석회	아세틸렌 가스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 기준 한산조사. 발열황산(올레움) 포함. 	유황, 인광석	비료, 폭약, 염료, 금속 정련, 농약, 의약, 세제, 식품공업, 방직, 제지등 에 사용
	황인	금속표면처리제, 인산염 및 조미료 제조에 사 용
		종이, 섬유등의 표백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질탄산칼슘, 경질탄산칼슘, 胡粉을 포함조사. 	석회석, 생석회,	화공약품 및 형광물질 제조.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색침전으로 얻어진다.
5120600	가 성 소 다 (苛性소다)	M/T	일명 수산화나트륨 (NaOH). 즉, 흔히 양잿물이라 하며, 수용액은 강한 알칼리성을 나타내며 물에 녹을 때 많은 열이 발생.
5120700	가 소 제 (可塑劑)	M/T	일명 수산화칼리 (KOH), 수산화칼륨 또는 가성칼리라 함. 플라스틱, 고무, 도료등 고분자물질에 첨가하여 유연성, 가공성, 접착성을 좋 게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질을 만 들게 하는 무색, 무미, 무취, 무독한 물질.
5120800	소 다 회	M/T	일명 탄산나트륨 (Na ₂ CO ₂), 또는 탄 산소다. 無水鹽을 속칭 소다회로 불리우며 흡 습성이 있는 무색의 분말로 물에 잘 녹고 수용액은 강한 알칼리성을 나타 냄.
5120909	탄 산 칼 륨	M/T	일명 탄산칼리 (K ₂ CO ₃). 공기중에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을 갖 고 있으며 물에 녹으면 강한 알칼리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소다회, 염화칼슘	
○ 용액상태 포함. ※ 100% 기준 환산	소다회, 식염, 석회	조미료, 비스코스인건사, 염료, 향료, 농약, 의약품, 종이 및 펄프제조 에 사용.
○ 프탈산에스테르, 옥시산에스테르, 폴리에스테르계, 에폭시계 등 각종 가소제류 포함. ※ 고분자물질 : 분자량이 큰 화합물의 총칭 (합성고무, 합성섬유, 합성수지, 단백질, 섬유소)	무수프탈산, 에틸렌글리콜, 무수말레인산	합성수지류, 접착제, 호스, 휴잉검등에 사용.
※ 수용액을 32℃로 결정시키면 10水鹽(속칭 양젯물)이 됨.	암모니아, 석회석, 식염	아미노산공업, 비누, 유리, 가성소다, 제지, 염색, 의약품
	염화칼륨	브라운관유리, 크리스탈유리, 카메라렌즈의 제조.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성을 나타냄. 고체의 백색결정체.
5121009	염 산 (鹽 酸)	M/T	일명 염화수소산. 염화수소의 수용액을 말함..
5121109	규 산 소 다 (硅 酸 소 다)	M/T	일명 규산나트륨이며 보편적으로 메타 규산나트륨(Na_2SiO_2)을 가르킴. 물에 쉽게 녹으며 수용액은 강한 알 칼리성을 나타낸다.
5121200	산 소 (酸 素)	천 m^3	적정온도에서 산소에 높은 압력을 가 하여 그 부피를 줄인 압축산소와, 영 하 118°C 이하의 온도 및 50 기압이 상의 압력으로 냉각, 압축하여 얻은 약간 푸른색을 띤 액체산소로 대별됨.
5121300	아 세 틸 렌 가 스	M/T	아세틸렌계 탄화수소의 하나인 카바이 드(탄화칼슘)에 물을 가하여 얻은 무색의 독성이 있는 기체
5121400	화 이 트 카 본	M/T	규소화합물의 하나로 무색, 무해의 백 색 고운 분말.
5130100	염 료 (染 料)	M/T	일명 타르염료라고도 함.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용 염산, 진한염산 조사 ※ 약국에서 파는 염산은 의약품으로 조사. 	염화수소	생철의 脫朱錫, 염화물, 의약, 색조류등의 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르토규산나트륨 (Na_4SiO_4), $\text{Na}_2\text{Si}_2\text{O}_5$, $\text{Na}_2\text{Si}_4\text{O}_9$ 등의 각종 규산나트륨 포함. 	소다회, 2 산화규소 가성소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축산소를 기준으로 조사 ※ 액체산소 1ℓ당 압축산소 약 800ℓ입 (0℃ 1기압상태 기준) 	공기, 물	용접, 용산, 열원, 폭약, 의료, 공기정화등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체 아세틸렌 제외. 	카바이드	
	규산소다, 황산	백색 합성고무의 밝은색 보강제, 합성수지, 인쇄 잉크, 도료, 농약, 접착제등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성염료인 직접, 산성, 염기성, 반응성, 유기용제용해, 형광백, 유기합 	벤젠, 톨루엔,	섬유, 종이, 목재, 유지 등의 착색용.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130200	안 료 (顔 料)	M/T	물, 기름등에 녹지않는 백색 또는 유색의 분말로 소정의 빛갈을 내게 하는 착색제.
5130210	무 기 안 료	M/T	무기물질인 주로 금속의 산화물로 되며 유기안료와 비교하여 대체로 열안정성이 좋으며 색이 변하지 않음.
5130220	유 기 안 료	M/T	유기화합물인 안료로 물에 가용성 또는 불용성인 염료를 금속염류등의 침전제로 불용성으로 한것(레이크계 안료) 등. 무기안료와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착색력이 크고 색상이 선명함.
5130230	조 제 안 료	M/T	유기, 무기안료를 용도에 맞게 조제한것.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성유기등의 모든 염료를 포함.	염산, 소다 회, 메탄올, 가성소다	
○ 무기안료, 유기안료, 조제안료를 세 분조사.		플라스틱, 고무, 도료, 인쇄잉크등 제조에 사 용.
○ 백색인 연산화물, 티타늄화이트, 아 연화등과 적색의 산화철, 청록색의 프러시안, 울트라마린 및 황적색의 적연 및 황연등의 안료를 조사.		
○ 아조레이크계 안료, 불용성 아조계 안료, 푸타로시아닌계 (블루, 그린계) 안료등 조사.		
○ 조제유기, 무기안료, 조제법량 및 유약, 마스타 벤티등 기타 조제안 료 조사.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140100	아세테이트섬유	M/T	재생섬유(반합성섬유). 전기절연성이 뛰어나며 투우(tow)는 담배필터용으로 대량 사용.
5140200	폴리아미드섬유	M/T	합성섬유의 하나. 일명 나이론섬유
5140300	폴리에스터섬유	M/T	합성섬유의 하나. TPA와 EG를 중합하여 만든 것으로 섬유의 대표적 성질인 강신도가 나이 론 다음으로 우수.
5140400	아크릴릭섬유	M/T	합성섬유의 하나. 양모와 가장 비슷한 모양과 성질을 가진 폴리아크릴계섬유.
5150100	요소비료 (尿素肥料)	M/T	질소의 함유량이 높은 질소질비료의 하나로 흡습성이 강한 속효성의 중성 비료.
5150200	복합비료 (複合肥料)	M/T	비료 3요소인 질소, 인산, 칼리중 두 가지 이상의 성분량을 조정하여 혼합 한 대표적인 화학비료.
5150309	유안비료 (硫安肥料)	M/T	일명, 황안비료. 황산과 암모늄을 반응시켜 만든, 백색 의 질소질비료.
5150409	유기및규산질비료 (有機硅酸質肥料)	M/T	동식물의 유체 및 분뇨와 조미료 생 산시 그 부산물로 만든 비료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장섬유, 장섬유토우, 단섬유 조사	아세톤후 레이크	
○ 장섬유, 단섬유 조사	카프로락탐	
○ 장섬유, 단섬유, 장섬유토우 조사	TPA, EG	
○ 장섬유, 단섬유, 토우 조사.	아크릴로 니트릴, 암모니아	
○ 제 1, 2, 3, 4종의 복합비료를 조사	암모니아, 탄산가스	전답
	암모니아, 과진 산석회	전답, 원예, 인삼
	암모니아, 황산	
○ 2종복합비료에 유기질을 10%이상 가한 3종의 비료(경북에서만 규산질비료조사)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160100	농 약 (農 藥)	M / T	乳劑, 粒劑, 粉劑, 液劑, 水和劑로 된 농약.
5160110	살 충 제	M / T	해충을 구제, 사멸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유기합성살충제.
5160120	살 균 제	M / T	미생물을 죽이는 작용을 갖는 약제.
5160130	제 초 제	M / T	잡초를 고사시키는 작용을 하는 약제
5160209	살 서 제	M / T	취약

소분류 35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의약품의 증감사유기재사 부호와 함께 해당 약제명을 기입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를 세분조사. ※ 의약품제조업체에서 만드는 모기, 파리, 바퀴벌레등 살살용 살충제는 의약품으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젠, 키실렌, 염산, 가성소다 	농작물의 병충해 방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용, 원예용 조사. (진디물, 각종 나방류, 벌구, 깍지벌레, 응애, 토양해충약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성살균제 포함. 수도용, 원예용 조사. (중자소독, 도열병, 흰가루병, 검은무늬병, 탄저병, 갈록병, 흰빛마른잎병, 더덩이병, 곰팡이병, 부탄병, 노균병약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녹시초산형, 유기산형, 산아미드형, 페놀제등으로 된 제초제 조사. 		

< 약제명 >

신경계용약, 해열진통제, 소화기계용약, 비타민제, 자양강장제, 혈액 및 체액용약(수액제, 지혈제 등), 항감염제, 기타

2. 세탁비누, 화장비누는 제조시 무게로 조사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210100	바 니 스	ℓ	일반적으로 니스라 불림. 광택 또는 무광택의 투명한 막을 만드는 유성 도료의 하나
5210200	에 나 멜	㎏	안료와 유바니스를 녹여 혼합한 전색 제 도료. 페인트보다 광택이 풍부하며 미끄럽고 건조가 빠르다. 녹을 막고 열에 견 디는 힘이 크다.
5210300	페 인 트	㎏	
5210310	유 성 페 인 트	㎏	안료와 보일유를 혼합해서 만든 유색 도료의 하나. 된반죽(堅練), 種, 調合페인트로 분류 됨
5210320	수 성 페 인 트	㎏	
5210400	락 카	ℓ	용제형으로 막이 질기고 강한 광택을 내는 투명도료의 하나. 건조시간이 빠르며 보통 셀룰로즈락카 및 섬유소 도료를 말함.
5210500	신 너	㎏	일명 복합솔벤트. 도장작업에 적합한 유동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묽게 하는 용제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精, 油바니스(스파·골드·코팔·보 디등 바니스) 등을 조사	톨루엔, 키 닐렌, 무스 프탈산, 산 화티탄, 수 리	나무의 투명도장
	무스프탈산 글리세린, 안료, 수지, 톨루엔, 키 일렌	차량, 선박, 건축등의 내부, 철재가구, 기계, 전기기기등에 도장
○ 방취, 방부페인트등 기타 유성도료 포함	무스프탈산 글리세린, 산화티탄, 스티렌모너 머	건축, 선박, 교량등 주로 옥외구조물에 도 장
○ 고품 수성페인트 포함	산화티탄, 스티렌모너 머	옥내용 도장
○ 아크릴, 하이솔리드, 우제탄락카 및 락카에나멜을 조사	무수프탈산 수지, 톨루 엔, 키실렌, 가소제, 산 화티탄	가구, 완구, 항공기, 차량, 선박에 도장
※ 정유공장에서 생산되는 솔벤트는 5300500으로 조사	솔벤트, 키 실렌, 톨루 엔	페인트, 바니스등의 희 석용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220100	의 약 품 (醫藥品)	백만원	인간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및 예방에 쓸것을 목적으로 제조된 모든 약제품
5230100	세 탁 비 누	M / T	
5230200	화 장 비 누	M / T	
5230300	합 성 세 제 (合 成 洗 劑)	M / T	비누 이외의 합성 표면활성제를 말한다.
5230310	세 탁 용 세 제	M / T	
5230320	주 방 용 세 제	M / T	식품, 주방집기등을 세척
5230400	계 면 활 성 제 (界 面 活 性 劑)	M / T	
5230500	치 약	M / T	
5230600	화 장 품 (化 粧 品)	백만원	각 제품의 내용물을 만들어 해당 용기에 담은 제품
5230610	화 장 수	백만원	투명한 알카리 및 산성화장수와 유액상의 乳化性화장수로 대별됨
5230620	화 장 크 림	백만원	유액과 같이 기름과 물로 되어있는 含水油性, 無油性, 중성크림으로 대별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모든 약제품 포함		
× 공업용비누(알루미늄, 칼슘, 망간, 아연 등의 비누) 제외	규산, 우지가성소다, 규산소다회	
○ 액체, 종이, 칼리, 부상비누를 포함		
○ 연성, 경성세제 포함	가성소다, 향료, 알킬벤젠, 규산소다	
○ 세탁용 표백제 포함		
○ 유이온, 양이온, 비이온, 양성 등의 계면활성제 및 조제계면활성제 등을 포함	벤젠, 소다회, 스테아린산, 가성소다, 메탄올, 글리세린	린스, 합성세제, 샴푸, 비누 등 제조
× 가루치분제외		
○ 기초, 색조, 모발등의 화장품 및 기타 화장품등 전 화장품을 포함		
○ 밀크로션, 쓰킨로션의 유연 및 수렴 화장수 모사		기초화장
○ 콜드, 영양, 크린싱, 바니싱, 표백등의 크림을 조사		기초화장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230630	삼 주 및 린 스	백만원	일반적으로 불투명한 乳液狀 및 젤리 상의 모발 세척제
5230640	기 타 화 장 품	백만원	
5290100	공 업 용 접 착 제 (工業用接着劑)	M / T	합성접착제로 완제품인것
5290200	다 이 나 마 이 트	M / T	니트로글리세린을기제(劑)로 하여 만 든 폭발약
5290300	카 본 블 랙	M / T	천연 및 석유가스등을 불완전 연소시 켜 생긴 그을림을 긁어모은 분말로된 흑색안료의 하나. 착색력, 내열, 내광 성 및 내약품성이 크다.
5290400	인 쇄 잉 크	kg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면도크림, 헤어크림은 기타 화장품으로 조사		
○ 분말, 액체, 젤리등의 모든 샴푸와 헤어린스, 헤어토닉등의 양모제를 포함		모발화장
○ 화장수, 화장크림, 샴푸 및 린스를 제외한 모든 화장품을 조사		
× 별도품목의 포르말린, 수지류와 동식물계(아교, 제자틴등) 접착제는 제외	합성고무, 나이론, 폴리우레탄 고무	
○ 교질, 분상, 혼합등의 다이나마이트를 조사	글리세린, 초안	광석의 채굴 및 채취, 갱도굴진, 일반토목
○ 고무용, 안료용의 하드카본, 소프트 카본등을 조사	나프타, 콜타르	타이어, 인쇄잉크, 도료, 건전지, 고무의 착색 및 보강제
○ 철판, 요판, 형판, 등사, 그라비아등의 잉크를 조사	염료, 카본블랙, 산하티탄, 톨루엔, 대두유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290500	P V C 안정제 (安定劑)	M/T	PVC 수지 배합시 첨가되어 열안정과 가공성을 높여주는 첨가제
5290609	초안폭약 (硝安爆藥)	M/T	일명 질산암모늄 폭약, 폭발성의 감도가 둔하고 폭발온도가 낮다.
5290709	방수액	M/T	
5290809	고무노화방지제 (老化防止劑)	M/T	고무에 섞어 넣거나 표면에 칠하여 산화를 방지케 함으로써 고무의 수명을 연장케 함. 자갈색, 담황색, 담갈색등의 액체, 후레이크, 분말로 되어있음
5290909	가황촉진제 (加黃促進劑)	M/T	

소분류 : 353. 석유정제업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각종 유류의 1BbL (바렐)은 158,984 ℓ 임

$$1BbL = 0.158984 \text{ kl} \quad \therefore BbL \times 0.158984 \text{ kl}$$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말 (무기 및 금속성검제), 액상 (액상유기 복합안정제 및 유기식계 안정제) 등의 안정제 를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면처리제, 배합제, 자외선 안정 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산암모늄유제 폭약, 슬러리 폭약 포함 		공업용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민계, 알킬페놀계 등을 조사 		합성고무 및 합성고무 라텍스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염기성, 누연성 등의 각 촉진제 를 포함 		고무제품, 신발, 전선, 접착제 등에 사용

2. 윤활유는 소분류 354 에서 조사. 윤활기유와 다름에 유의

3. 프로판가스 $1t = 10.88 \text{ BbL} = 1,729 \text{ kl}$

부탄가스 $1t = 12.28 \text{ BbL} = 1,968 \text{ kl}$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300100	젯 트 유	kl	연소 속도와 지속성이 크다. 연소중 탄소를 퇴적시키지 않으며 잔류탄소가 없다. 다른 기름에 비하여 규격이 엄격함
5300200	휘 발 유 (揮 發 油)	kl	
5300300	나 프 타	kl	원유를 증류하여 얻는 탄화수소의 혼합물로, 증류할 때에 발생하는 하나의 석유유출물(溜分). 무색 또는 담황색으로 인화, 폭발성이 가장 높다.
5300400	등 유 (燈 油)	kl	점도가 낮고 휘발성은 낮으나 인화점이 높다. 잘 정제되어 색상이 밝고 안정성이 있다.
5300500	솔 벤 트	kl	일명 백정
5300600	경 유 (輕 油)	kl	등유 다음으로 유출되며 엔진에 필요한 충분한 착화성과 적당한 점도를 가진 담황색 또는 담갈색의 기름
5300700	중 유 (重 油)	kl	휘발유, 등유, 경유에 비하여 점도가 높고 침전물과 유황분이 많은 흑색의 기름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민수용 (Jet A1), 군수용 (JP4) 및 항공기용 가솔린을 조사	원유	젯트기관 및 항공터빈 연료
○ 직류, 개질, 분해등 가솔린을 조사	원유	자동차연료
	원유	석유 및 비료화학의 원료
○ 백등유, 다등유 조사	원유	가정용, 동력용연료
※ 복합솔벤트(신너)는 5210500 으로 조사	나프타	신너, 세정, 의약품의 원료
○ 경질, 중질의 경유를 조사	원유	대형차량, 기관차, 건설기계 등의 고속디젤엔진 및 보일러 등의 연료
○ 방카A, B유 포함	원유	저속디젤엔진, 발전, 가스터빈 등의 연료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300800	방 카 C 유	kl	중유의 하나로 방카A, B유보다 침전물, 유황분이 더 많은 흑색의 저질 기름
5300900	L P G	kl	일명 석유액화가스
5300910	프 로 판 가 스	kl	탄화수소의 하나인 프로판(C ₃ H ₈)을 주성분으로한 석유계 가스
5300920	부 탄 가 스	kl	부탄(C ₄ H ₁₀)을 주성분으로한 석유계 가스
5301000	석 유 아 스 팔 트	kl	일명 석유역청(피치). 흑갈색 및 흑색을 띤 접착성 고체 또는 반고체 물질의 역청물
5301100	윤 활 기 유 (潤滑其油)	kl	정유공정의 감압증유공정에서 나오는 殘渣油의 하나(Mineral 오일:광유)
5301209	조 경 유	kl	코크스 제조시 발생하는 코크스 오븐 가스를 정제한것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원유	※ 용도(국내 연간) 발전 : 45%, 산업 : 35%, 난방 : 20%
× 도시가스, 천연가스(LNG)는 제외	원유	
※ 1t = 10.88 BbL = 1,729 kl		취사용
※ 1t = 12.28 BbL = 1,968 kl		내연기관용
○ 스테이트(도로포장설), 불로운(슬라브지붕, 외벽, 지하실등의 방수 및 방습용)등의 아스팔트를 조사 ※ 역청질혼합물(아스팔트에 골재를 섞은것)은 5400300 아스콘에서 조사	원유	도로포장용아스팔트제품, 배관피복, 건축물, 포장지의 방수 및 방습용
※ 윤활유는 5400200에서 조사	원유	윤활유의 원료
	코크스오븐가스	석탄계의 벤젠, 톨루엔, 키실렌 원료

소분류 : 354 .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400100	연 탄 (煉 炭)	M / T	
5400200	윤 활 유	kl	윤활기유에 적당한 광물유를 첨가 배합한 윤활재
5400300	아 스 콘	M / T	일명 역청질혼합물 또는 가열혼합 가열포설 업층포장용 혼합물이라함 아스팔트에 골재를 혼합한 것
5400400	석 탄 코 크 스	M / T	유연탄(일명 粘結炭)을 가열하여 휘발분을 제거한 多孔質의 고체연료
5400500	콜 타 르	M / T	일명 광물타르. 유연탄을 가열 코크스를 만들때 그 건류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끈기가 있는 흑색 또는 갈색의 액체(상온에서 고체)
5400600	콜 탈 핏 치	M / T	콜탈의 증류 잔유물(석탄액화와 잔유물). 즉 코크스 생산 과정에서 부생되는 콜탈을 계속 증류시켜 남은 찌꺼기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무연탄 향토석회석	
※ 윤활기유는 5301100 에서 조사	윤활기유	기계가 맞는 부분의 마컵제거용
	아스팔트 골재	도로포장
× 석유코크스 제외	유연탄	연료, 제철, 주물카바 이드 제조에 사용
× 석유핏치제외	유연탄	카본블랙, 염료, 석탄계 벤젠등의 원료, 콜탈 핏치
	콜탈	알루미늄제련, 전주봉 제조, 코크스점결용등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400709	절삭유 (切削油)	ℓ	철이나 스틸등의 재질을 자를 때 칼날을 보호하기 위하여 쓰는 윤활제
5400809	아스팔트루핑	M / T	루핑 (Roofing) 원지에 아스팔트를 침투 또는 피복한 것

소분류 : 355 . 고무제품 제조업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510100	자동차타이어	천 본	
5510200	모터싸이클타이어	천 본	
5510300	자전거타이어	천 본	
5510400	자동차튜브	천 본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윤활기유, 에밀존, 솔 러블	
○ 아스팔트펠트(Felt) 포함	루핑원지, 아스팔트	건축재료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승용차, 버스, 트럭등의 소형 및 대형차량과 특수차량의 타이어를 조사	생고무, 합성고무, 타이어코드 사, 카본블 랙	
○ 각종 소·중·대형 모터사이클용 타 이어를 조사		
× 어린이용 삼발자전거, 리어카용 타이 어 제외		
○ 자동차타이어에 준함.	생고무, 합성고무, 카본블랙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510500	모터사이클튜브	천 본	
5510600	자 전 거 튜브	천 본	
5510700	재 생 타 이 어	본	드래드가 낮고 닳아없어져 디자인이 없어진 경우 표면의 고무만을 갈아 붙여서 신품과 동일한 성능을 만든 타이어
5590100	고 무 장 화 및 우 화	천켄레	발목, 무릎, 허벅다리까지 올라오는 고무제품의 신발
5590200	운 동 화 (運 動 靴)	백만원	표피등 모든 재질이 직물, 나이론, 합성피혁, 순가죽등에 관계없이 만든 경기 및 일반보행용 신발
5590300	운 동 화 부 품	백만원	
5590400	고 무 호 스	km	
5590500	고 무 벨 트	천PLY	면사 및 합성섬유 직물에 고무를 발라 성형하였거나 양면에 손상을 막기 위하여 커버고무를 씌운 것으로 이음매 없는 환상벨트
5590600	고 무 스폰 지	㎡	氣泡 - 있는 쿠션용 · 고무제품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모터싸이클용 타이어에 준함		
○ 자전거용 타이어에 준함		
○ 자동차용 타이어에 준함		
○ 우기, 수렵, 취사, 작업, 공업용 등 및 방한화를 조사	생고무, 합성고무, 면직물	
○ 전문경기용인 축구화, 야구화, 럭비 축구화 등 포함 ※ 신사화, 등산화, 랜드로바등 가죽제 신발은 324에서 조사		
○ 운동화의 갑피, 바닥창, 중창만을 조사	합성고무	
○ 총고무, 편상식, 布捲式등의 고무호스 를 조사	생고무, 재 생고무, 아 연화, 카본 블랙면직물, 합성섬유사	소방, 양수, 일반송수, 함마착압기, 압축공기 통과, 오일용 등
○ ㅍ, V형, 톱니바퀴형 등 각종의 벨트를 조사	고무호스 참조	동력전달 및 운반용
※ 플라스틱물질을 원료로한 스폰지는 5600600 플라스틱스폰지로 조사	생고무, 합성고무, 아연화	주로 운동화 속장에 사용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590709	산업용고무제품	백만원	
5590809	피 임 용 기 구	천다스	
5590909	고 무 장 갑	천컬레	

소분류 : 356 . 달리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600100	플 라 스틱 필 림	M / T	각종 수지를 투입하여 만든 1차 제 품의 필름(원단)
5600200	플 라 스틱 레 저	M / T	천이나 종이등에 주로 염화비닐수지를 바른 것
5600300	플 라 스틱 장 판 및 벽 지	M / T	
5600400	플 라 스틱 관 및 봉	M / T	각종 용도의 관(파이프) 및 봉
5600500	스 치 로 플	M / T	
5600600	플 라 스틱 스폰 지	M / T	산업용 발포성형 제품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12개를 1다스로 환산 조사		
○ 가정용, 산업용, 의료용 등 조사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필름(원단) 및 시트 조사 × 필름(원단)을 구입 재단 절단하여 만든 각종의 제품(봉투등 포장재)은 제외	합성수지	농업용 및 식품, 각종 물품등의 포장재
	염화비닐	
○ 일반 및 특수장판(거실 이외의 실내바닥에 펴는 것)과 순수 플라스틱 벽지를 조사	합성수지	
○ 배수, 배전, 이음등의 관 및 봉과 프로파일을 포함	PVC 수지	
○ 건축용(평판)과 각종 물품 충격방지용 스티로폴을 조사	발포폴리 스티렌	건축, 전기전지기기 및 각종 물품 충격 방지용
○ 연질로된 스폰지류와 경질의	PPG, TDI,	자동차 의자, 보통의자,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600700	F R P 제 품	M / T	강화플라스틱(내구성, 특수보강제를 첨가한 엔지니어링플라스틱등)중 FRP로만 만든 제품
5600800	전 기 전 자 기 기 용 케 이 스	M / T	산업용의 전기전자제품 플라스틱 케이스와 가정용의 전기 전자기기용 제품의 플라스틱케이스
5600900	플라스틱자동차부품	M / T	플라스틱으로 만든 각종의 부품
5601000	플라스틱주방용품	M / T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 및 주방용 등의 각종 제품
5601100	플라스틱포장용기	M / T	플라스틱으로 만든 중·소·대형용기류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발포제품 (주로 단열재) 조사	MDI	침구류, 의복등의 쿠션 과 건축물의 단열재
○ 욕조, 정화조, 의자, 물탱크, 화학약품 탱크, 헬멧등 조사 ----- × 타제품의 한 부분품으로 투입되는 것은 제외 (예 : 우산대)	불포화 폴 리에스터수 지 (FRP)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사무기기, 복사 기, TV, VTR, 전화기, 선풍기, 오디오, 녹음테이프의 케이스만 조사 ----- × 어떤 제품속에 투입되는 부분품은 제외	합성수지	
○ 식기 및 소형의 용기 (밥·찬그릇, 대접, 접시등 식기류와 물통등의 소 형용기)와 칼, 수저, 포크, 주걱, 양 념통 등의 주방용품만 조사 ----- × 세면기, 목욕통, 비누갑, 쓰레기통등의 위생용기는 제외	합성수지	
○ 콘테이너박스 (주류, 음료등 병박스), 고기상자, 육묘상자, 막걸리병, 화장품 용기, 세제용품용기, 물통 및 합지박 (일명 고무대야), 각종의 물품용기	합성수지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601200	플 라 스틱 신발	M / T	합성수지를 압축, 압출하여 만든 신발
5601300	플 라 스틱 포대	M / T	합성수지를 입단 또는 접합하여 만든 포대 및 백
5601400	라 미 네 이 팅	M / T	<p>합성수지 필름 및 지류에 인쇄를 해서 Sealant 성질이 있는 필름을 접착한 것 또는 합성수지를 코팅한 것</p> <p>※ 조사요령</p> <p>한 사업체에서 라미네이팅 생산공정이 여러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1 차, 2 차 ...) 공정단계별로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1 차공정제품 출하...) 생산은 1 차공정을 거친양만을 조사하고 (2 차, 3 차등은 제외) 출하는 공정 단계별 출하량을 합산조사한다.</p>
5601509	플 라 스틱 창문 및 문틀	M / T	

조 사 범 위	원재료	용 도
○ 합성수지만을 투입하여 만든 신발류 (주로 솔리퍼)	합성수지	
○ 비료포대, 화공약품포대 등 조사 × 합성수지를 사출하여 편직기로 짠 것은 2140100 직물포대로 조사		
× 라미네이팅한 것을 구입 또는 주문생산한 것을 받아 봉투만을 제작하는 것과 인쇄만 하는 것은 제외	나이론필름, OPP 필름, PET 필름, 복합필름, 지류	<p>※ 용도 : 진공, 냉동포장 및 기타 포장재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론 필름 : 햄류, 조림류, 오징어등 진공포장 ○ OPP // : 라면류, 제과류등 ○ PET // : 농약, 보향성제품포장(커피등 향내가 나는 식품)등 ○ 복합 // : 스낵류

중분류 3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소분류 361 . 도기, 자기제조업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도자식기, 위생도기제품은 도기로 된 제품만 조사한다. 즉 플라스틱이나 화이버토기(오지그릇)등 유사제품은 반드시 제외하여야 한다.
2. 도자기는 진흙의 종류와 구울때의 온도에 따라 질그릇, 돌그릇, 사기그릇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토기제품은 6100509 에만 조사한다.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6100100	가정용도자식기 (家庭用陶器食器)	천 개	사기로된 식기류
6100200	위생용도기제품 (衛生用陶器製品)	개	도자기류로서 건물에 반영구적으로 장치할 수 있는 위생처리기구
6100300	애 자 (磚 子)	M / T	송배전용 지지물인 전주에 전력선을 연결하는데 쓰이는 도기제품
6100400	도 기 장 식 품 (陶器裝飾品)	천 개	수종의 광석을 분해 혼합하여 형체를 이루어 구어낸 장식용 제품

3. 위생용 도기제품(화장실의 싱크)와 금속제싱크와는 특히 구분하여 조사한다.

4. 도기장식품은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만 조사한다.

즉, 인간문화재의 골동품은 조사하지 않는다.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기, 자기로 된것 ○ 부엌 및 식탁용식기, 대접 	백토, 규사, 고령토, 장석, 납석, 규석, 석고	주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변기, 대변기, 욕조, 세면기, 기타 위생도기제품 <p>※ 프라스탁 욕조는 5600700에서 조사</p>	백토, 점토, 장석, 고령토, 납석, 석고, 규사 및 규석	위생용 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핀애자, 현숙애자, 고압애자, 저압애자, 특고압애자, 기타도기절연체 ○ 애자류와 애관자기로된 전기절연제품 모두 조사 	토석, 점토, 장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기형, 술병형, 인물형, 꽃병형, 동물형 및 도기완구 모두 포함 <p>× 골동품은 제외</p>	점토, 백토, 규사, 장석, 백운석, 고령토, 규석, 아연화 및 산화티타늄	실내 및 실외장식용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6100509	토 기 제 품 (土 器 製 品)	M / T	각종 토기제품의 용기
6100609	싱 크	개	도자기류로써 건물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구

소분류 362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판유리, 안전유리는 2mm로 환산 조사한다.

예 : 규격 : 3mm 판유리를 200상자를 생산한 업체가 있다면 규격 2mm로 환산하므로 $3/2 \times 200 = 300$ 으로서 조사표에는 300 C/S로 기입하고 포장(상자=C/S)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환산한다.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6200100	유 리 관 (琉 璃 管)	M / T	○ 일명 판유리·유리로 된 관
6200200	판 유 리 (板 琉 璃)	C / S	판상(板狀)유리 $1C/S = 9.29 m^2$
6200300	거 울 판 유 리	kg	판유리를 구입 진공상태의 제조를 거쳐 거울판유리를 만듦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일명 항아리, 뚜배기용 용기, 토기 화분 오지물을 입힌것도 포함	점토, 백토	김치독, 간장독, 뚜배기 용기, 화분토기
○ 화장실의 세면기보다 대체로 큰것	백토, 점토 장석	위생처리장치

즉, $1C/S = 100 \text{ 평} = 100 S/F = 9.29 \text{ m}^2$ 환산한다.

2. 브라운관용 유리 (6200500)는 앞면과 뒷면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조사
요령은 (앞면+뒷면) ÷ 2 조사한다.

3. 식품 및 음료병 유리병, 약 및 화장품용 유리병, 유리식기 및 유리
주방용품은 M/T으로 조사한다.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소다관유리; 붕규산 관유리, 연관유리 및 백열전구와 샵들리에용 발브유지 등 조사	규사, 규석, 소다회 파 유리	형광전구유리, 실험실 기구, 장식전구용
○ 이형 관유리, 보통관유리, 무늬관유리, 망유리, 플로트유리	규사, 소다 회, 백운석, 파유리, 망 초, 규사, 석회석, 장 석	건물용, 창유리, 형유리
○ 각종 거울관유리 모두 조사	관유리	거 울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6200400	안 전 유 리 (安 全 琉 璃)	C / S	유리에 특수가공하여 압력, 충격, 온도 변화에 대한 강도를 높인 유리
6200500	브라운관용유리	천 개	내전압성, X선차폐성, 방사선 비색색상이 뛰어나게 만든 TV브라운관 켈유리
6200510	흑백브라운관용유리	천 개	
6200520	칼라브라운관용유리	천 개	
6200600	식품및음료용유리병	M / T	각종 식품 및 음료수병
6200700	약및화장품용유리병	M / T	의약품, 위생 및 화공약품을 넣는데 쓰이는 용기
6200800	유리식기및유리주방용 용	M / T	가정용 유리주방용품
6200900	유 리 설 유	M / T	유리와 섬유의 합성체로서 내열성, 단열성, 내약품성 절연성이 강하다.
6201009	장식용유리제품	천 원	유리가공 장식제품 유리를 깎아 가공하고 색상을 입혀 만든 모조장식품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유리, 적층유리, 적층단열유리 × 복층유리 제외 	판유리	차량유리, 건물용 도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수상기용, CRT용 전자오락기구 	파유리, 규사, 규석, 소사회	TV용, CRT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병(소주, 맥주)음료수(사이다, 콜라)우유, 배지밀병 및 각종 음료병 	규사, 규석, 소다회, 파유리	유리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카스, 까스명수, 구론산병 각종 약병 및 화공약품병 	규석, 소다회, 석회석, 초석, 파유리, 형석	유리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식기, 유리컵, 유리술잔 포함 조사 × 유리재털이는 제외 	규석, 소다회, 장석, 망초, 파유리, 석회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섬유사 포함조사 	납석, 석회석, 붕광석, 파유리, 암모니아	건축용 내장재, 보강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형, 유리크리스탈 인물형, 꽃모양형, 조명에 장식으로 부착되는 것 	유리	장식제품

소분류 369.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은 형태에 관계없이 조사한다.
2. 콘크리트 전주나 콘크리트 파일은 그 규격이 매우 다양하지만, K.S 규격대로 제조하고 있으므로 K.S 제품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3. 흙관은 콘크리트관이나 석면 시멘트관과는 제조공정이 전혀 다르므로 포함 조사하지 않도록 한다.
4. 시멘트 제품은 성형시켜 양생에 들어간 시점, 판상 제품(석면 스투트)은 부서지기 쉬우므로 검사를 끝낸 시점을 생산시점으로 본다.
5. 석면 스투트는 다음과 같이 환산 조사한다.(두께는 환산하지 않음)

구 분	두께	가로	세로	환산 (㎡)
① 소골 스투트				
6 자	6.3 mm	720 mm	1,820 mm	1.3104
7 자	6.3 mm	720 mm	2,120 mm	1.5264
8 자	6.3 mm	720 mm	2,420 mm	1.7424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6910100	소성벽돌 (燒成벽돌)	천 개	점토를 주원료로 하여 소성한 벽돌
6910200	타 (Tile)	일 천 ㎡	건축물 내외장 및 치장용으로 쓰이는 도기류의 판재

구 분	두께	가로	세로	환산 (㎡)
② 대골 스투트				
6 자	6.3 mm	960 mm	1,820 mm	1.7472
7 자	6.3 mm	960 mm	2,120 mm	2.0352
8 자	6.3 mm	960 mm	2,420 mm	2.3232
③ 기와 스투트	6 mm	570 mm	1,050 mm	0.5985
④ 평 스투트	4.5 mm	910 mm	1,820 mm	1.6562
	6 mm	910 mm	1,820 mm	1.6562
	6 mm	1,200 mm	2,420 mm	2.904

6. 벽들에는 소성, 내화, 콘크리트벽돌이 있으므로 조사시 원재료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7. 건축자재용 석고판제품(석고보드)와 산업용 석면제품과는 쓰이는 용도에 따라 구별이 가능하므로 혼돈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조 사 범 위	원 재료	용 도
○ 보통벽돌, 오지벽돌	점 토	건축용자재
○ 외장타일, 내장타일, 바닥타일, 모자이크타일, 모두 포함	장석, 백토	건축용 내·외장재
× 판석, 인조판석, 프라스틱 혼합제품은 제외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6920100	시 멘 트 (포 오 틀 랜 드)	천M/T	시멘트 크랑커에 적당량의 석고를 가해 분쇄하여 제조함 적당량의 물과 혼합하여 조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콘크리트제품의 원재료
6920200	시 멘 트 크 링 커	천M/T	석회석과 점토를 분쇄 건조시켜 적당한 비율 4:1로 혼합하여 이를 다시 적당한 크기로 응고제조된 덩어리
6920300	프 라 스 터 (석 고) (石 膏) (Gypsum)	M/T	○ 석회질 광물(각종 비료의 부산물) 150℃ 이상 가열하면 가루가 됨 ○ 천연석고와 타공업에서 부산물로 얻어지는 화학석고
6920409	생 석 회	M/T	석회석을 적당한 크기로 파쇄하여 구운 백색 건조하며 알칼리성을 가진 광물 제품
6930100	석 면 스 레 트	천㎡	불연재로서 내열성이 우수하며 물이나 습기에 견디는 내수성이 강한 석면판
6930200	건축자재석고판제품 (석 고 보 드)	M/T	불연, 단열내장용 건축자재(석고보드)
6930300	레 미 콘	천㎡	시멘트, 물, 골재의 혼합된 굳지 않는 상태 콘크리트 반죽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종~5종 포틀랜드 시멘트 벌크, 백색, 고로 시멘트 ※ 내화시멘트는 6940200에서 조사 	시멘트크링커 철 광 석 철 암 석 고	
	석회석, 점토	각종 시멘트 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화학비료에서 부산물을 제거한 순수한 분말상태의 석고 	비료의 부산물	시멘트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석회는 조사에서 제외 	석 회 석 백 운 석	제강용, 비료, 농약용 토양개량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형, 합판형, 기와형 	시멘트, 석 면 유리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고보드, 아스칼, 아미텍스, 아스텍스, 석고텍스, 밤라이트, 나무라이트 모두 포함 	규산질석고 석회질석고 석면	건축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규격품 모두 포함 	시 멘 트 골 재	토목, 건축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6930400	콘 크 리 트 벽 돌	천 매	블록과의 차이는 그 크기에 있다. KS 규격 길이 190 ~ 210 mm 높이 90 ~ 100 mm 두께 100 ~ 210 mm
6930500	콘 크 리 트 블 록	천 매	시멘트, 골재, 물을 혼합하여 성형 양생한 것 KS 규격 길이 390 mm 높이 190 mm 두께 100 ~ 210 mm
6930600	흙 관	본	일명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소정의 틀에 조립된 철선을 넣고 회전하면서 혼합된 콘크리트를 넣어 성형한 다음 최고 65℃ 양생한 것
6930700	콘 크 리 트 전 주	본	시멘트와 골재를 섞어 철선과 철근을 내장하여 강도를 높여 굳힌 전주
6930800	콘 크 리 트 파 일	본	높은 압축 및 인장강도를 필요로 하는 말뚝으로 원심력을 이용하여 성형하고 60℃로 양생한다.
6930909	콘 크 리 트 문 틀	개	콘크리트 창틀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시 멘 트 골 재	건축, 토목용 자재
× 보도블록 제외	시 멘 트 골 재	건축자재, 토목용자재
○ 2.5 m 를 1 분으로 조사하며 반드시 열처리하여 양생하고 원심력에 의해 제조된 것만 조사 ----- × 콘크리트관, 석면스레트관, 도관, 토관 등은 제외	시멘트, 골재, 철선	상하수도관 농수로용 관으로 사용
○ KS 규격대로 조사	시멘트, 철 근 목 재	
○ 토목, 건축용으로 쓰이는 제품만 조사	시멘트, 골 재, 봉강, 철선	토목, 건축물 기초공사
○ 콘크리트 제품만 조사	시 멘 트 모 래	건물용 창틀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6940100	내 화 용 벽 돌 (耐火用벽돌)	M/T	요업, 보일러용, 용광로용 내화물
6940200	부 정 형 내 화 물 (不定型耐火物)	M/T	형태가 없는 내화물
6990100	석 면 제 품 (石綿製品)	kg	산업기계용(공업용)석면제품과 압면광석을 부수어서 열을 가해 섬유질을 생산함. 기계용 석면제품은 프레스나 압출기로 성형제품을 생산할 때 열방지효과로 쓰임
6990200	연 마 지 및 포 (研磨紙 및 布)	m ²	크라프트지 또는 천에 금강사를 접착한 것(일명 뼈뼈)
6990300	장식및기념석제품 (裝飾및記念石製品)	천 원	비석이나 석장식제품
6990400	건자재용석물제품 (建資材用石物製品)	천 원	건축 및 토목자재용
6990500	활 석 분 (滑石粉)	M/T	활석을 분쇄한 가루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석질, 점토질, 고알루미나질의 내화 벽돌 <p>※ 1 % = 330 매</p>	내화시멘트 내화골재 내화점토 고령토, 백운석, 납석, 규사및 규석	용광로, 단일내화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화시멘트, 내화골재 	내화시멘트 내화골재 내화점토	용광로, 단일내화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적석면, 석면혼합물 (석면이 50 ~ 100 % 이상 함유된 제품) <p>※ 건축자재석고판제품은 6930200 에서 (석고보드) 조사</p>	암면광석	산업용, 기계용, 보일러 배관용, 기계부품용, 금속피복용
	금강사, 크라프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석 및 석골동품, 석등 	대리석, 화강암	비석, 석기념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석, 화강석 	대리석, 화강암	건축자재용
	활 석	종이표백과 농약(분말) 제조용

중분류 37. 제 1 차 금속산업

소분류 371. 철 강 산업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철강제품은 그 형태와 두께 및 폭에 따라 품목이 다양하게 구분되므로 최종제품의 용도, 탄소함유량 물리적 성질 및 비철원소의 함유량에 따라 물량세분이 많으므로 조사에 유의하여야 한다.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7110100	선 철 (銑 鐵)	M / T	제강의 원료로서 용광로에서 철의 성분만을 뽑아낸 탄소함유량이 1.7%~6.7% (보통 3.5~4.5% 함유)인철
7110110	제 강 용 선 철 (製鋼用銑鐵)	M / T	
7110120	주 물 용 선 철 (鑄物用銑鐵)	M / T	
7110200	합 금 철 (合 金 鐵)	M / T	철에 망간, 규소, 크롬, 원소를 20~80%정도 함유시킨 철의 합금
7110210	망 간 철 (Ferro Manganese)	M / T	
7110220	규 소 철 (Ferro Silicon)	M / T	
7110230	규 소 망 간 철 (Silicon Manganese)	M / T	
7110240	기 타 합 금 철 (Others)	M / T	

- 2 철과 강의 구분은 탄소가 1.7%이상 함유한 것을 [철] 그 미만의 것을 [강]이라고 한다.
- 3 소분류 371 (제 1차 철강제품)은 재공품 상태의 것과 반제품 (중간제품)상태의 것과 출하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생산완료된 제품이 아니고 재공품 상태의 것은 재투입 관계는 무시하여야 한다.
- 4 봉강을 생산하는 업체가 일괄공정으로 마봉강을 생산할 경우 마봉강을 조사할 것. 이때 원래의 봉강은 조사하지 않는다.

조 사 범 위	원재료	용 도
○ 제강용 선철 (백선으로 치밀하며 단단하다)	철 광석, 고철, 적철광, 자철 광, 복철 광	압연제품, 단조물, 주물용, 제강용
○ 주물용 선철 (탄소가 높은외에 규소 0.3~3%정도 들어있다. 주물용선으로 주조된 제품이 주철 주물임. 기타 특수 주물용으로 가단주철용선, 구상혹연주물용선이 있음)		솔, 난로등의 가정용품과 수도용 주철관, 각종기계의 부품으로 사용
○ 망간, 규소, 크롬을 함유한 철	망간광석, 크롬광석, 규 석, 철	제강, 주강, 주물등의 탈산제, 탈유제, 원소첨가제용
○ 크롬철, 몰리브데늄철, 텅스텐철, 니켈 철 기타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7110300	강 (綱 塊)	M/T	탄소의 함유량이 선철보다 낮으며 제강로에서 만들어지는 용강을 주형에 주입하여 응고된 괴를 말하며 신축성이 적으나 단단하여 압연제품제조에 사용
7110310	압 연 용 강 괴	M/T	
7110320	단 조 용 강 괴	M/T	
7110400	주 (鑄 鋼)	M/T	주형에 용강을 주입하여 제조하기때문에 압연강재나 단조품에 비해 강의 강도를 가지면서 복잡다양한 형상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고 특히 조직이 균일하여 기계적 성질이 방향성이 없는것이 장점이고 수축율이 크기때문에 압탕과 열처리가 필요한 것이 단점이다.
7110410	보 통 강 주 강	M/T	
7110420	특 수 강 주 강	M/T	
7110500	슬 (Slab)	M/T	두툼한 강판제품
7110510	보 통 강 슬 랩	M/T	단면은 장방형으로 모서리가 둥근 일명 후강판
7110520	특 수 강 슬 랩	M/T	
7110600	블 (Bloom)	M/T	대형, 장방형, 단면은 정방향
7110610	보 통 강 블 룸	M/T	
7110620	특 수 강 블 룸	M/T	
7110700	빌 (Billet)	M/T	블룸을 소형으로 잘라놓은 것으로 굵은 장작형, 철봉형
7110710	보 통 강 빌 렛	M/T	
7110720	특 수 강 빌 렛	M/T	
7120100	봉 (棒 鋼)	M/T	강괴나 강반성품을 봉괴형태로 조강한 것 봉강을 가공하여 마봉강을 생산할 경우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압연용강괴, 고탄소강강괴 ○ 보통단조용강괴, 특수강강괴 	선철, 고철	압연강재나 단장품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강 주강 ○ 고탄소강 주강, 합금강주강 	고철, 선철	자동차부품 기계부품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께 50 ~ 90 mm 폭 350 ~ 500 mm 길이 1 ~ 5 m 	평강, 강괴	후판, 열연대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 130 mm 이상 ○ 단면 16.90 mm² 	각형, 강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 130 mm 이하 ○ 단면 16.90 mm² 		소형조강, 선재
	강괴, 빌렛	기계부품 소재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마봉강만을 조사할것 이때 원래의봉강은 조사하지 않는다.
7120110	보 통 강 봉 강	M/T	
7120120	특 수 강 봉 강	M/T	
7120200	철 근 (鐵 筋)	M/T	건축용 자재로 쓰이는 봉강의 일종
7120210	이 형 철 근	M/T	
7120220	원 형 철 근	M/T	
7120300	형 강 (形 鋼)	M/T	강반성품을 압연하여 그 모양을 용도에 따라 길게 늘린것
7120310	보 통 강 형 강	M/T	
7120320	특 수 강 형 강	M/T	
7120400	중 후 판 (中 厚 板)	M/T	두께 3mm 이상의 열간압연으로 만들어지는 강판
7120410	후 판 (厚 板)	M/T	
7120420	중 판 (中 板)	M/T	
7120500	열 연 박 판 (熱 延 薄 板)	M/T	두께 3mm 미만의 열간압연으로 만들어지는 얇게 늘려서 절단한 강판
7120600	열 연 대 강 (熱 延 帶 鋼)	M/T	열간압연으로 코일상태로 감긴것 두께 1.2mm~22.0mm 이상
7120610	열 연 광 폭 대 강 (熱 延 廣 幅 帶 鋼)	M/T	폭 550mm 이상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고 철	
○ 대형봉강, 중형봉강, 소형봉강		
○ 고탄소강, 합금봉강		
○ 봉강과 혼돈하기 쉬우나 원재료의 재질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이형철근, 원형철근만 조사	강괴, 강반성품, 고철	건축, 토목용자재
○ 대형, 중형, 소형, 보통강형강 및 강시판포함, T형, H형등 각형 포함	강괴, 강반성품, 대강	토목자재, 건축자재
○ 고탄소강, 합금강, 형강 및 강시판 포함		
○ 후판, 보통강, 고탄소강, 합금강 6mm 이상의 후판 150mm 이상의 극후판 포함	강반성품	일반구조용 조선용 프레임용
○ 3~6mm 중판		
○ 보통강 열연박판	열연대강	각종 판제품제조
○ 고탄소강 열연박판	강반성품	
○ 합금강 열연박판		
○ 보통강 열연광폭대강	강반성품	각종 판제품제조
○ 고탄소강 //		강관제조
○ 합금강 //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7120620	열연협폭대강 (熱延狹幅帶鋼)	M/T	폭 500 mm 미만
7120700	궤 조 (軌 條)	M/T	철도 및 광산레일
7120710	중 궤 조 (重 軌 條)	M/T	m 당 30 kg 이상
7120720	경 궤 조 (輕 軌 條)	M/T	m 당 30 kg 미만
7120800	냉연박판 (冷延薄板)	M/T	두께 3 mm 미만의 열간대강을 소재로 냉간압연하여 절단한 강판 표면이 균일하고 광택을 내는 강판
7120900	특수강냉연강판 (特殊鋼冷延鋼板)	M/T	니켈(Ni) 8~16% 크롬(Cr) 11~20%를 함유한 녹슬지 않는 성질을 가진 강판
7120910	스텐레스강판	M/T	
7120920	냉연전기강판 (冷延電氣鋼板)		규소 1~5%를 함유하는 합금강판으로서 전기적 성질이 뛰어난 제품
7121000	냉연대강 (冷延帶鋼)	M/T	냉간압연하여 코일상태로 감긴 상태의 강판
7121010	냉연광폭대강	M/T	폭 500 mm 이상
7121020	냉연협폭대강	M/T	폭 500 mm 미만
7121100	강 관 (鋼 管)	M/T	대강을 말아서 용접하여 만들거나 빌렛등 강편소재를 가열 압출하여 만든 강관
7121110	무계목강관	M/T	
7121120	전기용접강관	M/T	
7121130	아크용접강관	M/T	
7121200	선 재 (線 材)	M/T	철선의 2차제품을 만들기 위해 가늘게 하여 코일과 같이 말아 놓는것
7121210	보통강선재	M/T	
7121220	합금강선재	M/T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보통강 열연협폭대강, 합금강협폭대강, 고탄소강열연협폭대강		
× 제조부속품 제외	강괴, 강반성품	철도레일 광산 및 엘리베이터
○ 철도레일		
○ 광산레인, 엘리베이터레일		
○ 냉연박판 - 보통강 " - 고탄소강 " - 합금강	열연대강	전자제품 자동차 기계부품
○ 크롬, 니켈외에 몰리브덴 합금의 스테인레스 강판도 포함	크롬, 니켈 강반성품	공장설비부품 및 건축물 벽면, 도구, 식기제조
○ 두께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	강반성품, 강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제조에 사용
○ 냉연광폭대강 ○ 냉연협폭대강	열연대강 강반성품	전자제품, 자동차 및 기계부품
× 강관을 구입해서 피복을 입힌 사업체는 조사에서 제외	강괴, 대강 강반성품	배관용, 보일러용, 토목배관용, 농업용
○ 보통선재, 연강선재, 경강선선재	강반성품 강 괴	철선, 용접봉, 와이어로프, 못, 볼트, 너트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7121300	철 강 선 (鐵鋼線)	M/T	선재를 강도나 제품의 용도에 따라 신선 가공한것
7121310	흑 철 선	M/T	
7121320	아 연 도 철 선 (亞鉛鍍鐵線)	M/T	
7121330	경 강 선 (硬鋼線)	M/T	
7121340	P.C 강 선	M/T	
7121350	피 아 노 선	M/T	
7121360	스 텐 레 스 선	M/T	
7130100	주 철 관 (鑄鐵管)	M/T	주물용 선철, 고철을 주형에 주입하여 만든 관
7130110	직 관	M/T	
7130120	이 형 관	M/T	
7130200	회 주 물 (回鑄物)	M/T	특정한 규격이 없이 쇳물을 녹여부어 일정한 형태로 서서히 냉각하여 만든 주물로 깨지기 쉽다.
7130300	강 주 물 (鋼鑄物)	M/T	선철 및 고철을 제련하여 주형에 주입 하여 만든 제품
7130400	가 단 주 물 (可鍛鑄物)	M/T	일반주물을 60시간이상 가열한후 일정한 주형에 주입하여 급냉시켜 만든 주물 임. 표면이 흰색이다.
7190100	단 조 물 (鍛造物)	M/T	단련된 강으로서 압연강재나 주강으로 는 그 형상과 강도에서 부적당하기 때 문에 프레스나 햄머로 인장강도를 높인 강제품
7190110	보 통 강 단 조 물	M/T	
7190120	특 수 강 단 조 물	M/T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흑철선, 소둔선 ○ 아연도철선, 울타리철선 ○ 경강선, CHQ선 ○ P.C 강선 ○ 피아노선 ○ 스텐레스선 	선 재	와이어로프, 선스프링 양산살대, 못, 볼트, 너트, 용접봉, 철망, 철조망
	주물용 선철, 고철	상수도, 하수도용 배수관
○ 구상흑연주물 제외	고철, 선철	기계부분품
○ 강주물, 합금강주물	강주물, 합금강주물	기계부분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단주물: 표면강도 높은 칠드(chilled) 주철 및 강의 중간성질을 갖게한 것 ○ 구상흑연주물: Mg, Ce 등을 첨가하여 강인성을 부여한것 	고철, 선철	농업용기계, 열쇠, 철도의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강 단조물 ○ 고탄소강 단조물, 합금강단조물 	강반성품 봉 강	원동기, 철도차량, 차축, 기계부품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7190200	석 도 강 판 (錫 鍍 鋼 板)	M / T	박판의 양면에 주석을 도금한 철판 으로 내식성이 강하다. 일명 양철이라 함
7190300	아 연 도 강 판 (亞 鉛 鍍 鋼 板)	M / T	박판에 아연을 도금하여 녹이 쓰는 것을 방지하게 만든 강판 일명 합석이라 함.

소분류 372. 비철금속산업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은과 금은 제련하는 업체만 그 대상이 되며, 광업소에서 생산하는 은광석은(0300300)으로 조사, 즉 전기동을 생산하면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은과 금은 (7210600, 7210700)으로 각각 조사한다.

예 : 동광석 1M / T에서 대략 전기동 30%, 금 3g, 은 70g이 생산되고 있다.

2. 「동」제품은 동봉 및 동합금봉, 동판 및 띠, 동관 및 중공봉 등 세가지로 나누어졌으므로 특히 품목의 개념에 유의하여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도금 석도강판 ○ 열지도금 석도강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연대강, 냉연대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관용기, 통조림용관, 각종 관제조 및 병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롬도금강판 니켈강판 제외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연도 강판 - 전기도금 ○ " - 열지도금 ○ " - 착색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 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판, 방화벽, 자동차용, 건축내장재,

3. 알루미늄샷시바는 알루미늄괴를 압출하여 만드는 제품으로서 건축용샷시의 원자재가 되므로 건축용샷시와 혼동하여 조사하면 안된다. 또 알루미늄샷시바를 재투입하여 절단하고 조립하면 건축용샷시가 되는것이므로 알루미늄샷시바를 생산하여 건축용샷시를 만드는 사업체는 건축용샷시를 생산한 만큼 알루미늄샷시바는 재투입량으로 조사해야 한다.
4. 나동선의 경우는 나동선 자체로도 출하되며, 케이블선으로도 출하되므로 재투입량과 출하량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5. 텅스텐 분말은 금속텅스텐 분말 (Tungsten Metal Powder; W-P) 만 조사하고, 탄화텅스텐분말 (Tungsten Carbide Powder; W-C) 및 기타 텅스텐분말은 조사해서는 안된다.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7210100	전 기 동 (電氣銅)	M/T	전기로 정련한 적색에 가까운 구리빛의 동괴 전성과 연성이 대단히 풍부하며 전기와 열의 양도체
7210200	알 루 미 늬 괴 (Aluminium塊)	M/T	제련된 은백색의 유연괴 전성과 연성이 풍부하다.
7210300	연 괴 (鉛塊)	M/T	납덩어리로 전기나 열에 약하며 유연하므로 가공처리에 편리하여 타금속과 가공처리가 용이하고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갖고 있어 내부를 보호하는 성질이 있다.
7210400	아 연 괴 (亞鉛塊)	M/T	청백색의 금속광택을 가진 금속으로 습기중에 강한 염기성 있으며 탄산아연의 피막이 생겨 내부를 보호한다.
7210500	주 석 괴 (朱錫塊)	M/T	일명 낫쇠 원소기호 (Sn) 은백색의 금속광택을 내며 전성 연성이 풍부함.
7210600	은 괴 (銀塊)	kg	은백색의 귀금속으로 전성과 연성이 풍부함.
7210700	금 괴 (金塊)	kg	전연성과 내산성이 매우 큰 노란색의 귀금속
7220100	알 루 미 늬 합 금 (Aluminium合金)	M/T	알루미늄에 다른 금속을 혼합하여 내식성과 전기 및 열의 양 전도체로 만들거나 더 단단하게 만든것.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지금 1종~4종 모두 조사 ○ 동쇼트, 해갑봉(동찌꺼기) 등은 제외 	<p>황동과 휘 동광, 적동 광</p>	전선, 활판, 합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 알루미늄괴 포함 	<p>보오크 사 이트</p>	알루미늄합금계, 알루미늄판, 봉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Pb) 1종~6종을 모두 조사 	<p>방연광, 유 산연광, 백 연광</p>	축전지, 활자제조 및 합금화학공업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Zn 1~6종 모두 조사 ○ 재생 아연괴 포함. 	<p>섬아연광, 규아연광 아연정광</p>	동합금, 아연도금, 건전지, 안료, 방부제등의 원료
	<p>모래주석, 산 주석</p>	식기, 도금, 양철원재료, 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도 99.9% 	<p>황동광, 방연광</p>	장식품, 화폐, 도금화학 및 의료용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도 99.9% 	//	장식품, 도금, 화폐, 금박의 치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물용, 압출용, 재생합금 포함 	<p>알루미늄, 구리, 아연, 망간</p>	자동차부품, 기계 부품 제조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7220200	아 연 분 (亞鉛粉)	M/T	아연가루(1종에서~6종까지 모두 조사), 철물산화방지제
7230100	동봉및동합금봉 (銅棒및銅合金棒)	M/T	전기동의 제2차제품인 동의 봉과 동합금봉
7230200	나 동 선 (裸銅線)	M/T	전기동을 압출하여 균일하게 뽑은 구리선
7230300	동 관 및 띠	M/T	전기동의 제2차제품인 동의관과 띠
7230400	동 관 및 중공봉 (銅管및中空棒)	M/T	전기동의 제2차제품인 동의관
7230500	알 루 미 늬 선 (Aluminium線)	M/T	알루미늄으로 균일하게 뽑은 알루미늄선
7230600	알 루 미 늬 판 (Aluminium板)	M/T	알루미늄 만든 은백색의 유연한 판으로 연성과 전성이 풍부하다. 가볍고 열전도와 전기전도도 크다.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말가루 	아연피	철물산화방지용, 방부제, 도금착색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동봉, 동환강, 각강, 육각강, 팔각강, 반원강, 이형강 및 ㄱ, ㄷ, I, T, H형강등 포함. ○ 동합금제품(황동, 청동, 포금동: 케사 황동, 단조황동, 네블황동, 고강도황동)도 포함조사 	전기동, 동 설	건축자재, 기구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선중에 피막을 입히지 않는 순수한 구리선만 조사 ○ 신선기를 통하여 뽑은 선은 굵기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 조사 	//	전선, 통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관 1종, 2종, 동띠를 조사 	//	건축용, 전기소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관과 속은 비었으나 양끝이 막혀 있는 중공봉을 포함. 	//	보일러용관, 기계공구 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루미늄로드(Rod)를 가지고, 신선기를 통하여 가늘게 뽑은 선은 굵기에 관계없이 모두 조사 	알루미늄피	전기기기부품, 고압송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께에 관계없이 알루미늄판 제품 모두 조사 ○ 특종 1~3종 기타제품을 포함. 	알루미늄피, 알루미늄 고철	건축자재부품, 자동차부품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7230700	알루미늄샷시 바 (Aluminium sash bar)	M/T	알루미늄피를 압출기에 통해 압출하여 만든 기다란 막대
7230800	알 루 미 늄 관 및 중 공 봉 (Aluminium管 및 中空棒)	M/T	알루미늄샷시의 제 2 차제품인 알루미늄 관
7230909	아 연 판 , 띠 (亞鉛板, 띠)	M/T	아연의 제 2 차제품인 아연판과 띠
7231000	연 봉 및 연 선 (鉛棒 및 鉛線)	M/T	납의 2 차제품인 연봉 및 연선, 납의 2 차제품
7290100	텅 스텨 분 말 (텅 스텨 粉末)	M/T	산화텅스텐을 수소로 환원하여 얻은 고순도 분말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형, 이형 모두 조사 단, 알루미늄 샷시바를 생산해서 조립된 철판이나 알루미늄제의 문틀이나 창틀을 제조할 때는 8130200 샷시문 및 창틀로 조사 	알루미늄과, 알루미늄고 철	건축용 문틀 및 창틀, 창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루미늄관과 속이 비어있는데 양끝이 막혀 있는 증공봉을 포함. 	//	우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종 모두 조사(Zn) 	섬아연광, 농아연광, 규아연광	활자제조 및 전기전자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Pb) 	방연광, 유산연광, 백연강	뿔납, 연선, 전기, 전자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텅스텐 분말만 조사 × 탄화 및 기타 텅스텐분말은 제외 	철망강, 중석, 회중석	각종 텅스텐 금속제품원 료 (Rod, Wire, Sheet 전기용접, 중합금, 전극) 텅스텐 카바이드원료

중분류 38.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소분류 381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외)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은 제품의 유형이나 원재료에 따른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많아 각각의 품목에 따라 조사범위에 유의하여야 한다.

예) 금속제 식탁용품 (8110100)은 수저, 포크, 국자, 주걱, 식탁용나이프만 조사하고 알루미늄제 가정용품 (8140100)이나 스텐레스제 가정용품 (8140200)은 숟, 냄비, 주전자, 도시락, 식기류, 쟁반, 후라이팬, 대야, 요강, 비전기식 커피포트는 각각 알루미늄제인지 스텐레스제인지를 구분 조사하여야 한다.

특히 많은 품목에 포괄범위가 확대 조정되고 세분되었기 때문에 조사범위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조립금속제품 및 기계류 생산업체에서는 거의 주문에 의해 월별로 제품이 달라지는 사업체가 많으므로 기존 조사품목 외에도 조사대상 품목을 생산하면 빠짐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전수조사업체에 한함)

3. 농업용 수공구에서 쟁기는 완제품이 아닌 경우 「벧」과 「보습」을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110100	금속제 식탁용품 (金屬製食卓用品)	천개	금속제의 식탁 및 주방용품

한 쌍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4. 석유스토브(난로)는 석유콘로와 구분되며, 스토브만 조사하고 콘로는 제외한다. 단, 사업체에서 완전 겸용으로 생산된것(반사형과 철사망이 부착된 것)은 석유 스토브로 포함 조사한다.

5. 건축용 샷시중 알루미늄샷시는 알루미늄샷시바를 잘라 조립한 건축부착물(창틀, 문틀)을 말하는 것으로 알루미늄샷시바와 구별 조사하여야 한다.

6. 금속 탱크 및 용기는 특히 단위에 유의하여야 한다.

예) 생산 14,000 l 을 14,000 kl로 조사

7. 금속가스탱크 및 용기는 용기 자체무게(중량톤)로 조사하지 말고 용량의 무게 %로 조사하여야 한다.

8. 공정을 환산

공정을 환산 대상품목은 열교환기(8130400), 육상구조물(8130500), 해상구조물(8130600), 금속탱크 및 용기(8130800), 가스저장탱크 및 운반용기(8130700)로서 제품중 공정이 3개월 이상일 때만 환산 조사한다.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수저, 포크, 국자, 주걱, 식탁용 나이프만 조사 ※ 용기는 알루미늄제 가정용품과 스텐레스제 가정용품에서 조사	스텐인레스 판, 석도원 판, 알루미늄판	주방용품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110200	칼 및 칼 날 (Knives and Knife blade)	천개	
8110300	가 위 (Scissors)	천개	
8110400	손 톱 깎 기	천개	
8110500	공 장 용 수 공 구 (工場用手工具)	천개	공장용 및 일반산업용 공구
8110600	농 업 용 수 공 구 (農業用手工具)	천개	농사·과수·원예용으로 쓰이는 도구
8110700	톱 및 톱 날 (Saw and Saw blade)	천개	
8110800	가방부착용철물 (가방附着用鐵物)	Kg	가방에 부착하는 모든 철물
8110900	자물쇠 및 열쇠 (Lock and Key)	Kg	자물쇠 및 열쇠 모두 조사
8111009	건 물 용 철 물 (建物用鐵物)	백만원	각종 건물에 부착된 철물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방용칼, 주머니칼, 칼날, 면도날, 면도칼, 안전면도날 ○ 유리칼은 공장용 수공구에 조사 	팅스텐강, 스테인레스	면도, 주방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 사무실, 어린이용 모두 조사 	스텐레스, 강철	문구용, 가정용, 이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톱깎기 모두 조사 	특수강	손, 발톱깎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라이어, 천공편치, 파이프절단기, 스패너, 줄칼, 유리칼, 모루, 바이스, 해머, 드릴, 태핑 및 나사공구 기타수공구 	특수강, 고철, 박판, 주물	공장수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삽, 곡괭이, 호미, 기타수공구, × 야전삽, 모종(꽃)삽 제외 	특수강, 고철	농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무용, 금속용, 석재용, 시계 및 보석가공용, 기타톱, 톱날, 체인톱 ※ 손으로 사용하는 것만 조사 	특수강, 고탄소강, 텅스텐강	건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핸드백, 여행용가방, 기타가방등에 사용되는 철물 ※ 가방테두리 심용철사는 제외 	주철, 황동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각종가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 건물문용, 책상, 열쇠 모두 포함. ※ 가방부착자물쇠는 8110800에 포함 조사 	놋쇠, 특수강, 주철	가정용, 사무실용, 공장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에 부수적으로 부착된 철물 ※ 비상계단, 보호대 포함. 	철판, 스텔레강판	건물에 부착되는 철물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120100	철 제 캐 비 널	개	가정용 및 사무실용
8120200	철 제 책 상 (鐵 製 册 床)	개	설합이 달리고 틀이 철제인 책상
8120300	철 제 의 자 (鐵 製 椅 子)	개	틀이 철제 및 비철금속으로 된 의자
8130100	철 제 문 (鐵 製 門)	개	철물로 된 문
8130200	샷 시 문 및 창 틀	M/T	알루미늄 샷시문이나 창틀문
8130300	산 업 용 보 일 러 (Industrial Boiler)	T/H	목욕탕이나 산업에 쓰이는 보일러
8130400	열 교 환 기 (熱 交 換 器)	백만원	관의 기벽을 통하여 냉온 두유체 사이의 열을 주고 받는 장치로 가열기, 냉각기, 응축기, 증발기등으로 분류된다. 보통은 폐열회수 목적의 장치가 많다.
8130500	육 상 금 속 구 조 물 (陸上金屬構造物)	M/T	주로 형강을 이용하여 조립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이루어진 구조물
8130600	해 상 금 속 구 조 물 (海上金屬構造物)	M/T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화일 캐비넬 및 철제옷장등 포함	박판	사무실용
○ 철제책상 모두 조사 ----- × 타자기용 탁상은 제외	박판, 강판	사무실, 가정용
○ 틀이 금속으로 된 것을 조사 (이발소용 포함) ----- × 의료용 특수의자는 제외	박판, 주물, 합판, 각재	사무실, 가정용
○ 아파트철문, 철대문, 소방문, 셔터문 포함. ----- × 수문제외	철판, 열연 박판	건축용
○ 사무실 및 주택용 등	알루미늄	문
○ 대형온수 보일러, 증기발생 보일러	박판, 강판, 주물	산업용
○ 투관식, 이중관식, 코일식, 편식, 플레 이트식, 공냉식, 굽어내기식의 모든 열교환기 조사 ----- × 공기조화기의 부속품인 전열교환기 제외	강판, 박판, 중후판	폐열회수, 증발, 냉각, 응축등 주로 화학산업 에서 이용
○ 육상건물구조재, 교량용, 철탑용, 망루 용의 구조재등 포함.	형강, 강판	건축, 일반산업용
○ 해상의 가스 및 오일분리시설, Jacket Module, Pipeline 등 ----- ※ 시추선은 384에서 조사	형강, 강판	건축, 일반산업용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130700	가스저장탱크 및 운 반 용 기 (Gas Storage tank)	M/T	압축 및 액화개스를 저장 및 운반 을 위해 제작된 병상의 밀폐된 용기 와 탱크
8130800	금속탱크및용기 (金屬탱크및容器)	K/L	금속으로 제작된 구형 기둥형의 운반 및 저장용기
8130900	콘 테 이 너 용 기 (Container)	대	화물수송용 운반용기
8131109	구 조 용 금 속 판 제 품 (構造用金屬板製品)	M/T	사람이나 기계 및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철판 및 철봉제품
8140100	알 루 미 늬 음 제 가 정 용 품 (Aluminium house hold product)	M/T	알루미늄으로 만든 가정용기
8140200	스 텐 레 스 제 가 정 용 품 (Stainless house- hold product)	M/T	스텐레스로 만든 가정용기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화가스(헬륨, 산소, 수소, 아세틸렌, 이산화탄소, LPG, LNG 등 저장 또는 운송용 용기 및 탱크류 조사) × 적은 용량의 부탄가스통, 라이타가스통, 파리모기약통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판, 중후판, 용접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액화가스 저장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수, 유류, 사료저장, 우유 및 유가공제품의 저장 및 운반용탱크와 플랜트산업(유기화학공장등)설비의 일부, 탱크류등 조사 × 생맥주, 관공서재털이통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판, 중후판, 용접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장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콘테이너도 포함 ※ 20 ft 를 1 대로 환산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후판, 박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물박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판 및 철봉형 (지하철용, 배수구용, 시설, 기계차단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판, 철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숟, 냄비, 주전자, 도시락, 식기, 비전기식 커피포트등 알루미늄제 가정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루미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방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숟, 냄비, 주전자, 도시락, 식기류, 비전기식 커피포트, 스텐레스후라이팬, 대야, 요강등 스텐레스제 가정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텐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방용품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140300	병 마 개 (Bottle plug)	천개	금속제 병마개
8190100	금 속 캔 (식 관 및 잡 관)	천개	
8190110	통 조 립 용 관	천개	
8190120	기 타 잡 관	천개	
8190200	드 럽 관	개	
8190300	스텐 레스제 싱크 (Sink of stain- less steel)	대	식기류등 주방용품을 세척하도록 제작 된 주방용기
8190400	가 정 용 보 일 러 (Household boiler)	대	난방용의 온수를 얻기 위한 보일러
8190500	방 열 기 (放 熱 器)	매	서로 결합하여 증기를 흘리도록 제작 된 각종 난방용 주물, 알루미늄 철판 제품
8190600	석 유 난 로 (石 油 煖 爐)	대	등유를 사용하는 난로로 종류는 ① 대형철제 스토브 ② 유리관이 달린 것 ③ 발열망과 반사판이 달린 것 ④ 발열망만이 달린것 등이 있음.
8190700	난 방 용 버 너 및 히 (Heater)	대	연료(액체, 고체, 방카C유, 석유등)를 연소시켜서 열을 내는 기구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각종 금속병마개 포함.	석도철판, 주석판	
○ 농산, 축산, 수산, 분유, 설탕, 백타등 음식료품 및 통조림을 제외한 기타 금속판	석도강판, 주석강판 알루미늄판	음료 및 식료품통
○ 200ℓ 용기만 조사	박판	유류저장
○ 스텐레스제품만 조사	스텐레스	주방세척용
○ 유류 및 연탄사용 보일러를 포함. ○ 기름보일러, 연탄보일러, 기타보일러	박판, 강판	가정용, 난방용
○ 건물용 방열기만 조사 ※ 자동차용 방열기는 8432700에서 조사	강철, 고철	
○ 난로와 곤로겸용 포함. ※ 석유곤로는 8261000에서 조사	박판, 철선	난방
○ 가스, 전기히터 조사	철판, 황동 판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190800	나 사 제 품 (螺 絲 製 品)	M/T	물체와 물체를 결합하기 위해 봉에 나선을 낸 슛나사(볼트)와 결합되어 조이도록 된 암나사(너트)
8190900	철 망	M/T	각종 굵기의 철선으로 엮은 망
8190910	망 (Netting)	M/T	
8190920	철 조 망 (Wire entang - lements)	M/T	
8191000	선 스프링	M/T	강선으로 만든 스프링
8191100	와 이 어 로 프 (Wire rope)	M/T	경강선을 여러개 꼬아 가닥을 만들고 다시 심앙을 중심으로 여러 가닥을 꼬아 만든 쇠줄
8191200	쇠 못	M/T	선재를 제정기에 걸어서 만든 못
8191300	밸 브 (Valve)	개	배관상에 부착되어 유체의 흐름을 통제하는 장치
8191310	일 반 용 밸 브	개	
8191320	특 수 용 밸 브	개	
8191400	금 속 관 이 음 쇠 (金屬管 이 음 쇠)	M/T	유체를 흘려보내는 파이프의 연결부분 이음쇠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볼트 및 너트, 나사못, 리베트, 와셔 및 파스너, 기타 나사제품 모두 조사	봉강, 주강	
○ 스토티브망, 선풍기망, 방충망, 각종철망 모두 조사		
○ 가시철조망, 링크철조망등.		주로 울타리나 건물 경계용
○ 각종 스프링 (차량용은 384 품목)	강선	볼펜, 침대, 의자용등
○ 항공기용 와이어로프 포함. 심을 넣지 않고 강선을 단순히 꼬은 것은 제외	경강선, 선재	선박, 크레인줄
○ 주물못은 제외	청동	
○ 수도꼭지는 포함 조사 × 내연기관 (엔진, 원동기) 밸브는 제외	청동, 주철, 주강, 봉강,	상수도 및 가스, 석유, 조선, 화학, 전력산업에
○ 청동, 주철, 주강, 기타 밸브를 모두 포함,	형강, 알루미늄, 미늄, 스텐	사용
○ 고온고압용 밸브, 자동조절 밸브	레스강	
○ 엘보 (45°, 90°형등) T, 유니온, 니뿔, 크로스, 소켓등 포함.	중후관, 강관, 관, 스텐레스	배관, 이음용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191500	체 인 (Chain)	M/T	핀, 로울러, 핀링크플레이트와 플레이트가 결합되어 체인을 구성, 스프로킷 휠과 물려서 동력을 전달하는 제품
8191600	용 접 봉 (鎔 接 棒)	M/T	각종 철선에 피복을 입혀 용접효과를 좋게 하는 철선

382 . 기계 제조업 (전기제외)

1. 기계제조업은 여타산업에서 사용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를 생산하는 제조업이다.

이를 세분하여 분류하면,

가. 3821. 기관 및 터빈제조업

나. 3822. 농업용 기계 및 장비제조업

다. 3823. 금속공작가공 및 목공기계제조업

라. 3824. 특수산업용 기계 및 장비제조업,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제조업 제외

마. 3825.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 제조업

바. 3826. 서어비스 산업용기계제조업

사. 382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 및 장비제조업, 전기제외로 나뉘어진다.

2. 이들 세분된 업종을 간략히 설명하면

가. 기관 및 터빈제조업은 각종기계의 동력원인 기관 및 터빈을 제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체인, 로울러체인, 사이런트체인, 메트레스체인, 싱크스토퍼체인 등 모두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봉강, 특수강, 중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력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복용접봉, 자동용접봉(CO₂ 용접봉포함) ○ 銅, 銀 鎔接棒 포함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선, 피복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용접 냉온방기기, 열교환기, 난방용동배관용접

조하는 제조업이다. 내연기관은 기계제조업에서는 육상용 내연기관중 운수장비용을 제외한 것을 조사한다.

나. 농업용 기계 및 장비제조업은 경작, 파종, 이앙, 방제, 수확, 농산물의 건조등의 농업용기계 및 장비를 생산하는 업종이다.

다. 금속 공작가공 및 목공기계제조업은 다시 세분하면 금속절삭기계, 금속성형기계, 금속처리용기계, 수지식 동력구동공구 제조, 목공기계, 호환용절삭구, 금형 및 관련제품제조업 그리고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금속 공작 및 목공기계제조업으로 나뉘어진다. 기계를 만드는 기계인 금속 절삭기계는 공작기계라고도 하는데, 크게 범용기계(선반, 밀링기, 드릴링기, 연삭기등 일반적인 절삭작업이 가능한 기계)와 범용의 기계이나 수치제어장치가 부착된 NC 또는 CNC 공작기계(NC선반, 머시닝센터등), 요구되는 특정제품의 전공정을 동시에 처리하여 하나의 완성품을 생산, 대량생산작업에 유효한 전용공작기계와 이와 유사하나 하나의 공정만을 처리 가능한 단용공작기계가 있다.

금속판이나 선제품성형, 나사전조등의 작업을 하는 금속성형기계, 금속의 세척이나 도금등의 금속처리용기계, 손에 들고 이동하며 작업이 가

능한 수지식 동력구 동공구 제조업, 목공공작용의 목공기계, 앞의 공작기계들이 절삭이나 성형을 위한 호환용 절삭구, 그리고 금형관련제품과 기타 앞에서 분류되지 않은 기계로 세분되어진다.

라. 금속공작기계 및 목공기계를 제외한 특수산업용 기계 및 장비는 건설 및 광산용의 기계장비, 섬유용기계, 식료품 가공기계, 화학 및 석유정제 산업용기계, 고무 및 플라스틱 산업용기계, 종이산업용기계,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유리 및 요업용기계 그리고 여기에 분류되지 않은 기계로 세분된다.

※ 직기부품 및 부속품

- 타페트 : 평직시에 쓰이는 직기의 부속품
- 도 비 : 직물에 무늬를 넣을 때 사용하는 직기의 부속품 (작은 무늬용)
- 자카드 : 큰 무늬를 넣을 때 사용되는 직기의 부속품
위의 세가지는 직물을 짜는 내용에 따라 서로 교체되어 사용되며, 동시에 종광의 개구를 하는 역할을 한다.
- 종광 : 직물을 짜기 위하여 직기의 타페트나 도비, 자카드와 연결되어 날실을 2군으로 나누어 주는 가는선으로 된 직기부품
- 바디 : 북이 날줄 사이로 씨줄을 물고 지나간후 이를 두들겨 춤 춤히 하는 직기부품
- 샷틀 : 씨줄을 물고 날줄사이로 움직이는 직기부품 (일명 북)

마.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는 자동자료처리장비, 계산기, 등사 및 복사기, 저울, 타자기, 컴퓨터 프로그램 매체 그리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사무계산 및 회계용기계로 분류된다.

자동자료처리장비는 컴퓨터와 주변장치로 분류되는데 관련기기로는 CPU (중앙자료처리장치), CRT TERMINAL (단말기), DISK DRIVER(보

- 조기억장치), PRINTER (출력장치), BANKING TERMINAL (은행용 단말기), CRT MONITER (화상기), MULTIPLEXER, MODEM (전송장치), POWER SUPPLY (컴퓨터용 전압전류 조정기), KEYBOARD (자판) 등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CPU, DISK-DRIVER, PRINTER, CRT MONITER, MODEM, KEYBOARD 의 물량은 세분하여 단위 '대' 와 '백만원' 으로 조사하고 여기에 분류되지 않은 주변기기는 금액조사의 경우에만 KEY BOARD에 합산조사한다(단, POWER SUPPLY는 분리조사)
- 바. 서어비스 산업용기계는 자동판매기, 상업용세탁기, 산업용 냉동장비, 공기조절장치, 상업용 조리 및 식품가공기기,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서어비스 산업용 기계로 분류된다.
- 사.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 및 장비제조업은 펌프 및 압축기제조업, 송풍기 및 환풍기제조업, 물품취급장비, 산업용 트럭 및 적하기, 재봉기, 산업용 로봇, 기계식 동력전달장치 그리고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장비로 분류된다.
3. 기계제조업의 제품에 대한 조사는 수량단위 (IP, 대, %, m^2 / H 등)와 금액단위 (백만원 : 생산액, 시판액, 수출액)의 조사로 병행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한다.
4. 장기공정 생산품 (생산소요기간이 3개월이상 소요)에 대해서는 기존의 단위에 대해서 진척을 환산조사를 실시한다. (단, 수량단위가 '대' 인 경우는 금액 (백만원) 단위에 대해서만 진척률 조사를 실시할 것)
5. 조사되는 제품중 플랜트 (설비 또는 공장설비)인 경우는 적요란에 플랜트의 내용과 공기, 총수주액 등의 자료를 확인하여 기입한다.
6. 크레인은 건설용크레인과 물품취급용크레인으로 분리되었으니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210100	내 연 기 관 (內 燃 機 關)	IP	연료를 기통내에서 연소시켜 발생한 고온고압의 폭발력을 직접 피스톤에 주어 회전력을 일으키는 원동기
8220100	탈 곡 기 (脫 穀 機)	대	동력원을 갖추거나 동력전달장치가 부착되어 알곡을 털어내는 기계
8220200	경 운 기 (耕 耘 機)	IP	
8220300	농 업 용 트 랙 터 (農 業 用 트 랙 터)	IP	내연기관의 힘을 이용 경작, 경지정리등의 농사일을 하는 기계
8220400	이 앙 기 (移 秧 機)	IP	벼의 모종을 옮겨심는 기계
8220500	콤 바 인 (Combine)	IP	벼, 보리등의 수확용기계로 베고 탈곡까지 가능한 기계
8220800	농업용동력분무기 (農 業 用 動 力 噴 霧 機)	대	동력원을 갖추거나 동력전달장치가 부착되어 살충제나 살균제를 살포, 분무하는 농업용기계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p>○ 석유, 알코올, 가스등을 연료로 하는 불꽃점화 및 압축점화의 내연기관을 조사</p> <p>※ 자동차용 내연기관은 8431200에서, 선박용 내연기관은 8410100에서 조사</p> <p>-----</p> <p>× 모터싸이클용 및 철도차량용 기관 제외</p>	주물, 피스톤	농업용기계, 일반산업용 기계의 동력생산
<p>× 인력식 탈곡기 및 콤바인 제외</p> <p>※ 콤바인은 8220500으로 조사</p>	박판, 봉강, 형강	
<p>○ 관리기 포함조사</p>	내연기관, 기어, 주물, 박판등	
<p>× 임업, 건설용 트랙터 제외</p>	내연기관, 기어, 주물 등	
<p>※ 바인다는 8221009에서 조사</p>		
<p>× 인력분무기, 방제차 부착 분무기 제외</p>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220700	농 산 물 건 조 기 (農產物乾燥機)	대	잎담배, 알곡, 고추등을 밀폐된 공간을 이용 간접열을 가하여 말리는 기계
8220800	착 유 기 (搾乳機)	대	젖소나 양등의 젖을 짜는 기계
8220900	사 료 절 단 기 (飼料切斷機)	대	볏짚이나 옥수수대등을 적당한 길이로 자르는 기계
8221009	바 인 더 (Binder)	대	벼나 보리등을 베고 묶는 수확용 농기 계
8230100	수 치 제 어 선 반 (N.C旋盤)	대	수치제어장치가 부착되어 공작물을 자동, 대량으로 가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선 반으로 대량생산이 필요한 공장에서 공 장자동화와 결합하여 제작된 금속절삭기계
8230200	범 용 선 반 (汎用旋盤)	대	회전축에 공작물을 고정시켜서 이동하는 절삭공구(Bite 류)에 의해 선삭을 주로 한 금속절삭기계. 주축대, 삼입대, 왕복대 배드, 보냄장치등으로 구성된다.
8230300	밀 린 기 (Milling Machine)	대	회전축에 절삭공구(커트, 엔드밀)를 고 정시키고 베드위에 공작물을 고정시켜 베드의 상하좌우 이동으로 공작물을 가 공하는 기계
8230310	(범용) 밀링기	대	
8230320	수치제어밀링기	대	NC 또는 CNC장치가 부착된 밀링기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농산물용의 건조기만을 조사		
※ 식물용 착유기는 8243109 에서 조사		
○ 모터부착형, 동력전달장치 부착형 포함 (취상형, 절삭형 포함) × 작두기 등 수작업용 제외)		
	내연기관, 박판, 강판	
○ CNC, NC선반을 조사	기계용 주 물, 박판, 모타, NC 컨트롤러	금속절삭기계
○ 보통선반, 자동선반, 터릿선반등을 포 함	주물, 모타 기어	"
※ 나무용 밀링기는 8231700 목공기계로 조사	"	"
× 석재용 밀링기는 제외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230400	톱 기 계 (Sawing M/C)	대	회전 또는 직선운동을 하는 톱날로 공작물을 절단하는 기계
8230500	연 삭 기 (研 削 機)	대	바이드나 밀링커트로 가공할 수 없는 단단한 공작물이나, 기계부품의 정밀한 다듬질을 위하여 고속으로 회전하는 슷들을 이용, 공작물의 표면을 연삭(절삭)하는 공작기계
8230600	드 릴 링 기 (Drilling Machine)	대	회전축에 드릴을 고정시키고 이를 상하 이동시켜 공작물에 구멍을 뚫는 기계
8230700	전 용 공 작 기 계 (專用工作機械)	대	특별한 목적(특정제품만을 생산)을 위해 전문적으로 절삭가공하도록 제작된 공작기계
8230800	척 (Chuck)	개	회전축과 결합되어 공작물이나 날물(바이트, 커트등)을 고정시키는 공작기계의 부속품
8230900	방 전 가 공 기 (放電加工機)	대	방전(Spark)현상을 임의로 조절하여 금속을 절삭하는 기계(주로 금형같은 정밀제품가공에 많이 이용)
8231000	머 시 닝 센 타 (Machining Center)	대	수치제어장치와 자동공구교환장치가 부착되어 입력된 자료에 따라 밀링,보링등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락톱, 회전톱, 핵소포함 조사 ※ 목공용 기계톱은 8231700에서 조사 × 석재용톱은 제외 		금속절삭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치제어 (NC)연삭기, 공구연삭기, 성형평면연삭기, 평면연삭기, 만능원동연삭기 포함 ※ 탁상형 및 휴대용 (수지식) 연삭기는 8231600으로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탭핑기 포함 × 휴대용 전기드릴 (수지식), 수동드릴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용기 (공작물의 전공정이 아닌 하나의 공정을 처리토록 된 기계)는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척 (선반, 드릴링기, 밀링기용등) 포함 조사 		"
		"
		"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의 다양한 작업을 복합적으로 자동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복합공작기계
8231100	프 레 스 기 (Press Machine)	M/T (능력)	본(금형)을 이용, 철판에 쳐내기, 굽히기, 길이짜기, 압축등의 가공을 하는 금속성형기계
8231200	신 선 기 (伸 線 機)	대	굵은선을 다이스를 통해서 드럼에 감고 인발작업을 통해 연속적인 작업으로 직경을 줄이는 기계
8231300	압 연 기 (壓 延 機)	대	회전하는 로울(압연기롤)사이에 금속재료를 통과시키며 누르는 힘에 의해 두께를 줄이는 기계
8231400	압 연 기 롤 (Rolls for rolling mill)	M/T	대체로 중량이 무겁고 표면을 특수처리하여 경도를 높게한 원주상의 압연기의 주 부품
8231500	초 음 파 세 척 기 (超 音 波 洗 滌 機)	Watt	각종제품의 오물세척을 위해 초음파의 음압(音壓)과 공동현상(空洞現象)을 일으켜 폭발효과와 열적작용을 이용하여 세척하는 기계
8231600	수 지 식 연 삭 기 (手 持 式 研 削 機)	대	주물제품의 거친면의 처리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 손에 들고서 작업하는 연삭기
8231700	목 공 기 계 (木 工 機 械)	대	목재의 가공 즉, 절단, 표면처리, 형상제작등의 작업을 하는 목공용의 기계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유압식, 기계식 포함 × 인력식 제외		금속절삭
○ 건식 및 습식 신선기 포함 × 압출기 제외	철판, 주물, 중후판, 봉강, 형강, 강관	철선, 동선, 알루미늄선의 가공
	기계용주물, 감속기	금속압연
※ 제품의 연속된 이동시에 사용되는 콘베어롤과 기타 기계장치의 제품 안내용롤은 8291900 에서 조사	주 물	
○ 고압세척기 포함 Watt: 초음파발생기 능력	스테인레스 강판, 두랄루민	세 척
○ 탁상형 연삭기 포함	전동기, 박판	
○ 목공밀링기, 대패 및 장부기, 기계톱 등 각종 목공기계를 포함		목재가공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231800	공 작 용 절 삭 구 (工作用切削具)	천개	칩을 발생시키며 재료를 절삭가공하는 바이트나 커트등의 날물
8231810	금속공작용절삭구 (金屬工作用切削具)	천개	
8231820	기타재료용절삭구	천개	
8231900	금 형 (金 型)	대	금속이나 기타재료의 성형을 위한 금속 제의 본
8231910	프 레 스 형 금형	대	금속프레스작업에 주로 사용하는 고정도, 고강도의 금형
8231920	프라스티시출용금형	대	프라스틱 칩을 열을 가함과 동시에 찍어내는 금형
8231930	기 타 금 형	대	
8232009	전 단 기 (剪 斷 機)	대	철판의 절단을 위해 절단날의 위치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꾸어 절단하는 기계
8240100	파 쇄 기 (破 碎 機)	대	화강암이나 석회석등을 도로포장용의 쇄 석이나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 잘게 부 수거나 마쇄하는 기계
8240200	교 반 혼 합 기 (아스팔트플랜트)	T/H	도로포장용의 아스콘을 만들기 위해 아 스팔트와 쇄석을 적절한 비율로 섞는 아스콘제조기계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재료용 (드릴, 바이트, 밀링커트, 엔드밀, 연삭용휠등)을 조사 ○ 목재, 석재용등의 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이캐스팅형, FRP용, 주단조형, 기타 금형 포함 × 금형부품 (Mold base 금형등)제외 	금형용 특수강	각종재료성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압식, 기계식의 샤프링기, 슬래팅기등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쇄기 (crusher), 마쇄기 포함 조사 	중후판, 형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 : 시간당 처리능력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240300	건설(건축)용크레인 (Crame for Construction)	M/T (중량)	자주식으로 이동하면서 건설이나 건축등의 작업에 주로 이용되는 크레인과 고층건물 건축용의 탑형크레인
8240400	그 레 이 더 (Grader)	대	도로포장시 도로의 평탄작업을 하는 땅정지용의 건설장비
8240500	로 더 (Loader)	대	삽(Shovel) 또는 들것을 이용 흙이나 목재등을 들어올려 차량등에 적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건설용 장비
8240600	굴 삭 기 (掘 削 機)	대	삽을 이용 땅을 긁거나 파고 흙을 파서 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건설중장비
8240700	벳 치 플 랜 트 (Batcher plant)	M ³ /H	도로포장작업을 위해 자갈, 모래, 시멘트 물을 일정비율로 섞어 레미콘을 만드는 기계
8240800	불 도 저 (Bulldozer)	대	건설중장비 25 Ton 을 기준으로 환산
8240900	연 사 기 (撚 絲 機)	대	실을 꼬는 기계
8241000	방 적 기 (紡 績 機)	대	솜, 모사, 화학섬유등의 단섬유의 울을 잡아내어 실을 만드는 기계. 방적의 공정은 개포, 해면, 타면, 빗질, 연조등의 전방공정과 실을 만드는 정방으로 나뉘어진다.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자주식크레인, 탑형크레인	형강, 중후판, 궤도	
※ 지게차와 혼동이 없을 것		
※ 일명 엑스카베이터		
○ 고정식과 이동식 포함 ○ M ³ /H : 시간당 처리능력		
× 합사기는 제외		
○ 정방기, 면방적기, 모방적기, 기타방적기를 포함조사		
× 전방공정의 방적준비기계 제외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241100	직 기 (織 機)	대	날가닥의 실을 2군으로 나누고 개구하여 그 사이에 씨가닥을 넣어서 직물을 짜는 기계
8241200	편 직 기 (編 織 機)	대	실을 얽히게 하기 위해 실자체를 꼬부러 뜨게눈을 만들고 이 뜨게눈을 다음 줄의 뜨게눈과 서로 대조되게 하여 메리야스등의 편직을 하는 기계
8241300	도비 및 재쿼드 (Dobby, Jacquard)	개	직기의 날줄을 2군으로 개구하는 부분으로 개구를 달리함으로써 직물의 무늬를 넣는 부분
8241400	샷 틀 (Shuttle)	개	씨가닥을 물고서 날줄사이를 움직이는 직기의 부품
8241500	바 디 (Reed)	개	날줄사이로 씨줄이 지나간뒤 이를 두들겨서 공간을 촘촘하게 하는 직기의 부품
8241600	염 색 기 (染 色 機)	대	직물을 염색하는 기계
8241700	정 미 기 (精 米 機)	대	벼의 겹질을 벗기고(현미상태) 적당히 표면을 깎아내어(정미) 쌀을 만드는 기계
8241800	제 빵 용 기 계 (製 暻 用 機 械)	대	제과점등에서 각종 모양의 빵을 형성하고 만드는 기계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면직기, 견직기, 모직기, 기타직기를 모두 조사		
○ 각종 편직기를 모두 포함 조사		
○ 도비(작은 무늬용)와 재쿼드(큰 무늬용)만 조사		
○ 사염기, 지그, 원스, 패드, 비임염색기, 드럼염색기 포함		
○ 현미기와 정미기 포함조사	박판, 주물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241900	포장 및 충전기 (包裝및충진기)	대	용기(병, 통, 갑, 상자, 봉지, 자루등)에 내용물을 채워 넣고 검사하여 충전포장 또는 상포하는 기계
8242000	화학용 압출기 (化學用壓出機)	대	인조수지(합성수지)를 압출하여 봉이나 관, 필름등을 뽑아내는 기계
8242100	고무가공기계 (고무加工機械)	대	경질의 고무를 부수고 화학처리하여 연질의 고무로 만들고, 이 고무로 요구되는 제품을 성형하는 기계
8242200	(화학용)사출성형기 (化學用射出成形機)	대	인조수지(합성수지)를 금형에 넣어 필요한 모양의 제품을 성형하여 뽑아내는 기계
8242300	펄프제조 및 초지용기계 (Pulping and fourdriner machine)	대	폐지나 펄프를 원료로 종이를 제조하는 기계 제조공정: 원료→정선→저장→휘석(약품 투입)→탈수→압착→건조→카렌딩→감기→재단→권취
8242400	인쇄기 (印刷機)	대	문자나 그림, 사진등을 종이나 기타 물체의 표면에 일정한 기계적, 화학적 방법으로 옮겨 찍어서 여러벌의 복제물을 만드는 기계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제대충진기, 상포기 포함 × 단순히 포장된 상자를 묶는 결속기는 제외		
○ 라미네이팅 압출기 포함 × 금속용 압출기는 제외		
○ 고무가공용 믹서(혼합기), Mixing Mill, Press, Extruder (압출기), 칼렌다기 포함조사	강판, 주조품, 환봉, 베어링	
○ 종이제조플랜트의 경우 각 공정의 기계를 분리하여 조사 ○ 펄프제조기, 초지기, 기타종이 제조용기계를 포함 조사 ○ 금액단위의 경우는 합산, 대수는 각 공정의 기계를 각각의 대수로 조사		
○ 각종의 인쇄기(평압식, 원통압식, 운전식 인쇄기등)를 포함조사 × 인쇄보조기계는 제외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242509	동 력 소 벨	대	지반을 굴착하고 동시에 운반차에 싣기 위한 기계
8242609	무 한 궤 도 (無 限 軌 道)	M/T	산업중장비(불도저, 크레인등)의 이동과 안정성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하부의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이와 맞물리도록 연결된 편
8242709	스 핀 들 (Spindle)	개	보빈을 결합시켜 실을 감는 방적기나 직기등의 부품(방적기계에서 실을 감는 보빈부분의 강철로 만든 축)
8242809	종 광 (Reed Wire, Herld Wire)	Kg	날줄을 종광의 가운데 부분의 구멍으로 한가닥씩 끼워서 도비(타페트, 재워드)와 연결되어 개구를 하여 주는 부품
8242909	나 염 기 (Printing M/C)	대	실 또는 직물에 나염을 하는 기계
8243009	양조 및 증류용기계 (釀造및蒸溜用機械)	대	주정공장의 알코올 증류기 및 발효용 기계
8243109	식 물 용 착 유 기 (植 物 用 榨 油 機)	대	유압이나 스크류의 전진에 의한 압축력으로 참깨, 유채, 들깨등의 기름을 짜는 기계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굴삭기와 혼동이 없도록 할 것		광산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품 즉 링크, 핀, 슈가 합쳐져서 된 트랙을 조사 (강철제의 좁은 판을 여러개 연결하여 앞뒤 바퀴에 사슬모양으로 걸고 이것을 동력으로 회전시켜 주행하게 하는 장치 : 일명 Caterpillar) 		
		방적기부품
	강 선	직기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롤러나염기, 스크린나염기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류기와 발효용기계를 각각으로 합산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착식(유압식)과 스크류(Screw)식 포함조사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243209	콘크리트제품성형기	대	콘크리트 전주, 파일, 홈관등 콘크리트제 품을 성형하는 기계
8243309	연 탄 제 조 기	대	구공탄 제조용 기계
8250100	컴퓨터 및 주변기기 (컴퓨터周邊器機)	백만원 (병행 :대)	대량의 자료를 기억 신속정확하게 자동으 로 처리하는 전자자료 처리장치
8250110	C P U	백만원 (병행 :대)	자료의 연산, 판단, 분류, 비교, 추출하는 중앙자료 처리장치
8250120	디스크드라이브 (Disk driver)	백만원 (병행 :대)	Hard disk나 플로피 디스크의 자료를 구동하여 자료를 처리하는 장치(보조기 역장치)
8250130	프 린 터 (Printer)	백만원 (병행 :대)	처리된 자료를 외부로 찍어내는 장치
8250140	C R T 모니터 (Monitor)	백만원 (병행 :대)	자료의 처리상황을 화상으로 나타내주는 장치
8250150	전 송 장 치	백만원 (병행 :대)	단말기와 주자료처리장치와 자료를 연결 시켜 주는 자료전송장치
8250160	키보드 (Key Board) 및 기타	백만원 (병행 :대)	
8250200	컴퓨터용전류 전압공급기 (Power supply)	대	컴퓨터내에 필요한 다양한 전압이나 전 류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장치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타일, 벽돌생산용 기계포함		
○ 연탄을 찍는 기계만 조사	주 물	
	PCB, 저항 코일등	
○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FDD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포함		
○ Key Board와 위의 장치를 제외한 것을 조사. 대수는 Key Board만 조사		
○ 컴퓨터외의 여타 사무기계용으로 동 시 사용되는 제품 포함	PCB, 저항, 코일등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250300	전 자 계 산 기	대	
8250310	휴대용전자계산기	대	
8250320	탁상용전자계산기	대	
8250400	산 업 용 저 울 (Industrial scale)	대	차량의 계근이나 연속된 포장라인내에서 내용물의 계근등을 위한 산업용의 저울
8250500	상업용 및 가정용 저 울 (Commercial and household scale)	개	지레의 방법등을 이용 지침이나 수침등 으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상업용이 나 가정용의 저울
8250600	타 자 기	대	
8250700	플로피 디스크 (Floppy Disk)	개	자료의 저장, 보관 그리고 필요시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기억시키는 매 체
8260100	자 동 판 매 기 (Vending M / C)	대	음식품, 잡화품, 서어비스용품을 판매원 없이 판매하는 기계
8260200	산업용 및 상업용 냉 장 고 (産業用 및 商業用 冷蔵庫)	대	음식료품을 저온으로 보관, 판매를 위하 여 통상적으로 진열대를 겸하여 만든 냉장고
8260300	산 업 용 냉 동 기 (産業用 冷凍機)	대	중앙냉방형의 대형건물이나 어물이나 축산물의 냉동보관용의 대형냉동기계
8260400	룸 에 어 콘 (Room air Condi- tioner)	대	창문이나 벽걸이형의 에어컨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형 계산기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의 상업용 및 가정용 저울 조사 ○ 전자식저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의 타자기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전교환기, 우표, 차표판매기, 담배 판매기 토권 판매기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육점의 냉동고 포함 		
		<p>대형건물 냉방용, 냉동창고용</p>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260500	차 량 용 에 어 콘 (Car aircondi- tioner)	대	차량내의 냉방을 위한 차체부착형의 에어컨
8260600	패 키 지 형 에 어 콘 (Package type air conditioner)	R/T	큰 면적의 냉방을 위하여 실내기와 실외기가 분리되는 대형의 에어컨
8260700	냉 각 탑 (冷 却 塔)	T/H	공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용수의 냉각이나, 냉동기, 에어컨에서 냉매의 응축을 위해 설치된 탑
8260800	공 기 조 화 기 (Air Handling Unit) (空 氣 調 和 機)	대	사무실의 냉난방을 위해 보일러나 냉동기에서 제공된 냉·온열을 정화된 외기와 혼합하여 송풍기에 의하여 강제로 공급하는 장치
8260900	가 스 레 인 지 (Gas Range)	대	
8261000	석 유 곤 로 (Cooking oil stove)	대	
8261100	상 하 수 정 화 장 비 (上 下 水 淨 化 裝 備)	대	상하수의 침전, 화학처리를 거쳐 정화하여 식수용이나 공업용으로 이용하거나 정수된 물을 강으로 흘리기 위한 정화장치
8290100	산 업 용 펌 프 (Industrial pump)	IP	동력을 이용 액체를 공급, 배출 및 순환시키는 기계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차용, 버스용, 트럭용 포함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차량용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향류형, 직교류형의 냉각탑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R / T = 0.78 T / H$ 1 $T / H = 1.28 R / T$ ※ R/T:냉동톤 T/H:유량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팬 코일 유닛 (Fan-Coil Unit)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외취사용, 식당용 (대형) 포함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물제품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로 겸용의 경우는 석유스토브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용이나 하수도용의 폐수처리 장치 포함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물을 이온화등으로 정화하는 정수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수기 포함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290200	가 정 용 펌 프	대	가정용의 소형·자동펌프
8290300	공 기 압 축 기 (空 氣 壓 縮 機)	대	공기의 압축력을 이용하기 위해 공기 또는 그밖의 기체를 압축하는 기계
8290310	산 업 용 공 기 압 축 기 (產 業 用 空 氣 壓 縮 機)	대	
8290320	냉 매 용 공 기 압 축 기	대	
8290400	송 풍 기 (送 風 機)	대	
8290500	집 진 장 치 (集 塵 裝 置)	대	수용성가스, 유해성가스, 분체등을 대기중에 방출하지 않기 위해 전기적인 힘이나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여 모으는 장치
8290600	호 이 스톱 (Hoist)	M/T	주로 크레인에서 물건을 달아올리거나 감아당기기 위하여 도르레의 배울을 이용한 장치
8290700	물 품 취 급 용 크 레 인 (Crane)	M/T (중량)	물품의 하역이나 적재를 위하여 물품을 들어올려서 이동시키는 기계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온수보일러용의 온수순환펌프 포함		
○ 공장, 광산이나 건설용등의 산업용 압축기		
○ 냉동기나 냉장고용의 냉매압축기		
○ 블로우형 (송출압력 0.1 ~ 1.0 kg/cm ²) 과 팬형 (송출압력 0.1 kg/cm ² 미만) 을 포함 ※ 환풍기는 8331009에서 조사		
○ 전기집진기, 백 필터 (Bag filter) 집진기, 싸이클론집진기 포함 × 유화장치 제외		
○ 전동식 호이스트만 조사		
○ 부두용, 천정형, 부상형등의 물품취급 용만을 조사 ※ 건설장비로서의 크레인은 건설용 크 레인으로 조사 × 곤도라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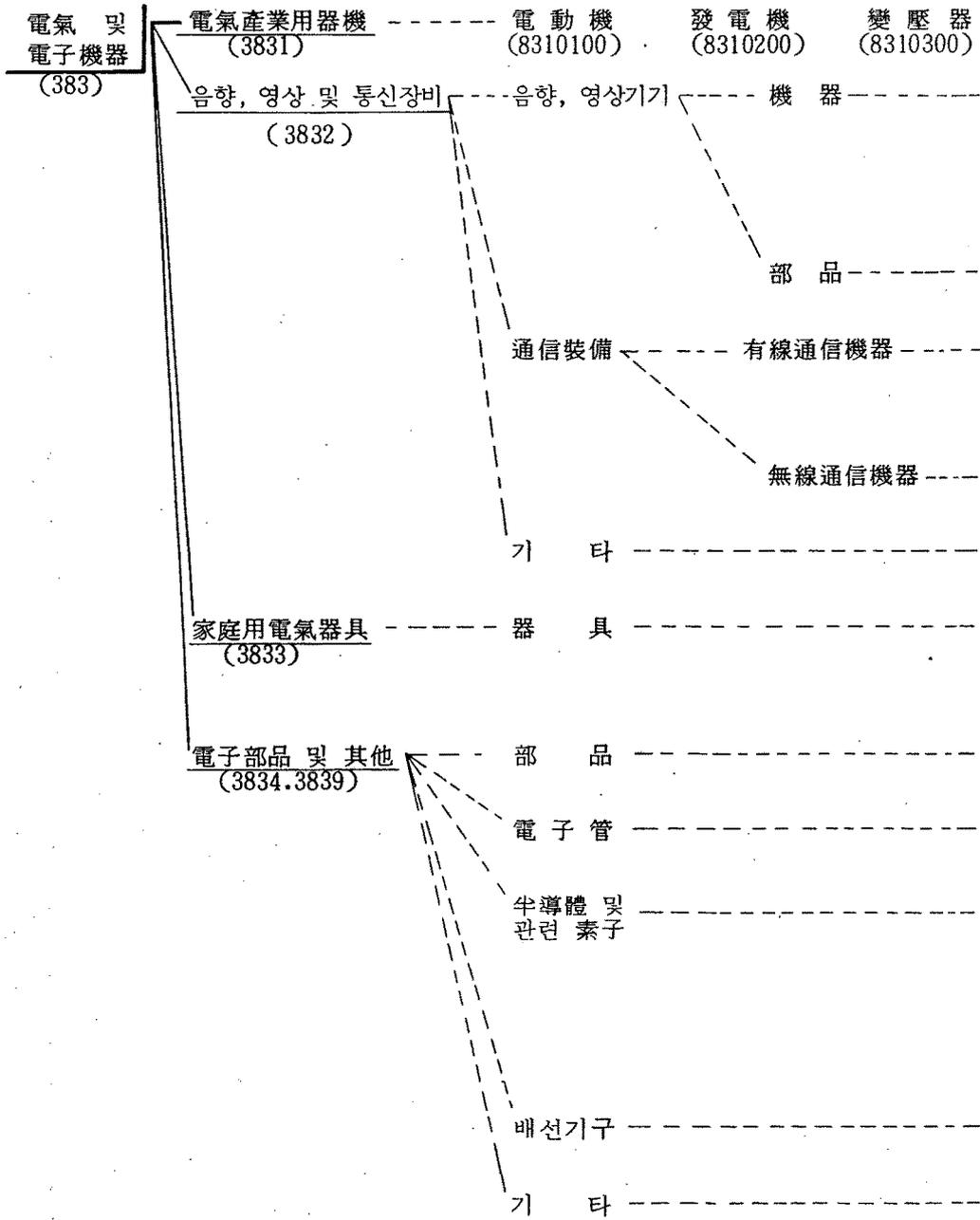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290800	에 스 컬 레 이 타 (Escalator)	대	계단식의 이동장치를 통해 사람을 상하층으로 이동시키는 운반기계
8290900	엘 리 베 이 타 (Elevator)	대	고층빌딩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수직으로 운반하는 기계
8291000	콘 베 이 어 (Conveyor)	대	연속적인 재료의 공급이나 배출, 분업화된 작업선 (line)에서 화물을 수평이동이나 경사이동 시키는 화물연속이송장치
8291100	지 계 차 (Forklift)	대	지게모양의 두개의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팔로 화물의 하역, 적재를 위해 제작된 물품취급장치
8291200	공 업 용 재 봉 기 (工業用裁棒機)	대	얇은 직물에서 가죽에 이르기까지 재봉을 위해 전문화되어 제작된 재봉용기계
8291300	기 어 (Gear)	M/T	원통형이나 원뿔등의 면에 이를 만들어 이것이 다른것과 서로 맞물려서 한축에서 다른 축으로 동력과 회전을 전달하는 기계요소
8291400	감 속 기 (減 速 機)	대	기어의 회전비를 이용, 기어를 여러단으로 연결하여 전동기에서 나오는 회전을 기계에 적절한 회전속도로 바꾸어 주는 장치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벨트콘베이어, 로라콘베이어, AQ 콘베이어, 경사콘베이어등 각종 콘베이어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ttery 이용 전동지게차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침직선, 본봉재봉틀, 오바로크등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기어, 헬리칼기어, 베벨기어, 워엄기어, 레크와 피니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형 감속기, 유성감속기, 워엄감속기, 기어드모타 포함 	주물, 기어, 증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속기 제외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291500	베 어 링 (Bearing)	M/T	회전축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키고 그 회전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계요소
8291600	열처리로 및 전기로 (熱處理爐 및 電機爐)	대	쇳물을 녹이거나 금속재료의 열처리를 위해 전기적인 에너지를 이용하는 전기로와 버너등으로 열을 공급하는 열처리로
8291700	소 화 기 (消 火 器)	대	물이나 소화액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조작하여 불을 끄는 장비
8291800	소화용스프링쿨러 (Spring cooler)	개	열감지장치에서 화재를 감지하여 소방용 밸브를 작동시켜 스프링쿨러에서 대량의 물을 일시에 살포하여 화재를 초기진압하는 자동소화장비의 소화부분
8291900	로 울 러 (Roller)	개	콘베이어나 제품의 이송을 위하여 안내를 제공하는 원통형의 굴림대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볼베어링, 로울러베어링, 메탈베어링, 기타베어링을 조사	주 물	
○ ABC분말소화기, CO ₂ 소화기, 하론 (Halon) 소화기 포함. ----- × 고정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소화 전) 및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 용구 제외		
○ 각종의 스프링쿨러 헤드를 조사		
※ 압연기틀은 8231400 으로 조사		

소분류 383. 전기 및 전자기기제조업



配電盤 (8310400) 回路遮斷器 (8310500) 電氣溶接機 (8310600) 整流器 (8310700) 燈安定機 (8310809)

흑백 TV 수상기, 칼라 TV 수상기, 콤비네이션 TV 수상기, 영상녹화재생기, 일반라디오,
(8320100) (8320200) (8320300) (8320400) (8320700)
카스테레오, 녹음 및 재생기, 소형 전축, 데스크, 헤드 폰, 레코드플레이어,
(8320800) (8320900) (8321100) (8321200) (8321800) (8321300)
스피커시스템, 전축용튜너, 전축용앰프, 자동차용음향증폭기, 방송용증폭기
(8321400) (8321500) (8321600) (8321700) (8322000)

電子式 TV 튜너, 機械式 TV 튜너, 오디오용튜너, 확성기, 테크메카니즘
(8320500) (8320600) (8321000) (8321900) (8322100)

電話機, 키 폰, 電話交換機, 반송장치, 텔레폰레코더, 모사전송기기,
(8322200) (8322400) (8322500) (8322600) (8322700) (8322800)
인터컴, 인터 폰, 유선통신기기부품, 모니터 TV
(8322900) (8323909) (8324009) (8323000)

무선전화기, 무선송수신기, 무선원격조절기, 위성방송수신기, 자동차용전화기
(8322300) (8323100) (8323200) (8323300) (8323400)

도난경보기, 의료용방사선기기, 녹음테이프, 비데오테이프
(8323500) (8323600) (8323700) (8323800)

가정용냉장고, 가정용선풍기, 전기세탁기, 탈수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8330100) (8330200) (8330300) (8330400) (8330600) (8330700)
진공소제기, 가습기, 환풍기
(8330800) (8330900) (8331009)

타임어스위치
(8330500)

흑백 TV 용브라운관, 칼라 TV 용브라운관, 표시관, 산업용브라운관
(8340100) (8340200) (8340300) (8340400)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집적회로, 혼성집적회로, 금속산화물반도체, 발광다이오드
(8340500) (8340600) (8340700) (8341000) (8340800) (8340900)
고정축전기, 가변축전기, 고정저항기, 가변저항기, 변성기, 전자코일
(8341100) (8341200) (8341300) (8341400) (8341500) (8341600)
인쇄회로기판, 자기헤드, 코넥터, 릴레이, 동박적층판, 웨라이트코아
(8341700) (8341800) (8341900) (8342000) (8342100) (8342200)
웨라이트마그네트, 소형모터, 수정진동자, 로드안테나
(8342300) (8342400) (8342500) (8342600)

소켓트, 스위치, 절연코드 및 코드셀, 콘센트, 프러그
(8391100) (8391200) (8391300) (8391409) (8391500)

통신선 및 케이블, 전력선 및 케이블, 마그네트선, 백열전구, 형광전구,
(8390100) (8390200) (8390300) (8390400) (8390500)
장식용전구, 축전지, 건전지, 형광등, 차량용조명등 및 신호등
(8390600) (8390700) (8390800) (8390900) (8391000)

○ 문제점 및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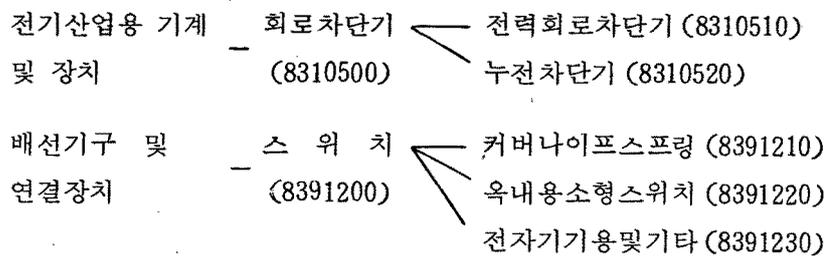
1. 품목명이 유사할지라도 용도, 복합체, 강·약전(전압의 크기)용 등에 따라 품목분류를 달리한다.

- 예) • 전동기(8310100)와 소형모터(8342400)
 • 변압기(8310300)와 변성기(8341500)
 • 전력회로차단기(8310500)와 스위치(8391200) 릴레이(8342000)
 • 전력선 및 케이블(8390200)과 절연코드 및 세트(8391300)

2. 회로차단기, 스위치류의 조사구분에 관한 사항

가. [개념] 전기, 전자기기용 개폐장치 및 차단기는 크게 산업기기용 중전기기등의 기계작동을 위한 것. 소형전자기기용 제외)과 전기 배선기구 및 연결장치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분류 조사한다.

나. [분류체계]



다. [구분요령]

회로차단기(8310500)…전기산업용 기계 및 장치로써 전류의 과부하, 단락으로 인한 기계 또는 배선기구를 위한 분전반등의 파손·화재등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단기로 차단장치 및 보호 장비물이다.

- 누전차단기(8310520)…전기기기사용중 누전·감전 발생시 그것을 감지 즉시 전로를 차단하는 기기만 조사
- 전력회로차단기(8310510)…기타 회로차단기를 조사

스위치(8391200)…전기배선기구 및 연결장치 또는 소형전기, 전자기기에 부착하여 단순 ON-OFF기능만 하는 개폐기(주로 건물 및 기구장비용으로 쓰임)

- 커버나이프스위치 (8391210) …스위치중 가장 대용량으로 쓰이는것으로 휴즈를 사용 과부하, 단락에 대한 전기기의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것을 조사
- 옥내소형스위치 (8391220) …건물에 부착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쓰이는 배선기구의 일종으로 전등, 등의 단순 ON - OFF 를 위하여 사용하는 개폐기를 조사
- 전자기기용 및 기타 (8391230) …전자기기에 내장되어 단순 ON - OFF 기능을 위하여 쓰이는 스위치 및 상기이외의 스위치를 조사

3. 축전기 (蓄電器 , Condenser)와 저항기 (抵抗器 , Resistor)의 조사요령

가. 개념 : 電子部品을 回路部品등의 수동부품과 트랜지스터, 직접회로등 이른바 電子素子인 능동부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동부품인 축전기, 저항기는 靜電容量, 抵抗値中の 변화 유무에 따라 固定, 可變으로 구분한다.

나. 분류체계 및 종류…본 조사는 전기기기가 아닌 전자부품만 조사함.

- 축전기
 - 고정축전기 (8341100) …종이컨덴서, MP컨덴서, 有機 필름컨덴서, 마이카 (mica) 컨덴서, 세라믹 (ceramic) 컨덴서 電解컨덴서 등이 있다.
 - 가변축전기 (8341200) …공기가변컨덴서, 플라스틱가변 컨덴서, 등이 있다.

- 저항기 탄소계...피막형, 킴퍼지선형
금속계...피막형, 후막형, 권선형
반도체...변환소자, 능동소자형, 비직선형 등으로 구분되며
抵抗値가 변화는 가변저항기(8341400), 抵抗値
가 변하지 않는 固定저항기(8341300)로 나눌 수 있다.

7. 고정저항기...炭素皮膜 고정저항기, 등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310100	전 동 기 (電 動 機)	HP	외부의 전기적에너지를 받아 기계적에너 지로 변환시키는 기계
8310110	직 류 전 동 기 (直 流 電 動 機)	HP	
8310120	교 류 전 동 기 (交 流 電 動 機)	HP	
8310200	발 전 기 (發 電 機)	KW	엔진에서 발생하는 기계적에너지를 전기 적에너지로 변환하는 기계
8310300	변 압 기 (變 壓 器)	KVA	전압을 변화시키는 기계
8310400	배 전 반 (配 電 盤)	백만원 (병행:대)	발전기, 변압기, 기타 전기배선기구 등의 운전을 제어하고 그 발생전력을 이끄는 데 필요한 기구, 기계를 모아서 장치한 반
8310500	회 로 차 단 기 (回 路 遮 斷 器)	대	

ㄴ. 가변저항기...炭素系컴퍼지션 可變저항기, 金屬膜型가변저항기, 트
리머 (trimmer) 型 가변저항기 등.

4. 타업종에 비하여 제품의 수명이 짧고, 신제품개발이 활발하므로 관련
사업체에서의 누락품목 등 확인사항 철저 산업통계과 담당자와
협의 조사유무결정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용만 조사 ----- × 기기용의 소형모터 (보통 1kw이하)는 제외 ----- ○ 직권, 분권, 복권전동기 등 ----- ○ 단상유도, 3상유도, 동기전동기 등 	주물,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류, 교류 조사 	주물, 철심, 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배전용, 발전용포함, 강전용만 조사 	주물, 철심, 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전력용 고압, 저압 배전반, 제어반 분전용 분전반 등을 조사 	주물, 철판	※ 단위변경 (대-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및 유의사항의 2항 참조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310510	전력회로차단기 (電力回路遮斷器)	대	
8310520	누전차단기 (漏電遮斷器)	대	
8310600	전기용접기 (電氣溶接機)	대	용접에 쓰이는 각종 전기용접기계
8310700	정류기 (整流器)	대	전류의 흐름(교류를 직류로)을 바꾸어 주는 장치, 기기
8310809	등안정기 (燈安定機)	대	각종 등에 내장되어 변압기능을 갖는 기기
8320100	흑백 TV 수상기 (黑白TV受像機)	대	
8320200	칼라 TV 수상기 (칼라 TV 受像機)	대	
8320210	로타리형수상기	대	기계식튜너를 통한 채널선택방식형
8320220	터치및리모콘형수상기	대	전자식튜너를 통한 채널선택방식형
8320300	콤비네이션TV수상기 (콤비네이션TV受像機)	대	TV수상기능과 오디오기능을 복합장치한 TV수상기
8320310	칼라콤비네이션 TV수상기	대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아크용접기, 저항용접기 등을 조사 × 가스를 열원으로 하는 가스용접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용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전변류기, 전동발전기, 수은정류기, 금속정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광등, 수은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과 튜너방식에 관계없이 모두 조사 × TV게임, 공업용TV, 학술조사용 등 특수분야 유선TV (폐쇄회로)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IC, PCB, 브라운관 튜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흑백 TV수상기에 준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C, PCB, 브라운관 튜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터블형 (휴대용), 콘솔형 (장식용) 등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IC, PCB, 브라운관 튜너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320320	흑백콤비네이션 TV 수상기	대	
8320400	영상녹화재생기 (映像録畫再生機)	대	
8320410	영상녹화재생기 (映像録畫再生機)	대	녹화와 재생 겸용
8320420	영상 재생기 (映像録畫再生機)	대	단순재생기능만 있는 제품
8320500	전자식 TV 튜너 (電子式 TV 튜너)	천개	TV수상기의 채널선택장치로써 터치 및 리모콘형 수상기에 쓰이는 부분품
8320600	기계식 TV 튜너 (機械式 TV 튜너)	천개	TV수상기의 채널선택장치로써 로타리형 TV수상기에 쓰이는 부분품
8320700	일반 라디오 (一般 라디오)	대	
8320800	카스테레오	대	자동차용 녹음재생기
8320900	녹음 및 재생기 (錄音 및 再生器)	대	
8320910	일반 녹음기	대	라디오부착 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기기
8320920	녹음 재생기	대	단순재생기능만 갖춘 기기
8321000	오디오용 튜너	천개	각종 오디오용 방송주파수 조절기능장치 (채널선택기능장치)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TR (VCR) 		
	IC	
	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계라디오 포함 ※ 카라디오는 8320800 카스테레오에 포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디오부착 또는 미부착 녹음재생기 모두 포함.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 및 재생기 포함 × 전축용 데크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식, 기계식 포함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321100	소 형 전 축 (小 型 電 蓄)	대	일명 뮤직센타, 앰프, 레코드플레이어, 스피커 등으로 조립된 제품
8321200	데 크	대	녹음테이프를 삽입하여 녹음 및 재생시킬수 있는 장치(데크메카니즘)가 부착된 콤팩트디스크의 부분품
8321300	레 코 드 플 레 이 어	대	픽업, 턴테이블, 캐비넷 등으로 구성된 콤팩트디스크의 구성품(턴테이블: 레코드판의 홈에 수록된 음성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꾸는 기능을 갖춘 기기)
8321310	일반레코드플레이어	대	
8321320	컴팩트디스크플레이어 (C . D . P)	대	
8321400	스 피 커 시 스템	대	증폭된 전기신호를 음성신호로 바꾸어 주는 기능을 갖춘 확성기 조립품
8321500	전 축 용 튜 너	대	방송국에서 발사하는 전파를 받아 음성신호로 바꾸는 기능을 갖춘 콤팩트디스크의 부분품
8321600	전 축 용 앰 프	대	음성증폭기능을 갖춘 콤팩트디스크의 부분품
8321700	자동차용음향증폭기 (自動車用音響增幅器)	대	일명 카부스타
8321800	헤 드 폰	천개	폰을 양귀에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는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각종 기기의 분리형 (컴퍼넌트) 은 테크, 튜너, 앰프등 별도 품목으로 조사되는 것임		
	테크메카니즘	
	픽업, 턴테이블	
	확 성 기	
○ Hi-Fi 앰프, 튜너앰프 등을 조사		
○ 자동차에 내장 가능한 앰프만 조사		
○ 대형, 소형 포함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제품
8321900	확 성 기 (擴 聲 器)	천개	일명 스피커, 스피커시스템의 부분품
8322000	방 송 용 증 폭 기 (放 送 用 增 幅 器)	대	전축용앰프를 제외한 산업 및 사무기기 용 제품
8322100	데 크 메 카 니 즘	천개	녹음, 녹화 및 재생기능을 하는 모타, 헤드를 포함한 기계부분품
8322110	녹 음 기 용 D.M	천개	오디오용
8322120	녹 화 기 용 D.M	천개	비디오용
8322130	컴퓨터용및기타 D.M	천개	컴퓨터용
8322200	전 화 기 (電 話 機)	대	
8322210	전 자 식 전 화 기	대	MFC전화기
8322220	다이알식전화기	대	
8322300	무 선 전 화 기	대	일명 코드레스전화기
8322400	키 폰	대	각 회선에 전화기를 연결하여 내선 상 호간은 물론 각 전화기에서 자유로운 국선호출, 응답, 다른 전화기에 전송이 가능토록 한 통신기기
8322500	전 화 교 환 기 (電 話 交 換 機)	회선	전화기의 송수신기능을 연결가능토록 한 통신기기
8322510	자동식 전화교환기	회선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X 이어폰 제외		
○ 공중전화기 포함		
○ 스텝 바이스방식, 크로스바방식, 전자교환방식, 자동식구내교환기, 기계식, 전자식 등 조사	IC, 릴레이 통신선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322520	전 자 식 및 기 타 전 화 교 환 기	회 선	
8322600	반 송 장 치 (搬 送 裝 置)	회 선	전화교환기와 전화기, 단말기, 국과 국의 연결등에서 기능보완을 갖춘 장치물(음 성신호 ↔ 전기적신호)
8322700	텔 레 폰 레 코 더	대	전화기에 연결장치한 무인수신기
8322800	모 사 전 송 기 기	대	문서 또는 사진을 일반전화, 송수신망을 이용 송수신하는 장비(일명, 팩시밀리)
8322900	인 터 컵	대	모기(母機)와 자기(子機)간의 직접무 선통화 할 수 있는 기기(무선인터폰)
8323000	모 니 터 TV	대	국시적 시청을 위한 수상기로 폐쇄회로 카메라로 화면을 포착 영상화하는 기기
8323100	무 선 송 수 신 기 (無 線 送 受 信 機)	대	일명 : 민수용무전기
8323200	무 선 원 격 조 절 기	대	일명 : 리모콘 (Remote Controll)
8323300	위 성 방 송 수 신 기 (TVRO)	대	적도 상공(약 40,000 km)의 방송위성에 서 보내오는 TV 프로그램을 직접 수신 하여 가정용 TV로 시청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치, 아파트, 호텔 등에서의 공청 도 가능
8323400	자 동 차 용 전 화 기	대	일명, 카폰, 자동차내에 부착 이동하면서 무선중계대와 교환국을 이용하여 일반전 화가입자나 다른 카폰과 통화할 수 있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PCB, IC	
○ 자동응답기 포함		
※ 보통 1세트에 모기 1대, 자기 6 대로 구성됨.		방송국에서 주로 쓰임
○ LDB (LED Display Board)	브라운관	• 도난방지, 감시기능 • 지하철 등에 쓰임
○ 민수용만 조사 ○ CB트랜시버, 워키토키 포함		• 건설현장 • 레저용
	IC	TV용, 레저, 장난감용
○ 단일변환방식, 이중변환방식, 모노, 스테레오, 리모콘형 등 조사	안테나, 변 류기	TV시청용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는 전화기
8323500	도 난 경 보 기 (盜難警報器)	대	
8323600	의료용 방사선기기	백만원	각종 방사선의료기기 및 기자재
8323700	녹 음 테 이 프	KM	플라스틱테이프표면에 자성철분을 입힌것 (오디오용)
8323800	비 데 오 테 이 프	천개	영상을 재생 또는 녹화할 수 있는 자 기테이프(비데오용)
8323909	인 터 폰	대	
8324009	유선통신기기 부품	백만원	유선통신기기용 부품
8330100	가 정 용 냉 장 고	대	
8330110	소 형 냉 장 고	대	140 ℓ 이하
8330120	중 형 냉 장 고	대	270 ℓ 이하
8330130	대 형 냉 장 고	대	271 ℓ 이상
8330200	가 정 용 선풍기 (家庭用扇風機)	대	
8330300	가정용전기세탁기 (家庭用電氣洗濯機)	대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차량용, 주거용, 사무실용 각종 제품 포함		
○ 보조기기 및 관련제품 포함		
○ 카세트형, 릴형 모두 포함	플라스틱, 산화철	
	플라스틱, 산화철	
○ 통신기기부품중 유선통신기기만 조사		
× 무선통신기기용은 제외		
※ 산업용은 382 에서 조사		
× 아이스박스 제외		
○ 벽걸이선 풍기 포함	타임어스위	
× 산업용, 날개 만있는것 (자동차, 여객차 등에서 설치된 것)은 제외	치, 소형모터	
○ 가정용만 조사	타임어스위 치, 소형모터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330400	탈 수 기 (脫 水 機)	대	세탁물의 탈수기능만 갖춘 기기
8330500	타 임 어 스 위 치	천개	시간조절용 자동개폐기
8330600	전 자 레 인 지	대	
8330700	전 기 밥 솥	대	
8330800	진 공 소 제 기 (眞 空 掃 除 器)	대	
8330900	가 습 기 (加 濕 器)	대	물을 기화하여 건조한 공기의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기
8331009	환 풍 기	대	
8340100	흑백TV 용브라운관	개	
8340200	컬라TV 용브라운관	개	
8340300	표 시 관	천개	각종 디지털기기의 표시관
8340400	산업용브라운관	개	컴퓨터주변기기(모니터)용
8340500	트 랜 지 스 터	천개	
8340510	S.S 트랜지스터	천개	Small-Signal (1W이하)
8340520	P.W 트랜지스터	천개	Power (1W이상)
8340600	다 이 오 드	천개	양극과 음극의 두극만을 갖인 진공관
8340700	집 적 회 로 (集 積 回 路)	천개	저항, 콘덴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의 회로소자를 작은기판위에 놓고 배선까지도 하여 한 계열의 기능을 갖도록 만든 반도체회로
8340800	금속산화물반도체 (M . O . S)	천개	집적회로용 메모리판 (Metal-Oxide-Semiconductor)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가정용만 조사		
○ 각종 전기, 전자용 포함		
○ 전기보온밥통겸용 포함		
× 산업용은 제외		
	발광다이오드	
○ 반도체 I.C, 고밀도 I.C, 초고밀도 I.C 등 모두 포함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340900	발 광 다 이 오 드	천 개	일명, LED
8341000	혼 성 집 적 회 로	천 개	하이브리드 IC
8341100	고 정 축 전 기 (固 定 蓄 電 器)	천 개	
8341200	가 변 축 전 기	천 개	
8341300	고 정 저 항 기	천 개	
8341400	가 변 저 항 기	천 개	
8341500	변 성 기 (變 成 器)	천 개	전압을 공급회로내에서 요구되는 전압을 승압시켜주는 장치물 일명, 트랜스포머
8341510	중간및고주파변성기	천 개	
8341520	전 원 변 성 기	천 개	
8341530	입 출 력 변 성 기	천 개	
8341540	고 압 변 성 기	천 개	
8341600	전 자 코 일	천 개	산화철을 혼합하여 자성물질을 갖게한 전자부품
8341700	인 쇄 회 로 기 판	개	동박적층판에 회로를 가한 것
8341710	페놀인쇄회로기판	개	
8341720	에폭시인쇄회로기판	개	
8341800	자 기 헤 드	천 개	자기테이프와 접촉하여 녹음 녹화 또는 재생시켜주는 부품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문제점 및 유의사항의 3항 참조		
		약전 (전자기기) 용 제품 의 부품
○ 인덕형코일, 편향요크, 필터코일, 동조 코일, 포화코일, 고주파발생 코일 등 포함	산화철, 선 재	
	페놀동박적층판	
	에폭시동박적층판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341810	오디오용 자기헤드	천 개	
8341820	비디오용 자기헤드	천 개	
8341830	컴 퓨 터 및 기 타 자 기 헤 드	천 개	
8341900	코 넥 터	천 개	전자회로를 여러방향으로 연결가능토록 한 전자기기용 부품
8342000	릴 레 이	천 개	자동개폐기능을 갖춘 전자용스위치의 일종
8342100	동 박 적 층 판	천 개	인쇄 회로기판의 원판
8342110	페 놀 동 박 적 층 판	천 개	페놀수지에 절연지를 합침시켜 동박을 적층한 것
8342120	에폭시 동박적층판	천 개	에폭시수지에 절연지를 합침시켜 동박을 적층한 것.
8342200	웨 라 이 트 코 아	천 개	산화철등을 소재로 한 전자부품
8342300	웨라이트마그네트	M/T	자기능력을 갖춘 전자부품
8342400	소 형 모 터	천 개	약전(보통 1kw이하)에 쓰이는 전자부 품
8342410	직 류 소 형 모 터	천 개	
8342420	교 류 소 형 모 터	천 개	
8342500	수 정 진 동 자 (水晶振動子)	천 개	수정의 진동현상을 응용한 것으로 주파 수변동을 줄여서 발진주파수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한 전자부품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기 등 오디오용제품 • VCR 등 비데오용제품 • 컴퓨터등 산업용 제품
× 전기 콘센트는 제외		
× 전기스위치는 제외		
	페놀수지, 절연지, 동박 페놀수지, 절연지, 동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회로기판 • 가정용기기제품 (TV, VTR, 라디오등) • 산업용기기제품 (컴퓨터 교환기등)
	전자코일, 산화철	
	산화철	
		전자기기용, 장난감용
	수정	송수신기, 측정기등에 사용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342600	로 드 안 테 나 (Rod 안 테 나)	천 개	로드 (Rod)형 안테나, 전자기기용 부착 사용
8390100	통 신 선 및 케 이 블	M/T	통신용 절연선
8390200	전 력 선 및 케 이 블	M/T	전력용절연선 (강전용)
8390300	권 선	M/T	일명 마그네트선
8390400	백 열 전 구	천 개	필라멘트에 전류를 흘려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발광토록 한 전구
8390500	형 광 전 구 (螢 光 電 球)	천 개	아아크방전 (수은증기)에 의해 생기는 자외선으로 유리관안쪽의 형광물질을 자 극하여 빛을 내제한 전구
8390600	장 식 용 전 구	천 개	주로 착색유리를 사용하여 만든 전구
8390700	축 전 지 (蓄 電 池)	개	화학적 변화에 의한 전류의 충전, 재생 기능을 갖춘 전지, 건전지와 구분되는 2차전지
8390800	건 전 지	천 개	
8390900	형 광 등	개	형광전구를 부착 가능토록 한 장치물
8391000	차량용조명및 신호등	천 개	
8391010	전 조 등	천 개	자동차 전면에 있는 헤드라이트
8391020	경 광 등 및 기 타	천 개	리어등, 신호등, 경보등, 실내등 포함
8391100	소 켓 트	천 개	전구를 끼워 전류의 흐름을 연결가능토 록한 장치물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나동선	통신기기용
	나동선	전력송전 및 배전용
○ 절연물질(에나멜등)로 피복한 절연선 (약전용)	나동선	전자기기용
	유리, 필라 멘트	
	유리관	
○ 착색유리가 아닌 장식용 제품도 포함		
		차량용
	등안정기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391200	스 위 치	천 개	
8391210	커버나이프 스위치	천 개	
8391220	옥내용 소형스위치	천 개	
8391230	전자기기용 및 기타	천 개	
8391300	절연코드 및 코드셋트	K M	각종 전기기기용에 쓰이는 절연선 (전기기기용 및 배선용)
8391409	콘 셴 트	천 개	전기배선기구
8391509	프 러 그	천 개	

소분류 384. 운수장비 제조업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운수장비 제조업은 사람이나 물품을 장거리로 이동시키기 위한 탈환으로 크게는 육상용과 해상용 그리고 항공용으로 분리될 것이다. 이를 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하면,

- 가. 3841, 선박 건조 수선업
- 나. 3842, 철도장비 제조업
- 다. 3843, 자동차 제조업
- 라. 3844, 모터사이클 및 자전거 제조업
- 마. 3845, 항공기 제조 및 수선업
- 바. 3846, 달리분류되지 않는 운수장비 제조업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2. 선박 및 철도차량 제품의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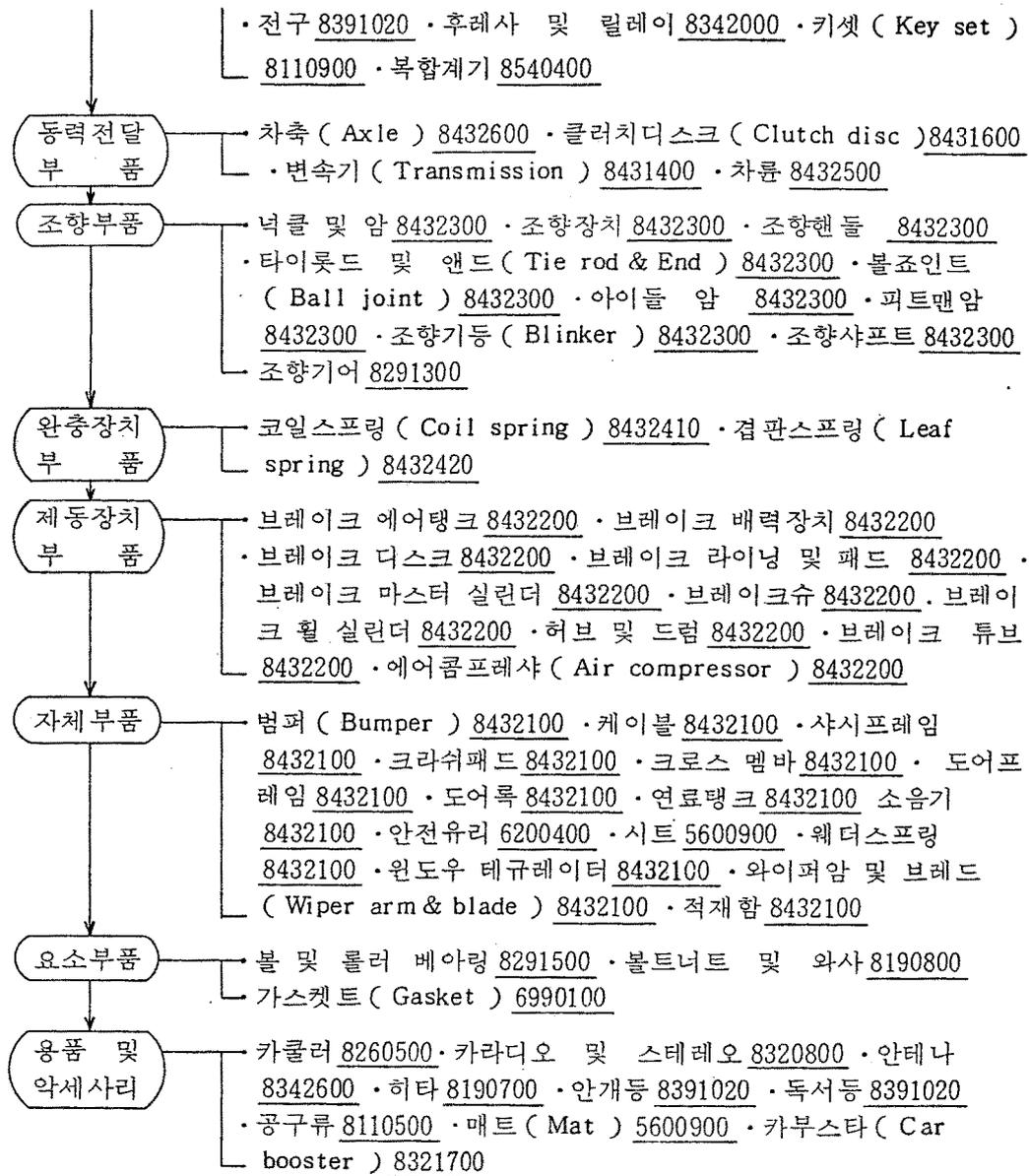
선박 및 철도차량의 조사는 조사표(1)에 의해서 여타품목과 동일한 항목을 조사하였으나 85년 기준의 조사부터는 독립된 조사표에 수주량,진척량, 수주잔량, 완성기준의 당일생산량(최)을 조사하도록 하였으니 유의한다.

3. 동일 사업체에서 여러종류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시에는 합산 또는 누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한다.

4. 차량용 부품은 종전의 조립금속 제품이나 기계제조업에서 이동하여 온 제품이 많으므로 유의할것 (예 : 자동차용 방열기, 자동차용 중판스프링, 변속기, 피스톤, 피스톤링 등)

5. 자동차부품과 광공업 동태조사 지정품목과의 관계

품목군	세부품목	
엔진부품	공기청정기 (Air Cleaner) <u>8431340</u> · 기화기 (Carburetor) <u>8431310</u> · 캠샤프트 (Cam Shaft) <u>8431340</u>	
	· 냉각팬 (Cooling fan) <u>8431340</u> · 크랭크샤프트 (Crank shaft) <u>8431500</u> · 팬 벨트 (Fan belt) · <u>8431340</u>	
	· 실린더라이너 (CyLinder liner) <u>8431340</u> · 연료필터 (Fuel filter) <u>8431340</u> · 연료펌프 (Fuel pump) <u>8431340</u>	
	· 메탈베어링 (Metal bearing) <u>8291500</u> · 오일필터 (Oil filter) <u>8431340</u> · 오일펌프 (Oil Pump) <u>8431340</u>	
	· 피스톤 (Piston) <u>8431320</u> · 피스톤핀 (Piston pin) <u>8431340</u> · 피스톤링 (Piston ring) <u>8431330</u>	
	· 방열기 (Radiatar) <u>8432700</u> · 록귀암 및 샤프트 (Rocker arm & shale) <u>8431340</u> · 자동온도조절기 <u>8431340</u>	
	· 밸브가이드 (Valve guide) <u>8431340</u> · 냉각수펌프 (Water pump) <u>8431340</u> · 커넥팅로드 (Connecting rod) <u>8431340</u> · 엔진밸브 (Engine Valve) <u>8431340</u> · 인젝션펌프 (Injection pump) <u>8431340</u>	
	· 매니폴드 (Manifold) <u>8431340</u> · 노즐 및 홀더 (Nozzle & Holder) <u>8431340</u> · 오일냉각기 (Oil Cooler) <u>8431340</u>	
	· 오일팬 (Oil fan) <u>8431340</u> · 푸쉬로드 (Push rod) <u>8431340</u> · 밸브시트 (Valve sheet) <u>8431340</u>	
	· 밸브타페트 (Valve tapper) <u>8431340</u>	
	전장부품	발전기 (Alternator) <u>8310200</u> · 점버네이션스위치 (Combi- nation switch) <u>8391230</u> · 계기류 (Gauges) <u>8540400</u>
		· 전조등 (Head lamp) <u>8391010</u> · 램프류 (Lamps) <u>8391020</u> · 시동전동기 (Starting motor) <u>8431700</u>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410100	선박용내연기관 (船舶用內燃機關)	HP	선박용의 엔진. 실린더내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이때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피스톤의 운동에너지를 바꾸어 축을 움직이는 선박용 원동기.
8410200	철강유조선 (鐵鋼油槽船)	G/T	원유등의 수송을 위한 선박. (Tanker)
8410300	일반화물선 (一般貨物船)	G/T	일반화물을 운반할수 있도록 건조된 선박.
8410400	특수화물선 (特殊貨物船)	G/T	특수한 제품을 전용으로 운반할수 있게 특수형태로 건조된 선박
8410500	비상업용특수선박 (非商業用特殊船舶)	G/T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조된 예인선, 쇄빙선, 시추선, 케이블선, 준설선, 기중기선, 소방선, 기상관측선등의 비상업용 선박.
8410600	철강어선 (鐵鋼漁船)	G/T	각종의 철강어선.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용 디젤기관 및 소옥기관 포함. 		
		원유, 정유운반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목적 화물선(석탄, 곡물, 광물, 목재 등 운반용선박), 바지선, 콘테이너선, 자동차전용선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제품 및 가스운반선, 냉동선, LPG 운반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업용선박인 예인선, 시추선, 오물수거선, 기상관측선, 소방선등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선 및 군함, 잠수함 등 군사용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유생선가공선, 공장선, 포경선 포함 × 기타 재질어선은 제외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410700	합 성 수 지 선 (合 成 樹 脂 船)	G/T	강화 플라스틱 (FRP : F iber reinforced plastics)으로 만든 선박.
8410800	선 박 해 체 업 (船 舶 解 體 業)	L.D.T	노후화된 고선박을 구입하여 고철 또는 철근소재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해체하는 업.
8410909	목 선	G/T	목재로 만든 선박
8420100	디 젤 기 관 차	량	디젤기관을 이용한 동력차.
8420200	전 동 차 (電 動 車)	량	전력을 받아 모타의 움직임을 이용한 동력차.
8420300	여객차및수하물차 (旅 客 車 및 手 荷 物 車)	량	자체동력이 없어 끌려다니는 열차로 여객을 위한 여객차와 수하물을 싣는 열차.
8420400	화 차 (貨 車)	량	화물을 전용으로 싣기위해 제작된 열차
8420500	철 도 차 량 부 품 (鐵 道 車 輛 部 品)	백만원	철도차량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차량부품.
8420609	철 도 차 량 료	개	열차의 바퀴.
8420709	광 차	량	광산에서 광석을 갱밖으로 운반하기 위한 동력이 없는 궤도차량
8430100	소형 승 용 차	대	배기량 1,400 cc 이하의 승용차.
8430200	중형 승 용 차	대	배기량 1,900 cc 이하의 승용차.
8430300	대형 승 용 차	대	배기량 1,901 cc 이상의 승용차.
8430400	지 프 형 승 용 차	대	지프 (Jeep)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FRP 어선, FRP보트 포함.		
× 군사목적용은 제외		
※ L.D.T : 경하배수량 (선박내의 물을 뺀 중량) → 화물을 적재않은 상태의 실지 중량톤)		
○ 수화물차, 침대차, 식량차 포함.		
○ 무개차, 평저차, 유개차, 유로차, 냉장차등 포함.		
× 내장재 (의자, 에어컨등)와 철도차량류 제외.		
× 윤심제외		
× 광차로 끄는 광산의 기관차는 제외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430500	소 형 버 스	대	25인승 미만의 버스
8430600	일 반 버 스	대	
8430700	고 속 형 버 스	대	고속도로용의 고속엔진을 부착한 버스.
8430800	소 형 트 렉	대	1/2 톤이상 4 톤미만의 트럭.
8430900	중 형 트 렉	대	4 톤이상 8 톤미만의 중형트럭.
8431000	대 형 트 렉	대	화물운반용의 8 톤 이상의 트럭.
8431100	특 장 차 (特 裝 車)	대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설계되어 만들어진 차량.
8431200	자동차용내연기관 (自動車用內燃機關)	대	승용차, 버스, 트럭, 특장차등 각종차량의 내연기관.
8431300	자동차용기관부품	백만원	
8431310	기 화 기	백만원	엔진의 운전상태에 따라 공기와 가솔린을 적당한 비율로 혼합하고 동시에 미립화하여 엔진에 공급하는 부품.
8431320	피 스 톤	백만원	차량엔진의 기통내에서 연료를 연소시킬때 고온고압가스에서 발생하는 힘을 축(크랭크축)에 전달하는 부품.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봉고차(9인승이상 포함) 및 마이 크로 버스 포함.		
○ 시내 및 시외버스 포함.		
○ 6인승이하 봉고형 밴트럭(화물을 적재할 수 있게 만든 차량) 및 농촌형 다목적 트럭 포함.		
○ 병원차, 구난차, 콘크리트 믹서차, 위생차, 병원차, 방송차, 은행차, 장 의차, 급수차, 유조차, 냉동차, 트럭 트랙터 포함.		
× 무동력 트럭 트레일러 제외.		
○ 자동차용만 조사.		
○ 자동차용만 조사.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431330	피 스톤 링	백만원	실린더와 피스톤사이의 공간을 말해하기 위해 피스톤에 끼우는 등근대.
8431340	기타기관용부품	백만원	
8431400	변 속 기 (變 速 器)	대	일명 트랜스 미션. 차량엔진의 회전수를 변경하여 차축으로 전달하는 기어변속장치.
8431500	크랭크 샤프트	개	피스톤의 상하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바꾸어 엔진의 출력을 외부로 전달하고 동시에 흡기, 압축, 배기의 각 행정에서는 역으로 피스톤과 실린더에 운동을 전달하는 엔진부의 주제품.
8431600	클러치 디스크	개	크랭크 샤프트로 부터의 회전력을 외부의 변속기로 전달하는 원형의 강판으로 된 동력전달장치 부품.
8431700	시 동 전 동 기 (始動電動器)	대	차량의 최초시동을 위하여 전지(Battery)에 의해 구동되는 전동기.
8432100	자동차차체부품	백만원	자동차의 움직임과는 관계없이 구동부(엔진, 미션, 차축, 차륜등)를 고정시켜주는 틀(뼈대)과 사람이 탈수 있거나 화물을 싣을수 있도록 된 부분의 부품.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화기, 피스톤, 피스톤링을 제외한 기관용 부품을 조사. ※ 크랭크 샤프트는 별도조사(843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용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용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용만 조사. × 클러치 카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용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용만 조사. × 플라스틱부품, 유리등 비금속 제품 제외.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432200	브레이크조직	백만원	주행 중의 차량을 감속 또는 정지시키고 동시에 주차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동장치.
8432300	조향장치 (調向裝置)	백만원	자동차의 주행방향을 바꾸어 주는 장치.
8432400	차량용스프링	M/T	자동차의 진동 및 충격을 완화시키는 현가장치 부품.
8432410	차량용코일스프링	M/T	코일모양의 스프링
8432420	차량용종판스프링	M/T	띠(잎: leaf)모양의 스프링.
8432500	자동차륜 (自動車輪)	개	자동차의 타이어를 지지하는 부분(rim)과 바퀴를 허브에 설치하는 부분으로 구성된 자동차의 바퀴.
8432600	차축 (車軸)	개	차륜회전의 중심이 되는 축.
8432700	자동차용방열기 (自動車用放熱器)	개	내연기관에서 발생한 열을 냉각시키는 장치.
8440100	자전거 (自轉車)	대	각종용도(아동용, 학생용, 성인용, 경기용)의 이륜자전거 또는 자전거 차체.
8440200	자전거부품	백만원	자전거차체 및 자전거 림을 제외한 자전거 부품.
8440300	모터싸이클	대	49 cc 이상 이륜 및 삼륜오토바이
8440400	모터싸이클부품	백만원	모터싸이클용 기관을 제외한 각종 모터싸이클 부품을 조사.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자동차용만 조사.		
○ 자동차용만 조사.		
○ 자동차 및 철도차량용 스프링을 조사. ----- -----		
○ 자동차용만 조사.		
○ 후부차축, 앞부차축, 전달차축을 각 각 조사.		
○ 엔진냉각용 방열기만 조사. ----- × 차량내부 난방용 방열기 제외.		
○ 자전거 차체만 생산하는 업체도 완제품으로 간주하여 조사.		
----- -----		
× 모터 스쿠터는 제외.		

소분류 385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치와 사진 및 광학제품 제조업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510100	1 회 용 주 사 기 (1 回 用 注 射 器)	천 개	
8510200	수액 및 수혈 세트 (輸液 및 輸血세트)	개	영양제 주입 및 수혈을 위한 줄 및 그 세트를 말함
8510300	치 과 용 진 료 대 (齒科用診療臺)	대	환자가 걸터앉아 head rest 에 후두부를 대고 구강치료를 받는 치과치료 의자
8510409	치 과 기 공 품	백만원	
8520100	광 섬 유 (光 纖 維)	Km	MCVD (modified chemical vapor deposition) 화학기상증착법 및 VAD Vapor phase axial deposition) 기상축부법으로 만든 석영글라스파이버, 다성분글라스파이버, 복합재료 파이버, 플라스틱 파이버 등의 섬유를 말함.
8520200	광 섬유 케이블	Km	광섬유를 피복하여 만든 선 및 케이블
8520300	광 학 렌 즈	개	광학유리로 제조된 각종 용도의 렌즈를 말함 (대물렌즈, 거리측정용 렌즈 등)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과치료대 (dental chair), 치과용유닛 (dental unit), chair un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과용시멘트 인조치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영글라스파이버, 다성분글라스파이버, 복합재료파이버, 플라스틱 파이버 등 	<p>SiO₂, GeO₂ P₂O₅, B₅O₃ Na₅O, B₅O₅, CaO, Ti₅O 플라스틱 그레이트 폴리스티롤 실리콘 등</p>	<p>일반통신용 광에너지 전송용 영상정보 전송용</p>
	광섬유	<p>광통신시스템 계측시스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안경, 현미경, 망원경, 카메라용 렌즈 포함 × 안경용 렌즈, 콘택트렌즈 제외 	광학유리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520400	안 경 렌 즈 (眼鏡 렌 즈)	개	
8520500	사 진 기	대	
8520600	전 자 복 사 기 (電子複寫機)	대	
8520700	현 미 경 (顯微鏡)	백만원	
8520710	복합광학현미경	백만원	대물렌즈, 접안렌즈, 조명장치로 되어있어 극히 미세한 물체를 확대하여 관찰하거 나 촬영하는 광학기기
8520720	전자및양자현미경	백만원	회절장치, 광선대신 전자빔을 사용하므로 광학현미경과 구별
8520800	안 경 테	천 개	금속 및 셀룰로이드판, 아세테이트판 등 으로 만든 각종 형태의 안경용 테
8520900	쌍 안 경 (雙眼鏡)	개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렌즈 및 플라스틱렌즈 포함 (선그라스렌즈 포함) × 콘택트, 하드, 소프트렌즈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용 사진기 및 플로라이드 사진기 포함 × TV, VTR, 영화촬영 카메라는 제외 용 카메라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사기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현미경, 금속현미경, 줌 (Zoom) 현미경, 배양, 수술현미경, 顯微分光光度計, 工具현미경, 위상차현미경, 편광현미경, 光電현미경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그라스테 포함 교정용 안경테 포함 	철선, 황동선, 셀룰로이드판 PE수지	
오페라글라스 (Opera grass) 프리즘 쌍안경 대형 쌍안경 (架臺에 부착) 등	렌즈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530100	손 목 시 계	개	기계식 및 전자식(디지털, 아날로그)
8530200	벽 시 계 (壁時計)	개	기계식 및 전자식
8530300	탁 상 시 계	개	기계식 및 전자식
8530400	손목시계케이스	개	
8530500	시계부품및반제품	백만원	시계기동부, 문자판 및 일부 시계부분이 결합된 반제품등 모든 시계 부품
8530609	큰시계용케이스	개	
8540100	온도계및체온계 (溫度計및體溫計)	개	
8540200	수 도 미 터	개	수도물 소비량 측정계기
8540300	적 산 전 력 계 (積算電力計)	대	전력소비량 측정계기 (일명 전기계량기)
8540400	전 자 계 측 기 (電子計測機)	백만원	전압, 전류, 전력, 주파수 등의 전기량을 지침이 가리키는 눈금값으로 나타내는 계기 및 이들을 변환할 수 있는, 물리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기록용 (stop watch), 어린이용 플라스틱 시계 제외 	스테인레스판시계 제이스황동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수벽시계만 조사 × 거울, 온도계등 타제품에 부착하는 시계는 제외 	알루미늄판 스테인레스판 시계케이스 황동판, 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수탁상시계만 조사 × 자동차, 완구, 메모판등 타제품에 부착하는 시계는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스틱 시계케이스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용 시계케이스, 큰시계용 시계케이스 및 플라스틱·목제품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탁상시계 및 벽시계용 시계케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습도계, 기압계, 비중측정계 및 산업용, 물리, 화학분석용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 대형도 포함 조사 × 개스미터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 및 직류 적산전력계 포함 	알루미늄판 동 선 규소강판 철 판 유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시계측기, 기록계측기 및 전자용 계측기를 조사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량과 화학량의 시간적 변화를 지시 또는 기록지 위에 자동적으로 기록하는 계기
8540509	측 량 자	개	길이측정에 사용되는 자

중분류 39 . 기타제조업 소분류 390 . 기타 제조업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9010100	귀석 및 반귀석 (貴石 및 半 貴石)	백만원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사파이어, 루비, 오팔 등 원석을 가공한 것
9010200	귀석, 반귀석 및 귀금속장신구	백만원	가공한 귀석, 반귀석 및 귀금속으로 만든 완제품 (반지, 목걸이, 브로찌, 팔찌 등)
9010300	모 조 장 신 구 (模 造 裝 身 具)	백만원	귀석, 반귀석, 귀금속이 아닌 기타 재료로 만든 치장용품
9010400	금 속 주 화 (金 屬 鑄 貨)	M/T	우리나라 화폐 (주화)를 제외한 외국 주화, 기념주화, 메달, 토큰 등
9020100	피 아 노	대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스텐레스 줄자 섬유 줄자	스텐레스 섬유	
× 문구용 자는 제외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진주, 수정 포함		
○ 순금, 백금, 은, 금, 은합금 제품 포함		
○ 금, 은, 동 및 각종 합금제품 포함 ○ (국내용 중 기념주화, 메달, 토크 등 포함)		
○ 전자피아노 및 소형피아노 포함	판재, 함판 각재, 탄소 강, 주철,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9020200	기 타	대	
9020300	전 자 현 악 기 (電 子 絃 樂 器)	대	현의 진동을 전기신호로 바꾸는 픽업 을 가지며 앰프로 증폭하여 스피커에 서 음을 내는 악기이다.
9020409	오 르 간	대	
9030100	라 켓	개	
9030200	대 형 공	개	
9030300	소 형 공	백만원	
9030400	야 구 장 갑 (野 球 장 갑)	개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동선, 철선 황동알루미늄 합성수 지 등	
× 전자기타 제외	합판, 각재 판재, 철선 나이론 줄	
○ 전자기타, 베이스기타 크로마 하아프 등 포함		
○ 전자오르간 포함 × 파이프 오르간 제외		
○ 테니스 및 배드민턴 라켓만 조사	금속, 플라 스틱 목재	
○ 농구, 축구, 배구, 송구, 수구, 미식축 구, 럭비공 등을 포함		
○ 야구, 테니스, 탁구공 × 골프공 제외		
	소가죽, 말 가죽, felt (양모, 牛 毛) 합성실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9030500	뉡 시 대	개	
9030600	뉡 시 용 립	개	○ 뉡시줄을 감거나 펴는 용구
9030709	어린이용놀이터장비	백만원	
9030809	건강및미용체력기구	백만원	
9030909	뉡 시 용 부 속 장 구	백만원	뉡시줄, 뉡시바늘, 찌, 납봉, 클러, 뉡시끝 등
9040100	인 형 및 장 난 감	백만원	
9040110	인 형	백만원	봉제인형(사람 및 동물형)
9040120	어 린 이 승 용 물	백만원	삼륜차, 유모차, 보행기, 족답식 자동차등
9040130	기 타 장 난 감	백만원	과학용, 동력식, 무기류, 조립식, 모형, 악기 등
9050100	조 화 및 유 사 제 품 (造花및類似製品)	백만원	각종조화 및 유사제품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대나무 및 금속제의 낚싯대와 플라스틱제 낚싯대 포함	글라스파이버 (유리섬유) 합성수지 카본	
○ 미끄럼틀, 시소, 그네 회전대 등		
○ 러닝머신, 에르고미터 (미용자전거) 로잉머신, 트위스트머신, 벨트 바이브레이터 레크앤드의 익스텐션머신 등		
× 낚싯대 및 릴 제외 낚시용의복 및 가방, 신발등 제외		
× 천을 입히지 않은 목각, 금속, 플라스틱등의 인형 및 동물형 제외	합성섬유직물, 면직물, 플라스틱등	
× 인형 및 어린이 승용물 제외		
○ 제지조화, 리본플라워, 플라스틱플라워 폴리에스테르 실크플라워, 아메리칸플라워, 인조수목, 인조열매등 포함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9050200	가 발 (假 髮)	천 개	
9050309	금속장식공예품	백만원	주물을 떠서 만든 각종 모형의 장식품
9090100	볼 펜	천 개	
9090200	연 필	천 타	
9090300	크레용 및 파스텔	백만원	
9090400	마킹 펜 (marking pen)	천 개	
9090500	샤프 연 필	천 개	
9090600	철제우산및양산 (鐵製雨傘및陽傘)	천 개	
9090700	개인위생용솔 (個人衛生用솔)	백만원	여자용 헤어브러쉬 (Hear Brush) 및 화장용 솔(눈, 입솔, 손톱솔 등)만 조 사
9090800	칫 솔	천 개	
9090900	영구및반영구라이터	개	금속제 및 플라스틱제를 불문하고, 연료 를 재충전하여 계속 쓸수 있는 것.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인조가발 및 합성가발 조사		
	황동 심주 등	
○ 금속제, 플라스틱제의 볼펜을 조사		
○ 색연필 포함		
○ 크레용 및 파스텔만 조사		
○ 펠트펜, 사인펜 (컬러펜, 언더라인펜) 플라스틱펜 (플러스펜, 붓펜) 형광펜, 컴퓨터용펜, 파스펜 등 조사		
× 샤프 연필심 제외		
○ 철제우산 및 양산의 완제품 및 유리섬유 (글라스파이버) 우산·양산 조사	폴리에스테르, 실크, 비닐, 황동 파이프, 알 루미늄파이 프 구리선 순테인레스 유리섬유 (글라스파 이버)	
× 플라스틱 및 목재살대 우산 제 외		
× 옷솔, 구두솔, 면도솔, 동물용솔 제외		
	합성수지	
○ 전자 및 장식용라이타 포함	황동판, 철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9091000	일 회 용 라 이 타	개	재충전하여 사용할 수 없는것.
9091100	담 배 필 터	M/T	
9091200	지 퍼	Km	
9091300	단 추 천 개		모든 소재의 단추
9091400	바 늘	백만원	직조, 방적, 미싱, 편직용 바늘 및 칩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판, 알루미늄 판, 규소강 판, 동선	
	플라스틱	
	아세 테이트 섬 유	
○ 금속제, 플라스틱, 나일론 지퍼 모두 포함	알루미늄, 구리, 니켈, 나일론, 모노필라멘트 플라스틱	
○ 금속제, 플라스틱제, 천연재료 모두 포함 ----- × 후크 앤드 아이 (Hook & eye) 후크 앤드 루프 (Hook & loop fastener) 제외		
○ (직조, 방직, 미싱, 편직)용 바늘 및 칩, 손바늘 재봉바늘 포함	대강, 강선 강철선, 고탄소강선 연선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9091500	그 립 물 감	백만원	
9091609	만 년 필	천 개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화물감, 수채그림물감 (포스터칼라, 템페라칼라), 아크릴칼라 등 포함 	천연수지, 천연유지, 합성수지	
	황동판 스텐판 P.V.C 수지	

대분류 4. 전 기 업

1. 단위 : 1 GWH = 1,000 MWH = 1,000,000 KWH

2. 전기업은 한전 및 기타전력 생산업체의 전력생산량과 판매량을 한국전력공사에서 조사한다.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9999900	발전량및판매량	GWH	

3. 판매량은 발전량에서 송변전단에서 발생한 손실량을 뺀것으로 한다.

- 판매량 = 발전량 (생산량) - 송변전손실량 (과부족)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Ⅷ. 지정원재료 분류표

1. 유의사항

가. 원재료조사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유의사항과 원재료명의 해설에 관한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제품조사에 준하여 조사

나. 면 사: 순면사, 면혼방사를 포함

다. 소모사: 순소모사, 혼방소모사를 포함

라. 화학섬유사: 합성섬유와 재생섬유로 구분조사하고 합성섬유사는 합성섬유방직사, 혼방합성섬유방직사, 합성섬유면사를 포함하고 재생섬유방직사는 아세테이트사(반합성섬유사), 재생섬유방직사, 혼방재생섬유방직사, 재생섬유 연사를 포함

※ 상기 품목외에도 모든 絲는 혼방된 것도 포함 조사하며 연사도 포함.

마. 면직물: 순면직물과 혼방면직물을 구분하여 조사

바. 화학섬유직물: 재생섬유직물, 합성섬유직물을 분리하여 조사

사. 혼방직물: 면혼방직물, 모혼방직물, 혼방합성직물, 혼방재생직물, 혼방견직물을 각각 분리하여 조사

아. 특수강: 철강은 강도를 기준으로 탄소강과 합금강으로 구분되는데 탄소강중에서 고탄소강과 합금강 중에서 고합금강을 특수강으로 조사, 용도별로 구분되는 것중 탄소공구강, 고속도강, 내열내식강 등이 특수강이며 이는 각종절삭공구베어링, 스프링과 같은 기계의 특수품목, 피아노선, 용접봉심선, 자석등에 사용됨. 단, 합금강 중의 저합금강은 저탄소강과 같이 특수강에서 제

외하며, 특수강으로 취급되는 고합금강이라도 규소강판, 스테인레스판과 같이 별도로 조사되고 있는 품목은 여기에서 제외
자. 황동 : 황동은 동을 주성분으로 하는 동과 아연 합금이다. 일명 놋쇠 또는 진유라고도 하며 괴(塊), 판(板), 봉(棒)을 포함하여 조사

차. 알루미늄 (0.2 mm미만) : 알루미늄박은 제 1차 비철금속제품의 알루미늄박판을 말함.

카. 알루미늄판 (0.2 mm이상) : 알루미늄박은 제외

타. 인청동판 : 동에 인과 주석을 입힌 합금판으로 인 (10 - 15%) 과 주석 (3 - 7%) 이 합금된 철판

파. 비철금속 제품중 동, 알루미늄, 아연 등이 서로 합금된 것은 함유량이 가장 큰 제품속에 포함.

하. P.C.B원판 (Printed Circuit Board) : 트랜지스터나 T.V에 사용되는 회로판으로 표면은 동으로 도금되어 있으며 어 - 스 (earth) 역할을 한다.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규격은 1 m × 1 m인 것을 기준으로 조사

거. 강반성품은 스톱, 비렛트, 쉬트바 (Sheetbar), 브룸을 포함 조사하고 열연대강 (핫코일) 과 냉연대강을 각각 분리하여 조사

너. 무연탄, 원료탄 (유연탄), 경유, 중유, B - C유, 코크스의 사용량중 연료로 사용한 량은 연료란에 원재료로 사용한 량은 원재료란에 기입.

2. 광공업동태조사 지정원재료분류표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대분류 2. 광업			706	설 탕	ㄱ
522	갱 목	mm	707	소기름(우지)	ㄱ
778	폭 약	kg	708	경화유	ㄱ
대분류 3. 제조업			780	향료	kg
중분류 31.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818	통조림관	천개
311 ~ 312. 식료품 제조업			313. 음료품제조업		
502	밀 (소맥)	ㄱ	501	보리(대맥)	ㄱ
503	콩 (대두)	ㄱ	502	밀 (소맥)	ㄱ
504	고구마	ㄱ	504	고구마	ㄱ
505	소맥피	ㄱ	517	호프	kg
506	탈지강	ㄱ	518	당밀	ㄱ
507	콩깻묵(대두박)	ㄱ	701	보리쌀(정맥)	ㄱ
518	당밀	ㄱ	702	밀가루(소맥분)	ㄱ
519	생우유	ㄱ	703	옥수수(가루포함)	ㄱ
525	어개류	ㄱ	704	녹말가루(전분)	ㄱ
702	밀가루	ㄱ	706	설 탕	ㄱ
703	옥수수(가루포함)	ㄱ	710	주정	ℓ
704	녹말가루(전분)	ㄱ	711	콜라원액	ℓ
705	원당	ㄱ	712	엿기름(맥아)	ㄱ
			749	탄산가스	kg
			780	향료	kg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790	유 리 병	천 개	717-1	재 생 섬 유 사 (아세테이트포함)	%
877	쌀 (현미, 백미)	kg	717-2	합 성 섬 유 사	%
314. 담배제조업			718	생 사	kg
516	잎 담 배	%	726	화 학 펄 프	%
738	은 박 지	%	752	카 프 로 락 담	%
740	휠 타	%	768	폴 리 에 치 렌 수 지	kg
869	권 련 지	kg	770	폴 리 프 로 피 렌 수 지	kg
중분류 32. 섬유·의복 및 가죽산업			771	합 성 섬 유 (튼, 설, 화이버)	kg
321. 섬유제조업			772	재 생 섬 유 (SF면, 아세테이트섬유포함)	kg
508	원 면	%	774	AN 모 노 마	%
509	누 에 고 치 (잠건)	kg	775	에 치 렌 그 리 골	%
510	지 부 양 모	kg	776	D. M. T	%
511	세 척 양 모	kg	876	나 이 론 수 지	kg
512	아 마	kg	880	부 잠 사	kg
513	아 바 카	kg	881	견 방 사	kg
515	모 설	kg	882	어 망 사	kg
713	양 모 튼	kg	899	T. P. A	%
714	면 사	kg	322. 의복제조업		
715	소 모 사	kg	719	순 면 직 물	m ²
716	방 모 사	kg	720	순 소 모 직 물	m ²
			721	순 방 모 직 물	m ²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722-1	재 생 섬 유 직 물 (아 세 테 이 트 포 함)	m ²	521	원 목	m ²
722-2	합 성 섬 유 직 물	m ²	758	호 르 마 린	%
723-1	혼 방 재 생 섬 유 직 물 (아 세 테 이 트 포 함)	m ²	759	메 타 늘	%
723-2	혼 방 합 성 섬 유 직 물	m ²	<u>332. 가구 및 장치물 제조업</u>		
723-3	혼 방 면 직 물	m ²	727	각 재	m ²
723-4	혼 방 모 직 물	m ²	728	판 재	m ²
723-5	혼 방 견 직 물	m ²	729	합 판	m ²
724	소 가 죽	m ²	중분류 34. 종이, 종이제품 인쇄출판제조업		
875	순 본 견 직 물	m ²	<u>341.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u>		
<u>323. 가죽, 대용가죽 및 목피제품제조업</u>			512	아 마	kg
520	원 피	매	514	갈 저	kg
724	소 가 죽	m ²	521	원 목	m ²
898	합 성 피 혁	m ²	524	고 지	%
<u>324. 신발제조업</u>			624	활 석 분	%
724	소 가 죽	m ²	702	밀 가 루	%
898	합 성 피 혁	m ²	714	면 사	kg
중분류 33. 나무 및 나무 제품제조업			725	쇄 목 펄 프	%
<u>331. 나무 및 나무와 콜크제품제조업</u>			726	화 학 펄 프	%
			731	백 상 지	%
			732	중 질 지	%

원재료 번호	지정 원재료명	단 위	원재료 번호	지정 원재료명	단 위
733	크 라 프 트 지	%	618	석 회 석	%
735	박 업 지	kg	741	황 산	%
736	판 지	%	742	염 산	kg
737	글 판 지 원 지	%	743	카 바 이 드	%
744	가 성 소 다	%	744	가 성 소 다	%
751	유 산 반 토	kg	747	소 다 회	%
817	알 미 늄 박	kg	748	암 모 니 아	%
342. 인쇄, 출판 및 관련업			750	V . C . M	%
730	신 문 용 지	%	752	카 프 로 락 담	%
731	백 상 지	%	753	염 화 카 리	%
732	중 질 지	%	754	벤 젠	kg
734	아 트 지	kg	755	톨 루 엔	kg
735	박 업 지	kg	756	키 시 렌	kg
784	인 쇄 잉 크	kg	758	호 르 마 린	%
중분류 35. 화합물과 화학 섬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59	메 타 늘	%
351. 산업용 화합물 제조업			766	요 소	kg
614	유 황	%	870	에 티 렌	%
615	인 광 석	%	871	프 로 피 렌	%
617	공 업 염	%	872	부 타 디 엔	%
			873	싸 이 크 로 핵 산	kg
			788	납 사	kg
			789	코 크 스	%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792	생 석 회	㎏	763	지 방 산	㎏
		㎏	764	스 테 아 린 산	kg
352. 기타화학제품 제조업			766	요 소	kg
706	설 탕	㎏	777	스 치 렌 모 노 마	kg
707	소 기 림 (우지)	㎏	779	초 안	kg
709	아 마 인 유	kl	780	향 료	kg
710	주 정 (에타놀)	kl	781	아 연 화	kg
738	은 박 지	㎏	782	산 화 티 탄	kg
741	황 산	㎏	790	유 리 병	천 개
742	염 산	kg	872	부 타 티 엔	㎏
744	가 성 소 다	㎏	353. 석유정제업		
745	규 산 소 다	kg	603	원 유	kl
747	소 다 회	㎏	354. 기타 석유 및 석탄 제품제조업		
748	암 모 니 아	㎏	601	무 연 탄	㎏
754	벤 젠	kg	602	원 료 탄 (유연탄)	㎏
755	톨 루 엔	kg	355. 고무제품제조업		
756	키 시 렌	kg	523	천 연 (생) 고 무	㎏
757	알 킬 벤 젠	kg	714	면 사 (면사포)	kg
759	메 타 놀	㎏	773	합 성 고 무	㎏
760	무 스포 탈 산	kg	781	아 연 화	kg
761	염 료	kg			
762	그 리 세 린	kg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782	산 화 티 탄	kg	618	석 회 석	㎏
783	카 본 블랙	kg	620	장 석	㎏
883	타 이 어 코 드 사	㎏	621	규 사 및 규 석	㎏
884	재 생 고 무	㎏	625	형 석	㎏
356. 달리 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28	백 운 석	㎏
765	가소제 (DOP, DBP 등)	kg	629	파 유 리	㎏
767	P. V. C 수 지	kg	746	유산소오다 (망초)	㎏
768	폴 리 에 치 렌 수 지	kg	747	소 다 회	㎏
769	폴 리 스티 렌 수 지	kg	369.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		
770	폴 리 프로 피 렌 수 지	kg	612	점 토	㎏
중분류 3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613	모 래	m ³
361. 도기, 자기 및 토기 제조업			618	석 회 석	㎏
612	점 토	㎏	619	고 령 토	㎏
619	고 령 토	㎏	620	장 석	㎏
620	장 석	㎏	621	규 사 및 규 석	㎏
621	규 사 및 규 석	㎏	622	납 석	㎏
627	석 고	㎏	625	형 석	㎏
36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626	석 면	㎏
616	초 석	㎏	627	석 고	㎏
			726	화 학 필 프	㎏
			739	크 라 프 트 지 대	천 매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791	시멘트	%	800	주물	%
797-1	붕강	%	801	선재	%
797-2	철근	%	808	아연피	kg
802	철선	%	372. 비철금속산업		
887	자갈	m ³	605	동광석	%
중분류 37. 제 1 차금속산업			606	연광석	%
371. 철강산업			607	아연광석	%
602	원료탄(코크스제조용)	%	610	동실	kg
604	철광석	%	611	알미늄고철	kg
608	망강광석	%	618	석회석	%
609	고철	%	789	코크스	%
618	석회석	%	806	전기동	kg
789	코크스	%	807	아연피	kg
793	선철	%	808	아연피	kg
794	강피	%	809	알미늄피	kg
795-1	강반성품(스라브, 비래트, 브룸)	%	874	아루미나	kg
795-2	열연대강(핫코일)	%	888	아연설	kg
797-1	붕강	%	889	아연설	kg
798	중후판	%	중분류 38. 조립금속제품		
799	박판	%	381. 조립금속제품제조업		
			609	고철	%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610	동 설	kg	878	합 금 철	kg
611	알 미 늄 고 철	kg	879	알 미 늄 비 래 트	kg
789	코 크 스	%	890	석 도 철 판	kg
793	선 철	%			kg
796	형 강	%	382.기계제조업		
797-1	봉 강	%	609	고 철	
798	중 후 판	%	610	동 설	%
799	박 판	%	789	코 크 스	kg
800	주 물	%	793	선 철	%
801	선재 (와이어로프)	%	796	형 강	%
802	철 선	%	797-1	봉 강	%
803	강 판	%	798	중 후 판	%
804	특 수 강	%	799	박 판	%
806	전 기 동	kg	800	주 물	%
807	연 피	kg	801	선재 (와이어로프)	%
808	아 연 피	kg	802	철 선	%
809	알 미 늄 피	kg	803	강 판	%
810	황 동 (놋쇠, 진유)	kg	804	특 수 강	%
811	알 미 늄 판	kg	806	전 기 동	kg
815	스 테 인 레 스 판	kg	809	알 미 늄 피	kg
816	동 선	kg	810	황 동 (놋쇠, 진유)	kg
819	용 접 봉	kg	811	알 미 늄 판	kg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812	동 관	kg	808	아 연 괴	kg
815	스 테 인 레 스 관	kg	809	알 미 늄 괴	kg
816	동 선	kg	810	황동 (놋쇠, 진유)	kg
819	용 접 봉	kg	811	알 미 늄 관	kg
891	전 동 기	IP	812	동 관	kg
892	변 속 기	개	813	인 청 동 관	kg
893	내 연 기 관	IP	814	규 소 강 관	㎍
894	체 인	kg	815	스 텐 레 스 관	kg
895	베 아 링	kg	816	동 선	kg
896	유 압 기 기	대	817	알 미 늄 박	kg
897	주 강	㎍	820	트 랜 지 스 터	천 개
<u>383. 전기및전자기기제조업</u>			821	집 적 회 로	천 개
523	천 연 (생) 고 무	㎍	822	브 라 운 관	개
767	P . V . C 수 지	kg	823	P . C . B 원 관	매
773	합 성 고 무	㎍	824	자·석 (마그네트)	천 개
798	중 후 관	㎍	<u>384. 운수장비제조업</u>		
799	박 관	㎍	796	형 강	㎍
802	철 선	㎍	797-1	봉 강	㎍
804	특 수 강	㎍	798	중 후 관	㎍
806	전 기 동	kg	799	박 관	㎍
807	연 괴	kg	800	주 물	㎍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802	철 선	%	767	P. V. C 수 지	kg
803	강 관	%	802	철 선	%
805	대 강	%	803	강 관	%
809	알미늄괴	kg	810	황 등	kg
819	용접봉	kg	815	스텐레스판	kg
825	트랜스밋손	개			
826	자동차엔진	대			
885	타이어	본			
385.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과학측정 및 제 어장비와 사진 및 광학제품제조업			대분류 4. 전기업		
			※ <연료 및 전력>		
810	황 등	kg	901	무연탄 및 원료탄	%
815	스텐레스판	kg	902	경유 및 중유	kl
			903	방카 C 유	kl
			904	전력	천KWH
중분류 39. 기타제조업					
526	인 모	kg			
623	흑연	kg			
717-1	재생섬유사 (반합성섬유사포함)	%			
717-2	합성섬유사	%			
722-1	재생섬유직물 (아세테이트직물포함)	m ²			
722-2	합성섬유직물	m ²			

부록 1 . 주요단위해설

1. ppm : 용액 중의 물질함량을 표시할 때 중량 백만분율을 표시하는 약호이다.

2. d (데니어, Denier) : 450 m의 장사(長絲)로 0.05 g이면 1 데니어임.

3. 'S (번수·番數) : 견사 1 파운드의 길이 즉 4,436,889 야드를 전환인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됨.

가. $4,436,889 / (\text{데니어} \times 840) = \text{면사 번수}$

※ 데니어 : 5282 / 면사 번수

(840 야드는 1 'S면사 길이)

나. $4,436,889 / (\text{데니어} \times 560) = \text{소모사 번수}$

(560 야드는 1 'S소모사의 길이)

다. $4,436,889 / (\text{데니어} \times 256) = \text{방모사 번수}$

※ 데니어 = 17,331.6 / 방모사 번수

(256 야드는 1 'S방모사의 길이)

소모사는 영국식으로 560 야드 1 파운드의 것을 1 번수라 함.

예컨대 32 번수 단사(單絲)의 경우는 1 / 32 S, 쌍사(雙絲)의 경우는 2 / 32 'S로 됨.

4. 추(錘) : 조방기(組紡機), 정방기(淸紡機), 연사기(撚絲機) 등 스피들을 사용하는 기계의 양을 나타냄

면방“링” 정방기는 매일 16시간 가동으로 20 번수를 0.5 파운드 정도 생산하는 능력을 가짐. 소모율, 정방기로는 48 번수를 0.44 파

운드로 생산함.

5. D / W (Dead Weight) : 화물을 만재한 상태에서 선박 자체의 무게를 뺀 중량 2,240 파운드를 1 중량톤으로 한다.

6. G / T (Gross Tonnage) : 배의 용적을 표시하는 단위로 선목×길이×높이의 f^3 , 100 f^3 를 1 G / T으로 한다.

7. 노트 (Knot) : 배가 1시간에 1해리 (1,853 m)를 달리는 속력

8. S / F $\frac{1}{8}$ (Square Feet $\frac{1}{8}$ inch) : 합판의 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1 feet × 1 feet × $\frac{1}{8}$ 인치의 체적을 말한다. 이를 m^3 로 환산하면

$$0.3048 m \times 0.3048 m \times 0.0254 m \times \frac{1}{8} = 0.00029 m^3 \text{이다.}$$

[주] 1.1 才 1치×1치×12차

2.1 石 180 L

3.1 斤 1.3 Lbs

4.1 實 8.2 Lbs

5.1 400 Lbs

6.1 坪 3.3 m^2

7.1 木材..... 3分板 1평은 9才

4分板 1평은 12才

5分板 1평은 15才

9. R / T (냉동톤) : 1 R / T = 12,000 BTU / H

1 BTU / H : 1 pound의 물을 1 $^{\circ}$ F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10. T / H : 물 1 Ton을 1시간에 증발시킬 수 있는 열량

11. L.D.T (Light Displacement Tonnage) :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선박 자체의 무게, 즉 중량톤을 말한다.

부 록 2 . 도 량 형

〈표 1〉 길 이

단 위	<i>mm</i>	<i>cm</i>	<i>m</i>	<i>km</i>	<i>in</i>	<i>ft</i>
1 <i>mm</i>	□	0.1	0.001	(0.1) ⁸	0.03937	0.00328
1 <i>cm</i>	10	□	0.01	(0.1) ⁵	0.3937	0.0328
1 <i>m</i>	1,000	100	□	(0.1) ³	39.37	3.2808
1 <i>km</i>	10 ⁶	10 ⁵	1000	□	39,370	3280.8
1 <i>in</i>	25.4	2.54	0.0254	0.000025	□	0.0833
1 <i>ft</i>	304.8	30.48	0.3048	0.000304	12	□
1 <i>yd</i>	914.4	91.44	0.9144	0.00091	36	3
1 <i>mile</i>	-	160930	1609.3	1.6093	63360	5280
1 尺 (척)	303.03	30.303	0.303	0.00030	11.93	0.9932
1 間 (간)	1818.2	181.82	1.818	0.0182	71.582	5.965
1 町 (정)	10909.1	10909.1	109.091	0.1090	4294.9	357.91
1 里 (리)	-	-	3927.27	3.927	154619	12885
1 寸 (치)	30.303	3.0303	0.0303	0.00003	1.1930	0.0994

환 산 표

yd	mile	尺	間	町	里	寸
0.00109	0.0000006	0.0033	0.00055	0.000009	-	0.033
0.0109	0.000006	0.033	0.005	0.00009	-	0.33
1.0936	0.00062	3.3	0.55	0.009	0.00025	33
1093.6	0.62137	3300	550	9	0.25	33000
0.0278	0.000015	0.0838	0.0140	0.0002	-	0.8382
0.3333	0.00019	1.0058	0.1676	0.0028	0.00008	10.058
[1]	0.00057	3.0175	0.5029	0.0083	0.0002	30.175
1760	[1]	5310.8	885.12	14.752	0.4098	53108
0.3314	0.0002	[1]	0.1667	0.0028	0.00008	10
1.9884	0.011	6	[1]	0.0167	0.0005	60
119.304	0.0678	360	60	[1]	0.0278	3600
4295	2.4403	12960	2160	36	[1]	129600
0.0331	0.00002	0.1	0.01667	0.00028	0.000008	[1]

<표 2> 부 피

단 위	㎤	㎡	in ³	ft ³	yd ³
1 ㎤	□	(0.1) ⁶	0.06103	0.00003	0.00001
1 ㎡	10 ⁶	□	61027	35.3147	1.3080
1 in ³	16.3872	0.000016	□	0.00057	0.00002
1 ft ³	28316.8	0.02831	1728	□	0.03703
1 yd ³	764511	0.76451	46656	27	□
1 gal (美)	3785.43	0.00378	231	0.1337	0.00495
1 gal (英)	4545.9	0.00455	277.42	0.1605	0.00595
1 ℓ	1000	0.001	61.027	0.03531	0.0013
1 合 (昏)	180.39	0.00018	11.0041	0.0066	0.00023
1 升 (되)	1803.9	0.0018	110.041	0.0637	0.0023
1 斗 (밭)	18039	0.01803	1100.41	0.6371	0.0236
1 石 (섬)	180391	0.1803	11004.1	6.3704	0.2359

gal (美)	gal (英)	ℓ	合	升	斗	石
0.00026	0.00022	0.001	0.00554	0.00055	0.00005	0.000005
264.186	219.97	1000	5543.52	554.325	55.435	5.5435
0.00432	0.0036	0.01638	0.0908	0.00908	0.00091	0.00009
7.4805	6.228	28.3169	156.966	15.6966	1.5697	0.15697
201.974	168.18	764.511	4238.09	423.81	42.381	4.2381
□	0.8327	3.7854	20.983	2.0983	0.2098	0.02098
1.2009	□	4.5459	25.206	2.5206	0.2521	0.02521
0.2642	0.21997	□	5.5435	0.5544	0.0554	0.00554
0.04765	0.03968	0.18039	□	0.1	0.01	0.0001
0.4765	0.3968	1.8039	10	□	0.1	0.001
4.7657	3.6981	18.039	100	10	□	0.1
47.6567	39.681	180.39	1000	100	10	□

〈표 3〉 무게

단 위	g	kg	t (噸)	L / B	O Z
1 g	□	0.001	(0.1) ⁶	0.002204	0.03527
1 kg	1000	□	0.001	2.20459	35.273
1 t (M/T)	10 ⁶	1000	□	2204.59	35273
1 L/B	453.592	0.45359	0.00045	□	16
1 OZ	28.8495	0.02835	0.000028	0.0625	□
1 S/T(미톤)	907200	907.2	0.9072	2000	32000
1 L/T(영톤)	1016000	1016	1.016	2240	35840
1 gr	10.06479	0.00006	-	0.00014	0.00228
1 匁 (돈)	3.75	0.00375	0.000004	0.00827	0.1323
1 (근)	600	0.6	0.0006	1.3228	21.1647
1 貫 (관)	3750	3.75	0.00375	8.2672	132.28

S / T	L / T	gr	刃	斤	貫
0.000011	0.000098	15.432	0.2667	0.00166	0.000266
0.001102	0.000984	15432	266.67	1.6666	0.2666
1.1022	0.9841	-	266670	1666.6	266.66
0.0005	0.000446	7000	120.96	0.756	0.12096
0.000031	0.000028	437.4	7.56	0.0473	0.00756
□	0.89286	-	293919	1512	241.92
1.12	□	-	262420	1693.4	270.95
-	-	□	0.01728	0.00108	0.000017
0.0000041	0.0000037	57.872	□	0.00625	0.001
0.00066	0.00059	9259.56	160	□	0.16
0.00413	0.00369	57872	1000	6.25	□

< 표 4 > 넓 이

단 위	m ²	cm ²	m ²	km ²	in ²	ft ²	yd ²
1 m ²	□	0.01	(0.1) ⁶	(0.0) ¹²	0.00155	0.0001	0.000001
1 cm ²	100	□	(0.1) ⁴	(0.1) ¹⁰	0.1550	0.0011	0.00012
1 m ²	10 ⁶	10 ⁴	□	(0.1) ⁶	1549.99	10.764	1.1958
1 km ²	10 ¹²	10 ¹⁰	10 ⁶	□	(39370) ²	(3280) ²	(1090) ²
1 in ²	645.16	6.4516	0.00065	-	□	0.00694	0.00077
1 ft ²	92903.04	929.03	0.0929	-	144	□	0.1111
1 yd ²	-	8359.44	0.8361	-	1296	9	□
1 mile ²	-	-	-	2.5899	(63360) ²	(5280) ²	(1760)
1 a	10 ⁸	10 ⁶	100	0.0001	155001.7	1076.4	119.58
1 ha	10 ¹⁰	10 ⁸	10 ⁴	0.01	15500160	107640	11958
1 acre	-	-	4046.8	0.0040	6274735	43560	4840
1 坪	-	-	3.3058	0.000003	5125.58	35.583	3.9537
1 段步	-	-	991.74	0.00099	1537500	10674.9	1186.1
1 町步	-	-	9917.4	0.0099	15375000	106749	11861
1 平方尺	-	918.2	0.09182	-	142.35	0.9884	0.1098

mile ²	a	ha	acre	坪	段 步	町 步	平方尺
-	(0.1) ⁸	(0.1) ¹⁰	-	-	-	-	0.00001
-	(0.1) ⁶	(0.1) ⁸	-	0.00003	-	-	0.0011
-	0.01	0.0001	0.000247	0.3025	0.001	0.0001	10.89
0.3861	10000	100	247.114	302500	1008.3	100.83	108900000
-	0.000006	-	-	0.00019	-	-	0.0070
-	0.0009	0.000009	0.000022	0.0281	0.00009	0.000009	1.0117
-	0.00836	0.00008	0.00021	0.2529	0.00084	0.00008	9.1054
□	25898.46	258.98	640	-	-	78347.597	-
0.000039	□	0.01	0.0247	30.25	0.1008	0.01008	1089
0.0039	100	□	2.471	3025	10.183	1.008	108900
0.00156	40.468	0.40468	□	1224.2	4.0806	0.4081	44071.2
-	0.0331	0.00033	0.00081	□	0.0033	0.00033	36
0.00004	9.9174	0.09917	0.2451	300	□	0.1	10800
0.0004	99.174	0.9917	2.4506	3000	10	□	108000
-	0.00091	0.000009	-	0.0278	0.00009	0.000009	□

부록 3.

주요 수정 보완 사항

'88년도 지침서	'89년도 지침서	비 고
P. 16 상에서 3 - 4 행	삭제	
P. 19 국내시판 조사방법	LOCAL 수출중 완제품의 일부 부품으로 투입되는 제품(예: TV브라운관, 인쇄회로기판 등) 추가	조사내용 보완
P. 60 조사사례	판지생산 및 상자까지 만드는 업체 조사방법 보완 직물포대 생산량 계산사례 보완	사례보완
광공업동태 지정품목 보완		
P. 98 1140200 냉동물고기	물고기 이외에 조개살, 개살등 냉동저장한 것도포함	조사범위 추가
P. 98 1140609 가공해조류	튀김용원초(미역, 다시다 등) 를 구입하여 가공한 것도 포함	조사범위 변경
P. 106 1221100 커피크리머	커피믹서에 포함된 프리머 포함	//
P. 110 1320400 포도주	포도원액 제외	//
P. 122 2120100 면직물	마직물 제외	//
P. 126 2140100 직물포대	포대를 봉제하기 전 원단이 펴진 상태의 넓이로 조사	조사범위 보완

'88 년도 지침서	'89 년도 지침서	비 고
P. 128 2140300 텐트 및 천막	단위 “개”를 “매”로 변경	단위명칭 변경
P. 130 2150400 메리야스와의	개념 : 편집 (편물)외의 * 편물 : 한가닥 또는 여러 가닥의 실이 고리모양을 형성 범위 : 웨타 (Knit) 류도 크기에 관계없이 조사 * 편직물을 구입하여 봉제 한 셔츠는 322 의복에서 조사	개념 및 범위보완
P. 132 2220200 기성셔츠류	단위 “천개”를 “천매”로 변경	단위변경
P. 138 2230309 마구	부착되는 가죽제품만 조사	조사범위 변경
P. 150 3201209 공공건물용목재가구	회의용 테이블 등 조사	조사범위 보완
3201309 가정용내장가구	가정 및 사무실로 보완	
P. 152 - P. 154 4110900 판지 및 판지상자	4110910 판지 : 판지만을 생산하는 사업체의 경우 판지제품을 조 사하고 판지를 생산하여 상자 까지를 만드는 사업체의 경우 생산은 판지를, 출하에서는 판 지자체로 출하하는 것과 상자 를 합한 량을 판지출하로 조사	품목세분

'88 년도 지침서	'89 년도 지침서	비 고
P. 156 4120409 지관 4190200 위생용종이제품	4110920 판지 상자 : 판지를 구입하 여 상자를 만드는 사업체의 판지상자를 조사 종이류 이외는 제외 원지를 구입하거나 자체생산을 한 경우로 보완	조사범위 변경
P. 170 5112300 폴리우레탄	용도에 압출 및 사료형 등 제품 및 접착제의 원재료	"
P. 180 5121200 산소	압축산소를 기준으로 조사 (액체산소 1ℓ당 압축산소 800ℓ)	"
P. 184 5150200 복합비료	제 1, 2, 3, 4 종의 복합비료를 조사	"
5150409 유기질비료	유기질 및 규산질비료로 수점	품목명칭 변경
P. 190 5230310 세탁용세제	세탁용표백제 포함	조사범위 변경
P. 206 5590909 고무장갑	의료용을 추가	"
P. 210 5601400 라미네이팅	생산공정이 여러단계로 나누어져 있을 경우의 생산, 출하량 조사 방법 보완함 km → M/T로 변경	조사방법 보완 단위변경

'88년도 지침서	'89년도 지침서	비 고
P. 214 6200100 유리관	관유리와 백열전구, 상들리에용발 브유리 등	조사범위 변경
P. 226 소분류 371 품목해설	조사범위 및 용도 보완	
P. 248 8120100 철재캐비네트	철재옷장 포함	"
P. 252 8190500 방열기	자동차용방열기는 8432700 에서 조사	"
P. 256 8191600 용접봉	동·은용접봉 포함	"
P. 260 8220200 경운기	관리기 포함조사	"
P. 262 8220900 사료절단기	작두기 등 수작업용 제외	"
8230300 밀링기	석재용제외, 나무용 8231700	
P. 264 8230500 연삭기	조사범위 확대	"
P. 268 8232009 전단기	샤링기, 슬래팅기 포함	"
P. 280 8250400 산업용저울	전자식저울 포함	"
P. 284 8290500 집진장치	유화장치 제외	조사범위 변경

'88년도 지침서	'89년도 지침서	비 고
P. 292 회로차단기, 스위치류의 조사구분 축전기, 저항기의 조사구분	조사범위 및 용도를 자세히 설명 //	조사방법 보완
P. 296 8320920 녹음재생기	라디오미부착 삭제	//
P. 308 8341100 고정축전기	조사범위는 문제점 및 유의사항 참조	//
P. 312 8390300 마그네트선 → 권선		품목명칭 변경
P. 313 소분류 384 해설	자동차부품과 조사지정품목과의 관계 해설	//
P. 330 8530200 벽시계	순수벽시계 만조사	//
8530300 탁상시계	순수탁상시계 만조사	
P. 332 9020100 피아노	소형피아노 포함	//

작성기관: 경제기획원
지정통계: 111-11-12

광공업동태조사표 (I)

[일반업종용]

통계법 제4조에 따라 귀업체는 통계자료의 신고의무가 있으며, 또한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 목적에만 사용하고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198 년 월분)

1. 잠정자료 2. 확정자료

※ 매월 12일까지 제출

사업체고유번호	산업분류부호	사업체명		소재지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체규모	종업원규모	유고사항
행정구역번호	조사구번호	사업체	본사				1. 대규모 2. 중소규모	1. 500명 이상 2. 300~499명 3. 100~299명 4. 99명 이하	1. 전입 2. 휴업 3. 사업체 흡수 4. 사업체 분리

① 제품생산·출하·재고

일련번호	품목부호	품목명	유고사항	단위	구입				동일공장내재투입 (자가소비)	출하				과부족조정	월말재고										
					외부(수입포함)		동일기업내타공장			외부 판매		동일기업내타공장 출하 및 기타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백	십	만	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② 원재료 및 연료사용·재고

일련번호	원재료및연료부호	원재료 및 연료명	유고사항	단위	구분	월중사용량				월말재고량																
						국산1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백	십	만	천	백	십	일						
01																										
02																										
03																										
04																										
05																										
06																										
07																										
08																										
51	9 0 1 - 0 0	무연탄·원료탄			M/T																					
52	9 0 2 - 0 0	경유·중유			Kℓ																					
53	9 0 3 - 0 0	방카 C 유			Kℓ																					
54	9 0 4 - 0 0	전력			천KWH																					

* 증감내용

	품목부호	전월비 (%)	증감부호	증감사유	◎증감내용부호	
					<증가>	<감소>
① 생산					01 수출(주문)증가	11 수출(주문)감소
					02 내수(주문)증가	12 내수(주문)감소
					03 설비증설	13 설비축소
					04 정상가동	14 보수·고장
② 출하					05 지정품목생산개시	15 타품목생산
					06 타공장흡수로증가	16 원재료구입부진
					07 수요증가대비	17 휴업
					08 신제품·신기법	18 화재·파업
③ 재고					도입에 따른 증가	19 기타(일기불순등)
					09 기타	

3 고용·급여 및 조업상황

		월말종업원수(명)					월중종업원연근무인원수(명)					월중종업원연근무시간수(시간)									
		만	천	백	십	일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상시 종업원	생 산 직																				
	사 무 직·기 타																				
	계																				
임시 일고	생 산 직																				
	사 무 직·기 타																				
	계																				

전월말상시종업원	월중상시종업원입직자	월중상시종업원이직자	금월말상시종업원	월중조업일수	월중 1일평균조업시간
□□□□ 명	□□□□ 명	□□□□ 명	□□□□ 명	□□□□ 일	□□□□ 시간 □□□□ 교대

		급여총액					정액급여					특별급여(상여금등)				
		천	백	십	억	만	천	백	십	억	만	천	백	십	억	만
상시 종업원	생 산 직															
	사 무 직·기 타															
	계															
임시 일고	생 산 직															
	사 무 직·기 타															
	계															

※ 증감내용

	증감부호	증 감 사 유	● 증 감 내 용 부 호	
① 입 직 자			1. 신규채용	3. 기 타
② 이 직 자			2. 이직자충원	
③ 조 업 일 수			1. 생산활동부진 감축	3. 기 타
④ 정 액 급 여			2. 공정개선, 자동화에 따른 감축	
⑤ 특 별 급 여			1. 생산활동호조	3. 생산활동부진
			2. 정상가동	4. 휴업, 파업, 기타
④ 정 액 급 여			1. 급여인상	3. 종업원 증가
			2. 초과근무수당증가	4. 종업원 감소
⑤ 특 별 급 여			1. 상여금지급	3. 기 타
			2. 임금인상소급분 지급	

응답부서	응답자	조사담당자	내검자	관리책임자
과				
전화()	①	①	①	①

- 당 부 말 씀**
- ① 이 조사는 국내의 광업, 제조업, 전기업 부문의 경기동향을 매월 파악하여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 ② 이 조사는 당원에서 미리 지정한 품목만을 조사함으로써 귀업체의 생산품목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잘 살펴주시고, 유사제품이나 다른 지정품목을 새로이 생산할 때에는 당원직원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③ 귀업체의 조직·경영상 변동사항(합병, 이전, 휴·폐업, 증설 등)이 발생할 때에도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생 산

- 판매용, 자가소비용 등으로 자체 생산한량
- 주요 원재료를 제공하여 타업체에 위탁생산한량
- 주요 원재료를 자체구입하여 제조한 타업체로부터의 수탁생산량
- 제조업이 아닌 업체, 상사, 기관, 단체, 소비자로부터의 수탁생산량
- ※ 제외:
 - 타 제조업체로부터 주요 원재료를 제공받아 수탁생산한량

외 부 구 입

- 조사품목(생산품목)과 같은 제품으로서 외국수입 및 국내 타 업체로부터의 구입·용통량
- 주요원재료를 제공하지 않고 타업체에 하청생산케 하여 납품받은 량
- 반품된량(폐기품 제외)

동일기업내타공장분구입

- 조사품목과 같은 제품으로서 동일기업내 타공장에서부터 인수한 량

동일 공장 내 재 투입

- 다른 제품의 생산을 위해 원재료, 부품, 연료등으로 공장내에서 자가 소비된 량
- 위탁생산을 위해 하청공장에 원재료로 제공한 량
- ※ 제외: •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 이송된량

국 내 시 판

- 국내 타사업체 또는 소비자 및 군납용으로 출고된량
- 수출용이라도 타사업체로 출고되어 다른제품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량
- 종업원에 대한 현물급여로 지급된 량

수 출

- 직·간접 수출량 및 주한 외국군 납품량

동일 기업 내 타 공장 출 하 및 기 타

- 동일조사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동일기업내 타 공장으로 이송한 량
- 동일기업내 타공장의 원재료, 연료등으로 출하 이송한 량
- 타업체로부터 용통받은 량의 변제
- 선물, 견본, 전시용 및 자기사용(사무실, 공장내)으로 공급된 량
- ※ 제외: • 같은 조사품목을 생산하지 않는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의 출하(국내시판용, 수출용으로 계상)
- 염색, 도장 또는 단순 가공을 위해 출고된 량(재고로 계상)

월 말 재 고

- 지정조사품목의 자체생산분, 위탁생산분 및 구입분의 실제 재고량
- 판매는 이루어졌으나 아직 인도되지 않고 있는 제품(출하로 계상 없음)
- ※ 제외: • 반품된 제품중 폐기될 량.

작성기관: 경제기획원
작성동계: 111-11-12

광공업동태조사표(Ⅱ)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기업종용)

통계법제4조에 따라 귀업체는 통계자료의 신뢰의부가 있으며, 또한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 목적에만 사용하고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19 년 월분)

1. 잠정자료 2. 확정자료

※ 매월 12일까지 제출

사업체고유번호	산업분류 부호	사업체명		소재지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체규모	증업원규모	유고사항
행정구역번호	조사구번호	사업체					1. 대 규모	1. 500명 이상 2. 300~499명 3. 100~299명 4. 99명 이하	1. 전 업 2. 휴 업 3. 사업체 축소 4. 사업체 분타
		본 사					2. 중소규모		

1. 제품생산·출하·재고

일련번호	품목부호	품목명	유고사항	생산		구입		동일공장내재투입		출하				월말재고				
				(동일기업내 다공장및외부)		(자가소비)		외부		국내시판		관수출		동일기업내다공장출하및기타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단위	백만	천	백	십	일	백	십	일	백	십	일	백	십	일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2. 원재료 및 연료사용·재고

일련번호	원재료 및 연료부호	원재료 및 연료명	유고사항	단위	구분										월말재고량					
					국산수입	1	2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01																				
02																				
03																				
04																				
05																				
06																				
07																				
08																				
51	9 0 1	- 0 0	무연탄·원료탄	M/T																
52	9 0 2	- 0 0	경유·중유	Kℓ																
53	9 0 3	- 0 0	방카 C 유	Kℓ																
54	9 0 4	- 0 0	전 력	천KWH																

※ 증감내용

일련번호	품목부호	전월비(%)	증감부호	증감사유	◎ 증 감 내 용 부 호	
					<증 가>	<감 소>
① 생산					01 수출(주문) 증가	11 수출(주문) 감소
					02 내수(주문) 증가	12 내수(주문) 감소
					03 설비증설	13 설비축소
② 출하					04 정상가동	14 보수·고장
					05 지정품목 생산개시	15 타품목생산
					06 타공장흡수로증가	16 원재료구입부진
③ 재고					07 수요증가 대비	17 휴 업
					08 신제품·신기법도입에 따른 증가	18 화재·파업
					09 기타	19 기타(일기불순등)

③ 고용·급여 및 조업상황

		월말종업원수(명)					월중종업원연근무인원수(명)					월중종업원연근무시간수(시간)									
		만	천	백	십	일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상 시 종업원	생 산 직																				
	사 무 직·기 타																				
	계																				
임 시 일 고	생 산 직																				
	사 무 직·기 타																				
	계																				

전월말상시종업원	월중상시종업원입직자	월중상시종업원이직자	금월말상시종업원	월중조업일수	월중1일평균조업시간
□□□□ 명	□□□□ 명	□□□□ 명	□□□□ 명	□□ 일	□□□□ 시간 □□□□ 교대

		급여총액					정액급여					특별급여(상여금등)				
		천	백	십	억	만	천	백	십	억	만	천	백	십	억	만
상 시 종업원	생 산 직															
	사 무 직·기 타															
	계															
임 시 일 고	생 산 직															
	사 무 직·기 타															
	계															

※ 증감내용

	증감부호	증 감 사 유	● 증 감 내 용 부 호	
① 입 직 자			1. 신규채용	3. 기 타
② 이 직 자			1. 생산활동부진 감축	3. 기 타
③ 조 업 일 수			1. 생산활동호조	3. 생산활동부진
④ 정 액 급 여			1. 급여인상	3. 종업원 증가
⑤ 특 별 급 여			1. 상여금지급	3. 기 타
			2. 초과근무수당증가	4. 종업원 감소
			2. 임금인상소급분 지급	

응 답 부 서	응 답 자	조 사 담 당 자	내 검 자	관 리 책 임 자
과				
전화 ()	①	①	①	①

당
부
말
씀

- ① 이 조사는 국내의 광업, 제조업, 전기업 부문의 경기동향을 매월 파악하여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 ② 이 조사는 당원에서 미리 지정한 품목만을 조사함으로써 귀업체의 생산품목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잘 살피주시고, 유사제품이나 다른 지정품목을 새로이 생산할 때에는 당원 직원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③ 귀 업체의 조직·경영상 변동사항(합병, 이전, 휴·폐업, 증설 등)이 발생할 때에도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생 산

- 판매용, 자가소비용 등으로 자체생산한 량
- 주요 원재료를 제공하여 타업체에 위탁생산한 량
- 주요 원재료를 자체구입하여 제조한 타업체로부터의 수탁생산량
- 제조업이 아닌 업체, 상사, 기관, 단체, 소비자로부터의 수탁생산량

구 입

- 사업체에서 생산중인 조사품목과 같은 제품으로서 국외수입, 국내 사업체로부터의 구입, 유통 및 동일기업내 타공장에서 입고된 량
- 주요 원재료를 제공하지 않고 하청공장에 위탁생산하여 납품받은 량
- 반품된량(폐기품 제외)
- ※ 제외 : • 사업체의 조사품목(생산품목)이 아닌 제품의 구입량

동 일 공 장 내 재 투 입

- 다른 제품의 생산을 위해 원재료, 부품, 연료 등으로 공장내에서 자가 소비된 량
- 위탁 생산을 위해 하청업체에 원재료로서 지급한 량

국 내 시 판

- 국내 타 사업체 또는 소비자 및 군납용으로 출고된 량
- 수출용이라도 타 사업체로 출고되어 다른 제품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량
- 종업원에 대한 현물급여로 지급된 량

수 출

- 직·간접 수출량 및 주한 외국군 납품량

동 일 기 업 내 타 공 장
출 하 및 기 타

- 동일 조사품목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 이송한 량
- 동일 기업내 타공장의 원재료, 연료등으로 소비하기 위하여 출하한 량
- 타사업체로 부터 유통받은 량의 변제
- 선물, 견본, 전시용 등으로 출고한 량
- ※ 제외 : • 같은 조사품목을 생산하지 않는 동일기업내 타 공장에서의 출하(국내시판, 수출용으로 계상)
- 염색 또는 단순가공을 위해 일시 출고된 량(재고로 계상)

월 말 재 고

- 자체생산, 위탁생산, 구입분의 실제 재고량
- 판매는 이루어졌으나 아직 인도되지 않은 제품량(출하로 계상 없음)
- ※ 제외 : • 반품된 제품중 폐기될 량

작성기관: 경제기획원
지정통계: 111-11-12

광공업동태조사표(Ⅲ)

[진척율 조사품목용]

통계법 제4조에 따라 귀업체는 통계자료의 신고의무가 있으며, 또한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하고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19 년 월분)

1. 잠정자료 2. 확정자료

※ 매월 12일까지 제출

사업체고유번호	산업분류 부호	사업체명		소재지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체규모	종업원규모	유고사항
행정구역번호	조사구 번호	사업체					1. 대규모 2. 중소규모	1. 500명이상 2. 300~499명 3. 100~299명 4. 99명 이하	1. 전 입 2. 휴 업 3. 사업체 흡수 4. 사업체 분리
		본사							

1] 품목수주·진척사항

일련 번호	품목부호	품목명	유고 사항	단 위	당월수주량				당월진척량				수주잔량				당월완성품인도량									
					국내용		수출용		국내용		수출용		국내용		수출용		톤 수		척(대)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척(대)
01	8410200	철강유조선	G/T																							
02	8410300	일반화물선	G/T																							
03	8410400	특수화물선	G/T																							
04	8410500	비상업용특수선박	G/T																							
05	8410600	철강어선	G/T																							
06	8410700	합성수지선	G/T																							
07	8410800	선박해체업	LDT																							
08	8410909	목선	G/T																							
09	8420100	디젤기관차	대																							
10	8420200	전동차	대																							
11	8420300	여객차및수하물차	대																							
12	8420400	화차	대																							

2] 원재료 및 연료사용·재고

일련 번호	원재료 및 연료부호	원재료 및 연료명	유고 사항	단위	구분				월중사용량				월말재고량														
					국산1	수입2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01																											
02																											
03																											
04																											
05																											
06																											
07																											
08																											
51	901-00	무연탄·원료탄	M/T																								
52	902-00	경유·중유	Kℓ																								
53	903-00	방카·C유	Kℓ																								
54	904-00	전력	천KWH																								

※ 증감내용

당월 진척 량	품목부호	전월비 (%)	증감사유

③ 고용·급여 및 조업상황

		월말종업원수(명)					월중종업원연근무원수(명)					월중종업원연근무시간수(시간)							
		만	천	백	십	일	만	천	백	십	일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상 시 종업원	생 산 직																		
	사 무 직·기 타																		
	계																		
임 시 일 고	생 산 직																		
	사 무 직·기 타																		
	계																		

전월말상시종업원	월중상시종업원입직자	월중상시종업원이직자	금월말상시종업원	월중조업일수	월중1일평균조업시간
□□□□ 명	□□□□ 명	□□□□ 명	□□□□ 명	□□□□ 일	□□□□ 시간 □□□□ 교대

		급여총액					정액급여					특별급여(상여금등)				
		천	백	십	억	만	천	백	십	억	만	천	백	십	억	만
상 시 종업원	생 산 직															
	사 무 직·기 타															
	계															
임 시 일 고	생 산 직															
	사 무 직·기 타															
	계															

※ 증감내용

	증감부호	증 감 사 유	◎증 감 내 용 부 호	
① 입 직 자			1. 신규채용	3. 기 타
② 이 직 자			2. 이직자충원	
③ 조 업 일 수			1. 생산활동부진 감축	3. 기 타
④ 정 액 급 여			2. 공정개선, 자동화에 따른 감축	
⑤ 특 별 급 여			1. 생산활동호조	3. 생산활동부진
			2. 정상가동	4. 휴업, 파업, 기타
			1. 급여인상	3. 종업원 증가
			2. 초과근무수당증가	4. 종업원 감소
			1. 상여금지급	3. 기 타
			2. 임금인상소급분 지급	

응 답 부 서	응 답 자	조 사 담 당 자	내 검 자	관 리 책 임 자
과				
전화 ()	①	①	①	①

당 부 말 씀

- 이 조사는 국내의 광업·제조업·전기업 부문의 경기동향을 매월 파악하여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 이 조사는 당원에서 미리 지정한 품목만을 조사하므로 귀업체의 생산품목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잘 살펴주시고, 유사제품이나 다른 지정품목을 새로이 생산할 때에는 당원 직원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귀업체의 조직·경영상 변동사항(합병, 이전, 휴·폐업, 증설 등)이 발생할 때에도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당 월 수 주 량

- 확실한 계약에 의거 외국 또는 국내로부터 주문 받은 량
- 선박해체업의 경우는 폐선박 도입량(경화배수톤수)

당 월 진 척 량

- 사업체에서 건조 또는 제작중인 선박, 철도차량의 공정 진척율에 따른 환산량.
(수주잔량×당월 진척율)
- 선박 해체업의 경우는 공정진척율에 따른 해체량

수 주 잔 량

- 총 수주량 중에서 당월까지의 진척량 누계를 차감한 잔량
- 선박 해체업의 경우는 미해체량

당 월 완성품인도량

- 공정 진척도에 관계없이 선박 또는 철도차량을 완성하여 통관 또는 주문처에 납품한 량

제 조 업 생 산 예 측 조 사 표 (Ⅳ)

○ 작성기관 : 경 제 기 획 원
○ 지정번호 : 111-11-12

1 9 8 년 월 분

※ 매월 20일까지 제출

통계법 제 8 조 및 제 9 조에 의거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사업체 고유번호	산업분류부호	조사구번호	총종업원수	사업체유고사항
—		—		1. 전 입 2. 휴 업 3. 설비 및 공장신설, 휴수 4. 설비 및 공장축소, 분리
생 산 실 적 및 예 측				

일련 번호	품 목 부 호	품 목 명	유 고 사 항	지 정 단 위	전 월 생 산 실 적					당 월 생 산 예 측					익 월 생 산 예 측					당월예측 증감사유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 작성시 뒷면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작성시 유의사항

- ① 이 조사는 국내 제조업 부문의 생산동향에 대한 단기에측을 함으로써 경기분석 및 경제정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 ② 이 조사는 당원에서 미리 지정한 품목에 한하여 귀업체에 속하는 산하공장전체를 총합하여 조사하게 됨으로 지정품목이나 산하공장분이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 ③ 귀사의 계획에 따라 당월 및 익월생산예측을 작성하여 주시는 경우에도 경기여건, 사업체의 실정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는 생산예측자료가 될수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 ④ 「익월생산예측」을 다음달에 「당월생산예측」난에 다시 기재하실 때, 그간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반영하여 주십시오.
- ⑤ 이 조사에서 「생산」이라 함은 다음 경우를 말합니다.
 - 판매용, 자가소비용 등으로 자체 생산한량
 - 주요 원재료를 제공하여 타업체에 위탁생산한량
 - 주요 원재료를 자체구입하여 제조한 타업체로부터의 수탁생산량
 - 제조업이 아닌 업체, 상사, 기관, 단체, 소비자로부터의 수탁생산량
 ※ 공정진척율에 의해 광공업 동태조사표를 작성하는 업체에서는 생산예측조사표도 공정진척율에 따라 주십시오.

응답부서	응답자
작성부서명 : 전화 :	인

조사담당자	내검자	관리책임자
인	인	인

생산능력 및 가동률조사 지침서

1989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차 례

제1장 생산능력 및 가동률 조사	3
I. 조사개요	3
1. 조사목적	3
2. 조사의 법적근거	3
3. 조사연혁	3
4. 조사기준일 및 대상기간	4
5. 조사시기	4
6. 조사대상	4
7. 조사단위	6
8. 조사사항	6
9. 조사방법	7
10. 집계 및 공표	7
II. 조사항목의 정의 및 기입요령	8
1. 일반적인 주의사항	8
2. 조사표 일반사항 기입요령	8
3. 설비가 지정되어 있는 품목에 관한 사항	11
4. 조립능력품목 및 지정설비가 없는 품목에 관한 사항	17
5. 생산능력 변동내역 기입요령	21
6. 증감내용란 기입요령	21
III. 조사표 검토 및 제출	22

1. 조사표 작성시 중점 검토사항	22
2. 조사표 제출	25
IV. 생산능력 산정시 고려되어야할 중점사항	26
V. 생산능력의 개념 및 사례별 생산능력 산정방법	30
VI. 착오유형 및 확인검토사항	33
제2장 생산능력 내검요령	39
<부 록>	
1. 표준생산능력 산정기준표	44
2. 생산능력·가동률 품목별 가중치 및 품목별 신규사업체 선정기준	127
3. 생산능력조사와 광공업 동태조사간 포괄범위 상이품목.....	141
4.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 조사표」양식	149
5. 주요수정 보완사항	153

제 1 장 생산능력 및 가동률조사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제조업 부문에서 생산되는 주요제품에 대한 생산능력, 생산실적 및 설비상황 등을 조사하여 생산능력 및 가동률 지수를 편제
- 가. 경기동향 분석의 기초자료 제공
 - 나. 주요업종 및 품목별 가동률 수준 분석

2. 조사의 법적 근거

- 통계법 제 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5 조에 의한 일반통계 (승인번호 : 111-21-02)

3. 조사연혁

가. 한국산업은행

- (1) 1971년부터 지수편제
- (2) 1975년 이후 지수편제 중단

나. 조사통계국

- (1) 1975년 기준 지수편제 (이관)
- (2) 1976년 기준 지수개편
- (3) 1980년 "
- (4) 1985년 "

4. 조사기준일 및 대상기간

매월 말을 조사기준일로 1일부터 말일까지의 1개월간을 대상

5. 조사시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에 전월분 조사

6. 조사대상

가. 조사대상 산업

한국표준 산업분류(경제기획원 고시 제 71 호)에서 정의된 제조업
(28개 소분류)중 23개 소분류 채택.

“단” 의복(322), 신발(324), 가구 및 장치물(332), 인쇄출판(342), 도
자기 및 토기업종(361)등 5개 소분류업종은 제외됨.

나. 조사대상 품목

제조업부문의 주요 공산품 중에서 국민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생산
재(원재료, 건설자재등)와 자본재, 주요 내구소비재 등으로 생산능력산
정이 가능한 품목

(1) 71년 : 81개 품목

(2) 76년 : 115개 품목

(3) 80년 : 137개 품목

(4) 85년 : 191개 품목(농약, 화장품 품목은 지수는 산정하지 않지
만 물량확보를 위해 조사하고 있음)

다. 대표도

(1) 대상품목 대표도 : 제조업 전체 생산액중 채택된 품목의 생산액
비중으로 61.9%('80 기준 48.5%)

(2) 대상사업체 대표도 : 채택된 품목중 채택된 사업체가 제조업 전체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56.6%('80
 기준 48.1%)

업종별 채택 품목수

업종별(소분류)	채택 품목수	업종별(소분류)	채택 품목수	업종별(소분류)	채택 품목수
제조업(전체)	191개				
• 식료품	13	• 기타화학	7	• 비철금속	7
• 음료품	6	• 석유정제	1	• 조립금속	9
• 담배	1	• 기타석유, 석탄	2	• 일반기계	18
• 섬유	12	• 고무제품	4	• 전기·전자기기	28
• 가죽제품	2	• 기타플라스틱	4	• 운수장비	10
• 나무제품	3	• 유리제품	4	• 과학계측기기	4
• 종이제품	5	• 기타비금속광물	8	• 기타제조업	7
• 산업용화합물	28	• 철강	8		

라. 조사대상 사업체

1985년 광공업 통계조사 결과를 기초로 위 191개 품목을 생산
 하는 제조업체중에서 품목별로 대표도 및 사업체수를 감안하여 전수
 또는 생산액 순위에 따라 유의 추출한 약 1,500개 사업체

마. 신규조사 대상사업체 선정기준

기준년도('85) 월평균 생산물량의 5% 이상을 생산하는 사업체를 신규 사업체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접근하는 경우에도 산업과와 협조후 신규로 채택할 수 있음. 단, 광공업동태조사를 하고 있는 사업체에 한하여 조사하고 현재까지 누락된 사업체에 대하여는 '89년도 연간 지수 보정시 일괄 처리할 예정임.

7. 조사단위

가. 기업체 단위가 아닌 개개의 사업체(공장, 작업사무소등) 단위로 조사

나. 부득이 사업체(공장)에서 조사할 수 없는 경우는 본사 조사도 가능

8. 조사사항

가. 설비가 지정되어 있는 품목에 관한 사항

- 지정품목명, 생산능력 산정기준(지정설비; 설비보유수, 1일조업시간, 월간조업일수, 산정기준 변경부호), 단위, 생산능력, 생산량등

나. 조립능력품목 및 지정설비가 없는 품목에 관한 사항

- 지정품목명, 능력산정 참고 기준(월말 생산직종업원수, 1일조업시간, 월간조업일수, 변경부호), 단위, 생산능력, 생산량등

다. 생산능력 변동내역에 관한 사항

설비변동등에 따른 산정기준을 변동사항란에 기재

라. 증감내용

생산능력 및 생산량의 전월비(%) 증감부호, 증감사유

※ 증감부호: 예시내용 선택 기입

9. 조사방법

면접·타계식 방법과 자계식 방법의 병행

10. 집계 및 공표

제출된 조사표는 심사, 집계, 분석 등을 거쳐 「생산·출하·재고·가동률동향」(월간), 「한국통계월보」(월간)등에 게재 공표

Ⅱ. 조사항목의 정의 및 기입요령

1. 일반적인 주의사항

- 가.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문자는 한글(필요한 경우, 한자나 영문병기)로 기재
- 나. 잘못 기입한 사항을 정정시는 횡선을 긋고, 그 바로 위에 다시 기재
- 다. 조사단위는 각 품목의 지정단위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체의 사용단위와 다를 경우는 지정단위로 환산 기입
- 라. 특히 조사표상에 정해진 자리수와 품목별 조사 단위와의 차이에 유의하여 조사단위의 자리수를 정확히 기재
- 마. 가중치가 높은 품목의 주요사업체는 조사표상에 기입된 물량의 착오여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함.

2. 조사표 일반사항 기입요령(광공업 동태 지침 참조)

- 가. 년, 월분 및 잠정, 확정 자료 구분
 - (1) 년은 1 자리, 월은 2 자리 숫자로 기입하고 잠정, 확정의 구분을 ○ 표시(생산량 기준)
 - (2) 전월보고된 잠정자료를 확정자료로 다시 보고 하는 경우는 위요령에 따라 붉은 싸인펜으로 표시
 - (3) 소급 수정보고서는 소급내용을 별도 부전지에 상세히 기재하여 첨부(기(既) 발표한 내용에 대한 수정자료이므로 연간보정의 자료로 활용하게 됨)

나. 사업체 고유번호

지정된 사업체 고유번호(7단위)를 기재하되 변경지시가 없는 한 바꿀 수 없음.

다. 산업분류

(1) 지정품목의 생산이 단일 품목일 경우는 해당하는 산업세세분류(5단위)기입

(2) 사업체 관리상 광공업 동태 사업체와 일치 기재

라. 행정구역 번호

지정된 행정구역 번호(시도, 구시군, 동읍면)를 기입

마. 조사구 번호

사무소에서 지정한 조사구 번호를 기입

바. 사업체(본사)명 및 소재지

(1) 사업체가 실제 사용하는 명칭과 현 소재지를 구체적으로 기입

(2) 본사나 별도의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입

사.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실제 대표자명 및 조사표 작성부서의 전화번호를 기입

아. 사업체 규모

종업원수(임시 및 일고포함)를 기준으로 해당번호에 ○표시

중소규모업체기준

산 업 분 류	중 소 규 모 업 체
3. 제 조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 음식료품 및 담배 • 전 업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 인 미 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 섬유, 의복, 가죽, 신발 • 전 업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 인 미 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 나무 및 나무제품 • 전 업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 인 미 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 종이제품 • 전 업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 인 미 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플라 스틱 • 전 업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 인 미 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 비금속광물제품 • 362 유리, 유리제품 • 369 기타비금속광물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 인 미 만 • 300 인 미 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7제 1 차 금속산업 • 3713 주 조 업 • 기 타 업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 인 미 만 • 300 인 미 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8 조립금속제품, 기계및 장비 • 3822 농 업 용 기 계 • 3825 사무, 계산, 회계용기 계 	

산 업 분 류	중 소 규 모 업 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83 전 기 · 전 자 기 기 • 38432 자 동 차 부 품 • 3852 사 진 및 광 학 용 품 • 3853 사 계 • 기 타 업 종 ○ 39 기 타 제 조 업 • 전 업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 인 미 만 • 300 인 미 만 • 500 인 미 만

※ 중소기업법에 의한 기준을 발췌한 것임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

차. 유고사항 (일반사항관의 사업체유고)

- (1) 전입 : 타사무소(시, 도)관할이던 사업체가 이전되어온 경우
- (2) 휴업 : 사업체가 휴업중인 경우(조사표는 계속 제출)
- (3) 사업체 흡수 : 동일기업내 타공장, 또는 다른 기업체의 공장을 흡수 합병하여 공장규모가 늘어난 경우
- (4) 사업체 분리 : 1개 사업체가 경영 및 회계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체로 분할된 경우

※ 조사표 일반사항은 사업체관리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공업동태 조사표와 같게 기록할 것.

3. 설비가 지정되어 있는 품목에 관한 사항

가. 조사대상 품목 및 범위

- (1) 사업체에서 실제 생산하고 있는 제품중 가동률 조사대상으로 지

정된 191개 품목(제품명칭이 다르더라도 품목포괄범위에 해당되면 지정된 품목에 포함됨)에 포함되며 해당사업체에 조사대상으로 지정한 품목

(2) 지정품목에 한하여 자체설비를 이용 직접 생산한 제품에 한함.

나. 품목부호 및 품목명

(1) 생산능력 산정 기준표에 기재된 품목부호 및 품목명을 기입

※ 광공업동태 조사와 개념 및 포괄범위가 상이하여 품목부호 및 품목명이 다를 경우가 있으므로 생산능력 산정기준에 표시된 품목부호 및 품목명을 착오없이 기입하여야 함.

(2) 품목부호(6단위 부호)

품 목 명	품 목 부 호					
• 우 유	1	1	2	0	4	0
• 청 량 음 료	1	3	4	0	9	0
• C . P . U	8	2	5	0	1	1
• CRT 모 니 터	8	2	5	0	1	4

(3) 산업세분류(4단위부호)를

의미하나 대분류 부호를 생략함.

예) 우유 : 112 → 3112

(4) 산업세분류 내에서 채택품목의 일련번호를 의미하지만 광공업 동태조사 지정품목과 동일품목은 6자리의 분류번호가 같도록 부여됨.

(5) 광공업 동태의 품목세분등으로 생산능력 품목과 포괄범위가 다른 품목은 품목부호가 중복되지 않도록 별도의 부호를 부여하였음.

예시)	생산능력	광 공 업 동 태
압 연	712190	7120100 (봉 강) 7121200 (선 재)
전자계산기	825030	8250310 (휴대용) 8250320 (탁상용) 8250330 (카드용)

다. 유고사항 (품목유고)

(1) 지정품목 생산에 관련된 유고사항이므로 다음 예시 내용에 관련된 품목에 한하여 해당 번호를 기재

- 품목 신규 생산 1
- 품목 생산 중단 2
- 기보고 품목으로서 분류 착오로 제외 3
- 품목조사 누락 (누락품목의 신규) 4

라. 생산능력 산정기준

생산능력 산정기준 조사항목은 생산능력 산정시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반드시 매월 기재하여야 함.

(1) 지정설비명

(가) 품목별로 “표준생산능력산정기준표”에 지정되어 있는 설비명으로 기재함.

(나) 지정설비가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지정설비만 기재함.

(다) 지정설비명이 사업체의 설비와 다를 경우, ()내에 병기

※ 지정설비가 동품목의 생산능력 산정에 불합리 할 경우 생산능력 변동내역란에 변동설비명을 주기하고 해당사유를 기재함.

(2) 보유수

㉠ 당해 품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조사 기준일 현재 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운전가능 상태의 설비수를 기재 (진부화 또는 폐기처리되어야 할 설비는 제외)

㉡ 다수의 설비보유수가 용량, 규격 등의 차이로 동일기준으로 산정이 곤란할 경우 표준설비 기준으로 설비수를 환산 기재

※ 방적 및 방직업종의 해당품목(조사표상에 인쇄된 품목)의 보유수는 생산능력설비수와 동일하므로 보유수란은 기재치 않음.

(3) 1일조업시간 및 월간조업일수

㉠ 표준생산능력 산정 기준표에 지정되어 있는 시간수 및 조업일수를 기입

㉡ 산정기준표상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평균 조업시간 및 조업일수를 기재함.

※ 표준생산능력 산정기준표상의 조업시간수 및 조업일수가 향후 계속 다를 경우, 즉 산정기준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변경부호란에 해당부호를 기재하고 정정된 시간수 및 조업일수를 기재함.

(4) 변경부호

상기 지정설비명, 조업시간, 조업일수 등의 변동사항을 하단에서 (※ 변경부호)에서 선택하여 해당부호를 기재함. (전산내검에 관련되므로 매월 기록)

※ 변경부호 내용

1. 표준산식 적용 또는 동일 기준... 표준산식을 적용하 사업체
능력을 적용하든 전월과 생
산능력이 동일한 경우
2. 설비증설 또는 대체... 설비증설 또는 설비를 대체하여 능력이
변경된 경우
3. 설비폐기... 기존설비의 폐기로 능력이 감소된 경우
4. 표준조업시간 변경 ... 해당사업체의 평균조업 상황으로 보
5. 표준조업일수 변경 ... 아 향후 표준조업시간 및 조업일수
를 정정하여야 할 경우(일시적 조
업상황은 제외)
6. 신기법 또는 공정개선... 설비의 효율성 증가나 조립공정개선
등으로 능력을 재산정할 경우
7. 노후설비 재산정... 설비의 노후화나 진부화 등으로 보유수에는
변동이 없으나 능력이 감소된 경우
8. 기 타... 상기 2항~7항의 내용중 2가지이상 적용된 경우

마. 단 위

- (1) 표준생산능력 산정기준표에 지정된 단위를 기입
- (2)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다를 경우 지정단위로 환산하여 기
입하여야 함.

※ 특히 조사 지정단위가 광공업 동태조사와 일치하지 않는 품목
의 경우에는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예시) - 경운기, 트랙터
- 생산능력 지정단위 : 대
 - 광공업 동태 단위 : HP
- 방직 및 방직업종 품목 :
- 생산능력-방직 : 추, 방직 : 대
 - 광공업동태-방직 : 중량 (kg, %) , 방직 : 넓이 (㎡, 천㎡)

바. 생산능력

월간 생산능력은 “표준 생산능력 산정기준표”에 지정되어 있는 설비, 표준조업시간, 표준조업일수 및 능력산정 기준식에 의하여 산정 후 기입.

즉, 조사표 좌측의 “생산능력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됨.

※ 생산능력은 모든 사업체가 확실적인 산정기준으로 능력산출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별첨 생산능력 산정시 고려되어야 할 중점사항을 숙지하여야 함.

사. 생산량

(1) 대상사업체가 자기소유의 설비를 가지고 직접 생산한 량으로 조사 월중(1일에서 말일)에 제조된 제품물량을 기입

(2) 특히 수탁 생산량은 포함하고 위탁 생산량은 조사에서 제외됨.

※ 대상 사업체에서 최종 조립은 하지만 부품을 하청줄 경우에는 최종 생산량을 감안하여 생산능력을 상향 조정한다.

※ 방직 및 방직업에 해당하는 조사 지정품목(조사표상에 인쇄)은 생산능력 및 생산량 란에 물량으로 조사하지 말고 조사지정 단위와 일치하는 설비의 월평균 운전가능수(정방기 : 추수, 직기 :

대수) 즉 운전가능보유수와 월간 실운전수를 각각 해당란에 기입함.

※ 원유처리는 원유 증류장치의 정제능력(생산능력)과, 실제원유정제를 위한 원유사용량(투입량)을 생산량으로 기입하므로, 단순히 동태포괄 품목의 물량합산으로 생산량을 기입하여서는 안됨.

※ 철강선박은 사업체에서 보는 공칭능력(생산능력)과 해당월중 공정 진척도(기성고)에 의한 진척량을 환산하여 생산량으로 기입하므로 최종 완제품 출하량으로 착오 기재하여서는 안됨.

4. 조립능력품목 및 지정설비가 없는 품목에 관한 사항

가. 품목부호, 품목명 유고사항

조사표의 [1]항 조사표 기입요령과 동일

나. 능력산정 참고 기준

종업원수, 조업시간 및 조업일수로 생산능력을 직접 산출하는 것은 아니나 조립능력제품 및 지정설비가 없는 품목은 동내용이 능력산정의 참고기준이 됨. (월평균 생산량을 고려하여 산정함으로써 연평균 가동률이 100%를 상회하거나 40%이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1) 월말생산직 종업원수

(가) 조사월중 해당품목을 생산키 위하여 실제근무한 월말 생산직 종업원수를 기재함(암시 및 일고포함)

(나) 단일제품(지정품목) 생산업체에는 총생산직 월말인원수임.

(다) 혼합품목 생산등으로 품목별 생산라인 구분이 불가능할 때에는 해당품목별 필수 생산부서의 인원수만을 대상으로 함.

(라) 혼합품목의 생산공정이 거의 같아 필수 생산부서의 종업원수
구분이 어려울 때에는 생산물량 및 투입노동 시간비율을 고려하
여 배분함.

※ 생산직 종업원 및 임시, 일고등의 개념은 광공업동태의 종업
원 구분과 동일

(2) 1일 조업시간 및 월간 조업일수

(가) 조사월중 실제 조업한 1일 평균 조업시간 및 월간 조업일수
(나) 매월 변경 가능함.

(3) 변경부호

조사표 Ⅱ 항 기입요령과 동일

다. 생산능력

“표준생산능력 산정기준표”에 설비가 지정되어 있지 않는 품목
즉 기계공업제품, 최종 조립능력제품, 원재료부품 등의 생산능력 산
정은 “생산능력 일반적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사업체의 실정에
맞는 기준에 따라 산정함.

〈생산능력 일반적 산정기준〉

○ 설비범위

생산설비는 생산에 직접관계되는 기계설비 뿐만 아니라 수리공장발
전소, 보일러실등의 보조부문 및 운반설비, 하역설비등을 포함하여 능
력산정이 고려되며, 설비의 진부화 등으로 능률이 떨어져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설비는 제외되어야 함.

○ 조업시간

1일의 평균적인 조업시간으로 하되 아래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함.

- 노무자의 교대시간, 기계의 조정 및 정비등에 따른 평균적인 설비 휴지시간은 제외
- 제도적인 조건(부녀자, 청소년의 심야작업 금지) 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조업을 한 경우에는 조업시간에 포함.

○ 조업일수

- 생산설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기수리시간, 평균 고장일수 및 휴일등은 조업일수에서 제외

○ 기술조건

생산설비의 부분적 개량, 신기법의 도입등의 기술도입도 고려하여 능력산정시 반영

○ 원재료의 품질

원재료의 품질에 따라 생산능력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경우 조사기준일 현재 구입가능한 원재료의 평균적인 품질을 기준으로 함.

○ 혼합생산물의 취급

- 동일설비에서 2종이상의 품목이 생산되는 경우 각각의 제품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능력이 아니고 과거의 평균적인 생산실적을 감안한 생산능력을 배분산정하여야 함.
- 상기구분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할 경우에는 노동, 원재료의 투입비율 또는 주요기계 사용시간등 적당한 계열을 선택하여 배분

○ 조립제품인 경우 3개월정도 가동률이 100%이상이 되고 앞으로
도 같은 수준으로 생산할 경우 생산능력 재산정

※ 최종 조립능력 산정시 유의사항

- 완제품 최종 조립능력으로 산출하여야 함.
- 조립라인 (Line) 당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
- 취급품목이 다양하고 경제성 및 시장성 여하에 따라 자체의 생산계획이 매년 가변적이기 때문에 품목간의 생산능력을 적절히 재조정하여야 함.

라. 생산량

조사표 ①항의 생산량 조사기준과 동일

5. 생산능력 변동내역 기입요령

- 가. 조사표 [1]항 생산능력 산정기준에서 지정설비, 표준조업상황 등을 달리하여 표준산식을 변경할 경우 생산능력 산정기준 및 변동내역을 기재
- 나. 조사표 [2]항의 능력산정 참고기준에 월별 증감차가 커서 생산능력의 재산정을 요하는 경우 변동내역을 기재
- 다. 설비의 증설, 대체, 폐기 등으로 능력을 재산정시 구체적으로 변동사유를 기재함.

6. 증감내용란 기입요령

가. 품목부호

- (1) 사업체의 지정품목중 생산능력 및 생산량에 대한 전월비가 큰 순으로 기입
- (2) 진척량 조사품목(철강선박)은 「당월진척량」 전월비를 기준으로 함

나. 전월비(%)

$$\frac{\text{당월실적(생산능력, 생산량)}}{\text{전월실적(생산능력, 생산량)}} \times 100$$

다. 증감부호 및 증감사유

- (1) 증감부호 기재는 예시 부호중에서 주된 부호 하나만을 선택하여 기재
- (2) 증감사유는 증감부호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간략히 기입

Ⅲ. 조사표 검토 및 제출

1. 조사표 작성시 중점검토 사항

가. 품목부호

광공업 동태조사와 품목개념 및 포괄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일부품목(부록 3 참조)의 경우, 품목부호란에 광공업 동태조사의 어느 한품목의 부호를 기입치 말고 반드시 생산능력조사에서 지정 부여한 고유부호를 기입하여야 함.

예시)

품 목 명	생산능력조사	광공업 동태조사
• 청 량 음 료	134090	1340100 (사 이 다) 1340200 (콜 라) 1340300 (과 즙 음 료) 1340500 (합성탄산음료)
• 버 스	843320	8430500 (소 형 버 스) 8430600 (일 반 버 스) 8430700 (고속형버 스)

나. 품목명

(1) 품목번호 기재 착오 예시에서와 같이 품목명 기입시에도 광공업동태의 어느 한 특정품목명으로서만 기입하여서는 안됨.

(2) 반드시 생산능력 지정 품목명으로 기입한 후 ()안에 실질적인 품목명을 기입토록 함.

예시)

품 목 번 호	품 목 명
712190	압연 (철근, 형강)
841100	철강선박 (일반 화물선)

(3) 품목개념 및 포괄범위에 대한 “표준생산능력 산정기준표”와 “광공업 동태조사지침”을 상호비교 차이점을 명확히 숙지하여 조사 지정품목을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예시) — 소시지 : 햄, 소시지 포함
- 산 소 : 액체, 압축산소 모두 포함하며 물량산정은 액체 산소를 기준

다. 유고사항

- (1) 조사표 상단 일반사항의 유고사항은 사업체에 관련된 유고내용이며 □□항의 유고사항은 지정품목의 생산에 관련된 내용임을 유의
- (2) 생산설비등에 관련된 유고사항은 ③ 생산능력 변동내역란과 생산능력 증감내용란에 기재토록 되어 있음.

라. 조사단위

- (1) 조사 지정단위에 유의하여 사업체의 사용단위를 기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특히 환산단위에 주의를 요함.
- 예시) 톤(1,000 kg), 킬(1,000 l), 천개, 천족, 천본 등
- (2) 광공업 동태조사와 일치하지 않는 조사단위는 기재상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함.

마. 생산능력 및 생산량

- (1) 생산능력은 사업체의 물량조사(생산량, 출하량)와 같이 장부나 작업일지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설비, 노동력,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통일된 지정기준에 의하여 별도로 산출하여야 하므로 매월 사업체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변동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여야 함.
- (2) 한 사업체에서 2가지이상의 지정품목이 생산되고 또 조사품목으

로 지정되었을 때, 이중 일부품목이 생산을 일시 중지하였다도 생산능력(생산설비)의 변동요인이 없는한 중전과 같이 계속 기재되어야 하며, 생산량은 0으로 기입하되 그에 따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3개월 이상의 장기휴업 또는 폐업사업체가 발생시는 산업과와 협의 조정되어야 함)

(3) 생산량은 자체설비를 이용한 생산제품이므로 타사업체의 위탁 생산량이 포함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함.

(4) 방적 및 방직업종에 해당하는 품목(조사표상에 인쇄)은 실운전수(정방기:추, 직기:대) 조사시에는 단순한 계산식으로 간접유도하여 산출하지 말고 가능한 한 실제사업체의 작업일지나 기타 근거대장을 기초로 하여 월중 총연 운전수를 파악한 다음 표준조업일수나 시간을 적용 산출토록 하여야 함. 특히 폐기처분 설비 및 운전불가능 설비수의 확인이 필요함.

바. 생산능력 변동내역 및 증감내용

(1) 생산능력 산정기준에 변경이 있거나 기보고된 능력산정 내용이 상이할 경우는 “변동내역란”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2) 월별 생산능력 변동시에는 능력 변동폭의 크기 여하를 불문하고 전월비, 증감부호, 증감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되 증감사유란은 주요사항을 간략히 기재.

(시설확장, 설비의 대폭증감 등의 변동은 앞면 변동내역란에 주기)

(3) 생산량의 경우에는 증감폭이 $\pm 10\%$ 이상일 때는 그 증감 내용을 기재하되 증감내용 부호 내용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2. 조사표 제출

가. 조사표는 지정된 기일내 (매월 20일)에 제출하되, 제출기한에 임박하여 제출시는 늦게 도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나. 해당사업체의 지정품목이 계절에 따라 생산이 없거나 주문이 없어서 생산이 없을 경우라도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함.

다. 유고사업체도 조사중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조사표를 제출하여야함.

라. 시간관계로 조사표를 팩시밀리 (facsimile)로 보냈을 경우는 우선으로 확인을 꼭 할것.

IV. 생산능력 산정시 고려되어야 할 중점사항

1. 일시적 생산량 격감인 경우?

→ 설비보수 또는 사업체 자체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일시적(2~3개월)으로 생산량이 격감되고 있을 때 이를 기존 평가능력의 감소요인으로 보지 아니함.

2. 최근 수개월간(3개월이상) 가동률이 40%이하의 수준을 유지할때?

→ 기존 생산능력의 과대 평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단, 계절성이 심한 품목의 경우는 예외일 수도 있음.

3. 경제성의 악화로 인하여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 사업체에서 당해 품목의 채산성 악화로 생산품목을 서서히 전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수준으로 동 품목의 생산능력이 감소 조정되어야 하며 다른 품목의 생산능력도 같이 재조정되어야 함. (계절성이 심한 품목의 경우는 예외일 수도 있음)

4. 노후설비의 생산능력 산정?

→ 장기간 방치된 사용불능의 노후설비는 설비능력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5. 장기적(3개월이상)으로 품목가동률이 100%를 육박할 때?

→ 실질적인 사업체 현실을 고려하여 생산능력이 재평가되어야 함.

6. 원재료의 질적차이에 따라 생산량이 차이가 날때?

→ 투입원재료의 품질 여하에 따라 생산량이 차이가 날 때는 최근

수개월중에 투입빈도가 가장 높고 구입이 가능한 품질을 기준으로 생산능력을 평가함.

7. 기술향상이나 공정개선이 이루어진 경우?

→ 눈에 보이는 생산설비의 증설 이외에 보이지 않는 기술향상이나 공정개선, 생산체제 정비등에 따라 능력이 증가할 경우는 생산능력산정시 고려되어야 함.

8. 표준생산능력이 사업체 생산능력과 차이가 있을 경우?

→ 사업체에 따라 표준생산능력으로 산정시 가동률(생산량/생산능력)이 장기적으로 100%를 상회하거나 40%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업체 현실능력을 원칙으로 함.

9. 우발적인 수요가 발생하여 생산이 증가될 경우의 생산능력은?

→ 일시적 수출주문 등으로 급격히 조업상태가 증가했다고 해서 생산능력을 재산정하지 않음.

10. 동일 생산설비에 2종이상의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는?

→ 각 제품을 집중적으로 생산할때의 생산능력이 아니고 과거의 생산실적을 감안 각 제품별로 생산능력을 적절히 비례배분하여야 함.

11. 조립능력으로 평가하는 업종인 경우?

→ 조립생산업체는 취급품목이 다양하고 경제성 및 시장성 여하에 따라 사업체 자체의 생산계획이 매년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품목간에 생산능력도 적절히 재조정되어야 함.

12. 방적 및 방직업종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타지정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

→ 방적 및 방직업종에 있어서의 생산능력은 제품생산능력이 아닌 생산가능설비 보유수(정방기 또는 직기)를 직접 생산능력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당초 지정생산설비에서 일시적으로 타지정품목을 생산하는 경우(예; 면직물의 면직기에서 합섬직물을 생산하는 경우)라도 실 생산제품과는 관계없이 당초 지정품목의 능력 기입.

13. 계절성이 심한 품목의 능력 산정?

→ 계절성이 심한 품목의 경우에는 특히 최성수기의 생산활동을 기준으로 생산능력을 과대 평가하지 말고 비수요기를 배려, 적정수준의 생산능력을 산정해야 함.

(예; 연탄, 선풍기, 에어컨, 농업용 트랙터 등)

14. 설비확장으로 인한 생산능력이 증가될 경우?

→ 설비확장 또는 공장 증축 등으로 생산능력이 크게 증가될 경우에 생산능력산정 기준시점은 시설의 가동상태 조사에 중점을 두어 최초의 제품 생산월부터 증가된 생산능력을 반영토록 함.

15. 휴업인 사업체의 경우?

→ 휴업체나 조업중일지라도 지정품목을 일시적인 생산중지의 경우에는 기존 생산된 생산능력의 보존 유지여부를 항상 파악하여야 함.

16. 장기 휴업체의 경우?

→ 장기휴업체(5개월이상)인 경우는 휴업중인 생산설비의 보존유지여

부 및 재가동 전망등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함.

17. 조립제품인 경우에 부분품이나 반제품을 구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할 경우?

조사대상 사업체의 생산능력에 하청준 물량만큼 능력을 더해준다.

18. 사업체 담당자가 교체될 경우 어떻게?

→ 생산능력은 생산량과 달리 응답자나 조사자에 따라 달리 산출되는 경우가 있으니 업무인수 인계로 인해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과거 자료의 산출근거도 인지하여야 함.

V. 생산능력의 개념 및 사례별 생산능력 산정방법

1. 생산능력의 개념과 표준 생산능력 산식의 작성절차 및 적용

가. 생산능력의 개념

- (1) 비용개념 : 경제원칙 (최소비용으로 최대산출)이 적용되는 개념으로
정량산출 불가능 (∴시시각각의 변화반영 곤란)

- (2) 기술개념
- 이론적 능력 : 설비 중심으로 산출한 개념으로 수요만 있다면 설비 이외의 제약 조건 (인원·기술수준·원재료공급……)에 관계없이 가능한 생산량.
 - 현실적 능력 : 사업체에서 연간 또는 월간 능력을 공식화한 것. (동일 조건이라도 사업체마다 능력이 다를 수 있음)

나. 표준 생산능력

평균조업시간, 평균조업일수, 설비당 평균 능력 등을 적용한 것으로 “현실적 능력의 평균 개념”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 표준 생산능력 산식의 작성 절차

예비조사대상품목선정 → 생산능력 산정의 타당성 → 조사대상품목 확정 검토 (시험조사 1 차)

→ 시험조사 2 차 → 표준조업일수, 시간, 설비능력산정 및 (주요생산사업체 중심) 표준 생산능력산식 초안 작성

→ 관련협회에 타당성 → 표준생산능력 산식 결정 → 조사표 작성 검토 의뢰 및 지침서 작성 (능력 산정)

2. 사례별 생산능력 산정방법

가. 주문생산의 경우 능력산정 문제 (예. 크레인)

	87.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생산능력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생산량	100	95	102	130	132	125	130	135	140	132	138	140
가동률(%)	80	76	81.6	104	105.6	100	104	108	112	105.6	110.4	112

위의 경우는 4월부터 가동률이 100%를 상회하는바 약 3개월
이 지난 7~8월쯤 사업체담당자와 상의해서 능력을 재조정해야 됨.
이때의 능력산정은 (7월에 재산정할 경우) 86년 8월~87년 7월까지
의 월평균 생산량을 사업체 가동률 수준으로 나누어 조정된 능력을
산출함.

나. 동일 설비라인에서 2가지 이상 제품을 생산할 경우

(예. 우유와 유산균음료 비교)

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설비의 월간 생산능력 : 20,000 kl

우유의 연간 생산량 : 100,000 kl (월평균 생산량 : 8,333 kl)

유산균음료의 연간 생산량 : 80,000 kl (월평균 생산량 : 6,667 kl)

$$\Rightarrow \text{우유의 생산능력} = 20,000 \text{ kl} \times \frac{8,333}{15,000} = 11,110 \text{ kl}$$

$$\text{유산균 음료의 생산능력} = 20,000 \text{ kl} \times \frac{6,667}{15,000} = 8,890 \text{ kl}$$

다. 6개월 이상 또는 연평균가동률이 100%이상이거나 40%이하인 경

우(예: 빵)

→ 빵을 생산하는 A제조업체의 표준 생산능력 산식으로 산출한 생산능력이 월간 1,500톤, 연간 생산량이 5,000톤이며 월간 평균생산량으로 환산하면 417톤으로써 평균 가동률은 27.8%인데, 이런 경우에 생산능력 수준이 높게 산정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역으로 사업체의 가동률을 질문했을때 70% 수준(사업체의 현실적 가동률수준)이라고 응답하면 $417\text{톤} \div 0.7 = 596\text{톤}$ 으로 환산되는바 앞으로는 596톤으로 생산능력을 봐야한다.

Ⅵ. 착오유형 및 확인검토 사항

1. 생산능력 및 생산량 조사시 확인 사항

가. 광공업 동태조사와 생산능력 조사간에 포괄범위가 상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같은 것으로 착오하여 조사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록 3. 생산능력조사와 광공업 동태조사간의 포괄범위 상이품목」표를 숙지하여야 함.

- 포괄범위가 상이하여 중점 확인하여야 할 품목

생산능력지정품목	생 산 능 력 조 사	광 공 업 동 태 조 사
• 청 량 음 료	• 사이다, 콜라, 과즙음료, 합성 탄산음료 포함	• 사이다, 콜라, 과즙음료, 합성 탄산음료로 분리조사
• 제 재 목	• 소활재, 각재, 판재 모 두 포함	• 각재, 판재료 분리 조사
• 판 지	• 마닐라판지, 고품표판지, 골판지원지 포함 골판지 상자 제외	• 판지 및 판지상자, 골판지 원지, 골판지 및 상자로 분리 조사
• 지 류	• 신문용지, 백상지, 중절지, 아트지, 크라프트지, 박엽지포함 조사 벽지, 한지, 건축용지 제외	• 각각 분리 조사
• 위 생 용 지	• 위생용지원지 조사	• 위생용 종이제품 조사

생산능력지정품목	생산능력조사	광공업동태조사
•농 약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포함 조사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분리 조사
•원 유 처 리	•실제정유를 정제하기 위하여 투입한 량을 생산량으로 조사	•정제된 생산량을 각각 구분하여 조사
•유 리 병	•식품 및 음료용 유리병, 약병, 화장품용 유리병 포함 조사	•식품 및 음료용 유리병, 약 및 화장품용 유리병으로 분리 조사
•조 강	•산업세세분류 37113 (제강업)전체 포함 조사	•각각 분리 조사
•압 연	•산업세세분류 37121 (열간압연업) 37122 (냉간압연업) 및 선재 전체 포함 조사	• //
•동 압 연 품	•산업세세분류 37231 (신동품제조업)전체 포함 조사	• //
•전 자 계 산 기	•휴대용, 탁상용, 카드용 전자계산기 포함 조사	• //
•브 라 운 관	•흑백 TV 용, 칼라 TV 용 포함 조사	• //

생산능력지정품목	생산능력 조사	광공업동태조사
• 철 강 선 박	• 철강유조선, 일반화물선, 특수 화물선등 철강선 박 포함 조사	• 각각 분리 조사

나. 지정조사 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 그대로의 수치를 기재하거나, 광공업 동태조사 지정단위와 생산능력 조사에서의 지정단위가 다른 것이 있음에도 광공업 동태조사 지정단위로 환산기입하는 사례가 있음.

예시) • 광공업 동태조사와 지정단위가 다른 경우

품 목	생산능력 조사	광공업동태조사
• 경운기, 트랙터	대	HP
• 산업용 펌프	대	HP
• 제 사	추	kg 또는 ㄱ
• 패키지형 에어컨	대	R/T
• 직 물	대	m ² 또는 천m ²
• 선박용내연기관	대	HP

다. 방직 및 방직업에 해당하는 조사 지정품목(조사표상에 인쇄)의 생산능력 및 생산량 조사는 다른 품목(물량조사)과는 달리 설비의 월말 운전 가능수(정방기: 추수, 직기: 대수)와 월간 실운전수로 조사되는데, 이를 착오하여 물량으로 조사하는 경우와 특히 실운전수 산출을 월간조업 시간수 및 조업일수를 적용치 않고 운전수만을 파악

하여 생산능력과 생산량이 계속 동일하게 조사되는 사례가 있음.

(방직 및 방직 지정품목의 생산능력 및 생산량 산출 요령)

(1) 생산능력 (월말 운전 가능수)

월말 운전 가능수는 운전 가능한 설비 보유수와 같은 개념이므로 보유추(대)수 자체를 기입(폐기되어야 할 설비는 제외)

(2) 생산량 (월간 실운전수)

가) 방직의 경우 (정방기추수)

매시간마다 실제로 운전된 정방기의 추수를 당해 월간에 누계하여 생산능력 산정기준표의 (표준조업시간×표준일수)로 이를 나누어 산출함.

예) A사업체가 시간당 300 추의 정방기로 15일은 24시간, 10일은 12시간만을 조업하였을 경우

$$\text{월간실운전수} = \frac{300(15 \times 24) + 300(10 \times 12)}{24 \times 30} = 200 \text{ 추}$$

나) 방직의 경우 (직기대수)

매일 가동한 직기의 월간누계를 생산능력 산정기준표의 표준조업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예) B사업체가 합섬직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직기 300대를 25일 가동하였을 경우

$$\text{월간실운전수} = \frac{300 \times 25}{30} = 250 \text{ 대}$$

라. 조립 생산제품의 생산능력은 완제품 최종조립능력으로 한개의 조립 라인(Line)당 생산능력이 평가되어야 하는데 월별 생산량에 비해

하여 생산능력이 월별로 변동하는 사례가 있음.

(1) 제품생산 공정별 생산 부서의 수준과 원재료 공급이 충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최종조립부서의 최대생산능력이 반영되어야 함.

(2) 지정 품목의 생산능력이 일단 산정되면, 시설 확장, 축소, 종업원수의 증감, 신기법 또는 공정개선 등으로 능력변동에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생산능력이 변동됨.

마. 철강선박의 생산량 조사는 해당월중 공정진척도에 따라 진척량을 계산하여 기입하므로 최종완제품의 출하량으로 생산량을 기입하여서는 아니됨.

(1) 생산량 산출방법

$$\text{생산량} = \text{수주 (G/T)} \times \frac{\text{금월진척율(\%)} - \text{전월진척율(\%)}}{100}$$

= 금월생산량

예) 철강선박수주 : 10,000 G/T

금월진척율 : 95 %

전월진척율 : 80 %

$$10,000 \times \frac{95 - 80}{100} = 1,500 \text{ G/T} \dots\dots \text{금월생산량}$$

바. 사업체이전 및 타품목 생산으로의 업종전환시 능력확인이 미흡한 경우가 있음.

(1) 사업체 이전의 경우 기존설비의 폐기 또는 새로운 설비증설 등이 없는지 유의하여 재확인되어야 함.

(2) 이전사업체가 전출지에서도 조사되고 전입지에서도 조사되어 중복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함. (전입된 사무소 및 진출된 사무소에서 상호 확인되어야 함)

- (3) 타품목 생산으로 업종을 전환한 업체라도 향후 기존품목을 재생산하기 위하여 설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기존품목 생산계획은 없더라도 기존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면 생산능력은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조사하여야 하므로 기존설비의 보유 또는 폐기를 확인하여야 함.

사. 기술개발 및 업무자동화 등에 따라 능력의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

- (1) 기계설비의 신규증설은 없으나 기술개발, 공정개선, 업무자동화, 신기법 개발 등으로 생산량이 급증하는 경우 산업과와 협의하여 적시에 능력을 재산정 반영토록 하여야 함.

제 2 장 생산능력내검요령

1. 일반사항란

가. 전월과 비교해서 신규 또는 누락된 사업체 고유번호 없는가?

→있으면 질의후 필요한 경우 보완되어야 함.

나. 조사표 상단의 년 월의 기입과 1. 잠정자료, 2. 확정자료 중 어느 하나에 ○표시 되어 있는가?

→확인하여 기입 또는 정정

다. 행정구역번호 기입누락은 없는가?

→확인하여 기입 또는 정정

라. 유고사항이 “ 1. 전입 ”인 경우 행정구역번호가 전월과 같지는 않는가?

→확인하여 기입 또는 정정

2. 생산능력·생산량

가. 사업체 유고번호가 “ 2. 휴업 ”인 사업체의 생산능력 및 생산량 확인

→ 생산능력은 전월과 같이 하고 생산량은 “ 0 ”이 되어야 함.

나. 사업체별 품목부호는 전월과 같은가?

→ 전월에 있는 것이 누락되었으면 확인하여 보완하고 없는 것이 추가되었으면 확인후 정정 또는 삭제함.

다. 품목유고번호 1번, 4번인 경우

→ 산업과 질의

라. 품목유고사항이 2 (품목생산중단)인 경우 생산능력이 0인 경우는?

→ 확인후 정정

마. 품목유고번호 3번인 경우

→ 조사원과 재확인

바. 설비가 지정된 품목의 경우 지정설비의 보유수, 1일조업시간, 월간조업일수가 전월에 비하여 변동된 경우 생산능력이 변동되었는가?

→ 설비가 변동되었으면 능력이 반드시 변동되지만 조업시간 및 월간조업일수가 변동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능력이 변동되지 않음.

단, 가동률이 3개월이상 100% 상회 또는 40%이하 지속될 경우에는 능력을 사업체 현실수준을 감안하여 조정함.

사. 변경부호가 1인 경우 전월과 생산능력이 동일한가?

→ 다르면 확인후 정정

아. 전월에 비하여 물량(생산능력 또는 생산량)이 50%이상 증감되지 않았는가?

→ 50%이상 증감시 단위 착오여부 조사표에 변동내역 반영등을 확인함.

자. 6개월이상 가동률($\frac{\text{생산량}}{\text{생산능력}}$)이 100%를 계속 넘지는 않는가?

→ 넘는 경우 질의할 것.

차. 6개월이상 가동률($\frac{\text{생산량}}{\text{생산능력}}$)이 40%이하로 지속될 경우 질의할 것.

부 록

1. 표준생산능력 산정기준
2. 생산능력·가동률 품목별 가중치 및 품목별 신규사업체 선정기준
3. 생산능력조사와 광공업 동태조사간 포괄범위 상이품목
4.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 조사표」양식
5. 주요수정 보완사항

부록 1

표준생산능력산정기준표

표준생산능력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설 비		표 준 조업시간	표 준 조업일수
			설 비 명	단 위		

소분류 311.312 식료품 제조업

111090	소 시 지 (Sausage)	M/T	충전기 (Mould)	대	10	25
112020	분 유 (粉乳)	M/T	①분무건조기 (분유) ②충전기 (연유)	대 대	10 10	30 25
112040	우 유 (牛乳)	kl	살균기, 포장기	대	16	28
112050	유산균음료 (乳酸菌飲料)	kl	살균기	대	20	30

산정기준표

표준생산능력산식	개념 및 포괄범위
$C = \text{시간당 기계능력}(kg) \times 10 \times 25 \times 1/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육·어육등을 분쇄하여 혼합, 향신료등을 첨가하여 훈제 케이싱(Casing)한것. ○ 축육·어육·소시지 및 햄 포함 × 베이컨은 제외
$C = \text{시간당 건조기탈수기능}(kg) \times 10 \times 30 \times 1/1,000$ $C = \text{시간당 건조기탈수능력}(kg) \times 10 \times 25 \times 1/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우유를 완전 탈수시켜 분말화한 분유와 연유 ○ 전지, 탈지, 조제분유, 우유기저 이유식 포함. × 곡물기저 이유식은 제외
$C = \text{시간당 기계능력}(kg) \times 16 \times 28 \times 1/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우유를 살균처리한 것 ○ 가공유(말기, 커피, 우유등)탈지유 포함 × 양유, 연유는 제외
$C = \text{시간당 기계능력}(kg) \times 20 \times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 또는 유제품을 유산균 또는 효모로 발효시켜 균상 또는 액상으로 한것. ○ 함유량(含有量)에 무관 ○ 유산균음료 및 유산균발효유 포함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설 비		표 준	표 준
			설 비 명	단 위	조업시간	조업일수
115010	대두유 (大豆油)	ℓ	탈산기	대	24	25
116010	밀가루	M/T	Sifter (체) Roller	대	24	25
117010	빵	M/T	오븐기 (oven)	대	24	30
117060	라면류	M/T	Roller	대	20	25
118010	정 당 (精糖)	M/T	용당관, 결정관	대	24	25
121020	글루타민산소다	M/T	발효조, 결정관	대	24	30

표준생산능력산식	개념 및 포괄범위
C = 시간당 탈산능력 (kl) × 24 ×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명 식용콩기름 × 들깨나 비식용 기름은 제외
C = 1일공칭능력(%) ×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의 배젓부를 제분한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C = 시간당 소성능력(kg) × 24 × 30 × 1/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분을 주원료로 하여 설탕등 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식품 ○ 식빵, 과자빵, 카스테라등이 포함 × 지정설비가 다른 빵류는 제외
C = 1일공칭능력(%) ×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스턴트 식품으로 면이 포함된 것은 모두 조사 ○ 라면, 짜장라면, 냉면 등의 인스턴트면류
C = 1일공칭능력(%) ×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탕수수, 사탕무우에서 얻은 원당을 정제한 것 ○ 정백당, 갈색당 포함
C = 1일공칭능력(%) ×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의 맛을 높이기 위한 백색의 결정 또는 분말상태의 조미료(순수글루타민소다) ○ 핵산조미료 포함 × 맛나, 다시다, 진국 등의 혼합조미료 제외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설 비		표 준	표 준
			설 비 명	단 위	조업시간	조업일수
122040	맥 아 (麥芽)	M/T	건조상(Box) 건조실	개	24	30
122100	커피 (Coffee)	kg	배전기(원두커피) 건조기(분말커피)	대	24	30
123010	배합사료 (配合飼料)	M/T	배합기, 마쇄기	대	20	25

소분류 313 음료품 제조업

131010	주 정 (酒精)	ℓ	① 증자기	대	24	25
			② 발효조	대	24	25
			③ 증류기	대	24	25

표준생산능력산식	개념 및 포괄범위
$C = 1 \text{ 일건조능력}(\%) \times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리, 밀 등을 발아시켜 건조시킨 맥주 원료
$C = \text{시간당 기계능력}(kg) \times 24 \times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피원두를 볶거나, 볶아서 분쇄한 것 ○ 군커피(업소용), 분말커피(가정용) 포함 ○ 커피믹스(Coffee mix) 포함
$C = 1 \text{ 일공칭능력}(\%) \times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 가금류의 사료로 영양소를 적당량으로 배합한 사료 × 화학사료(영양소) 등의 보조사료는 제외

<p>①, ②의 설비</p> $C = \text{총용량}(\ell) \times \text{사입비율} \times 1 \text{ 일 회 전수} \times \text{증류비율} \times \text{숙성비율} \times \text{시료도수} \times \frac{100}{95} \times 25 \times \frac{1}{1,000}$ <p>③의 설비</p> $C = (\text{요탑반경} cm)^2 \times 3.14 \times \text{유하 계수} \times \text{시료도수} \times \text{증류비율} \times \frac{100}{95} \times 25 \times \frac{1}{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분, 당질을 효모로 사용하여 발효시킨 것으로 주류제조의 원료(에틸알콜) × 주류이외 화학공업용, 산업공업용으로 사용되는 합성주정은 제외 × 수입조주정은 제외
--	--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설 비		표 준	표 준
			설 비 명	단 위	조업시간	조업일수
131020	소 주 (燒酒)	kl	① 사입부	대	16	25
			② 주입기(병힐부)	대	10	25
131030	위스키 (Whiskey)	kl	주입기	대	10	25
133050	맥주(麥酒)	kl	저장탱크, 당화조	대	24	25
134070	두유(豆乳)	kl	포장기	대	16	25
134090	청량음료 (清涼飲料)	kl	주입기, 혼합기	대	10	25

소분류 314 담배 제조업

140020	필터담배	100 만본	권력기 (권상기)	대	8	25
--------	------	-----------	--------------	---	---	----

표준생산능력산식	개념 및 포괄범위
$C = \text{사업부당 출고량}(\ell) \times \text{월간회전수} \times 1/1,000$ $C = \text{시간당주입능력}(\ell) \times 10 \times 25 \times 1/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정을 물로 희석하여 만든 희석소주 × 고량주 제외
$C = \text{분당 주입능력}(\ell) \times 60 \times 10 \times 25 \times 1/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스키원액, 주정, 물, 기타 첨가물을 혼합 제성한 것
$C = \text{저장능력}(kl) \times \text{월간회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맥주 포함
$C = \text{시간당 기계능력}(kl) \times 16 \times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두를 주원료로 식물성유지, 당류, 식염을 첨가한 음료 ○ 순수두유 및 가공두유(딸기, 잣, 초코두유)포함
$C = \text{시간당 기계능력}(Btl) \times 10 \times 25 \times \frac{Btl \text{ 당 } \ell}{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다, 콜라, 과즙음료, 보리음료, 합성탄산음료, 및 기타 청량음료 포함 × 생수, 분말주스 제외
$C = \text{시간당 기계능력(천본)} \times 8 \times 25 \times 1/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가공된 잎담배의 향료등을 첨가하여 관련지로 말아놓은 담배제품 × 필터없는 담배, 각연, 여송연 제외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설 비		표 준 조업시간	표 준 조업일수
			설 비 명	단 위		

소분류 321 섬유제조업

211020	면 사 (綿絲)	추 (錘)	면정방기 (스프정방기포함)	추	24	30
211040	방 모 사 (紡毛絲)	추	방모정방기	추	24	30
211050	소 모 사 (梳毛絲)	추	소모정방기	추	24	30
212010	면 직 물 (綿織物)	대 (台)	① 역직기 ② 수동직기	대	24	30
212040	견 직 물 (絹織物)	대	① 역직기 ② 수동직기	대	24	30

표준생산능력산식	개념 및 포괄범위
<p>C=월말운전가능설비(추)보유수</p> <p>※ 실운전추수(생산량)</p> <p>=$\Sigma(\text{추수} \times \text{시간} \times \text{일수}) \div (24 \times 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면, 화학섬유를 가공하여 제조한 실 ○ 순면사, 혼방면사(면이 50%이상)포함
<p>C=면사(면정방기)산식과 동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모, 타섬유를 가공하여 제조한 실 (거칠고 잔털이 많음) ○ 순방모사, 혼방방모사(방모가 40%이상)포함
<p>C=면사(면방정기)산식과 동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모사보다 모양이 매끄럽고 잔털이 적으며 일정한 굵기를 갖는 실 ○ 순소모사, 혼방소모사(모가 40%이상)포함
<p>C=월말운전가능설비(직기)보유수</p> <p>※ 월간평균실가동대수(생산량)</p> <p>=월간총연실가동대수(일별실 운전수의 월간누계)÷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사, 합성섬유사로 짠 직물 ○ 순면직물, 혼방면직물(면 50%이상)포함
<p>C=면직물 산식과 동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사, 견방사로 재직한것(일명 비단) ○ 순본견직물, 견혼방직물 포함(홀치기, 시보리, 하오리, 양단등)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설 비		표 준 조업시간	표 준 조업일수
			설 비 명	단 위		
212050	합섬직물 (合纖維物)	대	① 역직기 ② 수동직기	대	24	30
212090	모직물 (毛織物)	대	① 역직기 ② 수동직기	대	24	30
215010	스타킹 (Stocking)	천컬레	편직기	대	22	25
215030	메리야스 내의 (內衣)	천매	편직기(환편기)	대	20	25
215040	메리야스 외의 (外衣)	천매	편직기(횡편기)	대	24	30

표준생산능력산식	개념 및 포괄범위
C=면직물 산식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성섬유사 및 각종사로 제조된 직물 ○ 순합성 섬유직물, 혼방합성 섬유직물포함 (나이론, 다후다, 폴리텍스, 케미컬, 리코트 등으로 호칭)
C=면직물 산식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모사, 방모사, 혼방소모사, 혼방방모사, 등으로 방직한 직물 ○ 순소모직물, 혼방소모직물 (소모가 35% 이상) 순방모직물, 혼방모직물 (방모가 40% 이상) 포함조사
C=1일직기능력(천매)×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섬이 60%이상 포함된사로 편직하여 만든 양말 ○ 타이즈, 펜티, 밴드·판타롱 스타킹 포함
C=1일직기능력(매)×25× 1/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직기로 편직한 내의로 통칭 메리야스라 함. ○ 남녀용 여름내의(펜티, 런닝셔츠) 및 겨울 내의만 조사 × 편직물을 구입하여 재단 재봉한 것은 의복으로 제외
C=1일직기능력(매)×30× 1/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물외의이므로 반드시 편물한것만 조사 ○ 웨타류, 셔츠류 포함조사 × Y셔츠, 브라우스, 운동복(츄리닝) 제외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설 비		표 준	표 준
			설 비 명	단 위	조업시간	조업일수
217020	어 망 (漁網)	M/T	편망기	대	24	25
219030	인조섬유 타이어 직물 (人造纖維 tire織物)	M/T	방사기	대	24	30

소분류 323 가죽·대용가죽 제조업

231010	쇠가죽	천m ²	① Band Knife (후두조절기) ② Drum (화학반응기)	대	8	25
231020	재생(再生) 및 인조(人造) 가죽	천m ²	코팅기	대	10	25

소분류 331 나무 및 나무제품 제조업

311040	일반합판 (一般合板)	m ³	① 박취기 (Rotary Lathe)	대	20	30
--------	----------------	----------------	-------------------------	---	----	----

표준생산능력산식	개념 및 포괄범위
$C = 1 \text{ 일기계능력}(kg) \times 25 \times 1/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용 자재인 각종 어망 모두 포함 × 곤충망, 농업용망, 건설업용망 제외
$C = 1 \text{ 일기계능력}(kg) \times 30 \times 1/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섬을 연사화 하여 만든 직물 ○ 타이어의 골격으로 사용되는 직물

$C = \text{시간당기계능력}(m^2) \times 8 \times 25 \times 1/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피(소)를 가공하여 만든 가죽 ※ $1 S / F \approx 0.0929 m^2$
$C = \text{시간당기계능력}(m^2) \times 10 \times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죽조각을 재생시키거나, 직물이나 부직포에 폴리우레탄을 입힌 것 × 플라스틱 레저는 제외

$C = 1 \text{ 일공칭능력}(m^2) \times 30$ ① $C = \pi \times \text{직경} \times \text{분당회전수} \times 60 \text{ 분} \times \text{Charging unit}(c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판을 여러장 겹쳐 접착제로 붙여서 만든 판자 ※ $1 m^2 = 3703.7 S / F$
--	--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설 비		표 준	표 준
			설 비 명	단 위	조업시간	조업일수
			② 건조기 ③ Glue Spreader ④ 냉압기 ⑤ 열압기			
311050	가공합판 (加工合板)	m ³	① 박취기 (Rotary Lathe) ② 건조기 ③ Glue Spreader ④ 냉압기 ⑤ 열압기	대	20	30

표준생산능력산식	개념 및 포괄범위
<p>시간수 × Cutting length (CI)인치 × 0.55 × 30 × 1/3703.7 (m)</p> <p>② C = 폭(ft) × $\frac{1}{4.2}$ × 단(Stage) 의수 × 분당속도 (m/min) × $\frac{4}{84}$ × 60 (분) × $\frac{1}{3}$ × 20 × 30</p> <p>③ C = 분당속도 (m/min) × 60 (분) × CI 인치 × 20 × 30</p> <p>④ C = 박취당 냉압능력(매) × 60 (분) × 1 냉압시간(분) × 20 × 매당 m × 30</p> <p>⑤ C = opening 의 수(매) × 60 (분) × 1 열압시간(분) × 20 × 30 × 매당 m</p>	<p>Charging unit : 원목의 중심점을 찾는 기계</p>
<p>"</p>	<p>○ 일반합판에 무늬목을 부착하거나 프린트 된 가공합판</p> <p>※ 가공합판 : 미장합판, 도장합판, 프린트합판</p>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설 비		표 준 조업시간	표 준 조업일수
			설 비 명	단 위		
311090	제재목 (製材木)	m ³	제재기 ① 대차기 ② Table기	대	10	25

소분류 341 종이 및 종이제품

411010	펄 프 (pulp)	M/T	① 쇄목기	대	24	30
			② 증해솔 (화학펄프의 경우)	기	24	30

표준생산능력산식	개념 및 포괄범위
$C = \text{시간당기계능력}(m^3) \times 10 \times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목을 일정 두께로 제재한 소할재, 각재, 판재 모두 포함조사 ※ 소할재 : 두께 8cm미만, 폭이 두께의 3배 미만 각재 : 두께, 폭이 8cm이상 판재 : 두께 8cm미만 폭이 두께의 3배이상 1 m³ = 303 사이(才) 1 m³ = 423.77 B/F × 철도 침목은 제외

<p>① C = 쇄목기 정격출력 (kw) $\times \text{계수} \times 30 \times 1/1,000$</p> <p>※계수 = $\frac{\text{시간당생산량} \times 24 \text{ 시간}}{\text{kw}}$</p> <p>② C = 증해솔용적(m³) × 펄프수율 $(\text{kg} / \text{cm}^3) \times \text{증해회수} (\text{회} / \text{일})$ $\times 30 \times 1/1,0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를 갈아 부셔서 만든 쇄목펄프와 칩에 약품을 섞어 끓여서 분해한 화학 펄프 포함 × 보조펄프(고지, 형집 등)는 제외
--	--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설 비		표 준 조업시간	표 준 조업일수
			설 비 명	단 위		
411090	판 지 (板紙)	M/T	① 장망식초지기 ② 환망식초지기 ③ 단망식초지기	대	24	30
411900	지 류 (紙類)	M/T	① 장망식초지기 ② 환망식초지기 ③ 단망식초지기 ④ 기 타	대	24	30
419020	위생용지 (衛生用紙)	M/T	초지기	대	24	28
419030	금속박지 (金屬箔紙)	M/T	① 도금기 (Coater) ② 접합기	대	16 20	30 30

표준생산능력산식	개념 및 포괄범위
$C = \text{평량} (gr / m^2) \times \text{완성취득}(m) \times \text{분속} (m / \text{분}) \times \text{총효율} \times 60 (\text{분}) \times 24 \times 30 \times 1/1,000 \times 1/1,000$ <p>※ 총효율 = 완성감손 × 초효율 × 운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이거친 펄프를 기계로 눌러서 만든 두터운 종이 ○ 마닐라판지, 고품표백 판지, 골판지원지, 골판지, 백판지, 황판지, 색판지, 건축용지 등 포함 × 골판지 상자, 크라프트지 포대 등의 제품은 제외
$C = 1 \text{ 일건조능력} (kg / m^2) \times \text{드라이야 총면적}(m^2) \times 30 \times 1/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쇠목펄프, 화학펄프를 원료로 만들어진 모든 지류로 신문용지, 백상지, 중질지, 아트지, 크라프트지 및 박엽지, 편광지 포함 조사 × 건축용지 (갈포벽지, 건축용지), 한지 (창호지, 장판지), 벽지 및 위생용지는 제외
$C = \text{시간당기계능력}(kg) \times 24 \times 28 \times 1/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화장지, 냅킨지, 위생대 등의 제품이전 단계인 화장지원지만을 조사
<p>① $C = \text{분당Coater 의속도} (m) \times \{ \text{원지평당} (gr/m^2) + \text{Foil 의 평량} (g/m^2) \} \times \text{폭} (mm) \times 1/1,000 \times 60 \text{분} \times 16 \times 30 \times 1/1,0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지류에 금속광물 (알루미늄, 주석, 아연)을 취부 (吹付) 또는 금속박해서 제조한 것 (금, 은박지) × 금은박 또는 박지를 구입, 접착제로 단순접착하는 것은 제외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설 비		표 준 조업시간	표 준 조업일수
			설 비 명	단 위		

소분류 351 - 산업용 화합물 제조업

511010	에틸렌	M/T	① 압축기 ② 냉동기	대	24	30
511020	프로필렌	M/T	① 압축기 ② 냉동기	대	24	30
511040	벤젠	M/T	증유탑	기	24	28
511050	톨루엔	M/T	증유탑	기	24	28

표준생산능력산식	개념 및 포괄범위
② $C = \text{시간당기계능력 (kg)} \times 20 \times 30 \times 1,000$	

$C = 1 \text{ 일생산능력 (\%)} \times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프타분해시 생산되는 불포화 화합물 (올레핀탄화수소) ○ 석유화학공업의 가장 중요한 1차원료 (합성수지, 합성섬유, 화공약품 원료)
$C = 1 \text{ 일생산능력 (\%)} \times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포화 화합물에 속하는 물질로 석유화학공업의 1차원료 ○ 원재료 : 나프타 ○ 합성수지, 합성섬유, 화공약품원료
$C = 1 \text{ 일생산능력 (\%)} \times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향족화합물의 기본물질로 가연성, 무색, 유독액체 ○ 원재료 : 나프타 ○ 합성섬유, 합성세제, 합성수지, 화공약품 원료
$C = 1 \text{ 일생산능력 (\%)} \times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젠과 거의동질 (일명 톨루올 또는 메틸벤젠) ○ 원재료 : 나프타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설 비		표 준	표 준
			설 비 명	단 위	조업시간	조업일수
511060	키실렌	M/T	증유탑	기	24	28
511070	염화비닐모노머 (VCM)	M/T	분해로	기	24	30
511080	에틸렌글리콜 (EG)	M/T	반응탑	기	24	28
511100	아크릴로 니트릴	M/T	반응탑	기	24	30
511130	스티렌모노머	M/T	① 반응탑 ② 증유탑	기	24	28
511170	테레프탈산	M/T	반응탑	기	24	28
511180	카프로락탐	M/T	반응탑	기	24	30

표준생산능력산식	개념 및 포괄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레탄 수지의 원료
C = 1일생산능력 (%) ×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젠과 거의 동질 (일명 디메틸벤젠) ○ 원재료 : 나프타
C = 1일생산능력 (%) ×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염화비닐의 단량체 ○ 원재료 : 에틸렌 ○ PVC 수지의 원료
C = 1일생산능력 (%) ×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족계 석유화학 유도물질 ○ 원재료 : 에틸렌 ○ 폴리에스테르 섬유, 부동액의 원료
C = 1일생산능력 (%) ×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족계 석유화학 유도물질 ○ 원재료 : 프로필렌 ○ 합성수지, 합성섬유의 원료
C = 1일생산능력 (%) ×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향족계 석유화학 유도물질 ○ 원재료 : 에틸렌 ○ 폴리스티렌의 원료
C = 1일생산능력 (%) ×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탈산과 이소프탈산의 화합물 ○ 원재료 : 키실렌 ○ 폴리에스테르 섬유, 녹음테이프의 원료
C = 1일생산능력 (%) ×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 : 싸이크로 헥산 ○ 나이론섬유 및 수지의 원료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설 비		표 준 조업시간	표 준 조업일수
			설 비 명	단 위		
511230	폴리우레탄	M/T	반응로	기	24	28
511240	폴리에틸렌	M/T	중합기	대	24	30
511250	폴리프로필렌 (PP)	M/T	중합기	대	24	30
511260	폴리스티렌 (PS)	M/T	중합기	대	24	30
511270	ABS 수지	M/T	① 압출기 ② 건조기	대	24	30
511280	폴리염화비닐 (PVC)	M/T	중합기	대	24	30

표준생산능력산식	개념 및 포괄범위
C = 1일생산능력 (%) ×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가소성 폴리부가형 플라스틱 ○ 원재료 : 벤젠, 톨루엔, 싸이크로헥산 ○ 우레탄 고무, 우레탄도료 및 발포성형 제품의 원료
C = 1일생산능력 (%) ×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가소성 플라스틱 ○ 원재료 : 에틸렌 ○ 필름, 전선피복, 파이프의 원료
C = 1일생산능력 (%) ×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가벼운 열가소성 플라스틱 ○ 원재료 : 프로필렌 ○ 가정용품 (용기, 식기, 세면기등), 필름, 배관용 파이프, 의자의 원료
C = 1일생산능력 (%) ×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가소성 플라스틱 ○ 원재료 : 스티렌모너머 ○ 라디오, 냉장고 케이스등의 원료
C = 1일생산능력 (%) ×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하나로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의 공중합체 ○ 충격보강제품
C = 1일생산능력 (%) ×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하나로 염화비닐의 중합체 ○ 원료 : VCM (염화비닐모노머) ○ 전선피복, 수도파이프등 건설자재 파이프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설 비		표 준 조업시간	표 준 조업일수
			설 비 명	단 위		
511340	SBR (합성고무)	M/T	반응탑	기	24	30
512060	가성소다	M/T	농축관	기	24	30
512070	가소제	M/T	반응로	기	24	30
512080	소다회 (NaCO ₂)	M/T	화소로	기	24	30

표준생산능력산식	개념 및 포괄범위
	의 원료
C = 1일생산능력 (%) ×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티렌과 부타디엔을 공중합시켜 만든 합성고무의 하나 ○ 원재료 : 스티렌, 부타디엔, 가소제 ○ BR을 포함 ○ 타이어, 신발장, 고무벨트의 원료 × NBR, NCR, IIR, 스테레오 SBR제의
C = 1일생산능력 (%) ×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명 수산화나트륨 (NaOH)으로 수용액이 강한 알칼리성을 나타냄 (양잿물) ○ 용액상태포함, 100%기준 환산 ○ 원재료 : 석회석, 생석회, 소다회, 염화칼슘 ○ 조미료, 비스코스인건사, 염료, 향료, 농약, 의약품, 종이 및 펄프제조의 원료
C = 1일생산능력 (%) ×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명 수산화칼리, 수산화칼륨 (KOH) 또는 가성칼리라함. ○ 원재료 : 무수프탈산, 에틸렌글리콜, 무수마레인산 ○ 합성수지류, 접착제의 원료
C = 1일생산능력 (%) ×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명 탄산나트륨, 또는 탄산소다라 함 ○ 원재료 : 암모니아, 석회석, 식염 ○ 아미노산 공업, 비누, 유리, 가성소다,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설 비		표 준 조업시간	표 준 조업일수
			설 비 명	단 위		
512190	산 소 (酸素)	천m ²		대	24	28
514010	아세테이트섬유	M/T	중합기	대	24	30
514020	폴리아미드섬유	M/T	중합기	대	24	30
514030	폴리에스터섬유	M/T	중합기	대	24	30
514040	아크릴릭섬유	M/T	중합기	대	24	30
515010	요소비료 (尿素肥料)	M/T	합성탑	기	24	30

표준생산능력산식	개념 및 포괄범위
	제지, 염색 의약품의 원료
$C = \left(\text{액체산소} + \frac{\text{압축산소}}{800} \right) \times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하 178℃이하의 온도 및 50기압이상의 압력으로 냉각 압축하여 얻은 약간 푸른 색을 띤 액체산소와 적정온도에서 높은 압력을 가하여 그 부피를 줄인 압축산소 포함
$C = 1 \text{ 일생산능력 (\%) } \times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섬유(반합성섬유)로 전기절연성이 뛰어난 ○ 장섬유, 장섬유토우(담배필터), 단섬유 포함,
$C = 1 \text{ 일생산능력 (\%) } \times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성섬유의 하나로 일명 나이론섬유 ○ 장섬유, 단섬유 포함조사
$C = 1 \text{ 일생산능력 (\%) } \times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레프탈산(T.P.A)과 에틸렌글리콜(EG)을 중합하여 만든 합성섬유 ○ 장섬유, 단섬유, 장섬유토우 포함조사
$C = 1 \text{ 일생산능력 (\%) } \times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모와 비슷한 모양과 성질을 가진 폴리아크릴계 합성섬유 ○ 장섬유, 단섬유, 토우포함 조사
$C = 1 \text{ 일생산능력 (\%) } \times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소의 함유량이 높은 질소질 비료의 하나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설 비		표 준	표 준
			설 비 명	단 위	조업시간	조업일수
515020	복합비료 (複合肥料)	M/T	합성탑	기	24	30
516010 ★	농 약 (農藥)	M/T	① Ribbon Mixer (입제, 분제) ② 교반기(유액제)	대	8	25

소분류 352 기타화학제품 제조업

521020	에나멜 (Enamel)	kg	분쇄기	대	10	25
521030	페인트 (Paint)	kg	분쇄기	대	10	25
523030	합성세제 (合成洗劑)	M/T	분무건조기	대	16	25

표준생산능력산식	개념 및 포괄범위
$C = 1 \text{ 일생산능력 (\%)} \times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료의 3요소인 질소, 인산, 칼리중 두 가지 이상의 성분량을 조정 혼합한 화학비료 × 유산비료, 유기질비료 제외
$C = \text{시간당기계능력 (kg)} \times 8 \times 25 \times 1/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용, 원예용, 농약 및 제초제 ○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모두 포함조사

$C = \text{시간당기계능력 (kg)} \times 10 \times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료와 유바니스등을 녹여 혼합한 전색체도료 ○ 페인트보다 광택이 풍부하고 미끄러움
$C = \text{시간당기계능력 (kg)} \times 10 \times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취, 방부용으로 유성페인트, 수성페인트, 기타 유성도료 포함
$C = \text{시간당기계능력 (\%)} \times 16 \times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누이외의 합성 표면활성제 ○ 화학처리로 만든 가루세제 포함 [예) 럭키 : 슈퍼타이] ○ 연성, 경성합성세제 포함 ○ 액체세제는 모두 포함 × 천연가루비누 제외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설 비		표 준 조업시간	표 준 조업일수
			설 비 명	단 위		
523050	치 약 (齒藥)	M/T	Tube Line	대	24	30
523060 ★	화장품 (化粧品)	kg	충전기	대	10	25
523080	비 누 (Soap)	M/T	압축기	대	10	25
529010	공업용 접착제 (工業用 接着劑)	M/T	반응로	기	24	25
529030	카아본 블랙 (Carbon black)	M/T	반응로	기	24	25

소분류 353 석유정제업

530000	정유(精油)	kl	원유 증유장치		24	30
--------	--------	----	---------	--	----	----

표준생산능력산식	개념 및 포괄범위
C = 시간당기계능력 (kg) ×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반죽상태의 치약포함 × 가루치약(치분)은 제외
C = 시간당기계능력 (kg) × 10 ×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수(로션, 스킨등)화장크림, 기타 화장품등의 기초화장품 포함 ○ 분말, 액체, 젤리등의 샴프류와 헤어린스, 헤어토닉등 모든 제품 포함.
C = 시간당기계능력(%) × 10 ×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탁비누, 화장비누 포함 ○ 천연가루비누 포함 [예) 동산유지 : 윈더풀] × 공업용비누(알루미늄, 칼슘, 망간등의 비누) 제외
C = 1일생산능력(%) ×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성접착제조사 × 포르말린, 수지류와 동식물계(아교, 제라틴등) 접착제는 제외
C = 1일생산능력(%) ×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흑색안료인 고무용, 안료용의 하드카본, 소프트카본 등을 말함 ○ 타이어, 인쇄잉크, 도료, 건전지등의 원료 × 카본로드(탄소봉), 화이트카본 제외
C = 1일원유처리능력 (kl) ×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유 증유장치의 정제능력(생산능력)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설 비		표 준 조업시간	표 준 조업일수
			설 비 명	단 위		

소분류 354 기타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

540010	연 탄 (煉炭)	M/T	윤전기	대	8	25
540020	윤활유 (潤滑油)	kg	충전기	대	8	25

소분류 355 고무제품 제조업

551010	자동차용타이어 (自動車用 tire)	천본	① 압출기 (Extruder)	대	24	30
			② 가류기	대	24	30
551030	자전거용타이어 (自轉車用 tire)	천본	가류기	대	24	25

표준생산능력산식	개 념 및 포 괄 범 위
	<p>※ 실 원유정제량(원유 증유를 위한 투입량) = 생산량</p> <p>○ 원유처리생산량은 동태포괄 품목들의 단순한 물량합산이 아니므로 원유제품은 참고자료로 활용됨</p>

$C = \text{시간당기계능력 (M)} \times 8 \times 25$	× 조개탄(마세크탄) 제외
$C = \text{시간당기계능력 (kg)} \times 8 \times 25$	<p>○ 윤활기유에 적당한 광물유를 첨가 배합한 윤활제</p> <p>× 윤활기유는 생산량에서 제외</p>

$\textcircled{1} C = \frac{\text{시간당기계능력(kg)} \times 24 \times 30}{\text{분당무게 (12.3 kg)}} \times 1/1,000$ $\textcircled{2} C = 1 \text{ 회가류능력 (분)} \times \frac{24}{\text{가류시간}} \times 30 \times 1/1,000$	<p>○ 승용차, 버스, 트럭등 소형 및 대형차량과 특수차량의 타이어 포함</p> <p>× 모터사이클용 타이어 제외</p>
$C = 1 \text{ 회가류능력 (분)} \times \frac{24}{\text{가류시간}} \times 25 \times 1/1,000$	○ 어린이용 - 삼발자전거, 리어카용, 모터사이클용 타이어 제외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설 비		표 준 조업시간	표 준 조업일수
			설 비 명	단 위		
551040	자동차용튜브 (自動車用 tube)	천본	① 가류기 ② 압출기 ③ 경련기	대	24	25
559020	운동화 (運動靴)	천족	① 가류기 ② 재단능력 ③ 재화라인능력	대	10	25

소분류 356 기타 플라스틱 제품

560010	플라스틱필름	M/T	Calender 기	대	24	30
560040	플라스틱봉및관 (Plastic 棒 및 管)	M/T	① 압출기 ② 사출기	대	24	30
560050	스티로폴	M/T	성형기(발포기)	대	24	28

표준생산능력산식	개념 및 포괄범위
$C = 1 \text{ 회가류능력(분)} \times \frac{24}{1 \text{ 회가류시간}} \times 25 \times 1/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용 타이어에 준함
<p>① $C = 1 \text{ 회가류능력(족)} \times \frac{10}{\text{가류시간}} \times 25 \times 1/1,000$</p> <p>② $C = 1 \text{ 일재단능력(족)} \times 25 \times 1/1,0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운동화(나이키, 프로스펙스등) 포함 (가류기에 의해 찍는 것) × 신사화, 등산화 랜드로바등 가죽제 신발 제외(가죽을 봉제한 것)

$C = 1 \text{ 일생산능력 (kg)} \times 30 \times 1/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수지를 투입하여 투명 또는 반투명의 천과 같이 얇은 만든 비닐제품 ○ 농업용(비닐하우스), 산업용(시트) 필름포함
$C = 1 \text{ 일생산능력 (kg)} \times 28 \times 1/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용도의 플라스틱봉 및 관 ○ 배수, 배전 이음등의 관 및 봉과 파일 포함
$C = 1 \text{ 일생산능력 (kg)} \times 28 \times 1/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용(평판)과 각종물품 충격방지용 스티로폴 조사 ○ 원재료 : 발포폴리스티렌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설 비		표 준 조업시간	표 준 조업일수
			설 비 명	단 위		
560190	플라스틱레저 및 장판 (Plastic Leather 및 壯版)	M/T	Calender 기	대	24	30

소분류 36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620020	판유리 (板琉璃)	상자 (C/S)	인상기 용융로	대	24	30
620050	브라운관용유리 (Braun 管用 琉璃)	천개	성형기	대	24	30
620090	유리섬유 (琉璃纖維)	M/T	① 용해로	기	24	30
			② 건조기	대	22	28
620190	유리병 (琉璃瓶)	M/T	용해로	기	24	30

표준생산능력산식	개 념 및 포 괄 범 위
$C = 1 \text{ 일생산능력 (kg)} \times 30 \times 1/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이나 종이등에 주로 염화비닐수지를 바른 레저와 플라스틱장판, 벽지 포함

$C = 1 \text{ 일생산능력 (상자)} \times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상유리로 이형관유리, 보통판유리, 무늬 판유리 포함 ※ 두께 2mm 기준으로 환산조사 $1C / S = 9.29 m^2$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종 류</th> <th>환산율</th> <th>종 류</th> <th>환산율</th> </tr> </thead> <tbody> <tr> <td>보통판 2mm</td> <td>1</td> <td>형판 2mm</td> <td>1.0</td> </tr> <tr> <td>" 3mm</td> <td>1.5</td> <td>" 4mm</td> <td>2.0</td> </tr> <tr> <td>" 5mm</td> <td>2.5</td> <td>" 5mm</td> <td>2.5</td> </tr> <tr> <td>" 6mm</td> <td>3.0</td> <td>강 입 관</td> <td>3.0</td> </tr> </tbody> </table>		종 류	환산율	종 류	환산율	보통판 2mm	1	형판 2mm	1.0	" 3mm	1.5	" 4mm	2.0	" 5mm	2.5	" 5mm	2.5	" 6mm	3.0	강 입 관
종 류	환산율	종 류	환산율																	
보통판 2mm	1	형판 2mm	1.0																	
" 3mm	1.5	" 4mm	2.0																	
" 5mm	2.5	" 5mm	2.5																	
" 6mm	3.0	강 입 관	3.0																	
$C = 1 \text{ 일생산능력 (천개)} \times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수상기(흑백, 칼라), CRT 전자오락 기구등 브라운관유리 포함 																			
① $C = 1 \text{ 일용해능력 (\%)} \times 30$ ② $C = 1 \text{ 일건조능력 (\%)} \times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와 섬유의 합성제로서 내열성, 단열성, 내약품성, 절연성이 강함. 																			
$C = 1 \text{ 일용해능력 (\%)} \times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식품 및 음료수병, 술병, 약병, 화장품병, 화공약품병등의 유리용구 포함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설 비		표 준	표 준
			설 비 명	단 위	조업시간	조업일수

소분류 369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

691020	타 일 (Tile)	천m ²	(Kiln)	대	24	25
692010	시멘트 (Cement)	천%	시멘트밀 (Mill)	대	24	30
692020	시멘트 크링커 (Cement clinker)	천%	(Kiln)	대	24	30
693010	석면스레트 (石綿 Slate)	천m ²	Vat, Pulper	대	24	25

표준생산능력산식	개념 및 포괄범위
<p>$C = 1 \text{ 일소성능력 (m}^3) \times \text{월간회전수} \times 1/1,000$</p> <p>※ 1 회소성능력=대차당적재량 × 1 회소성에 필요한 대차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장타일, 내장타일, 바닥타일, 모자이크타일 모두 포함 ○ 판석, 인조판석, 플라스틱, 혼합제품 제외
<p>$C = 1 \text{ 일생산능력 (\%) } \times 30 \times 1/1,0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멘트 크링커에 적당량의 석고를 가해 분쇄하여 제조 ○ 포오틀랜드시멘트, 벌크, 백색, 고로 기타 특수시멘트 모두 포함
<p>$C = K_i \ln \text{의 시산소출량 (\%)} \times 24 \times 30 \times 1/1,0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회석과 점토석을 분쇄 건조시켜 혼합 후 다시 응고시킨 덩어리 × 시멘트 제외 ※ 크링커 생산능력 및 생산량과 완제품 상태의 시멘트와 혼동하지 말것
<p>$C = 1 \text{ 일공칭능력 (매수)} \times 25 \times \text{환산률 (m}^3) \times 1/1,000$</p> <p>※ Wet M/C</p> <p>◎ 스투트 환산기준(두께는 환산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연재 내열성이 우수하고 내수성이 강한 석면판 ○ 골형, 합판형 스투트 포함 ※ 물량조사시 환산기준을 적용하여 산출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설 비		표 준 조업시간	표 준 조업일수
			설 비 명	단 위		
693030	레미콘 (Ready-mixed Concrete)	천m ³	혼합기	대	10	25
693060	흙 관 (Hume管)	본	원심대(회전대)	대	16	25
693900	콘크리트전주 및 파일 (Concrete電柱 및 Pile)	본	회전대 Mould	대	16	25

표준생산능력산식				개념 및 포괄범위			
구분	가로(mm)	세로(mm)	환산(㎡)	구분	가로(mm)	세로(mm)	환산(㎡)
○소골스레트				○기와스레트	570	1,050	0.5985
6자	720	1,820	1.3104				
7자	720	2,120	1.5264				
8자	720	2,420	1.7424				
○대골스레트				○평스레트			
6자	960	1,820	1.7472		910	1,820	1.6562
7자	960	2,120	2.0352		910	1,820	1.6562
8자	960	2,420	2.3232		1,200	2,420	2.904
C = 1일생산능력(㎡) × 25 × 1/1,000				○ 시멘트 물, 골재의 혼합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 반죽			
C = 시간당회전대능력(본) × 16 × 25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만 포함 ※ 1분을 2.5m 기준으로 조사 × 콘크리트관, 석면스레트, 도관, 토관등은 제외			
C = 시간당 회전대능력(본) × 16 × 25				○ 시멘트와 골재를 섞어 철선과 철근을 내장하여 만든 전주와 과일 포함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설 비		표 준 조업시간	표 준 조업일수
			설 비 명	단 위		
694010	내화벽돌 (耐火)	M/T	(Kiln)	대	24	25

소분류 371 철강산업

711010	선 철 (鉄鐵)	M/T	① 고 로 ② 전기제선로 ③ 합금철용	기	24	30
--------	-------------	-----	------------------------------------	---	----	----

표준생산능력산식	개념 및 포괄범위
<p>$C = 1 \text{ 일소성능력} (\%) \times \text{월간회전수}$</p> <p>※ 330 매 =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업, 보일러용, 용광로용, 내화물 ○ 규석질, 점토질, 고알루미나질의 내화벽돌 포함

<p>1) 코로인 경우</p> <p>$C = \text{내용적} (m) \times \text{출선비} \times 30$</p> <p>주: 내용적은 1일 유효 내용적을 말함</p> <p>2) 전기 채선로인 경우</p> <p>$C = \text{변압기 정격용량} (KVA) \times \text{역률} \times \text{부하율} \times 24 \times 30 \div \text{전력원단위} (Kwh/t)$</p> <p>주, 전력원단위: 사업체의 과거 실적에 따라 선출</p> <p>3) 합금철용 아크식 전기로인 경우</p> <p>$C = \text{변압기} \times \text{부하율} \times 24 \times 30 \div \text{전력원 단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강의 원료로서 용광로에서 철의 성분만을 뽑아낸 탄소함유량이 1.7% 이상인 철 ○ 제강용 선철, 주물용 선철조사
--	--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설 비		표 준	표 준
			설 비 명	단 위	조업시간	조업일수
711020	합 금 철 (合金鐵)	M/T	전기로	기	22	28
711090	조 강 (粗鋼)	M/T	① 평 로	기	24	30
			② 전 로	기	24	30
			③ 아크식 전기제강로	기	24	30

표준생산능력산식	개념 및 포괄범위
<p>$C = \text{변압기 정격용량(KVA)} \times \text{역률} \times \text{부하율} \times 22 \times 28 \div \text{전력원단위 (Kwh/t)}$</p> <p>① 전력원단위 : 사업체의 과거 실적에 따라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에 망간, 크롬, 규소 등의 원소를 20 ~ 80% 정도 함유시킨 철의 합금 ○ 경철, 망간철, 규소철, 크롬철, 몰리브데넘철, 니켈철, 규소망간철, 티타늄철, 텅스텐철, 기타 합금철 등을 포함
<p>1) 평로의 경우</p> <p>① 용선사용시 $C = \text{강용중량(%) } \times 4 \text{ 회} \times 30$</p> <p>② 냉선사용시 $C = \text{강용중량(%) } \times 4 \text{ 회} \times 30$</p> <p>2) 전로의 경우</p> <p>① 2기인 경우 $C = \text{양괴 (t / 회) } \times 35 \text{ 회} \times 30 \times 0.5$</p> <p>② 3기인 경우 $C = \text{양괴 (t / 회) } \times 35 \text{ 회} \times 30 \times \frac{2}{3}$</p> <p>3) 아크식 전기제강로의 경우 $C = 1 \text{ 회전당공칭능력} \times 1 \text{ 일회전수} \times 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강로(製鋼爐)에서 제조된 그대로의 가공되지 아니한 강철 ○ 한국표준산업분류중 세세분류 37113 (제강업) 전체포괄 (압연용강괴, 단조용강괴, 주강, 주입강, 슬라브, 블룸, 빌렛, 스위트바 등)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설 비		표 준 조업시간	표 준 조업일수
			설 비 명	단 위		
			④ 유도식 전기로	기	24	30
712110	강 관 (鋼管)	M/T	조관기	대	10	25
712190	압 연 (壓延)	M/T	① 압연기 ② 신선기 ③ 조관기	대 대 대	20 20 20	25 25 25
713010	주철관 (鑄鐵管)	M/T	① 용선로 ② 전기로	기 기	10 10	25 25

표준생산능력산식	개념 및 포괄범위
4) 유도식 전기로의 경우 $C = \text{발전기용량 (KVA)} \times 0.0083 \times 8,760 \div 12$	
$C = \text{조관기 Speed (m/분)} \times 60 \times 25 \times \text{조관기당 평균가동률} \times \text{기준규격당무게 (\% / 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표준산업분류 37123 (강관제조업) 전체 포괄 (무계목강관, 전기용접강관, 단접강관, 아크용접강관, 리벳트관, 관부착물, 고탄소강관, 합금강관 등)
$C = \text{시간당 공칭능력 (\%)} \times 20 \times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전하는 압연기의 롤(roll)속에 금속을 넣어 막대 또는 판자 모양으로 만든제품 ○ 한국표준산업분류 37121 (열간압연업) 37122 (냉간압연업) 전체 및 37124 중선재 포함 (봉강, 형강, 철근, 중후판, 열연박판, 열연대강, 중궤조, 냉연박판, 스텐레스강판, 냉연전기강판, 냉연대강, 선재)
$C = \text{시간당능력 (\%)} \times 10 \times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쇠로 만든 관·수도·가스 등의 도관으로 씌움. ○ 한국표준산업분류 37131 (주철강관제조업) 전체포괄 (직관, 회주철관, 흑연주철관, 이형관)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설 비		표 준 조업시간	표 준 조업일수
			설 비 명	단 위		
719020	석도강판 (錫鍍鋼板)	M/T	① 전기도금법		20	25
			② 용융도금법		24	30
719030	아연도강판 (亞鉛鍍鋼板)	M/T	① 전기도금법		20	25
			② 용융도금법		24	30

소분류 372 비철금속산업

721010	전기동 (電氣銅)	M/T	전해조	기	24	30
--------	--------------	-----	-----	---	----	----

표준생산능력산식	개념 및 포괄범위
1) $C = 1 \text{ 일생산능력} (\%) \times 25$ 2) $C = 1 \text{ 일생산능력} (\%) \times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판에 주석을 도금한 철판으로 일명 양철 ○ 전기도금선강판, 열지도금석도강판 조사
1) $C = 1 \text{ 일생산능력} (\%) \times 25$ 2) $C = 1 \text{ 일생산능력} (\%) \times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판에 아연을 도금한 것으로 일명합석 ※ 전기도금, 열지도금, 착색도금

<p>1) 전기분해에 의하는 경우</p> $C = \text{전해당량} \times \text{전류효율} \times \text{전류} \times 24 \times 30 \times \text{전해조수} \times \text{조업률} \times \text{제품률}$ <p>주) • 전류효율 = $\frac{\text{실석출량}}{\text{이론석출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류 = 실통전전류 • 조업률 : $\frac{\text{통전률} \times \text{전해조수}}{\text{조업률}}$ $= \frac{\text{실통전시간}}{\text{역시간}} \times \frac{\text{연가동가능전해조수}}{\text{연전해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로 정련의 구리빛의 동괴 ○ 동지금 1종~4종 포함 × 동쇼트, 해갑봉(동찌꺼기) 등은 제외
---	---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설 비		표 준 조업시간	표 준 조업일수
			설 비 명	단 위		
721020	알루미늄괴 (Al 塊)	M/T	전 해 조	기	24	30
721030	연 괴 (鉛塊)	M/T	전 해 조	기	24	30
721040	아연괴 (亞鉛塊)	M/T	전 해 조	기	24	30
723060	알루미늄판 (Al 板)	M/T	압 연 기	대	10	25
723070	알루미늄샷시바 (Al sash bar)	M/T	① 용해로 ② 압출기	대	24	25
723190	동압연품 (銅壓延品)	M/T	압연기	대	10	25

표준생산능력산식	개념 및 포괄범위
<p>• 제품을</p> $= \frac{\text{실전작량} - \text{조반량}}{\text{실전작량}} \times$ <p>주조율</p> <p>2) 전기분해이외의 경우</p> $C = \text{광석장입량 (t / 로당)} \times \text{장}$ $\text{입물품위} \times 24 \times 30 \times \text{로수} \times$ $\text{조업률} \times \text{제품률}$	
C = 전기동과 산식동일	○ 전련된 은백색의 유연한 피
C = 전기동과 산식동일	○ 납(Pb) 1종-6종 모두 포함
C = 전기동과 산식동일	○ 아연(Zn) 1~6종 모두 포함
C = 시간당 공칭능력 (%) × 10 × 25	○ 두께에 관계없이 알루미늄판 제품 모두 포함
C = 1일생산능력 (%) × 25	<p>○ 알루미늄피를 압출하여 만든 기다란 막대</p> <p>○ 원형, 이형 모두 포함</p> <p>× 알루미늄제 문틀, 창틀은 건축용샷시이므로 제외</p>
C = 시간당 공칭능력 (%) × 10 × 25	○ 한국표준산업분류 37231 (비철금속 신동품 제조업) 중 동가공제품에 국한함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설 비		표 준	표 준
			설 비 명	단 위	조업시간	조업일수

소분류 381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813020	건축용샷시 (建築用 sash)	M/T				
813030	산업용보일러 (産業用 boiler)	T/H				

표준생산능력산식	개념 및 포괄범위
	(동봉 및 형강, 나동선, 동관 및 띠, 동관 및 증공봉)

월간 기계공업의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립된 철제나 알루미늄제의 문틀이나 창틀 × 알루미늄 샷시바 제외
<p>월간 기계공업의 능력</p> <p>※ 기계공업의 능력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말 현재의 보유설비에 표준적인 생산 제조조건(원재료, 동력, 자금, 노동력등)이 추어진 상태를 고려하여 표준적인 월간 조업일수 및 조업시간으로 제품을 생산한 경우의 능력을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욕탕이나 산업용에 쓰이는 보일러 (대형온수보일러, 증기발생보일러) × 가정용 연탄보일러(온수보일러) 제외 <p>주) 1. 보유설비: 진부화, 대체하여야할 설비 제외</p> <p>2. 하나의 설비로 2개이상의 제품생산시 과거의 생산실적을 감안한 비율로 능력분리 조사</p> <p>3. 설비명란에 특기되어 있는 품목 특기사항을 착안하여 생산능력을 산정하며 기타 제품에 있어서도 그 제품의 전생산공정을 종합적으로 판단</p>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설 비		표 준 조업시간	표 준 조업일수
			설 비 명	단 위		
813090	컨테이너 (Container)	대	① 유압프레스기 ② 아아크용접설비			
814030	병마개 (瓶)	천개	프레스기	대	10	25
819010	금속캔 (金屬 Can)	천개	제동기 (Body Maker)	대	8	25
819080	볼트 및 너트 (Bolt 및 nut)	M/T	성형기	대	16	28
819110	와이어로프 (Wire rope)	M/T	연선기	대	22	25
819120	쇠못	M/T	제정기	대	20	25

표준생산능력산식	개념 및 포괄범위
	하여 생산능력을 산정하여야 함.
최종조립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수송용 운반용기 ○ 유사컨테이너 포함 ※ 1대를 20feet 기준으로 조사
C = 1일생산능력(천개) ×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레스로 성형한 금속제 병마개로 각종 음료수병, 술병 등의 병마개 × 주사약병 병마개 제외
C = 시간당기계능력(천개) × 8 ×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금속제 식료품 및 음료품 통 ○ 농산, 축산, 수산, 분유, 벡타통, 잠관포함
C = 1일생산능력(kg) × 28 × 1/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에 나선을 낸 슛나사(볼트)와 볼트와 결합되어 조이도록 된 압나사(너트) × 스크류, 와셔, 리테이너등은 제외
C = 시간당연선능력(%) × 22 ×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강선을 여러개 꼬아 가닥을 만들고 심앙을 중심으로 여러가닥을 꼬아 만든 쇠줄(일명강색) × 심을 넣지 않고 단순히 꼬은 것은 제외
C = 분당기계능력 × 60 × 25 × 25 × 못의 무게(kg) × 1/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재를 제정기에 걸어서 만든못 × 주물못 제외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설 비		표 준	표 준
			설 비 명	단 위	조업시간	조업일수
819160	용접봉 (鎔接棒)	M/T	도 장 기	대	22	28

소분류 382 기계제조업

822020	경 운 기 (耕 耘 機)	대				
822030	농업용 트랙터 (農 業 用 tractor)	대	콘베이어라인			
823010	NC선반 (수치제어旋盤)	대				
823020	범용선반 (汎用旋盤)	대				
824030	크레인 (Crane)	M/T	인발중량을 기준			

표준생산능력산식	개 념 및 포 괄 범 위
$C = \text{시간당피복능력} (\%) \times 22 \times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철선에 피복을 입혀 용접효과를 갖게 하는 철선 ○ 피복용접, 자동용접봉, 산소용접봉 포함

월간기계공업의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작등 농사일에 사용되는 기계 ○ 순수경운기만 조사 × 바인더, 이앙기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작등의 농사일에 사용되는 기계 × 임업, 건설업용 트랙터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절삭기계로 수치제어장치가 부착되어 공작물을 자동 대량으로 가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선반 ○ CNC선반포함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선반, 자동선반, 터렛선반 등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건축용크레인(자주식, 탑형크레인)과 물품취급용크레인(부두용, 천정용, 부상형 등)포함조사 ※ 인발중량으로 환산하여 조사됨에 유의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설 비		표 준 조업시간	표 준 조업일수
			설 비 명	단 위		
824060	굴삭기 (掘削機) (포크레인)	대				
824110	직 기 (織機)	대				
825011	CPU	대				
825014	CRT모니터 (화상장치)	대				
825030	전자계산기 (電子計算機)	대				
826040	윈도우형에어콘 (Window 형 aircon.)	대				
826060	패케이지형에어콘 (Package 형 aircon.)	대				
826090	가스레인지 (Gasrange)	대	Fire Tester 기			

표준생산능력산식	개념 및 포괄범위
월간기계공업의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을 이용 땅을 긁거나 파서 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건설중장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직기, 견직기, 모직기, 기타직기 모두 포함 × 편직기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의 연산, 환산, 분류 추출하는 중앙자료 처리장치(CPU) ○ 교육형 PC 포함. ○ 개인용, 소형, 중형, 사무실용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를 화면으로 나타내어 자료의 입력이나 출력을 하여주는 장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용, 탁상용, 카드형계산기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문이나 벽걸이형의 에어컨(좁은공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면적의 냉방을 위한 대형의 에어컨(정수탑 설치) × 차량용 및 산업용에어콘은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를 이용 식당이나 가정에서 취사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2구식, 3구식 레인지)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설 비		표 준 조업시간	표 준 조업일수
			설 비 명	단 위		
829010	산업용펌프 (産業用 Pump)	대				
829030	공기압축기 (空氣壓縮機) (Compressor)	대				
829090	엘리베이터 (Eleovtor)	대				
829110	지게차	대	콘베이어라인			
829150	베어링 (Bearing)	kg	연마능력			

표준생산능력산식	개념 및 포괄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외취사용 포함 × 주물제품 제외 (식당용)
월간기계공업의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용, 주유소용, 공기펌프, 진공펌프포함 × 수동식펌프, 가정용 (보일러용, 냉장고용)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의 압축력을 이용하기 위해 공기 또는 그밖의 기체를 압축하는 기계 ○ 공장, 광산, 건설용 등의 산업용 압축기에 한함. × 냉동기, 냉장고용의 냉매압축기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빌딩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수직으로 운반하는 기계 ○ 승용형, 화물전용형 엘리베이터 조사 × 에스컬레이터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의 하역·적재를 위해 제작된 물품 취급장비 × 수동 및 반자동지게차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전축을 고정하고 회전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계요소 ○ 볼베어링, 로울러베어링, 트리스트베어링 포함 × 메탈베어링, 유니버샬조인트 제외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설 비		표 준	표 준
			설 비 명	단 위	조업시간	조업일수

소분류 383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831010	전동기 (電動機)	HP				
831030	변압기 (變壓器)	KVA				
831040	배전반 (配電盤)	백만원				
831050	전력회로차단기 (電力回路遮斷器)	대	전단기			

표준생산능력산식	개념 및 포괄범위
월간기계공업의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의 전기적에너지를 받아 기계적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계 ○ 산업용만 조사(직류전동기, 교류전동기) × 기기용의 소형모터(1kw이하)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압을 변화시키는 기계 ○ 송배전용, 발전용변압기등 강전용변압기 조사 × 약전 초인종등과 같은 기계용변압기의 소형 및 수리제품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기, 변압기, 전기배선기구등의 운전을 제어하고 발생전력을 이끄는데 필요한 기구 ○ 주전력용 고압·저압배전반, 제어반, 분전용 분전반등을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전류와 이상전류에 대하여 각각 통전 투입 차단하는 개폐장치 ○ 각종 차단기조사 × 퓨즈, 스위치는 제외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설 비		표 준	표 준
			설 비 명	단 위	조업시간	조업일수
832040	VTR (영상녹화재생기)	대				
832070	라디오수신기 (Radio 受信機)	대				
832090	녹음기 (錄音器)	대				

표준생산능력산식	개념 및 포괄범위
<p>최종 조립능력</p> <p>※ 최종조립능력 산정기준</p> <p>1) 완제품 최종조립능력으로 산출하여야 함</p> <p>2) 조립라인 (Line) 당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p> <p>3) 취급품목이 다양하고 경제성 및 시장성 여하에 따라 자체의 생산계획이 매년 가변적이기 때문에 품목간의 생산능력이 적절히 재조정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녹화겸용 및 단순재생기기 포함
<p>최종 조립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디오와 시계결합체는 포함하나 기타 소리장비와 결합된 라디오는 제외 ○ 일반라디오, 시계라디오, 카라디오 포함 × 전축, 녹음기등에 부착된 라디오 제외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디오부착 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일반 녹음기와 단순 재생기능만 갖춘 단순재생기 포함 ○ Car-stero 포함 × 전축용 테크는 제외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설 비		표 준 조업시간	표 준 조업일수
			설 비 명	단 위		
832110	소형전축 (小型電蓄)	대				
832190	확성기 (擴聲器)	천 개				
832220	전화기 (電話機)	대				
832250	전화교환기 (電話交換機)	회 선				
832370	녹음테이프 (錄音 tape)	km	조립기능력 (cassette)			
832380	비디오테이프 (Vedio tape)	천 개				

표준생산능력산식	개념 및 포괄범위
최종 조립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명 뮤직센타 ○ 소형전축만 조사 × 각 부분품은 제외
월간 생산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명 스피커, 스피커 시스템의 부품 ○ TV 및 음향기기등에 부착되는 스피커와 옥내외에 장치하는 스피커 포함 × 메가폰, 인터폰형, 전화기구용 등은 제외
최종 조립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식, 공전식, 자석식전화기 및 무선전화기(코드레스전화기)포함 × 인터폰, 무전기, 카폰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기의 송수신기능을 연결가능토록 한 통신기기 ○ 스텝바이스텝방식, 크로스바방식, 전자교환방식, 자동식구내교환기, 기계식, 전자식 포함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스틱 테이프표면에 자성철분을 입힌 것(오디오형) ○ 카세트형, 릴형 모두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을 재생 또는 녹화할 수 있는 자기테이프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설 비		표 준 조업시간	표 준 조업일수
			설 비 명	단 위		
832510	TV수상기 (TV受像機)	대				
832520	TV튜너 (TV tuner)	천개				
833010	전기냉장고 (電氣冷藏庫)	대				
833020	선풍기 (扇風機)	대				
833030	전자세탁기 (電子洗濯機)	대				
833060	전자레인지 (電子 range)	대				
834050	트랜지스터 (TR)	천개	실카공장치			
834070	집적회로 (集積回路)	천개				
834170	인쇄회로기판 (印刷回路基板)	개	성 형 기			

표준생산능력산식	개념 및 포괄범위
최종 조립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흑백, 칼라, 콤비네이션 TV 모두 포함 × TV게임, 공업용 TV, 학술조사용 등 특수 분야 유선 TV는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수상기의 채널 선택장치 ○ 천연색, 흑백 TV 튜너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 상업용 냉장고 포함 (소형, 중형, 대형) × 산업용냉장고, 아이스박스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선풍기만 조사 × 산업용 (자동차, 여객차등에 설치)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 세탁기만 조사 × 탈수기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 2구, 3구 전자레인지 조사
월간생산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S 트랜지스터 (1W이하) ○ P.W 트랜지스터 (1W이상)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IC, 고밀도 IC, 초고밀도 IC 등 모두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에 회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만든판 일명 P.C.B판 ○ 가로, 세로 각각 1m의 표준규격으로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설 비		표 준	표 준
			설 비 명	단 위	조업시간	조업일수
834310	브라운관 (Braun管)	개				
834320	축전기 (蓄電器)	천개				
839010	통신선및케이블 (通信線 및 Cable)	M/T				
839020	전력선및케이블 (電力線 및 Cable)	M/T				
839070	축전지 (蓄電池)	개				
839080	건전지 (乾電池)	천개				

표준생산능력산식	개념 및 포괄범위
	<p>한 원판을 환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널 인쇄회로기판, 에폭시 인쇄회로기판 포함
월간생산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수상기의 영상신호를 화면으로 변화시키는 음극선관 ○ 흑백 TV, 칼라 TV수상기용, 산업용 브라운관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축전기, 가변축전기 구분없이 전자기 기용만 조사 ○ 일명 콘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전열전화 전선선 및 케이블선 × 광섬유 케이블 제외
월간 생산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전력용선 및 케이블 (권선, 절연전선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류의 충전, 재생기능을 갖춘 전지, 건전지와 구분되는 2차전지 ○ 납산축전지와 알칼리축전지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전 재생할 수 없는 1차전지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설 비		표 준 조업시간	표 준 조업일수
			설 비 명	단 위		

소분류 384 운수장비제조업

841010	선박용내연기관 (船舶用內燃機關)	IP				
841100	철강선박 (鐵鋼船舶)	G/T	건조능력			
843110	특장차 (特裝車)	대				
843120	자동차용내연기관 (自動車用內燃機關)	대				
843250	자동차륜 (自動車輪)	개				

표준생산능력산식	개념 및 포괄범위
월간 기계공업의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린더 안에서 연료를 폭발 연소시켜 피스톤을 움직이게 하는 선박용원동기 ○ 선박용디젤기관 및 소옥기관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유조선, 철강화물선, 특수화물선, 철강어선 포함 × 합성수지선, 목선 제외 ※ 생산량은 선박건조 진척율에 진척량 환산 ※ G/T(Gross Tonnage) : 배의 용적을 표시하는 단위 (선목×길이×높이 = f³) 1 G/T = 100f³
월간 조립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목적용 위하여 만들어진 차량 ○ 소방차, 구난차, 콘크리트믹서차, 위생차, 병원차, 유조차, 냉동 및 냉장차 포함 × 무동력트럭 트레일러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차, 버스, 트럭, 특장차등의 내연기관 포함
월간 기계공업의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자동차의 료(바퀴) ○ 자동차용만 조사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설 비		표 준 조업시간	표 준 조업일수
			설 비 명	단 위		
843260	자동차 차축 (自動車 車軸)	개				
843310	승용차 (乘用車)	대				
843320	버 스 (Bus)	대				
843330	트 럭 (Truck)	대				
844030	모터싸이클 (Motor-Cycle)	대				

소분류 385 과학계측기기

852060	전자복사기 (電子複寫機)	대				
853010	손목시계 (時計)	개				

표준생산능력산식	개념 및 포괄범위
월간 기계공업의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륜회전이 중심이 되는 축 ○ 후부차축, 앞부차축, 전달차축을 각각으로 조사
월간 조립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 중형, 대형승용차 포함 ○ 지프(Jeep)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버스, 일반버스, 고속형버스 포함 ○ 봉고차(9인승이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 중형, 대형트럭 포함 ○ 6인승이하 봉고트럭(화물적재용), 농촌형 다목적트럭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륜오토바이, 삼륜오토바이 포함 × 모터스쿠터는 제외

월간 조립능력	× 등사기 제외
최종 조립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식손목시계, 전자손목시계(디지털 아날로그) 포함 ○ 경기 기록용(Stop Watch), 어린이용시계(플라스틱, 만화) 제외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설 비		표 준 조업시간	표 준 조업일수
			설 비 명	단 위		
853020	벽시계 (壁時計)	개				
854030	적산전력계 (積算電力計)	대				

소분류 390 기타 제조업

902010	피아노 (Piano)	대				
903020	대형공	개	튜브 성형능력			
903040	야구장갑 (野球掌匣)	개	채 단능력			
909010	볼 펜 (Ball point pen)	천개	잉크주입기(임피기)	대	10	25
909100	일회용라이터 (一回用 lighter)	천개	사출기	대	10	25

표준생산능력산식	개념 및 포괄범위
최종 조립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식, 전자식 벽시계 포함 × 탁상시계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소비량 측정계기, 일명 전기계량기 ○ 가정용, 산업용 전기계량기 포함

월간 생산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피아노(UP), 대형피아노(GP), 전자피아노 포함 × 오르겐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구, 축구, 배구, 송구, 수구, 미식축구, 럭비공 등 포함 × 소형공 및 고무공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용, 어린이용 야구장갑 포함 × 스키용, 검도용, 장신용장갑 제외
$C = 1 \text{일 주입능력 (천개)} \times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제, 플라스틱제 볼펜 포함 × 싸인펜, 프레스펜 등 볼심이 없는 제품 제외
$C = \text{시간당 기계능력 (개)} \times 10 \times 25$ $\times 1/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스틱제품으로 일회용라이타만 조사 × 금속제 및 반영구용 라이타 제외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설 비		표 준	표 준
			설 비 명	단 위	조업시간	조업일수
909110	담배용필터	M/T	권상기	대	10	28
909120	지 퍼 (Zipper)	km	코일성형기 (Teeth Injection)	대	10	25

표준생산능력산식	개념 및 포괄범위
$C = \text{분당기계능력 (kg)} \times 60 \times 10 \times 28 \times 1/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가 아세테이트섬유인 담배용 필터 조사
$C = \text{시간당기계능력 (m)} \times 10 \times 25 \times 1/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명 작크 ○ 금속제, 플라스틱제등 모든 지퍼 포함

**부록 2. 생산능력·가동률 품목별가중치 및 품목별 신규사업체
선정기준**

부록 2 . 생산능력·가동률 품목별 가중치 및 품목별 신규사업체 선정기준

※ 지수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가 월평균 생산량 기준치이상을 생산하는 사업체는 신규사업체로 선정함.

업종(품목)번 호	업종(품목)명	가 중 치		신규사업체선정기준	
		생산및가동률	생산능력	조사단위	생 산 량
000	제조업	10,000.0	10,000.0		
310	음식료품 및 담배	1,307.7	1,357.7		
311	식료품	802.2	821.6		
311 111090	소시지	36.2	43.0	%	214
311 112020	분 유	32.7	34.6	//	183
311 112040	우 유	72.8	73.3	kg	2,813
311 112050	유산균 음료	53.3	62.4	//	1,456
311 115010	대두유	48.8	50.9	//	589
311 116010	밀가루	54.5	49.5	%	6,931
311 117010	빵	109.3	113.0	//	881
311 117060	라면류	140.0	133.6	//	1,473
311 118010	정 당	26.2	27.6	//	3,431
311 121020	글루타민산 소다	57.7	50.3	//	286
312 122040	맥 아	32.9	31.9	//	325
312 122100	커피	47.2	66.7	kg	42,583
312 123010	배합사료	90.6	84.8	%	20,238
313	음료품	303.9	342.0		
313 131010	주 정	19.5	20.0	kg	700

업종(품목) 번호	업종(품목)명	가 중 치		신규사업체선정기준	
		생산및가동률	생산능력	조사단위	생 산 량
313 131020	소 주	67.8	76.2	㎏	2,454
313 131030	위스키	26.9	50.3	〃	19
313 133050	맥 주	64.3	61.2	〃	3,303
313 134070	두 유	12.6	15.0	〃	334
313 134090	청량음료	112.8	119.3	〃	3,362
314	담 배	201.6	194.1		
314 140020	필터담배	201.6	194.1	100만본	315
320	섬유 및 가죽	1,305.2	1,194.5		
321	섬 유	1,192.0	1,079.1		
321 211020	면 사	148.1	115.7	추	141,989
321 211040	방모사	31.9	29.3	〃	4,090
321 211050	소모사	21.3	18.3	〃	26,593
321 212010	면직물	122.8	99.2	대	1,128
321 212040	견직물	37.6	39.6	〃	108
321 212050	합섬직물	393.4	341.9	〃	945
321 212090	모직물	81.5	68.9	〃	83
321 215010	스타킹	47.2	45.0	천켄레	556
321 215030	메리야스내의	68.2	68.1	천 매	866
321 215040	메리야스외의	165.7	175.5	〃	92
321 217020	어 망	27.1	34.3	%	61
321 219030	인조섬유타이어 직물	47.2	43.3	〃	154

업종(품목) 번호	업종(품목)명	가 중 치		신규사업체선정기준	
		생산및가동률	생산능력	조사단위	생 산 량
323	가죽제품	113.2	115.4		
323 231010	쇠가죽	101.1	101.5	천㎡	123
323 231020	재생 및 인조가죽	12.1	13.9	//	101
330	나무제품	99.4	111.7		
331	나 무	99.4	111.7		
331 311040	일반합판	34.4	38.6	㎡	3,591
331 311050	가공합판	5.1	6.0	//	173
331 311090	제재목	59.9	67.1	//	2,412
340	종이제품	254.7	232.5		
341	종 이	254.7	232.5		
341 411010	펄 프	18.7	17.3	%	1,103
341 411090	판 지	60.9	54.1	//	3,349
341 411900	지 류	105.9	96.2	//	4,328
341 419020	위생용지	37.6	36.4	//	249
341 419030	금속박지	31.6	28.5	//	50
350	화합물·석유·석탄	2,116.4	2,112.5		
351	산업용화합물	713.2	602.2		
351 511010	에틸렌	12.2	9.3	%	2,340
351 511020	프로필렌	6.6	5.1	//	1,340
351 511040	벤젠	8.0	6.1	//	900
351 511050	톨루엔	6.0	4.6	//	801

업종(품목) 번호	업종(품목)명	가 중 치		신규사업체선정기준	
		생산및가동률	생산능력	조사단위	생 산 량
351 511060	키실렌	5.7	4.5	%	786
351 511070	염화비닐 모노머	18.1	14.8	"	840
351 511080	에틸렌글리콜	5.4	4.1	"	399
351 511100	아크릴로니트릴	10.2	8.1	"	212
351 511130	스티렌모노머	6.4	5.1	"	356
351 511170	테레프탈산	33.4	25.0	"	732
351 511180	카프로락탐	8.8	7.5	"	171
351 511230	폴리우레탄	8.7	9.8	"	109
351 511240	폴리에틸렌	34.9	34.4	"	1,471
351 511250	폴리프로틸렌	20.8	14.6	"	1,077
351 511260	폴리스티렌	16.6	17.9	"	700
351 511270	A.B.S 수지	8.9	8.6	"	274
351 511280	P.V.C 수지	23.4	18.3	"	1,711
351 511340	합성고무	17.3	16.9	"	415
351 512060	가성소다	19.8	20.6	"	935
351 512070	가소제	8.5	8.4	"	388
351 512080	소다회	13.4	10.8	"	1,045
351 512190	산 소	27.3	29.7	천㎡	3,045
351 514010	아세테이트섬유	2.9	2.2	%	34
351 514020	폴리아미드섬유	44.3	38.2	"	437
351 514030	폴리에스터섬유	195.5	161.9	"	1,817

업종(품목) 번 호	업종(품목)명	가 중 치		신규사업체선정기준	
		생산및가동률	생산능력	조사단	생 산 량
351 514040	아크릴릭섬유	104.2	79.3	‰	680
351 515010	요소비료	11.3	11.5	//	3,535
351 515020	복합비료	34.6	24.9	//	8,066
351 516010	농 약	0.0	0.0	//	691
352	기타화학제품	273.4	293.6		
352 521020	에나멜	5.8	7.3	kl	76
352 521030	페인트	44.5	54.8	//	494
352 523030	합성세제	45.9	40.6	‰	549
352 523050	치 약	33.1	47.1	//	57
352 523060	화장품	0.0	0.0	kg	66,750
352 523090	비 누	71.4	62.9	‰	884
352 529010	공업용 접착제	47.7	57.6	//	245
352 529030	카본블랙	25.0	23.3	//	439
353	석유정제업	402.8	441.5		
353 530000	정 유	402.8	441.5	kl	133,181
354	기타 석유·석탄제품	119.6	135.9		
354 540010	연 탄	95.8	113.5	‰	56,476
354 540020	윤활유	23.8	22.4	kl	874
355	고무제품	354.8	332.8		
355 551010	자동차용 타이어	73.9	74.4	천 본	63
355 551030	자전거용 타이어	4.3	3.9	//	100

업종(품목) 번호	업종(품목)명	가 중 치		신규사업체선정기준	
		생산및기동률	생산능력	조사단위	생 산 량
355 551040	자동차용 튜브	10.7	10.2	천 본	103
355 559020	운동화	265.9	244.3	천 족	812
356	기타 플라스틱제품	252.6	306.5		
356 560010	플라스틱 필름	102.4	135.4	㎡	472
356 560040	플라스틱 봉 및 관	39.3	44.0	//	310
356 560050	스치로폴	35.8	43.6	//	93
356 560190	플라스틱 레저 및 장판	75.1	83.5	//	525
360	비금속 광물제품	437.9	487.0		
362	유리 및 유리제품	101.8	92.0		
362 620020	판유리	37.8	32.4	상 자	24,579
362 620050	브라운관용 유리	11.3	10.4	천 개	68
362 620090	유리섬유	5.6	5.6	㎡	73
362 620190	유리병	47.1	43.6	//	2,414
369	기타 비금속광물	336.1	395.0		
369 691020	타 일	36.1	37.8	천 ㎡	91
369 692010	시멘트	81.3	89.7	천 ㎡	81
369 692020	시멘트 크링커	11.2	11.0	//	84
369 693010	석면 슬레이트	10.6	12.5	천 ㎡	133
369 693030	레미콘	120.9	169.1	천 ㎡	44
369 693060	흙 관	20.6	23.2	본	6,464
369 693900	콘크리트전주 및 파일	34.4	33.0	//	6,384

업종(품목) 번호	업종(품목)명	가 중 치		신규사업체선정기준	
		생산및가동률	생산능력	조사단위	생 산 량
369 694010	내화용 벽돌	21.0	18.7	ㄱ	645
370	제 1 차 금속	668.6	592.9		
371	철 강	532.2	459.3		
371 711010	선 철	62.2	47.7	ㄱ	36,803
371 711020	합금철	4.7	4.8	〃	568
371 711090	조 강	94.2	74.5	〃	54,683
371 712110	강 관	53.7	56.3	〃	7,299
371 712190	압 연	265.2	227.0	〃	47,421
371 713010	주철관	19.3	17.5	〃	417
371 719020	석도강판	15.0	15.6	〃	615
371 719030	아연도 강판	17.9	15.9	〃	2,130
372	비철금속	136.4	133.6		
372 721010	전기동	16.1	13.2	ㄱ	549
372 721020	알루미늄괴	3.1	2.5	〃	71
372 721030	연 괴	1.4	1.5	〃	99
372 721040	아연괴	11.5	9.3	〃	456
372 723060	알루미늄판	18.2	20.0	〃	149
372 723070	알루미늄샤시바	31.5	35.9	〃	230
372 723190	동압연품	54.6	51.2	〃	730
380	조립금속·기계 및 장비	3,560.3	3,651.9		
381	조립금속 제품	607.6	628.7		

업종(품목) 번 호	업종(품목)명	가 증 치		신규사업체선정기준	
		생산및가동률	생산능력	조사단위	생 산 량
381 813020	건축용샤시	75.1	75.0	%	47
381 813030	산업용 보일러	96.3	108.2	T/H	52
381 813090	컨테이너	109.5	105.1	대	647
381 814030	병마개	80.9	82.8	천 개	27,773
381 819010	금속캔	86.9	87.7	"	3,491
381 819080	볼트 및 너트	51.0	61.6	%	310
381 819110	와이어로프	37.7	36.6	"	494
381 819120	쇠 못	28.4	29.3	"	451
381 819160	용접봉	41.8	42.4	"	378
382	기 계	595.1	707.4		
382 822020	경운기	34.4	47.7	대	287
382 822030	농업용 트랙터	11.7	22.0	"	7
382 823010	N.C 선반	13.9	25.6	"	3
382 823020	범용선반	78.8	99.6	"	13
382 824030	크레인	48.5	46.7	%	88
382 824060	굴삭기	75.6	62.4	대	13
382 824110	직 기	37.0	55.9	"	22
382 825011	CPU	43.8	55.8	"	4,418
382 825014	CRT MONITER	24.8	37.2	"	7,574
382 825030	전자 계산기	3.8	3.8	"	9,293
382 826040	윈도우형 에어컨	16.9	33.2	"	271

업종 (품목) 번 호	업 종 (품 목) 명	가 중 치		신규사업체선정기준	
		생산및가동률	생산능력	조사단위	생 산 량
382 826060	패케이지형 에어컨	16.3	30.7	대	60
382 826090	가스레인지	29.1	30.5	//	5,573
382 829010	산업용펌프	30.4	26.6	//	2,739
382 829030	공기압축기	4.6	4.0	//	17
382 829090	엘리베이터	39.1	37.7	//	5
382 829110	지게차	33.2	41.9	//	24
382 829150	베어링	53.2	46.1	kg	23,411
383	전기·전자	1,273.9	1,311.1		
383 831010	전동기	25.0	24.6	HP	13,081
383 831030	변압기	26.9	25.9	KVA	66,141
383 831040	배전반	35.0	30.2	백만원	489
383 831050	전력회로 차단기	24.6	23.0	대	6,849
383 832040	VTR	77.7	69.5	//	5,473
383 832070	라디오수신기	3.2	3.4	//	19,167
383 832090	녹음기	69.2	61.6	//	54,105
383 832110	소형 전축	20.1	19.9	//	4,055
383 832190	확성기	16.5	15.3	천 개	340
383 832220	전화기	58.5	64.4	대	27,772
383 832250	전화 교환기	71.6	55.0	회 선	4,368
383 832370	녹음 테이프	13.9	16.6	km	132,363
383 832380	비디오 테이프	31.8	53.3	천 개	188

업종(품목) 번 호	업종(품목)명	가 중 치		신규사업체선정기준	
		생산및가동률	생산능력	조사단위	생 산 량
383 832510	TV수상기	218.0	253.8	대	35,520
383 832520	TV 튜너	16.3	18.8	천 개	69
383 833010	전기냉장고	66.4	66.0	대	7,955
383 833020	선풍기	12.7	15.8	"	7,266
383 833030	전기 세탁기	21.8	22.2	"	2,736
383 833060	전자 레인지	55.0	47.1	"	8,798
383 834050	트랜지스터	28.0	27.1	천 개	14,037
383 834070	집적회로	58.0	69.9	"	7,037
383 834170	인쇄회로기판	90.0	97.8	개	9,418
383 834310	브라운관	59.2	53.4	"	66,819
383 834320	축전기	43.2	43.0	천 개	26,575
383 839010	통신선 및 케이블	51.4	54.7	%	251
383 839020	전력선 및 케이블	36.7	37.3	"	300
383 839070	축전지	24.9	20.8	개	16,293
383 839080	건전지	18.3	20.7	천 개	1,302
384	운수장비	942.8	865.0		
384 841010	선박용 내연기관	72.6	70.0	IP	6,457
384 841100	철강선박	413.3	388.4	G/T	11,384
384 843110	특장차	14.9	15.7	대	21
384 843120	자동차용 내연기관	96.4	82.0	"	1,506
384 843250	자동차류	36.3	35.6	개	7,647

업종(품목) 번호	업종(품목)명	가 중 치		신규사업체선정기준	
		생산및기동률	생산능력	조사단	생 산 량
384 843260	자동차 차축	51.2	49.3	개	1,140
384 843310	승용차	135.8	103.7	대	1,096
384 843320	버 스	47.3	44.6	//	136
384 843330	트 럭	53.6	46.8	//	292
384 844030	모터사이클	21.4	28.9	//	748
385	과학계측기기	140.9	139.7		
385 852060	전자복사기	64.2	57.5	대	55
385 853010	손목시계	39.2	40.8	개	92,853
385 853020	벽시계	6.6	7.1	//	4,451
385 854030	적산 전력계	30.9	34.3	대	5,924
390	기타 제조업	249.8	259.3		
390 902010	피아노	55.4	62.9	대	530
390 903020	대형공	48.3	51.2	개	14,667
390 903040	야구장갑	30.4	27.7	//	9,618
390 909010	볼 펜	63.7	56.5	천 개	708
390 909100	일회용 라이터	6.7	5.9	//	127
390 909110	담배용필터	19.2	27.2	㎍	50
390 909120	지 폐	26.1	27.9	㎝	659

부록 3. 생산능력조사와 광공업 동태조사간 포괄범위 상이품목

생산능력조사와 광공업동태조사간 포괄범위 상이품목

생 산 능 력 조 사			광 업 동 태 조 사			비 고
품목부호	품 목 명	단위	품목부호	품 목 명	단위	
111090	소시지	%	1110100	햄	%	
			1110200	소시지		
134090	청량음료	kl	1340100	사이다	kl	
			1340200	콜 라	"	
			1340300	과즙음료	"	
			1340500	합성탄산음료	"	
211020	면 사	추	2110210	순면사	%	능력 설비수
			2110220	혼방면사	"	"
211040	방모사	추	2110410	순방모사	"	능력 설비수
			2110420	혼방방 모사	"	
211050	소모사	추	2110510	순소모사	"	능력 설비수
			2110520	혼방소모사	"	
212010	면직물	대	2120110	순면직물	천 m ²	능력 설비수
			2120120	혼방면직물	"	
212050	합섬직물	대	2120510	순합성섬유직물	"	능력 설비수
			2120520	합성섬유파일직물	"	
			2120530	혼방합성섬유직물	"	
212090	모직물	대	2120200	소모직물	"	
			2120300	방모직물	"	
311090	체재목	m ²	3110100	각 재	m ²	
			3110200	판 재	"	

생 산 능 력 조 사			광 공 업 동 태 조 사			비 고
품목부호	품 목 명	단위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411090	판지(골판지 상자 제외)	%	4110900	판지 및 상자	%	
411900	지 류	%	4110200	신문용지	%	
			4110300	백상지		
			4110400	증질지		
			4110500	아트지		
			4110600	크라프트지		
			4110700	박엽지		
419020	위생용지	%	4190200	위생용 종이제품	%	능력은 원지만 조사
516010	농 약	%	5160110	살충제	//	
			5160120	살균제	//	
			5160130	제초제	//	
521030	페인트	kl	5210310	유성페인트	kl	
			5210320	수성페인트	//	
523060	화장품	kg	5230610	화장수	백만원	
			5230620	화장크림	//	
			5230630	샴푸 및 린스	//	
			5230640	기타 화장품	//	
523090	비 누	%	5230100	세탁비누	%	
			5230200	화장비누	//	
530000	청 유	kl	5300100	젯트유	kl	
			5300200	휘발유	//	

생 산 능 력 조 사			광 공 업 동 태 조 사			비 고
품목부호	품 목 명	단위	품목부호	품 목 명	단위	
			5300300	나프타	kl	
			5300400	등 유	"	
			5300500	솔벤트	"	
			5300600	경 유	"	
			5300700	중 유	"	
			5300800	방카 C유	"	
			5300900	L.P.G.	"	
560190	플라스틱레저밧장판	%	5500200	프라스틱레저	%	
			5500300	프라스틱장판밧벽지		
620190	유리병	%	6200600	식품밧음료용유리병	%	
			6200700	약밧화장품용유리병	"	
693900	콘크리트전주밧파일	본	6930700	콘크리트전주	본	
			6930800	콘크리트파일	"	
711090	조 강	%	7110300	강 피	%	
			7110700	빌 렛		
712190	압 연	%	7120100	봉 강	%	
			7120300	형 강	"	
			7120400	중후판	"	
			7120500	열연박판	"	
			7120600	열연대강	"	
			7120700	계 조	"	

생 산 능 력 조 사			광 공 업 동 태 조 사			비 고
품목부호	품 목 명	단위	품목부호	품 목 명	단위	
			7120800	냉연박판	%	
			7120900	특수강냉연강판	//	
			7121000	냉연대강	//	
			7121200	선 재	//	
723190	동압연품	%	7230100	동봉 및 형광	%	
			7230200	동 선	//	
			7230300	동판 및 띠	//	
			7230400	동판 및 증공봉	//	
824030	크레인	%	8240300	건설용 크레인	%	능력은 일반증량
			8290700	물품취급용크레인		
832510	TV 수상기	대	8320100	흑백 TV수상기	대	
			8320200	칼라 TV수상기	//	
			8320300	컴버네이션TV수상기	//	
832520	TV 튜너	천개	8320500	전자식 TV 튜너	천개	
			8320600	기계식 TV 튜너	//	
834310	브라운관	개	8340100	흑백 TV용	개	
			8340200	칼라 TV용	//	
834320	축전기	천개	8341100	고정축전기	천개	
			8341200	가변축전기	//	
841100	철강선박	G/T	8410200	철강유조선	G/T	진척량조사
			8410300	일반화물선	//	

생 산 능 력 조 사			광 공 업 등 태 조 사			비 고
품목부호	품 목 명	단위	품목부호	품 목 명	단위	
			8410400	특수화물선	G/T	
			8410600	철강어선	//	
843310	승용차	대	8430100	소형승용차	대	
			8430200	중형승용차	//	
			8430300	대형승용차	//	
			8430400	지프형승용차	//	
843320	버 스	대	8430500	소형버스	대	
			8430600	일반버스	//	
			8430700	고속형버스	//	
843330	트 렉	대	8430800	소형트럭	대	
			8430900	중형트럭	//	
			8431000	대형트럭	//	

부록 4.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 조사표」양식

부록 5. 주요수정보완사항

'88년도 지침서	'89년도 지침서	비 고
<p>P. 5 조사대상사업체 선정기준</p> <p>p.26 생산능력 개념 및 산정방법</p>	<p>부록 2. 생산능력 및 가동률 품목별 신규사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p> <p>생산능력의 개념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생산능력 산정방법에 대해 새로 삽입</p>	<p>조사방법 보완</p> <p>조사방법 보완 및 추가</p>
<p>P.32 표준생산능력 산정기준 변경 품목 및 내용</p>	<p>삭 제</p>	<p>삭 제</p>
<p>P. 33 지정품목의 명칭변경 및 지정 품목의 품목세분</p>	<p>삭 제</p>	<p>//</p>
<p>P. 35-37 지수개편 개요</p>	<p>삭 제</p>	<p>//</p>
<p>P. 41 부록 1. 지수품목 채택현황 및 품목내역</p>	<p>삭 제</p>	<p>//</p>
<p>P. 158 부 록</p>	<p>부록 1. 에는 표준생산능력 산정기준표로 대체</p> <p>부록 2. 에는 생산능력 및 가동률 품목별 가중치 및 품목별 신규사업체 선정기준을 자세히 설명하여 찾아보기 쉽도록 작성함.</p>	<p>조사방법 보완</p> <p>//</p>

작성기관: 경제기획원
승인번호: 111-21-02

제조업생산능력 및 가동률조사표

통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하며 그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198 년 월분)

1. 잠정자료 2. 확정자료

※ 매월 15일까지 제출

사업체고유번호	산업분류부호	사업체명		소재지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체규모	종업원규모	유고사항
행정구역번호	조사구번호	사업체					1. 대규모 2. 중소규모	1. 500명이상 2. 300~499명 3. 100~299명 4. 99명이하	1. 전 입 2. 휴 업 3. 사업체 흡수 4. 사업체 분리
		본사							

1. 설비가 지정되어 있는 품목

일련번호	품목부호	품목명	유고사항	생산능력산정기준				단위	생산능력			생산량		
				지정설비명	보유수	1월 조업시간	월간 조업일수		※ 변경부호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백 십 만	천
01														
02														
03														
04														
05														
06														
07														
21	211020	면사		면정방기	—			추						
22	211040	방모사		방모정방기	—			추						
23	211050	소모사		소모정방기	—			추						
24	212010	면직물		면직기	—			대						
25	212040	견직물		견직기	—			대						
26	212050	합섬직물		합섬직기	—			대						
27	212090	모직물		모직기	—			대						

3. 생산능력 변동내역

--

2. 조립능력품목 및 지정설비가 없는 품목

일련번호	품목부호	품목명	유고사항	능력산정참고기준				단위	생산능력			생산량		
				월말생산직종업원수	1월 조업시간	월간 조업일수	※ 변경부호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백 십 만	천	백 십 일
31														
32														
33														
34														
35														
36														
37														

※ 변경부호

- 표준산식적용 또는 동일기준
- 설비증설 또는 대체
- 설비폐기
- 표준조업시간변경
- 표준조업일수변경
- 신기법 또는 공정개선 (조립능력)
- 노후설비 재산정
- 기타 (상기 2가지 이상 적용)

※ 증감내용

	품 목 부 호	전월비(%)	증감부호	증 감 사 유
생 산 해 표				
생 산 량				

증 감 내 용 부 호				
<증가>	01 수출(주문)증가 04 정상가동 07 수요증가대비	02 내수(주문)증가 05 지정품목생산개시 08 신기법 또는 공정개선	03 설비증설(시설확장) 06 타공장흡수(합병) 09 자동화설비대체	10 기타
<감소>	11 수출(주문)감소 14 보수, 고장 18 화재, 파업	12 내수(주문)감소 15 대상외품목 생산 19 노후설비재산정	13 설비폐기 또는 축소 16 원재료 구입부진	17 휴업 20 기타(일기불순등)

응 답 부 서	응 답 자	조 사 담 당 자	내 검 자	관 리 책 임 자
실(과)				
전화 ()	인	인	인	인

당 부 의 말 씀

- 이 조사는 제조업 부문의 생산능력 및 가동상황을 매월 조사하여 국가 경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투자방향 및 경기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 조사는 당원에서 미리 지정한 주요품목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므로 귀업체의 생산품목이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아울러 유사품목이나 신규품목을 생산하는 경우, 매월 방문하는 당원 직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이 조사는 공장설비 기준에 의한 생산능력 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설비내역 및 능력산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 성 시 유 의 사 항

<생 산 량>

- 생산량은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물량기준이므로 판매 또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자체 생산한 물량 뿐만 아니라 타사로부터 주요 원재료를 제공받아 위탁생산한 생산량도 포함되나, 자사에서 원재료를 타사에 제공하여 위탁생산한 물량은 제외 됩니다.
- 원유처리(석유정제)는 원유 사용량, 철강 선박 및 철도차량은 진척량으로 조사합니다.

<생 산 능 력>

- 생산능력 산정은 당원에서 당해 업종 품목생산의 표준적인 제조조건을 감안하여 설정한 "표준 생산능력산식" (대상설비, 월중 조업일수 및 조업시간)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산출 가능한 최대능력이나, 사업체의 현실적인 조업 조건만을 반영한 현실능력과는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 특히 조립라인을 중심으로 생산하는 조립금속, 기계장비,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일시적인 주문의 증감이나 계절적인 이유로 생산능력을 매월 수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제조업생산능력 및 가동률조사표

작성기관 : 경 제 기 획 원
승인번호 : 111 - 21 - 02

통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199 년 월분)

1. 잠상자료 2. 확정자료

※매월 12일까지 제출

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명	소재지	종업원 규모	사업체 유고사항
조사구번호	사업체		1. 500명 이상 2. 300~499명	1. 전 입 2. 휴 업
	본 사		3. 100~299명 4. 99명 이하	3. 사업체흡수 4. 사업체분리

응답부서	응답자	조사담당자
과		
인	인	인

1 생산능력 · 생산량

일련번호	품목부호	품목명	유고사항	단위	생산능력					생산량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2 증감내역

품목부호	전월비 (%)	증감부호(※)	증 감 사 유
생산량			

※ 생산능력 증감부호	1. 표준산식적용(전월과 동일기준)	5. 표준조업일수 변경
	2. 설비증설 또는 대체	6. 신기법 또는 공정개선
	3. 설비 폐기	7. 노후설비 재산정
	4. 표준조업시간변경	8. 기타

※ 생산량 증감부호	(증가) 01 수출(주문) 증가 04 정상가동 07 수요증가대비	02 내수(주문) 증가 05 지정품목 생산개시 08 신기법 또는 공정개선	03 설비증설 06 타공장흡수 09 기타
	(감소) 11 수출(주문) 감소 14 보수, 고장 17 휴업	12 내수(주문) 감소 15 대상외품목생산 18 화재, 파업	13 설비폐기 또는 축소 16 원재료구입부진 19 기타(일기불순등)

당 부 의 말 씀

- 이 조사는 제조업부문의 설비이용실태를 파악하여 경기동향을 분석하는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191개 품목을 생산하는 약 1,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이 조사는 당원에서 미리 지정한 주요품목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므로 귀업체의 생산품목이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품목에 대한 자료를 매월 방문하는 당원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이 조사는 설비의 이용실태를 생산능력대비 생산실적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설비내역 또는 능력산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해설 및 조사표 기입요령

1. 생산능력

생산능력의 개념에는 경제적측면(비용개념)의 능력과 공학적측면(기술개념)의 능력으로 대별되고, 기술개념의 능력은 이론적능력과 현실적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생산능력이란 이론적능력과 현실적능력의 중간개념인 표준생산능력으로서 이는 주어진 조건(지정된 설비와 주어진 조업일수 및 조업시간)에 따라 표준능력산식(당원 지정)을 적용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체에서 평가한 자료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2. 생산량

자체설비를 통한 생산량을 의미하므로, 원재료 제공 유무에 관계없이 위탁생산량은 제외하고 수탁생산량은 포함하여 기입합니다.

3. 생산능력과 생산실적 기록시 특히 유의할 사항

가. 월간운전가능설비와 월간 실운전실적을 조사하는 품목

- 방적품목(면사, 방모사, 소모사)은 “추(錘)”의 수를, 직물(면직물, 견직물, 합섬직물, 모직물)은 “직기”의 대수로 생산능력(운전가능 설비추수 또는 직기대수)과 월중 생산량(월중 가동한 설비수)을 조사하므로 실질적인 제품생산량(%, m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나. 투입능력과 투입량을 조사하는 품목

- 원유는 원유처리능력과 처리량을 기록합니다.(산출물의 합계가 아님)

다. 중간제품의 실적을 조사하는 품목

- 위생용지는 완성제품(화장지, 냅킨 등)의 합계가 아닌 위생용지원지의 생산능력과 생산량을 기입합니다.

라. 진척량을 조사하는 품목

- 선박은 진척률에 의한 생산량을 파악하여 기입합니다.

마. 단위에 유의하여 조사표작성

- 특히, 크레인-인발중량, 보일러-T/H 등

機械受注統計調查 指針書

1989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차 례

I. 조사개요	3
1. 조사연혁	3
2. 조사목적	3
3. 조사대상	3
4. 조사단위	3
5. 조사사항	3
6. 조사대상기간 및 시기	4
7. 조사방법	4
8. 집계 및 결과공표	4
9. 조사상 특별유의 사항	5
II. 조사시 일반적 유의사항	6
III. 조사표 기입방법	7
1. 수요자별 기종별 조사표 기입요령	7
2. 수주내역별 기입요령	9
3. 기계 수주 통계조사 주요 변동내용	11
※ 설비용 기계의 개념	
〈부 록〉	
1. 기종분류요약표	13
2. 설비용 기계류 기종분류	17
3. 수요자분류 요약표	43
4. 수요자분류	47
5. 주요변동내용 비교표	57

I. 조 사 개 요

1. 조사연혁

가. 1978.6 ~ 12월분까지 시험조사

나. 1979.1월분부터 본조사

다. 1989.1월부터 조사대상 사업체 추가(현행 100개→약 110개 업체)

2. 조사목적

설비용 기계류를 생산하는 주요제조업체의 매월별 국내외로 부터의 수주액등(판매액 수주잔고)을 수요자(발주자) 및 기종별로 조사, 기업의 산업별 설비투자 동향을 조기 파악하여 경기지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3. 조사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 38 중분류중 설비용 기계류 생산기업으로서 광공업 센서스 결과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중 설비용 기계류 총생산액에 대하여 약 60%를 대표하는 약 110개 대기업체(사업체)를 유의 선정하였다.

4. 조사단위

수주체계를 고려하여 본사중심의 통합조사를 원칙으로하되 단일 공장의 경우는 사업체(공장)조사

5. 조사사항

가. 수요자(발주자)별 기종별 조사

각 중분류의 기종별로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1) 수요자별 수주액

(2) 판매액

(3) 수주잔고

나. 수주내역조사

각 중분류에 기재된 수주품목중 주요한 것(수주액이 많은 것)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입한다.

- (1) 제품명
- (2) 기종분류(중분류)
- (3) 수요자 사업체명
- (4) 수요자 분류
- (5) 수주액
- (6) 수주수량(수량 및 단위)
- (7) 신규개수의 구별
- (8) 예정납기

6. 조사대상 기간 및 시기

조사기준 기간은 원칙적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다(단 경리상의 결산일이 월중에 있는 기업에 있어서는 전월의 결산일의 익일부터 당월의 결산일까지로 한다)

조사표는 조사기준 기간의 익월 15일까지 수집 확인한 후 20일까지 중앙에 도착하도록 한다.

단, 20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19일 근무시간안에 도착되도록 발송한다.

7. 조사방법

조사표의 기입은 자계식과 타계식 병행으로 하고 조사표의 배포·재출과 내용검토는 조사담당자에 의한다.

8. 집계 및 결과공표

조사결과는 매월 조사기준 기간의 익월 하순에 집계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9. 조사상 특별 유의사항

본 조사는 설비용 기계류 제조업체 약 5,300개 업체중 ('86. 광공업 통계조사 기준) 대규모 110개 내외 업체만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체 자체의 조사누락은 두말할 것도 없고 단 1건의 수주건수 누락과 중복은 금액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체 조사결과(집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을 특히 유의 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생산액(외부로부터의 주문없이 계획에 의해 직접 생산하는 경우)도 판매(출하)시에 수주액과 판매액 조사에 누락이 없도록 한다.

Ⅱ. 조사시 일반적 유의사항

1. 일반적 유의사항

수요자별 기종별 조사와 내용조사로 구분하며 조사표 기입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표 기입은 일반적으로 청 또는 흑색잉크나 볼펜을 사용하고 숫자는 아라비아숫자(1, 2, 3)등으로 기입한다.

나. 설비용 기계류 전체를 조사대상으로 하므로 주문받은 설비용 기계류 뿐만 아니라 계획 생산한 기계류중 조사기준일전에 출하된 설비용 기계류는 당월의 수주로 간주하여 포함 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완성품뿐만 아니라 부분품 및 부속품의 수주도 포함시키고 보수공사, 부대공사 등도 포함하여야 한다.

다. 금액의 단위는 백만원으로 하고 단위 미만의 금액은 4사5입 한다.

라. 수주액 합계란에는 기종별 및 수요자 별로 수주액의 합계를 계산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이때 기종별 수주액합계와 수요자별 수주액 합계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마. 수주액 합계는 민간수요+공공수요+해외수요+대리점의 합계이다.

Ⅲ. 조사표 기입방법

1. 수요자별 기종별 조사표 기입요령

가. 사업체 번호는 조사대상사업체 명부에 지정된 번호를 기입한다.

나. 수요자 분류

(1) 수요자 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4대분류

하고 이를 다시 23 개업종(해외수요, 대리점포함)으로 세분하였다.

(부록 3, 4 수요자 분류참조: 기계 공업을 조립금속, 기계, 정밀기기 공업과 전기전자공업으로 세분하였고 공공기타를 공공제조업과 공공기타로 세분)

(2) 수요자 분류는 설비용 기계를 주문한 기업 즉, 최종수요자의 업

종을 기준으로 부록(수요자분류)에 따라 분류한다. 그러나 대리점

(상사, 회사포함), 건설업체로부터의 수주품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최종수요자에 따라 분류하고 최종수요자가 불분명할 때는 대리점 또는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또한 건설중인 빌딩에 설치되는 Plant(설비)를 건축청부업자가 주문하는 경우 그 빌딩의 시행주가 불분명할 때는 건축청부업체를 최종수요자로 보고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3) 국내무역업체(종합무역상사등)가 수출을 위해 주문할 경우 최종수요자가 해외이므로 해외수요로 분류한다.

(4) 주문자가 2종이상의 다른 업종을 겸하고 있을 경우에는 당해 기계를 수요하는 사업체의 업종에 의하여 분류한다.

(5) 동일사업체가 2종이상의 산업을 일반작업공정으로 겸하고 있는 업체에서 주문이 있을 경우(예: 합성원료의 제조와 방적업을 일관작업으로 겸하고 있을 때) 최종제품에 속하는 산업으로 분류한다.

다. 기종분류

기종분류는 한국표준무역분류(SKTC)를 근거로 4대분류하고 이를 다시 표준산업분류에 의거 17개중분류(철구조물 별도)로 세분하였다. (부록 1, 2기종분류 참조), 이는 제품(기계명)의 기능을 중시하고 용도도 고려하여 분류하였다.(부분품 및 부속품도 동일함)

예) (1) 철도차량의 부분품(철도용 내연기관, 증기기관, 철도차륜 등)을 수주받았을 경우에는 철도차량으로 분류한다.

(2) Plant 수주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단일부분(단체)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고 만일 이것이 곤란할 때는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한다.

예외) (1) 다음에 열거한 선박용부품은 각각의 소속에 분류한다.

화력원동기, 내연기관, 증전기, 통신기계, 풍수력기계, 운반기계, 화학기계

라. 수주액

(1) 수주액은 조사기준기간(월간)중 주문을 받은 총계약금액을 기입하되 그 일부가 외주 또는 하청인 경우에도 포함한다.(단, 하청을 받은 업체가 조사대상인 경우에는 하청을 준 금액이 제외된다)

(2) 계획생산품은 판매(출하)시에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기종별로 수요자별 금액을 계산하여 당월의 수주액에 합산한다.

(3) 계약 금액이 미정인 경우에도 사실상의 수주가 있을 때의 계산이나 견적의 금액을 기입한다.

(4) 기보고된 수주액중 해약 등으로 인한 계약변경으로 발생된 증감액은 동변경사유를 보고 받은 조사월에 조정하고, 당월분의 수주액에 감하여 당월의 수주액이 “-”가 될 경우에는 그 금액 앞에 “-”표를 하여야 한다.

(5) 설비용 기계류를 자기기업내에 설비하기 위하여 자가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수주액에 포함 조사하여야 한다.

마. 판매액

판매액은 원칙적으로 기성고 기준에 따른 경리상의 매상고를 기입하는 것으로 판매액중에는 주문을 받은 제품을 판매한것과 계획생산한 제품을 판매한 것을 포함 기입한다.(단, 기업의 사정에 따라 소액 규모인 경우에는 기성고기준에 의하지 않고 완성 또는 출하시의 판매액을 기입하여도 무방하다.)

바. 수주잔고

수주잔고란에는 대상사업체의 총수주실적(당월에 수주받은 것과 그 이전에 수주받은것)중에서 조사기준 기간말 현재 아직 납품(판매)하지 못한 수주액(잔액)을 기입한다.

※ 제품의 재고는 생산을 해 놓고 아직 판매하지 못한 잔량(현품)인데 반하여 수주잔고는 앞으로 생산을 해야 할 주문잔액(현품이 아님)임.

또한 차인계 산상(전월말수주잔고+당월수주액-판매액)의 수주잔고가 전월의 수주잔고와 증감의 차이가 클때에는 그 사유를 비교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2. 수주내역표 기입요령

본 내역표는 수요자별 기종별 조사표에 기입되는 수주액 등에 대하여 제품별로 세분조사하여 조사결과를 분석처리하기 위하여 주요제품별로 그 내용을 표시하기 위한 내역표이다.

가. 「제품명」란에는 “전기발생모터 2만kw”와 같이 기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만약 완제품과 부품을 함께 수주 받았을 경우에는 부품을 완제품에 포함 조사하고 보수하기 위해 부

품만 수주받았을 경우에는 완제품명도 동시에 병기한다.

예) 차축(Axles) (철도차량)

나. 「기종분류」란에는 “화력원동기”, “수력원동기”, “내연기관”, “농림업용기계” 등과 같이 수요자별 기종별 조사표에 기입된 기종분류명(중분류명)을 기입한다.

다. 「수요자 사업체명」란에는 구체적인 발주자의 사업체명을 기입하고 간접주문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약자와 최종수요자명도 병기하고 해외수요(수출)인 경우에는 “발주국명”을 기입한다.

라. 「수요자분류」란에는 “식품공업”, “섬유공업”, “화학공업”, “기계공업” 등과 같이 수요자별 기종별 조사표에 기입된 수요자분류명을 기입한다.

마. 「수주액」란에는 각 제품 및 수요자별 수주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입한다.

바. 「수주수량」란에는 대, 기, kg, % 등 되도록 미터법상의 단위와 수량을 기입한다.

사. 「신규·개수」란에는 제품에 대한 수주가 당월에 신규로 계약된 경우에는 신규란에 수리개조공사 등의 수주는 개수란에 각각 “○” 표를 한다.

아. 「예정납기」란에는 수주 받은 제품을 완성하여 수요자에 납품할 예정 년월일을 기입한다.

자. 기 보고된 수주액에 대하여 할인 또는 해약 등에 의하여 금액에 현저한 변경이 있을 때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비고란에 기입한다.
(언제 수주분인지, 그 금액, 수요자 사업체명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차. 해외수주분에 대하여는 수주액이 적더라도 모두 기입한다.

※ [설비용 기계의 개념]

가. 설비용 기계란 일정한 산업의 설비로서 공용되는 기계 및 장비로

서 금속을 주재료로하여 제조되고 동력을 받아 외부의 일정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대상물에 작업을 가하거나 대상물을 내부에 수용하여 이를 변질, 변형, 분해, 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소비재성 가정용 기계와 도구(기구, 공구) 등은 제외한다.

나. 조사범위

기계수주조사에서는 기계를 만드는 기계 및 장치와 일반산업용 기계 및 장치, 전기기계중 변압기, 전동기, 발전기 등 일부(중전기계)와 장치용 통신기계, 버스, 트럭, 철도용차량, 선박 등의 수송용기기, 동력전달장치 철구조물 등을 포괄범위로 하고 완성품 뿐만 아니라 그 부분품, 부대공사 및 보수공사까지도 포함한다.

3. 기계수주 통계조사 주요 변동내용

가. 사업체수를 고정(과거: 100개)시키지 않고 광공업 통계조사 결과에 따라 대표도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조정한다.

- 89년: 약 110개 예정

나. 조사표 설계변동

수요자 분류중 1개 업종의 명칭변동과 2개 업종을 세분하였는 바 그 이유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공통의 명칭 사용과 산업구조의 반영 그리고 공공분야의 성격구별을 위함임.

(1) 명칭변동: 요업 → 비금속 광물제품 공업

(2) 수요자 분류세분: ○ 기계공업
 └─ 조립금속, 기계, 정밀기기
 └─ 전기, 전자공업
 ○ 공공기타
 └─ 공공제조업
 └─ 공공 기타

(3) 공공제조업이란 정부 투자기관으로 제조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현재(88.12월)의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민영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포항제철(포항, 광양) (주), 한국냉장(주), 영남화학(주), 한국조폐공사, 국정교과서(주), 진해화학(주), (주)한주, 한국종합화학(주), 한국송유관(주), 한국전매공사 등

다. 기존분류: 한국 표준무역분류 체계 (SKTC) → 표준산업분류(KSIC)

라. 매년 신규로 조사되는 사업체는 1년간의 소급분을 조사하고 익년에 연간 보정을 거쳐 공표토록 한다.(소급조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예상사업체를 선정하여 1년전부터 조사하고 공표시기는 연간 보정 이후로 할 예정임)

< 부 록 >

1. 기종분류별 요약표

대분류	중분류	세 세 분 류	비 고	
원 동 기	화력원 동기	38134 보일러 및 관련제품 제조업	난방용 제외 수력터어빈제외	
		38212 증기 및 가스터어빈 제조업		
	수력원 동기	38212 증기 및 가스터어빈 제조업	수력터어빈에 한함 풍차, 수차 등	
		3821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관 및 터어빈 제조업		
	내 연 기 관	내 연 기 관	38211 내연기관 제조업	자동차용 내연기 관 및 부품에 한함
			38411 선박용기관 및 부품제조업	
38432 자동차부품 제조업				
일 반 산 업 용 기 계	농림업 용기계	38220 농업용기계 및 장비제조업		
	금속공작기계	38231 금속절삭기계 제조업		
		38239 기타 금속공작 및 목공 기계 부속품		
	금속가공기계	38232 금속성형기계 제조업		
		38233 금속처리용기계 제조업		
		38296 산업용 로봇 제조업		
	건설광산기계	38241 건설 및 광산용 기계 장비 제조업	트럭트랙터에 한함	
		38431 자동차 제조업 (부품제외)		
	섬유용기계	섬유용기계	38242 섬유용 기계 제조업	
			38262 상업용 세탁기 제조업	

대분류	중분류	세 세 분 류	비 고
일 반 산 업 용 기 계	섬유용기계	38295 재봉기 제조업	
	석유화학기계	38244 화학 및 석유정제 기계 제조업	펄프, 종이, 판지 제조용 기계에 한함(가공용 기 계 제외)
		38245 고무 및 프라스틱 기계 제조업	
		38246 종이산업용 기계 제조업	
		38263 산업용 냉동장비 제조업	
		38264 공기조절장치 제조업	
	풍수력기계	38291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38292 송풍기 및 환풍기 제조업	
	운반기계	38293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38294 산업용 트럭 및 적하기 제조업	
기타산업용기계	38116 튼 및 튼날 제조업	펄프, 종이, 판지 전화용(가공용) 기계	
	38235 목공기계 제조업		
	38243 식료품 가공기계 제조업		
	38246 종이 산업용 기계제조업		
	38247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38248 유라 및 요업용 기계 제조업		
	38297 기계식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3829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전기제외)			

대분류	중분류	세 세 분 류	비 고	
전 기 통 신 기 계	전 기 기 계	38311 발전기, 전동기 및 기타 회전기 제조업		
		38312 변압기제조업		
		38313 개폐장치 및 보호장비 제조업		
		38314 산업용 전기제어장비 제조업		
		38315 전기용접기 제조업		
		38316 내연기관용 전장품제조업		
		38319 기타 전기산업용 기계 및 장치 제조업		
	통 신 기 계	38322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38323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38324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수 송 용 기 계	선 박	38412 강선 건조 및 수선업		
		38413 목선건조 및 수선업		
		38419 기타 선박건조 및 수선업		
	철 도 차 량	38199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철도차량용 스프 링에 한함
		38421 기관차 제조업		
		38422 철도 객화차 제조업		
		38423 철도차량 부품 제조업		
		38429 기타 철도장비 제조업		
	기타수송용기계	38431 자동차 제조업 (부품제외)		승용차 및 트럭 트랙터 제외

대분류	중분류	세세분류	비고
수송용기계	기타수송용기계	38432 자동차부품 제조업 38451 항공기 제조 및 수선업 38452 항공기 부품 제조업	내연기관 제외
철구조물	철구조물	38135 금속 구조재 제조업 38136 금속 탱크 및 용기제조업 38139 기타 구조 금속제품 제조업	

2. 설비용 기계류 기종분류

원동기	19
화력원동기	19
수력원동기	19
내연기관	19
일반산업기계	20
농림업용기계	20
금속공작기계	21
금속가공기계	22
건설·광산기계	24
섬유용기계	25
석유·화학기계	27
풍수력기계	30
운반기계	31
기타산업기계	31
전기·통신기계	37
전기기계	37
통신기계	39

수송용기계	40
선 박	40
철도차량	40
기타 수송용기계	41
철구조물	42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원 동 기	화 력 원동기 (01)	38134-111	증기발생보일러	※ 중앙난방용의 보일러는 제외 ※ 철도 차량용의 증기 발생 보일러, 증기기관, 개스터어빈 등은 철도 차량(19항)에 기록 ※ 보일러실 보조장치(38134-300)의 관련제품 - 이코너마이저 (Economizer) - 공기에열기 (Air Preheaters) - 과열기 (Super Heaters) - 과열조감기 (De-Superheater) - 증기 수집기 (Steam-Collectors) - 증기비축기 - 수로관벽 (Tubular Furnace Walls)
		112	대형온수보일러	
		211	핵 반응기	
		212	열 교환기	
		213	먼지추출기	
		214	싸이크론	
		215	가스 세정기 또는 흡수탑	
		216	액체 및 가스여과용 정치식 장치	
		217	집진장치	
		219	기타 보일러 관련제품	
		300	보일러실 보조 장치	
		38212-100	증기기관	
		200	증기터어빈	
		300	가스터어빈	
		수 력 원동기 (02)		
38219-119	기타 기관 및 부품 (풍차, 수차)			
내 연 기 관 (03)		38211-100	내연기관(압축 및 불꽃 점화 기관)	※ 철도차량용 내연기관은 철도차량(19항)에 기록
		38411-100	선박용 내연기관	
		38411-900	선박용 기관부품	
		38432-111	자동차용 내연기관	
		119	기관용 부품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일 반 산 업 용 기 계	농림업 용기계 (05)	38220-111	쟁기	
		112	씨레	
		113	식부기	※ 식부기 (38220-113)의 관련제품 - 파종기 - 이식기
		119	기타 경작용 기계	※ 기타 경작용 기계 - 원예용 발아장치
		211	탈곡기	
		212	청정 제질 및 선별용 기계	
		219	기타 수확용 기계	
		311	경운기	
		312	농업용 트랙터	
		313	이앙기	
		314	바인더	
		315	콤바인	※ 기타추진식 농업용기계 (38220-319)의 관련제품
		319	기타 추진식 농업용 기계	- 비료 살포기 - 퇴비 살포기 - 제초기 - 잔디 깎는 기계
		411	농업용 동력 분무기	
		412	탈수장치	
		413	농장콘베이어	
		414	마초가공품 기계 및 기기	
		415	제승기, 입직기 (가마니틀)	
		416	과일 및 기타 선별기	
		417	예취기 및 제초기	
418	착유기	※ 착유기 (38220-419)의 관련제품 - 과실주, 과실즙스 제품 제조용프레스, 파쇄기 및 기타 기계		
41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업용 기계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일 반 산 업 용 기 계	농림업 용기계 (05)	38220-611	가금 부화기	※ 기타 동물 농업용 기계 (38220-629)의 관련제품 - 우유균질화기 - 버터제조기 - 기타 양봉, 양계용기계	
		612	가금 사육기		
		613	달걀 세척기		
		614	기타 가금 사육기		
		621	꿀벌 사육기		
		622	사료 및 곡물건조기		
		623	사료 절단기		
		629	기타 동물 농업용 기계		
		700	농업용 기계날 및 칼		
		900	트랙터 및 농업용 기계 장비 부품		
	금 속 공 작 기 계 (06)		38231-111		수치제어선반 (NC) 선반
			112		자동선반
			113		보통선반
			114		입선반
			115		기타 선반
			121		형삭기
			122		평삭기
			123		램핑기
			124		태핑기
125			밀링기		
126	브로칭기				
127	기계톱	※ 금속 공작용에 한함.			
128	연삭기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일 반 산 업 용 기 계	금속공 작기계 (06)	38231-129	호닝기	※ 기어컷팅기 (38231-133) 의 관련제품 - 나사절단기 포함
		131	보링기	
		132	드릴링기	
		133	기어컷팅기	
		134	리밍기	
		135	전기 또는 전자식 가공 기계	
		136	스크류 컷팅기	
		137	수치제어 밀링기	
		138	머시닝 센타	
		141	수치제어 연삭기	
		142	수치제어 보링기	
		143	수치제어 기어컷팅기	
		144	수치제어드릴링기	
		145	수치제어평삭기	
		146	기타 수치제어 금속절삭 기계	
		147	기타 금속절삭기계	
		149	기타 금속절삭기계 부품	
		38239-100	복합금속 공작기계 공구	
		300	기계공 정밀측정기	
		900	기타금속공작 및 부속품	
금속가 공기계 (07)		38232-111	단조기 및 스템핑기	
		112	액압금속 가공프레스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일 반 산 업 용 기 계	금속가 공기계 (07)	38232-113	기타금속 가공프레스	
		114	압출기	
		115	에어햄머	
		116	굴곡기	
		117	성형기	
		118	절단기	
		121	편칭기	
		122	신선기	
		123	인발기	
		124	나사전조기	
		125	수치제어 금속가공기계	
		126	기타 금속가공기계	
		129	기타 금속가공기계부품	
		211	압연기	
		212	압연기롤	
		38233-111	주조기	
		112	가스용접장치	
		113	금속세척기	
		114	금속열착기	
		115	금속표면처리기	
		119	기타금속처리용기계 및 부품	
		38296-111	교시형 로봇트	
		112	적응형 로봇트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일 반	금속가 공기계 (07)	38296-113	지능형 로봇	
		119	로봇부품	
산 업 용 기 계	건설광 산기계 (08)	28241-111	천공기	
		112	채탄기계	
		113	파쇄기	
		114	선광기	
		115	선별기	
		116	마쇄기	
		117	교반혼합기	※ 교반혼합기 (38241-117) 의 관련제품
		119	기타	- 배척프랜트 - 콘크리트 혼합기
		200	유전기계 및 장비	※ 유전기계 및 장비 (38241-200)의 관련제품
		311	동력쇼벨	- 보링기
		313	드레그레이인	- 시추기
		314	크레인	
		315	스크레퍼	
		316	그레이더	
		317	로더	
		318	뎀핑기	
		321	굴착기 : 포크레인	
322	도로 포장기			
323	콘크리트믹서			
324	트럭트랙터 웨곤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일 반 산 업 용 기 계	건설광 산기계 (08)	38241-329	기타건설장비 및 부품	※ 기타건설장비 및 부품 (38241-329)의 관련제품 - 로드롤러 - 준설기 - 채설기 - 향타기 ※ 불도저 (38241-511) 의 관련제품 - 앵글도저
		330	인양장비	
		341	원치	
		342	건설장비 부착물	
		411	트랙터	
		419	트랙터 부품	
		511	불도저	
		519	불도저 부품	
		38431-500	트럭트랙터	
섬유용 기 계 (09)	38242-111	인조섬유 방사기	※ 방적준비기계 (38242-115) 의 관련제품 - 면방적준비기계 - 모방적준비기계 - 견방적준비기계 ※ 기타섬유용기계 (38242-119) 의 관련제품 - 합사기 - 합연사기 - 권사기	
	112	조방기		
	113	조면기		
	114	혼타면기		
	115	방적준비기계		
	116	코밍기		
	117	연조기		
	118	연사기		
	119	기타섬유용기계		
	211	면방적기		
	212	모방적기		
	213	견방적기		
	214	정방기		
219	기타방적기계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일 반 산 업 용 기 계	섬유용 기 계 (09)	38242-311	면직기	
		312	견직기	
		313	모직기	
		319	기타직기	
		411	횡편직기	
		412	환편직기	
		413	가정용 편물기	
		414	종편직기	
		419	기타 편직기	※ 기타편직기 (38242-419) 의 관련제품
		511	망제조기	- 수편기
		512	틀, 레이스제조기	- 양말횡편기
		513	자수기	- 양말종편기
		514	짐핑기	
		519	기타 직기 및 편물기	
		611	스핀들	
		612	도비 및 잭워드	
		613	잭워드장치용 기계	
		614	링	
		615	카드 조립기	
		618	콤파	
		622	종광	※ 기타방적보조기계 및 부품 (38242-629)의 관련제품
		623	샷틀 (=북)	- 노즐
		629	기타방적 보조기계 및 부품	- 칩포 - 가아넷와이어 - 트레블러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일 반 산 업 용 기 계	섬유용 기 계 (09)	38242-711	염색기			
		712	나염기			
		713	표백기			
		719	기타 섬유가공기계			
		911	펠트제조용기계			
		912	섬유완성용기계 및 장비			
		913	가죽가공기계			
		91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섬유용 기계			
		38262-111	상업용 세탁기			
		119	상업용 세탁기부품			
		38295-111	손틀			
		112	발틀			
		113	재봉기 - 전기식			
		211	재봉기 - 직물용			
	212	재봉기 - 가죽용				
	213	재봉기 - 포대 봉합용				
	219	재봉기 - 기타산업용				
	300	재봉기용 부품				
	적 유 화 학 기 계 (10)		38244-111		가스분리 플랜트	* 가정용 재봉기 및 부품제외
			112		암모니아 합성유니트	
113			합성수지 및 인조수지 제조용 플랜트			
114			폭발물 제조용 플랜트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일 반 산 업 용 기 계	석 유 화 학 기 계 (10)	38244-115	석유화학 플랜트	
		116	비료, 농약 및 기타 살 충제 제조용기계	
		119	기타화학관련제품 생산용 플랜트	
		200	석유정제기 및 장비	
		300	코크스로	
		911	비누절단 또는 성형기	
		912	인조섬유 압출기	
		913	전해조	
		914	원심분리기	※ 원심분리기 (38244-914) 의 관련제품
		915	여과 프레스	- 원심분리 건조기 (가정 용 제외)
		916	먼지 추출기	- 청정기용 원심분리기
		917	카렌더기	- 왁스 또는 수분제거 원심분리기
		918	분류 및 정류장치	- 초진염 원심분리기
		921	증발 및 건조장치	- 화학산업용 원심분리기
		922	첨들	- 실험용 원심분리기
		923	살균장치	
		924	집진장치	
		925	페인트 제조용 기계	
		929	기타화학용기계 및 부품	
		38245-111	고무가공기계	
		112	고무 및 플라스틱 성형 프레스	
		113	고무신제조기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일 반 산 업 용 기 계	석 유 화 학 기 계 (10)	38245-114	자동차타이어 및 튜브 제조기	
		119	기타고무 및 플라스틱 가공용기계 및 부품	※ 기타 고무 및 플라스틱 가공용 기계 및 부품 (38245-119)의 관련제품 - 인조플라스틱 성형기
		38246-111	래그컷터, 더스터, 세척기 및 파쇄기	※ 래그컷터, 더스터, 세척기 및 파쇄기 (38246-111)의 관련제품
		112	폐지 펄프 제조기	- 쇄목기 - 절단기
		113	에스파르토의 오프너, 파 쇄기 및 절단기	※ 폐지펄프 제조기 (38246- 112)의 관련제조기
		114	우드칩 가공기	- 스트레이너어 - 프레스파아트기
		115	초치기	- 바이터어
		116	종이, 도포 및 집채기	- 기타 셀룰로우스 펄프 제조기
		117	크레핑기	※ 종이·도포 및 집채기 (38246-116)의 관련제품
		118	블랑기	- 권취기 - 표면가공기 - 침투가공기
		121	골판지 제조기	
		122	경화파이버보드 제조기	
		129	기타펄프, 종이제조기계 및 부품	
		38263-111	산업용 냉장고	※ 가정용 냉장고 제외
		112	제빙기	
		113	차량 냉동장비	
		114	냉동제습기	
		115	산업용 냉동장비	
		116	산업용 냉동전열장	
		119	기타냉동장비 및 부품	※ 기타 냉동장비 및 부품 (38263-119)의 관련제품 - 혈액저장용 냉장고
		38264-111	룸 에어컨디셔너	※ 가정용은 제외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일 반 산 업	석 유 화 학 기 계 (10)	38264-112	차량 공기조절기	※ 온도변화에 의한 재료 처리용기계, 플랜트 및 유사 이화학작용 장치는 석유 화학기계에 포함한다. - 냉동기용증발 및 응축기 - 과일즙 농축장치 - 제분산업용 냉각탑 - 유지 산업용 가마솥 - 펄프제조화학용 고압솥 - 기타 공기조절용 응축기, 증발기		
		113	자장공기조절기 (패케이지형 에어콘)			
		114	대형 냉풍기			
		115	냉각탑			
		119	기타 공기조절기 및 부품			
	용 기 계	풍수력 기 계 (11)	38291-111		공업용 펌프	※ 공업용 펌프 (38291-111) 의 관련제품 - 왕복펌프 - 원심분리펌프 - 회전펌프
			112		주유소용 측정 및 분배 펌프 (계량용 펌프)	
			114		수동펌프	
			115		양수기	
			116		공기펌프	
117			진공펌프			
118			공기압축기			
119			기타펌프와 공기압축기 및 부품			
38292-111			블로우형 송풍기	※ 가정용 제외		
112		팬형 송풍기				
113		환풍기				
114		공기청정기 및 집진장비				
115		공기 여과기				
116		에어커어튼장치				
119		기타송풍기, 환풍기 및 그 부품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일 반 산 업 용 기 계	운 반 기 계 (12)	38293-111	활차	※ 크레인 (38293-117)의 관련제품 - 선박용 데릭 - 이동식 리프트프레임	
		112	잭		
		113	리프트 : 호이스트		
		114	텔레페릭 및 푸니쿨라		
		115	화차 경사기		
		116	적하기		
		117	크레인		
		122	엑스컬레이터		
		123	엘리베이터		
		124	콘베이어		
		125	스키리프트		
		126	화차 전철대		
	129	기타재료 취급장비 및 부품			
	38294-111	산업용 수송트럭 및 산업용 트레일러	112		소형 트랙터
			113		프레트홈 트럭
			114		포크리프트 (지게차)
			119		기타산업용트럭 및 부품
			기 타		38116-111
	산업용 기 계 (13)		112		톱 - 금속용
113			톱 - 석재용		
114			톱 - 시계 및 보석가공용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일 반 가 산 업 용 기 계	기 타	38116-119	기타톱	
	산업용	121	톱날	
	가 계	122	체인톱	
	(13)	38235-111	박피기	
		112	기계톱	
		113	세절기	
		114	박절기	
		115	대패기 및 장부기	
		116	드릴링기	
		117	선반 및 축성형기	
		118	샌드페이퍼링기	
		121	베니어 접합프레스	
		122	만능나무 공작기계	
		123	마루세공 나무제조기	
		124	목공 밀링기	
		125	수치제어 목공기계	
		211	통제조기	
		212	연필 제조기	
		213	등제품 제조기	
		219	기타특수산업용 목공기계 및 부품	
		38243-111	크림 분리기	
		112	균질기, 조사기, 저온살균기 및 관련우유가공기기	
		113	버터 제조기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일 반 산 업 용 기 계	기 타 산업용 기 계 (13)	38243-114	치즈 제조기	
		115	아이스크림 제조기	
		119	기타 우유 가공기계	
		211	정미기	
		212	정맥기	
		213	압맥기	
		214	곡물체분하기전 가공기	
		215	계분기	
		216	분급기	
		219	기타 곡물가공용 기계	
		38243-911	제빵용 기계	
		912	국수 제조기	
		913	설탕과자 제조기	
	914	고기 가공용 기계		
	915	물고기 가공용 기계		
	916	과실 및 야채가공용 기계		
	917	설탕 제조 또는 정제기		
	918	과실쥬스 가공용 프레스, 파쇄기		
	921	양조 및 증류용 기계		
	922	착유기		
	923	차 및 커피 가공기계		
	924	담배 가공기계		
	925	포장 및 충전기		
	92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식품 가공기계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일 반 산 업 용 기 계	기 타 산업용 기 계 (13)	38246-211	종제단기	
		212	스리터릴러	
		213	다이컷트	
		214	천공기	
		215	봉투제조기	
		216	종이포대 제조기	
		217	종이상자 제조기	
		221	종이 주형제품 제조기	
		229	기타펄프, 종이 또는 판 지전화용 기계 및 부품	
		38247-111	평압 및 원동압식 인쇄 기	※ 운전인쇄기 포함
		114	석판인쇄기	
		115	옵셋인쇄기	
		116	그라비아 인쇄기	
		117	특수인쇄기	
		118	인쇄보조기	
		119	기타 인쇄기 및 부품	
		211	활자 주조기	
		216	식자용 장비	
		218	스테레오 재판 주조용 기계	
		219	기타활자주조, 식자기계 및 부품	
		311	책 재봉기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일 반 산 업 용 기 계	기 타 산업용 기 계 (13)	38247-312	절지기	
		313	집적 및 철책용 기계	
		314	표지 제조기	
		319	기타제본기계 및 부품	
		38248-111	판유리 제조기	
		112	병 제조기	
		113	유리관 제조용 기계	
		114	유리섬유 제조용 기계	
		115	전구 제조기	
		119	기타 유리 제조용 기계 및 부품	
		211	프레스기 (벽돌, 타일, 브로크등의 제조기)	
		212	압출기	
		214	관제조용 원심분리 성형기	
		215	연탄 제조기	
		219	기타 비금속광물 응집기	
		311	톱 및 절단기계	
		312	열단기	
		313	연마기	
		314	드릴링기	
		315	조각용 기계	
316	그라인딩휠용 기계			
319	기타 비금속광물 공작용 기계공구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일 반 산 업 용 기 계	기 타 산업용 기 계 (13)	38297-111	베어링 하우싱	
		112	트랜스 및 손 샤프트	
		113	크랭크 및 크랭크샤프트	
		114	캠샤프트	
		115	기어 및 기어링	
		116	감속기	
		117	클러치	
		119	기타 기계식 동력전달장 치 및 부품	
		211	볼베어링	
		212	니들베어링	
		213	메달베어링	
		214	태이퍼베어링	
		219	기타베어링	
	221	베어링부품		
		38299-100	동력분무기	
		211	금속용해 및 정련전기 로	
		212	금속열처리 및 가공전기 로	
		213	용광로(비전기식)	
		214	용선로(비전기식)	
		215	토마스 및 베제머 전로	
		216	기타 비전기식 금속제련로	
		217	비전기식 금속열처리 및 금속가공로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일반 산업용 기계	기타 산업용 기계 (13)	38299-311	전기로	
		312	비전기로	
		411	로연소기 (기계식)	
		412	급탕기	
		413	재 방출기	
		414	기계식 화상	
		415	가스 발생기	
전 기 기계 통 진 기 계	전 기 기계 (14)	38311-111	원동기 (발전기 세트)	
		112	회전변환기	
		119	기타발전기 세트 및 부품	
		211	전동기 - 직류	
		212	전동기 - 교류	
		217	발전기 - 직류생산	
		218	발전기 - 교류생산	
		219	회전전기장비의 부품	
		38312-111	송배전 변압기	
		112	발전 변압기	
		113	전력조절기, 승압기 및 유사장치	
		114	신형변압기	
		115	등안전기	
		119	기타변압기 및 부품	
		38313-111	배전판 - 고압	
112	배전판 - 저압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전 기 통 산 기 계	전 기 기 계 (14)	38313-113	전력회로차단기 - 고압용	
		114	전력회로차단기 - 저압용	
		115	누전 차단기	
		119	기타개폐장치, 안전장치 및 부품	
		38314-111	전기제어장비	
		112	모터 스타터	
		113	전기자기브레이크, 크러치 및 연계장비	
		114	산업용 전자통제장비	
		119	기타 산업용 통제장비 및 부품	
		38315-111	아크 용접장치	
		112	저항 용접기	
		119	전기용접기 부품	
		38316-111	발전기 및 전동기, 시동기	
		112	스파크 프러그	
		113	점화 코일, 마그네트	
		119	기타 내연기관용 전장품	
		38319-100	정류기 및 정류장치	※ 기타 전기산업용 장치 및 부품(38319-900)의 관련제품
		211	고압축전기	- 수은아크 정류기
		212	저압축전기	- 실리콘 정류기
		900	기타 전기산업용 장치 및 부품	- 세래늄 정류기 - 기타 금속정류기 및 정류장치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전 기 통 신 기 계	통 신 기 계 (15)	38322-111	전화기세트	
		112	무선전화기	
		113	자동차용 전화기(카폰)	
		114	자동식 전화교환기	
		115	전자식 전화교환기	
		211	반송장치	
		212	텔레폰레코더	
		213	텔레타이프	
		214	텔레프린터	
		215	모사 전송기기(팩시밀리)	
		38323-111	라디오, TV 방송국장비	
		112	TV 방송국장치	
		113	라디오, TV 방송 송신기 및 관련장비	
		114	폐쇄회로 TV 조작	
		115	TV 카메라	
	116	모니터 TV		
	117	방송용 VTR		
	119	기타 방송장치 및 부품		
	211	무선 송수신기		
	38324-111	상호 통신장비		
	112	전기 교통 통제 장비		
	113	전기소리 또는 시각 신호장치		
				※ 무선송수신기(38323-211)의 관련제품 - 무선항해 조력장치 - 레이더 장치 - 원격제어용 무선장치 - 무선 방향 탐지기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수 송 용 기 계	선 박 (18)	38412-111	철강유조선	※ 기타특수선박 (38412-900) 의 관련제품 - 발전선 - 소방선 - 준설선 - 인양선 - 해난 구조선 - 기중기선 - 시추선
		112	일반화물선	
		119	특수화물선	
		200	예인선	
		300	해빙선, 케이블선	
		400	여객선	
		511	어선	
		512	공장선	
		900	기타 특수선박	
		38413-100	여객선 (목선)	
		200	화물선 (목선)	
		300	어선 (목선)	
		900	기타목선	
		38419-111	부선 도크 및 기타 비추진식 선박	
		112	부유 구조물	
		211	합성수지선	
		212	콘크리트선	
		213	경금속선	
219	기타 선박			
철 도 차 량 (19)		38199-111	코일스프링	※ 철도차량용에 한함
		112	앞 (판상) 스프링	
		38421-112	전기기관차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수송용기계	철도차량(19)	38421-113	디젤 및 디젤기관차		
		114	진동차		
		119	기타 철도용 기관차		
		211	광산기관차		
		212	산업용 기관차		
		900	기관차 부품		
		38422-111	여객차 및 수하물차		
		112	병원차, 쇄수차, 검사차		
		200	화물차		
		900	기타 차량		
		38423-100	피스톤 발브 증기기관		※ 기타철도차량부품(38423-919)의 관련제품 - 차축(Axles) - 윤축(Parts of Axle and Wheel) - 커플러(Couplers) - 요오크(Yorkes) - 프레임(Frames) - 브레이크장치
		200	내연 추진기관		
		300	차륜		
		911	완충기		
		919	기타 철도차량 부품		
		38429-111	전기추진차량		
		112	레일카		
		119	기타기계추진 레일차량		
		기타수송용기계(20)			
212	일반버스				
213	고속형버스				
311	소형트럭				
312	중형트럭				
		313	대형트럭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수송기계용 (20)	기타	38431-400	특수차	※ 특수차 (38431-400) 의 관련제품 - 소방차 - 청소차 - 기중기차 (구난차) - 분무차 - 작업차 - 이동방사선차		
	수송용	38432-219	기타차량용 샷시			
	기계	500	로드레일 및 유사콘테이너			
		600	차체부품			
		912	배기조직 및 그 부품			
		913	연료계통조직 및 그부품			
		914	제동장치 및 그 부품			
		915	조향장치 및 그 부품			
		916	현가장치 및 그 부품			
		921	휠, 자동차륜			
		922	자동차 차축			
		929	기타 자동차 부품			
		38451-100	항공기			
		38452-100	항공기 부품			
	철구조물	철구조물	38135-111		조립금속의 건물	
			112		육상금속구조물 (교량, 굴뚝, 철탑 등)	
			113		해상금속구조물 (파이프라인, 차켓)	
		200	금속구조물 부품			
		38136-100	압축, 액화가스 저장용기			
		211	탱크 및 유사금속용기 (기계장치 부착 유)			
		212	탱크 및 유사금속용기 (기계장치 부착 유)			
		38139-100	철도궤도 및 부착물			

〈 3-1 〉 수요자분류와 산업분류의 관련표 (총괄)

수요자분류		산	업	분	류
민	체 조 업	1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업	업
	간				
간	비	2	광	업	업
	조				
수	운	3	제 조 업	업	업
	수				
요	업	4101	철기업 (한국전력)	업	업
	비				
요	농	4200	수도사업 (민간 → 비제조, 기타)	업	업
	림				
기	업	5	건설업	업	업
	타				
타	업	6	소도매 및 음식, 숙박업	업	업
	기				
운	수업 (철도청)	711	육상 운수업	업	업
	업				
업	통신업 (한국전기통신공사)	7111	철도 운수업 (철도청)	업	업
	업				
업	전력업 (한전)	71124	지하철 운수업 (서울시, 부산시)	업	업
	업				
공	공	712 ~ 713	수상운수업, 항공운수업	업	업
	공				
공	공	720	통신업 (한국전기통신공사)	업	업
	공				
수	공	8	금융, 보험	업	업
	공				
요	공	91	항공행정 및 국방 (공공, 기타)	업	업
	공				
요	공	93	사회 서비스업	업	업
	공				
해 의 수 요		외국으로부터의 주문 (L/C)			
대 리 점		대리점 또는 상사, 회사 등으로 부터 수주시 최종수요자가 불분명할 때			

수요자분류명	산	업분류명
제조업	311 ~ 312	· 식품공업
		· 화학공업
		· 석유, 석탄제품업
		· 비금속광물제품업
		· 제1차금속공업
		· 조립금속·기계·정밀기기공업
		· 전기·전자공업
		· 조선업
		· 자동차공업
		· 기타공업
제조업	313 ~ 390	· 식료품제조업
		· 음료품 "
		· 담배 " (공공제조업)
		· 섬유 "
		· 의복 "
		· 가죽대용가죽 및 모피제품 제조업
		· 신발제조업
		· 나무 및 나무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가구 및 장식물 제조업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인쇄, 출판 및 관련산업
		· 산업용 화학물 제조업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석유정제업
		·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
		· 고무제품 제조업
		· 탈리 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 제조업
		· 도기, 자기 및 토기제조업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제1차 철강산업
		· 제1차 비철금속 산업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 기계 제조업
		· 전기기계 기구 제조업
		· 운수장비 제조업
		· 신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와 사진 및 광학제품 제조업
		· 기타 제조업

〈 3-2 〉 수요자 분류별 관련산업 분류명

수요자분류명	산업명	분류명
민	· 식품공업	311~312 식료품 제조업
		313 음료품 "
		321 섬유 "
		322 의복 "
민	· 섬유공업	323 가죽대용가죽 모피제조업
		324 신발 제조업
		351 산업용 화학물 제조업
		35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민	· 화학공업	355 고무제품 제조업
		356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53 석유정제업
		354 석유, 석탄제품 제조업
민	· 석유, 석탄제품공업	361 도기, 자기 및 토기제조업
		36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369 기타 비금속 광물제조업
		371 제1차 철강제조업
민	· 제1차금속공업	372 제1차 비철금속 제조업
		381 주립 금속제품 제조업
		382 기계 제조업
		384 운수장비 제조업 (자동차제조업, 선박 건조 및 수선업 제외)
민	· 조립 금속·기계·정밀 기기공업	385 전문과학측정 및 제어장치와 사진 및 광학제품제조업
		383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384 운수장비제조업중 선박 건조 및 수리수선업
		384 운수장비제조업중 자동차제조업
민	· 자동차공업	331 나무 및 나무와 콜크제품 제조업
		332 기구 및 장치물 제조업
		341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42 인쇄, 출판 및 관련산업
		390 기타 제조업
		383 전기·전자공업
민	· 전기·전자공업	384 운수장비제조업중 선박 건조 및 수리수선업
		384 운수장비제조업중 자동차제조업
		331 나무 및 나무와 콜크제품 제조업
		332 기구 및 장치물 제조업
민	· 자동차공업	341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42 인쇄, 출판 및 관련산업
		390 기타 제조업
		383 전기·전자공업

수요	차분	류	산	업	분	류	명	
민	비	운	711	육상운수업 (7111 철도운수업 → 공공운수업)				
			712	수상운수업				
			713	항공운수업				
	간	전	설	511	건물건설업			
				512	토목건설업			
	수	제	광	210	석탄광업			
				220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			
				230	금속광업			
				290	기타광업			
				111	농업			
112				농림수산업 서비스업				
113				수렵업				
121	영림업							
요	업	기	122	별목업				
			130	어업				
			611	일반도매업				
			612	상품중개업				
			621	일반소매업				
			622	종합소매업				
			810	금융기관 (일반은행)				
			820	보험업				
			931	교육서비스업 (사립교육기관)				
			공공	수요				수
71124	지하철운수업 (서울시, 부산시)							
720	통신업 (한국전기통신공사)							
4101	전기업 (한국전력)							
정부투자기관이면서 제조업체로부터 수주								
정부기관 + 정부투자기관중 제조업 이외의 수주								
대리점 또는 상사, 회사 등으로부터 수주시 최종수요자가 불분명할 때								
외국으로부터의 주문 (L / C)								

4. 수요자별 분류

민간수요	49
[제조업]	49
식품공업	49
섬유공업	50
화학공업	50
석유·석탄제품공업	51
비금속광물제품공업	51
제1차금속공업	51
조립금속, 기계, 정밀기기	51
전기·전자공업	53
조선업	53
자동차공업	53
기타공업	53
[비제조업]	54
운수업	54
건설업	55
광업	55
농어업	55
기타	56

공공수요	56
운수업	56
통신업	56
전력업	56
공공제조업	56
공공기타	56
대 리 점	56
해외수요	56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민 간 수 요	제 조 업	식 품 공 업	311 → 312	식료품 제조업	314 담배 제조업 → 공공수요, 기타				
			3111	도살, 고기가공 및 저장법					
			3112	낙농품 제조업					
			3113	과실 및 야채통조림 및 가공 저장업					
			3114	해산물통조림 및 가공저장업					
			3115	동식물유지 제조업					
			3116	도정 및 제분업					
			3117	빵제품 및 국수 제조업					
			3118	설탕 제조업					
			3119	설탕과자 제조업					
			312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식료품 제조업					
			3122	배합사료 제조업					
			313	음료품 제조업					
			3131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3132	발효주 제조업					
			3133	맥주 및 맥아 제조업					
			3134	청량음료 제조업					
							321	섬유 제조업	
							3211	방적 및 제사업	
							3212	직물제품 제조업	
			3213	편직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민 간 수 요	제 조 업	섬 유	3214	용단 및 돛자리 제조업	
			3215	끈 및 로오프 산업	
			3216	직조업	
		3217	섬유포백, 염색 및 정리업		
		32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섬유제조업		
		322	의복 제조업		
		공 업	323	가죽, 대용가죽 및 모피제품제조업	
			3231	가죽제조업	
			3232	모피 가공업	
			3233	가죽 및 대용가죽제품 제조업	
	324	신발제조업(성형고무 또는 프 라스틱신발 제외)			
	화 학 공 업	351	산업용 화합물 제조업		
		3511	산업용 기초화합물 제조업		
		3512	비료 및 살충제 제조업		
		3513	합성수지 플라스틱 물질 및 인조섬유제조업 유리제외		
		35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3521	도료 제조업		
		3522	의약품 제조업		
		3523	비누세정제 및 화장품 제조업		
		3529	달리분류하지 않은 화학제품 제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민 간 수 요	제 조 업	화 학 공 업	355 고무제품 제조업 3551 타이어 및 튜브생산 355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고무제품 제조업 356 달리 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석 유 · 석 탄 공 업	353 석유정제업 354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	
		비 금 속 광 물 제 품 공 업	361 도기, 자기 및 토기 제조업 36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36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691 구조점토제품 제조업 3692 시멘트, 석회 및 프라스터(석고) 제조업 36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제 1 차 금 속 공 업	371 제 1 차 철강제조업 372 제 1 차 비철금속 제조업	
	조 립 금 속 · 기 계 공 업	381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3811 날붙이 수공구 및 철물제조업 3812 금속제가구 및 장치물제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민 간 수 요	제 조 업	조정 립밀 금속 기공 기계업	3813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38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382	기계 제조업	
			3821	기관 및 터빈제조업	
			3822	농업용기계 및 장비제조업	
			3823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 제조업	
			3824	특수산업용기계 및 장비 제조업	
			3825	사무계산 및 회계용기계 제조업	
			38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84	운수장비 제조업	
			3842	철도장비 제조업	
			38432	자동차부품 제조업	3841 선박 건조 및 수선 업→조선업
			3844	모터사이클 및 자전거 제조업	
			3845	항공기제조 및 수선업	
			38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수장비 제조업	3843 자동차 제조업→자동 차공업
			385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와 사진 및 광 학제품 제조업	
			385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업	
			3852	사진 및 광학제품 제조업	
			3853	시계 제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민 간 수 요	제 조	전 공 기 · 전 자 업	383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3831 전기산업용기계 및 장치 제조업	
			3832 라디오, 텔레비전 및 통신장비 제조업	
			3833 가정용 전기기구 제조업	
			38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조 선 업	3841 선박 건조 및 수선업	
		자 동 차 공 업	3843 자동차 제조업	
	38431 자동차 제조업			
		기 타 공 업	331 나무 및 나무의 콜크제품 제조업	
	3311 제재업 및 목재가공업			
3312 목재용기 및 동세공품 제조업				
33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나무 및 콜크제품				
332 가구 및 장치물 제조업 금속가구 제외				
341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42 인쇄, 출판 및 관련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민 간 수	제 기 타 조 공 업 업	타 공 업	390 기타 제조업	
			3901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3902 악기 제조업	
			3903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9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	
			39091 칠기제조업	
			39092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9093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	
			39094 가발 제조업	
			39095 비 및 솔 제조업	
			39096 라이터 제조업	
			39097 장난감 제조업	
			39098 단추 제조업	
			390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제조업	
요	비 제 조 업	운 수 업	711 육상운수업	7111 철도 운수업 → 공공수요, 운수업
			7112 도로여객 운수업	
			7113 기타여객 육상운수업	
			7114 도로화물 운수업	
			7115 파이프라인 운수업	
			7116 육상운수 보조서비스업	
			712 수상운수업	
			713 항공운수업	
			719 운수관련 서비스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민 간 수 요	비	건설업	511	건물건설업	
			512	토목건설업	
	제 업 조	광 업	210	석탄광업	
			220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	
			230	금속광업	
			290	기타광업	
			2901	토사석 채취업	
			2902	화학 및 비료원료용 광물 광업	
			2903	염 전	
			29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광업	
업	농 림 어 업	농 업	111	농업	
			1111	작물생산업	
			1112	축산업	
			112	농업서비스업	
			1121	작물농업서비스업	
			1122	축산서비스업	
			11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농업	
			113	수렵업	
			12	임업	
			13	어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민간수요	비제조업	기타	상기 기재된 산업이외의 산업 (공공수요 제외) 소도매업, 보관, 통신업, 금융, 보험 및 용역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각급 사립 교육 기관
공공수요	-	-	정부,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기타 공공단체)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경영사업소	
공공수요	운수업	운수업	7111 철도운수업 71124 지하철 운수업	철도청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공공수요	통신업	통신업	72 통신업	한국전기통신공사
공공수요	전력업	전력업	4 전기업	한국전력
공공수요	공제조업	공제조업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제조활동을 하는 사업체	정부투자기관 (제조업)
공공수요	공기타	공기타	기타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	정부기관, 국공립 교육기관 기타
대리점			대리점 또는 상사, 회사 등으로부터 수주시 최종수요자가 불분명할 때	
해수외요			외국으로부터의 주문 (L/C)	

< 부 록 >

5. 주요 변동내용 비교표

Page	열	조 사 지 침 내 용		비 고
		'88 년도지침	'89 년도지침	
3	12	200 인이상	100 인 이상	하 향 조 정
	13	100 개	약 110 개	
4	17	18 일	20 일	기 간 연 장
	19	18 일	20 일	
5	2	4,000 개	5,300 개	
	3	100 개	110 개	
7	5	21 개	23 개	
수요자분류	재 분	기 계 공 업	조립금속, 기계, 정밀기기, 전자 공업	2종으로세분
		공 공 기 타	공공제조업, 공공기타	2종으로세분
13 ~ 16, 19 ~ 42		표준무역분류 (SKTC)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코드체계전환

機械受注統計調査票(I)

作成機關：經濟企劃院

承認番號：111-21-08

統計法の規定에 따라 이 調査票에
記載되는 内容은 統計目的에만 使用
하며 그 秘密은 絶對 保障됩니다.

(199 年 月分)

事業體固有番號

※ 提出期限：每月 12日

事業體名		所在地	代表者名	電話
事業體				
本社				

【作成上 留意事項】

1. 設備用 機械類를 自己企業內에 設備, 自家使用할 計劃인 경우에도 計劃이 確定되면 이를 受注額에 包含, 調査하여 주십시오.
2. 企業의 自體計劃生産分은 販賣時, 受注와 販賣가 同時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受注額과 販賣額에 各各 同額을 記載하여 주십시오.
3. 長期間의 工程을 要하는 機種의 販賣額은 既成高(進陟度金額)로 換算, 記入하여 주십시오.
4. 受注殘高欄에는 事業體의 總受注實績中에서 調査基準期間末 現在 아직 納品(販賣)하지 못한 受注額(殘額)을 記入하여 주십시오.
5. 今月分 受注殘高는 前月末 受注殘高에 今月分 受注額을 더하고 今月分 販賣額을 차감한 金額입니다.

備考

- 受注額 增減要因：
- 前月受注額 變動要因(減額事由)：

應答者部署	應答者	調査担当者
課		
(電話：)	⑩	⑩

機械受注統計調査票(Ⅱ)

作成機關：經濟企劃院

承認番號：111-21-08

統計法の規定에 따라 이 調査票에
記載되는 내용은 統計目的에만 使用
하며 그 秘密은 絶對 保障됩니다.

(199 年 月分)

事業體固有番號

--	--	--	--	--	--	--	--

※ 提出期限：每月 12日

事業體名	所在地	代表者名	電話
事業體			
本社			

【作成上 留意事項】

1. 設備用 機械類를 自己企業內에 設備, 自家使用할 計劃인 경우에도 計劃이 確定되면 이를 受注額에 包含, 調査하여 주십시오.
2. 企業의 自體計劃生産分은 販賣時, 受注와 販賣가 同時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受注額과 販賣額에 各各 同額을 記載하여 주십시오.
3. 長期間의 工程을 要하는 機種의 販賣額은 既成高(進陟度金額)로 換算, 記入하여 주십시오.
4. 受注殘高欄에는 事業體의 總受注實績中에서 調査基準期間末 現在 아직 納品(販賣)하지 못한 受注額(殘額)을 記入하여 주십시오.
5. 今月分 受注殘高는 前月末 受注殘高에 今月分 受注額을 더하고 今月分 販賣額을 차감한 金額입니다.

備考

- 受注額 增減要因:
- 前月受注額 變動要因(減額事由):

應答者部署	應答者	調査担当者
課		
(電話:)	①	②

건설업수주통계조사 지침서

1989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차 례

I. 조사개요	3
1. 조사목적	3
2. 조사연혁	3
3. 조사기준기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4
4. 조사범위	4
5. 조사대상처	4
6. 조사항목(사항)	5
II. 조사담당자 유의사항	6
1. 실 사	6
2. 유고사업체 처리	8
3. 조사표의 검토	9
III. 조사항목해설 및 조사표 기입요령	11
1. 주의사항	11
2. 기입요령	11
IV. 주요착오사례	15
1. 공중분류가 부정확한 경우	15
2. 발주자 분류가 부정확한 경우	16
3. 수주액 기재가 부정확한 경우	16

< 부록 >

1. 발주자별 분류해설	17
2. 품종별 분류해설	22
3. 주요 수정보완사항	25

I.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본 건설업수주 통계조사는 건설부장관 면허업체중 건설부장관 고시 도급한도액 순위상 대규모 순서로 170개사를 선정하여 국내외 건설공사 수주액을 매월 공종별 및 발주자별로 조사 집계함으로써 건설활동의 동향을 조기에 파악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 조사결과는 정부와 기업의 투자활동이나 건설업의 생산활동, 고용 및 건설자재 수급 등 건설행정 전반에 관한 기초자료가 되며 광범위한 일반의 이용에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동 조사는 경기예고지표 구성계열의 하나를 이루는 민간건설공사 수주액을 포함하고 있는 바 동 민간건설공사 수주액은 민간발주의 기계수주 조사와 함께 국내 설비투자의 동향을 반영하는 주요경기 선행지표가 된다.

2. 조사연혁

1975년 1월부터 1976년 6월까지 1년 6개월간의 시험조사를 거쳐 1976년 7월분 결과부터 매월 「건설업 수주동향」 속보에 수록 공표하고 있으며 1976년 7월 26일 지정통계(승인번호 제 111-11-15호)로 지정 고시되었다.

3. 조사기준기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조사기준기간은 매월 1일~말일까지로서, 각지방 통계사무소장은 전월의 수주액 조사표를 작성하여 매월 18일까지 중앙에 도착시킨다.

조사방법은 통계요원에 의한 타계식 방법으로 하되 자계식방법을 병행한다.

4. 조사범위

조사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 5, 건설업”으로 정의되는 국내의 건설공사의 수주액으로 원도급공사와 직영공사는 포함하나 하도급공사는 원칙으로 제외한다. 그러나 하도급받은 경우일지라도 국내 건설업체가 아닌 외국건설업체이거나 혹은 국내 종합무역상사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된다.

5. 조사대상처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도급한도액 순위상 대규모 순으로 170개사를 대상처로 하되 면허취소, 폐업, 장기휴업(6개월 이상) 등으로 대상업체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도급한도액 차순위 업체를 대상처로 추가 선정한다.

(단, 2개의 조사대상 건설업체가 합병될 경우에는 추가 선정하지 않음)

6. 조사항목 :

가. 국내건설공사 수주액 (직영공사인 자기공사계획액 포함) 및 해외건설
공사 수주액

나. 공종별

다. 발주자별

II. 조사담당자 유의사항

1. 실 사

가. 조사담당자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담당사업체를 방문, 조사표의 기입을 완료토록 해야 하며, 불의의 사고로 조사표 작성이 지연될 경우에는 2차, 3차 재방문하여 15일이전까지는 조사표기입을 완료해야 한다.

나. 규모가 큰 사업체로서 즉석에서 조사하기 곤란할 때는 기재요령을 충분히 설명한 후 조사표 회수를 위한 재방문 일자와 시간을 약속하고, 응답자 부재시에 면접할 제 2의 응답자를 지정받는다. 재방문 일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 직접 면담에 의해 조사표를 작성할 경우에는 항목간의 연관성 및 전월과의 대비등에 유념해야 한다. 타업체의 조사표와 조사기록부를 휴대방문하였을 때에는 타업체의 실적이 누설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조사담당자는 별도로 배부된 조사기록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고 조사 결과가 전월과 차이가 심할 때는 그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조사표 비교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마. 사업체에서 기입한 조사표를 회수할 때에는 즉석에서 반드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종명 및 발주자명이 한글(영문으로 기입되었을 시는 한글로 표기)로 정확히 기입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세분류공종명 및 발주자 명

은 하단의 세분류공종명 및 세분류발주자명 보기표를 참조하여 정확히 분류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또한 계약일자, 착공, 완공, 예정일자의 누락여부 및 합리성을 점검해야 한다.

(2) 대상사업체중 해외건설공사 면허를 소지한 대상사업체에 대하여는 반드시 국내공사 수주액자료 제공부서 뿐만 아니라 해외공사 수주액자료 제공부서(해외업무부 기획관리실등)도 방문하여 해외건설수주조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 방위와 관련된 발주자(국군부대, 유엔군 등)에 관한 조사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전술한 기입방법대로 기입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조사기록부 기록시에도 방위와 관련된 발주자에 관한 조사사항은 전술한 기입방법대로 기입하여 보완에 유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본 조사는 약 12,000개 건설업체중 대규모 170개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비록 단 1건의 수주액이라도 누락을 시킬 경우에는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누락이 안되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만일, 누락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거나 익월 조사분에 포함시키고 그 내용을 난외에 기입한다.

바. 조사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를 면접한 후 작성한다.(전화조사.엄금)

사. 조사표의 수주액 내역을 조달청 및 건설협회 자료와 비교 확인한 결과 누락되는 사례가 매월 발생하는 바,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한다.

아. 이미 발주한 공사액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개별의 공사건으

로 하여 일련번호, 공종별, 발주자별 부호를 부여하고 증감액을 기재한다.

자. 각 건설업체에서 시공할 자기공사 계획액을 누락시키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한다.

차. 건설회사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에는 발주자 분류를 부동산업으로 분류한다.(자기 사옥을 건축한 경우에는 기타 비제조업)

카. 수주계약 당시에 발주자급 원자재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면 금액으로 환산하여 계약액에 포함시킨다.

2. 유고사업체 처리

유고사업체라 함은 조사불응, 휴업, 폐업, 소재불명, 이전, 전업, 명칭변경등의 경우를 말하며, 담당사업체중 이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조사불응 사업체

(1) 재방문하여 조사취지를 충분히 설명, 협조를 구하고 그래도 계속 불응하면 소속 과·부장을 방문 협조를 구한다.

(2) 그래도 협조를 얻을 수 없을 때는 그 사유를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 당해 사업체를 관할하는 건설협회 시·도 지부에 측면지원을 요청토록 한다.

(3) 건설협회, 시·도 지부의 중용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여(방문일시 및 회수, 응답불응자, 협회, 중용일자, 기타사항) 즉시 중앙에 보고한다.

나. 휴업사업체

건설업은 계절변동에 민감한 사업으로 추운 동절에는 건설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도 사업체가 물리적인 건설활동을 중지할 뿐, 응찰, 기획, 계약등 사무적인 활동은 계속 영위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사업체의 외형적인 활동여부에 관계없이 조사담당자는 응답자를 직접 면담하여 휴업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대상업체가 완전히 업무를 중단하고 휴업일 경우에는 조사표 적요란에 그 사유를 기재 보고하되, 통계사무소장은 중앙에 그 사유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폐업사업체

대상 사업체중 폐업된 사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사업체를 관할 시·도 건설협회지부에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즉시 이를 중앙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이전사업체

동일 조사구내에서 이전한 경우에는 추적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며, 동일 사무소(시·도)내의 타조사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된 지역을 담당하는 자에게 신속히 인계하여 조사기간내에 조사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사무소장은 중앙에 즉시 보고하여 이전된 지역에서 당해 월에 조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3. 검토

접수된 조사표는 질의조회나 재조사 지시를 받지 않도록 다음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출한다.

가. 조사기준인 연, 월분이 정확히 기입되었나 확인하고 사업체번호 기입의 누락 또는 중복이 안되었나 검토한다.

나. 모든 금액단위는 “백만원” 단위이므로 “천원” 단위로 잘못 기입이 되었나 검토한다.

다. 공사명과 발주자명이 하단의 세분류 공종명 및 세분류 발주자명의 보기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에서 발주한 건축공사는 공종분류를 관공서로 분류하지 말고 사무실로 분류한다.

(2) 학교의 체육관·동물사육장등의 공사는 주건물(학교)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3) 직장 주택조합은 발주자분류를 기타비제조업으로 분류해야 한다.

(4) 농지개량조합에서 경지정리를 위한 토목공사 발주는 「농림·수산」으로 분류한다.(「토지조성」으로 분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5) 재개발사업을 위한 「○○재개발사업」은 발주자분류를 기타 비제조업으로 분류한다.(기타 공공단체가 아님)

라. 국내 타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수주액이 착오로 포함되었는지 검토한다.

마. 조달청이 공공기관을 대행 발주한 경우에 원발주자(실수요처)가 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주자명을 “조달청”이라고 잘못 기입되었나 확인한다.

바. 계약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공사건으로 하여 공사명등 모든 조사항목을 기재하고 증액시에는 (+)기호를, 감액시에는 (-)기호를 증감액분앞에 표시하도록 하였는바 이의 여부를 검토한다.

사. 기타 기입사항의 오기, 누락 여부를 재검토한다.

Ⅲ. 조사항목해설 및 조사표 기입요령

1. 주의사항

- 가. 조사표는 반드시 청색 또는 흑색 잉크나 볼펜을 사용하여 각 란에 맞도록 깨끗이 기입한다.
- 나. 숫자는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4와6, 0과6, 3과8, 7과9, 4와9 등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히 기입한다.
- 다. 금액의 단위는 백만원이며 백만원 미만은 사사오입하여 기입한다.
- 라. 오기된 내용을 정정코자 할 때는 오기된 곳에 두줄 횡선을 긋고 그 바로 위에 정정내용을 기입한다.
- 마. 각 항목에서 전월과 현저한 차이가 날 때는 그 사유를 적요란에 상세히 기입한다.
- 바. 각 통계사무소에서 중앙으로 제출시 조사표 좌측 상단의 「※사업체 일련번호」란에는 한자로 사업체명을, 해외건설수주내역에서 「※지역부호」란에는 발주국부호를 각각 기입한다.
- 사. 해당되는 공사의 기입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타조사표를 사용하여 모두 기입하고, 그 매수를 반드시 기입한다.
- 아. 본 조사는 신속성이 중요하므로 제출기일을 엄수해야 한다.
- 자. 조사표 뒷면의 문의전화는 각 지방사무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배부한다.

2. 기입요령

가. 사업체번호

사업체번호는 지정된 번호를 기입한다. 따라서 사업체번호 기입을

누락하거나 중복이 안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국내건설공사 수주내역

(1) 도급공사계약

(가) 조사대상월중 발주자와 계약체결한 모든 건설공사내역을 공사건별로 기입한다.

(나) 국내의 타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외국건설업체나 국내종합무역상사 등으로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된다.

(다) 수주기준일은 최종계약체결일로 한다.

즉, 응찰중에 있거나 설계작성중 또는 계약체결전의 일부 착공등은 수주액에 모두 포함되지 않으며 낙찰되어 아직 계약체결이 안된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2) 자기공사계획(또는 착공)내역

(가) 자기공사라 함은 조사대상 건설업체의 필요에 의하여 자기가 시공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계약에 의하지 않은 산하기업 또는 모기업을 위한 공우도 포함한다.

(나) 자기공사의 수주기준일은 계획이 확정된 때, 즉 조사대상 건설업체의 결재권자가 결재를 완료한 때를 말한다.

그러나 계획확정없이 착공하는 경우에는 착공당시를 수주기준일로 하여 우선 대략적인 예정공사액을 보고하여 계획이 확정된 월에 공사액의 증감을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명 및 세분류공종명

(가) 공사명은 공종분류를 위하여 필요한 바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입한다.

(나) 공중분류 부호는 하단의 세분류 공중명에 따라 부호를 기입한다.

(다) 방위와 관련된 건설공사인 경우

방위와 관련된 건설공사라 함은 군부대(유엔군포함)의 공사뿐만 아니라 국영기업체, 민간등의 건설공사도 안보상 비밀을 요하는 경우를 말하며, 방위와 관련된 공사명은 ○○공사라고만 기입하고, 군인아파트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분류한다.

(4) 발주자명 및 세분류발주자명

(가) 발주자명은 계약상에 나타난 정식명칭을 기입하며, 세분류 발주자명은 조사표 하단을 참조하여 세분류명을 기입한다.

(나) 조달청장이 공공기관을 대행발주한 경우에는 원발주처(실수요처)를 발주자로 하여 기입한다. 따라서 원발주처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주자명을 조달청이라고 기입해서는 안된다.

(다) 방위와 관련된 공사인 경우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기입한다. 예컨대 발주처가 군부대인 경우 군부대명 대신 “정부”, 세분류 발주자명도 “정부”로 기입하고, 유엔군이면 “주한외국기관”으로 각각 기입한다.

(라) 계약에 의하지 않은 산하기업 또는 모기업을 위한 자기공사인 경우는 그 계열회사명을 기입한다.

(5) 수주액

(가) 수주액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건설업체가 발주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액을 말하나, 본 조사의 수주액은 공사공급가액 뿐만 아니라 공사공급가액에 10%를 가산한 매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발주자급 원자재지급계획액도 포함한다.

(나) 자기공사인 경우는 자기공사계획확정시(또는 착공시) 그 공사에 소요될 총공사비가 수주액이 된다.

(다) 발주자가 공사계약체결시 공사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건설업체에 지급키로 한 경우에는 원자재를 계약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 발주자급 원자재 지급계획액란에 기입한다.

(라) 계약변경과 자기공사의 계획확정 또는 변경등으로 수주액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변경된 수주액 내역을 공사건별로 조사 기입하되 증액시에는 증액분앞에 (+)기호를 붙이고, 감액시에는 감액분 앞에 (-)기호를 붙여 기입한다.

다. 해외건설공사 수주내역

(1) 해외수주는 계약당시의 외화(\$화로 환산) 및 환율(한국은행집중기준율)을 적용한 원화환산치로 기입하되 외화(미국화로 환산)는 천불, 원화환산치는 백만원 단위로 해당란에 기입한다.

(2) 해외수주는 발주자급원자재 지급계획액을 포함치 않는다.

(3) 계약변경으로 수주액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의 경우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Ⅳ. 주요착오사례

1. 공종분류가 부정확한 경우

공 사 명	잘 못 분 류	바 른 분 류
• 한전온양사옥 신축	101. 주 택	102. 사 무 실
• 국제공항관리공단청사 건축	104. 관 공 서	102. 사 무 실
• 삼성전관 수원기숙사 증축	102. 숙 박 시 설	101. 주 택
• 대한지적공사출장소 신축	101. 주 택	102. 사 무 실
• 삼성반도체통신교육관 건축	102. 사 무 실	104. 교육시설
• ○○학교 체육관(야구장등)	208. 경 기 장	104. 학 교
• 농업용수 개발사업	201. 치산·치수	202. 농 림
• 서산군민회관 신축	105. 기타 건축	104. 관 공 서
• 석우천배수개선사업 (발주처:농지개발조합)	206. 상·하수도	202. 농 림
• 대전세무서 이전공사	102. 사 무 실	104. 관 공 서
• ○○지구경지정리사업	208. 토지 조정	202. 농 림
• ○○학교 동물사육장	105. 기타 건축	104. 학 교

2. 발주자 분류가 부정확한 경우

발 주 자 명	잘 못 분 류	바 른 분 류
• 동서식품	222. 상업, 서비스	211. 음식료품
• 직장주택조합	222. 상업, 서비스 금융, 보험	225. 기타비제조업
• 포항종합제철	214. 철 강 업	103. 국영기업체
• 안산주택건설(분양 및 임대목적의 공사)	225. 기타비제조업	223. 부 동 산
• 재개발 사업조합	223. 부 동 산	225. 기타비제조업
• 한국중공업	103. 국영기업체	215 기계, 장치
• 한국전력공사	104. 국영기업체	103. 국영기업체
• ○○지방 국토관리청	102. 지방자치단체	101. 정 부
• 대한주택공사	223. 부 동 산	103. 국영기업체
• 한국표준연구소	102. 기타공공단체	104. 기타공공단체
• 대한교육연합회	104. 기타공공단체	222. 상업, 서비스 금융, 보험
• ○○교회	225. 기타비제조업	222. 상업, 서비스 금융, 보험

3. 수주액 기재가 부정확한 경우

공 사 명	발 주 자 명	수 주 액(백만원)	
		잘못분류	바른분류
• 신갈-반월간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38,173	13,973

<부록>

1. 발주자별 분류해설

가. 국내 공공부문 발주

101. 정 부

중앙행정기관(각원, 부, 처, 청),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주재기관(각급
검찰관서, 각급경찰관서, 각급세무관서, 각급관세관서, 각급체신관서, 조달
관서, 지방통계사무소, 농촌지도소, 지방국토관리청 등), 각급군부대, 각
급국립학교(국립대학교 및 부속 초·중·고등학교, 경기, 대전, 부산개
방대학 등), 각종헌법기관(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
위원회 등), 중앙정부위원회(사회정화위원회 등), 입법부(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등), 사법부(대법원, 각급법원 및 지원, 등기소 등)

102.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 각도 구·시·군,
시·도교육위원회, 구·시·군교육청, 공립학교(사립학교는 민간 비제조
업의 금융보험 및 상업 서비스업에 분류), 소방관서 등

103. 국영기업체

국가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으로서 국책은행 및
국영기업체와 지방공기업중 서울시 지하철공사를 말한다.

△ 국책은행;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의환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
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 국영기업체; 농업진흥공사,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
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
무역진흥공사, 농어촌개발공사, 한국해외개발공사, 한국관
광공사, 한국방송공사, 근로복지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기
술개발주식회사, 서울시지하철공사 등

△ 국영기업체(제조업) : 포항제철주식회사, 한국냉장주식회사, 영남화학
주식회사, 한국조폐공사, 국정교과서주식회사,
진해화학주식회사, (주)한주, 한국종합화학주식회
사, 한국송유관주식회사 등

104. 기타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으로서 공공복리를 위한 각종조
합(농협, 수협, 축협, 농지개발조합), 영조물법인, 각종연구소, 대한적십
자사 등. (단, 다수의 개인이 재개발을 위한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조
합을 건립한 경우에는 기타 비제조업으로 분류)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관리연구소, 국방품질연구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소,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에너지관
리공단, 국토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서울대학
교병원,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한국과학기술원, 해양연구소, 한국에너지
연구소, 한국표준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한국전자기술연구소, 한국과학
재단, 재단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소,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한국개발연구원,
사회정화국민운동추진협의회,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한국어업기술훈련소,

한국인구보건연구원, 갱생보호회, 세계반공연맹사무국, 남북평화통일연구소, 한국어선협회, 대한체육회, 한국인삼연초연구원, 한국전기통신연구소, 서울종합직원훈련원, 대한나협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한결핵협회,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아시아경기조직위원회, 성업공사, 교통안전진흥공단, 국제공항관리공단,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문예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한국보훈복지공단, 예술의 전당등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강남병원, 부산의료원, 제주의료원, 의정부의료원, 이천의료원, 안성의료원, 금촌의료원, 춘천의료원, 강릉의료원, 원주의료원, 속초의료원, 영월의료원, 삼척의료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목포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김천의료원, 마산의료원, 진주의료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금강도선공사, 부산위생주식회사, 대구개발주식회사, 주식회사인천개발공사, 주식회사경기개발공사, 경북개발주식회사, 주식회사대전종합개발주식회사 등

나. 국내 민간부문발주

(1) 제조업

211. 음식료품제조업

도살, 육류가공 및 저장, 육류포장, 낙농제품, 통조림가공, 동식물기름제조가공, 도정, 제분, 장류제조, 사료제조, 주류, 누룩제조, 설탕제조, 어류제조, 조미료제조업 등

212. 의류제조업

직물, 가방, 편직, 어망, 로푸, 방석, 제사, 방직, 표백, 염색, 비옷, 가죽, 돗자리제조업 및 자수업 등

213. 화학, 석유제조업

공업용화학제품, 비료, 농약, 합성수지, 프라스틱, 도료, 안료, 의약품, 비누, 향료, 폭약, 성냥, 사진감광제, 잉크, 석유정제, 연료, 고무제품, 타이어, 고무신, 에보나이트, 화장품제조업 등

214. 철강제조업

제철, 제강, 압연, 주물 기타 비철금속제련업 등

215. 기계제조업

금속제품, 구조물, 장치틀 베어링, 볼트, 너트, 케이블등의 금속소재, 기계요소, 일반기계, 전기기기, 자전거, 자동차,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등의 수송장비, 과학계측기, 카메라, 기계, 안경등의 정밀기기 제조업 등

216. 기 타

제재, 제지, 신문, 가구, 합판, 인쇄, 출판, 유리, 악기, 장난감, 운동구, 귀금속, 우산, 필기, 사무용품, 고공품, 시멘트 제조업 등

(2) 비제조업

221. 운수·보관창고업

운수, 창고, 파이프라인운송, 수상운송, 항만시설대여, 항공운수, 보관업 등

222. 금융, 보험, 상업 및 서비스업

시중은행, 증권회사, 전당포, 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 부동산중개, 토지

매매, 여관, 영화관, 문화서어비스, 법무, 회계서어비스, 자료처리, 종교, 복지, 토목건축설계사무소, 광고, 민영방송, 각종협회(한국무역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통계협회 등), 통신소, 교육, 의료, 도소매업, 장의사, 각종 수리업, 현대사회연구소 등

223. 부동산업

대점포, 대사무실, 주택(아파트) 건축분양 및 임대 등

224. 광업

석탄, 원유, 천연가스 채취, 금속광업, 모래, 사리, 석회석, 점토, 석면, 장식, 암석, 석재채취등의 광업

225. 기타

농림어업, 건설업, 수산업, 전기, 가스, 수도업 등

다. 국내 외국기관

주한외군, 외국상사, 주한외국공관등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기관

라. 해 외

외국정부나 민간등에서 발주한 것으로 공사지역이 국내가 아닌 경우

2. 공종별 분류해설

가. 건 축

101. 주 택 (주거용 건축물)

단독주택, 아파트(군인아파트 포함), 기숙사, 연립주택(산업용과 주거용 혼합건물인 경우에는 주거용의 면적이 연면적의 50%이상인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분류한다.)

102. 사무실, 점포, 숙박시설, 오락장

사무실, 은행, 점포, 백화점, 오락장, 영화관, 극장, 여관, 호텔, 욕탕, 이·미용실, 방송국, 시장 등

103. 공장, 창고

공장구내 제건물(주택, 기숙사, 병원 제외)

발전소건물, 변전소건물, 영업창고, 농업창고, 보세창고 등

104. 학교, 병원, 관공서 청사

교육시설(교사, 강당, 시험소, 교습소, 연구소,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수족관 등)

후생시설(병원, 보건소, 육아소, 교아원, 양로원, 기타 보호시설 등)

관공서 청사(각종 관공서 청사, 공회당, 소방서, 관상대 등)

105. 기타 건축

철도(기관차 차고, 정거장 제건물), 부두(보세창고, 영업창고를 제외한 부두 제건물), 공항(격납고를 포함한 공항 제건물)

교정시설(교도소, 소년원, 부녀보호소 등)

기타(사관학교, 사찰, 교회, 체육관, 박람회 건물, 화장장, 군막사, 우사등)

나. 토 목

201. 치산, 치수

하천공사, 사방공사, 치산, 해안제방, 해안침식 대책, 개수공사 등

202. 농림, 수산

농업시설공사, 간척, 개간, 관개, 어항, 양식시설 등

203. 도로, 교량

도로, 교량, 광장, 육교, 고가도로, 지하도 등

204. 항만, 공항

항만, 부두설비, 방파제, 부교, 급유설비, 저탄장, 저목장, 활주로 등

205. 철도, 궤도

철도, 지하철, 철도교량, 레일공사, 침목공사 등

206. 상·하수도

취수, 정수, 배수 등 상수도 설비공사, 측구,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하수도 등

207. 발전, 송전, 변전, 배전시설

수력, 화력, 원자력 발전, 송·변전, 옥외배전시설, 전화노선공사 등

208. 토지조성, 공원, 운동장, 경기장

매립, 정지, 택지조성, 공원, 운동장, 경마장, 유원지, 조경공사 등

209. 댐

댐시설, 취수설비 등

210. 기계설치

각종 기계설치, 기중기설치 등

211. 기타 토목

터널공사, 준설, 색도 등

다. 전문 공사

300. . . 연관난방(연관, 난방, 환기, 냉방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옥내배수설비, 건조장치, 제빙장치, 기타 배관 등)
- 도장, 도배, 실내장식(시멘트 뿔어붙이기, 단청공사 등)
 - 전기, 통신(옥내배선, 조명시설, 옥내전화, 설치공사, 화재경보기설치공사 등)
 - 석공, 미장(석재가공부착, 부록쌓기, 타일부착 등)
 - 목공(목공, 마루깔기 등)
 - 지붕잇기, 합석공사
 - 구조강건립(철골조건설, 철근, 판금, 금속제삿슈, 비상계단공사 등)
 - 방수, 방습, 내화
 - 기타(유리, 굴정, 해체, 굴뚝설치, 열절연, 집진장치, 온돌, 비계, 창호, 축로, 조원공사, 칸막이, 천정공사 등)
- 단, 건물에 부속된 냉·난방, 환기, 급배수, 전기, 가스, 오물처리, 방화, 승강기 등 각종 설비의 설비공사가 건물공사 등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체가 되는 공사의 분류에 포함시킨다.
- 또한 부속건물(창고, 차고 등)이나 문따위 공사도 주건물의 공사분류로 분류한다.

3. 주요수정보완사항

'88년도 지침서	'89년도 지침서	비고
<p>P.10</p> <p>※난은 기입하지 않는다.</p>	<p>각 통계사무소에서 중앙으로 제출시 조사표 좌측상단의 “※사업체일련번호”란에는 한자로 사업체명을, 해외건설수주내역에서 “※지역부호”란에는 발주국부호를 각각 기입한다.</p>	조사방법 보완
<p>P. 14-15</p> <p>'89년도 신설</p>	<p>Ⅳ. 주요착오사례</p> <p>1. 공종분류가 부정확한 경우</p> <p>2. 발주자 분류가 부정확한 경우</p> <p>3. 수주액 기재가 부정확한 경우</p>	신 설
<p>P.16</p> <p>농촌지도소 등 (국립대학교 및 부속 초·중·고등 학교 등)</p>	<p>농촌지도소, 지방국토관리청 등 (국립대학교 및 부속 초·중·고등학교, 경기, 대전, 부산개방대학 등)</p>	조사범위 보완
<p>P.17</p> <p>동해펄프주식회사</p>	<p>한국송유관주식회사</p>	//
<p>P.18</p> <p>문예진흥원 등</p>	<p>문예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한국보훈 복지공단, 예술의 전당 등</p>	//
<p>P.19</p> <p>각종수리업 등</p>	<p>각종수리업, 현대사회연구소 등</p>	//

建設業受注統計調査 指針書

1990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차 례

I. 조사개요	3
1. 조사목적	3
2. 조사연혁	3
3. 조사기준기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4
4. 조사범위	4
5. 조사대상처	4
6. 조사항목(사항)	4
II. 조사담당자 유의사항	5
1. 실 사	5
2. 유고사업체 처리	7
3. 조사표 검토	8
III. 조사항목해설 및 조사표 기입요령	11
1. 주의사항	11
2. 조사표 기입요령	11
VI. 주요착오사례	15
1. 공종분류가 부정확한 경우	15
2. 발주자 분류가 부정확한 경우	16
3. 수주액 기제가 부정확한 경우	16
4. 조사착오 사례	17

<부록>

1. 발주자별 분류해설	19
2. 공종별 분류해설	24
3. 주요 수정보완사항	27
4. 중점강조사항	29

I.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본 건설업수주 통계조사는 건설부장관 면허업체중 건설부장관 고시 도급 한도액 순위상 대규모 순서로 170개사를 선정하여 국내외 건설공사 수주액을 매월 공종별 및 발주자별로 조사 집계함으로써 건설활동의 동향을 조기에 파악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 조사결과는 정부와 기업의 투자활동이나 건설업의 생산활동, 고용 및 건설자재 수급 등 건설행정 전반에 관한 기초자료가 되며 광범위한 일반의 이용에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동 조사는 경기에고지표 구성계열의 하나를 이루는 민간건설공사 수주액을 포함하고 있는 바 동 민간건설공사 수주액은 민간발주의 기계 수주조사와 함께 국내 설비투자의 동향을 반영하는 주요경기 선행지표가 된다.

2. 조사연혁

1975년 1월부터 1976년 6월까지 1년 6개월간의 시험조사를 거쳐 1976년 7월분 결과부터 매월 「건설 수주동향」 월보에 수록 공표하고 있으며 1976년 7월26일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11-11-15호)로 지정 고시 되었다.

3. 조사기준기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조사기준기간은 매월 1일~말일까지로서, 각지방 통계사무소장은 전월의 수주액 조사표를 작성하여 매월 19일까지 중앙에 도착시킨다.

조사방법은 통계요원에 의한 타계식 방법으로 하되 자계식방법을 병행한다.

4. 조사범위

조사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5, 건설업"으로 정의되는 국내의 건설공사의 수주액으로 원도급공사와 직영공사는 포함하나 하도급공사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그러나 하도급받은 경우일지라도 국내 건설업체가 아닌 외국건설업체이거나 혹은 국내 종합무역상사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된다.

5. 조사대상처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도급한도액 순위상 대규모 순으로 170개사를 대상처로 하되 면허취소, 폐업, 장기휴업(6개월 이상) 등으로 대상업체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도급한도액 차순위 업체를 대상처로 추가 선정한다.

(단, 2개의 조사대상 건설업체가 합병될 경우에는 추가 선정하지 않음)

6. 조사항목

가.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직영공사인 자기공사계획액 포함) 및 해외건설공사 수주액

나. 공종별

다. 발주자별

Ⅱ. 조사담당자 유의사항

1. 실 사

- 가. 조사담당자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담당사업체를 방문, 조사표의 기입을 완료토록 해야 하며, 불의의 사고로 조사표 작성이 지연될 경우에는 2차, 3차 재방문하여 15일이전까지는 조사표기입을 완료 해야 한다.
- 나. 규모가 큰 사업체로서 즉석에서 조사하기 곤란할 때는 기재요령을 충분히 설명한 후 조사표 회수를 위한 재방문 일자와 시간을 약속하고, 응답자 부재시 면접할 제2의 응답자를 지정받는다. 재방문 일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 다. 직접 면담에 의해 조사표를 작성할 경우에는 항목간의 연관성 및 전월과의 대비등에 유념해야 한다. 타업체의 조사표와 조사기록부를 휴대 방문하였을 때에는 타업체의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라. 조사담당자는 별도로 배부된 조사기록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고 조사 결과가 전월과 차이가 심할 때는 그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조사표 비교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 마. 사업체에서 기입한 조사표를 회수할 때에는 즉석에서 반드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1) 공중명 및 발주자명이 한글(영문으로 기입되었을 시는 한글로 표기)로 정확히 기입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세분류공중명 및 발주자명은 하단의 세분류공중명 및 세분류발주자명 보기표를 참조하여 정확히 분류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또한 계약일자, 착공, 완공 예정일자

의 누락여부 및 합리성을 점검해야 한다.

(2) 대상사업체중 해외건설공사 면허를 소지한 대상사업체에 대하여는 반드시 국내공사 수주액자료 제공부서 뿐만 아니라 해외공사 수주액 자료 제공부서(해외업무부 기획관리실등)도 방문하여 해외건설수주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 방위와 관련된 발주자(국군부대, 유엔군 등)에 관한 조사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전술한 기입방법대로 기입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조사기록부 기록시에도 방위와 관련된 발주자에 관한 조사사항은 전술한 기입방법대로 기입하여 보완에 유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본 조사는 약 14,000개 건설업체중 대규모 170개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비록 단 1건의 수주액이라도 누락을 시킬 경우에는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누락이 안되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만일, 누락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거나 익월 조사분에 포함시키고 그 내용을 비교란에 기입한다.

바. 조사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를 면접한 후 작성한다. (전화조사 엄금)

사. 조사표의 수주액 내역을 조달청 및 건설협회 자료와 비교 확인한 결과 누락되는 사례가 이따금 발생하는 바,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한다.

아. 이미 발주한 공사액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개별의 공사건으로 하여 일련번호, 공종별, 발주자별 부호를 부여하고 수주액 앞에는(+),

(-)부호를 기입하며 우측 여백에 "증액"또는 "감액"으로 표시한다.

자. 각 건설업체에서 시공할 자기공사 계획액을 누락시키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한다.

차. 건설회사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에는 발주자 분류를 부동산업으로 분류한다. (자기 사옥을 건축한 경우에는 기타 비제조업)

카. 수주계약 당시에 발주자급 원자재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면 금액으로 환산하여 계약액에 포함시킨다.

2. 유고사업체 처리

유고사업체라 함은 조사불응, 휴업, 폐업, 소재불명, 이전, 전업, 명칭변경 등의 경우를 말하며, 담당사업체중 이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조사불응 사업체

(1) 재방문하여 조사취지를 충분히 설명, 협조를 구하고 그래도 계속 불응하면 소속 과.부장을 방문하여 협조를 구한다.

(2) 그래도 협조를 얻을 수 없을 때는 그 사유를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 당해 사업체를 관할하는 건설협회 시.도 지부에 측면지원을 요청토록 한다.

(3) 건설협회 시.도 지부의 종용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여(방문일시 및 회수, 응답불응자, 협회, 종용일자, 기타사항) 즉시 중앙에 보고한다.

나. 휴업사업체

건설업은 계절변동에 민감한 사업으로 추운 동절에는 건설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도 사업체가 물리적인 건설활동을 중지할 뿐, 응찰, 기획, 계약등 사무적인 활동은 계속 영위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사업체의 외형적인 활동여부에 관계없이 조사담당자는 응답자를 직접 면담하여 휴업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대상업체가 완전히 업무를 중단하고 휴업일 경우에는 조사표 적요란에 그 사유를 기재 보고하되, 통계사무소장은 중앙에 그 사유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폐업사업체

대상 사업체중 폐업된 사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사업체를 관할 시.도 건설협회지부에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즉시 이를 중앙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이전사업체

동일 조사구내에서 이전한 경우에는 추적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며, 동일 사무소(시.도)내의 타조사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된 지역을 담당하는 자에게 신속히 인계하여 조사기간내에 조사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사무소장은 중앙에 즉시 보고하여 이전 지역에서 당해 월에 조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3. 검토

접수된 조사표는 질의조회나 재조사 지시를 받지 않도록 다음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출한다.

가. 조사기준인 연, 월분이 정확히 기입되었나 확인하고 사업체번호 기입의 누락 또는 중복이 안되었나 검토한다.

나. 모든 금액단위는 "백만원"단위이므로 "천원"단위로 잘못 기입되었나 검토한다.

다. 공사명과 발주자명이 하단의 세분류 공종명 및 세분류 발주자명의 보기표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확인한다.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에서 발주한 건축공사는 공종분류를 관공서로 분류하지 말고 사무실로 분류한다.

(2) 학교의 운동장(테니스, 야구장 등)의 공사는 주건물(학교)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경기장으로 분류한다.

(3) 직장 주택조합은 발주자분류를 기타비제조업으로 분류해야 한다.

(4) 농지개량조합에서 경지정리를 위한 토목공사 발주는 「농림, 수산」으로 분류한다. (「토지조성」으로 분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5) 재개발사업을 위한 「00재개발사업」은 발주자분류를 기타 비제조업으로 분류한다. (기타 공공단체가 아님)

라. 국내 타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수주액이 착오로 포함되었는지 검토한다.

마. 조달청이 공공기관을 대행 발주한 경우에 원발주자(실수요처)가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주자명을 "조달청"이라고 잘못 기입되었나 확인한다.

바. 계약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나의 공사건으로 하여 공사명등 모든 조사항목을 기재하고 증액시에는 (+)기호를, 감액시에는 (-)기호를 증감액분앞에 표시하도록 하였는바 이의 여부를 검토한다.

사. 기타 기입사항이 오기, 누락 여부를 재검토한다.

Ⅲ. 조사항목해설 및 조사표 기입요령

1. 주의사항

- 가. 조사표는 반드시 청색 또는 흑색 잉크나 볼펜을 사용하여 각 란에 맞도록 깨끗이 기입한다. (단, 사업체번호, 공종 및 발주자분류부호, 공사지역 부호는 적색으로 기입함)
- 나. 숫자는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4와6, 0과6, 3과8, 7과9, 4와9등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히 기입한다.
- 다. 금액의 단위는 백만원이며 백만원 미만은 사사오입하여 기입한다.
- 라. 오기된 내용을 정정코자 할 때는 오기된 곳에 두줄 횡선을 긋고 그 바로 위에 정정내용을 기입한다.
- 마. 각 항목에서 전월과 현저한 차이가 날 때는 그 사유를 적요란에 상세히 기입한다.
- 바. 각 통계사무소에서 증양으로 제출시 조사표 좌측 상단의 「※사업체명」 란에는 한자로 사업체명을, 해외건설수주내역에서 「※지역부호」 란에는 발주국부호를 각각 기입한다.
- 사. 해당되는 공사의 기입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타조사표를 사용하여 모두 기입하고, 그 매수를 반드시 기입한다.
- 아. 본 조사는 신속성이 중요하므로 제출기일을 엄수해야 한다.
- 자. 조사표 뒷면의 문의전화는 각 지방사무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배부한다.

2. 조사표 기입요령

- 가. 사업체번호

사업체번호는 지정된 번호를 기입한다. 따라서 사업체번호 기입을 누락하거나 중복이 안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국내건설공사 수주내역

(1) 도급공사계약

(가) 조사대상월중 발주자와 계약체결한 모든 건설공사내역을 공사건별로 기입한다.

(나) 국내의 타건설업체로 부터 하도급받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외국건설업체나 국내종합무역상사 등으로 부터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된다.

(다) 수주기준일은 최종계약체결일로 한다.

즉, 응찰중에 있거나 설계작성중 또는 계약체결전의 일부 착공등은 수주액이 모두 포함되지 않으며 낙찰되어 아직 계약체결이 안된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2) 자기공사계획(또는 착공)내역

(가) 자기공사라 함은 조사대상 건설업체의 필요에 의하여 자기가 시공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계약에 의하지 않은 산하기업 또는 모기업을 위한 경우도 포함한다.

(나) 자기공사의 수주기준일은 계획이 확정된 때, 즉 조사대상 건설업체의 결재권자가 결재를 완료한 때를 말한다.

그러나 계획확정없이 착공하는 경우에는 착공당시를 수주기준일로 하여 우선 대략적인 예정공사액을 보고하여 계획이 확정된 월에 공사액의 증감을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명 및 세분류공종명

- (가) 공사명은 공종분류를 위하여 필요한 바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입한다.
- (나) 공종분류 부호는 하단의 세분류 공종명에 따라 부호를 기입한다.
- (다) 방위와 관련된 건설공사인 경우
방위와 관련된 건설공사라 함은 군부대(유엔군포함)의 공사뿐만 아니라 국영기업체, 민간등의 건설공사도 안보상 비밀을 요하는 경우를 말하며, 방위와 관련된 공사명은 00공사라고만 기입하고, 군인 아파트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분류한다.

(4) 발주자명 및 세분류발주자명

- (가) 발주자명은 계약상에 나타난 정식명칭을 기입하며, 세분류 발주자명은 조사표 하단을 참조하여 세분류명을 기입한다.
- (나) 조달청장이 공공기관을 대형발주한 경우에는 원발주처(실수요처)를 발주자로 하여 기입한다. 따라서 원발주처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주자명을 조달청이라고 기입해서는 안된다.
- (다) 방위와 관련된 공사인 경우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기입한다. 예컨대 발주처가 군부대인 경우 군부대명 대신 "정부" 세분류 발주자명도 "정부"로 기입하고, 유엔군이면 "주한외국기관"으로 각각 기입한다.
- (라) 계약에 의하지 않은 산하기업 또는 모기업을 위한 자기공사인 경우는 그 계열회사명을 기입한다.

(5) 수주액

- (가) 수주액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건설업체가 발주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액을 말하나, 본 조사의 수주액은 공사공급가액 뿐만 아니라 공사공급가액 10%를 가산한 매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발주자급 원자재지급계획액도 포함한다.
- (나) 자기공사인 경우는 자기공사계획확정시(또는 착공시) 그 공사에 소요될 총공사비가 수주액이 된다.
- (다) 발주자가 공사계약체결시 공사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건설업체에 지급기로 한 경우에는 원자재를 계약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 발주자급 원자재 지급계획액란에 기입한다.
- (라) 계약변경과 자기공사의 계획확정 또는 변경등으로 수주액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변경된 수주액 내역을 공사건별로 조사 기입하되 증액시에는 증액분앞에 (+)기호를 붙이고, 감액시에는 감액분앞에 (-)기호를 붙여 기입하고 우측여백에 "증액" 또는 "감액" 으로 표시한다.

(6) 공사지역명 및 공사지역 부호

공사지역명은 해당 시.도를 기입하고 공사지역 부호는 조사표 하단을 참조하여 적색으로 기입한다.

다. 해외건설공사 수주내역

- (1) 해외수주는 계약당시의 외화(\$화로 환산) 및 환율(한국은행 집중기준율)을 적용한 원화환산치로 기입하되 외화(미국화로 환산)는 천불, 원화환산치는 백만원 단위로 해당란에 기입한다.

(2) 해외수주는 발주자급원자재 지급계획액을 포함치 않는다.

(3) 계약변경으로 수주액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의 경우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Ⅳ. 주요착오 사례

1. 공종분류가 부정확한 경우

공 사 명	잘 못 분 류	바 른 분 류
· 한전은양사옥 신축	101. 주 택	102. 사 무 실
· 국제공항관리공단청사 건축	104. 관 공 서	102. 사 무 실
· 삼성전관 수원기숙사 증축	102. 숙박시설	101. 주 택
· 대한지적공사출장소 신축	101. 주 택	102. 사 무 실
· 삼성반도체통신교육관 건축	102. 사 무 실	104. 교육시설
· ○○학교 테니스 및 야구장등	104. 학 교	208. 경 기 장
· 농업용수 개발사업	201. 치산, 치수	202. 농 림
· 서산군민회관 신축	105. 기타 건축	104. 관 공 서
· 석우천 배수개선사업 (발주처:농지개발조합)	206. 상.하수도	202. 농 림
· 대전세무서 이전공사	102. 사 무 실	104. 관 공 서
· ○○지구경지 정리사업	208. 토지조정	202. 농 림
· 도로유관 관로공사 (발주처:전신전화국)	203. 도 로	207. 전화공사

2. 발주자 분류가 부정확한 경우

발 주 자 명	잘 못 분 류	바 른 분 류
· 동서식품	222. 상업, 서비스	211. 음식료품
· 직장주택조합	222. 상업, 서비스 금융, 보험	225. 기타비제조업
· 포항종합제철	214. 철 강 업	103. 국영기업체
· 안산주택건설(분양 및 임대 목적의 공사)	225. 기타비제조업	223. 부 동 산
· 재개발 사업조합	223. 부 동 산	225. 기타비제조업
· 한국중공업	215. 기계, 장 치	103. 국영기업체
· 한국전력공사	104. 국 영 기 업 체	103. 국영기업체
· ○○지방 국토관리청	102. 지방 자치단체	101. 정 부
· 대한주택공사	223. 부 동 산	103. 국영기업체
· 한국표준연구소	102. 기타 공공단체	104. 기타공공단체
· 대한교육연합회	102. 기타 공공단체	222. 상업, 서비스 금융, 보험
· ○○교회	225. 기타 비제조업	222. 상업, 서비스 금융, 보험

3. 수주액 기재가 부정확한 경우

공 사 명	발 주 자 명	수 주 액	
		잘 못 분 류	바 른 분 류
· 신갈-반월간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38,173	13,973

4. 조사착오사례

가. 발주자분류부호 착오

공사명	발주자명	분류착오	바른분류
· 동아일보 사옥신축	동아일보사	225. 기타제조	216. 기타제조
· 창천동남빌딩 신축	개인	225. 부동산	223. 부동산
· 평창154KV철탑공사	한국전력공사	104. 국영기업	103. 국영기업
· 금호강상수도 확장	대구직할시	103. 지방자치	102. 지방자치
· 국도 12호선 개수 공사	제주국도유지 건설사무소	103. 정부	101. 정부

나. 세분류발주자명 및 발주자분류부호 착오

공사명	발주자명	분류착오	바른분류
· 월드타워오피스텔 신축공사(분양)	동신페인트	213. 화학	223. 부동산
· 타워 콘도미니엄 신축공사(분양)	쌍용양회	216. 기타제조	223. 부동산
· 갈현동 조합주택 아파트 공사	서울시경 주택 조합	101. 정부	225. 기타비제 조업
· 동부지서 신축공사	거제경찰서	102. 지방자치	101. 정부
· 주왕산주차장 조성	국립공원관리 공단	103. 국영기업	104. 기타공공 단체
· 비상용 기계설치 공사	한국지역난방 공사	104. 기타공공 단체	103. 국영기업

다. 공종분류부호 착오

공 사 명	발 주 자 명	분 류 착 오	바 른 분 류
.만덕 동아 아파트	력키개발	102. 주택	101. 주택
.삼도빌딩신축공사	삼도물산	103. 사무실	102. 사무실
.온산공업기지 회남 단지 조성공사	한국수자원공사	103. 공장	208. 택지조성

라. 세분류공종명 및 공종분류부호 착오

공 사 명	발 주 자 명	분 류 착 오	바 른 분 류
.익산군청 청사공사	익산군청	102. 사무실	104. 관공서
.송탄 - 평택간 도로 유관 관로공사	경기전신전화국	203. 도로	207. 전화공사
.대전도로유관 관로 공사	대전전신전화국	211. 기타	207. 전화공사
.연무대국청사신축	통신공사충남 지사	104. 관공서	102. 사무실

<부록>

1. 발주자별 분류해설

가. 국내 공공부문 발주

101. 정 부

중앙행정기관(각원, 부, 처, 청),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주재기관(각급 검찰관서, 각급 경찰관서, 각급 세무관서, 각급 관세관서, 각급 체신관서, 조달관서, 지방통계사무소, 농촌지도소, 지방국토 관리청, 국토유지건설 사무소 등), 각급 군부대, 각급 국립학교(국립대학교 및 부속 초·중·고등학교, 경기, 대전, 부산 개방대학 등), 각종 헌법기관(감사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 위원회 등), 중앙정부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국사편찬 위원회 등), 입법부(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등), 사법부(대법원, 각급 법원 및 지원, 등기소 등)

102.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 각도, 구. 시. 군, 시. 도 교육위원회, 구. 시. 군교육청, 공립학교(사립학교는 민간 비제조업의 금융보험 및 상업서비스업에 분류), 소방관서 등

103. 국영기업체

국영기업체는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의 특별한 출자로 기업체를 만들어 그 업체로 하여금 목적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 국책은행 ;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 정부투자기관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도로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탄개발공사, 한국종합화학(주), 대한무역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농업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관광공사, 국정교과서(주), 한국해외개발공사, 근로복지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 정부출자기관 ; 포항제철(주), 한국외환은행, 한국감정원, 한국수출입은행, 민자역사(단, 민자역사는 민간으로 분류함)

※ 지방공기업 ; 서울지하철공사, 서울시도시개발공사, 대구시도시개발공사

※ 정부재투자기관 ; 한국기업평가(주), 한국핵연료(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성업공사, 한국송유관(주), 남해화학(주) 등
(대한중석광업, 영남화학, 진해화학, 한주(주) 등은 민간으로 분류)

104. 기타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으로서 공공복리를 위한 각종조합(농협, 수협, 축협, 농지개량조합), 영조물법인, 각종연구소, 대한적십자사 등. (단, 다수의 개인이 재개발을 위한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조합을 건립한 경우에는 기타 비제조업으로 분류)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관리연구소, 국방품질연구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소,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에너지관리공단, 국토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한국과학기술원, 해양연구소, 한국에너지연구소, 한국표준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한국전자기술연구소, 한국과학재단, 재단법인한국농촌경제연구소,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어업기술훈련소, 한국인구보건연구원, 갯생보호회, 세계반공연맹사무국, 남북평화통일연구소, 서울종합직업훈련원, 대한나환자협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한결핵협회,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아시아경기조직위원회, 대한지적공사, 교통안전진흥공단, 국제항공관리공단,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문예진흥원, 한국전자통신한국전자통신연구소, 한국보훈복지공단, 예술의전당,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등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강남병원, 부산의료원, 제주의료원, 의정부의료원, 이천의료원, 안성의료원, 금촌의료원, 춘천의료원, 강릉의료원, 원주의료원, 속초의료원, 영월의료원, 삼척의료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목포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김천의료원, 마산의료원, 진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금강도선공사, 부산위생주식회사, 대구개발주식회사, 주식회사인천개발공사, 주식회사경기개발공사, 경북개발주식회사, 주식회사대전

종합개발주식회사,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농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대구
정신병원, 경주개발주식회사 등

나. 국내 민간부문 발주

(1) 제조업

211. 음식료품제조업

도살, 육류가공 및 저장, 육류포장, 낙농제품, 통조림가공, 동식물기름제
조가공, 도정, 재분, 장류제조, 사료제조, 주류, 누룩제조, 설탕제조, 어름제
조, 조미료제조업 등

212. 의류제조업(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제조업)

직물, 가방, 편직, 어망, 로푸, 방석, 제사, 방직, 표백, 염색, 비옷, 가죽, 돗자
리제조업 및 자수업 등

213. 화학, 석유제조업(고무 및 프라스틱제품제조업)

공업용화학제품, 비료, 농약, 합성수지, 프라스틱, 도료, 안료, 의약품, 비누
, 향료, 폭약, 성냥, 사진감광제, 잉크, 석유정제, 연료, 고무제품, 타이어, 고
무신, 예보나이트, 화장품제조업 등

214. 철강제조업(제1차 금속제조업)

제철, 제강, 압연, 주물 기타 비금속제련업 등

215. 기계제조업(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금속제품, 구조물, 장치틀, 베어링, 볼트, 너트, 케이블등의 금속소재, 기계
요소, 일반기계, 전기기기, 자전거, 자동차,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등의
수송장비, 과학계측기, 카메라, 기계, 안경등의 정밀기기 제조업 등

216. 기 타

제재, 제지, 신문, 가구, 합판, 인쇄, 출판, 유리, 악기, 장난감, 운동구, 귀금속, 우산, 필기, 사무용품, 고공품, 시멘트 제조업 등

(2) 비제조업

221. 운수·보관창고업

운수, 창고, 파이프라인운송, 수상운송, 항공운수, 보관업 등

222. 금융, 보험, 상업 및 서어비스업

시중은행, 증권회사, 전당포, 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 부동산중개, 토지매매, 여관, 영화관, 문화서어비스, 법무, 회계서어비스, 자료처리, 종교, 복지, 토목건축설계사무소, 광고, 민영방송, 각종협회(한국무역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통계협회 등), 흥신소, 교육, 의료, 도소매업, 장의사, 각종 수리업, 현대사회연구소 등

223. 부동산업

대점포, 대사무실, 주택(아파트) 건축분양 및 임대 등

224. 광업

석탄, 원유, 천연가스 채취, 금속광업, 모래, 사리, 석회석, 점토, 석면, 장식암석, 석재채취등의 광업

225. 기 타

농림어업, 건설업, 수산업, 전기, 가스, 수도업 등

다. 국내 외국기관

주한외군, 외국상사, 주한외국공관등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기관

라. 해 외

외국정부나 민간등에서 발주한 것으로 공사지역이 국내가 아닌 경우

2. 공종별 분류해설

가. 건축

101. 주택(주거용 건축물)

단독주택, 아파트(군인아파트 포함), 기숙사, 연립주택(산업용과 주거용 혼합건물인 경우에는 주거용 면적이 연면적의 50%이상인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분류한다.), 사택증, 개축 등

102. 사무실, 점포, 숙박시설, 오락장

사무실, 은행, 점포, 백화점, 오락장, 영화관, 극장, 여관, 호텔, 육탕, 이. 미용실, 방송국, 시장, 음식점 등

103. 공장, 창고

공장구내 제건물(주택, 기숙사, 병원, 운동장, 연구소등은 제외)
발전소건물, 변전소건물, 영업창고, 농업창고, 보세창고, 위험물창고 등

104. 학교, 병원, 관공서 청사

교육시설(교사, 강당, 시험소, 교습소, 연구소,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사관학교 등)

후생시설(병원, 보건소, 육아소, 고아원, 양로원, 복지회관, 기타 보호시설 등), 관공서 청사(각종 관공서 청사, 공회당, 소방서, 관상대 등)

105. 기타 건축

철도(기관차 차고, 정거장 제건물), 부두(보세창고, 영업창고를 제외한 부두 제건물), 공항(격납고를 포함한 공항 제건물), 교정 시설(교도소, 소년원, 부녀보호소 등), 기타(동물원, 수족관, 사찰, 교회, 체육관, 박람회건물, 화장장, 군막사, 우사, 등대 등)

나. 토 목

201. 치산, 치수

하천공사, 사방공사, 치산, 해안제방, 해안침식대책, 개수공사 등

202. 농림, 수산

농업시설공사, 간척, 개간, 관개, 어항, 양식시설, 육묘장 등

203. 도로, 교량

도로, 교량, 관장, 육교, 고가도로, 지하도, 도로터널공사, 유원지주차장 등

204. 항만, 공항

항만, 부두설비, 방파제, 부교, 급유설비, 저탄장, 활주로, 항만준설공사 등

205. 철도, 궤도

철도, 지하철, 철도교량, 레일공사, 침목공사 등

206. 상. 하수도

취수, 정수, 배수 등 상수도 설비공사, 측구,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오수정화, 하수처리설비공사, 하수도 등

207. 발전, 송전, 변전, 배전시설

수력, 화력, 원자력 발전, 송. 변전, 옥외배전시설, 전화노선공사, 전기통신선로공사 등

208. 토지조성, 공원, 운동장, 경기장

매립, 정지, 택지조성, 공원, 운동장, 경마장, 유원지, 조경공사, 농공단지 조성공사 등

209. 댐

댐시설, 취수설비 등

210. 기계설치

각종 기계설치, 기증기설치 등

211. 기타 토목

터널공사(도로터널 제외), 준설(항만준설제외), 색도, 동굴공사, 삭도공사, 지하주차장 시설공사, 등

다. 전문 공사

300. · 연관난방(연관, 난방, 환기, 냉방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옥내배수 설비, 건조장치, 제빙장치, 기타 배관 등)
- 도장, 도배, 실내장식(시멘트 뿔어붙이기, 단청공사 등)
 - 전기, 통신(옥내배선, 조명시설, 옥내전화 설치공사, 화재경보기 설치공사 등)
 - 석공, 미장(석재가공부착, 블록쌓기, 타일부착 등)
 - 목공(목공, 마루깔기 등)
 - 지붕잇기, 함석공사
 - 구조강 건립(철골조 건설, 철근, 판금, 금속제삿슈, 비상계단 공사 등)
 - 방수, 방습, 내화
 - 기타(유리, 굴정, 해체, 굴뚝설치, 열절연, 집진장치, 온돌, 비계, 창호, 축토, 조원공사, 칸막이, 천정공사 등)

※ 단, 건물로 부속된 냉. 난방, 환기, 급배수, 전기, 가스, 오물처리, 방화, 승강기 등 각종 설비의 설비공사가 건물공사 등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체가 되는 공사의 분류에 포함시킨다.

또한 부속건물(창고, 차고 등)이나 문파워 공사도 주건물의 공사분류로 분류한다.

3. 주요수정정보완사항

페이지	'89 년 도 지 칙 서	'90 년 도 지 칙 서
9	(2) 학교의 체육관, 동물사육장 등의 공사는 주건물(학교)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2) 학교의 운동장(테니스, 야구장 등)의 공사는 주건물(학교)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경기장으로 분류한다
14		(6) 공사지역명 및 공사지역부호(추가)
15	00학교 체육관(야구장등) 208. 경기장 → 104. 학교	00학교 테니스 및 야구장 등 104. 학교 → 208. 경기장 도로유관 관로공사(추가) 203. 도로 → 207. 전화공사
16	한국중공업 103. 국영기업체 → 215. 기계.장치	215. 기계.장치 → 103. 국영기업체
17~18		4. 조사착오사례(추가)
19~21	(발주자분류해설 중 국영기업체의 . 국영기업체중 민영화된 업체 . 국영기업체의 상호변경 업체 . 국영기업체 → 기타공공단체 . 기타공공단체 → 국영기업체 . 국영기업체의 추가업체	(예시보완) : 한국증권거래소, 영남화학, 진해화학, 한주(주), 대한중석광업 : 산업기지개발공사 → 한국수원공사 :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 성업공사 :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핵연료, 남해화학, 서울 및 대구시 도시개발공사

페이지	'89 년 도 지 칙 서	'90 년 도 지 칙 서
24~26	(발주자분류해설 중 기타공공단체의 예시보완)	
	. 기타공공단체의 추가업체	: 대한지적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국립공원 관리공단, 서울시설관리공단, 서 울농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대구 정신병원, 경주개발주식회사
	(공종별 분류해설 예시 추가)	
	. 101 주택의 범위	: 사택 증. 개축
	. 102 사무실, 점포, 숙박시설, 오락장의 범위	: 음식점
	. 103 공장, 창고의 범위	: 위험물창고
	. 104 학교, 병원, 관공서의 범위	: 사관학교, 복지회관
	. 105 기타건축의 범위	: 동물원, 수족관
	. 202 농림, 수산의 범위	: 육묘장
	. 203 도로, 교량의 범위	: 도로터널공사, 유원지주차장
. 204 항만, 공항의 범위	: 항만준설공사	
. 206 상. 하수도의 범위	: 오수정화, 하수처리설비공사	
. 207 발전. 송전. 변전, 배전시설의 범위	: 전기통신선로공사	
. 208 토지조성의 범위	: 농공단지조성공사	
. 211 기타토목의 범위	: 삭도공사, 동굴공사, 지하주차 장시설공사	

4. 조사중점강조사항

1. 토건공사의 경우 분리조사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분이 곤란할 경우에는 수주액이 많은 공종으로 분류한다.
2. 학교내의 제건물(강당, 화장실 등, 개축 등)은 주건물인 학교로 분류하나, 운동장(야구장, 테니스장등)은 208. 경기장으로 분류한다.
3. 공장구내 제건물은 주건물에 따라 분류하나, 주택, 기숙사, 병원, 운동장, 연구소 등은 공사 건별로 해당 공종에 따라 분류한다.
4. 농지개량조합에서 경지정리를 위한 토지조성 공사는 "202. 농림"으로 분류하고, 택지조성, 공장건립을 위한 토지조성은 "208. 토지조성"으로 분류한다.
5. 직장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의 아파트를 건설 할 경우 발주자분류는 "225. 기타비제조업"으로 분류한다.
6. 건설업 또는 제조업체에서 분양 및 임대목적으로 짓는 사무실, 주택 등은 "223. 부동산"으로 분류한다.
7. 전신전화국에서 전화선을 매설하기 위한 도로유관 관로공사는 "207. 전화공사"로 분류한다.
8. 국영기업체는 정부투자기관, 국책은행, 정부출자기관, 정부재투자기관 중 정부투자기관의 지분율이 50%이상인 업체이다. (이러한 국영기업체는 민영화로 변경 될 수도 있음)

2. 해외건설공사 수주내역 (자기공사 계획액포함)

일련 번호	① 공 사 명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입)	② 세 분 류 명 공 종 명	공 종 류 (부호)	③ 발 주 국 명	※ 지역부호	발주자 분 류 (부호)	④ 계 약 금								⑤ 계약일자	⑥ 착공예정 일 자	⑦ 완공예정 일 자	⑧ 공 사 간 격 (개월)
							외화(천불)				원화(백만원)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건	499	합		계													××××××××××××××××	

【작성상의 유의사항】

- ※ 란은 지방통계사무소에서 우송시 기입한다.
- 해당되는 공사의 기입란이 부족한 경우 타조사표를 사용하여 매수를 기입하되 소계는 제외하고 합계만 기입한다.
- 도급공사계약액에는 발주자와 체결한 도급계약 금액을 기입한다. 국내타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수주액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나, 하도급 받은 경우일지라도 외국건설업체나 국내종합무역상사 등으로 부터 하도급 받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된다.
도급공사계약액에는 발주자급 원자재 지급계획액을 계약 당시의 시가로 환산기입한다.
- 자기공사는 계획확정시 예정총공사비를 기입하되, 계약확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착공시의 예정공사비를 조사한다. 여기서 자기공사란 조사대상건설업체 그리고 모기업 또는 산하기업을 위한 자기공사를 말한다.
- 해외건설공사 계약액은 원화 및 불화(\$)로 기입하되 원화환산액은 한국은행이 고시한 집중 기준율을 적용 계산한다. 해외공사계약액의 경우 발주자급 원자재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 세분류 발주자명 및 공종명은 조사표 하단의 내용에 따라 분류 기입한다.
- 조달청이 공공기관을 대행발주한 경우에는 원발주자(실수요자)를 확인하여 기입한다.
- 방위와 관련된 건설공사일 경우에는 공사명은 "○○공사"로, 발주자명은 정부(국군부대일 경우도 동일) 또는 국내 외국기관(유엔군부대일 경우 동일)으로 기입한다.
- 계약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발생월의 증감액만을 기입하되 증액시에는(+) 기호를, 감액시에는(-) 기호를 증감액분 앞에 표시하고 그 내용을 난외 여백에 기입한다.
- 단 한건의 수주액도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만일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누락분을 즉시 보고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익월조사시 기입보고하되 그 내역을 비고란에 기입한다.

○ 국내수주액 전월대비 증감요인

구 분	수주액(백만원)	증 감 요 인
전 월		
금 월		
증 감 액		

○ 비 고

작성일자 : 198 년 월 일	조사담당자 : _____ ①
사업체명 : _____	관리계장 : _____ ①
작성부서 : _____	심사자성명 : _____ ①
전화번호 : _____	
작성자명 : _____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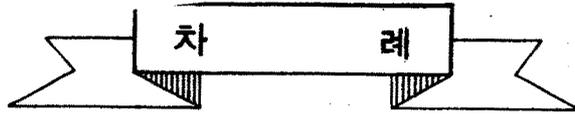
○ 본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때에는 경제기획원() 통계사무소()으로 문의하십시오.

1989 년

건설업통계조사 지침서

(1 9 9 0)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I. 조사개요	3
1. 조사목적	3
2. 조사연혁	3
3. 조사기준기간	4
4. 조사실시기간	4
5. 조사범위 및 대상	4
6. 조사단위	5
7. 조사사항 (항목)	5
8. 조사방법	6
9. 조사체제	6
II. 조사항목해설 및 조사표기입요령	7
1. 주의사항	7
2. 항목별 기입요령	8
III. 조사표의 착오기입유형	28
IV. 조사담당자의 임무	29
1. 실 사	29
2. 조사표의 검토 및 정리	33
부록 1. 공종분류해설	36
2. 발주자 분류해설	37

I.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본 건설업통계조사는 건설업 분야의 공사액, 고용, 급여, 부가가치, 장비 및 유형고정자산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건설정책을 포함한 종합경제정책수립과 이의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있다. 특히, 본 조사는 시공액통계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건설활동은 국가의 상당한 부분의 새로운 고정자산을 창출하며, 국가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기여하기 때문에 각종 산업활동 중에서도 이의 비중은 날로 증대할 뿐만 아니라, 최근 건설업의 활발한 활동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 경제성장률에의 기여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건설업 통계자료는 전반적인 국민경제분석 및 자본형성 측정 등에 필수불가결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본 조사에서 생산되는 통계자료는 건설업체에서도 자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실적평가에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초 자료가 된다.

2. 조사연혁

한국산업은행에서 '68~'70년까지 3개년간 건설업통계조사를 실시하다가 1972년에 당원으로 이관되어 '74년에 제 1회조사('73년 기준조사)를 실시한 이래 금년 조사는 제 17회 조사가 되며, 또한 본 조사는 통계법 제 3조 1항에 의하여 지정통계(승인번호 111-11-14)로 지정되었다. 특히 '85년 조사부터는 건설업부문 유사통계통합실시계획의

일환으로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체제로 전환 실시하였다.

3. 조사기준기간

'89.1.1 ~ '89.12.31

4. 조사실시기간

'90.2.15 ~ 3.14

5. 조사범위 및 대상

산업분류상의 조사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86. 1. 26 경제기획원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분류 5, 건설업」이다. 자료수집을 유사통계의 통합 실시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는 해당협회에서 실사업무를 주관하게 되었으므로 당국에서 직접 수행할 본 조사의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은 건설업분야의 면허업체이다.

- | | | |
|--------------------------------|---|-----------------------|
| (1) 1종전기공사업체 (동력자원부장관 면허업체) | } | 당국 지방사무소를
통한 타계식조사 |
| (2) 2종전기공사업체 (시·도지사 면허업체) | | |
| (3) 전기통신공사업체 (체신부장관 면허업체) | | |
| (4) 건설업관련 각종 인·허가업체 및 각종설비등록업체 | | |
| (5) 종합건설업체 (건설부장관 면허업체) | } | 각 협회를 통한 자계식조사 |
| (6) 전문건설업체 (시·도지사 면허업체) | | |
| (7) 설비공사업체 (시·도지사 면허업체) | | |

※ 여기서 건설공사라 함은,

- ① 건축물, 토목시설, 기타 토지에 계속적으로 정착하는 공작물(工作物)

및 이들의 부대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해체, 제거 및 이설(移設) 공사와 조경공사

②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 관공사(管工事) 등 기계장치의 설치, 해체, 혹은 이설(移設)공사 등을 말한다.

③ 특정연료, 정화조, 오수정화, 도시가스, 소방설비공사등을 포함한다.

<건설업과 타산업과의 관계>

① 기획, 조사, 측량, 설계를 주로 하는 사업체는 「소분류 383 사업서비스업」에 분류된다.

②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임대업, 중개업, 관리업 등은 「소분류 382 부동산업」에 분류한다.

6. 조사단위

조사단위는 건설업사업체로 한다. 본 조사에서 사업체라 함은 자산 및 종업원과 비교적 영구적인 사무소(개인기업주의 자택)등을 가지고 그곳에서 건설활동을 위하여 입찰, 기획, 감독 및 도급계약등을 할 수 있는 영리추구단체를 말한다. 그리하여 공사현장은 건설업사업체로 보지 않고 그 현장을 관할하는 사업체에 포함한다.

7. 조사사항(항목)

- (1) 사업체의 특징에 관한 사항 : 사업체명 및 소재지, 조직형태, 자본금 또는 출자금
- (2) 고용·급여액에 관한 사항 : 종업원수 및 연간급여총액
- (3) 유형고정자산

- (4) 주요건설기계보유대수
- (5) 공사비용
- (6) 연초, 연말재고액
- (7) 면허종류
- (8) 임대수입
- (9) 건설공사실적내역 : 공종별, 발주자별, 공사지역별등의 수주액, 기성액, 미기성액등

8. 조사방법

- (1) 타계식 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자계식 조사방법을 병행한다.
- (2) 표본조사업종
 - 특정연료시공업
 - 2종 전기공사업

9. 조사체계

경제기획원 - 지방통계사무소 - 조사담당자 - 대상사업체

Ⅱ. 조사항목해설 및 조사표기입요령

1. 주의사항

금년도 조사에서도 건설업부문 유사통계통합실시계획에 따라 용어정의, 각종분류(발주자분류, 공종분류)등이 표준화(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조사항목등을 일치 또는 추가시켰으므로 조사담당자는 본조사표 기입요령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 (1) 전기공사면허업체 및 전기통신공사면허업체로서 토건업과 전문공사를 겸업하고 있는 경우는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동 부문까지 포함하여 조사하므로 겸업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중복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2) 조사표중에서 「※」표가 있는 난은 기입하지 않는다.
- (3) 해당사항이 없는 난에는 사선(\)을 긋는다.
- (4) 기입한 사항을 고칠 때에는 잘못된 곳에 두 줄을 긋고 그 바로 위에 옳은 것을 깨끗이 기입한다.
- (5) ① 건설업체중 해외건설면허를 소지한 업체는 국내공사, 해외공사를 구분하여 각각 별개의 조사표를 사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해외건설분조사표를 작성할 때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2. 조직형태」 「3. 자본금 또는 출자금」 항목은 국내건설분 조사표와 동일하게 기입한다.

2. 항목별 기입요령

－ 난외사항

① 전산번호

시·도별로 접수대장의 접수번호를 중복 또는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전산번호로 대체한다. (단, 표본업종 사업체는 주어진 고유번호를 전산번호란에 기입한다)

② 본사소재지

본사소재지란에는 실적내역표 하단의 지역별 부호를 기입한다.

③ 면허업종

사업체의 주된 면허업종부호를 실적내역표 하단에서 찾아 기입한다.

④ 사업체번호

병부상 사업체 고유번호를 기입한다.

(1) 사업체 명칭 및 소재지

① 사업체명칭이라 함은 그 사업체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실제로 등록된 공식명칭을 말한다.

② 일정한 사업체명칭이 없을 때에는 대표자(기업주)의 성명만을 기입한다.

③ 소재지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장소로서 시·도명부터 통·반 및 번지까지 상세히 기입하여야 한다.

④ 전화번호란을 각별히 유의하여 누락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조직형태

① 조직형태라 함은 경영주체의 법적조직형태를 말한다.

② 이 조사에서는 조직형태를 회사법인, 회사이외의 법인 및 개인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따라서 경영주체(기업체)가 법인인가 개인인가를 먼저 규명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법인인가 회사이외의 법인인가를 구분한 다음 해당항목에 ○표를 한다.

③ 법인사업체라 함은 상법, 민법,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법인등기

를 완료하여 법인격을 취득하고 있는 사업체를 말한다. 여기에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사단법인, 그리고 특별법에 의한 특별법인 등이 있으나, 본조사에서는 회사법인과 회사이외의 법인의 두가지로만 구분하고 있으므로 회사이외의 법인에는 상법에 의한 회사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을 포함시킨다.

- ④ 준법인이란 조직형태상 법인격은 없으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비치 관리하는 개인 및 조직을 말하는 바 이는 회사 이외의 법인에 기입한다.
- ⑤ 개인업체라 함은 법인체가 아닌 개인소유의 사업체를 말한다. 2인 이상이 동업을 하거나 또는 법인격이 없는 조합과 같은 임의단체도 여기에 포함된다.

(3) 자본금 또는 출자금 및 총매출액

- ① 이 항목은 법인사업체에 한하여 기입한다.
- ② 89년 12월 31일 현재로 납입이 완료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을 기입한다.(겸업일 경우 타산업부문 자본금까지 포함 조사)
- ③ 결산서상의 총매출액을 기입한다.(타산업부문 매출액 포함 조사)

(4) 종업원수 [이하 모든 항목은 건설업부문사항(실적)에 대하여만 조사]

① 종업원

그 사업체의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외부에서 일을 하거나를 가리지 않고, 사업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경영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공동경영자와 주주는 종업원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원도급 사업체가 다른 사업체에 하도급을 준 경우에 하도급업체의 종업원은 원도급사업체의 종업원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1. 피고용자

일정한 산출기간에 의하여 임금, 봉급,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급여를 받고 있는 모든 남녀 종업원을 말한다. 월별 종업원수는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피고용자를 매월말 또는 급여계산일 현재의 인원을 기입한다. 장기 결근자(3개월이상) 및 군복무자 등은 제외하며, 해외공사의 경우에 해외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피고용자는 조사하되 외국에서 현지 고용한 외국인 피고용자는 제외한다.

<상용고>

1개월이상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실제의 취업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정액급여를 받는 종업원을 말한다.

·사무 및 기타종업원

생산(건설공사 작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관리직, 전문직, 서기직인 사무에 종사하는 자와 이들의 보조원 즉, 사환, 수위, 승용차의 운전사(승용차운전사 이외의 운전사는 생산직에 포함)청소부 등을 포함한다.

·기술자

건설공사의 설계 및 그 시공에 관한 전반적인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① 각종 건설관계법령(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전신전화설비공사법, 지방자치단체의 급수조례)에 의한 면허소지자 ② 이공계대학 졸업자 ③ 이공계 대학에서 2년이상 수료하고 해당기술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

(예: 건축 및 토목기술사, 건축구조 및 설비기사 1급, 시공기사 1급 및 2급)

• 기술공

전문직 기술자가 특히 지시한 기술을 책임있게 응용할 수 있으며 기술자의 지휘 또는 정립된 공학기술에 따라 필요로 하는 기능공의 업무를 감독하는 자격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① 이공계 초급대학(전문학교)졸업자 ②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기술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 ③ 정부에서 공인하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예: 제도사, 측량사, 토목공학기술공, 전기 및 전자기술공등)

• 기능공

건설공사의 시공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①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 ② 6개월이상 조직적인 기술습득을 요하는 직종에서 1년이상 실무경험을 가진자 ③ 국가에서 공인하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자로서 통칭 숙련공을 말한다.

(예: 각종 건설직종의 기능사 1급, 기능사 2급, 기능사보 등의 자격면허 소지자이거나, 또는 6개월이상 조직적인 기술 습득을 요하는 직종에서 1년이상 실무경험을 가진 자로서 목공, 조적공, 미장공, 철근공, 도장공, 전공 등)

기능공 중에는 사업체의 상용종업원으로 고용되지 않고 일고(日雇)로 고용되는 경우도 있는 바, 일고(日雇)로 고용된 기능공을 단순노무자로 분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임시고>

1개월미만의 고용계약으로 실제의 취업일수에 따라 급여를 받

는 종업원을 말한다.

• 단순노무자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육체적인 단순노무 제공자를 말한다.

즉, 기능공의 조공, 특별인부, 보통인부, 여자인부 등 통칭 잡 부를 말한다.

임시고(임시기능공 및 단순노무자)의 1일 평균인원은 매월 별로 투입한 연인원을 조업일수로 나누어 계산(소수점이하는 올림)하고 연간 합계는 월별 1일 평균인원의 가로(1월~ 12월까지)합계를 기입한다.

2.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 사업주(출자자 포함)와 그의 가족(동거자 포함)으로서 업체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 또는 노무에 통상 작업시간의 $\frac{1}{3}$ 이상을 종사하되 일정한 봉급이나 임금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명의상으로도만 사업주이고, 통상 작업시간의 $\frac{1}{3}$ 이상을 근무하지 않는 자는 종업원으로 보지 않는다.
- 사업주의 가족이더라도 상시(常時)근무에 종사하고, 이에 대한 임금 또는 봉급의 형식으로 급여를 받는자는 피고용자에 포함시킨다.
-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는 조직형태상 개인업체의 경우에만 기입될 수 있음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5) 연간급여액

- ① 종업원 구분별로 연간 지급한 급여총액을 기입하되, 연간 급여액의 합계 “(1) 사무 및 기타 종업원…… (6) 당년도 퇴직급여충당전입

금”은 “203. 임금 및 급여”와 일치하여야 하고 (6) 당년도 퇴직급여충당전입금은 대차대조표의 고정부채중 '89년도분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에 전입된 금액을 기입한다.

단,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자에게 '89년도 1년간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입한다.

- ② 여기서 급여라 함은 공무원가 및 일반관리부문에서 발생한 제반급여로서 조사기간중 정기 또는 부정기를 가리지 않고 피고용자에게 노무의 댓가로 지급한 모든 급여, 즉 봉급,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 생계보조비 당기퇴직급여충당전입금 등 공무원가 및 일반관리부문에서 발생한 각종 급여를 말하며, 현금급여 이외에 현물로 지급된 것은 현금으로 환산하여 포함한다.
- ③ 89년 이전의 급여로써 체불되었던 것을 89년중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고, 반면에 89년중에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미불된 것은 포함한다.
- ④ 급여액은 세금, 저금, 노동조합비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 즉 업체에서 부담한 총액을 기입하며, 피고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소득세, 보험료, 적립금 등을 급여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를 업체에서 부담하였을 경우에는 이 부담액도 급여액에 가산한다.
- ⑤ 해외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피고용자에 대한 급여액은 포함하되, 외국에서 현지 고용한 외국인 피고용자에 대한 급여는 제외시키고 이는 잡비란에 포함하여야 한다.

(6) 기성액 및 공사비용

기성액에는 매출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고, 공사비용에도 매출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다. (건설업 이외의 타 산업부문 제외)

① 기성액

“기성액”은 손익계산서상의 건설공사분(전기 및 전기통신공사포함)에 대한 매출액만을 조사하여 작성한다.

기성액은 공사의 완성여부나 대금의 수취여부등과는 관계없이 공사 공급가액에서 매출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당년도 기성액의 합계를 기입한다.

(단, 건설공사실적내역표의 (17) 당년도 기성액에는 매출부가가치세가 포함되므로 손익계산서상의 기성액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② 공사비용

공사비용이라 함은 시공중에 발생한 일반관리비와 공사원가비용을 총계한 것이다.

기성액에 매출부가가치세가 제외되었으므로 공사비용 중에도 매입시 지출된 매입부가가치세를 각 공사비 항목에 반드시 제외시켜야 한다.

201. 원재료비

원재료라 함은 건설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건설자재로서(시멘트, 철근, 모래, 자갈, 목재, 유리, 대리석, 타일등 주재료와 부재료, 부분품 등)건설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를 말한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외주)계약금액 이외에 지급한 원재료는 원도급자측에서 기입한다.

202. 보조재료비

1. 손익계산서의 일반관리비중 소모품, 사무용품비와
2. 공사원가계산서의 현장경비중 사무용품비, 소모품, 소모공구비등을 기입한다.

203. 임금 및 급료

임금 및 급료는 건설회사에서 지급한 인건비 총계로서 직접 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말하는 바, 손익계산서의 일반 관리비중 ① 임원급여 ② 급료와 임금 ③ 제수당 및 상여금 ④ 퇴직금 ⑤ 퇴직급여총당금 전입액 ⑥ 잡급과 공사원가계산서의 노무비, 즉 ① 급여 ② 임금 ③ 제수당 ④ 퇴직금 ⑤ 기타급여 등으로서 조사항목 “5. 연간급여액”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단, 해외공사의 경우에 현지에서 고용한 외국인 피고용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제외시키며 이는 잡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204.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라 함은 단순노무자를 포함한 전 종업원에 대하여 위생, 보건, 위안, 수양 등 사회복지와 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제비용으로서 일반관리 및 공사원가부문에서 발생한 비용중 복리후생비, 보험료(의료보험료, 산재보험료) 장학금 등을 말하며 장기결근자 및 군복무자 등에 대한 급여도 포함한다.

205. 감가상각비

일반적으로 감가라 함은 고정자산의 사용기간경과에 따른 가치감소로서 손익계산서의 일반관리비중 감가상각비와 공사원가서의 기계장비 등 중기감가상각비, 특별상각비 등을 기입한다.

206. 임차료

일반관리비 및 공사원가부문에서 발생된 지급임차료를 건물, 장비에 대한 임차료와 토지에 대한 임차료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기입한다.

(해외공사의 경우 외국인 및 외국정부에 지급한 임차료는 잡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207. 조세공과

영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과 공과금으로써 납부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제외한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공사원가 및 일반관리부문에 포함되는 모든 세금과 공과금을 기입한다.
(해외공사의 경우 외국정부 등에 납부한 조세공과는 잡비에 포함한다)

208. 수선비

건설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의 정상적 기능유지를 위해 그 수리를 외부에 의뢰하였을 경우에 지출된 제비용으로서 손익계산서의 일반관리비중 수선비와 공사원가계산서의 기계 및 장치비중 수선유지비와 현장경비중 수선비를 기입한다.

209. 전력, 용수, 연료, 광열비

일반관리 및 공사원가부문에서 발생한 비용중 동력비, 용수비, 광열비 등을 기입한다.

210. 잡 비

여비, 교통비, 운반비, 광고비, 통신비, 접대비, 보험료, 해외공사 기타비용, 잡비 등 건설공사 원가부문과 일반관리부문에서 발생한 기타의 제 비용을 기입한다. 해외공사의 기타비용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노무자에게 지불한 조세공과, 임차료 및 노무비를 말한다.

211. 외주공사액

원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주고 하도급자의 기성 실적에 따라 지불한 금액으로써 공사원가상의 외주비를 말하며, 원도급자의 외주공사액은 하도급자의 하도급공사 기성액과 일치하는 개념이다. (제조업체에 제조가공을 위탁한 경우 예외)

212. 발주자 공급 원재료비

계약금액이외에 발주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중 공사에 투입 사용된 원재료금액을 기입한다.

1. 발주자공급 원재료비의 포함범위

<건설자재>

시멘트, 철근, 모래, 자갈, 목재, 유리, 대리석, 타일 등 건설자재를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이외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시가로 환산하여 포함한다. (조명등, 옥내전선, 소방설비 및 급수설비용자재 등은 건설자재로 본다)

<기자재>

- 건설자재가 아닌 기자재를 계약금액과는 별도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시킨다.
- 단, 계약금액에 기자재가 포함되어 원도급자가 구입한 경우는 원도급자의 자급란에 포함하여야 한다.

213. 납부부가가치세

총매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건설업과 관련하여 실제 납부한 납부부가가치세를 기입한다.

(7) 연초연말재고액

- ① 연초 재고액은 89년 1월 1일 현재로, 연말재고액은 89년 12월 31

일 현재로 재고대상(원재료, 연료, 저장품)의 실재장소에 관계없이 그 사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기입한다.

- ② 재고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장부가액(결산서)에 의하되 이에 따르기 어려울 때에는 구입가격으로 기입한다.
- ③ 하도급받은 공사와 관련 원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원재료의 재고 등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④ 타업종(판매업, 제조업, 서어비스업 등)을 겸하고 있는 사업체는 건설활동으로 인한 재고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8) 유형고정자산

유형고정자산이라 함은 구체적 형태를 가진 고정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중기, 차량, 선박, 운반구, 공구, 비품, 건설가계정 및 기타 유형고정자산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유형고정자산 중 건설업활동에 제공된 부분만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타산업과 겸업일 경우에는 건설업 부분만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구분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겸업업종의 외형거래액(매출액)과 건설공사액을 비례배분하여 기입한다.

① 연초총액

연초총액은 연초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입한다.

② 연간 취득액 및 증·개축액

- 1 89년 1년간에 유형고정자산의 취득, 설치 및 증·개축을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하며, 다만 기설(既設)의 유형고정자산의 기능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부분품의 대체(代替)와 수리에 지출된 경상경비는 여기에서 제외하고 조사항목 " 8. 기성액 및 공

사비용”의 “208. 수선비”에 포함시킨다.

- 2 취득액의 평가는 구입한 것에 대하여는 운임 및 설치비를 포함한 구입가격으로 평가하고, 동일 기업내의 다른 사업체로부터 양수(讓受)받은 것은 양수 당시의 시가로 환산 평가한다. 또 자기건설의 경우에는 완성여부에 관계없이 89년 1년간에 지출한 모든비용을 기입하되 미완성의 공사는 “7. 건설가계정”란에 기입하고, 완성된 공사는 해당 유형고정자산란에 기입한다.

③ 연간처분액 및 손해액

- 1 조사기준 기간중에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액을 기입하고 같은 기업내의 다른 사업체에 양도하였거나 재해, 도난 등으로 인하여 유형고정자산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원인의 발생당시에 매각할 수 있었던 시가에 의하여 기입한다.
- 2 조사기준 기간중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의한 감소는 장부가액의 감소를 자산 종류별로 상각액을 기입한다.
- 3 감가상각을 직접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 계정으로부터 연중 공제한 금액을, 간접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충당금에 연간 가산된 금액을 기입한다.

④ 연말총액

연말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입하되 다음 산식에 맞아야 한다.

연말총액 = 연초총액 + 연간취득액 및 증·개축액 - 연간처분액 및 손해액
(4) = (1) + (2) - (3)

⑤ 유형고정자산의 종류

건설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에 한한다.

1 토 지

사업체의 대지, 사택부지, 건축예정부지 및 운동장과 이들을 위한 토지개발비도 이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비업무용 토지는 여기에서 제외한다.

2 건 물

사무소, 사택,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과 승강기, 냉방장치, 조명장치, 통풍장치 등의 부속시설도 포함시킨다.

3 구축물

토지에 정착된 모든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즉, 도로, 철도, 교량, 담장, 연돌, 수도, 송유관, 우물, 조경 등

4 중 기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치

5 차량, 선박 및 운반구(건설중기 제외)

자동차, 철도차량, 우마차 등의 육상운반구와 여객선, 화물선, 전마선, 유조선 등의 해상운반구 및 항공기 등

6 공구, 기구 및 비품

내용년수가 1년이상이고 시가 2만원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 만을 기입한다.

7 건설가계정

미완성된 유형고정자산을 위하여 이미 지출한 금액과 건설활동을 위하여 재료, 기계설비 등을 매입하고자 이미 대금을 지출하였으나 아직 현품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 완성 또는 도착시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건설가계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건설업체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

는 건설가계정에 포함해서는 안된다.

(9) 주요건설기계보유대수

- ① 연말 현재 건설활동을 위하여 사업체가 보유하고(소유주의) 있는 장비를 기입한다. 즉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거나 수리중 또는 타업체에 대여한 것도 포함하여 기입한다.
- ② 타업체로부터 대여받은 것과 폐기처분 또는 가동불능인 장비는 제외한다.
- ③ 해외반출된 자기소유장비는 해외건설조사표에 별도 작성한다.
- ④ 비등록 장비도 포함 조사한다.

(10) 면허종류

- ① 건설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각종 건설업면허를 말한다.

<면허종별>

1. 국내건설면허

- 1종 전기면허
- 2종 전기면허
- 전기통신공사면허
- 기타설비면허 : ① 특정연료 ② 정화조 ③ 오수정화 ④ 도시가스 ⑤ 소방설비

2. 해외건설면허

- 1종전기면허
- 2종전기면허
- 전기통신면허
- 기타 설비면허

Ⅲ) 임대수입

건물과 건설장비의 임대수입을 구분 기입한다.

단, 건물의 보증금은 은행대출금리로 환산하여서는 안 되고 월세 또는 년간으로 받은 임대수입만을 말한다.

건설장비 임대수입은 건설회사에서 보유중인 장비를 임대한 댓가로 년간 받은 금액을 기입한다.

② 건설공사실적내역표

유사통계통합실시를 위하여 공통조사 항목에 대한 용어정의, 기준분류, 조사항목 등을 일원화하였는 바, 동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조사에 임하여야 하며 면허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장을 달리 구분 작성한다.

① 일반적인 유의사항

1. 건설공사내역은 공사의 계약년도와 대금수취여부 등에 관계없이 즉 당년도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월된 공사중에서도 실제로 공사가 진행된 모든 공사를 건별로 기입한다.
2. 국내공사의 기성액, 수령액에는 반드시 매출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입하여야 한다.
3. 국내건설공사와 해외건설공사는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별장으로 기입한다.

② 세항목별 기재요령

1 「매수」

실적내역표 매수를 ()매중 ()매로 기입한다.

2 「일련번호」

일련번호는 공사전별 차례로 계속해서 번호를 부여한다.

3 「공사명」

- 해당공사의 공종과약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입한다. 단, 방위와 관련된 공사는 공사명을 사실대로 기입해서는 안되며 위장기입하여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입방법 예 : ○○○ 시설공사)

- 공종별로 건설공사 내역표 하단에 합계를 기입한다.

4 「공종분류」

내역표 하단의 공종별, 세분류코드에서 해당세분공종을 찾아 부호(3자리숫자)를 기입한다.

5. 「공사지역」

- 공사지역란에는 공사현장 소재지를 기입하되 내역표 하단의 지역부호코드에서 해당코드를 찾아 부호로 기입한다.
- 공사지역이 해외일 경우에는 “41~46”을 기입하고 (10)번 발주자란에 발주 국명을 기입한다.
- 당해공사가 2개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공되었을 경우에는 주된 공사지역의 부호를 기입한다.

6 「발주자명」

- 발주자명은 발주자 분류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공식 명칭을 기입한다. 단, 방위와 관련된 발주자일 경우에는 발주자명을 사실대로 기입해서는 안되며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기입하고 보안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i 발주자가 국군부대일 경우에는 발주자명을 군부대명 대신 “정부”라고 기입한다.

ii 발주자가 주한 외국군부대 또는 외국기관일 경우에는 발주자
명을 외국군 부대명 또는 외국기관 대신 “국내외국기관”이
라고 기입한다.

- 조달청이 공공기관을 대행 발주한 경우에는 원발주기관(수요처)
를 발주자로 기입하여야 한다.
- 해외공사인 경우에는 발주자명 란에 발주국명을 기입한다.

7. 「원도급자(일반회사)명」

- 하도급 공사인 경우에는 원발주자(기관, 회사)가 누구인가를
확인하여 기입한다.

8 「발주자 분류」

부록의 발주자분류해설을 참고하여 정확히 분류한 뒤, 내역표 하
단의 발주자분류부호에 따라 발주자명 앞의 3계단 부호를 기입
한다. 해외공사의 경우에는 해외(094)로 기입한다.

9 「원도급자 면허번호」

기재하지 않고 사선(\)을 긋는다.

10 「계약방법」

기재하지 않고 사선(\)을 긋는다.

11 「계약종류」

- 원도급, 하도급을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를 한다.
- 원도급이란 원발주자로부터 1차적으로 도급받는 경우이며, 하도
급이란 원도급자로부터 재도급 또는 하청받은 것을 말한다.
- 본 조사에서는 국내 타 건설업체로부터 재도급받은 경우를 하
도급으로 보며 국내건설회사가 아닌 외국건설회사나 국내종합무

역상사 등으로 부터 하도급 받은 경우에는 원도급으로 본다.

- 또한 본조사 대상 건설회사의 자기건설공사이거나 산하기업, 모 기업을 위한 직영공사인 경우도 원도급공사로 본다.

12 「 계약년월 」

계약이 체결된 연도와 월을 각각 구분 기입하며, 자기공사(직영 공사)인 경우에는 계획이 확정된 연도와 월을 기입한다.

13 「 착공년월, 준공년월, 수령년월 」

- 착공년월, 준공년월은 실제로 착공 또는 준공된 년월을 기재한다.(단, 차년도로 이월될 공사는 준공예정 년월을 기입한다.)
- 1건공사의 공사액을 여러차례에 걸쳐 수령하였을 경우 그 누 계액을 기입하되 수령년월은 마지막 금액을 수령한 년월을 기 입한다.

14 「 당년도 계약액 또는 이월공사액 」

당년도에 계약체결한 도급계약액(자기공사인 경우는 계획액)과 당 년도로 이월된 공사액(전년도의 미기성액분)을 기입한다. 즉, 계 속공사인 경우에는 당초의 총 도급계약액을 기입하여서는 안되고 미기성액 만을 기입한다.

계약액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공급가액 이외에 매출부가가치세도 포함한다.
- 직영공사인 경우에 그 공사의 총공사 계획액
- 추가 계약액

15 「 당년도 발주자 공급원자재가격 」

발주자가 계약금액이외에 별도로 공급한 원자재를 공사에 투입사

용한 경우에 투입분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16 「당년도 기성액」

- 공사의 완성여부나 대금의 수취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당해년도 (조사기준기간)에 시공한 기성액을 기입한다.
- 산하기업 또는 모기업을 위한 직영공사분까지 포함 조사한다.
- 원도급자로부터 재도급(하청)을 받은 경우 하도급업체의 기성액 및 수주액의 산출은 원도급자와 체결한 하도급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한다.
- 기성액의 평가는 도급계약액(도급공사인 경우에는 이익금 포함)에 공사진척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즉, 당년도 기성액 = 도급계약액 × 공사진척율 = 도급계약액

$$\times \frac{\text{기투입공사비}}{\text{공사비 총액}}$$

(연차 농사인 경우의 도급계약액은 전년도 기성액을 제외한 금액을 당년도 도급계약으로 하여 공식에 적용시킨다.)

17 「당년도 수령액」

- 89년도에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기입한다.

18 「수령년월」

마지막 금액을 수령한 년월을 기입한다.

19 「선급금 수령액」

발주자(원도급자 포함)로부터 공사착공전에 받은 선급금을 기재한다.

20 「비고」

- 해당공사가 자기공사인 경우 「자기공사」라고 기입한다.
- 해당공사가 공동수주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공동계약」이라고 기입하고 그 아래에 공동시공회사명과 공동계약액을 기재한다.
- 해당공사가 설계변경 및 기타 사유로 당초계약액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변경」이라고 기입하고 변경(증감) 금액을 기입한다.

21 「적요」

사업체의 유고, 공종분류, 지역분류, 발주자분류 등 작성시의 어려운 점과 겸업업체인 경우에는 겸업업종명 등 사업체의 특기할 만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Ⅲ . 조사표의 착오기입유형

1. 다음의 착오기입사례는 내용검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노출되는 착오기입의 유형으로서 조사표작성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1) 조사항목 “ 8의 205 감가상각비 ”는 조사항목 “ 6의 (3) 연간처분 및 손해액 ”보다 적거나 같아야 하는 바 오히려 많게 기입된 사례
- (2) 실적내역표의 “(15) 당년도 계약액 및 이월된 공사금액 ”과 “ 당년도 기성액 ”은 매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시키는 경우
- (3) 타 산업과 겸업사업체인 경우에는 타산업의 매출액 또는 외형거래액을 제외한 건설업부분만을 분리 기입하여야 함에도 겸업부분까지 포함하여 기입한 사례
- (4) 실적내역표에서 공사지역, 공종분류, 계약종류, 계약년월일 등의 기재가 누락된 사례
- (5) 해외반출된 자기소유장비는 해외건설조사표에만 기입하여야 하는데 국내 및 해외조사표에 모두 중복하여 기입하였거나 또는 기입이 누락된 사례
- (6) 공사현장에서 고용한 일용근로자를 종업원수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례
- (7) 조직형태가 법인임에도 종업원 란의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를 조사한 사례
- (8) 유형고정자산란 중기의 연말총액이 조사되었음에도 주요 건설장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사례

IV. 조사담당자의 임무

1. 실 사

(1) 사업체명부 확인

명부는 전년도 실사(實査) 결과에 의한 명부자료를 기초로 하여 각 협회, 시·도 또는 관계기관의 자료에 의하여 보완된 것이므로 소재지가 불명확하다고 유고업체로 처리하지 말고 계속 추적하여 존폐(存廢)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사업체명부 보완

- ① 사업체명부에 기재된 사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면허종류의 기록사항을 확인하고 오기(誤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체명부에 정정 기입한다.
- ② 폐업(廢業) 또는 타사무소 관내(시·도)로 이전(移轉)된 사업체는 복선(=)으로 삭제하고 비교란에 해당 년월을 표시한 다음에 “폐업” 또는 “이전”이라고 기입하고 이전된 주소를 기입한다.
- ③ 실사기간중에 신규발굴사업체 또는 타조사구로부터 전입(轉入)됨으로써 추가 실사지시 받은 업체는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면허종류 등을 기입하고 비교란에 “신규” 또는 어느 조사구로부터 “전입”되었음을 기입하고 조사대상에 포함시킨다.

(3) 신규사업체 발굴

- ① 전년도 혹은 그 이전에 설립된 사업체로서 수령한 사업체명부에

누락된 건설업체를 색출하여 조사대상에 포함시킨다(단, 금년에 설립된 업체는 신규사업체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 ② 신규사업체 조사표는 적요란에 사업체실태(설립년월일, 업종, 겸업업체일 경우 주된 사업 등)를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 ③ 90년에 설립된 신규사업체는 각 지방사무소별로 별도명부를 작성 조사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유고사업체의 처리

유고사업체라 함은 응답불응, 휴업, 폐업, 소재불명, 이전, 전업과 명칭 변경 등의 경우를 말하는 바, 담당사업체중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응답불응사업체

- 1 피조사자(被調査者)가 비협조적이거나 거절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조사원은 당황하거나 불손한 태도를 보여서는 절대로 안되며 조사목적의 중요성을 설명하여 응답자의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그 측석에서 조사가 어려울 때는 두번, 세번, 재방문(再訪問)하여 성의(誠意)있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면 협조를 얻을 수 있다.
- 2 이와 같이 하여도 협조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사업체를 관할하는 관계기관(전기공사협회지부, 전기통신공사협회지부 또는 구·시·군, 동·읍·면사무소 등)에 측면지원 요청토록 한다.
- 3 각 관계기관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시종 불응할 경우에는 소속사무소장에게 경위와 사유를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② 휴업(休業)사업체

건설활동은 계절성이 심하므로 휴업중이라 하더라도 89년중에 실적
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③ 폐업(廢業) 및 소재불명(所在不明)사업체

대상사업체가 폐업 또는 소재불명일 경우는 관할세무서 구·시·군,
동·읍·면사무소 또는 각 협회 등에 문의하여 폐업여부와 소재지
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 이전(移轉)사업체

1 동일조사구 내에서 이전하였을 경우

대상사업체가 동일조사구(담당관할지역)내에서 이전되었을 경우는
추적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동일사무소내의 타조사구로 이전하였을 경우

관계기관(각 협회, 세무서, 시·구·군, 동·읍·면사무소)에 문의
하여 이전한 소재지 및 전화번호 등을 파악, 즉시 관리계장에게
사업체명, 이전주소, 전화번호 등의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계장은 실사완료일 전에 실사지시를 하여 조사토록 하여야
한다.

3 타사무소관내로 이전하였을 경우

대상사업체가 타사무소관내로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조사담당자는
이전사업체명, 이전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통계사무소장에게
보고하고 통계사무소장은 조사 관할 통계사무소로 통보하여 조사
토록 하여야 한다.

- ⑤ 명칭변경 사업체

조사대상 사업체의 명칭만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대로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 ⑥ 전업(轉業)사업체

대상사업체가 타산업(제조업, 서어비스업, 도·소매업 등)으로 전업하였을 경우에는 업종변경 이전의 건설업 유무를 파악, 조사대상(건설업, 정의참조)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 하여 업종변경 이전에 건설업활동을 하였으면 그대로 조사를 시행하고 타업종의 업체이었으면 조사에서 제외한다.
- (5) 겸업사업체의 처리
 - ① 건설사업체중에는 건설활동 뿐만 아니라 타산업과 겸업하는 업체가 많으므로 특히 판매업 또는 제조업과 겸업하는 건설업체를 타산업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조사에서 제외 또는 누락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겸업건설업체는 겸업한 산업명을 구체적으로 적요란에 기입하고, 동 겸업산업의 지난 1년간의 총수입을 산업간 비율에 따라 총수입이 가장 많았던 업종을 주된 산업으로 하여 적요란에 산업명을 표시한다.

기입예 : ① 제조업과 겸업 ② 판매업과 겸업
 건설업이 주업 판매업이 주업
 - ③ 건설업 이외의 타 업종에 속하는 사항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건

설업 부문만을 조사하여야 한다.

(특히 종업원수, 급여액, 공사비용, 부가가치, 재고액, 유형고정자산 항목에 유의)

2. 조사표의 검토 및 정리

(1) 일반적인 사항

우선 국내건설분과 해외건설분이 구분 작성되었는가를 확인하고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① 조사요원은 조사표상의 주요항목 내용을 요약표(소정양식)에 이기(移記)하고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조사표와 함께 제출한다.
 - 1 조사항목의 기입누락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란에는 사선(\)을 긋는다.
 - 2 조사표상의 숫자 기록이 정확한가를 검정한다.
 - 3 조사된 내용 상호간의 연관성 및 합리성을 검토한다.
- ② 조사표가 오손되었을 때에는 타 조사표에 옮겨 다시 작성한다.
- ③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는 내검, 부호기입을 완료한 후 수시로 중앙에 제출한다.
- ④ 조사표의 기재내용은 타 용지에 전사(轉寫)하거나 외부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된다(통계법 참조).
- ⑤ 겸업건설업체의 조사표에는 「겸업사항」 및 「적요」란에 겸업(兼業)한 타 산업과 주된 산업명(업종간 매출액비율에 의함)이 기입되었는가를 검토한다.

(2) 항목별 검토

- ① 사업체명을 약자 또는 줄여서 기입하지 않았는가를 검토하고 특히 소재지는 행정구역을 정확히 기입하였는가를 확인한다.
(사업체명부와도 일치하는가 검토한다)
- ② 조직형태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연관성을 검토한다.
(개인 사업체는 사선을 긋는다)
- ③ 면허종류란에 해당 면허번호의 기재 유무를 확인한다.
- ④ 개인사업체인 경우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란에 기록이 되었는가, 법인사업체로서 동란에 기재되어 있는가도 확인한다.
- ⑤ 조사항목 「 5. 연간급여액 」의 합계가 조사항목 「 8. 기성액 및 공사비용 」중의 「 203. 임금 및 급료 」와 일치되었는가를 검토한다.
- ⑥ 공사지역은 발주지역, 계약장소에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진 공사 시 공지역이 기입되었는가를 검토한다.
- ⑦ 유형고정자산의 연말총액이 다음 등식관계에 맞는가를 검토한다.
(연말총액 = 연초총액 + 연간취득 및 증·개축액 - 연간처분 및 손해액)
- ⑧ 조사항목 「 6. 유형고정자산 」중 「 4. 중기 」의 연말총액과 조사항목 「 7. 주요건설 기계보유대수 」와의 상호 합리성 여부를 검토한다.
- ⑨ 주요건설 기계보유대수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가동가능한 자기소유의 장비가 모두 포함 조사 기입되었는가를 검토한다(해외에 반출한 소유장비는 해외건설조사표에 반드시 기입한다).
- ⑩ 관리계장은 조사표 내검시에 특히 유고사업체에 대해 주의하여 유고내용을 명확히 검토한다.

(3) 조사구별 요계표의 검토

- ① 「 16. 당년도 계약액 및 이월된 공사금액 」에는 89년도로 이월된 공사액(전년도 미기성액) 뿐만 아니라 최초의 수주액을 기재하지 않았는가를 검토한다.
- ② 「 17. 당년도 기성액 」중 공종별(각종설비, 전기 및 전기통신) 기성액의 소계의 합계가 기성액 총계와 일치하는가를 검토한다.
- ③ 요계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조사표수치의 이기과정에서 착오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한다.

(4) 조사표의 회수 및 제출

① 조사표의 회수

- 1 조사표는 조사담당자가 직접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즉석에서 작성이 곤란하거나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응답자에게 조사표 작성을 의뢰하고, 조사표 회수시 완결된 조사표에 대한 오기(誤記), 누락(漏落) 여부를 확인한 후 회수하여야 한다.
- 2 관리계장은 조사표를 재심사(再審査)하고 불완전한 점이 발견되면 재조사하도록 한다.

② 조사표의 제출

- 1 소장은 조사표가 완전한 것으로 확인되면 사업체명부의 조사표 번호순으로 모아 철하고(신규사업체 조사표는 마지막에 철함) 교육기간중 배부받은 실사용 사업체명부와 함께 중앙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사표 및 요계표 제출일정

4.1 ~ 4.5

< 부록 1 >

공 종 분 류 해 설

- 401. 1종전기공사 : 전기 1종 면허소지업체가 시공한 공사
- 402. 2종전기공사 : 전기 2종 "
- 403. 전기통신공사 : 체신부장관 면허소지업체가 시공한 공사
- 501. 특정연료 - 보일러 및 냉·난방 시설공사
- 502. 저 화 조 - 정화조 시설공사
- 503. 오수정화 - 오수 및 폐수처리 시설공사
- 504. 도시가스 - 가스시설공사
- 505. 소방설비 - 소방시설공사

< 부록 2 >

발 주 자 분 류 해 설

1. 공공부문 발주

(1) 정부기관

041. 내무부 : ◎ 내무부 및 그 산하기관

◎ 치안본부, 경찰서 등 치안관계기관

(단, 시·도, 시·군 및 그 산하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로 분류함)

042. 재무부 : 재무부 및 산하기관

043. 법무부 : 법무부, 검찰청, 교도소 및 그 산하기관

044. 국방부 : 국방부 및 그 산하기관과 예하군부대

045. 문교부 : 문교부 및 그 산하기관

◎ 국립대학교, 국립초급대학, 국립전문학교 및 국립교육기관

(단, 시·도교육위원회 및 국민학교, 공립중·고등학교는 지방자
치단체로 분류함)

046. 농수산부 : 농수산부 및 그 산하기관

047. 상공부 : 상공부 및 그 산하기관

048. 동자부 : 동자부 및 그 산하기관

049. 건설부 : 건설부, 지방국토관리청 및 그 산하기관

050. 보사부 : 보사부 및 그 산하기관

051. 노동부 : 노동부 및 그 산하기관

052. 교통부 : 교통부, 철도청 및 그 산하기관

053. 체신부 : 체신부 및 그 산하기관

054. 문공부 : 문공부, 문화재관리국 및 그 산하기관

055. 체육부 : 체육부 및 올림픽조직위원회,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056. 기 타 : 위의 정부기관과 산하기관을 제외한 모든 행정부처

(경제기획원 및 각종 행정자문위원회 등) 및 그 산

하기관과 국회·법원 등

(2) 지방자치단체

◎ 중앙정부기관 및 그 산하기관을 제외한 각 시·도 및 산하기관

◎ 교육위원회와 교육청 및 국민학교, 공립 중고등학교를 말한다.

◎ 서울시 교육위원회 및 그 산하 교육구청을 제외한 다른 시·도교육위원회는 해당 시·도의 코드를 부여한다.

(3) 공공단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영기업체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공공기관으로서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단체, 연구소(원), 조합, 협회, 연합회 등의 공법상의 법인

(예) 농지개량조합, 산림조합 및 연합회, 상공회의소, 반공연맹, 의료보험조합, 농협, 수협,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동 중앙회, 수출조합, 한국해운조합, 염연초생산조합, 건설공제조합, 재향군인회, 원호대상단체, 대한적십자사,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교원공제조합, 축협, 대한체육회 등이다.

(4) 국영기업체

정부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투자한 업체

(정부투자기관)

(예) 공사 : 한국조폐공사, 대한주택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어촌개발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농업진흥공사, 대한재보험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수자원개발공사,
토지개발공사, 근로복지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한국해외개발공
사, 전기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예) 국책은행 :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의환
은행, 한국주택은행

기 타 : 한국증권금융(주), 한국투자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증권대체결제(주),
한국감정원, 국정교과서(주)

(5) 주한외국기관 :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공관, 영사, 기관, 상사, 주한외국군
대, 국내거주의국민 등

(6) 해외외국기관 : 해외에서 발주된 공사는 전부 여기에 해당

2. 민간부문 발주

(1) 제조업

950.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951.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952.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가구포함.

953.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954. 화학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프라스틱제품제조업

955.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석유 및 석탄제품 제외

956. 제 1 차 금속산업 (철강업)

957.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958. 기타 제조업

(2) 비제조업

960. 농림, 수렵업, 수산업, 임업 및 어업

961. 광업

962.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963.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964. 운수·창고 및 통신업

965. 금융, 보험업

966. 부동산업 (건설업체의 분양, 임대포함)

967. 건설업 (분양, 임대한 것은 부동산업으로 분류)

968. 사업서비스업

969.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989년 건설업통계조사

내용검사 및 부호기입요령서

(1990. 2)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차 례

I. 일반적인 사항	3
II. 항목별 내용검사요령	5
1. 통합조사표	5
○ 난외기입사항	5
○ 조사항목	
① 사업체명 및 소재지	7
② 조직형태	7
③ 자본금 및 총매출액	8
④ 종업원수	8
⑤ 연간급여액	9
⑥ 유형고정자산	10
⑦ 주요건설 기계보유대수	10
⑧ 기성액 및 공사비용	10
⑨ 연초·연말 재고액	12
⑩ 면허종류	12
2. 건설공사 실적내역표	13
3. 요계표 작성 및 내검요령	14
(1) 요계표 내검	14
(2) 항목별 요계표 작성요령	15

Ⅲ. 부호기입요령	16
1. 접수번호 및 전산번호	16
2. GI	16
3. 산업분류	16
4. 조직형태	19
5. 종업원 규모	19
6. 자본금 규모	20
7. 총공사액 규모	21
8. 기 타	21
Ⅳ. 조사표 접수요령(접수대장)	23
1. 통합조사표와 실적내역표가 동시에 접수될 때	23
2. 실적내역표와 통합조사표가 별도 접수될 때	23
3. 접수대장 제출	24

I. 일반적인 사항

1. '85년기준 조사부터는 건설업부문 유사통계를 통합 실시함에 따라 각종분류, 조사항목 등 변동사항이 많으므로 본 내용검사요령서와 조사지침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내용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일반면허 또는 전문면허 업체중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 면허를 중복 소지한 업체는 통합조사대상업체로서 이미 각 협회에서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분은 자체식으로 조사하였으므로 타계식 조사에서는 제외시켜야 하는데 이때 관련면허의 중복 소지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3. 합계액이 기록 안된 것은 합산하여 합계액을 기입한다.
4. 공사실적내역표는 매장마다 소계(888)를 기입하고 마지막 장에는 총합계(999)를 기입한다. (면허업종이 다른 경우의 실적은 장을 달리 하여 기재하고 일련번호는 계속해서 부여한다)
5. 합계항목은 모두 검산하여 등식관계를 확인하고, 관련있는 항목은 상호 비교 검토하여 상호숫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정정한다.
6. 단위미만(소수점이하의 숫자)이 있을 때는 4사5입하여 정정한다.
그러나 종업원란의 원별투입 연인원(임시기능공, 단순노무자)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7. 금액조사단위는 천원으로 하였으므로 단위가입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8. 적자(기성액<공사비용)인 사업체의 조사표는 재확인한다.
9. 면허종류와 조사 항목간에 서로 합당치 않은 내용이 있는 조사표는 재확인한다.
예: 조사항목 10의 전기면허만을 취득한 업체가 전기공사가 아닌 건축 또는 토목공사를 시공한 경우
10. '88년중 해외건설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인 경우에는 반드시 국내건설부문과 해외건설부문별로 각각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해외공사 실적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11. 해외건설조사표는 별도로 철한다.
12.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지역을 종전 40에서 세분화시켰으므로 유의하여 확인한다.
예: 41 : 중동지역
42 : 아시아지역 (중동제외)
43 : 유럽지역
44 : 아프리카지역
45 : 오세아니아지역
46 : 아메리카지역

II. 항목별 내용검사요령

1. 통합조사표

난 외 기 입 사 항

(1) 국내·외 건설공사 조사표 구분

— 대한건설협회 조사표

국내건설분 ①	} 별도 작성
해외건설분 ②	

— 전문건설협회 조사표

국내건설분-백색조사표	} 별도 작성
해외건설분-황색조사표	

(2) 전산번호

시·도별 전산번호가 통합조사표, 실적내역표(매장마다), 요계표 3자가 완전히 일치되었는가 확인한다(접수번호를 전산번호로 대체예정).

(3) GI

○ 종합건설업체

본사소재지		면허업종		면허번호			

○ 전문건설업체

본사소재지		면허업종		면허번호							
						-			-		

○ 전기 및 기타 설비업체

본사소재지		면허업종		사업체번호				

GI는 업종별로 상이하나 이 GI는 통합조사표, 실적내역표(매장마다), 요계표(전문업체에 해당)의 3자는 완전히 일치되어야 전산처리가 가능하므로 특별히 유의하여 확인한다.

- 본사소재지

시·도 지역부호를 실적내역표 하단에서 찾아 기입한다.

- 면허업종

2개이상의 면허를 가진 사업체는 주된 면허업종의 부호를 실적내역표 하단에서 찾아 기입한다.

- 면허번호 및 사업체번호

사업체의 주된 면허업종의 면허번호와 사업체고유번호를 기입한다.

(전기통신, 전기, 기타 설비업체는 사업체 고유번호를 기입)

(4) 도급순위

종합건설업체에만 해당하며 기재된대로 두고 기재 누락되었으면 확인하여 기재한다.

①사업체명 및 소재지

- (1) 시, 도명부터 번지수까지 상세히 기입되었는가 확인한다.
- (2) 전화번호의 기입이 누락되었으면 전화유무를 재확인하여 기입한다.

②조 직 형 태

사업체명을 대조하여 조직형태 ()속에 “○”표로서 정확히 구분되었는가 검토한다.

- (1) 「조직형태」가 회사법인 및 회사이외 법인일 경우

- ① 조사항목「3. 자본금 또는 출자금」란에 금액이 기입되어 있어야 하며, 조사항목「4. 종업원수」중 (2)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란에 숫자가 기입되어 있으면 안된다.

- ② 「자본금」과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 양자에 모두 숫자가 기입되어 있으면 안되므로 이를 확인하여 정정한다.

(단 전문건설업체는 개인업체일지라도 자본금을 조사하므로 없을 경우는 재확인 한다.)

- ③ 「자본금」이 기입안되었고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란에 숫자가 기입되어 있지 않으면 재확인한다.

- ④ 「자본금」과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란에 숫자가 모두 없으면 재조사하여야 한다.

- (2) 「조직형태」가 개인일 경우

- ① 조사항목「 3. 자본금 및 출자금 」란에 금액이 기입되어 있어서는 안되며, 조사항목「 4. 종업원수 」의 (2)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란에 숫자가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단 전문건설업체 제외)
- ② 「자본금」과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항목에 모두 숫자가 기입되어 있으면 재확인한다. (단 전문건설업체 제외)
- ③ 조사항목「 3. 자본금 또는 출자금 」란에 자본금이 기입되어 있고 조사항목 4의 (2)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란에 숫자가 기입되어 있으면 재확인한다.(단 전문건설업체 제외)
- ④ 「자본금」과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양조사항목에 모두 숫자가 없으면 재조사하여야 한다.

③자본금 및 총매출액

- (1) 자본금 또는 총매출액은 이 회사의 겸업이 포함된 총자본금과 총매출액을 말하는데 회사법인 및 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입되어 있어야 하며 기입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재확인하여 기입토록 한다.(단 전문건설업체는 개인일지라도 자본금을 기입조사하므로 당원 보고서용 집계시에는 개인업체일 경우는 제외한다.)
- (2) 개인사업체는 사선(\)을 긋는다.(단 전문건설업체는 제외)

④종업원수

- (1) 종업원수가 월별 및 직종별로 나누어서 기입되어 있는가를 검토하고

특히 임시고(일용)중 임시기능공과 단순노무자의 1일평균 인원은 매월별 투입연인원을 조업일수로 나누어 계산(소수점이하는 올림)하고 연간합계는 투입연인원의 누계를 조업일수 누계로 나눈 수치를 기입하지 말고 월별 1일평균 인원의 가로(1월부터 12월까지) 합계를 기입하여야 하므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겸업 사업체인 경우 건설업이 아닌 타 산업의 종업원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left(\frac{\text{임시기능공 및 단순노무자의 월별투입연인원}}{\text{1일평균인원}} = \frac{\text{월별조업일수}}{\text{월별투입연인원}} \right)$$

- (2) 월별 종업원수의 계가 합계란의 숫자와 일치하는가를 검산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종업원 구분별 합계숫자와 상호비교하여 내역을 기준으로 정정한다.
- (3) 종업원 구분별 합계숫자에 임시기능공 및 단순노무자의 월별 투입연인원이 그대로 합산된 예가 가끔 있었는데 이런 사례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입한다.

⑤연 간 급 여 액

- (1) 합계액을 검산하고 겸업사업체일 경우 순수한 건설업 부문만 조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급여액합계=사무 및 기타종업원+기술자 및 기술공+기능공+임시기능공+단순노무자+당년도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 (2) 1인당 월간급여액 수준을 검토한다. 검토결과 직종별 피고용자간의 급여액 수준과 크게 괴리현상이 있거나, 타사업체의 급여액 수준과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있을 때는 재확인 보완하도록 한다.

- (3) 「사무 및 기타 종업원, 기술자 및 기술공, 기능공, 임시기능공, 단순 노무자」등의 연간급여액과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의 합계는 조사항목 8의 「203 임금 및 급여」의 숫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⑥ 유형 고정 자산

- (1) 유형고정자산의 종류중 “중기”의 연말총액이 있으면 조사항목 7 「주요건설기계보유대수」에 숫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2) 「(3) 연간처분 및 손해액」의 합계숫자는 조사항목 8의 「205 감가상각비」보다 같거나 많아야 한다.
- (3) 「(4) 연말총액=(1)연초총액+(2)연간취득 및 증·개축액-(3)연간처분 및 손해액」의 등식관계가 맞는가 검토한다.
- (4) 합계를 계산한다.
- (5) 겸업사업체일 경우 타산업분을 제외한 순수한 건설업 부문만의 금액이어야 한다.

⑦ 주요건설기계보유대수

- (1) 합계를 계산한다.
- (2) 유형고정자산의 (4) 중기항목과의 함수관계를 확인한다.

**⑧ 기성액 및 공사비용
(부가가치세 제외)**

- (1) 기성액은 겸업 매출액을 제외하고 건설부문 매출액(전기공사 및 전

- 기통신공사 매출액 포함)만 기입되었나 확인한다.
- (2) 기성액(겸업을 제외한 건설부문 매출액)은 건설공사 실적내역표중 (17) 당년도 기성액 합계보다 같거나 적어야 한다.
 - (3) 기성액에서 매출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킨 금액이 기입되었나를 확인한다.
 - (4) 공사비용에서 매입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작성하였나를 확인한다.
 - (5) 공사비용에는 겸업 산업분을 제외한 순수한 건설업부문만의 비용이 조사되었는가 확인한다.
 - (6) 「203 임금 및 급료」는 조사항목5 「연간급여액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 (7) 「205」의 감가상각비는 조사항목6 「유형고정자산」중 「(3) 연간처분 및 손해액」의 합계보다 같거나 적어야 한다.
 - (8) 영업이익이 적자[공사비용 합계액 > 기성액(총매출액)]인 업체의 조사표는 재확인하고 적요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 (9) 「207 조세공과」에는 납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 기재되었나 확인한다.(납부부가가치세는 별항으로 조사함)
 - (10) 「(2) 합계」란에는 손익계산서상의 일반관리비와 공사원가 계산서상 비용을 합하여 기입되었나 확인하고 합계를 검산한다.(종합건설업체분 예외)
 - (11) 요계표 작성을 위한 부가가치의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203 임금 및 급료」, 「204 복리후생비」, 「205 감가상각비」,
「206 임차료」, 「207 조세공과」, 「(3) 영업이익(기성액-공사비용)」
「313 납부부가세」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때 항목별 비용은 손익계산서상의 비용과 공사원가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예 시”

「 203 임금 및 급료 」=「 손익계산서 」상의 「 203 임금 및 급료 」
+「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 203 임금 및 급료 」

즉, 부가가치 = 203 + 204 + 205 + 206 + 207 +(3)항+ 313

⑨연 초 연 말 재 고 액

- (1) 합계액을 계산한다.
- (2) 겸업 사업체분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⑩면 허 종 류

- (1) 사업체에서 소지한 각종 건설업면허 또는 인·허가사항 등이 빠짐없이 기입되었나 확인한다.
- (2) 건설부장관 면허업체는 반드시 일반면허 또는 특수면허만 기입되어야 한다.
- (3) 대한건설협회 회원사는 전문면허란에 표기되어서는 안된다.
- (4) 전문건설면허는 업체별로 최고 3종까지만 기재할 수 있으므로 4종 이상 기입된 것이 있나 확인한다.
- (5) 특수면허중 포장, 조경면허와 전문면허중 포장보수,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설치면허를 상호 혼동하여 기입하지 않았나 검토한다.
- (6)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업체가 해외건설면허란에 기입이 누락되었으면 확인한다.

2. 건설공사 실적내역표

- (1) 상호 및 대표자명은 통합조사표와 일치하는가 확인한다.
- (2) 통합조사표상의 G.I와 실적내역표의 G.I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3) 「(1) 매수」의 정확히 기입했는지의 여부, 실적내역표 매수를 ()매 중 ()매로 기입했는지 확인
- (4) 공종분류는 조사표 하단의 「공종세분류부호」에 따라 정확히 분류해서 기입하였나 확인한다.
- (5) 전문건설업체분 실적내역표의 「(5) 공종세분류」항목은 사업체에서 분류한 공종대로 둔다.
- (6) 전문건설업체 조사표의 (12)항 계약종류가 2(하도급)이면 (8)항의 () 안에는 원도급자명, (10)항에는 원도급자의 면허번호가 기재되었는가 확인한다.
- (7) 「발주자분류」는 발주자명에 따라 조사표 하단의 「발주자 분류번호」를 기입하게 되었으므로 발주자 분류가 정확히 기입되었나 확인한다.
- (8) 「계약방법」은 1. 일반경쟁, 2. 제한, 3. 지명, 4. 수의 계약 중 해당되는 1개의 부호만 기재되어야 한다.
- (9) 「계약종류」는 1. 원도급, 2. 하도급 중 어느 한 번호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종합건설업체의 실적내역표에는 계약종류가 없으므로 대한 건설협회에서 (11)하도급자명이 나올 경우 (10), (11)란에 붉은 싸인펜으로 「2」를 기입하고 원도급일 때는 「1」을 기입한다.
- (10) 「계약년월」이 1990년일 경우에는 조사기준기간('89.1.1 ~ '89.12.31)이 아니므로 조사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조사사항은 모두 삭제토록 하고 소계 및 합계액도 정정한다.

- (11) 「수령년월」은 당년도('89년)의 공사대금 수령년월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87년 또는 '90년도로 기입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확인
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 (12) 종합건설업체 실적내역표중 「 20 계약총액 」 「 22 '89년까지의 누계
기성액 」, 「 24 '89년도까지의 누계수령액 」란을 확인한다. 전년도
예로 보아 점선 위간에 기재하여야 할 것을 아래칸에 기재한 경우
가 많았음.

3. 요계표 작성 및 내검요령

'85년기준 조사부터는 건설업통계 통합실시계획에 따라 조사방법, 조사
내용 등을 크게 개선하여 실시하였는 바 이에 따른 시계열상의 괴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요계표 작성 및 내검과정에서 각별히 오
차가 제거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1) 요계표 내검

- ① 전문건설업체분 : 조사표와 요계표 모두 자계식으로 업체에서 작성하
였는바, 겸업업체로서 「종업원수」, 「기성액」, 「유형고정자산」,
「주요건설기계」, 「부가가치」, 「공사비용」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
에는 비례배분원칙에 따라 보완 작성한다.
- ② 종합건설업체분 : 종합건설업체는 대한건설협회 본회에서 일괄 작성하
여 당원으로 조사표류와 함께 제출한다.

(2) 항목별 요계표 작성요령

- ① G.I : 실적내역표에 기재된 G.I를 조사표 및 요계표에도 똑같이
기입한다.

② 부가가치 : 통합조사표 (건설업통계조사표) 중 조사항목「 8 기성액 및 공사비용」을 재무제표명세서대로 세분하여 조사하였으므로 부가가치의 산출은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야 한다.

1 단독건설업체 (비겸업체) : 203 + 204 + 205 + 206 + 207 + (3)항 + 313

※ 종전방식과 동일

2 겸업사업체 : 공사비용 (일반관리비 + 공사원가비용)은 건설공사분만을 분리하여 조사하였으므로 단독건설 사업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건설업부분의 산업비율에 따라 배분후 부가가치를 산출하여야 한다.

Ⅲ. 부호기입요령

1. 접수번호 및 전산번호

- 시·도별 접수번호를 전산번호(시·도별)로 사용할 계획이므로 중복되거나 결번이 있어서는 안됨.
- 실적내역표와 통합조사표가 함께 접수되는 경우에는 실적내역표의 매장마다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통합조사표에도 접수번호와 전산번호를 기재한다.
- 실적내역표를 먼저 접수한 사업체는 접수대장에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두었다가 통합조사표에도 실적내역표 제출시 부여한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전산번호도 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한다.
- 실적내역표 접수시 사업체별로 몇매중 몇매를 기재한다.
- 전문 및 기타설비업체의 전산번호는 시·도별로 지방사무소에서 접수번호에 따라 부여하되 종합건설업체는 전산번호를 협회 본회에서 작성한다.

2. G.I

실적내역표와 통합조사표의 G.I(본사소재지, 면허업종, 면허번호)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고 불일치한 경우에는 협회 각 지부에 확인시킨다.

3. 산업분류

건설공사실적내역표상의 공종별 기성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금액이 가

장 큰 공종(주산업)에 따라 산업을 결정하고 산업분류부호는 다음과 같이 3자리 숫자(소분류)로 부여한다.

① 대한건설협회 조사분

공 종 명	공종분류번호	산업분류번호		
건	단독및연립주택	411	511 (건물건설업)	
	아파트	412		
	주거겸용연립주택	413		
	사무실, 시장, 백화점	414		
	호텔, 숙박시설	415		
	은행	416		
	극장, 영화관, 육장	417		
	창고 및 차고	418		
	공장	419		
	관공서건물	420		
	학교	421		
	병원	422		
	문화재유적건물	423		
	교회, 사찰, 종교건물	424		
	축	위험물저장소		425
		위생냉난방		430
		기계기구설치		440
	기타건축	450		

공 종 명	공 종 분 류 번 호	산 업 분 류 번 호
-------	-------------	-------------

토 목	도 로 , 교 량	210	
	댐	220	
	발 전 소 시 설	221	
	항 만	230	
	공 항	231	
	철 도 , 지 하 철	240	
	치 산 , 치 수	250	
	농 립 , 수 산	260 512 (토목건설업)
	농 지 정 리	261	
	상 · 하 수 도	270	
	경 기 장 , 운 동 장	280	
	택 지 조 성	281	
	기 타 토 목 시 설	290	
	1 종 전 기	301	
	2 종 전 기	302	
	전 기 통 신 공 사	310	
	포 장	610	
	철 강 재 설 치	620	
	준 설	630	
	조 경	640	

② 대한전문건설협회 조사분

- 521 : 배관(설비), 난방 및 관련 공사업
- 522 : 도장, 도배 및 실내장식공사업
- 523 :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업
- 524 : 석공 및 미장방수 공사업
- 525 : 목공사업
- 526 : 지붕판금 공사업
- 527 : 철근콘크리트, 철물공사업
- 528 : 토공,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 529 : 달리분류되지 않는 전문직별 건설업

③ 지방통계사무소 조사분

- 521 : 특정연료 업종
- 523 :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업
- 529 : 달리분류되지 않는 전문직별 건설업

4. 조직형태

회사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1
회사외의법인	2
개 인	3

5. 종업원 규모

조사항목 「4 종업원수」에서 가로 세로 맨끝의 합계란의 합계수에 의하여 계층별로 구분 기입한다.

1 ~ 53 인까지	01
54 ~ 113 "	02
114 ~ 233 "	03
234 ~ 593 "	04
594 ~ 1,193 "	05
1,194 ~ 2,393 "	06
2,394 ~ 3,593 "	07
3,594 ~ 5,993 "	08
5,994 ~ 11,993 "	09
11,994 인 이상	10

6. 자본금 규모

조사항목 「 3. 자본금 또는 출자금 」의 금액 계층별로 구분 기입한다.

2,000 천원미만	1
2,000 천원 ~ 4,999 천원	2
5,000 " ~ 9,999 "	3
10,000 " ~ 49,999 "	4
50,000 " ~ 99,999 "	5
100,000 " ~ 499,999 "	6
500,000 " ~ 999,999 "	7
1,000,000 천원 이상	8

(단, 전문건설업체는 개인일 경우에도 자본금 및 출자금을 조사하였으므로 조직형태가 1, 2인 경우만 집계)

7. 총공사액 규모

건설공사 실적내역표중 「당년도 기성액」의 합계를 계층별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5,000 천원미만	1
5,000 천원~ 9,999 천원	2
10,000 " ~ 49,999 "	3
50,000 " ~ 99,999 "	4
100,000 " ~ 499,999 "	5
500,000 " ~ 999,999 "	6
1,000,000 " ~ 4,999,999 "	7
5,000,000 " ~ 9,999,999 "	8
10,000,000 천원이상	9

8. 기 타

— 종합건설업체 실적내역표

- ① 실적내역표 접수시 우측상단에 업체별로 「매수」를 주서로 기입한다.
- ② 실적내역표중 「11 하도급자는 ()안에 원도급자명 기입」란에 원도급자명이 기재되었으면 이 공사는 하도급 공사이므로 분류번호 「2」를 부여(적색 싸인펜사용)하고 없으면 분류번호 「1」을 기재한다.
- ③ 「20 계약총액」, 「22 89년도까지 누계기성액」, 「24 89년도까지의 누계수령액」은 집계항목이 아니므로 적색싸인펜으로 굵게 지운다.

- ④ 모든 실적내역표상 공사건별 일련번호는 공종별로 부여되었으나 전산을 위하여 사업체별 일련번호로 정정(적색으로)한다.

Ⅳ. 조사표 접수요령 (접수대장)

1. 통합조사표와 실적내역표가 동시에 접수될 때

- G.I (본사소재지, 면허업종, 면허번호)가 완전히 일치한가 확인
 - 접수번호를 통합조사표와 실적내역표에 일치되게 기재
 - 실적내역표와 통합조사표의 기성액이 합리적인가 확인후 기재
- ※ 실적내역표상의 기성액은 매출부가세포함
통합조사표상의 기성액(총매출액)은 매출부가세 제외되었음.

2. 실적내역표와 통합조사표가 별도 접수될 때

1) 실적내역표 접수시

- 매장마다 접수번호 및 매수와 G.I가 기재되었는가 확인
- 접수번호를 접수대장에 이기
- G.I를 접수대장에 이기
- 기성액을 접수대장에 이기

2) 통합조사표 접수시

- 실적내역표상의 접수번호 및 G.I와 일치하는가를 접수대장으로 확인
- 실적내역표상의 기성액과 일치하는가 확인후 이기
- 접수번호는 실적내역표 제출시 부여한 접수번호를 이기
- 실적내역표상의 기성액과 통합조사표상의 기성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업체에 직접 확인후 보완하여 보고할것. (추후라도)

3. 접수대장 제출

- 실적내역표, 통합조사표 모두 접수가 끝났으면 시·도지부별로 2부를 복사하여 통계국 및 협회 본회로 제출하고 1부는 지방사무소에 비치할 것.
- 접수대장은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분을 별도 작성

4. 기 타

- 대한설비공사협회가 대한전문건설협회로 부터 독립('89.10.27), 자체협회를 설립하였으므로 설비면허를 갖춘 업체일 경우 조사표, 내역표, 요계표를 각 2부씩 작성 제출토록 하였던 바, 설비면허소지 업체의 조사표류 1부는 별도로 제출한다. <사무소에서 구분>

427-18

89건설업통계조사표 및 실적내역표 접수대장

협회 지부

(단위:천원)

통계사무소

접수번호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본사소재지	면허업종	면허번호	기성액		
							실적내역표	통합조사표	요계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7-19

1989년 건설업통계조사

요 계 표

시
도

(단위 : 천원)

통계사무소

조사담당자	관리계장
㉠	㉠

전 산 번 호	사 업 체 명	종업원수 「조사항목 4」의합계 (1)+(2)	유형고정자산 「조사항목 6」 의④연말총액 의 합계	주요건설 기계보유 대수「조 사항목7」 의29합계	부 가 가 치 「조사항목 8」의 203+204+205+ 206+207+(3)+313	외주공사액 「조사항목 8」 의 211	공 사 비 용 「조사항목 8」중 (2)의 일반관리비 와 공사원가비용 합계	합 계 (1+2+3+4)	당 년 도 기 성 액			
									공 중 별 건설공사실적내역표중 (17)당년도기성액의 합계액 기입			
									1. 1종전기	2. 2종전기	3. 전기통신	4. 기 타
소												
합												

Ⓢ 이 요계표는 잠정집계를 위한 것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
접수번호는 시·도별로 부여하되 중복 혹은 결번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

(매 중 매)

실시기관 : 경제기획원
지정통계 : 111-11-14
1989년 건설업통계조사표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통계목적에만 사용하며 그 밖의 용도로는 절대 보장됩니다.

사업번호	분사 소재지	면허 업종	*사업체번호	사업분류	조직형태	종업원규모	자본금규모	총공사액규모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사업체명 : _____
대표자 : _____
소재지 :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동·읍·면 _____ 가·동·리 _____ 번지 _____ 호 _____

2. 조직형태 (해당란에 표시)
1. 주위회사 2. 유한회사 3. 합명회사 4. 합자회사 5. 회사이외의 법인 6. 개인

3. 자본금 및 총매출액

자본금	천 억	백 억	십 억	억	천 만	백 만	십 만	만	천 원	총매출액	천 억	백 억	십 억	억	천 만	백 만	십 만	만	천 원	

* 자본금은 법인만 기재함.
* 자본금 및 총매출은 기업포함 기재

4. 종업원수 (각종설비, 전기, 전기통신공사에 종사한 종업원만 기재한다.)
○일용직 : 1개월 이상의 고용계약으로 취업시간에 관계없이 고정급여를 받는 종업원
○임시고 : 1개월 미만의 고용계약으로 취업시간에 의해 임금을 받는 종업원
○기술자 및 기술공 : 기술사, 기사 1급, 기사 2급등의 자격면허소지자이거나 기능공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종업원
○기능공 : 기능사 1급, 기능사 2급, 기능사보통의 자격면허소지자이거나 6개월이상 조직적인 기술습득을 요하는 직종에서 1년이상 경험을 가진 종업원(예 : 목공, 조각공, 미장공, 철근공, 도장공, 전공등)
○단순노무자 : 기능공의 조공, 특수인부, 보통인부, 여자인부등 통칭 잡부를 말한다.
○하도급업체의 종업원은 원도급업체의 종업원에서 제외한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1) 피고용자	상용고	① 사무및기타종업원												
		② 기술자및기술공												
		③ 기능공및단순노무자												
	임시고(일용)	조업일수(A)												
		기능공 투입연인원(B) ④ 1일평균원(B÷A)												
단순노무자	단순노무자 투입연인원(C) ⑤ 1일평균원(C÷A)													
	소 계 ①+②+③+④+⑤													
(2)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합 계 (1) + (2)														

5. 연간급여액 (각종설비, 전기, 전기통신공사포함에 지급한 급여액만 기재.)
○연간급여액은 피고용자에게 지불한 급여의 총액으로서 당년도 미불금을 포함(급료, 임금, 수당, 상여금, 현물급여 등)
○(6)란은 89년도분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기입하고, 본 계정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실제지급한 퇴직금을 기입.

구분	천 억	백 억	십 억	억	천 만	백 만	십 만	만	천 원	구분	천 억	백 억	십 억	억	천 만	백 만	십 만	만	천 원
(1) 사무및기타종업원										(4) 임시 기능공									
(2) 기술자및기술공										(5) 단순노무자									
(3) 기능공										(6) 말년도입액									
합 계 [(1) + (2) + (3) + (4) + (5) + (6)]																			

* 문의전화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산업통계과(720-2577-8) 통계사무소(Tel)

6. 유형고정자산 (각종설비, 전기, 전기통신공사에 해당하는 자산만 기재함.)
○연초·연말총액(비상각잔액) : 연초·연말 현재의 장부가격에 따르고 불가능한 때는 첫기에 의한.
○연간취득액 및 증·개축액 : 구입한 것은 운임·설치비를 포함한 구입가격으로, 양수받은 것은 양수당시의 첫가로, 자기 건설의 완료인 경우에는 연간 지출한 모든 비용을 기입한다.
○연간처분 및 손해액 : 매각, 양도, 재해, 도난등으로 인한 감소액과 당기 감가상각액을 포함한다.
○따라서 연간처분 및 손해액의 합계는 조사행목 8의 「205. 감가상각비」보다 많거나 같아야 한다.
① = ② - ③

	(1) 연초총액(비상각잔액) 89. 1. 1 현재				(2) 연간취득 및 증·개축액				(3) 연간처분 및 손해액				(4) 연말총액(비상각잔액) 89. 12. 31 현재			
	천 억	백 억	십 억	억	천 억	백 억	십 억	억	천 억	백 억	십 억	억	천 억	백 억	십 억	억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중기																
(5) 차량·선박·운반구																
(6) 공구, 기구, 비품																
(7) 건설가계정																
합 계																

7. 주요건설기계 보유대수 (타입체에 대한 자기소유 장비는 포함하고 대여받은 장비는 제외한다.)
각종설비,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에 사용되는 기계만 기재한다.
○해외반출 소유장비는 해외건설조사표에 별도로 작성한다.
○비등록장비도 포함 기입한다.

중기부호	중 기 명	보유대수				중기부호	중 기 명	보유대수			
		천	백	십	일			천	백	십	일
01-1	블도우저(20톤이상)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01-2	블도우저(20톤미만)					15	콘크리트 펌프				
02-1	굴삭기(1㎡이상)					16	아스팔트 믹싱 프랜트				
02-2	굴삭기(1㎡미만)					17	아스팔트 휘니셔				
03-1	로우더(타이어식)					18	아스팔트 살포기				
03-2	로우더(무한궤도식)					19	골재살포기				
04	지게차					20	쇄석기				
05	스크레이퍼					21	공기압축기				
06	덤프트럭(12톤이상)					22	천공기				
07-1	기중기(타이어식)					23	향타 및 향발기				
07-2	기중기(무한궤도식)					24	사리채취선				
08	모우터그레이더					25	준설선				
09	로울러					26	타우어크레인(비등록장비)				
10	노상안정기					27	12톤미만덤프트럭(비등록장비)				
11	콘크리트젓프렌트					28	기타비등록장비				
12	콘크리트휘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29	합 계				

8. 기성액 및 공사비용(부가가치세 제외)		금 액									
※ 기성액 및 공사비용은 건설공사분(각종설비, 전기, 전기통신)에 대하여만 기재하고 점입분은 제외한다.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원	
(1) 기 성 액	건설공사 기성액(외주공사비 포함)										
(2) 공 사 비	201. 원재료비(자급)	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									
	202. 보조재료비	일반관리비(소모품, 사무용품)와 현장경비(소모공구비등)									
	203. 임금 및 급료 (인건비총계로서 건설업 통계조사표 5. 연간급여액 합계와 일치)	임금 및 급료(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상의 금액)									
	204. 복리및후생비 (보험료중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는 포함)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상의 의료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기타									
	205. 감가상각비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상의 감가상각비, 특별상각비									
	206. 건물·장비 지급 임차 료	건물·장비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상의 건물, 장비, 중기등의 임차료								
		토 지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상의 토지 임차료								
	207. 조 세 공 과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상의 세금과 공과									
	208. 수 선 비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상의 수선비(기계·장치, 수선 유지비등)									
	209. 전력·용수·연료·광열비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상의 동력, 용수, 광열비									
	210. 잡 비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상의 여타 계정과 기타									
211. 외 주 공 사 비	원가계산서상의 외주비										
(2) 합 계	201 + 202 + 203 + + 211										
(3) (1) - (2)	(기성액) - (공사비용)										
312. 발 주 자 공 급 원 재 료 비	계약금액이외 발주자로부터 받은 원재료중 공사에 투입된 원재료액										
313. 납부부가가치세	매출부가가치세 - 매입부가가치세										

9. 연초, 연말 재고액																					
○평가치는 장부가격에 의하되, 불능시에는 시가로 평가한다 ○하도급공사를 위하여 원도급자로부터 지급받은 것과 발주자급원자재는 제외한다.																					
		① 연초재고 (1989. 1. 1 현재액)							② 연말재고액 (1989. 12. 31 현재액)												
		백	십	억	천	백	십	만	만	천	원	백	십	억	천	백	십	만	만	천	원
(1) 원 재 료																					
(2) 연 료																					
(3) 저 장 품																					
합 계																					
10. 면허 종류(해당하는 면허 종류 번호에 ○표를 한다)																					
90. 1 종전기공사					95. 오수정화설비																
91. 2 종전기공사					96. 도시가스설비																
92. 전기통신공사					97. 소방설비																
93. 특정연료설비																					
94. 정화조설비																					
11. 임대수입																					
○ 건물을 빌려주고 받은 연간 임대수입을 말한다.																					
○ 업체에서 보유중인 건설중장비를 대여해 준 댓가로 받은 임대수입금액을 말한다.																					
		백	십	억	천	백	십	만	만	천	원										
결 업 산 업												건 물									
												건설중장비									
												계									
(적요)																					
【기입시 유의사항】																					
○본 조사표는 건설공사에 관련된 수치만 기입함(겸업인 경우 피고용자, 연간급여액, 유형고정자산, 기계보유대수, 공사비용, 연초·연말재고액의 구분이 곤란할 때는 총매출액에 대한 건설공사 매출액 비율로 배분하여 기재함.)																					
○면허번호는 업종이 2종 이상일때 기성액이 가장 많은 업종의 면허번호를 기재함. (업체별 고유번호가 되어 계속 이용되므로 변경할 수 없음.)																					
○*표가 있는 란은 기입하지 않음.																					
○5. 연간급여액의 합계 = 8. 기성액 및 공사비용의 203. 임금 및 급료																					
○조직형태가 개인인 경우에는 4. 종업원수 란의, (2)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란에 반드시 기입되어야 함.																					
○조업일수는 매월간 조업일수이므로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작성일자 1989.					전화번호:					통 계 사 무 소											
작성부서					조사담당자					①											
작성 자					①					관 리 계 장					①						

* 접수
번호

경제기획원제출용 (표 3)

실시기관 : 경제기획원
대한전문건설협회
지정통계 : 111-11-14
368-21-01

1989년건설업통계조사표

(전 문)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통계목적에만 사용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 전산번호	본사소재지	대표업종	대표면허번호	※ 산업분류	※ 조직형태	※ 종업원규모	※ 자본금규모	※ 총공사액규모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사업체명 : _____
대표자 : _____ 구·로 _____ 전화번호 _____
소재지 :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동·읍·면 _____ 가·동·리 _____ 번지 _____ 호 _____

2. 조직형태 : 사업체에 해당되는 부호를 "우측"란에 기입함(예시 : 주식회사일때 "1"이라고 표기함) 부호
1. 주식회사 2. 유한회사 3. 합명회사 4. 합자회사 5. 회사이외의 법인 6. 개인 기입

3. 자본금(자산) 및 총매출액
* 법인은 자본금, 개인은 자산평가액을 기재함
* 총매출액은 겸업 포함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원	총매출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원

4. 종업원수 * 전문(전기, 전기통신공사포함)공사 종사한 종업원수만 기재한다.
○ 상용고 : 1개월 이상의 고용계약으로 취업시간에 관계없이 고정급여를 받는 종업원
○ 임시고 : 1개월 미만의 고용계약으로 취업시간에 의해 임금을 받는 종업원
○ 기술자 및 기술공 : 기술사, 기사1급, 기사2급 등의 자격면허소지자이거나 기능공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종업원
○ 기능공 : 기능사1급, 기능사2급, 기능사보통의 자격면허소지자이거나 6개월이상 조직적인 기술습득을 요하는 직종에서 1년이상 경력을 가진 종업원(예 : 목공, 조적공, 미장공, 철근공, 도장공, 전공등)
○ 단순노동자 : 기능공의 조공, 특수인부, 보통인부, 여자인부등 통칭 잡부를 말한다.
○ 하도급업체의 종업원은 원도급업체의 종업원에서 제외한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1) 피고용자	상용고	①사무 및 기타종업원															
		②기술자 및 기술공															
		③기능공 및 단순노동자															
	임시고(일용)	조업일수(A)															
		기능공	투입연인원(B)														
			④ 1일평균 인원(B÷A)														
		단순노동자	투입연인원(C)														
	⑤ 1일평균 인원(C÷A)																
	소계①+②+③+④+⑤																

(2)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합 계 (1)+(2)															
-------------	--	--	--	--	--	--	--	--	--	--	--	--	--	--	--

5. 연간급여액 * 전문(전기, 전기통신공사포함)공사에 지급한 급여액만 기재.
○ 연간급여액은 피고용자에게 지불한 급여의 총액으로서 당년도 미불금을 포함(급료, 임금, 수당, 상여금, 현물급여 등)
○ (6)란은 89년도분 퇴직급여충당금을 기입하고, 본 계정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실제지급한 퇴직금을 기입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원	구 분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원
(1) 사무 및 기타종업원											(4) 임시기능공										
(2) 기술자 및 기술공											(5) 단순노동자										
(3) 기능공											(6) 통상연월급										
합 계 [(1)+(2)+(3)+(4)+(5)+(6)]																					

6. 유형고정자산 * 전문(전기, 전기통신공사포함)공사에 해당하는 자산만 기재함.
○ 연초·연말총액(미상각잔액) : 연초·연말 현재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불가능할 때는 시가에 의함.
○ 연간취득액 및 증개축액 : 구입한 것은 운임·설치비를 포함한 구입가격으로, 양수받은 것은 양수당시의 시가로 자가건설의 완료인 경우에는 연간 지출한 모든 비용을 기입한다.
○ 연간처분 및 손해액 : 매각, 양도, 재해, 도난등으로 인한 감소액과 당기 감가상각액을 포함한다.
○ 따라서 연간처분 및 손해액의 합계는 조사항목8의 「205. 감가상각비」보다 많거나 같아야 한다.
④ = ① + ② - ③

		① 연초총액(미상각기초잔액) 89.1.1 현재			② 연간취득및증개축액			③ 연간처분및손해액			④ 연말총액(미상각기말잔액) 89.12.31 현재										
		천	백	십	억	천	백	십	억	천	백	십	억	천	백	십	억				
(1)	토 지																				
(2)	건 물																				
(3)	구 축 물																				
(4)	중 기																				
(5)	차 량 · 선 박 · 운 반 구																				
(6)	공 구 , 기 구 , 비 품																				
(7)	건 설 가 계 정																				
	합 계																				

7. 주요건설기계 보유대수 ○ 타업체에 대한 자기소유 장비는 포함하고 대여받은 장비는 제외한다.
* 전문(전기, 전기통신공사 포함)공사 ○ 해외반출 소유장비는 해외건설조사표에 별도로 작성한다.
에 이용되는 기계만 기재한다. ○ 비등록장비도 포함기입한다.

중기부호	중 기 명	보유대수		중기부호	중 기 명	보유대수	
		백	십			일	백
01-1	불도우저 (20톤이상)			14	콘크리트믹서트럭		
01-2	불도우저 (20톤미만)			15	콘크리트펌프		
02-1	굴삭기 (1㎥이상)			16	아스팔트믹싱프랜트		
02-2	굴삭기 (1㎥미만)			17	아스팔트휘니셔		
03-1	로울러 (타이어식)			18	아스팔트살포기		
03-2	로울러 (무한궤도식)			19	골재살포기		
04	지게차			20	쇄석기		
05	스크레이퍼			21	공기압축기		
06	덤프트럭 (12톤이상)			22	천공기		
07-1	기중기 (타이어식)			23	항타 및 항발기		
07-2	기중기 (무한궤도식)			24	사리채취선		
08	모우터그레이더			25	준설선		
09	로울러			26	타우어크레인(비등록장비)		
10	노상안정기			27	12t미만덤프트럭(비등록장비)		
11	콘크리트벡칭프랜트			28	기타비등록장비		
12	콘크리트휘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합		계

8. 기성액 및 공사비용 (부가가치세 제외)		금 액				
※ 기성액 및 공사비용은 건설공사분 (전문, 전기, 전기통신)에 대하여만 기재하고 겸업분은 제외한다.		백	십	천	백	천
		억	억	만	만	원
(1) 기 성 액	손익계산서의 건설공사 매출액(외주공사비 포함)					
(2) 공 사 비	201. 원재료비(자급)	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				
	202. 보 조 재 료 비	일반관리비(소모품, 사무용품)와 현장경비(소모공구비등)				
	203. 임금 및 급료 (인건비총계로서 건설업 통계조사표 5. 연간급여액 합계와 일치)	임금 및 급료(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상의 금액)				
	204. 복리 및 후생비 (보험료중산재보험료·의료보험료는포함)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상의 의료보험료, 산재보험료등 기타				
	205. 감 가 상 각 비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상의 감가상각비, 특별상각비				
	206. 지 급 임 차 료	건 물 · 장 비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상의 건물, 장비, 중기등의 임차료			
		토 지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상의 토지 임차료			
	207. 조 세 공 과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상의 세금과 공과				
	208. 수 선 비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상의 수선비 (기계·장치·수선유지비등)				
	209. 전 력 · 용 수 · 연 료 · 광 열 비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상의 동력, 용수, 광열비				
	210. 잡 비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상의 여타 계정과 기타				
211. 외 주 공 사 비	원가계산서상의 외주비					
(2) 합 계	201+202+203+.....+211					
(3) (1)-(2)	(기성액)-(공사비용)					
312. 발주자공급 원재료비	계약금액이의 발주자로부터 받은 원재료중 공사에 투입된 원재료액					
313. 납부부가치세	매출부가가치세-매입부가가치세					

9. 연초·연말 재고액 ○ 평가는 장부가격에 의하되, 불능시에는 시가로 평가한다.
○ 하도급공사를 위하여 원도급자로부터 지급받은 것과 발주자급원자재는 제외한다.

	①연초재고(1989. 1. 1현재액)					②연말재고액(1989. 12. 31현재액)				
	백	십	억	천	만	백	십	억	천	만
(1) 원 재 료										
(2) 연 료										
(3) 저 장 품										
합 계										

10. 사업체면허종류(전문면허)

	면 허 업 종	분 류 부 호
(1) 공 사 업		
(2) 공 사 업		
(3) 공 사 업		

(예시)

공 사 업	면 허 업 종	분 류 부 호
설 비		1 2

※면허분류부호는 실적내역표상의 업종별부호를 참조

11. 임대수입 (1989. 12. 31현재액)

	백	십	억	천	만	백	만	십	만	천	원
1) 건물											
2) 장비											
합 계											

점업타산업 (전문업종외)

(적요)

【기입시유의사항】

- 본조사표는 건설공사에 관련된 금액만 기입함(겸업인경우는 피고용자, 연간급여액, 유형고정자산, 기계보유대수, 공사비용, 연초·연말재고액을 매출액 비율로 배분하여 기재함).
- 대표면허번호는 업종이 2종 이상일때 기성액이 가장 많은 전문업종의 면허번호를 기재해야되며 업체별 고유번호가 되어 매년자료처리 결과에 유용하게 됨.
- ※표가 있는 란은 기입하지 않음.
- 「5. 연간급여액」의 합계=「8. 기성액 및 공사비용」의 (203. 임금 및 급료)
- 조직형태가 개인인 경우에는 「4. 종업원수」란의, (2)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란에 반드시 기입되어야 함.
- 조업일수는 매월간 조업일수이므로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작성부서: _____ (서울) 통계사무소

작성 자: _____ (인)

전화번호: _____

관리계장: _____

내 검 자: _____

89년도국내건설공사실적내역표

상 호: _____
 대표자: _____
 T E L: _____

경제기획원제출용(표 4)

전 산 번 호	※본사 소재지	※대표 업종	대 표 면 허 번 호

매 수

(1)※업종부호

접 수 번 호

(2) 일 련 번 호	(3) 공 사 명	(4)※	(5)※	(6) 발 주 자 명	(7) 하 도 급 자 는 () 에 일 반 간 선 회 사 명 기 입	(8)※	(9)	(10)	(11)	(12)	(13)	(14)	(15) 당 년 도 계 약 액 (또 는 이 월 된 공 사 금 액)	(16) 당 년 도 발 주 자 공 급 원 자 재 가 격	(17) 당 년 도 기 성 액	(18) 당 년 도 수 령 액					(19) 수 령 년 월	(20) 선 금 급 수 령 액			(21) 건 축 행 위 구 분 1.신축 2.기타	(22)※ 설 비 업 종 세 부 공 중 비 기 입	(23) 비 고												
		공 중 세 분 류 (부 호 기 입)	공 사 지 역 (부 호 기 입)			발 주 자 분 류 (부 호 기 입)	하 도 급 공 사 의 경 우 일	계 약 방 법	계 약 종 류	계 약 년 월	계 약 년 월	계 약 년 월				작 공 년 월	준 공 년 월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1.일반 반 건 설	1. 원 도 급																															
					()																																		
					()																																		
					()																																		
					()																																		
					()																																		
					()																																		
					()																																		
					()																																		
					()																																		
					()																																		
					()																																		
		합(소)					계																																

(주의사항) ※ 1. 업종별로 별장 기재한다. 2. 전년도 미기성액('88년도에서 이월된 공사금액)부터 기재하고 소계를 작성한 다음 당년도 분을 계약일자 순으로 기재하고 합계를 기재한다.
 3. ※란은 반드시 해당코드를 찾아 해당번호를 기재한다. 4. 각 장마다 소계를 기재한 다음 끝장에 합계를 기재한다. 5. (22)란은 설비업종만 기재한다. (교제 35p 참조)

※ 각종 분류별 코드번호

※본사 소재지 및 공사 지역(5)별 부호코드	※면허업종(1)별부호코드	※공중세분류(4)별부호코드			※ 발 주 자 (8) 별 부 호 코 드																																																																																																																									
					정 부 기 관	지 방 자 치 단 체	기 타	민 간 부 문																																																																																																																						
11:서울 33:충북	01:목 공 12:설 비	210:도로, 교량 및 도로터널	301:1층 전기	420:관공서건축(공공단체건물	041:내 부 부	049:건 설 부	011:서울시및 산하기관	032:강 원 도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colspan="2">091:공공단체</td> <td colspan="4">(1) 제 조 업</td> <td colspan="4">(2) 비제조업</td> </tr> <tr> <td colspan="2">092:국영기업체</td> <td colspan="4">950:음식료품</td> <td colspan="4">960:농림·수산</td> </tr> <tr> <td colspan="2">093:주한외국기관</td> <td colspan="4">951:선 유 류</td> <td colspan="4">961:광 업</td> </tr> <tr> <td colspan="2"></td> <td colspan="4">952:나무제품, 가구</td> <td colspan="4">962:전기, 가스, 수도</td> </tr> <tr> <td colspan="2"></td> <td colspan="4">953:종이제품, 인쇄</td> <td colspan="4">963:도·소매, 음식, 숙박</td> </tr> <tr> <td colspan="2"></td> <td colspan="4">954:파압물, 석유, 석탄</td> <td colspan="4">964:운수, 창고 및 통신</td> </tr> <tr> <td colspan="2"></td> <td colspan="4">955:비금속광물제품</td> <td colspan="4">965:금융, 보험</td> </tr> <tr> <td colspan="2"></td> <td colspan="4">956:제1차제품(철강업)</td> <td colspan="4">966:부동산업(건설회사의 분양업</td> </tr> <tr> <td colspan="2"></td> <td colspan="4">957:조립금속(기계)</td> <td colspan="4">967:건설업(분양업대는 부동산업</td> </tr> <tr> <td colspan="2"></td> <td colspan="4">958:기타제조업</td> <td colspan="4">968:사업 서비스업</td> </tr> <tr> <td colspan="2"></td> <td colspan="4"></td> <td colspan="4">969:사회및 개인 서비스업</td> </tr> </table>								091:공공단체		(1) 제 조 업				(2) 비제조업				092:국영기업체		950:음식료품				960:농림·수산				093:주한외국기관		951:선 유 류				961:광 업						952:나무제품, 가구				962:전기, 가스, 수도						953:종이제품, 인쇄				963:도·소매, 음식, 숙박						954:파압물, 석유, 석탄				964:운수, 창고 및 통신						955:비금속광물제품				965:금융, 보험						956:제1차제품(철강업)				966:부동산업(건설회사의 분양업						957:조립금속(기계)				967:건설업(분양업대는 부동산업						958:기타제조업				968:사업 서비스업										969:사회및 개인 서비스업			
091:공공단체		(1) 제 조 업				(2) 비제조업																																																																																																																								
092:국영기업체		950:음식료품				960:농림·수산																																																																																																																								
093:주한외국기관		951:선 유 류				961:광 업																																																																																																																								
		952:나무제품, 가구				962:전기, 가스, 수도																																																																																																																								
		953:종이제품, 인쇄				963:도·소매, 음식, 숙박																																																																																																																								
		954:파압물, 석유, 석탄				964:운수, 창고 및 통신																																																																																																																								
		955:비금속광물제품				965:금융, 보험																																																																																																																								
		956:제1차제품(철강업)				966:부동산업(건설회사의 분양업																																																																																																																								
		957:조립금속(기계)				967:건설업(분양업대는 부동산업																																																																																																																								
		958:기타제조업				968:사업 서비스업																																																																																																																								
						969:사회및 개인 서비스업																																																																																																																								
21:부산 34:충남	02:토 공 13:상하수도	220:댐	302:2층 전기	421:학 교	042:재 무 부	050:보 사 부	012:서울시교육위원회	033:충청북도																																																																																																																						
22:대구 35:전북	03:미장방수 14:보령그라우팅	221:발전소 시설	310:전기통신공사	422:방 원	043:법 무 부	051:노 동 부	021:부산시	034:충청남도																																																																																																																						
23:인천 36:전남	04:석 공 15:철도 계도	230:항 만	411:난독주택 및 연립주택	423:문화재 및 유적건물	044:국 방 부	052:교 통 부	022:대구시	035:전라북도																																																																																																																						
24:광주 37:경북	05:도 장 16:포장유지보수	231:항 공	412:아파트	424:교회, 사찰동종교건물	045:문 교 부	053:체 신 부	023:인천시	036:전라남도																																																																																																																						
25:대전 38:경남	06:조 직 17:수 중	240:철도·철도터널 및 지하철	413:주거경용 및 연립주택	425:위험물저장소	046:농수산부	054:문 공 부	024:광주시	037:경상북도																																																																																																																						
31:경기 39:제주	07:비 계 18:조경식재	250:차산·지수 및 사망하천	414:사무실·상업용건물 및 시장	430:위생·방년방	047:상 공 부	055:체 육 부	025:대전시	038:경상남도																																																																																																																						
32:강원	08:광 호 19:조경시설물	260:농림·수산 및 관계수로	백화점	440:기계기구설치	048:동 자 부	056:기 타	031:경기도	039:세 주 도																																																																																																																						
	09:지방판매금 90:1층전기	261:농지정리	415:호텔·숙박시설(복합부동산포함)	441:기타 건축																																																																																																																										
	10:철근콘크리트 91:2층전기	280:경기장·운동장·공원시설	416:은 행	501:특정연료설비																																																																																																																										
	11:철 물 92:전기통신	281:백지조성	417:극장·영화관및유강중 위하시설	502:정화조설비																																																																																																																										
		290:기타토목시설	418:창고 및 차고	503:오수정화설비																																																																																																																										
			419:공 장	504:도시가스설비																																																																																																																										
				505:소방설비																																																																																																																										

경 제 기 획 원 대 한 전 문 건 설 협 회

1989년 건설업통계조사

결 과 표 양 식

산 업 통 계 과

결 과 표 양 식

1. 전 건설업체에 관한 표

1. 산업소분류 및 조직형태별 총괄.....	5
2. 산업소분류 및 자본금규모별 총괄	6
3. 산업소분류 및 종업원규모별 총괄	7
4. 산업소분류 및 총공사액규모별 총괄	8
5. 조직형태종업원규모 및 지역별 사업체수	9
6. 산업소분류 종업원규모별 종업원수 및 급여액	10
7. 산업소분류 종업원규모 및 월별 피고용자수	11
8. 산업소분류 공사액규모 및 월별 피고용자수	12
9. 공중 및 공사지역별 수주액	13
10. 공중 및 발주자별 수주액	14
11. 발주자 및 공사지역별 수주액	16
12. 공중 및 공사지역별 원도급공사 시공액	17
13. 공중 및 발주자별 시공액	18
14. 공중 및 발주자별 원도급공사 시공액	20
15. 공중 및 발주자별 하도급공사 시공액	22
16. 발주자 및 공사지역별 원도급공사 시공액	24
17. 공중 및 공사지역별 하도급공사 시공액	25
18. 공중 및 공사지역별 미기성액	26
19. 산업소분류 종업원규모별 공사비용	27
20. 산업소분류 종업원규모별 및 조직형태 자본금규모별 부가가치	28
21. 산업소분류 및 종업원규모별 사업체당 종업원 1인당 기성액 및 부가가치...	29

22. 산업소분류 및 종업원규모별 재고자산	30
23. 산업소분류 종업원규모 및 종류별 유형고정자산	31
24. 산업소분류 종업원규모 및 주요기계보유대수	33
25. 산업분류 및 사업체지역별 종업원 월별 투입연인원	35
26. 사업체지역 및 면허종류별 연사업체수	36

2. 건설부장관 면허업체에 관한 표

27. 산업소분류 및 조직형태별 총괄	39
28. 산업소분류 및 자본금규모별 총괄	40
29. 산업소분류 및 종업원규모별 총괄	41
30. 산업소분류 및 총공사액 규모별 총괄.....	42
31. 조직형태 종업원규모 및 지역별 사업체수	43
32. 산업소분류 종업원규모별 종업원수 및 급여액	44
33. 산업소분류 종업원규모 및 월별 피고용자수	45
34. 산업소분류 공사액규모 및 월별 피고용자수	46
35. 공중 및 공사지역별 수주액	47
36. 공중 및 발주자별 수주액	48
37. 발주자 및 공사지역별 수주액	50
38. 공중 및 공사지역별 원도급공사 시공액	51
39. 공중 및 발주자별 시공액	52
40. 공중 및 발주자별 원도급공사 시공액	54
41. 공중 및 발주자별 하도급공사 시공액	56

42. 발주자 및 공사지역별 원도급공사 시공액	58
43. 공중 및 공사지역별 하도급공사 시공액	59
44. 공중 및 공사지역별 미기성액	60
45. 산업소분류 종업원규모별 공사비용	61
46. 산업소분류 종업원규모별 및 조직형태별 부가가치	62
47. 산업소분류 및 종업원규모별 사업체종업원1인당 기성액 및 부가가치	63
48. 산업소분류 및 종업원규모별 재고자산	64
49. 산업소분류 종업원규모 및 종류별 유형고정자산	65
50. 산업소분류 종업원규모 및 주요기계보유대수	67
51. 산업소분류 및 사업체지역별 종업원 월별 투입연인원	69
52. 사업체지역 및 면허종류별 연사업체수	70

3. 해외건설에 관한 표

53. 산업소분류 및 조직형태별 총괄	73
54. 산업소분류 및 자본금규모별 총괄	74
55. 산업소분류 및 종업원규모별 총괄	75
56. 산업소분류 및 총공사액 규모별 총괄	76
57. 산업소분류 종업원규모별 종업원수 및 급여액	77
58. 산업소분류 종업원규모 및 월별피고용자수	78
59. 산업소분류 공사액규모 및 월별피고용자수	79
60. 공중 및 공사지역별 원도급공사 시공액.....	80
61. 공중 및 공사지역별 하도급공사 시공액.....	80
62. 공중 및 공사지역별 수주액	81
63. 공중 및 공사지역별 미기성액	81

64. 산업소분류 종업원규모별 공사비용	82
65. 산업소분류 종업원규모별 및 조직형태자본금 규모별 부가가치	83
66. 산업소분류 및 종업원규모별 재고자산	84
67. 산업소분류 종업원규모 및 종류별 유형고정자산	85
68. 산업소분류 종업원규모 및 주요기계보유대수	87
69. 산업소분류 및 종업원규모별 사업체당종업원1인 당기성액 및 부가가치	89

1. 전 건설업에 관한 표

1. 산업소분류 및 조직형태별 총괄

(금액단위: 백만원)

Summary Figures by Type of Legal Organization and Sub-division of Industry

(Unit: million)

조직형태별	분류번호 Code No.	사체업수 No. of Establishments	종원업수 No. of Workers	급여액 Remuneration	수주액 Value of Order Received	기성액 Value of Construction			미기성액 Value of Carry-over Work	공사비용 Cost of Construction	부가가치 Value Added	연말고액 Value of Year-end Inventories	연말유형고정자산 Year-end Fixed Assets	주요기계보유대수 No. of Major Equipments	Legal Organization	Code No.
						계 Total	원도급공사 Original Contract	하도급공사 Sub-contract								
건설업	5	10	10	10	10	10	10	10	12	12	12	12	12	12	Construction as a whole	5
회사법인	1														Company Corporation	1
회사 이외 법인	2														Other Corporation	2
개인	3														Individual	3
종합건설업	51														General	51
건축건설업	511														Building	511
토목건설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전문직별건설업	52														Special	52
배관, 난방 및 관련공사업	521														Plumbing, Heating and Related Works	521
도장도배 및 실내장식공사업	522														Painting, Paper Hanging and Decorating Works	522
전기공사업	523														Electrical Works	523
석공, 미장 및 방수공사업	524														Masonry, Stone Setting, Plastering and Waterproofing Works	524
목공사업	525														Carpentry and Flooring Works	525
지붕 및 기 및 합석공사업	526														Roofing and Sheet Metal Works	526
철골, 철근장치공사업	527														Installation of Steel Frame, Steel Reinforcing and Building Equipment	527
토공, 굴정, 해체공사업	528														Excavation, Water Well Drilling and Wrecking and Demolition Works	528
기타 전문직별공사업	529														Others	529

2. 산업소분류 및 자본금 규모별 총괄
Summary Figures by Size of Capital Stock and Sub-division of Industry

(금액단위 : 백만원)

(Unit: million)

자본금 규모별	분류번호 Code No.	사체업수 No. of Establishments	종원업수 No. of Workers	급여액 Remuneration	수주액 Value of Order Received	기성액 Value of Construction			미기액 Value of Carry-over Work	공사비 Cost of Construction	부가가치 Value Added	연말재고액 Value of Year-end Inventories	연말유형고정자산 Year-end Fixed Assets	주요기계보유대수 No. of Major Equipments	Size of Capital Stock	Code No.
						계 Total	원도급공사 Original Contract	하도급공사 Sub-contract								
건설업	5	10	10	10	10	10	10		12	12	12	12	12	12	Construction as a Whole	5
200만원미만	1														less than 2 million won	1
200 ~ 499	2														200 ~ 499	2
500 ~ 999	3														500 ~ 999	3
1,000 ~ 4,999	4														1,000 ~ 4,999	4
5,000 ~ 9,999	5														5,000 ~ 9,999	5
10,000 ~ 49,999	6														10,000 ~ 49,999	6
50,000 ~ 99,999	7														50,000 ~ 99,999	7
100,000만원이상	8														10 billion won or more	8
종합건설업	51														General	51
건축건설업	511														Building	511
토목건설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전문직별건설업	52														Special	52
배관, 난방및관련공사업	521														Plumbing, Heating and Related Works	521
도장도배및실내장식공사업	522														Painting, Paper Hanging and Decorating Works	522
전기공사업	523														Electrical Works	523
석공, 미장및방수공사업	524														Masonry, Stone Setting, Plastering Waterproofing Works	524
목공사업	525														Carpentry and Flooring Works	525
지붕및기및합석공사업	526														Roofing and Sheet Metal Works	526
철골, 철근장치공사업	527														Installation of Steel Frame, Steel Reinforcing and Building Equipment	527
토공, 굴정, 해체공사업	528														Excavation, Water Well Drilling Wrecking and Demolition Works	528
기타전문직별공사업	529														Others	529

3. 산업소분류 및 종업원규모별총괄
Summary Figures by Size of Workers and Sub-division of Industry

(금액단위 : 백만원)

(Unit : million)

종업원규모별	분류번호 Code No.	사체업수 No. of Establishments	종업원수 No. of Workers	급여액 Remuneration	수주액 Value of Order Received	기성액 Value of Construction			미성액 Value of Carry-over Work	공사비용 Cost of Construction	부가가치 Value Added	연말발주액 Value of Year-end Inventories	연말유형고정자산 Year-end Fixed Assets	주요기계보유대수 No. of Major Equipments	Size of Workers	Code No.
						계 Total	원도급공사 Original Contract	하도급공사 Sub-contract								
건설업	5	10	10	10	10	10	10	12	12	12	12	12	12	Construction as a whole	5	
5인미만	1													less than 5 persons	1	
5 ~ 9	2													5 ~ 9	2	
10 ~ 19	3													10 ~ 19	3	
20 ~ 49	4													20 ~ 49	4	
50 ~ 99	5													50 ~ 99	5	
100 ~ 199	6													100 ~ 199	6	
200 ~ 299	7													200 ~ 299	7	
300 ~ 499	8													300 ~ 499	8	
500 ~ 999	9													500 ~ 999	9	
1,000인이상	10													1,000 persons or more	10	
종합건설업	51													General	51	
건축건설업	511													Building	511	
토목건설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전문직별건설업	52													Special	52	
배관, 난방및관련공사업	521													Plumbing, Heating and Related Works	521	
도장도배및실내장식공사업	522													Painting, Paper Hanging and Decorating Works	522	
전기공사업	523													Electrical Works	523	
석공, 미장및방수공사업	524													Masonry, Stone Setting, Plastering Waterproofing Works	524	
목공사업	525													Carpentry and Flooring Works	525	
지붕잇기및합석공사업	526													Roofing and Sheet Metal Works	526	
철골, 철근장치공사업	527													Installation of Steel Frame, Steel Reinforcing and Building Equipment	527	
토공, 굴정, 해체공사업	528													Excavation, Water Well Drilling, Wrecking and Demolition Works	528	
기타전문직별공사업	529													Others	529	

4. 산업소분류 및 총공사액 규모별 총괄

(금액 단위 : 백만원)

Summary Figures by Size of Total Construction Value and Sub-division of Industry

(Unit : million)

공사액 규모 별	분류번호 Code No.	사 체 업 수 No. of Establish-ments	종 원 업 수 No. of Workers	급 여 액 Remuner-ation	수 주 액 Value of Order Received	기성액 Value of Construction			미 성 기 액 Value of Carry-over Work	공 사 용 비 Cost of Con-struction	부 가 치 Value Added	연 말 재 고 액 Value of Year-end Inventories	연 말 유 형 고정 자산 Year-end Fixed Assets	주요 기계 보유대수 No. of Major Equipments	Construction Value	Code No.
						계 Total	원도급공사 Original Contract	하도급공사 Sub-contract								
건 설 업	5	10	10	10	10	10	10	10	12	12	12	12	12	12	Construction as a whole	5
500 만원미만	1														less than 5 million won	1
500 ~ 999	2														500 ~ 999	2
1,000 ~ 4,999	3														1,000 ~ 4,999	3
5,000 ~ 9,999	4														5,000 ~ 9,999	4
10,000 ~ 49,999	5														10,000 ~ 49,999	5
50,000 ~ 99,999	6														50,000 ~ 99,999	6
100,000 ~ 499,999	7														100,000 ~ 499,999	7
500,000 ~ 999,999	8														500,000 ~ 999,999	8
1,000,000 만원 이상	9														100 billion won or more	9
총 합 건 설 업	51														General	51
건 축 건 설 업	511														Building	511
토 목 건 설 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전 문 직 별 건 설 업	52														Special	52
배관, 난방 및 관련공사업	521														Plumbing, Heating and Related Works	521
도장도배 및 실내장식공사업	522														Painting, Paper Hanging and Decorating Works	522
전 기 공 사 업	523														Electrical Works	523
석공, 미장 및 방수공사업	524														Masonry, Stone Setting, Plastering Waterproofing Works	524
목 공 사 업	525														Carpentry and Flooring Works	525
지붕 잇기 및 합석공사업	526														Roofing and Sheet Metal Works	526
철골, 철근장 치공사업	527														Installation of Steel Frame, Steel Reinforcing and Building Equipment	527
토공, 굴정, 해체공사업	528														Excavation, Water Well Drilling, Wrecking and Demolition Works	528
기 타 전 문 직 별 공 사 업	529														Others	529

5. 조직 형태·종업원 규모 및 지역 별 사업 체 수
Number of Establishments by Type of Organization, Size of Workers and Region

(단위:개)

(Unit:each)

조직 형태 종업원 규모 별	지역 별	분류 번호 Code No.	총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기 타	Region	Type of Organization of Workers	Code No.
총 계		1-3	8	8	8	8	8	8	8	8	8	9	9	9	9	9	9	9	9	Total		1-3
5 인 미 만		1																		less than 5 persons		1
5 ~ 9		2																		5 ~ 9		2
10 ~ 19		3																		10 ~ 19		3
20 ~ 49		4																		20 ~ 49		4
50 ~ 99		5																		50 ~ 99		5
100 ~ 199		6																		100 ~ 199		6
200 ~ 299		7																		200 ~ 299		7
300 ~ 499		8																		300 ~ 499		8
500 ~ 999		9																		500 ~ 999		9
1,000 인 이 상		10																		1,000 persons or more		10
회 사 법 인		1																		Company Corporation		1
회 사 이 외 의 법 인		2																		Other Corporation		2
개 인		3																		Individual		3

6. 산업소분류종업원규모별종업원수및급여액
Number of Workers and Remuneration by Size of Workers and Sub-division of Industry

(금액단위:백만원)

(Unit:million)

종업원규모별	분류번호 Code No.	종업원수 (단위:명) Number of Workers									급여액 Remuneration									Size of Workers	Code No.		
		고용자 Employees									고용자 Employees												
		합계	소계	생산종업원 Operatives							사업주 및 가족종사자 Working Proprietors and Unpaid Family Workers	합계	소계	생산종업원 Operatives								퇴직금 Retirement Allowance	
				계	기술자	기능공	임시 기능공	단순 노무자	계	기술자				기능공	임시 기능공	단순 노무자							
Total	Sub-Total	Total	Engineers	Craftsmen	Temporary Craftsmen	Laborers	Total	Engineers	Craftsmen	Temporary Craftsmen	Laborers	Total	Engineers	Craftsmen	Temporary Craftsmen	Laborers							
9	9	9	9	9	9	9	9	9	9	8	8	8	8	8	8	8	8	8					
건설업	5																		Construction as a whole	5			
5인미만	1																		less than 5 persons	1			
5 ~ 9	2																	5 ~ 9	2				
10 ~ 19	3																	10 ~ 19	3				
20 ~ 49	4																	20 ~ 49	4				
50 ~ 99	5																	50 ~ 99	5				
100 ~ 199	6																	100 ~ 199	6				
200 ~ 299	7																	200 ~ 299	7				
300 ~ 499	8																	300 ~ 499	8				
500 ~ 999	9																	500 ~ 999	9				
1,000인이상	10																	1,000 persons or more	10				
종합건설업	51																	General	51				
건축건설업	511																	Building	511				
토목건설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전문직별건설업	52																	Special	52				
배관, 난방및관련공사업	521																	Plumbing, Heating and Related Works	521				
도장도배및실내장식공사업	522																	Painting, Paper Hanging and Decorating Works	522				
전기공사업	523																	Electrical Works	523				
석공, 미장및방수공사업	524																	Masonry, Stone Setting, Plastering Waterproofing Works	524				
목공사업	525																	Carpentry and Flooring Works	525				
지붕및기및합석공사업	526																	Roofing and Sheet Metal Works	526				
철골, 철근장치공사업	527																	Installation of Steel Frame, Steel Reinforcing and Building Equipment	527				
토공, 굴정, 해체공사업	528																	Excavation, Water Well Drilling, Wrecking and Demolition Works	528				
기타전문직별공사업	529																	Others	529				

7. 산업소분류종업원규모 및 월별피고용자수
Number of Monthly Employees by Size of Workers and Sub-division of Industry

(단위:명)

(Unit:Persons)

종업원규모별	월	분류 번호 Code No.	총 계 Total	1 월 January	2 월 February	3 월 March	4 월 April	5 월 May	6 월 June	7 월 July	8 월 August	9 월 September	10 월 October	11 월 November	12 월 December	Month	Code No.	
																		Size of Workers
건설업	5인미만 5~9 10~19 20~49 50~99 100~199 200~299 300~499 500~999 1,000인이상	5	10	10			10	10	10	12	12	12	12	12	12	Construction as a whole	5	
		1															less than 5 persons	1
		2															5 ~ 9	2
		3															10 ~ 19	3
		4															20 ~ 49	4
		5															50 ~ 99	5
		6															100 ~ 199	6
		7															200 ~ 299	7
		8															300 ~ 499	8
		9															500 ~ 999	9
10															1,000 persons or more	10		
종합건설업		51														General	51	
건축건설업		511														Building	511	
토목건설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전문직별건설업		52														Special	52	
배관, 난방및관련공사업		521														Plumbing, Heating and Related Works	521	
도장도배및실내장식공사업		522														Painting, Paper Hanging and Decorating Works	522	
전기공사업		523														Electrical Works	523	
석공, 미장및방수공사업		524														Masonry, Stone Setting, Plastering Waterproofing Works	524	
목공사업		525														Carpentry and Flooring Works	525	
지붕잇기및합석공사업		526														Roofing and Sheet Metal Works	526	
철골, 철근장치공사업		527														Installation of Steel Frame, Steel Reinforcing and Building Equipment	527	
토공, 굴정, 해체공사업		528														Excavation, Water Well Drilling, Wrecking and Demolition Works	528	
기타전문직별공사업		529														Others	529	

8. 산업소분류공사액규모및월별피고용자수
Number of Monthly Employees by Construction Value and Sub-division of Industry

(단위:명)

(Unit:Persons)

기성액규모별	월별 분류 번호 Code No.	총 계 Total	1	2	3	4	5	6	7	8	9	10	11	12	Month Construction Value	Code No.
			월 January	월 February	월 March	월 April	월 May	월 June	월 July	월 August	월 September	월 October	월 November	월 December		
		10	10	10	10	10	10	10	12	12	12	12	12	12		
건설업	5														Construction as a whole	5
500만원미만	1														less than 5 million won	1
500 ~ 999	2														500 ~ 999	2
1,000 ~ 4,999	3														1,000 ~ 4,999	3
5,000 ~ 9,999	4														5,000 ~ 9,999	4
10,000 ~ 49,999	5														10,000 ~ 49,999	5
50,000 ~ 99,999	6														50,000 ~ 99,999	6
100,000 ~ 499,999	7														100,000 ~ 499,999	7
500,000 ~ 999,999	8														500,000 ~ 999,999	8
1,000,000만원이상	9														100 billion won or more	9
종합건설업	51														General	51
건축건설업	511														Building	511
토목건설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전문직별건설업	52														Special	52
배관, 난방및관련공사업	521														Plumbing, Heating and Related Works	521
도장도배및실내장식공사업	522														Painting, Paper Hanging and Decorating Works	522
전기공사업	523														Electrical Works	523
석공, 미장및방수공사업	524														Masonry, Stone Setting, Plastering Waterproofing Works	524
목공사업	525														Carpentry and Flooring Works	525
지붕잇기및합석공사업	526														Roofing and Sheet Metal Works	526
철골, 철근장치공사업	527														Installation of Steel Frame, Steel Reinforcing and Building Equipment	527
토공, 굴정, 해체공사업	528														Excavation, Water Well Drilling, Wrecking and Demolition Works	528
기타전문직별공사업	529														Others	529

9. 공 종 및 공 사 지역 별 수 주 액
Value of Order Received by Kind of Construction and Region

(금액단위 : 백만원)

(Unit: million)

공 종 별	지역 별	분류 번호 Code No.	총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기 타	Region	Code No.	
				Total	Seoul	Pusan	Daegu	Inch'on	Kwang-ju	Tae-jon	Kyonggi -do	Kang-won -do	Ch'ungch'ong buk-do	Ch'ungch'ong nam-do	Chollabuk -do	Chollanam -do	Kyongsang buk-do	Kyongsang nam-do	Cheju-do			Other
총 건	공사	1																		Kind of Construction	1~5	
		101	Total Building																			101
		102	Detached & Tenement House																			102
		103	Apartment																			103
		104	Residential Shop																			104
		105	Office & Commercial Building																			105
		106	Hotel & Lodgings																			106
		107	Bank																			107
		108	Theater																			108
		109	Public Building																			109
		110	Educational Facilities																			110
		111	Hospital																			111
		112	Historic Relics																			112
		113	Church & Temple																			113
		114	Warehouse & Garage																			114
		115	Factory																			115
		116	Hazardous Property storage																			116
		117	Sanitation & Air conditioning																			117
		118	Mechanical & Engineering Services																			118
토	공사	2	Civil Engineering																	2		
		201	Road, Bridge & Tunnel																	201		
		202	Pavement																	202		
		203	Railroad & Subway																	203		
		204	Dam																	204		
		205	Erosion control & River Works																	205		
		206	Agriculture Fishery & Irrigation																	206		
		207	Farmland Development Works																	207		
		208	Power Plant Facilities																	207		
		209	Harbor																	209		
		210	Airport																	210		
		211	Water supply & Sewerages																	211		
		212	Athletic & Park Facilities																	212		
		213	Housing Lots Reclamation																	213		
		214	Others																	214		
		215	Iron & steel Installation																	215		
		216	Dredging																	216		
		217	Landscaping																	217		
		전	공사	3	Special																	3
301	Carpentry & Joinery																	301				
302	Earth works																	302				
303	Plastering & Waterproofing																	303				
304	Stone & Masonry																	304				
305	Painting																	305				
306	Brick Laying																	306				
307	Scaffolding																	307				
308	Doors & Windows																	308				
309	Roof & sheet Metal																	309				
310	Reinforced Concrete																	310				
311	Metal Works																	311				
312	Utility Service																	312				
313	Water Supply & Sewerages																	313				
314	Boring & Grouting																	314				
315	Railroad & Railtrack																	315				
316	Pavement Maintaining & Repairing																	316				
317	Underwater Works																	317				
318	Landscaping & Plating																	318				
319	Landscaping Facilities Installing																	319				
전 기 및 전 기 통 신 공 사	공사	4	Electricity & Electrical Communication Works																	4		
		401	1st Grade Electrical Works																	401		
		402	2nd Grade Electrical Works																	402		
		403	Electrical Communication Works																	403		
		5	Other Equipment Works																	5		
			501	Specified Fuel																	501	
			502	Purificating Tank																	502	
503	Sewage Purification																	503				
504	City Gas																	504				
505	Fire Fighting																	505				

10. 공 중 및 발 주 자 별 수 주 액

Value of Order Received by Kind of Construction and Orderer

(금액 단위 : 백만원)

(Unit : million)

발주자별 공 중 별	분 류 호 Code No.	총 계	공 공 부 문 Public					합 계	민 간 조 부 업 문 Private								Orderer Kind of Construction	Code No.	
			합 계	정 부	지 방 자 치 체	국 가 기 업 체	기 타 공 단 체		제 조 업 Manufacturing Industry										
									Food	Texture	나 무 제 품 가	종 이 제 품 인	화 학 석 유 탄	비 금 속 광	제 1 차 속	Other			
																Chemicals, Petroleum			Nonmetallic Mineral
Total	Sub-Total	Central Government (041 + ...056)	Local Government (011 + ...039)	Public Corporation (092)	Others (091)	Sub-Total	Sub-Total	Food	Texture	Wood & Furniture	Paper, Printing	Chemicals, Petroleum	Nonmetallic Mineral	Basic Metal	Other				
계사	1-5	10	10	10	10	10	10	9	9	9	9	9	9	9	9	9	1-5		
건축	1																1		
단독주택	101																101		
공동주택	102																102		
상업용건물	103																103		
공공건축물	104																104		
학교	105																105		
병원	106																106		
문화시설	107																107		
체육시설	108																108		
유치원	109																109		
도서관	110																110		
종교건축물	111																111		
역사문화유산	112																112		
문화유산	113																113		
교차로	114																114		
주차장	115																115		
주유소	116																116		
가스시설	117																117		
하수도	118																118		
도로	201																2		
교량	202																201		
터널	203																202		
도로교량터널	204																203		
도로	205																204		
교량	206																205		
터널	207																206		
도로교량터널	208																207		
도로	209																208		
교량	210																209		
터널	211																210		
도로교량터널	212																211		
도로	213																212		
교량	214																213		
터널	215																214		
도로교량터널	216																215		
도로	217																216		
교량	301																217		
터널	302																3		
도로교량터널	303																301		
도로	304																302		
교량	305																303		
터널	306																304		
도로교량터널	307																305		
도로	308																306		
교량	309																307		
터널	310																308		
도로교량터널	311																309		
도로	312																310		
교량	313																311		
터널	314																312		
도로교량터널	315																313		
도로	316																314		
교량	317																315		
터널	318																316		
도로교량터널	319																317		
도로	401																318		
교량	402																319		
터널	403																4		
도로교량터널	501																3		
도로	502																301		
교량	503																302		
터널	504																303		
도로교량터널	505																304		
도로	506																305		
교량	507																306		
터널	508																307		
도로교량터널	509																308		
도로	510																309		
교량	511																310		
터널	512																311		
도로교량터널	513																312		
도로	514																313		
교량	515																314		
터널	516																315		
도로교량터널	517																316		
도로	518																317		
교량	519																318		
터널	520																319		

10. 공 종 및 발 주 자 별 수 주 액 (계속)
Value of Order Received by Kind of Construction and Orderer (Cont'd)

(금액단위 : 백만원)

(Unit:million)

발주자별 공 종 별	분류 번호 Code No.	민 간 부 문 Private														국 외 국 기 관 Foreign Org. in Korea	기 타 Other	Orderer Kind of Construction	Code No.
		제조업 Manufacturing Industry		비 제조업 Non Manufacturing										Foreign Org. in Korea	Other				
		조립금속 Assembly Metal	기 타 제 조 업 Others	계 Sub-Total	농림·어업 Agriculture & Fishing	광 업 Mining	전기·가스·도 수 Electricity Gas and Water	도 소 매 음 식 숙 박 Distribution & Hotels	운 창 수 고 Transport Storage	금 보 용 합 Finance & Insur- ance	부 동 산 업 Real Estate	건 설 업 Constru- ction	사 서 어 비 스 업 Services						
총 건 단 아 주 사 호 근 단 주 공 회 교 공 위 기 토 도 철 차 산 농 전 공 경 대 기 전 전 1 2 기	1-5 1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2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3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4 401 402 403 5 501 502 503 504 505	10	10	10	10	10	10	10	9	9	9	9	9	9	9	9	9	1-5 1 Total Building Detached & Tenement House Apartment Residential Shop Office & Commercial Building Hotel & Lodgings Bank Theater Public Building Educational Facilities Hospital Historic Relics Church & Temple Warehouse & Garage Factory Hazardous Property storage Sanitation & Air conditioning Mechanical & Engineering Services Others Civil Engineering Road, Bridge & Tunnel Pavement Railroad & Subway Dam Erosion control & River Works Agriculture Fishery & Irrigation Farmland Development Works Power Plant Facilities Harbor Airport Water supply & Sewerages Athletic & Park Facilities Housing Lots Reclamation Others Iron & steel Installation Dredging Landscaping 3 Special Carpentry & Joinery Earth works Plastering & Waterproofing Stone & Masonry Painting Brick Laying Scaffolding Doors & Windows Roof & sheet Metal Reinforced Concrete Metal Works Utility Service Water Supply & Sewerages Boring & Grouting Railroad & Railtrack Pavement Maintaining & Repairing Underwater Works Landscaping & Plating Landscaping Facilities Installing Electricity & Electrical Commu- cation Works 1st Grade Electrical Works 2nd Grade Electrical Works Electrical Communication Works Other Equipment Works 5 Specified Fuel Purificating Tank Sewage Purification City Gas Fire Fighting	1-5 1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2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3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4 401 402 403 5 501 502 503 504 505

11. 발 주 자 및 공 사 지 역 별 수 주 액
Value of Order Received by Orderer and Region

(금액단위:백만원)

(Unit:million)

발 주 자 별	지 역 별	분류 번호 Code No.	총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경 기 도	강 원 도	충 청 북 도	충 청 남 도	전 라 북 도	전 라 남 도	경 상 북 도	경 상 남 도	제 주 도	기 타	Region	Orderer	Code No.
총	계	1~4	8	8	8	8	8	8	8	8	8	9	9	9	9	9	9	9	9		Total	1~4
공	공	1																			Public	1
	부 (041-056)	101																			Central Government	101
	지방자치단체 (011-039)	102																			Local Government	102
	국영기업체 (092)	103																			Public Corporation	103
	기타 공공단체 (091)	104																			Others	104
민	간	2																			Private	2
	제조업	21																			Manufacturing	21
	음식료품 (950)	210																			Food	210
	섬유류 (951)	211																			Texture	211
	나무제품·가구 (952)	212																			Wood & Furniture	212
	종이제품·인쇄 (953)	213																			Paper & Printing	213
	화합물·석유·석탄 (954)	214																			Chemicals, Petroleum & Coal	214
	비금속광물제품 (955)	215																			Nonmetallic Mineral	215
	제1차제품(철강업) (956)	216																			Basic Metal	216
	조립금속(기계) (957)	217																			Assembly Metal	217
	기타제조업 (958)	218																			Others	218
	비제조업	22																			Non-Manufacturing	22
	농림·수산 (960)	220																			Agriculture & Fishery	220
	광업 (961)	221																			Mining	221
	전기·가스·수도 (962)	222																			Electricity, Gas & Water	222
	도소매업·음식·숙박 (963)	223																			Construction	223
	운수·창고·통신 (964)	224																			Distribution, Food & Hotels	224
	금융·보험 (965)	225																			Transport & Storage	225
	부동산업 (966)	226																			Finance & Insurance	226
	건설업 (967)	227																			Real Estate	227
	사회서비스업 (968)	228																			Business Services	228
	사회및개인서비스업 (969)	229																			Social & Personal Services	229
국	내	3																			Foreign Org. in Korea	3
기	타 (004)	4																			Others	4

12. 공종 및 공사지역별 원도급공사시공액
Value of Construction Work in Original Contract by Kind of Construction and Region

(금액단위 : 백만원)

(Unit: million)

공종별	지역별	분류번호 Code No.	총계	Region																Code No.
				Seoul	Pusan	Toegu	Inch'on	Kwang-ju	Tae-jon	Kyonggi-do	Kang-won-do	Ch'ungch'ong buk-do	Ch'ungch'angnam-do	Chollabuk-do	Chollanam-do	Kyongsang buk-do	Kyongsang nam-do	Cheju-do	Other	
총계			1~5																	1~5
1. 건축			1																	1
단독주택			(411)																	101
주택복합단지			(412)																	102
사무실			(413)																	103
상업용건물			(414)																	104
호텔			(415)																	105
학교			(416)																	106
병원			(417)																	107
도서관			(418)																	108
체육관			(419)																	109
문화회관			(420)																	110
사찰			(421)																	111
교당			(422)																	112
기타			(423)																	113
2. 토목			2																	2
도로			(210)																	201
철도			(211)																	202
교량			(212)																	203
터널			(213)																	204
하천			(214)																	205
도시계획			(215)																	206
산림			(216)																	207
수리			(217)																	208
방수			(218)																	209
하수처리			(219)																	210
도시개발			(220)																	211
기타			(221)																	212
3. 건축기공			3																	3
목공			(301)																	301
토목			(302)																	302
식물			(303)																	303
조경			(304)																	304
도장			(305)																	305
벽돌			(306)																	306
사면			(307)																	307
방수			(308)																	308
관공			(309)																	309
콘크리트			(310)																	310
철근			(311)																	311
상하수도			(312)																	312
보일러			(313)																	313
냉난방			(314)																	314
도장			(315)																	315
수거			(316)																	316
조경			(317)																	317
경시			(318)																	318
전기			(319)																	319
4. 전기통신			4																	4
1차			(401)																	401
2차			(402)																	402
3차			(403)																	403
5. 기타			5																	5
특정			(501)																	501
오수처리			(502)																	502
도시가스			(503)																	503
방화			(504)																	504
소방			(505)																	505

14. 공 종 및 발 주 자 별 원 도 급 공 사 시 공 액

(금액단위 : 백만원)

Value of Construction Work in Original Contract by Kind of Construction and Orderer

(Unit : million)

발주자별 공종별	분류번호 Code No.	총계 Total	공공부문 Public				민간부문 Private							Orderer Kind of Construction	Code No.	
			합계 Sub-Total	정부 (041 + ...056) Central Government	지방자치체 (011 + ...039) Local Government	국영기업체 (092) Public Corporation	기타공공단체 (091) Others	합계 Sub-Total	제조업 Manufacturing Industry							
									계 Sub-Total	음식료품 Food	섬유류 Textile	나무제품 가구 Wood & Furniture	종이제품 인쇄 Paper, Printing			화학석유 석탄 Chemicals, Petroleum
총건	1-5	10	10	10	10	10	10	10	9	9	9	9	9	9	9	1-5
건축	1															1
주택	101															101
단독주택	102															102
공동주택	103															103
사무실	104															104
호텔	105															105
은행	106															106
극장	107															107
관공	108															108
학교	109															109
병원	110															110
문화	111															111
교회	112															112
창고	113															113
공장	114															114
위생	115															115
기계	116															116
기타	117															117
토목	2															2
도로	201															201
철도	202															202
교량	203															203
터널	204															204
댐	205															205
방수	206															206
관개	207															207
발전	208															208
항만	209															209
공항	210															210
상하수	211															211
경기장	212															212
체육	213															213
주택	214															214
기타	215															215
조경	216															216
조경	217															217
전기	3															3
목공	301															301
토목	302															302
장방	303															303
석공	304															304
도장	305															305
벽돌	306															306
비계	307															307
창호	308															308
금속	309															309
관리	310															310
철근	311															311
콘크리트	312															312
비도	313															313
보링	314															314
도장	315															315
포장	316															316
수중	317															317
조경	318															318
조경	319															319
전기	4															4
중기	401															401
전기	402															402
신선	403															403
기타	5															5
비도	501															501
비도	502															502
비도	503															503
비도	504															504
비도	505															505

14. 공 종 및 발 주 자 별 원 도 급 공 사 시 공 액 (계 속)

(금액단위 : 백만원)

Value of Construction Work in Original Contract by Kind of Construction and Orderer (.Cont'd)

(Unit:million)

공 종 별	발주자별 분류 번호 Code No.	민 간 부 문 Private													국 외 기 타 Foreign Org. in Korea Other	Orderer Kind of Construction	Code No.	
		제조업 Manufacturing Industry		비 제조업 Non Manufacturing														
		조립금속 Assembly Metal	기 타 Others	계 Sub-Total	농림·어업 Agriculture & Fishing	광업 Mining	전기·가스·수도 Electricity Gas and Water	도소매·숙박 Distributor & Hotels	운창·수고 Transport Storage	금융·보험 Finance & Insur- ance	부동산업 Real Estate	건설업 Construc- tion	서비스업 Services	사회복지·개인 서비스업 Social & Services				
10	10	10	10	10	10	10	9	9	9	9	9	9	9					
총계		1-5														Total	1-5	
건		1														Building	1	
단독주택	(411)																Detached & Tenement House	101
공동주택	(412)																Apartment	102
사무실	(413)																Residential Shop	103
호텔	(414)																Office & Commercial Building	104
상점	(415)																Hotel & Lodgings	105
학교	(416)																Bank	106
관공	(417)																Theater	107
병원	(418)																Public Building	108
도서관	(419)																Educational Facilities	109
문화회	(420)																Hospital	110
교회	(421)																Historic Relics	111
사찰	(422)																Church & Temple	112
역사	(423)																Warehouse & Garage	113
고대	(424)																Factory	114
고대	(425)																Hazardous Property storage	115
고대	(426)																Sanitation & Air conditioning	116
고대	(427)																Mechanical & Engineering Services	117
고대	(428)																Others	118
토		2														Civil Engineering	2	
도로	(210)																Road, Bridge & Tunnel	201
포도	(211)																Pavement	202
철도	(212)																Railroad & Subway	203
도로	(213)																Dam	204
도로	(214)																Erosion control & River Works	205
도로	(215)																Agriculture Fishery & Irrigation	206
도로	(216)																Farmland Development Works	207
도로	(217)																Power Plant Facilities	208
도로	(218)																Harbor	209
도로	(219)																Airport	210
도로	(220)																Water supply & Sewerages	211
도로	(221)																Athletic & Park Facilities	212
도로	(222)																Housing Lots Reclamation	213
도로	(223)																Others	214
도로	(224)																Iron & steel Installation	215
도로	(225)																Dredging	216
도로	(226)																Landscaping	217
전		3														Special	3	
목	(301)																Carpentry & Joinery	301
토	(302)																Earth works	302
목	(303)																Plastering & Waterproofing	303
토	(304)																Stone & Masonry	304
목	(305)																Painting	305
토	(306)																Brick Laying	306
목	(307)																Scaffolding	307
토	(308)																Doors & Windows	308
목	(309)																Roof & sheet Metal	309
토	(310)																Reinforced Concrete	310
목	(311)																Metal Works	311
토	(312)																Utility Service	312
목	(313)																Water Supply & Sewerages	313
토	(314)																Boring & Grouting	314
목	(315)																Railroad & Railtrack	315
토	(316)																Pavement Maintaining & Repairing	316
목	(317)																Underwater Works	317
토	(318)																Landscaping & Plating	318
목	(319)																Landscaping Facilities Installing	319
전		4														Electricity & Electrical Communication Works	4	
1	(401)																1st Grade Electrical Works	401
2	(402)																2nd Grade Electrical Works	402
기	(403)																Electrical Communication Works	403
기		5														Other Equipment Works	5	
1	(501)																Specified Fuel	501
2	(502)																Purificating Tank	502
기	(503)																Sewage Purification	503
1	(504)																City Gas	504
2	(505)																Fire Fighting	505

15. 공 종 및 발 주 자 별 하 도 급 공 사 시 공 액
Value of Construction Work in Subcontract by Kind of Construction and Orderer

(금액단위:백만원)

(Unit:million)

발주자별 공종별	분류 번호 Code No.	공공부문 Public						민간부문 Private						Orderer Kind of Construction	Code No.	
		총 계 Total	합계 Sub-Total		정 부 (041+ ...056) Central Government	지방자치 단체 (011+ ...039) Local Government	국 영 기업체 (092) Public Corporation	기 타 기업체 (091) Others	합계 Sub-Total	제조업 Manufacturing Industry						
			계 Sub-Total	음식료품 Food						섬유류 Texture	나무제품 가 구 Wood & Furniture	종이제품 인 쇄 Paper, Printing	화학석유 석 탄 Chemicals, Petroleum			비금속 광 물 Nonmetallic Mineral
총계	1-5	10			10	10	10	10	10					10	9	
건축	1															1-5
주택	101															101
단독주택	102															102
공동주택	103															103
상가	104															104
호텔	105															105
여객자동차	106															106
은행	107															107
극장	108															108
도서관	109															109
학교	110															110
병원	111															111
문화회관	112															112
교회	113															113
창고	114															114
공장	115															115
위생기	116															116
기타	117															117
기타	118															118
도로	201															201
교량	202															202
터널	203															203
철도	204															204
산악	205															205
농림	206															206
발전	207															207
항만	208															208
공항	209															209
경기장	210															210
경기장	211															211
경기장	212															212
경기장	213															213
경기장	214															214
경기장	215															215
경기장	216															216
경기장	217															217
특수	301															301
특수	302															302
특수	303															303
특수	304															304
특수	305															305
특수	306															306
특수	307															307
특수	308															308
특수	309															309
특수	310															310
특수	311															311
특수	312															312
특수	313															313
특수	314															314
특수	315															315
특수	316															316
특수	317															317
특수	318															318
특수	319															319
전기	401															401
전기	402															402
전기	403															403
기타	501															501
기타	502															502
기타	503															503
기타	504															504
기타	505															505

15. 공 종 및 발 주 자 별 하 도 급 공 사 시 공 액 (계속)

Value of Construction Works in Subcontract by Kind of Construction and Orderer (Cont'd)

(금액단위 : 백만원)

(Unit : million)

발주자별 공종별	분류 번호 Code No.	민 간 부 문 Private													국 외 국 기 관 Foreign Org. in Korea	기 타 Other	Orderer Kind of Construction	Code No.
		제조업 Manufacturing Industry		비 제조업 Non Manufacturing														
		조립금속 Assembly Metal	기타 제조업 Others	계 Sub-Total	농림· 어업 Agriculture & Fishing	광업 Mining	전기·가스· 수도 Electricity Gas and Water	도소매· 음식숙박 Distribution & Hotels	운송· 창고 Transport Storage	금융· 보험 Finance & Insurance	부동산업 Real Estate	건설업 Constru- ction	서비스업 Services	사회복지· 개인서비스업 Social & Services				
총계	1~5	10	10	10	10	10	10	10	9	9	9	9	9	9	9	9	1~5	
건축	1																1-5	
주택	101																101	
단독주택	102																102	
공동주택	103																103	
사무실	104																104	
호텔	105																105	
상점	106																106	
은행	107																107	
극장	108																108	
도서관	109																109	
병원	110																110	
학교	111																111	
교회	112																112	
고등학교	113																113	
대학	114																114	
연구소	115																115	
발전소	116																116	
기계	117																117	
기타	118																118	
토목	2																2	
도로	201																201	
철도	202																202	
산악	203																203	
농림	204																204	
발전	205																205	
항만	206																206	
공항	207																207	
수리	208																208	
건설	209																209	
기타	210																210	
기계	211																211	
건설	212																212	
건설	213																213	
건설	214																214	
건설	215																215	
건설	216																216	
건설	217																217	
전문	3																3	
목공	301																301	
토목	302																302	
석공	303																303	
도장	304																304	
도장	305																305	
도장	306																306	
도장	307																307	
도장	308																308	
도장	309																309	
도장	310																310	
도장	311																311	
도장	312																312	
도장	313																313	
도장	314																314	
도장	315																315	
도장	316																316	
도장	317																317	
도장	318																318	
도장	319																319	
전기	4																4	
1차	401																401	
2차	402																402	
통신	403																403	
기타	5																5	
특정	501																501	
정화	502																502	
수처리	503																503	
도시	504																504	
소방	505																505	

16. 발주자 및 공사지역별 원도급공사시공액
Value of Construction Work in Original Contract by Orderer and Region

(금액단위:백만원)

(Unit:million)

발주자별	지역별	분류번호 Code No.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	기타	Region	Orderer	Code No.
총	계	1~4	8	8	8	8	8	8	8	8	8	9	9	9	9	9	9	9	9	Total		1~4
공	공	1																		Public		1
	부(041-056)	101																		Central Government		101
	지방자치단체(011-039)	102																		Local Government		102
	국영기업체(092)	103																		Public Corporation		103
	기타공공단체(091)	104																		Others		104
민	간	2																		Private		2
	제조업	21																		Manufacturing		21
	음식료품(950)	210																		Food		210
	섬유류(951)	211																		Texture		211
	나무제품·가구(952)	212																		Wood & Furniture		212
	종이제품·인쇄(953)	213																		Paper & Printing		213
	화합물·석유·석탄(954)	214																		Chemicals, Petroleum & Coal		214
	비금속광물제품(955)	215																		Nonmetallic Mineral		215
	제1차제품(철강업)(956)	216																		Basic Metal		216
	조립금속(기계)(957)	217																		Assembly Metal		217
	기타제조업(958)	218																		Others		218
	비제조업	22																		Non-Manufacturing		22
	농림·수산(960)	220																		Agriculture & Fishery		220
	광업(961)	221																		Mining		221
	전기·가스·수도(962)	222																		Electricity, Gas & Water		222
	도소매업·음식·숙박(963)	223																		Construction		223
	운수·창고·통신(964)	224																		Distribution, Food & Hotels		224
	금융·보험(965)	225																		Transport & Storage		225
	부동산업(966)	226																		Finance & Insurance		226
	건설업(967)	227																		Real Estate		227
	사회서비스업(968)	228																		Business Services		228
	사회및개인서비스업(969)	229																		Social & Personal Services		229
국	내	3																		Foreign Org. in Korea		3
기	타(004)	4																		Others		4

17. 공 종 및 공사 지역 별 하도급 공사 시 공 액
 Value of Construction Work in Subcontract by Kind of Construction and Region

(금액 단위 : 백만원)

(Unit : million)

공 종 별	지역 별	분류 번호 Code No.	총 계	Region																Region	Code No.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기 타				
			8	8	8	8	8	8	8	8	8	8	9	9	9	9	9	9	9	9			
총 건		1-5																					
		1	Total Building																				1-5
		101	Detached & Tenement House																				101
		102	Apartment																				102
		103	Residential Shop																				103
		104	Office & Commercial Building																				104
		105	Hotel & Lodgings																				105
		106	Bank																				106
		107	Theater																				107
		108	Public Building																				108
		109	Educational Facilities																				109
		110	Hospital																				110
		111	Historic Relics																				111
		112	Church & Temple																				112
		113	Warehouse & Garage																				113
		114	Factory																				114
		115	Hazardous Property storage																				115
		116	Sanitation & Air conditioning																				116
		117	Mechanical & Engineering Services																				117
		118	Others																				118
		2	Civil Engineering																				2
		201	Road, Bridge & Tunnel																				201
		202	Pavement																				202
		203	Railroad & Subway																				203
		204	Dam																				204
		205	Erosion control & River Works																				205
		206	Agriculture Fishery & Irrigation																				206
		207	Farmland Development Works																				207
		208	Power Plant Facilities																				207
		209	Harbor																				209
		210	Airport																				210
		211	Water supply & Sewerages																				211
		212	Athletic & Park Facilities																				212
		213	Housing Lots Reclamation																				213
		214	Others																				214
		215	Iron & steel Installation																				215
		216	Dredging																				216
		217	Landscaping																				217
		3	Special																				3
		301	Carpentry & Joinery																				301
		302	Earth works																				302
		303	Plastering & Waterproofing																				303
		304	Stone & Masonry																				304
		305	Painting																				305
		306	Brick Laying																				306
		307	Scaffolding																				307
		308	Doors & Windows																				308
		309	Roof & sheet Metal																				309
		310	Reinforced Concrete																				310
		311	Metal Works																				311
		312	Utility Service																				312
		313	Water Supply & Sewerages																				313
		314	Boring & Grouting																				314
		315	Railroad & Railtrack																				315
		316	Pavement Maintaining & Repairing																				316
		317	Underwater Works																				317
		318	Landscaping & Plating																				318
		319	Landscaping Facilities Installing																				319
4	Electricity & Electrical Communication Works																				4		
401	1st Grade Electrical Works																				401		
402	2nd Grade Electrical Works																				402		
403	Electrical Communication Works																				403		
5	Other Equipment Works																				5		
501	Specified Fuel																				501		
502	Purificating Tank																				502		
503	Sewage Purification																				503		
504	City Gas																				504		
505	Fire Fighting																				505		

18. 공종 및 공사 지역 별 미기성액
Value of Carry-over Work by Kind of Construction and Region

(금액단위 : 백만원)

(Unit: million)

공종별	지역별	분류번호 Code No.	총계	Region								Region										Code No.
				Seoul	Pusan	Toegu	Inch'on	Kwang-ju	Tae-jon	Kyonggi-do	Kang-won-do	Ch'ungch'ong-buk-do	Ch'ungch'ong-nam-do	Chollabuk-do	Chollanam-do	Kyongsang-buk-do	Kyongsang-nam-do	Cheju-do	Other	Kind of Construction		
건축		1-5	8	8	8	8	8	8	8	8	8	8	9	9	9	9	9	9	9	Total Building	1-5	
단독주택		101																			Detached & Tenement House	101
공동주택		102																			Apartment	102
상가		103																			Residential Shop	103
사무실		104																			Office & Commercial Building	104
호텔		105																			Hotel & Lodgings	105
병원		106																			Bank	106
학교		107																			Theater	107
문화회관		108																			Public Building	108
도서관		109																			Educational Facilities	109
스포츠장		110																			Hospital	110
역사유적지		111																			Historic Relics	111
교회		112																			Church & Temple	112
고창		113																			Warehouse & Garage	113
공장		114																			Factory	114
위생		115																			Hazardous Property storage	115
기타		116																			Sanitation & Air conditioning	116
기계		117																			Mechanical & Engineering Services	117
타목		118																			Others	118
토목		2																			Civil Engineering	2
도로		201																			Road, Bridge & Tunnel	201
철도		202																			Pavement	202
산림		203																			Railroad & Subway	203
농업		204																			Dam	204
발전		205																			Erosion control & River Works	205
항만		206																			Agriculture Fishery & Irrigation	206
공항		207																			Farmland Development Works	207
경기장		208																			Power Plant Facilities	208
기타		209																			Harbor	209
지하		210																			Airport	210
수처리		211																			Water supply & Sewerages	211
체육시설		212																			Athletic & Park Facilities	212
주거		213																			Housing Lots Reclamation	213
발전		214																			Others	214
철강		215																			Iron & steel Installation	215
조경		216																			Dredging	216
토목공사		217																			Landscaping	217
전기		3																			Special	3
목재		301																			Carpentry & Joinery	301
건축		302																			Earth works	302
방수		303																			Plastering & Waterproofing	303
도장		304																			Stone & Masonry	304
조각		305																			Painting	305
배선		306																			Brick Laying	306
도색		307																			Scaffolding	307
구조		308																			Doors & Windows	308
시공		309																			Roof & sheet Metal	309
관리		310																			Reinforced Concrete	310
시공		311																			Metal Works	311
도색		312																			Utility Service	312
수처리		313																			Water Supply & Sewerages	313
도장		314																			Boring & Grouting	314
구조		315																			Railroad & Railtrack	315
시공		316																			Pavement Maintaining & Repairing	316
시공		317																			Underwater Works	317
시공		318																			Landscaping & Plating	318
시공		319																			Landscaping Facilities Installing	319
전기		4																			Electricity & Electrical Communication Works	4
1차		401																			1st Grade Electrical Works	401
2차		402																			2nd Grade Electrical Works	402
통신		403																			Electrical Communication Works	403
기타		5																			Other Equipment Works	5
연료		501																			Specified Fuel	501
정수		502																			Purification Tank	502
도시		503																			Sewage Purification	503
가스		504																			City Gas	504
소방		505																			Fire Fighting	505

19. 산업소분류종업원규모별공사비용

(금액단위:백만원)

Cost of Construction by Size of Workers and Sub-division of Industry

(Unit:million)

공사비별 종업원규모별	분류번호 Code No.	총계 Total	원재료비	보조	임금	복리	감가	임차료		조세공과	수선비	전력용수	잡비	의주	원재료비	납부	Cost of Construction	Code No.
			자급 Raw Material Costs Self- Provided	재료비 Ancillary Material Costs	및 급료 Wages and Salaries	후생비 Cost for Welfare Work	상가비 Depreci- ation	장비·건물 Equipment Building	토지 Land	Tax and Public Dues	Cost of repairs and Maintenance	연료광열 Electric Power, Water, Fuel and, Light	Miscellane- ous Expenses	공사액 Payments to Subcontract- ors	발주자급 Raw Mater- ial Costs Provided by Orderer	부가가치세 V. A. T		
건설업	5	9	9	9	9	9	9	9	9	10	10	10	10	10	10	10	Construction as a whole	5
5인미만	1																less than 5 persons	1
5~9	2																5 ~ 9	2
10~19	3																10 ~ 19	3
20~49	4																20 ~ 49	4
50~99	5																50 ~ 99	5
100~199	6																100 ~ 199	6
200~299	7																200 ~ 299	7
300~499	8																300 ~ 499	8
500~999	9																500 ~ 999	9
1,000인이상	10																1,000 persons or more	10
종합건설업	51																General	51
건축건설업	511																Building	511
토목건설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전문직별건설업	52																Special	52
배관, 난방및관련공사업	521																Plumbing, Heating and Related Works	521
도장도배및실내장식공사업	522																Painting, Paper Hanging and Decorating Works	522
전기공사업	523																Electrical Works	523
석공, 미장및방수공사업	524																Masonry, Stone Setting, Plastering Waterproofing Works	524
목공사업	525																Carpentry and Flooring Works	525
지붕잇기및합석공사업	526																Roofing and Sheet Metal Works	526
철골, 철근장치공사업	527																Installation of Steel Frame, Steel Reinforcing and Building Equipment	527
토공, 굴정, 해체공사업	528																Excavation, Water Well Drilling, Wrecking and Demolition Works	528
기타전문직별공사업	529																Others	529

20. 산업소분류종업원규모별및조직형태자본금규모별부가가치

Value Added by Type of Organization, Size of Capital Stock and Sub-division of Industry

(Unit: million)

(금액단위: 백만원)

조직형태 및 자본금규모별 산업소분류별	분류 법인 Code No.	총 계 Total	회 사 법 인 Company Corporation						회 사 이 외 법 인 Other Corporation						개 인 Indivi- dual	Organization, Size of Capital Stock Sub-division of Industry	Code No.	
			계 Total	1,000만원 미 만 Less than 1,000 ten thousand won	1,000 ~ 4,999	5,000 ~ 9,999	10,000 ~ 49,999	50,000 ~ 99,999	100,000 만원이상 10 billion won or more	계 Total	5,000만원 미 만 Less than 5,000 ten thousand won	5,000 ~ 9,999	10,000 ~ 49,999	50,000 ~ 99,999				100,000 만원이상 10 billion won or more
건설업	5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Construction as a whole	5
5인미만	1																less than 5 persons	1
5 ~ 9	2																5 ~ 9	2
10 ~ 19	3																10 ~ 19	3
20 ~ 49	4																20 ~ 49	4
50 ~ 99	5																50 ~ 99	5
100 ~ 199	6																100 ~ 199	6
200 ~ 299	7																200 ~ 299	7
300 ~ 499	8																300 ~ 499	8
500 ~ 999	9																500 ~ 999	9
1,000인이상	10																1,000 persons or more	10
종합건설업	51																General	51
건축건설업	511																Building	511
토목건설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전문직별건설업	52																Special	52
배관, 난방및관련공사업	521																Plumbing, Heating and Related Works	521
도장도배및실내장식공사업	522																Painting, Paper Hanging and Decorating Works	522
전기공사업	523																Electrical Works	523
석공, 미장및방수공사업	524																Masonry, Stone Setting, Plastering Waterproofing Works	524
목공사업	525																Carpentry and Flooring Works	525
지붕및기및합석공사업	526																Roofing and Sheet Metal Works	526
철골, 철근장차공사업	527																Installation of Steel Frame, Steel Reinforcing and Building Equipment	527
토공, 굴정, 해체공사업	528																Excavation, Water Well Drilling, Wrecking and Demolition Works	528
기타전문직별공사업	529																Others	529

21. 산업소분류 및 종업원 규모 별 사업체 당 종업원 1인당 기성액 및 부가가치

(금액단위 : 천원)

Total Construction Value and Value Added per Worker and Per Establishment, by Size of Workers and Sub-division of Industry

(Unit : thousand)

종업원 규모 별	분류번호 Code No.	사업체 수 Number of Establishments	종업원 수 Number of Employees	사업체 당 Per Establishments			부가가치 Value Added	종업원 1인당 Average Per Engaged			Size of Workers	Code No.
				기성액 Value of Construction				기성액 Value of Construction				
				계 Total	원도급공사액 Original Contract	하도급공사액 Sub-Contract		계 Total	원도급공사액 Original Contract	하도급공사액 Sub-Contract		
		14	14	14	14	14	14	14	14			
건설업	5									Construction as a whole	5	
5인미만	1									less than 5 persons	1	
5 ~ 9	2									5 ~ 9	2	
10 ~ 19	3									10 ~ 19	3	
20 ~ 49	4									20 ~ 49	4	
50 ~ 99	5									50 ~ 99	5	
100 ~ 199	6									100 ~ 199	6	
200 ~ 299	7									200 ~ 299	7	
300 ~ 499	8									300 ~ 499	8	
500 ~ 999	9									500 ~ 999	9	
1,000인 이상	10									1,000 persons or more	10	
종합건설업	51									General	51	
건축건설업	511									Building	511	
토목건설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전문직별 건설업	52									Special	52	
배관, 난방 및 관련공사업	521									Plumbing, Heating and Related Works	521	
도장도배 및 실내장식공사업	522									Painting, Paper Hanging and Decorating Works	522	
전기공사업	523									Electrical Works	523	
석공, 미장 및 방수공사업	524									Masonry, Stone Setting, Plastering Waterproofing Works	524	
목공사업	525									Carpentry and Flooring Works	525	
지붕 및 기 및 합석공사업	526									Roofing and Sheet Metal Works	526	
철골, 철근장치공사업	527									Installation of Steel Frame, Steel Reinforcing and Building Equipment	527	
토공, 굴정, 해체공사업	528									Excavation, Water Well Drilling, Wrecking and Demolition Works	528	
기타 전문직별 공사업	529									Others	529	

22. 산업소분류 및 종업원 규모별 재고자산
Value of Inventories by Size of Workers and Sub-division of Industry

(금액단위: 백만원)

(Unit: million)

재고자산별 종업원 규모별	분류 번호 Code No.	연초재고액 (1) Initial Stocks of the Year				연말재고액 (2) Year-end Stocks				Value of Inventories Size of Workers	Code No.
		계 Total	원재료 Raw Materials	연료 Fuels	저장품 Supplies	계 Total	원재료 Raw Material	연료 Fuels	저장품 Supplies		
		17	17	17	17	17	17	17			
건설업	5								Construction as a whole	5	
5인미만	1								less than 5 persons	1	
5 ~ 9	2								5 ~ 9	2	
10 ~ 19	3								10 ~ 19	3	
20 ~ 49	4								20 ~ 49	4	
50 ~ 99	5								50 ~ 99	5	
100 ~ 199	6								100 ~ 199	6	
200 ~ 299	7								200 ~ 299	7	
300 ~ 499	8								300 ~ 499	8	
500 ~ 999	9								500 ~ 999	9	
1,000인이상	10								1,000 persons or more	10	
총합 건설업	51								General	51	
건축건설업	511								Building	511	
토목건설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전문직별 건설업	52								Special	52	
배관, 난방 및 관련공사업	521								Plumbing, Heating and Related Works	521	
도장도배 및 실내장식공사업	522								Painting, Paper Hanging and Decorating Works	522	
전기공사업	523								Electrical Works	523	
석공, 미장 및 방수공사업	524								Masonry, Stone Setting, Plastering Waterproofing Works	524	
목공사업	525								Carpentry and Flooring Works	525	
지붕 잇기 및 합석공사업	526								Roofing and Sheet Metal Works	526	
철골, 철근장치공사업	527								Installation of Steel Frame, Steel Reinforcing and Building Equipment	527	
토공, 굴정, 해체공사업	528								Excavation, Water Well Drilling, Wrecking and Demolition Works	528	
기타 전문직별 공사업	529								Others	529	

23. 산업소분류종업원 규모 및 종류별 유형 고정자산
Tangible Fixed Assets by Size of Workers and Kind of Assets and Sub-division of Industry

(금액단위 : 백만원)

(Unit : million)

유형고정자산별 종업원규모별	분류번호 Code No.	연간취득증개축액 Annual Acquisition of Assets							연간처분손해액 및				Tangible fixed assets Size of Workers	Code No.	
		계 Total	토지 Land	건물 Building	건축물 Structures	중기 Machinery	차량선박운반구 Vehicles Ships & Con- veying Equipment	공구기구 비품 Tools, Furniture Fixtures	건설 가계정 Construction in Process	계 Total	토지 Land	건물 Building			건축물 Structures
건설업	5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Construction as a whole	5
5인미만	1													less than 5 persons	1
5 ~ 9	2													5 ~ 9	2
10 ~ 19	3													10 ~ 19	3
20 ~ 49	4													20 ~ 49	4
50 ~ 99	5													50 ~ 99	5
100 ~ 199	6													100 ~ 199	6
200 ~ 299	7													200 ~ 299	7
300 ~ 499	8													300 ~ 499	8
500 ~ 999	9													500 ~ 999	9
1,000인이상	10													1,000 persons or more	10
총합 건설업	51													General	51
건축건설업	511													Building	511
토목건설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전문직별 건설업	52													Special	52
배관, 난방 및 관련공사업	521													Plumbing, Heating and Related Works	521
도장도배 및 실내장식공사업	522													Painting, Paper Hanging and Decorating Works	522
전기공사업	523													Electrical Works	523
석공, 미장 및 방수공사업	524													Masonry, Stone Setting, Plastering Waterproofing Works	524
목공사업	525													Carpentry and Flooring Works	525
지붕 및 기합석공사업	526													Roofing and Sheet Metal Works	526
철골, 철근장치공사업	527													Installation of Steel Frame, Steel Reinforcing and Building Equipment	527
토공, 굴정, 해체공사업	528													Excavation, Water Well Drilling, Wrecking and Demolition Works	528
기타 전문직별 공사업	529													Others	529

23. 산업소분류종업원규모및종류별유형고정자산(계속)

(금액단위:백만원)

Tangible Fixed Assets by Size of Workers and Kind of Assets and Sub-division of Industry (Cont'd)

(Unit:million)

유형고정자산별 종업원규모별	분류 번호 Code No.	감가상가액 Annual Disposals and Depreciation				연 말 총 액 Year-end Stocks								Tangible fixed assets Size of Workers	Code No.
		중 기 Machinery	차량선박 운반구 Vehicles Ships & Con- veying Equipment	공구기구 비품 Tools Furniture Fixtures	건설 가계정 Construction in Process	계 Total	토 지 Land	건 물 Building	구 축 물 Structures	중 기 Machinery	차량선박 운반구 Vehicles Ships & Con- veying Equipment	공구기구 비품 Tools Furniture Fixtures	건설 가계정 Construct- ion in Process		
건설업	5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Construction as a whole	5
5인미만	1													less than 5 persons	1
5 ~ 9	2													5 ~ 9	2
10 ~ 19	3													10 ~ 19	3
20 ~ 49	4													20 ~ 49	4
50 ~ 99	5													50 ~ 99	5
100 ~ 199	6													100 ~ 199	6
200 ~ 299	7													200 ~ 299	7
300 ~ 499	8													300 ~ 499	8
500 ~ 999	9													500 ~ 999	9
1,000인이상	10													1,000 persons or more	10
총합 건설업	51													General	51
건축건설업	511													Building	511
토목건설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전문직별건설업	52													Special	52
배관, 난방및관련공사업	521													Plumbing, Heating and Related Works	521
도장도배및실내장식공사업	522													Painting, Paper Hanging and Decorating Works	522
전기공사업	523													Electrical Works	523
석공, 미장및방수공사업	524													Masonry, Stone Setting, Plastering Waterproofing Works	524
목공사업	525													Carpentry and Flooring Works	525
지붕잇기및합석공사업	526													Roofing and Sheet Metal Works	526
철골, 철근장치공사업	527													Installation of Steel Frame, Steel Reinforcing and Building Equipment	527
토공, 굴정, 해체공사업	528													Excavation, Water Well Drilling, Wrecking and Demolition Works	528
기타전문직별공사업	529													Others	529

24. 산업소분류종업원규모및주요기계보유대수

(단위:대)

Number of major Equipments by Size of Workers and Kind of Assets and Sub-division of Industry

(Unit:Numbers)

기계종류별 중업원규모별	분류 번호 Code No.	총계 Total	불도저 Bulldozer		굴착기 Excavator		로우더 Loader		기 계 차 Forklift	스 레 이 크 퍼 Scraper	덤프트럭 (12t이상) Dump Truck 12tn or more	기 중 기 Crane		모 크 레 이 터 더 Motor Crader	로 울 러 Roller	노 안 전 상 기 Road Stabilizer	콘 크 리 트 트 트 콘 크 리 트 트 콘 크 리 트 트 Concrete Batcher Plant	콘 휘 크 리 트 트 Concrete Finisher	Number of major Equipments	Code No.		
			20t이상 20 ton or more	20t미만 less than 20 ton	1m ³ 이상 1 m ³ or more	1m ³ 미만 less than 1 m ³	타이어식 Tire	무 한 궤 도 식 Crawler				타이어식 Tire	무 한 궤 도 식 Crawler									
			9	9	9	9	9	9				9	9								8	8
건설업 5인미만 5~9 10~19 20~49 50~99 100~199 200~299 300~499 500~999 1,000인이상	5																			Construction as a whole	5	
		1																			less than 5 persons	1
		2																			5 ~ 9	2
		3																			10 ~ 19	3
		4																			20 ~ 49	4
		5																			50 ~ 99	5
		6																			100 ~ 199	6
		7																			200 ~ 299	7
		8																			300 ~ 499	8
		9																			500 ~ 999	9
	10																			1,000 persons or more	10	
종합건설업	51																			General	51	
건축건설업	511																			Building	511	
토목건설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전문직별건설업	52																			Special	52	
배관, 난방및관련공사업	521																			Plumbing, Heating and Related Works	521	
도장도배및실내장식공사업	522																			Painting, Paper Hanging and Decorating Works	522	
전기공사업	523																			Electrical Works	523	
석공, 미장및방수공사업	524																			Masonry, Stone Seetting, Plastering Waterproofing Works	524	
목공사업	525																			Carpentry and Flooring Works	525	
지붕및기합석공사업	526																			Roofing and Sheet Metal Works	526	
철골, 철근장치공사업	527																			Installation of Steel Frame, Steel Reinforcing and Building Equipment	527	
토공, 굴정, 해체공사업	528																			Excavation, Water Well Drilling, Wrecking and Demolition Works	528	
기타전문직별공사업	529																			Others	529	

24. 산업소분류종업원규모및주요기계보유대수(계속)

(단위:대)

Number of major Equipments by Size of Workers and Kind of Assets and Sub-division of Industry (Cont'd)

(Unit:Numbers)

기계종류별 종업원규모별	분류 번호 Code No.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골재	쇄석기	공기	천공기	항타및	사리	준설선	비등록장비			Number of major Equipments	Code No.
		살포기 Concrete Distributor	믹서트럭 Concrete Mixer Truck	펌프 Concrete Pump	믹싱프랜트 Asphalt Mixing Plant	휘니셔 Asphalt Finisher	살포기 Asphalt Distributor	살포기 Aggregate Sprader	Crusher	압축기 Compressor	Rock Dric	항발기 Pile Driver and Extractor	채취선 Gravel Plant	Dredger	타워 크레인 Tower Crane	12t미만 덤프트럭 less than 12 ton Dump Truck	기타 Other		
건설업	5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Construction as a whole less than 5 persons 5 ~ 9 10 ~ 19 20 ~ 49 50 ~ 99 100 ~ 199 200 ~ 299 300 ~ 499 500 ~ 999 1,000 인이상 General Building Civil Engineering Special Plumbing, Heating and Related Works Painting, Paper Hanging and Decorating Works Electrical Works Masonry, Stone Seetting, Plastering Waterproofing Works Carpentry and Flooring Works Roofing and Sheet Metal Works Installation of Steel Frame, Steel Reinforcing and Building Equipment Excavation, Water Well Drilling, Wrecking and Demolition Works Others	5
5인미만	1																		
5 ~ 9	2																		
10 ~ 19	3																		
20 ~ 49	4																		
50 ~ 99	5																		
100 ~ 199	6																		
200 ~ 299	7																		
300 ~ 499	8																		
500 ~ 999	9																		
1,000 인이상	10																		
총합 건설업	51																		
건축건설업	511																		
토목건설업	512																		
전문직별건설업	52																		
배관, 난방및관련공사업	521																		
도장도배및실내장식공사업	522																		
전기공사업	523																		
석공, 미장및방수공사업	524																		
목공사업	525																		
지붕및기합석공사업	526																		
철골, 철근장차공사업	527																		
토공, 굴정, 해체공사업	528																		
기타전문직별공사업	529																		

25. 산업소분류 및 사업체 지역별 종업원 월별 투입연인원
 Location of Establishment and Cumulative Number of Monthly by Sub-division of Industry

(단위:명)

(Unit:Persons)

지역별	월별 분류 번호 Code No.	총 계 Total	1	2	3	4	5	6	7	8	9	10	11	12	Month	Region	Code No.
			월 January	월 February	월 March	월 April	월 May	월 June	월 July	월 August	월 September	월 October	월 November	월 December			
		12	12	12	12	12	12	12	10	10	10	10	10	10			
건설업	1														Construction as whole		5
서울특별시	11														Seoul-t'ukpyolshi		11
부산광역시	21														Pusan-jik'alshi		21
대구광역시	22														Taegu-jik'alshi		22
인천광역시	23														Inch'on-jik'alshi		23
광주광역시	24														Kwangju-jik'alshi		24
경기도	31														Kyonggi-do		31
강원도	32														Kang-won-do		32
충청북도	33														Ch'ung ch'ong buk-do		33
충청남도	34														Ch'ung ch'ong nam-do		34
전라북도	35														Chollabuk-do		35
전라남도	36														Chollanam-do		36
경상북도	37														Kyong sang buk-do		37
경상남도	38														Kyong sang nam-do		38
제주도	39														Cheju-do		39
종합건설업	51														General		51
건축건설업	511														Building		511
토목건설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전문직별건설업	52														Special		52
배관, 난방 및 관련공사업	521														Plumbing, Heating and Related Works		521
도장도배 및 실내장식공사업	522														Painting, Paper Hanging and Decorating Works		522
전기공사업	523														Electrical Works		523
석공, 미장 및 방수공사업	524														Masonry, Stone Setting, Plastering Waterproofing Works		524
목공사업	525														Carpentry and Flooring Works		525
지붕 및 기와합석공사업	526														Roofing and Sheet Metal Works		526
철골, 철근장치공사업	527														Installation of Steel Frame, Steel Reinforcing and Building Equipment		527
토공, 굴착, 해체공사업	528														Excavation, Water Well Drilling, Wrecking and Demolition Works		528
기타 전문직별공사업	529														Others		529

26. 사업체 지역 및 면허종류별 연 사업체 수
Cumulative Number of Establishments by Location and Kind of Licenses

(단위:개)

(Unit:each)

면허종류별	분류번호 Code Nb.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Kind of Licenses	Code No.
			(11) Seoul	(21) Pusan	(22) Taegu	(23) Inch'on	(24) Kwang-ju	(25) Tae-jon	(31) Kyonggi	(32) Kang-won	(33) Ch'ungbuk	(34) Ch'ungnam	(35) Chonbuk	(36) Chonnam	(37) Kyongbuk	(38) Kyongnam	(39) Cheju		
총 계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Total	
토 건 (1)	1																	Civil Engineering & Building	1
토 목 (2)	2																	Pavement	2
건 축 (3)	3																	Iron & Steel Installation	3
포 장 (4)	4																	Dredging	4
철강재설치 (5)	5																	Landscaping	5
준 설 (6)	6																	Electrical Communication	6
조 경 (7)	7																	Electricity	7
전기통신 (8,92)	8																	Carpentry & Joinery	8
전 기 (9,90,91)	9																	Earth Works	9
목 공 (01)	10																	Plastering & Waterpkoofing	10
토 공 (02)	11																	Stone & Masonry	11
미 수 (03)	12																	Painting	12
석 공 (04)	13																	Brick laying	13
도 장 (05)	14																	Scaffolding	14
조 적 (06)	15																	Doors & Wrndows	15
비 계 (07)	16																	Root & Sheet Metal	16
창 호 (08)	17																	Reinforced Concrete	17
지붕·판금 (09)	18																	Metal Works	18
철 근 (10)	19																	Utility Services	19
철 물 (11)	20																	Water Supply & Sewerages	20
설 비 (12)	21																	Boring & Grouting	21
상 하 수 도 (13)	22																	Railroad & Railtrack	22
보링·그라우팅 (14)	23																	Pavement Maintaining & Repairing	23
철도·궤도 (15)	24																	Underwater Works	24
포장·보수 (16)	25																	Landscaping & Plating	25
수 통 (17)	26																	Landscaping Facilities Iorstalling	26
조경식재 (18)	27																	Specified Fuel	27
조경시설물설치 (19)	28																	Purificating Tank	28
특정연료설비 (93)	29																	Sewage Purification	29
정화조설비 (94)	30																	City Gas	30
오수정화설비 (95)	31																	Hire Fighting	31
도시가스설비 (96)	32																		
소방설비 (97)	33																		

2. 건설부장관 면허업체에 관한 표

27. 산 업 소 분 류 및 조 직 형 태 별 총 괄
Summary Figures by Type of Legal Organization and Sub-division of Industry

(금액 단위 : 백만원)

(Unit : million)

조직 형태 별	분류 번호 Code No.	사 체 수 No. of Establish- ments	종 원 수 No. of Workers	급 의 액 Remuner- ation	수 주 액 Value of Order Received	기 성 액 Value of Construction			미 성 액 Value of Carry-over Work	공 사 용 비 가 치 Cost of Con- struc- tion	부 가 가 치 Value Added	연 말 고 액 Value of Year-end Inventories	연 말 유 형 고 정 자 산 Year-end Fixed Assets	주 요 기 계 보 유 대 수 No. of Major Equipments	Type of Organization	Code No.
						계 Total	원 도 급 공 사 Original Contract	하 도 급 공 사 Sub- contract								
		10	10	10	10	10	10	10	12	12	12	12	12	12		
【 국내 】															【 Domestic 】	
총 합 건 설 업	51														General	51
회 사 법 인	1														Company Corporation	1
회 사 이 외 의 법 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Other Corporation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개 인	3														Individual	3
건 축 건 설 업	511														Building	511
회 사 법 인	1														Company Corporation	1
회 사 이 외 의 법 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Other Corporation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개 인	3														Individual	3
토 목 건 설 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회 사 법 인	1														Company Corporation	1
회 사 이 외 의 법 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Other Corporation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개 인	3														Individual	3
【 해 외 】															【 Over-sea 】	
총 합 건 설 업	51														General	51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건 축 건 설 업	511														Building	511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토 목 건 설 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28. 산 업 소 분 류 및 자 본 금 규 모 별 총 괄
Summary Figures by Size of Capital Stock and Sub-division of Industry

(금액단위 : 백만원)

(Unit: million)

자 본 금 규 모 별	분류번호 Code No.	사 체 수 No. of Establish- ments	종 원 수 No. of Workers	급 여 액 Remuner- ation	수 주 액 Value of Order Received	기 성 액 Value of Construction			미 기 액 Value of Carry-over Work	공 사 용 Cost of Con- struction	부 가 치 Value Added	연 말 재 고 액 Value of Year-end Inventories	연 말 유 형 고 정 자 산 Year-end Fixed Assets	주 요 기 계 보 유 대 수 No. of Major Equipments	Size of Capital Stock	Code No.
						계 Total	원 도 급 공 사 Original Contract	하 도 급 공 사 Sub- contract								
【국 내】		10	10	10	10	10	10	10	12	12	12	12	12			
총 합 건 설 업	51													【 Domestic 】		
200 만 원 미 만	1													General	51	
200 ~ 499	2													less than 2million won	1	
500 ~ 999	3													200 ~ 499	2	
1,000 ~ 4,999	4													500 ~ 999	3	
5,000 ~ 9,999 ☒	5													1,000 ~ 4,999	4	
10,000 ~ 49,999	6													5,000 ~ 9,999 ☒	5	
50,000 ~ 99,999	7													10,000 ~ 49,999	6	
100,000 만 원 이 상	8													50,000 ~ 99,999	7	
건 축 건 설 업	511													100,000 만 원 이 상	8	
☒														Building	511	
토 목 건 설 업	512													☒		
☒														Civil Engineering	512	
【해 외】														【 Over-sea 】		
총 합 건 설 업	51													General	51	
☒														☒		
건 축 건 설 업	511													Building	511	
☒														☒		
토 목 건 설 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														☒		

29. 산업 소분류 및 종업원 규모 별 총괄
Summary Figures by Size of Workers and Sub-division of Industry

(금액 단위 : 백만원)

(Unit : million)

종업원 규모 별	분류번호 Code No.	사채업수 No. of Establishments	종원업수 No. of Workers	급여액 Remuneration	수주액 Value of Order Received	기성액 Value of Construction			미기액 Value of Carry-over Work	공사비용 Cost of Construction	부가가치 Value Added	연말재고액 Value of Year-end Inventories	연말유형고정자산 Year-end Fixed Assets	주요기계보유대수 No. of Major Equipments	Size of Workers	Code No.
						계 Total	원도급공사 Original Contract	하도급공사 Sub-contract								
		10	10	10	10	10	10	10	12	12	12	12	12	12		
【국 내】															【 Domestic 】	
총 합 건 설 업	51														General	51
5인미만	1														less than 5persons	1
5 ~ 9	2														5 ~ 9	2
10 ~ 19	3														10 ~ 19	3
20 ~ 49	4														20 ~ 49	4
50 ~ 99	5														50 ~ 99	5
100 ~ 199 ☒	6														100 ~ 199 ☒	6
200 ~ 299	7														200 ~ 299	7
300 ~ 499	8														300 ~ 499	8
500 ~ 999	9														500 ~ 999	9
1,000인이상	10														1,000persons or more	10
건 축 건 설 업	511														Building	511
☒															☒	
토 목 건 설 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															☒	
【해 외】															【 Over-sea 】	
총 합 건 설 업	51														General	51
☒															☒	
건 축 건 설 업	511														Building	511
☒															☒	
토 목 건 설 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															☒	

30. 산업소분류 및 총공사액 규모별 총괄
Summary Figures by Size of Total Construction Value and Sub-division of Industry

(금액단위: 백만원)

(Unit: million)

총공사액 규모별	분류번호 Code No.	사채업수 No. of Establishments	종원업수 No. of Workers	급여액 Remuneration	수주액 Value of Order Received	기성액 Value of Construction			미기액 Value of Carry-over Work	공사비용 Cost of Construction	부가가치 Value Added	연말재고액 Value of Year-end Inventories	연말유형고정자산 Year-end Fixed Assets	주요기계보유대수 No. of Major Equipments	Size of Construction Value	Code No.
						계 Total	원도급공사 Original Contract	하도급공사 Sub-contract								
		10	10	10	10	10	10	10	12	12	12	12	12	12		
【국내】															【 Domestic 】	
총합 건설업	51														General	51
500만원미만	1														less than 5million won	1
500~ 999	2														500 ~ 999	2
10,000~ 4,999	3														1,000 ~ 4,999	3
5,000~ 9,999	4														5,000 ~ 9,999	4
10,000~49,999 ☒	5														10,000 ~ 49,999 ☒	5
50,000~99,999	6														50,000 ~ 99,999	6
100,000~499,999	7														100,000 ~ 499,999	7
500,000~999,999	8														500,000 ~ 999,999	8
1,000,000 만원이상	9														100billion won or more	9
건축 건설업	511														Building	511
☒															☒	
토목 건설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															☒	
【해외】															【 Over-sea 】	
총합 건설업	51														General	51
☒															☒	
건축 건설업	511														Building	511
☒															☒	
토목 건설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															☒	

31. 조직 형태 종업원 규모 및 지역 별 사업 체 수
 Number of Establishments by Type of Organization, Size of Workers and Region

(단위: 개)

(Unit: each)

조직 형태 종업원 규모별	지역 별	분류 번호 Code No.	총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기 타	Region	Code No.		
																						Total	Seoul
【국 내】																							
총 계		1-3																			Total	1-3	
5인미만		1																				less than 5persons	1
5 ~ 9		2																				5 ~ 9	2
10 ~ 19		3																				10 ~ 19	3
20 ~ 49		4																				20 ~ 49	4
50 ~ 99		5																				50 ~ 99	5
100 ~ 199		6																				100 ~ 199	6
200 ~ 299		7																				200 ~ 299	7
300 ~ 499		8																				300 ~ 499	8
500 ~ 999		9																				500 ~ 999	9
1,000인 이상		10																				1,000persons or more	10
회사법인		1																				Company Corporation	1
회사 이외의 법인		2																				Other Corporation	2
개인		3																				Individual	3
【해 외】																							
총 계		1-3																				Total	1-3
회사법인		1																				Company Corporation	1
회사 이외의 법인		2																				Other Corporation	2
개인		3																				Individual	3

32. 산업소분류종업원규모별종업원수및급여액
Number of Workers and Remuneration by Size of Workers and Sub-division of Industry

(금액단위:백만원)

(Unit:million)

종업원규모별	분류번호 Code No.	종업원수 (단위:명) Number of Workers								급여액 Remuneration								퇴직금 Retirement Allowance	Size of Workers	Code No.	
		피고용자 Employees								피고용자 Employees											
		합계	생산종업원 Operatives							사업주 및 무급종사자 Working Proprietors and Unpaid Family Workers	합계	생산종업원 Operatives									
			소계	사무및기타종업원 Administrative and Other Workers	총계	기술자 Engineers	기능공 Craftsmen	임시 기능공 Temporary Craftsmen	단순 노무자 Laborers			사무및기타종업원 Administrative and Other Workers	총계	기술자 Engineers	기능공 Craftsmen	임시 기능공 Temporary Craftsmen	단순 노무자 Laborers				
9		9		9		9		9		9		9		9							
【국내】		【 Domestic 】																			
종합건설업	51	General																51			
5인미만	1	less than 5persons																1			
5 ~ 9	2	5 ~ 9																2			
10 ~ 19	3	10 ~ 19																3			
20 ~ 49	4	20 ~ 49																4			
50 ~ 99	5	50 ~ 99																5			
100 ~ 199	6	100 ~ 199																6			
200 ~ 299	7	200 ~ 299																7			
300 ~ 499	8	300 ~ 499																8			
500 ~ 999	9	500 ~ 999																9			
1,000인이상	10	1,000persons or more																10			
건축건설업	511	Building																511			
토목건설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해외】		【 Over-sea 】																			
종합건설업	51	General																51			
건축건설업	511	Building																511			
토목건설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33. 산업소분류종업원규모 및 월별피고용자수
Number of Monthly Employees by Size of Workers and Sub-division of Industry

(단위:명)

(Unit:Persons)

월 종업원규모별	분류 번호 Code No.	총 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Month	Code No.
		Total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12	12	12	12	12	12	10	10	10	10	10	10	10		
【국 내】															【 Domestic 】	
총 합 건 설 업	51														General	51
5인미만	1														less than 5persons	1
5 ~ 9	2														5 ~ 9	2
10 ~ 19	3														10 ~ 19	3
20 ~ 49	4														20 ~ 49	4
50 ~ 99	5														50 ~ 99	5
100 ~ 199	6														100 ~ 199	6
200 ~ 299	7														200 ~ 299	7
300 ~ 499	8														300 ~ 499	8
500 ~ 999	9														500 ~ 999	9
1,000인이상	10														1,000persons or more	10
건 축 건 설 업	511														Building	511
토 목 건 설 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해 외】															【 Over-sea 】	
총 합 건 설 업	51														General	51
건 축 건 설 업	511														Building	511
토 목 건 설 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34. 산업소분류공사액규모및월별피고용자수
Number of Monthly Employees by Construction Value and Sub-division of Industry

(단위:명)

(Unit:Persons)

공사액규모별	월 분류 번호 Code No.	총 계 Total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Month Size of Construction Value	Code No.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12	12	12	12	12	12	10	10	10	10	10	10	10		
【국 내】															【 Domestic 】	
총 합 건 설 업	51														General	51
500만원미만	1														less than 5million won	1
500~ 999	2														500 ~ 999	2
10,000~ 4,999	3														1,000 ~ 4,999	3
5,000~ 9,999	4														5,000 ~ 9,999	4
10,000~49,999 ☒	5														10,000 ~ 49,999 ☒	5
50,000~99,999	6														50,000 ~ 99,999	6
100,000~499,999	7														100,000 ~ 499,999	7
500,000~999,999	8														500,000 ~ 999,999	8
1,000,000 만원이상	9														100billion won or more	9
건 축 건 설 업	511														Building	511
☒															☒	
토 목 건 설 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															☒	
【해 외】															【 Over-sea 】	
총 합 건 설 업	51														General	51
☒															☒	
건 축 건 설 업	511														Building	511
☒															☒	
토 목 건 설 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															☒	

35. 공 종 및 공 사 지 역 별 수 주 액

Value of Order Received by Kind of Construction and Region

(Unit: million)

(금액단위: 백만원)

공 종 별	지 역 별	분 류 번호 Code No.	Region																	Region	Code No.
			총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경 기도	강 원 도	충 청 북 도	충 청 남 도	전 라 북 도	전 라 남 도	경 상 북 도	경 상 남 도	제 주 도	Kind of Construction		
			Total	Seoul	Pusan	Toegu	Inch'on	Kwang-ju	Tae-jon	Kyonggi-do	Kang-won-do	Ch'ungch'ong-buk-do	Ch'ungch'ong-nam-do	Chollabuk-do	Chollanam-do	Kyongsangbuk-do	Kyongsangnam-do	Cheju-do			
	【국내】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Domestic】	
총 계	계	1~3																		Total	1~3
건축공사	건축공사	1																		Building	1
단독주택및연립주택	주택(411)	101																		Detached & Tenement House	101
아파트	아파트(412)	102																		Apartment	102
주거점용및점포	점포(413)	103																		Residential Shop	103
사무실·상업용건물	사무실·상업용건물(414)	104																		Office & Commercial Building	104
호텔·숙박시설	호텔·숙박시설(415)	105																		Hotel & Lodgings	105
은행	은행(416)	106																		Bank	106
극장·영화관	극장·영화관(417)	107																		Theater	107
관공서	관공서(420)	108																		Public Building	108
학교	학교(421)	109																		Educational Facilities	109
병원	병원(422)	110																		Hospital	110
문화재및유적건물	문화재및유적건물(423)	111																		Historic Relics	111
교회·사찰등종교건물	교회·사찰등종교건물(424)	112																		Church & Temple	112
창고및차고	창고및차고(418)	113																		Warehouse & Garage	113
공장	공장(419)	114																		Factory	114
위험물저장소	위험물저장소(425)	115																		Hazardous Property Storage	115
위생냉난방	위생냉난방(430)	116																		Sanitation & Air Conditioning	116
기계기구설치	기계기구설치(440)	117																		Mechanical & Engineering Services	117
기타건축	기타건축(450)	118																		Others	118
토목공사	토목공사	2																		Civil Engineering	2
도로·교량및도로터널	도로·교량및도로터널(210)	201																		Road Bridge & Tunnel	201
포장	포장(610)	202																		Pavement	202
철도터널및지하철	철도터널및지하철(240)	203																		Railroad & Subway	203
댐	댐(220)	204																		Dam	204
차산·치수및사방하천	차산·치수및사방하천(250)	205																		Erosion Control & River Works	205
농림·수산및관개수로	농림·수산및관개수로(260)	206																		Agriculture, Fishery & Irrigation	206
농지정리	농지정리(261)	207																		Farmland Development Works	207
발전소·시설	발전소·시설(221)	208																		Power Plant Facilities	208
항만	항만(230)	209																		Harbor	209
공항	공항(231)	210																		Airport	210
상하수도	상하수도(270)	211																		Water Supply & Sewerages	211
경기장·운동장·공원시설	경기장·운동장·공원시설(280)	212																		Athletic & Park Facilities	212
택지조성	택지조성(281)	213																		Housing Lots Reclamation	213
기타토목시설	기타토목시설(290)	214																		Others	214
철강제설	철강제설(620)	215																		Iron & Steel Installation	215
준설	준설(630)	216																		Dredging	216
조경	조경(640)	217																		Landscaping	217
전기및전기통신공사	전기및전기통신공사	3																		Electricity & Electrical Communication Works	3
1. 중전기	중전기(301)	301																		1st Grade Electrical Works	301
2. 중전기	중전기(302)	302																		2nd Grade Electrical Works	302
전기통신	전기통신(310)	303																		Electrical Communication Works	303

36. 공종 및 발주자별 수주액
Value of Order Received by Kind of Construction and Orderer

(금액단위:백만원)

(Unit:million)

발주자별 공종별	분류 번호 Code No.	공공부문 Public						민간제조업 Private						Orderer Kind of Construction	Code No.					
		총계 Total	합계 Sub-Total	정부 (041+ ...056) Central Government	지방자치 단체 (011+ ...039) Local Government	국 기업체 (092) Public Corporation	기 타 공공단체 (091) Others	합계 Sub-Total	제조업 Manufacturing Industry	제조업										
										계 Sub-Total	음식료품	섬유류	나무제품 가			종이제품 인	화학석유 탄	비금속 광물	제1차 금속	차속
											Food	Texture	Wood & Furniture			Paper, Printing	Chemicals, Petroleum	Nonmetallic Mineral	Basic Metal	
【 국내 】																				
총계	1~3	10	10	10	10	10	10	9	9	9	9	9	9	9	Total	1~3				
건축공사	1														Building	1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411)	101														Detached & Tenement House	101				
아파트(412)	102														Apartment	102				
주거겸용 및 점포(413)	103														Residential Shop	103				
사무실·상업용 건물(414)	104														Office & Commercial Building	104				
호텔·숙박시설(415)	105														Hotel & Lodgings	105				
은행(416)	106														Bank	106				
극장·영화관(417)	107														Theater	107				
관공서(420)	108														Public Building	108				
학교(421)	109														Educational Facilities	109				
병원(422)	110														Hospital	110				
문화재 및 유적 건물(423)	111														Historic Relics	111				
교회·사찰등 종교 건물(424)	112														Church & Temple	112				
창고 및 차고(418)	113														Warehouse & Garage	113				
공장(419)	114														Factory	114				
위험물 저장소(425)	115														Hazardous Property Storage	115				
위생냉난방(430)	116														Sanitation & Air Conditioning	116				
기계기구설치(440)	117														Mechanical & Engineering Services	117				
기타 건축(450)	118														Others	118				
토목공사	2														Civil Engineering	2				
도로·교량 및 도로터널(210)	201														Road Bridge & Tunnel	201				
포장(210)	202														Pavement	202				
철도터널 및 지하철도(240)	203														Railroad & Subway	203				
댐(220)	204														Dam	204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250)	205														Erosion Control & River Works	205				
농림·수산 및 관개수리(260)	206														Agriculture, Fishery & Irrigation	206				
농지정리(261)	207														Farmland Development Works	207				
발전소·시설(221)	208														Power Plant Facilities	208				
항만(230)	209														Harbor	209				
공항(231)	210														Airport	210				
상하수도(270)	211														Water Supply & Sewerages	211				
경기장·운동장·공원시설(280)	212														Athletic & Park Facilities	212				
택지조성(281)	213														Housing Lots Reclamation	213				
기타 토목 시설(290)	214														Others	214				
철강건설(620)	215														Iron & Steel Installation	215				
준설(630)	216														Dredging	216				
조경(640)	217														Landscaping	217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	3														Electricity & Electrical Communication Works	3				
1 중 전기(301)	301														1st Grade Electrical Works	301				
2 중 전기(302)	302														2nd Grade Electrical Works	302				
전기통신(310)	303														Electrical Communication Works	303				

36. 공 종 및 발 주 자 별 수 주 액 (계 속)
Value of Order Received by Kind of Construction and Orderer (Cont'd)

(금액 단위 : 백만원)

(Unit: million)

공종별	발주자별	분류 번호 Code No.	민 간 제 부 조 문 업 Private													국 외 국 가 관 Foreign Org. in Korea	Orderer Kind of Construction	Code No.
			제조업 Manufacturing Industry		비 간 제 부 조 Non Manufacturing							문 업						
			조립금속 Assembly Metal	기타제조업 Others	계 Total	농림·어업 Agriculture & Fishing	광 업 Mining	전기·가스 수도 Electricity, Gas Water	도 소 매 음식·숙박 Distribution & Hotels	운수창고 Transport Storage	금융보험 Finance & Insurance	부동산업 Real Estate	건설업 Construction	사 회 서비스업 Services	사회및개인 서비스업 Social & Services			
	【 국내 】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 Domestic 】	
	총 계	1~3															Total	1~3
	건축공사	1															Building	1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411)	101															Detached & Tenement House	101
	아파트(412)	102															Apartment	102
	주거겸용 및 점포(413)	103															Residential Shop	103
	사무실·상업용 건물(414)	104															Office & Commercial Building	104
	호텔·숙박시설(415)	105															Hotel & Lodgings	105
	은행(416)	106															Bank	106
	극장·영화관(417)	107															Theater	107
	관공서(420)	108															Public Building	108
	학교(421)	109															Educational Facilities	109
	병원(422)	110															Hospital	110
	문화재 및 유적 건물(423)	111															Historic Relics	111
	교회·사찰 등 종교 건물(424)	112															Church & Temple	112
	창고 및 차고(418)	113															Warehouse & Garage	113
	공장(419)	114															Factory	114
	위험물 저장소(425)	115															Hazardous Property Storage	115
	위생냉난방(430)	116															Sanitation & Air Conditioning	116
	기계기구 설치(440)	117															Mechanical & Engineering Services	117
	기타 건축(450)	118															Others	118
	토목공사	2															Civil Engineering	2
	도로·교량 및 도로터널(210)	201															Road Bridge & Tunnel	201
	포장(610)	202															Pavement	202
	철도터널 및 지하철도(240)	203															Railroad & Subway	203
	댐(220)	204															Dam	204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250)	205															Erosion Control & River Works	205
	농림·수산 및 관개수리(260)	206															Agriculture, Fishery & Irrigation	206
	농지정리(261)	207															Farmland Development Works	207
	발전소·시설(221)	208															Power Plant Facilities	208
	항만(230)	209															Harbor	209
	공항(231)	210															Airport	210
	상하수도(270)	211															Water Supply & Sewerages	211
	경기장 운동장·공원시설(280)	212															Athletic & Park Facilities	212
	택지 조성(281)	213															Housing Lots Reclamation	213
	기타 토목 시설(290)	214															Others	214
	철강제설치(620)	215															Iron & Steel Installation	215
	준설(630)	216															Dredging	216
	조경(640)	217															Landscaping	217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	3															Electricity & Electrical Communication Works	3
	1종 전기(301)	301															1st Grade Electrical Works	301
	2종 전기(302)	302															2nd Grade Electrical Works	302
	전기통신(310)	303															Electrical Communication Works	303

37. 발 주 자 및 공 사 지 역 별 수 주 액
Value of Order Received by Order and Region

(금액단위:백만원)

(Unit:million)

발 주 자 별	지 역 별 분류 번호 Code No.	총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경 기도	강 원 도	충 청 북 도	충 청 남 도	전 라 북 도	전 라 남 도	경 상 북 도	경 상 남 도	제 주 도	Region	Code No.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 국내 】																	【 Domestic 】	
총 계	1~3																	Total	1~3
공 공 부 문	1																	Public	1
정 부 (041-056)	101																	Central Government	101
지방자치단체 (011-039)	102																	Local Government	102
국영기업체 (092)	103																	Public Corporation	103
기타공공단체 (091)	104																	Others	104
민 간 부 문	2																	Private	2
제 조 업	21																	Manufacturing	21
음 식 료 품 (950)	210																	Food	210
섬 유 류 (951)	211																	Texture	211
나무제품·가구 (952)	212																	Wood & Furniture	212
종이제품·인쇄 (953)	213																	Paper & Printing	213
화합물·석유·석탄 (954)	214																	Chemicals, Petroleum & Coal	214
비금속광물 (955)	215																	Nonmetallic Mineral	215
제 1 차 금 속 (956)	216																	Basic Metal	216
조 립 금 속 (957)	217																	Assembly Metal	217
기 타 제 조 업 (958)	218																	Others	218
비 제 조 업	22																	Non-Manufacturing	22
농 립 · 수 산 (960)	220																	Agriculture & Fishery	220
광 업 (961)	221																	Mining	221
전기·가스·수도 (962)	222																	Electricity, Gas & Water	222
건 설 업 (963)	223																	Construction	223
도소매업·음식·숙박 (964)	224																	Distribution, Food & Hotels	224
운 수 창 고 (965)	225																	Transport, Storage	225
금 용 · 보 험 (966)	226																	Finance & Insurance	226
부 동 산 업 (967)	227																	Real Estate	227
사 회 서 비 스 업 (968)	228																	Business Services	228
사회및개인서비스업 (969)	229																	Social & Personal Services	229
국 내 외 국 기 관	3																	Foreign Org. in Korea	3
국내외국기관 (093)	310																	Foreign Org. in Korea	310

38. 공 종 및 공 사 지 역 별 원 도 급 공 사 시 공 액

(금액 단위 : 백만원)

Value of Construction Work in Original Contract by Kind of Construction and Region

(Unit: million)

공 종 별	지 역 별	분 류 번호 Code No.	총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경 기도	강 원 도	충 청 북 도	충 청 남 도	전 라 북 도	전 라 남 도	경 상 북 도	경 상 남 도	계 주 도	Region	Code No.	
			Total	Seoul	Pusan	Taegu	Inch'on	Kwang-ju	Tae-jŏn	Kyonggi-do	Kang-won-do	Ch'ungch'ong-buk-do	Ch'ungch'ong-nam-do	Chollabuk-do	Chollanam-do	Kyongsangbuk-do	Kyongsangnam-do	Cheju-do			Kind of Construction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 국내 】																			【 Domestic 】	
총 계		1~3																		Total	1~3
건축공사		1																		Building	1
단독주택및연립주택(411)		101																		Detached & Tenement House	101
아파트(412)		102																		Apartment	102
주거점용및점포(413)		103																		Residential Shop	103
사무실·상업용건물(414)		104																		Office & Commercial Building	104
호텔·숙박시설(415)		105																		Hotel & Lodgings	105
은행(416)		106																		Bank	106
극장·영화관(417)		107																		Theater	107
관공서(420)		108																		Public Building	108
학교(421)		109																		Educational Facilities	109
병원(422)		110																		Hospital	110
문화계및유적건물(423)		111																		Historic Relics	111
교회·사찰등종교건물(424)		112																		Church & Temple	112
창고및차고(418)		113																		Warehouse & Garage	113
공장(419)		114																		Factory	114
위험물저장소(425)		115																		Hazardous Property Storage	115
위생냉난방(430)		116																		Sanitation & Air Conditioning	116
기계기구설치(440)		117																		Mechanical & Engineering Services	117
기타건축(450)		118																		Others	118
토목공사		2																		Civil Engineering	2
도로·교량및도로터널(210)		201																		Road Bridge & Tunnel	201
포장(610)		202																		Pavement	202
철도터널및지하철(240)		203																		Railroad & Subway	203
댐(220)		204																		Dam	204
치산·치수및사방하천(250)		205																		Erosion Control & River Works	205
농림·수산및관개수로(260)		206																		Agriculture, Fishery & Irrigation	206
농지정리(261)		207																		Farmland Development Works	207
발전소·시설(221)		208																		Power Plant Facilities	208
항만(230)		209																		Harbor	209
공항(231)		210																		Airport	210
상하수도(270)		211																		Water Supply & Sewerages	211
경기장·운동장·공원시설(280)		212																		Athletic & Park Facilities	212
택지조성(281)		213																		Housing Lots Reclamation	213
기타토목시설(290)		214																		Others	214
철강제설치(620)		215																		Iron & Steel Installation	215
준설(630)		216																		Dredging	216
조경(640)		217																		Landscaping	217
전기및전기통신공사		3																		Electricity & Electrical Communication Works	3
1종전기(301)		301																		1st Grade Electrical Works	301
2종전기(302)		302																		2nd Grade Electrical Works	302
전기통신(310)		303																		Electrical Communication Works	303

39. 공 종 및 발 주 자 별 시 공 액
Value of Construction Work by Kind of Construction and Orderer

(금액단위 : 백만원)

(Unit:million)

발주자별 공종별	분류 번호 Code No.	총 계 Total	공 공 부 문 Public				민 간 조 부 문 Private							Orderer Kind of Construction	Code No.			
			합 계 Sub-Total	정 부 (041 + ...056) Central Government	지 방 자 치 단 (011 + ...039) Local Government	국 기 영 사 (092) Public Corporation	기 타 공 공 단 체 (091) Others	합 계 Sub-Total	제조업 Manufacturing Industry									
									계 Sub-Total	음식료품 Food	섬유류 Texture	나무제품 가구 Wood & Furniture	종이제품 인쇄 Paper, Printing			화학석유 석탄 Chemicals, Petroleum	비금속 광물 Nonmetallic Mineral	제1차 금속 Basic Metal
		10	10	10	10	10	10	9	9	9	9	9	9	9	9			
【 국내 】																		
총 계	1 ~ 3																Total	1 ~ 3
건축공사	1																Building	1
단독주택및연립주택(411)	101																Detached & Tenement House	101
아파트(412)	102																Apartment	102
주거겸용및점포(413)	103																Residential Shop	103
사무실·상업용건물(414)	104																Office & Commercial Building	104
호텔·숙박시설(415)	105																Hotel & Lodgings	105
은행(416)	106																Bank	106
극장·영화관(417)	107																Theater	107
관공서(420)	108																Public Building	108
학교(421)	109																Educational Facilities	109
병원(422)	110																Hospital	110
문화재및유적건물(423)	111																Historic Relics	111
교회·사찰등종교건물(424)	112																Church & Temple	112
창고및차고(418)	113																Warehouse & Garage	113
공장(419)	114																Factory	114
위험물저장소(425)	115																Hazardous Property Storage	115
위생냉난방(430)	116																Sanitation & Air Conditioning	116
기계기구설치(440)	117																Mechanical & Engineering Services	117
기타건축(450)	118																Others	118
토목공사	2																Civil Engineering	2
도로·교량및도로터널(210)	201																Road Bridge & Tunnel	201
포장(210)	202																Pavement	202
철도터널및지하철(240)	203																Railroad & Subway	203
댐(220)	204																Dam	204
차산·치수및사방하천(250)	205																Erosion Control & River Works	205
농림·수산및관개수로(260)	206																Agriculture, Fishery & Irrigation	206
농지정리(261)	207																Farmland Development Works	207
발전소·시설(221)	208																Power Plant Facilities	208
항만(230)	209																Harbor	209
공항(231)	210																Airport	210
상하수도(270)	211																Water Supply & Sewerages	211
경기장·운동장·공원시설(280)	212																Athletic & Park Facilities	212
택지 조성(281)	213																Housing Lots Reclamation	213
기타토목시설(290)	214																Others	214
철강시설(620)	215																Iron & Steel Installation	215
준설(630)	216																Dredging	216
조경(640)	217																Landscaping	217
전기및전기통신공사	3																Electricity & Electrical Communication Works	3
1종전기(301)	301																1st Grade Electrical Works	301
2종전기(302)	302																2nd Grade Electrical Works	302
전기통신(310)	303																Electrical Communication Works	303

39. 공 종 및 발 주 자 별 시 공 액 (계 속)

(금액단위 : 백만원)

Value of Construction Work by Kind of Construction and Orderer (Cont'd)

(Unit: million)

발주자별 공 종 별	분 류 번호 Code No.	민 간 부 문 Private													국 내 외국기관 Foreign Org. in Korea	Orderer Kind of Construction	Code No.
		제조업 Manufacturing Industry		비 제조업 Non Manufacturing													
		조립금속 Assembly Metal	기 타 제 조업 Others	계 Sub-Total	농림·어업 Agriculture & Fishing	광업 Mining	전기·가스·도 수 Electricity Gas and Water	도소매 음식숙박 Distribution & Hotels	운창 수고 Transport Storage	금융 보험 Finance & Insur- ance	부동산업 Real Estate	건설업 Construc- tion	서비스업 Services	사회및개인 서비스업 Social & Services			
【국내】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Domestic】	
총 계	1~3															Total	1~3
건축공사	1															Building	1
단독주택및연립주택(411)	101															Detached & Tenement House	101
아파트(412)	102															Apartment	102
주거겸용및점포(413)	103															Residential Shop	103
사무실·상업용건물(414)	104															Office & Commercial Building	104
호텔·숙박시설(415)	105															Hotel & Lodgings	105
은행(416)	106															Bank	106
극장·영화관(417)	107															Theater	107
관공서(420)	108															Public Building	108
학교(421)	109															Educational Facilities	109
병원(422)	110															Hospital	110
문화재및유적건물(423)	111															Historic Relics	111
교회·사찰등종교건물(424)	112															Church & Temple	112
창고및차고(418)	113															Warehouse & Garage	113
공장(419)	114															Factory	114
위험물저장소(425)	115															Hazardous Property Storage	115
위생냉난방(430)	116															Sanitation & Air Conditioning	116
기계기구설치(440)	117															Mechanical & Engineering Services	117
기타건축(450)	118															Others	118
토목공사	2															Civil Engineering	2
도로·교량및도로터널(210)	201															Road Bridge & Tunnel	201
포장(610)	202															Pavement	202
철도터널및지하철(240)	203															Railroad & Subway	203
댐(220)	204															Dam	204
치산·치수및사방하천(250)	205															Erosion Control & River Works	205
농림·수산및관개수로(260)	206															Agriculture, Fishery & Irrigation	206
농지정리(261)	207															Farmland Development Works	207
발전소·시설(221)	208															Power Plant Facilities	208
항만(230)	209															Harbor	209
공항(231)	210															Airport	210
상하수도(270)	211															Water Supply & Sewerages	211
경기장·운동장·공원시설(280)	212															Athletic & Park Facilities	212
택지조성(281)	213															Housing Lots Reclamation	213
기타토목시설(290)	214															Others	214
철강제설치(620)	215															Iron & Steel Installation	215
콘크리트(630)	216															Dredging	216
조경(640)	217															Landscaping	217
전기및전기통신공사	3															Electricity & Electrical Commu- nication Works	3
1종전기(301)	301															1st Grade Electrical Works	301
2종전기(302)	302															2nd Grade Electrical Works	302
전기통신(310)	303															Electrical Communication Works	303

40. 공 종 및 발 주 자 별 원 도 급 공 사 시 공 익

(금액 단위 : 백만원)

Value of Construction Work in Original Contract by Kind of Construction and Orderer

(Unit: million)

발주자별 공종별	분류번호 Code No.	총계 Total	공공부문 Public				민간조업문 Private							Orderer Kind of Construction	Code No.		
			합계 Sub-Total	정부 (041 + ...056) Central Government	지방자치 단체 (011 + ...039) Local Government	국 기업 체 (092) Public Corporation	기 공 단 체 (091) Others	합계 Sub-Total	제조업 Manufacturing Industry								
									제 Sub-Total	음식료 품 Food	섬유 류 Textile	나무제 품 가 구 Furniture	종이제 품 쇄 인 Paper, Printing			화학 석 유 석 탄 Chemicals, Petroleum	비금 속 광 물 Nonmetallic Mineral
【국내】		10	10	10	10	10	10	9	9	9	9	9	9	9	【Domestic】		
총계	1~3														Total	1~3	
건축공사	1														Building	1	
단독주택및연립주택(411)	101														Detached & Tenement House	101	
아파트(412)	102														Apartment	102	
주거겸용및점포(413)	103														Residential Shop	103	
사무실·상업용건물(414)	104														Office & Commercial Building	104	
호텔·숙박시설(415)	105														Hotel & Lodgings	105	
은행(416)	106														Bank	106	
극장·영화관(417)	107														Theater	107	
관공서(420)	108														Public Building	108	
학교(421)	109														Educational Facilities	109	
병원(422)	110														Hospital	110	
문화재및유적건물(423)	111														Historic Relics	111	
교회·사찰등종교건물(424)	112														Church & Temple	112	
창고및차고(418)	113														Warehouse & Garage	113	
공장(419)	114														Factory	114	
위험물저장소(425)	115														Hazardous Property Storage	115	
위생냉난방(430)	116														Sanitation & Air Conditioning	116	
기계기구설치(440)	117														Mechanical & Engineering Services	117	
기타건축(450)	118														Others	118	
토목공사	2														Civil Engineering	2	
도로·교량및도로터널(210)	201														Road Bridge & Tunnel	201	
포장(610)	202														Pavement	202	
철도터널및지하철(240)	203														Railroad & Subway	203	
댐(220)	204														Dam	204	
치산·치수및사방하천(250)	205														Erosion Control & River Works	205	
농림·수산및관개수로(260)	206														Agriculture, Fishery & Irrigation	206	
농지정리(261)	207														Farmland Development Works	207	
발전소·시설(221)	208														Power Plant Facilities	208	
항만(230)	209														Harbor	209	
공항(231)	210														Airport	210	
상하수도(270)	211														Water Supply & Sewerages	211	
경기장·운동장·공원시설(280)	212														Athletic & Park Facilities	212	
택지조성(281)	213														Housing Lots Reclamation	213	
기타토목시설(290)	214														Others	214	
철강제설치(620)	215														Iron & Steel Installation	215	
준설(630)	216														Dredging	216	
조경(640)	217														Landscaping		
전기및전기통신공사	3														Electricity & Electrical Communication Works	3	
1. 중전기(301)	301														1st Grade Electrical Works	301	
2. 중전기(302)	302														2nd Grade Electrical Works	302	
전기통신(310)	303														Electrical Communication Works	303	

40. 공 종 및 발 주 자 별 원 도 급 공 사 시 공 액 (계 속)

(금액단위 : 백만원)

Value of Construction Work in Original Contract by Kind of Construction and Orderer (Cont'd)

(Unit:million)

공종별	발주자별 분류번호 Code No.	민 간 제 부 조 문 업 Private Non Manufacturing													국 내 외 국 기 관 Foreign Org. in Korea	Orderer Kind of Construction	Code No.	
		제조업 Manufacturing Industry		계 Total	비 제 조 업 Agriculture & Fishing Mining			제 조 업 Non Manufacturing			건설업 Construction	사 회 서비스업 Services	사 회 및 개 인 서비스업 Social & Services					
		조립금속 Assembly Metal	기타제조업 Others		농림·어업 Agriculture & Fishing	광업 Mining	전기·가스·수도 Electricity, Gas, Water	도 소 매 음식·숙박 음식점·숙박 Distribution & Hotels	운수창고 Transport Storage	금융보험 Finance & Insurance				부동산업 Real Estate				
【 국내 】																		
총 계 1~3																		
1 건축공사 1																		
단독주택및연립주택(411)	101																Total Building	1~3 1
아파트(412)	102																Detached & Tenement House	101
주거겸용및점포(413)	103																Apartment	102
사무실·상업용건물(414)	104																Residential Shop	103
호텔·숙박시설(415)	105																Office & Commercial Building	104
은행(416)	106																Hotel & Lodgings	105
극장·영화관(417)	107																Bank	106
관공서(420)	108																Theater	107
학교(421)	109																Public Building	108
병원(422)	110																Educational Facilities	109
문화재및유적건물(423)	111																Hospital	110
교회·사찰등종교건물(424)	112																Historic Relics	111
창고및차고(418)	113																Church & Temple	112
공장(419)	114																Warehouse & Garage	113
위험물저장소(425)	115																Factory	114
위생냉난방(430)	116																Hazardous Property Storage	115
기계기구설치(440)	117																Sanitation & Air Conditioning	116
기타건축(450)	118																Mechanical & Engineering Services	117
2 토목공사 2																		
도로·교량및도로터널(210)	201																Civil Engineering	2
포장(610)	202																Road Bridge & Tunnel	201
철도터널및지하철(240)	203																Pavement	202
댐(220)	204																Railroad & Subway	203
치산·치수및사방하천(250)	205																Dam	204
농림·수산및관개수로(260)	206																Erosion Control & River Works	205
농지정리(261)	207																Agriculture, Fishery & Irrigation	206
발전소·시설(221)	208																Farmland Development Works	207
항만(230)	209																Power Plant Facilities	208
공항(231)	210																Harbor	209
상하수도(270)	211																Airport	210
경기장·운동장·공원시설(280)	212																Water Supply & Sewerages	211
택지조성(281)	213																Athletic & Park Facilities	212
기타토목시설(290)	214																Housing Lots Reclamation	213
철강제설치(620)	215																Others	214
준설(630)	216																Iron & Steel Installation	215
조경(640)	217																Dredging	216
3 전기및전기통신공사 3																		
1층전기(301)	301																Electricity & Electrical Communication Works	3
2층전기(302)	302																1st Grade Electrical Works	301
전기통신(310)	303																2nd Grade Electrical Works	302
																	Electrical Communication Works	303

41. 공 중 및 발 주 자 별 하 도 급 공 사 시 공 액
Value of Construction Work in Subcontract by Kind of Construction and Orderer

(금액단위 : 백만원)

(Unit:million)

발 주 자 별 공 중 별	분 류 번호 Code No.	총 계 Total	공 공 부 문 Public				합 계 Sub-Total	민 간 조 업 Private						Orderer Kind of Construction	Code No.	
			합 계 Sub-Total	정 부 Central Government (041+...056)	지 방 자 치 체 Local Government (011+...039)	국 기 영 체 Public Corporation (092)		기 공 공 단 체 Others (091)	합 계 Sub-Total	제 조 Sub-Total	음 식 료 품 Food	섬 유 류 Texture	나 무 제 품 가 Wood & Furniture			종 이 제 품 인 Paper, Printing
【 국내 】																
총 계	1 ~ 3	10	10	10	10	10	10	9	9	9	9	9	9	9	【 Domestic 】	1 ~ 3
건축공사	1														Total Building	1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411)	101														Detached & Tenement House	101
아파트(412)	102														Apartment	102
주거겸용 및 점포(413)	103														Residential Shop	103
사무실·상업용건물(414)	104														Office & Commercial Building	104
호텔·숙박시설(415)	105														Hotel & Lodgings	105
은행(416)	106														Bank	106
극장·영화관(417)	107														Theater	107
관공서(420)	108														Public Building	108
학교(421)	109														Educational Facilities	109
병원(422)	110														Hospital	110
문화재 및 유적건물(423)	111														Historic Relics	111
교회·사찰 등 종교건물(424)	112														Church & Temple	112
창고 및 차고(418)	113														Warehouse & Garage	113
공장(419)	114														Factory	114
위험물저장소(425)	115														Hazardous Property Storage	115
위생냉난방(430)	116														Sanitation & Air Conditioning	116
기계기구설치(440)	117														Mechanical & Engineering Services	117
기타건축(450)	118														Others	118
토목공사	2														Civil Engineering	2
도로·교량 및 도로터널(210)	201														Road Bridge & Tunnel	201
포장(610)	202														Pavement	202
철도터널 및 지하철도(240)	203														Railroad & Subway	203
댐(220)	204														Dam	204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250)	205														Erosion Control & River Works	205
농림·수산 및 관개수로(260)	206														Agriculture, Fishery & Irrigation	206
농지정리(261)	207														Farmland Development Works	207
발전소·시설(221)	208														Power Plant Facilities	208
항만(230)	209														Harbor	209
공항(231)	210														Airport	210
상하수도(270)	211														Water Supply & Sewerages	211
경기장·운동장·공원시설(280)	212														Athletic & Park Facilities	212
택지조성(281)	213														Housing Lots Reclamation	213
기타토목시설(290)	214														Others	214
철강계설치(620)	215														Iron & Steel Installation	215
준설(630)	216														Dredging	216
조경(640)	217														Landscaping	217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	3														Electricity & Electrical Communication Works	3
1 등 전기(301)	301														1st Grade Electrical Works	301
2 등 전기(302)	302														2nd Grade Electrical Works	302
전기통신(310)	303														Electrical Communication Works	303

41. 공 중 및 발 주 자 별 하 도 급 공 사 시 공 액 (계 속)

(금액단위 : 백만원)

Value of Construction Work in Subcontract by Kind of Construction and Orderer (Cont'd)

(Unit:million)

공종별	발주자별 분류 번호 Code No.	민 간 부 문													국 내 외 국 기 관 Foreign Org. in Korea	Orderer Kind of Construction	Code No.			
		제조업 Manufacturing Industry		비 제 부 문 Non Manufacturing																
		조립금속 Assembly Metal	기타제조업 Others	계 Total	농림·어업 Agriculture & Fishing	광 업 Mining	전기·가스 수도 Electricity, Gas Water	도소매 음식·숙박 Distribution & Hotels	운수창고 Transport Storage	금융보험 Finance & Insurance	부동산업 Real Estate	건설업 Construction	사 회 서비스업 Services	사회및개인 서비스업 Social & Services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국내】																		
		총 계															1 ~ 3			
		건축공사															1			
		101																Detached & Tenement House	101	
		102																Apartment	102	
		103																Residential Shop	103	
		104																Office & Commercial Building	104	
		105																Hotel & Lodgings	105	
		106																Bank	106	
		107																Theater	107	
		108																Public Building	108	
		109																Educational Facilities	109	
		110																Hospital	110	
		111																Historic Relics	111	
		112																Church & Temple	112	
		113																Warehouse & Garage	113	
		114																Factory	114	
		115																Hazardous Property Storage	115	
		116																Sanitation & Air Conditioning	116	
		117																Mechanical & Engineering Services	117	
		118																Others	118	
		토목공사															2			
		201																Road Bridge & Tunnel	201	
		202																Pavement	202	
		203																Railroad & Subway	203	
		204																Dam	204	
		205																Erosion Control & River Works	205	
		206																Agriculture, Fishery & Irrigation	206	
		207																Farmland Development Works	207	
		208																Power Plant Facilities	208	
		209																Harbor	209	
		210																Airport	210	
		211																Water Supply & Sewerages	211	
		212																Athletic & Park Facilities	212	
		213																Housing Lots Reclamation	213	
		214																Others	214	
		215																Iron & Steel Installation	215	
		216																Dredging	216	
		217																Landscaping	217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															3			
		301																	1st Grade Electrical Works	301
		302																	2nd Grade Electrical Works	302
		303																	Electrical Communication Works	303

42. 발주자 및 공사지역별 원도급공사시공액
Value of Construction Work in Original Contract by Orderer and Region

(금액단위: 백만원)

(Unit: million)

발주자별	지역별 분류번호 Code No.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Region	Orderer	Code No.	
																					Total
【 국내 】																					
총계	1~3																		【 Domestic 】		1~3
공공부문	1																		Public		1
정부 (041-056)	101																		Central Government		101
지방자치단체 (011-039)	102																		Local Government		102
국영기업체 (092)	103																		Public Corporation		103
기타공공단체 (091)	104																		Others		104
민간부문	2																		Private		2
제조업	21																		Manufacturing		21
음식료품 (950)	210																		Food		210
섬유류 (951)	211																		Texture		211
나무제품·가구 (952)	212																		Wood & Furniture		212
종이제품·인쇄 (953)	213																		Paper & Printing		213
화학물·석유·석탄 (954)	214																		Chemicals, Petroleum & Coal		214
비금속광물 (955)	215																		Nonmetallic Mineral		215
제1차금속 (956)	216																		Basic Metal		216
조립금속 (957)	217																		Assembly Metal		217
기타제조업 (958)	218																		Others		218
비제조업	22																		Non-Manufacturing		22
농림·수산 (960)	220																		Agriculture & Fishery		220
광업 (961)	221																		Mining		221
전기·가스·수도 (962)	222																		Electricity, Gas & Water		222
건설업 (963)	223																		Construction		223
도소매업·음식·숙박 (964)	224																		Distribution, Food & Hotels		224
운수창고 (965)	225																		Transport, Storage		225
금융·보험 (966)	226																		Finance & Insurance		226
부동산업 (967)	227																		Real Estate		227
사회서비스업 (968)	228																		Business Services		228
사회및개인서비스업 (969)	229																		Social & Personal Services		229
국내외국기관	3																		Foreign Org. in Korea		3
국내외국기관 (093)	310																		Foreign Org. in Korea		310

43. 공 종 및 공 사 지 역 별 하 도 급 공 사 시 공 액
Value of Construction Work in Subcontract by Kind of Construction and Region

(금액단위 : 백만원)

(Unit:million)

공 종 별	지 역, 별	분 류 번 호 Code No.	총 액 Total	서 울 Seoul	부 산 Pusan	대 구 Daegu	인 천 Inch'on	광 주 Kwang-ju	대 전 Daejeon	경 기도 Kyonggi -do	강 원 도 Kang-won -do	충 청 북 도 Ch'ungch' ong buk-do	충 청 남 도 Ch'ungch' ong nam-do	전 라 북 도 Chollabuk -do	전 라 남 도 Chollanam -do	경 상 북 도 Kyongsang buk-do	경 상 남 도 Kyongsang nam-do	제 주 도 Cheju-do	Region	Code		
																			Kind of Construction			
【 국내 】																					【 Domestic 】	
총 계		1~3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Total	1~3	
건축공사		1																		Building	1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411)		101																		Detached & Tenement House	101	
아파트(412)		102																		Apartment	102	
주거점용 및 점포(413)		103																		Residential Shop	103	
사무실·상업용 건물(414)		104																		Office & Commercial Building	104	
호텔·숙박시설(415)		105																		Hotel & Lodgings	105	
은행(416)		106																		Bank	106	
극장·영화관(417)		107																		Theater	107	
관공서(420)		108																		Public Building	108	
학교(421)		109																		Educational Facilities	109	
병원(422)		110																		Hospital	110	
문화재 및 유적 건물(423)		111																		Historic Relics	111	
교회·사찰 등 종교 건물(424)		112																		Church & Temple	112	
창고 및 차고(418)		113																		Warehouse & Garage	113	
공장(419)		114																		Factory	114	
위험물 저장소(425)		115																		Hazardous Property Storage	115	
위생냉난방(430)		116																		Sanitation & Air Conditioning	116	
기계기구설치(440)		117																		Mechanical & Engineering Services	117	
기타건축(450)		118																		Others	118	
토목공사		2																		Civil Engineering	2	
도로·교량 및 도로터널(210)		201																		Road Bridge & Tunnel	201	
포장(610)		202																		Pavement	202	
철도터널 및 지하철도(240)		203																		Railroad & Subway	203	
댐(220)		204																		Dam	204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250)		205																		Erosion Control & River Works	205	
농림·수산 및 관개수로(260)		206																		Agriculture, Fishery & Irrigation	206	
농지정리(261)		207																		Farmland Development Works	207	
발전소·시설(221)		208																		Power Plant Facilities	208	
항만(230)		209																		Harbor	209	
공항(231)		210																		Airport	210	
상하수도(270)		211																		Water Supply & Sewerages	211	
경기장·운동장·공원시설(280)		212																		Athletic & Park Facilities	212	
택지조성(281)		213																		Housing Lots Reclamation	213	
기타토목시설(290)		214																		Others	214	
철강재설치(620)		215																		Iron & Steel Installation	215	
준설(630)		216																		Dredging	216	
조경(640)		217																		Landscaping	217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		3																		Electricity & Electrical Communication Works	3	
1종 전기(301)		301																		1st Grade Electrical Works	301	
2종 전기(302)		302																		2nd Grade Electrical Works	302	
전기통신(310)		303																		Electrical Communication Works	303	

44. 공 종 및 공 사 지 역 별 미 기 성 익

(금액단위 : 백만원)

Value of Carry-over Work by Kind of Construction and Region

(Unit:million)

공 종 별	지 역 별 분 류 번호 Code No.	총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경 기도	강 원 도	충 청 북 도	충 청 남 도	전 라 북 도	전 라 남 도	경 상 북 도	경 상 남 도	제 주 도	Region	Code No.
	【 국내 】																	【 Domestic 】	
총 계	1 ~ 3																	Total	1 ~ 3
건축공사	1																	Building	1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411)	101																	Detached & Tenement House	101
아파트(412)	102																	Apartment	102
주거겸용 및 점포(413)	103																	Residential Shop	103
사무실·상업용 건물(414)	104																	Office & Commercial Building	104
호텔·숙박시설(415)	105																	Hotel & Lodgings	105
은행(416)	106																	Bank	106
극장·영화관(417)	107																	Theater	107
관공서(420)	108																	Public Building	108
학교(421)	109																	Educational Facilities	109
병원(422)	110																	Hospital	110
문화재 및 유적 건물(423)	111																	Historic Relics	111
교회·사찰 등 종교 건물(424)	112																	Church & Temple	112
창고 및 차고(418)	113																	Warehouse & Garage	113
공장(419)	114																	Factory	114
위험물 저장소(425)	115																	Hazardous Property Storage	115
위생냉난방(430)	116																	Sanitation & Air Conditioning	116
기계기구설치(440)	117																	Mechanical & Engineering Services	117
기타 건축(450)	118																	Others	118
토목공사	2																	Civil Engineering	2
도로·교량 및 도로터널(210)	201																	Road Bridge & Tunnel	201
포장(610)	202																	Pavement	202
철도터널 및 지하철도(240)	203																	Railroad & Subway	203
댐(220)	204																	Dam	204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250)	205																	Erosion Control & River Works	205
농림·수산 및 관개수로(260)	206																	Agriculture, Fishery & Irrigation	206
농지정리(261)	207																	Farmland Development Works	207
발전소·시설(221)	208																	Power Plant Facilities	208
항만(230)	209																	Harbor	209
공항(231)	210																	Airport	210
상하수도(270)	211																	Water Supply & Sewerages	211
경기장·운동장·공원시설(280)	212																	Athletic & Park Facilities	212
택지조성(281)	213																	Housing Lots Reclamation	213
기타 토목시설(290)	214																	Others	214
철강재설치(620)	215																	Iron & Steel Installation	215
준설(630)	216																	Dredging	216
조경(640)	217																	Landscaping	217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	3																	Electricity & Electrical Communication Works	3
1종 전기(301)	301																	1st Grade Electrical Works	301
2종 전기(302)	302																	2nd Grade Electrical Works	302
전기통신(310)	303																	Electrical Communication Works	303

45. 산업소분류종업원규모별공사비용
 Cost of Constraction by Size of Workers Sub-division of Industry

(금액단위: 백만원)

(Unit: million)

공사비별 종업원규모별	분류번호 Code No.	총계 Total	원재료비 자급 Row Material Costs Self- Provided	보조 재료비 Ancillary Material Costs	임금 및 료 Wages and Salaries	복리 후생비 Cost for Welfare Work	감가 상각비 Depreci- ation	임차료 Hire		조세공과 Tax and Public Dues	수선비 Cost of repairs and Maintenance	전력·용수 연료·광열 Electric Power, Water, Fueland, Light	잡비 Miscellane- ous Expenses	외주 공사액 Payments to Subcontract- ors	원재료비 발주자급 Row Mater- ial Costs Pro- vided by Orderer	납부 부가가치 세 V. A. T	Cost of Construction	Size of Workers	Code No.	
								장비·건물 Equipment Building	토지 Land											
【국내】		9	9	9	9	9	9	9	9	10	10	10	10	10	10	10				
종합건설업	51																	【 Domestic 】		
5인미만	1																	General		51
5 ~ 9	2																	less than 5persons		1
10 ~ 19	3																	5 ~ 9		2
20 ~ 49	4																	10 ~ 19		3
50 ~ 99	5																	20 ~ 49		4
100 ~ 199 ☒	6																	50 ~ 99		5
200 ~ 299	7																	100 ~ 199 ☒		6
300 ~ 499	8																	200 ~ 299		7
500 ~ 999	9																	300 ~ 499		8
1,000인이상	10																	500 ~ 999		9
1,000persons or more																				10
건축건설업	511																	Building		511
☒																		☒		
토목건설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																		☒		
【해외】																		【 Over-sea 】		
종합건설업	51																	General		51
☒																		☒		
건축건설업	511																	Building		511
☒																		☒		
토목건설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																		☒		

46. 산업소분류종업원규모별및조직형태별부가가치
Value Added by Type of Organization, Size of Capital Stock and Sub-division of Industry

(금액단위:백만원)

(Unit:million)

종업원규모별	조직형태 및 자본규모별	분류번호 Code No.	총계 Total	회사법인 Company Corporation						회사외법인 Other Corporation					개인 Individual	조직형태, Size of Capital Stock Size of Workers	코드번호 Code No.					
				계 Total	1,000만원 미만 less than 1,000 ten thousand won	1,000 ~ 4,999	5,000 ~ 9,999	10,000 ~ 49,999	50,000 ~ 99,999	100,000만원이상 10billion won or more	계 Total	5,000만원 미만 less than 5,000 ten thousand won	5,000 ~ 9,999	10,000 ~ 49,999				50,000 ~ 99,999	100,000만원이상 10billion won or more			
			9	9	9	9	9	9	9	9	9	9	10	10	10	10	10	10	10			
	【국내】																				【Domestic】	
	종합건설업	51																			General	51
	5인미만	1																			less than 5persons	1
	5 ~ 9	2																			5 ~ 9	2
	10 ~ 19	3																			10 ~ 19	3
	20 ~ 49	4																			20 ~ 49	4
	50 ~ 99	5																			50 ~ 99	5
	100 ~ 199 ☒	6																			100 ~ 199 ☒	6
	200 ~ 299	7																			200 ~ 299	7
	300 ~ 499	8																			300 ~ 499	8
	500 ~ 999	9																			500 ~ 999	9
	1,000인이상	10																			1,000persons or more	10
	건축건설업	511																			Building	511
	☒																				☒	
	토목건설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																				☒	
	【해외】																				【Over-sea】	
	종합건설업	51																			General	51
	☒																				☒	
	건축건설업	511																			Building	511
	☒																				☒	
	토목건설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																				☒	

47. 산업소분류 및 종업원 규모 별 사업체 당 종업원 1인당 기성액 및 부가가치
 (금액단위:천원) Total Construction Value Added per Worker and Per Establishment, by Size of Workers and Sub-division of Industry (Unit: thousand)

종업원 규모 별	분류번호 Code No.	사업체수 Number of Establishments	종업원수 Number of Employees	사업체 당 Per Establishments			부가가치 Value Added	종업원 1인당 Average Per Engaged			Size of Workers	Code No.
				기성액 Value of Construction		부가가치 Value Added		기성액 Value of Construction		부가가치 Value Added		
				계 Total	원도급공사액 Original Contract			하도급공사액 Sub-Contract	계 Total			
		14	14	14	14	14	14	14	14	14		
【국내】											【Domestic】	
종합건설업	51										General	51
5인미만	1										less than 5persons	1
5 ~ 9	2										5 ~ 9	2
10 ~ 19	3										10 ~ 19	3
20 ~ 49	4										20 ~ 49	4
50 ~ 99	5										50 ~ 99	5
100 ~ 199 ☒	6										100 ~ 199 ☒	6
200 ~ 299	7										200 ~ 299	7
300 ~ 499	8										300 ~ 499	8
500 ~ 999	9										500 ~ 999	9
1,000인이상	10										1,000persons or more	10
건축건설업	511										Building	511
☒											☒	
토목건설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											☒	
【해외】											【Over-sea】	
종합건설업	51										General	51
☒											☒	
건축건설업	511										Building	511
☒											☒	
토목건설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											☒	

48. 산업소분류 및 종업원규모별 재고자산
Value of Inventories by Size of Workers and Sub-division of Industry

(금액단위 : 백만원)

(Unit:million)

재고자산별 종업원규모	분류 번호 Code No.	연초재고액 (1) Initial Stocks of the Year				연말재고액 (2) Year-end Stocks				Value of Inventories Size of Workers	Code No.
		계 Total	원재료 Raw Materials	연료 Fuels	저장품 Supplies	계 Total	원재료 Raw Material	연료 Fuels	저장품 Supplies		
		17	17	17	17	17	17	17			
【국 내】									【 Domestic 】		
총 합 건 설 업	51								General	51	
5인미만	1								less than 5persons	1	
5 ~ 9	2								5 ~ 9	2	
10 ~ 19	3								10 ~ 19	3	
20 ~ 49	4								20 ~ 49	4	
50 ~ 99	5								50 ~ 99	5	
100 ~ 199 ☒	6								100 ~ 199 ☒	6	
200 ~ 299	7								200 ~ 299	7	
300 ~ 499	8								300 ~ 499	8	
500 ~ 999	9								500 ~ 999	9	
1,000인이상	10								1,000persons or more	10	
건 축 건 설 업	511								Building	511	
☒									☒		
토 목 건 설 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									☒		
【해 외】									【 Over-sea 】		
총 합 건 설 업	51								General	51	
☒									☒		
건 축 건 설 업	511								Building	511	
☒									☒		
토 목 건 설 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									☒		

49. 산업소분류종업원규모및종류별유형고정자산
Tangible Fixed Assets by Size of Workers and Kind of Assets and Sub-division of Industry

(금액단위:백만원)

(Unit:million)

유형고정자산별 종업원규모별	분류번호 Code No.	연간취득증개축액 Annual Aquisition of Assels							연간처분손해액및				Tangible Fixed Assets Size of Workers	Code No.
		계 Total	토지 Land	건물 Building	구축물 Structures	중기 Machinery	차량선박운반구 Vehicles Ships & Con- veying Equipment	공구기구 비품 Tools, Furniture Fixtures	건설 가계정 Construction in Process	계 Total	토지 Land	건물 Building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국내】													【 Domestic 】	
종합건설업	51												General	51
5인미만	1												less than 5persons	1
5 ~ 9	2												5 ~ 9	2
10 ~ 19	3												10 ~ 19	3
20 ~ 49	4												20 ~ 49	4
50 ~ 99	5												50 ~ 99	5
100 ~ 199 ☒	6												100 ~ 199 ☒	6
200 ~ 299	7												200 ~ 299	7
300 ~ 499	8												300 ~ 499	8
500 ~ 999	9												500 ~ 999	9
1,000인이상	10												1,000persons or more	10
건축건설업	511												Building	511
☒													☒	
토목건설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													☒	
【해외】													【 Over-sea 】	
종합건설업	51												General	51
☒													☒	
건축건설업	511												Building	511
☒													☒	
토목건설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													☒	

49. 산업소분류종업원규모및종류별유형고정자산(계속)

(금액단위:백만원)

Tangible Fixed Assets by Size of Workers and Kind of Assets and Sub-division of Industry (Cont'd)

(Unit:million)

유형고정자산별 종업원규모별	분류번호 Code No.	감가상가액 Annual Disposals and Depreciation				연 말 총 액 Year-end Stocks								Tangible Fixed Assets Size of Workers	Code No.
		중 기 Machinery	차량선박 운반구 Vehicles Ships & Con- veying Equipment	공구기구 비품 Tools Furniture Fixtures	건설 가계정 Construct- ion in Process	계 Total	토 지 Land	건 물 Building	구 축 물 Structures	중 기 Machinery	차량선박 운반구 Vehicles Ships & Con- veying Equipment	공구기구 비품 Tools Furniture Fixtures	건설 가계정 Construct- ion in Process		
【국내】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총 합 건 설 업	51													【 Domestic 】	51
5인미만	1													less than 5persons	1
5 ~ 9	2													5 ~ 9	2
10 ~ 19	3													10 ~ 19	3
20 ~ 49	4													20 ~ 49	4
50 ~ 99	5													50 ~ 99	5
100 ~ 199 ☒	6													100 ~ 199 ☒	6
200 ~ 299	7													200 ~ 299	7
300 ~ 499	8													300 ~ 499	8
500 ~ 999	9													500 ~ 999	9
1,000인이상	10													1,000persons or more	10
건 축 건 설 업	511													Building	511
☒														☒	
토 목 건 설 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														☒	
【해 외】														【 Over-sea 】	
총 합 건 설 업	51													General	51
☒														☒	
건 축 건 설 업	511													Building	511
☒														☒	
토 목 건 설 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														☒	

50. 산업소분류종업원규모및주요기계보유대수

Number of major Equipments by Size of Workers and Kind of Assets and Sub-division of Industry

(Unit:Numbers)

(단위:대)

기계종류별 중업원규모별	분류 번호 Code No.	총계 Total	불도저 Bulldozer		굴착기 Excavator		로우더 Loader		기 계 차 Forklift	스 레 이 크 퍼 Scraper	덤프트럭 (12이상) Dump Truck 12ton or more	기 중 기 Crane		모 크 레 이 터 더 Motor Crader	로 울 러 Roller	노 안 전 상 기 Road Stabilizer	콘 벡 크 리 트 플 랜 트 Concrete Batcher Plant	콘 크 리 트 셔 Concrete Finisher	Number of major Equipments	Size of Workers	Code No.
			20t이상 20 ton or more	20t미만 less than 20 ton	1m이상 1 m or more	1m미만 less than 1 m	타이어식 Tire	무 한 궤 도 식 Crawler				타이어식 Tire	무 한 궤 도 식 Crawler								
			9	9	9	9	9	9				9	9								
【국 내】			【 Domestic 】																		
총 합 건 설 업	51		General																		51
5인미만	1		less than 5persons																		1
5 ~ 9	2		5 ~ 9																		2
10 ~ 19	3		10 ~ 19																		3
20 ~ 49	4		20 ~ 49																		4
50 ~ 99	5		50 ~ 99																		5
100 ~ 199 ☒	6		100 ~ 199 ☒																		6
200 ~ 299	7		200 ~ 299																		7
300 ~ 499	8		300 ~ 499																		8
500 ~ 999	9		500 ~ 999																		9
1,000인이상	10		1,000persons or more																		10
건 축 건 설 업	511		Building																		511
☒			☒																		
토 목 건 설 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			☒																		
【해 외】			【 Over-sea 】																		
총 합 건 설 업	51		General																		51
☒			☒																		
건 축 건 설 업	511		Building																		511
☒			☒																		
토 목 건 설 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			☒																		

50. 산업소분류종업원규모및주요기계보유대수(계속)

(단위:대)

Number of major Equipments by Size of Workers and Kind of Assets and Sub-division of Industry (Cont'd) (Unit:Numbers)

기계종류별 종업원규모별	분류번호 Code No.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골재	쇄석기	공기	천공기	항타및	사리	준설선	비등록장비			Number of major Equipments	Code No.
		살포기	믹서트럭	펌프	믹싱프랜트	화니셔	살포기	살포기	살포기	Crusher	Compressor	Rock Dric	기타	채취선	Dredger	타워	12t미만		
		Concrete Distributor	Concrete Mixer Truck	Concrete Pump	Asphalt Mixing Plant	Asphalt Finisher	Asphalt Distributor	Aggregate Sprader				Pile Driver and Extractor	Gravel Plant		Tower Crane	less than 12ton Dump Truck	Other	Size of Workers	
【 국내 】																			
종합건설업	51																	General	51
5인미만	1																	less than 5persons	1
5 ~ 9	2																	5 ~ 9	2
10 ~ 19	3																	10 ~ 19	3
20 ~ 49	4																	20 ~ 49	4
50 ~ 99	5																	50 ~ 99	5
100 ~ 199 ☒	6																	100 ~ 199 ☒	6
200 ~ 299	7																	200 ~ 299	7
300 ~ 499	8																	300 ~ 499	8
500 ~ 999	9																	500 ~ 999	9
1,000인이상	10																	1,000persons or more	10
건축건설업	511																	Building	511
☒																		☒	
토목건설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																		☒	
【 해외 】																			
종합건설업	51																	General	51
☒																		☒	
건축건설업	511																	Building	511
☒																		☒	
토목건설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																		☒	

51. 산업소분류 및 사업체 지역별 종업원 월별 투입연 인원
Location of Establishment and Cumulative Number of Monthly by Sub-division of Industry

(단위:명)

(Unit:Persons)

지역별	월별 분류 번호 Code No.	총 계 Total	1	2	3	4	5	6	7	8	9	10	11	12	Month	Region	Code No.
			월 January	월 February	월 March	월 April	월 May	월 June	월 July	월 August	월 September	월 October	월 November	월 December			
		12	12	12	12	12	12	10	10	10	10	10	10	10			
【국내】															【 Domestic 】		51
종합건설업	51														General		51
서울특별시	11														Seoul-t'ukpyol shi		11
부산시	21														Pusan-jik'alshi		21
대구시	22														Taegu-jik'alshi		22
인천시	23														Inch'on-jik'alshi		23
광주시	24														Kwangju-jik'alshi		24
대전시	25														Tae-jon		25
경기도	31														Kyonggi-do		31
강원도	32														Kang-won-do		32
충청북도	33														Ch'ungch'ongbuk-do		33
충청남도	34														Ch'ungch'ongnam-do		34
전라북도	35														Chollabuk-do		35
전라남도	36														Chollanam-do		36
경상북도	37														Kyonsangbuk-do		37
경상남도	38														Kyongsangnam-do		38
제주도	39														Cheju-do		39
건축건설업	511														Building		511
토목건설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해외】															【 Over-sea 】		
종합건설업	51														General		51
건축건설업	511														Building		511
토목건설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52. 사업체 지역 및 면허종류별 연 사업체 수

(단위: 개)

Cumulative Number of Establishments by Location and Kind of Licenses

(Unit: each)

면허종류별 지역별	분류 번호 Code No.	총 계 Total	국내계 (1~9) Domestic Total	토건(1) Civil Engi- neering & Building	토목(2) Civil Engi- neering	건축(3) Building	포장(4) Pavement	철강재 설치(5) Iron & Steel Installation	준설(6) Dredging	조경(7) Landsca- ping	전기통신 (8) Electrical Communi- cation	전기(9) Electric- ity	해외계 (10~15) Over-Sea Total	종합(10) Licenses Issued by M.C	일반 (11) General	특수(12) Special	조경(13) Landsca- ping	전기(14) Electrical works	전기통신 (15) Elec-Com- munication works	Kind of Licenses Region	Code No.
전국																				Nation	
서울	11																			Seoul	11
부산	21																			Pusan	21
대구	22																			Taegu	22
인천	23																			Inch'on	23
광주	24																			Kwang-ju	24
대전	25																			Taejôn	25
경기도	31																			Kyonggi-do	31
강원도	32																			Kang-won-do	32
충청북도	33																			Ch'ungch'ongbuk-do	33
충청남도	34																			Ch'ungch'ongnam-do	34
전라북도	35																			Chollabuk-do	35
전라남도	36																			Chollanam-do	36
경상북도	37																			Kyongsangbuk-do	37
경상남도	38																			Kyongsangnam-do	38
제주도	39																			Cheju-do	39

3. 해외건설에 관한 표

53. 산 업 소 분 류 및 조 직 형 태 별 총 괄

Summary Figures by Type of Legal Organization and Sub-division of Industry

(Unit: million)

(금액단위 : 백만원)

조직 형태 별	분류 번호 Code No.	사 채 업 수 No. of Establish- ments	종 원 업 수 No. of Workers	급 여 액 Remuner- ation	수 주 액 Value of Order Received	기성액 Value of Construction			미 성 기 액 Value of Carry-over Work	공 사 용 비 가 치 Cost of Con- struction	부 가 치 Value Added	연 말 재 고 액 Value of Year-end Inventories	연 말 유 형 고 정 자 산 Year-end Fixed Assets	주 요 기 계 보 유 대 수 No. of Major Equipments	Type of Organization	Code No.
						계 Total	원 도 급 공 사 Original Contract	하 도 급 공 사 Sub- contract								
건 설 업	5	10	10	10	10	10	10	10	12	12	12	12	12	12	Construction as a whole	5
회 사 법 인	1														Company Corporation	1
회 사 이 외 의 법 인	2														Other Corporation	2
개 인	3														Individual	3
총 합 건 설 업	51														General	51
건 축 건 설 업	511														Building	511
토 목 건 설 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전 문 직 별 건 설 업	52														Special	52
배관, 난방 및 관련 공사업	521														Plumbing, Heating and Related Works	521
도장도배 및 실내장식공사업	522														Painting, Paper Hanging and Decorating Works	522
전 기 공 사 업	523														Electrical Works	523
석공, 미장 및 방수공사업	524														Masonry, Stone Setting, Plastering Waterproofing Works	524
목 공 사 업	525														Carpentry and Flooring Works	525
지붕 잇기 및 합석공사업	526														Roofing and Sheet Metal Works	526
철골, 철근장치공사업	527														Installation of Steel Frame, Steel Reinforcing and Building Equipment	527
토공, 굴정, 해체공사업	528														Excavation, Water Well Drilling Wrecking and Demolition Works	528
기 타 전 문 직 별 공 사 업	529														Others	529

54. 산 업 소 분 류 및 자 본 금 규 모 별 총 괄
Summary Figures by Size of Capital Stock and Sub-division of Industry

(금액단위 : 백만원)

(Unit : million)

자본금규모별	분류번호 Code No.	사체업수 No. of Establishments	종원업수 No. of Workers	급여액 Remuneration	수주액 Value of Order Received	기성액 Value of Construction			미성액 Value of Carry-over Work	공사비용 Cost of Construction	부가가치 Value Added	연말재고액 Value of Year-end Inventories	연말유형고정자산 Year-end Fixed Assets	주요기계보유대수 No. of Major Equipments	Size of Capital Stock	Code No.
						계 Total	원도급공사 Original Contract	하도급공사 Sub-contract								
건설업	5														Construction as a Whole	5
200만원미만	1														less than 2 million won	1
200 ~ 499	2														200 ~ 499	2
500 ~ 999	3														500 ~ 999	3
1,000 ~ 4,999	4														1,000 ~ 4,999	4
5,000 ~ 9,999	5														5,000 ~ 9,999	5
10,000 ~ 49,999	6														10,000 ~ 49,999	6
50,000 ~ 99,999	7														50,000 ~ 99,999	7
100,000만원이상	8														10 billion won or more	8
종합건설업	51														General	51
건축건설업	511														Building	511
토목건설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전문직별건설업	52														Special	52
배관, 난방및관련공사업	521														Plumbing, Heating and Related Works	521
도장도배및실내장식공사업	522														Painting, Paper Hanging and Decorating Works	522
전기공사업	523														Electrical Works	523
석공, 미장및방수공사업	524														Masonry, Stone Setting, Plastering Waterproofing Works	524
목공사업	525														Carpentry and Flooring Works	525
지붕잇기 및 합석공사업	526														Roofing and Sheet Metal Works	526
철골, 철근장치공사업	527														Installation of Steel Frame, Steel Reinforcing and Building Equipment	527
토공, 굴정, 해체공사업	528														Excavation, Water Well Drilling Wrecking and Demolition Works	528
기타전문직별공사업	529														Others	529

55. 산 업 소 분 류 및 종업원 규모 별 총괄

Summary Figures by Size of Workers and Sub-division of Industry

(Unit: million)

(금액단위: 백만원)

종업원 규모 별	분류번호 Code No.	사 체 업 수 No. of Establish- ments	종 업 수 No. of Workers	급 여 액 Remuner- ation	수 주 액 Value of Order Received	기성액 Value of Construction			미 성 액 Value of Carry-over Work	공 사 용 Cost of Con- struction	부 가 치 Value Added	연 말 고 액 Value of Year-end Inventories	연 말 유 형 고 정 자 산 Year-end Fixed Assets	주 요 기 계 보 유 대 수 No. of Major Equipments	Size of Workers	Code No.
						계 Total	원도급공사 Original Contract	하도급공사 Sub- contract								
건 설 업	5	10	10	10	10	10	10		12	12	12	12	12	12	Construction as a whole	5
5인미만	1														less than 5 persons	1
5 ~ 9	2														5 ~ 9	2
10 ~ 19	3														10 ~ 19	3
20 ~ 49	4														20 ~ 49	4
50 ~ 99	5														50 ~ 99	5
100 ~ 199	6														100 ~ 199	6
200 ~ 299	7														200 ~ 299	7
300 ~ 499	8														300 ~ 499	8
500 ~ 999	9														500 ~ 999	9
1,000인이상	10														1,000 persons or more	10
총 합 건 설 업	51														General	51
건 축 건 설 업	511														Building	511
토 목 건 설 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전 문 직 별 건 설 업	52														Special	52
배관, 난방 및 관련공사업	521														Plumbing, Heating and Related Works	521
도장도배 및 실내장식공사업	522														Painting, Paper Hanging and Decorating Works	522
전 기 공 사 업	523														Electrical Works	523
석공, 미장 및 방수공사업	524														Masonry, Stone Setting, Plastering Waterproofing Works	524
목 공 사 업	525														Carpentry and Flooring Works	525
지붕 및 기 및 합석공사업	526														Roofing and Sheet Metal Works	526
철골, 철근장치공사업	527														Installation of Steel Frame, Steel Reinforcing and Building Equipment	527
토공, 굴정, 해체공사업	528														Excavation, Water Well Drilling, Wrecking and Demolition Works	528
기 타 전 문 직 별 공 사 업	529														Others	529

56. 산 업 소 분 류 및 총 공 사 액 규 모 별 총 괄
Summary Figures by Size of Total Construction Value and Sub-division of Industry

(금액단위 : 백만원)

(Unit: million)

공사액 규모별	분류번호 Code No.	사 체 업 수 No. of Establishments	종 원 업 수 No. of Workers	급 여 액 Remuneration	수 주 액 Value of Order Received	기성액 Value of Construction			미 기 액 Value of Carry-over Work	공 사 용 Cost of Construction	부 가 치 Value Added	연 말 재 고 액 Value of Year-end Inventories	연 말 유 형 고정 자산 Year-end Fixed Assets	주 요 기 계 보유 대 수 No. of Major Equipments	Size of Construction Value	Code No.
						계 Total	원 도 급 공 사 Original Contract	하 도 급 공 사 Sub-contract								
건 설 업	5														Construction as a whole	5
500 만 원 미 만	1														less than 5 million won	1
500 ~ 999	2														500 ~ 999	2
1,000 ~ 4,999	3														1,000 ~ 4,999	3
5,000 ~ 9,999	4														5,000 ~ 9,999	4
10,000 ~ 49,999	5														10,000 ~ 49,999	5
50,000 ~ 99,999	6														50,000 ~ 99,999	6
100,000 ~ 499,999	7														100,000 ~ 499,999	7
500,000 ~ 999,999	8														500,000 ~ 999,999	8
1,000,000 만 원 이 상	9														100 billion won or more	9
총 합 건 설 업	51														General	51
건 축 건 설 업	511														Building	511
토 목 건 설 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전 문 직 별 건 설 업	52														Special	52
배관, 난방 및 관련 공사업	521														Plumbing, Heating and Related Works	521
도장도배 및 실내장식공사업	522														Painting, Paper Hanging and Decorating Works	522
전 기 공 사 업	523														Electrical Works	523
석공, 미장 및 방수공사업	524														Masonry, Stone Setting, Plastering Waterproofing Works	524
목 공 사 업	525														Carpentry and Flooring Works	525
지붕 및 기 및 합석공사업	526														Roofing and Sheet Metal Works	526
철골, 철근장치공사업	527														Installation of Steel Frame, Steel Reinforcing and Building, Equipment	527
토정, 굴정, 해체공사업	528														Excavation, Water Well Drilling Wrecking and Demolition Works	528
기 타 전 문 직 별 공 사 업	529														Others	529

57. 산업소분류종업원규모별종업원수및급여액
 Number of Workers and Remuneration by Size of Workers and Sub-division of Industry

(금액단위:백만원)

(Unit: million)

종업원규모별	분류번호 Code No.	종업원수 (단위:명) Number of Workers									급여액 Remuneration									Size of Workers	Code No.	
		피고용자 Employees									피고용자 Employees											
		합계	생산종업원 Operatives								합계	생산종업원 Operatives										퇴직금 Retirement Allowance
			소계	사무및기타종업원 Administrative and Other Workers	계	기술자 Engineers	기능공 Craftsmen	임시기능공 Temporary Craftsmen	단순노무자 Laborers	순		사무및기타종업원 Administrative and Other Workers	계	기술자 Engineers	기능공 Craftsmen	임시기능공 Temporary Craftsmen	단순노무자 Laborers					
Total	Sub-Total	Total	Engineers	Craftsmen	Temporary Craftsmen	Laborers	Working Proprietors and Unpaid Family Workers	Total	Sub-Total	Total	Engineers	Craftsmen	Temporary Craftsmen	Laborers								
9	9	9	9	9	9	9	9	8	8	8	8	8	8	8	8							
건설업	5															Construction as a whole	5					
5인미만	1															less than 5 persons	1					
5 ~ 9	2														5 ~ 9	2						
10 ~ 19	3														10 ~ 19	3						
20 ~ 49	4														20 ~ 49	4						
50 ~ 99	5														50 ~ 99	5						
100 ~ 199	6														100 ~ 199	6						
200 ~ 299	7														200 ~ 299	7						
300 ~ 499	8														300 ~ 499	8						
500 ~ 999	9														500 ~ 999	9						
1,000인이상	10														1,000 persons or more	10						
총합건설업	51														General	51						
건축건설업	511														Building	511						
토목건설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전문직별건설업	52														Special	52						
배관, 난방및관련공사업	521														Plumbing, Heating and Related Works	521						
도장도배및실내장식공사업	522														Painting, Paper Hanging and Decorating Works	522						
전기공사업	523														Electrical Works	523						
석공, 미장및방수공사업	524														Masonry, Stone Setting, Plastering Waterproofing Works	524						
목공사업	525														Carpentry and Flooring Works	525						
지붕및기왓함석공사업	526														Roofing and Sheet Metal Works	526						
철골, 철근장치공사업	527														Installation of Steel Frame, Steel Reinforcing and Building Equipment	527						
토공, 굴정, 해체공사업	528														Excavation, Water Well Drilling, Wrecking and Demolition Works	528						
기타전문직별공사업	529														Others	529						

58. 산업소분류종업원규모 및 월별피고용자수
Number of Monthly Employees by Size of Workers and Sub-division of Industry

(단위:명)

(Unit:Persons)

종업원규모별	월	분류 번호 Code No.	총 계 Total	1 월 January	2 월 February	3 월 March	4 월 April	5 월 May	6 월 June	7 월 July	8 월 August	9 월 September	10 월 October	11 월 November	12 월 December	Month	Code No.
건설업	5	5	10	10	10	10	10	10	10	12	12	12	12	12	12	Construction as a whole	5
5인미만	1	1														less than 5 persons	1
5 ~ 9	2	2														5 ~ 9	2
10 ~ 19	3	3														10 ~ 19	3
20 ~ 49	4	4														20 ~ 49	4
50 ~ 99	5	5														50 ~ 99	5
100 ~ 199	6	6														100 ~ 199	6
200 ~ 299	7	7														200 ~ 299	7
300 ~ 499	8	8														300 ~ 499	8
500 ~ 999	9	9														500 ~ 999	9
1,000인이상	10	10														1,000 persons or more	10
종합건설업	51	51														General	51
건축건설업	511	511														Building	511
토목건설업	512	512														Civil Engineering	512
전문직별건설업	52	52														Special	52
배관, 난방및관련공사업	521	521														Plumbing, Heating and Related Works	521
도장도배및실내장식공사업	522	522														Painting, Paper Hanging and Decorating Works	522
전기공사업	523	523														Electrical Works	523
석공, 미장및방수공사업	524	524														Masonry, Stone Setting, Plastering Waterproofing Works	524
목공사업	525	525														Carpentry and Flooring Works	525
지붕및기및합석공사업	526	526														Roofing and Sheet Metal Works	526
철골, 철근장치공사업	527	527														Installation of Steel Frame, Steel Reinforcing and Building Equipment	527
토공, 굴정, 해체공사업	528	528														Excavation, Water Well Drilling, Wrecking and Demolition Works	528
기타전문직별공사업	529	529														Others	529

59. 산업소분류공사액규모및월별피고용자수

(단위:명)

Number of Monthly Employees by Construction Value and Sub-division of Industry

(Unit: Persons)

기성액규모별 원별	분류 번호 Code No.	총 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Month Construction Value	Code No.
		Total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건설업	5	10	10	10	10	10	10	10	12	12	12	12	12	12	Construction as a whole	5
500만원미만	1														less than 5 million won	1
500 ~ 999	2														500 ~ 999	2
1,000 ~ 4,999	3														1,000 ~ 4,999	3
5,000 ~ 9,999	4														5,000 ~ 9,999	4
10,000 ~ 49,999	5														10,000 ~ 49,999	5
50,000 ~ 99,999	6														50,000 ~ 99,999	6
100,000 ~ 499,999	7														100,000 ~ 499,999	7
500,000 ~ 999,999	8														500,000 ~ 999,999	8
1,000,000만원이상	9														100 billion won or more	9
종합건설업	51														General	51
건축건설업	511														Building	511
토목건설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전문직별건설업	52														Special	52
배관, 난방및관련공사업	521														Plumbing, Heating and Related Works	521
도장도배및실내장식공사업	522														Painting, Paper Hanging and Decorating Works	522
전기공사업	523														Electrical Works	523
석공, 미장및방수공사업	524														Masonry, Stone Setting, Plastering Waterproofing Works	524
목공사업	525														Carpentry and Flooring Works	525
지붕및기및합석공사업	526														Roofing and Sheet Metal Works	526
철골, 철근장치공사업	527														Installation of Steel Frame, Steel Reinforcing and Building Equipment	527
토공, 굴정, 해체공사업	528														Excavation, Water Well Drilling, Wrecking and Demolition Works	528
기타전문직별공사업	529														Others	529

60. 공 종 및 공사 지역 별 원도급공사시공액

Value of Construction Work in Original Contract by Kind of Construction and Region

(금액단위 : 백만원)

61. 공 종 및 공사 지역 별 하도급공사시공액

Value of Construction Work in Subcontract by Kind of Construction and Region

(Unit: million)

공종별	지역별	분류 번호 No.	총 계 Total	중동지역	아시아지역	유럽지역	아프리카 지역	오세아니아 지역	아메리카 지역	총 계 Total	중동지역	아시아지역	유럽지역	아프리카 지역	오세아니아 지역	아메리카 지역	Region	Kind Construction	Code No.	
				Middle East Region	Asia Region	Europe Region	Africa Region	Oceania Region	America Region		Middle East Region	Asia Region	Europe Region	Africa Region	Oceania Region	America Region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건물 단·주택·상업·공공 아파트·사무실·호텔·학교·병원·문화·체육·산업·제조·발전·수송·항공·기타		1~4															Total Building Detached & Tenement House Apartment Residential Shop Office & Commercial Building Hotel & Lodgings Bank Theater Public Building Educational Facilities Hospital Historic Relics Church & Temple Warehouse & Garage Factory Hazardous Property storage Sanitation & Air conditioning Mechanical & Engineering Services Others	1~4		
		1	101															1		
		102																101		
		103																102		
		104																103		
		105																104		
		106																105		
		107																106		
		108																107		
		109																108		
		110																109		
		111																110		
		112																111		
		113																112		
		114																113		
		115																114		
		116																115		
		117																116		
118															117					
토목 도로·교량·터널·철도·항공·수리·보수·건설·기타		2															Civil Engineering Road, Bridge & Tunnel Pavement Railroad & Subway Dam Erosion control & River Works Agriculture Fishery & Irrigation Farmland Development Works Power Plant Facilities Harbor Airport Water supply & Sewerages Athletic & Park Facilities Housing Lots Reclamation Others Iron & steel Installation Dredging Landscaping	2		
		201																201		
		202																202		
		203																203		
		204																204		
		205																205		
		206																206		
		207																207		
		208																208		
		209																209		
		210																210		
		211																211		
		212																212		
213															213					
214															214					
215															215					
216															216					
217															217					
전문 목공·석공·장방·건축·수공·기계·전기·통신·기타		3															Special Carpentry & Joinery Earth works Plastering & Waterproofing Stone & Masonry Painting Brick Laying Scaffolding Doors & Windows Roof & sheet Metal Reinforced Concrete Metal Works Utility Service Water Supply & Sewerages Boring & Grouting Railroad & Railtrack Pavement Maintaining & Repairing Underwater Works Landscaping & Plating Landscaping Facilities Installing	3		
		301																301		
		302																302		
		303																303		
		304																304		
		305																305		
		306																306		
		307																307		
		308																308		
		309																309		
		310																310		
		311																311		
		312																312		
313															313					
314															314					
315															315					
316															316					
317															317					
318															318					
319															319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		4															Electricity & Electrical Communication Works 1st Grade Electrical Works 2nd Grade Electrical Works Electrical Communication Works	4		
		401														401				
		402														402				
403															403					

62. 공 종 및 공 사 지 역 별 수 주 액
Value of Order Received by Kind of Construction and Region
(금액단위 : 백만원)

63. 공 종 및 공 사 지 역 별 미 기 성 액
Value of Carry-over Work by Kind of Construction and Region
(Unit: million)

공종별	지역별	분류 번호 No.	총 계 Total	중 동 지 역 Middle East Region	아 시 아 지 역 Asia Region	유 럽 지 역 Europe Region	아 프 리 카 지 역 Africa Region	오 세 아 니 아 지 역 Oceania Region	아 메 리 카 지 역 America Region	총 계 Total	중 동 지 역 Middle East Region	아 시 아 지 역 Asia Region	유 럽 지 역 Europe Region	아 프 리 카 지 역 Africa Region	오 세 아 니 아 지 역 Oceania Region	아 메 리 카 지 역 America Region	Region	Kind Construction	Code No.
총 건 단 위 아 주 사 호 수 국 관 학 보 문 교 과 장 위 기	계 사 1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4															Total Building Detached & Tenement House Apartment Residential Shop Office & Commercial Building Hotel & Lodgings Bank Theater Public Building Educational Facilities Hospital Historic Relics Church & Temple Warehouse & Garage Factory Hazardous Property storage Sanitation & Air conditioning Mechanical & Engineering Services Others	1~4 1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토 도 포 철 지 산 진 공 사 기 타 장 조	2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															Civil Engineering Road, Bridge & Tunnel Pavement Railroad & Subway Dam Erosion control & River Works Agriculture Fishery & Irrigation Farmland Development Works Power Plant Facilities Harbor Airport Water supply & Sewerages Athletic & Park Facilities Housing Lots Reclamation Others Iron & steel Installation Dredging Landscaping	2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전 목 포 도 조 배 장 지 철 설 보 도 포 수 조	3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															Special Carpentry & Joinery Earth works Plastering & Waterproofing Stone & Masonry Painting Brick Laying Scaffolding Doors & Windows Roof & sheet Metal Reinforced Concrete Metal Works Utility Service Water Supply & Sewerages Boring & Grouting Railroad & Railtrack Pavement Maintaining & Repairing Underwater Works Landscaping & Plating Landscaping Facilities Installing	3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전 기 및 전 기 통신 공 사	4 401 402 403	4															Electricity & Electrical Commu- cation Works 1st Grade Electrical Works 2nd Grade Electrical Works Electrical Communication Works	4	
		401																	
		402																	

64. 산업소분류종업원규모별공사비용
 Cost of Construction by Size of Workers and Sub-division of Industry

(금액단위: 백만원)

(Unit: million)

공사비별 종업원규모별	분류번호 Code No.	총계 Total	원재료비	보조	임금	복리	감가	임차료		조세공과	수선비	전력용수	잡비	의주	원재료비	납부	Cost of Construction	Size of Workers	Code No.
			자급 Raw Material Costs Self- Provided	재료비 Ancillary Material Costs	및 Wages and Salaries	후생비 Cost for Welfare Work	상가비 Depreci- ation	장비·건물 Equipment Building	토지 Land	Tax and Public Dues	Cost of repairs and Maintenance	연료 Electric Power, Water, Fuel and, Light	Miscellane- ous Expenses	공사액 Payments to Subcontractors	발주자급 Raw Mater- ial Costs Provided by Orderer	부가가치세 V. A. T			
건설업	5	9	9	9	9	9	9	9	9	10	10	10	10	10	10	10	Construction as a whole	5	5
5인미만	1																less than 5 persons		1
5~9	2																5~9		2
10~19	3																10~19		3
20~49	4																20~49		4
50~99	5																50~99		5
100~199	6																100~199		6
200~299	7																200~299		7
300~499	8																300~499		8
500~999	9																500~999		9
1,000인이상	10																1,000 persons or more		10
종합건설업	51																General		51
건축건설업	511																Building		511
토목건설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전문직별건설업	52																Special		52
배관, 난방및관련공사업	521																Plumbing, Heating and Related Works		521
도장도배및실내장식공사업	522																Painting, Paper Hanging and Decorating Works		522
전기공사업	523																Electrical Works		523
석공, 미장및방수공사업	524																Masonry, Stone Setting, Plastering Waterproofing Works		524
목공사업	525																Carpentry and Flooring Works		525
지붕잇기및합석공사업	526																Roofing and Sheet Metal Works		526
철골, 철근장치공사업	527																Installation of Steel Frame, Steel Reinforcing and Building Equipment		527
토공, 굴정, 해체공사업	528																Excavation, Water Well Drilling, Wrecking and Demolition Works		528
기타전문직별공사업	529																Others		529

65. 산업소분류종업원규모별및조직형태자본금규모별부가가치
Value Added by Type of Organization, Size of Capital Stock and Sub-division of Industry

(금액단위: 백만원)

(Unit: million)

산업소분류별	조직형태 및 자본금규모별 분류법인 Code No.	총계 Total	회사법인 Company Corporation						회사이외법인 Other Corporation						개인 Individual	Organization, Size of Capital Stock Sub-division of Industry	Code No.
			계 Total	1,000만원 미만 Less than 1,000 ten thousand won	1,000 ~ 4,999	5,000 ~ 9,999	10,000 ~ 49,999	50,000 ~ 99,999	100,000만원이상 10 billion won or more	계 Total	5,000만원 미만 Less than 5,000 ten thousand won	5,000 ~ 9,999	10,000 ~ 49,999	50,000 ~ 99,999			
건설업	5	9	9	9	9	9	9	9	10	10	10	10	10	10	10	Construction as a whole	5
5인미만	1															less than 5 persons	1
5 ~ 9	2															5 ~ 9	2
10 ~ 19	3															10 ~ 19	3
20 ~ 49	4															20 ~ 49	4
50 ~ 99	5															50 ~ 99	5
100 ~ 199	6															100 ~ 199	6
200 ~ 299	7															200 ~ 299	7
300 ~ 499	8															300 ~ 499	8
500 ~ 999	9															500 ~ 999	9
1,000인이상	10															1,000 persons or more	10
총합 건설업	51															General	51
건축건설업	511															Building	511
토목건설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전문직별 건설업	52															Special	52
배관, 난방및관련공사업	521															Plumbing, Heating and Related Works	521
도장도배및실내장식공사업	522															Painting, Paper Hanging and Decorating Works	522
전기공사업	523															Electrical Works	523
석공, 미장및방수공사업	524															Masonry, Stone Setting, Plastering Waterproofing Works	524
목공사업	525															Carpentry and Flooring Works	525
지붕및기합석공사업	526															Roofing and Sheet Metal Works	526
철골, 철근장치공사업	527															Installation of Steel Frame, Steel Reinforcing and Building Equipment	527
토공, 굴정, 해체공사업	528															Excavation, Water Well Drilling, Wrecking and Demolition Works	528
기타전문직별공사업	529															Others	529

66. 산업소분류 및 종업원 규모 별 재고 자산
Value of Inventories by Size of Workers and Sub-division of Industry

(금액단위 : 백만원)

(Unit: million)

재고자산별 종업원 규모별	분류 번호 Code No.	연초재고액 (1) Initial Stocks of the Year				연말재고액 (2) Year-end Stocks				Value of Inventories Size of Workers	Code No.
		계 Total	원재료 Raw Materials	연료 Fuels	저장품 Supplies	계 Total	원재료 Raw Material	연료 Fuels	저장품 Supplies		
건설업	5								Construction as a whole	5	
5인미만	1								less than 5 persons	1	
5 ~ 9	2								5 ~ 9	2	
10 ~ 19	3								10 ~ 19	3	
20 ~ 49	4								20 ~ 49	4	
50 ~ 99	5								50 ~ 99	5	
100 ~ 199	6								100 ~ 199	6	
200 ~ 299	7								200 ~ 299	7	
300 ~ 499	8								300 ~ 499	8	
500 ~ 999	9								500 ~ 999	9	
1,000인이상	10								1,000 persons or more	10	
총합 건설업	51								General	51	
건축건설업	511								Building	511	
토목건설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전문직별 건설업	52								Special	52	
배관, 난방 및 관련공사업	521								Plumbing, Heating and Related Works	521	
도장도배 및 실내장식공사업	522								Painting, Paper Hanging and Decorating Works	522	
전기공사업	523								Electrical Works	523	
석공, 미장 및 방수공사업	524								Masonry, Stone Setting, Plastering Waterproofing Works	524	
목공사업	525								Carpentry and Flooring Works	525	
지붕 잇기 및 합석공사업	526								Roofing and Sheet Metal Works	526	
철골, 철근장치공사업	527								Installation of Steel Frame, Steel Reinforcing and Building Equipment	527	
토공, 굴정, 해체공사업	528								Excavation, Water Well Drilling, Wrecking and Demolition Works	528	
기타 전문직별공사업	529								Others	529	

67. 산업소분류종업원규모및종류별유형고정자산
Tangible Fixed Assets by Size of Workers and Kind of Assets and Sub-division of Industry

(금액단위: 백만원)

(Unit: million)

유형고정자산별 종업원규모별	분류번호 Code No.	연간취득증개축액 Annual Acquisition of Assets							연간처분손해액및				Tangible Fixed Assets Size of Workers	Code No.
		계 Total	토지 Land	건물 Building	건축물 Structures	중기 Machinery	차량선박 운반구 Vehicles Ships & Con- veying Equipment	공구기구 비품 Tools, Furniture Fixtures	건설 가계정 Construc- tion in Process	계 Total	토지 Land	건물 Building		
건설업	5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Construction as a whole	5
5인미만	1												less than 5 persons	1
5 ~ 9	2												5 ~ 9	2
10 ~ 19	3												10 ~ 19	3
20 ~ 49	4												20 ~ 49	4
50 ~ 99	5												50 ~ 99	5
100 ~ 199	6												100 ~ 199	6
200 ~ 299	7												200 ~ 299	7
300 ~ 499	8												300 ~ 499	8
500 ~ 999	9												500 ~ 999	9
1,000인이상	10												1,000 persons or more	10
종합건설업	51												General	51
건축건설업	511												Building	511
토목건설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전부직별건설업	52												Special	52
배관, 난방및관련공사업	521												Plumbing, Heating and Related Works	521
도장도배및실내장식공사업	522												Painting, Paper Hanging and Decorating Works	522
전기공사업	523												Electrical Works	523
석공, 미장및방수공사업	524												Masonry, Stone Setting, Plastering Waterproofing Works	524
목공사업	525												Carpentry and Flooring Works	525
지붕잇기및합석공사업	526												Roofing and Sheet Metal Works	526
철골, 철근장치공사업	527												Installation of Steel Frame, Steel Reinforcing and Building Equipment	527
토공, 굴정, 해체공사업	528												Excavation, Water Well Drilling, Wrecking and Demolition Works	528
기타전부직별공사업	529												Others	529

67. 산업소분류종업원규모 및 종류별 유형 고정자산 (계속)
Tangible Fixed Assets by Size of Workers and Kind of Assets and Sub-division of Industry (Cont'd)

(금액단위: 백만원)

(Unit: million)

유형고정자산별 종업원규모별	분류 번호 Code No.	감가상가액 Annual Disposals and Depreciation				연 말 총 액 Year-end Stocks								Tangible Fixed Assets Size of Workers	Code No.
		중 기 Machinery	차량선박 운 반 구 Vehicles Ships & Con- veying Equipment	공구기구 비 품 Tools Furniture Fixtures	건 설 가 계 정 Construc- tion in Process	계 Total	토 지 Land	건 물 Building	구 축 물 Structures	중 기 Machinery	차량선박 운 반 구 Vehicles Ships & Con- veying Equipment	공구기구 비 품 Tools Furniture Fixtures	건 설 가 계 정 Construc- tion in Process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건 설 업	5													Construction as a whole	5
5인미만	1													less than 5 persons	1
5 ~ 9	2													5 ~ 9	2
10 ~ 19	3													10 ~ 19	3
20 ~ 49	4													20 ~ 49	4
50 ~ 99	5													50 ~ 99	5
100 ~ 199	6													100 ~ 199	6
200 ~ 299	7													200 ~ 299	7
300 ~ 499	8													300 ~ 499	8
500 ~ 999	9													500 ~ 999	9
1,000인이상	10													1,000 persons or more	10
총 합 건 설 업	51													General	51
건 축 건 설 업	511													Building	511
토 목 건 설 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전 부 직 별 건 설 업	52													Special	52
배관, 난방 및 관련공사업	521													Plumbing, Heating and Related Works	521
도장도배 및 실내장식공사업	522													Painting, Paper Hanging and Decorating Works	522
전 기 공 사 업	523													Electrical Works	523
석공, 미장 및 방수공사업	524													Masonry, Stone Setting, Plastering Waterproofing Works	524
목 공 사 업	525													Carpentry and Flooring Works	525
지붕 잇기 및 합석공사업	526													Roofing and Sheet Metal Works	526
철골, 철근장치공사업	527													Installation of Steel Frame, Steel Reinforcing and Building Equipment	527
토공, 굴정, 해체공사업	528													Excavation, Water Well Drilling, Wrecking and Demolition Works	528
기 타 전 문 직 별 공 사 업	529													Others	529

68. 산업소분류종업원규모및주요기계보유대수

(단위:대)

Number of major Equipments by Size of Workers and Kind of Assets and Sub-division of Industry

(Unit:Numbers)

기계종류별 종업원규모별	분류 번호 Code No.	총계 Total	불도저 Bulldozer		굴착기 Excavator		로우더 Loader		기 계 차 Forklift	스 레 이 크 퍼 Scraper	덤프트럭 (12이상) Dump Truck 12ton or more	기 중 기 Crane		모 크 레 이 터 더 Motor Crawler	로 울 러 Roller	노 안 전 상 기 Road Stabilizer	콘 크 리 트 콘 크 리트 플랜트 Concrete Batcher Plant	콘 크 리 트 콘 크 리트 시 트 Concrete Finisher	Number of major Equipments	Size of Workers	Code No.		
			20t이상 20 ton or more	20t미만 less than 20 ton	1㎡이상 1㎡ or more	1㎡미만 less than 1㎡	타이어식 Tire	무 한 궤도식 Crawler				타이어식 Tire	무 한 궤도식 Crawler										
			9	9	9	9	9	9				9	9										
건설업	5																						
5인미만	1																					Construction as a whole less than 5 persons	5
5 ~ 9	2																					5 ~ 9	1
10 ~ 19	3																					10 ~ 19	2
20 ~ 49	4																					20 ~ 49	3
50 ~ 99	5																					50 ~ 99	4
100 ~ 199	6																					100 ~ 199	5
200 ~ 299	7																					200 ~ 299	6
300 ~ 499	8																					300 ~ 499	7
500 ~ 999	9																					500 ~ 999	8
1,000인이상	10																					1,000 persons or more	9
총합 건설업	51																					General	51
건축건설업	511																					Building	511
토목건설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전부특별건설업	52																					Special	52
배관, 난방및관련공사업	521																					Plumbing, Heating and Related Works	521
도장도배및실내장식공사업	522																					Painting, Paper Hanging and Decorating Works	522
전기공사업	523																					Electrical Works	523
석공, 미장및방수공사업	524																					Masonry, Stone Setting, Plastering Waterproofing Works	524
목공사업	525																					Carpentry and Flooring Works	525
지붕및기및합석공사업	526																					Roofing and Sheet Metal Works	526
철골, 철근장치공사업	527																					Installation of Steel Frame, Steel Reinforcing and Building Equipment	527
토공, 굴정, 해체공사업	528																					Excavation, Water Well Drilling, Wrecking and Demolition Works	528
기타전문특별공사업	529																					Others	529

68. 산업소분류종업원규모및주요기계보유대수(계속)

(단위:대)

Number of major Equipments by Size of Workers and Kind of Assets and Sub-division of Industry (Cont'd)

(Unit:Numbers)

기계종류별 중업원규모별	분류 번호 Code No.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골재	쇄석기	공기	천공기	항타및	사리	준설선	비등록장비			Number of major Equipments	Code No.
		살포기 Concrete Distributor	믹서트럭 Concrete Mixer Truck	펌프 Concrete Pump	리싱프렌트 Asphalt Mixing Plant	휘니셔 Asphalt Finisher	살포기 Asphalt Distributor	살포기 Aggregate Sprader	쇄석기 Crusher	압축기 Compressor	기 Rock Dric	항발기 Pile Driver and Extractor	채취선 Gravel Plant	선 Dredger	타워 크레인 Tower Crane	12t 미만 덤프트럭 Less than 12 ton Dump Truck	기타 Other		
건설업 5인미만 5~9 10~19 20~49 50~99 100~199 200~299 300~499 500~999 1,000인이상	5																	Construction as a whole	5
	1																	less than 5 persons	1
	2																	5 ~ 9	2
	3																	10 ~ 19	3
	4																	20 ~ 49	4
	5																	50 ~ 99	5
	6																	100 ~ 199	6
	7																	200 ~ 299	7
	8																	300 ~ 499	8
	9																	500 ~ 999	9
10																	1,000 persons or more	10	
종합건설업	51																General	51	
건축건설업	511																Building	511	
토목건설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전국지별건설업	52																Special	52	
배관, 난방및관련공사업	521																Plumbing, Heating and Related Works	521	
도장도배및실내장식공사업	522																Painting, Paper Hanging and Decorating Works	522	
전기공사업	523																Electrical Works	523	
석공, 미장및방수공사업	524																Masonry, Stone Setting, Plastering Waterproofing Works	524	
목공사업	525																Carpentry and Flooring Works	525	
지붕및기합석공사업	526																Roofing and Sheet Metal Works	526	
철골, 철근장치공사업	527																Installation of Steel Frame, Steel Reinforcing and Building Equipment	527	
토공, 굴정, 해체공사업	528																Excavation, Water Well Drilling, Wrecking and Demolition Works	528	
기타전문지별공사업	529																Others	529	

69. 산업소분류 및 종업원 규모 별 사업체 당 종업원 1인당 기성액 및 부가가치

(금액단위 : 천원)

Total Construction Value and Value Adder per Worker and Per Establishment, by Size of Workers and Sub-division of Industry

(Unit: thousand)

종업원 규모 별	분류번호 Code No.	사업체 수 Number of Establishments	종업원 수 Number of Employees	사업체 당 Per Establishments			종업원 1인당 Average Per Engaged				Size of Workers	Code No.	
				기성액 Value of Construction			부가가치 Value Added	기성액 Value of Construction					부가가치 Value Added
				계 Total	원도급공사액 Original Contract	하도급공사액 Sub-Contract		계 Total	원도급공사액 Original Contract	하도급공사액 Sub-Contract			
		14	14	14	14	14	14	14	14				
건설업	5											Construction as a whole	5
5인미만	1											less than 5 persons	1
5 ~ 9	2											5 ~ 9	2
10 ~ 19	3											10 ~ 19	3
20 ~ 49	4											20 ~ 49	4
50 ~ 99	5											50 ~ 99	5
100 ~ 199	6											100 ~ 199	6
200 ~ 299	7											200 ~ 299	7
300 ~ 499	8											300 ~ 499	8
500 ~ 999	9											500 ~ 999	9
1,000인이상	10											1,000 persons or more	10
총합 건설업	51											General	51
건축건설업	511											Building	511
토목건설업	512											Civil Engineering	512
전문직별 건설업	52											Special	52
배관, 난방 및 관전공사업	521											Plumbing, Heating and Related Works	521
도장도배 및 실내장식공사업	522											Painting, Paper Hanging and Decorating Works	522
전기공사업	523											Electrical Works	523
석공, 미장 및 방수공사업	524											Masonry, Stone Setting, Plastering Waterproofing Works	524
목공사업	525											Carpentry and Flooring Works	525
지붕 및 기 및 합석공사업	526											Roofing and Sheet Metal Works	526
철골, 철근장치공사업	527											Installation of Steel Frame, Steel Reinforcing and Building Equipment	527
토공, 굴정, 해체공사업	528											Excavation, Water Well Drilling, Wrecking and Demolition Works	528
기타 전문직별공사업	529											Others	529

1989년 광공업통계조사

조 사 요 령 서

1990. 4.

경 제 기 획 원

차 례

I. 조사개요	3
1. 조사목적	3
2. 조사의 법적근거	3
3. 조사연혁	3
4. 조사체계	3
5. 조사기간	3
6. 조사범위 및 대상	4
7. 조사단위	7
8. 조사표의 종류	8
9. 조사사항	8
10. 조사방법	9
11. 조사표 내검, 질의조회 및 조사표 제출	9
12. 조사결과 공표	9
II. 조사요원의 임무	10
1. 조사업무의 실시순서	10
2. 조사원의 임무	10
3. 지도원의 임무	14
III. 조사표 작성요령	16
1. 일반적 유의사항	16
2. 항목별 작성요령	19
가. 조사표〔 I 〕의 작성요령	19
나. 조사표〔 II 〕의 작성요령	48
IV. 조사표 심사 및 정리요령	51
1. 일반적인 사항	51
2. 연관항목별 심사요령	51

가. 조사표〔Ⅰ〕	51
나. 조사표〔Ⅱ〕	53
V. 관련자료 작성요령	54
1. 요계표 작성	54
2. 조사용 사업체명부 정리 및 보완	57
3. 추가 및 전출사업체명부 작성	60
4. 조사표 접수대장 작성	60
Ⅵ. 조사요령 요약(Ⅰ표 기준)	62
부록 1. 사업체 결산서 항목과 조사항목 비교표	64
부록 2. 조사표〔Ⅰ〕의 심사요령도	67

I.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광공업부문의 고용, 급여, 출하, 재고, 생산비 및 유형고정자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동 부문의 구조변동과 생산활동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결과 주요 용도>

- 관련 경제정책 수립 및 시책효과 측정용 기초자료
- 관련 민간기업의 기업경영계획 수립 및 평가용 기초자료
- 광공업부문 각종 통계의 기준 및 모집단 자료
- 광공업부문 및 관련 주요 경제지표의 편제 또는 개편용 기초자료
(GNP, 생산·출하·재고·가동률지수, 도매물가지수, 산업연관표 등)
- 전광공산품의 품목별 분석(생산·출하·재고 등)을 위한 유일한 기초자료

2. 조사의 법적근거

통계법 제 2 조 2, 4 항과 제 3 조 및 동시행령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승인번호 111-11-10 호)로 지정된 법정 기본통계

3. 조사연혁

1967년 기준의 제 1 회 조사 실시이후 매년 실시하여 금년이 제 18 차 조사

4. 조사체계 (지방행정기관 체계)

경제기획원 → 시·도 → 구·시·군 → 동·읍·면 (조사원) → 사업체
↓
지방통계사무소

5. 조사기간

- 가. 조사기준일 : 1989.12.31 현재
- 나. 조사대상기간 : 1989. 1. 1 ~ 12.31 (1 개년간)
- 다. 조사실시기간 : 1990. 4. 1 ~ 4.30 (1 개월간)

6. 조사범위 및 대상

가. 한국 표준산업분류중 “대분류 2, 3”인 「광업 및 제조업」사업체로서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하여

- 1) 1989.12.31 현재 종업원 5인이상 이거나
- 2) 1989년 조업한 기간중의 월평균 종업원이 5인이상인 사업체

나. 광업과 제조업의 정의

1) 광업

광업이란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불문하고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 채취, 추출하는 활동을 말하며 여기에는 간단한 손질 및 품질개선의 활동을 포함한다.

2) 제조업

제조업이란 무기 또는 유기물질에 기계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하거나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 광공업과 타산업과의 관계

1) 겸업사업체

가) 겸업사업체는 광공업 활동실적만 분리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분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사대상기간 중 연간 총수입(생산액 또는 출하액)이 많았던 산업을 주산업으로 본다.

예 : 연간 총수입이 광공업 > 타산업.....조사대상

“ 광공업 < 타산업.....제 외

나) 상기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분명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해당활동의 종업원수 또는 설비의 정도에 의해 산업을 결정한다.

2) 농림, 수산업과의 관계

- 가) 농가, 어가에서 주로 자가 채취 또는 재배한 원료를 사용하여 가공 또는 제조하는 경우, 그 제조활동만을 별개 사업체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 나) 어선내에서 행하는 어류 및 해산물을 식품으로 가공 또는 제조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 다) 벌목업(伐木業)과 단순한 목재 절단업은 임업으로 분류되며 조사대상이 아니다.

3) 건설업과의 관계

- 가) 제조된 부분품을 조립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보나 부분품을 토지에 정착하여 조립 설치하는 활동은 건설업으로 분류되며 본 조사에서는 제외된다.(교량, 물탱크, 보관 및 창고시설,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트, 알미늄 샷시, 창틀설치 등)
- 나)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광상의 탐사, 개발 및 준비작업과 시굴작업은 건설업이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4) 도·소매업과의 관계

- 가) 빵제품 등을 제조하여 대리점 또는 기타 도·소매업자 등에 직접 판매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분류하나, 점객시설을 갖추어 놓고 주로 구내에서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체는 음식업이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나) 소규모 의류제품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의 경우 개인의 주문에 의한 제조를 주로 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분류되나, 타사업체로부터의 구입(기성품) 판매분이 자가제조 부문보다 클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 다) 농림, 수산물의 출하를 위하여 선별, 포장만을 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 라) 스스로는 제조활동을 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하청업자에게 지

급하여 제조하도록 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시판하는 경우 제조업에 포함하지 않는다.(하청받아 생산한 업체가 제조업체)

마) 알미늄 샷시바를 타사로부터 구입하여 창틀을 직접 조립 또는 가공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조사하나, 구입상품을 단순절단 또는 원형 그대로 판매하는 비중이 조립판매분보다 클 때는 소매업으로 분류되며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특히 건재상 등)

5) 개인 및 가사 서비스업과의 관계

가) 주로 가정 용구(난로, 냉장고, 세탁기 등)의 설비, 가구장치, 자동차, 자전거 및 기타 소비자 상품을 수선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그러나 선박수리, 산업용 보일러수리, 방적기수리, 산업용 장비 등 산업용 기계장치의 수선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조사대상이다)

나) 의류와 직물 등을 표백, 염색하는 업체는 직접 직조하여 염색하든, 임가공료만 받고 염색하든 관계없이 조사대상이 되나 개개의 가정 소비자로 부터 위탁받아 표백, 염색, 정리하는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6) 인쇄 출판업과의 관계

가) 학교, 각종협회, 종교단체 등의 산하소관부서에서 발간하여 단체구성원들에게 배부하는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신문사나 출판사는 인쇄시설의 유무와 관계없이 제조업으로 본다.

라.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체

- ① 콩나물 공장
- ② 표백 및 염색활동을 겸한 세탁소(개개인 상대)
- ③ 제과, 제빵점 중接客시설을 갖추고 주로 구내 판매할 경우
- ④ 양품점(의류), 양장, 양복, 양화점 중 구입판매분이 자체 제조판매분보다 클 경우
- ⑤ 서류복사업(용역업)
- ⑥ 알미늄 샷시바 판매점(건재상 등에서의 단순절단판매 등)
- ⑦ 자동차, 자전거 수리점
- ⑧ 의복류 위탁제조판매업체

- ⑨ 사진현상 및 인화(서비스업)
- ⑩ 공공직업보도소 및 교도소의 작업소
- ⑪ 공공단체, 학교의 실습장, 연구소, 시험소
- ⑫ 종교단체, 학교, 각종협회에서의 인쇄·출판 활동부서(비매품)

마. 조사대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업체

- ① 채석 및 모래, 자갈 채취업
- ②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 ③ 수탁사업체 : 다른 사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제조하여 준 대가로 가공임(수주가공임)을 받는 사업체
- ④ 도정업 : 도정업체는 임가공료만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산물(사료)수입은 제품으로 조사한다.
- ⑤ 도살업 : 도살업은 어떠한 업체를 불문하고 임가공료만 조사하며 부산물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 역시 임가공료에 포함 조사한다.
- ⑥ 방위산업 사업체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체외에는 모두 조사한다.(군으로부터의 수탁여부 불문)
- ⑦ 연초제조창과 담배원료공장

7. 조사단위

조사단위는 사업체이다.

가. 사업체의 정의

사업체라 함은 개개의 공장, 작업장, 광산, 사업소, 상점 등과 같이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소유권 또는 단일 통제하에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제단위를 말한다.

사업체는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인접한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경제활동을 영위하게되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급한다.

< 동일 장소(구역)에 있더라도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하는 경우 >

단일 경영체에 속하는 몇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출근부와 임금대장 및 재산목록 등 경영장부를 각 공장별로 구분하여 가지고 있

으면 별개의 사업체로 본다.

나. 보조단위의 처리

단일 사업체의 보조단위 즉 창고, 차고, 수선소, 연구개발 및 실험실, 발전부서 등과 같은 것은 그 사업체의 내부부서로 간주해서 포함조사하고, 본사와 같은 총괄적인 행정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중앙보조단위는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하고 보조하고 있는 주된 사업체의 산업과 동일하게 분류한다.

8. 조사표의 종류

가. 사업체용 조사표 [I] : 공장, 광산 등의 사업체에 적용

나. 본사용 조사표 [II] : 사업체의 본사(또는 본점)를 대상으로 하여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 1) 본사가 산하 사업체와 별도로 독립된 장소에 있는 경우
- 2) 2개 이상의 산하사업체(공장)를 가지고 있는 다공장기업의 본사가 그 중 어느 한 공장과 같은 장소에 있는 경우

9. 조사사항

가. 조사표 [I] : 21개 항목

- ①공장명 및 소재지 ②본사소재지 ③소속모기업명 ④창설년월 ⑤결산기 ⑥경영조직 ⑦자본금 ⑧부지 및 건물 ⑨주요 사용원재료명 ⑩주요생산공정 ⑪종업원수 ⑫연간급여액 ⑬연간출하액 및 기타수입액 ⑭연간주요생산비 ⑮내국소비세액 ⑯재고액 ⑰연간제품 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⑱수탁제조 수입액의 품목별 내역 ⑲건설가계정 ⑳유형고정자산 ㉑동일기업내 타공장명 및 소재지

나. 조사표 [II] : 15개 항목

- ①본사명 및 소재지 ②창설년월 ③결산기 ④소속모기업명 ⑤경영조직 ⑥자본금 ⑦건설가계정 ⑧상품매출액 및 임대수입액 ⑨재고액 ⑩종업원수 ⑪연간급여액 ⑫기술연구개발비 ⑬유형고정자산 ⑭동일그룹내 계열기업명 및 소재지 ⑮동일기업내 관할 사업체명 및 사업내용

10. 조사방법

조사담당자가 관할구역내의 사업체를 방문하여

가. 조사대상여부를 확인한다.

1) 광공업 사업체인가?

2) 조사기준일 ('89.12.31) 현재 또는 월평균 종업원이 5인이상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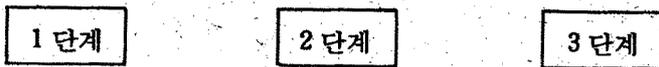
※ 사업체 명부는 조사의 편의를 위한 보조자료로서 사업체 명부상에 등재된 사업체라 하더라도 위 1), 2)항 어느 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업체 명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조사하지 않는 반면, 사업체 명부에는 누락되었지만 실존하는 사업체는 조사하여야 한다.

나. 사업체의 조사표 작성 능력 여부에 따라서 자계식 조사(사업체에서 작성)와 타계식조사(조사원이 작성)를 병행한다.

단, 자계식에 의하여 조사표를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 항목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비된 사항을 완전히 보완한 후에 조사표를 회수한다.

11. 조사표 내검, 질의조치 및 조사표 제출

조사가 완료되어 조사표가 접수되는 대로 단계별로 내검 및 질의조치를 한다.



동·읍·면 ——— 구·시·군 ——— 시·도(시·도 책임내검 완료 후 조사표 제출)

※ 질의조치는 조사표 접수단계별 역순으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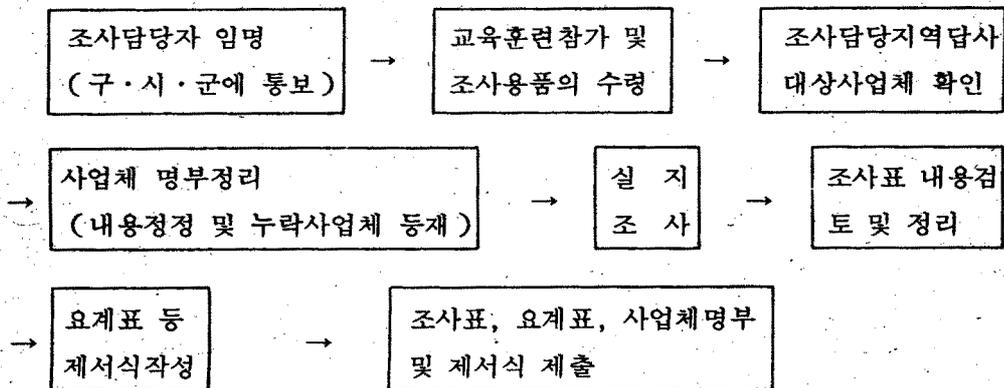
12. 조사결과 공표

시·도로부터 직접 중앙에 접수된 조사표는 전산처리과정을 거쳐 보고서로 발간, 공표한다.

II. 조사요원의 임무

조사담당자는 시·도, 구·시·군의 지휘 감독을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조사담당자는 교육훈련을 통해 얻은 조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실제로 실사에 반영하는 조사요원으로서 부여된 임무는 막중하며, 본 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사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조사업무의 실시순서



2. 조사요원의 임무

가. 조사준비

1) 교육훈련

조사원은 반드시 해당 구·시·군의 지정된 장소에서 조사요령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고 조사용품을 수령한다.

2) 조사용품수령

가) 조사용품

- ① 조사표〔Ⅰ〕,〔Ⅱ〕
- ② 조사협조 의뢰공문
- ③ 조사요령서
- ④ 각종 작성 서식 : 요계표, 조사표접수대장 (구·시·군 및 시·도용), 추가 및 전출 사업체명부

⑤ 산업 및 품목분류표 (사업체 배부용 포함)

⑥ 사업체 명부

나) 수령체계

경제기획원 → 시·도 → 구·시·군 → 동·읍·면 (조사원)

3) 조사대상 사업체 확인 및 명부의 정리

가) 조사원은 실사전에 담당지역내의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대상여부 (공업 또는 제조업체로서 종업원 5인 이상인가) 를 확인하여 사업체 명부를 보완한다.

나) 조사용 사업체명부는 단지 조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명부이므로 동 명부에 없는 사업체라도 '89년도의 실적이 있는 조사대상업체가 발견되면 명부에 등재한 후 조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90년도에 신규 창설한 신규사업체가 발견되면 사업체 명부에 등재하되 조사표는 작성하지 않는다.

다) 전출 (행정구역 착오 및 개편에 의한 경우도 포함) 사업체에 대하여는 해당 동·읍·면 및 구·시·군에 통보하여 조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조사협조 공문서 전달

가) 사업체 방문당일 조사원은 협조공문서 (수신처명을 정확하고 깨끗하게 명기후) 를 휴대, 해당사업체에 접수시킨다.

나. 조사표류 배부

조사용 사업체 명부 확인과 동시에 사업체에서 자계식 (사업체에서 직접 작성) 으로 조사표 작성이 가능한 사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조사표를 배부한다.

1) 공장, 광산 등의 사업체에는 조사표 [I], 산하공장과 별도의 장소에 있는 본사 (본점) 에는 조사표 [II], 본사와 공장이 함께 있는 사업체에는 조사표 [I] 과 [II] 를 각각 배부한다.

또한 제조업체의 본사에서 산하공장과는 별도로 위탁생산하여 판매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사표 [I] 과 [II] 를 동시에 배부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장에서는 조사표 작성이 불가능하여 타지역의 본사 또는 공장에서 작성되어야 할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부한다.

3) 조사표 기입은 반드시 조사표 이면의 「조사표 작성요령」 을 참조하여 작

성하도록 설명한다. 특히, 「17항의 품목분류」 작성시 참고하는 사업체 명부상의 전년도에 조사된 출하품목은 착오분류된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사업체 담당자와 확인하여 「산업 및 품목분류표」 기준에 따라 정확히 구분 기입하도록 한다.

4) 종업원 50인 이상의 사업체에는 사업체 명부에 수록되어 있는 해당 산업분류를 참고하여 그 사업체에 주요제품을 확인한 후 가장 비중이 큰 중분류의 산업 및 품목분류표를 조사표와 함께 배부하도록 하며, 또한 당해업체가 산업분류를 달리하여 생산되는 제품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있을 경우에는 조사표류 배부시에 해당 전제품을 확인한 후 분류번호를 결정하도록 한다.

5) 조사표 회수 가능일자 및 작성담당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 등을 확인한다.

다. 실지조사

자계식 조사가 가능한 사업체에 대한 조사표 배부가 끝나면 자계식 조사가 불가능한 사업체에 대하여는 사업체를 방문하여 결산장부를 확인, 면접조사(타계식) 한다.

라. 조사표 회수

자체적으로 조사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한 사업체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 조사표를 회수한다. 단, 회수시에는 반드시 결산장부에 의해 기재사항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다.

마. 조사표 작성상 문제점 해결

1) 유고사업체

사업체 방문시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체명부상의 우측여백에 그 사유를 기입한 후 조사표는 작성하지 않는다.

단, 현재 휴업한 사업체라도 '89년도 실적을 조사표에 기재할 수 있는 경우는 조사표를 작성한다.

2) 조사응답 거부 사업체

조사의 취지, 목적 및 법적근거를 잘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고 그래도 계

속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구·시·군 또는 순회지도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3) 방위산업 사업체

방위산업체에 대하여는 협조를 구하고, 방위산업 품목에 한하여 제품명을 「기타 품목」으로 처리한다. 특히 방위산업 사업체의 비밀이 조사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예”

35292200 [무기용 화약 (무연화약, 혼성추진약 등)] → 35299179 기타공업용 화학제품
38298100 [총포 (권총, 소총, 대포, 고사포), 총탄, 포탄, 폭발물 발사기, 장갑차 등 관련장비 및 부품] → 38299979 기타산업용 기계
38323900 (군수용 무선통신장비) → 38329179 기타전화 장치
38451100 (항공기) → 38490970 기타운송장비
38452100 (항공기부품) → 38490979 기타운송장비 부품

4) 결산서가 완비되지 않은 사업체

관계장부 또는 서류가 관계기관에 영치되어 있는 사업체는 참고가 될 각종 서류나 구술자료에 의거 작성하고, 그 사유를 적요란에 기입한다.

5) 다공장소유 기업의 본사가 어떤 한 공장과 함께 있는 경우 (조사표 [I] ; [II] 동시작성 사업체)

본사 조사표에는 1 ~ 6, 13 ~ 15 항목을 기입하고 나머지 항목은 함께 있는 공장 (조사표 [I]) 에 포함하여 기입한다.

6) 현지공장에서 조사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업체 (공장) 에서 조사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체가 본사 또는 조사표작성이 가능한 주된 사업체에 요구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회수한다.

7) 다공장 기업체에 있어서 공장별로 조사표 작성이 곤란한 경우

다공장 기업체의 경우 조사표는 각 사업체 (공장, 사업소) 별로 구분작성하여야 한다. 공장별로 구분작성할 수 없도록 결산장부가 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장별 유형고정자산 혹은 공장별 종업원수 등 해당업체의 타당성 있는 기준에 따라 각 공장의 비율을 산정한 후 그 비율에 따라 공

장별로 분할 작성한다.(p. 17 예시참고)

8) 결산마감월이 12월이 아닌 사업체

결산마감월이 12월이 아닌 사업체라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조사함이 원칙이나 이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직근 1년간의 결산자료에 의거 작성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적요란에 사유를 기입한다.

9) 덕대제 광업사업체 (조광권자)

덕대제 채택광산은 덕대단위로 조사한다. 따라서 광업권자는 직영광산분만을 조사하고 덕대가 직접 출하하였거나 광업권자에게 인도한 것은 모두 덕대 사업체의 출하로 조사한다.

바. 조사표 내검 및 관련자료 작성

- 1) 「 조사표 심사 및 정리요령 」 과 「 관련자료 작성요령 」 참조
- 2) 조사표는 [I], [II] 로 구분하여 간지를 첨부 합철한다.

사. 조사표류 제출

작성 정리된 조사표류를 수령 체계의 역순으로 제출한다.

3 . 지도원의 임무

가. 구·시·군 지도원

1) 사업체 명부의 조정배부

행정구역 개편지역 (분동, 분구, 통합지역) 은 구·시·군에서 사업체 명부를 사전에 분할 배부하되 사업체가 누락되지 않도록 전체사업체 및 동별 사업체수를 분명히 파악하여 조사후에 면밀히 점검한다.

2) 조사표류 배부 및 회수

적정량의 조사표를 동·읍·면 조사원에게 배부하고 조사가 완료된 후 관계자료와 함께 동·읍·면별로 접수하여 합철한다.

3) 조사요령 교육참석 및 조사원 훈련실시

시·도에서 실시하는 조사요령에 관한 교육을 받고 이에 따라 조사원을 직접 훈련시킨다.

4) 실사순회지도

실사기간 중 각 동·읍·면을 순회하여 조사의 오류를 시정하고 발생

된 문제점을 해결한다.

5) 조사표 내검

동·읍·면에서 작성, 제출하는 조사표를 내용검토하여 확인 및 보완한다.

6) 관련자료작성 및 제출

동·읍·면에서 작성된 요계표를 근거로 구·시·군 요계표를 작성하고, 조사표 접수대장을 작성하며, 조사표를 비롯하여 사업체명부 등 각 서식을 동·읍·면별로 편철하여 시·도에 제출한다.

나. 시·도 지도원

1) 조사표류 배부 및 회수

적정량의 조사표류를 산하 구·시·군에 배부하되 행정구역 개편지역(분구·통합등)은 사전에 사업체명부를 조정하여 배부하고 조사완료된 각종 자료를 구·시·군별로 접수, 분류하여 제출한다.

2) 훈련, 순회지도

구·시·군 지도원에 대한 교육실시, 조사원 훈련시의 관내 순회지도(적격 조사원의 훈련여부, 훈련과정의 충실 등을 확인)

3) 실사순회지도

실사기간 중 관내를 순회하여 조사의 오류를 시정하고 발생된 문제점을 해결한다.

4) 조사표 내검

구·시·군에서 작성 또는 제출한 조사표를 비롯하여 각종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검토하여 수정보완한다.

5) 질의조회 및 확인조사

구·시·군에서 제출한 조사표를 내검하여 미비점 또는 착오사항을 동·읍·면에 질의하거나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후 수정한다.

6) 시·도 관련자료 작성

요계표, 조사표 접수대장 등 시·도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각종 조사표류와 함께 제출한다.

Ⅲ. 조사표 작성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 가. 본 조사표는 '89.1.1 ~ 12.31 일의 1년간 자료에 의거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는 직근 1년간의 결산자료에 의한다.
- 나. 21개 조사항목 중 특히 「 17항 품목별 출하액, 13항 연간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 14항 연간 주요생산비, 16항 재고액 」등을 중점 조사한다.
- 다. 제품의 품목구분과 품목번호 기입은 「 산업 및 품목분류표 」 책자 중 각 산업별로 분류 예시한 품목분류표 본문과 가·나·다 순에 따라 분류한 「 품목색인표 (부록) 」를 병용하면 효과적이다.
- 라. 종업원 50인 이상의 사업체에는 그 사업체의 주된 산업중분류에 대한 「 산업 및 품목분류표 」를 배부하여 해당업체에서 직접 산업 및 품목분류번호를 기입하도록 한다. (타산업중분류에 속하는 생산품도 조사함)
- 마. 조사표 작성시 일부 항목의 내용을 정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호관련되는 항목의 내용도 재검토하여 일치되도록 한다.
- 바. 정정하는 경우에는 수정전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횡선 (=) 으로 수정하며 칼로 긁거나 수정액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사. 조사표는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의 「 잉크 」나 「 볼펜 」을 사용하며 금액단위의 각란에 맞도록 정자로 기입하여야 한다.
(사업체에 조사표 작성을 의뢰할 경우에도 「 잉크 」나 「 볼펜 」을 사용토록 요청할 것)
- 아. 숫자는 반드시 1, 2, 3 ……과 같은 아라비아 숫자에 의한 정수로 기입한다.
- 자. 각 수량 및 금액단위는 정확히 구분하여 기입하며 금액단위는 「 백만원 」이므로 단위미만은 4사5입 (반올림) 하거나 유사항목에 포함한다. (단, 17항 (5) 단위당 출하가격은 “ 원 ”임을 유의한다)
- 차. 조사표상의 수량단위 바로 앞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둔다.
(중앙에서의 부호기입란임)
- 카. 숫자가 음수 (마이너스) 일 때는 숫자앞에 △표시를 한다.
(⊕ 부가가치세)
- 타. 다공장 소유기업체의 각 공장을 조사할 경우에 조사표의 전항목에 대하여 당해 공장분만 조사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장별로 구분작성할 수 없도록 결산장부가 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장별

유형고정자산 혹은 공장별 종업원수 등 해당업체의 타당성있는 기준에 따라 각 공장의 비율을 산정한 후 그 비율에 따라 분할 작성한다.

예시) “금강산업주식회사”는 산하공장이 서울, 대구, 대전, 광주에 있고 영업 실적을 나타내는 결산장부가 통합되어 있으며, 다만 공장별로 파악이 가능한 항목은 유형고정자산 연말총액과 종업원수 뿐이다.
금강산업주식회사의 '89년 영업실적은 다음과 같다.

다음

1. 연간출하액 90,000백만원
2. 연간주요생산비 63,000백만원
3. 내국소비세액 2,700백만원
4. 채고액 8,900백만원
5. 수탁제조수입액 9,000백만원
6. 건설가계정 없 음
7. 유형고정자산 연말총액 31,020백만원
8. 유형고정자산 연말총액의 공장별 내역

공 장 명	금 액	구 성 비
서 울 공 장	9,306백만원	30 %
대 구 공 장	3,102백만원	10 %
대 전 공 장	10,857백만원	35 %
광 주 공 장	7,755백만원	25 %
계	31,020백만원	100 %

9. 종업원수의 공장별 내역

공 장 명	인 원	구 성 비
서 울 공 장	500명	20 %
대 구 공 장	250명	10 %
대 전 공 장	1,000명	40 %
광 주 공 장	750명	30 %
계	2,500명	100 %

조사표 작성요령

- (1) 공장별 분리작성시의 기준을 먼저 설정하여야 한다. 즉, 해당기업체의 산업 특성이 자본집약적일 경우에는 각 공장별 유형고정자산을, 해당기업체의 산업 특성이 노동집약적일 경우에는 각 공장별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금강산업주식회사의 산업특성은 자본집약적이라 할때 그 기준은 각 공장별 유형고정자산연말총액으로 하여야 한다.
- (2) ★사업체부호, ①공장명 및 소재지 ②본사소재지 ③소속모기업명 ④창설년월 ⑤결산기 ⑥경영조직 ⑦자본금 또는 출자금 ⑧부지 및 건물면적 ⑨주요사용원재료명 ⑩주요생산공정등은 결산장부의 통합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각 공장별 관련내용을 작성한다.
- (3) ⑪종업원수와 ⑫유형고정자산은 각 공장별 내역 산출이 가능하므로 그 내용을 이기하면 된다. 이외에도 공장별 산출이 가능한 항목의 경우에는 각 공장별로 산출하여 작성한다.
- (4) 공장별 자료가 전혀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공장별 분리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토록 한다. 즉 이경우에는 분리기준을 각 공장별 유형고정자산 연말총액으로 정하였으므로 그 기준의 구성비율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분리 작성한다.

공장별조사표 작성내역 조사표항목	서울 공장		대구 공장		대전 공장		광주 공장		합 계	
	금액 (백만원)	구성비 (%)								
1. 연간출하액	27,000	30	9,000	10	31,500	35	22,500	25	90,000	100
2. 연간 주요생산비	18,900	30	6,300	10	22,050	35	15,750	25	63,000	100
3. 내국소비세액	810	30	270	10	945	35	675	25	2,700	100
4. 재 고 액	2,670	30	890	10	3,115	35	2,225	25	8,900	100
5. 수 탁 제 조 액 수 입 액	2,700	30	900	10	3,150	35	2,250	25	9,000	100
6. 건설가계정	-	-	-	-	-	-	-	-	-	-
7. 유형고정자산 연 말 총 액	9,306	30	3,102	10	10,857	35	7,755	25	31,020	100

2. 항목별 작성요령

가. 조사표〔I〕의 작성요령

★사업체 명부상 부 호	행정구역 분류부호	일련번호	사업체고유번호	기업체번호	그룹번호	산업분류

(1) 행정구역 분류부호

사업체 명부상의 행정구역 분류부호를 기입한다.

(2) 일련번호

사업체 명부상에 기재된 번호를 기입하며, 명부상 누락 사업체나 전입 사업체의 경우는 각 동·읍·면별로 기존명부상의 마지막 일련번호에 이어서 부여한다.

(3) 사업체 고유번호

가. 동·읍·면에서 기입할 때

사업체 고유번호는 조사용 사업체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그대로 기입한다. 단, 사업체 명부상 누락사업체의 고유번호는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둔다.(시·도에서 기입)

나. 구·시·군에서 기입할 때

조사용 사업체 명부상의 사업체중 동일 구·시·군내의 동·읍·면간에 전출입한 사업체에 대하여 이전(移轉)전 소재지의 사업체명부에서 해당 사업체에 대한 고유번호를 찾아 이기하여야 한다.

다. 시·도에서 기입할 때

새로 발견된 사업체명부상의 누락사업체, 타 시·도로부터 전입된 사업체 및 관내의 구·시·군간에 전출입한 사업체의 고유번호는 시·도에서 최종 기입한다. 명부상 누락사업체와 타 시·도로부터 전입된 사업체에 대하여는 추가 및 전출사업체 명부를 취합하여 경제기획원 지방통계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사업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서울은 남부통계사무소에서 사업체 관리) 관내 구·시·군간에 전출입한 사업체의 고유번호는 이전전 소재지의 사업체 명부에서 고유번호를 찾아 그대로 기

입한다.

(4) 기업체번호 및 그룹번호

한 기업에서 서로 다른 장소에 2개 이상의 공장·광산을 운영하거나 공장(광산)과 다른 장소에 본사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체를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체번호를, 또한 그룹에 속해있는 계열기업인 경우 각 사업체마다 그룹번호를 각각 사업체명부에 부여하였다.

사업체 명부에 기재된 기업체(또는 소속그룹)명이 실제와 일치하는 경우는 명부상의 기업(또는 그룹)번호를 그대로 이기하나, 명부내용과 상이하거나 명부상 누락사업체의 경우는 관내 명부에서 알 수 있을때만 기입하고, 그렇지 않는 사업체는 그대로 둔다.

(5) 산업분류 (조사완료후 기입)

- 조사표 17항 (연간 제품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의 산업 및 품목분류번호로부터 주된 산업분류 (분류번호의 앞 5자리 숫자)를 기입하며 임가공(수탁제조)업체는 18항 (수탁제조 수입액의 품목별 내역)의 품목분류 번호로부터 산업분류를 기입한다.

※ 산업분류 결정방법

① 해당사업체의 생산품목이 1개인 경우

: 해당사업체의 산업분류는 생산품목분류번호의 앞 5자리 숫자

② 해당사업체의 생산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 생산품목분류번호의 앞 5자리 숫자중 출하액이 가장 큰 5자리 숫자 단, 품목번호는 다르지만 산업분류가 같을 경우에는 같은 산업분류로 파악하여 산업분류 결정

<예시> 금강산업주식회사의 제품출하가 아래표와 같을 경우 산업분류는?

일련번호	산업 및 품목분류번호	품 목 명	출하액(백만원)
01	36931111	석면슬레이트	5,000
02	36941111	내 화 용 벽 들	4,000
03	36941113	내 화 용 타 일	2,500

• 산업분류 36931 : 50억원 (일련번호 01)

• 산업분류 36941 : 65억원 (일련번호 02 + 03)

따라서 금강산업주식회사의 산업분류는 36941.

- 선박, 산업용장비 등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수리업체는 수리품의 주된 산업을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서 확인하여 기입한다.

1. 공장(사업체)명 및 소재지

공장(사업체)명 _____

대표자 _____

전화 _____

시·도 구·시·군 구·로·동·읍·면 가·동·리 번지 호

- (1) 공장(사업체)명은 사업체가 영업상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기입한다.

<예시> : 「××공업주식회사 울산공장」

「주식회사××산업 창원공장」

- (2) 일정한 공장(사업체)명칭이 없을 경우는 대표자(또는 사업주)의 성명을 기입한다.

- (3) 공장(사업체)의 소재지(주소)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실제 장소를 말하는 바, ××빌딩, ××상가, ××공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사표에 인쇄되어 있는 행정단위 명칭에 “○”표를 한다.

(예 : 경기 시 · ⊙ 수원 구 · ⊙ 시 · 군)

- (4) 전화번호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유의한다.

2. 본사(본점)소재지

대표자: _____

전화: _____

시·도 구·시·군 구·로·동·읍·면 가·동·리 번지 호

- (1) 본사가 있으나 사업체와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 「상동」이라고만 기입한다.

- (2) 덕대제 채택에 의하여 채광되고 있는 덕대 광산은 본사 소재지란에 위탁한 광업사업체의 대표자 및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입하되 대표자명 우측 여백에 “덕대”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 (3) 본사가 없거나, 서울이와의 지역에 있는 경우는 서울에 있는 영업소, 사무

소의 전화번호도 상단여백에 기입한다.

3. 소속모기업 (그룹)명 ()

모기업이란 법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으나 자본, 혈연관계 등에 의하여 내면적으로 결합된 2개이상의 기업군중 지도적 (지배적) 지위에 있는 기업을 말하며 조사표상의 사업체가 속해 있는 그룹 (모기업) 명을 기입한다.

(1) 이러한 기업집단을 일반적으로 「××그룹」이라고 부를 경우는 그룹명을 기입하고

< 예시 : 1 > 제일모직(주), 삼성전자(주), 전주제지(주)→삼성
(주)금성사, (주)럭키, 금성통신(주)→럭키금성

(2) 「××그룹」이라고 불리워지지 않는 계열기업군은 모기업명을 기입한다.

< 예시 : 2 > 동아제약(주), 라미화장품(주), 동명산업(주)→동아제약
대성산업(주), 대성광업개발(주), 창원기화기공업(주)→대성산업

[주요 그룹 (모기업) 명]

현대, 럭키금성, 선경, 삼성, 쌍용, 대우, 효성, 대림, 한진,
한국화약, 대한전선, 두산, 롯데, 코오롱, 한양, 삼미, 한일
합섬, 동양시멘트, 진로, 동아제약, 동부, 동아, 신동아

4. 창설년월

(현 사업체의 가동월 또는 개점월)

19 년 월

- (1) 법인인 경우는 법적 설립년월을 기입하고 개인사업체인 경우에는 현 사업체가 현재의 사업을 시작한 해 (年) (가동월 또는 개점월) 을 기입한다.
- (2) 본사와 떨어져 있는 사업체인 경우는 그 사업체 (공장) 가 신설된 때를 기입한다.
- (3) 업종을 변경한 경우는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 (4) 동일 업종으로서 사업주 또는 상호만 변경된 사업체는 최초로 창설한 해를 기입한다.

- (5) '89년 창설업체는 16항(1)연초 재고액이 없고 20항 유형고정자산의 (01)신규나 (02)중고 취득액이 있어야 한다.(단, 유형고정자산을 임차 사용중일 경우에는 예외)

5. 결산기(결산마감월) ()월

결산대상기간(예: 1~12월)이 아니고 결산마감월(예: 12월)을 말한다.

<예시> 결산이 연 1회(결산기간 1~12월)인 경우와 연 2회(결산기간 1~6월, 7~12월)인 경우의 기재방법은 각각(12월), (6, 12월)로 기입한다.

6. 경영조직(해당란에 ○표)

- (1) 회사법인() (2) 기타법인() (3) 개인()

(1) 회사법인이란 상법상의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를 말한다.

(2) 기타법인은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법인격(法人格)을 부여받은 조합등을 포함하며, 법인격이 없는 임의 단체는 (3)개인에 포함된다.

(3) 개인이란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를 말하며 법인격을 갖지 않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체도 여기에 포함된다.

7. 자본금 또는 출자금(회사법인에 한함)

'89년말 현재 납입자본금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 (1) 4항의 경영조직 중 「회사법인」에 한하여 '89.12.31 현재의 납입자본금 및 출자금을 기입한다.

- (2) 1개 회사에 2개 이상의 공장이 있는 경우에도 각 공장에서는 본사의 자본금 총액을 각각 기입한다.

8. 부지 및 건물 (광업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평 ≒ 3.3 m² ○ 임차사용분은 조사하고 임대분은 제외 		
(1) 소유형태	자기소유	임차사용
(2) 면적	① 부지	m ²
	② 건물밀면적	m ²
	③ 건물연면적	m ²

본 항목은 제조업체에 한하여 조사하며, 제품생산을 목적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부지 및 건물의 소유형태와 면적을 기입한다.

(1) 소유형태

부지 및 건물의 소유형태에 따라 자기소유분에 대하여는 자기소유난에, 임차사용분에 대하여는 임차사용난에 기입한다.

(2) 면적

부지 및 건물의 면적은 업무용으로 실제로 사용중인 부문에 한하여 자기소유분과 임차사용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입하며 비업무용 및 임대해 준 것은 제외한다.

가) 부지

- ① 광업과 연계되어 제조활동을 하는 사업체는 광업부문은 제외하고 제조업 부문만 조사한다. (예 : 시멘트공장의 석회석광산 부지는 제외)
- ② 사택, 기숙사, 운동장 등 복리후생시설이 생산공장과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은 포함하고 별도의 장소에 있거나 일반도로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물밀면적

부지와 접한 건물 바닥이 차차하는 면적을 말한다.

다) 건물연면적

전체 건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유의사항〉

㉠ 2층 이상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사업체가 있는 경우 부지 및 건물밀면적은 제 1 층에 작업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조사하고 건물 연면적은 실제 사용중인 건물 연면적을 사업체별로 조사한다.

㉡ 부지 100 평, 각층 30 평인 3층 건물에 A (1 층), B (2 ~ 3 층) 두 사업체가 임차사용하고 있을 경우

• A사업체

(1) 소 유 형 태	자 기 소 유	임 차 사 용
① 부 지	m ²	330 m ²
(2)면적 ② 건물밀면적	m ²	99 m ²
③ 건물연면적	m ²	99 m ²

• B사업체

(1) 소 유 형 태	자 기 소 유	임 차 사 용
① 부 지	m ²	- m ²
(2)면적 ② 건물밀면적	m ²	- m ²
③ 건물연면적	m ²	198 m ²

㉢ 일반적으로 부지가 있고 건물 밀면적과 건물 연면적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요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 ① 빌딩의 일부를 임차사용하는 경우
- ② 벽돌·블록 제조업체일 경우

㉣ 건물 연면적은 건물 밀면적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한다.

㉤ 부지는 건물 밀면적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 단위는 「m²」이므로 평(坪)은 환산, 기입하여야 한다.

1 평 ≃ 3.3 m²

〈단위환산예〉

1,000 평 = 3,300 m²

5,000 평 = 16,500 m²

3,000 평 = 9,900 m²

7,500 평 = 24,750 m²

- (배) 광업은 기입하지 않는다.(석탄, 채석장, 염전, 석회석등의 광업체)
- (사)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반올림)하여 정수로 기입한다.

9. 주요 사용 원재료명

①

②

③

원재료에 따라 산업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사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재료 중 비중이 큰 것 3개지만 기입한다.

10. 주요 생산공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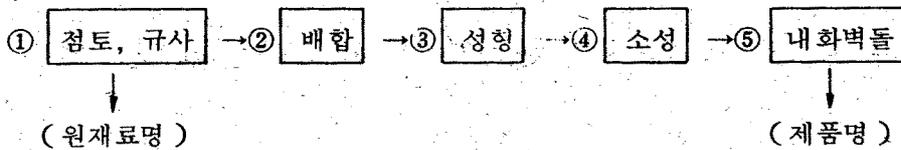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생산공정은 주된 품목 하나에 대하여 최초의 투입품명(원재료명을 기입)
부터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제품명까지의 순서를 단계적으로 요약 기입한다.

<예시> 내화벽돌을 제조하는 경우



11. 종업원수					
○ 임시 및 일고종사자포함					
		(1) 12월말 현재 종업원수			(2) 조업기간중 월평균 종업원수
		계	남	여	
① 자 영 협 주					
② 무급가족 종사자					
③ 피 고 용 자	생 산 직				
	사무 및 기타				
합 계					
④ 연간조업월수 ()월		⑤ 연간조업일수 ()일			

(1) 자영업주

개인 사업체의 소유주(출자자 포함)를 말한다.

(2) 무급가족 종사자

개인 사업체 소유주(출자자 포함)의 가족(동거자 포함)으로서 사업체의 운영을 위하여 정규작업(경영)시간의 1/3 이상 사무나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일정한 봉급이나 임금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 6항의 경영조직이 (1)회사법인이나 (2)기타법인은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가 있을 수 없으며, (3)개인 사업체는 자영업주가 반드시 1인 이상은 있음에 유의한다.

(3) 피고용자(被雇傭者)

(가) 생산직 종업원

생산에 직결되는 현장작업에 종사하는 생산종업원을 말하며, 생산공정의 특정단계를 기록하거나 촉진하는 기록원, 감독원과 생산활동에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트럭운전사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현장에 종사하더라도 실제로 육체적 작업을 하지 않는 사무원, 지배인, 중역 등은 여기서 제외한다.

(나)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생산종업원 이외의 모든 피고용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생산작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뒤에서 기술적, 전문적, 서기적(書記的)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이들의 보조원 즉 사환, 수위, 승용차의 운전사, 전화교

환원, 간호원 등을 말하며, 법인체에 있어 보수를 받는 사장, 지배인, 중역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4) 12월말 현재 종업원수

1989.12.31 일 현재의 실제 종업원수를 말하며, 남·녀별로 구분 기입하고 12월중에 조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휴업, 계절업종 등)에는 종업원수를 기입하지 않고 “△” 표시만 한다.

(5) 조업기간 중 월평균 종업원수

휴업을 했거나 생산중단 등 실제 조업을 하지 않은 달(月)은 제외하고 조업을 한 각 월말 종업원수의 누계를 조업월수로 나눈 월평균 종업원수를 말한다.

<예시> 일음제조업체인 “갑”이라는 회사가 아래의 표와 같이 종업원을 고용하여 5개월 조업하였다면 월평균 종업원수는?

월	5	6	7	8	9
종업원수	35	50	60	60	40

$$\ast (35 + 50 + 60 + 60 + 40) \div 5 = 49$$

(6) 연간 조업월수

실제 조업한 달을 말하며, 최소한 월간 1주일 이상 조업을 했을 경우에 조업월수에 포함한다.

<유의사항>

- ㉠ 피고용자에는 장기결근자(3개월이상), 군복무자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또한 위탁 제조시킨 경우 수탁사업체의 종업원을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 ㉡ 광공업과 타산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에는 광공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만을 분리, 기입한다.
- ㉢ 12월말 현재와 조업기간 중 월평균 종업원수가 차이가 많을 경우에는 적요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 휴업을 한 경우에는 적요란에 휴업한 달(月)을 기재한다.
- ㉤ 일고 종업원은 반드시 포함조사하되 연인원으로 조사되기 쉬우므로 연인원일 경우에는 그달의 조업일수로 나누어 월평균 종업원수로 환산 기입한다.

<예시> 월중 조업일수를 26일이라 하고 처음 10일간에 20명씩, 그리고 다음 7일간에 15명씩, 나머지 9일간에 30명씩 근무한 경우 월평균 종업원수는?

※ 일고종업원의 월평균 종업원수

$$= \frac{\text{월중 연근무인원수}}{\text{조업일수}} = \frac{575(\text{명})}{26\text{일}} = 22\text{명}$$

$$\text{월중 연근무인원수} = (10\text{일} \times 20\text{명}) + (7\text{일} \times 15\text{명}) + (9\text{일} \times 30\text{명}) = 575(\text{명})$$

12. 연간급여액						① 자영업주
○ 상여금, 제수당 포함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② 무급가족 종사자
*	*	*	*	*	*	
*	*	*	*	*	*	
						합 계

급여액은 세금, 기여금, 보험료, 적금, 근로조합비 등 피고용자 부담금을 사업주가 공제하기 이전의 급여총액으로 기입하며, 상여금 및 각종수당은 포함한다.

생산직급여액은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노무비”를, 사무 및 기타의 급여액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상」의 “급료와 임금”을 말한다.

- (1) 1989년 이전의 급여로서 체불된 것을 1989년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며, 1989년 중에 지급하여야 할 것을 지불치 못했을 경우의 미지급 급여액은 포함한다.
- (2) 현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지급현물이 자가 생산품일 때에는 지급시의 공장인도 가격으로, 구입품일 때에는 구입가격으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 (3) 급여액이 11항의 종업원수와 비교하여 현실적인 급여수준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1인당 월별 급여액을 확인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 종업원 1인당 월평균급여액 = (연간급여액합계 ÷ 월평균종업원수) ÷ 조업월수

(4) 퇴직금(퇴직급여충당금)과 복리후생비, 장기결근자 및 외국인, 군복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13.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기타 수입액	단위: 원					
	조	천	백	십	억	천만
① 제품출하액(제품의 외형매출액)						
② 폐품판매액(생산과정의 폐품, 불량품)						
③ 수탁제조수입액(임가공료)						
④ 수리수입액(수리대금)						
합계(①+②+③+④)						
⑤ 상품매출액(구입상품 재판매액)						
⑥ 상품매출원가(구입상품매출에 대한 재판매원가)						
⑦ 임대수입액: 유형고정자산의 임대수입액(토지분은 제외)						

(1) 제품출하액

- ㉠ 제품출하액이란 당해사업체에서 직접 제조 생산하였거나 위탁생산한 모든 제품중에서 '89년 1년간 출하(수출액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 ㉡ 따라서 외국 또는 타사(他社)에서 구입하여 그대로 또는 포장만 변경하여 출하한 결산서상의 "상품매출액"은 제외한다.
- ㉢ 제품출하액에 판매이윤은 포함(제품수불명세서가 아닌 매출명세서상의 금액으로 조사)되어야 하나, 내국간접세가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특별소비세 및 주세 과세대상 품목생산업체 특히 유의할 것)
- ㉣ 외국에 수출된 제품으로 외화로 판매 계약된 것은 수출 당시의 외환시세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 기입한다.
- ㉤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매점이나 보관창고로 이송한 것,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 무상 양도한 것, 건설업 등 타산업 활동부문으로 대체된 것은 대체된 금액에 외부 매출시의 이윤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입한다.

배) 광공업이 아닌 타산업부문으로부터 수탁생산(원재료 등을 공급받아 제조가공 인도하고 그 댓가로 임가공료를 받는 경우)하여 위탁사업체에 인도한 것은 시가로 평가하여 기입한다.

(2) 폐품 판매액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폐품, 예를 들면 철공소에서 쇠부스러기, 공장이나 인쇄소에서 나오는 폐지, 불합격품(불량품)등을 판매한 금액을 기입한다.

본 항목의 폐품은 제품의 생산과정 이외에서 나오는 폐기물 즉 파손된 기계부속품, 사용불능인 책상, 사무용품 등과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3) 수탁제조 수입액

가) 원재료(또는 중간제품)나 원재료비를 타 광공업 사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제조 가공처리하여 준 대가로 받은 수입액을 기입한다.

나) 원재료(또는 중간제품)를 직접 구입하여 생산 납품한 경우는 위탁(주문)업체의 산업활동유형에 관계없이 생산업체에서 제품 출하액으로 조사한다.

다) 광공업 이외의 타산업체(무역업, 판매업 등)로부터 수탁받아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를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수탁업자 자신이 원재료를 구입, 생산하여 출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① 제품출하액에 기입한다.

라) 주산업이 수탁제조(임가공)인 도살업, 도정업, 도금업은 수탁제조(임가공)수입액만 기입하고 신문사, 출판사 등의 광고수입도 본 항목에 포함 조사한다.

(4) 수리 수입액

타인 소유의 산업용기계, 장치(선박, 산업용 보일러, 산업용 장비등)를 수리하여 준 대가로 받은 수입액을 기입한다.

<유의사항>

13항 출하액 합계액이 14항 생산비 합계액에 비해 과소하거나 과도한 경우 그 타당성을 확인하고 특별한 요인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적요란에 기재한다.

(5) 상품매출액

(가) 사업체가 직접 제조가공하지 않고 외국 또는 타사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그대로 또는 포장만 변경하여 재판매한 상품의 총매출액을 말한다.
(손익계산서상의 상품매출액)

(나) 판매가 완료되지 않은 적송품, 시용판매, 할부판매, 예약판매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일단 상품이 출고되었을 경우에는 포함하여 조사한다.

(6) 상품매출원가

연간 판매한 상품에 대한 구입원가를 기입한다.

(7) 임대수입액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의 임대에서 발생하는 수취임료를 말하며 토지분에 대한 임대수입액은 제외한다.

14. 연간주요생산비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원
①재료비 (부재료, 보조재료 포함)						
②연료비 (석유, 석탄, 방카C유 등의 연료)						
③전력비 (구입전력비)						
④용수비 (구입용수비)						
⑤위탁생산비 (외주가공비)						
⑥수리유지비 (수선비)						
합 계						

1989년 1년간 실제 생산에 소요된 제조 및 영업비용 (제조원가, 판매 및 일반관리비) 중에서 명시한 6개 비목만을 각 항목별로 기입한다.

(1) 재료비

(가) 제품의 생산 또는 수리가공을 위하여 1989년 1년간에 실제로 사용한 원재료(주재료)와 부분품, 용기 등과 포장 재료비와 같은 보조재료(부재료)로서 실제 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사용금액을 말한다.

(나) 미사용 재료비가 포함된 구입액을 기입해서는 안된다.

(다) 다(多)단계 생산공정을 거치는 제품의 경우 다음공정으로 투입되는 부분을 재료비로 중복 기입하지 않도록 단계정대체액은 제외하고 최초 투입재료비에 공정을 거치면서 부가된 재료비만을 포함 기입한다.

태 동일 기업내의 다른 공장(사업체)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재료(또는 반제품)는 대체금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재료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내 광업, 농업, 임업, 수산업 등을 겸영(兼營)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자가 취득한 재료는 사용 당시의 시가로 환산 기입한다.

내 수탁생산을 하는 경우

① 광공업 사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탁생산을 하는 경우에 위탁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원재료는 수탁 사업체의 재료비로 계상하지 않고 위탁업체에서 계상한다.

② 그러나 광공업이 아닌 타 산업의 사업체(무역업, 판매업, 서비스업 및 건설업 등)나 정부 및 공공단체로부터 제품의 생산을 위탁받은 경우는 제공받은 재료를 사용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 수탁업체에서 기입하여야 한다. 단, 도살업, 도정업은 임가공료만 조사하므로 원재료는 재료비로 계상하지 않는다.

(2) 연료비

내 1989년 1년간에 가열로(加熱爐, 난방포함), 동력 및 자가발전용 등으로 사용한 모든 연료(석탄류, 석유류, 방카C유, 기타 연료)의 금액을 기입한다.

내 일반적으로 「연료」로 사용되는 품목이라도 그 사업체에서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재료비」에 계상한다.

(예: 연탄공장에서의 무연탄)

(3) 전력비

내 전력비는 '89년 1년간 구입 사용한 전력요금을 말하며 자가발전에 사용된 연료비(석탄, 유류 등)는 여기에서 제외하고 「연료비」에 포함한다.

내 개인 사업체인 경우 가정소비분과 생산소비분이 각각 구분 가능할 경우에는 생산에 사용된 부분만 조사한다.

(4) 용수비

1989년 1년간에 사무실용과 종업원의 음료용수를 포함한 생산에 사용된 모든 용수의 요금을 기입한다.(얼음공장에서의 용수비는 (1)재료비에 포함한다)

(5) 위탁생산비 (외주가공비)

㉠ 위탁 사업체가 제품생산을 위하여 수탁 사업체에 지불한 외주작업의 대가를 말하며 여기에는 가사노동자에게 외주작업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도 포함한다.

㉡ 출판사에서 원고만을 주고 인쇄소에 인쇄를 시켰을 때에는 인쇄비용은 포함하나 「원고료」는 본 조사에서 생산비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6) 수리유지비

생산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제비용(수익적지출)으로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원가보고서상의 수선비 항목을 합하여 기입한다.

㉠ 공장 증축이나 기계 등의 개조로 그 자산의 성능이 높아지고 가치가 증가됨으로써 회계상 유형고정자산 계정에 처리되어야 할 것(자본적 지출)은 여기에서 제외하고 20항 「유형고정자산의 신규취득액」란에 포함 기입한다.

㉡ 유실, 도난, 화재 및 막대한 손상으로 유형고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이를 구입대체시킨 경우는 20항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액과 연간처분 및 손해액에 기입한다.

15. 내국소비세액		천	억	백	억	십	억	억	천	만	백	만원
○	부가가치세 (매출세-매입세)											
○	부가세 (특별소비세와 주세에 부가된 방위세, 교육세) 포함											
①	부가가치세											
②	특별소비세											
③	주세											
	합계											

사업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 중 재화와 용역의 생산, 판매, 구매 또는 사용에 대하여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간접세를 발생기준에 의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주세로 구분 기입한다.

(1) 부가가치세

(가)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를 기입한다.

(나) 과세특례자의 경우는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서상의 차감 납부할 세액을 기입한다.

※ 과세특례자는 연간 공급가액 (매출액)이 3,600 만원 미만의 사업자 중 제조업의 경우는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방앗간), 양복점업 및 양장점업, 양화점업과 이와 유사한 업종에 한하여 인정되고, 그 세율은 공급가액의 20/1,000이다.

(다) 신문, 전매품 (專賣品), 연탄 및 무연탄, 소금 등을 제조 또는 채광하여 원료용 또는 일반소비자용으로 출하하는 것은 면세된다. 단, 주된 산업활동이 면세업종이더라도 과세사업활동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된다.

(신문사의 광고수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등)

(라) 출하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와 같이 「영세율 (零稅率)」이 적용되거나 시설투자 등으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 (負)의 수치 (환급세액) “-”」가 될 수 있다. (이 경우는 숫자 앞에 “△” 표시하고 환급세액을 기입한다)

(레)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체 (공장) 분만을 구분 기입한다.

(러) 부가가치세 계산상의 공급가액 (과세표준액)이란 매출액에 특별소비세와 주세, 이에 부과되는 방위세와 교육세 등 간접세를 가산한 금액이다.

(2)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는 사치성품목, 소비억제품목, 고급내구성 소비재 품목에 적용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보석류, 귀금속, 모피, 골프용품, 특수화장품 등이 있다. (품목별 세율은 「산업 및 품목분류표」 부록 참조)

(3) 주세

각종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 (주류 품목별 세율은 「산업 및 품목분류표」 부록 참조)

16. 재고액												
	(1)연 초재 고액					(2)연 말재 고액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① 완 제 품												
② 반제품 및 재공품												
③ 원 재 료												
④ 연 료												
합 계												

- ① 완제품은 당해 사업체에서 제조된 것으로서 조사기준시점 현재 출하(판매)할 수 있는 상태의 제품을 말하며 재고액평가는 생산자 제조원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반제품 및 재공품은 당해사업체가 추가가공을 요하는 미완성제품, 즉 조사기준시점 현재 출하할 수 없는 상태의 중간제품을 말한다.
- ③ 원재료 및 연료에는 당해 사업체의 소유분으로 작업상 외부에 보관중인 것도 포함되며 원재료 및 연료가격은 구입가격으로 한다.
 - 연초재고액은 전년도('88년) 연말재고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단, 1989년 창설업체는 연초재고액이 없다.
 - 일반적으로 각 사업체에는 재고가 있으며 재고액이 출하액에 비하여 너무 과다 과소할 경우에는 재확인하고 그 사유를 적요란에 기재한다.

17. 연간제품출하액(매출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일련 번호	품목분류번호 (산업 및 품목분류표 참조)			제 품 명	★★	수량 단위
01						
02						
03						

- (1) 본 항목에서는 「13항① 제품출하액」과 「16항(1), (2)의 ①완제품의 연초·연말재고액」에 일괄 기입된 총금액을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 수록되어 있는 품목별로 세분기입한다.

(2) 연간 총출하액 및 수출액은 제품매출명세서상의 수량 및 금액을, 연초연말재고액은 제품수불명세서상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3) 품목분류번호

(가) 별책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 의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반드시 「8단위 숫자」로 기입한다.(8단위 수치중 앞의 5자리는 “산업분류번호”이고 뒤의 3자리는 “품목분류번호”임)

(나) 종업원 50인 이상의 사업체에는 사업체 명부에 수록되어 있는 해당산업분류를 참고하여 그 사업체에 주요제품을 확인한 후 가장 비중이 큰 중분류의 산업 및 품목분류표를 조사표와 함께 배부하도록 하며, 또한 당해업체가 산업분류를 달리하여 생산되는 제품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있을 경우에는 조사표류 배부시에 해당전제품을 확인한 후 분류번호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 의하여 품목분류번호를 정할 때에는 우선 산업분류번호를 먼저 정하고, 정해진 산업분류번호내에서 나머지 3자리의 품목분류번호를 확정하여야 한다.

< 예시 > 나무의자의 품목분류번호는 ?

나무의자는 그 산업분류가 33 (나무 및 나무제품) 중에서 332 (가구 및 장치물)에 속하며, 332 중에서도 33201 (일반목재가구 제조업)에 속하므로 나무의자의 산업분류는 33201로 정해진다.

33201 산업내에는 의자, 책상, 장식장 등 여러가지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바, 의자의 품목분류번호는 111이다.

그러므로 본 예시에서 나무의자의 품목분류번호는 33201111이다.

(라) 일반적으로 동일한 품목인 것처럼 표기되고 있더라도 ①원재료 ②성질 ③용도 ④생산공정 등에 따라서 달리 분류되므로 사업체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출하품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히 분류하여야 한다.

< 예시 >

① 원재료가 다른 경우

{ 나무의자 33201111	{ 면 장 갑 32154111
{ 철재의자 38121113	{ 가죽장갑 32228112

② 성질이 다른 경우

{ 흑백 TV 38321111	{ 이형철근 37121131
{ 칼라 TV 38321112	{ 원형철근 37121132

③ 용도가 다른 경우

{	여자용기성외의 제조업 32223	{	상업용 냉장고 38263111
	소아용기성외의 제조업 32224		가정용 냉장고 38331111

④ 생산공정이 다른 경우

{	열연박판(보통강) 37121331	{	압연용 강괴(보통강) 37113111
	냉연박판(보통강) 37122111		단조용 강괴(보통강) 37113121

(마) 사업체의 생산품이 별책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어디에 분류할 것인가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일단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품목명칭과 수량단위에 의하여 기입하고 품목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원재료명, 용도 등)으로 기재한다.

(4) 제품명

- (가) 품목명은 해당사업체의 사용명칭을 사용하되 품목명칭이 애매한 것은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적요란에 기입한다.
- (나) 품목명칭이 ...제품, ...용품, ...류등과 같이 포괄적이어서는 안되며, 「산업 및 품목분류표」의 정도와 같이 세분하여야 한다.
- (다) 제품명만으로는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는 가급적 그 용도 등을 병기한다.
- (라) 제품명은 정식명칭을 기입하고 외국어나 특수품명 등 품목분류가 애매한 것은 품목설명을 명기한다.

<예 시>

{	슬라브(slab)(보통강)	{	사카린(식 용)
	슬라브(slab)(고탄소강)		사카린(공업용)
{	기계부품(식료품 가공기계)	{	FeMn(망간철)
	기계부품(섬유용 기계)		FeSi(규소철)

(바) 타사 출하분과 내부거래분은 구분 기입하고 내부거래분은 제품명란에 다음 예시와 같이 그 내용을 부기한다.

- ① 동일 기업내 타공장으로 이송 → (타공장 이송)
- ② 고정자산으로 대체 → (자산대체)
- ③ 건설부문 등 타산업 활동부문에 자가사용 → (타산업 대체)
- ④ 비 광공업체로부터 수탁생산하여 위탁사업체에 인도 → (타산업수탁)

(베)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는 제품출하액이 큰 품목순으로 기입하고 행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한다.

(세) 제품분류시 기타 품목으로의 분류가 불가피한 경우는 총 출하액의 5%

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대규모 사업체에는 출하규모를 감안 더욱 세분하여야 한다.

(5) 수량단위

- ㉠ 수량단위는 반드시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서 지정한 단위를 사용하여 하며 사업체의 단위와 서로 달라 지정단위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부록의 「단위 환산표」에 의하여 그대로 환산하고, 단위환산표에 수록되지 않은 것은 관리부서에 자세한 설명을 들어 정확한 환산이 되도록 한다.
- ㉡ 환산이 극히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체의 사용단위로 조사하고 그 단위의 자세한 규격 및 설명을 적요란에 기입한다.
- ㉢ 산업 및 품목분류표상 수량단위가 「※」인 품목은 조사표의 “수량단위”란에는 「※」로, “수량”란에는 수량과 사업체 사용단위를 병기한다. (실제 품목분류 착오인 경우 재조사를 방지하기 위함)
- ㉣ 특히 유의할 것은 단위는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 지정된 단위로 정정하고 수량은 환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놓아두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예 시 >

- ① 1 본(병)이 190 ml 인 콜라 219,000 상자 (C / S : 24 본) 를 지정단위 (kl) 로 환산하면,

$$190(\text{ml}) \times 24 (\text{본}) \times 219,000 (\text{상자}) = 998,640,000(\text{ml})$$
 그런데 $1 \text{kl} = 1,000\ell = 1,000,000 \text{ml}$
 따라서 $998,640,000(\text{ml}) \div 1,000,000(\text{ml}) = 999(\text{kl})$
- ② 연탄 (22 공탄) 5,560,000 장을 지정단위 (M / T) 로 환산하면, 22 공탄 278 장 = 1 M / T (25 공탄 208 장, 31 공탄 133 장 = 1 M / T)
 따라서 $5,560,000 (\text{장}) \div 278 (\text{장}) = 20,000 (\text{M} / \text{T})$
- ③ 합성섬유직물 (폭 36 인치) 500,000 yd (야야드) 를 지정단위 (천 m²) 로 환산하면,

$$m^2 = yd (\text{길이}) \times 0.9114 (m) \times \text{inch} (\text{폭}) \times 0.0254 (m)$$

$$= 500,000 \times 0.9114 \times 36 \times 0.0254 = 418.050 (m^2) \rightarrow 418 (\text{천 } m^2)$$

$$\begin{cases} 36 \text{ 인치 } 1yd = 0.8361 m^2 \\ 44 \text{ 인치 } 1yd = 1.0219 m^2 \end{cases}$$

〈참고〉 주요단위 설명

- M / T (메트릭톤) = 1,000 kg ○ 1 L / B (파운드) ≒ 0.454 kg
- 족(足) = 켤레 ○ C / S = 상자 ○ 착(着) = 벌

(1) 품목별 제품의 총 출하액 (수출액 포함)								
수	량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가) 품목별 제품의 총 출하액의 합계액은 13항 ①의 제품출하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나) 품목별 제품의 총 출하액은 국내판매분과 수출분을 합한 금액이며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상품매출액은 제외한다.

(2) 품목별 제품의 수출액								
수	량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가) 자기명의 수출, 위탁수출 및 비광공업부문으로부터 수탁을 받아 제조한 제품의 수출을 합산하여 기입하여야 하며 금액은 “원” 화로 기입하여야 한다.(외화 금액표시의 경우는 수출 당시의 외화교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나) 국내의 제조업체(수출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내국신용장에 의거 수출용 제품을 구성하는 원자재, 반제품 및 부품을 공급했을 경우 수출액으로 조사하지 않는다.

〈참고〉

가) 자기명의 수출

수출입업 허가업체가 외국상사와 직접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수출한 수출면장상의 금액을 기입한다.

내 위탁수출

자기가 직접 외국상사와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출입허가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타업체(수출입업 허가업체 : 수출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수출한 경우의 수출면장(또는 내국신용장)금액을 말한다.

내 내국신용장 수출

자사가 직접 외국상사와 수출계약을 맺지는 않았으나 이미 수출계약을 체결한 국내의 타 수출업체(비광공업체에 한함)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내국신용장(제2, 3차 내국신용장 포함)에 의거 수출용 제품을 공급했을 경우의 공급액을 기입한다.

내 기타 약정에 의한 수출

- ①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구매승인서와 입가공 및 기타 약정에 의거 비광공업체에 공급한 수출용 제품의 공급액을 기입한다.(위탁업체로부터 원재료의 공급여부와는 관계가 없음)
- ② 계약서상 수출용품이 명기되지 않았으나 자사제품이 수출품임을 공급자가 확신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위 ①항에 준하여 수출용품으로 간주한다.

(3) 품목별 제품의 연초재고액						
수	량	천	억	백	억	십
		억	천	만	백	만원

개 연초재고액의 합계는 16항 (1)의 ① 완제품의 연초재고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내 제품수불명세서상의 금액을 기입한다.

(4) 품목별 제품의 연말재고액						
수	량	천	억	백	억	십
		억	천	만	백	만원

개 연말재고액의 합계는 16항 (2)의 ① 완제품의 연말재고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내 제품수불명세상의 금액을 기입한다.

(5) 단위당 출하가격	
최 저 단 가	최 고 단 가

개 금액을 수량으로 나눈 「평균출하가격」은 단위당 출하가격의 최저단가와 최고단가 범위내의 가격이어야 한다.

내 수량과 금액의 관계와 단위당 출하가격이 어느정도 타당하더라도 지정된 수량 단위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품목별 전체물량을 집계분석하는데 큰 착오가 발생되니 단위당 출하가격은 반드시 지정단위에 대한 가격이어야 한다.

18. 수탁제조(임가공)수입액의 품목별 내역										
일련 번호	품목분류번호 (산업 및 품목분류표 참조)				제 품 명	천 억	백 억	십 억	천 만	백 만 원
01										
02										
03										

- (1) 본 항목은 「13항 ③의 수탁제조(임가공)수입액」을 제품별로 구분 기입한다.
- (2) 품목분류는 별책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 의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반드시 8.단위 숫자로 기입한다.
- (3) 동일 품목이라도 제품을 매출하는 경우와 임가공 생산하는 경우의 「산업 및 품목분류」가 다름을 유의하여야 한다.

< 예 시 >

쌀(제품출하) 31161111 쌀(임가공도정) 31192100	{	서적(출판) 34213111
		서적(임가공인쇄) 34221100

19. 건설가계정	천 억 백 억 십 억 억 천 만백만원					
① 연 간 증 가 액						
② 연 간 감 소 액						
③ 연 말 잔 액						

건설가계정이란 건설중인 유형고정자산(건물)의 건설을 위한 투자지출이나 기계·설비 등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로서 완성 또는 도착에 이르기까지 잠정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① 연간증가액

1989.1.1 ~ 12.31 일 사이에 유형고정자산의 건설 또는 매입을 위해 투입된 재료비, 노무비, 제 경비 등 건설가계정의 차변에 기록된 금액의 1년간 합계액을 기입한다.

② 연간감소액

1989.1.1 ~ 12.31 일 사이에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이 완료되어 건설가계정에서 고정자산계정으로 대체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입한다.

③ 연말잔액

1989.12.31 현재 건설중인 공사에 대한 원가 또는 비용의 누계액으로서 건설가계정의 차변에 기록된 금액의 누계액을 기입한다.

<유의사항>

- 연간 감소액은 20 항 「유형고정자산」의 「신규취득액」과 「중고취득액(토지제외)」합계와 같거나 적어야 한다.
- 건설가계정(시설가계정, 미착기계정 등 포함)이 설정된 사업체만 조사한다.

20 . 유형고정자산										
	(01) 연간 신규취득액		(02) 연간 중고취득액		(03)연간처 분및손해액		(04) 연간 감가상각액		(05) 연말총액 (미상각잔액)	
	천백십 억	천백 억	천백십 억	천백 억	천백십 억	천백 억	천백십 억	천백 억	천백십 억	천백 억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①토 지	*	*	*	*	*	*	*	*	*	*
②건물및건축물										
③기계장치, 공 구,기구, 비품										
④차량, 선박및 운 반 구										
합 계										

(1) 유형고정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 및 건축물, 차량, 선박 및 운반구, 기계장치 및 1년 이상의 내구성 있는 공구, 기구, 비품 등을 말한다.

(2) 기존 고정자산의 경제 수명을 연장시키고 생산성을 크게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장중축이나 기계 등을 개량한 경우는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액에 포함되나(자본적 지출), 자산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보수나 수선은 제외한다.(수익적 지출)

① 토 지

공장 및 사무소의 대지, 사택대지, 운동장 등을 말하며 이를 위한 토지 개량비〔정지, 매립(埋立) 등의 공사비 및 수익자부담금〕등도 포함한다. 그러나 비업무용 토지는 제외한다.

② 건물 및 건축물

건물은 공장, 사무소, 사택,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과 승강기, 냉방장치, 조명장치, 통풍장치 등과 이들의 부속시설을 말하며, 건축물은 도로, 철도, 교량, 담장, 굴뚝, 수조탱크, 조선대(造船臺), 송유관 등을 말한다.

③ 기계장치·공구·기구·비품

발전기, 전동기, 공작기계 등의 각종 기계와 반사로, 가열로, 용광로

와 공구·기구·비품 등을 포함한다.

④ 차량·선박 및 운반구

자동차·철도레도 등의 육상운반구와 전마선(傳馬船), 화물선, 유조선 등의 해상 운반구 및 항공기 등을 말한다.

(01) 연간 신규 취득액

연간 신규 취득액이라 함은 1989년 1년간에 유형고정자산을 실질적으로 신규취득, 설치 및 증개축(增改築)하기 위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02) 연간 증고 취득액

신규 취득이외의 증고자산 취득액을 말하며 토지의 취득은 증고 취득으로 간주한다. 외국으로부터 증고품취득은 신규취득으로 간주한다.

(토지에서는 정지, 매립 등의 공사비 및 수익자 부담금도 포함)

(03) 연간 처분 및 손해액

1989년 1년간에 매각, 양도(讓渡), 재해, 도난등으로 인한 유형고정자산의 실질적인 가치 감소액을 말하며 감가상각에 의한 장부가격의 감소는 제외된다.

(04) 연간 감가 상각액

반드시 1989년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액 또는 감가상각충당금만 기입하여야 하며 감가상각액누계액 또는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累計額)을 기입하여서는 안된다.

(05) 연말총액

1989.12.31일 현재 장부가액에 의한 미상각 잔액을 말한다.

<유의사항>

개 장부가액을 기입하며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한다.

내 임차 사용분은 제외하고, 임대해 준 것은 포함한다.

대 '89년도 창설업체는 토지, 건물, 기계, 운반구 등 유형고정자산의 증고 또는 신규취득액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만, 임차사용하는 경우는 적요란에 임차상황을 기입한다.

태 유형고정자산의 (01)연간 신규 취득액과 (02)연간 증고 취득액(토지 취득은 제외)의 합계액은 19항 건설가계정의 (2)연간감소액 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배 (01) + (02) - (03) - (04) ≤ (05)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배 유형고정자산의 연초총액은 조사하지 않는다.

21. 동일기업내 타공장(사업체)명 및 소재지				
일련 번호	★사업체 고유번호	타공장(사업체)명	소 재 지	전화번호
01				
02				
03				

동일기업내에 산하공장(사업체)이 2개이상 있을 경우에 각각의 공장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되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한다.

★ 사업체 고유번호

동일기업내 타공장의 사업체 고유번호는 사업체 명부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만 기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대로 둔다.

<예시>

“금강산업주식회사”의 산하공장이 서울, 대구, 대전, 광주에 있고 각 공장에서 본 항목을 기입할 경우의 예시를 보면

(1) 서울공장에서 기입할 경우

일련 번호	★사업체 고유번호	타 공 장 (사업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01	2202455	대 구 공 장	대구 북구 침산1동 69	763-4953
02	3404282	대 전 공 장	충남대전 중구 도마동 35	45-5133
03	2401241	광 주 공 장	광주 동구 지원동 26-3	23-7635

(2) 광주공장에서 기입할 경우

일련 번호	사 업 체 고유번호	타 공 장 (사업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01	1113245	서 울 공 장	서울 강서구 화곡동 333	696-2209
02	3404282	대 전 공 장	충남 대전 중구 도마동 35	45-5133
03	2201241	대 구 공 장	대구직할시 북구 침산1동 69	763-4953

(3) 대전, 대구공장에서도 위와 같은 요령으로 기입한다.

종업원수(명)	출하액(백만원)	주요생산품명

(1) 종업원수(명)

공장(사업체)별로 조업기간중 월평균 종업원수를 기입한다.

(2) 출하액(백만원)

공장(사업체)별로 출하액을 기입한다.

(3) 주요생산품명

공장(사업체)별로 주요생산품명을 기입한다.

적요: 적자요인, 품목분류의 문제점, 위탁사업체명, 다공장기업체의 공장별 분할작성 기준등의 참고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입

본란은 조사표상의 조사내용이 일반적인 조사원칙이나 사업체의 결산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 그 내용을 기입하여 차후 조사표 내검 및 전년도와의 수준대비 등의 자료점검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용도, 원재료, 성질 등의 사항
- (2) 품목의 수량단위가 지정단위와 다를 경우에 환산방법
- (3) 조사자료가 전년도와 수준증감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 그 요인
- (4) 적자일 경우 그 요인
- (5) 수탁생산의 경우 위탁사업체명
- (6) 유형고정자산의 입차상황, 부지 및 건물면적이 없는 경우 그 사유
- (7) 외국어나 전문용어로 기입한 제품의 설명(원재료, 용도, 성질, 생산공정등)

- (8) 사업체 경영에 있어 전년도와의 큰 변화사항 (시설확장, 생산증대 및 감축, 종업원의 실태 등)
- (9) 다공장기업체의 경우 사업체별 분할작성기준 및 이에 관련된 특기사항
- (10) 기타 그 사업체의 특이한 사항을 기입한다.

나. 조사표〔Ⅱ〕의 작성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본 조사표〔Ⅱ〕는 본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표〔Ⅰ〕과〔Ⅱ〕는 원칙적으로 활동측면을 고려하여 분리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요한다.

(가) 단독업체의 경우

단독업체라 함은 1개의 공장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장소에 본사가 없이 운영되는 사업체를 말하며 본사·공장 구분없이 조사표〔Ⅰ〕만을 작성한다.

(나) 1개의 공장과 별개의 독립된 장소에 본사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공장에 대해서는 조사표〔Ⅰ〕을, 본사에 대해서는 조사표〔Ⅱ〕를 작성한다.

(다) 다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2개 이상의 공장(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말하며 이러한 업체는 조사표〔Ⅰ〕과〔Ⅱ〕로 구분작성하여야 하며 구분요령은 아래와 같다.

① 본사가 산하의 공장과 지역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 :

당해 본사는 조사표〔Ⅱ〕에 의하여 모든 항목에 대하여 분리작성하여야 한다.

② 본사가 산하공장(사업체) 중 1개와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 :

이 경우 본사도 산하공장(사업체)과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여 전체 산하공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리 및 판매, 기타부문은 조사표〔Ⅱ〕에, 당해공장만에 대한 관리부문은 조사표〔Ⅰ〕에 작성한다. 즉, 조사표〔Ⅰ〕과〔Ⅱ〕의 공통항목인 1~11항, 13항은 분리작성하고 12, 14, 15항은 조사표〔Ⅱ〕에 조사하여야 한다.

(라) 신문사, 출판사는 인쇄시설이 없는 사업체라도 조사표〔Ⅰ〕에 의하여

조사해야 한다.

(2) 항목별 작성요령

※ 조사표 [I] 과 공통항목은 조사표 [I] 의 작성요령에 준한다.

12. 기술연구개발비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① 인 건 비					
② 재 료 비						
③ 기술도입비						
④ 위탁기술개발비						
⑤ 기계장치 및 건설비						
⑥ 기 타						
합 계						

기업체에서 '89년 1년간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에 투입한 총비용으로서, 연구개발 종사자의 인건비와 대차대조표의 이연자산계정중 시험연구비, 제조원가 명세서, 판매 및 일반관리비상의 경상시험연구비 및 개발비등을 포함하여 각 세항목별로 구분·작성한다.

- (1) 인건비 : 임금과 급여,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하며 세금, 보험금, 저금등 피고용자 부담금을 사업주가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으로 기입한다.
- (2) 재료비 : 연구활동 수행에 사용한 원료, 시료등 비내구성 소모자재 비용을 기입한다.
- (3) 기술도입비 : 외국으로부터 공업소유권이나 기술의 양수 및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기입한다.
(신기술도입비, 기술용역비)
- (4) 위탁기술개발비 : 각 기업에서 새로운 project 추진시 자체연구 및 개발 능력이 없어 외부연구기관 (대학교, KAIST등) 에 용역을 주는 경우 소요되는 제비용을 기입한다.
- (5) 기계장치 및 건설비 : 연구기기, 기계장치등의 시설구입 및 설치비와 연구소의 건설비등에 투입한 비용을 기입한다.
- (6) 기타 : 연구실 운영에 소요된 건물임차료, 컴퓨터서버비, 여비 및 우편통신비, 기타 연구실 운영비 등을 기입한다.

14. 동일그룹 (소속모기업) 내 계열기업명 및 소재지						
일련 번호	★★기업체번호	기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경제활동 (업종)	비고
01						
02						
03						

- (1) 동일그룹(기업군)에 속한 계열기업을 모두 기입한다.(주력기업은 비고란에 표시)
- (2) 개별사업체(공장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기업체에 관한 사항임에 유의한다.
- (3) 계열기업체 번호는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둔다.
- (4) 주된 경제활동은 주요업종을 기입한다.(예, 건설업, 무역업, 의류제조업등)
- (5) 행이 부족할 경우에는 조사표의 뒷면에 이어서 기입한다.

15. 동일기업내 관할사업체명 및 사업내용					
일련 번호	★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주요 제품명
01					
02					
03					

(1) 종업원수(명)	(2) 제품출하액 (백만원)	(3) 상품매출액 (백만원)	(4) 유형고정자산 연말총액(백만원)	비고

- (1) 경영주체가 동일한 기업체에 소속된 모든 산하공장에 대한 사항을 기입한다.
- (2) 사업체 고유번호는 사업체 명부에 있는 것만 그대로 이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대로 둔다.
- (3) 제품·상품매출액은 구분하여 기입한다.
- (4) 유형고정자산의 연말총액은 각 공장별 유형고정자산의 1989.12.31 현재의 장부상 미상각 잔액을 기입한다.

Ⅳ. 조사표 심사 및 정리요령

1. 일반적인 사항

- (1) 사업체 별로 정확하게 조사표〔Ⅰ, Ⅱ〕를 작성하였는지 검토한다.
- (2) 연관항목의 계수가 일치하는지, 적자경영사유가 타당한지 검토한다.
- (3) 조사표상의 행정구역 분류부호, 일련번호, 사업체 고유번호는 사업체명부와 일치시킨다.
- (4) 누락 및 타 시·도로부터의 전입사업체 고유번호는 시·도에서 일괄적으로 누락 및 전입사업체 명부를 별도로 작성, 경제기획원 지방통계사무소에 통보, 신규번호를 부여받아 기입한다.
- (5) 조사표는 동·읍·면별 사업체 명부상 일련번호 순으로 철하되 본사용 조사표〔Ⅱ〕는 뒷부분에 간지를 넣어 구분 합철한다.

2. 연관항목별 심사요령 (조사표〔Ⅰ〕기준)

가. 조사표〔Ⅰ〕

- (1) 4항 창설년이 '89년이면 16항 (1)연초 재고액은 있을 수 없으며 20항 유형고정자산 (1)신규나 (2)중고 취득액이 있어야 한다.(단, 임차 사용중일 경우에는 없을 수 있음)
- (2) 6항 경영조직이 ①회사법인일 경우에는 7항의 자본금(또는 출자금)이 있어야 하고, 11항 ①자영업주 ②무급가족 종사자는 없어야 한다. 그러나 ③개인일 경우에는 위 자본금이 없고 자영업주가 1명이상 있어야 한다. ④기타 법인은 자본금과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가 모두 없어야 한다.
- (3) 12항 연간급여액은 11항 종업원수란의 조업기간 중 월평균 종업원수와 대비하여 급여액 수준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 ① 1인당 월평균 급여액 = 연간급여액 / 합계 ÷ 월평균 종업원수 ÷ 조업월수
 - ② 월평균 급여액 수준은 일반적으로 13만원 이상 130만원 이하 수준이 타당하나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 확인한다.
- (4) 14항 연간 주요 생산비중 ①재료비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13항, 17항의

제품출하액이 있어야 하고, ⑤위탁 생산비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생산품도 제품출하로 간주하여야 한다.

- (5) 19 항 건설가계정의 ②연간 감소액은 20 항 유형고정자산의 (01) 신규와 (02) 중고(토지취득액은 제외) 취득액과 같거나 더 적어야 한다.
- (6) 8 항 부지 및 건물면적에서 ①부지가 있고 ②건물 밀면적과 ③건물연면적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요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 (7) 13 항 ①제품출하액이 있을 때는 17 항의 품목별 내역이 있어야 하며, ③수탁제조 수입액이 있으면 18 항 수탁제조(임가공) 수입액의 품목별 내역이 있어야 한다.
- (8) 17 항 (1) 품목별 제품 총출하액의 합계는 13 항 ① 제품출하액과, 17 항(3) (4) 품목별 제품 연초·연말 재고액의 합계는 16 항 (1) 연초재고액 및 (2) 연말 재고액의 ① 완제품의 금액과 각각 일치하여야 한다.
- (9) 17 항의 (3) 품목별 제품의 연초재고액은 (1) 품목별 제품의 총 출하액과 (4) 품목별 제품의 연말재고액의 합계보다 많아서 안된다.
- (10) 15 항 부가가치세액은 13 항 합계액의 1~8% 이내가 타당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면세(免稅)업종(연탄, 소금, 전매품, 신문), 0세율(零稅率)을 적용받은 수출업체인가를 확인한다.
- (11) 17 항의 품목별 내역에서 각 품목의 단위당 평균 출하액은 (5) 단위당 출하가격 범위내의 가격이어야 한다. 특히 수량 단위가 지정단위와 달라 정정할 때에는 단위만 정정하지 말고 반드시 수량도 지정단위에 맞게 환산하여야 한다.
- (12) 17 항 (2) 품목별 제품의 수출액은 (1) 품목별 제품총출하액과 같거나 더 적어야 한다.
- (13) 17 항의 품목분류가 「~제품」 「~류」 「기타품목」 등 포괄적으로 분류되어서는 안된다.
- (14) 수입부문인 13 항 합계와 16 항 완·반제품의 재고증감액(16 항 재고액 중 (2)의 ①+②의 금액에서 (1)의 ①+②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비용부문인 14 항 연간주요생산비 합계와 12 항 연간급여액의 합계 및 20 항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액의 합계를 합한 금액보다 커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착오요인이 없는지 확인 보완한다.

(가) 수입부문 (출하액)

- ① 매출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매출원가로 기입한 경우
- ②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 이송한 것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 ③ 직매점이나 보관용 창고로 이송한 것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 ④ 고정자산 계정으로 대체한 것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 ⑤ 건설업등 타산업 활동부문으로 대체된 것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 ⑥ 일부 제품출하분을 누락시킨 경우

(나) 비용부문 (생산비)

- ① 실제생산에 투입된 사용액이 아니고 구입액을 기입한 경우 (미사용 원재료 포함)
- ② 다단계 생산공정에 따라 생산하는 제품의 중간 원가계산 재료가 중복 산입된 경우 (제조원가 보고서상 원재료 타계정 대체액)
- ③ 관세환급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 ④ 조사표에 명시된 6개항목 이외의 비용 (영업외 비용등) 을 포함한 경우

나. 조사표 [II]

- (1) 조사표 [II] 에 의한 조사가 타당한 사업체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 (2) 조사표 [I] 의 심사요령에 준한다.

V. 관련자료 작성요령

1. 요계표 작성

가. 조사가 완료되고 조사표의 심사가 끝나면 조사표에 의거 「요계표」를 작성한다. 요계표는 본 조사의 자료가 전산처리과정을 거쳐 자료를 수준 점검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필요한 사항을 조기 집계하여 신속하게 자료의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집계표이다.

나. 요계표는 조사표 [I]에 대하여 일련번호 순으로 기입한다.

다. 유고사업체는 ①②③ 및 ⑦란만 기입하고 ⑨~⑬란에는 유고년월·내용을 적색으로 기입한다.(적색으로 기입된 유고사업체는 소계·합계에 포함치 않는다)

라. 요계표 작성 및 제출

동·읍·면에서는 사업체별, 구·시·군, 시·도에서는 동·읍·면, 구·시·군별 요계표를 각각 작성하여 최종 시·도에서 취합 경제기획원에 제출한다.

마. 요계표 기입요령

1) 동·읍·면 작성시

행정구역 분류부호 및 행정구역명

사업체 명부상 해당·동·읍·면 부호를 기입하고 시·도, 구·시·군, 동·읍·면 명칭을 기입한다.

사업체 고유번호

사업체 고유번호는 사업체 명부상의 기재된 번호를 기입한다. 새로 발견된 명부상의 누락 사업체와 전입 사업체중 고유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기입하지 않는다. (누락, 전입 사업체 고유번호는 시·도에서 부여)

사업체 명부상 일련번호

사업체 명부상의 기재된 번호를 기입하고 새로 발견된 명부상 누락 사업체나 진입 사업체의 경우는 각 동·읍·면 별로 사업체명부의 제일 끝에 배열하여 계속해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사업체 명부·요계표·조사표철의 사업체별 순서가 일치되도록 한다.

사업체명

조사표에 기입된 사업체명을 기입하고 이미 배부된 사업체 명부상의 사업체명과 조사표상의 사업체명이 다를 경우에는 조사표에 기입된 명칭을 기준으로 한다.

산업분류

- 조사표 17항(연간제품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과 18항(수탁제조 수입액의 품목별 내역)의 품목분류번호 중 주된 산업분류(품목번호 중 앞 5자리의 합계가 가장 큰 산업)를 기입한다.(조사표 상단의 “산업분류”와 같음)
-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산업용 장비 등 수리업체는 수리품의 주된 산업에 따라 분류 기입한다.

※ 대표적인 수탁제조(임가공)산업

- 임가공 도축업 31191
- 임가공 곡물도정 및 제분업 31192
- 염색업 32131 ~ 32139 상업인쇄업 34221 ~ 34229
- 제책업 34231 도금업 38144

8항 부지 및 건물면적

조사표 8항의 ①부지면적과 ③의 건물연면적을 각각 기입한다.

11항 종업원수

- 조사표 11항 조업기간 중 월평균 종업원수의 합계를 기입한다.
- 월평균 종업원수가 5인 미만일 때에는 12월말 현재 종업원수(5인 이상)를 기입한다.

12 항 급여액 합계

조사표 12 항 연간급여액의 합계를 기입한다.

13 항 연간 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 합계

조사표 13 항 연간출하액(매출액) 및 기타 수입액의 합계를 기입한다.

14 항 생산비 합계

조사표 14 항 연간주요생산비의 합계를 기입한다.

16 항 재고액

조사표 16 항 재고액 중 ① 완제품과 ② 반제품 및 재공품의 합계액을 연초, 연말 재고액으로 각각 구분 기입한다.

20 항 유형고정자산의 연말총액

조사표 20 항 유형고정자산의 (05) 연말총액의 합계를 기입한다.

2) 시·도, 구·시·군 작성시

행정구역 분류부호 및 행정구역명

행정구역 분류부호는 시·도 및 구·시·군 분류 부호를 기입하고 행정구역명은 시·도, 구·시·군 명을 기입한다.

사업체 고유번호 및 사업체명

- 본란은 구·시·군에서는 동·읍·면 명과 행정구역번호를 시·도에서는 구·시·군의 명칭과 행정구역번호를 기입한다.
- 동·읍·면에서 요계표 작성시 기재할 수 없는 누락 및 전입사업체에 대한 고유번호는 최종적으로 시·도에서 각 지방통계사무소와 협의, 보완 기입한다.

사업체 명부상 일련번호

본란은 구·시·군에서는 동·읍·면별 사업체수를, 시·도에서는 구·

시·군별 사업체수를 기입한다.

기타 항목

이하 기타항목은 구·시·군에서는 동·읍·면별 합계를, 시·도에서는 구·시·군별 합계를 이기하여 작성한다.

2. 조사용 사업체명부정리 및 보완

가. 사업체 수의 우선확정

조사담당자는 실사전에 관할구역내의 모든 조사대상 사업체를 빠짐없이 현장 방문하여 명부정리 및 누락사업체의 보완을 완료함으로써 조사대상 사업체를 확정하여야 한다.

나. 내용변동 사업체 처리

사업체 명칭이나 대표자(소유주)변경, 동일 행정동·읍·면 내에서의 소재지 변경 등 단순히 사업체 명부상 내용의 일부분만 변경된 경우는 유고사업체로 처리하지 않고, 변경된 부분만 정정한다.

다. 유고사업체 처리

1) 조사표를 작성할 수 없는 사업체는 유고사업체로 처리하되 사업체를 삭제하지 않고, 명부상 유고년월, 유고부호, 비고란의 해당 위치에 유고내용을 구분하여 기입한다.

유고년월 : 유고발생 년월 (예시, '89년 9월 → 8909)

유고부호 : 유고사항에 해당되는 번호 기입 (예시, 폐업 → 08)

비 고 : 구체적인 유고 사유를 기입하고, '전출'인 경우 전출지, '대상외'인 경우 실제의 업종·영업형태, '조사불능'인 경우 조사처 못한 이유, '명부상 중복'인 경우 중복된 사업체의 일련번호도 기입한다.

2) 유고 부호 및 종류

부 호	02	03	04	06	08	09	10	12	14
내 용	전출	휴업	기준 미달	소재 불명	폐업	대상외	조사 불능	명부상 중복	기타

- ① 기준미달 : “ '89년 12월말 현재 종업원수 ” 및 “조업기간 중 월평균 종업원수” 모두 4인 이하인 사업체
- ② 대 상 의 : 광업, 제조업 사업체가 아닌 타산업(건설업·운수업 등)인 경우
- ③ 휴업과 폐업의 구분 : 생산설비의 완전 철거 등으로 재가동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만 폐업으로 정리, 가동은 하지 않으나 생산설비가 남아 있다면 휴업으로 처리해야 함.
- ④ 명부상 중복 : 사실상의 1개 사업체가 명부에 2개 이상으로 기입된 경우.

3) 전출사업체의 처리(행정구역 착오로 인한 경우도 동일 요령으로 처리)
 동·읍·면, 구·시·군, 시·도는 관내의 전출 사업체를 파악하여 해당 동·읍·면(동일구·시·군내의), 구·시·군(동일시·도내의), 시·도로 통보하고 차 상급기관에 보고한다.
 구·시·군, 시·도는 전입된 사업체 및 관내이전 사업체가 빠짐없이 조사되도록 조치하고 조사표류 접수시 조사여부 및 고유번호 이기 상태등을 확인한다.

라. 추가(전입, 누락 및 신규) 사업체 등재

추가사업체에 대하여는 조사용 사업체 명부에 등재함과 동시에 별도의 추가 및 전출사업체 명부도 작성하여 상급기관에서 고유번호 확인 기입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1) 추가사업체는 전입, 누락, 신규업체의 경우에 발생한다. ① 전입사업체는 '89년 중 조업실적이 있는 사업체로서 타 행정구역에서 전입되어 온 경우이며, ② 누락사업체는 역시 '89년 중 조업실적이 있는 사업체로서 명부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이고, ③ 신규사업체는 '90년도에 신규창설한 경우이다. 이러한 사업체는 빠짐없이 발굴하여 명부 하단 여백이나 간지를 첨부하여 양식에 따라 등재한다.

특히, 전입사업체의 경우 비고란에 전입전 소재지를 필히 기입하고 행정구역 착오로 인한 경우도 전입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전입과 누락사업체는 조사표작성을 하여야 하며 신규사업체는 사업체명부에만 등재한다.

2) 사업체 고유번호

전입사업체의 경우는 통보된 자료에 의하고 누락 및 신규 사업체의 고유번호는 해당 경제기획원 통계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시·도에서 기입한다

3) 일련번호

명부에 이미 부여된 일련번호 맨끝 번호에 이어 계속해서 부여한다.

4) 전입사업체의 유고발생

일단 전입으로 추가 기입한 후 유고 처리한다. 부호는 최종 유고 번호를 기입하고 사유를 명기한다.

5) 변동 부호

전입의 경우 '01', 신규의 경우 '05', 누락의 경우 '13' 을 명부의 유고 부호난에 맞도록 기입한다.

마. 행정구역 개편 및 착오에 의한 타 동·읍·면 소재 사업체 처리

행정구역 개편(시 승격지역, 분동지역)으로 인하여 명부상 실제 행정구역이 다른 사업체가 혼재한 경우에는 구·시·군에서 개편된 행정구역별로 조정 배부하고, 그외 착오 등으로 다른 동·읍·면 소재 사업체가 등재된 경우는 전출로 처리하되 명부를 발췌 기입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바. 정리 및 보완요령

- 1) 타 사업체에 착오 기입하거나 해당란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2) 변동사항의 정정은 변경된 부분만 횡선으로 긋고 상단여백에 정정한다.
- 3) 전입·누락, 신규등의 사업체 추가는 흑색(청색)을 사용한다.
- 4) 유고사업체는 적색으로 유고년월과 유고부호, 비교란만 정리한다.

[참 고]

명부항목 중 “조직”과 “구분”은 다음 사항을 표시한 것임.

- | | | | |
|--------|---------|---------|----------------|
| (경영)조직 | 1. 회사법인 | (사업체)구분 | 1. 본사(공장과 분리된) |
| | 2. 기타법인 | | 2. 본사·공장(통합) |
| | 3. 개인 | | 3. 공장(본사와 분리된) |
| | | | 4. 단독업체 |

3. 추가 및 전출사업체명부 작성

가. 전입(01) 과 전출(02), 신규(05), 누락(13) 사업체를 대상으로 동·읍·면에서 작성.

나. 사업체 고유번호

1) 전입사업체

동일 구·시·군내에서 동·읍·면간에 전출입한 경우 동·읍·면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동일 시·도내에서 구·시·군간에 전출입한 사업체의 경우는 시·도에서 이전 전 소재지의 사업체 명부에서 해당 사업체에 대한 고유번호를 찾아 이기하여야 한다.

2) 누락 및 신규사업체

새로 발견된 누락 및 신규업체는 시·도에서 일괄 기입한다. 이때, 시·도에서는 본 추가사업체 명부를 취합하여 해당 「경제기획원 지방통계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다. 생산품명

조사표상의 「제품명」란의 주요생산품명을 제품출하가 없는 수탁생산(임가공) 업체는 임가공품목을 각각 1~2개 기입

라. 구 분

전입, 전출, 누락, 신규의 해당란에 “○” 표 한다.

마. 비 고

전입(전출) 사업체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입전(전출후) 소재지를 상세하게 기입한다.

4. 조사표 접수대장 작성

가. 작성기관

구·시·군, 시·도

나. 기입요령

1) 행정구역명

구·시·군 작성시는 동·읍·면명을, 시·도 작성시는 구·시·군명을

기입한다.

2) 조사표수

조사대상 사업체 중 유고사업체를 제외한 실제로 조사표가 작성된 사업체의 조사표수를 [I] [II]로 구분 기입한다.

3) 조사대상 사업체수

명부상 대상 사업체와 누락, 전입 등 추가사업체수를 합한 수이며 동·읍·면별 사업체 명부표지상의 대상 사업체 수의 합과 같다.

4) 유고 사업체수

사업체 명부상의 사업체 중 유고 사업체로서 유고 유형별로 구분 기입한다.

Ⅵ. 조사요령 요약 (〔I〕표기준)

1. 조사전반에 관한 사항

- (1) 조사는 조기에 착수하여 기간내에 완료한다.
- (2) 본 조사는 조사항목이 복잡하므로 대규모 사업체는 자계식(사업체에서 직접 작성), 소규모 사업체에는 타계식(조사원의 면접조사 작성) 중심으로 조사하는 것이 편리하다.
- (3) 조사 순서는 본사등 타 지역에서만 조사표 작성이 가능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부하고 난 다음, 자계식으로 작성이 가능한 사업체에 조사표를 배부하고 그 다음에 면접조사 가능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기 배부 사업체의 조사표를 회수한다.
- (4) 특히 「17항 연간 출하제품의 품목구분」에 관하여는 조사표 배부시에 사업체 담당자와 사업체 명부상의 전년조사 품목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현행 산업 및 품목분류 기준에 적합하게 구분, 기입하도록 한다.
- (5) 본 조사표 작성 담당부서는 사업체의 경리, 또는 기획부서이며, 부록1 「결산서 항목과 조사항목 비교표」를 참조한다.
- (6) 본 조사의 1차 우선순위는 품목별 출하액, 재고액, 생산비 등이다.
- (7) 본 조사는 조사단위를 개개 사업체(공장 또는 광산)로 하고 있으므로 본사에서 산하 사업체분을 작성할 때는 각 사업체별로 조사표를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p.17 참조)
- (8) 품목분류번호 및 수량단위는 반드시 별책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 의한다.
- (9) 사업체 명부상에 등재 누락된 사업체도 발굴, 조사하여야 한다.
- (10) 조사표 내용을 수정할 때에는 수정전의 기입내용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수정한다.(칼로 긁거나 수정액 사용 불가)

2. 조사표 항목별 작성요령

- (1) 본 조사항목의 개념과 사업체의 사용개념이 상이할 경우에는 본 조사개념에 의하여 작성한다.
- (2) 조사표상의 행정구역 분류번호, 일련번호, 사업체 고유번호, 기업체번호, 그룹번호는 사업체명부와 반드시 일치하도록 기입한다.

- (3) 금액단위는 각 항목별로 다르므로 「자리수」에 착오가 없도록 하며, 단위미만은 4사5입하거나 유사항목에 포함 기입한다.
- (4) 각 항목별 연관계수가 일치하도록 기입한다.
- (5) 일고 종업원은 연인원을 기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평균 종업원수로 환산 기입한다.

3. 산업 및 품목분류 요령

- (1) 산업분류는 주된 산업을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모든 품목의 분류번호는 8 단위로 기입한다.
- (2) 단위가 「※」인 품목은 조사표의 “수량단위”란에는 「※」로, “수량”란에는 수량과 사업체 사용단위를 기입한다. (실제 품목분류 착오인 경우 재조사를 방지하기 위함)
- (3) 수량은 반드시 지정된 단위로 조사하고 규격 또는 품위의 차이가 큰 품목은 가급적 분리하여 기입하며 그 규격 또는 품위를 명시한다.
- (4) 분류의 일반원칙은 ①원재료, ②성질, ③용도, ④생산과정에 따라 품목분류번호가 다르므로 유의한다.
- (5) 품목분류번호를 찾기 어려울 때는 품목명칭을 「가, 나, 다」순으로 배열한 「산업 및 품목분류표」의 부록인 「색인표」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 (6) 산업분류 및 품목분류번호는 사업체명부의 분류번호를 참고하여 「산업 및 품목분류표」책자에 의해 분류 기입한다.

4. 조사표 검토요령

- (1) 조사 누락된 사업체가 없는지 검토한다.
- (2) 조사대상 사업체의 산업활동 유형에 따라 조사표〔Ⅰ〕 또는 〔Ⅱ〕를 바르게 선택하여 작성하였는지 검토한다.(조사표 배부방법 참조)
- (3) 조사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검토한다.
- (4) 각 항목의 연관계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5) 「Ⅳ. 조사표 심사 및 정리요령」과 부록2 조사표〔Ⅰ〕의 심사요령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유의하여 검토한다.

< 부록 1 >

사업체 결산서 항목과 조사항목 비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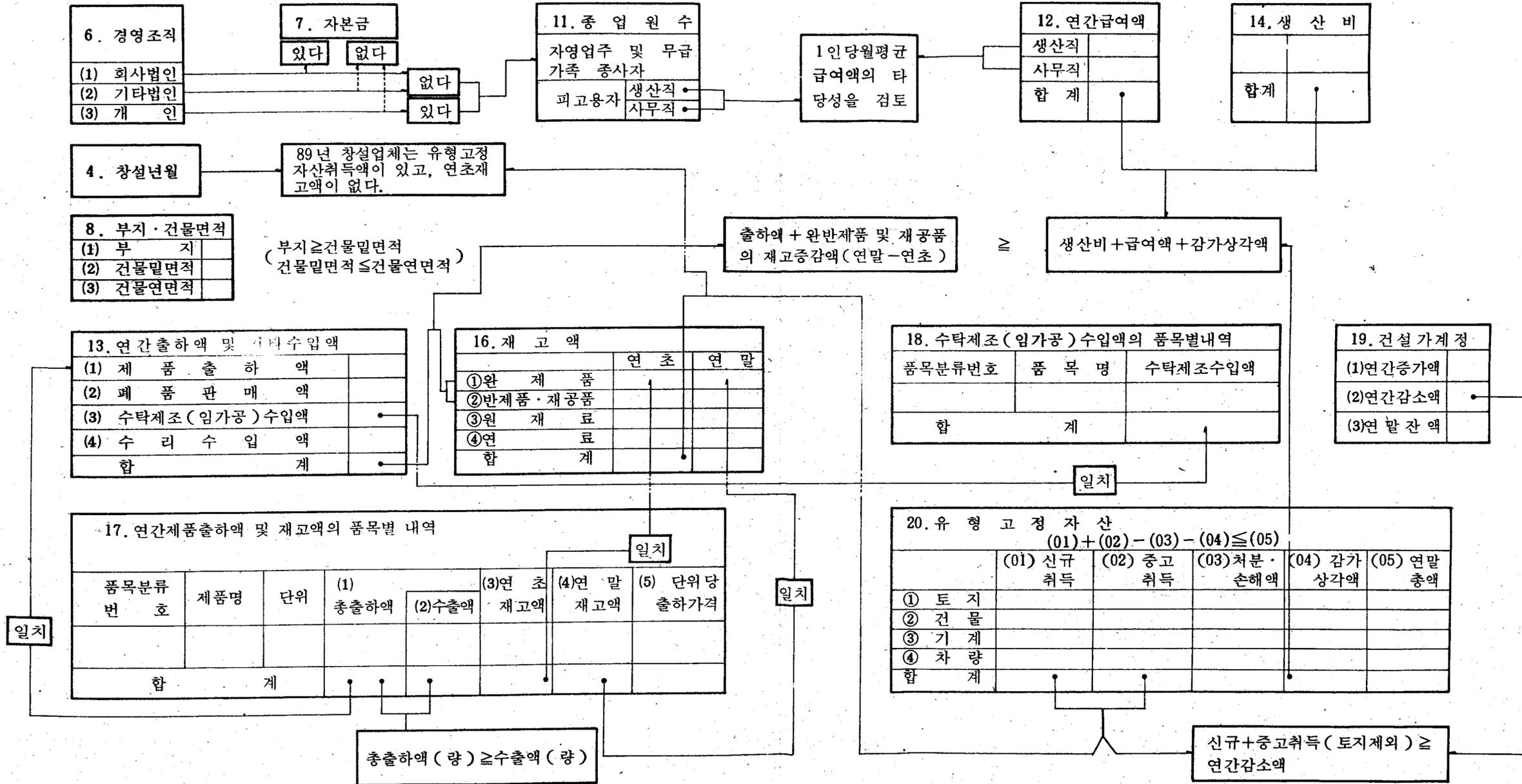
사업체 결산서 항목	조 사 항 목
I. 대차대조표	
1. 유동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좌자산 — 채고자산 — 기타유동자산 	16 항 연초·연말 채고액
2. 고정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고정자산 — 무형고정자산 	20 항 유형고정자산
3. 이연자산	
4. 자기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 잉여금 	7 항 자본금
5. 부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부채 — 유동부채 	
II. 손익계산서	
1. 매출액 (매출원가+매출이익).....	13 항 출하액
※ 매출원가=당기제품제조원가+ 기초재고액-기말재고액	※ 재고액=완제품재고액+반제품· 재공품재고액
① 제품매출액	13 항 ① 제품출하액
② 상품매출액	13 항 ⑤ 상품매출액
③ 폐품판매액	13 항 ② 폐품판매액
④ 수탁제조 (임가공) 수입액	13 항 ③ 수탁제조 수입액
⑤ 수리수입액	13 항 ④ 수리수입액
2.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① 보수·급료·임금·수당·상여금...	12 항 급여액 (사무직)
② 감가상각비	20 항 유형고정자산(04)감가상각액
③ 용수비·전력비·연료비·외주	

사업체 결산서 항목	조사 항목
가공비·수선비	14 항 생산비
④ 기타비용	
3. 영업이익 = 매출이익 -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4. 영업이익	
① 수입입대료	13 항 출하액 ⑦ 임대수입액
② 기타 영업이익	
5. 영업외비용	
6. 경상이익 = 3 + 4 - 5	
7. 특별이익	
8. 특별손실	
9. 법인세 공제전 순이익 = 6 + 7 - 8	
10. 당기순이익 = 9 - 법인세·사업소세· 주민세·방위세 등	
Ⅲ. 제조원가보고서	
1. 재료비 (원재료, 부재료, 보조재료비)	14 항 생산비
2. 노무비 (급료·임금·수당·상여금)	12 항 급여액 (생산직)
3.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4. 제조비용	
① 전력비	14 항 생산비 ③ 전력비
② 수도료	" ④ 용수비
③ 광열비, 연료비	" ② 연료비
④ 감가상각비	20 항 유형고정자산 (04) 감가상각액
⑤ 외주가공비	14 항 생산비 ⑤ 위탁생산비
⑥ 수선비	14 항 생산비 ⑥ 수리유지비
⑦ 기타 제조비용	
5. 당기총제조비용 = 1 + 2 + 3 + 4	
6. 타계정 대체액	
7. 당기제품 제조원가 = 5 - 6 + 기초재 공품재고액 - 기말재공품재고액	

사업체 결산서 항목	조사항목
IV. 부속명세서	
1. 임금대장·근무상황표	11 항 종업원수
2. 상품매출명세서	13 항 ⑥ 상품매출원가
3. 재고자산명세서	16 항 재고액
4. 제품매출명세서	17 항 연간제품의 품목별 출하액 (량)
5. 제품수불명세서	17 항 품목별 재고액 (량)
6. 고정자산명세서	20 항 유형고정자산
	19 항 건설가계정
7. 감가상각 충당금 명세서	20 항 유형고정자산 (04) 감가 상각액

조사표 I 심사요령도

< 부록 2 >



1989년 광공업통계조사용
산업 및 품목분류표
(광업 및 제조업부문)

경 제 기 획 원

목 차

I. 이용상 유의사항.....	7
II. 산업별 품목분류시 유의사항.....	12
III. 산업 및 품목분류 (광업 및 제조업부문).....	27
대분류 2. 광업.....	29
중분류 21. 석탄 광업	31
중분류 23. 금속 광업	32
중분류 29. 기타 광업	33
대분류 3. 제조업.....	35
중분류 31.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36
311~312. 식료품 제조업	36
313. 음료품 제조업.....	42
314. 담배 제조업.....	43
중분류 32.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44
321. 섬유 제조업.....	44
322. 의복 제조업, 신발 제외.....	49
323. 가죽, 대용가죽 및 모피제품 제조업, 신발과 의복 제외.....	51
324. 신발 제조업, 성형고무 또는 프라스틱 신발 제외.....	52
중분류 3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포함	53
331. 나무 및 클크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53

332. 가구 및 장식품 제조업, 금속계 제외.....	55
중분류 34.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	57
341.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7
342. 인쇄, 출판 및 관련산업.....	59
중분류 35.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1
351. 산업용 화합물 제조업.....	61
35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67
353. 석유 정제업.....	70
354.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	70
355. 고무제품 제조업.....	71
356. 달리 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2
중분류 3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석유 및 석탄제품 제외...	74
361. 도기, 자기 및 토기 제조업.....	74
36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74
36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75
중분류 37. 제 1 차 금속산업	78.
371. 제 1 차 철강산업.....	78
372. 제 1 차 비철금속 산업.....	80
중분류 38. 조립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제조업	83
381.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외... 83	83
382. 기계 제조업, 전기 제외.....	83
383.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98
384. 운수장비 제조업.....	104
385. 의료, 광학, 전문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106	106

중분류 39 . 기타 제조업	111
390 . 기타 제조업	111

부 록

1. 품목 색인표	119
2. 도량형 단위 환산표	191
3. 특별소비세와 주세의 과세품목 및 세율	193

품목분류 유의사항

I. 이용상 유의사항

II. 산업별 품목분류시 유의사항

1. 중분류별 품목의 특기사항

2. 중분류별 수량단위 해설

I. 이용상 유의사항

1. 품목분류표의 내용

「산업 및 품목분류표」는 광공업부문 각 사업체의 산업을 지정하고, 생산 및 출하제품에 대하여 통일된 분류를 부여하기 위해 체계화한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5차개정, 84.1.26 경제기획원고시 제 71호)」 중 광업 및 제조업의 세세분류별 업종별로 계열품목을 분류한 것이다.

참고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산업”

- | | |
|---------------------|-------------------------|
| 1.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 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
| ☆ 2. 광업 | 7.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 ☆ 3. 제조업 | 8.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
| 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9.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 5. 건설업 | 0. 분류불능산업 |

2. 본 분류표의 산업 및 품목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품목분류
광업	3	3	10	25	92
제조업	9	28	105	522	3,089
계	12	31	115	547	3,181

3. 분류기준

본 분류는

- 1)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
- 2) 제품의 특성
- 3) 제품의 용도
- 4) 생산과정, 기술 및 조직 등에 따라 분류되었다.

4. 분류체계의 구조

1) 산업분류

본 분류는 대분류(1자리 숫자), 중분류(2자리), 소분류(3자리), 세분류(4자리), 세세분류(5자리)의 5단계 분류체계이며, 분류기호는 10진분류법을 사용하였다.

2) 품목분류

각 세세분류마다 3자리의 숫자(111~999)를 부여하여 품목을 분류하였으며, 동일세세분류내에서 729종까지 품목분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3) 각 분류단계에서는 1~9까지 부호를 사용하여 각 분류를 9개 항목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분류에 사용된 부호중 "0"의 부호는 "더이상 분류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9"의 부호는 "기타 또는 잔여항목"을 의미한다.

5. 용도

본 「산업 및 품목분류표」는 조사표 I (공장용)의 18항 「연간제품 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과 19항 「수탁제조(외가공) 수입액의 품목별 내역」란의 품목분류(8자리)부호를 기입하고, 수량단위를 지정, 기입하기 위하여 산업별로 구분 작성한 것이다.

6. 분류요령

1) 조사표에 품목분류부호를 기입할 때에는, 우선 제품의 원재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중분류산업(2자리)를 결정한다.

2) 이어, 제품의 특성,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소, 세세분류까지 확인이 되면, 해당 세세분류부호(5자리)에 이어 품목부호(3단위 숫자)를 기입한다.

3) 또한, 수량은 품목분류표상의 지정단위에 맞게 조사하여야 하며, 사업체 사용단위와 조사지정단위가 상이할 경우에는 조사지정단위로 환산 기입하여야 한다(품목분류표에 부록으로 환산표 첨부).

- 4) 지정단위가 「※」표인 것은 수량조사를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
 되 착오분류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이미 조사된 수량은 삭제하지 말
 고 그대로 둔다.
- 5) 품목분류 예시

(조사표 발췌)

산업및품목분류				★	단 위	수 량	금 액
산업분류	품목번호						
313	1	111	1111		㎡ 才	33 9,900	0000

(품목분류표 발췌)

분류 부 호	수량단위	산업 및 품목명
33111		일반제재업 1㎡ = 300才
1		소할재
111	㎡	육송소할재
112	㎡	마송소할재

7. 기 타

- 1) 사업체명부상의 품목명 및 품목분류번호 참고시 유의사항

가. 17항의 품목란은 사업체명부상의 품목명을 참고로 하여 조사를 하
 면 용이하다.

나. 사업체명부상의 품목명칭은 실제로 사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
 (품목)과 상이할 수 있으며, 명부상에 기재된 품목이외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업체에서 생산품목을 변경하는

등과 같은 이유때문으로(사양품목대신 신규개발품목이나 고신장 및 장려품목으로 대체) 이 경우에는 사업체에서 실제로 생산하고 있는 모든 제품의 명칭을 기입하며 품목번호는 반드시 산업 및 품목분류표와 대조확인후 기입토록 하여야 한다.

다. 사업체명부상의 품목분류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 품목으로 분류된 것은 금번 조사에서는 품목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조사표에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 품목으로 기입하지 말고 구체적 품목명칭을 기입한다.

라. 매월 조사하는 사업체(사업체명부상에 *표시가 되어 있는 사업체)는 월별 조사내용과 연별 조사내용이 근접하는 것이 일반적 인 바 내검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 조사표 I (17 항) 작성시 유의사항

가. 제품의 수가 많은 대기업체는 17 항의 란이 부족하므로 동 양식을 첨부 기재한다.

나. 품목명칭을 기입할 때에는 포괄적인 명칭을 기입해서는 안된다 (예: 목재, 식품류, 기계류, 가전제품 등)

다. 산업 및 품목분류상 동일한 제품(품목)을 필요이상 세분하지 말아야 한다(크기별로 나누는 경우 등).

라.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하지 않고 기타 품목만으로 묶어 분류하거나 또한 기타 품목의 출하액이 출하액 합계액에 비해 과다하게 분류해서는 안된다(5%이내가 타당).

마. 수량단위의 환산은 개별단위를 환산한 후 총물량을 파악한다.

바. 수량단위를 환산하여 수정할 때는 출하량, 수출량, 재고량도 동시에 수정한다.

사. 「산업 및 품목분류표」의 지정단위가 ‘천배수(千倍數)’인 것에 유의한다. <예> kg→㎏, l→kl, m→천 m, 매→천매, 개→천개

아. 「산업 및 품목분류표」의 품목분류가 ‘임가공’으로 지정된 품목은 18항의 「수탁제조수입액의 품목별 내역」에만 사용하고 17항의 「제품출하액의 품목별 내역」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 임가공산업 및 품목

3119 식료품 임가공업, 3422 상업인쇄업,

3213 섬유표백·염색 및 임가공업, 34231100 제책업,

34239900 광고수입, 38143100 금속열처리업, 38144100 도금업,

381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열처리·표면처리업

3) 보안품목의 품목분류

국가안보상 보안유지가 필요한 품목(5개 품목)은 세분하지 말고 품목 분류번호와 명칭은 [보기]와 같이 위장품목의 번호와 명칭에 따라 위장기입하여 특수품목이 조사표상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

※ [보기 : 조사요령서 p13 : 방위산업사업체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 참조]

4) 품목 색인표 사용방법

가. 이 표는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 기재된 전 조사대상품목을 가, 나, 다순으로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나. 그러나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제품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기준으로 배열하였고, 기타 품목 등은 제외하였다.

[보기]	승용차스
	중형승용차	자동차스
		중형승용차스

다. 색인표에서 품목을 찾을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의 분류내용을 확인한 후 기입한다.

라. 색인표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품목분류의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는 본문의 내용에 따른다.

II. 산업별 품목분류시 유의사항

1. 중분류별 품목의 특기사항

대분류 2. 광업

중분류 21~29. 광업

1. 제련하지 않은 원광을 분류한다.
2. 혼합광석의 경우 함유량이 가장 많은 광석에 분류한다.
3. 광업에 있어서는 매월 실시하는 월간조사(동태)와는 달리 기준품위로 환산치 않고 채굴한 광석상태의 물량을 조사한다.
4. 광산에서 자체 제련시설을 갖추고 자가 제련하는 경우에는 중분류 36(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7(제1차 금속제품 제조업)에 분류한다.
5. 29020(화학 및 비료원료용 광물 광업)은 그 성분을 함유한 광물 및 광물질을 발굴하는 업(業)을 말하므로 화학제품과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6. 소금에는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드는 천일염과 이것을 식용으로 하기 위한 정제염, 화학원료로 쓰이는 화학용 소금으로 구분되므로 이들은 각각 29040100(천일염), 31212300(정제소금) 및 35299135(공업염)에 각각 분류한다.
7. 활석분, 납석분, 석회분, 석고분, 장석분, 규석분 등과 같이 광석을 마쇄하여 제품화한 것은 36999(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에 분류한다.

대분류 3. 제조업

중분류 31.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311~312] 식료품 제조업

1. 입가공도축업 (31191), 입가공곡물도정 및 제분업 (31192), 입가공식품냉동업 (31193), 입가공착유 (31194), 기타입가공 (31199)은 대개 수수료를 받고 가공처리하므로 가공업만 파악한다.
2. 아이스크림 (31123100)에는 젓 (우유등)을 주원료로 제조된 것만 포함하고 우유를 기저로 하지않는 얼음과자 (아이스바, 하드 등)는 병과 (31174100)로 조사한다.
3. 31152 (식물성유지 제조업)과 31153 (식용유 정제업)은 동일 명칭이더라도 기름만 추출하는 경우는 31152, 추출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또는 구입한 기름을 더 가공, 정제 및 경화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기름은 31153에 각각 분류한다.
4. 음료품 (주류, 청량음료)는 단위가 *kei*이므로 사업체에서 상자 (C/S)나 본 (병), Can 등의 단위를 사용하고 있을 때는 환산해야 한다.

중분류 32.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321] 섬유 제조업

1. 섬유는 사용원재료에 따라 품목분류가 다르므로 모, 면, 인조 섬유, 견, 마 등의 구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혼방은 그 비율에 따라 구분하되 혼방제품 (사·직물)의 품목번호가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우선하는 섬유의 제품에 분류한다.

2. 직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체에서 야아드(yd)를 사용하는 데 yd는 길이의 단위이므로 폭(inch)을 파악하여 넓이를 구하여 m^2 로 단위 환산해야 한다.

3. 혼방사와 혼방직물의 기준량 비율

가. 면과 인조섬유(화학섬유)의 혼방

① 면과 1종의 타화섬과 혼방일 경우, 기준 비율은 50:50으로 하며, 50:50과 같이 동율인 경우에는 혼방된 화섬명에 따라 우선적으로 분류한다.

② 면과 2종 이상의 타섬유와 혼방일 경우, 중량비율이 가장 큰 섬유명에 따라 우선적으로 분류하고 동율일 때는 혼방합성섬유, 아세테이트, 비스코스순(이는 가격순)에 의하여 분류한다.

나. 모와 화섬의 혼방

① 기준중량비율은 60(화섬):40(모)으로 하고, 기준중량비율일 때는 모를 우선적으로 택한다.[예: 혼방소모사(32113215), 혼방소모직물(32122211)]

② 모와 2종 이상의 타섬유와 혼방일 경우에는, 혼방 비율이 가장 큰 섬유명을 우선적으로 택하고 동율일 때에는 모, 합성섬유, 아세테이트, 비스코스순에 따라 우선적으로 호칭한다.

단, 모가 40%미만일 경우에 한함.

다. 견과 화섬의 혼방

① 기준 중량비율을 30[견]:70(화섬)으로 하고 기준중량비율일 때는 견을 채택한다.[예: 견혼방직물(32123200)]

② 견과 2종 이상의 타화학섬유와 혼방일 경우에는 중량비

율이 가장 큰 것을 택한다. 단, 견이 30%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③ 견과 모의 기준 혼방비율은 40(견) : 60(모)으로 하고 동율일 때는 견을 채택한다.

라. 2종이상의 화섬혼방

등분을 이상을 점한 섬유명에 따라 분류하되 동율일 경우에는 합성섬유, 아세테이트, 비스코스순으로 분류한다.

4. 품목구분

가. 톱·스리버, 로빙(32114111)등은 32로, Staple fiber, Tow는 35142, 35143으로 각각 분류한다.

나. 인견사, 비스코스사등은 재생섬유 방직사(32114212)로, 레이온, 인견직물 등은 재생섬유직물(32123511)로 분류한다.

다. 면내의, 모내의, 모양말, 면양말, 면장갑, 모장갑, 쉼타와 같이 편직된 의복은 3215(편조업)에, 구입한 직물이나 가죽등을 원재료로 하여 재단 봉제한 기성복은 3222(의복제조업)에 분류한다.

라. 편직장갑(모장갑, 면장갑, 인조섬유장갑 등)은 32154에, 편직되지 않은 각종 직물, 가죽 모피등으로 제조된 장갑은 32228에 분류하고, 완전히 고무로 된 장갑은 35593로, 경기용장갑(권투글러브, 야구글러브 등)은 39032116, 39032117로 분류한다.

마. (담배)필터는 39094에 분류한다.

바. 섬유리본, 섬유테이프 등은 32125100(세폭직물)에 포함되나, 반창고, 밴드등의 의료용은 의피용약(35224118)에 분류한다.

[322] 의복 제조업, 신발 제외

1. 코트, 양복, 양장복, 셔츠, 기타 정장복은 마춤복(3221)과 기성복(3222)에 따라 각각 분류가 다르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 의복은 용도에 따라 남자용, 여자용, 소아용에 따라 분류가 다르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23] 가죽, 대용가죽 및 모피제품 제조업, 신발과 의복 제외

1. 가죽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본 산업 및 품목분류표의 지정단위와의 환산관계는 아래와 같다.
 - 사방 10인치 1평 ≒ 0.0645㎡
1매 ≒ 30 ~ 40평, 1매 ≒ 3.7㎡ (40평)
 - 사방 8인치 1평 ≒ 0.0413㎡, 1매 ≒ 30 ~ 40평
1매 ≒ 3.3㎡ (30평)

[324] 신발 제조업, 성형고무 또는 프라스틱 신발 제외

1. 32401의 구두 및 단화등 가죽신 제조업은 봉제를 위주로 한 것이고 32402의 특수용 신발제조업은 작업화, 동산화, 경기용신발등을 말한다.
2. 갑피가 가죽 또는 직물로 되었으나,창이 경화고무 또는 프라스틱으로 되고 고무신 제조 사업체에서 만든 경우는 35591(고무신 제조업)에 분류한다.
3. 운동화는 고무신 생산과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되는 품목이므로 35591에 분류되고, 프라스틱신발은 35607에 분류한다.

중분류 3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포함

1. 33111 (재제업)은 원재료와 제재 형태에 따라 육송, 미송, 침엽수, 나왕, 활엽수와 소할재, 각재, 판재로 분류되므로 유의한다.
2. 수량단위는 m^3 인바, 사업체에는 才(사이)로 거래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하여 지정단위인 m^3 로 환산 기입한다.
즉, 1才 \approx 0.0034 m^3 1 m^3 = 300才
3. 가구관련 제품은 사용한 원재료에 따라 일반 목재가구는 33201에 금속제가구는 38121에 플라스틱가구는 35604에 분류한다.
4. 가구 관련제품은 제품의 성질에 따라 구분되므로 구체적 명칭(의자, 책상, 서가, 장식장, 장농, 화장대, 식탁, 상, 찬장, 침대, 캐비닛, 신발장, 문갑등)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포괄적으로 분류해서는 안된다.

중분류 34.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1. 34119111 (골판지원지)는 라이너지(A원지, B원지 또는 K원지)와 중심원지(S원지)를 포함하며, 34193116 (골판지)는 골판지원지에서 만들어진 원단이며, 34121100 골판지 상자는 골판지로 만든 것이므로 각각 구분하여 분류한다.
2. 34193113 (도포 또는 침착지)는 접착지, 에나멜지, 투사지등을 포함하며, 전자복사지인 감광지(인화지)는 35296113에 분류한다.
3. 341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은 사업체의 거래단위인 연, 롤, 권 등으로 조사되는 예가 많으므로 지정단위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 1연 = 500매

$$1 \text{ 연 (kg)} = 500 \text{ (매)} \times \text{종이 1매 중량 (kg)}$$

4. 서적출판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출판사에서 제품출하로 조사하고 인쇄소에서는 상업인쇄업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중분류 35.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51] 산업용 화합물 제조업

1. 플라스틱물질 (35114)은 석유화학제품 (35111 ~ 113)을 분해, 가공한 것이며, 356의 플라스틱제품은 플라스틱물질 (각종수지)을 재료로 하여 가공한 것임을 유의하여 분류한다.
2. 재생섬유 (35142), 합성섬유 (35143)는 중분류의 32 섬유를 제조하기 위한 기초원료이므로 분류에 유의한다.

[35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1. 페인트는 수성 (35212)과 유성 (35211)으로 구분 조사한다.
2. 유기계면활성제 (35233 111)에는 DOP, BOA, DBP, DBA 등 많은 종류가 있으니 전부 포함한다.
3. 의약품은 용도별 (신경, 기관, 소화계통 등)로 구분 분류되므로 명칭을 사업체 명칭으로 쓰지 말고 용도별로 구분하여 분류한다.

[353] 석유 정제업

1. 석유 1 바렐은 158.984 ℓ
2. 경유 (35300216)에는 DF - 1, DPO도 포함한다.
3. 중유 (35300217)에는 H. G. O., I. F. O, Bunker A, B, L, R.F.O도 모두 포함한다.
4. 석유 아스팔트 (35403111)에는 석유 피치도 포함한다.
5. 윤활유와 구리스는 정제된 것 (35300)과 정제된 것을 가공한 것 (35402)으로 구분 조사한다.

[355] 고무제품 제조업

1. 35591의 운동화는 갑피의 사용원재료에 따라 직물운동화, 가죽운동화, 기타 운동화로 구분한다.(나이키, 프로스펙스, 아식스, 월드컵, 타이거 상표의 신발을 포함한다.)

[356] 달리 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 35114 플라스틱물질(각종수지)과 혼동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여기에서는 플라스틱 물질을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2. 플라스틱 제품의 수량단위는 중량단위 %으로 조사한다.
3. 플라스틱 제품은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므로 구체적인 명칭을 기입한다.

중분류 3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석유 및 석탄제품 제외

1. 포함되는 품목은 도자기, 유리, 시멘트, 석제품등이 분류된다.
2. 위생도기는 싱크, 세면기, 대변기, 소변기, 욕조로 세분되고 금속제 위생용품은 38193에 분류된다.
3. 비금속광물(석회석, 활석)을 채광하여 분쇄처리하는 것은 36995에 분류하고 채광활동자체는 2903에 분류한다.
4. 석재를 채취하는 것은 29011에 분류하고 석재를 채취하여 가공하는 것은 36994에 분류한다.

중분류 37. 제1차 금속산업

1. 중분류 37에는 동일제품이라 하더라도 규격, 성분(탄소 함유량) 등 재질에 따라 보통강, 합금강, 고탄소강으로 품목분류번호가 세분되어 있으니 유의하여 분류하도록 한다.
2. 철판 및 철강(봉강, 형강, 박판, 대강)은 열처리에 따라 열간압

연업 (37121) 과 냉간압연업 (37122) 으로 구분된다.

3. 강관(37123), 표면처리강관(37192)은 생산공정에 따라 달리 분리되므로 유의한다.
4. 형강과 봉강은 직경의 크기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된다.
5. 3712(철강압연, 연신 및 강관제조업)에서 유의할 것은 직접 생산한 철강선을 더 가공하여 쇠못과 와이어로프를 제조하면 37124 및 37129로 타사업체에서 철강선을 구입하여 쇠못과 와이어로프를 생산하면 38196으로 분류한다.

중분류 38. 조립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81)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외

1. 381 소분류는 조립 금속제품이므로 전기나 동력을 이용한 기계나 장비는 제외된다.
2. 금속제품에서 식탁용품(38111100) (수저, 저, 국자, 포크, 주걱 등)은 세분할 필요가 없으나, 주방용품(38142, 38192)(숟, 냄비, 시루, 주전자, 식기 등)을 명확히 구분할 것이며, 주방용품은 알루미늄제, 스텐레스제 법랑제 등으로 구분 분류한다.
3. 보일러는 산업용은 38134.에, 가정용은 38194에 분류한다.
4. 밸브(38198)는 재질(주강, 단강, 청동등)에 따라 구분한다.

(382) 기계 제조업, 전기 제외

1. 기계는 용도별(농업용, 금속절삭, 금속성형, 금속처리, 수자식 동력공구, 목공기계, 호환용절삭구, 금형, 건설 및 광산, 식료품, 고무 및 플라스틱, 인쇄 및 제본, 유리 및 요업)로 구분되므로 포괄적으로 조사하지 말고 품목조사시에 제품에 대한 설명을 병기하도록 한다.
2. 기계의 완제품이 아니고 반제품이거나 부분품은 해당 산업분류

의 기타 부품에 분류한다.

3. 기계제품은 단위당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품목분류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분류한다.
4. 컴퓨터는 자동자료처리장비(38251), 프로그램매체(38256)으로 구분되며 자동처리장비는 중앙기억장치(CPU), 보조기억장치, 단말장치, 입출력장치등으로 세분되며 퍼스날컴퓨터는 중앙기억장치에 분류하고 주변장치는 해당 품목에 구분 분류한다.

[383]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1. 전동기와 발전기는 직류와 교류로 구분되며, 전자용 소형모터는 38349에 분류한다.
2. 모니터(컴퓨터용)는 자동자료처리장비가 아닌 음향 및 영상기 기제조업(38321)으로 분류한다.
3. 음향 및 영상기기 및 유선통신장비는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분류한다.
 - TV수상기-흑백TV수상기, 칼라TV수상기, 컴퓨터용수상기(모니터), 프로젝션TV수상기
 - 라디오-일반라디오, 카라디오, 시계라디오
 - 전축-튜너, 테크, 레코드플레이어, 스피커시스템, 이퀄라이저,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뮤직센터, 앰프
 - 전화기-일반전화기(버튼식, 다이알식 포함), 무선전화기(코드레스 전화기), 자동차용전화기(카폰)
 - 전화교환기-자동식전화기(수동식 포함), 전자식전화교환기
4. 전자부품은 전자관(38341), 반도체(38342), 축전기(38343), 저항기(38344), 기타(38349)에 분류하고 단위에 유의하며, 축전기와 저항기는 가변과 고정으로 분류한다.

5. 냉장고, 선풍기 전기세탁기, 접시세척기 등은 가정용과 상업용으로 구분된다.
6. 음반, 비디오 및 카세트 테이프는 38326에 분류하고 테이프생지는 35296에 분류하고, 녹음 및 녹화만 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하지 않으며, 단위는 천 m 로 조사한다. [표준규격은 60분용=300ft($\approx 102m$), 90분용=450ft($\approx 153m$), 120분용=600ft($\approx 205m$)]

(384) 운수장비 제조업

1. 내연기관(엔진)은 기계용(38211-38219), 선박용(38411100), 자동차용(38432100)으로 구분한다.
2. 자동차제품(38431)은 규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야 한다.
 - ① 승용차-소형승용차(1500CC미만), 중형승용차(2000CC미만), 대형승용차(2000CC이상), 지프형승용차
 - ② 버스-소형버스(15인승이하), 중형버스(35인승이하), 일반버스(36인승이상), 고속형버스(고속형관광버스 포함)
 - ③ 트럭-소형트럭(1ton이하), 중형트럭(1ton초과~5ton미만), 대형트럭(5ton이상)
3. 선박은 강선(38412)과 목선(38413)으로 구분되며 철강화물선은 유조선(111)과 석탄, 곡물, 광물, 목재등 다목적 화물선과 바지선, 컨테이너선, 자동차 전용선을 포함한 일반화물선(112) 및 화학제품운반선, 액화천연가스운반선, LPG운반선, 냉동선을 포함한 특수화물선(119)으로 구분되며, 오물수거선, 기상관측선, 경비선, 소방선, 군함 등은 기타 특수선박(900)에 분류한다.

(385) 의료, 광학, 전문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1. 의료용기구는 세분되어 있으므로 포괄 기입하지 않는다.
2. 시계는 일반시계(38531), 전자시계(38532), 시계부품(38533)으로 산업이 구분되며, 이것은 다시 손목시계, 벽시계, 탁상시계로 분류한다.

중분류 39. 기타 제조업

여기에 포함되는 품목은 장신구, 악기류, 운동용품, 인형 및 장난감, 모조장식 및 장식품, 가발, 사무용품 및 회화용품의 필기구, 라이터, 파스너, 단추, 우산, 비 및 솔, 간판 및 광고물등이 분류된다.

2. 중분류별 수량단위 해설

(1) 중분류별 주요품목의 수량단위

(2. 광업)

- 무연탄, 철광석, 석회석, 소금→ $\%$
- 모래, 자갈→ m^3

(31. 음식료품)

- 식료품, 곡물 및 기타(인삼, 커피, 두부, 당류, 사료)→ $kg, \%$
- 유지(기름), 주류, 음료수→ kl

(32. 섬유, 의복)

- 방직(絲)→ $kg, \%$ ○ 방직(직물) 및 가죽→(천) m^2
- 의복→천족(양말), 천매(내·외의), (천)조(장갑), 착(의복)

(33. 목재 및 가구)

- 제재→ m^3 ○ 가구→개

(34. 종이 및 인쇄출판)

- 펄프 및 종이→ $\%$ ○ 인쇄물→천권(서적), 천부(신문)

(35. 화학, 석유, 석탄 및 플라스틱)

- 산업용 화합물, 플라스틱제품, 연탄→ $kg, \%$
- 유류 및 페인트→ kl

(36. 비금속 광물)

- 도기→개 ○ 유리→상자 ○ 벽돌, 블록→천매
- 시멘트, 내화물, 유리병, 석제품→ㄲ

(37. 1차금속)

- 철금속 (371) →ㄲ ○ 비철금속 (372) →kg, ㄲ

(38. 기계 및 장비)

- 식기, 수공구→천개 ○ 기계→대 ○ 전자제품→천대, 천개
- 나사 및 철선, 베어링, 금형, 밸브→ㄲ ○ 선박→G/T

(39. 기타 제조업)

- 귀금속→※ ○ 악기→대 ○ 사무용품→천개, 천타

(2) 주요단위 환산방법

① m^2 로 환산 품목 (1yd = 0.9144 m, 1 inch = 0.0254 m)

1) 직물...길이 (yd) × 폭 (inch) × 0.232 (=0.9144 × 0.0254) = m^2

- 36 inch. 1yd = 0.8361 m^2
- 44 inch. 1yd = 1.0219 m^2

2) 가죽...① 사방 10 inch 1평 ≃ 0.0645 m^2

- 1매 ≃ 30 ~ 40 평 ○ 1매 ≃ 3.7 m^2 (40 평)
- ② 사방 8 inch 1평 ≃ 0.0413 m^2
- 1매 ≃ 30 ~ 40 평 ○ 1매 ≃ 3.3 m^2 (30 평)

② 음료등의 갯수를 용량으로 환산 (C/S →kl)

○ 개별(本)용량(ml) × C/S 당 本수 × C/S 갯수 = ml → kl

③ 목재...1才 (사이) ≃ 0.0034 m^3 ∴ 1 m^3 = 300 才

④ 종이...1연 = 500매 ∴ 1연(kg) = 500매 × 종이의 1매중량(kg)

⑤ 연탄...갯수를 ㄲ로 하면 22공탄은 278장, 25공탄은 208장,
31공탄은 133장, 49공탄은 80장이 1톤(ㄲ)이다.

- ⑥ ○ 1바렐(B) = 158.984 ℓ ○ 1드림(D) = 225 ℓ
- ⑦ ○ 1표 = 60 kg (생사) ○ 1치즈 = 1.5kg (면혼방사)
- 1고리 = 160 kg ≃ 400L/B (순면사) ○ 1S/F ≃ 0.0929 m^2 (쇠가죽)
- 1PSC(필) = 9.31 m^2 (순본견직물)

⑧ 내화벽돌 (1ㄲ = 330매)

⑨ 주요단위 해설

- EA(each) = 개, 대
- PCS(pieces) = 필 (직물) = 개
- C/S(cases) = 상자
- $\frac{D}{M}$ (drum) $\approx 225 \ell$
- B(Barell) $\approx 158.984 \ell$
- $1 kl = 1,000 \ell = 100,000 ml$
- 본(本) = 날개, 병, 개비(담배)
- $\frac{L}{B}$ (pound) $\approx 0.454 kg$
- yd(s)(yards) $\approx 0.9144 m$
- $\frac{M}{T}$ (Metric ton) = $1,000 kg$
- $\frac{G}{T}$ (Gross ton) = $100 f^3$
- 축(足) = 쥘레, 착=벌

산업 및 품목분류표

(광업 및 제조업부문)

대분류 2. 광업

중분류	산업명	소분류	산업명 (업종)	비고		
				세분류수	세세분류수	품목수
21	석탄	210	석탄	3	3	3
23	금속	230	금속	2	8	29
29	기타 광업	290	기타 광업	5	14	60
	계			10	25	92

중분류 21. 석 탄 광 업

분 류 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분 류 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210		석탄 광업	2102		갈탄 광업
2101		무연탄 광업	21020		갈탄 광업
21010		무연탄 광업	100	%	갈탄 연성갈탄과 경성갈탄을 포함
100	%	무 연 탄 접착제 없이 응집한 것은 포함 하나, 접착제가 가미된 연탄은 35401에 분류	21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석탄 광업
			2109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석탄 광업
			100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석탄(역청탄, 유연탄 등)

중분류 23. 금 속 광 업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230		금속 광업	23026		몰리브덴 광업
2301		철광업	100	kg	몰리브덴광석
23010		철광업	230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철금속 광업
111	%	적철광석	1		철합금광석
112	%	자철광석	111	%	크롬광석
113	%	갈철광석	112	%	니켈광석
119	※	기타 철광석	113	%	코발트광석
2302		비철금속 광업	114	%	콜럼븀(오니븀)
23021		텅스텐 광업	119	※	기타 철합금광석 바나듐, 황화바나듐은 여기에 분류
111	%	흑중석(텅스텐)	2		방사성 및 희토류광석
112	%	회중석(텅스텐)	211	※	우라늄 및 라듐광석
119	※	기타 중석(텅스텐)	212	※	토륨 및 희토류광석
23022		망간 광업	9		기타 비철금속광석
100	%	망간광	911	%	알루미늄광석
23023		금은 광업	912	%	주석광, 산화주석광석
111	kg	금광석	913	%	창연광석
112	kg	은광석	914	%	수은
113	※	천연 백금금속 및 백금광석	915	%	티타늄
23024		동 광업	916	%	안티모니
100	%	동광석	91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철금속광석 베릴륨, 세슘, 제라늄, 가륨, 루 라이트 정광은 여기에 분류
23025		연·아연 광업			
100	%	연광석 방연광(황화연), 백연광(탄산 연), 황산연광, 기타연광			
200	%	아연광석 삼아연광(황화아연), 홍아연광 (산화아연), 탄산아연광(탄산아 연), 기타아연광 아연광에서 추출한 금, 은, 동, 제라늄 및 기타금속의 정광은 제외			

중분류 29. 기 타 광 업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290		기타 광업	411	※	철 산화물 안료
2901		토사석 채취업	412	※	황토, 시연나, 암버 및 유색혈암
29011		건설용석재 채취업	413	※	반다이크브라운, 베로나 흙 및 사 이플러스흙
111	※	대리석	9		기타 화학 및 비료원료용광물
112	※	화강암	911	※	천연 황산바름(중정석) 및 천연 탄 산바름
113	※	천연 슬레이트(점판암) 가공슬레이트 제품은 36994, 36931에 분류.	912	※	형석 및 기타 불소함유 광물
119	※	기타 건설용 석재	913	※	리튬광
29012		쇄석 채취업	914	※	스트론튬광
100	※	쇄 석	915	※	비소광
29013		건설용 모래 및 자갈 채취업	916	※	명반석 및 천연명반
111	m ³	모 래	917	※	초 석
112	m ³	자 갈	918	※	인광석
29019		달리분류되지않은 토사석 채취업	91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학 및 비료 원료용 광물
111	※	점 토	2903		석회석, 요업 및 내화광물 광업
119	※	기타 토사석	29031		석회석 광업
2902		화학 및 비료원료용광물 광업	100	※	석회석
29020		화학 및 비료원료용광물 광업	200	※	백은석
1		질소, 칼리, 인산광물	29032		요업 및 내화광물 광업
111	※	천연질산나트륨	111	※	고령토(백토 포함)
112	※	인산염암	112	※	마전토
113	※	칼리함유 조광물	113	※	장 석
114	※	구아노-미가공	114	※	규 석
2		천연 및 회수유광	115	※	마그네사이트
211	kg	유 황	116	※	납 석
212	※	황철광	117	※	벤토나이트
3		소오다 및 봉산염 광물	118	※	규조토
311	※	미가공 천연 봉산염 광물	119	※	기타 요업 및 내화광물
312	※	미가공 천연 황산나트륨	29033		산업용 모래 채취업
313	※	미가공 천연 탄산나트륨	100	m ³	산업용 모래(규사 포함)
4		천연 광물 안료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건설용 이외 유리제조, 금속, 청정, 주형 및 연마용에 사용되는 모래			업(중분류 13)에 해당되므로 제외
2904		소금 채취업	221	※	해표석, 홍옥, 호박
29040		소금 채취업	9		기타 광물
100	※	천일염	911	※	토 탄
200	kg	암 염	912	※	운 모
29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광업	913	※	천연역청 및 광물왁스 천연아스팔트, 천연광물왁스
29091		흑연 광업	914	※	지 석
111	※	인상 흑연	916	※	석 영
112	※	토상 흑연	917	※	방해석
29092		활석 광업	91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광물
100	※	활 석			
29093		석고 광업			
100	※	석 고 천연석고(천연수산화 탄산칼슘), 경석고(천연무수황산칼슘) 포함. 석회질 석화석고 채취(건축석재용 및 조각용)는 2901에 분류			
29094		석면 광업			
100	※	석 면			
290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광업			
100	※	천연 연마제 천연연마석, 코린덤가루, 금강 사, 연마가넷, 트리폴리, 로턴 스톤등 포함. 용집 연마석은 3699에 분류			
2		천연보석원석			
211	※	수정(자수정, 연수정등)			
219	※	기타보석원석 산호천연진주 및 양식진주는 어			

대분류 3. 제 조 업

중분류	산 업 명	소분류	산 업 명 (업 종)	비 고		
				세분류수	세세분류수	품목수
31	음 식 료 품 및 담 배			17	67	301
		311-312	식 료 품	12	52	251
		313	음 료 품	4	13	44
		314	담 배	1	2	6
32	섬 유, 의 복 및 가 족			14	71	320
		321	섬 유	8	43	212
		322	의 복	2	13	70
		323	가 족, 대 용 가 족 및 모 피	3	10	25
		324	신	1	5	13
33	나 무 및 나 무 제 품			4	25	105
		331	나 무 및 나 무 와 쿨 크	3	18	72
34	종 이, 종 이 제 품 및 인 쇄 출 판	332	가 구 및 장 치 물	1	7	33
		341	종 이 및 종 이 제 품	3	21	75
35	화 학 물 과 화 학, 석 유, 고 무 및 프 라 스틱	342	인 쇄 및 출 판	3	12	34
				15	72	604
		351	산 업 용 화 합 물	6	24	311
		352	기 타 화 학 제 품	4	27	154
		353	석 유 정 제 업	1	1	18
		354	기 타 석 유 및 석 탄 제 품	1	4	29
		355	고 무 제 품	2	7	49
		356	기 타 프 라 스틱 제 품	1	9	43
36	비 금 속 광 물 제 품			7	38	132
		361	도 기, 자 기 및 토 기	1	7	18
		362	유 리 및 유 리 제 품	1	8	36
		369	기 타 비 금 속 광 물 제 품	5	23	78
37	제 1 차 금 속			9	33	222
		371	제 1 차 철 강	4	17	139
		372	제 1 차 비 철 금 속	5	16	83
38	조 립 금 속 제 품, 기 계 및 장 비			27	151	1,147
		381	조 립 금 속 제 품	5	31	194
		382	기 계	7	43	483
		383	전 기 기 계 기 구	5	33	236
		384	운 수 장 비	6	17	96
		385	과 학, 측 정 및 광 학 제 품	4	27	138
39	기 타			6	32	148
	계			105	522	3,089

중분류 31.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311-312 식료품 제조업			31122 연유 및 분유 제조업		
3111 육지동물고기 가공 저장업			(젓을 농축, 응축, 건조하여 연유·분유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		
31111 육지동물고기 통조림 제조업			연유		
100	kg	쇠고기 통조림, 돼지고기 통조림 등 축산물 통조림(번데기 통조림 포함)	100	kg	분유
31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육지동물고기 가공저장업			200	kg	분유
1 조제 및 저장고기			300	kg	이유식(우유기저)-(곡분기저이유 식은 31162100에 분류)
111	kg	베이콘	400	※	유장
112	kg	햄	500	※	유당(카제인 및 락토스)
113	kg	소시지	900	※	기타분말식품(버터, 밀크, 크림 및 기타 농축물등)
114	※	가축가공고기(조제 및 저장가공한 것)소금친것, 건조한것, 훈제한 것 및 인간소비에 적합한 가금, 염조류, 고기포함	31123 아이스크림 제조업		
115	kg	도살고기 (포장육포함, 단, 임가공 및 구입한 도살고기 포장육은 제외)	100	kg	아이스크림
119	※	기타 조제 및 저장고기	900	※	기타 유사냉동 디저트 (젓을 주원료로한 샤베트, 멜로린, 파레이트 등)
2 식용동물지방			31124 시유 및 발효유 제조업		
211	kg	동물지방(정제하지 않은것)	100	℥	시유(처리우유)
212	kg	라이드 및 기타 용출돼지 지방	200	℥	유산균발효유
213	kg	용출 가금 및 기타 지방	900	※	기타 액상우유제품 및 우유가공제품
300	※	고기엑기스, 고기스우프(고기분말) 및 고기쥬스	3113 과실 및 채소 가공업		
400	※	비식용 고기제품(가공한 것)	31131 과실, 채소통조림식품 제조업		
3112 낙농품 제조업			111	℥	과실통조림(베타 포함)
31121 버터 및 치즈 제조업			112	℥	채소통조림(양송이통조림 포함)
(젓을 원료로 버터 및 치즈를 제조하는 산업 활동)			119	※	기타통조림 또는 병조림 식품
100	kg	버터	31132 과실, 채소절임식품 제조업		
200	kg	치즈	111	℥	김치
			112	℥	단무지
			119	※	기타 반찬용 과실, 채소절임식품
			311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과실 및 채소		

분 번	류 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가공업
	1		건조 또는 탈수과실
	111	kg	감귤류 과실
	112	※	열대과실(바나나, 야자, 파인애플, 망고 등)
	113	※	건포도
	114	※	곶감
	119	※	기타 건조과실
	200	※	건조 채소
	3		냉동과실 및 채소
	311	※	냉동과실
	312	※	냉동채소
	313	※	냉동쥬스(즙)
	400	※	채소 스우프
	500	※	겉질 및 기타가공부스러기
	900	※	기타 가공저장한 과실 및 채소
	3114		수산물 처리 가공업
	31141		수산물 통조림식품 제조업
	111	kg	꽂치통조림
	112	kg	고등어통조림
	113	kg	참치통조림
	114	kg	굴통조림
	115	kg	조개류통조림(굴통조림 제외)
	119	※	기타 해산물통조림(바다동물고기 통조림 포함)
	31142		수산물 냉동식품 제조업
	100	※	냉동수산물
	31143		한천 제조업
	100	kg	한천(우무)
	31144		어육연제품 제조업
	100	※	어육연제품(피켓트상태의 것) 어묵, 저민 살코기, 어육소시지 등 포함.
	31145		수산물건제품 제조업

분 번	류 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100	※	어개류(건조, 염장건조, 훈제한 것) 오징어포, 어포 건조조갯살 등 포함
	200	※	해조류(건조, 염장건조, 훈제한 것)
	31146		수산물염장품 제조업
	111	※	젓갈류
	119	※	기타 수산물염장품
	311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산물 처리 가공업
	111	※	고래고기
	119	※	기타 식용수산물동물제품
	900	※	기타 수산물처리가공제품 맛김, 수산물엑스, 스우프(생선분말), 소오스포함.
	3115		동식물유지 제조업
	31151		동물성유지 제조업
	1		물고기 및 바다동물기름
	111	※	물고기지방
	112	※	물고기간유
	113	※	수산물기름
	114	※	정제 고래기름 및 경랍
	121	※	유박(물고기)
	2		비식용동물기름(정제된 식용동물기름은 31153에 분류)
	211	kg	텔로우 오일 및 스티어린
	212	kg	정제올그리스(라놀린) 및 올그리스 추출제품
	221	※	유박(동물)
	222	※	우치(쇠기름)
	300	※	보일드, 산화, 탈수, 황화, 쪄주 또는 중합동물기름(인조테트라

분 번	류 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분 번	류 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스 포함)	115		㎏	채종유(유채기름)
	400	※	경화동물기름	116		㎏	옥수수유(옥배유)
	500	※	지방산 및 지방물질 처리찌꺼기	117		㎏	낙화생유(땅콩기름)
	31152		식물성유지 제조업	119		※	기타 식용식물성기름
			(식용유는 31153에 분류)	121		※	유박(콩깻묵 제외.)
	1		비휘발성 식물성 기름	122		㎏	콩깻묵(대두박)
	111	㎏	대두유(콩기름)	123		㎏	탈지강
	112	㎏	면실유(면화씨 기름)	2			마아가린 및 기타조제 경화유
	113	㎏	올리브유	211		kg	마아가린
	114	㎏	해바라기유	212		kg	모조라아드
	115	㎏	아마유	213		kg	쇼트닝(쇼팅)
	116	㎏	종려유	219		※	기타조제 식용지방(경화유)
	117	㎏	채종류(유채기름)	3116			곡물 가공업
	121	㎏	야자유	31161			도정 및 제분업
	122	㎏	피마자유				(임가공은 31192에 분류)
	123	㎏	미강유	1			도정제품
	124	㎏	동백유	111		㎏	쌀
	125	㎏	옥수수유(옥배유)	112		㎏	보리쌀
	126	㎏	대마유	113		㎏	밀쌀
	127	㎏	낙화생유(땅콩기름)	114		㎏	압맥
	129	※	기타 비휘발성 식물성기름	119		※	기타 도정 곡식제품
	131	※	유박(식물성 : 깻묵)	129		※	겨
	200	※	면린터	2			제분제품
	300	※	보일드, 산화, 탈수, 황화, 취주 또는 중합식물성기름	211		㎏	밀가루
	400	※	경화식물성기름	212		kg	곡물가루(밀가루, 콩가루 제외)
	31153		식용유 정제업	213		kg	콩가루
	1		식용 식물성 정제유	214		kg	감자가루
	111	ℓ	참기름	215		kg	전분야채가루
	112	ℓ	들기름	216		※	과실가루
	113	㎏	혼합식물성기름	217		※	커피콩(겉질 벗긴것)
	114	㎏	대두유(콩기름)	219		※	기타야채 및 과실가루
				311		㎏	소맥피(밀기울)

분 번	류 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312	※	재분짜꺼기(콩기울등)
	31162		혼합 조제분말 제조업
	100	※	곡물기저 혼합조제분말(만두피, 이유식, 떡고물, 인조쌀 등)
	31163		곡물조리식품 제조업
	100	※	식사용 곡물조리식품(김밥, 도시락, 잣죽등)
	3116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곡물가공업
	100	※	곡물튀김(튀밥등)
	200	※	사료용재료(줄기, 뿌리등의 분쇄물)
	900	※	기타 곡물가공업
	3117		빵, 과자 및 국수 제조업
	31171		빵 및 떡 제조업
	111	※	빵
	113	※	케이크
	200	※	떡
	31172		과자 제조업
	1		건과자
	111	kg	비스킷
	112	kg	미과
	113	kg	건빵
	119	※	기타 건과자
	200	※	스낵류
	31173		설탕과자 제조업
	100	※	코코아가공업
	200	kg	초코렛과자
	311	kg	설탕과자(코코아포함되지 않은것) 캔디류, 카라멜, 알사탕, 드롭 프스등
	312	※	껌
	313	※	향미 또는 착색설탕, 시럽 및 당밀

분 번	류 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400	※	설탕입힌 과실
	500	※	구운 견과
	31174		빙과 제조업
	100	※	빙과(아이차, 쥬쥬바등 소프트성 빙과, 하드류, 아이스케이크류)
	31175		국수 제조업
	1		국수
	111	kg	밀국수
	112	kg	기타 유사국수(밀국수를 제외한 국수)
	113	kg	당면
	114	kg	냉면
	3		인스턴트면류
	311	※	라면
	319	※	기타 인스턴트면류(우동면, 짜장 면등 포함)
	3117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빵, 과자 및 국수 제조업
	100	※	웨이퍼 및 유사제품
	200	※	의약품용 캡슐
	3118		설탕 제조업
	31181		원당 제조업
	31182		설탕 정제업
	100	※	정당
	3118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설탕 제조업
	100	kg	전화당 및 설탕시럽
	3119		식료품 입가공업
	31191		입가공 도축업
	100	※	가축 및 가금도살품 및 부산물
	31192		입가공 곡물도정 및 제분업
	100	※	곡물도정 및 제분제품(떡방아간 포함)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31193		임가공 식품 냉동업
100	※	냉동수산물
200	※	냉동농산물
31194		임가공 착유 및 유사처리업
100	※	동물유지
200	※	식물성유지
300	※	식용유
400	※	고추가루등 양념가루
900	※	기타 착유 및 유사처리제품
311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식료품 임가 공업
		(튀김, 농수산물건조, 기타임가공)
100	※	기타 임가공품
3121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31211		장류 제조업
111	㎖	간장
112	㎖	된장
113	㎖	고추장
114	㎖	춘장
119	※	기타 장류
121	kg	매주
31212		정제 및 발효 조미료 제조업
1		발효조미료
111	㎖	글루타민산소다(미원, 미풍, 아이 미)
112	kg	식용아미노산
119	※	기타 발효조미료
2		식초
211	㎖	양조식초
212	㎖	대용식초
300	kg	정제소금
31213		혼합 및 조제 조미료 제조업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111	kg	혼합조미료(각종 다시다)
112	kg	마요네스
113	kg	우스터·소오스
114	kg	캐첩
115	kg	스프(분말, 액체등 조제)
116	kg	셀러드 드레싱
117	kg	카레(짜장, 하이라이스등 포함)
118	kg	조제겨자
119	※	기타 혼합 및 조제 조미식품(김치 속, 빵속등)
200	kg	맛소금
31214		천연조미료 제조업
111	kg	고추가루
112	kg	후추가루
113	kg	겨자가루
114	kg	카레가루
119	※	기타 가루
312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조미료 및 식 품 첨가물 제조업
111	kg	식품용색소(카라멜 포함)
112	※	향미, 추출물(가향제)
113	※	고기유연제
119	※	기타 조미식품 및 식품 첨가물
3122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식료품 제조업
31221		얼음 제조업
100	㎖	얼음
31222		인삼식품 제조업
111	kg	백삼
112	kg	홍삼
113	kg	분말인삼
114	kg	인삼즙
115	kg	인삼차

분류 번호	단위	산 업 및 품 목 명	분류 번호	단위	산 업 및 품 목 명
116	kg	인삼발효 음료	200	kg	인공 감미료(인조꿀 등)
117	kg	정제인삼	31227		커피 및 차 가공업
119	※	기타 인삼식품 인삼주는 31313에 분류, 약제용 으로 특별히 가공 된 인삼제품 은 3522에 분류	1		커피
31223		맥아 제조업	111	kg	카페인 제거한 커피
111	kg	맥아	112	kg	균커피
112	※	맥아 엑기스	113	kg	분말 커피
3122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14	※	커피엑기스, 에센스 또는 농축물 (커피 페이스트 포함)
111	kg	두부	2		가공차 및 차엑기스, 에센스 또는 농축물
112	kg	유부	211	※	녹차
211	※	도토리 목	212	※	가공 마태차
212	※	매밀 목	213	※	울무차
219	※	기타 목	214	※	홍차
31225		전분 제조업	215	※	차엑기스, 에센스 또는 농축물
111	※	전분(녹말가루)-고구마, 옥수수, 감자, 전분등 포함	219	※	기타 가공차
112	※	이누린	300	※	균커피대용품 및 그 엑기스, 에센 스 또는 농축물
113	※	타피오카 및 사교	31228		누룩 및 종국 제조업
114	※	글루텐 글루텐가루	1		이스트
119	※	전분박(전분제조찌꺼기 포함)	111	kg	누룩(곡자, 종국)
31226		당류 제조업	112	kg	배양 이스트
1		당류	113	kg	제빵용 이스트
111	kg	포도당	119	※	기타 이스트제품
112	kg	물엿, 엿	2		베이킹 파우더 및 유사양조 및 제 빵용 조제품
113	kg	과당	211	kg	베이킹 파우더
114	kg	말토우스	212	kg	반죽 개량제
115	kg	식용사카린 (의약품 사카린은 35119316에 분류)	219	※	기타 양조 및 제빵용 첨가제
119	※	기타 당류(덱스트린은 35291에 분 류)	31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식료품 제조업
			100	※	계란 가공품
			200	※	깁질 벗긴 견과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311	kg	분말 유스
312	kg	커피 크리머
319	※	기타 분말식품 식탁크림, 제리, 유아식품, 음 료용 및 디저어트용 분말
900	※	기타 식품 조제품(인조육 포함)
3123		배합 사료 제조업
31230		배합 사료 제조업
1		가당 마초 및 조제사료
111	※	가당 마초 짙, 거, 과육등 영양이 낮은 하나 이상의 재료에 당밀 또는 유사 당 물질을 혼합하여 만든것, 밀겨 또 는 유박에 당밀을 혼합한것도 포함
112	※	배합사료
113	※	보조사료 농가에서 생산된 사료에 영양의 균형 을 맞추어 주기 위한 보조사료로서 비교적 한 가지의 영양이 높고 포 함되어 있어 배합사료와 다르다.
114	※	사료제조용 조제품
115	※	어분
211	kg	애완동물 사료
212	※	애완동물용 기호식품(개껌등)
300	kg	물고기 양식용 사료
313		음료품 제조업
3131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31311		주정 제조업
100	kl	주정(에틸알콜)
31312		소주 제조업
100	kl	소주
31313		인삼주 제조업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100	kl	인삼주
31314		곡식 증류주 제조업
111	kl	고량주
112	kl	위스키
113	kl	럼주
119	※	기타 곡식 증류주
31315		과실 증류주 제조업
111	kl	포나
112	kl	브랜디
113	kl	진
114	kl	보드카
119	※	기타 과실 증류주
313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류주 및 합 성주 제조업
100	kl	과실 합성주
2		기타 합성주
211	kl	합성 청주
212	kl	합성 맥주
213	kl	오가피주
214	kl	삼패인
219	※	기타 합성주
300	※	증류주 부산물
3132		발효주 제조업
3132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111	kl	탁주(막걸리)
112	kl	약주
200	※	주요(술찌꺼기)
31322		청주 제조업
100	kl	청주
31323		과실 발효주 제조업
1		포도주
111	kl	포도주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보통 포도주, 디저트, 탄산 및 향미 포도주 포함
112	ℓ	포도즙
9		기타 과일 발효주
911	ℓ	사과주
912	ℓ	딸기주
913	ℓ	매실주
914	ℓ	배주
919	※	기타 과일 발효주
313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 제조업
100	※	기타 발효주
200	※	양조 부산물
3133		맥주 제조업
31330		맥주 제조업
100	ℓ	맥주
200	※	양조 부산물
3134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31341		청량음료 제조업
111	ℓ	사이다
112	ℓ	콜라
113	ℓ	주스(즙은 31139313, 분말주스는 31229311에 분류)
114	ℓ	천연 광천수 및 천연수
119	※	기타의 청량음료(과실향음료 및 탄산과실향음료등을 가미한 음 료)
211	ℓ	콜라 원액
212	ℓ	오렌지 원액
219	※	기타 원액
313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100	ℓ	곡분음료(두유 포함)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200	ℓ	구근 조제음료
314		담배 제조업
3140		담배 제조업
31401		담배 재건조업
100	kg	재건조 잎담배
31402		담배제품 제조업
111	천본	필터 담배
112	천본	필터 없는 담배
200	kg	각연
911	※	여송연
91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담배 제품(담 배용 필터는 39094에 분류, 담배 용지(권연지)는 34199에 분류)

중분류 32.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321		섬유 제조업	214	kg	혼방 방모사
3211		제사 및 방직업	215	kg	혼방 소모사
32111		제사업	216	kg	혼방 수모사
111	kg	생사(1표=60kg)	32114		인조섬유 방직업
112	kg	부잠사(양견, 비수, 생피저, 패니, 박면, 출각견)			(주로 합성 및 재생섬유를 구입하여 방직 또는 방사하여 인조섬유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113	kg	옥사	1		인조섬유(단섬유) : 카드, 콤 또는
114	kg	야잠사			기타 방직 가공한 것
32112		면 방직업	111	%	합성섬유 : 카드 또는 콤한 것 톱, 스리버, 로빙, 폴리에스터, 폴리아미드, 폴리우레탄, 폴리비닐유도체
1		면섬유 및 면화씨	112	%	재생섬유 : 카드 또는 콤한 것 레이온, 아세테이트, 프로테인 섬유, 톱, 스리버, 로빙 등
111	kg	조면(씨 및 불순물을 제거한 것)	2		인조섬유방직사
112	kg	소면 및 정소면(렙, 슬라이버, 로빙으로 전환한 슬라이버를 포함)	211	%	합성섬유방직사(S/T사, 엑스란, 카시미론사, T/S사, 아크릴사 등)
113	※	면부스리기	212	%	재생섬유방직사(인견사, 비스코스사 등)
121	kg	면화씨	213	%	혼방 합성섬유 방직사
2		면사	214	%	혼방 재생섬유 방직사
211	kg	순면사(1고리=160kg≒ 400L/B)	215	%	반합성섬유 방직사(아세테이트사)
212	kg	면혼방사(1치즈=1.5kg)	32115		견 방직업
32113		모 방직업	111	kg	견방직사(견수방사, 견주방사 포함) 노일견 또는 부잠사로 방직 한 견방직사
111	kg	양모 및 수모 양모, 수모, 양모부스리기, 쇼티 또는 기타 동물털, Slubbing, 카드스리버, 톱로빙 포함)	112	kg	견혼방사
112	※	방직 양모부스리기	32116		마 방직업
121	※	울그리스-미가공 라노린, 울그리스오레인, 울그리스 스티어린은 31151에 분류	1		마섬유, 방직준비 가공한 것
2		모방직사			
211	kg	순방모사			
212	kg	순소모사			
213	kg	수모 방직사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111	kg	아마
112	kg	황마
113	kg	모시(저마)
114	kg	대마
115	kg	아바카(마닐라삼)
116	kg	사이살마
119	※	기타 마섬유
121	※	마섬유 부스러기
2		마 방적사
211	kg	아마사
212	kg	모시사(저마사)
213	kg	황마사
214	kg	대마사
215	kg	아바카사
216	kg	사이살마사
219	※	기타 마방적사
32117		연사 제조업
1		재봉사
111	kg	면연사
112	kg	견연사
113	kg	모연사
114	kg	인조섬유연사
119	※	기타재봉사
2		편물사
211	kg	면연사
212	kg	모연사
213	kg	인조섬유연사
219	※	기타 편물사
300	kg	자수사
400	kg	바느질실
900	※	기타 연사
32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사 및 방적업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111	kg	금속화사
112	kg	셔닐사
113	kg	짐프사
	kg	종이사
	※	모조켓 견 또는 인조섬유로 만든 모조 켓
3212		직조업
32121		면직물 제조업
111	천㎡	면거즈
112	천㎡	순면직물 조포(광목, 내광목), 세포(광 목) 옥양목, 브로오드, 포프린, 캠브릭, 개버딘(레인코트용 천), 드릴(면복지, Jean), 범포 (덕) 등 포함.
113	매	캔버스
119	※	기타 면직물
200	천㎡	혼방 면직물
32122		모직물 제조업
111	천㎡	순소모직물
112	천㎡	순방모직물
113	천㎡	모파일 및 셔닐직물
114	천㎡	수모직물
115	천㎡	말털직물
211	천㎡	혼방 소모직물
212	천㎡	혼방 방모직물
32123		견 및 인조섬유직물 제조업
1		견직물
111	천㎡	순본견직물(양단, 공단, 호박단) 홀치기원단, 시보리원단, 하오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112	천㎡	리원단, 쓰무기원단 등(1PCS (필)=9.31㎡) 노일견직물(방문직, 광목단, 경호 단등)	114	kg	타월
113	천㎡	견과일 및 서닐직물	11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직물
200	천㎡	견혼방직물	3213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
3		합성섬유직물	32131		섬유 및 사 염색가공업
311	천㎡	합성섬유직물 데트론, 나일론, 아크릴지, 식 탁린넨, 캔버스, 낙하산포 등	100	※	염색 또는 기타 가공한 면섬유 및 면사
312	천㎡	합성섬유 파일 및 서닐직물 (엑스 란, 캐시미론)	200	※	염색 또는 기타 가공한 모섬유 및 모방적사
400	천㎡	혼방합성 섬유직물(T/C지등) 재생섬유직물	300	※	염색 또는 기타 가공한 견섬유 및 견방적사
511	천㎡	재생섬유직물(레이온, 인견직물등)	400	※	염색 또는 기타 가공한 마섬유 및 마방적사
512	천㎡	재생섬유 파일 및 서닐직물	500	※	염색 또는 기타 가공한 인조섬유 및 인조섬유방적사 (합성섬유 및 재생섬유, 합성섬 유 방적사 및 재생섬유방적사)
600	천㎡	혼방재생섬유직물	3213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가공업
32124		마직물 제조업	100	※	염색 또는 기타 가공한 모직물
111	천㎡	아마직물	200	※	염색 또는 기타 가공한 면직물
112	천㎡	모시직물	3		염색 또는 기타 가공한 견직물
113	천㎡	황마직물	311	※	표백, 염색가공견직물(홀치기제품 제외)
121	천㎡	마파일 및 서닐직물	312	※	홀치기제품(홀치기 원단은 3212, 3111에 분류)
129	※	기타 마직물	400	※	염색 또는 기타 가공한 마직물
32125		세폭직물 제조업	500	※	염색 또는 기타 가공한 인조섬유직 물
100	※	세폭직물 폭13cm 미만의 세폭직물(리본, 테이프, 고무사입직물, 대포등 포함)	32133		나염 가공업
321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직조업			수나염, 기계나염 포함
111	천㎡	테리직물	100	※	나염한 면직물
112	천㎡	파일 및 서닐직물	200	※	나염한 모직물
113	천㎡	갈포	300	※	나염한 견직물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400	※	나염한 마직물
500	※	나염한 인조섬유직물
321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
100	※	각종 수염색직물 및 사
200	※	기타 염색가공한 직물제품
3214		직물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32141		포대 제조업
100	천개	직물포대 프라스틱원단을 재봉하거나 접착하여 만든 포대 및 우편낭 포함 (단 가방성격을 갖는 직물용백은 32332에 분류한다).
32142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프라스틱원단, 인조모피로 만든 제품도 포함)
111	※	린넨 침대포, 베개포, 베개케이스, 장침케이스, 매트리스카바, 모기장 등
112	m ²	담요
113	※	이불
114	※	느슨한 가구카바 자동차시트카바, 쿠션카바 등
115	※	베개 및 유사제품 베개, 장침, 쿠션(방석), 솜, 털이불 등
119	※	기타 침구 및 관련제품
32143		캔버스제품 제조업
111	개	텐트 직물 또는 프라스틱물질 봉제 제품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112	※	캠핑용품(배낭, 수통피 등)
113	매	돛
114	매	천막
119	※	기타 캔버스제품
32144		자수업 및 장식품 제조업
111	※	술장식 및 조립장식물
112	※	자수제품(자수직물 포함)
200	※	상업장식
32145		커어튼 및 휘장 제조업
111	※	커어튼
112	m ²	직물벽지(갈포벽지 포함)
113	매	국기
114	매	패널트
119	※	기타 휘장 및 유사제품(휘장, 스킵카바, 벽가리개 등)
321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직물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00	※	공업용 직물제품(직물콘베어벨트 스크린, 여과포등)
900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직물제품(세탁용백, 행주보, 책상보, 나포킨, 식탁보, 낙하산 등)
3215		편조업
32151		양말 편조업
100	천족	스타킹
2		기타 양말
211	천족	면양말
212	천족	모양말
213	천족	인조섬유양말
219	※	기타 섬유양말
32152		내의 편조업 (직접 편직활동을 한후 내의를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제조하는 산업 활동(예, 편직 잠옷, 내의 등)
111	천매	면내의
112	천매	모내의
113	천매	인조섬유 내의
119	※	기타 섬유 내의
32153		외의 편조업
100	천매	편직외의(섶타, 편직트레이닝복 등)
32154		장갑 편조업
111	천조	면장갑
112	천조	모장갑
113	천조	인조섬유 장갑
119	※	기타 섬유장갑
32155		원단 편조업
111	kg	모편직조(모편직물)
112	kg	면편직조(면편직물)
113	kg	견 편조물(편직물)
114	kg	인조섬유 편조물(편직물)
119	※	기타 섬유 편조물(편직물)
200	※	레이스 원단
32156		레이스제품 제조업
100	※	레이스편조제품 커어튼, 침대보, 병덮개, 접시받침, 먼지털이, 타월 등 가 정용품
32159		달리 분류되지 않은 편조업
100	※	탄성(고무사)편조물
200	※	심지용 편조물
300	※	편조 부스러기
4		편조 의복 악세사리
411	장	머플러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412	장	스카프
413	개	모자
419	※	기타 편조 악세사리
3216		용단 및 자리 제조업
32161		용단 제조업
100	m ²	카펫(용단, 양탄자)
32162		자리 제조업
111	※	돗자리
112	※	프라스틱자리
119	※	기타 자리제품
3217		끈 및 끈 가공품 제조업
32171		끈 및 로우프 제조업
1		끈
111	※	식물성 섬유 끈
112	※	인조섬유 끈
113	※	종이 끈
2		로우프
211	kg	식물성 섬유로우프
212	kg	인조섬유 로우프
213	kg	종이 로우프
32172		연승 및 어망 제조업
111	kg	연승
112	kg	어망
3217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끈 및 끈가공 품 제조업
100	kg	망 위장망, 안전망, 화물망, 무대 배경망, 쇼핑망, 운반용망 등 (운동용 망은 3903에 분류)
900	※	기타 끈 제품 (줄사다리, 끈으로 만든 걸레 등)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32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섬유제품 제조업	112	※	새끼
32191		재면업	119	※	기타 고공품
1		솜	32196		위생용 섬유제품 제조업
111	kg	면솜	111	※	봉대
112	kg	인조섬유 솜	112	※	탈지면
119	※	기타 솜	113	※	마스크
200	※	위당 제품 및 그 증전물	119	※	기타 위생용 섬유제품
32192		펠트 및 부직포 제조업	321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섬유 제 품 제조업
100	※	부직포	1		회수섬유
211	m ²	펠트	111	※	울쇼디
212	※	펠트 제품	112	※	회수 면섬유
32193		타이어코드 및 타이어직물 제조업	113	※	회수 견섬유
111	kg	면타이어 코드사	114	※	회수 마섬유
112	kg	인조섬유 타이어 코드사	115	※	회수 인조섬유
113	※	유리섬유 타이어 직물	116	※	섬유프록 및 밀넛
114	kg	면타이어 직물	900	※	기타 섬유제품
115	kg	인조섬유 타이어 직물	322		의복제조업, 신발제의
32194		도포 또는 삼투직물 제조업	3221		마춤복 제조업
111	※	검 또는 전분성 물질 도포직물 (주로 책 외표지로 사용되는 것)	32211		남자용 마춤양복 제조업
112	※	투사포	111	착	양복
113	※	회화용 캔버스	112	착	코트
114	※	버크럼, 도자 보강재	119	※	기타 마춤정장복
115	※	유사 가죽	32212		여자용 마춤양장외의 제조업
116	※	유포	111	착	양장복(원피스, 투피스 등)
117	※	왁스 또는 규산염 도포직물	112	착	코트
118	※	접착섬유 테이프	119	※	기타 마춤정장복
211	※	작물기저 리놀눔 및 유사정포및 마루덮개	32213		한복마춤 제조업
212	※	타포런	111	착	남자용 한복
219	※	기타도포 또는 삼투직물	112	착	여자용 한복
32195		고공품 제조업	119	※	기타 전통 의복
111	※	가타니	322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마춤복 제조업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1		셔츠	111	착	기성양장복(원피스, 투피스, 여성 캐주얼정장 등)
111	매	와이셔츠	112	착	코트
112	매	티셔츠	113	※	브라우저
119	※	기타 셔츠	114	매	셔츠
200	착	하의	115	착	드레스
300	착	작업복	11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여자용 기성의 의
400	※	브라우저 및 드레스			
900	※	기타 마춤복			
3222		기성복 제조업	32224		소아용 기성의의 제조업
32221		남자용 기성양복 제조업	111	※	드레스, 브라우저 및 셔츠
111	착	양복	112	착	코트 및 양복
112	착	코트	119	※	기타 소아용의의
119	※	기타 기성 정장복	32225		내의 제조업
32222		셔츠, 작업복 및 관련기성복 제조 업			(구입한 직물과 편조물을 결합 및 봉제하여 내의 및 기타의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1		셔츠	111	※	브래지어, 거들, 콜셋 및 관련의복
111	매	와이셔츠	112	※	소아용 내의 및 잠옷 (7세 미만)
112	매	티셔츠	113	※	여자용 내의 및 잠옷
113	매	정복 셔츠	200	※	남자용내의 및 잠옷
119	※	기타 셔츠	32226		가죽 및 모피의복 제조업
121	※	셔츠 부품	111	착	남자용 가죽의복
200	착	하의	112	착	여자용 가죽의복
300	착	작업복	113	착	인조 가죽의복
400	착	보통의의 점퍼자켓, 반코트, 남성캐주얼 웨어 더블코트, 헌팅코트 및 자 켓, 점퍼 등	211	착	남자용 모피의복
500	착	경기복	212	착	여자용 모피의복
600	착	수영복	213	착	인조 모피의복
900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셔츠, 기성복 및 관련기성복	32227		모자 제조업
32223		여자용 기성의의 제조업	1		모자 보디
			111	※	펠트모자 보디
			112	※	워운모자 보디

분류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2		모자
211	개	펠트 모자
212	개	엮은 모자
213	개	직물봉제 모자
219	※	기타 모자(비닐모자, 밀짚모자, 갓 포함)
300	※	모자에 부착하는 악세서리
32228		장갑 제조업
111	조	직물제 장갑
112	조	가죽 장갑
113	조	모피 장갑
114	조	인조 가죽장갑
32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성복 제조업
1		기타 의복
111	착	한복
112	착	종교복, 학사복 및 기타 유사 의복
113	착	방수복
114	착	위생복
115	착	방열복(소방용등)
11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의복
2		의복 악세서리
211	개	타이 및 유사 남자용 목도리
212	개	쇼울 및 유사 여자용 목도리
213	※	벨트
219	※	기타의복 악세서리 직물제 시계줄, 바지벨트, 손수건 포함
323		가죽, 대용가죽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발과 의복 제외
3231		가죽 제조업
32311		원피 가공업
111	m ²	쇠가죽(1 S/F ≒ 0.0929m ²)

분류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112	m ²	말가죽
113	m ²	돼지가죽
211	m ²	양가죽
212	m ²	염소가죽
311	m ²	무두질(새우)손질가죽
312	m ²	파치먼트손질가죽
400	m ²	페인트 및 금속화가죽
500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죽(파충류, 수산동물 및 물고기 가죽 포함)
600	※	소모한 무두질 겹질
32312		재생 및 인조가죽 제조업
100	m ²	재생가죽
200	m ²	인조가죽
3232		모피 및 모피제품 제조업
32321		원모피 처리업
111	m ²	잔털동물 손질 모피 소, 말, 양, 염소, 노루, 사슴, 낙타, 개 등
112	※	기타 손질 모피 물개, 멧크 등
32322		인조모피 제조업
100	m ²	인조모피
32323		모피제품 제조업
100	※	모피제품(의복은 32226에 분류)
3233		가죽 및 대용가죽제품 제조업, 신발 및 의복 제외
32331		산업용 가죽제품 제조업
111	※	콘베이어벨트 고무제 콘베이어벨트는 355에 분류 프라스틱제 콘베이어벨트는 356에 분류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112	※	기계용 가죽제품
119	※	기타 산업용 가죽제품
32332		가방 제조업
100	개	가방
32333		핸드백 제조업
100	개	핸드백
200	개	지갑
32334		가죽케이스 제조업
100	개	가죽케이스
323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죽 및 대용 가죽제품 제조업
100	개	마구(말, 자전거의 안장)
900	※	기타 가죽제품
324		신발 제조업, 성형고무 및 프라스 틱 신발제의
3240		신발 제조업, 성형고무 및 프라스 틱 신발제의
32401		가죽신 제조업
1		단화
111	족	남자용 단화
112	족	여자용 단화
113	족	캐주얼화(남, 여용)
114	족	아동화
200	족	가죽장화(부츠, 반상화, 군화포 함)
32402		특수용 신발 제조업
111	족	작업화
112	족	등산화
113	족	경기용 신발
119	※	기타 특수용 신발
32403		가정용슬리퍼 및 유사신발 제조업
111	족	슬리퍼(실내화)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119	※	기타 특수재료 신발
32404		신발재단물 및 부속품 제조업
100	※	신발재단물 및 부속품
324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발 제조업, 성형고무 또는 프라스틱신발 제외
100	※	각반 및 유사 제품

중분류 3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포함

분 번	류 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분 번	류 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331			나무 및 콜크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13		※	건물 구조재 기둥, 서까래, 지주 등
3311			제재업 및 목재 가공업	114		※	목재 건물-조립 조립식 건물, 오두막, 차고, 격 납고, 가축우리, 토끼장, 벌통, 개집 등
33111			일반 제재업(1㎡≒300才)	115		개	문(창문 포함)
1			소할재	33113			박판 제조업
111	m		육송 소할재	111	m		무늬목 박판
112	m		미송 소할재	112	m		나무도시락 및 성냥갑 제조용 박판
113	m		기타 침엽수 소할재	113	m		합판제조용 박판
114	m		라왕 소할재	119	※		기타 박판(박판 상태의 칩우드, 우 드서어빙 포함)
115	m		기타 활엽수 소할재	33114			합판 및 관련 나무판 제조업
2			각재	111	m		보통 합판
211	m		육송 각재	112	m		미장 합판(가공합판)
212	m		미송 각재	113	m		블록보드, 라민보드 및 배튼보드
213	m		기타 침엽수 각재	114	m		새포형 나무판재
214	m		라왕 각재	33115			개량목재 및 재생목재제조업
215	m		기타 활엽수 각재	111	m		개량 목재 삼투(침척), 초밀화 또는 두가 지 공정으로 밀도나 강도를 증 가시킨 나무
3			판재	112	m		재생목재(파아티클보드, 칩보드, 하드보드)
311	m		육송 판재	113	m		화장 및 표면처리 목재
312	m		미송 판재	119	※		기타 개량 및 재생 목재
313	m		기타 침엽수 판재	33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재업 및 목 재 가공업
314	m		라왕 판재	111	※		필프제조용 우드칩
315	m		기타 활엽수 판재	112	※		울, 목분 및 나무토막 우드울은 고급나무 스리버로 구
4			마루 판재				
411	m		침엽수 마루 판재				
412	m		활엽수 마루 판재				
900	※		기타 재제품 및 부산물				
33112			목재건구 제조업				
111	※		목재 구슬선 쇄설이				
112	※		건물 부착물 셔트, 계단, 문틀, 현관, 창살세 공, 난간, 장부마루, 블록 등 조 립한 마루판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113	※	성되었으며 영킨 덩어리 형태로 꼬여져 있다.	112	※	약제품 상자
		스리버는 일정 규격 및 두께와 비교적 길이가 일정한 것이다.	119	※	기타 절목상자(성냥갑 등)
		목본은 대패밥, 톱밥 및 기타 부 스러기 나무를 마쇄하여 얻거나 톱밥을 채질하여 얻는다.	33124		목합 제조업
		인발목, 성냥개비, 나무못 또는 신 발용편	111	※	여행용 캐
		인발목은 성냥개비, 나무못 등 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얇고 등 근 나무조각이다.	112	※	기구 케이스 칼, 총, 제도기구, 악기, 과학기 구용 케이스
114	본	침목	119	※	기타 목합
114	※	포장블록 및 통널	33125		동세공용기 제조업
116	※	나무지방 타일	111	※	산업용 바구니 등, 대, 버들, 고리버들, 갈대, 칠우드, 인발목, 식물성 섬유접 질, 모노필, 종이띠 등으로 엮어 만든 산업 또는 상업용으로 쓰 이는 용기, 물고기 및 과일바구 니, 빵배달용 바구니, 세탁물 취 급용 바구니 등
200	※	나무 부스러기	112	※	개인 또는 가정용 바구니
3312		목재용기 및 동세공품 제조업	113	※	동세공 반제품
33121		통 제조업	331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목재용기 및 동세공품 제조업
111	개	액체용 통	111	※	부채틀(부채는 39099로 분류)
112	개	고체용 통	112	※	채
113	※	통 부품	11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동세공품
33122		목재 화물상자 제조업	33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나무 및 콜크 제품 제조업
111	※	포장 상자	33191		콜크 및 콜크제품 제조업
112	※	드럼 및 바렐	100	※	콜크 및 콜크제품
113	※	펠리트 및 스킵드 포장상자를 올리고 싣고 운반하 는데 용이하게 설계된 장치로서 통상 포크리프트 트럭에 사용된 다.	33192		위생 및 가정용 목제품 제조업
119	※	기타 화물용기	111	※	위생 및 식탁용 목제품 스푼, 포크, 위생저, 이쑤시개 등
33123		절목상자 제조업			
111	※	도시락 상자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112	※	주방 및 가정용 목제품 밥주걱, 도마, 조립식기, 양념 통, 국수봉, 세탁판, 옷걸이, 접 시, 컵 등
33193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111	※	그림틀, 거울틀, 사진틀 및 유사제 품
112	※	장식용 나무제품 소형 가정용품 약상자, 화장용 품상자, 장식성 옷걸이, 동물모 형, 재떨이조상, 나무조명부착 물 등
33194		목재도구 및 기구 제조업
111	※	목재도구 나무도구, 도구몸체, 도구손잡 이 및 유사제품, 망치, 포크, 삽 등의 몸체, 총대 등
112	※	실꾸리
119	※	기타 목재도구 및 기구 사다리, 용적측정구, 목수작업 대 주형대턴, 망에 등
33195		목관 제조업
100	※	관 시체 화장 및 매장에 사용되는 목관
331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나무 및 콜크 제품 제조업
100	※	나무신
900	※	기타 나무 및 콜크제품
332		가구 및 장치물 제조업, 금속제 제외
3320		가구 및 장치물 제조업, 금속제 제외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33201		일반 목재가구 제조업
111	개	의자
112	개	책상
113	개	서가
114	개	장식장
115	개	장롱 (옷장포함)
116	개	화장대
117	개	식탁
118	개	상
121	개	찬장
122	개	침대
123	개	캐비닛
124	개	신발장
125	개	옷걸이대
126	개	요람
127	개	문갑
128	개	싱크대
129	※	기타 가구
200	※	공공건물용 가구 교회가구, 학교가구, 법정가구, 도서관가구, 실험 및 과학용가 구, 공원벤취, 휴대용 의자 등
33202		매트리스 및 내장가구 제조업
111	※	가정용 내장가구(소파, 의자등)
112	※	공공건물용 내장가구
200	※	이중용도 가구
300	※	차량용 내장가구
400	※	매트리스 및 쿠션
33203		나전칠기 가구 제조업
111	개	나전칠기제 장롱
112	개	나전칠기제 문갑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113	개	나전칠기제 화장대			
119	※	기타 나전칠기제 가구 (장식용 나전칠기제품은 39051 에 분류)			
33204		등가구 제조업			
100	※	등가구 등, 대, 버들, 갈대 등의 재료로 만든 가구			
33205		가정용장비 장치 캐비닛 제조업			
100	개	목재 가정기기용 캐비닛(T.V. 전 축, 재봉틀등의 캐비닛)			
33206		상점장치물 및 관련제품 제조업			
100	※	상점장치물			
200	※	작업장 장치물			
332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구 및 장치 물 제조업			
100	※	차양			
900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구 및 장치 물			

중분류 34.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분류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분류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341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13	※	광물성지(석면지)
3411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19	※	기타 건축용지
34111		펄프 제조업	34116		한지 및 수제지 제조업
100	㎏	기계펄프(쇄목펄프, 정제쇄목펄프)	111	천매	창호지
2		화학펄프	112	※	서예지
211	㎏	화학 및 반화학펄프	113	※	화선지
212	㎏	황산 및 소오다펄프	114	m ²	장판용 한지
213	㎏	비록재펄프 질펄프, 바가스펄프, 대펄프, 갈대펄프, 님마펄프, 린터펄프 등	119	※	기타 한지
214	㎏	아황산펄프	34117		상자용판지 제조업
300	㎏	식물성섬유펄프(2차섬유펄프)	111	㎏	마닐라 판지
34112		신문용지 제조업	113	㎏	고형표백판지(식품포장용)
100	㎏	신문용지	119	※	기타 상자용 판지(접을 수 없는 화물상차용, 가방제조용판지 포함)
34113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신문용지제외	34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11	㎏	백상지(모조지)	111	㎏	골판지원지
112	㎏	갱지	112	※	식물성 파치먼트 및 그라신지
113	㎏	중질지	113	※	위생용원지(나프킨원지, 화장지원지, 티슈원지 등)
114	㎏	아트지	114	㎏	특수박엽지 카본원지, 스텐실(등사)원지, 절연지, 차봉지원지, 옷본원지 등
115	㎏	그라비아용지	115	※	아황산포장지
116	㎏	지폐용지	119	※	기타 기계종이 가스킷원지, 지형원지, 여과지, 마분지등
117	㎏	인디아지	3412		종이 및 판지용기 제조업
118	㎏	제표카드용지	34121		골판지상자 제조업
119	※	기타 인쇄 및 필기용지	100	천m ²	골판지 상자
34114		크라프트지 제조업	34122		종이포대 제조업
100	㎏	크라프트지	111	천매	크라프트지포대
34115		건축용지 제조업			
111	m ²	파이버보드			
112	※	종이펠트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112	※	백
34123		판지상자 제조업
100	※	판지상자
34124		위생용식품용기 제조업
111	천개	종이컵
112	천개	액체우유 및 음료용기
119	※	기타 위생용 식품용기
34125		경화섬유포장용기 및 관련제품 제조업
100	※	파이버상자 선적용, 진열, 판매용 및 저장용 용기
200	※	캔 및 드럼
341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종이 및 판지 용기 제조업
100	※	기타 종이 및 판지용기 실구리, 박스화일, 편지함 및 유 사제품, 서류케비닛, 저장함, 유사고형 및 내구성상자
34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펄프,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34191		벽지 제조업
111	m ²	벽지
112	※	링크러스타 매우 무게가 있는 종이 재료에 아마유 및 충전제의 건성 혼 합·도포하여 만든 것으로 벽 또는 천정장식용에 적합하도록 양각디자인 인쇄 또는 기타장식 이 되어있다.
113	※	창 투명지
34192		위생용종이제품 제조업, 용기제외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111	kg	화장지 (1회용화장지포함)
112	kg	나프킨지
113	kg	생리대
114	kg	종이기저귀
115	kg	종이타월
119	※	기타 위생용종이제품
34193		적층 및 표면처리지 제조업
111	※	복합지 접착제로 여러겹의 종이를 붙여 만든 판지로서 속에 직물, 금속 망, 플라스틱등으로 보강하기도 한다.
112	※	금속박지(알미늄, 은박지 등)
113	※	도포 또는 침착지 인화지는 352에 분류
114	※	채색 또는 인쇄지 인쇄지는 포장인쇄등의 주된 목 적에 단순한 부수적인 인쇄에 한한다.
115	※	양각 또는 천공지 종이를 만든 후 가공한 것
116	천m ²	골판지(원지는 34119111에)
119	※	기타 적층 및 표면처리지
34194		문구용지 제조업
111	백매	각종 봉투
112	백매	원고지
113	백매	편지지
900	※	기타 문구용지
34195		압형 펄프제품 제조업
111	※	여과 부록
119	※	기타 압형펄프제품 혼용지는 34193, 혼용지로 탈,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가면, 조상 및 공예품을 제조하 는 활동은 3909에 분류
34196		사무기계용 종이제품 제조업
111	※	컴퓨터용지
112	※	전신 및 텔레타이프 라이터지
113	※	천공용 카드
114	※	자동기록지(모노타이프용 자동기 록지, 모노타이프지 등)
119	※	기타 사무기계 용지 카아본지 및 복사지는 39092에 분류 일반타자용지는 34194에 분류
341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펄프,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111	※	담배용지(원지상태의 것은 34119114로 분류)
112	※	셀로판지
11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종이제품
342		인쇄, 출판 및 관련산업
3421		신문발행, 출판 및 인쇄물 제조업
34211		신문 발행업
111	천부	일간신문
112	천부	비일간신문
34212		정기간행물 발행업
100	천권	정기간행물 주간잡지와 일간전문지 포함
34213		서적 출판업
111	천권	서적
112	※	팜프렛 5page이상 48page이하의 서적
34214		사무용 인쇄물 및 유사제품 제조업
111	천권	노트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112	천권	장부책
113	천권	일기책
114	천권	앨범
115	천권	스케치북
116	천권	바인더
119	※	기타노트, 장부 및 유사제품
342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문발행, 출 판 및 인쇄물 제조업
100	※	약보
200	※	지도 지도, 수도, 차도
300	※	어린이 그림
4		기타발간물
411	※	연하장
412	※	장식포스터 및 회화 복사물
41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발간물
5		우표류
511	※	우표, 수입인지, 봉합엽서 및 엽서
519	※	기타 우표류
611	※	화폐
612	※	주식, 채권 및 유사 권리증서 수표책, 산용장, 여행자수표, 배당쿠폰, 주문서 등
900	※	기타인쇄물 달력, 전사물, 서식, 종이 라 벨, 놀이용카드(포카, 화투), 극장표, 열차표등
3422		상업 인쇄업
34221		일반 인쇄업(임가공)
100	※	일반인쇄물
34222		경인쇄업(임가공)
100	※	경인쇄물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34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업 인쇄업 (임가공)			
100	※	기타 상업인쇄물			
3423		인쇄관련산업			
34231		제책업(임가공)			
100	※	제본			
34232		사진 제판업 (임가공)			
111	※	조판 및 연판			
112	※	음쇄 인쇄판			
113	※	사진판			
119	※	기타 사진원판			
34233		식자 및 시각 제판업 (임가공)			
100	※	활판식자 및 관련제판			
200	※	식각제판			
342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인쇄관련산업			
100	※	기타 제판 및 조판			
900	※	기타 인쇄관련 서어비스업(광고수 입 포함)			

중분류 35.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분류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분류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351		산업용 화합물 제조업	131	※	아크릴로 니트릴
3511		유기화학제품 제조업	139	※	기타 지방족계 석유화학유도품
35111		석유화학계 기초제품 제조업	35113		방향족계 석유화학유도품 제조업
111	※	에틸렌	111	※	스티렌모노머
112	※	프로필렌	112	※	알킬벤젠
113	※	포화비환식 탄화수소(탄소원자 5 이상인 핵산, 헵탄, 옥탄, 데칸 등)	113	※	T. D. I. (톨루엔 디 이소시아네이트)
114	※	부타디엔(폴리에틸렌탄화수소)	114	※	D. M. T
121	※	벤젠	115	※	페놀
122	※	톨루엔=메틸벤젠	116	※	사이클로hex산
123	※	혼합크실렌(크실렌=디메틸벤젠)	121	※	무수마레인산
124	※	올소크실렌	122	※	무수프탈산
125	※	파라크실렌	123	※	O. T. S. A. (사카린원료)
131	※	매탄올	124	※	테레프탈산(T. P. A.)
139	※	기타 석유화학계 기초제품	125	※	아니린
35112		지방족계 석유화학유도품 제조업	126	※	카프로락탐
111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127	※	멜라민(수지는 35114123)
112	※	4 염화탄소(소화기액포함)	129	※	기타 방향족계 석유화학유도품
113	※	클로로메탄(염화메틸, 클로로메틸)	35114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114	※	트리클로로에틸렌	111	※	페놀수지(페놀은 35113115)
115	※	염화비닐모노머(V. C. M.)	112	※	요소수지
116	※	트리클로로디(클로로페닐)메탄	113	※	알키드수지
121	※	부틸알콜	114	※	불포화성폴리에스터
122	※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115	※	폴리우레탄
123	※	에타날(아세트알데히드)	116	※	에폭시드수지
124	※	초산	117	※	실리콘수지
125	※	초산메틸, 에틸 및 부틸	118	※	폴리아미드 및 슈퍼폴리아미드수지
126	※	2 에틸 헥실알콜	121	※	선형폴리에스터수지
127	※	폴리프로필렌글리콜(P. P. G.)	122	※	폴리에틸수지
128	※	프로필렌글리콜(P. G.)	123	※	멜라민수지(멜라민은 35113127)
			124	※	아미노수지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131	※	고밀도 폴리에틸렌(프라스틱 필름 은 35601에 분류)	119	※	기타 검 및 나무화학물
132	※	저밀도 폴리에틸렌	35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기화학물 제 조업
133	※	폴리프로필렌(P.P)	111	※	포르말린=메타날(포름알데히드)
134	※	폴리스티렌(P.S)	112	※	의산(개미산)
135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A.B.S수지)	113	※	스테아린산
136	※	폴리염화비닐(P.V.C)	114	※	구연산
137	※	폴리초산비닐	115	※	수산
149	※	기타 프라스틱물질	116	※	주석산
35115		합성고무 제조업	117	※	아세틸살리실산
111	※	스티렌부타디엔고무라텍스(S.B. R-Latex)	118	※	요소(요소비료로서의 요소화합물 은 35151 115에 분류)
112	※	스티렌 부타디엔고무(S.B.R)	211	※	에틸, 에틸알콜, 에틸페놀, 에틸 알콜 페놀, 알콜과산화물 및 그 들의 유도체
113	※	폴리부타디엔(B.R)	212	※	에폭시드, 에폭시알콜, 에폭시페 놀, 에폭시에틸 및 그 유도체
114	※	부틸고무(I.I.R.)	213	※	아세탈, 헤미아세탈, 단일 또는 복 합산소 관능아세탈 및 그 유도 체
119	※	기타 합성고무	214	※	산소관능의 아미노화합물
200	※	렉티스	215	※	제 4 암모늄과 수산화 제 4 암모늄
35116		석탄화학제품 제조업	216	※	아미드관능화합물
111	※	나프탈렌	217	※	아미드 및 이민관능화합물
112	※	안트라센	312	※	테트라에틸렌
113	※	크레졸	313	※	락톤과 기타 락탐
114	※	크레오솔트유	314	※	셀폰아미드
119	※	기타 석탄화학제품	315	※	효소
35117		검 및 나무화학물 제조업	316	※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 당에틸, 에 스터 및 그들의 염
111	※	터르펜틴경	319	※	기타 유기화합물
112	※	로진, 수지산 및 유도체	3512		무기화학제품 제조업
113	※	로진경 및 로진오일			
114	※	피치			
115	※	숯			
116	※	톨오일			
117	천개	착화탄(번개탄)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35121		무기산 제조업	318	※	과산화수소
111	※	불소	411	※	탄화칼슘(카바이트)
112	※	취소	412	※	염소산칼륨
113	※	옥소	413	※	명반
114	※	유황	414	※	침강탄산마그네슘
115	※	셀레늄	415	※	침강탄산칼슘
116	※	텅스	416	※	탄산칼슘
117	※	인	417	※	이산화망간
118	※	비소	418	※	수산화마그네슘
121	※	규소	511	※	불화수소산
122	※	붕소	512	※	염화마그네슘
123	※	수은	513	※	황산마그네슘
124	※	알카리금속원소 : 리튬, 나트륨, 칼륨 세슘	514	※	치아염소산칼슘
125	※	알카리토류금속원소 : 칼슘, 스트 론튬, 바륨등	515	※	과망간칼륨
126	※	희토류금속원소 : 세륨, 페르븀, 에르	516	※	황산제 1 철
127	※	이트륨 및 스칸듐	517	※	황산아연
211	※	황산 및 올레움(98% 기준)	518	※	탄화규소
212	※	이산화유황	611	※	규산칼슘
213	※	질산	612	※	질산칼륨
214	※	5 산화인 및 인산	613	※	염화칼슘(염화석회)
215	※	클로로셀폰산 및 황질산	614	※	수산화암모늄
311	※	이류화탄소	900	※	기타무기산화합물(화학원소)
312	※	산화 및 과산화아연	35122		가성소다 및 관련제조업
313	※	산화티타늄, 이산화티타늄	111	※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 : 100%기 준)
314	※	암모니아	112	※	수산화칼리=가성칼리(가소제)
315	※	산화알루미늄, 과산화알루미늄, 인조코런덤	113	※	탄산나트륨=소다회=무수탄소다
316	※	황산알루미늄	114	※	탄산칼리(탄산칼륨)
317	※	황산동	115	※	중탄산나트륨(중조), 과산화나트륨
			116	※	염소
			117	※	염산(35%기준)(염화수소산)
			118	※	시아나화나트륨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211	※	규산나트륨(규산소다)	211	※	단백질물질
212	※	이크롬산소다	212	※	인조흑연
213	※	염소산소다	213	※	활성탄소 및 기타 활성광물질
214	※	황산나트륨(망초)	214	※	동물블랙
215	※	아황산나트륨(무수망초)	215	※	합성귀석 및 반귀석
216	※	황화나트륨	216	※	조제금속탄화물 및 해감금속탄화물
217	※	인산나트륨(인산소다)	217	※	배양크리스탈
218	※	질산나트륨	218	※	화이트 카본(유기, 무기 포함)
311	※	황화수소나트륨	219	※	기타 무기화합물
312	※	붕산나트륨			
900	※	기타 가성소다제품			
35123		산업용가스 제조업	3513		염료, 안료 및 유연제 제조업
111	m ³	산소(1ℓ=1,429g)	35131		염료 제조업
112	m ³	질소	111	※	직접염료
113	m ³	희소가스: 네온, 아르곤, 크립톤 및 제논	112	※	산성염료
114	m ³	액체공기	113	※	염기성염료 및 카치온염료
115	kg	아세티렌가스	114	※	매염염료 및 산성매염염료
116	m ³	크로로불화메탄 및 에탄	115	※	황화염료 및 황화건염염료
117	m ³	혼합산업용가스	116	※	건염염료
211	m ³	수소	117	※	분산염료
212	m ³	헬륨	118	※	천연람
213	m ³	이산화탄소(드라이아이스)	121	※	무생염료(아조염료)
214	m ³	일산화탄소	122	※	반응성염료
215	m ³	산화질소 및 산화질산	123	※	유기용제 용해염료
219	※	기타 산업용가스	124	※	형광백염료
351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기화학제품 제조업	125	※	유기합성 유기염료
111	※	해분열성 화학원소 및 동위원소	126	※	컬러레이크
112	※	방사성화학원소 및 동위원소	129	※	기타합성유기염료
113	※	해분열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및 동위원소화합물	35132		안료 및 착색제 제조업
			1		무기안료
			111	※	연산화물 적연 및 황연
			112	※	광물성 블랙(흑색안료)
			113	※	색토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114	※	티타늄화이트(산화티탄백색안료)	112	※	재생섬유소 및 섬유소의 가소성 유 도체
115	※	프래시안블루(감청)	113	※	재생섬유소, 섬유소의 화학유도체 및 섬유 제 1 차제품
116	※	울트라마린(군청)	35142		재생섬유 제조업
117	※	아연회(백색안료)	1		재생장섬유
118	※	산화철(적색안료)	111	※	비스코스레이온
119	※	기타무기안료 및 착색제	112	※	동암모니움레이온
2		유기안료	113	※	아세테이트섬유
211	※	레이크안료	114	※	카세인섬유
212	※	아조제안료	115	※	알긴산섬유
213	※	푸타로시아닌블루계안료	119	※	기타 재생장섬유
214	※	푸타로시아닌그린계안료	200	※	모노필 및 스트립(인조짚)
219	※	기타유기안료 및 착색제	3		재생단섬유
3		조제안료	311	※	비스코스레이온
311	※	조제무기안료	312	※	동암모니움레이온
312	※	조제유기안료	313	※	아세테이트섬유
313	※	조제유백제	314	※	카세인섬유
314	※	조제법랑유약	315	※	알긴산섬유
315	※	조제라스터	319	※	기타 재생단섬유
316	※	마스타벳치	4		재생장섬유트우(인조섬유제조용)
319	※	기타조제안료 및 관련제품	411	※	비스코스레이온
35133		염색 및 유연제엑스와 합성유연제 제조업	412	※	동암모니움레이온
111	※	식물성 색소질	413	※	아세테이트섬유
112	※	동물성 색소질	414	※	카세인섬유
113	※	식물성 탄닌엑스	415	※	알긴산섬유
114	※	탄닌산 및 유도체	419	※	기타 재생장섬유트우
115	※	합성유기 및 무기유연제	35143		합성섬유 제조업
3514		화학섬유 제조업	1		합성장섬유
35141		재생섬유소 및 섬유소의 화학유도 체 제조업	111	※	수퍼폴리아미드섬유(나이론섬유)
111	※	가소하지 않은 섬유소의 화학유도 체	112	※	수퍼폴리우레탄섬유
			113	※	수퍼폴리에스터섬유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114	※	폴리비닐아세테이트섬유	114	※	칼슘시안아미드
115	※	폴리비닐아크릴섬유	115	※	요소(순수요소는 35119 118에 분류)
116	※	염화폴리비닐섬유	116	※	질산칼슘
117	※	폴리비닐알콜섬유	117	※	염화암모늄(염안)
118	※	폴리텐계섬유	119	※	혼합질소질비료 및 기타 질소질 비 료(석회질소 포함)
119	※	기타 합성장섬유	35152		인산질비료 제조업
200	※	모노필 및 스트립(인조짚)	111	※	순수인산비료
3		합성단섬유	112	※	용성인비
311	※	수퍼폴리아미드섬유(나이론)	113	※	소성인비
312	※	수퍼폴리우레탄섬유	119	※	기타 인산질비료(파린산석회)
313	※	수퍼폴리에스터섬유	121	※	용과린
314	※	폴리비닐아세테이트섬유	122	※	혼합인산질비료
315	※	폴리비닐아크릴섬유	35153		칼리질비료 제조업
316	※	염화폴리비닐섬유	111	※	황산칼리
317	※	폴리비닐알콜섬유	112	※	염화칼리
318	※	폴리텐계섬유	119	※	혼합칼리질비료 및 기타 칼리질 비 료(유산고토비료 포함)
319	※	기타 합성단섬유	35154		복합비료 제조업
4		합성장섬유토우	100	※	복합비료
411	※	수퍼폴리아미드섬유(나이론)	35159		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학비료 제조 업
412	※	수퍼폴리우레탄섬유	100	※	유기질비료(배합도 포함)
413	※	수퍼폴리에스터섬유	900	※	기타 화학비료
414	※	폴리비닐아세테이트섬유	3516		농약 제조업
415	※	폴리비닐아크릴섬유	35160		농약 제조업
416	※	염화폴리비닐섬유	111	※	살충제(파리, 모기용은 35224 119)
417	※	폴리비닐알콜섬유	112	※	살균제
418	※	폴리텐계섬유	113	※	제초제
419	※	기타 합성장섬유토우	114	※	살서제(취약)
3515		화학비료 제조업	115	※	성장조절제(성장억제, 촉진제)
35151		질소질비료 제조업	119	※	기타 농약(가정용 살균, 살충, 소
111	※	순수황산암모늄(유안)			
112	※	황질산암모늄			
113	※	질산암모늄(질안)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독제는 35229)
35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3521		도료 제조업
35211		유성 및 수지도료 제조업
111	ℓ	바니쉬
112	ℓ	에나멜
113	ℓ	유성페인트(조합페인트)
119	※	기타 유성도료
35212		수성도료 제조업
111	ℓ	수성페인트
112	※	디스토퍼 및 유사제품
35213		섬유소유도체도료 제조업
100	ℓ	래커(락카)
35214		옷칠 제조업
100	kg	옷칠
200	kg	카슈
35215		도료관련제품 제조업
111	ℓ	조제건조제
112	ℓ	발광도료
113	ℓ	신너(복합솔벤트)
114	※	도료용 복합확장제
352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료 제조업
100	※	아미유에 넣은 안료 및 스텝핑포일
3522		의약품 제조업
35221		생물학적제제 제조업
111	※	항혈청 및 미생물백신
112	※	독신, 미생물배양물 및 유사제품
113	※	유기요법신 또는 기타기관
114	※	유기요법엑스 및 기타 동물물질
119	※	기타 생물학적제제
35222		의료화학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
111	※	비타민 및 프로비타민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112	※	홀몬
113	※	그리코시드 및 그 유도체
114	※	식물성 알카로이드 및 그 유도체
35223		항생의약품제조업
111	※	페니실린
112	※	스트렙토마이신
113	※	크로르테트라사이클린
114	※	액티노마이신
115	※	가나마이신
116	※	세팔로스포린계 유도체
119	※	기타 항생제
35224		의약제 제품 제조업
111	※	신경계용약
112	※	기관계용약(순환 및 감각)
113	※	소화기관계용약
114	※	홀몬제
115	※	비타민제
116	※	항감염제
117	※	자양강장변질제
118	※	외피용약
119	※	기타 의약품
35225		동물 약제품 제조업
111	※	신경계용약
112	※	기관계용약
113	※	대사성약
114	※	항병원성약
115	※	항생물질 제제
116	※	생물학적 제제
119	※	기타 동물약품제
35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의약품 제조업
100	※	한의약제
200	※	공중위생 및 가정용약제(소독, 살

분 번	류 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900	※	균, 살충제)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의약품
	3523		비누, 세정제, 계면활성제 및 화장 품 제조업
	35231		비누 제조업
	111	※	세탁비누
	112	※	화장비누
	113	※	소독비누
	114	※	공업용비누
	115	※	액체비누
	119	※	기타비누
	35232		합성세제 제조업
	111	※	연성세제제조업
	112	※	경성세제제조업
	200	※	세척분 및 페이스트
	35233		계면활성제 제조업
	111	※	유기계면활성제
	112	※	조계계면활성제(세제는 제외)
	119	※	기타 계면활성제
	35234		치약 제조업
	111	※	치약
	112	※	치분
	35235		화장품 제조업
	1		기초화장품
	111	※	화장수(밀크 및 스킨로손 포함)
	112	※	크림(쿨드, 영양, 크린싱, 바니싱, 표백등)
	119	※	기타 기초화장품(맛사지오일 및 팩류등)
	2		색조화장품
	211	※	립스틱
	212	※	분(컴팩트 포함)

분 번	류 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213	※	화운데이션
	219	※	기타 색조화장품(불연지등)
	3		모발화장품
	311	※	샴푸
	312	※	린스
	313	※	머리기름(포마드 포함)
	314	※	염색약
	319	※	기타 모발화장품(헤어크림, 리퀴 드류, 퍼머넌트로션등)
	4		기타 화장품
	411	※	매니큐어
	412	※	매니큐어제거제
	413	※	눈화장품(아이라인, 펜슬, 샤도 우, 마스크라등)
	414	※	일소방지용 화장품(선스크린 및 크림등)
	415	※	향수제품
	419	※	기타화장품
	352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누 세정제 계면활성제 및 화장품 제조업
	111	※	글리세롤 및 글리세롤라이 글리 세린
	112	kg	구강세척제
	113	kg	방취제
	119	※	기타 구강세척제, 방취제 및 관련 제품
	35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학제품 제조 업
	35291		접착제 및 제라틴 제조업
	111	※	제라틴
	112	※	공업용 접착제
	113	※	텍스트린 및 가성용 또는 하소한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전분
114	ㄱ	야교
35292		폭약 및 꽃불제품 제조업
1		산업용 화약, 폭약 및 꽃불제품
111	ㄱ	흑색화약
112	ㄱ	다이나마이트
113	ㄱ	초안폭약
114	ㄱ	초유폭약
115	ㄱ	기타 조제폭약
116	㎞	도화선
117	㎞	도폭선
118	천개	뇌관
2		무기용 화약 및 폭약등
200	※	무기용 화약(무연화약, 혼성추진 약등)
35293		성냥 제조업
100	천갑	성냥
35294		카본블랙 제조업
100	ㄱ	카본블랙
35295		광택제 및 특수세척제 제조업
111	ㄱ	동물성왁스
112	ㄱ	식물성왁스
113	ㄱ	인조왁스
114	ㄱ	합성왁스
115	ㄱ	조제왁스
116	ㄱ	광택제
119	※	기타 특수세척제
35296		사진용 화학물 제조업
111	※	사진원판 및 필름(평면상의 것)
112	※	물상필름(영화, 사진, 녹음용 포 합)
113	※	감광지(인화지 포함)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211	㎏	현상제
212	㎏	정착제
213	㎏	증강제 및 감도제
214	㎏	조색제
215	㎏	세정제
216	㎏	감광유제
217	㎏	섬광제
219	※	기타 사진용 화학제품
35297		잉크 제조업
111	ㄱ	인쇄잉크
112	ㄱ	보통필기 및 제도잉크
119	※	기타잉크
35298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
111	㎏	식품용 향료
112	㎏	레지노이드
113	㎏	테르펜 부산물
114	㎏	수정증류물
115	㎏	방향유
119	※	기타 향료 혼합물
352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화학제품 제조업
111	㎏	용제 및 기타 용접용 보조제
112	㎏	녹방지 화합물(이온교환제포함)
113	㎏	부동제
114	㎏	탄소
115	㎏	소화기용 조제품 및 충전물
116	㎏	고체 및 반고체 연료
117	㎏	안티노크세제 및 광물유첨가제
118	㎏	양초
121	㎏	양초피치
122	㎏	주물접합제
123	㎏	클릭크로로디페닐 및 크로로파라핀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124	kg	방수액	311	kl	프로판가스
125	kg	복합접촉 반응제	312	kl	부탄가스
126	kg	복합 경화제	319	※	기타 액화 석유가스
127	kg	산화 방지제	4		석유역청 및 석유코크스
128	kg	항산첨가제(시멘트용)	411	kl	석유역청(아스팔트)
129	kg	P.V.C안정제(열안정제)	412	※	석유코크스
131	kg	잉크지우개 및 스텐실 교정액	419	※	기타 석유잔여물
132	kg	술 정화제	500	kl	정제구리스 - 구리스는 35402
133	kg	수화 실리카겔	600	kl	정제윤활유(윤활기유) - 윤활유 는 35402
134	kg	방청제	354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
135	kg	공업염	3540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
136	※	금속표면 산용액처리 조제품	35401		연탄 제조업
137	※	조제고무 가속제	111	※	연탄(※ = 22공탄 278장, 25공탄 208장, 31공탄 133장)
138	※	조제광택제, 드레싱 및 매연제	112	※	조개탄(마세크탄)
141	※	방염제	35402		구리스 및 윤활유 제조업
14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화학제품	111	kl	구리스(정제구리스는 35300)
353		석유 정제업	112	kl	윤활유(윤활기유는 35300)
3530		석유 정제업	113	kl	변압기용 기름
35300		석유 정제업	114	kl	절삭제
100	kl	조유=부분정제원유	115	kl	세척유
2		정제유	116	kl	주형방출유
211	kl	젯트유(항공기용 가솔린 포함)	117	kl	유압브레이크유
212	kl	휘발유	119	※	기타 비윤활유
213	kl	나프타(납사)	35403		아스팔트 및 기타 포장재료 제조업
214	kl	등유(석유 포함)	111	※	아스팔트(역청질 혼합물)
215	kl	솔벤트(백정)	112	※	타르메카담
216	kl	경유	113	※	타르침척 루핑펠트
217	kl	중유(방카A, B유 포함)	114	※	아스콘
218	kl	방카C유	115	※	루핑보드
219	※	기타 정제유	116	※	아스팔트 토차
3		액화석유가스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119	※	기타아스팔트 및 포장재료 제품	319	※	기타 큐션 또는 솔리드고무타이어
354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	4		부품
111	※	석유제리	411	천개	타이어케이스
112	※	구두약	412	※	호환성 타이어 바닥
113	※	갈탄왁스 및 기타 광물왁스	419	※	기타 타이어부품
114	㎪	액체연료(라이터용)	35512		타이어 재생업
119	※	기타 왁스	100	본	재생공기타이어
211	※	석탄코크스	355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고무제품 제조 업
212	※	광물타르	35591		고무신 제조업
213	※	암모니아성 가스용액 및 소모한 산화물	111	천족	고무신
214	※	분류카본	112	천족	고무장화 및 우화
311	※	콜탈기름	113	천족	운동화
312	※	콜탈피치	200	※	운동화 부품
313	※	콜탈피치코크스	35592		산업용 고무제품 제조업
355		고무제품 제조업	1		비경화 가황고무제품
3551		타이어 및 튜브산업	111	※	가황고무사 및 코드
355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112	※	비경화 가황고무 제 1 차제품(관, 봉, 띠, 프로파일 형태)
1		타이어	113	㎪	비경화 가황고무의 관(고무호스)
111	천본	자동차용 타이어	114	※	고무벨트(콘베이어, V형, 평형포 합)
112	천본	모터사이클용 타이어	115	※	고무침물
113	천본	자전거용 타이어	116	※	고무스폰지
119	※	기타 공기타이어	119	※	기타 비경화 가황고무제품(구입하 여 2차 가공하는 제품은 35599)
2		튜브	200	※	재생고무
211	천본	자동차용 튜브	35593		위생고무제품 제조업
212	천본	모터사이클용 튜브	111	※	관장기
213	천본	자전거용 튜브	112	※	고무주머니(산소주머니, 얼음주머 니등)
219	※	기타 공기타이어 튜브	113	※	침적기
3		큐션타이어			
311	천본	차량용 큐션 또는 솔리드고무 타이 어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114	※	젓꼭지
115	천개	피입용 기구 (고무제품)
116	※	고무의복
117	※	고무장갑
118	※	고무모자
119	※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35594		경화고무 및 경화고무제품 제조업
100	※	경화고무 및 경화고무제품 에보나이트 및 벨카나이트 제 1 차 제품 및 동제품
355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1		비가황 고무제품
111	※	판 및 띠
112	※	고무혼방직물(튜브, 호스, 타이어 제조용)
113	※	고무가루 혼합물
114	※	마스터베츠
115	※	복합천연 또는 합성고무라텍스
116	※	비가황용액 또는 분산제
117	※	비가황고무판
118	※	비가황프로파일
119	※	기타 비가황고무제품
211	※	고무제 장남갑, 인형
212	※	고무보트, 부교 및 부유물
213	※	비경화 고무의 부스러기
21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고무제품 (풍선, 고무공, 공기매트리스, 고무베개등)
356		달리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3560		달리 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5601		제 1 차 플라스틱 제조업
1		플라스틱 필름
111	※	폴리염화비닐(PVC)필름
112	※	폴리에틸렌(PE)필름
113	※	폴리프로필렌(PP)필름
114	※	폴리스티렌(PS)필름
115	※	폴리에스터(PET)필름
119	※	기타 플라스틱 필름
2		플라스틱 1차성형제품
211	※	플라스틱 레저
212	※	플라스틱 장판
213	※	플라스틱 관(파이프)
214	※	플라스틱 봉 및 프로파일
215	※	플라스틱 괴
216	※	플라스틱 콘베이어벨트
217	※	비닐벽지
218	※	재생플라스틱원료(분상, 모모아)
221	※	플라스틱 샷시바(플라스틱샷시문 및 창틀 포함)
229	※	기타 플라스틱 1차성형제품
35602		플라스틱 발포성형제품 제조업
111	※	발포 폴리스티렌(스치로폴 등)
112	※	산업용 발포성형제품(연질, 경질 포함)
113	※	플라스틱 스폰지
35603		강화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111	※	플라스틱 기계류부품(내구성, 특 수보강제 첨가)-엔지니어링 프 라스틱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119	※	기타 강화플라스틱 성형제품 (FRP)	200	※	플라스틱코팅 및 라미네이팅 (식품포장지 등)
35604		산업용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900	※	기타 플라스틱 단순가공품
111	※	플라스틱 전기전자기계부품	356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12	※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200	※	플라스틱 의복
113	※	플라스틱제 가정기내용 캐비닛(T, V, 전축, 재봉틀, 캐비닛등)	300	※	플라스틱 인형 및 장난감
114	※	플라스틱 가구	900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플라스틱 제품
119	※	기타 플라스틱 산업용기계부품(순 수플라스틱류)			
35605		가정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11	※	플라스틱 식탁 및 주방용품(식기, 접시, 컵, 칼, 수저등)			
112	※	플라스틱 위생 및 화장용품(세면 기, 목욕통, 비누갑, 쓰레기통 등)			
113	※	플라스틱 단추			
114	※	플라스틱 장식용품			
119	※	기타 가정용 플라스틱 성형제품			
35606		플라스틱 성형포장용기 제조업			
111	※	플라스틱 콘테이너박스(맥주, 콜 라병박스 등)			
112	※	플라스틱 어상자			
113	※	플라스틱 병, 통, 유사용기			
119	※	기타 플라스틱 포장용기			
35607		플라스틱 성형신발 제조업			
111	천족	플라스틱 신발			
112	※	플라스틱 신발부품			
35608		1차 플라스틱 가공품 제조업			
100	※	플라스틱 포대 및 백(압단 또는 접 합한 것 : 봉제한 것은 32141100 에 분류)			

중분류 3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석유 및 석탄제품 제외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361		도기, 자기 및 토기 제조업	3620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3610		도기, 자기 및 토기 제조업	36201		1차 유리 제조업
36101		토기 제조업	111	※	유리관
100	※	토기제품	112	※	유리괴, 유리구 및 유리봉
36102		가정용 도자기제품 제조업	113	상자	보통판유리(2mm 9.29㎡기준, 밝은 유리를 말한다)
111	천개	가정용 도자식기	114	상자	무늬판유리(2mm 9.29㎡기준) (형판유리, 망입판유리, 열선흡 수 유리등 색이 들어있는 유리 를 말한다)
112	※	가정용 자기제품	36202		1차유리 가공품 제조업
36103		위생도기 제조업	111	※	만곡, 식각 또는 유사가공유리
111	개	싱크	112	※	적층 단열유리 (여러겹의 판유리를 공기층으로 분리하고 주위를 금속 또는 인 조수지로 봉하여 만든것)
112	개	세면기	113	※	거울판 및 유리
113	개	대변기	114	※	유리관가공의 유리병(절단 및 열 처리 가공한 것; 압출, 사출 및 기타 성형한 유리병은 36204에 분류)
114	개	소변기	2		안전유리
115	개	욕조(프라스틱제품은 35605에)	211	상자	강화유리(2mm 9.29㎡기준, 충격에 유리가 작은 단편으로 되도록 강화한 유리)
119	※	기타 위생도기제품 상기제품은 통상 상수도와 연결 되어 건물에 영구히 고정된 비 품을 말한다.	212	상자	적층유리(2mm 9.29㎡기준, 충격시 유리가 조각으로 나지않도록한 유리)
36104		전기·전자용도기제품 제조업	900	※	기타 1차 유리가공품
111	천개	고압애자(750~7,000V미만)	36203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112	천개	저압애자(750V 미만)	111	※	유리건설재료
113	천개	특고압애자(7,000V이상)			
114	천개	애관			
119	※	기타의 도기절연체 및 절연부착물			
36105		이화학 및 산업용 도기제품 제조업			
111	※	도기포장용기			
119	※	기타 도기이화학 및 산업용용기			
36106		장식용 도기제품 제조업			
100	※	도기장식품(도기완구 포함)			
361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기, 자기 및 토기제품 제조업			
100	※	기타 도기, 자기 및 토기제품			
36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112	※	다세포성유리 (다세포성 또는 기포유리의 블 록, 판, 슬라브등으로 빛, 열 및 소리단절용에 쓰인다)
2		전구, 전자관 및 유사 유리구
211	천개	브라운관용유리(부착물이 첨부 되어 있는 것은 T.V 브라운관 반제품(38341115)으로 분류)
212	㎧	보온병속유리
213	※	전구용유리 (백열전구는 38392111에 분류)
214	※	시계유리
219	※	기타 전자관용유리
300	※	이화학, 위생 및 약제용 유리제품
900	※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36204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111	※	유리술병
112	※	유리음료수병
113	※	유리식료품병
114	※	유리약병
115	※	유리화장품병
119	※	기타 포장용 유리용기
36205		광학유리 제조업
111	※	광택유리 및 생지 (미가공 광학유리, 생지 및 요 소)
112	※	비광학유리 - 교정안경렌즈 생지
36206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111	천개	유리식기
112	※	유리주방용품(유리식기제외)
113	※	유리문구용품(유리제필이 포함)
114	※	장식용유리제품(조명부착물 포함)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36207		유리섬유 및 유리섬유제품 제조업
111	※	유리섬유 (유리사포함)
112	※	유리섬유제품(유리직물 및 직물제 품 유리방사는 32129에 분류)
362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리 및 유리 제품 제조업
100	※	유리구슬, 모조진주, 모조귀석 및 유사제품
900	※	기타 유리제품
369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3691		구조점토제품 제조업
36911		벽돌 제조업
		콘크리트벽돌은 36934112에 분류
111	천매	오지벽돌
112	천매	보통벽돌(점토제품)
36912		기와 제조업
100	천매	기와
36913		벽타일 제조업
111	천㎡	타일
112	※	판석
369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구조점토제품 제조업
100	※	기타 구조점토제품
3692		시멘트, 석회 및 프라스터 제조업
36921		시멘트 제조업
111	※	보통시멘트
112	※	백색시멘트
113	※	고로시멘트
114	※	알루미나시멘트
115	※	팽창시멘트
116	※	지열시멘트
119	※	기타 특수시멘트(치과용시멘트는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200	천%	3851에 분류) 시멘트크링커
36922		석회 제조업
111	%	생석회
112	%	소석회
113	%	수경성석회
36923		프라스터 제조업
100	%	프라스터(석고)
3693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36931		건축용 섬유시멘트제품 및 유사제 품 제조업
1		석면, 시멘트제품 또는 셀룰로오 스 시멘트제품
111	천㎡	석면슬레이트(천연슬레이트는 29011에 분류)
112	※	기타 판 및 타일
113	※	주형제품(둥, 항아리, 파이프, 도 관, 굴뚝등)
2		유사건축재료
211	※	식물성 건물재료
212	※	프라스터 판 및 타일
219	※	기타 프라스터제품
36932		레미콘 제조업
100	천㎡	레미콘
36933		기포콘크리트제품 제조업
100	※	기포콘크리트제품(다공질)
36934		콘크리트 기와, 벽돌 및 브록 제조 업
111	천매	콘크리트 기와
112	천매	콘크리트 벽돌
113	천매	콘크리트 브록
114	천매	콘크리트 관석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119	※	기타 콘크리트벽돌, 기와, 브록 및 인관제품
36935		콘크리트 조립구조재 및 철강보강 제품 제조업
1		콘크리트 조립구조재
111	※	벽면
112	※	문틀
113	※	조립위생용기
119	※	기타 콘크리트 조립구조재
2		철강보강 콘크리트 제품
211	본	흡관
212	본	콘크리트 전주
213	본	콘크리트 침목
214	본	콘크리트 파일
219	※	기타 콘크리트 철강보강 제품(하 수구맨홀, 빔, 봉등)
369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111	본	콘크리트 관(철강보강하지 않은 것)
119	※	기타 콘크리트제품(화분, 장식품, 생활용품등)
3694		내화물 제조업
36941		내화벽돌 및 유사제품 제조업
111	%	내화용 벽돌
112	%	내화용 블록
113	%	내화용 타일
114	%	내화용 판
119	※	기타 내화 벽돌 및 유사제품
36942		내화도가니 제조업
100	%	내화도가니(흑연, 탄소, 기타 도 가니)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36943		내화물용 원료 제조업	114	㎏	규석분
100	㎏	내화물용 원료(고령질샤롯데, 마그네시움, 몰라이트등)	115	㎏	흑연분
369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내화물 제조업	119	※	기타 비금속광물분쇄제품
111	㎏	몰탈	369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12	㎏	내화용 시멘트	111	※	가공운모 및 제품
119	※	기타 부정형 내화물	112	※	인조보석(원재료상태의 것)
36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13	※	흑연제품(내화물은 제외)
36991		석면제품 제조업	11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금속광물제품
111	※	석면혼합물	200	※	토사석 가공처리서비스
112	kg	방적석면(석면사 및 직물)			
119	※	기타 석면제품			
36992		암면 및 절연제품 제조업			
111	kg	암면(석면 제외)			
112	※	암면제품			
119	※	기타 광물성 절연제품			
36993		연마재 제조업			
111	㎏	연마휠			
112	※	지석			
113	m ²	연마지 및 포			
119	※	기타 연마재			
36994		석제품 제조업			
111	㎏	가림비석			
112	㎏	건물석			
113	㎏	포장석			
114	㎏	가공관석			
119	※	기타 석제품			
36995		비금속광물 분쇄처리업			
111	㎏	석필			
112	㎏	활석분			
113	㎏	장석분			

중분류 37. 제 1 차 금속산업

분 번	류 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분 번	류 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371		철강산업		323	※	블룸-합금강
	3711		제철 및 제강업		331	※	빌렛-보통강
	37111		제철업		332	※	빌렛-고탄소강
	111	※	제강용 선철		333	※	빌렛-합금강
	112	※	주물용 선철		341	※	쉬이트바-보통강
	37112		합금철강 제조업		342	※	쉬이트바-고탄소강
	111	※	망간철		343	※	쉬이트바-합금강
	112	※	규소철		37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철 및 제강업
	113	※	크롬철		111	※	해면철
	114	※	몰리브데넘철		112	※	철강분
	115	※	니켈철		119	※	슬래그, 드로스, 스킴링 및 유사제료
	116	※	규소-망간철		3712		철강압연, 연신 및 강관 제조업
	117	※	티타늄철		37121		열간 압연업
	118	※	텅스텐철		111	※	대형봉강-보통강(직경100mm이상)
	119	※	기타 합금철		112	※	중형봉강-보통강(직경50~100mm미만)
	200	※	경철		113	※	소형봉강-보통강(직경50mm미만)
	37113		제강업		121	※	봉강-고탄소강
	111	※	강괴-보통 압연용 강괴		122	※	봉강-합금강
	112	※	강괴-고탄소강 압연용 강괴		131	※	이형철근
	113	※	강괴-합금강 압연용 강괴		132	※	원형철근
	121	※	강괴-보통 단조용 강괴		211	※	대형형강-보통강(1면의 폭 100mm 이상)
	122	※	강괴-고탄소강 단조용 강괴		212	※	중형형강-보통강(1면의 폭 50~100mm)
	123	※	강괴-합금강 단조용 강괴		213	※	소형형강-보통강(1면의 폭 50mm 미만)
	211	※	주강, 주입강-보통강		221	※	형강-고탄소강
	212	※	주강, 주입강-고탄소강		222	※	형강-합금강
	213	※	주강, 주입강-합금강		231	※	강시판
	219	※	블록, 펄프 및 철강의 깨진 조각				
	311	※	슬라브-보통강				
	312	※	슬라브-고탄소강				
	313	※	슬라브-합금강				
	321	※	블룸-보통강				
	322	※	블룸-고탄소강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232	※	간이 강시판	512	※	냉연광폭대강-고탄소강
311	※	후판-보통강(두께4.75mm이상)	513	※	냉연광폭대강-합금강
312	※	후판-고탄소강	611	※	냉연협폭대강-보통강
313	※	후판-합금강	612	※	냉연협폭대강-고탄소강
321	※	중판-보통강(두께3.0~4.75mm)	613	※	냉연협폭대강-합금강
322	※	중판-고탄소강	37123		강관 제조업
323	※	중판-합금강	111	※	무계목강관
331	※	열연박판-보통강(두께3.0mm미만)	112	※	전기용접강관
332	※	열연박판-고탄소강	113	※	단접강관
333	※	열연박판-합금강	114	※	아크용접강관
411	※	열연전기 강판	115	※	리벳트관
511	※	열연광폭대강-보통강(폭500mm이 상)	116	※	관 부착물
512	※	열연광폭대강-고탄소강	37124		철강 연신업
513	※	열연광폭대강-합금강	111	※	선재-보통강
611	※	열연협폭대강-보통강(폭500mm미 만)	112	※	선재-고탄소강
612	※	열연협폭대강 - 고탄소강	113	※	선재-합금강
613	※	열연협폭대강-합금강	211	※	흑철선
711	※	중재조(30kg/m이상)	212	※	아연도철선
712	※	경재조(30kg/m미만)	213	※	경강선
713	※	케조자재	214	※	PC강선
37122		냉간 압연업	215	※	피아노선
111	※	냉연박판-보통강	216	※	스텐레스선
112	※	냉연박판-고탄소강	311	※	울타리 철선
113	※	냉연박판-합금강	312	※	쇠못(직접 생산한 철강선을 더 가 공하여 쇠못을 제조하는 경우)
211	※	유니버설판-보통강	313	※	스파이크 및 리베트
212	※	유니버설판-고탄소강	314	※	스프링 생지
213	※	유니버설판-합금강	315	※	와이어로프(직접 생산한 철강선을 더 가공하여 와이어로프를 제조 하는 경우)
311	※	스텐레스 강판	371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철강압연, 연 신 및 강관 제조업
411	※	냉연전기 강판			
511	※	냉연광폭대강-보통강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100	※	철강선 케이블, 로프 및 유사제품	313	※	철강판-니켈도금
3713		주조업	314	※	철강판-동도금
37131		주철강판 제조업	315	※	철강판-연도금
111	※	직관	316	※	철강판-인조산화
112	※	원심주조 회주철관	319	※	달리 분류되지않은 금속도금 철강판
113	※	원심주조 구상흑연주철관	411	※	철강판-페인트도포
114	※	사형주철관	412	※	철강판-인조수지도포
121	※	이형관	419	※	기타 비금속도금 철강판
37132		선철(회)주물 제조업	511	※	골판(도금하지 않은것)
100	※	회주물(탄소함량3.4% 이상)	512	※	표면처리강판
37133		강주물 제조업	519	※	기타 가공 철강판
111	※	강주물	37199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타 철강산업
112	※	합금강주물	111	※	철강 분쇄물
37134		가단주철 제조업	119	※	달리 분류되지않은 철강제품
111	※	가단주물(망간0.2%~0.5%함유)	372		비철금속산업
112	※	구상흑연주물(다량의 마그네슘 함유)	3721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371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조업	37211		동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100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물	111	※	동매트
37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철강산업	112	※	브리스티동(조동)
37191		단조업	113	※	시멘트 동(침전동)
111	※	단조물-보통강	114	※	정련동(전기동)
112	※	단조물-고탄소강	119	※	동쇼트 및 기타 동 1차제품
113	※	단조물-합금강	37212		알루미늄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37192		표면처리강 제조업	100	※	미가공 알루미늄(알루미늄괴)
111	※	석도강판-전기도금	37213		연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112	※	석도강판-열지도금	100	※	미가공연(연괴)
211	※	아연도강판-전기도금	37214		아연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212	※	아연도강판-열지도금	100	※	미가공아연(아연괴)
213	※	아연도강판-착색도금	372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311	※	철강판-알루미늄도금	111	※	미가공니켈
312	※	철강판-크롬도금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211	※	미가공주석	211	kg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
311	※	미가공중석	212	kg	베릴륨
411	kg	은(은괴)	213	kg	몰리브데늄
511	kg	금(금괴)	214	kg	탄타륨 및 탄타륨 합금
611	kg	백금 및 백금관련 금속	215	kg	U235로 수축한 우라늄 및 토륨과 합금
900	※	달리 분류되지않은 비철금속 제 1 차 제련 및 정련제품	219	※	기타 비철금속 제련제품
3722		비철금속 제2차 제련 및 정련업	319	※	기타 비철금속 제련 잔여물
37221		동 2차 제련 및 정련업	3723		비철금속 압연 및 압출업
111	※	동마스터 합금(신주, 도금 등)	37231		신동품 제조업
112	※	동 정련제 및 잔여물	111	※	동봉 및 형강
37222		알루미늄 제2차 제련 및 정련업	112	※	동선
111	※	알루미늄 합금(양은, 양백 포함)	113	※	동관 및 띠
112	※	알루미늄 정련 잔여물	114	※	동관 및 증공봉
37223		연 제2차 제련 및 정련업	115	※	동관 부착물
111	※	미가공 연 합금	116	※	동분 및 편
112	※	연제련 잔여물	37232		알루미늄 압연 및 압출업
37224		아연 제2차 제련 및 정련업	111	※	알루미늄 봉
111	※	아연합금	112	※	알루미늄 선
112	※	아연분	113	※	알루미늄판, 띠 및 박
113	※	아연제련 잔여물	114	※	알루미늄관 및 증공봉
37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철금속 제2 차 제련 및 정련업	115	※	알루미늄 부착물
111	kg	니켈합금	116	※	알루미늄 샷시바(알루미늄 샷시바 를 구입하여 문·창틀등을 세초 할때는 38131112로 분류)
112	※	니켈정련 잔여물	119	※	알루미늄분 및 편
113	※	니켈매트, 니켈스페이스 및 기타 중간제품	372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철금속 압연 및 압출업
121	kg	주석제련 잔여물	111	※	니켈봉, 형강 및 선
131	※	중석정련 잔여물	112	※	니켈관 및 띠, 분, 편
141	kg	은 입힌 금속	113	※	니켈관 및 관 부착물
151	kg	금 입힌 금속	211	※	연봉, 형강 및 선
161	kg	백금 입힌 금속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212	※	연판, 띠, 분 및 편	700	※	텅스텐 제조제품
213	※	연판 및 판 부착물			
311	※	아연봉, 형강 및 선			
312	※	아연판, 띠, 분 및 편			
313	※	아연판 및 판 부착물			
411	kg	주석봉, 형강 및 선			
412	kg	주석판, 띠, 분 및 편			
413	kg	주석판 및 판 부착물			
511	※	중석봉, 형강 및 선			
512	※	중석판, 띠 및 분			
900	※	기타 비철금속압연 및 압출제품			
3724		비철금속 주조 및 단조업			
37241		비철금속 주조업			
111	kg	동주물			
112	kg	알루미늄주물			
119	※	기타 비철금속 주물제품			
37242		비철금속 단조업			
111	kg	동단조물			
112	kg	알루미늄 단조물			
119	※	기타 비철금속 단조제품			
37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철금속산업			
37290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철금속산업			
111	※	동 케이블, 로프 및 유사제품			
112	※	동못 및 유사제품			
211	※	알루미늄 케이블, 로프 및 유사제 품			
212	※	알루미늄 못 및 유사제품			
311	kg	니켈 전기도금 양극봉			
312	kg	니켈 못 및 유사제품			
400	※	연금속 제조제품			
500	※	아연금속 제조제품			
600	※	주석금속 제조제품			

중분류 38.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381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외	121	천개	해머
			122	천개	드릴
3811		날붙이, 수공구 및 철물 제조업	123	천개	태핑 및 나사공구
38111		금속제 식탁용품 제조업	129	※	기타 수공구
100	※	금속제 식탁용품 수저, 나이프, 포크, 식탁용 칼, 기타 금속제 식탁용품 (귀금속 도금제품은 39010에 분류)	38114		농업용 수공구 제조업
38112		날붙이 제조업	111	천개	삽
111	천개	주방용 칼(식탁용제외)	112	천개	곡괭이 및 쟁이
112	천개	주머니 칼(포켓 나이프)	119	※	기타 농업용 수공구 (호미, 포크, 도끼, 작두, 낫, 전지기등)
113	천개	칼날(문방구용 칼날 포함)	38115		가정용 식품 가공기기 제조업
114	천개	가위	111	대	분쇄기 및 마쇄기
115	※	면도칼	112	대	추출기 및 압축기
116	천개	이발기	113	대	비터 및 믹서
117	천개	손톱깎기	114	※	민서, 세절기 및 컷터
118	천개	안전면도날(비전기식 : 전기식은 38335에 분류)	115	※	봉합용 기구
119	※	기타 날붙이(공예용 조각칼, 연필 깎기용 칼, 군용칼, 칼집등)	119	※	기타 가정용 식품 가공기기
38113		수공구 제조업, 농업용은 제외	121	※	가정용 식품 가공기기의 칼날
111	천개	프라이어, 벤저, 편서, 양철가위 및 유사제품	38116		톱 및 톱날 제조업
112	개	천공편치	111	천개	톱-나무용
113	천개	파이프 절단기	112	천개	톱-금속용
114	천개	스패너 및 렌치	113	천개	톱-석재용
115	천개	줄칼	114	천개	톱-시계 및 보석가공용
116	천개	유리칼	119	※	기타 톱
117	천개	모루	121	천개	톱날
118	천개	바이스 및 크램프	122	천개	체인 톱
			38117		일반철물 제조업
			111	※	건물용 철물(문, 창문, 셔터등의 부착물)
			112	※	가구용 철물
			113	※	차량용 철물
			114	※	가방부착용 철물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119	※	기타 철물
38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날붙이, 수공 구 및 철물 제조업
1		가정용 공구성격의 기기
111	천개	다리미-비전기식 전기다리미는 38334913에 분류
112	천개	연탄집게
119	※	기타 가정용 수공구성격의 기기 (인두, 병 또는 강통따개, 구두 솔 포함)
2		소형 기계장치
211	개	이동식 풀무
212	개	그라인더
213	개	토오치 램프
214	개	수동식가스 용접기
215	개	소형 잭
216	개	납땀인두(수동식, 전열식 포함)
217	개	구리스 주입기
218	개	스프링조작 스테이플링 피스틀
221	개	카트리지 조작 리벳터
222	개	수동식 벽돌 및 브로크 제조기
229	※	기타 소형 기계장치
300	개	호환성 공구(수공구용)
400	천개	자물쇠 및 열쇠
3812		금속제가구 및 장치물 제조업
38121		금속가구 제조업
111	개	금속제 캐비닛
112	천개	금속제 책상
113	천개	금속제 의자
114	천개	금속제 서가
115	※	캠핑가구
116	※	정원가구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117	대	금속침대
118	※	기타 금속제가구 및 부속품
119	※	금속가구 부품(가구용 철물은 38117)
38122		금속 장치물 제조업
111	※	금속제 사무실 및 상점장치물 (금속제장치용 캐비닛, 보관함 및 유사 철판비품, 금속제 칸막 이, 선반, 계산대등)
112	※	금속제 조명장치 부착물
113	※	금속제 그림틀 및 사진틀
114	※	금속제 공공용 장치물(공중전화 대, 휴지통)
119	※	기타 금속장치물 및 부품
3813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38131		철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1		금속제 문, 샷시, 틀, 형 및 장식 물 (알루미늄샷시바는 37232에 분 류)
111	※	문-건물용
112	※	샷시문 및 창틀
113	※	샷터-건물용
114	※	철제 수문
119	※	기타의 철문 및 관련제품
38132		건축용 장식 금속공작물 제조업
100	※	건축용 장식금속 공작물 (울다리, 말뚝, 발코니, 베란 다, 석살대계단 난간 및 화재비 상구 및 유사장식품)
38133		구조용 금속판제품 제조업
100	※	구조용 금속판제품

분 번	류 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분 번	류 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금속지붕, 물흡통, 환기용 철 판제품(덕트 포함), 채광장, 이차고등 철조립제품)	211		개	탱크 및 유사금속용기 (기계장치 부착되지 않은 것)
	38134		보일러 및 관련제품 제조업	212		개	탱크 및 유사금속용기 (기계장치 부착된 것)
			(난방용 온수보일러, 저압증기보 일러 및 관련제품은 38194에 분 류)	381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1		동력 및 선박용 보일러(산업용)	100	※		철도궤도 및 부착물
	111	대	증기발생 보일러	3814			금속압단제조, 열처리 및 표면처 리업
	112	대	대형 온수보일러(슈퍼히터워터형)	3814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		기타 보일러 및 관련제품	100	※		분말야금제품
	211	※	핵 반응기	38142			금속압단제품 제조업(조립제품은 38192로)
	212	대	열 교환기	1			알루미늄제 가정용 제품
	213	대	먼지 추출기	111	천개		솔
	214	대	사이클론	112	천개		남비
	215	대	가스 세정기 또는 흡수탑	113	천개		주전자
	216	대	액체 및 가스여과용 정치식 장치	114	천개		도시락
	217	대	집진장치	115	천개		식기
	21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보일러 및 관 련제품	116	천개		커피포트(비전기식)
	300	※	보일러실 보조장치	119	※		기타 알루미늄 가정용제품 스텐레스제 가정용제품
	38135		금속구조제 제조업	2			
	111	※	조립금속의 건물	211	천개		솔
	112	※	육상금속구조물(교량, 굴뚝, 철탑 등)	212	천개		남비
	113	※	해상금속구조물(파이프라인, 자 켓, 모우들 포함)	213	천개		주전자
	200	※	금속구조물 부품	214	천개		도시락
	38136		금속탱크 및 용기 제조업	215	천개		식기
	100	개	압축, 액화가스 저장 및 운반용 용 기	216	천개		커피포트(비전기식)
	2		탱크 및 유사금속용기	219	※		기타 스텐레스 가정용제품 산업용 제품
				3			
				311	천개		병마개
				312	※		자동차 부분품
				313	※		기계부분품

분 번	류 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314	※	각종 부착물(압단제품)
	319	※	기타 산업용품 및 관련업
	38143		금속열처리업
	100	※	금속열처리업
	38144		도금업
	100	※	도금업
	381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열처리표면처리업
	100	※	금속전해 연마업
	200	※	금속표면정리 및 인쇄업
	300	※	기타 열처리 및 표면처리업 (금속식각, 조각, 나사눈금내기 등)
	38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의
	38191		금속포장용기 제조업
	1		금속 캔
	111	천개	통조림관(식관을 말함)
	112	천개	미술관(잡관을 말함)
	119	※	기타의 금속 캔
	2		수송용 금속 바렐, 드럼, 케크 및
			<u>페일</u>
	211	천개	드럼관
	212	개	컨테이너(수출상품의 보관및 운반 용등으로 사용)
	219	※	기타의 금속 바렐, 드럼, 케크 및 페일
	300	※	연성관(치약, 연고등의 튜우브)
	900	※	기타 금속 포장용기
	38192		금속가정용품 제조업(조립제품만 해당,압단제품은 38142로)
	1		법랑제 가정용품

분 번	류 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111	천개	법랑제 냄비
	112	천개	법랑제 프라이팬
	113	천개	법랑제 스텐팬
	114	천개	법랑제 식기
	119	※	기타 법랑제 가정용집기
	2		금속 가정용품
	211	천개	보온병
	212	천개	보온 도시락
	213	대	쌀통
	214	※	식품저장용기(가정용)
	215	※	철선조립품(석쇠, 튀김틀 등)
	219	※	기타 금속가정용 조립제품
	38193		금속제 위생용품 제조업
	1		법랑제 위생용품
	111	천개	싱크
	112	천개	목욕통(욕조)
	113	천개	세면기
	119	※	기타 법랑제 위생용품
	2		스텐레스제 위생용품
	211	천개	싱크
	212	천개	목욕통
	219	※	기타 스텐레스제 위생용품
	300	※	기타 금속제 위생용품(알루미늄제 등)
	900	※	연관 부착물 및 장식물 스프링쿨러, 수세식 프레스워탈 브, 샤워어스플룻드, 잔디호스 노즐 등
	38194		난방용구 제조업
	1		난방용 보일러 및 관련장비
	111	대	기름 보일러
	112	대	구공탄 보일러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113	대	기타 보일러(가스, 크레놀탄등)
114	대	방열기(라디에타), (연소기 부착은 제외)
119	※	보일러 부품(관련제품)
2		난로 및 기타 난방기
211	대	석탄난로
212	대	석유난로(석유콘로는 38265)
213	대	가스난로(가스레인지는 38265)
214	대	방열기(연소기 부착된 것)
215	대	바너
216	대	히터
219	※	기타 난로 및 부품
38195		나사제품 제조업
111	※	볼트 및 너트
112	※	나사못
113	※	리베트
114	※	와셔 및 산업용 파스너
11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나사제품
38196		철선제품
111	※	망(철망)
112	※	선 스프링
113	※	와이어 로프 (철강선을 외부에서 구입하여 와이어로프를 제조하는 경우)
114	※	쇠못(철정) (철강선을 외부에서 구입하여 쇠못을 제조하는 경우)
115	※	철조망
119	※	기타 비금속의 선제품
38197		금고 제조업
100	개	금고(어린이저금통은 38199에 분류)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200	※	금고 부품
38198		발브 및 파이프 가공품 제조업
1		일반용 발브(고온고압용 및 자동 조절발브 제외)
111	천개	스텐레스제 발브
112	천개	주강제 발브
113	천개	단강제 발브
114	천개	주철제 발브
115	천개	청동제 발브
2		특수발브
211	천개	고온고압용 발브
212	천개	자동조절용 발브
219	※	기타 발브(급배수용 수도꼭지등)
300	※	금속관 이음쇠
381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
1		스프링(선스프링 제외)
111	※	코일(나선형)스프링(자동차 및 철 도차량용)
112	※	잎(판상)스프링(자동차 및 철도차 량용)
119	※	기타 스프링(와형 및 봉스프링 포 함)
2		체인 및 그 부품
211	※	연계체인
219	※	기타 체인
9		기타 조립금속제품
911	개	등
912	※	용접봉
91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조립금속제품 조명부착물, 서류부착물, 종이 크립, 유사 비철금속의 문구용품,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모조장신구술, 비철금속의 거울, 장식못, 말발굽, 통띠, 울타리 지주 등	211	대	탈곡기(인력 및 동력식 포함)
382		기계 제조업, 전기 제외	212	대	청정, 체질 및 선별용 기계
3821		기관 및 터어빈 제조업	219	※	기타 수확용 기계
38211		내연기관 제조업	3		자체 추진식 농업용 기계, 분무기 및 트랙터 제외
100	대	내연기관(압축 및 불꽃점화기관) 자동차용은 38432, 선박용은 38411, 기관차용은 38423, 항공 기는 38452에 분류	311	대	경운기
38212		증기 및 가스터어빈 제조업	312	대	농업용 트랙터
100	대	증기기관	313	대	이앙기
200	대	증기터어빈	314	대	바인더
300	대	가스터어빈(항공기용 제외 : 38452)	315	대	콤바인
400	대	수력터어빈	319	※	기타 자체 추진식 농업용 기계 기타 농업용 기계
382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관 및 터어 빈 제조업	4		
		(운수 장비 동력용 기관은 384에 분류)	411	대	농업용 동력분무기(산업용 분무기 는 38299100에, 인력분무기는 38114119에 분류)
111	대	압축공기 또는 압축가스 기관	412	개	탈수장치
112	대	스프링 및 추조작 모터	413	대	농장콘베이어 및 엘리베이터
119	※	기타 기관 및 부품	414	대	마초가공용 기계 및 기기
3822		농업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15	대	제송기(새끼틀), 입직기(가마니 틀)포함.
38220		농업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16	대	과실 및 기타 선별기 (달걀선별기는 제외)
1		경작용 기계, 비추진식	417	대	예취기 및 제초기
111	개	쟁기	418	대	착유기(우유채취용)
112	개	씨래	41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농업용 기계 및 장비
113	개	식부기 파종기, 이식기 등 포함	6		동물에 관련한 농업용 기계
119	※	기타 경작용 기계	611	대	가금 부화기
2		비추진식 수확, 탈곡 및 관련기계	612	대	가금 사육기(병아리 사육용)
			613	대	달걀 세척기(달걀선별기 포함)
			614	대	기타 가금사육기
			621	대	꿀벌 사육기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622	대	사료 및 곡물건조기	141	대	수치제어연삭기(NC연삭기)
623	대	사료 절단기	142	대	수치제어보링기(NC보링기)
629	※	기타 동물 농업용 기계	143	대	수치제어기어커팅기(NC기어커팅 기)
700	※	농업용 기계날 및 칼	144	대	수치제어드릴링기(NC드릴링기)
900	※	트랙터 및 농업용 기계장비 부품	145	대	수치제어평삭기(NC평삭기)
3823		금속공작가공 및 목공기계 제조업	146	대	기타 수치제어(NC)금속절삭기계
38231		금속절삭기계 제조업	147	※	기타 금속절삭기계
I		일반목적용 금속절삭기계	149	※	기타 금속절삭기계부품
111	대	수치제어선반(NC선반)	38232		금속성형기계 제조업
112	대	자동선반	1		금속성형기계공구
113	대	보통선반	111	대	단조기 및 스탬핑기
114	대	입선반	112	대	액압 금속가공프레스
115	대	기타선반(터릿, 탁상선반등)	113	대	기타 금속가공프레스(크랭크, 인 력, 공기압프레스)
121	대	형삭기	114	대	압출기
122	대	평삭기	115	대	에어 햄머
123	대	랩핑기	116	대	굴곡기
124	대	태핑기	117	대	성형기
125	대	밀링기(NC밀링은 제외)	118	대	전단기
126	대	브로칭기	121	대	편칭기
127	대	기계톱	122	대	신선기
128	대	연삭기	123	대	인발기
129	대	호닝기	124	대	나사전조기
131	대	보링기	125	대	수치제어(NC)금속가공기계
132	대	드릴링기	126	※	기타 금속가공기계
133	대	기어 커팅기	129	※	기타 금속가공기계부품
134	대	리밍기	2		압연기 및 롤
135	대	전기 또는 전자식 가공기계 및 초 음파 가공기계(방전가공기 포 함)	211	대	압연기(선재, 판재, 관압연기 포 함)
136	대	스크류 커팅기	212	※	압연기롤(주조 및 단조제 롤 포함)
137	대	수치제어 밀링기(NC밀링기)			
138	대	머시닝센터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38233		금속처리용 기계 제조업	117	대	선반 및 축성형기
111	대	주조기	118	대	샌드 페이퍼링기
112	대	가스용접 장치	121	대	베니어 접합 프레스
113	대	금속 세척기	122	대	만능나무 공작기계
114	대	금속 열처리	123	대	마루세공 나무제조기
115	대	금속 표면처리기(도금, 도장장치 등)	124	대	목공 밀링기
119	※	기타 금속처리용 기계 및 부품	125	대	수치제어(NC)목공기계
38234		수지식 동력구 동공구 제조업	129	※	기타 일반목적 목공기계 및 부품
111	대	드릴링기	2		특수산업용 목공기계
112	대	태핑기	211	대	통제조기
113	대	리밍기	212	대	연필제조기
114	대	착압기	213	대	등제품 제조기
115	대	어스호러	219	※	기타 특수산업용 목공기계 및 부품
116	대	연삭기	38236		호환용 절삭구 제조업
117	대	샌더	111	개	금속공작용 절삭구
118	대	광택기	112	개	나무공작용 절삭구
121	대	톱(동력식 금속절단용)	119	※	기타재료 공작용 절삭구 및 부품
122	대	해머(동력식)	38237		금형 및 관련제품 제조업
123	대	철관절단기	111	※	프레스형 금형(금속성형용)
124	대	압축공기식 그리스 피스톨	112	※	프라스틱사출용 금형
125	대	드라이버(동력식)	113	※	다이캐스팅 금형
126	대	바이브레이타(진동기)	114	※	FRP용 금형
129	※	기타 수지식 동력구 동공구 및 부품	115	※	주단조용 금형
38235		목공기계 제조업	119	※	기타 용도의 금형(유리, 고무, 광물성등) 및 부품
1		일반목적 목공기계	382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 제조업
111	대	박피기	100	※	복합금속 공작기계 공구
112	대	기계톱	300	※	기계공 정밀측정기
113	대	세절기	900	※	기타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의 부속품
114	대	박절기			
115	대	대패기 및 장부기			
116	대	드릴링기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3824		특수산업용 기계 및 장비제조업,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 제외	419	※	트랙터 부품
38241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511	대	불도저
1		고체광물 채취 가공용 기계 및 장비	519	※	불도저 부품
111	대	천공기	38242		섬유용 기계 제조업
112	대	채탄기계	1		섬유방직 준비 가공기계
113	대	파쇄기	111	대	인조섬유 방사기
114	대	선광기	112	대	조방기
115	대	선별기	113	대	조면기
116	대	마쇄기	114	대	혼타면기
117	대	교반 혼합기	115	대	방직준비기계(세모기, 해모기, 카 아드기)
119	※	기타의 고체광물 개선 채취가공 장 비 및 부품	116	대	코명기
200	※	유전용 기계, 장비 및 부품	117	대	연조기
3		건설용 기계 및 장비	118	대	연사기
311	개	동력 쇼벨	119	※	기타 섬유용 기계
313	대	드래그라인	2		방직기
314	대	크레인(물품취급장비는 38293117)	211	대	면방직기
315	대	스크래퍼	212	대	모방직기
316	대	그레이더	213	대	견방직기
317	대	로더	214	대	장방기
318	대	팜핑기	219	※	기타 방직기계
321	대	굴착기(엑스카베이터)=포크레인	3		직기
322	대	도로포장기	311	대	면직기
323	대	콘크리트 믹서	312	대	견직기
324	대	트럭트랙터 및 웨곤	313	대	모직기
329	※	기타 건설장비 및 부품	319	※	기타 직기
330	대	인양장비	4		편물기
341	대	윈치(트럭에 장치한 윈치는 제외)	411	대	황편직기
342	※	건설장비 부착물	412	대	환편직기
4		트랙터 및 불도저	413	대	가정용 편물기
411	대	트랙터(농업용은 38220800에)	414	대	중편직기
			419	※	기타 편직기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5		기타 특수 직기	38243		식품 가공기계 제조업
511	대	망제조기	1		우유 가공기계
512	대	불, 레이스 제조기	111	대	크림 분리기
513	대	자수기	112	대	균질기, 조사기, 저온살균기, 살균기, 응축기 및 관련 우유 가공 기기
514	대	짐핑기	113	대	버터 제조기
519	※	기타 직기 및 편물기	114	대	치즈 제조기
6		방적, 직조, 편직용 기계의 보조기	115	대	아이스크림 제조기
		계 및 부품	119	※	기타 우유 가공기계
611	개	스핀들	2		곡물 가공기계
612	※	도비 및 잭워드	211	대	정미기
613	※	잭워드 장치용 기계	212	대	정맥기
614	천개	링	213	대	압맥기
615	※	카드 조립기	214	대	곡물 제분하기 전 가공기
618	※	콤	215	대	제분기
622	천개	종광	216	대	분급기
623	천개	샷틀 (=복)	219	※	기타 곡물 가공용 기계
624	천개	바티	9		기타 식품, 음료 및 담배 가공 기계
629	※	기타의 방적, 직조, 편직용 기계의 보조기계 및 부품	911	대	제빵용 기계
7		섬유가공기계	912	대	국수 제조기
711	대	염색기	913	대	설탕과자 제조기
712	대	나염기	914	대	고기 가공용 기계
713	대	표백기	915	대	물고기 가공용 기계
719	※	기타 섬유가공기계	916	대	과실 및 야채 가공용 기계
9		기타 섬유용 기계	917	대	설탕제조 또는 정제기
911	대	펠트제조용 기계 (펠트모자 제조기 포함)	918	대	과실쥬스 가공용 프레스, 파쇄기 및 기타 기계
912	대	섬유완성용 기계 및 장비	921	대	양조 및 증류용 기계
913	대	가죽 가공기계	922	대	착유기(동물성기름추출용)
914	대	신발 및 가죽제품 제조기	923	대	차 및 커피가공기
915	대	로프제조기	924	대	담배가공기
91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섬유용 기계 및 부품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925	대	포장 및 충전기
92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식품가공기계 및 부품
38244		화학 및 석유정제산업용 기계 제조 업
1		화학, 약 및 관련제품 생산용 플랜 트
111	대	가스분리 플랜트
112	대	암모니아 합성 유니트
113	대	합성수지, 플라스틱 및 인조수지 제조용 플랜트
114	대	폭발물 제조용 플랜트
115	대	석유화학 플랜트
116	대	비료, 농약 및 기타 살충제 제조용 기계
119	※	기타 화학, 약 및 관련제품 생산용 플랜트
200	대	석유정제기 및 장비
300	대	코크스로
9		기타 화학산업용 기계 및 장비
911	대	비누절단 또는 성형기
912	대	인조섬유 압출기
913	대	전해조
914	대	원심분리기
915	대	여과 프레스
916	대	먼지추출기
917	대	카렌더기
918	대	분류 및 정류장치
921	대	증발 및 건조장치
922	대	접틀
923	대	살균장치
924	대	집진장치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925	대	페인트 제조용 기계
92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학산업용 기계, 장비 및 부품
38245		고무 및 플라스틱 산업용 기계 제 조업
111	대	고무가공기계
112	대	고무 및 플라스틱 성형 프레스
113	대	고무신체조기
114	대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제조기
119	※	기타 고무 및 플라스틱 가공용기계 및 부품
38246		종이 산업용 기계 제조업
1		셀룰로이드펄프, 종이 또는 판지 제조용 기계
111	대	래그컷터, 더스터, 세척기 및 파쇄 기
112	대	페이지 펄프 제조기
113	대	에스파르토의 오프너, 더스터, 파 쇄기 및 절단기
114	대	우드칩 가공기
115	대	초지기
116	대	종이·도포 및 침착기
117	대	크레핑기
118	대	틀링기
121	대	끝판지 제조기
122	대	경화 파이버보드 제조기
129	※	기타 셀룰로우스, 펄프, 종이 제조 용 기계 및 부품
2		펄프, 종이 또는 판지 전화용 기계
211	대	종이제단기
212	대	스리터 릴러
213	대	다이컷트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214	대	천공기	111	대	판유리 제조기
215	대	봉투제조기	112	대	병제조기
216	대	종이포대 제조기	113	대	유리관 제조용기계
217	대	종이상자 제조기	114	대	유리섬유 제조용기계
221	대	종이 주형제품 제조기	115	대	전구제조기
229	※	기타 펄프, 종이 또는 판지전화용 기계 및 부품	119	※	기타 유리제조용 기계 및 부품
38247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2		비금속광물 응집 또는 성형용 기계
1		인쇄기 및 인쇄보조장치	211	대	프레스기 벽돌, 타일, 브로크 등의 제조기 (수동식 제외)
111	대	평압 및 원통압식 인쇄기 (윤전인쇄기 포함)	212	대	압출기
114	대	석판인쇄기(활판 포함)	214	대	관제조용 원심분리 성형기
115	대	읍셋인쇄기	215	대	연탄제조기
116	대	그라비아인쇄기	219	※	기타 비금속광물 응집 또는 성형용 기계 및 부품
117	대	특수인쇄기	3		비금속광물 공작용 기계 공구
118	대	인쇄보조기	311	※	톱 및 절단기계
119	※	기타 인쇄기 및 부품	312	대	열단기
2		활자주조, 활자식자 및 인쇄판 제 조용 기계	313	대	연마기
211	대	활자주조기	314	대	드릴링기
216	대	식자용 장비	315	대	조각용 기계
218	대	스테레오 재판 주조용 기계	316	대	그라인딩휠용 기계
219	※	기타 활자주조, 식자, 인쇄판제조 용 기계 및 부품	319	※	기타 비금속광물 공작용 기계공구 및 부품
3		제본기계	382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특수산업용기 계 및 장비 제조업,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 제외
311	대	책 재봉기	111	대	성냥 칩책기
312	대	절지기	112	대	용접 전극봉 도포용 기계
313	대	집적 및 철책용 기계	113	대	사진 감광유체 도포용 기계
314	대	표지 제조기	11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특수산업용 기 계 및 부품
319	※	기타 제본기계 및 부품			
38248		유리 및 요업용 기계 제조업			
1		유리제조용 기계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3825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 제조업	111	대	전동식 타자기(자동식타자기 제외)
38251		자동 자료처리장비 제조업	112	대	수동식타자기
111	대	중앙자료처리 장치(CPU) 중형, 소형, 초소형, 개인용, 사무실용 포함	113	대	자동식타자기(워드프로세싱 포함)
112	대	보조기억장치(FDD5 1/4 포함)	119	※	타자기부품
113	대	입출력장치-프린트기, 카드리더기 포함	38256		컴퓨터 프로그램매체 제조업
114	대	터미널(TERMINAL)-단말장치	111	개	컴퓨터프로그램수록 테이프
115	대	전송장치(Modem등)	112	개	컴퓨터프로그램수록 디스크
119	※	기타 자료처리장비 및 컴퓨터 전용 부품	113	개	컴퓨터프로그램수록 칩
38252		계산기 제조업	119	※	기타 컴퓨터프로그램 매체
111	대	휴대용 전자계산기	3825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무계산 회계 용기계 제조업
112	대	탁상용 전자계산기	111	개	연필깎기
113	대	금전등록기	112	대	편집분류기
114	대	표 발행기(계산장치 부착)	113	대	편치기
119	※	기타 계산장치	114	대	동전 및 화폐분류, 계산, 포장기
121	※	계산기 부품	115	대	스테플링기
38253		등사 및 복사기 제조업	11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무용 기계 및 부품
111	대	등사기 및 복사기(사진복사기, 전 자복사기는 38525에 분류)	3826		서어비스 산업용기계 제조업
112	대	주소 자동 인쇄기	38261		자동판매기 제조업
38254		저울 제조업, 정밀저울 제외	111	대	자동판매기(음식료품)
111	개	저울-산업용, 자동차 및 철도차량 저울	112	대	자동발행기 및 동전교환기
112	개	저울-산업용	119	※	자동판매기 관련 부품
113	개	저울-가정용 (목욕실 저울, 체중기, 유아용 저울등)	38262		상업용 세탁기 제조업
119	※	저울의 부품	111	대	상업용 세탁기(가정용은 38333에)
38255		타자기 제조업	119	※	상업용 세탁기 부품
			38263		산업용 냉동장비 제조업
			111	대	산업 및 상업용 냉장고(가정용은 38331에 분류)
			112	대	제빙기
			113	대	차량 냉동장비
			114	대	냉동제습기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115	대	산업용 냉동장비	118	대	정수기(가정형 포함)
116	대	냉동진열장	119	대	차량세차기
119	※	기타 냉동장비 및 부품	200	※	기타 서어비스 산업용 기계 및 부품
38264		공기조절장치 제조업	38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기 제외
111	대	룸 에어컨디셔너(윈도우형 에어컨)	38291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112	대	차량 공기조절기	111	대	공업용 펌프
113	대	차장 공기조절기(패케이지형 에어컨)	112	대	주유소용 측정 및 분배펌프(계량용 펌프)
114	대	대형 냉풍기	113	대	가정용 펌프(수동식 제외)
115	대	냉각탑	114	대	수동펌프
119	※	기타 공기조절기 및 부품	115	대	양수기
38265		상업용 조리 및 식품가공기기 제조업	116	대	공기펌프
111	대	상업용 조리장비 및 식품은열장비	117	대	진공펌프
112	대	가스레인지	118	대	공기압축기(컴프레서)
113	대	석유콘로	119	※	기타의 펌프와 공기압축기 및 부품
114	대	상업용 접시 세척기(가정용은 38339)	38292		송풍기 및 환풍기 제조업
115	대	상업용 전기 및 전자레인지(가정용은 38334)	111	대	블로우어형 송풍기
116	대	상업용 믹서기(가정용은 38339)	112	대	팬형 송풍기
119	※	기타 상업용 조리장비 및 부품	113	개	환풍기
3826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서어비스 산업용 기계 제조업	114	대	공기청정기 및 집진장비
111	대	상업용 마루 세척 및 광택기	115	대	공기여과기
112	대	카펫트 청소기	116	대	에어커어튼장치
113	대	먼지 추출기	119	※	기타 송풍기, 환풍기 및 그 부품
114	대	쓰레기 처리기 및 청소기	38293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산업용 트럭 제외
115	대	하수정화 장비	111	대	활차
116	대	대기정화장비	112	대	책 : 손으로 움직이는 기중기
117	대	수영장물 조절기	113	대	리프트 : 호이스트
			114	대	텔레페릭 및 푸니쿨라
			115	대	화차 경사기
			116	대	적하기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117	대	크레인(건설용 장비는 38241314)
122	대	에스컬레이터
123	대	엘리베이터(승객용, 화물용, 주차용, 병원용 포함)
124	대	콘베이어
125	대	스키 리프트
126	대	화차 전철대
129	※	기타 재료취급장비 및 부품
38294		산업용 트럭 및 적하기 제조업
1	대	산업용 트럭, 트랙터, 트레일러 및 적하기
111	대	산업용 수동트럭 및 산업용 트레일러
112	대	소형 트랙터
113	대	프레트홈 트럭
114	대	포크 리프트(지게차)
119	※	기타 산업용 트럭 및 부품
38295		재봉기 제조업
1		가정용 재봉기
111	대	손틀
112	대	말틀
113	대	재봉기-전기식
2		산업용 재봉기
211	대	재봉기-직물용
212	대	재봉기-가죽용
213	대	재봉기-포대봉합용
219	※	재봉기-기타산업용(재책용은 38247)
300	※	재봉기용 부품(바늘 및 캐비넬은 제외)
38296		산업용 로봇제조업
111	대	교시형 로봇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112	대	적용형 로봇
113	대	지능형 로봇
119	※	로봇 부품
38297		기계식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베어링 포함
1		기계식 동력전달장치
111	※	베어링 하우징 및 플레인샤프트 베어링(강구 및 강방 포함)
112	개	트랜스 및 손 샤프트(변속기)
113	개	크랭크 및 크랭크 샤프트
114	개	감샤프트
115	개	기어 및 기어링
116	개	감속기
117	개	클러치
119	※	기타 기계식 동력전달장치 및 부품
2		볼, 롤러 및 니들롤러 베어링
211	※	볼 베어링
212	※	니들 베어링
213	※	메달 베어링
214	※	테이퍼 베어링
219	※	기타 베어링
221	※	베어링 부품
38298		무기 제조업
100	※	총포(권총, 소총, 대포, 고사포)총탄, 포탄, 폭발물 발사기, 장갑차 등 관련 장비 및 부품
200	※	수렵용 및 경기용총(공기총 포함)
382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전기 제외)
100	대	동력분무기(산업용) 농업용 동력 분무기는 38220411에 분류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2		금속용해 또는 처리로	914	개	로올러
211	대	금속용해 및 정련전기로	918	※	상수도용 장비 및 부품
212	대	금속열처리 및 가공전기로	91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산업용 장비 및 부품
213	대	용공로: 비전기식	383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214	대	용선로: 비전기식	3831		전기 산업용 기계 및 장치제조업
215	대	토마스 및 배세머 진로	38311		발전기, 전동기 및 기타 회전전기 기계 제조업
216	※	기타 비전기식 금속제련로	1		발전기 세트
217	※	비전기식 금속열처리 및 금속가공로	111	대	원동기(발전기 세트)
3		산업용로(9식품조리용로 제외)	112	대	회전변환기
311	대	전기로	119	※	기타 발전기 세트 및 부품
312	대	비전기로	2		전동기 및 발전기(전자용 소형 모 터는 38349123에 분류)
4		로연소기 및 급탄기	211	대	전동기-직류
411	대	로연소기(기계식)	212	대	전동기-교류
412	대	급탄기	217	대	발전기-직류생산
413	대	재 방출기	218	대	발전기-교류생산
414	대	기계식 화상	219	※	회전전기장비의 부품
415	※	가스 발생기 (발생로 가스, 수성가스, 아세 치렌가스 발생용)	38312		변압기 제조업
5		기화기(氣火器), 피스톤, 피스톤 링 및 밸브(내연기관용)	111	대	송배전 변압기
511	대	기화기(카뷰레타)	112	대	발전 변압기
512	천개	피스톤	113	※	전력조절기, 승압기, 리액터 및 유 사장치
513	천개	피스톤링	114	대	신형변압기(등안전기 제외)
514	천개	밸브 및 밸브하우징	115	개	등안전기 형광등, 수은등, 나트륨 가스 등의 등안전기
6		소화기 및 소화장비	119	※	기타 변압기 및 부품
611	대	소화기	38313		개폐장치 및 보호장비제조업
612	※	소화장비 및 소화용 스프링롤러	111	대	배전판-고압 (발전·송전용, 산업용)
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112	대	배전판-저압(조명 및 거주지용)
911	※	놀이터용 장비			
912	대	상수도용 여과기			
913	대	상수도용 정수기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113	대	전력회로차단기-고압용	211	대	고압축전기(전자기기용 축전기는 38343으로 분류)
114	대	전력회로차단기-저압용	212	대	저압축전기(" ")
115	대	누전차단기	900	※	기타 전기산업용 장치 및 부품
116	※	퓨즈	3832		음향, 영상 및 통신장비제조업
119	※	기타의 개폐장치, 안전장치 및 부품	38321		음향 및 영상기기제조업
38314		산업용 전기제어장비 제조업	1		텔레비전수상기(모니터)및 그부품
111	대	전기제어장비, 산업용 드라이브 (AC 및 DC)전동기제어장비 및 관련 장비	111	대	흑백 텔레비전 수상기
112	대	모터 스타터(자기스타터)	112	대	칼라 텔레비전 수상기
113	대	전기자기브레이크, 크러치, 연계 기 및 관련장비	113	대	콤비네이션 텔레비전 수상기
114	대	산업용 전자통제장비	114	대	컴퓨터용 수상기(모니터)
119	※	기타 산업용 통제장비 및 부품	115	대	프로젝션 텔레비전 수상기
38315		전기용접기 제조업	116	대	영상녹화재생기(V.T.R)-가정용
111	개	아크 용접장치	117	천개	칼라 T.V튜너
112	개	저항 용접기	118	천개	흑백 T.V튜너
119	※	전기용접기 부품	119	※	기타 T.V 반제품및 구성품
38316		내연기관용 전장품 제조업	2		라디오 수신기, 녹음기 및 그 부품
111	대	발전 및 전동기 시동기(mortor- Starter)	211	천대	일반 라디오(AM, FM, 스테레오, 헤드폰라디오)
112	개	스파크 프러그 (글로우 프러그 포함)	212	천대	시계라디오(디지털라디오)
113	※	점화코일, 마그네트, 디스트리뷰 터, 저압조절기 및 기타 점화장 비	213	천대	카라디오(카스테레오포함)
119	※	기타 내연기관용 전장품 및 부품	214	대	녹음기(카세트라디오포함)
383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산업용 기 계 및 장치제조업	215	대	녹음재생기(카트리리지 포함)
100	대	정류기 및 정류장치	216	천개	AM, FM 튜너
2		축전기(산업용)	219	※	기타 라디오, 녹음기의 반제품 및 구성품
			3		전축 및 소리발생장비 및 그 부품
			311	대	소형 전축(뮤직센터, 포함)-컴포넌 트시스템은 세분조사
			312	대	전축용 데크(데크백카니즘은 38349)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313	대	레코드 플레이어(컴팩트 제외)	311	대	인터컴
314	대	스피커시스템	312	대	인터폰
315	대	전축용 튜너	313	대	어학실습기
316	대	전축용 앰프셋트	900	※	기타 유선통신기기 및 그 부품
317	대	이퀄라이저	38323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318	대	컴팩트디스크 (CD) 플레이어	1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장치 및 폐쇄
319	※	기타 반제품 및 그 부품			<u>회로 텔레비전 조직</u>
4		마이크로폰류	111	대	라디오, 텔레비전방송국 장비-소리
411	천개	마이크로폰	112	대	텔레비전방송국 장치-시각
412	천개	헤드폰	113	대	라디오, TV 방송 송신기 및 관련장비
413	천개	이어폰	114	대	폐쇄회로 TV조직(감시용 모니터 TV 조직)
419	※	기타 유사제품 및 부품	115	대	TV카메라
9		기타 구성품	116	대	모니터 TV(방송용)
911	천개	확성기(스피커)	117	대	방송용 VTR(방송용녹화 장비)
912	천개	방송용 증폭기(P.A 앰프)	118	대	비디오 무비
913	천개	네크메카니즘	119	※	기타 방송장치 및 부품
919	※	기타 음향 및 영상기기의 부품	2		일반통신장비, 무선전화 및 무선
38322		유선통신장비제조업			<u>전신</u>
1		전화기 및 교환기	211	대	무선송수신기
111	대	전화기(다아알, 버튼식등)	212	대	CB 트랜시버(일반용)
112	대	무선전화기(코드레스식)	213	대	일반용 위키토키
113	대	자동차용 전화기(카폰)	214	대	항해용 방향탐지기(레이다 제외)
114	회선	자동식 전화교환기(수동식 포함)	219	※	기타 무선통신장비 및 부품
115	회선	전자식 전화교환기	900	※	군수용 무선통신 장비
2		방송용 및 인쇄전신기기	38324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211	대	방송장치(나선 및 동축케이블 반 송장치등)	111	대	상호 통신장비(전화 및 전신연합 된 것 제외)
212	대	텔레폰레코더	112	대	전기 교통 통제장비-도로, 철도, 수 로, 항구 또는 공항
213	대	텔레타이프	113	대	전기 소리 또는 시각 신호장치 : 경 보장치
214	대	텔레프린터			
215	대	모사 전송기기(팩시밀리)			
3		기타 유선 통신기기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119	※	기타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와 부품
38325		방사선 장치 및 전기의료 장치 제조업
1		방사선 장치
111	대	X-선장치(진단 및 요법용)
112	대	X-선장치(산업용)
113	대	방사선 이용장치
114	대	X-선관 및 기타 X-선 발생장치
119	※	기타 X-선 장치용 부품
2		전기의료 장치
211	대	전기 진단장치
212	대	전기요법(치료)장치
219	※	기타 전기의료장치 및 부품
38326		음반 및 녹음테이프 제조업 (녹음된 원판을 가지고 상업용 음반 및 오디오, 비디오 테이프를 대량 복제 생산하는 산업활동, 음반 및 테이프의 생지제조는 35296에 분류)
111	천매	음반(레코드판)-컴팩트디스크외
112	천매	컴팩트디스크(CD)
113	천km	카세트테이프
114	천km	비디오 테이프
200	※	기타 관련제품 및 부품 (영화 및 방송용은 제외)
383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음향, 영상 및 통신장비제조업
111	※	무선 조정 자동문 개폐기
119	※	기타 음향, 영상 및 통신장비 및 부품
3833		가정용 전기기구 제조업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38331		전기냉장고 제조업
111	대	냉장고-가정용(상업용은 38263에 분류)
119	※	냉장고 부품
38332		선풍기 제조업
100	대	선풍기(가정용)
200	대	제습기-가정용
300	대	연탄가스 배출기
400	대	환풍기-가정용(산업용은 38292)
900	※	기타 가정용 선풍기 반제품 및 부품
38333		전기세탁기 제조업
111	대	전기 세탁기-가정용
112	대	탈수기
119	※	전기 세탁기 및 탈수기 부품
38334		가정용 전열기구 제조업
1		가정용 전열기구
111	대	전기레인지 및 오븐(저항형)-가정용
112	대	전자레인지 및 오븐(고주파, 적외선 마그네트론의 것)-가정용
2		전기 탕비기(물끓이는 기계) 및 전
		기난방장비
211	대	전기탕비기(물끓이는 기계)
212	대	전기난방 및 토양가열장치
213	대	전기 커피포트
214	대	전기열저항기=전기풍로
3		가정용 식품가공 전기기기
311	개	전기밥솥
312	개	전기 보온밥통
313	개	전기 프라이팬
319	※	기타의 가정용 식품가공 기기 및 부품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9		기타 가정용 전열기구	115	천개	T.V 브라운관 반제품
911	대	전기조라기(전기렌지 및 오븐제외)	119	※	기타 특수목적용 전자관 및 부품
912	개	전기담요 및 히팅패드(전기장판 포함)	38342		반도체 및 관련장치 제조업
913	개	전기 다리미	111	천개	트랜지스터(TR)
914	대	눈 및 얼음 용해기-전기	112	천개	다이오드
915	대	온장고	113	천개	반도체 집적회로(IC)
916	대	의류건조기	114	천개	고밀도 집적회로(LSI)
917	대	순간온수기(가스·전기용)	115	천개	초고밀도 집적회로(VLSI)
919	※	기타 가정용 전열기구 및 부품	116	※	리드 프레임
38335		전기 이·미용기구 제조업	119	※	기타 반도체와 소자 및 부품
111	개	면도기(전기모터자장)	38343		전자기기용 축전기 제조업
112	개	조발기(전기모터자장)	111	천개	고정축전기(콘덴서)
113	개	드라이어	112	천개	가변축전기(콘덴서)
114	개	안마기	119	※	기타 축전기 및 부품
119	※	기타 전기화장 및 이·미용기구 및 부품	38344		전자기기용 저항기 제조업
383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정용 전기구 제조업	111	천개	고정저항기
111	대	진공소제기	112	천개	가변저항기
112	대	접사세척기-가정용	119	※	기타 저항기 및 부품
113	개	가습기(습도조절기)	38345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유도자 제조업
114	개	전기 믹서	111	천개	변성기(트랜스포머)
115	개	살균소독기	112	천개	전자코일
116	개	식품마쇄기(전기용)	119	※	기타 전자유도자 기기 및 부품
119	※	기타 가정용 대형기기 및 부품	383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834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111	천개	인쇄회로기판(PCB판)
38341		전자관 제조업	112	천개	음성증폭기
111	천개	흑백TV용 브라운관	113	천개	기억소자
112	천개	친연색TV용 브라운관	114	천개	마그네틱헤드
113	천개	표시관(계산기, 시계 사용)	116	※	전자용 전원연결품(플러그 및 잭 스위치 등)
114	천개	방전관	117	천개	동박 적층판(PCB원판)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121	천개	해라이트코아	113	개	불활성 전지
122	천개	해라이트마그네트	114	개	농축전지
123	천개	소형모터(전자용)	119	※	기타 일차전지 및 부품
124	천개	수정 진동자	38395		전기조명장치 제조업
125	천개	안테나(TV용, 통신용등)	111	※	백열등 및 조명부착물-실내
900	※	기타 전자부품	112	※	형광등 및 조명부착물
38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 및 전자 기기 제조업	113	※	가로 및 공지조명 부착물 (탑조등, 서포트라이트 및 비 콘).
38391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114	개	휴대용 전기배터리 및 마그네트등 (휴대용 전동포함)-차량용 제외
111	※	통신선 및 케이블	119	※	기타 조명부착물 및 조명장치와 부품
112	※	전력선 및 케이블 (광섬유 케이블은 38521200으로 분류)	2		차량용 전기조명 및 신호장비
113	※	마그네트선 및 케이블	211	개	살드-빔 램프 (차량에 부착되도록 설계한 진 공 혹은 가스입 램프)
119	※	기타의 절연선 및 케이블	219	※	기타의 차량용 전기조명 장비 및 신호장비
38392		전구 제조업	38396		전기배선기구 및 연결장치 제조업
1		전구	1		배전장치
111	천개	백열전구	111	천개	소켓트
112	개	방전구	112	천개	콘센트
113	천개	형광전구	113	천개	프러그
114	개	자외선 및 적외선 전구	114	천개	스윗치-배전장치
115	개	아아크등 및 전구	115	천개	형광등 스타터
116	개	전기로 점화하는 사진 섀광구	119	※	기타 전기배선기구 및 연결장치
117	천개	서크라인	2		전기도관 조인트 및 부착물(금속제)
118	천개	장식용 전구	211	※	전기도관, 조인트-절연금속제
119	※	기타의 전구 및 부품	212	※	전기도관용 조인트 및 부착물-비 절연
38393		축전지 제조업	300	※	절연코드 및 코드셋트(전기연결장 치)
111	개	축전지			
119	※	축전지 부품			
38394		건전지 제조업			
111	천개	건전지			
112	개	습전지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400	※	애자 및 절연부착물 유리, 도기, 성형고무, 또는 프라스틱 제외	400	٪	여객선(페리 포함)
383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5		어선, 공장선 및 특수선박
1		전기용 탄소제품	511	٪	어선(공장트롤러 포함)
111	※	카본 브러쉬	512	٪	공장선
112	※	카본 전극봉	900	※	기타 특수선박(조명선, 해난구조 선, 준설선, 기중기선, 소방선, 기상관측선, 경비선, 군함, 잠 수함등)
119	※	기타 카본제품	38413		목선 건조 및 수선업
121	※	카본 제조과정 부스러기	100	٪	여객선
2		기타 전기기계 장비 및 부품	200	٪	화물선
211	※	천기벨, 부저, 도어차임 및 유사장 치	300	٪	어선
212	※	차량용 윈드스크린 와이퍼 및 기타 전기장치	900	※	기타 목선
900	※	기타 전기 전자기기 및 부품	38414		보트 건조 및 수선업
384		운수장비 제조업	1		보트(고무보트는 35599215에분류)
3841		선박 건조 및 수선업	111	대	동력보트
38411		선박용기관 및 부품 제조업	112	대	돛 배
100	대	선박용 내연기관	119	대	기타 보트
900	※	선박용 기관 부품	38415		선박 해체업
38412		강선건조 및 수선업	100	※	선박 해체업
1		화물선	384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선박 건조 및 수선업
111	٪	철강 유조선	1		부선 도크 및 부유구조물
112	٪	일반화물선(다목적화물선, 콘테이 너선, 자동차권용선, 바지선 포함)	111	٪	부선 도크 및 기타 비추진식 선박
119	٪	특수 화물운반선(화학 및 가스운 반선, 냉동선 포함)	112	٪	부유 구조물
200	٪	여인선	2		선박(강선 및 목선 제외)
300	٪	쇄빙선, 케이블선, 탐색선 및 기타 비상업용 선박(어선, 여객선은 제외)	211	٪	합성수지선
			212	٪	콘크리트선
			213	٪	경금속선
			219	※	기타 선박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3842		철도장비 제조업
38421		기관차 제조업
1		기관차-철도용
112	대	진기기관차-철도용
113	대	디젤 및 디젤진기기관차-철도용
114	대	진동차
119	※	기타 철도용 기관차
2		기관차-철도용 이외
211	대	광산기관차-지하
212	대	산업용 기관차
900	※	기관차 부품
38422		철도객화차 제조업
1		여객차(기관차 제외)
111	량	여객차 및 수하물차
112	량	병원차, 죄수차, 검사차 및 기타 특수목적 차량
200	량	화차 무개차(콘도라), 평저차, 유 개차, 유조차, 냉장차 등
900	※	기타 차량
38423		철도차량 부품 제조업
100	대	피스톤 발브 증기기관-기관차용
200	대	내연 추진기관-철도기관차용
300	개	차륜
911	개	완충기
919	※	기타 철도차량 부품
38429		덜리 분류되지 않은 철도장비 제조업
1		기계추진 철도차량, 트롤리버스 여객 화물 또는 정비목적
111	대	전기추진차량 : 트롤리버스 포함
112	대	레일카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119	※	기타 기계추진 레일차량(철도로반 보수 및 정비용 철도차량 포함)
3843		자동차 제조업
38431		자동차 제조업, 부품 제외
1		승용차
111	대	소형승용차(1500CC 미만)
112	대	중형승용차(2000CC 미만)
113	대	대형승용차(2000CC 이상)
114	대	지프형승용차
2		버스
211	대	소형버스(15인승 이하)
212	대	중형버스(35인승 이하)
213	대	대형버스(36인승 이상)
214	대	고속형버스(고속관광버스 포함)
3		트럭
311	대	소형트럭(1ton 이하)
312	대	중형트럭(1ton초과~5ton미만)
313	대	대형트럭(5ton 이상)
400	대	특수차 (경찰용특장차, 소방차, 콘크리 트 믹서차, 구난차, 위생차, 병 원차, 방송차, 은행차, 장의차, 급수차, 유조차, 냉동 및 냉장차 등을 포함)
500	대	트럭트레일러
6		차체
611	대	승용차 차체
612	대	버스 차체
613	대	트럭,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차체
619	※	기타 차체
38432		자동차 부품 제조업
111	대	자동차용 내연기관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119	※	기관용 부품	111	대	모우터사이클(이륜 및 삼륜)
2		기관 부착된 샷시			51cc 이상
211	※	승용차 샷시	112	대	모우터스쿠터
219	※	기타 차량용 샷시	113	대	오토사이클
500	대	로드레일 및 유사콘테이너(저장 및 운반콘테이너는 38136으로)			(페달 부착된 것) 50cc이하
600	※	차체 부품	200	대	골프차, 눈차(스노우 모빌) 및 기타 특수 목적차
9		기타 차량 부품	3		모우터 및 부품
911	※	동력전달장치 및 그 부품	311	※	모우터사이클용 기관
912	※	배기조직 및 그 부품	312	※	모우터사이클 부품
913	※	연료계통조직 및 그 부품	3845		항공기 제조 및 수선업
914	※	제동장치 및 그 부품	38451		항공기 제조 및 수선업 (부품 제외)
915	※	조향장치 및 그 부품	100	※	항공기(민수용)
916	※	현가장치 및 그 부품(차축은 제외)	200	※	헬리콥터(민수용)
921	개	휠, 자동차륜	38452		항공기 부품 제조업
922	개	자동차 차축	100	※	항공기 부품(민수용)
923	대	자동차용 방열기	38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수장비 제조업
929	※	기타 자동차 부품	3849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수장비 제조업
3844		모우터사이클 및 자전거 제조업	100	대	동물 견인 차량, 비동력(우마차)
38441		자전거 제조업	200	대	손수레 및 기타 비동력 차량
1		자전거	900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수장비 및 부품
111	대	일륜거	385		의료 광학,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112	대	이륜거(보통 자전거)	3851		의료용기구 및 용품 제조업
113	대	삼륜거(어린이용 세발자전거는 39042100에 분류)	38511		의료용기구 제조업
114	대	사륜거	100	※	의료용 기구 수술대, 의자, 마사지용 테이블, 침대 등
2		자전거 부품	38512		의료처치 및 진단기구 제조업
211	개	자전거 차체			
212	개	자전거 립			
219	※	기타 자전거 부품			
38442		모우터사이클 제조업			
1		모우터사이클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111	※	진단용 기구(눈검사 기구는 제외) 세분	100	※	생물학적 해부모형, 해부도, 해부 표본
112	※	환자처치, 수술, 해부 및 시체검사 용 기계기구	200	※	(교육 및 전시용등)
113	※	외과 및 내과 치료용 기구 일반기구, 일반날붙이, 여러가 지 바늘(침 포함), 기타 제품	300	※	피임용품(교무제품 제외)
114	※	수의학 기구	900	※	반창고, 약솜(약품처리된 상태의 것) 등 외과 드레싱
900	※	기타 의료처치, 진단기구 및 부품	900	※	기타 의료용품 및 부품
38513		기계요법 및 관련기구 제조업	3852		사진 및 광학용품 제조업
111	※	기계요법 기기	38521		광섬유 제조업
112	※	산소요법 및 기타 호흡기기 (가스마스크)	100	※	광섬유
113	※	심리학적 검사용 기구	200	※	광섬유 케이블
900	※	기타 기계요법, 관련기구 및 부품	900	※	기타 부속품
38514		치과 전용장비 및 용품 제조업	38522		광학요소 제조업
111	※	치과용 수도구	1		광학요소(안경렌즈 제외) 장치하 지 않은 것.
112	※	치과용 시멘트	111	개	프리즘
113	※	치과 비품	112	천개	렌즈(안경용 제외)
114	※	치과 드릴엔진	113	개	광학요소 거울
115	※	인조치아	114	개	색채필터 및 간섭필터
119	※	기타 치과용 의료기구 및 부품	119	※	기타 장치하지 않은 광학요소
38515		정형외과용품 제조업	2		광학요소 장치한 것
111	※	교정용기구	211	※	대물렌즈, 필터, 거리측정기 등 (사진기 및 관련장비용)
112	※	부목 및 기타 골절기기	219	※	기타 광학요소(사진기 및 관련장 비용 이외의 것)
113	※	인조사지, 코동(치아, 눈은 제외)	300	천개	안경렌즈(콘택트렌즈 포함)
114	※	신체보정용기기(걸림보정구, 보청기)	38523		사진기 제조업
115	※	인공장기	111	대	카메라(일반 목적용)
119	※	정형외과용품 부품	112	대	비디오카메라(VTR 카메라)
385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의료용기구 및 용품제조업	119	※	기타 특수카메라
			121	※	카메라 부품
			122	개	사진 설팅장치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123	개	노출계(사진용)
38524		영화촬영기 및 영사기 제조업
111	대	영화촬영기(16mm초과하는 것)
112	대	영화촬영기(16mm이하)
113	대	영사기(16mm이하)
114	대	영사기(16mm 초과하는 것)
115	대	영화녹음기(광전기식)
116	※	부품
38525		사진 복사장치 제조업
111	대	사진 복사장치
112	대	전자 복사기
900	※	사진 복사장치 및 전자 복사기 부품
38526		사진 및 영사실 장비 제조업
100	※	사진 및 영사실 장비 환등기, 사진 확대 및 축소기, 필름현상기, 절단기, 영화 확대 및 축소기, 필름현상 탱크, 특수 건조기, 영사스크린 등
38527		현미경 및 망원경 제조업
1		망원경 및 기타 원거리 현상관측용 기구
111	대	굴절망원경(천문기구 제외)
112	대	천문기구
200	대	복합광학 현미경
300	대	전자 및 양자현미경, 최절장치 광 선대신 전자빔을 사용하므로 광 학현미경과 구별
38528		안경 제조업
111	천개	안경테
112	천개	교정용 안경
113	천개	선그라스
119	※	기타 안경 및 부품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385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진 및 광학 용품 제조업
100	※	눈검사기구 : 시력검사장치 및 눈 의 장애진단, 시력결핍 측정용 특수기구
200	※	인조눈
9		기타 실험, 과학, 산업용 광학기구
911	※	광학측정 및 검사기구
912	※	물리, 화학분석용 광학기구
913	※	거리측정기 광학폭탄 및 총기조준기 등
914	개	쌍안경
919	※	기타 광학기구
3853		시계 제조업
38531		일반 시계 제조업
111	천개	일반 손목시계(기계식)
112	천개	일반 벽시계(기계식)
113	천개	일반 탁상시계(기계식)
119	※	기타 일반시계(타임크록 및 스포 워치등 포함)
38532		전기 전자시계 제조업
111	천개	전자 손목시계
112	천개	전자 벽시계
113	천개	전자 탁상시계
119	※	기타 전기전자시계(타임크록 및 스톱워치등 포함)
38533		시계부품 제조업
111	천개	시계기동부
112	천개	휴대용 시계케이스
113	천개	큰시계 케이스
114	※	기동부품, 속도조정, 장치대동
115	※	시계반제품(일부부품 결합)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119	※	기타 시계부품	214	개	진동, 팽창, 충격검사기(지진계와 진동계는 제외)
385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215	대	내연기관, 차량브레이크, 펌프, 속도계 등 검사용 시험대
38541		측량기구 제조업	219	※	기타 측정 및 검사기구
111	대	경위의	38544		이화학용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112	대	전경의(토지측량용)	100	※	천문, 수로 및 지구물리학 기구 풍속, 풍향계, 태양계, 유속계, 간만기록계, 지진계 등
113	대	수평의	211	※	습도계 및 사이크로 미터 액화밀도 및 비중측정계, 기압 계, 습도계 등
114	대	시준의=조준의	212	천개	온도계(체온계 포함)
115	개	광학자	300	※	물리 및 화학분석용 기구
116	개	판도미터	38545		가스 및 액체용 적산계기 제조업
117	개	경사계(경사각 등을 측정함)	111	대	가스 공급계기
118	개	측량용 평판, 렌드체인	112	대	액체 공급계기(수도미터 제외)
121	대	항공사진용 기구 및 장치	113	대	수도미터
129	※	기타 측량기구	119	※	기타 가스 및 액체용 적산계기와 부품
38542		도안 및 제도기구 제조업	38546		회전속도계 및 계산장치 제조업
111	※	도안 및 제도기구	111	대	계산장치 회전계산기, 생산계산기, 시 간계, 보수계, 택시미터 등
112	※	수학적 계산기구	112	개	속도계 및 타코미터 (항공기용 타코미터는 제외)
113	※	측면기, 측정봉, 분도기 및 유사제품(비전기식)	113	개	스트로 보스코프
38543		물질검사 및 시험기구 제조업	119	※	기타 관련기기 및 부품
1		산업재료 시험용 기계 및 기기	38547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111	대	금속시험기계 및 기기 장력, 강도, 연성 시험기 등 압축 또는 충격용 기구	111	대	적산 전력계
112	대	섬유시험기계 및 기기	112	※	전자 계측기
113	대	종이, 판지, 리놀륨, 연성프라스 틱 또는 연성고무 시험용 기기			
119	※	기타 재료 시험용 기계 및 기기			
2		기타 측정 및 검사기구			
211	개	평형기			
212	개	압력계=동력계			
213	개	시계 또는 시계부품 검사기구			

분 번	류 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분 번	류 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113	※		오실로스코우프 및 오실로그래프				
114	※		전자 및 전기 회로시험, 검사분석 기구 또는 장치				
115	※		방사성검사 또는 측정용기구				
119	※		기타 전자시험 및 분석기구 및 부 품				
38548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111	※		산업자동조정 및 제어장비				
112	※		산업환경 자동통제기				
113	대		압력계기-산업공정용				
114	대		수평계기				
115	대		가습장치·가습조절기-산업용				
116	개		가스 및 액체분석기구				
117	개		온도 조절기구				
119	※		기타 관련기구 및 부품				
385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1			항행 항해용기구				
111	※		항공기 항해용기구(나침반 제외)				
112	※		항해용기구				
113	개		나침반				
2			항공기 기관계기				
211	※		항공기 기관계기				
212	※		기체장비용 계기				
300	개		정밀저울(감도5cm g 미만)				
900	※		기타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 비 및 부품				

중분류 39. 기 타 제 조 업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390		기타제조업			
3901		귀금속의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39010		귀금속의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1		귀석 및 반귀석, 가공한 것, 장치 <u>하지 않은 것</u>			
111	※	다이아몬드-장식용			
112	※	장신구용 귀석 및 반귀석			
113	※	기구, 다이, 시계 또는 기타 장치 용 보석	313	※	시계부착물
114	※	장신구로 사용하기 위해 가공한 진 주	319	※	기타의 백금 또는 순금의 장신구 남자용(카프랑크, 프레스, 스루 드 단추, 타이핀 및 크립, 시계 줄) 학교뱃지, 군계급장, 메달, 십자가, 염주, 담배케이스, 안 경케이스, 바클, 머리핀, 빗 등
115	※	귀석 또는 반귀석의 가루	4		입힌 귀금속 또는 은합금의 장신구
116	※	자기가공 및 제품	411	※	반지
2		귀석, 진주 또는 반귀석제품	412	※	여성용 장신구
211	※	개인장식 소제품 반지, 팔찌, 목걸이(순수한 장 식용), 단추, 옷핀, 라이클릴 및 핀, 시계줄, 담배케이스, 안경 케이스, 립스틱홀더(휴대용) 등	413	※	시계 부착물
219	※	기타의 귀석, 진주 또는 반귀석 제 품 빗, 브러쉬, 거울, 합(휴대용보 다 큰 것), 칼, 포크(손잡이 장 식 실내 장식용), 지팡이, 우 산, 핸드백의 부품	419	※	기타의 귀금속 또는 은합금의 장신 구
3		백금 또는 순금의 장신구	5		귀금속, 입힌 귀금속 또는 도금 귀
311	※	반지(보석 결합된 것 포함)			<u>금속의 프래트웨어</u>
312	※	여성용 장신구(반지 제외) 팔찌, 브로찌, 귀걸이, 목걸이, 핀, 크립, 시계줄, 벨트 및	511	※	귀금속의 프래트웨어 칼, 조각용세트, 스푼, 포크, 국 자 등 식품 취급용 제품
			512	※	도금 귀금속의 프래트웨어
			6		귀금속 입힌 귀금속, 도금 귀금속
					<u>의 홀로우 웨어</u>
			611	※	귀금속 홀로우 웨어
			612	※	도금 귀금속의 홀로우 웨어 접시, 쟁반, 국주발, 소스병, 설 탕 그릇, 커피포트, 티포트, 찻 잔, 술잔, decanter, 병마개 및 유사 식탁용품
			700	※	동전(모든 금속의 것)
			800	※	장신구 재단물

분 번	류 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9		기타 금은세공품
911	※		귀금속 또는 압연 귀금속의 제품 화장제품, 사무실장비, 깍연용 구, 교회장식용품, 가정용제품 등
912	※		도금 귀금속제품
919	※		귀금속의 찌꺼기
			3902 악기제조업
			39021 현건반악기 제조업
111	대		피아노
119	※		기타 현 건반악기
200	※		현 건반악기 부품
			39022 건반 관악기 제조업
111	대		울겐 파이프 및 리드울겐 유사악기 포함
112	개		하모니움
113	개		휴대용 건반관악기 아코디온, 콘서티나, 반도니온 등
119	※		건반 관악기 부품
			39023 현악기 제조업
111	※		활로 켜는 현악기 바이올린, 비올라, 비올라첼로, 베이스비올라, 더블베이스 등
112	※		뜯는 현악기 만도린, 후레, 만도라, lyre, 밴 조, 우크레레 등
113	대		기타 (guitar)
119	※		기타 현악기 에올리언, 하프, 텀바이올린, 허리-거리 등

분 번	류 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39024 관악기 제조업
111	※		목관악기 플루트, 반쉬리스, 피콜로, 피 리오보에, 리코더, 바수-운, 콘 트라-바수운, 클라리넷, 색스 폰, 사로스폰, 크롬혼 등
112	※		금관악기 트럼펫, 크라리온, 코르렛, 트 럼본, 소우서폰, 나팔
119	※		기타 관악기 하모니카, 배그파이프, 브리턴 파이프, 뮤제트
121	※		관악기 부품
			39025 타악기 제조업
111	※		드럼 및 유사악기 드럼, 오케스트라, 팀파니, 케 롤드럼, 탬버린타브, 팀버린, 타블라스, 쿵가, 봉고, 흠-흠
119	※		기타의 타악기 심발, 종, 트라이앵글, 징글림 조, 리벤, 마라카스, 클레이브, 우드 블럭킬러폰, 바림바, 메탈 로폰 및 사론, 셀레스타, 플렉사 톤, 유태하아프
121	※		타악기 부품
			39026 전자악기 제조업
111	대		전자 건반악기 전자피아노, 전자울겐, 전자아 코디온
112	대		전자 현악기 전기기타, 베이스기타
119	※		기타 전자악기 (전자 타악기 포함)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39027		국악기 제조업
100	※	국악기 가야금, 거문고, 장고, 북, 쟁과 리, 징, 바라, 피리, 대금, 아쟁 등
390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악기 제조업
100	※	기타 악기 오케스트리온, 바렐울겐, 톱악 기 등
200	※	악기용 현 기타, 전기기타, 첼로, 밴조, 바 이올린 등의 현
3903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39031		체조 및 어린이놀이터용 장비 제조 업
111	※	체조장비 및 기계식 훈련기
112	※	어린이 놀이터용 장비 미끄럼틀, 그네, 시소 등
119	※	기타 운동 및 경기용품
39032		코트 및 필드게임장비 제조업
111	천개	라켓(테니스라켓 제외)
112	개	테니스라켓
113	※	배트, 스틱 및 맬릿 스키 및 골프스틱 제외
114	천개	공-대형(축구, 배구, 농구, 핸드볼 공 등)
115	천개	공-소형(야구, 테니스, 탁구공 등) 골프공은 39039에 분류
116	※	공-완구용(어린이 놀이용공 등)
117	개	야구장갑(완구용 제외)
118	※	기타 글러브 및 경기용 보호물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119	※	기타의 코트 및 필드게임장비
39033		낚시장비 제조업
111	천개	낚시대
112	천개	릴
119	※	기타의 낚시장비(낚시바늘, 부찌, 줄 등)
390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 및 경기 용품 제조업
100	※	트랙 및 필드 장비 뽀름, 장대, 높이뛰기 및 장대높 이뛰기, 낙하관, 허들, 자벨린, 스타링블럭, 계주바튼 등
200	※	골프장비 골프클럽, 샤프트, 골프공, 마거 및 와이퍼, 인조잔디, 플라스틱볼 은 356, 골프백은 323에 분류
300	※	동계경기장비 스케이트(로울러 스케이트 제 외) 설상화, 스키, 봅슬라이 및 토보간, 아이스요트, 스노우 모 빌, 동물견인 썰매는 384에 분류
411	※	당구장비 당구대, 큐, 큐팁, 큐패드, 큐레 스트, 브리지, 볼러크, 아운더, 볼
412	※	볼링 및 유사장비 기계식핀, 세팅기, 핀포스터, 서플보드판
9		기타 경기용품
911	※	수렵용품
912	※	수중용 경기용품 다이빙보드 및 스페이지, 워터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분류 번호	단위	산업 및 품목명
919	※	스키, 호흡용 마스크 기타의 경기용품 펜싱용 무기, 투사용 칼, 로올러 스케이트, 탁구대, 등산용얼음 도끼 등	100	※	축제용품 및 악세사리 (카니발 및 유희용품, 크리스마스 장식품등의 축제용품)
3904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900	※	기타 오락, 축제용품 및 부품
39041		인형 제조업	3905		모조장신 및 장식품 제조업
100	※	인형(봉제완구 및 조립, 사람 및 동물모양 또는 가상형태)	39051		장식용칠기 제조업
900	※	인형 악세사리와 부품	100	※	장식용 칠기(칠기가구제조업은 33203에 분류)
39042		승용장난감 제조업	39052		모조장식품 제조업, 칠기 제외
100	※	승용물 장난감(어린이용)-탈수 있 는 것 (새발자전거, 보행기, 유모차, 스쿠우터, 족담식 자동차 등. 어린이용 2륜자전거는 38441112에 분류)	100	※	가정용 공예장식품
900	※	승용장난감 부품	200	※	의복장신구(몸치장용, 모조장식 품)
39043		장난감 제조업, 인형 및 승용제의	300	※	동식물 및 광물성재료의 조각제품 (상아, 패류, 산호 등)
100	※	장난감(인형 및 승용장난감 제외) 과학용장난감, 동력식장난감, 장난감무기, 장난감집 및 모형, 조립용 장난감, 장난감 악기 등	900	※	기타 보조장식품
900	※	장난감 부품(인형 및 승용장난감 부품 제외)	39053		표구 및 표구제품 제조업
39044		오락용품 및 기계 장비 제조업	111	※	표구제품
100	대	테이블용 게임장비(전자오락기계)	119	※	표구부속품
200	※	판게임용 장비(장기, 바둑, 체스 등)	39054		조화 및 유사제품 제조업
900	※	기타 오락용품과 기계장비 및 부품	100	※	인조꽃(조화) 및 유사제품
390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9055		가발제조업
			111	※	인조 및 동물털 표백, 염색, 웨이브 등 가공한 것
			112	천개	가발
			113	천조	가늌셋
			114	kg	정인모(가공된 것)
			115	kg	인모(가공되지 않은것)
			119	※	기타 모발제품 가수염, 가속늌셋 등
			3905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모조장신 및 장식품 제조업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100	※	기타 모조장신 및 장식품 (상패, 감사패, 트로피, 대형실 내장식용 메달 등)
3909		기타 제조업
39091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111	※	펜, 펜홀더, 펜촉, 철필, 펜대, 펜 촉
112	천개	만년필
113	천개	볼펜
114	천타	연필
115	※	크레용, 파스텔
116	개	스텝프
117	※	타자기용 리본 및 잉크패드
118	kg	복사지
121	※	그림물감
122	천타	펠트 또는 포러스팁의 펜과 마이크 (싸인펜, 프러스펜, 컬러펜, 매 직펜 포함)
123	천개	기계식 연필(샤프)
124	천개	붓
125	천개	지우개
126	천개	필통
127	개	흑판
128	천개	분필(제도용 및 당구용 포함)
131	천개	삼각자 및 기타 자
132	천개	인장(도장)
133	천개	인주
900	※	기타의 사무 및 회화용품
39092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
111	천개	철제우산
112	천개	양산
113	천개	비닐우산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114	※	양산살대
119	※	우산 및 양산의 부품
200	천개	지팡이
39093		비 및 솔 제조업
111	kg	정돈모 돼지털 및 기타 스텝크, 다람쥐 등, 솔 제조용 털로 가공된 것
112	※	걸레 주로 섬유재료 또는 기타 흡수 성 섬유나 천연 또는 인조 스폰 지의 걸레
113	※	비 및 솔
114	※	페인트 브러쉬, 페인트 로울러 사 무용 브러쉬, 붓 등 포함
115	※	기계 부품솔 도로청소기용 솔, 방적 및 직조 기용 솔, 전기가정기기용 솔, 기 계에 부착하도록 된 걸레도 포 함
116	※	개인 위생용 솔 헤어브러쉬, 옷솔, 구두솔, 빗 솔, 손톱솔, 면도솔, 동물용 솔
117	천개	치솔
119	※	기타의 비 및 솔 인쇄기 및 타이프라이터용 솔 방비, 스파킹 프러그 청소용 솔, 수세미, 철선솔, 깃털, 먼지털 이 및 분침 포함
39094		라이터 및 흡연용품 제조업
111	천개	라이터(영구용)
112	천개	라이터(1회용)
113	천개	흡연용 파이프(담배대 포함)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분류 번호	단 위	산 업 및 품 목 명
115	kg	담배용 필터			
119	※	라이터 및 흡연용품의 부품			
39095		파스너(지퍼)제조업			
100	km	파스너(지퍼)			
900	※	파스너 부속품			
39096		단추 제조업			
100	※	단추, 커프링크스(고무 및 프라스 틱제 압출 성형 단추는 35594와 35605에 분류)			
39097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100	※	간판 및 광고진열물			
390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제조업			
111	※	바늘 및 편			
112	※	부채 및 합죽선			
113	※	빗			
114	※	버클 및 뱃지			
115	※	활동적인 진열물			
116	※	마네킹			
900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제품			

부 록

1. 품 목 색 인 표
2. 도 량 형 단 위 환 산 표
3. 특별소비세와 주세의 과세대상품목 및 세율
4. 공 작 기 계 분 류 번 호 표

<부록 1>

품 목 색 인 표

(7)

품 목 명	단 위	분류 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 번호
가공용기계			콩가루	kg	31161 213
고체광물가공용	대	38241 111	감자가루	kg	31161 214
		~ 200	전분야채가루	kg	31161 215
식료품가공용	대	38243 111	과실가루	※	31161 216
		~ 929	커피콩(정질 벗긴것)	※	31161 217
프라스틱가공용	※	38245 119	기타 야채 및 과실가루	※	31161 219
고무가공용	※	38245 119	겨자가루	kg	31214 113
가죽가공용	※	38242 913	후추가루	kg	31214 112
가공운모 및 그 제품	※	36999 111	고추가루	kg	31214 111
가공관석	※	36994 114	카레가루	kg	31214 114
			녹말가루(전분)	kg	31225 111
가구			글루텐 및 글루텐가루	kg	31225 114
금속제가구	천개	38121 111	가름정광	※	23029 919
		~ 119	가마니	※	32195 111
목재가구	개	33201 111	가마니물	대	38221 415
		~ 200	가발	천개	39055 112
내장가구	※	33202 111	가방(금속제 제외)	개	32332 100
		~ 400	가방(금속제)	개	38122 113
나전철기가구	개	33203 111	가방 부착용 철물	※	38117 114
		~ 119	가변 저항기(전자기기용)	천개	38344 112
등가구	※	33204 100	가변 축전기	천개	38343 112
프라스틱가구	※	35604 114	가소제(가성칼리 = 수산화칼리)	※	35122 112
가구용철물	※	38117 112	가솔린		
가금 부화기	대	38220 611	항공기용가솔린	ℓ	35300 211
가금 사육기(병아리사육용)	대	38220 612	모터가솔린 = 휘발유	ℓ	35300 212
가금 사육기(기타 가금 사육용)	대	38220 619	가성칼리(가소제)	※	35122 112
가나마이신	※	35223 115	가성소오다(수산화나트륨)	※	35122 111
가눈삽	천조	39055 113	가스		
가단추물	※	37134 111	프로판가스	ℓ	35300 311
가담마초	※	31230 111	부탄가스	ℓ	35300 312
가루			기타 액화 석유가스	※	35300 319
밀가루	※	31161 211	산소(오존포함)	m³	35123 111
곡물가루(옥분포함)	kg	31161 212	질소	m³	35123 112

(7)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희소가스	m ³	35123 113	가정용 저울	개	38254 113
액체공기	m ³	35123 114	가정용 집기	※	38142 111
아세틸렌가스	kg	35123 115			~ 219
클로로불화메탄 및 에탄	m ³	35123 116	가정용 펌프 (수동식 제외)	대	38291 113
혼합산업용가스	m ³	35123 117	가정용 편물기	대	38242 413
수소	m ³	35123 211	가정용 토기 제품	※	36101 100
헬륨	m ³	35123 212	가죽		
이산화탄소	m ³	35123 213	최가죽	m	32311 111
일산화탄소	m ³	35123 214	말가죽	m	32311 112
산화질소 및 산화질산	m ³	35123 215	돼지가죽	m	32311 113
기타 산업용가스	※	35123 219	양가죽	m	32311 211
가스 공급제기	대	38545 111	염소가죽	m	32311 212
가스 난로	대	38194 213	새우 손질가죽	m	32311 311
가스 레인지	대	38265 112	파치먼트 손질가죽	m	32311 312
가스 마스크	※	38513 112	재생가죽	m	32312 100
가스 및 액체 분석기구	개	38548 116	인조가죽	m	32312 200
가스 발생기	※	38299 415	가죽 가공기계	대	38242 913
가스 분리 플랜트	대	38244 111	가죽 운동화 (감피가 순수가죽)	천족	35591 114
가스 세정기 또는 흡수탑	대	38134 215	기타 운동화 (감피가 기타	천족	35591 115
가스연료 불꽃집화기관	대	38211 100	재료로 된것)		
가스 용접장치	대	38233 112	가죽용 재봉기	대	38295 212
가스터빈(항공기용은 38490 에	대	38212 300	가죽의복		
분류)			남자용 가죽의복	착	32226 111
가습기(가정용)	개	38339 113	여자용 가죽의복	착	32226 112
가습장치(산업용)	대	38548 115	인조 가죽의복	착	32226 113
가아제	※	32196 119	가죽장갑	조	32228 112
가아금	※	39027 100	가죽장화	족	32401 200
가위 (보통가위)	천개	38112 114	카룩케이스	개	32334 111
가위 (양철가위)	천개	38113 111	가황고무사 및 코드	※	35592 111
가위 (전치용가위)	※	38114 119	각반 및 유사제품	※	32409 100
가정기기용 캐비넷 (목재)	개	33205 100	각연	kg	31402 200
가정기기용 캐비넷 (프라스틱제)	개	35604 113	각종 봉투	백매	34194 111
가정용 내장가구	※	33202 111	간만기록계	※	38544 100
가정용 냉장고 (전기냉장고)	대	38331 111	간이 강시판	개	37121 232
가정용 도자 석기	천개	36102 111	간장	kg	31211 111
가정용 자기 제품	※	36102 112	간판 및 광고 진열물	※	39097 100
			갈철망	개	23010 113
			갈탄	개	21020 100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갈탄왁스 및 기타 광물왁스	℥	35409 113	쟁지	℥	34113 112
갈포	㎏	32129 114	거들	※	32225 111
갈포벽지	㎡	32145 112	거리 측정기(광학, 복단 및 총기 조준기 등)	※	38529 913
감광유제	㎏	35296 216	거문고	※	39027 100
감광저울	개	38549 300	거울판 및 유리	※	36202 113
감광지(인화지 포함)	※	35296 113	거칠은 알루미늄 주물	㎏	37241 112
감글류, 파실(가공한것)	㎏	31139 111	건물 구조재(목재)	※	33112 113
감도계	㎏	35296 213	건물 부착물(목재)	※	33112 112
감속기	개	38297 116	건물석	※	36994 112
감자가루	㎏	31161 214	건물용 문(철제)	℥	38131 111
강관(주철관 제외)			건물용 문(콘크리트제)	※	36935 112
무게 목관	℥	37123 111	건물용 사시(알루미늄 사시바 는 37232 에 분류)	℥	38131 112
전기용접 강관	℥	37123 112	건물용 샷터	℥	38131 113
단접 강관	℥	37123 113	건반악기		
아크용접 강관	℥	37123 114	피아노(전자피아노 제외)	대	39021 111
리벳트 강관	℥	37123 115	울건(전자울건 제외)	대	39022 111
강괴			하모니움	개	39022 112
보통 단조용 강괴	℥	37113 121	휴대용 건반악기	개	39022 113
고탄소강 단조용 강괴	℥	37113 122	기타 현건반악기	※	39021 119
합금강 단조용 강괴	℥	37113 123	전자피아노	대	39026 111
보통 압연용 강괴	℥	37113 111	전자울건	대	39026 111
고탄소강 압연용 강괴	℥	37113 112	전자아코디온	대	39026 111
합금강 압연용 강괴	℥	37113 113	현건반악기부품	※	39021 200
강시판	℥	37121 231	건반악기부품	※	39022 119
강구·강방	※	38297 111	건방	㎏	31172 113
강관(표면처리강관은 37192 에 분류)	℥	37121 311	건염 염료	℥	35131 116
강화유리	상자	36202 211	건전지	천개	38394 111
강동따개	※	38119 119	건조야채	※	31139 200
개량목재	㎡	33115 111	건축용 및 장식용 금속제품	※	38132 100
개버딘	천㎡	32121 112	건축용지	㎡	34115 111
개인 위생용술(웃술, 구두술, 치 술, 면도술)	※	39093 116			~ 119
개인장식 소재품	※	39010 211	건포도	※	31139 113
개인 또는 가정용 바구니	※	33125 112	걸레	※	39093 112

(7)

종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종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검 또는 전문성 물질 또는 도포직물	※	32194 111	경철	※	37112 200
검사기	대	38220 613	경압	※	31151 114
검사차 및 기타 특수 목적 차량(철도차량)	량	38422 112	경조단	천㎡	32123 112
감	※	31173 312	경화고무 및 경화고무제품	※	35594 100
검질 및 가공부스러기(과실, 채소)	※	31139 500	경화 동물기름	※	31151 400
게임 장비	※	39044 900	경화 식물성기름	※	31152 400
저	※	31161 129	경화 파이버 보드 제조기	대	38246 122
저자가루	㎏	31214 113	제급장	※	39010 319
(검질벗긴) 전과	※	31229 200	제기류		
전방척기	대	38242 213	측량기계기구	대·개	38541 111
전방척사	㎏	32115 112	도안 및 제도기구	※	38542 111
전연사	㎏	32117 112	검사 및 시험용기구	대·개	38543 111
전인 제어장비, 산업용 드라이 브, 전동기 제어장비 및 관 련장비	대	38314 111	이화학 및 과학용기구	개·※	38544 100
전척기	대	38242 312	전기공급계기	대	38547 111
전직물(노일 전직물 제외)	천㎡	32123 111	가스 또는 액체공급계기	대	38545 111
전과일 및 서닐직물	㎡	32123 113	항공, 항해용기구	개	38549 111
전(횡)편직물	㎏	32155 113	비량형펌프	대	38291 112
전혼방사	㎏	32115 112	제면활성제		
전혼방직물	천㎡	32123 200	유기제면활성제	※	35233 111
결합보정구	※	38515 114	조세제면활성제	※	35233 112
경강선	※	37124 213	기타제면활성제	※	35233 119
경베조(30㎏/㎡만)	※	37121 712	제면활성 조제품(세계 제외)	※	35233 112
경금속선(선박)	㎏	38419 213	제산기		
경기부	착	32222 500	전자제산기	대	38252 111
경기용 및 유사신발	족	32402 113	회제기	대	38252 112
경사제(경사각 등을 측정함)	개	38541 117	금전등록기	대	38252 113
경성 합성세제	※	35232 112	기타 제산장치 결합기	※	38252 119
경운기	대	38220 311	제산기 부품	※	38252 121
경유	㎏	35300 216			
결원	대	38541 111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제산장치(메터기)	대	38546 111	고압 축전기-산업용	대	38319 211
계수 표시 방전관(표시관)	개	38341 114	고정 저항기(전자기기용)	千개	38344 111
고기 가공용 기계	대	38243 914	고정 축전기(콘덴서)-전지부품용	千개	38343 111
고기엑스, 고기수용 및 고기쥬스	※	31119 300	고체광물 채취 및 개선용 기계	대	38241 111
고기연화제(고기유연제)	※	31219 113	장비		~119
고기통조림(돈육, 우육 등)	kg	31111 100	고체 및 반고체 연료	kg	35299 116
고등어통조림	kg	31141 112	고체용 통	개	33121 112
고래고기	※	31149 111	고추가루	kg	31214 111
고량주	ℓ	31314 111	고추장	ℓ	31211 113
고형토	ℓ	29032 111	고탄소강 선재	ℓ	37124 112
고로 시멘트	ℓ	36921 113	고탄소강 슬라브	ℓ	37113 312
고로용 블록(벽돌)	ℓ	36941 112	교차	ℓ	31315 111
고무(경화고무)	※	35594 100	곡랭이 및 쟁이	개	38114 112
고무(합성고무)	ℓ	35115 111~200	곡물가루(옥분포함)	kg	31161 212
고무(산업용 기공제품)	km ※	35592 111~200	곡물건조기	대	38220 622
고무 가공 기계	대	38245 111	곡물 재분하기 전 가공기	대	38243 214
고무가루 혼합물	※	35599 113	곡식튀김 조제식품	※	31169 100
고무공	※	35599 219	곡자	kg	31228 111
고무모자	※	35593 118	콘로(석유)	대	38265 113
고무밴드	※	35592 119	쿨판	ℓ	37192 511
고무벨트	※	35592 114	쿨판지	천㎡	34193 116
고무보트, 부교 및 부유물	※	35599 212	쿨판지 상자	천㎡	34121 100
고무신	千족	35591 111	쿨판지 원지	ℓ	34119 111
고무스폰지	※	35592 116	쿨판지 제조기	대	38246 121
고무신 제조기	대	38245 113	골프장비	※	39039 200
고무의복	※	35593 116	골프차	대	38442 200
고무장갑	※	35593 117	공		
고무장화 및 우화	千족	35591 112	대형공(축구, 농구, 배구공등)	천개	39032 114
고무제 장난감 인형	※	35599 211	소형공(야구, 테니스, 탁구공 등)	천개	39032 115
고무주머니	※	35593 112	완구용공	※	39032 116
고무직물	※	35592 115	공공전물용가구	※	33201 200
고무호스	km	35592 113	공기매트레스 및 베개쿠션	※	35599 213
고무 혼합직물	※	35599 112	공기 압축기(점부레샤)	대	38291 118
고밀도 집적회로(LSI)	천개	38342 114	공기 여과기	대	38292 115
고압재자(750 V~7,000 V미만)	천개	36104 111			

(7)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공기 조절기(차량)	대	38264 112	초코렛과자	kg	31173 200
공기조절기(차장)	대	38264 113	설탕과자(코코아 포함되지 않 은 것)	kg	31173 311
공기청정기 및 집진장치	대	38292 114	캔디류(카라멜, 알사탕, 드롭 프스 등)	kg	31173 311
공기총(수험용)	※	39039 912	설탕 입힌 과실	※	31173 400
공기 펌프	대	38291 116	군건과	※	31173 500
공단	천㎡	32123 111	관(목관-시체 매장용)	※	33195 100
공업용 비누	※	35231 114	관(콘크리트관)	본	36939 111
공업용염(소금)	kg	35299 135	관악기		
공업용 집착제	※	35291 112	목관악기	※	39024 111
공업용 직물제표	※	32149 100	금관악기	※	39024 112
공업용 펌프	대	38291 111	기타 관악기	※	39024 119
(만능나무)공작기계	대	38235 122	관악기 부품	※	39024 121
(복합금속)공작기계공구	※	38239 100	관장기	※	35593 111
공장선	※	38412 512	관 제조용 원심분리. 성형기	대	38248 211
공책(노트)	천권	34214 111	광고수입(신문사 및 출판사)	※	34239 900
공치통조림	kg	31141 111	광목	천㎡	32121 112
꽃감	※	31139 114	광목단	천㎡	32123 112
과당	kg	31226 113	광물성 분력	※	35132 112
과망간칼륨	※	35121 515	광물유 첨가제	kg	35299 117
과린산석회	※	35152 119	광물 타르	※	35409 212
과산화 나트륨	※	35122 115	광산 기관차(지하)	대	38421 211
과산화 수소	※	35121 318	광섬유	※	38521 100
과산화 아연	※	35121 312	광섬유케이블	※	38521 200
과산화 알루미늄	※	35121 315	광진기	대	38349 900
과실 및 기타 선별기	대	38220 416	광택기(수지식 동력)	대	38234 118
과실 및 야채 가공용기계	대	38243 916	광택유리 및 생지	※	36205 111
과실주스 가공용 프레스, 야채 기 및 기타 기계	대	38243 918	광택제	※	35295 116
과실가루	※	31161 216	광택대강		
과실통조림	※	31131 111	열연광택대강(보통강)	※	37121 511
과자			열연광택대강(고탄소강)	※	37121 512
비스켓(크래커, 쿠키포함)	kg	31172 111	열연광택대강(합금강)	※	37121 513
미과	kg	31172 112	냉연광택대강(보통강)	※	37122 511
전량	kg	31172 113	냉연광택대강(고탄소강)	※	37122 512
기타 전과자	※	31172 119			
스낵류	※	31172 200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냉면광목대강(합금강)	※	37122 513	국수 제조기	대	38243 912
광학자	개	38541 115	국악기	※	39027 100
광학요소 거울	개	38522 113	국자	※	38111 100
관 부착물	※	37123 116	국자(귀금속 또는 도금제품)	※	39010 511
광학측정 및 검사기구	※	38529 911	국주발(도금, 귀금속제)	※	39010 612
쟁가리	※	39027 100	군견과	※	31173 500
공예(가정용)	※	39052 100	군용칼(칼집 포함)	※	38112 119
교반 혼합기	대	38241 117	군장	※	39010 319
교정용 기구(정형외과용)	※	38515 111	군커피	㎏	31227 112
교정용 안경	千개	38528 112	군커피 대용품 및 그 엑스, 에센스 또는 농축물	※	31227 300
구강 세척제	㎏	35239 112	군함	%	38412 900
구난차	대	38431 400	군화	족	32401 200
구두			굴죽(콘크리트)	※	36939 111
남자용 단화	족	32401 111	굴죽(철제)	※	38135 119
여자용 단화	족	32401 112	굴곡기(금속성형용)	대	38232 116
학생화	족	32401 113	굴절 망원경(천문기구 제외 38527 112 로 분류)	대	38527 111
아동화	족	32401 114	굴착기(엑스카베이터 = 포크레인)	대	38241 321
구두손	※	38119 119	굴뚝조립	㎏	31141 114
구두솔	※	39093 116	굴벌사육기	대	38220 621
구두약	※	35409 112	권연지	※	34199 111
구리→동(銅)참조			제조		
구리스(정제구리스를 가공한것)	ℓ	35402 111	중제조(30㎏/m이상)	※	37121 711
정제구리스	ℓ	35300 500	경제조(30㎏/m미만)	※	37121 712
구상 흑연주물	※	37134 112	제조자재	※	37121 713
구서제(취약)	㎏	35160 114	귀걸이(여성용 장신구)	※	39010 312
구아노-미가공	※	29020 114	귀금속 또는 압연 귀금속의 제품	※	39010 911
구연산	※	35119 114	귀금속의 찌꺼기	※	39010 919
구조물 및 구조물 부품	※	38135 119	귀금속의 프래트 웨어(기물을 말함)	※	39010 511
국기	개	32145 113	귀금속의 홀로우 웨어()	※	39010 611
구조물 부품	※	38135 200	귀석 또는 반귀석의 가루	※	39010 115
국수			귀석 및 반귀석(장신구용 다	※	39010 112
밀국수	㎏	31175 111			
메밀국수	㎏	31175 112			
당면	㎏	31175 113			
기타 국수	㎏	31175 112			

(7)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이아몬드 제외 : 39010 111 에 분류)			금고	개	38197 100
규산 나트륨	ㄱ	35122 211	금고부품	※	38197 200
규산 칼슘	ㄱ	35121 611	금관악기		
규석	ㄱ	29032 114	트럼펫	※	39024 112
규석분	ㄱ	36995 114	트럼본, 나팔	※	39024 112
			기타 금관악기	※	39024 112
규소	ㄱ	35121 121	금광석	ㄱ	23023 111
규소철	ㄱ	37112 112	금속구조물		
규조토	ㄱ	29032 118	육상금속구조물	ㄱ	38135 112
군질기, 조사기, 저온살균기, 응 축기 및 관련 우유 가공 기기	대	38243 112	해상금속구조물	ㄱ	38135 113
그네	※	39099 900	금속관 이음쇠	※	38198 300
그라인더	개	38119 212	금속공작용 절삭구	개	38236 111
그라인딩 휠용 기계	대	38248 316	금속공작 프레스(유압식)	대	38232 112
그라비아 용지	ㄱ	34113 115	금속공작 프레스(일반 목적용)	대	38232 113
그라비아 인쇄기	대	38247 116	금속박지(은박지 포함)	ㄱ	34193 112
그레이더	대	38241 316	금속서류 캐비닛, 램 및 케 이스	※	38122 111
그리코시드 및 유도체	※	35222 113	금속성형기	대	38232 117
그림물(목재)	※	33193 111	금속 세척기	대	38233 113
그림물(금속제)	※	38122 113	금속 시험기계 및 기기(장력 강도 연성 시험기 등)	대	38543 111
근			금속 실내 장식물	※	39059 100
식물성 섬유근	※	32171 111	금속압단제품	천개	38142 111
인조 섬유근	※	32171 112			~ 319
종이근	※	32171 113	금속 열처리기	대	38233 114
글러브	개	39032 117	금속 열처리업	※	38143 100
글루타민산 소다	ㄱ	31212 111	금속 열처리 및 가공 전기로	대	38299-212
글루텐 및 글루텐가루	ㄱ	31225 114	금속용 톱	개	38116 112
글리세린	ㄱ	35239 111	금속용해 및 정련 전기로	대	38299 211
글리세롤	ㄱ	35239 111	금속절삭기계(전기, 전자식 초 음파)	대	38231 135
글리세롤라이	ㄱ	35239 111	금속계 공공장치물(전화대, 휴 지통)	※	38122 114
금탄기	대	38299 412	금속계 서가	천개	38121 114
금(금괴)	ㄱ	37219 511	금속계 식탁용품	※	38111 100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금속의자	천개	38121 113	수지식 동력공구	대	38234 111
금속제 각종 간판 및 유사천 판(대형 아취 및 구조물 제외 : 38135 119로 분류)	※	38122 111	목공기계	대	38235 111
금속제 베네티안 책양	※	38122 119	호환용절삭구	대	38236 111
금속제 사진틀 및 그림틀	※	38122 113	기타 금속 공작 및 목공 기계	※	38239 100
금속제 장식금속 공작물	※	38132 100	건설 및 광산용기계	대	38241 111
금속제 조명장치 부착물	※	38122 112	섬유용 기계	대	38242 111
금속제 사무실 및 상점 장치물	※	38122 111	식료품가공기계	대	38243 111
금속제 책상	천개	38121 112	화학 및 석유정제산업용 기계	대	38244 111
금속제 캐비닛	개	38121 111	고무 및 플라스틱산업용 기계	대	38245 111
금속침대	대	38121 117	종이산업용기계	대	38246 111
금속판제품	※	38133 100	인쇄 및 제본용기계	대	38247 111
금속표면 처리업 및 인쇄업	※	38149 200	유리 및 요업용기계	대	38248 111
금속표면 처리기	대	38233 115	기타 산업용기계(목공 및 금속공작기계 제외)	대	38249 111
금속표면산용액처리 조제품	※	35299 136	서비스산업용기계	대	38261
금속화사	개	32119 111	검사 및 시험용기계	대·개	38543 111
금입힌 금속	개	37229 151	기계공구 부착물	※	38239 900
금전등록기	대	38252 113	기계공 정밀 측정기	※	38239 300
금형			기계 나무펠트	※	34111 100
프레스형금형	※	38237 111	기계부품 출	※	39093 115
플라스틱 사출용금형	※	38237 112	기계식 연필(샤프)	천개	39091 123
다이캐스팅금형	※	38237 113			
FRP용금형	※	38237 114			
주단조용금형	※	38237 115			
기타용도(유리, 고무, 광물성)금형	※	38237 119			
기계					
농업용 기계	대	38220 111			
		~ 900			
금속절삭기계	대	38231 111			
		~ 139			
금속성형기계	대	38232 111			
		~ 212			
금속처리용기계	대	38233 111			
		~ 119			

(7)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기계식 화상	대	38299 414	경화동물기름(마아가린제외)	※	31151 400
기계용 가죽제품	※	32331 112	동물기름(식용)		
기계요법기기	※	38513 111	동물지방(미정제)	kg	31119 211
기계톱(금속절삭)	대	38231 127	라아드 및 기타 정제 돼	kg	31119 212
기계톱(목공기계)	대	38235 112	지지방		
기관제동약	※	35224 112	정제가금지방	kg	31119 213
기관용 부품(자동차용)	※	38432 119	식물기름(식용)		
기관차			참기름	kg	31153 111
전기 기관차(철도용)	대	38421 112	들기름	kg	31153 112
더겔 기관차(철도용)	대	38421 113	혼합식물성기름	kg	31153 113
광산 기관차(지하)	대	38421 211	콩기름(대두유)	kg	31153 114
산업용 기관차	대	38421 212	유채기름(채종유)	kg	31153 115
전동차	대	38421 114	옥수수기름(옥배유)	kg	31153 116
기관차 부품	※	38421 900	낙화생유(땅콩기름)	kg	31153 117
기구, 다이, 시계 또는 기타	※	39010 113	기타 식용식물성기름	※	31153 119
장식용 보석			유박	※	31153 121
기구 및 비행선	※	38490 900	콩겉묵	※	31153 122
기구케이스	※	33124 112	탈지강	※	31153 123
기념비석	※	36994 111	마아가린	kg	31153 211
기름			모조라아드	kg	31153 212
물고기 및 바다동물기름			쇼트닝(쇼팅)	kg	31153 213
물고기 지방	※	31151 111	기타 조제 식용기름	※	31153 219
물고기 간유	※	31151 112	식물기름(비식용)		
수산동물기름	※	31151 113	대두유(콩기름)	kg	31152 111
정제 고래기름 및 경랍	※	31151 114	면화씨기름(면실류)	kg	31152 112
유박(물고기 기름)	※	31151 121	올리브기름	kg	31152 113
동물기름(비식용)			해바라기씨기름	kg	31152 114
멜로우 오일 및 스티어린	kg	31151 211	아마유	kg	31152 115
정제 울그리스(라노닌) 및	kg	31151 212	유채기름(채종유)	kg	31152 117
울그리스 추출제품			종려기름	kg	31152 116
유박(동물기름)	※	31151 221	야자기름	kg	31152 121
쇠기름(우지)	※	31151 222	피마자기름	kg	31152 122
보일드, 산화, 탈수, 황화,	※	31151 300	미강유	kg	31152 123
취주 또는 중합 동물기름			동백기름	kg	31152 124
			대마유	kg	31152 126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낙화생유	ℓ	31152 127	나사		
옥수수기름	ℓ	31152 125	볼트 및 너트	ℓ	38195 111
기타 비휘발성 식물성기름	※	31152 129	나사못	ℓ	38195 112
유박	※	31152 131	리베트	ℓ	38195 113
면린터	※	31152 200	와셔 및 산업용 파스너	ℓ	38195 114
보일드, 산화, 탈수, 황화, 취주 또는 중합식물성 기름	※	31152 300	나사공구	천개	38113 123
경화식물성기름	※	31152 400	나사못	ℓ	38195 112
기어 및 기어링	ℓ	38297 115	나사전조기	대	38232 124
기어 박스 및 기타 변속장치	대	38297 119	나선형 스프링(차량 및 철도용)	ℓ	38199 111
기어 컷팅기(NC 제외)	대	38231 133	나염기	대	38242 712
기억소자	천개	38349 113	나이론 섬유		
기와(점토제품)	천매	36912 100	합성 장섬유	ℓ	35143 111
기와(콘크리트 기와)	천매	36934 111	합성 단섬유	ℓ	35143 311
기체 및 기체부품	※	38490 900	합성 장섬유 토우	ℓ	35143 411
기체 장비용제기	※	38549 212	나이프(칼-식탁용)	※	38111 100
기타(guitar)	대	39023 113	나이프(칼-주방용, 포켓용)	천개	38112 ¹¹¹ ₁₁₂
기타(전기기타)	대	39026 112	나침판	개	38549 113
기포콘크리트 제품	※	36939 119	나트륨	ℓ	35121 124
기화기(카브레타)	대	38299 511	나팔	※	39024 112
김	※	31145 200	나프타	ℓ	35300 213
나무 공작용 절삭구	개	38236 112	나프킨지	kg	34192 112
나무도시락	※	33123 111	나프타렌	ℓ	35116 111
나무 못	※	33119 113	낙화산	개	32149 912
나무 부스러기	※	33119 200	낙화생유(팽공기름, 식용)	ℓ	31153 117
나무신	※	33199 100	낙화생유(비식용)	ℓ	31152 127
나무용 톱	천개	38116 111	납시대	천개	39033 111
나무의자	천개	33201 111	난로		
나무제조기(마루세공)	대	38235 123	석탄난로	대	38194 211
나무 지붕타일	※	33119 116	석유난로	대	38194 212
나무처리용 기계	※	38235 111 ~ 219	가스난로	대	38194 213
나무화학 및 반화학 필름	ℓ	34111 211	기타난로	※	38194 219
			남비(알루미늄제)	천개	38142 112
			남비(스텐레스제)	천개	38142 212
			남비(법랑제 가정용)	천개	38192 111
			남양(라왕) 각재	ℓ	33111 214

(나)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남양(리왕) 소할재	㎡	33111 114	내화 시멘트	㎏	36949 112
남양(리왕) 관재	㎡	33111 314	내화용 벽돌	㎏	36941 111
남자용 단화	족	32401 111	벽타	㎏	31131 111
남별인두(수동식)	개	38119 216	냉각탑	대	38264 115
납석	㎏	29032 116	냉동 과일	※	31139 311
낫	※	38114 119	냉동 물고기	㎏	31142 100
낫트	㎏	38195 111	냉동 야채	※	31139 312
내광목	千㎡	32121 112	냉동 채송기	대	38263 114
내연기관(불꽃점화 및 액체점화기관)			냉동 쥬스(즙)	※	31139 313
원동기용(농업 및 일반기계)	대	38211 100	냉동 진열장	대	38236 116
자동차용	대	38432 111	냉동해산물	㎏	31142 100
선박용	대	38411 100	냉면	㎏	31175 114
항공기용	대	38452 100	냉면 광목대강(보통강)	㎏	37122 511
기관차용	대	38423 200	냉면 광목대강(고탄소강)	㎏	37122 512
내연기관 검사용 시험대	대	38543 215	냉면 광목대강(합금강)	㎏	37122 513
내연 추진기관-철도기관차	대	38423 200	냉면박관(보통강)	㎏	37122 111
내연 피스톤기관(항공기용)	※	38490 900	냉면박관(고탄소강)	㎏	37122 112
내연 피스톤기관 부품(항공기용)	※	38490 900	냉면박관(합금강)	㎏	37122 113
내의			냉면 전기강관	㎏	37122 411
면 내의(편직한 것)	千매	32152 111	냉면협록대강(보통강)	㎏	37122 611
모 내의(편직한 것)	千매	32152 112	냉면협록대강(고탄소강)	㎏	37122 612
인조섬유 내의(편직한 것)	千매	32152 113	냉면협록대강(합금강)	㎏	37122 613
기타 섬유 내의(편직한 것)	千매	32152 119	냉장고		
내의 및 잠옷(봉제한 것. 남자용)	※	32225 200	상업용 냉장고(산업용 포함)	대	38263 111
내의 및 잠옷(봉제한 것. 여자 및 유아용)	※	32225 111	가정용 냉장고(전기 냉장고)	대	38331 111
내장가구			냉장고 부품	※	38331 119
가정용 내장가구	※	33202 111	냉풍기(대형)	대	38264 114
사무실, 공공건물용 내장가구	※	33202 112	베은	㎡	35123 113
차량용 내장가구	※	33202 300	벡타이	개	32229 211
내화 도가니	㎏	36942 100	노일 전직물	千㎡	32123 112
			노출제(사진용)	개	38523 123
			노트	千권	34214 111
			녹말가루(전분)	㎏	31225 111
			녹방지 화합물	㎏	35299 112
			녹음기(카세트 포함)	대	38321 214

(ㄴ)~(ㄷ)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녹음재생기(카트리지 포함)	대	38321 215	니켈 얼로이(합금)	kg	37229 111
녹음된 자기 테이프(상업용)	천개	38326 112	니켈 전기도금 양극봉	kg	37290 311
녹화재생기(VTR)	대	38321 115	니켈 징련 잔여물	※	37229 112
누차	※	31227 211	니켈 철	kg	37112 115
뇌관			니켈판, 편	kg	37239 112
공업뇌관, 신호뇌관	천개	35292 118	다리미(비전기식)	천개	38119 111
전기뇌관	천개	35292 118	다리미(전기식)	개	38334 913
논이터용 장비	※	38299 911	다시마	※	31145 200
농업용 기계날 및 칼	※	38220 700	다세포성 유리	※	36203 112
농업용 트랙터	대	38220 800	다이너마이트	kg	35292 112
농장 콘베이어 및 엘리베이터	대	38220 413	다이 장식용 보석	※	39010 113
농축전지	개	38394 114	다이아몬드(장식용)	※	39010 111
누룩	kg	31228 111	다이얼(시계) 및 첩	※	38533 119
누전차단기	대	38313 115	다이오드	천개	38342 112
눈검사 기구(시력검사 장치 및 눈의 장애진단, 시력 결핍 측 정용 특수기구)	※	38529 100	다이컷터	대	38246 213
눈 및 얼음 용해기-전기	대	38334 914	단백질 물질	※	35129 211
눈차	대	38442 200	단열용 벽돌	kg	36941 111
느슨한 가구카바	※	32142 114	단접 강판	kg	37123 113
니들롤러 베어링	kg	38297 212	단조기 및 스팀핑기	대	38232 111
니들워크 태피스트리(바느질 제품의 수놓은 천 및 용단)	※	32144 112	단조물		
보통강 단조물	kg	37191 111	고탄소강 단조물	kg	37191 112
합금강 단조물	kg	37191 113	단추(커크스크링)	※	39096 100
니켈(미가공)	kg	37219 111	단판	kg	33113 111
니켈(합금)	kg	37229 111			~ 119
니켈판 및 판부착물	kg	37239 113	단화		
니켈광	kg	23029 112	남자용 단화	족	32401 111
니켈도금 철강판	kg	37192 313	여자용 단화	족	32401 112
니켈피	kg	37239 112	달걀 세척기(달걀선별기포함)	대	38220 613
니켈메트	※	37229 113	달기주(발효주)	kl	31323 912
니켈못 및 유사제품	kg	37290 312	담배		
니켈봉 및 형강	kg	37239 111	새건조 잎담배	kg	31401 100
니켈분	kg	37239 112			
니켈 스페이스	※	37229 113			

(ㄷ)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필터담배	千本	31402 111	대마씨 기름	ㄷ	31152 126
필터없는 담배	千本	31402 112	대블렌즈, 필터, 거리 측정기	※	38522 211
각연	ㄱ	31402 200	등 (사진기 및 관련 장비		
여송인	※	31402 911	용)		
가타 담배제품	※	31402 919	대변기(도기계품)	개	36103 113
담배가공기	대	38243 924	대용식초	ㄷ	31212 212
담배 케이스(개인 장식용)	※	39010 211	대패기 및 장부기	대	38235 115
담배 필터	ㄱ	39094 115	더블베이스	※	39023 111
담료	ㄷ	32142 112	더스터	대	38246 111
당구 장비	※	39039 411	덕(Duck, 범포)	ㄷ	32121 112
당목	千ㄷ	32121 112	덕트(환기통)	※	38133 100
당면	ㄱ	31175 113	떡	※	31171 200
대강			대칸(탄화수소종류)	※	35111 113
광폭대강			대크(전속용)	대	38321 312
열연광폭대강(보통강)	ㄱ	37121 511	대크메카니즘	천개	38321 913
열연광폭대강(고탄소강)	ㄱ	37121 512	도가니(내화)	ㄱ	36942 100
열연광폭대강(합금강)	ㄱ	37121 513	도기 장식품(도기 완구 포함)	※	36106 100
냉연광폭대강(보통강)	ㄱ	37122 511	도기 포장용기	※	36105 111
냉연광폭대강(고탄소강)	ㄱ	37122 512	도끼	※	38114 119
냉연광폭대강(합금강)	ㄱ	37122 513	도금귀금속의 프래트 웨어	※	39010 512
협폭대강			도금귀금속의 홀로우 웨어	※	39010 612
열연협폭대강(보통강)	ㄱ	37121 611	도금 귀금속제품	※	39010 912
열연협폭대강(고탄소강)	ㄱ	37121 612	도금업(임가공)	※	38144 100
열연협폭대강(합금강)	ㄱ	37121 613	도금열처리업	※	38143 100
냉연협폭대강(보통강)	ㄱ	37122 611	도금 철강관		
냉연협폭대강(고탄소강)	ㄱ	37122 612	알루미늄 도금 철강관	ㄱ	37192 311
냉연협폭대강(합금강)	ㄱ	37122 613	크롬 도금 철강관	ㄱ	37192 312
대금	※	39027 100	니켈 도금 철강관	ㄱ	37192 313
대기정화장비	대	38269 116	구리 도금 철강관	ㄱ	37192 314
대두유(비식용)	ㄷ	31152 111	연 도금 철강관	ㄱ	37192 315
대두유(종기름 식용)	ㄷ	31153 114	인조산화 철강관	ㄱ	37192 316
대리석	※	29011 111	도금(비금속) 철강관		
대리석(인조)	※	36994 119	페인트 도포 철강관	ㄱ	37192 411
대마	ㄱ	32116 114	인조수지 도포 철강관	ㄱ	37192 412
대마사	ㄱ	32116 214	가타 비금속 도금 철강관	※	37192 419

(ㄷ)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도너츠(빵)	※	31171 119	동력 전달체인	※	38297 119
도로포장기	대	38241 322	동력 탈곡기	대	38220 213
도로용 복합 확장계	※	35215 114	동 로프	※	37290 111
도비 및 계 워드	※	38242 612	동 마스터 얼로이(합금)	※	37221 111
도살고기(포장유포함, 단 입가공 및 구입한 도살고기포장유은제외)	kg	31119 115	동 매트	※	37211 111
도시락(알루미늄계)	천개	38142 114	동물 견인차량(비동력)	대	38490 100
도시락(스테인레스계)	천개	38142 214	동물 농업용 기타 기계	※	38220 629
도시락(목재)	※	33123 111	동물 불덕	※	35129 214
보온도시락	천개	38192 212	동물성 왁스	※	35295 111
도안 및 제도기구	※	38542 111	동물용 약품계	※	35225 111 ~ 119
도어차임 및 유사장치	※	38399 211	동물지방(정제하지 않은것)	kg	31119 211
도자식기(가정용)	천개	36102 111	동뭇	※	37290 112
도장	천개	39091 132	동박직충판(P.C.B원판)	개	38349 117
도토리 목	※	31224 211	동백기름	kg	31152 124
도포 또는 칩채지	※	34193 113	동본 및 편	※	37231 116
도목선	※	35292 117	동봉 및 형강	※	37231 111
도화선	※	35292 116	동선	※	37231 112
돛자리	※	32162 111	동 쇼트	※	37211 119
동(구리)			동암모늄염 레이온 (재생장섬유)	※	35142 112
시멘트 동	※	37211 113	동암모늄염 레이온 (재생단섬유)	※	35142 312
브리스터 동	※	37211 112	동암모늄염 레이온 (재생장섬유 트루)	※	35142 412
정련 동	※	37211 114	동전(모든 금속의 것)	※	39010 700
동관 부착물	※	37231 115	동전교환기	대	38261 112
동관 및 중공봉	※	37231 114	동전분류, 계산, 포장기	대	38259 114
동광석	※	23024 100	동주물(거칠은)	※	37241 111
동계 경기장비(스케이트, 스키)	※	39039 300	동 케이블	※	37290 111
동 도금 철강관	※	37192 314	동관	※	37231 113
동단조물	kg	37242 111	동철강	※	37231 111
동 띠	※	37231 113	동	대	32143 113
동력계	개	38543 212	동배	대	38414 112
동력 보트	대	38414 111	동장	※	31211 112
동력 쇼벨	개	38241 311			
동력 전달용 발브(공기 또는 유압식)	개	38198 112			

(ㄷ)~(ㄹ)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돼지가죽	㎡	32311 113	디젤 및 디젤전기기관차	대	38421 113
돼지고기통조림	kg	31111 100	(철도용)		
두부	kg	31224 111	디크로로 메탄(염화메틸렌)	ㄱ	35112 111
림통	※	39039 100	라동광석	※	23029 211
드라이버(동력식)	대	38234 125	라디에타(방열기)		
드라이 아이스	㎡	35123 213	연소기 부착 안된 것	대	38194 113
드라이어	개	38335 113	연소기 부착된 것	대	38194 214
드럼판	천개	38191 211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	대	38323 111
드럼 및 바렐	※	33122 112	장비-소리		
드럼 및 유사악기	※	39025 111	라디오 및 TV방송 송신기	대	38323 113
드레스(여자용 기성복)	착	32223 115	및 관련장비		
드레스(소아용 기성복)	※	32224 111	라디오 수신기		
드로스	※	37119 119	일반 라디오	대	38321 211
드레그라인	대	38241 313	시제 라디오	대	38321 212
드롭스(설탕과자에 포함)	kg	31173 311	카라디오	대	38321 213
드릴(면복지, Jean)	천㎡	32121 112	라디오, 사사, 앰프 및 튜너	※	38321 219
드릴(drill)	천개	38113 122	라디오, 녹음기부품	※	38321 219
드릴링기			라디오, TV 및 기타 음향장	※	38321 919
금속 절삭 드릴링기	대	38231 132	치의 부품		
수지식 동력공구 드릴링기	대	38234 111	라면	ㄱ	31175 311
목공기계 드릴링기	대	38235 116	라인보드	㎡	33114 113
비금속광물공작용 드릴링기	대	38248 314	라야드 및 기타 정제 돼지지방	kg	31119 212
들기름(식용)	ℓ	31153 112	라왕 각재	㎡	33111 214
등(석유등, 가스등)	개	38199 911	라왕 소할재	㎡	33111 114
등 가구	※	33204 100	라왕 판재	㎡	33111 314
등사기 및 복사기	대	39253 111	라이클린	※	39010 211
등사원지	ㄱ	34119 114	라이터(영구용)	천개	39094 111
등산화	족	32402 112	라이터(일회용)	천개	39094 112
등세공 반제품	※	33125 113	라이터용 액체연료	ℓ	35409 114
등안전기	개	38312 115	라켓	천개	39032 111
등유(Kerosene)	ℓ	35300 214	테니스라켓	개	39032 112
등제품 제조기	대	38235 213	락본	ㄱ	35119 313
디메틸 벤젠	ㄱ	35111 123	락탐	ㄱ	35119 313
디스램버 및 유사제품	※	35212 112	래그컷터	대	38246 111
D. M. T	ㄱ	35113 114	터스터, 세척기 및		
디젤기관(선박용)	대	38411 100	파쇄기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래커 (락카)	kg	35213 100	루핑보드	※	35403 115
랜드체인	개	38541 118	롤링기	대	38246 118
램핑기	대	38231 123	룸에어 콘디셔너	대	38264 111
럼주	kg	31314 113	리놀름 시험용기기	대	38543 113
래미콘	천㎡	36932 100	리듬	※	35121 124
레이나 탐지 검사 및 취득조직	※	38329 119	리듬광	※	29020 913
레이저 (가스) - 전기, 전자제외	대	38265 112	리드 프레임	※	38342 116
레이카 (철도장비)	대	38429 112	리밍기		
레지노이드	kg	35298 112	금속절삭 리밍기	대	38231 134
레코드 플레이어 (턴테이블)	대	38321 313	수지식 동력공구 리밍기	대	38234 113
렌즈			리베트	※	37124 313
광학렌즈 (장치한 것)	※	38522 211	리베트 (나사제품)	※	38195 113
광학렌즈 (장치하지 않은 것)	개	38522 112	리벳트관	※	37123 115
안정렌즈, 콘택트렌즈	천개	38522 300	리본	※	32125 100
렌치	천개	38113 114	리액터	※	38312 113
로더 (파이프, 원목실기 운반)	대	38241 317	리프트 (호이스트)	대	38293 113
로드레일 및 유사 콘테이너	대	38432 500	리봉 (타이프 라이터용 및 유사리봉)	※	39091 117
로버트 (교시형)	대	38296 111	린넨	※	32142 111
로버트 (적응형)	대	38296 112	린스	kg	35235 312
로버트 (지능형)	대	38296 113	링크 러스타	※	34191 112
로울러	개	38299 914	릴	천개	39033 112
로진, 수지산 및 유도체	※	35117 112	립스틱	kg	35235 211
로진오일	※	35117 113	립스틱 홀더 (휴대용)	※	39010 211
로진정	※	35117 113	링	천개	38242 614
로켓트기관 및 부품	※	38490 900	마그네사이트	※	29032 115
로프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	kg	37229 211
식물성 섬유 로프	kg	32171 211	마그네트 선 및 케이블	※	38391 113
인조섬유 로프	kg	32171 212	마그네틱 헤드	천개	38349 114
종이 로프	kg	32171 213	마네킹	※	39099 116
철강 로프	※	37129 100	마닐라삼	kg	32116 115
동 로프	※	37290 111	마닐라 관지	※	34117 111
알루미늄 로프	※	37290 211	마루세공 나무제조기	대	38235 123
로프제조기	대	38242 915	마루관재		
루라이트 정광	※	23029 919	침엽수관재	㎡	33111 411

(口)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활엽수관재	㎥	33111 412	망(철조망)	㎡	38196 115
마방적사	㎏	32116 211	망간광	㎡	23022 100
		~ 219	망간 규소철	㎡	37112 116
마성유	㎏	32116 111	망간철	㎡	37112 111
		~ 119	망제조기	대	38242 511
마성유부스러기	※	32116 121	망초(황산나트륨)	㎡	35122 214
마쇄기(광산장비)	대	38241 116	망치	천개	38113 121
마쇄기(식품용)	대	38115 111	매염염료 및 산성매염 염료	㎡	35131 114
마스크	※	32196 113	매염제	※	35299 138
마스터 베즈	※	35599 114	매트레스 및 쿠션	※	33202 400
마아가린	㎏	31153 211	매실주(발효주)	ℓ	31323 913
마요네즈	㎏	31213 112	맥아(엿기름)	㎏	31223 111
마이크로 버스	대	38431 213	맥아엑스	※	31223 112
마이크로 서킷트-전자	※	38349 900	맥주	ℓ	31330 100
마이크로폰	천개	38321 411	맥주(한성)	ℓ	31319 212
마전보	※	29032 112	멜릿(제임강비)	※	39032 113
마직물	주궤	32124 111	머리기름	㎏	35235 313
		~ 129	머리 염색약	※	35235 314
마초가공용 기계 및 기기	대	38220 414	머리인두	※	38119 119
마카로니, 스파게티 및 유사	㎏	31175 112	머리핀(순금 또는 백금 장신구)	※	39010 319
제품			머시닝센터	대	38231 138
마태차(가공)	※	31227 212	면지추출기(보일러 관련제품)	대	38134 213
마과일 및 씨넬직물	주궤	32124 121	면지추출기(화학 산업용기계)	대	38244 916
만곡, 식각 또는 유사 가공	※	36202 111	면지추출기(일반 서비스용)	대	38269 113
유리			머즐러	장	32159 411
만년필	주궤	39091 112	메니큐어	※	35235 411
만능 나무공작 기계공구	대	38235 422	메니큐어 제거제	※	35235 412
만도라	※	39023 112	메달	※	39010 319
만도린	※	39023 112	메라민	㎡	35113 127
말가죽	㎡	32311 112	메라민 수지	㎡	35114 123
말털직물	천궤	32122 115	메밀국수	㎏	31175 112
말도우스	㎏	31215 114	메밀 국	※	31224 212
맛소금	㎏	31213 300	메주	㎏	31211 121
망(어망제외)	㎏	32173 109	메타날	㎡	35119 111
망(철망)	㎡	38196 111	메탄올	㎡	35111 131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메탈베어링	㎍	38297 213	명반석 및 천전명반	※	29020 916
면			모기장	※	32142 111
조면	㎏	32112 111	모내의(편직한 것)	千매	32152 112
소면 및 정소면	㎏	32112 112	모내의(봉제한 것, 남자용)	※	32225 200
면 부스러기	※	32112 113	모내의(봉제한 것, 유아 및	※	32225 111
면화씨	㎏	32112 121	여자용)		~ 119
면거즈	F㎡	32121 111	모노마		
면내의(편직한 것)	千매	32152 111	스티펜 모노마	㎍	35113 111
면내의(봉제한 것, 남자용)	※	32225 200	염화비닐모노마	㎍	35112 115
면내의(봉제한 것, 유아 및	※	32225 111	모노필(재생 장섬유)	㎍	35142 200
여자용)		~ 119	모노필(합성 장섬유)	㎍	35143 200
면도기(전기모터 자장)	개	38335 111	모니터 TV(방송용)	대	38323 116
면도칼	※	38112 115	모래		
면도솔	※	39093 116	보통 모래(건설용)	㎡	29013 111
면린터	※	31152 200	산업용 모래(유리제조용)	㎡	29033 100
면복지(Jean)	千㎡	32121 112	모루	개	38113 117
면사			모모아	㎍	35601 218
순면사	㎏	32112 211	모방직사	㎏	32113 211
혼방면사	㎏	32112 212			~ 216
면송	㎏	32191 111	모발제품(기타)	※	39055 119
면양말	천족	32151 211	모시	㎏	32116 113
면연사(재봉사)	㎏	32117 111	모시사	㎏	32116 212
면견사(편물사)	㎏	32117 211	모시직물	千㎡	32124 112
면장갑(편직한 것)	천조	32154 111	모양말	천족	32151 212
면직기	대	38242 311	모연사(재봉사)	㎏	32117 113
면직물	千㎡	32121 111	모연사(편물사)	㎏	32117 212
		~ 200	모자		
면 타이어 직물	㎏	32193 114	펠트모자	개	32227 211
면 타이어 코드사	㎏	32193 111	워운모자	개	32227 212
면(황) 편직물	㎏	32155 112	여자모자	개	32227 213
면혼방사	㎏	32112 212	기타모자	※	32227 219
면화씨	㎏	32112 121	모자(편직한 것)	개	32159 413
면 혼방직물	F㎡	32121 200	모자(고무제품)	※	35593 118
면화씨 기름(면실규)	㎏	31152 112	모자 보강재	※	32194 114
명반	㎍	35121 413			

(口)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모자에 부착하는 악세사리	※	32227 300	목걸이	※	39010 211
모장갑(편직한 것)	千조	32154 112	목공밀링기	대	38235 124
모조라아드	㎏	31153 212	목관악기		
모조지(백상지)	※	34113 111	플루트	※	39024 111
모조장신구	※	39052 200	피콜로	※	39024 111
모조 진주(귀석)	※	36209 100	피리	※	39024 111
모조켓것	※	32119 400	클라리넷	※	39024 111
모직기	대	38242 313	섹스폰	※	39024 111
모직물	千㎡	32122 111	기타 목관악기	※	39024 111
		~ 212	목기	※	33192 111
모터					~ 112
소형모터	개	38349 123	목분	※	33119 112
모터(전동기)	대	38311 111	목욕통(목조-도기계품)	개	36103 115
		~ 219	목욕통		
모터 카솔린(휘발유)	㎏	35300 212	법랑제 위생용품	천개	38193 112
모터 싸이클 부품	※	38442 312	스텐레스제 위생용품	천개	38193 212
모터 싸이클용 기관	※	38442 311	목재	㎡	33111 111
모터 싸이클용 타이어	千본	35511 112			~ 900
모터 싸이클용 튜브	千본	35511 212	목재건물-조립	※	33112 114
모터 스타터	대	38314 112	목재 구슬선 최실이	※	33112 111
모파일 및 서널직물	천㎡	32122 113	목재도구	※	33194 111
모(뿔) 편직물	㎏	32155 111	몰리브데늄	㎏	37229 213
모모(담요)	㎡	32142 112	몰리브데늄광(수연광)	㎏	23026 100
모피			몰리브데늄 철	※	37112 114
간털동물 손질 모피	㎡	32321 111	몰탈	※	36949 111
기타 손질 모피	※	32321 112	못		
인조 모피	㎡	32322 100	쇠못(산업용)	※	37124 312
모피장갑	조	32228 113	동못	※	37290 112
모피제품(모피의복은 32226	※	32323 100	알루미늄 못	※	37290 212
에 분류)			니켈못 및 유사제품	※	37290 312
모피 의복			쇠못(철정)	※	38196 114
남자용 모피의복	착	32226 211	무계목강판	※	37123 111
여자용 모피의복	착	32226 212	무기	※	38298 100
인조 모피의복	착	32226 213	무늬판유리	상자	36201 114
모 혼방직물	千㎡	32122 211	무생염료	※	35131 121
		~ 212	무수마래인산	※	35113 121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무수망초	%	35122 215	미가공 알루미늄괴	%	37212 100
무선통신장비	대·※	38323 111	미가공 연 합금	%	37223 111
무스프탈산	%	35113 122	미가공 연(연피)	%	37213 100
무연탄(연탄은 35401 111 에 분류)	%	21010 100	미가공 주석	%	37219 211
무기용화약	※	35292 200	미가공 중석	%	37219 311
무인 비행기	대	38490 900	미강유	kg	31152 123
목			미과	kg	31172 112
도토리목	※	31224 211	미생물 백신	※	35221 111
메밀목	※	31224 212	미송 각재	%	33111 212
기타 목	※	31224 219	미송 소할재	%	33111 112
문(건물용 금속제)	%	38131 111	미송 판재	%	33111 312
문(창문 포함)	개	33112 115	미술관(잡관을 말함)	천개	38191 112
문구용품(유리제품)	※	36206 113	미역	※	31145 200
물감	※	39091 121	미장합판(가공합판)	%	33114 112
물고기(생동 물고기)	%	31142 100	믹서		
물고기 가공용 기계	대	38243 915	식품가공용 전기믹서	개	38334 311
물고기 잔유	※	31151 112	상업용 믹서기	대	38265 116
물고기(건조, 염장 또는 훈제 한 것)	※	31145 100	콘크리트 믹서	대	38241 323
물고기 목	※	31144 100	민서, 세절기 및 컷터	※	38115 114
물고기 소시지	※	31144 100	밀가루	%	31161 211
물고기 소오스	※	31144 100	밀가루빵	%	31171 111
물고기 스음	※	31144 100	밀국수	kg	31175 111
물고기 엑스	※	31144 100	밀링기(금속 절삭)	대	38231 125
물고기 지방	※	31151 111	밀링기(목공)	대	38235 124
물라이트 및 특수성형 내화제	%	36943 100	밀크로손	kg	35235 111
물리 및 화학분석용 기구	※	38544 300	밀쌀	%	31161 113
물리, 화학분석용 광학기구	※	38529 912	밍크	※	32321 112
물엿	kg	31226 112	바너	대	38194 215
물조절기(수영장)	대	38269 117	바느질 실	kg	32117 400
물통	※	38142 119	바늘 및 핀	※	39099 111
뮤직센터	대	38321 315	바니쉬	kg	35211 111
미가공 니켈	%	37219 111	바둑판 및 바둑짝	※	39044 200
미가공 아연	%	37214 100	바디	천개	38242 624
			바아지	%	38412 800
			바이브레이타	대	38234 126

(단)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바이올린	※	39023 111	단장계 발브	천개	38198 113
바이스 및 크럼프	천개	38113 118	주철계 발브	천개	38198 114
바인다(농업기계)	대	38220 314	청동계 발브	천개	38198 115
바인더	천권	34214 116	고온 고압용 발브	천개	38198 211
바지벨명	※	32229 219	자동조절용 발브	천개	38198 212
바케스	※	38142 119	기타 발브	※	38198 219
박엽지(목수)	※	34119 114	발브 및 발브하우징	천개	38299 514
박절기(목공기계)	대	38235 114	발전기(교류)	대	38311 218
박판			발전기(직류)	대	38311 217
냉연박판(보통강)	※	37122 111	발전기 및 시동기	대	38316 111
냉연박판(고탄소강)	※	37122 112	발전변압기	대	38312 112
냉연박판(합금강)	※	37122 113	발전	대	38295 112
열연박판(보통강)	※	37121 331	발전(전기)	개	38334 311
열연박판(고탄소강)	※	37121 332	방모사(순)	kg	32113 211
열연박판(합금강)	※	37121 333	(순) 방모직물	천개	32122 112
박피기	대	38235 111	방사선장치		
반다이크 브라운 베로나 폭 및 사이프러스폭	※	29020 413	X-선 장치(진단 및 요법 용)	대	38325 111
반도니온	개	39022 113	X-선 장치 장치(산업용)	대	38325 112
반도체 및 관련장치	천개	38342 111	방사선 이용장치	대	38325 113
반도체 집적회로(IC)	천개	38342 113 ~ 118	X-선관 및 기타 X-선 발생장치	대	38325 114
반동광	※	23024 100	기타 X-선 장치용 부품	※	38325 119
반력암	※	29012 100	방사성 검사 또는 측정용 기구	※	38547 115
반송장치(유선통신)	대	38322 211	방사성 동위원소	※	35129 112
반응성 염료	※	35131 122	방사성 화학원소	※	35129 112
반죽 개량제	kg	31228 212	방송용 VTR	대	38323 117
반지(보석 결합된 것 포함)	※	39010 311	방송차	대	38431 400
반지(입힌 귀금속 제품)	※	39010 411	방송통신 조직용 장치	대	38323 113
반창고(의료용)	※	38519 300	방수복	착	32229 113
반코트	착	32222 400	방수액	kg	35299 124
반합성섬유방적사(아세테이트사)	※	32114 215	방연광	※	23025 100
발광도료	kg	35215 112	방열기(연소기 부착된 것)	대	38194 214
발브			방열기(연소기 부착된 것 제외)	대	38194 114
스테인레스계 발브	천개	38198 111			
주강계 발브	천개	38198 112			

(나)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방열기(자동차용)	개	38432 923	배기 조직 및 부품	※	38432 912
방열부	착	32229 115	배낭	※	32143 112
방적기			배양이스트	㎏	31228 112
전 방적기	대	38242 213	배양크리스탈	※	35129 217
면 방적기	대	38242 211	배전변압기	대	38312 111
모 방적기	대	38242 212	배전관(저압) - 배전, 조명용	대	38313 112
방적사			배전관 - 발전 및 송전용	대	38313 111
면사	㎏	32112 211	배주	㎏	31323 914
		~ 212	배튼 보드	㎡	33114 113
모방적사	㎏	32113 211	배합사료	㎏	31230 112
		~ 216	백(종이제)	※	34122 112
인조섬유방적사	㎏	32114 211	백금 및 백금그룹 금속	㎏	37229 161
		~ 215	백금광	※	23023 113
전방적사	㎏	32115 111	백금입힌금속	㎏	37229 161
		~ 112	백삼	㎏	31222 111
마방적사	㎏	32116 211	백상지(모조지)	㎏	34113 111
		~ 219	백색시멘트	㎏	36921 112
기타방적사	㎏	32119 111	백연광	㎏	23025 100
		~ 400	백열등 및 조명 부착물 (실내용)	※	38395 111
방적 석면	㎏	36991 112	백열전구	千개	38392 111
방적 양모 부스러기	※	32113 112	백운석	㎏	29031 200
방전관	천개	38341 114	백토	㎏	29032 111
방전구	개	38392 112	백호우	개	38241 321
방적제	㎏	35299 134	발브(발브참조)	㎏	38298 111
방카 A유	㎏	35300 217	~ 900	※	39010 319
방카 B유	㎏	35300 217	맷지	※	39032 113
방카 C유	㎏	35300 218	맷트, 스틱	※	
방 칸막이	※	33201 129	버스		
방향탈지기(우선) - 합해용	대	38323 214	고속형버스(고속관광버스포함)	대	38431 214
방해석	㎏	29099 918	소형버스(15인승 이하)	대	38431 211
방			중형버스(35인승 이하)	대	38431 212
식빵(밀가루, 옥수수명등)	㎏	31171 111	대형버스(36인승 이상)	대	38431 213
과자빵(팥, 크림, 잼등 첨가빵)	※	31171 112	버스차체	대	38431 612
케이크	※	31171 113	버크럼	※	32194 114
기타빵	※	31171 119	버터	㎏	31121 100
배→선박참조					

(나)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버터 제조기	대	38243 113	단열용 벽돌	㉔	36941 111
법코	천개	32121 112	내화용 벽돌	㉔	36941 111
법랑제품			콘크리트 벽돌	천개	36934 112
남비	천개	38192 111	벽시계	개	38531 112
프라이팬	천개	38192 112	벽지		
스튜팬	천개	38192 113	감포벽지(직물벽지)	㉔	32145 112
백계 및 유사제품	※	32142 115	벽지(종이)	㉔	34191 111
베니어 접합 프레스	대	38235 121	비닐벽지	㉔	35601 117
베로나 휴	※	29020 413	변성기(트랜스포머)	천개	38345 111
베릴륨 광	※	23029 919	변속기	개	38297 112
베어링			변압기		
플레인샤프트 베어링	※	38297 111	배전변압기	대	38312 111
볼 베어링	㉔	38297 211	발전 변압기	대	38312 112
너들롤러 베어링	㉔	38297 212	신행 변압기	대	38312 114
기타 베어링	※	38297 219	기타 변압기 및 부품	※	38312 119
매탈 베어링	㉔	38297 213	코일 트랜스포머 및 기타	천개	38345 111
액이퍼 베어링	㉔	38297 214	유도자-전자기기용		~ 119
베어링 부품	※	38297 221	변압기용 기름	㉔	35402 113
베어링 하우징	※	38297 111	병 또는 강통따개	※	38119 119
베이스 기타	대	39026 112	병마개	천개	38142 311
베이스 비올라	※	39023 111	병원차(철도차량)	량	38422 112
베이콘	㉔	31119 111	병 제조기	대	38248 112
베이킹 파우더	㉔	31228 211	보도 블록	※	36934 119
변전	㉔	35111 121	보드		
벤트나이트	※	29032 117	과이버보드(전축용지)	㉔	34115 111
벤저	천개	38113 111	재생목재(파아티클보드, 칩보드, 하드보드 등)	㉔	33115 112
벨트			보드카	㉔	31315 114
벨트(의복용 약세사리)	※	32229 213	보링기	대	38231 131
콘베이어벨트(가죽제품)	※	32331 111	보리쌀	㉔	31161 112
콘베이어벨트(고무제품)	※	35592 114	보석용 톱	천개	38116 114
콘베이어벨트(프라스틱제품)	※	35601 116	보온도시락	천개	38192 212
벽돌			보온방통(전기)	개	38334 312
오지벽돌	천개	36911 111	보온벽	천개	38192 211
보통벽돌	천개	36911 112	보온벽 속유리	㉔	36203 212

(단)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보일러실 보조장치	※	38134 300	복합지	㎥	34193 111
보일러			복합 천연 라텍스	※	35599 115
중기발생 보일러(동력 및 선박)	대	38134 111	볼링 및 유사장비	※	39039 412
대형 온수보일러(동력 및 선박)	대	38134 112	볼 배어링	㎥	38297 211
기름 보일러(난방용)	대	38194 111	볼트 및 너트	㎥	38195 111
구공탄 보일러(난방)	대	38194 112	볼펜	천개	39091 113
기타 보일러(난방용)	대	38194 113	볼강		
보일러 부착 증기기관	대	38212 100	볼강(대형, 보통강)	㎥	37121 111
보일러 부품	※	38194 119	볼강(중형, 보통강)	㎥	37121 112
보일드, 산화, 탈수, 황화, 취주 또는 중합 동물성 기름	※	31151 300	볼강(소형, 보통강)	㎥	37121 113
보일드, 산화, 탈수, 황화, 취주 또는 중합 식물성 기름	※	31152 300	볼강(고탄소강)	㎥	37121 121
보조사료	㎥	31230 113	볼강(합금강)	㎥	37121 122
보조기억장치	대	38251 112	볼계완구	※	39043 100
보청기	※	38515 114	볼루	백매	34194 111
보통강 선재	㎥	37124 111	볼루 제조기	대	38246 215
보통시멘트	㎥	36921 111	볼합용 기구	※	38115 115
보통의의(봉제한 것, 남자용)	착	32222 400	부목 및 기타 끝결기기	※	38515 112
보통관유리	상자	36201 113	부선 도크 및 기타 비추진식 선박	㎥	38419 111
보트			부유 구조물	㎥	38419 112
동력보트	대	38414 111	부감사	㎥	32111 112
돛배	대	38414 112	부저	※	38399 211
기타 보트	대	38414 119	부직포	※	32192 100
고무 보트	※	35599 212	부채	※	39099 112
복사기			부채물	※	33129 111
사진복사장치	대	38525 111	부츠	족	32401 200
전자복사기	대	38525 112	부타디엔	㎥	35111 114
등사기 및 복사기	대	38252 111	부탄 가스	㎥	35300 312
복사지	㎥	39091 118	부틸고무(I.C.R)	㎥	35115 114
복합 광학 현미경	대	38527 200	부틸알코올	㎥	35112 121
복합 금속 공작기계 공구	※	38239 100	부화기(가금)	대	38220 611
복합 경화제	㎥	35299 126	부(악기)	※	39025 111
복합 솔벤트	㎥	35215 113	부(국악기)	※	39027 100
복합 접착 반응제	㎥	35299 125			

(나)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분	kg	35235 212	브레이크 및 부품	※	38432 914
분급기	대	38243 216	브러지어	※	32225 111
분도기	※	38542 113	브로오드	천개	32121 112
분류 및 정류장치	대	38244 918	블록 제조기	개	38119 222
분말인삼(인삼차 제외)	kg	31222 113	브리스터 등	※	37211 112
분말슈스	kg	31229 311	V.C.M(염화 비닐 모노머)	※	35112 115
분말커피	kg	31227 113	V.T.R(영상녹화 재생기)	대	38321 115
분무기(농업용)	대	38220 411	블록(교로용 블록)	※	36941 112
분무기(산업용) - 동력	대	38299 100	블록(콘크리트 블록)	천개	36934 113
분산염료	※	35131 117	블록보드	㎡	33114 113
분상	※	35601 218	블롬(보통강)	※	37113 321
			블롬(고탄소강)	※	37113 322
분유	kg	31122 200	블롬(합금강)	※	37113 323
분필	천개	39091 128	비가황 고무관	※	35599 117
분꽃 전화기관	대	38432 111	비가황 분산제	※	35599 116
분도저	대	38241 511	비가황 용액	※	35599 116
분도저 부품	※	38241 519	비가황 프로파일	※	35599 118
분소	※	35121 111	비광학 유리, 고정안경 렌즈 렌지	※	36205 112
분산화성 폴리에스터	※	35114 114	비경화 가황 고무의 관	㎞	35592 113
분화수소산	※	35121 511	비경화 가황고무 제1차제품	※	35592 112
분활성전지	개	36394 113	비경화 고무의 부스러기	※	35599 213
분	천개	39091 124	비누	※	35231 111 ~ 119
분대	※	32196 111	비누절단 또는 성형기	대	38244 911
분산나트륨	※	35122 312	비닐우산	개	39092 113
분소	※	35121 122	비닐백지	※	35601 217
브라우저(여자용)	※	32223 113	비디오무비	대	38323 118
브라우저(소아용)	※	32224 111	비디오카메라	대	38523 112
브라운관	대	38341 111 ~ 114	비디오 테이프	천개	38325 113
칼라용 TV브라운관	천개	38341 112	녹음 테이프	천개	35296 112
후백용 TV브라운관	천개	38341 111	미료		
브라운관용 유리(부착물이 있는 것은 T.V브라운관 반제품으로 분류)	천개	36203 211	순수황산암모늄(규안)	※	35151 111
			황산암모늄	※	35151 112
			질산암모늄(질안)	※	35151 113
브랜디	ℓ	31315 112	칼슘시아아미드	※	35151 114

(나)~(八)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요소비료	※	35151 115	비올라 젤로	※	39023 111
질산칼슘	※	35151 116	비밀간 신문	千부	34211 112
염화암모늄(염안)	※	35151 117	비건기로	대	38299 312
혼합질소비료 및 기타 질소질비료(석회질소포함)	※	35151 119	비중 측정계	※	38544 211
순수인산비료	※	35152 111	비타민제	※	35224 115
용성인비	※	35152 112	비터 및 믹서	대	38115 113
소성인비	※	35152 113	비콘	※	38395 113
기타 인산질 비료	※	35152 119	비행기		
과린산석회	※	35152 119	항공기	※	38451 100
용과린	※	35152 121	헬리콥터(전투용 포함)	※	38451 200
혼합인산질비료	※	35152 122	무인 비행기	※	38451 100
황산카리	※	35153 111	기타 비행기	※	38451 100
염화카리	※	35153 112	빌렛(보통강)	※	37113 331
혼합카리질 비료 및 기타 카리질 비료(유산고토 비 료 포함)	※	35153 119	빌렛(고탄소강)	※	37113 332
복합비료	※	35154 100	빌렛(합금강)	※	37113 333
유기질비료(화학처리한 것)	※	35159 900	빙과(아이스 케이크)	※	31174 100
기타화학 비료	※	35159 100	사과주	ℓ	31323 911
비료, 농약, 살충제의 제조기계	대	38244 116	사료		
비상업용 선박	개	38412 300	배합사료	※	31230 112
비석	※	36994 111	보조사료	※	31230 113
비소	※	35121 118	사료제조용 조제품	※	31230 114
비소광	※	29020 915	애완동물 사료	㎏	31230 211
비 및 솔	※	39093 113	사료건조기	대	38220 622
비스켓(크래커, 쿠키 포함)	㎏	31172 111	사료용 재료(분쇄한 줄기, 부 리등)	※	31169 200
비스코스 레이온(재생 장섬유)	※	35142 111	사료절단기	대	38220 623
비스코스 레이온(재생 단섬유)	※	35142 311	사육기	대	38441 114
비스코스 레이온(재생 장섬유 토우)	※	35142 411	사무실 및 공공건물용 내장 가구	※	33202 112
비식용 고기제품(가공한 것)	※	31119 400	사암(쇄석)	※	29012 100
비식용 동물기름	㎏	31151 211	사육기		
		~ 222	가금사육기(병아리 사육용)	대	38220 612
비올라	※	39023 111	기타 가금사육기	대	38220 519
			꿀벌사육기	대	38220 621
			사이다	ℓ	31341 111

(八)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사이살마	kg	32116 116	(전자계폐기) 스위치 회로		
사이살마사	kg	32116 216	차단기		
사이크로미터	※	38544 211	산업용 바구니	※	33125 111
사이크로 핵산	※	35111 115	산업용 수동트럭 및 산업용	대	38294 111
사이크론	대	38134 214	트레일러		
사이프러스 흙	※	29020 413	산업용 저울	개	38254 111
사진감광유계 도포용 기계	대	38249 113	산업용 전자 통계장비	대	38314 114
사진 및 영사실 장비	※	38526 100	산업용 파스너	※	38195 114
사진 모사전송기(팩시밀리)	대	38322 215	산화 및 과산화 아연	kg	35121 312
사진 복사장치(전자 복사기	대	38525 111	산화 방지제	kg	35299 127
포함)			산화 알루미늄	※	35121 315
사진 복사장치 부품	※	38525 900	산화 질산	㎍	35123 215
사진 섬광구(전기로 점화하는	개	38392 116	산화 질소	㎍	35123 215
것)			산화철	※	35132 118
사진 섬광장치	개	38523 122	산화 티타늄	※	35121 313
사진 원판 및 필름	※	35296 111	살균기(식료품 가공기계)	대	38243 112
사진틀(금속제) - 카메라 제외	※	38122 113	살균소독기(가정용)	개	38339 115
사진틀(목제)	※	33193 111	살균장치	대	38244 923
사진판(인쇄판)	※	34232 113	살균제	※	35160 112
사카린			살서제(취약)	※	35160 114
식용사카린	kg	31226 115	살수차	대	38431 400
의약품 사카린	kg	35119 316	살충제	※	35160 111
사형 주철관	※	37131 114	싸	kg	31161 111
샤프펜슬	천개	39091 123	쌀통	대	38192 213
싸이펜	천타	39091 122	삼각자	천개	39091 131
산소(오존포함)	㎍	35123 111	삼통거	대	38441 113
산소관능의 아미노화합물	※	35119 214	삼	천개	38114 111
산소요법 및 기타 호흡기기	※	38513 112	상(나무제품)	개	33201 118
산성 매염 염료	※	35131 114	상(프라스틱제)	※	35605 119
산성 백토	※	29032 111	상(금속제)	※	38121 118
산성 염료	※	35131 112	상수도용 여과기	대	38299 912
산업용 기관차	대	38421 212	상수도용 장비 및 부품	※	38299 918
산업용 냉동장비	대	38263 115	상수도용 정수기	대	38299 913
산업용 모래	㎍	29033 100	상업용 냉장고	대	38263 111
산업용 및 가정용 제색안전	대	38313 114	상업용 마루세척기 및 광택기	대	38269 111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상업용 세탁기	대	38262 111	샤시문	ㄱ	38131 112
상업용 저울	개	38254 112	알루미늄 샤시바	ㄱ	37232 116
상업용 조리장비	대	35265 111	샤시(차량용)	※	38432 211
상업 인쇄업(임가공)	※	34221~ 34229	샷시문 및 창물	ㄱ	38131 112
상업 장식	※	32144 200	샤프연필	개	39091 123
상자			삼부	ㄱ	35235 311
골판지 상자	천㎡	34121 100	샷터(건물용)	ㄱ	38131 113
판 지 상자	※	34123 100	샷물(=북)	천개	38242 623
파이버 상자	※	34125 100	서가(목재)	천개	33201 113
상자			서가(금속제)	천개	38121 114
절 목상자	※	33123 111 ~ 119	서예지	※	34116 112
포장상자	※	33122 111	서적	천권	34213 111
상사형 자료처리 장비 및 하이 브리드기	대	38251 112	서크라인	ㄱ	38392 117
상점 장치물(목재)	※	33206 100	서래	개	38220 112
상점 장치물(금속제)	※	38122 112	석고(플라스터)	ㄱ	36923 100
상호 통신장비(전화 및 전신 연합된 것 제외)	대	38324 111	석고(천천석고)	ㄱ	29093 100
쌀	ㄱ	31161 111	전기도금 석도강판	ㄱ	37192 111
쌍안경	개	38529 914	열기도금 석도강판	ㄱ	37192 112
삼페인	ㄱ	31319 214	석면	ㄱ	29094 100
새끼	※	32195 112	석면 또는 기타물질 기저 마 찰재도	※	36991 119
새끼풀	대	38220 415	석면 혼합물	※	36991 111
새장	※	38196 119	석영	ㄱ	29099 917
색소질			석유	ㄱ	35300 214
식물성 색소질	※	35133 111	석유콘크리트	대	38265 113
동물성 색소질	※	35133 112	석유난로(콘크리트외)	대	38194 212
색채 필터 및 간섭필터	개	38522 114	석유역청(아스팔트)	ㄱ	35300 411
색토	ㄱ	35132 113	석유정제기 및 장비	대	38244 200
샌더	대	38234 117	석유제리	ㄱ	35409 111
샌드 페이퍼링기	대	38235 118	석유 코크스	ㄱ	35300 412
샌러드 드레싱	ㄱ	31213 116	석유파막 플랜트	대	38244 115
생물학적 해부모형(해부도, 해부 표본)	※	38519 100	석재용 물	천개	38116 113
생리대	ㄱ	34192 113	석탄나로	대	38194 211
생사	ㄱ	32111 111	석난 코크스	ㄱ	35409 211
생석회	ㄱ	36922 111	석관 인쇄기(활판 포함)	대	38247 114
			석필	ㄱ	36945 111

(나)

품목명	단위	분류번호	품목명	단위	분류번호
석회			기타선박		
생석회	%	36922 111	부선도트 및 기타 비추진식	%	38419 111
소석회	%	36922 112	선박		
수경성 석회	%	36922 113	부유구조물	※	38419 112
석회석	%	29031 100	합성수지선	%	38419 211
석회질소	※	35151 119	콘크리트선	%	38419 212
선광기	대	38241 114	경금속선	%	38419 213
선그라스	千개	38528 113	선박용 디젤기관	대	38411 100
선박			선박용 소육기관	대	38411 100
강선			선박해체업	※	38415 100
유조선	%	38412 111	선반(船盤) (금속재)	※	38122 111
일반화물선(다목적선, 콘베이	%	38412 112	선반		
너선, 자동차운반선 바지선)			수치계어선반(NC 선반)	대	38231 111
특수 화물운반선(화학 및	%	38412 119	보통선반	대	38231 113
가스운반선, 냉동선)			자동선반	대	38231 112
에인선	%	38412 200	입선반	대	38231 114
쇄빙선, 케이블선, 탐색선 및	%	38412 300	기타선반(터릿, 탁상선반등)	대	38231 115
기타 비상업용 선박			선박 및 축 성형기(목공기계)	대	38235 117
여객선(페리포함)	%	38412 400	선별기(광산장비)	대	38241 115
어선(공장트롤러 포함)	%	38412 511	선별기(달걀선별기 제외)	대	38229 416
공강선	%	38412 512	38209613		
기타특수선박	※	38412 900	선 스프링	%	38196 112
(조명선 해난구조선 준설선 기중			선재(보통강)	%	37124 111
기선 소방선 기상관측선 경비선			선재(고탄소강)	%	37124 112
군함 잠수함등)			선재(합금강)	%	37124 113
목선			선철		
여객선	%	38413 100	계강용 선철	%	37111 111
화물선	%	38413 200	주물용 선철	%	37111 112
어선	%	38413 300	선종기-가정용	대	38332 100
기타목선	※	38413 900	선형 폴리에스터수지	%	35114 121
보트			설탕과자(캔디류)	kg	31173 311
동력보트	대	38414 111	설탕과자 제조기	대	38243 913
돛배	대	38414 112	설탕그릇(도금귀금속재)	※	39010 612
기타보트	대	38414 119	설탕시럽	※	31182 200
고무보트	※	35599 215	설탕입힌 과실	※	31173 400
			설탕 제조 또는 정제기	대	38243 917

(入)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섬광계	kg	35296 217	센더	대	38234 117
섬아연장	kg	23025 200	셀러드드레싱	kg	31213 116
섬유 기계용 가죽제품	※	32331 112	셀레늄	kg	35121 115
섬유 시험기계 및 기기	대	38543 112	셀룰로오즈, 펄프, 종이제조용	※	38246 129
섬유 완성용 기계 및 장비	대	38242 912	기계 및 부품		
섬유용 기계	※	38242 111	셀로판지	kg	34199 112
섬유프록 및 릴랩	※	32199 116	서널사	kg	32119 112
성냥(가정용 덕용 대형기준)	kg	35293 100	서츠(여자용)	대	32223 114
성냥개비	※	33119 113	서츠부품	※	32222 121
성냥 칩채기	대	38249 111	소금		
성장조절제	kg	35160 115	천일염	kg	29040 100
성형기(금속)	대	38232 117	맛소금	kg	31213 200
성형 프레스	대	38245 112	정제소금	kg	31212 300
세단	대	38431 113	소다회	kg	35122 113
세름	kg	35121 126	소독비누	kg	35231 113
세면기(위생 도기제품)	개	36103 112	소액피	kg	31161 311
세면기(법랑제 위생제품)	개	38193 113	소면 및 정소면	kg	32112 112
세무 손질 가죽	kg	32311 311	소모직물(혼방)	천㎡	32122 211
세모기	대	38242 115	소모직물(순)	천㎡	32122 111
세수대야(법랑제)	천개	38193 113	소모한 무두질 겹질	※	32311 600
세수대야(프라스틱제)	※	35605 119	소방차	대	38431 400
세절기(야채 및 과일세절기)	※	38115 114	소변기	개	36103 114
세절기(목공기계)	대	38235 113	소석회	kg	36922 112
세정제	kg	35296 215	소성인비	kg	35152 113
세척기(금속)	대	38233 113	소스병(도금 귀금속제)	※	39010 612
세척기(달걀)	대	38220 614	소시지(육류)	kg	31119 113
세척기(종이)	대	38246 111	소시지(물고기)	※	31144 100
세탁기			소아용 내의 및 잠옷	※	32225 112
상업용 세탁기	대	38262 111	소주	ℓ	31312 100
전기 세탁기(가정용)	대	38333 111	소켈트	천개	38396 111
세탁기(전기)부품	※	38333 119	소화기(消火器)	대	38299 611
세포(당목)	천㎡	32121 112	소화장비 및 소화용 스프링클러	※	38299 612
세포형 나무판재	㎡	33114 114	소화기(小火器) 및 중화기	※	38299 919
세족직물	※	32125 100	(重火器)		
섹스콘(목관약기)	※	39024 111	소화기액	kg	35112 112

(8)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소화기용 조계줄 및 충전물	kg	35299 115	수경석회	ㄱ	36922 113
소형모터(전자용)	개	38349 123	수도미터	대	38545 113
속도계 검사용 시험대	대	38543 215	수동식 가스용접기	개	38119 214
속도계 및 타코미터	개	38546 112	수동식 납땜 인두(전열식포함)포함	개	38119 216
손목시계	개	38531 111	수동식 벽돌 및 브로크 계 조기	개	38119 222
손수건	※	32229 219	수동식 전화 교환기	회선	38322 113
손수레 및 기타 비동력차량	대	38490 200	수동식 타자기	대	38255 112
손톱깎기	천개	38112 117	수동펌프	대	38291 114
손틀	대	38295 111	수력터빈	대	38212 400
솔(옷솔, 구두솔, 치솔, 면도 솔 등)	※	39093 113 ~ 119	수업 및 경기용 총(공기총 포함)	※	38298 200
솔벤트			수모 및 양모	kg	32113 111
복합솔벤트	ㄷ	35215 113	수모직물	천㎡	32122 114
백성솔벤트	ㄷ	35300 215	수모방적사	kg	32113 213
솜			수문(철재)	개	38131 114
면솜	kg	32191 111	수산	ㄱ	35119 115
인조섬유 솜	kg	32191 112	수산물 기름	※	31151 113
기타 솜	※	32191 119	수산화 나트륨(가성소다)	ㄱ	35122 111
송풍기			수산화 마그네슘	ㄱ	35121 418
블로우어형 송풍기	대	38292 111	수산화 암모니움	ㄱ	35121 614
팬형 송풍기	대	38292 112	수산화칼리(가성칼리)	ㄱ	35122 112
솔(알루미늄제)	천개	38142 111	수성 증류물	kg	35298 114
솔(스텐레스제)	천개	38142 211	수소	㎡	35123 211
쇄목펌프	ㄱ	34111 100	수연광(몰리브덴광)	kg	23026 100
쇄빙선, 케이블선	G/T	38412 300	수염색직물 및 사	※	32139 100
쇄석	ㄱ	29012 100	수염부	차	32222 600
쇠가죽	㎡	32311 111	수은	ㄱ	23029 914
쇠고기 통조림	kg	31111 100	수은증기터빈	대	38212 200
쇠기름(우지)	ㄱ	31151 222	수의용 기구	※	38512 114
쇠못(직접생산한 철강선을 더 가공하여 쇠못을 제조)	ㄱ	37124 312	수저(스푼)	※	38111 100
쇠못(철강선을 외부에서 구입 하여 쇠못을 제조)	ㄱ	38196 114	수정자동차	개	38349 124
쇠스랑(갈퀴)	※	38114 119	수중용 경기용품	※	39039 913
쇼울 및 유사 여자용 목도리	개	32229 212	수지	ㄱ	35114 111
쇼트닝(쇼-팅)	kg	31153 213	수지산 및 유도체	※	35117 112
수건(타월)	kg	32149 911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수차	※	38219 119	수학적 계산기구	※	38542 112
수치제어 (NC) 기계			수화실리카펠	㎏	35299 133
수치제어 밀링기	대	38231 137	수확 탈곡결합기(자체추진식)	대	38220 315
수치제어 선반	대	38231 111	순간온수기(가스·전기용)	대	38334 917
수치제어 연삭기	대	38231 141	순 면사	㎏	32112 211
수치제어 보링기	대	38231 142	순 면직물	천㎡	32121 112
수치제어 기어컷팅기	대	38231 143	순 방모사	㎏	32113 211
수치제어 드릴링기	대	38231 144	순 방모직물	천㎡	32122 112
수치제어 평삭기	대	38231 145	순 본견직물	천㎡	32123 111
기타 수치제어 금속절삭기계	대	38231 146	순 소모사	㎏	32113 212
수치제어 금속가공기계	대	38231 125	순 소모직물	천㎡	32122 111
수치제어 목공기계	대	38235 125	순수 인산비료	※	35152 111
수통피	※	32143 112	순수 황산 암모늄(유안)	※	35151 111
수퍼폴리아미드 섬유(합성 장섬유)	※	35143 111	순회도서 및 소물차 술	대	38431 400
수퍼폴리아미드 섬유(합성 단섬유)	※	35143 311	소주	ℓ	31312 100
수퍼폴리아미드 섬유(합성 장섬유 토우)	※	35143 411	인삼주	ℓ	31313 100
수퍼폴리아미드 수지	※	35114 118	고량주	ℓ	31314 111
수퍼폴리에스터 섬유(합성 장섬유)	※	35143 113	위스키	ℓ	31314 112
수퍼폴리에스터 섬유(합성 단섬유)	※	35143 313	럼주	ℓ	31314 113
수퍼폴리에스터섬유(합성 장섬유 토우)	※	35143 413	기타 곡식증류주	※	31314 119
수퍼폴리우레탄섬유(합성장섬유)	※	35143 112	꼬냇	ℓ	31315 111
수퍼폴리우레탄섬유(합성 단섬유)	※	35143 312	브랜디	ℓ	31315 112
수퍼폴리우레탄섬유(합성 장섬유 토우)	※	35143 412	진	ℓ	31315 113
수퍼히터워터 보일러	대	38134 112	보드카	ℓ	31315 114
수경	대	38541 113	기타 과일증류주	※	31315 119
수경계기	대	38548 114	사과주(발효주)	ℓ	31323 911
수하물차(철도차량)	량	38422 111	딸기주(발효주)	ℓ	31323 912
			매실주(")	ℓ	31323 913
			배주(")	ℓ	31323 914
			기타 과일 발효주	※	31323 919
			과일 합성주	ℓ	31319 100
			합성 청주	ℓ	31319 211
			합성 맥주	ℓ	31319 212
			오가피주	ℓ	31319 213

(人)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삼제일	㎏	31319 214	스티렌부타디엔 고무라텍스	ㄱ	35115 111
기타 합성주	※	31319 219	(S.B.R)		
약주	㎏	31321 112	스베레오제관 구조용 기계	대	38247 218
탁주	㎏	31321 111	스태아린산	ㄱ	35119 113
청주	㎏	31322 100	스베플링기	대	38259 115
포도주	㎏	31323 111	스텐레스강판	ㄱ	37122 311
기타 발효주	※	31329 100	스텐레스선	ㄱ	37124 216
맥주	㎏	31330 100	스텐실 고정액	ㄱ	35299 131
술잔(도금 귀금속제)	※	39010 612	스텐실 원지(등사원지)	ㄱ	34119 114
술장식 및 조리용 장식물	※	32144 111	스류펜(법랑계 찍는 기구)	천개	38192 113
술 경화제	ㄱ	35299 132	스트렙토마이신	※	35223 112
술(연료용은 제외: 12200 121)	※	35117 115	스트로 보스코프	개	38546 113
췌이트바(보통강)	ㄱ	37113 341	스트론튬	ㄱ	35121 125
췌이트바(고탄소강)	ㄱ	37113 342	스트론튬광	※	29020 914
췌이트바(합금강)	ㄱ	37113 343	스트립(재생 장섬유)	ㄱ	35142 200
스내류	※	31172 200	스트립(합성 장섬유)	ㄱ	35143 200
스레드	천본	36931 111	스티어린	ㄱ	31151 211
스리터 릴러	대	38246 212	스티렌모노바	ㄱ	35113 111
스위치 기타 조립품	※	38313 119	스티렌 부타디엔 고무라텍스	ㄱ	35115 111
스위치-배전장치	천개	38396 114	스티렌 부타디엔 고무	ㄱ	35115 112
스치로물	ㄱ	35602 111	스틱(게임장비)	※	39032 112
스카프	장	32159 412	스파게티, 마카로니 및 유사 제품	※	31175 200
스칸듐 및 이트륨	ㄱ	35121 127	스파이크(육상용 신발)	족	32402 113
스제이트	※	39039 300	스파이크 및 리베트	ㄱ	37124 313
스케치북	천권	34214 115	스파이크 프리그(갈로우 프리 그 포함)	개	38316 112
스셀링	※	37119 119	스패너 및 렌치	천개	38113 114
스크래퍼	대	38241 315	스포트라이트	※	38395 113
스크류 커팅기	대	38231 136	스폰지	※	35592 116
스키	※	39039 300	스폰(귀금속 또는 도금제품)	※	39010 511
스키 리프트	대	38293 125	스폰(금속제)	※	38111 100
스킨로손 및 빌크로손	ㄱ	35235 111	스프(분말, 액체등 조제)	ㄱ	31213 115
스타킹(여자용)	천족	32151 100	스프링		
스텝프	개	39091 116	선스포링	ㄱ	38196 112
스텝핑기 및 단조기	대	38232 111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나선형스프링(차량용)	매	38199 111	전기전자시계		
일스프링(차량용)	매	38199 112	손목시계	천개	38532 111
기타스프링	※	38199 119	벽시계	천개	38532 112
스프링 및 추조작모터	대	38219 112	탁상시계	천개	38532 113
스프링 생지	※	37124 314	기타시계(타입크록 및 기	※	38532 119
스프링 조작 스테이플링	개	38119 218	타의 시간경과를 기록하		
피스톤			는 장치)		
스프링롤러(소와용)	※	38299 612	시계 기동부	천개	38533 111
스피커 시스템	대	38321 314	시계 기동부품(속도 조정장치	※	38533 114
스피커	개	38321 911	대 등)		
스핀들	개	38242 611	시계 또는 시계부품 검사기구	천개	38543 213
슬라브-보통강(강반제품)	※	37113 311	시계 및 보석공용 톱	천개	38116 114
슬라브-고탄소강(강반제품)	※	37113 312	시계 보석	※	39010 113
슬라브-합금강(강반제품)	※	37113 313	시계 부착물(백금 또는 순금	※	39010 313
슬레그	※	37119 119	의 장신구)		
슬리퍼(실내화)	족	32403 111	시계유리	※	36203 214
습도계 및 사이크로미터	※	38544 211	시계줄(직물계)	※	32229 219
습건지	개	38394 112	시계줄(가죽계)	※	32339 900
승압기	※	38312 113	시계줄(금속계)	※	38533 119
승용장난감	※	39042 100	시계줄(여성용 장신구)	※	39010 312
승용차			시계추	※	38533 119
소형승용차 (1500CC 미만)	대	38431 111	시계케이스(휴대용)	천개	38533 112
중형승용차(2000CC 미만)	대	38431 112	시계케이스(큰 시계용)	천개	38533 113
대형승용차 (2000CC 이상)	대	38431 113	시동기	대	38316 111
지프형승용차	대	38431 114	사루(토기재)	※	36101 100
승용차 사시	※	38432 211	사루(알루미늄재 가정용 집기)	※	38142 119
승용차 차체부품	※	38432 600	시리콘수지,	※	35114 117
쓰루기 원단	천개	32123 111	시멘트		
시계			내화시멘트	※	36949 112
일반시계			보통시멘트	※	36921 111
손목시계	천개	38531 111	백색시멘트	※	36921 112
벽시계	천개	38531 112	고로시멘트	※	36921 113
탁상시계	천개	38531 113	알루미나시멘트	※	36921 114
기타시계	※	38531 119	평창시멘트	※	36921 115
			저열시멘트	※	36921 116

(人)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시멘트통(침전통)	㉔	37211 113	식탁용칼	kg	38111 100
시멘트 크링커	천㉔	36921 200	식용품향료	kg	35298 111
시보리 원단	천㉔	32123 111	식품용 색소	kg	31219 111
시안화나트륨	㉔	35122 118	신		
시유(처리유유)	㉔	31124 100	가죽신(단화, 학생화, 군화,	족	32401 111
시준의	대	38541 114	가죽장화등)		~ 200
CB 트랜시버	대	38323 212	특수신(작업화, 등산화, 경기	족	32402 111
식각 또는 유사 가공유리	※	36202 111	용 및 슬리퍼 등)		~ 119
식관	천개	38191 111	나무신	※	33199 100
식기(가정용 도자식기)	천개	36102 111	교무신(운동화, 고무신, 고무	천족	35591 111
식기(유리제품)	천개	36206 111	장화등)		~ 200
식기(법랑제)	천개	38192 114	프라스틱신	㉔	35607 111
식기(알루미늄)	천개	38142 115	신너	ㄷ	35215 113
식기(스테인레스)	천개	38142 215	신문		
식료품 가공기계	※	38243 111	일간신문	천부	34211 111
		~ 929	비일간신문	천부	34211 112
식물성 색소질	※	35133 111	신문용지	㉔	34112 100
식물성 섬유끈	※	32171 111	신발 및 가죽제품 제조기	대	38242 914
식물성 섬유 로프	kg	32171 211	신발용 편(나무제품)	※	33119 113
식물성 섬유 펄프	㉔	34111 300	신발장	개	33201 124
식물성 알카로이드	※	35222 114	신발 재단물 및 부속품	※	32404 100
식물성 알카로이드 유도제	※	35222 114	신선기(금속성형)	대	38232 122
식물성 왁스	㉔	35295 112	신체보정용기기(결합보정구,	※	38515 114
식물성 탄닌엑스	※	35133 113	보정기)		
식물성 파치먼트 및 고라신지	※	34119 112	식품마쇄기	개	38339 116
식루기	개	38220 113	신형 변압기	대	38312 114
식방	㉔	31171 111	실		
식용 사카린	kg	31226 115	생사	kg	32111 111
식용 아미노산	kg	31212 112	부잡사	kg	32111 112
식자용 장비	대	38247 216	육사	kg	32111 113
식초			야잡사	kg	32111 114
양조식초	ㄷ	31212 211	순면사	kg	32112 211
대용식초	ㄷ	31212 212	혼방면사	kg	32112 212
식탁(목재)	개	33201 117	순방모사	kg	32113 211
식탁용품(금속제)	※	38111 100	순소모사	kg	32113 212

(A)~(O)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수모방적사	kg	32113 213	싱크(요업제품)	개	36103 111
혼방방모사	kg	32113 214	싱크(법랑제 위생제품)	천개	38193 111
혼방소모사	kg	32113 215	싱크(스텐레스제 위생용품)	천개	38193 211
혼방 수모사	kg	32113 216	싱크대(목제)	천개	33201 128
합성섬유방적사	kg	32114 211	아교	kg	35291 114
재생섬유방적사	kg	32114 212	아니린	kg	35113 125
반합성섬유방적사	kg	32114 215	이동식플루	개	38119 211
혼합합성섬유방적사	kg	32114 213	아동화	족	32401 114
혼방재생섬유방적사	kg	32114 214	아르곤	kg	35123 113
견방적사	kg	32115 111	아마	kg	32116 111
견혼방사	kg	32115 112	아마사	kg	32116 211
아마사	kg	32116 211	아마유	kg	31152 115
모시사	kg	32116 212	아마직물	천kg	32124 111
황마사	kg	32116 213	아미노 수지	kg	35114 124
대마사	kg	32116 214	아미드 관능화합물	kg	35119 216
아바카사	kg	32116 215	아미유에 넣은 안료 및 스텝	kg	35219 100
사이살마사	kg	32116 216	평포일		
기타 마방적사	kg	32116 219	아바카	kg	32116 115
재봉사	kg	32117 111	아바카사	kg	32116 215
		~ 119	아세달 및 유도체	kg	35119 213
편물사	kg	32117 211	아세테이트사	kg	32114 215
		~ 219	아세테이트 섬유(재생 장섬유)	kg	35142 113
자수사	kg	32117 306	아세테이트 섬유(재생 단섬유)	kg	35142 313
금속화사	kg	32119 111	아세테이트 섬유(재생 장섬유	kg	35142 413
석닐사	kg	32119 112	· 도구)		
킴프사	kg	32119 113	아세톤(메니큐어제거제)	kg	35235 412
유리사	kg	32119 200	아세티렌 가스	kg	35123 115
종이사	kg	32119 300	아세틸 살리실산	kg	35119 117
실내화(슬리퍼)	족	32403 111	아스팔트(석유역청)	kg	35300 411
실드 빔 램프	개	38395 211	아스콘	kg	35403 114
실구터	kg	33194 112	아스팔트 토치	kg	35403 116
심발(타락기)	kg	39025 119	아아크 등	개	38392 115
심지용 편조물	kg	32159 200	아연관 및 부착물	kg	37239 313
심자가(배금 또는 순금의 장	kg	39010 312	아연광	kg	23025 200
신구 납자용은 제외)	kg		아연괴(미가공 아연)	kg	37214 100
			아연금속 제조제품	kg	37290 500

(○)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아연도 강판			관악기	대·※	39024 111
전기도금 아연도 강판	※	37192 211			~ 121
열지도금 아연도 강판	※	37192 212	타악기	대·※	39025 111
착색도금 아연도 강판	※	37192 213			~ 121
아연도 철선	※	37124 212	전자악기	대·※	39026 111
아연봉 형강	※	37239 311			~ 119
아연분	※	37239 312	국악기	※	39027 100
아연분(가공제품)	※	37224 112	기타악기	※	39029 100
아연선	※	37239 311	악기현	※	39029 200
아연 열로이(합금)	※	37224 111	악보	※	34219 100
아연제조 잔여물	※	37224 113	안경(선그라스는 제외)	천개	38528 112
아연회	※	35132 117	안경렌즈(콘택트렌즈 포함)	천개	38522 300
아연판 및 편	※	37239 312	안경케이스	※	39010 211
아연 띠	※	37239 312	안경대	천개	38528 111
아이스케이크(빙과)	※	31174 100	안료		
아이스크림	㎏	31123 100	조제무기안료	※	35132 311
아이스크림 제조기	대	38243 115	조제유기안료	※	35132 312
I C 회로(ISI 회로)	천개	38342 113	조제유백제	※	35132 313
아코디온	개	39022 113	조제법랑 유약	※	35132 314
아코디온(전자)	대	39026 111	조제라스터	※	35132 315
아크릴사	※	32114 211	레이크제안료	※	35132 211
아크릴로 니트릴	※	35112 131	아조제안료	※	35132 212
아크릴로 니트릴 부타디엔스 티켄(ABS)	※	35114 135	푸타로시아닌분류제안료	※	35132 213
아크 용접강판	※	37123 114	푸타로시아닌그린제안료	※	35132 214
아크 용접장치	개	38315 111	기타조제안료 및 관련제품	※	35132 319
아트지	※	34113 114	안아기	개	38335 114
아황산 나트륨(아황산소다)	※	35122 215	안전유리(강화유리)	상자	36202 211
아황산실트	※	34111 214	안전유리(적층유리)	상자	36202 212
아황산 보자기	※	34119 115	안테나(전자용)	천개	38349 125
악기			안트라센	※	35116 112
전반악기	대·※	39021 111	안티노크제제 및 광물유첨가제	㎏	35299 117
		~ 39022 11	안티모니	※	23029 916
현악기	대·※	39023 111	알긴산 섬유(재생 장섬유)	※	35142 115
		~ 119	알긴산 섬유(재생 단섬유)	※	35142 315
			알긴산 섬유(재생 장섬유 토우)	※	35142 415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알루미나 시멘트	ㄴ	36921 114	암모니아합성 유니트	대	38244 112
알루미늄관 및 중공봉	ㄴ	37232 114	암염	ㄷ	29040 200
알루미늄 부착물	ㄴ	37232 115	압력계기(산업 공정용)	대	38548 113
알루미늄합판(알루미나는 372)	ㄴ	23029 911	압력계	개	38543 212
알루미늄 피(미가공알루미늄)	ㄴ	37212 100	압력	ㄴ	31161 114
알루미늄 도금 철강관	ㄴ	37192 311	압력기	대	38243 213
알루미늄 로프 및 유사제품	※	37290 211	압연기	대	38232 211
알루미늄 못 및 유사제품	ㄴ	37290 212	압연기롤	ㄴ	38232 212
알루미늄 박지	ㄴ	34193 112	압축공기식 그리스 피스톨	대	38234 124
알루미늄봉 및 형강	ㄴ	37232 111	압축공기 또는 압축가스기관	대	38219 111
알루미늄분 및 천	ㄴ	37232 119	압축, 액화가스저장 및 운반용 용기	개	38136 100
알루미늄선	ㄴ	37232 112	압축점화기관(자동차용)	대	38432 111
알루미늄 사시바	ㄴ	37232 116	압축점화기관(선박용)	대	38411 100
알루미늄 주물(거칠은)	ㄷ	37241 112	압출기(금속성형)	대	38232 114
알루미늄 정련 잔여물	※	37222 112	압출기(인조석용)	대	38244 912
알루미늄 케이블 및 유사제품	※	37290 211	압출기(유리 및 요업용)	대	38248 212
알루미늄 판, 띠 및 박	ㄴ	37232 113	애관	천개	36104 114
알루미늄 합금	ㄴ	37222 111	애완동물 사료	ㄷ	31230 211
알사탕	ㄷ	31173 311	애완동물 기호식품	※	31230 212
알카로이드(식물성)	※	35222 114	애자		
알카리 금속원소			고압애자 (750v-7,000v미만)	천개	36104 111
리튬	ㄴ	35121 124	저압애자 (750 v미만)	천개	36104 112
나트륨	ㄴ	35121 124	특고압 애자 (7,000v이상)	천개	36104 113
칼륨	ㄴ	35121 124	애자 및 절연 착물(유리 도 기, 성형 고무 또는 프라 스틱 제외)	※	38396 400
세슘	ㄴ	35121 124	엑스관	ㄴ	32114 211
알카리로류 금속원소			액체 공급계기(수도미터 제외)	대	38545 112
칼슘	ㄴ	35121 125	액체공기	ㄴ	35123 114
스트론튬	ㄴ	35121 125	액체이누	ㄴ	35231 115
바륨	ㄴ	35121 125	액체연료(라이터용)	ㄷ	35409 114
알루미늄산화물 및 유도체	※	35119 211	액체연료 불꽃점화기관(일반기계)	대	38211 100
갈길벤젠	ㄴ	35113 112	액체용 통	개	33121 111
암면	ㄷ	36992 111	액체우유 및 음료용기(종이제)	천개	34124 112
암면제품	※	36992 112			
암모니아	ㄴ	35121 314			
암모니아성 가스용액	※	35409 213			

(○)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액화일도 및 비중측정계	※	38544 211	양초피치	kg	35299 121
액화식유가스	ℓ	35300 311 ~ 319	양탄자	㎡	32161 100
NC-수치제어 참조			어린이 그림	※	34219 300
앨범	천권	34214 114	어린이 놀이터용 장비	※	39031 112
앵브란스	대	38431 400	어린이 저금통	※	38199 919
캠프릿트(전속용)	개	38321 316	어망	kg	32172 112
야구장갑	개	39032 117	어분	※	31230 115
야자기름	ℓ	31152 121	어선(공장트roller 포함; 강선)	G/T	38412 511
야잠사	kg	32111 114	어선(목선)	G/T	38413 300
야채 수물	※	31139 400	어스호러	대	38234 115
야채통조림	kg	31131 112	어육연제품	※	31144 100
약주	ℓ	31321 112	어학실습기	대	38322 313
양가죽	㎡	32311 211	얼음	※	31221 100
양과 또는 천공지	※	34193 115	얼음용해기(전기)	대	38334 914
양단	천㎡	32123 111	에나멜	ℓ	35211 112
양말			ABS수지	※	35114 135
면양말	천족	32151 211	에스컬레이터	대	38293 122
모양말	천족	32151 212	에어해머 라텍스	대	38232 115
인조섬유 양말	천족	32151 213	S. B. R (스티렌 부타디엔 고무)	※	35115 112
기타섬유 양말	천족	32151 219	S/T사	※	32114 211
양모 및 수모	kg	32113 111	에스파르토의 오프너, 디스터, 파쇄기 및 절단기	대	38246 113
양복(주분복, 남자용)	착	32211 111	T. P. A	※	35113 124
양복(기성복, 남자용)	착	32221 111	에타날	※	35112 123
양복(여자용, 주분복)	착	32212 111	에탄디올	※	35112 122
양복(여자, 기성복)	착	32223 111	에티렌의 중합제품(폴리에틸 렌)	※	35114 131
양복(소아용, 기성복)	착	32224 112	에틸렌글리콜	※	35112 122
양산	개	39092 112	에틸렌	※	35111 111
양산살대	※	39092 114	에틸 및 유도체	※	35119 211
양송이 통조림	※	31131 112	에틸알콜 및 유도체	※	35119 211
양수기	대	38291 115	에틸알콜메놀 및 유도체	※	35119 211
양조 및 증류용 기계	대	38243 921	에폭시드 및 유도체	※	35119 212
양조 부산물	※	31329 200	에폭시드 수지	※	35114 116
양조 식초	ℓ	31212 211	에폭시드 알콜 및 유도체	※	35119 212
양철가위	※	38113 111			
양초	kg	35299 118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에폭시 에델 및 유도체	※	35119 212	연금속 제조제품	※	37290 400
에폭시 페놀 및 유도체	※	35119 212	연도금 철강판	※	37192 315
X-선 장치(진단 및 요법 용)	대	38325 111	연마기	대	38248 313
X-선 장치(산업용)	대	38325 112	연마지 및 포	㎡	36993 113
X-선관 및 X-선 발생장치	대	38325 114	연마휠	※	36993 111
엑티노 마이신	※	35223 114	연봉 및 형강선	※	37239 211
엘리베이터	대	38293 123	연사		
에워기	대	38220 417	면연사(재봉사)	㎏	32117 111
여객선(페리포함; 강선)	G/T	38412 460	면연사(편물사)	㎏	32117 211
여객선(목선)	G/T	38413 100	견연사(재봉사)	㎏	32117 112
여객차(철도차량)	량	38422 111	모연사(재봉사)	㎏	32117 113
여과기(상수도용)	대	38299 912	모연사(편물사)	㎏	32117 212
여과부록	※	34195 111	인조섬유 연사(재봉사)	㎏	32117 114
여과프레스	대	38244 915	인조섬유 연사(편물사)	㎏	32117 213
여성용 장신구(백금 또는 순 금의 장신구) (입힌 귀금속 또는 은합금의 장신구)	※	39010 312	기타 재봉사	※	32117 119
여성용 장신구	※	39010 412	기타 편물사	※	32117 219
여성연	※	31402 911	자수사	㎏	32117 300
직물봉제모자	개	32227 213	바느질실	㎏	32117 400
여자의의(전직)	천매	32153 200	기타 연사	※	32117 900
여자의의(마출복, 봉제)	착	32212 111 ~ 119	연사기	대	38242 118
여자의의(기성복, 봉제)	착	32223 111 ~ 119	연삭기(금속 절삭용)	대	38231 128
여자용 내의 및 잠옷	※	32225 113	연삭기(수지식 동력공구)	대	38234 116
여자용 단화	족	32401 112	연산화물(저연 및 황연)	※	35132 111
여자용 스타킹	천족	32151 100	연성팬(금속 포장용기)	※	38191 300
여자용 한복	착	32213 112	연성코드 및 픽스처선	※	38391 119
여행용 배	※	33124 111	연성프라스틱 및 연성고무	대	38543 113
역청질 혼합물	※	35403 111	시험용기기		
연제조직 및 부품	※	38432 913	연성합성세제	※	35232 111
연체제인	㎏	38199 211	연소기(기계식)	대	38299 411
연관 및 관부착물	※	37231 115	연승	㎏	32172 111
연광	※	23025 100	연 열로이(합금)	※	37223 111
연괴(미가공연)	※	37213 100	연유	㎏	31122 100
			연계면 잔여물	※	37223 112
			연조기	대	38242 117
			연탄		
			연탄	※	35401 111

(○)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조개탄	ㄱ	35401 112	반응성염료	ㄱ	35131 122
연탄가스 배출기	대	38332 300	유기용제 용매염료	ㄱ	35131 123
연탄제조기	대	38248 215	형광백염료	ㄱ	35131 124
연탄집게	천개	38119 112	유기합성 유기염료	ㄱ	35131 125
연관, 띠, 분 및 편	ㄱ	37239 212	기타 합성유기염료	※	35131 129
연필(사프연필)	천개	39091 123	컬러레이크	ㄱ	35131 131
연필	천타	39091 114	염산	ㄱ	35122 117
연필깎기	개	38259 111	염색기	대	38242 711
연필제조기	대	38235 212	염색 또는 기타 가공한모직물	※	32132 100
연하장	※	34219 411	염색 또는 기타 가공한면직물	※	32132 200
열교환기	대	38134 212	염색표백 또는 기타 가공한	※	32132 311
열단기	대	38248 312	전직물(물치기제품 32132 312)		
열대과실	※	31139 112	염색 또는 기타 가공한	※	32132 400
열쇠	천개	38119 400	마직물		
열연광폭대강(보통강)	ㄱ	37121 511	염색 또는 기타 가공한	※	32132 500
열연광폭대강(고탄소강)	ㄱ	37121 512	인조섬유직물		
열연광폭대강(합금강)	ㄱ	37121 513	염색 또는 기타 가공한	※	32131 100
열연박판(보통강)	ㄱ	37121 331	섬유 및 사		~ 500
열연박판(고탄소강)	ㄱ	37121 332	염색 가공한 직물제품	※	32139 200
열연박판(합금강)	ㄱ	37121 333	염소(Cℓ)	ㄱ	35122 116
열연전기 강판	ㄱ	37121 411	염소가죽	ㄱ	32311 212
열지도금 석도강판	ㄱ	37192 112	염소산 소다	ㄱ	35122 213
열지도금 아연도 강판	ㄱ	37192 212	염소산 칼륨	ㄱ	35121 412
열처리라기(금속)	대	38233 114	염주(여성용 장신구)	※	39010 312
열기성 염료	ㄱ	35131 113	염화메틸	ㄱ	35112 113
염료			염화메틸렌	ㄱ	35112 111
축색염료	ㄱ	35131 111	염화칼슘(염화석회)	ㄱ	35121 613
산성염료	ㄱ	35131 112	염화 비닐모노머(V.C.M)	ㄱ	35112 115
열기성 염료 및 카치온염료	ㄱ	35131 113	염화암모늄(염안)	ㄱ	35151 117
백염료 및 산성백염료	ㄱ	35131 114	염화칼리	ㄱ	35153 112
황화염료 및 황화전염염료	ㄱ	35131 115	염화플리비닐 섬유(합성장 섬유)	ㄱ	35143 116
진염염료	ㄱ	35131 116	염화플리비닐 섬유(합성단 섬유)	ㄱ	35143 316
분산염료	ㄱ	35131 117			
천연합	ㄱ	35131 118			
무색염료(아조염료)	ㄱ	35131 121			

(0)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영화플러비닐 섬유(합성장 섬유 토우)	%	35143 416	운도계	천개	38544 212
옛(불옛)	kg	31226 112	운도조절기구	개	38548 117
옛기름(맥아)	kg	31223 111	운장고	대	38334 915
영사기(16mm이하)	대	38524 113	울개	대	39022 111
영사기(16mm초과하는 것)	대	38524 114	울개(전자)	대	39026 111
영상축화재생기(VTR)	대	38321 115	울리브 기름	kg	31152 113
영화녹음기(광전기식)	대	38524 115	울소크실렌	%	35111 124
영화촬영기(16mm초과 하는 것)	대	38524 111	움셋 인쇄기	대	38247 115
영화촬영기(16mm이하)	대	38524 112	움셋 인쇄판	※	34232 112
엮은 모자	개	32227 212	옷(의복)		
엮은 모자보다	※	32227 112	옷(직물, 가죽제)	착	32211 111 ~ 32229 219
에어커어른 장치	대	38292 116	옷(프라스틱제)	※	35609 200
에인신	G/T	38412 200	옷(고무제품)	※	35593 116
에취기	대	38220 417	옷걸이대(목제)	개	33201 125
오가피주	kg	31319 213	옷걸이대(금속제)	※	38121 118
오니름(물럼름)	%	23029 114	옷술	※	39093 116
오렌지원액	kg	31341 212	와셔 및 산업용 파스너	%	38195 114
오산화인 및 인산	%	35121 214	와이셔츠(아름)	매	32219 111
오일 바니쉬	kg	35211 111	와이셔츠(기성)	매	32222 111
오존	m	35123 111	와이어 로프(직접생산한 철강선 을 더 가공하여 와이어로프를 제조)	%	37124 315
오지벽돌	천개	36911 111	와이어 로프(철강선을 외부에서 구입하여 와이어로프를 제조)	%	38196 113
오토바이	대	38442 111	왁스		
모터싸이클	대	38442 111	동물성왁스	%	35295 111
모터스크버	대	38442 112	식물성왁스	%	35295 112
오토사이클	대	38442 113	인조 왁스	%	35295 113
O.T.S.A(사카린원료)	%	35113 123	합성 왁스	%	35295 114
옥배유(식용)	kg	31153 116	조제 왁스	%	35295 115
옥분	kg	31161 212	파라핀왁스(구두약)	%	35409 112
옥사	kg	32111 113	기타 특수세척제	※	35295 119
옥소	%	35121 113	갈탄왁스 및 기타 광물왁스	%	35409 113
옥수수 기름(비식용)	kg	31152 125	왁스 또는 규산염 도포직물	※	32194 117
옥수수 기름(식용)	kg	31153 116	완충기	개	38423 911
옥양목	천개	32121 412	완구	※	39041 100 ~ 39049 900
옥탄	%	35111 113	위의(봉제한 위의는 322에 분류)		

(0)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편직외의(웨타, 편직트레이닝복등)	천매	32153 100	우드칩 가공기	대	38246 114
남자용 외의(봉제, 마춤복)	매	32211 111	우라늄 및 라듐광	※	23029 211
		~ 119	우마차	대	38490 100
남자용 외의(봉제, 기성복)	착	32221 111	우산		
		-32222 90	철계우산	천개	39092 111
여자용 외의(봉제, 마춤복)	착	32212 111	비닐우산	천개	39092 113
		~ 119	우산 및 양산의 부품	※	39092 119
여자용 외의(봉제, 기성복)	착	32223 111	우유		
		~ 119	처리우유	㎖	31124 100
유아용 외의(봉제, 기성복)	착	32224 111	기타 액상 우유제품	※	31124 900
		~ 119	연유	㎏	31122 100
요람	개	33201 126	분유	㎏	31122 200
요소(화학적으로 순수한 요소)	㎖	35119 118	우스티 소오스	㎏	31213 113
요소(질소질 비료)	㎖	35151 115	운전대 기어 및 부품	※	38432 915
요소수지	㎖	35114 112	우주차량	대	38490 900
복조(목욕탕)	개	36103 115	우주개발 및 인공위성(통신 위성은 제외)	대	38490 900
공기			우지(소기름)	㎖	31151 222
대형용기(본네이너)	개	38136 100	우표, 수입인지, 봉함엽서 및 엽서	※	34219 511
		- 219	운동화	천족	35591 113
소형용기(가정용식품저장)	※	38192 214	운동화부품	※	35591 200
포장용 유리용기	㎖·※	36204 111	운모	㎖	29099 912
		~ 119	운모(가공운모 및 그 제품)	※	36999 111
프라스틱 용기	㎖·※	35606 111	운모편암	㎖	29012 100
		~ 119	울그리스-미가공	※	32113 121
종이용기(김, 우유봉)	천개·※	34124 111	울그리스(라노린) 및 울그리스 추출제품(정제)	㎏	31151 212
		~ 119	울소더	※	32199 111
용과린	㎖	35152 121	울타리 철선	㎖	37124 311
용강로 (비전기식)	대	38299 213	울트라마린; 균청	㎖	35132 116
용선로 (비전기식)	대	38299 214	워딩제품 및 그 충전물	※	32191 200
용성인비	㎖	35152 112	위키토키(균용제외)	대	38323 213
용용산화 알루미늄	㎖	35121 315	원고지	백매	34194 112
용집기(수동가스)	개	38119 214	원동기	대	38311 111
용집봉	㎖	38199 912			
용집 전극봉, 도포용 기계	대	38249 112			
용제 및 기타 용접봉 보조제	㎏	35299 111			
용해칼프	㎖	34111 213			
우드사이링	※	33119 112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원심분리기	대	38244 914	윤활유		
원심주조 구상후연 주철관	ㄱ	37131 113	정제윤활유 (윤활기유)	ㄷ	35300 600
원심주조 회주철관	ㄱ	37131 112	윤활유	ㄷ	35402 112
원유(부분정제정유=조유)	ㄷ	35300 100	정제구리스	ㄷ	35300 400
웨이퍼 및 유사제품	※	31179 100	구리스	ㄷ	35402 111
위생복	착	32229 114	인양기용 기름	ㄷ	35402 113
위생용 식품용기	※	34124 119	전삭유	ㄷ	35402 114
위생용 원지	※	34119 113	새척유	ㄷ	35402 115
위스키	ㄷ	31314 112	주형방출유	ㄷ	35402 116
원도우형에어콘	대	38264 111	유압 브레이크유	ㄷ	35402 117
원치(트리에 장치한 것은 제외)	대	38241 341	기타 비윤활유	※	35402 119
유기재면활성제 (합성세제용)	ㄱ	35233 111	기름(콜달승류제품)	※	35409 311
유기질 비료	ㄱ	35152 100	유리		
유기요법선 또는 기타 기관	※	35221 113	보통 관유리	상자	36201 113
유기요법 액스 및 기타 동	※	35221 114	무늬관 유리	상자	36201 114
물물질			안쪽 식자 또는 유사 가	※	36202 111
유기용세 용해염료	ㄱ	35131 123	공유리		
유기합성 유기염료	ㄱ	35131 125	저층 단결유리	※	36202 112
유니버설관(보통강)	ㄱ	37122 211	시제유리	※	36203 214
유니버설관(고탄소강)	ㄱ	37122 212	강화유리(안전유리)	상자	36202 211
유니버설관(합금강)	ㄱ	37122 213	저층유리(안전유리)	상자	36202 212
유당	※	31122 500	다세포성 유리	※	36203 112
유류			유리건설재료	※	36203 111
연료유			유리관	ㄱ	36201 111
조유(=부분정제원유)	ㄷ	35300 100	유리관 가공의 유리병	※	36202 114
항공기용 가솔린	ㄷ	35300 211	유리관 제조용 기계	대	38248 113
젯트유	ㄷ	35300 211	유리관 유리구 및 유리봉	※	36201 112
모티가솔린=휘발유	ㄷ	35300 212	유리구슬, 모조진수, 모조귀석 및 유사제품	※	36209 100
나프사	ㄷ	35300 213	유리 문구용품	※	36206 113
늘유(석유포함)	ㄷ	35300 214	유리병		
솔벤트(배정)	ㄷ	35300 215	유리술병	ㄱ	36204 111
경유	ㄷ	35300 216	유리음료수병	ㄱ	36204 112
중유(방카 A, B유포함)	ㄷ	35300 217	유리식료품병	ㄱ	36204 113
방카 C유	ㄷ	35300 218	유리약병	ㄱ	36204 114
			유리화장품병	ㄱ	36204 115

(0)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기타 유리병	※	36204 119	물무차	※	31227 213
유리사	kg	32119 200	운할유		
유리섬유	※	36207 111	정제운할유	kg	35300 600
유리섬유 타이어직물	※	32193 113	운할 유(정제운할유를가공한것)	kg	35402 112
유리섬유 제조용기계	대	38248 114	용단	천m	32161 100
유리섬유제품	※	36207 112	은(은괴)	kg	37219 411
유리식기	천개	36206 111	은합석	kg	23023 112
유리 주방용품	※	36206 112	은박지	※	34193 112
유리칼	천개	38113 116	은입힌 금속	kg	37229 141
유박(물고기 기름)	※	31151 121	은행차	대	38431 400
유박(동물기름, 소기름제외)	※	31151 221	음극선 TV영상관(브라운관)	대	38341 112
유박(비식용, 식물성유지)	※	31152 131	-칼라		
유박(식용유, 콩겉묵 제외)	※	31153 121	음극선 TV영상관(브라운관)	대	38341 111
유부	kg	31224 112	-후백		
유사가죽	※	32194 115	음반(녹음·녹화된것)	천매	38326 111
유산고토비료	※	35153 119	음성증폭기	천개	38349 112
유산균 발효유(요쿠르트등)	※	31124 200	웅축기	대	38243 112
유색혈암	※	29020 412	외과 및 내과치료용 기구	※	38511 111
유선통신장비	대·※	38322 111 ~ 900	의료용 기구	※	38511 111 ~ 119
유축제	※	38544 100	의류전조기	대	38334 916
유안	※	35151 111	의복(옷)		
유아용외의	천매	32153 300	의복(직물·가죽제)	착	32211 111 ~ 32229 219
유압 브레이크유	kg	35402 117	의복(프라스틱제)	※	35609 200
유연탄(원로탄)	※	21090 200	의복(고무제품)	※	35593 116
유장(Whey)	※	31122 400	의복 장신구	※	39052 200
유전용 기계, 장비 및 부품	※	38241 200	의약품 사카린	※	35119 316
유조선(자체추진)	G/T	38412 111	의약품	※	35221~ 352 29
유채기름(채종유, 비식용)	kg	31152 117	의약품용 캡슐	※	31179 200
유채기름(식용)	kg	31153 115	의자		
유포	※	32194 116	의자(목제)	개	33201 111
유황(광물)	kg	29020 211	의자(금속제)	천개	38121 113
유황(화학원소)	※	35121 114	이누린	※	31225 112
육송각재	m ³	33111 211	이동식 풀무	개	38119 211
육송 소할재	m ³	33111 111	이동 방사선차	대	38431 400
육송 판재	m ³	33111 311			
육송인책기	대	38247 111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이불거(보통 자전거)	대	38441 112	는 신발용 권		
이미드 관능화합물	ㄱ	35119 216	인산 및 5 산화인	ㄱ	35121 214
이발기	천개	38112 116	인산나트륨(인산소다)	ㄱ	35122 217
이불	※	32142 113	인산염암	ㄱ	29020 112
이산화망간	ㄱ	35121 417	인삼제품(백삼, 홍삼, 인삼즙, 인삼차, 인삼발효음료, 분말 인삼 등)	※	31222 111 ~ 119
이산화황	ㄱ	35121 212	인삼주	ㄱ	31313 100
이산화탄소	ㄱ	35123 213	인삼차(대량 또는 분말형태)	ㄱ	31222 115
이산화 티타늄	ㄱ	35121 313	인삼죽연	ㄱ	29091 111
이스트			인쇄기		
누룩	ㄱ	31228 111	경알 및 원통압식 인쇄기	대	38247 111
곡자	ㄱ	31228 111	석판 인쇄기(활판포함)	대	38247 114
배양이스트	ㄱ	31228 112	움짚 인쇄기	대	38247 115
제빵용 이스트	ㄱ	31228 113	그라비아 인쇄기	대	38247 116
이앙기	대	38220 313	특수인쇄기	대	38247 117
이어폰	천개	38321 413	윤전인쇄기	대	38247 111
이온 교환제	ㄱ	35299 112	인쇄보조기	대	38247 118
2-케틸 핵실 알콜	ㄱ	35112 126	인쇄잉크	ㄱ	35297 111
이유식(우유기저)	ㄱ	31122 300	인쇄회로기판	대	38349 111
이유식(곡물기저)	※	31162 100	인스턴트면류(기타)	ㄱ	31175 112
이중용도 가구	※	33202 200	인장(도장)	천개	39091 132
이크롬산 소다	ㄱ	35122 212	인조가죽	ㄱ	32312 200
이퀄라이저	대	38321 317	인조가죽 의류	각	32226 113
이트륨 및 스칸듐	ㄱ	35121 127	인조가죽 장갑	조	32228 114
이형관	ㄱ	37131 121	인조꽃	※	39054 111
이화학, 위생 및 약용 유리 제품	※	36203 300	인조눈(사람용)	※	38529 200
인	ㄱ	35121 117	인조눈(장난감용)	※	36209 200
인공감미료	ㄱ	31226 200	인조모피	ㄱ	32322 100
인공장기	※	38515 115	인조모피 의류	착	32226 213
인광석	ㄱ	29020 918	인조 및 동물털	※	39055 111
(머리)인두	※	38119 119	인조보식	※	36999 112
인디아지	ㄱ	34113 117	인조빙	ㄱ	31221 100
인력발목기	대	38220 212	인조시지(치아 또는 눈은 제외)	※	38515 113
인모(가공하지 않은 것)	ㄱ	33055 115	인조산화 절강판	ㄱ	37192 316
인발기(고속성형)	대	38232 123			
인발목, 성냥개비, 나무못 등	※	33119 113			

(0)~(2)

종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종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인조섬유 끈	※	32171 112	인쇄잉크	℥	35297 111
인조섬유 내외(편직한 것)	천매	32152 113	보통필기 및 제도잉크	℥	35297 112
인조섬유 내외(봉제한 것, 남자용)	※	32225 200	기타 잉크	※	35297 119
인조섬유 내외(봉제한 것, 유아 및 여아용)	※	32225 111	잉크지우개 및 스텐실교정액	㎏	35299 131
인조섬유 로브	㎏	32171 212	일 스프링(차량용)	매	38199 112
인조섬유 방저사	℥	32114 211	자갈	㎥	29012 112
		~215	자개 가공 및 제품	※	39010 116
인조섬유 솜	㎏	32191 112	자기제품(가정용)	※	36102 112
인조섬유 양말	천족	32151 213	자동차료처리 조직부품	※	38251 119
인조섬유용 방사기	대	38242 111	자동식타자기(워드프로세싱 포함)	대	38255 113
인조섬유 장갑(편직한 것)	천조	32154 113	자동전화 교환기	회선	38322 113
인조섬유 직물	㎡	32123 311	자동조절 밸브	℥	38198 212
		~600	자동차(승용차, 버스, 트럭)	대	38431 111
인조섬유(황)편직물	㎏	32155 114	자동차부품		~500
인조섬유 타이어직물	㎏	32193 115	동력전달장치 및 그 부품	※	38432 911
인조섬유 타이어 코드사	㎏	32193 112	배기조직 및 그부품	※	38432 912
인조치아	※	38514 115	연료계통조직 및 그부품	※	38432 913
인조코넨업	℥	35121 315	브레이크 및 그부품	※	38432 914
인소 및 동물털	※	39055 111	조향장치 및 그부품	※	38432 915
인소흑견	※	35129 212	한가장치 및 그부품	※	38432 916
인수	천개	39091 133	자동차 틀(휠)	개	38432 921
인터점	대	38322 311	자동차용 공기타이어	천본	35511 111
인터폰	대	38322 312	자동차용 방열기	대	88432 923
인형(사압형태)	※	39041 100	자동차용 피스톤	개	38299 512
인화지(감광자)	※	35296 113	자동차용 튜브	천본	35511 211
인형부품 및 악세서리	※	39041 900	자동차타이어 및 튜브제조기	대	38245 114
일간신문	천부	34211 111	자동차축	개	38432 922
일기책	천권	34214 113	자동판매기(음식료품)	대	38261 111
일문거	대	38441 111	자물쇠 및 열쇠	천개	38119 400
일반화물선(자체추진 강선)	G/T	38412 112	자석(마그네트)	※	38141 100
일산화탄소	㎥	35123 214	자수기	대	38242 513
입삭기(금속 절삭용)	대	38231 139	자수사	㎏	32117 300
입삭기(가마니물)	대	38220 415	자수업		
잉크			술장식 및 조립 장식물	※	32144 111
			자수제품	※	32144 112
			자수직물	※	32144 112
			상업장식	※	32144 200

(스)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자외선 및 적외선등	개	38392 114	인조섬유장갑(편직된 것)	천조	32154 113
자양강장 변질제 (드림크류포 합)	※	35224 117	기타섬유장갑(편직된 것)	천조	32154 119
자장 공기조절기	대	38264 113	직물제장갑(봉제한 것)	조	32228 111
자전거			가죽장갑	조	32228 112
일륜거	대	38441 111	모피장갑	조	32228 113
이륜거	대	38441 112	인조가죽장갑	조	32228 114
삼륜거	대	38441 113	야구장갑	개	39032 116
사륜거	대	38441 114	장고(북악기)	※	39027 100
자전거 부품			장기관 및 장기착	※	39044 200
자전거림	개	38441 212	장난감(증용)	※	39042 100
자전거 안장	개	32339 100	장난감(프라스틱, 금속제)	※	39043 100
자전거 타이어	천본	35511 113	장난감(봉제)	※	39041 100 ~ 39049900
자전거용 튜브	천본	35511 213	장농	개	33201 115
자전거 차체	개	38441 211	장부기(목공기계)	대	38235 115
기타 자전거 부품	※	38441 219	장부채	천권	34214 112
자철광	㎍	23010 112	장석	㎍	29932 113
작두	※	38114 119	장석분	㎍	36995 113
작업복	착	32219 300	장식용 나무제품	※	33193 111 ~ 112
작업장 장치물	※	33206 200	장식용 유리제품	※	36206 114
작업화	족	32402 111	장식용 전구	천개	38392 118
잠바	착	32222 400	장식장	개	33201 114
잠사			장식 포스터 및 회화복사물	※	34219 412
생사	㎏	32111 111	장신구로 사용하기 위해 가 공한 진주	※	39010 114
부잠사	㎏	32111 112	장신구용 귀석 및 반귀석 (다이아몬드 제외)	※	39010 112
육사	㎏	32111 113	장신구 재단물	※	39010 800
야잠사	㎏	32111 114	장지문(나무제품)	개	33112 115
잠수함	G/T	38412 900	장치물		
잠옷(봉제한 것, 남자용)	※	32225 200	상점장치물(목제)	※	33206 100
잠옷(봉제한 것, 여자 및 유 아용)	※	32225 112	상점 장치물(금속제)	※	38122 112
잠판(미술관)	천개	38191 112	작업장 장치물	※	33206 200
잠지	천권	34212 100	장관용 한지	㎍	34116 114
장갑			재건조 앞담배	㎏	31401 100
면장갑(편직된 것)	천조	32154 111	재 방출기	대	38299 413
모장갑(편직된 것)	천조	32154 112			

(스)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재봉기			쟁반(스텐레스제)	※	38142 219
책 재봉기	대	38247 311	쟁반(알루미늄제)	※	38142 119
손틀	대	38295 111	쟁반(도금 귀금속제)	※	39010 612
발틀	대	38295 112	자켓(봉제한 것)	착	32222 400
전기식 재봉기	대	38295 113	저마	㎏	32116 113
직물용 재봉기	대	38295 211	저마사	㎏	32116 212
가족용재봉기	대	38295 212	저마직물	천㎡	32124 112
포대봉합 재봉기	대	38295 213	저석	※	36993 112
기타 산업용 재봉기	※	38295 219	저압애자(750 V 미만)	천개	36104 112
재봉기용 부품(바늘 및 캐비닛은 제외)	※	38295-300	저압 축전지	대	38319 212
재봉사			저열 시멘트	※	36921 116
면연사	㎏	32117 111	저온 살균기	대	38243 112
견연사	㎏	32117 112	저울		
모연사	㎏	32117 113	산업용 저울	개	38254 111
인조섬유 연사	㎏	32117 114	상업용 저울	개	38254 112
기타 재봉사	※	32117 119	가정용 저울	개	38254 113
재생가죽	㎡	32312 100	정밀저울(감도 5cmg 미만)	개	38549 300
재생고무	㎡	35592 200	저울부품	※	38254 119
재생 공기타이어	본	35512 100	저항용접기	개	38315 112
재생목재	㎡	33115 112	적산전력제	대	38547 111
재생섬유	※	32114 112	적철광	㎡	23010 111
재생섬유 방적사	㎡	32114 212	적층 단열유리	※	36202 112
재생섬유 및 섬유소의 가소성 유도제	※	35141 112	적층유리	상자	36202 212
재생삼유소, 섬유소의 화학유도체 및 섬유제 1차제품	※	35141 113	적하기	대	38293 116
재생섬유 직물	천㎡	32123 511	경위의(토지 측량용)	대	38541 111
재생섬유과일 및 셔닐직물	천㎡	32123 512	전구(백열전구)	천개	38392 111
재생프라스틱원료(분상, 모모아)	㎡	35601 218	전구용 유리	※	36203 213
재털이(금속제)	개	38142 119	전구 제조기	대	38248 115
재털이(유리제품)	※	36205 113	전기 강판		
책(손으로 움직이는 기중기)	대	38293 112	열연 전기강판	㎡	37121 411
책(소형:라이터 교환용)	개	38119 215	냉연 전기강판	㎡	37122 411
책카드 장치용 기계	※	38242 613	전기교통 통제장비-도로, 철도, 수로, 항구 또는 공항	대	38324 112
정기	개	38220 111	전기경보장치	대	38324 113
			전기기관차(철도용)	대	38421 112
			전기기타	대	39026 112

(스)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전기난방 및 토열가열장치	대	38334 212	전기 충전차량(철도장비)	대	38429 111
전기냉장고	대	38331 111	전기 커피포트	대	38334 213
전기뇌관	천개	35292 118	전기 프라이팬	대	38334 313
전기다리미	개	38334 913	전기 탕비기(물 끓이는 기계)	대	38334 211
전기담요 및 히팅패드	개	38334 912	전기풍로	대	38334 214
전기도관용 조인트 및 부착물(비설연)	※	38396 212	전기화덕(가정용)	개	38334 111
전기도관, 조인트(절연금속제)	※	38396 211	전기후라이팬	개	38334 314
전기도금 석도강판	※	37192 111	전단기(금속)	개	38232 118
전기도금 아연도 강판	※	37192 211	전동기(교류)	대	38311 212
전기동	※	37211 114	전동기(직류)	대	38311 211
전기 또는 전자시계(손목시계)	천개	38532 111	전동기 스타터	대	38316 111
전기 또는 전자시계(벽시계)	천개	38532 112	전동식 타자기(자동식타자기제외)	대	38255 111
전기레인지 및 오븐	개	38334 111	전동차	대	38421 114
전기로	대	38299 311	전력선 및 케이블	※	38391 112
전기믹서	개	38339 114	전력조절기, 승압기, 리액터및 유사장치	※	38312 113
전기밥솥	개	38334 311	전력회로 차단기(교압)	대	38313 113
전기벨	※	38399 211	전력회로 차단기(저압)	대	38313 114
전기보온밥통	개	38334 312	전분(녹말가루)	※	31225 111
전기세탁기(가정용)	대	38333 111	전분박	※	31225 119
전기세탁기 부품	※	38333 119	전분 야채가루	kg	31161 215
전기소리 또는 시각 신호장치, 경보장치	대	38324 113	전분제조 찌꺼기	※	31225 121
전기식 재봉기	대	38295 113	전신장치(텔레타이프)	대	38322 213
전기 연결장치	※	38396 300	전자계산기(휴대용)	대	38252 111
전기 열저항기(전기풍로)	대	38334 214	전자계산기(탁상용)	대	38252 112
전기요법(치료)장치	대	38325 212	전자관(CRT)	대	
전기 용접강판	※	37123 112	흑백TV브라운관	천개	38341 111
전기 용접가 부품	※	38315 119	컬러TV브라운관	천개	38341 112
전기자기 브레이크, 크러치, 연제기 및 관련장비	대	38314 113	표시판	천개	38341 113
전기장판	개	38334 912	방전관	천개	38341 114
전기조리기기(전기렌지및오븐제외)	대	38334 911	전자로(가정용)	개	38334 112
전기 진단장치	대	38325 211	전자 및 양자현미경, 회절장칩(광학현미경 제외)	대	38527 300
			전자 및 전기회로 시험, 검사	※	38547 114
			분석기구 또는 장치		

(스)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전자복사기	대	38525 112	무선전화기(코드레스)	대	38322 112
전자레인지(전기렌지)-상업용	대	38265 115	자동차용 전화기(카폰)	대	38322 113
전자레인지 및 오븐(가정용)	개	38334 112	전화대(공중용)	※	38122 114
전자식 전자교환기	회선	38322 115	전화당 및 시험	kg	31189 100
전자 건반악기	대	39026 111	전해연마업(금속)	※	38149 100
전자 현악기	대	39026 112	전해조	대	38244 913
기타 전자악기	※	39026 119	절단기	※	38115 114
전자·아코디온	대	39026 111	절목상자	※	33123 111 ~ 119
전자오락기계(테이블용 게임 장비)	대	39044 100	절삭구(금속 공작용)	개	38236 111
전자울겐	대	39026 111	절삭구(나무 공작용)	개	38236 112
전자자(보온밥통)	개	38334 313	절삭구(기타 재료 공작용)	※	38236 119
전자측정기	※	38547 112	절삭계	※	35402 114
전자코일	천개	38345 112	절연지	※	34119 114
전자탐지, 검사, 확인 및 추적 조직(레이다 제외)	※	38329 119	절지기	대	38247 312
전자피아노	대	39026 111	집적기	※	35593 113
전자 현악기	대	39026 112	집토	※	29019 111
전주(콘크리트)	본	36935 212	집판암	※	29011 113
전지기(전지용가위)	※	38114 119	집화코일, 마그네트, 디스트리뷰터, 저압조절기 및 기타 집화장비	※	38816 113
전축 및 소리발생장비			집시(도금 귀금속계)	※	39010 612
소형 전축(뮤직센터 포함)	대	38321 311	집시 세척기(가정용)	대	38339 112
전축용 데크	대	38321 312	집시 세척기(상업용)	대	38265 114
레코드플레이어(턴 테이블)	대	38321 313	집착계	※	35291 111 ~ 114
뮤직센터	대	38321 311	집착섬유테이프	※	32194 118
스피커시스템	대	38321 314	정기 간행물	천권	34212 100
튜너(전축용)	대	38321 315	정당	※	31182 100
전축용 앰프셋트	대	38321 116	정돈모	kg	39093 111
이퀄라이저	대	38321 117	정련동	※	37211 114
컴팩트디스크플레이어	대	38321 118	정류기 및 정류장치	대	38319 100
전화교환기(자동식)	회선	38322 114	정맥기	대	38243 212
전화교환기(전자식)	회선	38322 115	정미기	대	38243 211
전화기셋트(다이얼, 버튼식)	대	38322 111	정밀 저울(감상저울)	개	38549 300
			정밀 측정기(기계공)	※	38239 300

(스)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정방기 (섬유용)	대	38242 214	조각제품	※	39052 300
정복 셔츠	매	32222 113	조개류 통조림 (굴통조림 제외)	kg	31141 115
정소면	kg	32112 112	조개탄	※	35401 112
정수기 (가정용)	대	38269 118	조동	※	37211 112
정수기 (상수도용)	대	38299 913	조립금속의 건물	※	38135 111
정원가구 (금속제)	※	38121 116	조면	kg	32112 111
정인모 (가공된 것)	kg	39055 114	조면기	대	38242 113
정제 가금지방	kg	31119 213	조명장치 (금속제)	※	38122 112
정제 소금	kg	31212 300	조발기, 전기모터 자장	개	38335 112
정제 울그리스 (라노린) 및 울	kg	31151 212	조방기	대	38242 112
그리스 추출제품			조사기	대	38243 112
정제 세탁pul프	※	34111 100	조색제	kg	35296 214
정착제	kg	35296 212	조유 (=부분 정제원유)	ℓ	35300 100
정화제 (술)	kg	35299 132	조제 건조제	ℓ	35215 111
정제 고래기름 및 경랍	※	31151 114	조제겨자	kg	31213 118
젓꼭지	※	35593 114	조제 고무 가속제	※	35299 137
제강용 선철	※	37111 111	조제 광택제, 드레싱	※	35299 138
제는	㎏	35123 113	조제금속 탄화물	※	35129 216
제라틴	※	35291 111	조제 라스터	※	35132 315
제본업 (임가공)	※	34231 106	조제법랑 유약	※	35132 314
제분기	대	38243 215	조제 무기, 유기안료	※	35132 311 ~ 312
제분피꺼기	※	31161 312	조제 왁스	※	35295 115
제빙기	대	38263 112	조제 유백제	※	35132 313
제빵용 기계	대	38243 911	조준의	대	38541 114
제빵용 이스트	kg	31228 113	조판 및 연판	※	34232 111
제습기	대	38332 200	조포 (광목, 내광목)	천㎡	32121 112
제습기 (새겨를)	대	38220 415	조화 (인조꽃)	※	39054 100
제재목	㎏	33111 111	종 (약기)	※	39025 119
		~ 999	종광	천개	38242 622
제초기	대	38220 417	중력기름	ℓ	31152 116
제초제	※	35160 113	(비철금속의) 종 및 벨	※	38199 919
제표 카드용지	※	34113 118	다포린	※	32194 212
젯트유	ℓ	35300 211	기타 도포 또는 삼투직물	※	32194 219
조각용 기계	대	38248 315	종이 끈	※	32171 113
			종이도포 및 칠책기	대	38246 116

(스)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종이 로프	kg	32171 213	주식 채권 및 유사권리 증서	※	34219 612
종이 부스러기	※	34199 200	주유소용 측정 및 분배펌프	대	38291 112
종이사	kg	32119 300	주전자 (알루미늄계)	천개	38142 113
종이상자 제조기	대	38246 217	주전자 (스텐레스계)	천개	38142 213
종이시험용기기	대	38543 113	주정	ℓ	31311 100
종이 재단기	대	38246 211	주조기	대	38233 111
종이주형제품 제조기	대	38246 221	주철관		
종이컵	천개	34124 111	직관	※	37131 111
종이포대 제조기	대	38246 216	원심주조 회수철관	※	37131 112
종 권직기	대	38242 414	원심구상흑연 주철관	※	37131 113
외수차 (철도차량)	량	38422 112	사형 주철관	※	37131 114
주강, 주입강 (보통강)	※	37113 211	이형관	※	37131 121
주강, 주입강 (고탄소강)	※	37113 212	주덕 및 상업지구 환경감시용 용계기	※	38548 112
주강, 주입강 (합금강)	※	37113 213	주형 (금형)	※	38237 111
주물					~ 119
회주물	※	37132 100	주형 방출유	ℓ	35402 116
가단주물	※	37134 111	주형 제품	※	36993 113
구상흑연주물	※	37134 112	줄칼	천개	38113 115
합금주물	※	37133 112	중계조 (30kg/m이상)	※	37121 711
주물용 선철	※	37111 112	중석		
주물 집합제	kg	35299 122	흑중석	※	23021 111
주방용 칼	천개	38112 111	회중석	※	23021 112
주방용품 (유리제품)	※	36206 112	기타 중석광	※	23021 119
주사위	※	39099 900	(미가공) 중석 및 중석합금	※	37219 311
주석관 및 관부착물	kg	37239 413	중석봉, 형강, 선	※	37239 511
주석광 (산화주석광)	※	23029 912	중석 정련 잔여물	※	37229 131
주석 금속 제조제품	※	37290 600	중석 제조제품	※	37290 700
주석 (미가공)	※	37219 211	중석관, 미 및 분	※	37239 512
주석봉, 형강 및 선	kg	37239 411	중유	ℓ	35300 217
주석계련 잔여물	kg	37229 121	중조	kg	35122 115
주석관 미	kg	37239 412	중질지	※	34113 113
주석관 분	kg	37239 412	중탄산 나트륨 (중조)	※	35122 115
주석산	※	35119 116	중판 (보통강)	※	37121 321
주석관 편	kg	37239 412	중판 (고탄소강)	※	37121 322
주소 자동인쇄기	대	38253 112			

(스)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중판 (합금강)	※	37121 323	인조섬유직물 (견직물 포함)	천㎡	32123 111 ~ 600
중화기 (重火器)	※	38299 919	아직물	천㎡	32124 111 ~ 129
중형중용차	대	38431 112	세목직물	※	32125 100
중형트럭	대	38431 312	기타 광목직물	※	32129 111 ~ 119
슈스	센	31341 113	고무직물	※	35592 115
취약	※	35160 114	직물기저 리놀륨 및 유사경표 면 마루덮개	※	32194 211
취널	※	38196 119	직물계 시계줄	※	32229 219
중강계 및 감도계	㎏	35296 213	직물운동화 (감피가 직물인것)	천족	35591 113
증기기관	대	38212 100	직물계 장갑	조	32228 111
증기발생 보일러	대	38134 111	직물 포대	개	32141 100
증기 터빈	대	38212 200	직접 염료	※	35131 111
증발 및 건조장치	대	38244 921	진 (Jean)	천㎡	32121 112
증폭기			진 (과실 증류주)	센	31315 113
방송용 증폭기 (P.A 앰프)	천개	38321 912	진공청소기 (가정용)	대	38339 111
음성 증폭기	천개	38349 112	진공청소기 (산업용)	대	38269 116
지갑	개	32333 200	진공펌프	대	38291 117
지게차	대	38294 114	진단용 기구 (눈검사기구 제외)	※	38512 111
지그 및 부착물	※	38239 900	진동 검사기	개	38543 214
지도	※	34219 200	진로차	대	38431 400
지방산 및 지방물질 처리제거기	※	31151 500	질산	※	35121 213
지석	※	29099 915	질산 암모늄 (질안)	※	35151 113
지구개	천개	39091 125	질산 칼륨	※	35151 116
지진계	※	38544 100	짐프사	㎏	32119 113
지팡이	천개	39092 200	짐핑기	대	38242 514
지퍼 (파스너)	㎞	39095 100	집적 및 활착용 기계	대	38247 313
지폐용지	※	34113 116	집적회로 (전자)	천개	38342 113
지프 (Jeep)	대	38431 114	초고밀도 집적회로	천개	38342 114
직판	※	37131 111	집진장치	대	38244 924
직물			징 (국악기)	※	39027 100
면직물	천㎡	32121 111 ~ 200	짚차	대	38431 114
모직물	천㎡	32122 111 ~ 212	짚틀	대	38244 922
			상량 공기조절기	대	38264 112

(츠)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차량 냉동장비	대	38263 113	착화탄	천개	35117 117
차량 브레이크 검사용 시험대	대	38543 215	찬장	개	33201 121
차량 세차기	대	38269 119	참기름	ℓ	31153 111
차량용 내장가구	※	33202 300	참치통조림 (다랑어)	kg	31141 113
차량용 윈드스크린 와이퍼 및 기타 전기장치	※	38399 212	창간 (도금 귀금속 제품)	※	39010 612
차량용 전기 조명 및 신호장 비	※	38392 219	창연상	※	23029 913
차물 (철도 차량용)	개	38423 300	창투명지	※	34191 113
차물 (자동차용)	개	38432 921	창틀	※	38131 112
차 및 커피 가공기	대	38243 923	창호지	천매	34116 111
차용지 원거	※	34119 114	채색 또는 인쇄지	※	34193 114
차아염소산 칼슘	※	35121 514	채소 통조림	※	31131 112
차액가스 에센스 또는 농축물	※	31227 215	채종유 (유채기름, 비식용)	ℓ	31152 117
차체			채종유 (식용)	ℓ	31153 115
승용차 차체	대	38431 611	채단기계	대	38241 112
버스 차체	대	38431 612	채상 (목재)	개	33201 112
트럭,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 일러 차체	대	38431 613	채상 (금속제)	천개	38121 112
기타 차체	※	38431 619	채상보	※	32149 900
차체부품	※	38432 600	책, 재봉기	대	38247 311
착륙기어	개	38490 900	처리우유	※	31124 100
착색도금 아연도 강판	※	37192 213	칙		
착색제			선반칙	※	38231 139
연산화물	※	35132 111	밀링칙	※	38231 139
광물성 블랙	※	35132 112	드릴칙	※	38231 139
색토	※	35132 113	천공기 (광산용)	대	38241 111
티타늄 화이트	※	35132 114	천공기	대	38246 214
프러시안 블루 (감청)	※	35132 115	천공편치	개	38113 112
울트라마린 (군청)	※	35132 116	천막 (방수포)	매	32143 114
아연화	※	35132 117	천문기구	대	38527 112
기타 무기 착색제	※	35132 119	천문, 수로 및 지구 물리학기구	※	38544 100
착암기	대	38234 114	천인갑	※	35131 118
착유기 (우유채취용)	대	38220 418	천연명반	※	29020 916
착유기 (동·식물성기름추출용)	대	38243 922	천연빙정석 (형석에 포함)	※	29020 912
			천연 백금금속 및 백금광	※	23023 113
			천연 봉산염 광물 (미가공)	※	29020 311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천연색 TV	대	38321 112	망 (철망)	ㄱ	38196 111
천연 슬레이트 (제품은 36993 111 분류)	※	29011 113	선 스프링	ㄱ	38196 112
천연 역청 및 광돌락스	※	29099 913	와이어 로우프	ㄱ	38196 113
천연 연마제	ㄱ	29099 100	쇠못 (철정)	ㄱ	38196 114
천연 질산나트륨	ㄱ	29020 111	기타비금속의 선제품 (새장, 뒤통 등)	※	38196 119
천연 탄산나트륨 (미가공)	※	29020 313	철선조립품 (석쇠, 뒤통 등)	※	38192 215
천연황산나트륨 (미가공)	※	29020 312	철계 갈뚝	ㄱ	38135 112
천연 황산바륨 (중정석) 및 천 연탄산바륨	※	29020 911	철계 교량	ㄱ	38135 112
천일염	ㄱ	29040 100	철계 수문	ㄱ	38131 114
철강로프 (와이어로프)	ㄱ	37124 315	철계우산	천개	39092 111
철강로프	ㄱ	38196 113	철조망	ㄱ	38196 115
철강분	ㄱ	37119 112	철탑	ㄱ	38135 112
철강			철관 절단기	대	38234 123
적철광	ㄱ	23010 111	철판제품	※	38133 100
자철광	ㄱ	23010 112	청소기 (카펫트)	대	38269 112
갈철광	ㄱ	23010 113	청소차	대	38431 400
기타철광	ㄱ	23010 119	청정제질 및 선별용 기계	대	38220 213
철근			청주	ㄷ	31322 100
이형철근	ㄱ	37121 131	청주 (합성 청주)	ㄷ	31319 211
원형철근	ㄱ	37121 132	채운제	개	38544 212
철도케도 및 부착물	※	38139 100	체인 (연계)	ㄱ	38199 211
철도차량부품	※	38423 919	체인톱	천개	38116 122
철물			제조 장비	※	39031 111
건물용 철물	※	38117 111	초고밀도집적 회로 (VLSI)	천개	38342 115
가구용 철물	※	38117 112	초산 (Acetic Acid)	ㄱ	35112 124
차량용 철물	※	38117 113	초산메틸 에틸, 부틸	ㄱ	35112 125
가방부착용 철물	※	38117 114	초유복약	ㄱ	35292 114
기타 철물	※	38117 119	초석	ㄱ	29020 917
각종 부착물 (압단제품)	※	38142 314	초안복약	ㄱ	35292 113
철 산화물	※	29020 411	초인종	※	38199 915
철선 (올타리)	ㄱ	37124 311	초계기	대	38246 115
철선제품			초코렛과자	ㄱ	31173 200
			총 (경기용, 수렵용)	※	38298 200

(*)~(㉿)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추출기 및 프레스기	대	38115 112	침착지	㉿	34193 113
축성형기	대	38235 117	침보드	㉿	33115 112
축음기 관	천매	38326 111	카드 (크리스마스용 등)	※	34219 411
축전기 (콘덴사)			놀이용 카드 (포카, 화투등)	※	34219 900
고압 축전기 (일반산업용)	대	38319 211	카드기	대	38242 115
저압 축전기 (")	대	38319 212	카드 조립기	※	38242 615
가변 축전기 (전자부품용)	천개	38343 112	카라멜	㉿	31173 311
고정 축전기 (전자부품용)	천개	38343 111	카레가루	㉿	31214 114
축전지	개	38393 111	카렌저기	대	38244 917
축계용 계통	※	39049 100	카리함유 조광물	㉿	29020 113
준장	㉿	31211 114	카메라 (일반 목적용)	대	38523 111
중력 검사기	개	38542 214	카메라 (VTR)	대	38523 112
취소	㉿	35121 112	카메라 (특수 목적용)	㉿	38523 119
취수연	㉿	23026 100	카메라부품	※	38523 121
축량용 평판, 맨드레인	개	38541 118	카바 (느슨한 가구카바: 자동차 시트카바, 쿠션카바 등)	※	32142 114
축면기 (비전기식)	※	38542 113	카본 브러쉬	※	38399 111
축면봉 (비전기식)	※	38542 113	카본 분백	㉿	35294 100
차과 드릴엔진	※	38514 114	카본 전극봉	※	38399 112
차과비품	※	38514 113	카본 제조과정 부스러기	※	38399 121
차과용 수도구	※	38514 111	카세인 섬유 (재생 장섬유)	㉿	35142 114
차분	㉿	35234 112	카세인 섬유 (재생 단섬유)	㉿	35142 314
차솔	천개	39093 117	카세인 섬유 (재생 장섬유 토 우)	㉿	35142 414
차약	㉿	35234 111	카스테라	※	31171 119
차오라이트 (형식에 포함)	㉿	29020 912	카시미론사	㉿	32114 211
차즈	㉿	31121 200	카드리지 조작 리미터	개	38119 221
차즈 제조기	대	38243 114	카세트 테이프	천매	38326 112
칠기	※	39051 100	비디오 테이프	천매	38326 113
침강탄산 마그네슘	㉿	35121 414	카세트	㉿	32161 100
침강탄산 칼슘	㉿	35121 415	카폰 (자동차용 전화기)	대	38322 113
침대 (금속제)	대	38121 117	카프로락탐	㉿	35113 126
침대 (목재)	개	33201 122	칸락이 (금속제)	※	38122 111
침목 (목재)	본	33119 114	칼		
침목 (콘크리트)	본	36935 213			
침전동	㉿	37211 113			

(7)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식탁용 칼	※	38111 100	컴퓨터		
주방용 칼	천개	38112 111	중앙자료처리장치 (cpu)	대	38251 111
포켓용 칼	천개	38112 112	보조기억장치	대	38251 112
군용 칼 (칼집 포함)	※	38112 119	입출력장치	대	38251 113
줄칼	천개	38113 115	터미널 (단말장치)	대	38251 114
유리칼	천개	38113 116	전송장치	대	38251 115
칼 (귀석제품)	※	39010 219	컴퓨터부속품	※	38251 119
칼 (귀금속 또는 도금한 것)	※	39010 511	컴퓨터테이프	개	38256 111
칼날 (문방구용 칼날포함)	※	38112 113	컴퓨터디스크	개	38256 112
칼톱	※	35121 124	컴퓨터 칩	개	38256 113
칼습	※	35121 125	컴퓨터 기타 프로그램매체	※	38256 119
칼사프트	개	38297 114	컴퓨터용수상기 (모니터)	대	38321 114
카브레타 (기화기)	대	38299 511	킷아웃 스위치	개	38313 114
캐비넷 (라인코트용 천)	천개	32121 112	케미슈즈	※	35607 111
캐비넷 (금속제)	천개	38121 111	캐주얼화 (남·여용)	족	32401 113
캐비넷 (목 제)	개	33201 123	케이블		
캐디류 (설당 과자)	kg	31173 311	철강 케이블	※	37129 100
캐버스	대	32121 113	동. 케이블	※	37290 111
캐버스 (회화용)	※	32194 113	알루미늄 케이블	※	37290 211
캠브릭 (면직물)	천개	32121 112	통신선 및 케이블	※	38391 111
캠핑가구	※	38121 115	천력선 및 케이블	※	38391 112
캠핑용품	※	32143 112	마그네트선 및 케이블	※	38391 113
커피	※	32145 111	기타의 절연선 및 케이블	※	38391 119
커피 (카페인 제거한)	kg	31227 111	케이블선	G/T	38412 300
커피 (분말)	kg	31227 113	케이스		
커피 엑스, 에센스 또는 농축물	※	31227 114	가죽케이스 (휴대용)	개	32334 111
커피 여과로	※	32149 919	기타 가죽케이스	※	32334 119
커피 크라머	kg	31229 312	목재기구케이스	※	33124 112
커피포트 (알루미늄제비전기식)	천개	38142 116	금속제케이스	※	38122 113
커피포트 (스테인레스제비전기식)	천개	38142 216	프라스틱케이스	※	35604 113
커피 포트 (전기식)	대	38334 213	시제케이스 (휴대용)	천개	38533 112
커피 포트 (도금 귀금속제품)	※	39010 612	시제케이스 (큰시제용)	천개	38533 113
컬러 레이크	※	35131 131	타이어케이스	천개	35511 411
			레이크	※	31171 113
			캐잡	kg	31213 114
			코드레스폰 (무선전화기)	대	38322 112
			코빙기	대	38242 116

(7)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코랄트 광석	%	23029 113	콘크리트 관석	천매	36934 114
코일 (나선형) 스프링	%	38199 111	콘테이너 (수출상품의 보관 및 운반용)	대	38191 212
코일	천개	38345 112	로드레일 및 유사콘테이너 (차량)	대	38432 500
코코아 가공품	※	31173 100	콜다	센	31341 112
코코스			콜라원액	센	31341 211
석유코코스	%	35300 412	콜리본 (오니본)	%	23029 114
석탄코코스	%	35409 211	콜렛	※	32225 111
코코스르 (운반, 분리, 수집의 복합제)	대	38244 300	콜크 및 콜크제품	※	33191 100
코트 (주문복, 남자용)	착	32211 112	콤	※	38242 618
코트 (기성복, 남자용)	착	32221 112	콤바인	대	38220 315
코트 (마중복, 여자용)	착	32212 112	컴팩트디스크 (CD)	천매	38326 112
코트 (기성복, 여자용)	착	32223 112	컴팩트디스크플레이어	대	38321 318
코트걸이 (세워놓는 금속제)	※	38122 119	컴퓨터 (컴퓨터 참조)	대	38251 111 119
코트 및 양복 (소아용, 기성복)	착	32224 112	콩가루	kg	31161 213
콘덴사 (가변 축전기) - 전자기기용	천개	38343 112	콩기름 (식용)	kg	31153 114
콘덴사 (고정 축전기) - 전자기기용	천개	38343 111	콩기름 (비식용)	kg	31152 111
콘베이어	대	38293 124	콩깻묵	%	31153 122
콘베이어벨트 (가죽 및 직물제)	※	32331 111	쿠키	kg	31172 111
콘베이어벨트 (고무제품)	※	35592 114	큐	※	39039 411
콘베이어벨트 (프라스틱 제품)	%	35601 116	큐레스트	※	39039 411
콘서티나	개	39022 113	큐담	※	39039 411
콘센트	천개	38396 112	큐페드	※	39039 411
콘크리트 관	본	36939 111	크라리넷	※	39024 111
콘크리트 기와	천매	36934 111	크라프트지	%	34114 100
콘크리트 믹서	대	38241 323	크라프트지 포대	천매	34122 111
콘크리트 선 (船)	%	38419 212	크랙카	kg	31172 111
콘크리트 벽돌	천매	36934 112	크랭크 및 크랭크 샤프트	개	38297 113
콘크리트 블록	천매	36934 113	컬러치	개	38297 117
콘크리트 장식제품	※	36939 119	크베오스트유	%	35116 114
콘크리트 전주	본	36935 212	크레용	※	39091 115
콘크리트 칩목	본	36935 213	크레인 (건설용 장비)	대	38241 31
콘크리트 파일	본	36935 214	크레인 (재료취급용)	대	38293 117
			크레졸	%	35116 113

(㉿)~(㉽)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크레핑기	대	38246 117	기타 공기 타이어	※	35511 119
크랩프	천개	38113 118	타이어 부품		
크리머 (키피크리머)	kg	31279 312	타이어 케이스	천개	35511 411
크실렌			호환성 타이어 바닥	※	35511 412
혼합크실렌	℥	35111 123	기타 타이어 부품	※	35511 419
올소크실렌	℥	35111 124	타이어 코드사		
파라크실렌	℥	35111 125	면 타이어 코드사	kg	32193 111
크림팡	※	31171 119	인조섬유 타이어 코드사	kg	32193 112
클림블 (오니블)	℥	23029 114	타이프 라이터용 및 유사리본	※	39091 17
클로로 메탄 (크로로 메틸)	℥	35112 113	타일	천개	36913 111
클로로 불화메탄	kg	35123 116	타임크록 및 기타 시간 경과	※	38531 119
클로로 설펜산	℥	35121 215	를 기록하는 장치		
클로로 테트라 사이크린	※	35223 113	타자기		
클로로 페닐메탄	℥	35112 116	전동식 타자기	대	38255 111
크로뮴광석	℥	23029 111	표준 비전기식 타자기	대	38255 113
크롬 도금 철강판	℥	37192 312	표준사무용 타자기	대	38255 112
크롬철	℥	37112 113	특수 타자기	대	38255 115
크리프톤	kg	35123 113	휴대용 타자기	대	38255 114
크림 (화장품)	kg	35235 112	타자기 부품	※	38255 119
크림 분리기	대	38243 111	타코메터 (항공기용 제외)	개	38546 112
큰시계용 케이스 (부품포함)	천개	38533 113	타피오카 및 사고	℥	31225 113
키실렌 (크실렌 참조)	℥	35111 123	탁상시계 (일반시계)	천개	38531 113
		~ 125	탁상시계 (전기, 전자)	천개	38532 113
타르메카담	※	35403 112	탁주	kg	31321 111
타르 침착 루핑펠트	※	35403 113	탄닌산 및 유도체	※	35133 114
타악기			탄산 나트륨	℥	35122 113
드럼 및 유사악기	※	39025 111	탄산 아연광	℥	23025 200
기타의 타악기	※	39025 119	탄산지	℥	34119 114
타악기 부품	※	39025 121	탄산 카리 (탄산칼륨)	℥	35122 114
타힐 (직접 직조한것)	kg	32129 114	탄산칼슘	℥	35121 416
타이 및 유사 남자용 속도리	개	32229 211	탄성 편직물	※	32159 100
타이어			탄탈륨 및 탄탈륨 합금	kg	37229 214
자동차용 공기 타이어	천본	35511 111	탄화규소	℥	35121 518
모터 싸이클용 타이어	천본	35511 112	탄화수소 (코화비환식)	℥	35111 113
자전거용 타이어	천본	35511 113	탈루기	대	38220 211

(E)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탈수기	대	38333 112	테트라에틸렌	ㄱ	35119 312
탈수장치	개	38220 412	벤트	개	32143 111
탈지분유	ㄱ	31122 200	텔레비전 방송국장치-시각	대	38323 112
탐색선	ㄱ	38412 300	텔레비전 수상기-흑백	대	38321 111
탐조등	※	38395 113	텔레비전 수상기-천연색	대	38321 112
탈지강	ㄱ	31153 123	텔레비전 수상기-복합제	대	38321 113
태양계	※	38544 100	텔레비전 수상기-프로젝션	대	38321 114
태핑기 (금속철삭)	대	38231 124	(45인치 이상)		
태핑기 (수지식 동력공구)	대	38234 112	텔레페러 및 푸니쿨라	대	38293 114
태핑 및 나사공구	천개	38113 123	텔레프린터 (유선통신)	대	38322 214
택시	대	38431 111	텔레타이프 (유선통신)	대	38322 213
택시미터	대	38546 111	텔레폰 레코더 (유선통신)	대	38322 212
텔로우 오일	ㄱ	31151 211	모사전송기기 (팩시밀리)	대	38322 215
템핑기	대	38241 318	토기제품	※	36101 100
탱크 및 유사 금속용기	개	38136 211	토름 및 회토류광	※	23029 212
터브 펌프	※	35117 111	토마스 및 베세머 전로	대	38299 215
터보 제트	대	38490 900	토마스 슬래그	※	37119 119
터보-팬기관-랭제트	대	38490 900	토상흑연	ㄱ	29091 112
터보-프로펠라 및 터보-사	대	38490 900	토사석 가공처리 서비스	※	36999 200
프트 기관			토오치 램프	개	38119 213
터빈기관의 부품	※	38490 900	토탄 (토탄 및 토탄연탄)	ㄱ	29099 911
팅스벤 제조제품	※	37290 700	투신, 미생물 배양물	※	35221 112
팅스벤 철	ㄱ	37112 118	틀루엔	ㄱ	35111 122
테레프탈산 (T.P.A)	ㄱ	35113 124	틀오일	※	35117 116
테리직물	천ㄱ	32129 111	톱		
레이블 (금속제)	※	38121 118	나무용 톱	천개	38116 111
테이프			금속용 톱	천개	38116 112
녹음 테이프 (카세트)	ㄱ	38326 112	석재용 톱	천개	38116 113
비디오 테이프	ㄱ	38326 113	시계 및 보석공용 톱	천개	38116 114
직물계 테이프	※	32125 100	체인 톱	천개	38116 122
약용 테이프 (반창고등)	※	38519 300	기계 톱 (금속철삭)	대	38231 127
접착용 테이프 (사무용)	※	39091 900	동력식 금속 절단용 톱	대	38234 121
비닐테이프	※	35114 142	기계 톱 (목공기계)	대	38235 112
색종이테이프	※	34193 114			

(ㄷ)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톱 및 절단기계(비금속 광물 공작용)	※	38248 311	기타 공기타이어 류우브	※	35511 219
톱날	천개	38116 121	류우브 제조기	대	38245 114
톱			류퍼	※	29031 100
액체용 톱(목재)	개	33121 111	트라이 앵글	※	39025 119
고체용 톱(목재)	개	33121 112	트랙 장비		
알 벗는 톱(금속재)	※	38142 119	킵플	※	39039 100
물톱(금속재)	※	38142 119	장대	※	39039 100
톱 부품	※	33121 113	허들 및 기타 트랙장비	※	39039 100
톱신선 및 케이블	※	38391 111	트랙터(농업용)	대	38220 312
톱계장비(페달 및 배바)	※	38432 914	트랙터(트럭트랙터-자동차)	대	38431 500
톱 제조기	대	38235 211	트랙터(건설 및 광산용 기계)	대	38241 411
톱조립			트랙터 및 농업용기계장비부품	※	38220 900
조개류 톱조립(굴 제외)	㎏	31141 115	트랙터 부품(건설 및 광산용 트랙터)	※	38241 419
쇠고기, 돼지고기 톱조립	㎏	31111 100	트랜스밋톤 소프트	개	38297 112
과실 톱조립	※	31131 111	트랜스포머(변성기)	천개	38345 111
굴 톱조립	㎏	31141 114	트랜지스터(TR)	천개	38342 111
야채 톱조립(채소톱조립)	※	31131 112	트랜지스터 라디오	대	38321 211
기타 과일 및 야채톱조립	※	31131 119	트럭		
콩차 톱조립	㎏	31141 111	소형트럭(1ton이하)	대	38431 311
고등어 톱조립	㎏	31141 112	중형트럭(1ton초과~5ton미만)	대	38431 312
참치 톱조립	㎏	31141 113	대형트럭(5ton이상)	대	38431 313
기타 해산물 톱조립	※	31141 119	특수차	대	38431 400
톱조립판(식판을 말함)	천개	38191 111	트럭트랙터	대	38431 500
투사코	※	32194 112	트리-트랙터 및 웨곤	대	38241 324
플 레이스 제조기	대	38242 512	트럭,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차체	대	38431 613
튜너			프레트홈 트랙	대	38294 113
천연색 TV튜너	천개	38321 116	트럼본	※	39024 112
흑백 TV튜너	천개	38321 117	트럼펫	※	39024 112
AM, FM 튜너	천개	38321 216	트레스	※	29031 100
전속용 튜너	대	38321 315	트롤리버스(철도장비)	대	38429 111
류우브			트리클로로 디메탄	※	35112 116
자동차용 류우브	천본	35511 211	트리클로로 에틸렌	※	35112 114
모터사이클용 류우브	천본	35511 212	특고압 액자	천개	36104 113
자전거용 류우브	천본	35511 213			

(E)~(G)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특수 박엽지	%	34119 114	파이어 보드	%	34115 111
특수 인쇄기	대	38247 117	파이어 상자	※	34125 100
특수자동차	대	38431 400	파이프자동 조절용 금속발브	개	38198 212
특수 재료 신발(실내화제외)	※	32403 119	파이프 컷터(절단기)	천개	38113 113
특수 카메라	※	38523 119	파일(콘크리트)	본	36935 214
TV			파치먼트 손질가죽	%	32311 312
흑백TV	대	38321 111	판게임장비	※	39044 200
천연색TV	대	38321 112	판, 띠, 필름, 박(중합, 공중합 제품)	※	35601 ~ 35609
복합TV(흑백및 천연색)	대	38321 113	판석(타일제품)	※	36913 112
프로젝션 칼라TV	대	38321 114	판석(콘크리트)	천대	36934 114
TV라디오 및 기타 TV	대	38321 113	판석(가공)	%	36994 114
복합제			판유리	상자	36201 113 ~ 114
TV사시-조립용 키트	개	38321 119	판유리 제조기	대	38248 111
TV카메라	대	38323 115	판지 상자	※	34123 100
T-셔츠(편직한것, 남자용)	천대	32153 100	판지 시험용기기	대	38543 113
T-셔츠(편직한것, 여자용)	천대	32153 200	판토미터	개	38541 116
T-셔츠(편직한것, 유아용)	천대	32153 300	팔찌(개인 장식품)	※	39010 211
T-셔츠(봉제한것, 마춤부)	대	32219 112	팜프렛	※	34213 112
T-셔츠(봉제, 남자기성부)	대	32222 112	팩시밀리(모사전송기기)	대	38322 215
T-셔츠(봉제, 여자기성부)	대	32223 114	팩티스	※	35115 200
T/C지	천개	32123 311	팽창 검사기	개	38543 214
T.D.I	%	35113 113	팽창 시멘트	%	36921 115
티타늄	%	23029 915	퍼스날 컴퓨터	대	38251 100
티타늄 철	%	37112 117	펀치(천공)-수동	대	38113 112
티타늄 화이트	%	35132 114	펀치기-기계식(사무용)	대	38259 113
티포트(도금, 귀금속 제품)	※	39010 612	펀칭기(금속성형)	대	38232 121
파라크실렌	%	35111 125	필스 제트	대	38490 900
파쇄기 및 마쇄기(식품용)	대	38115 111	필프		
마쇄기(전기용)	대	38339 116	기계필프(쇄목필프, 정제 쇄목필프)	%	34111 100
파쇄기(광산장비)	대	38241 113	화학 및 반화학 필프	%	34111 211
파쇄기(종이 산업용)	대	38246 111	황산 및 소다필프	%	34111 212
파스너(지퍼)	%	39095 100	용해필프	%	34111 213
파스텔	※	39091 115	아황산필프	%	34111 214
파아티클 보오드	%	33115 112			
파이	※	31171 119			

(표)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식품성 섬유 펌프	※	34111 300	인조섬유연사	㎏	32117 213
팔프제조용 우드칩	※	33119 111	기타 편물사	※	32117 219
펌프			편지 분류기	대	38259 112
공업용 펌프	대	38291 111	편지지	백매	34194 113
주유소용 측정 및 분배펌프	대	38291 112	편지함(금속제품)	※	38142 119
가정용 펌프(수동식 제외)	대	38291 113	편지 가정용품	※	32156 100
수동 펌프	대	38291 114	편직기(편물기)		
양수기	대	38291 115	황 편직기	대	38242 411
공기펌프	대	38291 116	환 편직기	대	38242 412
진공펌프	대	38291 117	가정용 편물기	대	38242 413
펌프검사용 시험대	대	38543 215	총 편직기	대	38242 414
페난트	매	32145 114	기타 편직기	※	38242 419
페놀	※	35113 115	편직내의		
페놀수지	※	35114 111	면내의	천매	32152 111
페리(철강여객선)	※	38412 400	모내의	천매	32152 112
페이턴트 및 금속화 가죽	㎡	32311 400	인조섬유내의	천매	32152 113
페인트			기타섬유내의	※	32152 119
합성수지 페인트	㎝	35211 113	편직 부스러기	※	32159 300
수성 페인트	㎝	35212 111	편직 외의		
페인트 제조용기계	대	38244 925	남자용 의의	천매	32153 100
페인터 브러쉬, 페인트 로울러	※	39093 114	여자용 의의	천매	32153 200
패케이지 형 에어콘	대	38264 113	유아용 의의	천매	32153 300
펜, 기계식 연필, 페롤더, 펜촉	※	39091 111	편직장갑		
철필 샤프, 펜대, 펜촉			면장갑	천조	32154 111
펠리트 및 스키드	※	33122 113	모장갑	천조	32154 112
펠트	㎡	32192 211	인조섬유장갑	천조	32154 113
펠트모자	개	32227 211	기타섬유장갑	※	32154 119
펠트모자보더	※	32227 111	편직물		
펠트 제조용 기계	대	38242 911	모 편직물	㎏	32155 111
펠트 제품	※	32192 212	면 편직물	㎏	32155 112
편마암	※	29012 100	견 편직물	㎏	32155 113
편물기(편직기참조)	대	38242 411 413	인조섬유 편직물	㎏	32155 114
편물사			기타섬유 편직물	※	32155 119
면연사	㎏	32117 211	탄성 편직물	※	32159 100
모연사	㎏	32117 212	심지용 편직물	※	32159 200
			정삭기	대	38231 122

(丑)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경스크링	매	38199 112	엿탄	%	35111 113
봉스크링	개	38199 119	옥탄	%	35111 113
경압 및 원통감식 인쇄기	대	38247 111	메칸	%	35111 113
복형기	개	38543 211	복발물 제조용 플랜트	대	38244 114
폐쇄안전스위치(산업 및 가정용)	대	38313 114	복약		
폐쇄회로 TV조직	대	38323 114	다이너, 마이트	%	35292 112
포대			초안 복약	%	35292 113
크라프트지 포대	천매	34122 111	초유 복약	%	35292 114
직물포대(가죽, 봉제한 프라	천개	32141 100	기타 조제복약	%	35292 115
스틱포대 포함)			폴리부타디엔(B.R)	%	35115 113
프라스틱 포대(봉제한것 제외)	※	35608 100	폴리비닐 아세테이트섬유	%	35143 114
포대봉합 재봉기	대	38295 213	(합성 장섬유)		
포도당	kg	31226 111	폴리비닐 아세테이트섬유	%	35143 314
포도주	ℓ	31323 111	(합성 단섬유)		
포도즙	ℓ	31323 112	폴리비닐 아세테이트섬유	%	35143 414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	%	35119 111	(합성 장섬유투우)		
포오크(귀금속 또는 도금계)	※	39010 511	폴리비닐 아크릴섬유	%	35143 115
포오크(금속식탁용품)	※	38111 100	(합성 장섬유)		
포오크(손잡이 장식, 실내 장	※	39010 219	폴리비닐 아크릴섬유	%	35143 315
식용)			(합성 단섬유)		
포장기(도로)	대	38241 322	폴리비닐 아크릴섬유	%	35143 415
포장 및 충전기(식품가공용)	대	38243 925	(합성 장섬유투우)		
포장블록 및 봉널	※	33119 115	폴리비닐 알콜섬유	%	35143 117
포장상자	※	33122 111	(합성 장섬유)		
포장석	※	36994 113	폴리비닐 알콜섬유	%	35143 317
포장용기(도가)	※	36105 111	(합성 단섬유)		
포조라나	%	29031 100	폴리비닐 알콜섬유	%	35143 417
포켈나이프	천개	38112 112	(합성 장섬유투우)		
포크(식탁용)	※	38111 100	폴리아미드 수지	%	35114 118
포크, 갈퀴, 쇠스랑	※	38114 119	폴리에틸 수지	%	35114 122
포크레인(굴작기)	대	38241 321	폴리에스터 필름	%	35601 115
포크리프트(기계차)	대	38294 114	폴리에틸렌포대(봉제품)	개	32141 100
포프린	천개	32121 112	폴리에틸렌(P.E)		
포화비환식 탄화수소			고밀도 폴리에틸렌	%	35114 131
액산	%	35111 113			

(코)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저밀도 폴리에틸렌	%	35114 132	프라스틱 자동차부품	※	35604 112
폴리에틸렌 필름	%	35601 112	프라스틱 장관	%	35601 212
폴리 염화 비닐 (PVC)	%	35114 136	프라스틱 장식용품	※	35605 114
폴리 염화 비닐 필름	%	35601 111	프라스틱 기계류부품	※	35603 111
폴리 우레탄	%	35114 115	프라스틱 전기전자부품	※	35604 111
폴리스티렌 (P.S)	%	35114 134	프라스틱 단추	※	35605 113
폴리스티렌 필름	%	35601 114	프라스틱 레저	%	35601 211
폴리초산 비닐	%	35114 137	프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	35602 112
폴리엔테셀유 (합성 장섬유)	%	35143 118	프라스틱 봉	%	35601 214
폴리엔테셀유 (합성 단섬유)	%	35143 318	프라스틱어상자	※	35606 112
폴리엔테셀유 (합성 장섬유 도우)	%	35143 418	프라스틱 스폰지	%	35602 113
폴리프로필렌 (P.P)	%	35114 133	프라스틱 식기	※	35605 111
폴리프로필렌 필름	%	35601 113	프라스틱 신발	천족	35607 111
폴리프로필렌글리콜 (P.P.G)	%	35112 127	프라스틱 신발부품	※	35607 112
표구제품	※	39053 111	프라스틱 용기	※	35606 113
표면처리장판	%	37192 111	프라스틱 위생 및 화장용품	※	35605 112
		~519	프라스틱 의복	※	35609 200
표면처리장판	%	37192 512	프라스틱 인형 및 장난감	※	35609 300
표발행기 (계산장치부착)	대	38252 114	프라스틱 자리	※	32162 112
표백기	대	38242 713	프라스틱 주방용품	※	35605 111
표시관 (전자관)	천개	38341 113	프라스틱 문베이어벨트	%	35601 216
표지 제조기	대	38247 314	프라스틱 포대	※	35608 100
풍속 풍향계	※	38544 100	프라스틱 필름 (필름참조)	%	35601 111 119
풍 차	※	38219 119	프라이어 펜서, 양철가위 및 유사제품	천개	38113 111
퓨 즈	%	38313 116	프라이팬 (범람재)	천개	38192 112
프라스터	%	36923 100	프라이팬 (전기)	개	38334 314
프라스터판 및 타일	%	36931 212	프라이팬 (알루미늄재)	※	38142 119
프라스틱 가구	※	35604 114	프라이팬 (스텐레스재)	※	38142 219
프라스틱 가공 기계	※	38245 119	프레트홈 트릭	대	38294 113
프라스틱 가정장치 개비넌	※	35605 113	프리티안 블루 (안료)	%	35132 115
프라스틱 괴	%	35601 112	프로펠러, 헬리콥터 및 자이로	개	38490 900
프라스틱 판	%	35601 213	프레인 로터		
			프레스기		

(코)~(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금속공작 프레스(액압식)	대	38232 112	팍스처선	※	38391 119
금속공작 프레스(크랭크, 인력공압프레스)	대	38232 113	핀(머리핀 포함)	※	39099 200
기타 금속공작 프레스	※	38232 119	핀(귀금속 제품)	※	39010 211
베니어 접합프레스	대	38235 121	핀서	개	38113 111
파실류스 가공용 프레스	대	38243 918	필렛트(fillet) 고기	※	31144 100
여과 프레스	대	38244 915	필름		
성형 프레스	대	38245 112	폴리염화비닐(P.V.C)필름	㎡	35601 111
프레스기(벽돌, 타일, 브로크 등 제조기)	대	38248 211	폴리에틸렌(P.E)필름	㎡	35601 112
프로판가스	㎏	35300 311	폴리프로필렌(P.P)필름	㎡	35601 113
프로필렌	㎡	35111 112	폴리스티렌(P.S)필름	㎡	35601 114
프로필렌글리콜(P.G)	㎡	35111 128	폴리에스터(P.E.T)필름	㎡	35601 115
프리즘	개	38522 111	필터		
플러그	천개	38396 113	담배 필터	kg	39094 115
플라스틱샤시바(플라스틱샤시문 및 창틀포함)	㎡	35601 221	간접필터(장치하지 않은 것)	개	38522 114
플루트(목관악기)	※	39024 111	색채필터(장치하지 않은 것)	개	38522 114
피리(국악기)	※	39027 100	필터(장치한 것)	※	38522 211
피리(목관악기)	※	39024 111	필터담배	천본	31402 111
피카자 기름	㎏	31152 122	필터없는 담배	천본	31402 112
P.V.C(폴리염화비닐)	㎡	35114 136	필통	천개	39091 126
P.V.C안정제	kg	35299 129	하드(빙과류)	㎡	31174 100
P.C.B원판(동박적층판)	천개	38349 117	하드보드(재생목재)	m	33115 112
P.C.B판(인쇄회로기판)	천매	38349 111	하모니움	개	39022 112
피스톤	천개	38299 512	하오리원단	천m	32123 111
피스톤 링	천개	38299 513	하의(남자용 기성)	착	32222 200
피스톤 발브 증기기관(기관 차용)	대	38423 100	하의(마춤복)	착	32219 200
P.C강선	㎡	37124 214	하수정화장비	대	38269 115
피아노	대	39021 111	한부	착	32213 111
피아노(천자)	대	39026 111	한천(무우)	kg	31143 100
피아노선	㎡	37124 215	합금강 선재	㎡	37124 113
P.E포대(봉제품)	개	32141 100	합금강 슬라브	㎡	37113 313
피임용기구(고무제품)	천개	35593 115	합금주물	㎡	37133 112
피임용품(고무용품제외)	※	38519 200	합성고무		
피치	※	35117 114	스티렌 부타디엔 고무라텍스(S.B.R Latex)	㎡	35115 111
퍼콜로(목관악기)	※	39024 111	스티렌 부타디엔 고무(S.B.R)	㎡	35115 112

(공)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폴리부타디엔(B R)	%	35115 114	해머(동력식)	대	38234 122
합성고무 라텍스	※	35599 115	해머(에어벨머)	개	38232 115
합성키석	※	35129 215	해면철	%	37119 111
합성백주	※	31319 212	해모기	대	38242 115
합성반귀석	※	35129 215	해바라기씨 기름	※	31152 114
합성섬유	%	32114 111	해조류(건조 또는 소금천것)	※	31145 200
합성섬유 방적사	%	32114 211	해포석, 홍늑, 호박	※	29099 221
합성섬유 직물	천㎡	32123 311	핵 반응기	※	38134 211
합성섬유 파일 및 서널 직물	천㎡	32123 312	핵 분열성 동위원소	※	35129 111
합성세제(경성)	%	35232 112	핵 분열성 화학원소	※	35129 113
합성세제(연성)	%	35232 111	핵산	%	35111 113
합성수지선	%	38419 211	핵드백	개	32333 100
합성수지, 프라스틱 및 인조수지 제조용 플랜트	대	38244 113	핵	㎏	31119 112
합성왁스	%	35295 114	핵주보	※	32149 900
합성청주	※	31319 211	향미 또는 착색실상 시럽 및 당밀	※	31173 313
합판	㎡	33114 111	향수제품	※	35235 415
합판(미장)	㎡	33114 112	허들	※	39039 100
항공기(전투기 포함)	대	38451 100	현링코트	착	32222 400
항공기 부품	※	38490 900	제디	※	38349 900
항공기 기관계기	※	38549 211	제드론	개	38321 412
항공기용 가솔린	ℓ	35300 211	젤룸	㎡	35123 212
항공 항해용 기구(나침반 제외)	※	38549 111	젤리콜터(선루용 포함)	대	38451 200
항공사진용 기구 및 장치	대	38541 121	젤란	%	35111 200
항산 시멘트용 첨가제	㎏	35299 128	현(악기용)	※	39029 200
항생제	※	35223 111	현 전반악기 부품	※	39021 200
		~ 119	현금 등록기	대	38252 113
항태용 기구 (선박:나침반 제외)	※	38549 112	현무암	%	29012 100
항형철 및 미생물 백신	※	35221 111	현미경		
해감금속 탄화물			복합광학 현미경	대	38527 200
팅스네	※	35129 216	전자 및 양자 현미경, 회절장치	대	38527 300
물리브데늄	※	35129 216	현상제	㎏	35296 211
바나듐	※	35129 216	현악기		
해머(수공구용)	천개	38113 121	뜯는 현악기		
			만도린	※	39023 112

(8)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후배	※	39023 112	호환성 공구 (수공구용)	개	38119 300
만도라	※	39023 112	호환성 타이어 바닥	※	35511 412
전자현악기			호환용 절삭구		
전자기타	대	39026 112	금속 공작용 절삭구	개	38236 111
베이스기타	대	39026 112	나무 공작용 절삭구	개	38236 112
활로 켜는 현악기			기타 재료 공작용 절삭구	※	38236 119
바이올린	※	39023 111	및 부품		
비올라	※	39023 111	혼방사		
비올라첼로	※	39023 111	혼방면사	㎏	32112 212
베이스 비올라	※	39023 111	혼방소모사	㎏	32113 215
더블 베이스	※	39023 111	혼방방모사	㎏	32113 214
기타 현악기	※	39023 119	혼방수모사	㎏	32113 216
협곡대강			혼방합성섬유 방적사	※	32114 213
열연협곡대강 (보통강)	※	37121 611	혼방재생섬유 방적사	※	32114 214
열연협곡대강 (고탄소강)	※	37121 612	혼방직물		
열연협곡대강 (합금강)	※	37121 613	혼방면직물	천㎞	32121 200
냉연협곡대강 (보통강)	※	37122 611	혼방소모직물	천㎞	32122 211
냉연협곡대강 (고탄소강)	※	37122 612	혼방전직물	천㎞	32123 200
냉연협곡대강 (합금강)	※	37122 613	혼방방모직물	천㎞	32122 212
형강			혼방합성섬유직물	천㎞	32123 400
형강 (대형, 보통강)	※	37121 211	혼방재생섬유직물	천㎞	32123 600
형강 (중형, 보통강)	※	37121 212	혼성추진약	※	35292 219
형강 (소형, 보통강)	※	37121 213	혼타연기	대	38242 114
형강 (고탄소강)	※	37121 221	혼합가루 (곡물거저)	※	31162 100
형강 (합금강)	※	37121 222	혼합식물성기름	㎏	31153 113
형광등 스타터	천개	38396 115	혼합 산업용 가스	㎏	35123 117
형광등 및 조명 부착물	※	38395 112	혼합 인산질 비료	※	35152 122
형광전구 또는 램프	천개	38392 113	혼합 조미료	㎏	31213 111
형삭기	대	38231 121	혼합 질소질비료	※	35151 119
형석 및 기타 불소 함유광물	※	29020 912	혼합 가리질비료	※	35153 119
호닝기	대	38231 129	혼합 크실렌	※	35111 123
호미	개	38114 113	혼문제	※	35224 114
호박 (보석 원석)	※	29099 221	훈치기 원단 (순본견)	천㎞	32123 111
호박단	천㎞	32123 111	훈치기 제품	※	32132 312
호스 (고무호스)	㎞	35592 113	홍옥 (보석 원석)	※	29099 221
호이스트	대	38293 113	홍아연광	※	23025 200

(공)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용차	※	31227. 214	환풍기 (가정용)	대	38332 400
과강압	※	29011 112	활석	※	29092 100
과물선 (강선)	※	38412 112	활석 분	※	36995 112
과물선 (복선)	※	38413 200	활성 과물질	※	35129 213
과물자동차 (트럭)			활성 탄소	※	35129 213
대형트럭 (1ton이하)	대	38431 313	활자주조기	대	38247 211
중형트럭 (1ton초과~5ton미만)	대	38421 312	활차	대	38293 111
소형트럭 (5ton이상)	대	38431 311	활동적인 진열물	※	39099 115
화약			활판 인쇄기	대	38247 114
산업용 화약			황동광	※	23024 100
흑색 화약	※	35292 111	황마	kg	32116 112
다이나마이트	※	35292 112	황마사	kg	32116 213
초안폭약	※	35292 113	황마직물	천m	32124 113
초유폭약	※	35292 114	황산나트륨	※	35122 214
기타 조제폭약	※	35292 115	황산 동	※	35121 317
도화선	km	35292 116	황산 마그네슘	※	35121 513
도폭선	km	35292 117	황산 및 소다회	※	34111 212
뇌관	천개	35292 118	황산 및 율령	※	35121 211
무기용 화약			황산 아연	※	35121 517
무기용 화약	※	35292 219	황산 알루미늄	※	35121 316
화이트 카본 (백카본)	※	35129 218	황산 연광	※	23025 100
화물태이션	kg	35235 213	황산 제1철	※	35121 516
화장대	개	33261 116	황산 카리	※	35153 111
화장비누	※	35231 112	황철 산 암모늄	※	35151 112
화장수 (밀크로슨 및 스킨로슨)	kg	35235 111	황철광	※	29020 212
화장지	kg	34192 111	황토, 시엔나, 암버 및 유색 철암	※	29020 412
화장품	kg	35235 111	황화 전염 연료	※	35131 115
		~ 419	황화 나트륨	※	35122 216
화차 (철도차량)	량	38422 200	황화 수소나트륨	※	35122 311
화차 경사기	대	38293 115	황화 열료	※	35131 115
화차 전철대	대	38293 126	회계기	※	38252 119
화폐 (동전제외)	※	34219 611	회수 전실유	※	32199 113
화대경	※	35529 919	회수 마실유	※	32199 114
확성기 (스피커)	천개	38421 911	회수 면실유	※	32199 112
환권직기	대	38242 412			
환풍기 (산업용)	대	38242 113			

(가)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품 목 명	단 위	분류번호
회수 인조섬유	※	32199 115	후판	개	39091 127
회전 변환기	대	38311 112	흡수탑	대	38134 215
회주물	※	37132 100	회소가스		
회중식	※	23021 112	내온	※	35123 113
회화공 캔버스	※	32194 113	아르곤	※	35123 113
회전직기	대	38242 411	크리프론	※	35123 113
효소	※	35119 315	제논 및 기타 회소가스	※	35123 113
후레 (현악기)	※	39023 112	회토류광석	※	23029 212
후추가루	kg	31214 112	회토류-금속원소	※	35121 126
후판			히타(방열기)-연소기 부착	대	38194 216
후판(보통강)	※	37121 311	히타(연소기부착 안된것)	대	38194 114
후판(고탄소강)	※	37121 312	히타(자동차용 방열기)	대	38432 923
후판(합금강)	※	37121 313			
외동광	※	23024 100			
외발유	cc	35300 212			
철, 자동차용	개	38432 921			
철터(담배)	kg	39094 115			
페라이트 마그네트	kg	38349 122			
페라이트코아	kg	38349 121			
휴대용 가죽 케이스	개	32334 111			
휴대용 무선통신 장비:아마	※	38323 219			
휴대용 무선통신 장비					
휴대용 전기 배터리 및 마	개	38395 114			
그네네트등(차량용 제외)					
홍판	본	36934 211			
흑색화약	※	35292 111			
흑연					
인삼흑연	※	29091 111			
토삼흑연	※	29091 112			
흑연가루	※	36995 115			
흑연 또는 분류 카본기저 내	※	36995 113			
화물					
흑중석	※	23021 111			
흑철선	※	37124 211			

<부록 2>

도량형 단위 환산 표

<길 이>

구 분	자 (尺)	정 (町)	리 (里)	미 터 (m)	인 치 (in)	피 이 트 (ft)	야 아 드 (yd)	마 일
1 자 (尺)	1	0.00277	0.000077	0.30303	11.9305	0.99421	0.331403	0.000188
1 정 (町)	360	1	0.02777	109.091	4294.99	357.916	119.304	0.067784
1 리 (里)	12,960	36	1	3927.27	154.619	12884.9	4295.02	2.44033
1 미 터 (m)	3.3	0.009166	0.000254	1	39.3707	3.28089	1.09363	0.000621
1 인 치 (in)	0.083818	0.000232	0.000006	0.025399	1	0.08333	0.02777	0.000015
1 피 이 트 (ft)	1.00582	0.002793	0.00007	0.304788	12	1	0.33333	0.000189
1 야 아 드 (yd)	3.01746	0.008381	0.000232	0.914383	36	3	1	0.000568
1 마 일	5310.73	14.752	0.409779	1609.31	63,360	5280	1760	1

<넓 이>

구 분	제 곱 자 (平方尺)	평 (坪)	제 곱 미 터 (㎡)	제 곱 인 치 (in ²)	제 곱 피 이 트 (ft ²)	제 곱 야 아 드 (yd ²)
1 제 곱 자 (平方尺)	1	0.02777	0.09182	142.33	0.98842	0.10982
1 평 (坪)	36	1	3.3058	5123.9	35.583	3.9536
1 제 곱 미 터 (㎡)	10.89	0.3025	1	1550.0	10.763	1.1959
1 제 곱 인 치 (in ²)	0.007025	0.0001951	0.0006451	1	0.006944	0.0007716
1 제 곱 피 이 트 (ft ²)	1.0117	0.02810	0.09290	144	1	0.11111
1 제 곱 야 아 드 (yd ²)	9.1054	0.25292	0.83612	1,296	9	1

<무 계>

구 분	돈(匁)	관(貫)	근(斤)	그램(ℊ)	온스(OZ)	파운드(Lb)	톤(ton)
1 돈(匁)	1	0.001	0.00625	3.75	0.132777	0.008267	0.000004
1 관(貫)	1000	1	6.25	3.750	132.277	8.2672	0.00375
1 근(斤)	160	0.16	1	600	21.1647	1.32279	0.0006
1그램(ℊ)	0.26666	0.000266	0.001666	1	0.035273	0.002204	0.000001
1온스(OZ)	7.55984	0.007559	0.047249	28.3495	1	0.0625	0.000028
1파운드(Lb)	120.968	0.120968	0.755988	453.592	16	1	0.00045
1톤(ton)	266666	266.666	1666.6	1000000	35.273	2224.59	1

<부 피>

구 분	홉(合)	되(升)	말(斗)	섬(石)	입방미터(㎥)	리터(ℓ)	갈롱(英)	갈롱(美)
1 홉(合)	1	0.1	0.01	0.001	0.00018	0.18039	0.039682	0.047656
1 되(升)	10	1	0.1	0.01	0.001803	1.8039	0.396805	0.476567
1 말(斗)	100	10	1	0.1	0.018039	18.039	3.96808	4.76567
1 섬(石)	1000	100	10	1	0.18039	180.39	39.6808	47.6567
1 입 방 미터(㎥)	5543.52	554.352	55.4352	5.54352	1	1000	219.972	264.1866
1 리터(ℓ)	5.54352	0.55435	0.05543	0.00554	0.001	1	0.219971	0.264186
1 갈롱(英)	25.2006	2.52006	0.2520	0.0252	0.004545	4.54596	1	1.201
1 갈롱(美)	20.9833	2.09833	0.20983	0.020983	0.003785	3.78543	0.832639	1

<부록 3>

특별소비세와 주세의 과세대상품목 및 세율

1.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 (1) 제 1종 제 1류 물품판매자

(2) 제 1종 제 2류 또는 제 4종 물품제조 반출자

(3)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4) 제 3호 이외의 관세납부의무자

(5) 과세장소의 경영자

종별	유별	과 세 물 품 명	세 율
제 1종	제 1류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제외), 진주, 별갑, 산호,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60 %
		2. 귀금속 제품	20 %
	제 2류	1. 모피와 동제품 (토모피 제품 및 생모피 제외)	60 %
		2.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60 %
		3. 당구, 골프용품, 수렵용 총포류	60 %
제 2종	제 4류	4. 가구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일정금액 이상에 한함)	10 %
		5. 특수화장품	10 %
제 2종	제 1류	1. 공기조절기와 동관련제품	25 %
		2. 냉장고와 냉동고 (전기, 가스, 유류식을 말한다)	20%(대형) 15%(소형)
		3. 전기세탁기 (세탁물 건조기 포함)	20 %
		4. 텔레비전 수상기와 동관련제품	

종별	유별	과 세 물 품 명	세 율
		가. 칼라 TV	20%(대형) 15%(소형)
		나. 흑백 TV	5%
		다. 동관련제품	20%
		5. 전기 음향기	
		가. 소형음성녹음, 재생의 것 (휴대용)	10%
		나. 축음기 및 스테레오 제품	15%
		6.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 (가정용)	15%
		7. 승용자동차 (정원 8인이하의 사람수송용)	
		가. 사륜구동의 지이프형	10%
		나. 배기량 1500cc 이하	10%
		다. 배기량 1500cc 초과~2000cc 이하	15%
		라. 6기통 이상으로 2000cc 이하	30%
		마. 배기량 2000cc 초과 및 캠핑용자동차	25%
		8. 모터보트, 요트와 동 관련제품	30%
		9. 피아노	
		가. 그랜드 피아노	20%
		나. 일반 피아노, 전자울젠	10%
		10. 고급시계	20%
		11. TV 영상, 음향기록기와 동 관련제품	25%
		12. 영사기와 촬영기, 고급사진기와 동관련제품	25%
		13. TV 영상 투사기 및 동스크린	30%
		14. 크리스탈 유리제품	10%
		15. 설상·수상스키용품과 동 스쿠터	25%

종별	유별	과 세 물 품 명	세 율
중 3 종	제	1. 커피와 코코아	
		가. 커피와 코코아	20%
		나. 카카오마스	10%
		2. 당류 (사탕, 전분당)	
		가. 사탕	10%
		나. 전분당	10%
	종	3. 청량 음료	10%
		4. 기호 음료	10%
		빙과류와 발효유 및 이와 유사한 산성음료	10%
		5. 자양강식품 (인삼, 녹용, 로얄제리등)	10%
		6. 천연과실음료 (과채류의즙 포함)	10%
		제 4 류	제 1
가. 소모사와 동직물	20%		
류	나. 방모사와 동직물		10%
	2. 용단 (카페트와 섬유메트 포함)		
	가. 모제품		20%
	나. 기 타		10%
중 2 류	제	1. 휘발유와 동유사 대체유류 (가솔린엔진연료)	100%
		2. 경 유	10%
		3. 액화석유가스	10%

2. 주 세

품 명	세 율	비 고
주 정 (95% 기 준)		세금은 ㎍당 49,875 원
합 성 청 주	65 %	
합 성 맥 주	100 %	
인 삼 주	100 %	(주류 80% 이상 사용) (상기의)
기 타 제 재 주	40 %	
탁 주	100 %	
약 주	40 %	
맥 주	10 %	
청 주	60 %	
과 실 주	150 %	
명 약 주 (법 주)	120 %	
기 타 양 조 주	25 %	
소 주	100 %	
고 량 주	110 %	
위 스 키	35 %	
브 랜 디	110 %	
기 타 증 류 주	200 %	
	150 %	
	80 %	

3. 방위세

특별소비세액의 30%, 주세액의 10%

4. 교육세

제조담배공급가액 및 주세액의 10%

1989年基準 鑛工業統計調査 實施概要

1. 調査目的

鑛業 및 製造業 部門의 構造와 分布, 生産活動 實態를 把握하여 經濟政策의 樹立 및 施策效果測定과 同部門의 各種 統計의 母集團資料 提供에 있음.

2. 調査名稱 및 實施根據

1989年基準 鑛工業統計調査 (統計法에 의한 指定統計 111-11-10號)

3. 調査週期

每年 週期 調査

4. 調査對象

全國의 從業員 5人以上 鑛業 및 製造業體

5. 主要 調査項目

雇傭, 給與, 出荷, 生産費, 在庫, 有形固定資産 等

6. 調査方法

洞·邑·面 統計擔當職員 (調査員)이 事業體를 訪問하여 調査

7. 調査期間

- 調査基準時點 : 1989.12.31 現在
- 調査對象期間 : 1989. 1. 1 ~ 12.31 (1 個年間)
- 調査實施期間 : 1990. 4. 1 ~ 4.30 (1 個月間)

8. 秘密의 保護 및 申告義務

本 鑛工業統計調査에 提供된 事業體의 個別 資料는 秘密이 嚴格히 保護 (統計法 第8條)되는 反面, 調査對象 事業體에서는 誠實한 資料提供義務 (統計法 第4條)가 있음.

9. 調査結果 公表

- 結果公表 : 1990年 12月
- 報告書發刊 : 1991年 1月豫定

시 · 도	구 · 시 · 군

1989년 광공업통계조사

작성자	확인자
인	인

조사표접수대장

(매종 매)

동·읍·면 (구·시·군)	조사표수		조사대상사업체수			유 고 사 업 체 수									비 고		
	계	조사표 (I)	조사표 (II)	계	명부상 사 체 수	추가된 사 체 수	계	전출	휴업	기준 미달	소재 불명	폐업	대상외	조사 불능		(명부상) 중 복	기 타

주) 1. 구·시·군에서는 동·읍·면별, 시·도에서는 구·시·군별로 작성
 2. 비고란에는 유고사업체중 조사된 사업체가 있으면 그 수를 기입한다.
 3. 조사표수=조사대상사업체수-유고사업체수 (유고사업체중 조사된 사업체가 없는 경우).

('90서식 9)

시 · 도 명

1989년 광공업통계조사 조사결과 내용심사 총괄표

확 인 자	담당	계장	담당관

조사표 (I)

(매중 매)

(단위: 개, 명, 백만원)

행정구역분류번호 구 · 시 · 군 명	연도	사업체수	11항 종업원수 (월평균)	12항 급여액 (합계)	13항 출하액 (합계)	14항 주요생산비 (합계)	생산액	부가가치	16항 재고증감액 (완제품, 반· 제품 합계)	20항 유형고정자산 연말총액 (합계)	부가가치율	증 감 요 인
	'88											
	'89											
	※											
	'88											
	'89											
	※											
	'88											
	'89											
	※											
	'88											
	'89											
	※											
	'88											
	'89											
	※											
	'88											
	'89											
	※											
	'88											
	'89											
	※											
	'88											
	'89											
	※											
	'88											
	'89											
	※											

1. 생산액, 부가가치, 재고증감액 및 부가가치율의 산식은 다음에 의함.

- ① 생산액 = 출하액 + 재고증감액 () 완 · 반제품연말재고액 - 완 · 반제품 연초재고액
- ② 부가가치 = 생산액 - 생산비
- ③ 재고증감액 = 연말재고액 (완제품, 반 · 제품) - 연초재고액 (완제품, 반 · 제품)
- ④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 ÷ 생산액 × 100

⑤ 비전년증감율 = ('89년수치 ÷ '88년수치 × 100) - 100

('90 서식 10)

2. 연도란의 ※ 는 비전년증감율임.
3. 부가가치율 및 비전년 증감율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4사5입함.
4. 증감요인란에는 증감요인을 구체적으로 나열 기입하여야 함.
5. 구 · 시 · 군별로 기입하고 최종 하단란에는 시 · 도의 총합계를 기입함.

작성기관: 경제기획원
지정통계: 111 - 11 - 10

1989년 광 공 업 통 계 조 사 표 [I]

—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체(공장) 조사용 —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되는 반면, 허위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반드시 후면의 「조사표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 사업체 번호	행정구역분류부호	인원번호	사업체 고유번호	기업체번호	그룹번호	산업분류

1. 공장(사업체)명 및 소재지

공장(사업체)명 _____

대표자: _____ 전화: _____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구·로·동·읍·면 _____ 가·동·리 _____ 번지 호 _____

2. 본사(본점) 소재지

대표자: _____ 전화: _____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구·로·동·읍·면 _____ 가·동·리 _____ 번지 호 _____

3. 소속모기업(그룹)명

()

4. 창설년월(현사업체의 가동월)

19 _____ 년 _____ 월

5. 결산기(결산마감월)

() 월

8. 부지 및 건물(광업은 제외)

○ 1평≒3.3㎡
○ 임차사용분은 포함하고 임대분은 제외

(1) 소유 형태	자기소유	임차 사용
① 부 지	㎡	㎡
(2) 면적		
② 건물면적	㎡	㎡
③ 건물연면적	㎡	㎡

9. 주요 사용 원재료명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10. 주요생산공정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⑤ _____ ⑥ _____

6. 경영조직(해당란에 ○ 표)

① 회 사 법 인 ()

② 기 타 법 인 ()

③ 개 인 ()

7. 자본금 또는 출자금

○ 회사법인에 한함.
○ '89년말 현재 납입자본금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11. 종업원수
○ 임시 및 일고 종사자 포함 (명)

	(1) 12월말 현재 종업원수			(2) 조업기간중 종업원수
	계	남	여	
① 자 영 업 주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② 무급가족종사자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③ 피고용자				
합 계				

④ 연간조업월수 () 월 ⑤ 연간조업일수 () 일

13.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기타수입액
○ 제품 및 상품의 외형매출금액을 말하며 각 항목별로 구분 기입한다.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① 제품출하액(제품의 외형매출액)							
② 폐품판매액(생산과정의 폐품, 불량품)							
③ 수탁제조 수입액(임가공료)							
④ 수리수입액(수리대금)							
합 계 (①+.....+④)							
⑤ 상품매출액(구입상품 재판매액)							
⑥ 상품매출원가(구입상품에 대한 재판매원가)							
⑦ 임대수입액(유형고정자산의 임대수입액 단, 토지분 제외)							

14. 연간 주요생산비
○ 제조원가, 판매 및 일반관리비중에서 제품생산에 소요된 비용.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① 재료비(부재료, 보조재료 포함)							
② 연료비(석유, 석탄등의 연료)							
③ 전력비(구 입 전 력)							
④ 용수비(구 입 용 수)							
⑤ 위탁생산비(외주가공비)							
⑥ 수리유지비(수 선 비)							
합 계							

15. 내국 소비세액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① 부 가 가 치 세							
② 특 별 소 비 세							
③ 주 세							
합 계							

16. 재 고 액

	(1) 연 초				(2) 연 말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억	천만	백만원
① 완 제 품									
② 반제품및재공품									
③ 원 재 료									
④ 연 료									
합 계									

17. 연간 제품출하액(매출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내역
○ 품목분류는 조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별책 「산업 및 품목분류표」와 반드시 일치하도록 한다. ○ 17항 및 18항의 행이 부족할 경우에는 동일양식을 첨부하여 기입한다.

일련 번호	품 목 분 류 번 호 (산업및품목분류표 참조)	제 품 명	★★ 수 량 단 위	(1) 품목별 제품의 총출하액(수출액포함)					(2) 품목별 제품의 수출액					(3) 품목별 제품의 연초재고액					(4) 품목별 제품의 연말재고액					(5) 단위당 출하가격(원)											
				수 량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수 량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수 량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수 량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최저단가	최고단가
01																																			
02																																			
03																																			
04																																			
05																																			
06																																			
99	합	계	★★																																

18. 수탁제조(임가공) 수입액의 품목별 내역
○ 13항 ③의 내용이 있을 경우 작성한다.

일련 번호	품 목 분 류 번 호 (산업 및 품목분류표 참조)	제 품 명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01								
02								
03								
99	합	계						

19. 건설가계정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① 연간증가액							
② 연간감소액							
③ 연말잔액							

21. 동일기업내 타공장(사업체) 내역

일련 번호	★ 사업체고유번호	타공장(사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종업원수(명)	출하액(백만원)	주요생산품명
01							
02							
03							
04							
05							

20. 유형고정자산

	① 연간 신규 취득액				② 연간 증고 취득액				③ 연간 처분 및 손해액				④ 연간 감가상각액				⑤ 연 말 총 액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억	천만	백만원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① 토 지	*	*	*	*	*	*	*	*	*	*	*	*	*	*	*	*	*	*	*	*	*
② 건 물 및 구 축 물																					
③ 기 계 장 치, 공 구, 기 구, 비 품																					
④ 차 량, 선 바 및 운 반 구																					
합																					

적요: 적자요인, 품목분류의 문제점, 위탁사업체명, 다공장 기업체의 공장별 분할 작성기준등의 참고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

조사표 작성자(응답자)	조사 담당자	구·시·군 확인자	시·도 확인자
소속 _____ 전화 _____ 성명 _____ ㉑	소속 _____ 전화 _____ 성명 _____ ㉒	소속 _____ 전화 _____ 성명 _____ ㉓	소속 _____ 전화 _____ 성명 _____ ㉔

◎ 본조사표에 관한 문의사항은 각급지방행정기관 통계담당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조사표작성요령

I. 일반적 유의사항

- ★표란은 동·읍·면에서 기입하고 ★★표란은 당원에서 기입합니다.
- 본 조사표는 접수후 5일 이내에 직접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동·읍·면 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다만, 본사와 연락등으로 5일 이내에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동·읍·면 사무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최소한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 본 조사표는 각 사업체(공장, 사업소) 별로 구분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공장기업체의 경우 공장별로 구분 작성할 수 없도록 결산장부가 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장별 유형고정자산 혹은 공장별 종업원수등 해당업체의 타당성 있는 기준에 따라 각 공장의 비율을 산정한후 그 비율에 따라 공장별로 분할 작성하여 주십시오.
- 결산 마감일이 12월이 아닌 사업체라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조사함이 원칙이나 이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직근 1년간의 결산자료에 의거 작성하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적요란에 사유를 기입하십시오.
- 모든 수치는 단위에 유의하여 정수로 기입하고 단위 미만은 4사5입 하거나 유사항목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제17항 품목별 출하내역은 본조사 사항중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특히 유의하여 「산업 및 품목분류표」 책자의 분류 기준에 타당한 조사담당자와 재검토하여 정확히 분류 기입하여 주십시오.
- 조사항목별 연관관계에 유의하여 작성하고 기입누락이 없도록 하며 조사표 사본을 비치하여 사후 질의조치등에 대비하여 주십시오.

II. 항목별 유의사항

6항 경영조직

- 회사법인은 상법상의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를 말한다.
- 기타 법인은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7항 자본금 또는 출자금

- 회사법인에 한하여 기입하며 '89년말 현재 법인의 납입자본금을 기입한다.

8항 부지 및 건물면적

- 제조업체에 한하여 조사하며, 업무용을 자기 소유와 임차 사용분으로 나누어 기입한다. (광업과 임대분은 제외)
- 사택, 기숙사, 운동장등 복리후생시설이 생산공장과 같은 장소에 있을 때는 포함 조사하고 별도의 장소에 있을 때는 제외한다.
- ②건물 밀면적.....부지와 접한 건물바다이 차지하는 면적을 말한다.
③건물 연면적.....전체건물의 연건물 면적을 말한다.

11항 종업원수

- 자영업주 : 개인사업체의 소유주(출자자 포함) 를 말하며 6항의 경영조직이 개인일 경우 반드시 1인 이상이 있다.
- 무급가족 종사자 : 개인사업체 소유주(출자자 포함)의 가족으로서 정규작업 시간의 1/3 이상 업무에 종사하고 일정한 급여를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 피고용자 : 상용, 임시, 일고 종업원과 단기 병가자, 휴가자를 포함하며 외국인, 장기결근자, 군복무자는 제외한다.
- 사무 및 기타종업원 : 현장작업 종사자가 아닌 기술적, 전문적, 서기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사업체 임직원(간부, 이사) 및 기타 잡무에 종사하는 자 등을 말한다.
- 12월말 현재의 종업원은 남·여로 구분 기입한다.
- 조업기간중 월평균 종업원수 = 각 월말 종업원수 누계 ÷ 조업월수
- 일고(日雇) 종업원은 연인원으로 기입되기 쉬우므로 연인원일 경우에는 그 달의 조업일수로 나누어 월평균 종업원수를 산출하여야한다.

- 12월에 휴업을 한 경우에는 12월말 현재 종업원수를 기입하지 않고 “△” 표시를 한다. (월평균은 기입)

12항 연간급여액

- 1989년 이전의 급여로서 체불된 것을 1989년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며, 1989년중에 지급하여야 할 것을 지불치 못한 미지급금은 포함한다.
- 퇴직금, 퇴직급여 총당금, 복리후생비는 제외하고 상여금 및 제수당을 포함한 세금공제 이전의 금액을 기입한다.

13항 연간출하액 및 기타수입액

- ① 제품출하액 : ○직접생산 또는 위탁생산하여 매출한 것(매출원가+매출이익) 뿐만 아니라 내부거래(이송품, 반출품, 타계정대체액등)가 있을 경우에 포함하고, 상품매출액은 ⑤항에 기입한다.
○제품출하액에 간접세가 포함되어서는 안됨. (주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 생산업체 특히 유의)
- ② 폐품판매액 : 생산과정상의 불량품, 폐품의 판매액을 말한다. (단, 제정상 부산물로 처리되어 있더라도 본 조사에서 제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①제품출하액에 포함한다.)
- ③ 수탁제조 수입액 : ○원재료(또는 중간제품)나 원재료비를 타 광공업사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제조 가공하여 준 대가로 받은 수입액을 기입하며 인쇄출판업의 경우에 광고 수입액등을 포함한다.
○원재료(또는 중간제품)를 직접 구입하여 생산 납품한 경우와 원재료를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광공업이외의 타산업체(무역업, 판매업등)로부터 수탁받아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수탁업자 자신이 생산하여 출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①제품출하액에 기입하고 또한 원재료 구입비 혹은 타산업체로부터 받은 원재료의 비용을 생산비난에 기입한다.
- ④ 수리수입액 : 제품의 출하와 관련한 수리수입과 타인소유의 산업용기계, 장치(선박, 산업용보일러, 산업용장비등)를 수리하여 준 댓가로 받은 수입액을 기입한다.
- ⑤ 상품매출액 : 제조부문 이외의 수입 상품이나 타사제품을 구입하여 재판매한 상품의 매출액을 말한다.
- ⑥ 상품매출원가 : 연간 총 구입 상품중에서 상품재고분을 제외하고 판매된 상품의 매출원가를 말한다.
- ⑦ 임대수입액 : 건물 및 기계장치등 유형고정자산의 임대에서 발생하는 수취임료를 말하며 토지분에 대한 임대수입은 제외한다.

14항 연간주요생산비

1989년 1년간 실제생산에 소요된 영업비용(제조원가, 판매 및 일반관리비) 중에서 명시된 해당비목만 기입한다.

- ① 재료비(부재료비, 보조재료비 포함) : 계정과목의 설정형태에 관계없이 실제 생산에 투입된 모든 재료비를 기입한다.
- ② 연료비 : 석유, 석탄 등의 동력 및 난방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 기입한다.
- ③ 전력비 : 구입사용 전력비를 말하며 자가발전전 소요된 연료(석탄·유류등)비용은 ②연료비에 해당한다.
- ④ 용수비 : 사무실용과 종업원의 음료용수를 포함한 생산에서 사용된 모든 용수의 요금을 기입한다.
- ⑤ 위탁생산비(외주가공비) : 위탁생산을 위하여 임가공(하청) 업체에 지급한 모든 비용을 기입한다. (단, 재료비는 ①재료비에 포함)
- ⑥ 수리유지비(수선비) : 유형고정자산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기입한다.

15항 내국소비세액

- 발생기준에 의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특별소비세, 주세와 이들에 부가된 부가세(방위

- 세, 교육세)도 포함 기입한다.
- 부가가치세 환급액인 경우와 합계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수치앞에 “△” 표시를 한다.

16항 재고액

- 재고액 평가는 생산자 제조원가에 의한다.
- 작업을 위해 외부에 보관 중인 것도 포함한다.

17항 연간 제품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 품목별 제품은 「산업 및 품목분류표」 책자에 의하여 품목을 정확히 구분한 다음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착오조사가 되기 쉽다.
- 출하액(매출원가+매출이익)이 큰 품목순으로 기입하되 품목을 지나치게 포괄하지 않도록하며 수량단위는 「산업 및 품목 분류표」와 일치하여야 한다.
- 외국어나 특수품명등 품목분류가 모호한 것은 품목설명을 병기한다.
- 수출액은 자기명의 수출, 위탁수출, 비광공업체로부터 수탁받은 제품의 수출 또는 기타 약정에 의한 수출등의 직접 수출액을 기입하며 내국신용장(로칼L/C)에 의해서 국내 제조업체에 납품한 수출용 제품의 원재료나 반제품은 수출로 기입하지 않는다.
- 총 출하액은 내수와 수출의 합계액을 기입한다.
- 국가안보상 보안이 요구되는 품목은 조사표에 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서 지정하고 있는 품목분류번호를 사업체 담당자(응답자)가 직접기입한다.
- 품목분류시 기타품목은 가급적이면 총 출하액 합계액의 5%미만이 되도록 세분하며, 「산업중분류별 산업 및 품목분류표」를 배부받은 업체에서는 주된 산업중분류를 달리하는 품목을 생산할 경우에 반드시 그 품목도 기입해야 한다.
- 본 란의 행이 부족할 경우에는 동일양식을 첨부하여 연장 기입한다.

18항 수탁제조(임가공) 수입액의 품목별 내역

- 본 항목은 13항③의 금액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본 항목을 기입하여야 한다.
- 품목분류 요령은 17항 연간제품 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란의 분류요령에 준한다.

20항 유형고정자산

- 유형고정자산의 연말총액(미상각잔액)은 1989년 12월 31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고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한다.
- 감가상각액은 당해 회계기간중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총당금을 기입한다.
- 임대해준 것은 포함하고 임차사용중인 것은 제외한다.
- 토지의 취득은 중고취득란에 기입한다.
- 연간 신규취득액은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취득액 및 설치비를 말하며 외국으로부터 취득한 중고품은 신규취득액에 포함한다.
- 기존자산의 수선을 위한 자본적 지출액은 신규취득액에 포함한다.
- 연간처분 및 손해액은 매각, 양도 및 재해등에 의한 처분 및 손해액을 말한다.
- 본 조사항목에 건설(시설)가계정, 미착기계계정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9. (01) + (02) - (03) - (04) ≤ (05)

21항 동일기업내 타공장명 및 소재지

동일기업내 산하공장(사업체)이 2개이상 있을 경우에 각각의 공장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되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한다.

광 공 업 통 계 조 사 표 (Ⅱ)

작성기관: 경제기획원
지정통계: 111-11-10

본 조사는 1989년 12월 말 현재 광공업 분야에 대한 통계조사로서, 광공업 분야에 대한 통계를 목적으로 한다.

— 본사(본점) 사업체 조사용 —

◎ 반드시 후면의 「조사표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사업체 부 호	행정구역분류부호	일련번호	사업체 고유번호	기업체번호	그룹번호	산업분류

1. 본사(본점)명 및 소재지 본사(본점)명: _____ 대표자: _____ 주소: _____		2. 창설년월 19 ____ 년 ____ 월	3. 결산기 () 월
4. 소속모기업(그룹)명 ()	5. 경영조직(해당란에 ()표) (1) 회사법인() (2) 기타법인() (3) 개인()	6. 자본금 또는 출자금 ○ 회사법인만 기입 ○ '89년말 현재 납입 자본금	

7. 건설가계정(본사분)		8. 상품매출액 및 임대수입액(본사분)		9. 재고액(본사분)	
				(1)연초재고액 (2)연말재고액	
①연간증가액		①상품매출액		①원재료	
②연간감소액		②상품매출원가		②연료	
③연말잔액		③임대수입액		12. 기술연구개발비	
10. 종업원수(본사분)		11. 연간급여액(본사분) ○ 상여금, 제수당포함		① 인건비	
(1) 12월말현재 (2) 월 평균				② 재료비	
① 남				③ 기술도입비	
2. 여				④ 위탁기술개발비	
③ 계				⑤ 기계장치및건설비	
				⑥ 기타	
				합 계	

13. 유형고정자산(본사분)	01연간신규취득액		02연간중고취득액		03연간처분및손해액		04연간감가상각액		05연 말 잔액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천억	백억	십억	억				
① 토 지	*	*	*	*	*	*			*	*	*	*	*	*
② 건 물 · 구 축 물														
③ 기 계 장 치 · 공 구 · 비 품														
④ 차 량 · 선 박 운 반 구														
합 계														

14. 동일그룹(소속모기업)내 계열기업명 및 소재지						
일련번호	★★ 기업체번호	기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주요생산품종(업종)	비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 행이 부족할 경우에는 뒷면에 이어서 작성한다.

15. 동일기업내 관할사업체명 및 사업내용 (본 라이 부족할 경우에는 동일양식을 첨부하여 기입한다.)																
일련번호	★ 사업체 고유번호	사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주요제품명	(1) 종업원수(명)	(2) 제품출하액				(3) 상품매출액				(4) 유형고정자산 연말총액	비고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조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① 공 장 분 계																
② 합 계 (공 장 분 + 본 사 분)																

* 적요: 위탁사업체명 등의 기타 참고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	조사표 작성자(응답자)	조사 담당자	부·시·군·구·회·인·사	작성 일자
	소속 _____ 전화 _____	소속 _____ 전화 _____	소속 _____ 전화 _____	성명 _____
	성명 _____ ①	성명 _____ ①	성명 _____ ①	성명 _____ ①

조 사 표 작 성 요 령

14. 동일그룹(소속모기업)내 계열기업명 및 소재지

*앞면 14항에서 계속

일련번호	★★기업체번호	기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경제활동(업종)	비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I. 일반적 유의사항

1. ★표란은 동·읍·면에서 기입하고 ★★표란은 당원에서 기입합니다.
2. 본 조사표(II)는 산하사업체와 별도의 장소에 있는 경우와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2개 이상의 사업체(공장·광산)를 관할하고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3. 조사항목(7~11항과 13항)은 본사(본점)분에 한해서 작성하며 산하 공장분을 포함 작성하여서는 안됩니다.
4. 본 조사표는 접수후 5일 이내에 직접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동·읍·면 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기일내에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동·읍·면 사무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최소한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5. 본사에서 산하공장과는 별도로 위탁생산하여 판매하는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장용 조사표(I)에 의하여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6. 본사가 어느 한 공장과 같은 장소에 있으며(조사표(I),(II) 동시 작성) 본사분만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는 조사표(II)의 7~13항은 조사표(I)에 합산 작성합니다.
7. 신문사, 출판사는 인쇄시설이 없는 경우라도 조사표(I)에 작성합니다.

II. 항목별 유의사항

5항 경영조직

1. 회사법인은 상법상의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를 말한다.
2. 기타법인은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10항 종업원수(본사분)

1. 임시 및 일고 종사자 포함.
2. 외국인, 장기결근자, 군복무자는 제외한다.

12항 기술연구개발비

1. '89년 1년간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에 투입된 비용만을 기입한다.
2. 이연자산 계정중 시험 연구비와 제조원가 명세서 및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상의 시험연구비 및 개발비를 포함 기입하고, 인건비는 연구활동에 투입된 인원에 대한 급여만을 기입한다.

13항 유형고정자산(본사분)

1. 임대해준 것은 포함하고 임차사용중인 것은 제외한다.
2. 토지의 취득은 중고취득액란에, 수입품은 신규취득액란에 기입한다.
3. 연간처분 및 손해액은 매각, 양도, 재해 및 도난등에 의한 감소액을 기입한다.
4. 연간감가상각액은 '89년의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충당금을 기입한다.
5. 연말총액은 장부상의 미상각잔액을 말한다.
6. $(01) + (02) - (03) - (04) \leq (05)$

14항 동일그룹(소속모기업)내 계열기업명 및 소재지

1. 기업군(企業群: 그룹)에 속해 있는 대상기업에서는 그룹내의 전 계열사에 대하여 기입한다.
2. 주된 경제 활동란에는 주요 사업별 업종을 기입한다.

15항 동일기업내 관할사업체명 및 사업내용

1. 본사의 무역부 또는 사업부나 영업부에서 관할 사업체와는 별도로 위탁생산등의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의 관할사업체로 간주하여 본 항목에 기입한다.

조 사 표 작 성 요 령

14. 동일그룹(소속모기업)내 계열기업명 및 소재지

* 앞면 14항에서 계속

일련 번호	★★ 기업체번호	기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주된경제활동 (업종)	비 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I. 일반적 유의사항

1. ★표란은 동·읍·면에서 기입하고 ★★표란은 당원에서 기입합니다.
2. 본 조사표(II)는 산하사업체와 별도의 장소에 있는 경우와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2개 이상의 사업체(공장·광산)를 관할하고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3. 조사항목(7~11항과 13항)은 본사(본점)분에 한해서 작성하며 산하 공장분을 포함 작성하여서는 안됩니다.
4. 본 조사표는 접수후 5일 이내에 직접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동·읍·면 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기일내에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동·읍·면 사무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최소한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5. 본사에서 산하공장과는 별도로 위탁생산하여 판매하는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장용 조사표(I)에 의하여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6. 본사가 어느 한 공장과 같은 장소에 있으며(조사표(I),(II) 동시 작성) 본사분만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는 조사표(II)의 7~13항은 조사표(I)에 합산 작성합니다.
7. 신문사, 출판사는 인쇄시설이 없는 경우라도 조사표(I)에 작성합니다.

II. 항목별 유의사항

5항 경영조직

1. 회사법인은 상법상의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를 말한다.
2. 기타법인은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10항 종업원수(본사분)

1. 임시 및 일고 종사자 포함.
2. 외국인, 장기결근자, 군복무자는 제외한다.

12항 기술연구개발비

1. '89년 1년간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에 투입된 비용만을 기입한다.
2. 이연자산 계정중 시험 연구비와 제조원가 명세서 및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상의 시험연구비 및 개발비를 포함 기입하고, 인건비는 연구활동에 투입된 인원에 대한 급여만을 기입한다.

13항 유형고정자산(본사분)

1. 임대해준 것은 포함하고 임차사용중인 것은 제외한다.
2. 토지의 취득은 중고취득액란에, 수입품은 신규취득액란에 기입한다.
3. 연간처분 및 손해액은 매각, 양도, 재해 및 도난등에 의한 감소액을 기입한다.
4. 연간감가상각액은 '89년의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충당금을 기입한다.
5. 연말총액은 장부상의 미상각잔액을 말한다.
6. $(01) + (02) - (03) - (04) \leq (05)$

14항 동일그룹(소속모기업)내 계열기업명 및 소재지

1. 기업군(企業群: 그룹)에 속해 있는 대상기업에서는 그룹내의 전 계열사에 대하여 기입한다.
2. 주된 경제 활동란에는 주요 사업별 업종을 기입한다.

15항 동일기업내 관할사업체명 및 사업내용

1. 본사의 무역부 또는 사업부나 영업부에서 관할 사업체와는 별도로 위탁생산등의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의 관할사업체로 간주하여 본 항목을 기입한다.
2. 제품매출액과 상품매출액은 연간 총수입액을 기입하며 백만원 미만은 사사오입하여 기입한다.
3. 유형고정자산은 장부상의 각공장별 '89년말 미상각잔액을 기입한다.
4. 본란은 기업산하 각각의 공장분에 대한 것으로 14항의 그룹산하 계열기업 조사와 구별된다.

(1989년기준 운수업통계조사)

결 과 표 양 식

1990. 4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차 례

I. 결과표 작성시 유의사항	7
1. 공통 적용 사항 (수준분석, 결과보고용 및 보고서부록용).....	7
2. 결과표별 유의사항	7
가. 수준분석 및 결과보고용 유의사항	7
나. 보고서 수록용 유의사항	8
II. 결과표 양식	9
I) 수준 분석용.....	11
1-1 산업별, 지역별 및 사업체별 비전년수준비교 (운수업총괄)	13
1-2 산업별, 지역별 및 사업체별 비전년수준비교 (운수비용 항목별)	14
1-3 산업별, 지역별 및 사업체별 비전년수준비교 (직종별 종업원)	15
1-4 산업별 운수업 총괄	16
1-5 시도별 운수업 총괄	17
1-6 조직형태별 사업체 구조	18
1-7 직종별 종업원 구성	19
1-8 종업원 규모별 사업체 구조	20
1-9 업종별 운수비용	21
1-10 시도별 운수업 신장 및 구조	22
1-11 사업체당 주요지표	23

1 - 12	종업원 1인당 주요지표	24
1 - 13	주요지표	25
1 - 14	차량 1대당 주요지표	26
1 - 15	육상여객·화물의수송거리당 운수수입 및 비용 (여객·화물및 사업형태별)	27
1 - 16	철도·지하철의 수송거리당 운수수입 및 비용(여객·화물별)	28
1 - 17	수상운수업의 수송거리당 운수수입 및 비용	29
1 - 18	항공운송업의 수송거리당 운수수입 및 비용(여객·화물별)	30
1 - 19	육상여객의 시도별 운행현황	31
II	결과 보고용	33
가.	잠정결과 보고용	35
가-1	운수업 구조	37
가-2	운수업 신장	38
가-3	각종차량 1대당 주요지표	39
가-4	부가가치의 구조 및 신장	40
가-5	유형고정자산의 구조 및 신장	41
가-6	운수장비의 구조 및 신장.....	42
가-7	운수업 총괄	43
나.	확정결과 보고용	45
나-1	운수업 총괄	47
나-2	조직형태별 사업체 구조	48
나-3	직종별 종업원구성	49

나-4	종업원 규모별 사업체 구조	50
나-5	업종별 운수 비용	51
나-6	시도별 운수업 신장 및 구조	52
나-7	사업체당 주요지표	53
나-8	종업원 1인당 주요지표	54
나-9	주요지표	55
나-10	차량 1대당 주요지표	56
III	보고서 수록용	57
1.	총괄	59
1-1.	산업별 운수업총괄	60
2.	업종편	63
가.	육상 운수업	65
가-1	산업 및 조직형태별 총괄	66
가-2	산업 및 종업원 규모별 총괄	68
가-3	산업 및 보유차량 규모별 총괄	70
가-4	산업 및 자본금 규모별 총괄	72
가-5	산업 및 종업원 규모별 종업원수	74
가-6	산업 및 종업원 규모별 직종별 피고용지수	76
가-7	산업 및 종업원 규모별 직종별 연간급여액	78
가-8	산업 및 조직형태별 운수비용	80
가-9	산업 및 조직형태별 부가가치	84
가-10	산업 및 조직형태별 유형고정자산(연말현재)	86
가-11	경과년수별 차종별 차량대수(철도·지하철)	87
가-12	지사 및 경과년수별 차종별 차량대수(도로공사)	88

가- 13	유료도로현황 및 연도별 이용실적	89
가- 14	조직형태 및 자본금 규모별 종업원규모별 사업체수	90
가- 15	산업 및 조직형태별 연간수송실적	91
가- 16	산업 및 기관별 차량경과년수별 차량대수(자동차)	94
나.	수상 운수업	95
나- 1	산업 및 조직형태별 총괄	96
나- 2	산업 및 종업원규모별 총괄	98
나- 3	산업 및 자본금 규모별 총괄	100
나- 4	산업 및 종업원 규모별 종업원수	102
나- 5	산업 및 종업원 규모별 피고용자수	104
나- 6	산업 및 종업원 규모별 직종별 연간급여액	106
나- 7	산업 및 조직형태별 운수비용	108
나- 8	산업 및 조직형태별 부가가치	112
나- 9	산업 및 조직형태별 유형고정자산(연말현재)	114
나- 10	산업 및 선질별, 기관별 선박척수	115
나- 11	산업 및 선질별 선박경과년수별 선박척수·톤수	116
나- 12	산업 및 장비경과년수별 하역창고장비대수	118
나- 13	조직형태 및 자본금규모별 종업원규모별 사업체수	119
나- 14	산업 및 조직형태별 연간수송실적	120
다.	항공 운수업	123
다- 1	항공기 보유현황 및 연간 수송실적	125
다- 2	항공운수업 총괄	126
라.	운수관련 서비스업	129
라- 1	산업 및 조직형태별 총괄	130

라 - 2	산업 및 종업원규모별 총괄	132
라 - 3	산업 및 자본금규모별 총괄	134
라 - 4	산업 및 보유창고 규모별 총괄	135
라 - 5	산업 및 종업원규모별 종업원수	138
라 - 6	산업 및 종업원규모별 직종별 피고용지수	140
라 - 7	산업 및 종업원규모별 직종별 연간급여액	142
라 - 8	산업 및 조직형태별 운수비용	144
라 - 9	산업 및 조직형태별 부가가치	148
라 - 10	산업 및 조직형태별 유형고정자산(연말현재)	150
라 - 11	조직형태 및 자본금규모별 종업원규모별 사업체수	151
3)	지역별	153
3-1	육상 운수업	
3-1-1	산업 및 지역별 총괄	154
3-1-2	산업 및 지역별 종업원수 및 연간급여액	156
3-2	수상 운수업	
3-2-1	산업 및 지역별 총괄	158
3-2-2	산업 및 지역별 종업원수 및 연간급여액	160
3-3	운수관련 서비스업	
3-3-1	산업 및 지역별 총괄	162
3-3-2	산업 및 지역별 종업원수 및 연간급여액	164

I. 결과표작성시 유의사항

1. 공통적용사항

- 1) 개인택시 및 용달과 개별화물의 모든 통계자료는 차량규모별은 5대 미만란에 종업원규모는 5인미만란 각각 포함시킨다.
- 2) 개인택시 및 용달과 개별화물의 사업체수는 각차량 1대를 1개사업체수로 계산하여 제표한다. 따라서 차량대수와 사업체수는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체수에서는 제외한다(이하 개인택시, 개인용달 및 개별화물사업체수를 집계하는 각표에 적용됨)
- 3) 조직형태별 통계자료에서 개인택시, 개인용달 및 개인화물은 조직형태 끝다음에 별도 제표한다(구체적인 제표요령은 해당표하단에 표기하였음, 가-1, 가-8, 가-9, 가-10).
단, 가-14 표의 「조직형태 및 자본금규모별 사업체수」에서는 개인택시, 개인용달 및 개별화물은 제외한다.
- 4) 가-15 표의 「산업 및 조직형태별 연간수동실적」에서 일반구역 화물운송업은 사업체화물과 개별화물로 나누어 제표한다.
- 5) 가-16 표의 「산업 및 기관별 차량경과년수별 차량대수(자동차)」에서 버스 및 택시운송업 조사표의 차량경과년수중 “5~8년미만”과 “8년이상”은 “5~10년이상”에 포함시킨다.
- 6) 지역별자료에서 시외철도(71111)와 유로도로(71171)는 지방청과 지사별로 제표하지 않고 철도청과 한국도로공사가 있는 서울, 경기도에 종괄하여 제표한다.

- 7) 여객 및 화물자동차 정류장업 (71161, 71162)에서는 장비대수를 구하지 않음.
- 8) 시외철도, 시내철도, 유료도로, 육상하역, 수상화물 하역업의 장비대수는 타 업종의 장비대수에 합산하지 않음.
- 9) 해당 수치가 없을 때는 「-」로 표시한다.
- 10) 단위미만으로 해당수치가 없을때는 「○」으로 표시한다.
- 11) 숫자가 마이너스(음수)일때는 숫자앞에 「-」표를 한다.
- 12) 금액을 백만원 단위로 절상한 경우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 한다.
- 13) 퇴직급여 총액금 전입액 (2103)은 인건비 (2102)에 합산하여 제표한다.
- 14) 증감율, 구성비 및 수준은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구한다.
- 15) 모든 지역별 자료에 대전직할시 (25)를 추가하여 제표한다.

2. 결과표별 유의사항.

가. 수준분석 및 결과보고용

- 1) 사업체당 주요지표는 육상부문에서 시내철도, 시외철도, 유료도로 및 항공운수업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해당란에 「-」표시를 한다.
- 2) 기타 특별 유의사항은 해당결과표 하단에 명기하였음.

나. 보고서 수록용

- 1) 결과표양식 (수준분석용, 결과보고용)의 모든 숫자의 단위표시는 점을 찍어 표시하지않고 한 킬럼 띄워서 표시한다.
- 2) 기타 특별유의사항은 해당 결과표 하단에 명기하였음.

Ⅱ. 결과표 양식

I) 수준 분석용

1 - 1 산업별, 지역별 및 사업체별 비전년 수준비교

산업분류번호	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명	전산번호	연도	사업체수(개)	종업원수(명)	급여액(만원)	종업원1인당연평균급여액(만원)	운수수입(만원)	운수비용(만원)	부가가치(만원)	유형고정자산(만원)	차량, 열차, 항공기대수 선박척수 하역장비대수 보관및창고수	선박톤수(G/T) (천톤)	보관소 및 창고면적 창야적장고	남부부가가치세(만원)	임대수입(만원)	수송종인원(명)	수송종톤수(%)	수송종거리(km)
				88 89 증감율																

① 운수수입 크기순(단, 개인택시, 개인용달 및 농산물 창고업의 표본조사업종은 제외한다)으로 지역별 산업별로 재표합.

② 전년도와 산업분류가 다른 경우가 나타날 시에는 해당 산업분류 앞에 「※」를 하여준다.

※ 잠정, 확정 공통지용표입.

1-2 산업별, 지역별 및 사업체별 운수비용

산업분류번호	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명	전산번호	연도	합계	재료비		인건비 퇴직급여 총당금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세금공과금	수수료	사용수수료	대손상각비	잡비	용선료
						동력비	기타재료비											
				88 89 증감율														

※ 사업체 고유번호 순으로 제표 (단, 개인택시, 개인용달 및 농산물 창고업의 표본조사 업종은 제외한다.)

※ 확정시만 제표

1-3 산업별 지역별 및 사업체별 직종별 종업원구성 (사업체 고유번호순)

산업분류번호	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명	전산번호	연도	합계	운전기사, 조종사 기관사(조사) 관리사, 사관 및 중기 운전기사	여객전무 및 차장, 안내원 및 조수, 보통 선원, 객실, 승무원	수리공, 정비공 및 냉동기 기사	차량, 열차, 항공기, 장비, 창고관계 및 선 내근무 기타 종업원	단순 노동자	안 내 원	감 수 정 원 및	사무(행 정, 영업 기술, 기능) 및 기타	사 무 급 가 족 종 사 자 및
				88 89 증감율										

※ 사업체 고유번호 순으로 제표 (단, 개인택시, 개인용달 및 농산물 창고업의 표본조사 업종은 제외한다.)

※ 확정시만 제표

1-4 산업별 운수업 총괄

산업분류번호	산업분류명	연도	사업체수(개)	종업원수(명)	급여액(만원)	1인당연평균급여액(만원)	운수수입(만원)	운수비용(만원)	부가가치(만원)	유형고정자산(만원)	차량, 열차 및 항공기 대수 선박척수, 하역장비대수, 보관 및 창고수	선박톤수, 보관 및 창고면적	임대수입(만원)	수송총인원(명)	수송총톤수(%)	수송총거리(천 km)
88 89 증감율 구성비																

※ 이하는 「1-4」표에서 「1-13」표까지 공통적용됨

① 하역업은 합계를 714로하여 육상하역업(71174), 수상화물하역업(71233)으로 프린트한다.

※ 잠정, 확정공통적용표임.

1-5 시도별 운수업총괄

산업분류번호	산업분류명	연도	사업체수(개)	종업원수(명)	급여액(만원)	1인당 연평균 급여액 (만원)	운수수입(만원)	운수비용(만원)	부가가치(만원)	유형고정자산(만원)	차량, 열차 및 항공기 대수, 선박 척수 하역장비대수 , 보관 및 창고수	선박톤수 보관 및 창고면적(㎡)	임대수입(만원)	수송종업원(명)	수송총톤수(㎏)	수송총거리(천km)
		88 89 증감율 구성비														

※ 잠정, 확정 공통 적용표임.

1-6 조직형태별 사업체구조

단위 : 개

산업분류번호	산업분류명	연 도	합 계	국가기관 및 공사	법 인	개 인
		88 89 증감율 구성비				

※ 확정시만 제표

1-7 직종별 종업원 구성

산업분류번호	산업분류명	연도	합계	운전기사, 조종사, 기관사 (조사) 관리사, 사관 및 중기 운전사	여객전무 및 차장, 안내원 및 조수, 보통선원, 객실 승무원	수리공, 정비공 및 냉장기기사	차량, 열차, 항공기, 장비, 창고 관계 및 선내근무 기타 종업원	단순노무자	안내원	검수·검량 및 원	감정원	사무(행정·영업, 기술기능) 및 기타	사무급가족종사자 및
		88 89 증감율 구성비											

※ 확정시만 제표

1-8 종업원 규모별 사업체구조

산업 분류	산업 분류 명	연 도	사업체 수 (개)			운수수입 (10 억 원)			부가가치 (10 억 원)		
			계	300 인미만	300 인이상	계	300 인미만	300 인이상	계	300 인미만	300 인이상
		88 89 증감율 구성비									

-20-

① 금액을 10억 단위로 절상할 경우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프린트한다.

(예 2.834. 2십억원)

※ 잠정 확정 공통적용표임.

1-9 업종별 운수비용

단위: 백만원

산 업 분 류	산 업 분 류 명	연 도	합 계	재 료 비		인 건 비		복 리 후 생 비	감 가 상 각 비	지 급 임 차 료	보 험 료	세 금 공 과 금	수 선 비	차 용 수 수 료	대 손 상 각	잡 비	용 선 료	
				동 력 비	기 타 재 료 비	퇴 직 급 여 총 당 금												
		88 89 증감율 구상비																

① 백만단위 절상의 경우에는 소숫점이하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십한다.

(예 1,875.619 백만원)

※ 화정시만 제표

1 - 10 시도별 운수업 신장 및 구조

	합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사 업 체 (개)	88 89 증감율 구성비	"	"	"	"	"	"	"	"	"	"	"	"	"	"	"
종 업 원 (명)																
운 수 수 입 (10 억 원)																
부 가 가 치 (10 억 원)																
종업원 1인당 연평균급여액 (만원)																
유형고정자산 (10 억 원)																

-22-

① 금액을 10억단위로 절상할 경우 소숫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프린트한다.

(예 2,834. 2십억원)

※ 잠정·확정 공통적용 표임.

1-11 사업체당 주요지표

(단위:명,만원,%)

산업분류	산업분류명	연 도	종업원수	운수수입	부가가치	유형고정자산
		88 89 증감율 수준				

① 시외철도, 시내철도, 유료도로 항공운송업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해당란에 「-」 표시를 한다.

② 개인택시 및 개인용달과 개별화물은 제외하고 제표한다.

※ 잠정·확정공통적용표임.

1-12 종업원 1인당 주요지표

단위 : 만원

산업분류	산업분류명	연 도	운수수입	부가가치	유형고정자산	연평균급여액
		88 89 증감율 수준				

※ 잠정·확정공통적용표임.

1-13 주 요 지 표

산 업 분 류	산 업 분 류 명	연 도	부가가치율(%)	설 비 투 자 효 율 (%)	노동장비율 (만 원)	노동생산성 (만 원)	노동소득 분배율(%)
		88 89 증감율 수 준					

< 주요지표 산식 >

$$(1) \text{ 부가가치율}(\%) = \frac{\text{부가가치}}{\text{운수수입}} \times 100$$

$$(2) \text{ 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종업원수}} \quad (\text{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3) \text{ 노동소득분배율}(\%) = \frac{\text{인건비}}{\text{부가가치}} \times 100$$

$$(4) \text{ 노동장비율(만원)} = \frac{\text{유형고정자산}}{\text{종업원수}}$$

$$(5) \text{ 설비투자효율} = \frac{\text{부가가치}}{\text{유형고정자산}} \times 100$$

※ 잠정·확정공통적용표임.

1-14 차량 1대당 주요지표

단위: 만원, 명

산업분류	산업분류명	운수수입	부가가치	종업원수	
				차량관계 종업원	기타종업원수
평	균				
71121	고속버스				
71122	시외버스				
71123	시내버스				
71131	택시				
71132	전세버스				
71141	노선화물				
71142	특수화물				
71143	일반구역화물				
71144	용달화물				
71145	장의차				
71173	임대차량				

① 평균은 해당산업분류 운수수입, 부가가치 및 종업원수(차량관계 종업원, 기타 종업원으로 구분)의 총계를 해당 산업분류의 총차량 대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② 종업원수는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숫점 첫째자리까지 프린트한다.

※. 잠정·확정공통적용표임.

1 - 15 육상여객 화물의 수송거리당 운수수입 및 비용 (사업형태별)

단위 : 원/km

구 분		시 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세 주	계		
운 수 수 입																			
운 수 비 용	21011 연 료 비	①경 유																	
		②휘발유																	
		③LPG																	
		④기 타																	
		계																	
		21012 기타재료비																	
		소 계																	
		2102.인 건 비																	
		2103.퇴직급여충당금																	
		2104.복 리 후 생 비																	
		2105.감 가 상 각 비																	
		2106.저 급 임 차 료																	
		2107.보 험 료																	
	2108.조 세 공 과																		
	2109.수 선 비																		
	2110.사 용 료 · 수 수 료																		
	2111.대 손 상 각																		
	2112.잡 비																		
	합 계																		
영 업 이 익																			
납 부 부 가 가 치 세																			

1 - 16 철도·지하철의 수송거리당 운수수입 및 비용 (여객, 화물별)

시 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세 주	제 계
구 분	1101.여객수입															
	1102.화물수입															
	1103.기타영업수입															
	합 계															
운 수	2101.재료비	2101① 경 유														
		2101② 방 카 유 C														
		2101③ 기 타														
		합 계														
		21012.전 력 비														
		21013.기타재료비														
	소 계															
	2102.인 건 비															
	2103.퇴직급여충당금															
	2. 1. 부 리 후 생 비															
	2105.감 가 상 각 비															
	용 비	2106.지 급 임 차 료														
2107.보 험 료																
2108.조 세 공 과																
2109.수 선 비																
2110.사 용 료 · 수 수 료																
2111.대 손 상 각 비																
2112.잡 비																
합 계																
영 업 이 익																
납 부 부 가 가 치 세																

1 - 17 수상운수업의 수송거리당 운수수입 및 비용

구 분		시 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세 주	계	
(2) 운 수 수 입																		
운 수 용	2101 연료비	①경 유																
		②방카 A 유																
		③방카 C 유																
		④기 타																
		계																
		21012 기타재료비																
		소 계																
		2102.인 전 비																
		2103.퇴직급여충당금																
		2104.복리 후생 비																
		2105.감가상각비																
		2106.지급임차료																
		2107.보 험 료																
		2108.조 세 공 과																
		2109.수 선 비																
	2110.사용료·수수료																	
	2111.대 손 상 각																	
	2112.잡 비																	
	2113.용 선 료																	
	합 계																	
	영 업 이 익																	
	남부부가가치세																	

1 - 18 항공운송업의 수송거리당 운수수입 및 비용 (여객, 화물선)

단위: 원/km

구 분		시 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세 주	계
		시	도															
운수수입	1101. 여객수입																	
	1102. 화물수입																	
	1103. 기타영업수입																	
합 계																		
운수비용	2101. 재료비	21011 ① 항공유																
		21012 ② 기타																
		합 계																
	21013. 기타재료비																	
	소 계																	
	2102. 인건비																	
	2103. 퇴직급여충당금																	
	2104. 복리후생비																	
	2105. 감가상각비																	
	2106. 지급임차료																	
	2107. 보험료																	
	2108. 조세공과																	
2109. 수신비																		
2110. 사용료·수수료																		
2111. 매손상각																		
2112. 잡비																		
합 계																		
영업이익																		
납부부가가치세																		

1 - 19 육상여객의 시도별 운행현황

시 도	업 종	고속버스	시의버스	시내버스	택 시	전세버스	장 의 차	다량임대업
서울	보유대수							
	가동율(%)							
	1일 대당주행거리							
	1일 대당운행횟수							
부산	보유대수							
	가동율(%)							
	1일 대당주행거리							
	1일 대당운행횟수							

-31-

※ 차량임대업은 1일대당 운행횟수를 집계하지 않는다.

※ 공 식

$$\bullet \text{ 가동율} = \frac{\text{가동대수}}{\text{보유대수} \times 365} \times 100$$

$$1 \text{ 일대당 운행횟수} = \frac{\text{운행횟수}}{\text{가동대수}}$$

$$\bullet 1 \text{ 일대당 주행거리} = \frac{\text{수송거리}}{\text{가동대수}} \times 100$$

Ⅱ) 결과 보고용

가. 잠정결과 보고용

가-1 운수업 구조

사업분류	사업체 (개)	종업원 (명)	운수수입 (10억원)	구 성 비 (%)							
				사업체	종업원	운수수입					
	5	8	2	8	2	3	5	2	5	2	5

37

※ 이하는 가-1, 가-2, 가-4, 가-6, 표에 공통적용됨.

- ① 71, 711, 712, 713, 714 (하역업), 719의 모든 해당숫치는 더블펀치(고딕체)하여 프린트한다.
- ② 하역업은 총계만 프린트 한다.
- ③ 창고업도 총계만 프린트 한다.
- ④ 내륙수상여객은 내항여객에, 내륙수상화물은 내항화물에 각각 포함한다.
- ⑤ 60 라인에 34개 산업분류가 들어갈수 있도록 배분하여 프린트 한다.
- ⑥ 금액을 10억 단위로 절상할 경우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프린트한다.
(예 2,834.2십억원)

가-2 운수업 신장

구분	운수수입 (10억원)		종업원 (명)		증감율 (%)	
	'88	'89	'88	'89	'88	'89
① 사업체	1,821	1,821	1,821	1,821	0	0
② 종업원	1,821	1,821	1,821	1,821	0	0
③ 운수수입	1,821	1,821	1,821	1,821	0	0
④ 사업체	1,821	1,821	1,821	1,821	0	0
⑤ 종업원	1,821	1,821	1,821	1,821	0	0
⑥ 운수수입	1,821	1,821	1,821	1,821	0	0

(단위: '88년 10월 31일 현재)

① 사업체: 1,821 (10억 원) / 1,821 (명) / 0% (증감율)

② 종업원: 1,821 (명) / 1,821 (명) / 0% (증감율)

③ 운수수입: 1,821 (10억 원) / 1,821 (10억 원) / 0% (증감율)

④ 사업체: 1,821 (10억 원) / 1,821 (명) / 0% (증감율)

⑤ 종업원: 1,821 (명) / 1,821 (명) / 0% (증감율)

⑥ 운수수입: 1,821 (10억 원) / 1,821 (명) / 0% (증감율)

구분	운수수입 (10억원)		종업원 (명)		증감율 (%)	
	'88	'89	'88	'89	'88	'89
① 사업체	1,821	1,821	1,821	1,821	0	0
② 종업원	1,821	1,821	1,821	1,821	0	0
③ 운수수입	1,821	1,821	1,821	1,821	0	0
④ 사업체	1,821	1,821	1,821	1,821	0	0
⑤ 종업원	1,821	1,821	1,821	1,821	0	0
⑥ 운수수입	1,821	1,821	1,821	1,821	0	0

가-1 운수업 신장

가-3 각종 차량1대당 주요지표

산 업 분 류	종 업 원 수 (명)		운 수 수 입 (만원)			
	'88	'89	'88	'89		
평 균	5	8	2	8	2	8

- 39 -

① 다음의 해당 산업분류만 프린트 한다.

평 균

- 71121
- 71122
- 71123
- 71131
- 71132
- 71141
- 71142
- 71143
- 71144
- 71145
- 71173

② 평균은 해당산업분류 운수수입, 종업원수의 총계를 해당산업분류의 총차량 대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③ 종업원수는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며 소숫점 첫째자리까지 프린트한다.

④ 평균의 해당수치는 더블펀치한다.

⑤ 48 라인에 해당 산업분류가 프린트 될 수 있도록 배분하여 제표한다.

가-4 부가가치의 구조 및 신장

산업 분류	부가가치 (10 억원)	구성비 (%)	비전년 증감율 (%)	
			'88	'89
	5	12	10	10

가-5 유형고정자산의 구조 및 신장

산업분류	유형고정자산 (10억원)	구 성 비 (%)	비 전 년 증 감 율 (%)	
			'88	'89
			10	10
		12		
	5			

가-6 운수장비의 구조 및 신장

산업분류	장비수 (대, 량, 척/천톤 千㎡)	구성비 (%)	비전년증감율 (%)	
			'88	'89
	5	20	20	15
			15	15

① 수상운수업 (내항여객, 내항화물, 외항여객, 외항화물)의 경우는 장비수, 구성비, 비전년 증감율을 앞에는 척에 관한 숫자를 프린트 하고 두칼럼 띄어서 톤에 관한 숫자를 프린트 한다.

(예; 장비수 1,130 7,827 구성비 13.3 0.5 증감율 -0.7 -0.8 식으로 프린트 한다).
 $\begin{matrix} 2C \\ \backslash \end{matrix}$ $\begin{matrix} 2C \\ \backslash \end{matrix}$ $\begin{matrix} 2C \\ \backslash \end{matrix}$

② 시외철도(71111), 시내철도(71112), 여객자동차정류장업(71161), 화물자동차정류장업(71162), 유료도로(71171), 수로안내업(71231), 선박청소업(71232), 선박임대업(71236), 선박중개업(71914) 항공운수보조서비스업(71320), 화물운송대행업(71911), 여행알선업(71912) 및 포장접수업(71915)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해당란에 「-」 표시를 한다.

③ 시내버스(71123)는 도시형과 좌석형으로 택시(71131)는 중형과 소형으로 구분하여 제표한다.

예) 시내버스	대	택시	대
도시형	대	중형	대
좌석형	대	소형	대

나. 확정결과 보고용

나-1 운수업 총괄

산업분류	사업체 수		종업원 수		금액액		운수수입		운수비용		부가가치		유형고정자산		수송장비	
	'88	'89	'88	'89	'88	'89	'88	'89	'88	'89	'88	'89	'88	'89	'88	'89
	수	구비전년증감율	수	구비전년증감율	수	구비전년증감율	수	구비전년증감율	수	구비전년증감율	수	구비전년증감율	수	구비전년증감율	수	구비전년증감율
(개)	(%)	(개)	(%)	(명)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천원)	(%)
5	12	12	6	6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24 24 12 12	

- ① 71.711.712.713.714 (하역업), 719의 모든 해당 숫치는 더블펀치(고딕체)하여 프린트한다.
- ② 66 라인에 36개 산업분류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배분하여 프린트한다.
- ③ 창고업은 총계만 프린트한다.
- ④ 하역업은 총계, 육상하역, 수상하역으로 나누어 프린트한다.
- ⑤ 내륙수상여객은 개항여객에, 내륙수상화물은 내항화물에 각각 포함한다.
- ⑥ 금액을 10억단위로 절상할 경우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프린트한다.
(예 2,834.2 십억원)
- ⑦ 수상운수업(내항여객, 내항화물, 외항여객, 외항화물)의 경우는 장비수, 구성비, 증감율을 앞에는 척에 관한 숫자를 프린트하고 2칼럼 띄어서 톤에 관한 숫자를 프린트한다.
(예, 장비수 1.113 7.827 구성비 13.3 0.5 증감율 -0.7 -0.8식으로 프린트한다)

※ 수송장비에서는 시외철도(71111), 시내철도(71112), 여객자동차정류장업(71161), 화물자동차정류장업(71162) 유료도로(71171), 수로안내업(71231), 선박정소업(71232), 선박임대업(71236), 선박중개업(71914), 항공운수보조서비스업(71320), 화물운송대행업(71911), 여행알선업(71912) 및 포장·검수업(71915)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해당란에 「-」표시를 한다.

나-2 조직형태별 사업체구조

단위: 개, %

산 업 분 류	합 계		조 직 형 태																
	'88	'89		국가기관 및 공사				법 인				개 인							
		구성비	비전년 증감율	'88	'89	구성비	비전년 증감율	'88	'89	구성비	비전년 증감율	'88	'89	구성비	비전년 증감율				
	7															6	6	7	1
5	7	6	6	7	1	7	6	6	7	1	7	6	6	7	1	7	6	6	7

① 나-1 표의 ①②③④⑤⑥⑦항 공통적용

나-3 직종별 종업원 구성

단위: 명, %

산업 분류	합계	운전기사, 조종사, 기관사 (조사) 관리자, 사관 및 중기운전자		여객전무 및 차장, 안내원 및 조수, 보통선원, 객실승무원		수리공, 정비공 및 냉장기기사		차량, 열차, 항공기장비, 창고관계 및 선내근무 기타 종업원		단순노무자		안내원		검수, 점량 및 감정원		사무(행정, 영업, 기술 기능) 및 기타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5	8	7	8	7	8	7	8	7	8	7	8	7	8	7	8	7	8	7	8	7

① 나-1표의 ①, ②, ③, ④, ⑤, ⑥ 항 공통적용

나-4 종업원 규모별 사업체구조

단위: 개, 10억원, %

산업분류	사업체 수			운수 수입			부가가치		
	계	300인미만	300인이상	계	300인미만	300인이상	계	300인미만	300인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5	10	5	10	5	10	5	10	5

① 나-1표의 ①②③④⑤항 공통적용

나-5 업종별 운수비용

단위 : 백만원, %

산 업 분 류	합 계		재 료 비				인 건 비			부 리 후 생 비	감 가 상 각 비	지 임 차 료	급 보 험 료	세 금 공 과 금	수 선 비	사 용 대 수 수 료	대 손 각	손 각	잡 비	용 선 료	
	구 성 비	구 성 비	구 동 력 비	구 성 비	기 타 재 료 비	구 성 비	퇴 직 금	구 성 비	구 성 비	구 성 비	구 성 비	구 성 비	구 성 비	구 성 비	구 성 비	구 성 비	구 성 비	구 성 비	구 성 비	구 성 비	
	5	12	5	12	5	12	5	12	5	12	5	12	5	12	5	12	5	12	5	12	5

-51-

- ① 나-1표의 ①, ②, ③, ④, ⑤ 항 공통적용
- ② 금액을 백만 단위로 절상할 경우에는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6 시도별 운수업신장 및 구조

		공백	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 (개)	'88 '89 증감율 구성비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종업원 (명)	"																		
운수수입 (10억원)	"																		
부가가치 (10억원)	"																		
종업원 1인당 연평균급여액 (만원)	"																		
유형고정자산 (10억원)	"																		

- ① 나→1표 ② ⑥ 항 공통적용
 ② 개인택시 및 개인용달의 사업체수는 시도별로 1개씩 배분한다.

나-7 사업체당 주요지표

단위: 명, 만원, %

산업분류	종업원수			운수수입			부가가치			유형고정자산			
	'88	'89	수준	'88	'89	수준	'88	'89	수준	'88	'89	수준	
	5	12	12	9	12	12	9	12	12	9	12	12	9

① 나-1표의 ①②③④⑤항 공통적용

② 시외철도, 시내철도, 유료도로, 항공운송업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해당란에 「-」 표시를 한다.

나-8 종업원 1인당 주요지표

단위: 만원

산업분류	운수수입			부가가치			유형고정자산			연평균급여액			
	'88	'89	수준	'88	'89	수준	'88	'89	수준	'88	'89	수준	비전년 증감율
	10	10	8	10	10	8	10	10	8	10	10	8	8

① 나-1 표의 ①②③④⑤ 항 공통지용

나-9 주요 지표

산업분류	부가가치율(%)			설비투자효율(%)			노동장비율(만원)				노동생산성(만원)				노동소득분배율(%)				
	'88	'89	수준 (%)	'88	'89	수준 (%)	'88	'89	수준 (%)	비전년 증감율 (%)	'88	'89	수준 (%)	비전년 증감율 (%)	'88	'89	수준 (%)	비전년 증감율 (%)	
	5	9	9	8	9	9	8	9	9	8	8	9	9	8	8	9	9	8	8

-55-

① 나-1표 ①②③④⑤항 공통착용

<주요 지표산식>

(1) 부가가치율(%) = $\frac{\text{부가가치}}{\text{운수수입}} \times 100$

(2) 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종업원수}}$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3) 노동소득분배율(%) = $\frac{\text{인건비}}{\text{부가가치}} \times 100$

(4) 노동장비율(만원) = $\frac{\text{유형고정자산}}{\text{종업원수}}$

(5) 설비투자효율(%) = $\frac{\text{부가가치}}{\text{유형고정자산}} \times 100$

나-10 차량1대당 주요지표

단위: 만원, %, 명

산업분류	공백	운수수입			부가가치			종업원수									
		'88	'89	수준	'88	'89	수준	차량관계종업원			기타종업원수						
								'88	'89	수준	'88	'89	수준				
5	20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평균																	
71121																	
71122																	
71123																	
71131																	
71132																	
71141																	
71142																	
71143																	
71144																	
71145																	
71173																	

- ① 평균은 해당 산업분류의 총 운수수입, 종업원수(차량관계종업원, 기타 종업원으로 구분), 부가가치를 해당 산업분류의 총차량 대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 ② 종업원수는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며 소숫점 첫째자리까지 프린트 한다.
- ③ 평균의 해당숫치는 더블펀치한다.
- ④ 48 라인에 해당 산업분류가 프린트 될수 있도록 배분하여 제표한다.

Ⅲ) 보고서 수록용

1989년 기준

운수업통계조사지침서

(1990. 4. 실시)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목 차

I. 조사개요	5
1. 조사목적	5
2. 조사연혁	5
3. 법적근거	5
4. 조사기준시점 및 기간	5
5. 조사표 제출기간	6
6. 조사범위 및 대상	6
7. 조사단위	8
8. 조사표의 종류	
9. 조사항목	8
10. 조사방법	8
11. 결과공표	9
II. 조사담당자의 임무	10
1. 사전조사	10
2. 실 사	13
3. 유고사업체 처리	16
III. 조사표 기입요령	18
가. 육상운수업 조사표	19
(1) 사업체 개황	19
(2) 조직형태	20

(3) 사업형태	20
(4) 자본금 또는 출자금 (회사법인에 한함)	21
(5) 차량 보유현황	21
(6) 연간 수송실적	24
(7) 종업원수 및 연간급여액	26
(8) 연간 운수수입 및 비용	29
(9) 임대수입	36
(10) 유형고정자산	36
(11) 건설가계정	39
(12) 기 타	39
나. 수상운수업 조사표	43
(1) 사업체 개황	43
(2) 조직형태	43
(3) 사업형태	43
(4) 자본금 또는 출자금	43
(5) 선박 보유현황	43
(6) 연간 수송실적	44
(7) 종업원수 및 연간급여액	45
(8) 연간 운수수입 및 비용	46
(9) 임대수입	47
(10) 유형고정자산	47
(11) 건설가계정	47

다. 하역업 조사표	49
(1) 사업체 개황	49
(2) 조직형태	49
(3) 사업형태	49
(4) 자본금 또는 출자금	50
(5) 장비 보유현황	50
(6) 연간 하역실적	50
(7) 종업원수 및 연간급여액	50
(8) 연간 하역수입 및 비용	50
(9) 임대수입	51
(10) 유형고정자산	51
(11) 건설가액정	51
라. 운수관련 서어비스업 조사표	51
(1) 사업체 현황	51
(2) 조직형태	51
(3) 사업형태	51
(4) 자본금 또는 출자금	51
(5) 보관소·창고 및 장비 보유현황	52
(6) 화물취급능력 및 연간실적	52
(7) 종업원수 및 연간급여액	53
(8) 연간 화물취급수입 및 비용	54
(9) 임대수입	54
(10) 유형고정자산	54

(1) 건설가계정	55
(2) 기 타	55
마. 버스 및 회사택시 운송업 조사표	55
바. 주요착오사례	56
IV. 조사표 심사 및 정리요령	60
1. 공통사항	60
2. 항목별 검토요령	61
3. 증감요인 분석표 작성요령	65
V. 요계표 작성	67
VI. 부호 기입요령	70
VII. 운수업 통계조사표 (지역별소득 추계 자료) 기입요령	76
VIII. 조사표 편철, 조사표지기입 및 조사표류제출요령	78
가. 조사표 편철	78
나. 조사표지 기입요령	78
다. 조사표류 제출요령	78
라. 질의 조회분 조사표 제출	79
부 록	
1. 한국표준산업분류 (1984.1.26 제 5 차개정)	80

I.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운수업부문의 고용, 급여, 운수장비, 운수수입 및 비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동부문의 수준과 구조 변동 및 영업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경제정책 수립 및 이의 시책효과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2. 조사연혁

중소기업은행에서 64년, 69년 2회 실시하여 오던 동 조사를 정부의 통계 일원화 및 강화계획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으로 이관하여 발전시키도록 결정함에 따라 이를 1976년 기준조사부터 부활 실시하게 된 이래 금년조사는 제14회 조사가 된다.

3. 법적근거

본 조사는 통계법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승인번호 111-11-16호)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사대상 사업체에서는 응답의 의무가 있다. 또한 본 조사에서 얻어진 통계자료는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조사 종사자가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통계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조사기준시점 및 기간

- (1) 조사기준일 : '89.12.31 현재
- (2) 조사대상기간 : '89. 1. 1~12.31(1년간)

(3) 조사실시기간 : '90. 4. 1~4.30(1개월간) : 당국조사원

'90. 4. 1~4. 7(7일간) : 버스 및 택시조합

조사기준기간과 사업체의 결산기간이 다를 경우에는 당해 사업체의 직
근 1년간의 결산기간을 조사기준기간으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5. 조사표 (요계표, 부표) 제출기한

'90. 5. 31일까지 [버스 및 회사택시운송업부문의 조사표 (요계표, 부표)
도 동일기한] 조사관리과로 제출한다.

6. 조사범위 및 대상

(1) 조사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 중분류 71 운수 및 창고업 ” 을 조사
범위로 한다.

(2) 조사대상업종 (40 개)

- 당국조사원 조사대상업종

① 육상운수업

- | | |
|-------------|----------------|
| • 시외철도 | • 시내철도 (지하철) |
| • 개인택시 | • 노선화물 |
| • 특수화물 | • 일반구역화물 |
| • 용달화물 | • 여객자동차 정류장 |
| • 화물자동차 정류장 | • 유료도로 |
| • 차량임대업 | • 육상하역 |
| • 장의차량 | |

② 수상운수업

- | | |
|--------|--------|
| • 내항여객 | • 내항화물 |
|--------|--------|

- 외항여객
- 내륙수상여객
- 수상화물하역
- 선박청소업
- 기타내륙수상운송업
- 선박구난업

- 외항화물
- 내륙수상화물
- 수로안내업
- 선박임대업

③ **항공운수업**

- 항공운송업

- 항공운수보조 서비스업

④ **운수관련 서비스업**

- 화물운송 대행업
- 여행알선업
- 포장, 검수 및 유사서비스업
- 보통창고
- 냉장창고
- 위험물 창고
- 농산물 창고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보관 및 창고

- 선박중개업

- 버스 및 택시조합연합회를 통한 조사대상업종

- 고속버스
- 시내버스
- 회사택시

- 시외버스
- 전세버스

7. 조사단위

- (1) 조사단위는 운수 및 창고업을 경영하는 기업체(이하 사업체라 한다)이다.
- (2) 단일사업체의 보조단위인 운수업부문의 영업소, 수리공장, 지사, 사무소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체(본사)에 포함 조사한다.

8. 조사표의 종류

- (1) 버스및택시운송업조사표
- (2) 육상화물조사표
- (3) 수상운수조사표
- (4) 철도운수조사표
- (5) 유료도로운영업조사표
- (6) 항공운수조사표
- (7) 운수관련서비스업조사표
- (8) 하역업조사표

9. 조사항목

- 사업체 개황, 조직형태, 수송(하역, 보관)장비 보유현황, 연간수송(하역, 보관) 실적, 종업원수 및 연간급여액, 연간운수(하역, 보관)수입 및 비용, 유형고정자산 등 11개 항목

10. 조사방법

- 전수조사
 - 버스(고속, 시외, 시내 및 전세버스) 및 회사택시: 버스 및 회사

택시업체에 의한 자계식조사

- 철도, 화물, 수상, 항공 및 운수관련서비스업 : 당국조사원에 의한 면
접타계식조사

- 표본조사

- 개인택시 및 개인용달
- 농산물 창고

11. 결과공표

- 잠정집계결과 : '90. 8월중
- '89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 : '90. 11월중

Ⅱ. 조사담당자의 임무

1. 사전조사

(1) 사업체 명부 확인

① 조사담당자는 자기 담당조사구내의 지리적인 조건을 충분히 파악하여 빠짐없이 답사할 수 있도록 실사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조사담당자는 담당조사구내를 답사하여 명부상의 사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 명부상의 사업체 소재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유고업체로 처리하지 말고 계속 추적하여 존재(存廢)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신규사업체 색출

사업체 명부에 등재된 사업체만 조사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담당 조사구내에서 명부에 누락된 사업체나 신규사업체가 없는가를 확인하여 사업체 명부를 보완 정리한다.

(3) 사업체 명부보완 및 정리

① 신규사업체

명부에서 누락되었거나 '89년도중에 새로 창설된 사업체를 말하는 바, 이는 동일 행정구역 동일업종 말미에 등재한 다음 비고란에 「신규」 또는 「'89년 창설」이라고 기록한다.

② 전입사업체

타시·도 또는 타조사구로부터 전입된 사업체는 신규사업체의 정렬요령에 따라 정리하되 고유번호는 반드시 종전번호를 기입하며 일련번호는 새로운 번호를 각각 부여하고 비고란에 「○○시·도, ○○구·시·군으로부터 전입」이라 기입한다.

③ 진출 또는 본사 조사가능 사업체

소재지 변경 또는 현지 조사불능인 사업체는 조사가능지로 진출시키고 “비고”란에 「○○시·도 ○○구·시·군 본사조사가능」 또는 「○○시·도 ○○구·시·군으로 진출」이라 기입한다.

④ 폐업 등의 유고사업체

여하한 경우라도 사업체 전체를 삭제하지 말고 유고내용만을 비고란에 상세히 기입한다.

⑤ 정정요령

조사표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정하되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색볼펜을 사용하여 두 줄을 긋고 상단에 정확히 정정한다.

⑥ 항목별 보완요령

1 행정구역번호

한국행정구역 분류번호와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정정한다.

2 일련번호

정정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추가 등재시에만 맨 끝 번호의 다음 번호를 부여한다.

3 고유번호

정정 불요

4 산업분류번호

신규사업체, 전입사업체 또는 산업분류의 착오시에는 부록의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번호에 따라 정정 또는 기재하고 비고란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입한다.

5 사업체명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공식명칭을 기재한다.

6 전화번호

응답자가 많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7 소재지

구·시·군이 틀리면 구·시·군명을 정정 기재하고, 동·읍·면 및 번지까지 정확히 기재한다.

8 유고부호

그대로 공란으로 놓아 둔다.

9 비 고

유고사업체의 유고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본사조사기능

본사(본점) 또는 다른 사업소에서만이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서 조사가가능업소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상세히 기입한다.

· 합 산

명부상 2개이상의 사업체를 하나의 조사표에 합산하여 작성한 경우로서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체의 비고란에 「○○번(사업체 고유번호) 사업체에 합산」이라고 기록한다.

· 휴 업

· 폐 업

· 중 부

반드시 동일주소의 동일업종 또는 동일창고일 때에만 “중부”으로 처리한다.

- 대상외
- 기 타

상기 6개항 이외의 유고내용 즉 전입, 전출,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비교란에 자세히 기재한다.

⑦ 사업체 명부 총괄

실사시 조사담당자별로 정리·보완된 사업체 명부를 기준하여 사업체명부 총괄표를 작성한다.

2. 실 사

(1) 사업체확인 및 사업체 명부의 보완이 완료되면 조사대상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한다.

(2) 실사시 특히 유의할 사항

① 기간내 조사불능인 사업체

사업체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관계장부 또는 서류가 관계기관에 영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인된 결산서가 있으면 이에 따라 작성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가능한 항목까지만 조사하되 작성책임자로부터 언제까지 작성·제출하겠다는 확인을 받아 일단 유고사업체로 처리한 다음에 추후 회수하여 제출한다.

② 본사 조사가능 사업체

현지의 사업체가 지점·영업소 또는 출장소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본사에서 직접 현지사업체의 영업을 관찰함으로써 본사에서만이 조사가 가능하다면 본사의 정확한 소재지와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여 동일 통

계사무소 관할내의 소재지이면 소장에게 보고하고, 타통계사무소 관할의 소재지이면 해당 통계사무소장에게 속히 통보하며 이 내용을 조사관리과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2 만일 본사와 별개로 독자적인 영업을 하고 독립채산으로 회계처리를 할 경우에는 현지사업체에서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

③ 겸업사업체

1 운수업과 타산업과의 겸업

· 운수업과 타산업(제조업·도소매업등)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부의 의거하여 분리조사하되 장부에 따라 분리조사가 어려운 경우라면 총매출액에 대한 운수수입 비율로 각조사항목을 배분하여 조사표를 반드시 분리작성한다.

· 상기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분명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해당활동 종업원수 또는 장비의 정도에 의해 분리 작성한다.

2 운수업 내 상호간 겸업

분리조사를 원칙으로 하나 분리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사대상기간중 연간 총수입이 많은 업종에 합산하여 작성하되, 수입이 적은 업종에 대한 운수장비(선박, 차량 등)수를 적요란에 기입한다.

예) 연간총수입이 내항여객운송업)내항화물운송업.....

내항여객운송업에 포함조사

적요.....내항화물선 100G/T 1척

※ 전세버스와 여행알선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주업종인 전세버스운송업에 알선수입을 포함조사하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 여행알선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전세버스와 여행알선업을 겸업하지 않은 순수한 여행알선업체만을 조사한다.

④ 조사에서 제외되는 사업체

1 리·동단위의 새마을 창고

2 비영업용인 자가용차량, 선박, 창고 등만을 가진 업체

3 농업협동조합 창고(단위조합 포함, 중앙에서 일괄조사)

4 서울이외의 지방에 소재하는 대한통운주식회사의 산하 지방영업소
(본사에서 일괄조사)

5 개인택시, 개인용달, 농산물 창고업종

표본조사대상으로 추출된 이외의 차량 및 창고업체

6 버스(고속, 전세, 시외 및 시내버스) 및 회사택시(각 시도조합
을 통한 자계식조사)

7 내륙수상운수업

· 1개사업체가 해당 20G/T미만의 선박만을 보유하고 있는 사
업체

· 거룻배운영업

8 기타내륙수상운송업(관광유람선)

· 바동력선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

· 1개사업체에서 1척의 선박을 보유한 경우에는 선박크기가 20
G/T 미만인업체

· 1개업체에서 2척이상의 선박을 보유한 경우에는 업체선박 총
톤수가 20G/T 미만인업체

⑤ 누락되기 쉬운 업종(반드시 조사되어야 할 업종)

1 목재하치장(수면창고), 폐차장, 주류보관업체 및 고철야적장 등의

창고업체 (달리 분류되지 않은 창고로 분류)

2 보세창고

3 나용선 (외국에서 임차 운행하는 선박)

4 비직영차량 (지입제 차량)

3. 유고사업체 처리

유고사업체라 함은 휴업·폐업·소재불명·이전·명칭변경·응답 불응업체 등을 말하며, 담당사업체중에서 유고사업체가 발생하였을 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휴업 사업체

휴업중이더라도 임직원의 협조를 얻어 '89년(결산기)실적을 반드시 조사한다.

(2) 폐업 사업체

폐업사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관할세무서·구·시·군·읍·면·동사무소 또는 각 운송사업조합 등에 문의하여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합병 또는 영업양도인 경우에는 추적 조사하여야 한다.

② 완전 폐업된 경우에는 유고 처리한다.

(3) 소재불명 사업체

① 대상사업체의 관할세무서, 구·시·군·읍·면·동사무소 또는 각 운송사업조합 등에 문의하여 소재지를 정확히 확인하여 조사한다.

② 도저히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는 소재불명 사업체로 유고처리한다.

(4) 이전 사업체

① 동일 통계사무소의 타조사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한 소재지 및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여 즉시 통계사무소장에게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사무소장은 전입된 지역의 조사담당자에게 조사토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② 다른 통계사무소 관할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조사담당자는 사업체명, 이전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사무소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사무소장은 즉시 해당 통계사무소장에게 통보하고 사후에 이를 조사관리과에 일괄하여 보고한다.

(5) 명칭변경 사업체

사업체의 명칭만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명칭대로 조사하고 조사표 뒷면 적요란에 명칭변경일시를 기재한다.

(6) 응답불응 사업체

① 피조사자가 비협조적이거나 거절하는 태도를 보일지라도 조사담당자는 당황하거나 불손한 태도를 보여서는 절대로 안되며, 조사목적의 중요성을 설명하여 응답자의 협조를 구한다.

그 자리에서 조사가 어려울 때는 두번 세번 재방문하여 성의있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여 협조를 얻도록 한다.

② 이와 같이 하여도 협조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사무소장에게 그 경위와 사유를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7) 본사 조사가능 사업체

창고건물만 있거나 단순한 영업소로서 현지에서 조사가 불가능하여 다른 조사구에 있는 본사(본점) 또는 사무실에서만 조사가 가능하면 본사 조사가능 사업체로 하여 이전사업체에 준하여 유고 처리한다.

Ⅲ . 조사표 기입 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 1) 조사표의 모든 기재사항은 운수업부문만 기입한다(단, 겸업사업체에 대하여는 15 페이지의 “③겸업사업체” 처리 요령에 따라 기입한다)
- 2) 조사표의 작성은 항목별 기입요령에 따라 장부에 의한 자료를 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본 조사표는 '89.1.1~12.31 일의 1년간 자료에 의거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결산기간이 다를 경우는 직근 1년간의 결산자료에 의한다.
- 4) 조사표 기재는 반드시 흑색이나 청색의 「볼펜」을 사용하며, 금액단위는 점선으로 구분한 각 란에 맞도록 정확 명료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 5) 본 조사는 금액중심의 조사이므로 금액으로 조사하여야 한다(종업원 수, 연간수송실적 및 차량(장비)보유현황은 제외)
- 6) 모든 금액단위는 “만원”으로 한다. 단, 자본금 및 출자금, 건설가계정은 “백만원”단위임.
- 7) 만원 미만은 4사5입한다(자본금과 건설가계정은 백만원미만 4사5입)
- 8) 숫자는 반드시 1, 2, 3……과 같은 「아라비아」숫자로 기입한다.
- 9) 조사표중 “※”표가 있는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 10) 되도록 조사표 기재시 착오나 오기를 정정할 경우를 예상하여 수정할 수 있는 여백(1/2 정도)를 남겨두고 기록한다.
- 11) 기재사항이 잘못된 부분은 복선(=)을 긋고 그위에 정정기입하며 해

당사항이 없는 란은 사선을 좌상에서 우하로 긋는다(\)

12) 조사표상 사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입하지 않는다.

13) 조사표 작성시 일부항목의 내용을 정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와 관련된 항목의 내용도 재검토하여 상호연관되는 항목은 반드시 일치되도록 한다.

14) 각 항목별 합계란의 계산을 철저히 하여 계수의 정확을 기한다.

2. 조사항목별 기입요령

가. 육상운수업 조사표

(1) 사업체 개황

① 사업체명

1 사업체가 법인 또는 단체일 때는 등기 또는 등록된 명칭을 말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영업상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말한다.

2 일정한 사업체 명칭이 없을 때에는 대표자명단에 대표자(또는 기업주)의 성명만을 기입한다.

② 대표자명

대표자 또는 사업주명을 말한다.

③ 전화번호

본 란을 각별히 유의하여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④ 소재지

1 사업체가 사업을 실제로 경영하고 있는 장소 또는 등록된 행정구역상의 주소를 말한다.

2 시·도의 명칭부터 번지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입하며, 인쇄된 행정단위 명칭에 반드시 ○표로 표시한다.

3 소재지는 한글로 기입하며 한문으로 기입할 경우는 정자로 기입한다.

(2) 조직형태

① 경영주체인 사업체의 법적 조직형태를 말하며 본 조사에서는 국가기관, 공사, 회사법인 기타법인 및 개인의 5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법인이란 상법,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법인등기를 완료하여 법인격을 갖추고 있는 조직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사단법인, 특별법에 의한 특별법인 등이 있다. 회사법인이란 상법상의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를 말하며, 기타법인은 국가기관, 공사 회사법인 이외의 모든 법인을 포함시킨다.

※ 준법인은 「개인」으로 분류

② 개인업체에는 1인 소유의 업체와 2인 이상이 동업을 하는 업체도 포함시킨다.

(3) 사업형태

① 부록, 한국표준산업분류(운수업부문) 참조

② 운수업내 겸업인 경우에는 분리조사가 원칙이나 합산조사하는 경우에는 주업종 한곳에만 ○표하고, 업종별 차량대수 및 선박톤수등 장비대수를 적요란에 기입한다.(14페이지의 “겸업사업체” 참조)

③ 사업체명부상의 사업형태(산업분류번호)대로 “○”표하지 말고, 사실상의 사업형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명부상의 사업형태와 다를 때에는 반

드시 재확인 한다음, 명부상의 사업형태를 정정하고, 그 내용을 “비고”란에 상세히 기입함은 물론 요계표와도 일치시켜야 한다.

④ 특수차량의 구분

— 특수차량에는 유조차량, 냉장차량, 기타특수시설차량 및 컨테이너 화물차량(트랙타와 트레일러)이 있는 바, 트랙타는 견인차의 일종으로 차량대수에 산입하나, 자체추진력을 갖지 않는 트레일러는 차량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컨테이너(트레일러)만을 운반(견인)하는 트랙타와 특수, 유류 또는 목재적재용 트레일러를 운반(견인)하는 트랙타와 유조차, 탱크로리 등은 특수화물운송업에 분류한다.

(4) 자본금 및 출자금(회사법인, 기타법인 및 공사에 한함)

① 사업체는 일정한 자본금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89.12.31 현재 납입완료된 회사 및 조합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한다.

② 그 조직형태에서 “③개인”에 0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란은 사선(\)을 긋는다(즉, 개인사업체는 기입하지 않음)

(5) 차량 보유현황

· '89.12.31 일 현재 당해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용 차량을 말하는데, 사업체 소유가 아닌 타인소유의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는 차량도 포함한다.

즉, 차량소유기준은 소유주의와 관리주의가 있는데 편의상 관리주의를 채택한다.

· 차량보유대수는 영업용 차량만 해당됨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차량보유대수가 사업체명부와 다를 때는 그 사유를 확인하여 조사표 뒷면「적요」란에 기입한다.

① 기관별 차량대수

여객 및 화물자동차 정류장업을 제외한 택시, 노선화물, 특수화물, 일반구역화물, 용달화물, 장의차 및 차량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영업용 차량을 기관별, 경과년수별 및 소유형태별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1 차량경과년수

- 차량등록일로부터 조사기준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말한다.
-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했을 경우 구입전의 차량등록일을 확인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즉, 중고차량의 구입일로부터 조사 기준일까지 경과된 연수가 아니다.

2 소유자별

- 조사표상의 소유자별 란에는 직영, 비직영으로만 구분되었으나 본 조사요령서에 직영업체 및 비직영업체란 용어가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해설한다.

가 직영차량

차량에 대한 영업권(영업행위)이 조사대상 사업체에 있는 차량(개별화물, 개인택시 및 개인용달은 전부 “직영”으로 처리한다)

나 비직영차량

지입제와 같이 차량에 대한 영업권이 개별차주에 있는 차량

다 직영업체

사업체가 보유한 영업용차량 전부를 당 사업체에서 직접 영

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직영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차량의 법적 소유권 및 영업권이 회사에 있는 경우
(회사소유-회사직영)
- 차량의 법적 소유권은 회사에 없지만 회사에서 임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영업권은 회사에 있는 경우
(타인소유-회사직영)

라 비직영업체 (일부 직영)

사업체가 보유한 영업용차량중 업체에서 직영하지 않는 차량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법적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 및 영업권은 차주에 있는 경우(회사명의 이용-차주소유·차주직영)

마 완전 비직영업체

사업체가 보유한 영업용차량 전부를 차주들이 각각 직접 영업행위를 하며, 회사에서는 직접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이 전혀 없는 업체를 말한다.

3 기관별

기관별에서 “(4)기타”가 조사될 경우에는 반드시 재확인 할 것이며 재확인결과 “기타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요란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② 톤수별 화물차량대수

1 용달화물운수업체를 제외한 노선화물, 특수화물 및 일반구역 화물운수업체의 차량을 톤수별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2 화물운수업체(용달화물 제외)는 기관별 차량대수의 합계와 톤수별 차량

대수의 합계가 일치하여야 한다.

3. 3 톤수구분의 최종분류인 8.1톤 이상을 8.1~11톤, 11.1톤 이상으로 세분화한 것에 유의하여 조사한다.

③ 총가동대수

장의 차량, 화물운수업체 (개인용달 및 개별화물 제외) 및 차량임대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영업용차량중에서 매일매일 실제로 영업을 한 차량을 누계하여 '89년 1년동안의 총영업대수를 기입한다. (개인택시 제외)

④ 총운행일수

- 개인택시 및 개인용달에 대해서만 기입한다.
- 1년동안에 영업을 한 일수를 기입한다. (1시간 이상 영업한 경우

우에 1일로 계산)

(6) 연간 수송실적

① 연간 수송실적

연간 수송실적이란 영업용차량이 연간 수송한 수송총인원, 톤수, 거리 등의 실적을 말한다.

1 수송총인원

개인택시가 조사대상기간 1년간 (결산기간)에 실제로 수송한 여객의 총인원을 말한다.

2 수송총톤수

화물운수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영업용 운수수단에 의하여 조사대상기간 1년간 (결산기간)에 실제로 수송한 화물의 총톤수를 말한다.

3 수송총거리

택시와 화물운수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영업용 운수수단에 의하여 조사대상기간 1년간(결산기간)에 실제로 주행한 차량 개개의 총거리의 합계를 말한다.

4 수송총인원, 톤수, 거리산출

· 직영업체는 회사에서 해당 각 시·도 운수과에 보고한 “자동차운수보고서”(월보)의 1년(결산기간)분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 직영업체가 아닌 회사로서 운수실적보고서 보고서 비직영 차량에 대한 수송실적을 제외시킨 경우는 비직영 차량의 수송실적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이미 보고된 실적에 합산하여 산출한다.

- '89년 1년간 비직영 차량대수가 일정하였을 때는 직영차량의 연간 수송실적에서 1대당의 연간수송실적을 계산하고, 이에 비직영차량수를 곱하여 추정 산출한다.

- 비직영 차량대수가 일정치 않을 때(예: 1월 20대, 9월 15대, 12월 10대)는 직영차량의 월별 수송실적에서 1대당의 월별 수송실적을 계산하고, 이에 월별로 비직영 차량수를 곱하여 추정 산출한다.

· 완전 비직영업체

회사에 기록된 자료가 있을 때는 그 자료에 의하고, 없을 때는 각 시·도에서 실시한 “교통량조사집계표”의 회사소재지 행정구역의 자료를 참고로 회사의 특수성(자동차 사고로 인한 운행정지, 일정한 기간의 휴업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7) 종업원수 및 연간 급여액

① 종업원

'89.12.31 일 현재 일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임금, 봉급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보수를 받고 그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피고용지수와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합계를 말한다. 여기에는 상용·임시·일용종업원 뿐만 아니라 병가자, 사고로 인한 단기휴가자 및 파업중인자도 포함한다. 그러나 3개월이상 장기결근자 및 군복무자와 고정급여액을 일정한 운수업체로부터 지급받지 않는 종업원은 제외한다. 즉, 정류장(지방정류소 포함) 등에서 승차권을 판매해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매표원, 검표원 등은 제외한다.

② 급여액

1 조사대상기간중 피고용자에게 노무의 대가로 연간 지급된 급여의 총액을 말하는데, 급여라 함은 현금 또는 현물, 정기 또는 부정기를 불문하고 노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봉급,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 및 생계보조금을 망라한 급여액을 말한다.

현금급여일 경우에는 세금, 노동조합비 등의 공제금을 포함한 것. 즉, 사업체에서 실질상 지출한 급여총액을 말한다.

현물급여일 경우에는 사업체가 지급당시의 시가에 따라 화폐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차량관계종업원의 급여액에는 차량운행시 소요되는 급식비 및 피복비 등은 제외한다. 차량운행시의 급식비 및 피복비는 「운수비용」중 「2104. 복리후생비」

3 급여액은 '89년중에 발생한 연간총액을 기입하여야 한다.

즉, '89년 이전의 체불되었던 급여를 '89년중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고
반면에 '89년중에 지급하여야 할 급여가 미불된 것은 포함한다.

차량관계 종업원 및 기타 종업원의 급여액 합계는 「운수비용」중 「인
건비」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한다.

4 급여액이 종업원수와 비교하여 현실적인 급여수준에 상당히 미
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인당 월별 급여액을 계산하여 급여액을 재
확인 한다.

③ 차량관계종업원

1 운전기사

영업용 차량운전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2 조 수

조수란 차량운행중 차량의 수리를 주로 담당함으로써 운전기사
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비 및 수리공

차량의 정비 및 수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자로서 당해 사업
체 공장에서 차량의 정비 및 수리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4 기 타

· 상기 분류에 속하지는 않으나 운행 및 유지·관리를 위해 종
사하는 종업원(세차공 등)을 말한다.

· 기타 차량관계종업원중 세차공 이외의 종업원이 있는 경우는
조사표 뒷면의 적요란에 종업원의 담당 직책명과 직무내용을 간단히 설명
기입한다.

예 : ○○공 :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④ 기타종업원

1 단순노무자

· 화물의 상·하차와 차량으로부터 창고에 이르는 화물의 입·출고작업 및 이에 준하는 제작업 등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 단순노무자의 1인 일당 연평균급여액을 반드시 기입한다.

1인 일당 연평균급여액이란 단순노무자에게 연간지급된 급여총액을 연간 고용된 단순노무자수(연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단순노무자수는 연간급여총액을 1인 일당 연평균액으로 나눈 다음 300 일로 나누어 산출한다(단순노무자의 연간급여총액 ÷ 1인 일당 연평균액 ÷ 300).

2 사무직 및 기타

차량운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관리적인 사무종사자와 이들의 보조원을 말한다. 예를들면 사무직원, 매표·검표원, 수위, 경비원, 급사, 자가용운전기사(사장·전무 등), 차고관리인 등을 말한다.

⑤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1 사업주 및 그의 가족(동거자 포함)으로서 사업에 관련되는 제반업무에 주당 정상작업시간의 1/3 이상을 종사하되 일정한 봉급이나 임금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2 회사법인과 기타법인은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없다.

3 개인업체는 사실상의 업주가 타 직장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사업감독상 가족중의 1인정도는 정상 작업시간의 1/3 이상을 취업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1인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유의한다.

(8) 연간 운수수입 및 비용

① 본 조사항목은 운수업통계조사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조사사항이므로 다음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조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1 운수업체가 직영업체(법인체)인 경우

본 조사항목은 각 운수사업체 결산자료(손익계산서)의 각 항목분류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내용은 동일하므로 각 항목 해설을 숙지하여 사업체 결산자료의 각 항목을 본 조사항목에 맞도록 분류하여 작성한다.

2 운수업체가 비직영업체(법인체중) 및 개인인 경우

사업체의 결산자료에는 대체로 사업체의 직영 차량분에 대한 자료만 계상되었으면 비직영차량분도 포함 기입하여야 하는바 비직영차량분 및 개인차량분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 작성한다.

즉 차주 및 개인이 장부(현금출납부 및 그에 준하는 장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 자료에 따라 산출하고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직영 차량의 평균치에 준하여 계상한다.

② 각 항목의 기입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운수수입

· 조사기준기간중 사업체의 운수활동으로 얻어진 경상적인 영업수입을 말한다.

· 부동산투자 등에서 얻어진 영업외 수입은 「9. 임대수입」에 기재한다.

·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보조받은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운수비용

조사기준기간중 사업체의 운수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영업비용(일반관리비 포함)을 말한다(영업외 비용제외).

2101. 재료비

재료비란 운수사업체에서 운수활동을 위하여 소비할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매입한 재료구입비용중 실제사용액을 말하는 바 재료비는 다음의 두가지로 구분한다.

21011. 연료비

1. 영업용차량의 운행에 사용된 실제사용액을 휘발유, 경유, LPG 등으로 구분 기입한다.
2. 소비된 것만 조사하고 구입액중 미사용분인 비축분은 제외하여야 하며, 기타란에는 모빌유, 브레이크유, 구리스 등을 조사기입한다.
3. 영업용 차량외의 연료비(승용차용, 자가발전, 난방용 등)는 「잡비」에 기입한다.

21012. 기타재료비

외부로부터 매입된 부분품으로서 그대로 차량에 부착시켜 그 구성 부분이 되는 타이어, 베어링 등의 부속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 5만원 미만상당의 소모공구, 기구, 비품비 등을 말한다.

2102. 인건비

1. 육상수송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운전기사, 정비 및 수리공 등의 차량관계종업원과 사무직원 및 잡급 등의 기타 차량관계종업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특근수당 등의 각종 수당 및 잡급 등이 포함된다.

2. 인건비는 「 7. 종업원수 및 연간급여액 」의 차량관계 종업원 및 기타 종업원의 급여액 합계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한다.

2103.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당년도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기입하되, 본 계정이 설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된 퇴직금을 기입한다.

2104. 복리후생비

전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된 법정(法定)복리비, 복리시설 부담액, 의무(醫務)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예 : 장학금, 경조비, 종업원의 건강비, 손해보험, 치료보조비, 각종위생, 보건비, 각종 보조금 등(퇴직금은 별도 항목으로 조사)

2105. 감가상각비

1. 감가상각의 정의

• 일반감가상각

- 고정자산은 크게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으로 나눈다. 유형고정자산은 건물·건축물·차량 및 공구·비품등을 뜻하며 무형고정자산은 특허권, 영업권, 실용신안권 등을 말한다.
- 고정자산은 경과나 사용에 따라 소모·파손·노후되거나 기능의 발전이나 경제변동에 따라 구식화되게 마련인데 이러한 고정자산의 가치감소를 추정 계산하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자산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자기소유자산은 모두 대상이 된다.
- 감가상각을 계산하는데는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치 및 감가상각방법을

알아야 한다.

취득가격은 통상적으로 그 자산의 매입가격에 인수운임, 하역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때까지 지출한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 가격이다.

내용연수는 당해고정자산을 실제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감가상각율을 정하는 기준에 불과한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각자산별로 내용연수를 정하고 있다.

잔존가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끝나서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어느 정도의 가치가 남아있게 되는데 이 남아 있는 가치를 말한다. 세법에서는 유형고정자산은 취득가액의 10%를 무형고정자산은 5%로 하고 있다.

- 감가상각방법은 유형고정자산은 정액법과 정율법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무형고정자산은 정액법으로 한정되어 있다.

감가상각방법은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는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정액법 = $\frac{\text{취득원가} - \text{잔존가치}}{\text{내용연수}}$

- 정율법 = 미상각잔액 × 정율

$$\text{정율}(\%) = 1 - n \sqrt[n]{\frac{\text{잔존가치}}{\text{취득원가}}} \quad (\text{단 } n \text{은 내용연수})$$

- 특별감가상각비의 정의

특별감가상각비는 일반감가상각비를 먼저 계상한 후 일반상각비의 일정비율을

추가, 감가상각비로 손금인정해주는 조세혜택 제도이다. 이는 투하원가를 회수하는 것이므로 아무리 특별감가상각비제상의 혜택을 준다하더라도 투하원가인 취득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선·항공등 중요산업의 경우에는 일반감가상각비의 100%를 특별감가상각비로서 추가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2. 감가상각비는 재무제표등 각종 장부상의 금액을 기입하되 장부가 없는 개인업체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기입한다.

- 취득원가(구입가격)을 감가상각의 정의를 참조하여 정액법 및 정율법에 의하여 산출 작성한다.

- 자본적지출이거나 재평가한 경우는 원시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 등으로 증가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잔존가치 10%만 남겨놓고 계산하여 작성한다.

예를들어 개인택시의 경우 취득원가 3천만원, 내용년수 5년 잔존가치는 10%인 3백만원이라 할때 정액법에 따르면

$$\frac{3\text{천만원}-3\text{백만원}}{5} = \frac{27\text{백만원}}{5} = 54\text{만원이 된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는 5년동안 매년 54만원으로 기입된다.

3. 감가상각비가 유형고정자산만의 감가상각비일 때는 「10. 유형고정자산」의 「④ 연간 감가상각액의 (5) 합계」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고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10의 4항 (5)」 합계보다 많아야 하며 그 차액과 내용을 적요란에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2106. 지급임차료

동산, 부동산, 특허권 등을 일정한 기간동안 임차 또는 사용했을 경우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건물, 차량 및 운반구와 토지를 구분하여 기입한다).

예 : 영업용토지, 공장, 건물, 기계장치, 운반구 등의 임차료

2107. 보험료

1. 자동차, 건물(건물부속설비 포함) 및 비품 등에 대하여 사업체가 지불한 화재·손해보험료 등을 말한다.

2. 종업원의 후생을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는 「복리후생비」에 기입한다.

2108. 세금, 공과금

영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자동차세, 재산세, 인지세, 등록세, 취득세, 방위세 등의 제세금과 상공회의소비, 무역협회비, 조합비, 적십자비 등의 각종 공과금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 소득세 및 고정자산원가에 포함되는 등록세 등은 제외한다.

2109. 수선비

1. 사업체의 건물, 차량, 기계장치, 공구 등의 유형고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선·수리를 외부에 의뢰하였을 경우에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수익적 지출).

2. 건물의 증축이나 기계기구의 개조로 인해 그 자산의 가치가 증식된 경우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치증가이므로 「9. 유형고정자산」의 「② 연간취득액」에 포함시켜야 한다(자본적 지출).

2110. 사용·수수료

여러 운수사업체가 정류장(지방정류소 포함)을 공동사용할 때 승차권 판매(매표)업무를 정류장에서 대행할 경우, 사업체에서 정류장에 지급된 매표에 대한 수수료, 면허수수료, 그 밖에 차량검사료 등을 말한다.

2111. 대손상자

외상대출금, 받을어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중 회수할 수 없는 경상적인 금액을 말한다.

2112. 잡비

1. 이상 열거한 비용 이외의 비용으로 수도광열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소모품비, 비영업용차량사고비, 통신비, 사고비, 여비, 교통비, 주차장사용료 등의 제비용을 말한다.

2. 영업비용중 외국(정부기관, 외국선사 및 개인)에 지불한것중 인건비, 복리후생비, 임차료, 조세 등은 잡비에 포함한다.

3. 영업이익

사업체의 경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운수수입에서 운수비용을 공제한 차액(差額)을 말한다.

4. 납부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신고서(예정, 확정, 영세율 등 조기환급)상의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발생기준의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기입한다.

· 과세 특례자의 경우는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 예정, 확정 신고서상의 차감 납부할 세액을 기입한다.

(9) 임대수입

운수업체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외에 토지, 건물, 운수장비의 대여로 수입된 금액을 말한다. 즉 영업외수입중 토지, 건물, 장비 및 차량운반구 등의 수입임대료를 조사한다.

(10) 유형고정자산

① 유형고정자산의 종류

유형고정자산이란 구체적 형태를 가진 고정자산으로 차량 및 운반구, 토지,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치 및 기구 등을 말한다.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중 단순히 부동산 투자를 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차량 및 운반구

- 자동차, 철도차량 및 우마차 등의 운반구를 말한다.
- 영업용 이외의 차량 및 운반구도 포함됨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 토 지

사무소, 차고, 정비공장, 사택, 운동장 등의 토지를 말하는데 사무소, 기숙사, 공장, 창고, 사택 등을 위한 토지개발비(정지, 매축 등의 공사비 및 수익자 부담금)등도 포함된다.

3 건물 및 구축물

- 건 물
토지에 직접 건설한 건축물과 그 일부인 영속성 부속설비를 말한다.

예 : 사무소, 영업소, 기숙사, 공장, 창고, 사택, 기타 부속건물의 일부를 이루는 승강기·냉방·조명·통풍설비 등의 부속설비

- **건축물**

토지에 정착된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예 : 도로, 「도크(Dock)」, 궤도(軌道), 안벽(岸壁), 연도(煙道), 다리, 담장, 댐, 수도, 송유관 등

4 기계장치 및 기구

- **기 계**

동력을 받아서 외부의 대상물에 작업을 가하는 기계의 단위로 발전기, 전동기, 공작기계 등을 말한다.

- **장 치**

대상을 내부에 수용하여 이것을 변질, 변형시키기 위한 설치로서 연소(燃燒), 화학, 냉동장치 등을 말한다.

- **기 구**

내용년수(耐用年數)가 1년이상으로서 5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공구비품 및 집기 등을 말한다.

② 연초현재액

'89년 1월 1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③ 연간취득액

1 '89년 1년간에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설치 및 증·개축을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구입의 경우는 운임, 설치비를 포함한 구입가격으로, 양수받은 것은 양수 당시의 시가로, 자가(自家)건설의 경우에는 1년간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2 연간취득액에는 자산재평가에 의한 명목상의 장부가액의 증가는 제외한다.

④ 연간처분 및 손해액

'89년 1년간에 유형고정자산의 매각·양도한 금액과 재해 등으로 인한 실질적 감소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매각의 경우는 매각액을 양도한 경우는 양도액을 재해·도난 등으로 인하여 유형고정자산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원인의 발생 당시에 매각할 수 있었던 시가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⑤ 연간감가상각액

반드시 '89년 당해년도의 감가상각액 또는 감가상각충당금만을 기입하여야 하며, 장부상의 감가상각누계액 또는 감가상각충당금누계액 (累計額) 을 기입해서는 안된다.

연간 감가상각액은 운수비용중 「2105 감가상각비」와 반드시 같아야 한다. 그러나 「2105 감가상각비」에 무형고정자산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적어야 한다.

⑥ 연말현재액

1 '89.12.31 일 현재 장부가액에 의한 미상각잔액을 말한다. 장부가 없을 경우에는 시가에 의한다.

2 연말현재액은 다음 산식에 적합해야 한다.

$$\text{연말현재액} = \text{연초현재액} + \text{연간취득액} - \text{연간처분 및 손해액} - \text{연간감가상각비}$$

3 비직영차량이 많은 화물운수업체의 경우는 연말현재액을 차량대수로 나누어 차량 1대당 가격을 산출하여 비직영차량분의 누락여부를 확인, 수정 기입하여야 한다.

(11) 건설가계정

건설가계정(建設假計定)이란 미완성의 유형고정자산 즉, 건물 등 건설 및 자동차, 선박 등의 매입을 위하여 경비는 지출되었으나 완성 및 도착이 되지 않아 완성 및 도착에 이르기까지 잠정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① 연간증가액

'89.1.1 ~ 12.31 일 사이에 유형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의 1년간 금액을 기입한다.

② 연간감소액

'89.1.1 ~ 12.31 일 사이에 유형고정자산의 건설이 완성되어 건설가계정에서 고정자산계정으로 대체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입한다.

③ 연말잔액

'89.12.31 현재 건설중인 공사에 대한 지출한 제경비의 누계액으로서 건설가계정에 기록된 금액의 누계액을 기입한다.

④ 연간증가액이 연간감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간 증감액란에 △ 표시를 하고 그 차액을 기입한다.

(12) 기 타

① 여객자동차 정류장업

1 「5. 차량보유현황」란은 기입치 없음.

만약 자가용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적요란에 차종별로 차량대수를 기입함.

2 「6. 연간수송실적」란은 기입치 없음.

3. 「7. 종업원수 및 연간급여액」은 「(2) 기타종업원」란의 「② 사무직 및 기타종업원」란에 기입할 것.

(자가운전기사, 매표원, 배차원, 경비원 등 모두)

· 개인업체인 경우에는 「(3)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란에 기입할 것.

4. 특히 유의할 사항

자가용 차량의 유지비는 「2112 잡비」란에 기입함.

· 기타 사항은 전 업종 모두 같음.

② 화물자동차 정류장업

1. 「5. 차량보유현황」란

·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가용인가 영업용인가를 구분하여 영업용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조사한다.

· 자가용인 경우에는 적요란에 차량별 차량대수를 기입한다.

2. 「6. 연간수송실적」란은 기입치 않는다.

3. 「7. 종업원수 및 연간급여액」은 「(2)기타종업원」란의 ① 단순노무자, ②사무직 및 기타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 만약 자가용화물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1)차량관계종업원」란의 해당란에 기입하고 적요란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입한다.

③ 개별화물

1. 사업체개황 : 사업체명부를 활용하여 기입한다.

· 사업체명 : 지부명을 기입한다.

예) 전국개별화물 자동차운송사업조합 경기지부

· 대표자명 : 각 시도지부장이름을 기입한다.

- 전화번호 : 각 시도지부 전화번호를 기입한다.

- 소재지 : 각 시도지부 주소를 기입한다.

2 조직형태 : “개인”란에 ○표한다.

3 사업형태 : “일반구역화물”란에 ○표한다.

4 자본금 또는 출자금 : 사선(\)을 긋는다.

5 차량보유현황 : 별첨자료(각 시도 지부별톤급별 현황)를 이용하여 기관별 차량대수, 톤수별화물차량대수를 기입한다. 총가동대수와 총운행일수는 조사하지 않는다.

6 연간수송실적 : 조사하지 않는다.

7 종업원수 및 연간급여액

- 종업원수는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과 “합계”란에 각 시도 차량대수와 동일한 인원수를 기입하며 연간급여액은 기입하지 않는다.

- 각 시도지부 직원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유의한다.

8 연간운수수입 및 비용

- 톤급별로 차량 1대당 운수수입과 비용을 산출하여 각 시도 톤급별 총차량대수를 곱하여 작성한다.

- '89년도중에 화물운수업체에서 비직영 차량으로 있다가 개별화물이 된 경우에는 중복조사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감가상각비는 31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9 임대수입 : 사선()을 긋는다.

10 유형고정자산 : 33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11 건설가계정 : 36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톤(ton) 급 별 현 황

89년 12월 현재

톤 급 부 지	1.25t	1.4t	2.0t	2.5t	2.75t	3.0t	4.5t	계
서 울	210	2,805	1	4,513	16	147	1,120	8,812
부 산		649		1,285	61	34	806	2,835
대 구	8	381	1	687	12	19	386	1,494
인 천	12	78		309	2	2	93	496
광 주		19	1	236	19	19	397	691
대 전		19		183	1		201	404
경 기	67	57		1,062	36	127	750	2,099
강 원		115	4	272	9	6	580	986
충 북		41		332	6	1	523	903
충 남		97	2	146	2	3	565	815
전 북		30	4	166	2	5	497	704
전 남		44	4	112	6	4	610	780
경 북	11	159	4	510	27	10	521	1,242
경 남	5	250	7	418	20	141	762	1,603
제 주	2	13	2	7			171	195
계	315	4,757	30	10,238	219	518	7,982	24,059

④ 차량임대업 (렌트카)

- 1 「 5. 차량보유현황 」란은 관리주의에 의하여 기입한다.
- 2 「 6. 연간수송실적 」란은 기입치 않는다.
- 3 「 7. 종업원수 및 연간급여액 」의 기재요령

차량임대업은 운전기사없이 차량만 임대하여 주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업체에서는 약간의 운전기사를 고용하였다가 임대차량의 운전을 대행하여 주는 경우도 있는바 이런 경우에는 본란의 분류에 따라 기입한다.

나. 수상운수업 조사표

(1) 사업체 현황

※ 본 항목은 육상운수업과 동일

(2) 조직형태

※ 본 항목은 육상운수업과 동일

(3) 사업형태

※ 본 항목은 육상운수업과 동일

(4) 자본금 또는 출자금

※ 본 항목은 육상운수업과 동일

(5) 선박보유현황

① '89.12.31일 현재 당해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용 선박으로서 자기(사업체)소유가 아닌 타인 및 타국소유의 선박을 임차하여 운행하는 것(裸傭船)도 포함된다. 즉 선박보유는 소유주의와 관리주의중에서 편익상 관리주의를 채택한다.

② 선박경과년수

선박 진수일로부터 '89.12.31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말하는데 진수

일이 불명할 때에는 당월 1일, 진수월이 불명할 때에는 당년 1월 1일로 한다.

③ 톤 수

선박 1척당의 총톤수를 말하는데, 총톤수란 선박의 용적을 톤 (G/T)으로 표시한 것이다.

④ 선 질

선체가 주로 어떤 재료로 건조되었는가에 따라 강선, 목선, 합성수지제선 (F.R.P)으로 구분한다.

⑤ 기관별

선박추진기의 종류를 말하는데 디젤기관, 소구발동기, 증기기관, 기타 기관 (가스터어빈, 전기기관)으로 구분한다.

⑥ 유조선은 건조할 때부터 유류수송을 목적으로 탱크 (Tank) 등 설비를 갖춘 선박이므로, 유조선 이외의 선박이 유류를 수송했다라도 유조선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⑦ 추진력이 없는 부선 (바지선)은 제외한다 (적요란에 척수만을 기입한다)

(6) 연간수송실적

① 본 항목의 해설은 육상운수업과 동일하다.

② 연간 수송실적중 수송총인원, 톤수, 거리산출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정기여객 및 해운화물업체의 경우는 선박관할 지방항만청에 보고하는 “운항실적보고서” (월보)의 1년 (결산기분)분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단, 여객선의 경우는 보고서상에 화물수송실적이 있더라도 본 조사표의 수송 총톤수에는 기입하지 않는다.

2 상기 1) 항 이외의 선박으로 조사대상기간(결산기간) 동안의

③ 수송총거리는 여객 및 화물운송업부문에 한하여 작성한다.

“선박운항일지”가 있는 업체는 운항일지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7) 종합원수 및 연간급여액

① 선내근무종업원

1 사 관

해기원면허를 가진 자로 선박에 승무하는 선장,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등을 말한다.

2 보통선원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중 사관 이외의 자로서 갑판장, 갑판원, 갑판조수, 조타수, 보이라공, 기관원, 사무원, 조리원, 선의, 간호원 등을 말한다.

3 기 타

위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선내근무종업원을 말한다(예, 도선사 등) 단, 선내근무종업원중 대기중인 사관, 보통선원은 기타란이나 육상근무종업원에 넣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사관, 보통선원의 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4 선내근무종업원의 급여액에는 선박운항시 지급되는 급식비 및 피복비 등은 제외한다. 선박운항시의 급식비 및 피복비는 「운수비용」중 「복리후생비」에 기입한다.

5 선내근무종업원중 사관 및 보통선원 이외의 기타 종업원이 있을 경우는 조사표 뒷면의 적요란에 종업원의 담당직책명과 직무내용을 간단히 설명 기입한다.

예 : △△△ :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

② 육상근무종업원

1 단순노무자

• 부두에서 선박에 화물을 싣고 내리거나 선박으로부터 창고에 이르는 운반작업, 입·출고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제작업 등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단순노무자의 1인 일당 연간평균액을 반드시 기입한다. 1인 일당 연간평균액이란 단순노무자에게 연간지급된 급여총액을 단순노무자의 연간인원(연인원수)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단순노무자수는 $\text{연간급여액} \div 1 \text{인일당연간평균액} \div 300$ 일로 산출한다.

2 사무직 및 기타 항목의 해설은 육상운수업과 동일한다.

3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중에는 수로안내업(71231)의 도선사를 포함한다.

③ 선내근무종업원 및 육상근무종업원의 급여액 합계는 「운수비용」중 「인건비」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한다.

(8) 연간 운수수입 및 비용

① 본 조사항목은 운수업통계조사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조사사항이므로 다음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조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1 운수업체가 법인인 경우

본 조사항목은 각 해운업체 결산자료의 각 항목분류와 일치하지는 않으나 내용은 동일하므로 각 항목해설은 숙지하여 사업체 결산자료의 각 항목을 본 조사항목에 맞도록 분류 작성하여야 한다.

2 운수업체가 개인인 경우

• 선주가 장부(현금출납부 및 그에 준하는 장부 등)를 작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따라 산출한다.

• 선주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정기여객 및 화물선(내·외항선)은 이미 보고된 “운항실적보고서”(월보)의 수입액 및 주요지출액(유류, 선원비, 수리비 등)을 참고로 1년(결산기간)분을 합산하되, 선주의 사업특수성(선박사고로 인한 운항정지, 일정한 기간의 휴업 등)을 고려하여 기억에 따라 추정 작성한다.

② 외국정부 및 외국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와 임차료(외국용선료제외)는 잡비에 포함시킨다.

③ 각 항목의 해설 및 기입요령은 육상운수업을 참고로 한다.

(9) 임대수입

운수업체에서 경상적인 영업활동이외에 건물, 토지, 운수장비의 대여로 수입된 금액을 말한다. 즉 영업외 수입중 건물, 토지, 장비, 선박의 수입임대료를 조사한다.

(10) 유형고정자산

① 선박 및 운반구

1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등의 선박과 기타 운반구를 말한다.

2 영업용 이외의 선박 및 운반구도 포함됨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 선박 및 운반구 이외의 각 항목은 육상운수업을 참고한다.

(11) 건설가계정

※ 본 항목의 해설은 육상운수업을 참고한다.

(12) 기 타

① 선박임대업

• 「 5. 선박보유현황 」란은 관리주의에 의하여 기입한다. (단 비추진 선박 보유수는 선박보유현황란에 기입하지 않고 적요란에 그 내용을 기입한다.

• 「 6. 연간수송실적 」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 「 7. 종업원수 및 연간급여액 」의 기재요령

선박임대업은 승무원이 없이 선박만 임대하여 주는것이 원칙이나 만약 업체에서 승무원을 고용하였다가 임대선박의 운전을 대행하여 줄 경우에 본 란의 분류에 따라 기입한다.

② 선박 구난업 (71235)

○ 개 념

원양 및 근해 또는 내륙수로에서 침몰선의 인양, 전복선박의 바로잡기, 좌초한선박의 부상작업, 침몰선의 화물회수, 조난선의 예인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조사표 작성시 유의사항

• 선박구난업을 하면서 해철까지를 동시에 영업하는 경우에는 선박구난업에 해철업을 포함 조사한다.

• “ 5. 선박보유현황 ”은 선박구난 장비중에서 예인선이 있는 경우에만 예인선을 톤(M/T) 단위로 하여 조사 기입한다(관리주의 원칙적용)

• “ 6. 연간수송실적 ”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 잠수부는 “기타”에 기능공은 “보통선원”에 분류하여 기입한다.

- 선박구난업은 주로 해난사고를 당한 선박을 구난하는 업종으로 연도별 수입실적이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바 증감요인분석에 신중을 기하여 기입할 것.

③ 기타 내륙수상운송업 (71229)

- 관광유람선 : p.15의 “조사에서 제외되는 사업체”를 참조하여 조사항목별로 기입한다.

- 예선업

- 예선이란 선박을 끌기 위하여 추진력만을 갖추고 있는 배를 말한다.

- “5. 선박보유현황”은 예선을 톤(G/T)단위로하여 기입한다.

- “6. 연간수송실적”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다. 하역조사표

(1) 사업체 개황

※ 본 항목은 육상운수업과 동일

(2) 조직형태

※ 본 항목은 육상운수업과 동일

(3) 사업형태

① 수상화물 하역 (항만하역)

항구에서 선박으로부터 화물을 내리거나 선상에 화물을 싣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② 육상하역(화차하역)

철도에 의하여 운송되는 화물을 철도차량에 적재 또는 하차하는 작업을 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단, 철도소운송업법에 의한 타운송업(운송취급, 운송대리, 부수운송, 이용운송업)과 화차하역업과의 겸업체는 제외한다.

(4) 자본금 또는 출자금

※ 본 항목은 육상운수업과 동일

(5) 장비보유현황

① '89.12.31 일 현재 당해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용장비를 말하는데, 영업용 이외의 것은 제외한다.

장비보유는 편의상 관리주의를 채택하므로 사업체 소유가 아닌 타인소유의 것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것도 포함한다.

② 경과년수

장비등록일로부터 '89.12.31 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말한다.

(6) 연간하역실적

연간하역실적은 당해 사업체가 '89년 1년간 하역한 화물의 총톤수(%)를 기입한다. 수상화물 하역의 경우는 선내화물이동 작업과 연안 하역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7) 종업원수 및 연간급여액

※ 본 항목은 운수관련서비스업중 보관창고업을 참고

(8) 연간하역수입 및 비용

① 조사기간중 사업체의 하역활동으로 얻어진 모든 영업수입(해외사업

수입액 포함)을 말한다.

② 부동산 투자등에서 얻어진 영업외수입은 「9. 임대수입」에 기재한다.

③ 정부기관등으로부터 보조받은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9) 임대수입

※ 본 항목은 육상운수업과 참고

(10) 유형고정자산

① 장비 및 운반구

1 예인선, 부선, 기중기, 지게차, 기중기선, 콘베이어, 슈레터 등을 말한다.

2 영업용 이외의 장비 및 운반구도 포함됨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 장비 및 운반구 이외의 각 항목은 육상운수업과 동일

(11) 건설기계정

※ 본 항목은 육상운수업과 동일

라. 운수관련서어비사업 조사표

(1) 사업체 개황

※ 본 항목은 육상운수업과 동일

(2) 조직형태

※ 본 항목은 육상운수업과 동일

(3) 사업형태

※ 본 항목은 육상운수업과 동일

(4) 자본금 또는 출자금

※ 본 항목은 육상운수업과 동일

(5) 보관소·창고 및 장비보유현황

① '89.12.31 일 현재 당해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용 보관소(야적장)·창고 및 장비를 말하는데, 영업용 이외의 것은 제외한다. 보관소·창고 및 장비는 편의상 관리주의를 채택하므로 자기(사업체)소유가 아닌 타인소유의 것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것도 포함한다.

② 경과연수

장비등록일로부터 '89.12.31 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말한다.

(6) 화물취급능력 및 연간실적

(6)- 1 보관창고업체

① 보관능력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보관소(야적장)·창고의 1회 적정한 보관취급할 수 있는 물량(%)을 말한다.

② 연간보관실적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보관소·창고에 의하여 '89년 1년간(결산기간)에 실제로 보관한 1일 누계의 연간총량을 말한다.

③ 단 위

보관물의 단위는 %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연간보관실적은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보관소·창고에 조사기준기간 1년간(결산기간)에 실제로 보관한 1일누계의 연간 총량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예시와 같이 산출한다.

(예시) 벼 1,000 %을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보관하고, 콩 120 %을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보관했으며, 밀 500 %을 4월 16일부터 5월 10일까지 보관했다고 하면

$$1,000 \% \times 30 = 30,000 \%$$

$$120 \% \times 20 = 2,400 \%$$

$$500 \% \times 25 = 12,500 \%$$

$$\text{계 : } 30,000 \% + 2,400 \% + 12,500 \% = 44,900 \%$$

그러므로 연간보관실적은 44,900%이 된다.

(6)- 2 화물운송대행업체

(정의) 직접 화물운송업체를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에 관한 책임을 지고 탑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운송을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① 수송총톤수

화물운송대행업체에서 연간 수송한 수송총톤수를 기입한다.

② 수송총거리

화물운송대행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차량에 의한 연간총주행거리를 기입한다.

(7) 종업원수 및 연간급여액

① 장비관계 종업원

1 증기운전기사

소정의 운전면허를 얻어 일정한 사업체에서 영업용 장비 또는 증기운전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2 보통선원

예인선의 운행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3 냉장기기사

냉장창고업체에서 냉장시설의 운영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② 기타 종업원

1 단순노무자

※ 본 항목은 수송운수업과 동일

2 안내원 : 여행알선업에 종사하는 통역안내원, 국내관광안내원, 국외여행안내원으로 자격증 소지자를 말한다(여행알선업에만 종사하는 종업원임을 특히 유의할 것)

3 검수·검량·감정원 : 포장·검수 및 유사서비스업에서 화물의 이동에 따라 화물의 수량, 품명, 하인(荷印), 화물손상, 적재확인등을 점검·감정 또는 이에 준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말한다(포장검수업에만 종사하는 종업원임을 특히 유의할 것)

4 사무직 및 기타

관리적인 사무종사자와 그 보조원, 즉 매표·검표원, 수위, 경비원, 급사, 차고관리인 등을 말한다.

③ 그외 급여액 등에 관한 것은 육상운수업을 참고한다.

(8) 연간화물취급수입 및 비용

※ 본 항목은 육상운수업을 참고

(9) 임대수입

※ 본 항목은 육상운수업을 참고

(10) 유형고정자산

① 장비 및 운반구

1 지게차, 냉장기, 크레인, 예인선, 콘베이어 등을 말한다.

2 영업용 이외의 장비 및 운반구도 포함됨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 장비 및 운반구 이외의 각 항목은 육상운수업과 동일

(11) 건설가계정

※ 본 항목은 육상운수업과 동일

(12) 기 타

- 선박중개업

(정의) 선박중개업은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중개를 하며 매매를 알선해 주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선박임대주선도 포함한다.

• 「5. 보관소, 창고 및 장비보유현황」 및 「6. 화물취급능력 및 연간실적」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13) 적 요

본란은 차후 조사표내검 및 전년도와의 수준대비 등의 자료점검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① 조사자료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 그 요인을 기입한다.
- ② 적자일 경우 그 요인을 기입한다.
- ③ 사업체 경영에 있어 전년도와의 큰 변동사항(시설확장,종업원의 실태)이 있을 경우에 그 사유를 기입한다.
- ④ 기타 그 사업체의 특이한 사항을 기입한다.

마. 버스 및 회사택시 운송업 조사표

- 각 지방 통계사무소에서는 각 시도 버스 및 택시조합에서 송부한 (4월 25일까지 송부) 조사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실시한 후 5월 31일까지 조사관리과로 제출한다.

- 조사표표지기입 (Ⅶ참조)

- 보완조사

조사표지상의 제출내역이 정확한가를 확인한 후 미조사업체수에 대해서는 각 시도 버스 및 택시조합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업체 명부를 입수하여 각 지방사무소에서 보완조사토록 한다.

- 조사표 심사 및 정리 (버스 및 택시부문의 조사표작성요령 참조)
- 요제표 작성 (V참조)
- 증감요인분석표 작성 (IV참조)
- 부호기업 (VI참조)

바. 주요착오 사례

(1) 사업형태

① 겸업사업체

겸업인 경우 사업형태란에 두곳에 “○”표한 사례가 있는 바, 수입액을 기준으로 주산업 한곳에만 “○”표 하고 업종별 차량대수를 반드시 비교란에 기입한다.

② 특수차량

1 특수차량이란 컨테이너 화물운반차량, 유조차량, 냉장차량 및 기타 특수시설차량을 말한다.

2 차량대수에는 트랙터만 계산되고 트레일러는 포함치 않는다.

③ 실제 사업형태는 여객수송업체임에도 응답자의 착오로 화물수송에 “○”표한 사례가 있는 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여객수송 인원란의 수치를 화물수송톤수란에 이기한 사례가 있음. 사업체명부상의 사업형태와 조사표상의 사업형태가 다르면 수송실적란과 관련하여 검토하는 등 재확인하여

정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2) 장비보유현황

① 비영업용 차량을 조사한 사례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차량은 포함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에 응답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명부상의 차량대수와 조사표상의 차량대수가 다를 경우에는 재확인할 것이며 비직영차량 및 임차선박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② 표본사업체

개인택시와 개인용달의 경우에 표본조사의 대상은 사업주가 아니라 지정된 차량이므로, 사업주가 2대 이상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출된 차량 1대분에 대한 영업내용을 조사하여야 하며, 차량보유대수도 1대이어야 한다.

③ 기준시점 착오

차량대수를 조사기준시점('89.12.31)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사시점('90.4월)을 기준하여 조사한 사례가 있는 바, 이 항목도 사전에 응답자에게 주지시켜 착오를 예방하여야 한다.

④ 창고면적의 착오

한 사업체가 여러 곳에 몇개의 창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영업사무소 소재지에 있는 창고의 면적만을 기재한 사례가 있는 바, 이 사업체는 사업주가 소유한 모든 창고의 사업내용과 창고면적을 조사하여야 한다.

(3) 수송실적

수송실적이 여객수송임에도 사업형태란에는 화물에 "○"표된 사례가 있는 바, 사업형태와 연관시켜 검토하여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종업원수 및 급여액

① 표본사업체

개인택시 및 용달 운전기사는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② 단순노무자

화물운수업체와 창고업체에만 단순노무자가 있을 수 있음에도 여객운수업에 단순노무자가 기록되는 사례가 있는 바, 여객운수업에 이러한 성격의 종업원이 있으면 차량관계 종업원중 기타 종업원란에 기입하고 그 업무내용을 적요란에 상세히 기입한다.

③ 단순노무자수 산출

단순노무자란에 연간 연인원수 혹은 조사기준시점의 단순노무자수를 기입하는 사례가 있는 바, 반드시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text{단순노무자수} = \text{연간급여액} \div \text{연평균 1인일당임금} \div 300 \text{ 일}$$

[예시] “을” 회사의 단순노무자에게 지급한 연간급여액을 1,620만원이라하고 연평균 1인일당임금 9,000 원, 연간근무일수가 300 일인 경우의 단순노무자수는?

$$\text{단순노무자수} = 1,620 \text{ 만원} \div 9,000 \text{ 원} \div 300 \text{ 일} = 6 \text{ 명}$$

(5) 운수수입 및 비용

① 전력비와 잡비

일반적인 전기사용료를 연료비란의 전력비에 기재한 사례가 있었는데, 전력비는 재료비로서의 장비용 비용이며, 재료비가 아닌 난방, 조명 등 일반적인 전기사용료는 잡비(광열비)에 산입한다.

② 입금제차량

운전기사가 연료비를 부담하는 입금제차량의 경우 사업주는 실제 입

금액만으로 결산 처리함으로써 연료비 만큼 수입과 비용이 과소계상되었는 바, 입금제 차량의 경우에도 운전기사부담연료비를 수입과 비용항목에 가산하여야 한다.

(6) 부가가치

① 운수활동을 통하여 새로이 창출, 부가시킨 순생산개념의 가치(금액)로서, 본조사(통계)에서는 운수비용항목을 중심으로 가산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 부가가치 = 인건비(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포함) + 복리후생비 + 감가상각비 + 임차료 + 세금·공과금 + 대손상각 + 국내선박용선료 + 영업이익 + 납부부가가치세

(7) 고정자산

비용란의 감가상각액이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보다 적은 사례가 있는 바, 양란의 감가상각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있는 비용란의 감가상각액이 대체적으로 유형고정자산란의 감가상각액보다 많아야 한다.

Ⅳ. 조사표심사 및 정리요령

1. 공통사항

- (1) 조사표가 오손되었을 때에는 다른 조사표에 옮겨 다시 작성한다.
- (2) 조사표상의 숫자 기록이 정확한가를 검사한다.
- (3) 업종(산업세세분류)별로 철해진 조사표가 조사표 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매수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 (4) 사업체명부상 사업체 고유번호와 요계표 및 조사표상의 사업체 고유번호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전산번호란은 기록하지 않는다).
- (5) 사업체명을 생략 또는 간단히 줄여서 기입하지 않았는가를 검토하고, 특히 소재지는 행정구역 단위가 명백히 구별(○표)되었는가를 확인한다.
- (6) 자본금 또는 출자금은 회사법인, 기타 법인의 경우에 한해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 (7) 사무 및 기타 종업원에는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잘못 포함시키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8) 급여액은 종업원의 현실적인 급여수준에 미달되어서는 안되므로 1인당 월평균 급여액을 계산하여 합리성 여부를 검토한다.
- (9) 조사표의 기재내용은 타용지에 전사(轉寫)하거나 외부사람에게 알려서는 안된다(통계법 참조).
- (10) 조직형태가 국가기관, 공사, 회사법인 및 기타 법인이면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있어야 하고, 「종업원수 및 연간급여액」중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는 없어야 하며, 개인업체일 경우에는 그 반대로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11) 「종업원수 및 연간급여액」의 합계는 「연간운수수입 및 비용」의 「인건비」와 일치되었는지를 검토한다.

(12) 「연간운수수입 및 비용」의 「감가상각비」가 유형고정자산만의 감가상각비일 때는 「유형고정자산」의 「연간감가상각액」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하고,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도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연간감가상각액의 합계」보다 많아야 하며, 후자의 경우 그 무형고정자산의 내역과 차액을 적요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13) 「유형고정자산」의 연말현재액이 다음 산식에 맞는가를 검토한다.

연말현재액 = 연초현재액 + 연간취득액 - 연간처분 및 손해액 - 연간감가상각액

(14) 대규모 사업체의 조사표는 항목간에 불균형이 없도록 전년도 자료와 대조하고 증감요인을 조사표 적요란에 상세히 기입한다.

2. 항목별 검토요령

(1) 사업체 개황

①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사업체명부상의 내용과 다를 경우는 사업체명부가 보완되었는가를 확인한다.

② 창설 년월일의 기입이 누락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한다.

(2) 조직형태

① “○”표된 란의 해당 번호가 부호기입란의 조직형태란에 정확히 기입되었는가를 확인한다.

② 조직형태가 ①국가기관 ②공사 ③회사법인 ④기타법인 경우 「4. 자본금 및 출자금」란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7의 (3)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는 「\」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③ 조직형태가 ⑤개인인 경우는 「4. 자본금 및 출자금」란은 「\」이, 「7이 (3)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란에는 반드시 기입되어야 한다.

(3) 사업형태

① 반드시 주업종 1개에만 “○” 표시되어야 한다.

② “○” 표시된 업종의 산업분류부호가 산업분류부호란에 정확히 기재되었는가 확인한다(Ⅲ. 부호기입요령 참조).

(4) 자본금 또는 출자금 단위는 백만원임을 유의하고 조직형태와 연관 검토한다.

(5) 장비 보유 현황

① 사업체명부상의 장비(차량, 선박, 하역, 창고장비)대수와 조사표상의 장비 대수를 확인한다.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재확인하고, 그 사유를 조사표와 요계표 비교란에 기입한다.

② 기관별란의 (4)합계가 소유자별(직영, 비직영)의 계 및 경과년수별의 계가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③ 「톤수별 화물 차량대수」란은 노선·일반구역 및 특수화물 운수업체에 한하여 기입되어야 하며, 그 합계는 기관별란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용달제외).

④ 선박의 경과 연수별 강선, 목선, 합성수지제선의 척수 합계와 기관별의 강선, 목선, 합성수지제선의 척수 합계는 일치하여야 한다.

(6) 연간 수송실적

① 단위가 천단위로 기입되었는가를 확인한다.

② 수송 총 인원

1 개인택시인 경우에만 기입되어야 한다(화물수업인 경우에는 「\」

으로 표시).

③ 수송 총톤수

화물운수업인 경우에만 기입되어야 한다(여객운수업의 경우 「\」).

④ 수송 총거리

택시와 화물운수업에 모두 기입되었는가 확인한다.

(7) 종업원수 및 연간급여액

① 종업원수

1 기타 종업원수가 차량관계 종업원수 보다 많은 경우에는 재확인 하여 그 사유를 조사표 및 종합표 비교란에 기입한다.

2 사업형태와 관련하여 직종별 종업원수를 검토한다.

예 : (가) 택시운수업의 경우에는 안내원 및 조수가 있을 수 없다.

3 $\text{단순노무자수} = \frac{\text{연간급여액}}{\text{1인일당임금}} \div 300 \text{일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

되었는가 확인한다.

4 보유차량대수와 관련하여 운전기사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5 개인택시 및 용달의 경우에 운전기사를 사업주 및 무급종사자란에 기입되었는가 확인한다.

② 연간급여액

1 연간급여액 총계가 「운수비용중 인건비」와 일치하였는가 확인한다.

2 급여액은 종업원의 현실적인 급여수준에 미달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직종별로 1인당 월평균 급여액을 산출하여 합리성 여부를 검토한다.

3 종업원수 및 급여액에 있어서는 전체의 란을 가로, 세로로 검토

한다.

(8) 연간 운수수입 및 비용

① 운수수입

1 차량 1대당 월평균 수입을 산출하여 합리성 여부를 검토한다.

2 시내버스 운수업의 경우는 수송 종인원수로 운수수입을 나누어 합성 여부를 검토한다.

② 운수비용

1 기관별 차량대수와 연료비를 관련 검토한다. 즉 디젤엔진인 경우에 비용중 경유란에 기입되었는가 검토(휘발유엔진→휘발유, L.P.G 엔진→L.P.G)

2 기관별(엔진별) 차량 1대당 월평균 연료비를 산출하여 합리성 여부를 검토한다.

3 기재 누락시킨 항목이 있는가를 검토한다.

4 소계, 제, 합계의 재검토 및 운수수입에서 운수비용의 합계를 차감하여 영업이익과의 일치여부를 검토한다.

5 영업비용중 외국정부, 외국선사 및 외국인에게 지불된 인건비, 복리후생비, 임차료(외국선박용선료 제외), 조세 등은 잡비로 처리한다.

(9) 유형고정자산

① 연말현재액이 다음 산식에 적합한가를 검토한다.

⑤ 연말현재액 = ① 연초현재액 + ② 연간취득액 - ③ 연간처분액 및 손해액 - ④ 감가상각액

② 조사기간의 당해년도 감가상각액을 기입하였는가를 검토한다.

③ 각 항목별로 가로, 세로로 합계가 맞는지를 검토한다.

④ 운수비용중 감가상각비가 유형고정자산부분만의 감가상각비일 때는 유형고정자산권의 연간감가상각액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하고,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도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권의 감가상각비 보다 많아야 한다.

⑤ 겸업 사업체에 있어서는 유형고정자산의 분할이 타당성있게 분리되었는지 확인한다.

3. '89년 운수업통계조사 증감요인 분석표 작성요령

- 사무소별 업종별로 작성한다.
- 정확하고 타당성있는 증감요인을 파악하여 기입한다.
- 각 항목별 증감요인을 관련기관, 협회등에 문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V. 요 계 표 작 성

- 일반적인 유의사항

- 요계표는 조사표의 내검 및 부호기입이 완전무결하게 이루어진 후에 시도별 업종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요계표상의 사업체 순서는 조사표철의 사업체 순서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 업종별로 장을 달리하여 작성한다.
- 유고사업체는 기입하지 않는다.
- 개인택시 및 용달은 전수조사분과 분리하여 작성하되 「구분」란을 이용하여 개인택시, 개인용달을 각각 시부와 군부별로 별도장에 작성하며 농산물창고도 「구분」란을 이용하여 전수와 표본업체를 구분하여 별도로 각각 작성한다. 그리고 결표지에 전수·표본·시부·군부를 표시한다.
- 개별화물은 일반구역화물운송업으로 하되 장을 달리하여 작성한다.
- 「구분」란의 부호 기입요령은 「VI 부호기입요령」 참조

- 항목 기입요령

- 난외사항
 - (매중 매)란은 페이지(면)개념에 따라 기입한다.
 - 시·도부호는 「※시도부호」를 참고하여 기입한다.
 - 해당 통계사무소 및 작성자 성명을 기입한다.
 - 명부상사업체수, 신규, 전입, 유고 및 조사된 사업체수는 시도별 업종별로 해당사항을 각각 기입한다.
- 난내사항

- 「전산번호」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 산업분류번호, 사업체고유번호 및 사업체명은 조사표상의 해당사항을 각각 기입한다. 따라서 산업분류번호, 사업체고유번호 및 사업체명은 사업체명부, 조사표 및 요계표의 3종류에 기재된 내용과 반드시 모두 일치하여야 한다.
- 「연말 종업원수」 「급여액」 「운수수입」 「운수비용」 「연말유형고정자산」 「차량보유대수」 「선박 척·톤수」 및 「보관·창고수 및 면적」은 조사표상의 해당항목의 합계를 각각 기입한다.
 - 하역 장비대수는 선박 척·톤수란에 기입한다.
 - 부가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 = 인건비 +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 복리 후생비 + 감가상각비 + 임차료 + 국내용선료 + 세금 · 공과금 + 대손상각 + 영업이익 + 납부부가가치세
- 소계 (888) 및 합계 (999) 기입요령
 - 888. 및 999 란은 적색볼펜으로 기입한다.
 - 1개업종이 1매로 끝날 경우에는 아래로부터 둘째칸 888 란에 해당장의 소계를 기입하고 첫째칸 999란에 해당업종의 합계를 기입한다. 즉 1개업종이 1매로 끝날 경우에는 소계 (888)와 합계 (999)의 수치는 동일하다.
 - 1개업종이 2매 이상으로 끝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각면마다 소계 (888)를 기입하고 마지막 면에는 소계 (888)와 합계 해당업종의 합계 (999)도 기입한다.
- 제출할 요계표 종류 : 시도별 업종별 요계표, 표본조사인 개인택시 (시

부, 군부) 개인용달 요계표(시부, 군부) 및 농산물창고업체(전수, 표본)

요계표 4종

※ 시·도부호

서울	11	충북	33
부산	21	충남	34
대구	22	전북	35
인천	23	전남	36
대전	25	경북	37
광주	24	경남	38
경기	31	제주	39
강원	32		

Ⅶ. 부 호 기 입 요 령

- 부호기입은 조사표, 사업체명부, 요제표가 완전히 작성된 후에 기입한다.
- 부호기입은 모두 적색 PLUS PEN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기입한다.

1. 전산번호

자료처리과에서 전산처리로 사용하는 번호이므로 기재하지 않는다.

2. 산업분류번호

조사항목 「 3. 사업형태 」란에 “ 0 ” 표시된 업종의 산업세계분류번호를 기입한다.

〈참 조〉

<u>산업세계분류번호</u>	<u>사 업 형 태</u>
711	육 상 운 수 업
71111	시 외 철 도 운 수 업
71112	시 내 철 도 운 수 업
71121	고 속 버 스
71122	시 외 버 스
71123	시 내 버 스
71131	택 시
71132	전 세 버 스
71141	노 선 화 물
71142	특 수 화 물

<u>산업세세분류번호</u>	<u>사 업 형 태</u>
71143	일 반 구 역 화 물
71144	용 달
71145	장 의 차
71161	여객자동차정류장
71162	화물자동차정류장
71171	유 료 도 로
71173	차 량 임 대 업
71174	육 상 하 역 업
<u>712</u>	<u>수 상 운 수 업</u>
71211	내 향 여 객
71212	내 향 화 물
71213	외 향 여 객
71214	외 향 화 물
71221	내 륙수 상 여 객
71222	내 륙수 상 화 물
71229	기타내륙수상운송업
71231	수로안내(도선)업
71232	선 박 청 소 업
71233	수 상 화 물 하 역
71235	선 박 구 난 업
71236	선 박 임 대 업
<u>713</u>	<u>항 공 운 수 업</u>

<u>산업세세분류번호</u>	<u>사 업 형 태</u>
71310	항 공 운 송 업
71320	항공운수보조서비스업
719	운수관련서비스업
71911	화물운송대행업
71914	선박중개업
71915	포장·검수 및 유사서비스업
71921	보 통 창 고
71922	냉 장 창 고
71923	위 험 물 창 고
71924	농 산 물 창 고
71929	달리분류되지 않은 보관 및 창고

* 육상하역업은 육상운수업이고, 수상화물하역업은 수상운수업임에 유의

3. 구 분

구분란에는 개인택시, 개인용달에 대한 시부·군부 및 농산물창고업의 전수, 표본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택시, 개인용달 및 농산물 창고업에 해당하는 조사표와 요계표구분란에 다음과 같이 기입하며, 개별화물은 육상화물, 여객조사표와 요계표구분란에 “7”로 표기한다.

개인택시	{	시부 - 1
		군부 - 2
개인용달	{	시부 - 3
		군부 - 4

20 ~ 49	4
50 ~ 99	5
100 ~ 199	6
200 ~ 299	7
300 ~ 499	8
500 ~ 999	9
1,000 인이상	10

8. 자본금 규모

조사항목 4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다음의 계층별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200 만원미만	1
200 ~ 499	2
500 ~ 999	3
1,000 ~ 4,999	4
5,000 ~ 9,999	5
10,000 ~ 49,999	6
50,000 ~ 99,999	7
100,000 만원이상	8

9. 차량 규모

조사항목 5 「차량보유현황」중 “기관별차량대수”의 합계를 다음의 계층별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5대미만	1
5~9	2

10~19	3
20~49	4
50~99	5
100~199	6
200대이상	7

Ⅶ 운수업통계조사부표 (지역별소득 추계자료) 기입요령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지역별 주민소득 추계계획의 일환으로 운수업부문의 총생산액 및 부가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지역별 운수수입, 피용자보수, 감가상각비를 파악코자 함.

나. 조사대상 (22개업종)

- 시외철도 · 노선화물 · 특수화물 · 용달화물(개인제외)
- 유료도로 · 육상하역 · 내항여객 · 내항화물
- 외항여객 · 외항화물 · 내륙수상여객 · 내륙수상화물
- 기타 내륙수상 운송업 · 수로안내업, 선박임대업
- 선박 청소업, 선박구난업 · 수상화물하역 · 화물운송대행업
- 여행알선업 · 농산물창고업(개인제외) · 선박중개업

다. 조사방법

동 운수업통계조사와 병행조사 실시

2. 조사표 기입요령

가. 조사표작성시 유의사항

(1) 부표상의 운수수입, 피용자보수(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및 복리후생비의 계) 및 감가상각비의 지역별 합계 금액은 본조사표(운수업 통계조사표)의 해당항목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부표상의 모든 조사항목은 해당지역별로 기입한다.

(3) 각 사업체의 운수업부문의 영업소, 수리공장, 지사, 사무소, 출장소 등에서 발생된것은 해당지역에 포함시켜 작성한다.

(4) 해외부분은 2개 이상의 국가에 취항하여 얻은 운수수입중 국내수입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국내지역 구분이 곤란한 경우 본란에 기입한다.

나. 난외사항

사업체 고유번호, 사업체명 및 소재지, 산업분류는 운수업 통계조사표와 동일하게 기입한다.

다. 조사항목별 기입요령

업종의 특성상 2개 이상의 지역(시·도)이 서로 연계되어 있거나 회계계정이 본사계정으로 일괄 처리되어 지역별 금액자료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는 다음의 산식을 이용하여 지역별로 배분 기입한다.

1) 운수수입 : 운수업통계조사표(본조사표)상의 영업수입(운수수입)을 지역별로 기입한다.

(산 식)

$$\text{지역별 운수수입} = \text{총운수수입} \times \frac{\text{지역내 승객인원(지역내 화물톤수)}}{\text{총승객인원(총화물톤수)}}$$

2) 피용자보수 : 본조사표상의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및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금액을 지역별로 기입한다.

(산 식)

$$\text{지역별 피용자보수} = \text{총피용자보수} \times \frac{\text{지역내 종업원수(지역내 급여액)}}{\text{총종업원수(총급여액)}}$$

3) 감가상각비 : 본조사표상의 운수비용중 감가상각비를 지역별로 기입한다.

(산 식)

$$\text{지역별 감가상각비} = \text{총감가상각비} \times \frac{\text{지역별 유형고정자산}}{\text{총유형고정자산}}$$

Ⅷ. 조사표편철, 조사표지기입 및 조사표류제출요령

가. 조사표 편철

-전수조사

작성완료된 조사표는 시도별 업종별 사업체고유번호순으로 철한다.

-표본조사

·개인택시 및 용달

시도별 업종별, 시부, 군부로 분리하여 각 1권으로 철한다.

·농산물 창고업

시도별로 철한다.

-부 표

별도철하여 제출한다(버스 및 택시조합분도 같음).

나. 조사표지 기입요령

-버스 및 택시 운송업

산업분류, 통계사무소 및 확인자란을 빠짐없이 기입한다.

-철도, 화물, 수상, 항공 및 운수관련서비스업

사무소명, 시·도명, 조사표매수, 산업분류번호, 조사표 접수내역 및 확인란을 빠짐없이 기입한다.

다. 조사표류 제출요령

-버스 및 택시운송업

·각 시도 버스 및 택시조합에서 4.25일까지 각지방통계사무소에 송부한 조사표는 조사표 심사 및 정리, 요계표 작성, 부호기입을 완

료한후 5.31일까지 조사관리과로 제출한다.

• 만약, 미조사 사업체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완조사하여 5.31일까지 같이 제출한다.

-편철이 완료된 조사표는 요약표, 사업체 명부(표본조사용 사업체 명부포함) 및 증감요인 분석표와 함께 5.31일까지 중앙에 제출한다.

라. 중앙 심사결과 미비조사표로 지적된 조사표는 접수 즉시 신속히 재조사 하여 중앙에 제출한다.

< 부록 1 >

한국표준산업분류

(1984. 1.26 제 5 차개정)

대분류 7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Transport, Storage and Communication)

이 대분류에는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및 기타 운송기구에 의하여 일반 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 및 운송관련 서어비스업, 창고업, 통신 및 통신관련 서어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가 분류된다. 여기에는 운송업에 관련된 화물 및 여객 터미널의 운영, 화물중개업, 여행알선업도 포함된다.

다른 산업에 연관되어 수행되는 운송활동은 별도로 파악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주된 산업에 따라 분류되며, 동일 기업체를 위한 장거리운송, 하역, 수상운수, 파이프라인 운송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독립되어 운영될 경우 그 활동의 종류에 따라 별개의 사업체로 분류하여 보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 또는 스튜디오는 9413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업)에 분류한다.

운수 및 통신업의 주요특성은 물리적 시설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사업체를 한정하기가 곤란할 경우가 많으나 통상적으로 사업체는 그 활동을 관장하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며 그 활동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관리 운영하는 사무소, 영업점포, 역, 터미널, 창고 등을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간주할 수 있다. 철도차량 및 엔진의 수리활동을 다른 기업체에서 수행한

다면 제조업으로 보나 운수회사내의 독립된 사업체에서 관련 수리만을 전적으로 수행한다면 이에 관련된 서어비스업으로 분류한다.

중분류기 . 운수 및 창고업

(Transport and Storage)

711 육상운수업 (Land Transport)

7111 철도운수업 (Rail way Transport)

도시내, 도시간 및 교외간 철도차량에 의해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고 침대차 서어비스, 전철 및 기타 터미널 서어비스와 같은 철도 운수관련 서어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철도차량의 건조, 분해수리, 철도로반 및 건물의 건설 및 보수활동 등이 철도운수사업체에서 수행하는 경우 별도사업체로 분리할 수 없을 때에는 여기에 분류한다.

철도운수 사업체의 단위 부서에서 통신서어비스, 호텔운영, 수상운수와 같은 산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72 (통신업), 632 (숙박업), 712 (수상운수업)의 해당항목에 분류된다.

71111 시외철도운수업 (Inter-Urban Railway Transport)

철도차량에 의하여 도시간 일정한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과 시외철도 운송에 관련된 서어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1112 시내철도운수업 (Urban Railway Transport)

철도차량에 의하여 일정한 도시구역내에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과 시내철도 운송에 관련된 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112 노선여객 자동차운송업 (Passenger Motor Vehicle Transport, Regularly Scheduled)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도로차량에 의하여 도시간, 교외 도시내의 여객을 운송하는 활동을 말하며 전차, 전철, 지하철등 철도차량에 의한 여객운송은 제외하나, 케이블카 등에 의한 정기적 여객운송은 포함된다.

이러한 산업활동에 결합된 터미널, 정비 및 서어비스설비를 운영 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된다.

71121 고속버스운송업 (Inter-Urban Highway Express Bus Passenger Transport)

도시간에 고속도로를 주 노선으로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로 고속버스를 운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1122 시외버스운송업, 고속버스 제외 (Inter-Urban Highway Bus Passenger Transport, except Express Bus)

고속버스와 시내버스를 제외하고 도시간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로 버스를 운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1123 시내버스운송업 (Urban Bus Passenger Transport)

일정한 도시 또는 읍면의 한정 구역내에 노선을 정하고 정기로 버스를 운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11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노선여객 자동차운송업 (Passenger Motor Vehicle Transport, Regularly Scheduled, n.e.c)

달리 분류되지 않은 노선 여객운송업으로 무궤도 고가차량, 케이블

카 등의 교통수단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시내 여객운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관광 또는 유흥목적으로 운행되는 삭도 시설운영업은 94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오락서비스업)에 분류된다.

7113 기타 육상여객운송업 (Other Land Passenger Transport)

기타 육상여객 운송업으로 전세버스, 택시, 동물견인 여객운송사업등을 말한다.

구급차 서비스는 9331 (의료 및 보건서비스업)에 분류된다.

71131 택시운송업 (Taxicab Transport)

소형승용차에 의하여 통상 주행거리 또는 주행시간을 기준으로 요금을 받고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1132 전세버스 운송업 (Charter Bus Transport)

일정한 노선없이 수시 계약에 의하여 운행하는 전세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산업활동을 말한다.

711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육상여객 운송업 (Other Land Passenger Transport, n.e.c)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육상여객 운송업으로 일정한 노선없이 동물 견인차량, 인력견인차량 등에 의한 여객운송사업을 말한다.

7114 도로화물운송업 (Freight Transport by Road)

육상에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1141 노선화물운송업 (Freight Transport, Regularly Scheduled)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1142 특수화물운송업 (Special Freight Transport, Non-regularly Scheduled)

위험화물 등 특정화물의 운송에 적합한 특수한 장치를 설비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1143 일반구역화물운송업 (General Local Freight Transport)

일정한 사업구역내에서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특수화물운송업과 용달운송업을 제외한다.

71144 용달화물운송업 (Local General Cargo Pick-up and Delivery Transport)

통상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일정한 사업구역내에서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교적 단거리간을 주행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고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1145 장의차량운송업 (Hearse Transport)

시체를 운구할 수 있는 특수한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시체운구 및 장례에 참여하는 사람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상여등의 시체만 운구하는 산업활동은 95991에 분류된다.

711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로화물운송업 (Freight Transport by Road, n. e. c.)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로화물운송업으로 동물견인차량, 인력견인차량 등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우터 및 지게 등 인력에 의한 수화물의 운반은 959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분류한다.

7115 파이프라인운송업 (Pipeline Transport)

- 71150 파이프라인운송업 (Pipeline Transport)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해 원유, 정유, 천연가스, 석탄 및 기타 화물을 파이프라인에 의해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7116 자동차 정류장업 (Motor Vehicle Terminal Services)
여객의 승강이나 화물의 적하를 위하여 자동차가 장시간 정류할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차량정류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71161 여객자동차 정류장업 (Passenger Terminal Services)
여객의 승강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71162 화물자동차 정류장업 (Freight Terminal Services)
화물의 적하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정류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7117 육상운수보조서비스업 (Supporting Services to Land Transport)
유료도로, 교량 및 터널운영, 주차장운영 및 운전사없이 차량을 임대하는 산업활동등을 말한다.
- 71171 유료도로운영법 (Operation of Toll Road)
도로, 터널, 교량 등의 설비를 수수료를 받고 사용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71172 주차장운영업 (Operation of Vehicle Parking Facility)
유개, 무개를 불문하고 주차장을 운영하여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차량 장기보관소 운영은 7192 (보관 및 창고업)에 분류한다.

- 71173 차량임대업 (Motor Vehicle Rental Without Drivers)
 운전사없이 각종 육상운수 차량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운전사가 딸린 차량의 임대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7112,7113,7114에 분류된다.
 인력전인 및 동물전인차량의 임대는 71179에 분류한다.
- 71174 육상하역업 (Land Stevedoring)
 각종 육상화물을 적재 및 하역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7117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육상운수보조서비스업 (Supporting Services to Land Transport, n.e.c.)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육상운수 보조 서비스업으로서 철도운수사업과 분리되는 철도차량의 보조서비스를 포함하여 운전사없이 인력 및 동물전인차량의 임대활동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712 수상운수업 (Water Transport)
- 7121 해상운송업 (Ocean and Coastal Water Transport)
 연근해 및 원양에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71211 내항여객운송업 (Coastal Water Passenger Transport)
 국내항간에 선박을 취항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71212 내항화물운송업 (Coastal Water Freight Transport)
 국내항간에 선박을 취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71213 외항여객운송업 (Deep Sea Foreign Passenger Transport)
 외국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71214 외항화물운송업 (Deep Sea Foreign Freight Transport)

- 외국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712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상운송업 (Ocean and Coastal Water Transport, n. e. c.)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상운송업으로 공해 및 근해상의 예인선운영 등이 포함된다.
- 내륙수로상의 예인활동은 71229, 조난선의 구조예인활동은 71235 (선박구난업)에 분류된다.
- 7122 내륙수상운송업 (Inland Water Transport)
- 강, 운하, 항만내수로에서 화물 및 여객수송을 위한 선박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강, 내륙호수 및 항구내에서 나룻배운영도 포함된다.
- 71221 내륙수상여객운송업 (Inland Water Passenger Transport)
- 강, 운하, 항만내에서 여객수송을 위한 선박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71222 내륙수상화물운송업 (Inland Water Freight Transport)
- 강, 운하, 항만내에서 화물운송을 위한 선박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71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내륙수상운송업 (Inland Water Transport, n. e. c.)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내륙수상운송업으로 수상택시운영, 관광선운영, 내륙수로예인선, 거룻배·바지선운영 등을 포함한다.
- 하역업체가 거룻배를 운영할 경우는 71233에 분류된다.
- 7123 수상운수보조서비스업 (Supporting Services to Water Transport)

잔교, 부두 및 연합건물과 설비의 유지 및 운영, 수로안내, 등대 및 기타 항해보조구의 유지 및 운영, 선적물의 하역, 선박청소, 운하의 유지 및 운영, 난파선의 구조 및 선박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1231 수로안내 (도선)업 (Pilotage)

항구내 또는 항구의외의 선박을 인도하거나 항해위험지구에 수로 안내활동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1232 선박청소업 (Shipboard Cleaning)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선박 갑판 및 탱크의 청소, 살균, 훈증소독, 해충박멸 및 유사서비스를 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선원이 이러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71233 수상화물하역업 (Water Freight Stevedoring)

항구내에서 선박과 부두, 선박과 선박간에 직접 화물을 운반하여 이를 선적 및 하역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1234 항만시설운영업 (Port Operation)

하역을 제외하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선창, 도크, 잔교 및 기타 해상터미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1235 선박구난업 (Vessel Salvage)

원양 및 근해 또는 내륙수로에서 침몰선의 인양, 전복선박의 바로잡기, 좌초한 선박의 부상작업, 침몰선의 화물회수, 조난선의 예인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1236 선박임대업 (Rental of Vessels)

자체추진 또는 비추진 선박 (놀이용 제외)을 임대해 주는 산업활

조사표(운수업 통계조사표)의 해당 항목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부표상의 모든 조사항목은 해당 지역별로 기입한다.

(3) 각 사업체의 운수업 부문의 영업소, 수리공장, 지사, 사무소, 출장소 등에서 발생된 것은 해당 지역에 포함시켜 작성한다.

등을 말한다.

승무원이 딸린 선박임대업은 7121(해상운송업)이나 7122(내륙수송운송업)에 분류한다.

712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상운수 보조서비스업 (Supporting Services to Water Transport, n.e.c.)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상운수 보조서비스로서 등대운영, 항해조력 서비스, 운하운영 등을 포함한다.

713 항공운수업 (Air Transport)

7131 항공운송업, 보조서비스업 제외 (Air Transport Carriers)

71310 항공운송업, 보조서비스업 제외 (Air Transport Carriers)

항공기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132 항공운수보조서비스업 (Supporting Services to Air Transport)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공항서비스 즉, 항공여객 및 화물터미널서비스, 공항설비 운영서비스, 기권운수보조서비스, 비행기임대 (승무원 유무불문), 공항지상서비스, 항공기유지서비스 등 항공운수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19 운수관련서비스업 (Service Allied to Transport)

7191 운수부대서비스업 (Service Incidental to Transport)

운수, 포장 및 상자에 넣기, 운수주선 (여행사 포함), 검사, 표본추

출 및 중량검사, 선박 및 항공기의 중개와 같은 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1911 화물운송대행업 (Freight Forwarding)

직접 화물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 운송에 관한 책임을 지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운송을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1912 여행알선업 (Travel Agency Services)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여객 및 여객수화물의 운송 및 이에 관련 서비스를 알선하는 여행사 및 대리점의 산업활동과 숙소 및 음식알선서비스, 매표 등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1913 화물중개업 (Freight Brokerage)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과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통관 및 관세 중개서비스, 화물증서결산 및 화물요금 공보서비스도 포함하며, 화물운송대행활동 및 선박중개서비스는 제외한다.

71914 선박 및 항공기중개서비스 (Ship and Aircraft Brokerage and Similar Services)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선박, 항공기, 운수장비, 판매에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중개를 하며 매매를 알선해 주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선박임대추선도 포함한다.

71915 포장, 검사 및 유사서비스업 (Packing Crating, Inspection and Similar Services)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운송화물포장, 검사, 형량 및 유사관련

서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19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수부대서서비스업 (Services Incidental to Transport, n.e.c)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수부대 서서비스업으로서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가축수송에 따른 임시가축사육장 운영, 가축형량, 가축하역등 관련서서비스활동을 말한다.

7192 보관 및 창고업 (Storage and Warehousing)

타인을 위하여 농산물, 음식료품, 가구 및 기타 가정용품, 모피, 섬유, 목재 등 각종 물품을 보관 또는 저장할 목적으로 설비된 보관 및 창고시설물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세탁사업체에서 의복보관은 9520 (세탁 및 염색업), 수화물 임시보관소는 95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서서비스업), 은행의 안전예금 금고 서서비스는 8103 (금융서서비스업), 천연 및 제조가스 저장업은 4102 (가스제조 및 공급업), 영화필름 및 영화용 비디오테이프 보관은 9412 (영화배급 및 상영업)에 각각 분류된다.

71921 보통창고업 (General Warehousing)

물자의 보관을 위하여 특수한 시설이 없이 보통 상온에서 저장이 가능한 물자를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1922 냉장창고업 (Refrigerated Warehousing)

상온에서의 부패성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저온을 유지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1923 위험물창고업 (Dangerous goods Warehousing)

발화성 또는 인화성물질 등 안전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요

구되는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1924 농산물창고업 (Farm Product Warehousing)

농산물을 주로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19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보관 및 창고업 (Storage and Warehousing, n.e.c)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보관 및 창고업으로서 차량장기보관소운영, 목재하치장 (수면목재창고 포함), 기타 물품의 야적장, 주류보관창고업 등이 포함된다. 다만 비축시설운영업은 비축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적합한 항목에 분류된다.

실시기관 : 경제기획원

지정통계 : 111-11-16

1989년 기준

운수업통계조사표

(버스 및 택시운송업)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통계목적에만 사용되며 그 바깥은 절대 보장됩니다.

※ 전상번호	※ 산업분류번호	※ 사업체고유번호	※ 행정구역번호	※ 조직형태	※ 종업원규모	※ 자본금액	※ 차량규모

1. 사업체 개황

(1) 사업체명 _____

(2) 대표자명 _____ (3) 전화번호 _____

(4) 소재지 _____

사 도	주 시 군	구 로	동 읍 면	가 동 리	번 지	호
--------	-------------	--------	-------------	-------------	--------	---

2. 조직형태 (해당항에 ○표)

① 회사법인 ② 개인

3. 사업형태 (해당항에 ○표)

① 고속버스 ② 시외버스 ③ 시내버스 ④ 전세버스 ⑤ 택시

4. 자본금 또는 출자금 (운수업부분만 기입)

1989. 12. 31 현재 남아 완료된 금액
(개인사업체는 해당되지 않음)

조	천	백	십	억	천	백	만원

5. 차량 보유현황

• 영업용 이외의 차량은 제외
• 경과년수 : 차량 등록일로부터 1989. 12. 31까지 경과된 년수
• 출기동대수 : 전보유차량중에서 운행한 차량의 연간총 가동대수

(1) 기관별차량(대수)

	경차대수	합	계	①1년	②1-3	③3-5	④5-8	⑤8년
개년	(1)	(2)+(3)+(4)+(5)	년미차	년미차	년미차	년미차	년미차	년미차
(1)디젤엔진								
(2)가솔엔진								
(3)LPG엔진								
합계	(1)+(2)+(3)							

(2) 형별 시내버스 및 택시차량(대수)

차	대	비	즈	액	식
합계(①+②)	①도시형	②커거형	합계(①+②)	①동력	②손력

(3) 출기동대수

개	년	차	대	합	계

6. 연간 수송실적

- 수송총인원 : 연간 수송한 총인원
- 수송총거리 : 전 보유차량에 의한 연간 총주행거리
- 총운행횟수 : 보유차량에 의한 연간 총운행횟수 (택시는 타고메타기에 기록된 횟수를 기입함)

(1) 수송총인원(명)					
(2) 수송총거리(km)					
(3) 총운행횟수(회)					

7. 종업원수 및 연간급여액

- 종업원수는 1989. 12. 31. 현재로 기입하며 평가자, 단기휴가자 및 파업중인자도 포함한다. 단, 3개월 이상 장기 결근자 및 군복무자와 급여를 단월 운수사업체로부터 고집적으로 지급받지 않은 종업원은 제외된다. 즉, 정류장(지방 철류소 포함) 등에서 운수사업체의 출차권을 판매해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예표원, 검표원 등은 제외된다.
- 정비 및 수리공 : 차량의 정비 및 수리를 주된 임무로 달해 사업체의 수리공장에서 차량의 정비 및 수리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 사업주 혹은 그의 가족(동거가족 포함)으로서 관련되는 계만업무에 주당 정상 작업시간의 1/3 이상을 종사하였으나 월결한 봉급이나 임금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 급여액 : 종업원에게 노무의 대가로 연간 지급된 급여의 총액으로서 봉급, 상여금, 각종수당, 생계보조금 등을 말하며 이의 미불금도 포함한다.
- 종업원의 급여액 한계는 조사항목 「8」의 운수비용중 「2102. 인건비」와 일치되어야 한다.

		① 종업원수 (1989. 12. 31. 현재 : 명)			② 급여액 (연간총액)								
		계	남	여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원
(1) 차량관계종업원	①	1											
	2												
	계(1+2)												
	(2) 관리인 및 조수												
(2) 기타 종업원 (임원, 사무직 및 기타)	③ 정비 및 수리공 (정비관리자들)												
	④ 기타 타 (안전관리자, 세차원들)												
	계(① + ② + ③ + ④)												
(3)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개인 업체에서만 기입)													
(4) 합 계(① + ② + ③)													

8. 연간 운수수입 및 비용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수수입 : 사업체의 운수활동으로 얻어진 모든 영업수입을 말한다(영업외 수입 제외) • 운수비용 : 사업체의 운수활동으로 인하여 지출된 모든 영업비용을 말하며,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운송원가를 포함하여 작성한다(영업외 비용 제외) • 영업이익 :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운수수입에서 운수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 운 수 수 입	조사기간중 얻어진 사업체의 모든 영업수입(영업외 수입 제외)										
2101. 재 료 비	① 경 유	영업용차량용 경유사용량의 구입비용									
	② 휘발유	영업용차량용 휘발유사용량의 구입비용									
	③ LPG	영업용차량용 LPG 사용량의 구입비용									
	④ 기 타	영업용차량용 기타연료 사용량의 구입비용 윤활유(엔진오일, C오일, 구리스, 해들오일, 브레이크오일)									
	계	①+②+③+④									
2102. 기 타 재 료 비	외부로부터 매입된 부분품으로서 그대로 차량에 부착시켜 그 구성성분이 되는 부속품비(타이어, 튜브, 튜브티 등)										
운 소 계	21011+21012										
2102. 인 건 비	종업원에게 지급된 급여, 임금, 계수당 및 갑급 등의 비용(7항 급여액과 일치)										
2103.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당년도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본 계정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실제 지급된 퇴직금										
2104. 복 리 후 생 비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된 법정복리비, 장학금, 의료보험, 피부비, 보건비, 무로급식 등										
2105. 감 가 상 각 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2106. 지 급 임 차 료	건물, 차량 및 운반구										
	토지임차료										
2107. 보 험 료	자동차, 건물, 산업재해 등에 대한 보험료										
2108. 세 금 · 공과금	자동차·재산·취득·방위·등록세(법인세, 소득세 제외), 협회비, 적십자비 등										
2109. 수 선 비	건물, 수송장비 등 유형고정자산의 수선, 수리를 외부에 의뢰한 경우에 지출한 경비										
2110. 사 용 료	차량검사료 등										
2111. 대 손 상 각	받을어음 그밖의 이에 준하는 채권중 회수할 수 없는 금액(경상적인 대손상각비만 기입)										
2112. 잡 비	수도광열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소모품비, 비영업용차량유지비 및 사고비, 통신비, 여비 등										
합 계	2101+2102+2103+2104+2105+.....+2112										
(3) 영 업 이 익	(1)-(2)										
(4) 납 부 부 가 가 치 세	매출부가가치세-매입부가가치세										

9. 임대수입	십	억	천	백	십	만	원
(1) 토 지							
(2) 건 물 및 구 축 물							
(3) 기 계 장 치 및 기 구							
(4) 차 량 및 운 반 구							
(5) 합 계							

10. 유형고정자산

- 연초·연말 현재액은 연초·연말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되, 장부가액이 없거나 비현실적일 때는 시가에 의한 추정액을 기입한다.
연말현재액 = 연초현재액 + 연간취득액 - 연간처분 및 손해액 - 연간감가상각액
- 연간취득액 : 구입한 경우에는 운임·설치비를 포함한 구입가격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양수당시의 시가를, 자가건설의 경우에는 투입한 모든 비용을 기입한다.
(단, 자산재평가에 의한 명목상의 장부가액의 증가는 제외함)
- 연간처분 및 손해액 : 매각한 경우는 매각액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액을, 재해·도난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에는 그 당시에 매각할 수 있었던 시가를 기입한다.

	① 연 초 현 재 액 (1989.1.1 현재)		② 연 간 취 득 액		③ 연 간 처 분 및 손 해 액		④ 연 간 감 가 상 각 액		⑤ 연 말 현 재 액 (1989.12.31. 현재)			
	조	백	십	만	조	백	십	만	조	백	십	만
(1) 토 지												
(2) 건 물 및 구 축 물												
(3) 기 계 장 치 및 기 구												
(4) 차 량 및 운 반 구												
(5) 합 계 [(1)+(2)+(3)+(4)]												

11. 건설가계정	천	백	십	억	천	백	만	원
• 건설가계정이란 미완성의 유형고정자산 즉, 건물의 건설 또는 운반구 등의 구입을 위하여 경비가 지출되었을 경우에 건물의 완성 또는 운반구의 도착시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 연간증가액이 연간감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간증감액란에 △표시를 하고 그 차액을 기입								
(1) 연 간 증 가								
(2) 연 간 감 소								
(3) 연 말 잔 액								
(4) 연 간 증 감 [(1)-(2)]								

적 요

작성년월일 1990. 조사담당자 ㉠
 작성자소속 (전화번호) 내 검 자 ㉡
 성 명 ㉢ 관 리 제 장 ㉣

8. 연간 운수수입 및 비용

- 운수수입: 사업체의 운수활동으로 얻어진 모든 영업수입을 말한다(영업외 수입 제외)
- 운수비용: 사업체의 운수활동으로 인하여 지출된 모든 영업비용을 말하며,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운송원가를 포함하여 작성한다(영업외 비용 제외)
- 영업이익: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운수수입에서 운수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조	칙	제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1) 운 수 수 입		조사기간중 얻어진 사업체의 모든 영업수입(영업외 수입 제외)																		
2101	계	연료비	① 경유	영업용차량용 경유사용량의 구입비용																
			② 휘발유	영업용차량용 휘발유사용량의 구입비용																
			③ LPG	영업용차량용 LPG 사용량의 구입비용																
			④ 기타	영업용차량용 기타연료 사용량의 구입비용(중유류(해저오일, C오일, 구리스, 핵들오일, 브레이크오일))																
		계	①+②+③+④																	
2102	기타	계	외부로부터 매입된 부품품으로서 그대로 차량에 부착시켜 그 구성성분이 되는 부품품(타이어, 튜브, 튜브리 등)																	
			21011+21012																	
2102	인건비	종업원에 지급된 급여, 임금, 체수당 및 갑급 등의 비용(7항 급여액과 일치)																		
2103	퇴직급여충당금	당년도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본 계획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실제 지급된 퇴직금																		
2104	복리후생비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된 법정복리비, 장학금, 의료보험, 피복비, 보간비, 무료급식 등																		
2105	감가상각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2106	지급입차료	전물, 차량 및 운반구																		
		토지임차료																		
2107	보험료	차량차, 건물, 산업채대 등에 대한 보험료																		
2108	세금공과금	자동차, 재산, 취득, 방위, 등록세(법인세, 소득세 제외), 천과비, 적립차비 등																		
2109	수선비	건물, 주유장비 등 유형고정자산의 수선, 수리를 외부에 의뢰한 경우에 지출한 경비																		
2110	사용료	차량검사료 등																		
2111	대손상각	발행어음 그밖의 이에 준하는 채권중 회수할 수 없는 금액(정상적인 대손상각비만 기입)																		
2112	잡비	수도광열비, 광고선전비, 임대비, 소모품비, 비영업용차량유지비 및 사고비, 통신비, 여비 등																		
합		계		2101+2102+2103+2104+2105+.....+2112																
(3) 영 업 이 익		(1)-(2)																		
(4) 당 부 부 가 가 치 세		매출부가가치세-매입부가가치세																		

9. 임대수입

영업외수입종	차량, 토지, 건물 등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임대수입금	실액	의	천안	백만	십만	단위
(1) 토	지						
(2) 건	물 및 구축물						
(3) 기	계장 및 기구						
(4) 차	량 및 운반구						
(5) 합	계						

10. 유형고정자산

- 연초·연말 현재액은 연초·연말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되, 장부가액이 없거나 비현실적인 때는 시가액에 의한 추정액을 기입한다.
연말현재액 = 원초현재액 + 연간취득액 - 연간처분 및 손해액 - 연간감가상각액
- 연간취득액: 구입한 경우에는 운임, 설치비용 포함한 구입가격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양수당시의 시가액, 차가진실의 경우에는 투입한 모든 비용을 기입한다.
(단, 차상적평가액 의한 일부상의 장부가액의 증가는 제외함)
- 연간처분 및 손해액: 매각한 경우는 매각액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액을, 재해·도난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에는 그 당시에 매각할 수 있었던 시가를 기입한다.

	① 원 초 현 재 액 (1989.1.1 현재)		② 연 간 취 득 액		③ 연 간 처 분 및 손 해 액		④ 연 간 감 가 상 각 액		⑤ 연 말 현 재 액 (1989.12.31 현재)		
	조	백만원	조	백만원	조	백만원	조	백만원	조	백만원	
(1) 토	지										
(2) 건	물 및 구축물										
(3) 기	계장 및 기구										
(4) 차	량 및 운반구										
(5) 합	계										
		[(1)+(2)+(3)+(4)]									

11. 건설가계정

- 건설가계정이란 미완성의 유형고정자산 즉, 건물의 건설 또는 운반구 등의 구입을 위하여 경비가 지출되었을 경우에 전물비, 완공 또는 운반구까지 설치하도록 처리하는 계정
- 연간증가액이 연간감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간증감액만에 스스로를 하고 그 차액을 기입

적	요	천안	백만	십만	단위
(1) 연	간 증 가				
(2) 연	간 감 소				
(3) 연	말 잔 액				
(4) 연	간 증 감 [(1)-(2)]				

작성년월일 1989년
 작성자 조수 (전화번호)
 성명 조수
 조사담당자 조수
 내 청 자 조수
 관리제량 조수

8. 연간 하역수입 및 비용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원
<p>· 하역수입 : 사업체의 하역활동으로 얻어진, 국내·외의 모든 영업수입을 말한다. (영업외수입 제외)</p> <p>· 하역비용 : 사업체의 하역활동으로 인하여 지출되는 모든 영업비용을 말하며,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원가비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영업외비용 제외)</p> <p>· 영업이익 :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하역수입에서 하역비용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p>											
(1) 하역수입	하역사업으로 얻어진 사업체의 모든 영업수입 (영업외수입 제외)										
하역료	2101. 장비유	①경유	장비용 경유 사용량 구입비용								
		②휘발유	장비용 휘발유 사용량의 구입비용								
		③기타	장비용 기타연료 사용량의 구입비용								
	계	①+②+③									
	2102. 전력비	장비용 전기의 사용비용									
	2103. 기타재료비	외부로부터 매입된 부분품으로서 그대로 장비에 부착시켜 그 구성부분이 되는 장비부속품비									
	소계	21011 + 21012 + 21013									
	2102. 인건비	종업원에게 지급된 급여, 임금, 제수당 및 지급등의 비용 (7항 급여액과 일치)									
	2103. 퇴직급여충당금 전액	당년도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 분계정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실제 지급한 퇴직금									
	2104. 복리후생비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된 법정복리비, 장학금, 위생비, 보전비 등의 비용									
2105. 감가상각비	고정자산의 연간 감가상각비										
2106. 지급임차료	건물, 장비 및 운반구										
	토지										
2107. 보험료	장비, 건물 등에 대한 보험료										
2108. 세금·공과금	자동차·재산·취득·방위·등록세(법인세 소득세 제외), 협회비, 적십자비 등										
2109. 수선비	건물, 수송장비 등 유형고정자산의 수선·수리를 외부에 의뢰한 경우에 지출한 경비										
2110. 사용료·수수료	장비검사료, 면허수수료 등										
2111. 대손상각	받을어음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채권중 회수할 수 없는 금액 (경상적인 대손상각만 기입)										
2112. 잡비	수도광열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소모품비, 비영업용 차량유지비 및 사고비, 통신비 등										
합계	2101 + 2102 + 2103 + 2104 + 2105 + ... + 2112										
(3) 영업이익	(1)-(2)										
(4) 납부부가가치세	매출부가가치세 - 매입부가가치세										

9. 임대수입	십	억	천	백	십	만	원
영업외수입중 선박, 토지, 건물 등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임대수입금							
(1) 토지							
(2) 건물 및 구축물							
(3) 기계장치 및 기구							
(4) 장비 및 운반구							
(5) 합계							

10. 유형고정자산

- 연초·연말 현재액은 연초·연말 현재의 장부가격에 의하되 장부가 없거나 비현실적일 때는 시가에 의한 추정액을 기입한다.
연말현재액 = 연초현재액 + 연간취득액 - 연간처분 및 손해액 - 연간감가상각액
- 연간취득액 : 구입의 경우에는 운임과 설치비를 포함한 구입가격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양수당시의 시가를, 자가건설의 경우에는 투입한 모든 비용을 기입한다.
(단, 자상재평가에 의한 명목상의 장부가격의 증가는 제외함)
- 연간처분 및 손해액 : 매각한 경우는 매각액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액을, 재해·도난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에는 그 당시에 매각할 수 있었던 시가를 기입한다.

	① 연초 현재액 (1989. 1. 1 현재)			② 연간취득액			③ 연간처분 및 손해액			④ 연간감가상각액			⑤ 연말 현재액 (1989. 12. 31 현재)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억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원
(1) 토지																		
(2) 건물 및 구축물																		
(3) 기계장치 및 기구																		
(4) 장비 및 운반구																		
(5) 합계 [(1)+(2)+(3)+(4)]																		

11. 건설가계정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가계정이란 미완성의 유형고정자산 즉, 건물의 건설 또는 운반구 등의 구입을 위하여 경비가 지출되었을 경우에 건물의 완성 또는 운반구 등의 도착시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연간증가액이 연간감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간증가액란에 △표시를 하고 그 차액을 기입한다. 									
(1) 연간증가									
(2) 연간감소									
(3) 연말잔액									
(4) 연간증감 [(1)-(2)]									

적요

작성년월일	1990.	조사담당자	㉠
작성주소	(전화번호.)	내검자	㉡
성명	㉢	관리계장	㉣

지 정 통 계
승인번호: 111-11-16

1989년 기준 운수업통계조사표 (항공운수)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통계목적에만 사용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 전산번호	산업분류번호	사업체 고유번호	행정구역번호	조직형태	종업원규모	자본금규모

1. 사업체 개황

(1) 사업체명 _____

(2) 대표자명 _____ (3) 전화번호 _____

(4) 소재지 시 구 동 가 번 호
 도 시 로 동 리

2. 조직 형태 (해당란에 O표)

② 공 사 ③ 회사법인 ④ 기타법인

3. 사업 형태 (해당란에 O표)

① 항공운송업 ② 항공운수보조 서비스업

4. 자본금 또는 출자금

1989. 12. 31. 현재 납입완료된 금액을 기입한다.

조	천	억	백	억	십	억	억	천	만	백	만	원

5. 항공기 보유현황

가. 영업용 이외의 항공기는 제외한다.
나. 항공기보유는 관리주의에 의거 타인 또는 타국소유의 항공기를 임차하여 운행하는 것도 포함한다.
다. 경과년수: 항공기등록일로부터 1989. 12. 31. 까지 경과된 년수를 말한다.

경과년수 기종 기관별	① 합 계		② 3년미만		③ 3-5년미만		④ 5-10년미만		⑤ 10-15년미만		⑥ 15년이상	
	계	여객기	화물기	여객기	화물기	여객기	화물기	여객기	화물기	여객기	화물기	
(1) 고정익												
①젯 트												
②터보프롭												
(2) 회전익												
③피스톤												
④터보사프트												
⑤피스톤												
(3) 합 계 ①+...+⑤												

() 통계사무소 (7 2 0 1 2 5 7 7 2 8) 산 업 통 계 과 조 사 통 계 과 경 계 기 획 원 의 인 화

6. 연간 수송실적

항공기에 의하여 수송한 여객의 총인원수, 화물수송량, 수송총거리, 운항회수 및 비행총시간을 기입한다.

	① 합 계			② 정 기			③ 부 정 기		
	계	국내	국제	계	국내	국제	계	국내	국제
(1) 수송 총인원 (천명)									
(2) 수송 총톤수 (M/T)									
(3) 수송 총거리 (천km)	여객								
	화물								
(4) 운항 총회수 (회: 왕복)									
(5) 비행 총시간 (시간)									

7. 종업원수 및 연간급여액

- 종업원수는 1989. 12. 31. 현재로 기입하며 상용·임시종업원, 병가자, 단기휴가자 및 과업중인 자도 포함한다. 단, 3개월이상 장기결근자 및 군복무자 등은 제외한다 (외국인 종업원은 제외).
- 운항관리사: 항공기를 띄우는 계획을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사람을 말한다.
- 항공정비사: 지상에서 항공기의 고장수리와 항공기의 운용을 위한 제반일을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를 제작하거나 수리하는데 부분적으로 전문기술을 가진 기술자를 말한다.
- 단순노무자: 항공화물의 하역과 항공기로부터 창고에 이르는 입·출고작업 및 이에 준하는 작업 등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단순노무자 수는 「연간급여액 ÷ 1인일당임금 ÷ 300일」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급여액: 조사기준기간중 피고용자에게 노무의 대가로 연간 지급액 급여의 총액으로서 봉급, 상여금, 각종수당, 생계보조금, 현물급여 등을 말하며 이의 미불금도 포함한다. (단, 외국인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액은 잡비에 포함)
- 종업원의 급여액합계는 조사항목 「8」의 운수비용중 「2102. 인건비」와 일치되어야 한다.

	① 종업원수 (1989. 12. 31. 현재: 명)			② 급여액 (연간총액)									
	계	남	여	조	천	백	십	천	백	십	만	만	원
(1) 항공기-관제종업원	① 조 종 사												
	② 항 공 기 관 사												
	③ 운 항 관 리 사												
	④ 항 공 정 비 사												
	⑤ 항공공장정비사												
	⑥ 객 실 승 무 원												
	⑦ 기 타												
계 (①+②+③+④+⑤+⑥+⑦)													
(2) 기타종업원	① 단 순 노 무 자				(1인일당, 연평균)								
	② 사 무 및 기 타												
계 (① + ②)													
(3) 합 계 (① + ②)													

8. 연간 운수수입 및 비용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가. 운수수입 : 사업체의 운수활동으로 얻어진 모든 영업수입을 말한다. (영업외수입 제외)											
나. 운수비용 : 사업체의 운수활동으로 인하여 지출된 모든 영업비용을 말하며,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운송원가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영업외비용 제외)											
다. 영업이익 :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운수수입에서 운수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된 입차료 및 인건비 등은 잡비에 포함.											
(1) 운수수입	1101. 여객수입	여객운송으로 얻어진 영업수입									
	1102. 화물수입	화물운송으로 얻어진 영업수입									
	1103. 기타영업수입	기타영업수입									
	합계	1101+1102+1103									
(2) 운수비용	2101. 연료	21011. ①항공유	여객	여객항공기용 항공유 사용량의 구입비용							
		화물	화물항공기용 항공유 사용량의 구입비용								
	21012. ②기타	항공기용 기타연료 사용량의 구입비용									
	비	21013. 기타재료비	외부로부터 매입한 부분품으로서 그대로 항공기에 부착시켜 그 구성부분이 되는 항공기의 부분품비								
	소계	21011+21013									
수	2102. 인건비	종업원에게 지급된 급여, 임금 및 제수당 등 (7항 연간급여액과 일치)									
	2103.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당년도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본 제정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실제 지급된 퇴직금									
	2104. 복리후생비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된 법정복리비, 장학금, 각종위생비, 보전비 등의 비용									
	2105. 감가상각비	고정자산의 연간 감가상각비									
비	2106. 지급입차료	건물, 항공기 및 운반구 토지									
	2107. 보험료	항공기, 건물 등에 대한 보험료									
	2108. 세금·공과금	항공기·차량·취득·방위·등록·인지세(법인세, 소득세제외), 협회비, 적십자비 등									
	2109. 수선비	건물, 수송장비 등 유형고정자산의 수선·수리를 외부에 의뢰한 경우 지출한 경비									
용	2110. 사용료·수수료	항공기착륙료, 항공기검사료 등									
	2111. 대손상각	받들어음, 그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중 회수할 수 없는 금액 (경상적인 대손상각비만 기입)									
	2112. 잡비	수도광열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소모품비, 비영업용 차량유지비 및 사고비, 통신비, 여비 등									
	합계	2101+2102+2103+2104+2112									
(3) 영업이익	(1)-(2)										
(4) 납부부가가치세	매출부가가치세 - 매입부가가치세										

9. 임대수입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영업외수입중 항공기, 토지, 건물 등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임대수입금	(1) 토지							
	(2) 건물 및 구축물							
	(3) 기계장치및기구							
	(4) 항공기및운반구							
	(5) 합계							

10. 유형 고정자산

- 연초·연말 현재액은 연초·연말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되, 장부가 없거나 비현실적일 때는 시가에 의한 추정액을 기입한다.
- 연말현재액 = 연초현재액 + 연간취득액 - 연간처분 및 손해액 - 연간감가상각액
- 연간취득액 : 구입의 경우에는 운임·설치비를 포함한 구입가격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양수당시의 시가를, 자가건설의 경우에는 투입한 모든 비용을 기입한다. (단, 자산재평가에 의한 명목상의 장부가액의 증가는 제외한다)
- 연간처분 및 손해액 : 매각한 경우는 매각액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액을, 재해·도난 등으로 인해 자산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에는 그 당시에 매각할 수 있었던 시가를 기입한다.

	① 연초 현재액 (1989. 1. 1 현재)				② 연간취득액				③ 연간처분 및 손해액				④ 연간감가상각액				⑤ 연말 현재액 (1989. 12. 31 현재)				
	조	천	백	십	억	조	천	백	십	억	조	천	백	십	억	조	천	백	십	억	
(1) 토지																					
(2) 건물 및 구축물																					
(3) 기계장치 및 기구																					
(4) 장비 및 운반구																					
(5) 합계																					

11. 건설가계정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건설가계정이란 미완성의 유형고정자산 즉, 건물 등의 건설 또는 항공기 등의 구입을 위하여 경비가 지출되었을 경우에 건물의 완성, 또는 항공기의 도착시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이다.	(1) 연간증가							
연간증가액이 연간감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간증가액란에 △표시를 하고 그 차액을 기입한다.	(2) 연간감소							
	(3) 연말잔액							
	(4) 연간증감 (1)-(2)							

적요

작성년월일 1990. 작성자 (인)

작성차소속 (전화번호)) 확인자 (인)

지 정 통 계
승인번호 : 111-11-16

1989년 기준
운수업통계조사표
(운수관련 서어비스업)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통계목적에만 사용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 전산번호	산업분류번호	사업체고유번호	행정구역번호	조직형태	종업원규모	자본금규모

◎ 운의전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산업통계과 (720125778) 통계사무소

1. 사업체 개황

(1) 사업체명 _____

(2) 대표자명 _____ (3) 전화번호 _____

(4) 소재지 시 구 동 가 번 호
 도 시 로 동 리 호

2. 조직형태(해당란에 ○표)

① 국가기관 ② 공 사 ③ 회사법인

④ 기타법인 ⑤ 개 인

3. 사업형태(해당란에 ○표)

① 화물운송대행업 ② 여행알선업 ③ 선박중개업 ④ 포장·검수 및 유사서비스업

⑤ 보 통 창 고 ⑥ 냉 장 창 고 ⑦ 위험물창고 ⑧ 농산물창고

⑨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보관창고

4. 자본금 또는 출자금

• 1989.12.31 현재 납입완료된 금액을 기입한다.

• 개인사업체는 해당되지 않는다.

조 천 억 백 억 십 억 억 천 만 백 만 원

5. 보관소·창고 및 장비보유현황

[1] 보관소·창고 보유현황(보관 창고업에 한함)

	① 합 계	② 창 고	③ 야 적 장
(1) 면 적 (㎡)			
(2) 수		(동)	(개)

[2] 장비보유현황

장비별	경과년수별					
	① 합 계	② 5년 미만	③ 5~10년 미만	④ 10~20년 미만	⑤ 20~30년 미만	⑥ 30년 이상
(1) 기 중 기(대)						
(2) 지 계 차(대)						
(3) 냉 장 기(HP)						
(4) 예 인 선(대)						
(5) 콘베이어(대)						
(6) 기 타						
(7) 합 계						

• 영업용이외의 보관소·창고 및 장비는 제외

• 보관소·창고 및 장비는 관리주의에 따라 타인소유의 임차분도 포함.

• 경과년수 : 장비등록일로부터 1989. 12.31 까지 경과된 년수

6. 화물취급능력 및 연간실적

	계	창 고	야 적 장
6-1 보관·창고업체			
• 보관능력 : 1회 적정한 보관량을 기입한다.	(1) 보 관 능 력(%)		
• 연간보관실적 : 1일 보관실적의 연간총량을 기입한다.	(2) 연 간 보 관 실 적(%)		
6-2 화물운송대행업체		백 억 십 억 억 천 만 백 만 원	만 천
• 운송총톤수 : 연간수송한 운송총톤수	(1) 운 송 총 톤 수(%)		
• 운송총거리 : 전 보유차량에 의한 연간총주행거리	(2) 운 송 총 거 리(km)		

7. 종업원수 및 연간급여액

• 종업원수는 1989. 12. 31. 현재로 기입하며 상용·임시종업원, 병가자, 단기휴가자 및 파업중인 자도 포함한다. 단, 3개월이상 장기결근자 및 군복무자 등은 제외한다.

• 보통선원 : 예인선의 운행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 냉장기기사 : 냉장창고업체에서 냉장시설의 운영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 단순노무자 : 화물의 상·하차 및 입·출고작업 또는 이에 준하는 작업 등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단순노무자는 「연간급여액 ÷ 1인일당임금 ÷ 300일」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안내원 : 여행알선업에 종사하는 통역안내원, 국내관광안내원, 국외여행안내원을 말한다.

• 검수·검량·감정원 : 검수·검량·감정업에 종사하는 자격증소지자 및 보조 검수·검량원을 말한다.

•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 사업주 또는 그의 가족(동거자 포함)으로서 사업에 관련되는 제반업무에 주당 정상작업 시간의 1/3 이상을 종사하였으나 일정한 봉급이나 임금을 받지 않은 자를 말한다. (개인업체는 반드시 해당됨)

• 급여액 : 종업원에게 노무의 대가로 연간 지급된 급여의 총액으로서 봉급, 상여금, 각종수당, 생계보조금, 현물급여 등을 말하며 이의 미불금도 포함한다.

• 7란의 급여액 합계는 조사항목 「8」의 운수비용중 「2102. 인건비」와 일치되어야 한다.

		① 종업원수(1989. 12. 31. 현재 : 명)			② 급 여 액 (연간총액)							
		계	남	여	조 천 억	백 억	십 억	억	천 만	백 만	십 만	만 원
(1) 장비관계종업원	① 중 기 운 전 기 사											
	② 보 통 선 원											
	③ 냉 장 기 기 사											
	④ 기 타											
	계(①+②+③+④)											
(2) 기타종업원	① 단 순 노 무 자				(1인일당, 연평균 원)							
	② 안 내 원											
	③ 검 수 · 검 량 · 감 정 원											
	④ 사 무 직 및 기 타											
	계(①+②+③+④)											
(3)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개인업체에서만 기입)												
(4) 합 계 [(1)+(2)+(3)]												

8. 영업수입 및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수입 : 사업체의 영업활동으로 얻어진 모든 영업수입을 말한다 (영업외수입 제외) · 영업비용 : 사업체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출되는 모든 영업비용을 말하며,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운송원가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영업외비용 제외) · 영업이익 :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으로서 영업수입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원
(1) 영업수입	조사기간중 얻어진 사업체의 모든 영업수입 (영업외수입 제외)										
(2) 영업비용	2101. 재연료비계	①경유	장비용	경유	사용량	의	구입	비용			
		②휘발유	장비용	휘발유	사용량	의	구입	비용			
		③기타	장비용	기타연료	사용량	의	구입	비용			
		비계	①+②+③								
		2102. 전력비	장비용	전기의	사용	비용					
	2103. 기타재료비	외부로부터	매입된	부분품	으로서	그대로	장	비에	부착	시켜	그
	소계	21011 + 21012 + 21013									
	2102. 인건비	종업원에게 지급된 급여, 임금, 제수당 및 갑급등의 비용 (제 7항 급여액과 일치)									
	2103. 퇴직급여충당금	당년도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본 계정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실제 지급된 퇴직금									
	2104. 복리후생비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된 법정복리비, 장학금, 각종 위생비, 보전비 등의 비용									
	2105. 감가상각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비	2106. 지급임차료	건물, 장비 토지									
	2107. 보험료	장비, 건물등에 대한 보험료									
용	2108. 세금·공과금	자동차·재산·취득·방위·등록세(법인세 소득세 제외), 협회비, 적십자비 등									
	2109. 수선비	건물, 수송장비 등 유형고정자산의 수선·수리를 외부에 의뢰한 경우에 지출한 비용									
	2110. 사용료·수수료	장비검사료, 면허수수료 등									
	2111. 대손상각	받을어음, 그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중 회수할 수 없는 금액									
	2112. 잡비	수도광열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소모품비, 비영업용 차량유지비 및 사고비, 통신비 등									
	합계	2101 + 2102 + 2103 + 2104 + 2112									
(3) 영업이익	(1)-(2)										
(4) 납부부가가치세	매출부가가치세 - 매입부가가치세										

9. 임대수입											
영업외수입중 차량, 토지, 건물 등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임대수입금	(1) 토지										
	(2) 건물 및 구축물										
	(3) 기계장치 및 기구										
	(4) 장비 및 운반구										
	(5) 합계										

10. 유형고정자산

- 연초·연말 현재액은 연초·연말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되 장부가액이 없거나 비현실적일 때는 시가에 의한 추정액을 기입한다.
연말현재액 = 연초현재액 + 연간취득액 - 연간처분 및 손해액 - 연간감가상각액
- 연간취득액 : 구입한 경우에는 운임·설치비를 포함한 구입가격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양수당시의 시가를, 자가건설의 경우에는 투입된 모든 비용을 기입한다.
(단, 자산재평가에 의한 명목상의 장부가액의 증가는 제외함)
- 연간처분 및 손해액 :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액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액을, 재해·도난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에는 그 당시에 매각할 수 있었던 시가를 기입한다.

	① 연 초 현재 액 (1989.1.1 현재)		② 연 간 취 득 액		③ 연 간 처 분 및 손 해 액		④ 연 간 감 가 상 각 액		⑤ 연 말 현재 액 (1989.12.31 현재)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원
(1) 토 지														
(2) 건 물 및 구 축 물														
(3) 기 계 장 치 및 기 구														
(4) 장 비 및 운 반 구														
(5) 합 계 [(1)+(2)+(3)+(4)]														

11. 건설가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가계정이란 미완성의 유형고정자산 즉 건물의 건설 또는 운반구 등의 구입을 위하여 경비가 지출되었을 경우에 건물의 완성 또는 운반구 등의 도착시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 연간증가액이 연간감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간증감액란에 △표시를 하고 그 차액을 기입한다. 	(1) 연 간 증 가									
	(2) 연 간 감 소									
	(3) 연 말 잔 액									
	(4) 연 간 증 감 [(1)-(2)]									

적 요

작성년월일 1990.	조사담당자	①
작성자소속 (전화번호 .)	내 검 자	①
성 명	관 리 계 장	①

지 정 통 계
승인번호 : 111-11-16

1989년 기준
운수업통계조사표
(수 상 운 수)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통계 목적에만 사용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 전산번호	산업분류번호	사업체고유번호	행정구역번호	조직형태	종업원규모	자본금규모

() 통계사무소 () 통계조사과 () 72012577(8) 산업통계국 조사통계원 통계기획과 () 의전위원회

1. 사업체 개황

(1) 사업체명 _____

(2) 대표자명 _____ (3) 전화번호 _____

(4) 소재지 시 구 동 가 번 지 호
 도 시 로 동 리

2. 조직형태 (해당란에 ○표)

① 국가기관 ② 공 사 ③ 회사법인

④ 기타법인 ⑤ 개 인

3. 사업형태 (해당란에 ○표)

① 내 항 여 객 ② 내 항 화 물 ③ 외 항 여 객

④ 외 항 화 물 ⑤ 내륙수상여객 ⑥ 내륙수상화물

⑦ 수로안내업 ⑧ 선박 청소업 ⑨ 선박 임대업

⑩ 기타내륙수상운송업 ⑪ 선 박 구 난 업

4. 자본금 또는 출자금

1989. 12. 31. 현재 납입완료된 금액을 기입한다.
(개인사업체는 해당되지 않음)

조	천	억	백	억	십	억	억	천	만	백	만	원

5. 선박 보유 현황 (임차선박 포함)

(1) 경과년수별

	① 합 계											
	① 합 계	② 5년미만	③ 5~10년미만	④ 10~20년미만	⑤ 20~30년미만	⑥ 30년이상						
	척	톤(G/T)	척	톤(G/T)	척	톤(G/T)	척	톤(G/T)	척	톤(G/T)	척	톤(G/T)
(1) 강 선												
(2) 목 선												
(3) 합성수지제선 (F.R.P)												
(4) 합계 [(1)+(2)+(3)]												

(2) 보유척수 (기관별)

	① 계	② 더젤기관	③ 소구발동기	④ 증기기관	⑤ 기타
(1) 강 선					
(2) 목 선					
(3) 합성수지제선 (F.R.P)					
(4) 합계 [(1)+(2)+(3)]					

• 경과년수 : 선박진수일로부터 1989. 12. 31. 까지 경과된 년수

• 총톤수 (G/T) : 선박의 총 용적을 톤으로 표시

6. 연간 수송실적

- 수송총인원(여객운송업에 한함) : 보유 선박에 의한 연간수송한 총인원
- 수송총톤수(화물운송업에 한함) : 보유 선박에 의한 연간수송한 총톤수
- 수송총거리(여객 및 화물운송업에 한함) : 보유 선박에 의한 연간 총주행한 거리

	백	십	억	천	백	십	만	만	천
(1) 수송총인원(명)									
(2) 수송총톤수(%)									
(3) 수송총거리(km)									

7. 종업원수 및 연간급여액

- 종업원수는 1989. 12. 31. 현재로 기입하며 상용·임시종업원, 병가자, 단기휴가자 및 과업중인 자도 포함한다. 단, 3개월 이상 장기 결근자 및 군복무자와 급여액을 운수업체로부터 지급받지 않는 종업원은 제외된다. 즉, 여객터미널 등에서 운수사업체의 승선권을 판매해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매표원, 검표원 등은 제외된다.
- 사관 : 해기원 면허를 가진 선장,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등을 말한다.(외국인 종업원제외)
- 보통선원 :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중 사관 이외의 자로서 갑판장, 갑판원, 갑판조수, 조타수, 조기수, 보이라공, 기관원, 사무원, 무전사, 조리원, 선의, 간호원 등을 말한다.
- 단순노무자 : 부두에서 선박에 화물의 선적·하선과 선박으로부터 창고에 이르는 입·출고작업 및 이에 준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단순노무자는 「연간급여액÷1인일당임금÷300일」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 사업주 또는 그의 가족(동거자 포함)으로서 사업에 관련되는 제반업무에 주당 정상작업시간의 1/3 이상을 종사하였으나 일정한 봉급이나 임금을 받지않는 자를 말한다. (개인업체는 반드시 해당됨).
- 급여액 : 종업원에게 노무의 대가로 연간 지급된 급여의 총액으로서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 생계보조금 및 현물급여 등을 말하며, 이의 미불금도 포함한다.(단, 외국인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액은 제외)
- 종업원의 급여액 합계는 조사항목「8」의 운수비용중 「2102. 인건비」와 일치되어야 한다.

		① 종업원수 (1989. 12. 31. 현재 : 명)			② 급여액 (연간총액)										
		계	남	여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만	원
(1) 선내근무종업원	① 사 관														
	② 보 통 선 원														
	③ 기 타														
	계 (①+②+③)														
(2) 육상근무종업원	① 단 순 노 무 자				(1인일당, 연평균 원)										
	② 사 무 직 및 기 타														
	계 (① + ②)														
(3)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개인업체에서만 기입)														
(4)	합 계 [(1)+(2)+(3)]														

8. 연간 운수수입 및 비용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수수입 : 사업체의 운수활동으로 얻어진 모든 영업수입을 말한다 (영업외수입 제외) 운수비용 : 사업체의 운수활동으로 인하여 지출된 모든 영업비용을 말하며,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운송원가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영업외비용 제외) ※ 외국정부 혹은 외국인에게 지급된 인건비 및 지급임차료, 조세공과는 잡비에 포함한다. 영업이익 :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으로서 운수수입에서 운수비용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1) 운 수 수 입	운수활동으로 얻어진 사업체의 모든 영업수입 (영업외수입 제외)											
(2) 재 료 비	2101. 연 재 료	①경 유 선박용 경유 사용량의 구입비용										
		②방카A유 선박용 방카A유 사용량의 구입비용										
		③방카C유 선박용 방카C유 사용량의 구입비용										
		④기 타 선박용 기타연료 사용량의 구입비용										
		계	① + ② + ③ + ④									
	2102. 기 타 재 료 비	외부로부터 매입한 부분품을 그대로 선박에 부착시켜 사용되는 선박의 부속품비										
	소 계	21011 + 21012										
운 수 비	2102. 인 선 비	종업원에게 지급된 급여, 임금, 제수당 및 잡급 등의 비용 (7항급여액과 일치)										
	2103. 퇴직급여충당금 전 입 액	당년도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본 계정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실제 지급된 퇴직금										
	2104. 복 리 후 생 비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된 법정복리비, 장학금, 각종위생비, 보건비, 피복비, 급식비등										
	2105. 감 가 상 각 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2106. 지 급 임 차 료	건물·장비임차료										
		토지임차료										
	2107. 보 험 료	선박, 건물 등에 대한 보험료, 상해보험료 등										
	2108. 세 금 · 공 과 금	선박·차량·재산·취득·방위세(법인세, 소득세 제외), 협회비, 적십자비 등										
	2109. 수 선 비	건물, 수송장비 등 유형고정자산의 수선·수리를 외부에 의뢰한 경우에 지출한 경비										
	2110. 사 용 료 · 수 수 료	입항료, 부두사용료, 통신사용료, 수역이용료										
용 비	2111. 대 손 상 각	받을어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중 회수할 수 없는 금액 (정상적인 대손상각비만 기입)										
	2112. 잡 비	수도광열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소모품비, 비영업용차량유지비 및 사고비, 통신비, 여비 등										
	2113. 봉 선 료	국내선박 용선료										
		외국선박 용선료										
합 계	2101 + 2102 + 2103 + 2104 + 2105 + ... + 2113											
(3) 영 업 이 익	(1) - (2)											
(4) 납 부 부 가 가 치 세	매출부가가치세 - 매입부가가치세											

9. 임대수입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원
영업외수입 중 장비, 토지, 건물 등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임대수입금	(1) 토 지								
	(2) 건 물 및 구 축 물								
	(3) 기 계 장 치 및 기 구								
	(4) 선 박								
	(5) 장 비 및 운 반 구								
	(6) 합 계								

10. 유형고정자산

- 연초·연말 현재액은 연초·연말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장부가액이 없거나 비현실적일 때는 시가에 의한 추정액을 기입한다.
연말현재액 = 연초현재액 + 연간취득액 - 연간처분 및 손해액 - 연간감가상각액
- 연간취득액 : 구입한 경우에는 운임과 설치비를 포함한 구입가격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양수당시의 시가를, 자가건설의 경우에는 투입한 모든 비용을 기입한다.
(단, 자산재평가에 의한 명목상의 장부가액의 증가는 제외함)
- 연간처분 및 손해액 : 매각한 경우는 매각액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액을, 재해·도난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에는 그 당시에 매각할 수 있었던 시가를 기입한다.

	① 연 초 현 재 액 (1989. 1. 1 현재)				② 연 간 취 득 액				③ 연 간 처 분 및 손 해 액				④ 연 간 감 가 상 각 액				⑤ 연 말 현 재 액 (1989. 12. 31 현재)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원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원	
(1) 토 지																					
(2) 건 물 및 구 축 물																					
(3) 기 계 장 치 및 기 구																					
(4) 선 박 및 운 반 구																					
(5) 합 계																					
	[(1)+(2)+(3)+(4)]																				

11. 건설가계정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가계정이란 미완성의 유형고정자산 즉 건물의 건설 또는 운반구 등의 구입을 위하여 경비가 지출되었을 경우에 건물의 완성 또는 운반구 등의 도착시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연간증가액이 연간감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간증감액란에 △표시를 하고 그 차액을 기입한다. 	(1) 연 간 증 가								
	(2) 연 간 감 소								
	(3) 연 말 잔 액								
	(4) 연 간 증 감 [(1)-(2)]								

적 요

작성년월일	1990.	조사담당자	㉠
작성주소	(전화번호.)	내 결 자	㉡
성 명	㉢	관리계장	㉣

시중노임실태조사요령서

(직종해설)

1989. 5

경 제 기 획 원

— 목 차 —

I. 조 사 개 요	3
II. 건설공사부문 조사표 기입요령	4
III. 제조업부문 조사표 기입요령	10
IV. 직 종 해 설	15
o 공 사 부 문	17
o 제 조 부 문	31

I.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건설공사 부분 및 제조업부문에 종사하는 각 직종 근로자의 노임을 파악하여 정부 노임단가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2. 조사의 법적 근거

통계법 제 3조 및 동법시행령 제 5조에 의한 일반통계
(승인번호: 111-21-14 호)

3. 조사대상

- 건설공사현장 400 개소
- 제조업체 (공장) 350 개소

4. 조사기간

1989.5.22 ~ 6.4

5. 노임의 조사기준

'89년 4월분 노임. 즉, 노임지급기준 일자가 4월중인 경우만 조사함.

6. 조사방법

조사자가 조사대상처를 직접방문하여 현장에 비치된 노임대장을 근거로 조사표를 작성함 (타계식조사). 단,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 지적은 노임대장이 현장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시공회사(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함.

또한 노힘대장에 의하여 조사할 수 없는 항목은 현장 소장과의 면담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조사표를 작성함.

7. 조사내용

기업체현황, 공사현황, 작업일수, 노무자직종별 노임지급실태 등

8. 조사표 제출기한

'89.6.10일한(기준과 도착기준)

9. 참고사항

* 정부노임단가: 정부시행공사 및 제조계약체결을 위한 예정가격작성시 "노무비" 산정기준으로서 재무부 장관이 결정고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 5 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 6 조)

II. 건설공사부문 조사표 기입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 문자와 숫자는 알아보기 쉽도록 깨끗이 기입하되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문자는 한글로 기입한다.
- 잘못 기입한 사항을 정정할시에는 잘못된 부분에 횡선을 긋고 그 바로 위에 정확히 기입한다.
- 단위는 지정된 단위를 사용하며 단위를 수정하여서는 않된다.
- 조사자는 조사기간내에 공사현장을 필히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한다.

2. 조사표항목별 기입요령

가. 난외사항

(1) 행정구역번호

공사현장의 소재지를 한국행정구역분류('87.1월 제 11차 개정판)

상의 시·도 번호에 의거 기입한다.(2단위)

<서울 : 11 부산 : 21 대구 : 22 인천 : 23 광주 : 24

대전 : 25 경기 : 31 강원 : 32 충북 : 33 충남 : 34

전북 : 35 전남 : 36 경북 : 37 경남 : 38 제주 : 39 >

(2) 조사구번호

조사구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번호로서 아래와 같이 조사구별 고유번호를 기입한다.

<서울 : 1 직할시 : 2 도청소재지 : 3 시지역 : 4 읍면지역 : 5

산간지역 : 6 도서지역 : 7 >

* 산간벽지 : 교통편이 없거나 교통이 매우 불편하여 출퇴근이 곤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무자들이 현장막사에서 숙식을 하여야 하는 지역

* 도서지역 : 육지와 교통수단이 배편밖에 없는 지역 (제주도 포함)

(3) 현장번호

사업체명부에 주어진 일련번호(현장번호)를 기입한다.

나. 난내사항

(1) 기업체현황

— 시공회사명 : 회사에서 사용하는 정식명칭을 기입한다.

- 대 표 자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중 한사람만 기입한다.
- 전 화 번 호 : 시공회사(본사)의 전화번호를 기입하되 가능한한 본
공사의 담당부서 직통번호를 기입토록한다.
- 주 소 : 기업체 소재지를 동, 읍, 면, 번지까지 기입한다.
- 자 본 금 : '89년 4월말 현재의 자본금 총액을 기입한다.

(2) 공사현황

- 공 사 명 : 공사 계약서상에 기입된 공사의 정식 명칭을 기입한다.
- 현 장 소 재 지 : 읍, 면, 동, 번지까지 기입한다.
- 공 사 금 액 : 공사 계약서상의 공사계약 금액을 기입한다.
- 공 사 기 간 : 착공 년월일과 준공 예정년월일을 기입하고 ()내
에는 총 공사기간을 ○년 ○개월로 기입한다.
단,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공사가 일시 중
단된 기간도 공사기간에 합산하여 기입한다.
- 발 주 처 : 해당란에 ○표를 한다.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
 - 민간은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을 포함한다.
- 노 무 자 수 : 직종별 노임현황에서 조사된 총노무자수를 집계하여
현장 숙식자와 통근자로 구분 각각의 인원을 기입한다.
- 조 사 직 종 수 : 공사현장에서 실제조사된 직종수를 기입한다.
- 일 일 평 균 작 업 시 간 : 4월중 노무자들이 근무한 일일 평균시간을 기
입한다. 즉, 휴식시간, 점심시간 및 작업시간이 포함된
4월중 각일의 일일작업시간을 합산하여 이를 4월중

작업일수로 나누면 일일평균 작업시간이 된다.

“일일 평균작업시간 = 4월중 일일 작업시간의 누계 ÷ 4월중 작업일수”

(3) 관리사항

응답자, 현장소장, 현장감독관 및 조사자 본인의 소속성명을 정확히 기입한 후 관리계장이 확인 날인을 하도록 한다.

(4) 직종별 노임현황

가) 조사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종에 대하여 노임대장을 근거로 조사표를 작성하되 공사에 직접 종사하는 노무자만을 조사한다. 따라서 관리직, 사무직(경리직, 서무, 타자등), 경비원 등의 간접노무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직접노무자로서 해당직종이 분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사표에 기재된 유사한 직종에 적용하여 조사한다.

나) 한 노무자가 여러직종을 겸임하고 있을 때에는 주된 직종으로 조사한다.

다) 노임은 일급으로 조사한다. 따라서 월급을 받는 노무자는 25일로 환산하고 주급, 순급인 경우에는 해당일수로 나누고, 시간급인 경우는 일일평균 작업시간을 곱하여 기입토록한다.

라) 작업량을 기준으로 노임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당노임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는 조사에서 제외한다.

마) 노임은 실제지급된 정액급여 총액을 말한다. 따라서 정근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등 고정적수당은 포함하되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부식비 등의 현물급여는 제외한다.

— 총인원

노임지급대장(노임명세서)에 기재된 모든 인원을 해당 직종별로 분류하여 기입토록 한다. 이때 실제 일한 일수와는 관계없이 1일 일한 사람이나 2일이상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사람(1인)으로 계산하여 총인원을 기입한다. 즉, 해당직종의 연투입인원이 아니고 동일인수를 의미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 일급총액

총인원란에 조사된 노무자의 일당 합계액을 기입한다. 이때 한 사람에게 각기 다른 수준의 노임이 지급되었을 경우에 가장 최근일자에 지급된 노임을 기입한다.

(예)갑, 을, 병이 건축목공으로 각각 10일, 8일, 7일씩 일하고 일급이 똑같이 14,500원일때 “총인원”은 3명으로 “일급총액”은 43,500원으로 기입하면 된다.

※ 일급총액은 노무자의 일당 합계액이므로 지급된 노임총액과 혼돈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평균노임

일급 총액을 총인원으로 나눈 금액을 기입하며 소숫점 이하는 기입하지 않는다.

— 최고노임, 최저노임

해당직종에서 가장 많이 받는 노임과 가장 적게 받는 노임을 각각 일급으로 기입한다. 단, 노임액이 똑같은 경우에는 평균, 최고, 최저노임을 동일하게 기입한다.

(5) 기타사항

본조사와 관련된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즉, 신규직종에 대한 해설 노임조사상의 애로점 등을 자세히 기록한다.

3. 유의사항

가. 잠수부는 4명이 1조가 되어 작업을 하므로 4명을 1조로 조사하여야 한다.

(예) 잠수부 4명 1조가 100,000 원을 받을 경우에는 “1조 100,000 원”으로 기입한다.

나. 다음은 직종장 따라 노임차가 명백한 사례이다.

- 1) 특수비계공 : 비계공보다 위험도 등이 높다.
- 2) 송전전공 : 전공중에서 제일 높은 위험과 숙련을 요하는 직종임.
- 3) 배전전공 : 내선전공에 비하여 고도의 기술과 경험을 요하며 위험도가 높다.
- 4) 건축목공 : 형틀목공보다는 다소 높은 기능을 요함.
- 5) 고압케이블공 : 저압케이블공 보다는 위험도가 높음.

다. 타직종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직종

- 준설선 선장 — 준설선 기관장 — 준설선 기관사
- 준설선 운전사 — 준설선 기계사

이는 항만준설 공사의 경우 준설선에서 작업하는 각부문의 책임선원으로서 일반선박의 고급선원보다는 높은 책임도와 기능도를 요하므로 본래 고급선원으로 적용하던 직종을 세분류한 것임.

(일반 선박의 고급선원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

라. 조사자는 정확하고 타당한 노임조사가 되도록 조사요령과 직종해설을 완전히 숙지하고 현장조사에 임해야 한다.

마. 조사자는 조사현장을 떠나기전 조사항목의 누락여부 및 조사내용의 모순여부등을 재검토하여 부실한 조사가 되지 않도록 한다.

Ⅲ. 제조업부문 조사표 기입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 문자와 숫자는 알아보기 쉽도록 깨끗이 기입하되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문자는 한글로 기입한다.
- 잘못 기입한 사항을 정정할 시에는 잘못된 부분에 횡선을 긋고 그 바로 위에 정확히 기입한다.
- 단위는 지정된 단위를 사용하며 단위를 수정하여서는 않된다.
- 노임대장에 의하여 조사할 수 없는 항목은 사업체장과의 면담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조사표를 작성한다.
- 각 조사자는 조사기간내에 사업체를 필히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한다.

2. 조사표 항목별 기입요령

가. 난외사항

(1) 행정구역번호

공장소재지를 한국행정구역분류('87.1월 제11차 개정판)상의 시·도 번호에 의거 기입한다. (2단위)

<서울 : 11 부산 : 21 대구 : 22 인천 : 23 광주 : 24
대전 : 25 경기 : 31 강원 : 32 충북 : 33 충남 : 34
전북 : 35 전남 : 36 경북 : 37 경남 : 38 제주 : 39 >

(2) 조사구번호

조사구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번호로서 아래와 같이 조사 구별 고유번호를 기입한다.

서울 : 1, 직할시 : 2, 대도시 : 3, 중소도시 : 4, 읍면 : 5 >

※ 대도시는 부천, 마산, 전주, 울산시를 말하며 중소도시는 이외의 기타시 지역을 말한다.

(3) 업종번호

업종번호는 당해업체의 주생산품에 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1984)상의 제조업 중분류번호(2단위)를 기입한다.

(4) 사업체 일련번호

사업체 명부에 기입되어 있는 사업체별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나. 난내사항

(1) 기업체 현황

- 기업체명 : 회사에서 사용하는 정식명칭을 기입한다.
- 대표자 :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 그 중 한사람만 기입한다.
- 전화번호 : 기업체(본사)의 전화번호를 기입하되 본 조사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직통번호를 기입토록 한다.
- 주소 : 기업체 소재지를 동, 읍, 면, 번지까지 기입한다.
- 자본금 : '89년 4월말 현재의 자본금 총액을 기입한다.

(2) 사업체(공장) 현황

- 사업체명 : 사업체(공장)의 정식명칭을 기입한다.
- 전화 : 사업체(공장)의 응답자 소속부서 전화번호를 기입한다.
- 종업원수 : 조사대상 사업체에서 '89년 4월분 임금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종업원수를 기입한다. 즉, 4월 현재 고용되어 직접적으로 생산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을 말한다.
(직종별 노임대장현황에서 직종별로 조사된 총인원을 집계한 수치와 동일해야 한다.)

- 주 소 : 읍, 면, 동, 번지까지 기입한다.
- 상 여 금 : 생산직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의 지급기준 및 정도를 기입한다.
(예 : 기본급여액의 년 500%)
- 실제작업일수 : 사업체에서 4월중 실제 조업한 일수를 기입한다.
- 주요생산품 : 조사대상 사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완제품 또는 중간제품의 품목명을 기입한다.

(3) 관리사항

조사후에는 응답자 및 조사자 본인의 소속성명을 정확히 기입후 관리계장이 확인 날인을 한다.

(4) 직종별 노임현황

(가) 조사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종에 대하여 노임대장을 근거로 조사표를 작성하되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노무자만을 조사한다. 따라서 관리직, 사무직(경리, 서무, 타자등), 경비원등의 간접노무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직접노무자로서 해당직종이 분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사표에 기재된 유사한 직종에 적용하여 조사한다.

(나) 한 노무자가 여러 직종을 겸임하고 있을 때에는 주된 직종으로 조사한다.

(다) 노임은 "일급"으로 조사한다. 따라서 월급을 받는 노무자는 25일로 환산하고 주급, 순급인 경우는 해당일수로 나누고, 시간급인 경우는 8시간을 곱하여 기입토록 한다.

(라) 작업량을 기준으로 노임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당 노임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는 조사에서 제외한다.

(마) 노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43조 및 동법시행령 제 26조에 해당하는 직종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정근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포함하되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부식비 등의 현물급여는 제외한다.

— 총인원

노임지급대장(노임명세서)에 기재된 모든 인원을 해당직종별로 분류하여 기입토록 한다.

— 일급총액

총인원란에 조사된 노무자의 일당합계액을 기입한다. 이때 9월 중 여러번 노임이 지급되었을 경우에 가장 최근일자에 지급된 노임을 기입한다.

(예) 갑, 을, 병이 “제도사”로 4월중에 각각 10일, 8일, 7일씩 일하고 일급이 똑같이 14,500원일 때 “총인원”은 3명으로 “일급총액”은 43,500원으로 기입하면 된다.

— 평균노임

일급총액을 총인원으로 나눈 금액을 기입하며 소숫점 이하는 기입하지 않는다.

— 최고노임, 최저노임

해당직종에서 가장 많이 받는 노임과 가장 적게 받는 노임을 각각 일당으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단, 노임액이 똑같은 경우에는 평균, 최고, 최저노임을 동일하게 기입한다.

(5) 기타사항

본년에는 본조사와 관련된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즉, 신규직종에 대한 해설, 노임조사상의 애로점 등을 자세히 기록한다.

(6) 조사표 제출

- 각 조사자는 조사기간내에 모든 조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표작성을 완료한 후 '89.6.10일까지 “기준과”로 조사표를 제출한다.
- 각 조사표는 지방사무소별로 반드시 내검을 필하여 송부토록한다.

3. 기타 조사시 유의사항

가. 조사자는 정확하고 타당한 노임조사가 되도록 조사요령과 직종해설을 완전히 숙지하고 현지조사에 임해야 한다.

나. 조사표의 “일급총액” “평균노임” “최고노임” “최저노임”은 모두 일급액이므로 착오없도록 한다.

다. 조사자는 조사업체를 떠나기전에 조사항목의 누락여부 및 조사내용의 모순여부등을 재검토하여 부실한 조사가 되지 않도록 한다.

(예) · ‘일급총액÷총인원=평균노임’의 성립여부

· ‘최고노임≥평균노임≥최저노임’의 성립여부 등

IV. 職 種 解 說

工 事 部 門

< 工事部門 >

連番	職種	解 說
001	坑 夫	터널이나 坑(굴)속에서 土石採取나 掘鑿作業에 從事하는 人夫
002	都 木 手	建築工事に 있어서 木工分野를 專擔하며 現場의 全 工種을 調整統轄하는 實務責任者
003	建 築 木 工	建築物의 築造 및 室內木構造物 製作作業에 從事하는 木手
004	型 틀 木 工	콘크리트打設을 위하여 型틀 및 동바리를 製作 組立 또는 解體作業을 하는 木手
005	窓 戶 木 工	建物에서 木材로 된 窓 및 門작을 製作 또는 設置하는 木手
006	鐵 骨 工	鐵骨加工組立 및 解體등의 作業에 從事하는 技能 工
007	鐵 工	鐵材의 加工·組立·設置등 作業에 從事하는 技能 工
008	鐵 筋 筋 工	鐵筋의 加工組立 및 解體를 하는 技能工 및 加 工을 하는 技能工
009	鐵 鈹 工	鐵鈹을 主資材로 하여 製作, 加工, 組立 및 解體 를 하는 技能工
010	셋 터 工	셋터를 製作 및 設置 解體하는 技能工
011	샷 시 工	샷시를 製作 및 設置 解體하는 技能工
012	切 斷 工	各種 鐵製를 所定の 規格으로 切斷하는 技能工

連番	職 種	解 設
013	石 工	大割 및 小割된 石材를 加工하여 形成된 마름돌과 石材를 設置 또는 붙이거나 一般쌓기를 하여 構造物을 築造하는 技能工
014	特殊 飛階工 (15 m 以上)	15 m의 高所에서 비계設置나 解體 및 重量物 取扱等 其他 作業을 하는 飛階工
015	飛 階 工	15 m未滿의 低所에서 비계의 設置 및 解體 또는 重量物 作業을 하는 技能工
016	동발工(터널)	터널이나 坑內에서 동바리의 設置 및 解體를 하는 技能工
017	組 積 工	벽돌 및 불럭을 쌓기 및 解體하는 技能工
018	벽 돌(불럭) 製 作 工	벽돌 및 불럭을 所定の 規格대로 製作하는 技能工
019	煙 突 工	各種 굴뚝을 築造하는 技能工
020	美 裝 工	시멘트, 몰탈이나 灰반죽 其他 석고프라스타, 人造石, 흙 및 其他材料 等の 美裝材料를 利用하여 構造物의 內外表面에 마름作業을 하는 技能工
021	防 水 工	構造物의 바닥, 벽체, 지붕等の 漏水防止作業을 하는 技能工
022	타 일 工	타일을 構造物의 表面에 附着시키는 技能工
023	줄 눈 工	石築 및 組積造에 줄눈을 장치하는 技能工
024	研 磨 工	人造石 및 테라조의 表面을 人力이나 機械로 磨갈기하여 光澤이 나도록 作業하는 技能工

連番	職 種	解 說
025	콘 크 리 트 工	所定の 重量化 및 容積比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시멘트, 모래, 자갈, 물 비비기와 부어넣기를 하는 技能工
026	바이브레타 工	바이브레타를 使用하여 콘크리트를 다지는 技能工
027	보 일 러 工	보일러 製作設置 및 整備를 하는 技能工
028	配 管 工	給配水, 가스給湯, 冷暖房 및 設備의 配管과 解體 이와 類似한 配管作業을 하는 技能工
029	溫 突 工	建物內 溫突房을 만들때에 溫突을 築造하는 技能工
030	衛 生 工	衛生陶器의 設置 및 附帶作業을 하는 技能工
031	保 溫 工	熱損失을 防止하기 위하여 保溫材를 使用하여 作業을 하는 技能工
032	塗 裝 工	페인트類 및 其他 塗類를 構造物이나 其他部分에 칠하는 技能工
033	內 裝 工	建物の 內部에 修裝材를 使用하여 마무리하는 技能工
034	도 배 工	室內의 壁體 및 天井表面等に 종이나 其他 도배 材料를 附着시키는 技能工
035	아 스타 일 工	構造物에 接着劑를 使用하여 아스타일을 附着시키는 技能工
036	기 와 工	지붕에 비나 물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와잇기를 하는 技能工

連番	職 種	解 說
037	슬 레 이 工	슬레이트를 切斷 또는 加工하여 지붕이나 壁體, 天井, 其他 部分에 附着作業을 하는 技能工
038	火 藥 取 扱 工 工	火藥의 貯藏管理 및 裝填 發破作業을 하는 專門 技能工
039	鑿 岩 工	鑿岩機를 使用하여 岩盤의 切 削작업을 하는 技能 工
040	保 安 工	岩石이나 構造物의 發破作業時 發生하는 모든 事 故를 未然에 防止하기 위하여 警戒信號를 하는등 保安作業에 從事하는 사람
041	舗 裝 工	道路舗裝等 工事に 있어서 表面處理를 하는 技能 工
042	布 設 工	骨材를 布設하는 技能工
043	軌 道 工	一般工事場(事業場)內的 運搬手段으로 臨時 簡易 軌道를 敷設 및 解體 維持補修하는 作業에 從事 하는 技能工
044	熔接工(鐵道)	列車運行上에서 레일이음매부를 解體 熔接하는 技 能工
045	潛水夫(4人組)	水中에서 潛水作業을 하는 技能工
046	潛 函 工	高壓 空氣케이손에 들어가 作業하는 技能工
047	보 링 工 (地質調查)	地質調查를 爲한 보링 專門技能工
048	우 물 工	우물을 파는 技能工
049	營 林 技 士	樹木植栽 및 管理에 關한 專門知識을 가지고 作

連番	職 種	解 說
		業을 指揮하는 技術者
050	造 園 工	樹木 植栽 및 造景作業을 하는 技能工
051	伐 木 夫	나무를 베는 人夫
052	造 林 人 夫	上級技能工의 指示에 따라 樹木의 植栽作業에 從事하는 人夫
053	플랜트機械設置工	플랜트機械組立 및 設置하는 專門技能工
054	플랜트熔接工	플랜트 設置時 熔接作業을 하는 技能工
055	플랜트配管工	플랜트 設置時 配管作業을 하는 技能工
056	플랜트製管工	플랜트用 管製作 專門技能工
057	施工測量士	工事施工을 爲한 專門測量士
058	施工測量士助手	施工測量士의 助力을 하는 사람
059	測 夫	測量 pole 이나 start 를 가지고 測量士의 指示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060	檢 潮 夫	潮水의 水位測定을 하는 人夫
061	送 電 電 工	發電所와 變電所 사이의 送電線의 鐵塔 및 送電設備의 施工 및 補修에 從事하는 技能工
062	配 電 電 工	22.9kv 이하의 一般配電設備의 施工 및 補修에 從事하는 사람으로써 12 m이상의 콘크리트電柱를 세우고 이에 乘柱하여 애자를 위시한 여러 部品 및 機械類(變壓器, 開閉機등)를 設置하고 무거운 電線을 架設하는 등의 作業을 하는 사람
063	플랜트電工	發電所, 變電所 設備 및 重工業 設備의 施工 및 補修에 從事하는 技能工

連番	職 種	解 說
064	內 線 電 工	屋內配管 配電 및 燈球類 設備의 施工 및 補修에 從事하는 技能工
065	特 高 壓 케 이 블 電 工	22.9 kv 以上의 送配電케이블 設備施工 및 補修에 從事하는 技能工
066	高 壓 케 이 블 電 工	普通 高壓配電케이블 設備의 施工 및 補修에 從事하는 技能工
067	低 壓 케 이 블 電 工	低壓配管(6,600 v 以下)케이블의 施工 및 補修에 從事하는 技能工
068	鐵 道 信 號 工	鐵道信號機를 設置하는 技能工
069	計 裝 工	機械, 給排水, 電氣, 가스, 衛生, 冷暖房 및 其他工事に 있어서 計器(프린트 프로세스의 自動制御裝置, 工業制御裝置, 工業計測 및 컴퓨터등)를 專門으로 設置附着 및 點檢하는 技能工
070	電 氣 工 事 技 士 1 級	電氣工事業法上的 電氣技術者(1級)로서 電氣設備의 設置 및 維持補修에 從事하는 사람
071	電 氣 工 事 技 士 2 級	電氣工事業法上的 電氣技術者(2級)로서 電氣設備의 設置 및 維持補修에 從事하는 사람
072	通 信 外 線 工	電柱, 地下케이블 吊架線, 架宅케이블 나선로 등의 施工補修에 從事하는 技能工
073	通 信 設 備 工	交換機器, 無線機器 및 搬送機器施工 및 補修에 從事하는 技能工
074	通 信 內 線 工	電線設置, 室內配管, 配線 및 補修工事に 從事하는 技能工

連番	職種	解 說
075	통신케이블공	各種케이블의 接續연공試驗 및 補修工事に 從事하는 技能工
076	無線안테나공	鐵塔 各種 안테나의 設置 및 補修에 從事하는 技能工
077	통신技士1級	電氣通信工事業法上の 通信技術資格者(1級)로서 電氣通信設備(有線·無線)의 設置 및 維持補修에 從事하는 사람
078	통신技士2級	電氣通信工事業法上の 通信技術資格者(技能士)로서 電氣通信設備(有線·無線)의 設置 및 維持補修에 從事하는 사람
079	通信技能士	電氣通信工事業法上の 通信技術資格者(技能士)로서 電氣通信設備(有線·無線)의 設備 및 維持補修에 從事하는 사람
080	首作業班長	工事に 있어서 工種別 作業班長을 總指揮하는 責任者(都什長)
081	作業班長	各 工種別로 人夫를 統솔하여 作業을 指揮하는 사람(什長)
082	木 徒	2人以上이 1組가 되어 人力으로 重量物을 運搬하는 作業에 從事하는 사람
083	助力工	熟練工을 도와서 그의 指示를 받아 作業에 協力하는 사람
084	特別人夫	普通人보다 多少 높은 水準의 技能程度를 要하며 特殊한 作業條件下에서 作業하는 人夫

連番	職 種	解 設
085	普 通 人 夫	技能을 必要로 하지 않고 輕作業인 一般雜役に 從事하는 單純 肉體勞動人夫
086	重機運轉技士	各種 重機의 運轉과 操作을 하는 運轉士
087	運轉士(運搬車)	運搬을 目的으로 하는 貨物自動車의 運轉士
088	運轉士(機械)	發動機, 發電機, 揚水機 等 輕機械 操從員
089	重機運轉助手	重機運轉士의 助手
090	高 級 船 員	船舶의 運航을 爲한 各部署의 責任船員
091	普 通 船 員	高級船員의 指示를 받아 船舶의 運航에 助力하는 船員
092	船 夫	船舶運航을 爲하여 船舶에서 作業하는 一般雜役夫
093	浚 渫 船 舶 長	浚渫機를 裝置한 船舶의 船長
094	浚 渫 船 機 關 長	浚渫機를 裝置한 船舶의 機關長
095	浚 渫 船 機 關 士	浚渫機를 裝置한 船舶의 機關士
096	浚 渫 船 運 轉 士	浚渫機를 裝置한 船舶의 運轉士
097	浚 渫 船 電 氣 士	浚渫機를 裝置한 浚渫機械 電氣士
098	機 械 設 置 工	部分的으로 完成된 機械를 現場에서 組立 및 設置하는 機械技能工
099	機 械 工	機械의 點檢整備 및 維持補修를 하는 技能工
100	旋 盤 工	旋盤을 利用하여 鐵體의 깎기, 切斷 및 其他 加工作業을 하는 機械技能工
101	整 備 工	建設裝備 및 一般車輛과 其他 機械類의 整備 및 修理를 하는 技能工

連番	職種	解 說
102	벨트콘베어 작업 工	벨트콘베어에서 作業하는 人夫
103	現 圖 士	工作物의 重要構造部分의 製作을 爲하여 原型대로 그리는 技能工
104	製 圖 士	設計圖面을 製圖하는 技能工
105	試 驗 士 1 級	各種 建設材料의 調査·試驗·分析·測定·確認·諸 般品質管理을 擔當 處理하는 業務擔當 總責任者
106	試 驗 士 2 級	各種 建設材料의 調査·試驗·分析·測定·確認·諸 般品質管理을 擔當 處理하는 高級試驗士
107	試 驗 士 3 級	各種 建設材料의 調査·試驗·分析·測定·確認·諸 般品質管理을 擔當 處理하는 中級試驗士
108	試 驗 士 4 級	各種 建設材料의 調査·試驗·分析·測定·確認·諸 般品質管理을 擔當 處理하는 初級試驗士
109	試 驗 補 助 手	試驗士를 補助하는 사람
110	安 全 管 理 技 士 1 級	作業場內의 人命被害나 財産上의 損失을 未然에 防止할 目的으로 安全管理業務에 從事하는 1級技 士
111	安 全 管 理 技 士 2 級	作業場內의 人命被害나 財産上의 損失을 未然에 防止할 目的으로 安全管理業務에 從事하는 2級技 士
112	유 리 工	유리를 規格에 맞게 裁斷하거나 끼우기 하는 技 能工
113	합 석 工	합석의 加工製作 및 組立을 하는 技能工

連番	職 種	解 說
144	熔接工(一般)	酸素나 電氣등으로 鐵材를 熔接하는 技能工
115	리 벳 工	鐵骨構造物의 組立을 爲하여 리벳당하는 技能工
116	루 핑 工	루핑을 깔거나 附着시키는 作業에 從事하는 技能工
117	닥 트 工	금속박판을 加工하여 通風닥트의 製作 設置作業에 從事하는 技能工
118	대 장 工	鐵物을 붙여 달구어 器具 및 工具를 製作 및 修理하는 技能工
119	割 石 工	큰돌을 所定の 規格에 맞도록 깨는 技能工
120	製 鐵 築 爐 工	熔鑪의 建造 및 修理를 하는 特殊組積 技能工
121	養 生 工	所定の 強度를 얻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養成하거나 石材面, 木材面, 타일面, 테라조面 등을 養生하는 技能工
122	계 령 工	鐵鋼橋나 鐵鋼材等 鐵材表面에서 페인트나 其他 腐敗物의 除去作業을 하는 技能工
123	사공(배包含)	骨材의 運搬等を 위한 小型木船을 操縱하는 사람
124	馬 夫 (牛馬車包含)	말이나 소를 부리는(움직이도록 하는)人夫
125	製 材 工	木材를 一定規格대로 切斷하는 技能工
126	鐵 道 軌 道 工	鐵道の 軌道敷設作業에 종사하는 技能工
127	地籍技士 1 級	地籍測量의 綜合的 計劃·樹立등에 종사하는 사람

連番	職種	解 說
128	地籍技士 2 級	地籍測量業務에 종사하는 사람
129	地籍技能士 1 級	地籍測量を 補助하거나 地籍圖 및 林野圖의 整理와 등사·면적측정 및 圖面作成등의 業務에 종사하는 사람
130	地籍技能士 2 級	地籍測量を 補助하거나 地籍圖 및 林野圖의 整理와 등사·면적측정 및 圖面作成등의 業務에 종사하는 사람

製 造 部 門

< 製造部門 >

技能別	連番	職 種	解 說
設 計	001	機 械 設 計 士	機械의 構造를 設計하는 사람
	002	回 路 設 計 士	性能과 機能을 갖는 機械의 回路를 設計하는 사람
	003	製 圖 士	設計圖面을 그리는 사람
	004	現 圖 士	機械 또는 器具의 模樣을 그리는 사람
加 工	005	마 킹 工 (MARKING)	製作圖面の 值數에 依據하여 加工部位에 線 또는 點을 表示하는 금긋기 하는 사람
	006	鐵 物 裁 斷 士	鐵物製品의 長尺과 所要材料를 裁斷하는 사람
	007	鐵 物 裁 斷 工	鐵物을 手動으로 切斷하는 사람
	008	酸 素 切 斷 工	厚鐵板 또는 棒材 등을 가스와 酸素를 利用하여 切斷하는 사람
	009	回 轉 쇠 톱 工	실쇠톱을 手動으로 回轉시키며 切斷하는 사람
	010	金 屬 쇠 톱 工	金屬을 切斷하는 쇠톱으로 手動切斷하는 사람
	011	模 型 切 斷 工	실쇠톱이 附着된 自動金屬(쇠톱)機로 切斷하는 사람
	012	가 위 切 斷 工	가위로서 物體를 切斷하는 사람
	013	鍛 金 切 斷 工	“함마”로 “편칭”하여 切斷하는 사람
	014	超 音 波 切 斷 工	超音波機의 振動子에 砥粒을 介在시켜 工作하는 사람

技能別	連番	職 種	解 說
	015	放 電 切 斷 工	放電機의 燈油에 電極과 工作物을 浸油시켜 浸電하면서 加工하는 사람
	016	샤 링 工 (Shearing)	鐵枕을 샤링機에 의하여 스트립(Strip) 또는 파트(Parts)로 切斷하는 사람
	017	프 레 스 工 (Press)	프레스機로 加工하는 사람 (打板(Strok) (벤딩(Sending) 코이닝(Coinning) 피어싱(Piercing) 슬리팅(Slitting) 포밍(Forming) 드로잉(Drawing) 등의 加工式이 있다. (주로 切斷, 折曲, 구멍뚫기 收縮 등을 말한다)
	018	밀 링 工 (Miling)	밀링機로 製品을 加工하는 사람 (平面의 홈을 加工하는 工作機械로 흐라이스 盤이라고도 한다) 其他 구멍뚫기, 탭핑, 보링을 할때의 工作機械로도 利用된다.
	019	쉐 파 工	쉐파機로 製品을 加工하는 사람 (被加工物의 平面 또는 홈을 加工한다)
	020	홈 핑 工 (Hopping)	齒切盤으로 製品을 加工하는 사람 (齒車를 加工하는 機械)
	021	로 구 로 工	로구로機로 製品을 加工하는 사람 (볼트 및 너트類를 加工하는 機械)

技能別	連番	職 種	解 說
	022	드릴工(Drill)	드릴링機로 製品을 加工하는 사람
	023	태 팅 工 (Tapping)	볼트, 닛트, 其他 物體에 탭(Tap)을 施工하는 사람
	024	보 링 工 (Bolling)	보링機로 피스톤 등을 보링 施工하는 사람
	025	自 動 旋 盤 工	自動旋盤機로 製品을 加工하는 사람 (被加工物의 取付에서 푸는 것까지 自動的으로 行하며 棒材나 와이어바를 取付해두면, 加工되어 自動的으로 切斷하는 工作機械이다.)
	026	手 動 旋 盤 工	手動旋盤機로 製品을 加工하는 사람 (바이트라고 하는 切物을 被加工物에 接續시켜 回轉하면서 外徑 內徑 斷面 등을 加工한다.)
	027	프 레 나 工 (Planer)	프레나機로 製品을 加工하는 사람 (平削盤이라고도 하며 被加工物의 平面홈 側面을 加工한다.)
	028	스 롯 타 工 (Sloter)	스롯타機로 製品의 加工하는 사람
	029	볼 반 工	볼盤機로 製品의 구멍을 加工하는 사람으로 서 手動 및 多軸盤이 이에 分類된다.

技能別	連番	職 種	解 說
			(Drilling machine 드립을 回轉시켜 被 加工物에 대고 늘려서 구멍을 뚫는 工作機 械)
	030	鋼 板 工	鋼板으로 製品을 製造하는 사람
	031	板 金 工	鋼板 또는 鐵板 등으로 製造된 製品의 部 分補修를 行하는 사람
	032	합 석 工	합석으로 물통 물받이 등을 製造하는 사람
	033	文字彫刻機工	刻印用으로 文字彫刻機에 의하여 加工하는 사람
	034	模型彫刻機工	模型彫刻機로 圖面上의 模型대로 加工하는 사람
	035	3 本 로 라 工	3 本 로라機에 의하여 구부러진 板材類 矯正하는 사람
	036	벤 딩 머 신 工 (Bending Machine)	折曲機로 物體를 折曲하는 사람
	037	折 曲 工	手動으로 加工品 또는 製品을 折曲하는 사람
	038	手 動 矯 正 工	手動으로 物體를 함마질(鍛金)하여 矯正하 는 사람
	039	밸런스머신工 (Balance Machine)	밸런스 머신機로 歪曲된 物體를 矯正하는 사람

技能別	連番	職 種	解 說
	040	燎 鐵 工	쇠를 불어 달구어 燎鐵하는 사람
	041	熱 處 理 工	用途에 따라 쇠를 熱에 의하여 硬하게 하거나 또는 軟하게 하는 사람 (高周波處理, 油熱處理, 冷却水熱處理, 自熱溫度 熱處理 등이 있다)
	042	熔 解 工	鐵 또는 非鐵金屬을 鑄造하기 위하여 熔解하는 사람
	043	金 型 工	金型을 製造하는 사람 (熔解된 金屬 또는 유리를 流入시켜 所要의 型을 만드는 元型으로 프라스틱 成形用 輕金屬의 다이캐스트 鐵鋼의 프레스 鑄造 등에 使用된다.)
	044	木 型 工	木型을 製造하는 者와 土型 製造者도 이에 分類한다. (鑄物品을 製造하기 위하여 木材로 所要의 型을 만들어 흙으로 木型에 注入시켜 乾燥시킨 後 鑄物型에 넣어 熔解된 鑄物을 注入시켜 製造한다)
	045	鑄 物 工	熔解한 鐵 또는 非鐵金屬으로 鑄物品을 製造하는 사람

技能別	連番	職 種	解 說
電 線 製 造	046	다이캐스트工 (diecast)	<p>合金물을 熔解하여 金型에 高壓으로 注入시켜 鑄造하는 사람</p> <p>(一般的으로 輕金屬을 使用한다. 알루미늄, 아연 등)</p>
	047	鍛 造 工	<p>鍛造機에 의하거나 手動으로 hammer하여 鐵 또는 非鐵金屬을 鍛造하는 사람</p>
	048	壓 延 工	<p>壓延機에 의하여 壓延 加工하는 사람</p> <p>(쇠를 強하게 하기 위하여 鍛造하고 있으나 被加工物이 棒材, 線材 板材 등의 用途에 따라 鍛造, 壓延, 引拔 押出 등으로 區分 加工한다)</p>
	049	引 拔 工	<p>引拔機에 의하여 引拔加工하는 사람</p>
	050	押 出 工	<p>押出機에 의하여 引拔 加工하는 사람</p>
	051	合 金 工	<p>各種 鐵 또는 非鐵金屬과 化工藥品을 利用하여 用途에 따라 混合 合金하는 사람</p>
	052	製 金 工	<p>金, 銀 등으로 製品을 製造하는 사람</p>
	053	軟 化 工	<p>鐵 및 非鐵金屬으로 製造된 線材를 用途에 따라 硬質線을 軟質線으로 製造하는 사람</p>
054	伸 線 工	<p>鐵 및 非鐵金屬으로 製作된 伸線用 “바” 에서 用途에 따라 細線으로 伸線하는 사람</p>	

技能別	連番	職 種	解 說
	055	撚 線 工	鐵 및 非鐵金屬의 線을 撚合하여 同心 또는 相互 反對 方向으로 撚線하는 사람
	056	絕 緣 工	고무테이프 絶緣紙, 外捲紙, 防腐性, 混和物 등으로 絶緣을 施工하는 사람
	057	撚 合 工	“유닛트” 星形, 콰드 등을 撚合하는 사람
	058	對 撚 工	電線을 對撚하는 사람
	059	테 이 핑 工 (Taping)	外港用 또는 遮蔽用 테이프를 테이핑하는 사람
	060	케 이 블 乾 燥 工	製造中間 또는 製品完了後 油類가 電熱등에 의하여 케이블을 乾燥하는 사람
	061	케 이 블 製 造 工	케이블 製造技術과 學識을 兼備한 技術사람 (製造 試驗工도 이에 分類한다.)
	062	被 覆 工 (Sheath)	金屬 또는 絶緣體로 케이블의 外被 또는 外裝을 하는 사람 (알미늄 鋼帶 鐵線外裝도 이에 分類한다.)
	063	捲 取 工	完成된 케이블을 條長別로 捲取 또는 外觀上의 檢査를 하는 사람
리벳탕	064	鳩 目 工	運動靴 등의 묶음用 알미늄 鳩目を 리벳팅하는 사람
	065	리 벳 工 (Revet)	鐵 또는 非鐵金屬으로 製造된 리벳트로 織板 등의 接合을 目的으로 리벳팅하는 사람

技能別	連番	職 種	解 說
熔 接 特 殊 加 工	066	熔 接 工	熔接工(電氣, 酸素 등)에 의하여 熔接하거나 땀질하는 사람
	067	接 點 工	接點을 판넬에 附着시키는 사람 (接點製造工은 製金工, 合金工에 分類한다)
	068	捲 線 工 (코 일)	繼電器 트랜스 등의 코아에 코일을 捲線하는 사람 (自動機 및 手動機 共히 이에 分類한다)
	069	랍 핑 工 (Lapping)	랍핑機에 의하여 小型金屬片의 表面을 研魔하는 사람
	070	레이저光線工	레이저光線(電磁波)을 工作物에 비추어 物體를 加工하는 사람
	071	陽 極 處 理 工	陽極에 의하여 金屬에 表面處理하는 사람
	072	合成樹脂皮膜工	合成樹脂로 物體의 表面에 皮膜施工하는 사람
	073	眞空波漬含浸工	眞空沈漬機에 物體를 含浸시켜 加工하는 사람
	074	一 般 化 學 工	化工藥品의 添加 또는 配合를 하여 加工하는 사람
	075	造 成 化 學 工	펄프를 분쇄 증해·고해 등의 加工을 하는 사람

技能別	連番	職 種	解 說
表 面 作 業	076	고무製品製造工	生 고무·合成 고무 등을 配合하여 고무製品을 製造하는 사람 (配合 및 化工藥品添加 등은 化學工에 分類)
	077	窯 業 工	도자기 및 애차류를 製造 또는 구어내는 사람
	078	유리製品製造工	유리製品을 製造하는 사람 (硝, 병, 裝飾品 등)
	079	구 라 인 다 工 (glinding)	砥石 등을 電動機 또는 手動機에 附着시켜 구라인다 하는 사람 (研削盤 또는 研磨盤이라고도 呼稱한다)
	080	砥 石 研 磨 工	砥石을 手動으로 物體를 研磨하는 사람 (石工에 많이 있음)
	081	砂 紙 工	砂紙(샌드페이퍼 물페이퍼)로서 物體를 研磨하는 사람
	082	洗 滌 工	物體의 鏽(녹)과 汚穢部分을 各種 洗滌材料에 의하여 洗滌하는 사람 (酸洗, 油洗, 脫脂, 아주까리 洗滌 등이 있다)
	083	빠 후 工	物體의 表面에 빛을 내거나 때를 위하여 研磨加工하는 사람
084	컴파운드研磨工 (Compound)	“컴파운드”에 의하여 表面加工의 前處理로 研磨하는 사람	

技能別	連番	職 種	解 說
表 面 作 業	085	電 解 研 磨 工	陽極과 陰極 接近시켜 電解液으로 低電壓을 通해서 工作物을 製造하는 사람
	086	化 學 研 磨 工	金屬表面을 化學藥品 溶液에 浸水시켜 加工하는 사람
	087	호 닝 工	호닝機에 의하여 金屬表面을 다듬질 加工하는 사람
	088	塗裝工(吹付)	塗裝材料를 吹付機具에 의하여 塗裝하는 사람
	089	// (붓칠)	塗裝材料를 붓칠로 塗裝하는 사람
	090	木 工 塗 裝 工	木工 또는 家具工이 製品한 製品面에 塗裝하는 사람
	091	빠 데 塗 布 工	페인트류 塗裝前 處理로서 흙과 鉛粉에 混合하여 鐵板面에 塗布하여 乾燥石 砂紙 손질하고 그 위에 페인트 吹付한다.
	092	흙 밍 工	機械의 配線을 정돈하기 위해 묶음 또는 포박 施工하는 사람
	093	配 線 工	機器의 配線을 하는 사람
	094	電 氣 鍍 金 工	各種物體의 表面處理하는 鍍金을 電線에 의하여 施工하는 사람
095	沈 漬 鍍 金 工	各種物體의 表面處理하는 鍍金을 原材料를 熔融해서 加工物을 담구어 鍍金하는 사람	

技能別	連番	職 種	解 說
樹 脂 製 品	096	射 出 工	(Injection) 樹脂製品 등을 射出機에 의하여 射出하는 사람
	097	成 型 工	(Molding) 樹脂製品 등을 成型機에 의하여 成型하는 사람
	098	押 出 工 (인스트루손)	(Instruction) 樹脂製品 등을 押出機에 의하여 押出하는 사람
木 材	099	製 材 工	原本을 角材 또는 板材로 製作하는 사람
	100	定 尺 工	原木 등의 製作 長尺 등을 금긋기 하는 사람
	101	製材機械運轉工	製材機械를 運轉 또는 部分的인 故障을 補修할 수 있는 사람
	102	木材乾燥機械工	水乾 蒸氣乾, 電氣乾高周波方式 등에 의하여 木材를 乾燥시키는 사람
	103	合 板 製 造 工	各種合板類의 製造를 하는 사람
	104	家 具 工	家具를 製造하는 사람
	105	목공 및 유리공	硝子(유리)를 切斷하여 使用處에 補修하는 사람 (木工도 이에 分類함)
	106	벨트 콘베어 작 業 工	各種 콘베이어에서 作業하는 사람
組 立	107	部 品 組 立 工	中間部품을 組立하는 사람
	108	電子製品組立工	電子製品을 //
	109	弱電機械 //	直流機器를 //

技術別	連番	職 種	解 說
	110	強電機械組立工	交流機器를 組立하는 사람
	111	輕 機 械 "	室內裝置가 可能的 比較的 輕한 機械施設 또는 裝備 등을 組立하는 사람
	112	重機械組立工	家積이 크고 室外에서 使用되는 重한 機 械施設 또는 裝備 등을 組立하는 사람
	113	製 品 試 驗 工	製品을 試驗하는 사람
	114	製 品 調 整 工	製品을 調整하는 사람
	115	製 品 檢 查 工	製品을 檢査하는 사람
包 裝	116	物 品 包 裝 工	各種 製品을 商品用으로 또는 運搬時의 安 全度를 勘案하여 各種 物品을 包裝하는 사람
	117	鐵 鋼 包 裝 工	鐵製帶鋼 또는 製鐵物을 包裝하는 사람
印 刷	118	圖 案 工	印刷用 圖案을 作成하는 사람
	119	製 本 工	印刷된 종이를 綜合 정돈하고 꿰메어 책을 만드는 作業을 하는 사람
	120	孔 版 印 刷 工	孔版印刷機로 印刷하는 사람 (공판, 건채공)
	121	오프셋 印 刷 工	오프셋 印刷機로 印刷하는 사람
	122	活 版 印 刷 工	活版印刷機로 印刷하는 사람
	123	寫 眞 製 版 工	寫眞을 印刷하기 위하여 版을 짜는 사람
	124	印刷銅版製造工	印刷하기 위하여 銅版을 製造하는 사람
	125	印刷鉛版製造工	印刷하기 위하여 鉛版을 製造하는 사람

技能別	連番	職 種	解 說
織 物	126	活版植字工	活版印刷에서 採字한 것을 조판하는 사람
	127	文 選 工	採字하는 사람
	128	筆 耕 士	등사원지를 출판위에 놓고 첩필로 원고대로 글을 쓰거나 도표 그림을 그리는 사람
	129	孔版打字手	국·한문 공판타자로 스텐실 또는 백지에 원고대로 글을 타자하거나, 도표 및 그림을 타자하는 사람
	130	프린트印刷工	교정이 끝난 원지를 등사판에 붙이고 로-라에 등사잉크를 고루 묻혀 강도를 조절하여 등사하는 사람
	131	校 正 士	인쇄과정에서 원본과 대조 확인작업을 하는 사람
	132	紙類裁斷工	종이를 규격에 맞추어 짜르는 사람
	133	織物裁斷士	직물을 소정규격으로 재단하는 사람
	134	織物裁斷工	직물을 모형대로 절단하거나 재단사를 보조하는 사람
	135	上 針 工	動力 裁縫機로 裁縫하는 사람
	136	下 針 工	動力 裁縫機 옆에서 部品 供給 다듬질 및 部品손진을 하는 補助者
	137	이 본 針 工	이본針縫裁를 하는 사람
	138	오 바 로 그 工	오바르그機로 오바로그 縫裁를 하는 사람
	139	징 검 기 工	징검機에서 縫製品을 징검하는 사람

技能別	連番	職 種	解 說
	140	인 타 로 그 工	인타로그機에서 縫製品을 인타로그 하는 사람
	141	스 냐 工	돛드달이 및 구멍을 뚫는 作業을 하는 사람
	142	연 단 工	원단을 손질하여 製品이 容易하도록 하는 사람
	143	織 布 工	틀로 피륙 등을 짜는 사람
	144	浸 染 工	피륙에 물을 들이는 사람
	145	撚 絲 工	생실을 비누나 잣물로 처리하는 사람
	146	정 경 工	실을 만드는 최초의 공정을 담당하는 사람
	147	染 織 工	직물에 물을 들이는 사람
	148	관 건 工	직물을 말리는 사람
	149	裁 縫 機 械 工	재봉틀을 운전하는 사람
	150	紡織機械補塡工	紡織機械를 維持補修하는 사람
	151	編 織 工	직물을 짜는 사람
	152	橫 編 工	횡편직물을 짜는 사람
皮 革	153	製 靴 工	구두를 만드는 사람
	154	皮 革 工	皮革類를 製造 또는 加工하는 사람
食 品	155	빵 과 자 및 食品類製造工	빵·과자 등을 제조하는 사람
	156	調 理 士	調理士 資格證이 있는 資格者 밑에서 調理 하는 사람

技能別	連番	職 種	解 說
其 他	157	營 養 士	營養士 資格證을 保有하였거나 正規大學의 營養學科를 履修한 사람
	158	普 通 人 夫	製造分野에 있어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
	159	什 長	人夫를 통솔하여 작업하는 사람
	160	糧 穀 處 理 工	糧穀을 加工處理하는 사람
	161	컴퓨터運轉士	電算機를 運用 調整하는 사람
	162	機 械 技 術 工	專門分野의 機械 構造 및 性能을 比較的 잘 把握하고 補修維持에 能한 사람
	163	補 線 工	機器의 配線 및 斷線 등에 斷線을 補強 하는 사람
	164	車 輛 整 備 工	車輛 등의 整備士로서 資格證을 所量한 者 또는 資格 所有者 밑에서 指示에 依하여 整備하는 사람
	165	機 械 整 備 工	專門分野의 機械를 整備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춘 사람
	166	安 全 管 理 士	生産上의 安全을 圖謀할 수 있는 監督者 또는 管理者
	167	品 質 管 理 士	品質의 向上을 目的으로 研究하고 指示하는 管理者
168	品 質 管 理 工	品質을 管理하는 技工	
169	다 듬 질 工	모든 製品의 Finishing 工(끝손질工)	

技能別	連番	職 種	解 說
	170	重機運轉工	起重機類 捲上機 윈치(winch) 체인부록 (chain block) 콘베어類 에레베이터 에스 카레타 索道 其他 重機類의 運轉士
	171	컴퓨터S/W 技士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기술을 습득한 사람
	172	컴퓨터H/W 技士	컴퓨터 하드웨어의 기술을 습득한 사람
	173	통신機械組立工	통신裝備에 對한 機械를 組立하는 사람
	174	컴퓨터키핀치工	컴퓨터용 천공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75	통신外線工	통신裝備의 外部配線 作業에 종사하는 사람
	176	통신內線工	통신裝備의 內部配線 作業에 종사하는 사람
	177	無線안테나工	무선용 안테나의 製作技術을 습득한 사람
	178	통신技士 1 級	통신裝備에 對한 製作技術 1 級 相當 습득한 사람
	179	통신技士 2 級	통신裝備에 對한 製作技術 2 級 相當을 습득한 사람
	180	통신技能士	통신장비에 對한 제작기술을 습득한 사람
	181	목재포장공	목재로 포장상사를 제작하여 포장하는 木工
	182	木 徒	나무를 利用하여 物件을 運搬하는 사람
	183	寫眞植字工	寫眞植字機에 의해서 文字를 打字하는 技能工
	184	陶瓷器및 碼子工	陶瓷器 및 碼子類를 製造하는 사람

4. 직종별 노임현황

(단위:명, 원)

직종 번호	직종명	총인원 (A)	일급총액 (B)	평균노임 (B/A)	최고노임	최저노임
001	갱부					
002	도목수					
003	건축목공					
004	형틀목공					
005	창호목공					
006	철골공					
007	철공					
008	철근공					
009	철판공					
010	셋터공					
011	셋시공					
012	절단공					
013	석공					
014	특수비계공 (15m이상)					
015	비계공					
016	동발공 (터널)					
017	조적공					
018	벽돌(블럭)제작공					
019	연돌공					
020	미장공					
021	방수공					
022	타일공					
023	줄눈공					
024	연마공					
025	콘크리트공					
026	바이브레타공					
027	보일러공					
028	배관공					
029	온돌공					
030	위생공					
031	보온공					
032	도장공					
033	내장공					
034	도배공					
035	아스타일공					
036	기와공					

(단위:명, 원)

직종 번호	직종명	총인원 (A)	일급총액 (B)	평균노임 (B/A)	최고노임	최저노임
037	슬레이트공					
038	화약취급공					
039	착암공					
040	보안공					
041	포장공					
042	포설공					
043	케도공					
044	용접공(철도)					
045	잠수부(4인조)					
046	잠함공					
047	보링공(지질조사)					
048	우물공					
049	영림기사					
050	조원공					
051	벌목부					
052	조립인부					
053	플랜트기계설치공					
054	플랜트용접공					
055	플랜트배관공					
056	플랜트제관공					
057	시공측량사					
058	시공측량사조수					
059	측부					
060	검조부					
061	송전전공					
062	배전전공					
063	플랜트전공					
064	내선전공					
065	특고압케이블전공					
066	고압케이블전공					
067	저압케이블전공					
068	철도신호공					
069	계장공					
070	전기공사기사 1급					
071	전기공사기사 2급					
072	통신외선공					

(단위:명, 원)

직종 번호	직종명	총인원 (A)	일급총액 (B)	평균노임 (B/A)	최고노임	최저노임
073	통신설비공					
074	통신내선공					
075	통신케이블공					
076	무선안테나공					
077	통신기사 1급					
078	통신기사 2급					
079	통신기능사					
080	수작업반장					
081	작업반장					
082	목도					
083	조력공					
084	특별인부					
085	보통인부					
086	중기운전기사					
087	운전사(운반차)					
088	운전사(기계)					
089	중기운전조수					
090	고급선원					
091	보통선원					
092	선부					
093	준설선선장					
094	준설선기관장					
095	준설선기관사					
096	준설선운전사					
097	준설선전기사					
098	기계설치공					
099	기계공					
100	선반공					
101	정비공					
102	벨트콘베어작업공					
103	현도사					
104	제도사					
105	시험사 1급					
106	시험사 2급					
107	시험사 3급					
108	시험사 4급					

(단위:명, 원)

식종 번호	식종 명	총인원 (A)	일급총액 (B)	평균노임 (B/A)	최고노임	최저노임
109	시협보조수					
110	안전관리기사 1급					
111	안전관리기사 2급					
112	유리공					
113	합석공					
114	용접공(일반)					
115	리벳공					
116	루핑공					
117	닥트공					
118	대장공					
119	할석공					
120	제철축도공					
121	양생공					
122	계령공					
123	사공(배포함)					
124	마부(우마차포함)					
125	제재공					
126	철도궤도공					
127	지적기사 1급					
128	지적기사 2급					
129	지적기능사 1급					
130	지적기능사 2급					

5. 기타사항(본조사와 관련된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예:선규직종 해설 및 노임상승요인)

'89시중노임실태조사표

(제조업부문)

실시기관: 경제기획원
승인번호: 111-21-14호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행정구역번호	조사구번호	업종번호	사업체일련번호

1. 기업체현황

기업체명	대표자	전화					
주소	자본금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2. 사업체(공장)현황

사업체명	전화	조사된종업원수	명				
주소	조사직종수	상여금	지급기준				
실제작업일수	일	주요생산품	년	%			

3. 관리사항

응답자	소속: 성명: ①	공장장	소속: 성명: ①
조사자	소속: 성명: ①		

확인자	소속: 성명: ①
-----	-------------------------------

-작성년월일: 1989년 월 일

<작성요령>

- '89년 9월중 지급한 노임을 일급으로 조사한다.(다만, 가족수당, 위험수당은 포함 하되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상여금, 부식비,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제외)
- 사업장에 비치된 임금대장을 근거로하여 조사표를 작성한다.
- 임금 대장에 기재된 전인원을 조사대상으로하되 사업체장등 관리직종사자, 사무직, 경비원등의 간접노무자는 조사에서 제외 한다.
- 한노무자가 여러 직종을 겸임하고 있을 때에는 주된 직종으로 조사한다.
- 임금이 월급인 경우 25일로 환산하여 일급으로 기입한다.

경제기획원

4. 직종별 노임현황

(단위: 명, 원)

직종 번호	직종명	총인원 (A)	일급총액 (B)	평균노임 (B/A)	최고노임	최저노임
001	기계설계사					
002	회로설계사					
003	제도사					
004	현도사					
005	마킹공 (MARKING)					
006	철불재단사					
007	철물절단공					
008	산소절단공					
009	회전쇠톱공					
010	금속쇠톱공					
011	모형절단공					
012	가위절단공					
013	단금절단공					
014	초음파절단공					
015	방전절단공					
016	샤링공 (Shearing)					
017	프레스공 (Press)					
018	밀링공 (Miling)					
019	쉐파공 (Shaper)					
020	홉핑공 (Hopping)					
021	로구로공					
022	드릴공 (Drill)					
023	태핑공 (Tapping)					
024	보링공 (Bolling)					
025	자동선반공					
026	수동선반공					
027	프레나공 (Planer)					
028	스롯타공 (Slotor)					
029	볼반공					
030	강판공					
031	판금공					
032	합석공					
033	문자조각기공					
034	모형조각기공					
035	3본로라공					
036	벤딩머신공 (Bending Machine)					

(단위:명, 원)

시 종 번 호	작 종 명	총 인 원 (A)	일 급 총 액 (B)	평 균 노 임 (B/A)	최 고 노 임	최 저 노 임
037	절 곡 공					
038	수 동 교 정 공					
039	바 란 스 머 신 공 (Balance Machine)					
040	요 철 공					
041	열 처 리 공					
042	용 해 공					
043	금 형 공					
044	목 형 공					
045	주 물 공					
046	다이캐스트공 (diecast)					
047	단 조 공					
048	압 연 공					
049	인 발 공					
050	압 출 공					
051	합 금 공					
052	제 금 공					
053	연 화 공					
054	신 선 공					
055	연 선 공					
056	절 연 공					
057	연 합 공					
058	대 연 공					
059	테 이 핑 공 (Taing)					
060	케 이 블 건 조 공					
061	케 이 블 제 조 공					
062	피 복 공 (Sheath)					
063	권 취 공					
064	구 목 공					
065	리 벳 공 (Revet)					
066	용 접 공					
067	접 접 공					
068	권 선 공 (코 일)					
069	랩 핑 공(Lapping)					
070	레 이 저 광 선 공					
071	양 극 처 리 공					
072	합 성 수 지 피 막 공					

(단위:명, 원)

직종 번호	직종명	총인원 (A)	일급총액 (B)	평균노임 (B/A)	최고노임	최저노임
073	진공침지합침공					
074	일반화학공					
075	조성화학공					
076	고무제품제조공					
077	요업공					
078	유리제품제조공					
079	구라인다공 (Ginding)					
080	지석연마공					
081	사지공					
082	세척공					
083	빠후공					
084	복합연마공 (Compound)					
085	전해연마공					
086	화학연마공					
087	호닝공					
088	도장공(취부)					
089	도장공(붓칠)					
090	목공도장공					
091	빠테도포공					
092	흙밍공					
093	배선공					
094	전기도금공					
095	침지도금공					
096	사출공					
097	성형공					
098	압출공(인스트루손)					
099	제재공					
100	정척공					
101	제재기계운전공					
102	목재건조기계공					
103	합판제조공					
104	가구공					
105	목공및유리공					
106	벨트콘베어작업공					
107	부품조립공					
108	전자제품조립공					

(단위:명, 원)

직종 번호	직종명	총인원 (A)	일급총액 (B)	평균노임 (B/A)	최고노임	최저노임
109	약전기계조립공					
110	강전기계조립공					
111	경기계조립공					
112	중기계조립공					
113	제품시험공					
114	제품조정공					
115	제품검사공					
116	물품포장공					
117	철강포장공					
118	도안공					
119	제본공					
120	공판인쇄공					
121	읍셋인쇄공					
122	활판인쇄공					
123	사진제판공					
124	인쇄동판제조공					
125	인쇄연판제조공					
126	활판식자공					
127	문선공					
128	필경사					
129	공판타자수					
130	프린트인쇄공					
131	교정사					
132	지류재단공					
133	직물재단사					
134	직물재단공					
135	상침공					
136	하침공					
137	이본침공					
138	오바로크공					
139	정검기공					
140	인타로그공					
141	스냅공					
142	연단공					
143	직포공					
144	침염공					

(단위:명, 원)

직종 번호	직종명	총인원 (A)	일급총액 (B)	평균노임 (B/A)	최고노임	최저노임
145	연사공					
146	정경공					
147	염직공					
148	관건공					
149	재봉기계공					
150	방직기계보전공					
151	편직공					
152	횡편공					
153	제화공					
154	피혁공					
155	빵과자및식품류제조공					
156	조리사					
157	영양사					
158	보통인부					
159	작업반장					
160	양곡처리공					
161	컴퓨터운전사					
162	기계기술공					
163	보선공					
164	차량정비공					
165	기계정비공					
166	안전관리사					
167	품질관리사					
168	품질관리공					
169	다듬질공					
170	증기운전공					
171	컴퓨터 S / W 기사					
172	컴퓨터 H / W 기사					
173	통신기계조립공					
174	컴퓨터기편치공					
175	통신외선공					
176	통신내선공					
177	무선안테나공					
178	통신기사 1 급					
179	통신기사 2 급					
180	통신기능사					

